| 발 간 등 록 번 호 |
| --- |
| |

# 교육법전2

2026. 8. 2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Korea Law Service Center

# 목 차

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청소년 기본법
5.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6.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7. 청소년 보호법
8.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9.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10. 청소년복지 지원법
11.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12.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13. 청소년활동 진흥법
14.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15.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16.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
17.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18. 1945년이후종전의규정에의한학교졸업자자격인정령
19. 1945년이후종전의규정에의한학교졸업자자격인정령
20.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21.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22.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23.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24.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25.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26.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
27.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
28.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29.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30.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시행령
31.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시행령
32.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
33.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
34.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35.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36.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37.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38. 국립 각급 학교 관인규칙

39. 국립 각급 학교 관인규칙
40. 국립공업고등학교 설치령
41. 국립공업고등학교 설치령
42. 국립 국악ㆍ전통예술학교 설치령
43. 국립 국악ㆍ전통예술학교 설치령
44.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45.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46.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47.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48.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9.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0.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51.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52.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53.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54.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5.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6.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57.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58. 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59. 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60.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61.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62.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63.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64. 국립학교의 각종 증명 발급 등에 관한 규칙
65. 국립학교의 각종 증명 발급 등에 관한 규칙
66. 국립학교 설치령
67. 국립학교 설치령
68. 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
69. 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
70. 국방대학교 설치법
71. 국방대학교 설치법
72.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73.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74. 국방대학교 학생 선발 및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칙
75. 국방대학교 학생 선발 및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칙
76. 군사학교 각종 증명수수료 규칙
77.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
78.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

79.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80.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81.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82.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83.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84.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85.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86.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87.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
88.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
89.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90.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91.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시행규칙
92.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시행규칙
93. 사관학교 설치법
94. 사관학교 설치법
95.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96.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97.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98.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99.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100.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101. 사립학교 교직원 학자금대여사업 위탁관리규칙
102. 사립학교 교직원 학자금대여사업 위탁관리규칙
103. 사립학교법
104. 사립학교법
105. 사립학교법 시행령
106. 사립학교법 시행령
107. 사립학교보조와원조에관한건
108. 사립학교보조와원조에관한건
109.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110.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시행령
111.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112.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113.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114.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115. 울산과학기술원법
116. 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117.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118.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119. 육군공병학교령
120. 육군기계화학교령
121. 육군보병학교령
122. 육군부사관학교령
123. 육군정보통신학교령
124. 육군정보학교령
125. 육군종합군수학교령
126. 육군종합행정학교령
127. 육군포병학교령
128. 육군학생군사학교령
129. 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
130.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131.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132. 특수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133. 학교건강검사규칙
134. 학교급식법
135. 학교급식법 시행령
136.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137. 학교도서관진흥법
138.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139.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140.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14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4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45.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직인규칙
146. 학교보건법
147. 학교보건법 시행령
148.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149.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150.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151.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규칙
15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53.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4.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55.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156.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57.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158.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159. 학교체육 진흥법
160.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161.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16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6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4. 학력인정학교지정규칙
165.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166.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167.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168.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시행규칙
169.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170. 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 설치령
171.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172.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173.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174.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175. 합동군사대학교령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108호, 2025. 11. 11., 타법개정]

성평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일반사항) 02 - 2100 - 6405
성평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취업제한제도, 신고포상금) 02 - 2100 - 6416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18., 2014. 1. 28., 2018. 1. 16., 2020. 5. 19., 2020. 6. 2., 2021. 3. 23., 2024. 3. 26., 2024. 10. 16.>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
   나.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다.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39조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라.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의 죄
3.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서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를 제외한 죄를 말한다.

3의2. “성인대상 성범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말한다. 다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302조 및 제305조의 죄는 제외한다.

4.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ㆍ청소년, 아동ㆍ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ㆍ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ㆍ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ㆍ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6. “피해아동ㆍ청소년”이란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ㆍ청소년(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ㆍ청소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의2.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이란 피해아동ㆍ청소년 중 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 또는 제13조제2항ㆍ제14조ㆍ제15조의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7. 삭제<2020. 5. 19.>
8. 삭제<2020. 6. 9.>
9. “등록정보”란 법무부장관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등록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를 말한다.

**제3조(해석상ㆍ적용상의 주의)** 이 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아동ㆍ청소년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과 그 가족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아동ㆍ청소년을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계도와 더불어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가 국제적 범죄임을 인식하고 범죄 정보의 공유, 범죄 조사ㆍ연구, 국제사법 공조, 범죄인 인도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5조(사회의 책임)** 모든 국민은 아동ㆍ청소년이 이 법에서 정한 범죄의 피해자가 되거나 이 법에서 정한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사회 환경을 정비하고 아동ㆍ청소년을 보호ㆍ지원ㆍ교육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9.>

**제6조(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예방과 계도, 피해자의 치료와 재활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23호의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의 지상파방송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라 한다)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

율의 범위에서 제1항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③ 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홍보영상 외에 독자적인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 제2장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 4. 11.>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7조의2(예비, 음모)** 제7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20. 6. 2.]

**제8조(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간음하거나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2020. 12. 8.>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20. 12. 8., 2021. 3. 23.>

**제8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제8조에 따른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서 16세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궁박(窮迫)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21. 3. 23.>
[본조신설 2019. 1. 15.]

**제9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 4. 11.>

**제10조(강간 등 살인ㆍ치사)** ①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2023. 4. 11.>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2020. 6. 2., 2023. 4. 11.>
④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2020. 6. 2., 2023. 4. 11., 2025. 12. 30.>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2020. 6. 2., 2023. 4. 11., 2025. 4. 22.>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제목개정 2020. 6. 2.]

**제11조의2(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하여 그 아동ㆍ청소년을 협박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그 아동ㆍ청소년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상습적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본조신설 2024. 10. 16.]

**제12조(아동ㆍ청소년 매매행위)**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되는 아동ㆍ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2025. 12. 30.>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21. 3. 23.>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신설 2020. 5. 19., 2020. 12. 8.>

**제14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2. 선불금(先拂金),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3. 업무ㆍ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4. 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ㆍ권유한 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ㆍ권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1. 3. 23., 2025. 12. 30.>

1.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2.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자금ㆍ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

4. 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ㆍ알선하는 업소에 아동ㆍ청소년을 고용하도록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 또는 강요한 자
2.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
3.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한 자
4. 영업으로 제2호 또는 제3호의 행위를 약속한 자

③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 또는 강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 4. 22.>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개정 2025. 4. 22.>

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신설 2025. 4. 22.>

[본조신설 2021. 3. 23.]

**제16조(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 4. 11.>

**제17조** 삭제 <2020. 6. 9.>

**제18조(신고의무자의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제34조제2항 각 호의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자기의 보호ㆍ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단순위헌, 2023헌가15, 2026. 5. 2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3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제19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ㆍ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② 제7조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③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 1. 15., 2020. 5. 19., 2023. 4. 11.>

1.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또는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2. 제9조 및 제10조의 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ㆍ제5항, 제8조, 제9조의 죄

④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 3. 23., 2025. 12. 30.>

1. 「형법」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의 죄(강간등 살인에 한정한다)
2.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의 죄
3.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제1항의 죄

**제21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소년법」 제2조의 소년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倂科)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 1. 16.>

③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제2항의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 병과한다. 다만, 이수명령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병과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 1. 16., 2020. 2. 4.>

④ 법원이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징역형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병과하지 아니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하고, 징역형 이상의 실형(치료감호와 징역형 이상의 실형이 병과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병과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이하 "교정시설등의 장"이라 한다)이 집행한다. 다만,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모두 이행하기 전에 석방 또는 가석방되거나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집행한다.<개정 2025. 4. 22.>

⑦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

1. 일탈적 이상행동의 진단ㆍ상담
2. 성에 대한 건전한 이해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성범죄를 범한 사람의 재범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⑧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등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5. 4. 22., 2025. 10. 1.>

⑨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21조의2(재범여부 조사)** ① 법무부장관은 제21조제2항에 따라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친 사람에 대하여 그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재범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범여부 조사를 위하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집행을 마친 때부터 5년 동안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사람에 관한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5. 29.]

**제22조(판결 전 조사)** ①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제21조에 따른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거나 제56조에 따른 취업제한 명령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체적ㆍ심리적 특성 및 상태, 정신성적 발달과정, 성장배경, 가정환경,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범행동기, 병력(病歷), 피해자와의 관계, 재범위험성 등 피고인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

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6.>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서면으로 해당 법원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이나 그 밖의 관계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소속 보호관찰관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조사진행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친권상실청구 등)** 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는 그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에 법원에 「민법」 제924조의 친권상실선고 또는 같은 법 제940조의 후견인 변경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친권상실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의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은 검사에게 제1항의 청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를 요청받은 검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해당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에게 그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 1. 15., 2025. 11. 11.>

1.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또는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3.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은 그 처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직접 법원에 제1항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제24조(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조치 결정)**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에게 「민법」 제924조에 따라 친권상실선고를 하는 경우에는 피해아동ㆍ청소년을 다른 친권자 또는 친족에게 인도하거나 제45조 또는 제46조의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에 인도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아동ㆍ청소년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25조(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의 배려)** ① 수사기관과 법원 및 소송관계인은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나이, 심리 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사 및 심리ㆍ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22.>

②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조사하거나 심리ㆍ재판할 때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조사 및 심리ㆍ재판 횟수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25. 4. 22.>

③ 수사기관과 법원은 조사 및 심리ㆍ재판 과정에서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최상의 이익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0. 12. 8., 2025. 4. 22.>

1.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진술을 듣는 절차가 타당한 이유 없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진술을 위하여 피해아동ㆍ청소년에게 친화적으로 설계된 장소에서 피해자 조사 및 증인신문을 할 것
3. 피해아동ㆍ청소년이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 접촉하거나 마주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피해아동ㆍ청소년에게 조사 및 심리ㆍ재판 과정에 대하여 명확하고 충분히 설명할 것
5. 그 밖에 조사 및 심리ㆍ재판 과정에서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④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진술조력인의 수사 및 재판 과정 참여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성폭력범죄"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피해자"는 "피해아동ㆍ청소년"으로 본다.<신설 2025. 4. 22.>

⑤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증인신문을 위한 공판준비절차, 증인신문 방법 및 장소 등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의2 및 제40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19세미만피해자등" 및 "피해자"는 "피해아동ㆍ청소년"으로 본다.<신설 2025. 4. 22.>

**제25조의2(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 ① 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이하 "디지털 성범죄"라 한다)에 대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현장(정보통신망을 포함한다)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이하 "신분비공개수사"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25. 4. 22.>

1. 제11조의 죄

1의2. 제15조의2의 죄(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한 행위에 한정한다)

2.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죄

②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신분위장수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신분을 위장하기 위한 문서, 도화 및 전자기록 등의 작성, 변경 또는 행사
2. 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ㆍ거래
3.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의 소지, 판매 또는 광고

③ 제1항에 따른 수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3. 23.]

**제25조의3(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 특례의 절차)** ① 사법경찰관리가 신분비공개수사를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수사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법경찰관리는 신분위장수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그 허가를 청구한다.
④ 제3항의 신청은 필요한 신분위장수사의 종류ㆍ목적ㆍ대상ㆍ범위ㆍ기간ㆍ장소ㆍ방법 및 해당 신분위장수사가 제25조의2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유 등의 신청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신청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법원은 제3항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분위장수사를 허가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허가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발부한다.
⑥ 허가서에는 신분위장수사의 종류ㆍ목적ㆍ대상ㆍ범위ㆍ기간ㆍ장소ㆍ방법 등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⑦ 신분위장수사의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수사기간 중 수사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의2제2항의 요건이 존속하여 그 수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수사기간의 연장을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그 연장을 청구한다. 이 경우 신분위장수사의 총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1. 3. 23.]

**제25조의4(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비공개수사)** ①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제25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신분비공개수사를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른 신분비공개수사 개시 후 지체 없이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리는 48시간 이내에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신분비공개수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분비공개수사 기간에 대해서는 제25조의3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 10. 16.]
[종전 제25조의4는 제25조의5로 이동 <2024. 10. 16.>]

**제25조의5(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위장수사)** ① 사법경찰관리는 제25조의2제2항의 요건을 구비하고, 제25조의3제3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른 신분위장수사 개시 후 지체 없이 검사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리는 48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신분위장수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분위장수사 기간에 대해서는 제25조의3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 3. 23.]
[제25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25조의5는 제25조의6으로 이동 <2024. 10. 16.>]

**제25조의6(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로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의 사용제한)** 사법경찰관리가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5까지에 따라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4. 10. 16.>

1.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의 목적이 된 디지털 성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를 수사ㆍ소추하거나 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2.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의 목적이 된 디지털 성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로 인한 징계절차에 사용하는 경우
3. 증거 및 자료 수집의 대상자가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1. 3. 23.]
[제25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25조의6은 제25조의7로 이동 <2024. 10. 16.>]

**제25조의7(국가경찰위원회와 국회의 통제)** 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가수사본부장(이하 "국가수사본부장"이라 한다)은 신분비공개수사가 종료된 즉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에 수사 관련 자료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가수사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신분비공개수사 관련 자료를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3. 23.]
[제25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25조의7은 제25조의8로 이동 <2024. 10. 16.>]

**제25조의8(비밀준수의 의무)** ①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7까지에 따른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승인ㆍ집행ㆍ보고 및 각종 서류작성 등에 관여한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 10. 16.>
② 제1항의 비밀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3. 23.]
[제25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25조의8은 제25조의9로 이동 <2024. 10. 16.>]

**제25조의9(면책)** ① 사법경찰관리가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 중 부득이한 사유로 위법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법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③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사법경찰관리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1. 3. 23.]
[제25조의8에서 이동, 종전 제25조의9는 제25조의10으로 이동 <2024. 10. 16.>]

**제25조의10(수사 지원 및 교육)**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은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를 승인하거나 보고받은 경우 사법경찰관리에게 수사에 필요한 인적ㆍ물적 지원을 하고, 전문지식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및 수사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3. 23.]
[제25조의9에서 이동 <2024. 10. 16.>]

**제26조(영상녹화 및 보존 등)**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장치로 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하며, 이하 "영상녹화"라 한다)하고, 그 영상녹화물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22.>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조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피해자의 나이, 인지적 발달 단계, 심리 상태,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한 적절한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개정 2025. 4. 22.>
1. 조사 과정이 영상녹화된다는 사실
2. 영상녹화된 영상녹화물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ㆍ청소년 또는 그 법정대리인(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이거나 가해자의 배우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영상녹화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5. 4. 22.>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변호사 앞에서 봉인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25. 4. 22.>
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 과정의 진행 경과를 조서(별도의 서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개정 2025. 4. 22.>
⑥ 제5항에 따라 영상녹화 과정의 진행 경과를 기록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개정 2025. 4. 22.>
1. 피해자가 영상녹화 장소에 도착한 시각
2. 영상녹화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3. 그 밖에 영상녹화 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⑦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아동ㆍ청소년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상녹화 과정에서 작성한 조서의 사본 또는 영상녹화물에 녹음된 내용을 옮겨 적은 녹취서의 사

본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거나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25. 4. 22.>

⑧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영상녹화한 영상녹화물을 수사 및 재판의 용도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5. 4. 22.>

⑨ 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의 방법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신설 2025. 4. 22.>

[제목개정 2025. 4. 22.]

**제26조의2(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특례)** ① 제26조제1항에 따라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진술이 영상녹화된 영상녹화물은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영상녹화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1. 증거보전기일,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그 내용에 대하여 피의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피해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경우. 다만, 증거보전기일에서의 신문의 경우 법원이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한 반대신문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피해아동ㆍ청소년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 다만, 영상녹화된 진술 및 영상녹화가 특별히 신빙(信憑)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된 경우로 한정한다.
   가. 사망
   나. 외국 거주
   다. 신체적, 정신적 질병ㆍ장애
   라. 소재불명
   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② 법원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는 영상녹화물을 유죄의 증거로 할지를 결정할 때에는 피고인과의 관계, 범행의 내용, 피해자의 나이, 심신의 상태, 피해자가 증언으로 인하여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외상, 영상녹화물에 수록된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진술 내용 및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전문심리위원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에 따른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4. 22.]

**제27조(증거보전의 특례)** ① 피해아동ㆍ청소년,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경찰은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제26조에 따라 촬영된 영상물 또는 그 밖의 다른 증거물에 대하여 해당 성범죄를 수사하는 검사에게 「형사소송법」 제184조제1항에 따른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4. 22.>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형사소송법」 제184조제1항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증거보전을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25. 4. 22.>

**제28조(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① 법원은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 검사,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22.>

② 제1항은 수사기관이 제1항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법원과 수사기관은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서류ㆍ증거물의 열람ㆍ등사)** 피해아동ㆍ청소년,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개정 2025. 4. 22.>

**제30조(피해아동ㆍ청소년 등에 대한 변호사선임의 특례)** ① 피해아동ㆍ청소년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4. 22.>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제31조(비밀누설 금지)** 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주소ㆍ성명ㆍ연령ㆍ학교 또는 직업ㆍ용모 등 그 아동ㆍ청소년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또는 그 아동ㆍ청소년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19.>

② 제45조 및 제46조의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주소ㆍ성명ㆍ연령ㆍ학교 또는 직업ㆍ용모 등 그 아동ㆍ청소년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이하 "방송"이라 한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0. 5. 1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제3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31조제3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고, 제1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12조,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또는 제15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개정 2023. 4. 11.>

**제33조(내국인의 국외범 처벌)** 국가는 국민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법」 제3조에 따라 형사처벌하여야 할 경우에는 외국으로부터 범죄정보를 신속히 입수하여 처벌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장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응급조치와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지원 <개정 2020. 5. 19.>

**제34조(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①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1., 2018. 1. 16., 2019. 11. 26., 2020. 12. 8., 2023. 4. 11., 2025. 4. 22.>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위탁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2의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청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학생상담지원시설 또는 위탁 교육시설

2의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

3.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4.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6.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7.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및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0.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1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12.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13.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13의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14.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
15.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 및 나목의 체육단체
16.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는 사업장(이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라 한다)

③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그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4조제2항 각 호의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의 자격취득 및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25. 4. 22.>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34조제2항 각 호의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에 대하여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③ 제2항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가 피해아동ㆍ청소년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의 가정구성원인 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피해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같은 법 제5조, 제8조, 제29조 및 제49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7조(피해아동ㆍ청소년 등의 상담 및 치료)** ① 국가는 피해아동ㆍ청소년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제46조의 상담시설 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상담이나 치료프로그램(이하 "상담ㆍ치료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피해아동ㆍ청소년
2.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자 및 형제ㆍ자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상담ㆍ치료프로그램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제38조(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조치 등)** 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는 보호를 위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5. 19.>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사건을 수사한 후 지체 없이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제47조의2에 따른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0. 5. 19., 2025. 10. 1.>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0. 5. 19., 2025. 10. 1.>

1. 제45조에 따른 보호시설 또는 제46조에 따른 상담시설과의 연계
2. 제47조의2에 따른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교육·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 등의 참여

④ 삭제<2020. 5. 19.>

[제목개정 2020. 5. 19.]

**제38조의2(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확대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조치)**

① 사법경찰관리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신고를 받고 해당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시·상영 또는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의 처리절차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피해아동·청소년(보호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5조의2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위반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즉시 그 위반행위를 중단할 것을 통보하고, 그 위반행위를 중단하지 아니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음을 서면으로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법경찰관리가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아동·청소년이 재차 피해를 입을 위험이 현저하여 신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피해아동·청소년을 제45조에 따른 보호시설 또는 제46조에 따른 상담시설로 인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피해아동·청소년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0. 16.]

**제39조** 삭제 <2020. 5. 19.>

**제40조** 삭제 <2020. 5. 19.>

**제41조(피해아동·청소년 등을 위한 조치의 청구)** 검사는 성범죄의 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위해의 배제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에 제1호의 보호관찰과 함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가해자에게 특정지역 출입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2020. 12. 8.>

1. 가해자에 대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2. 피해를 받은 아동ㆍ청소년의 주거 등으로부터 가해자를 분리하거나 퇴거하는 조치
3. 피해를 받은 아동ㆍ청소년의 주거, 학교, 유치원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대리인의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
4.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이나 우편물을 이용하여 가해자가 피해를 받은 아동ㆍ청소년 또는 그 보호자와 접촉을 하는 행위의 금지
5. 제45조에 따른 보호시설에 대한 보호위탁결정 등 피해를 받은 아동ㆍ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42조(피해아동ㆍ청소년 등에 대한 보호처분의 판결 등)** ① 법원은 제41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보호처분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 제41조 각 호의 보호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에 그 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처분 기간의 연장 횟수는 3회 이내로 하고, 연장기간은 각각 6개월 이내로 한다.

④ 보호처분 청구사건의 판결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⑤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제41조제1호 및 제2호의 보호처분 후 주거 등을 옮긴 때에는 관할 법원에 보호처분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⑥ 법원은 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을 결정한 때에는 검사, 피해자, 가해자, 보호관찰관 및 보호처분을 위탁받아 행하는 보호시설의 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시설이 민간에 의하여 운영되는 기관인 경우에는 그 시설의 장으로부터 수탁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⑦ 보호처분 결정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를 준용한다.

**제43조(피해아동ㆍ청소년 등에 대한 보호처분의 변경과 종결)** ① 검사는 제42조에 따른 보호처분에 대하여 그 내용의 변경 또는 종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보호처분이 피해를 받은 아동ㆍ청소년의 보호에 적절한지 여부에 대하여 심사한 후 보호처분의 변경 또는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 또는 종결하여야 한다.

**제44조(가해아동ㆍ청소년의 처리)** ①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이 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의 죄와 제7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 수사기관은 신속히 수사하고, 그 사건을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② 14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이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그 사건이 관할 법원 소년부로 송치된 경우 송치받은 법원 소년부 판사는 그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1. 「소년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보호처분
2.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에 선도보호를 위탁하는 보호처분

③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가해아동ㆍ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사실을 가해아동ㆍ청소년의 법정대리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판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가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소년법」 제3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처분을 하는 경우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을 하여야 한다.

⑤ 검사는 가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소년부 송치 여부를 검토한 결과 소년부 송치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가해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과정이나 상담과정을 마치게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교육과정이나 상담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보호시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의 청소년 지원시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9.>

1. 제46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ㆍ자립지원
3. 장기치료가 필요한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다른 기관과의 연계 및 위탁

**제46조(상담시설)** 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9.>

1. 제7조부터 제18조까지의 범죄 신고의 접수 및 상담
2.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과 병원 또는 관련 시설과의 연계 및 위탁
3.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 성매매 등과 관련한 조사ㆍ연구

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20. 5. 19.>

1.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6조의 범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상담
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아동ㆍ청소년을 병원이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로 데려다 주거나 일시 보호하는 업무

3.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신체적ㆍ정신적 안정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업무
4. 가해자에 대한 민사상ㆍ형사상 소송과 피해배상청구 등의 사법처리절차에 관하여 대한변호사협회ㆍ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는 업무
5.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가해아동ㆍ청소년과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교육ㆍ상담 프로그램의 운영
6. 아동ㆍ청소년 관련 성보호 전문가에 대한 교육
7.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홍보
8.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및 그 피해에 관한 조사ㆍ연구
9. 그 밖에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47조(아동ㆍ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아동ㆍ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이하 “성교육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해당 업무를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관련 사항, 성교육 전문기관에 두는 종사자 등 직원의 자격 및 설치기준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의2(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②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상담
2.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의 교육ㆍ상담 및 지원
3.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을 병원이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로 데려다 주거나 일시 보호하는 업무
4.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신체적ㆍ정신적 치료ㆍ안정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업무
5.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ㆍ상담프로그램 운영
6. 아동ㆍ청소년 성매매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7. 그 밖에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의 업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④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20. 5. 19.]

**제48조** 삭제 <2020. 5. 19.>

## 제4장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 등 <개정 2020. 5. 19.>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1. 26., 2020. 5. 19.>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 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공개기간(「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은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기산한다.<개정 2016. 5. 29., 2019. 11. 26.>

③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공개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신설 2019. 11. 26.>

1. 공개명령을 받은 자(이하 "공개대상자"라 한다)가 신상정보 공개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 이 경우 신상정보 공개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경합되어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공개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본다.
2. 제1호에 따른 기간 이전의 기간으로서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이어져 공개대상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
3. 제1호에 따른 기간 이후의 기간으로서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이어져 공개대상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

④ 제1항에 따라 공개하도록 제공되는 등록정보(이하 "공개정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11. 26., 2020. 2. 4., 2020. 12. 8.>

1. 성명
2. 나이
3. 주소 및 실제거주지(「도로명주소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로명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건물번호까지로 한다)
4.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5. 사진
6. 등록대상 성범죄 요지(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을 포함한다)
7. 성폭력범죄 전과사실(죄명 및 횟수)
8.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여부

⑤ 공개정보의 구체적인 형태와 내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9. 11. 26.>

⑥ 공개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실명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 11. 26.>

⑦ 실명인증, 공개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9. 11. 26.>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19.>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 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자(이하 "고지대상자"라 한다)는 공개명령을 선고받은 자로 본다.

③ 고지명령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1.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지대상자는 신상정보 최초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고지대상자는 출소 후 거주할 지역에 전입한 날부터 1개월 이내
3. 고지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변경정보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

④ 제1항에 따라 고지하여야 하는 고지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11. 26.>

1. 고지대상자가 이미 거주하고 있거나 전입하는 경우에는 제49조제4항의 공개정보. 다만, 제49조제4항제3호에 따른 주소 및 실제거주지는 상세주소를 포함한다.
2. 고지대상자가 전출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고지정보와 그 대상자의 전출 정보

⑤ 제4항의 고지정보는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ㆍ면ㆍ동의 아동ㆍ청소년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고지한다.<개정 2014. 1. 21., 2023. 4. 11.>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육아종합지원센터ㆍ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의 장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4. 읍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의 장(경계를 같이 하는 읍ㆍ면 또는 동을 포함한다)
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습소의 장,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자 및 제2조의2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장
6.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의 장
   가. 아동양육시설
   나. 아동일시보호시설
   다. 아동보호치료시설
   라. 공동생활가정
   마. 지역아동센터
7.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8.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장

**제51조(고지명령의 집행)** ① 고지명령의 집행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한다. <개정 2025. 10. 1.>

② 법원은 고지명령의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 등본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제50조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고지명령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초등록 및 변경등록 시 고지대상자, 고지기간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규정된 고지정보를 지체 없이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법무부장관은 고지대상자가 출소하는 경우 출소 1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1. 고지대상자의 출소 예정일
2. 고지대상자의 출소 후 거주지 상세주소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50조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우편ㆍ이동통신단말장치 등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송부하고, 읍ㆍ면 사무소 또는 동(경계를 같이 하는 읍ㆍ면 또는 동을 포함한다) 주민센터 게시판에 30일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고지명령을 집행한다.<개정 2014. 1. 21., 2023. 4. 11., 2025. 10. 1.>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육아종합지원센터ㆍ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의 장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4. 읍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의 장(경계를 같이 하는 읍ㆍ면 또는 동을 포함한다)
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습소의 장, 제2조제3호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자 및 제2조의2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장
6.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의 장
   가. 아동양육시설

나. 아동일시보호시설
다. 아동보호치료시설
라. 공동생활가정
마. 지역아동센터
7.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8.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장

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고지명령의 집행 이후 관할구역에 출생신고ㆍ입양신고ㆍ전입신고가 된 아동ㆍ청소년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와 관할구역에 설립ㆍ설치된 다음 각 호의 자로서 고지대상자의 고지정보를 송부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 제50조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우편ㆍ이동통신단말장치 등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송부한다.<개정 2014. 1. 21., 2023. 4. 11., 2025. 10. 1.>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육아종합지원센터ㆍ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의 장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4.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습소의 장, 제2조제3호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자 및 제2조의2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장
5.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의 장
가. 아동양육시설
나. 아동일시보호시설
다. 아동보호치료시설
라. 공동생활가정
마. 지역아동센터
6.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7.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장

⑥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고지명령의 집행에 관한 업무 중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송부 및 게시판 게시 업무를 고지대상자가 실제 거주하는 읍ㆍ면사무소의 장 또는 동 주민센터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23. 4. 11., 2025. 10. 1.>

⑦ 제6항에 따른 위임을 받은 읍ㆍ면사무소의 장 또는 동 주민센터의 장은 송부 및 게시판 게시 업무를 집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 4. 11.>

⑧ 삭제<2023. 4. 11.>

⑨ 고지명령의 집행 및 고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제51조의2** 삭제 <2023. 4. 11.>

**제52조(공개명령의 집행)** ① 공개명령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집행한다. <개정 2025. 10. 1.>

② 법원은 공개명령의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 등본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제49조제2항에 따른 공개기간 동안 공개명령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초등록 및 변경등록 시 공개대상자, 공개기간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규정된 공개정보를 지체 없이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 26., 2025. 10. 1.>

③ 공개명령의 집행ㆍ공개절차ㆍ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의2(고지정보 및 공개정보의 정정 등)** ① 누구든지 제51조에 따라 집행된 고지정보 또는 제52조에 따라 집행된 공개정보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그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정 요청을 받은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법무부장관은 해당 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고지대상자 또는 공개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직접 대면 등의 방법으로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고지정보 또는 공개정보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정보를 등록한 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송부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51조제4항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집행된 고지정보 나 제52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집행된 공개정보에 정정 사항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개정 2025. 10. 1.>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제1항에 따라 고지정보 또는 공개정보의 정정을 요청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5. 10. 1.>

⑤ 제1항에 따른 고지정보 또는 공개정보의 정정 요청의 방법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에 대한 통보, 조회 또는 정보 제공의 요청, 확인 요구 방법 및 절차, 제4항에 따른 처리 결과 통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4. 11.]

**제53조(계도 및 범죄정보의 공표)**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추세와 동향, 그 밖에 계도에 필요한 사항을 연 2회 이상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범죄 동향 분석 등을 위하여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제53조의2(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 실태조사)**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과 관련한 범죄 예방과 재발 방지 등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20. 12. 8.]

**제54조(비밀준수)** 등록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5조(공개정보의 악용금지)** ① 공개정보는 아동ㆍ청소년 등을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② 공개정보를 확인한 자는 공개정보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문ㆍ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
2. 공개정보의 수정 또는 삭제

③ 공개정보를 확인한 자는 공개정보를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목적 외에 다음 각 호와 관련된 목적으로 사용하여 공개대상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8. 1. 16.>

1. 고용(제56조제1항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고용은 제외한다)
2. 주택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3.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4. 1. 21., 2016. 1. 19., 2016. 5. 29., 2018. 1. 16., 2018. 3. 13., 2019. 11. 26., 2020. 6. 2., 2020. 12. 8., 2021. 1. 12., 2023. 4. 11., 2024. 9. 20., 2025. 4. 22., 2025. 10. 1.>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위탁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2의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청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학생상담지원시설 또는 위탁 교육시설

2의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

2의4.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외국교육기관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및 같은 조 제3호의 개인과외교습자(아동ㆍ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ㆍ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원ㆍ교습소 및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과외교습자를 말한다)
4.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
5.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6.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6의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7.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8.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및 같은 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9.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9의2. 성교육 전문기관 및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
10.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이 경우 경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1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아동ㆍ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체육시설
12.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같은 법 제2조의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간호법」 제2조의 간호사ㆍ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의료기사로 한정한다)
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영업을 하는 사업장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의 청소년게임제공업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복합유통게임제공업
14. 「경비업법」 제2조제1호의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 이 경우 경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1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가. 「민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한 단체

16.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1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사업장(청소년실을 갖춘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18. 가정을 방문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이 찾아오는 방식 등으로 아동ㆍ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사업장으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장(이하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이라 한다). 이 경우 아동ㆍ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1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의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20. 삭제<2025. 4. 22.>
2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 중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
22.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23.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24.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
2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6.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신설 2018. 1. 16.>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려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로부터 취업제한 명령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 등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신설 2018. 1. 16.>

④ 제1항 각 호(제10호 및 제18호는 제외한다)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설치 또는 설립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를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자가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6. 5. 29., 2018. 1. 16., 2025. 4. 22.>

⑤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자등이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6. 5. 29., 2018. 1. 16.>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신설 2016. 5. 29., 2018. 1. 16.>

⑦ 제1항제7호의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항 제22호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이 제5항에 따라 취업자등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경우, 그 취업자등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다른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이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9. 11. 26., 2023. 4. 11.>

⑧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취업자등에 대하여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이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신설 2023. 4. 11.>

1. 제1항제1호의 유치원
2. 제1항제2호의 학교 및 위탁 교육기관
3. 제1항제2호의2의 학생상담지원시설 및 위탁 교육시설
4. 제1항제19호의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5. 제1항제21호의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

⑨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의 요청 절차ㆍ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6. 5. 29., 2018. 1. 16., 2019. 11. 26., 2023. 4. 11.>

[제목개정 2018. 1. 16.]

[2018. 1. 16. 법률 제15352호에 의하여 2013헌마585(2016. 3. 31.), 2015헌마98(2016. 4. 28.), 2015헌마359(2016. 7. 28.), 2015헌마914(2016. 7. 28.), 2014헌마709(2016. 10. 27.) 등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ㆍ확인)**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1., 2025. 4. 22., 2025. 10. 1.>

1. 교육부장관: 다음 각 목의 기관
   가. 제56조제1항제2호의 기관 중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나. 제56조제1항제2호의4의 외국교육기관 중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다. 제56조제1항제5호의 청소년활동시설 중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한정한다)
2. 삭제<2025. 4. 22.>
3. 성평등가족부장관: 다음 각 목의 기관
   가. 제56조제1항제4호의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
   나. 제56조제1항제6호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다. 제56조제1항제15호의 청소년단체 중 성평등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한 법인 및 단체

라. 제56조제1항제18호의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

4. 삭제<2023. 4. 11.>

5. 경찰청장: 제56조제1항제14호의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으로서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점검ㆍ확인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 5. 19., 2020. 12. 8., 2023. 4. 11., 2025. 4. 22.>

1. 제56조제1항제5호의 청소년활동시설(다만,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은 제외한다)

2. 제56조제1항제6호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복지시설

2의2. 제56조제1항제6호의2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3. 제56조제1항제7호의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4. 제56조제1항제8호의 아동복지시설,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및 다함께돌봄센터

5. 제56조제1항제9호의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5의2. 제56조제1항제9호의2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 및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

6. 제56조제1항제10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7. 제56조제1항제11호의 체육시설

8. 제56조제1항제12호의 의료기관

9. 제56조제1항제13호 각 목의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하는 사업장

10. 제56조제1항제15호의 청소년단체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한 법인 및 단체

11.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12. 제56조제1항제17호의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사업장(청소년실을 갖춘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13. 삭제<2023. 4. 11.>

14. 제56조제1항제22호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15. 제56조제1항제23호의 서비스제공기관

16. 제56조제1항제24호의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

17. 제56조제1항제25호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④ 교육감은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 4. 22.>

1. 제56조제1항제1호의 유치원
2. 제56조제1항제2호의 기관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3. 제56조제1항제2호의2의 학생상담지원시설 및 위탁 교육시설
4. 제56조제1항제2호의3의 국제학교

4의2. 제56조제1항제2호의4의 외국교육기관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5. 제56조제1항제3호의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5의2. 제56조제1항제5호의 청소년활동시설 중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 (다만, 「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제외한다)

6. 제56조제1항제19호의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7. 제56조제1항제21호의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
8. 제56조제1항제26호의 대안교육기관

⑤ 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검ㆍ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 또는 관련 감독기관에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성평등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검ㆍ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전문개정 2020. 2. 18.]

**제58조(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① 제57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제56조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 중에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있으면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② 제57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제56조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 중에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 중인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에게 운영 중인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폐쇄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0. 2. 18.>

③ 제57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이 제2항의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에게 해당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폐쇄, 등록ㆍ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0. 2. 18.>

④ 제3항에 따른 폐쇄, 등록ㆍ허가 등의 취소요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9조(포상금)**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8조, 제8조의2, 제1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2020. 6. 2.,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 방법과 절차 및 구체적인 지급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권한의 위임)** ① 제57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교육부장관은 제외한다)은 제67조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2020. 5. 19.>

② 제67조에 따른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교육감ㆍ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20. 2. 18.>

③ 제57조, 제58조 및 제67조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신설 2019. 11. 26.>

④ 제57조, 제58조 및 제67조에 따른 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9. 11. 26., 2020. 12. 22.>

## 제5장 보호관찰 <개정 2020. 5. 19.>

**제61조(보호관찰)** ① 검사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형의 집행이 종료한 때부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명령(이하 “ 보호관찰명령 ”이라 한다)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②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보호관찰명령의 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이 금고 이상의 선고형에 해당하고 보호관찰명령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보호관찰명령을 병과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보호관찰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피고인의 주거지 또는 소속 법원(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범죄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심리상태, 재범의 위험성 등 피고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조사

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서면으로 해당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보호관찰 기간은 보호관찰을 받을 자(이하 "보호관찰 대상자"라 한다)의 형의 집행이 종료한 날부터 기산하되, 보호관찰 대상자가 가석방된 경우에는 가석방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62조(보호관찰 대상자의 보호관찰 기간 연장 등)** ① 보호관찰 대상자가 보호관찰 기간 중에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증대한 경우에 법원은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제61조제3항에 따른 5년을 초과하여 보호관찰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준수사항은 재판장이 재판정에서 설명하고 서면으로도 알려 주어야 한다.

**제63조(보호관찰 대상자의 신고 의무)** ① 보호관찰 대상자는 출소 후의 거주 예정지, 근무 예정지, 교우(交友) 관계, 그 밖에 보호관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출소 전에 미리 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ㆍ군교도소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호관찰 대상자는 출소 후 10일 이내에 거주지, 직업 등 보호관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보호관찰관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64조(보호관찰의 종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심사위원회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관찰성적이 양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관찰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보호관찰의 종료를 결정할 수 있다.

## 제6장 벌칙 <개정 2020. 5. 19.>

**제6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3. 23., 2024. 10. 16.>

1. 제25조의8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2. 제54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한 자
3. 제5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4. 정당한 권한 없이 등록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한 자

② 제42조에 따른 보호처분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21조제2항에 따라 징역형 이상의 실형(치료감호와 징역형 이상의 실형이 병과된 경우를 포함한다)과 이수명령이 병과된 자가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등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또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개정 2025. 4. 22.>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자 등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한 자
2. 제55조제3항을 위반한 자

⑤ 제21조제2항에 따라 벌금형과 이수명령이 병과된 자가 보호관찰소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6조(벌칙)** 보호관찰 대상자가 제62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은 이후 재차 정당한 이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7조(과태료)** ① 삭제 <2020. 6. 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8. 1. 16., 2025. 4. 22.>

1.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상담ㆍ치료프로그램의 제공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상담시설 또는 의료기관의 장
2. 제58조제1항에 따른 해임요구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

③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이 제56조제5항을 위반하여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8. 1. 16.>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25. 4. 22.>

1. 제3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직무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57조제5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7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20. 2. 18., 2020. 6. 9.>

**부칙** <제11572호,2012. 12.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소시효 진행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유죄판결, 형의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등록정보 공개명령 및 집행에 관한 적용례) ①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7801호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또는 법률 제8634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을 위반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공개명령에 관하여는 제4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② 제49조제3항 및 제52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7801호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청소년위원회가 등록대상자로 결정한 자(예비등록대상자로 통보한 자를 포함한다) 및 법률 제8634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제37조에 따라 열람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개정 2020. 12. 8.>

③ 제2항의 경우 검사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요청을 받아 같은 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제1심판결을 한 법원에 공개명령을 청구한다. <개정 2025. 10. 1.>

④ 검사는 제3항에 따른 공개명령의 청구를 할 때에는 청구 대상자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의 서식 등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 10. 1.>

⑤ 법원은 제3항의 청구에 대하여 공개명령을 결정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결정의 확정일자와 결정문 등본을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⑥ 법무부장관은 등록 후 지체 없이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공개대상자, 공개기간 및 공개정보를 송부하여야 하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5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개명령을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⑦ 삭제 <2020. 12. 8.>

⑧ 제2항에 따라 공개명령된 자의 신상정보가 종전의 법률에 따라 열람에 제공되고 있는 때에는 공개기간을 그 잔여 열람기간으로 한다.

⑨ 법률 제8634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제32조, 제35조 및 제37조는 같은 법의 시행일인 2008년 2월 4일 이후 최초로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한다.

⑩ 법률 제7801호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0조에 따른 신상공개,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신상정보 등록에 관하여는 같은 법 시행 당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법률 제7801호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0조제3항 및 제5항의 "국

가청소년위원회 ”는 “ 「청소년 보호법」 제36조의 청소년보호위원회 ”로 본다.

**제6조**(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5항 및 제5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고지명령을 받은 자[법률 제7801호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청소년위원회가 등록대상자로 결정한 자(예비등록대상자로 통보한 자를 포함한다) 및 법률 제8634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제37조에 따라 열람명령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이 법 시행 후 고지명령 집행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아동ㆍ청소년대상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한 취업제한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등록정보의 고지 등에 관한 특례) ① 제50조제1항, 제51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 사이에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제11조제5항의 개정규정의 죄는 제외한다)를 범하고 유죄판결(벌금형은 제외한다)이 확정되어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개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공개기간이 종료된 자는 제외한다.

② 이 경우 검사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요청을 받아 제1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제1심판결을 한 법원에 고지명령을 청구한다. <개정 2025. 10. 1.>

③ 검사는 제2항에 따른 고지명령의 청구를 할 때에는 청구 대상자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의 서식 등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 10. 1.>

④ 법원은 제2항의 청구에 대하여 고지명령을 결정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결정의 확정일자와 결정문 등본을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 법무부장관은 등록 후 지체 없이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고지대상자, 고지기간 및 고지정보를 송부하여야 하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5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지명령을 집행하되, 제1항에 따른 공개가 종료되는 날 고지명령의 집행을 함께 종료한다. <개정 2025. 10. 1.>

**제9조**(피해자의 의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법률 제11162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제11조 및 제12조의 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를 적용한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제1항제3호바목 중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 및 제17조의 죄 ”를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17조제1항의 죄 ”로 한다.

② 군사법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6조의2제2호 중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를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7조

제1항 ” 으로 한다.

③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0호 중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같은 조 제3항의 경우는 제외한다) ” 를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제14조제3항의 경우는 제외한다) ” 로 한다.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제3호바목 중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 및 제17조 ” 를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17조제1항 ” 으로 한다.

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2호 중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1조 ” 를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4조 ” 로 한다.

⑥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1항제1호 중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 를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 로 한다.

⑦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 를 각각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 로 한다.

⑧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6항 중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 ” 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1조제3항 ” 으로 한다.

⑨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5조의2제2호 중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 를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7조제1항 ” 으로 한다.

**부칙** <제11574호,2012. 12. 18.>(형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다목 중 “ 제297조부터 제301조까지 ” 를 “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 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11690호,2013. 3. 23.>(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30>까지 생략

<53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제1호, 제47조제2항 및 제54조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제5호, 제47조제1항 및 제54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11572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제56조제1항제3호, 제57조제1항제1호, 제60조제2항 및 제67조제5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11572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제57조제1항제5호, 제60조제1항 및 제67조제5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53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329호,2014. 1. 21.>(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제12호, 제50조제5항, 제51조제4항ㆍ제5항 및 제56조제1항제5호 중 "「청소년활동진흥법」"을 각각 "「청소년활동 진흥법」"으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12361호,2014. 1. 28.>(아동복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라목 중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 및 제4호의 죄"를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의 죄"로 한다.

**부칙** <제13805호,2016. 1. 19.>(주택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4% 까지 생략

4^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제10호 중 “ 「주택법」 제2조제2호 ”를 “ 「주택법」 제2조제3호 ”로 한다.

4& 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4236호,2016. 5.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범여부 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집행을 마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등록정보의 공개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아동ㆍ청소년대상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한 취업제한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5352호,2018. 1.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강도강간미수범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가 된 강도강간미수범에 대한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등록정보의 공개ㆍ고지 및 제56조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은 이 법 시행 후 강도강간미수범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종전의 규정에 따라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의 취업제한 기간에 관한 특례) ① 법률 제7801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8조제1항, 법률 제8634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제42조제1항, 법률 제9765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제44조제1항, 법률 제10260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4조제1항, 법률 제11287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4조제1항 또는 법률 제11572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률 전부개정법률 제56조제1항, 법률 제14236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6조제1항(이하 “ 종전의 규정 ”이라 한다)에 따라 취업제한을 받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 취업제한대상자 ”라 한다)의 취업제한 기간은 종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법률 제7801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 등을 받는 사람

가. 3년 초과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

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3년

다.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

2. 법률 제8634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 등을 받는 사람

가. 3년 초과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

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3년

다.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

3. 법률 제9765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제44조제1항, 법률 제10260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4조제1항, 법률 제11287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4조제1항, 법률 제11572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제56조제1항, 법률 제14236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 등을 받는 사람

가. 3년 초과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5년

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3년

다.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

② 이 법 시행 후 취업제한대상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1심판결을 한 법원에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이유로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의 변경 또는 취업제한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취업제한대상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취업제한대상자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신청의 원인이 되는 사실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을 수 있다.

⑤ 법원은 제2항의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고지하여야 한다.

⑥ 법원은 제2항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취업제한 기간을 새로이 정하거나 취업제한을 면제하는 결정을 고지하고, 검사에게 결정문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⑦ 검사, 취업제한대상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5항 또는 제6항의 결정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경우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⑧ 항고할 때에는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항고장을 제출받은 법원은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기록을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⑨ 항고법원은 항고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항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⑩ 항고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원결정을 파기하고 스스로 결정을 하거나 다른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⑪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때에만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
⑫ 재항고의 제기기간은 항고기각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로 한다.
⑬ 항고와 재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⑭ 법원은 제6항의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결정의 확정일자를 결정문 등본에 첨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제5조**(헌법재판소 위헌결정 후 이 법 시행일 전까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의 취업제한 기간 등에 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부칙 제4조제1항제3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1. 2016년 3월 3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까지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 제5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의료기관
2. 2016년 4월 28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까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
3. 2016년 7월 28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까지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학원 등
4. 2016년 10월 27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까지 성인대상 성범죄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의 범죄(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6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ㆍ확인에 관한 특례) 제5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부칙 제4조 및 부칙 제5조에 따라 취업제한 등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15452호,2018. 3. 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아동ㆍ청소년대상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한 취업제한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6248호,2019. 1. 15.>(아동복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②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제16275호,2019. 1.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소시효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16622호,2019. 11.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취업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1항제2호의3, 제6호의2 및 제2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취업제한을 적용받거나 취업제한 명령이 확정되는 사람 및 이 법 시행 당시 취업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게 적용한다.

**부칙** <제16923호,2020. 2. 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법률 제16622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단서,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49조제4항제8호 및 제61조제1항 단서 중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생략

**부칙** <제17007호,2020. 2. 18.>(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이 법에 따른 시행일 3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 생략

**부칙** <제17282호,2020. 5.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소시효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1항제1호 및 제5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7007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일부를"로,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를 "일부를 "로 하고 "로 한다.

**부칙** <제17338호,2020. 6. 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52호,2020. 6. 9.>(전기통신사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및 제1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7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 제1항부터 "를 " 제2항부터 "로 한다.

② 생략

**제6조**(「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 삭제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종전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같은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7574호,2020. 12. 8.>(도로명주소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3호 중 "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5호의 도로명 및 같은 조 제7호의 건물번호 "를 "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로명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건물번호 "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제17641호,2020. 12. 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 및 법률 제11572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2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89호,2020. 12. 22.>(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3# 까지 생략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4항 중 “ 지방경찰청장 ”을 “ 시ㆍ도경찰청장 ”으로 한다.
3% 부터 <5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7893호,2021. 1. 12.>(지방자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3( 까지 생략
4)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제20호 중 “ 「지방자치법」 제144조 ”를 “ 「지방자치법」 제161조 ”로 한다.
4! 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 <제17972호,2021. 3. 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소시효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19337호,2023. 4.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정보의 고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5항 및 제51조제4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고지명령을 선고받고 이 법 시행 이후 고지명령이 집행되거나 이 법 시행 당시 고지명령이 집행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1항제6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제12호, 제23호부터 제25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고 이 법 시행 이후 취업이 제한되거나 이 법 시행 당시 취업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부칙** <제20416호,2024. 3. 26.>(만 나이로의 통일을 위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45호,2024. 9. 20.>(간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제12호 중 "같은 법 제2조의 의료인, 같은 법 제80조의 간호조무사"를 "같은 법 제2조의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간호법」 제2조의 간호사ㆍ간호조무사"로 한다.

⑦부터 ⑭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20462호,2024. 10. 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가목, 같은 조 제3호ㆍ제6호 및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29호,2025. 4. 22.>(건강가정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제24호 및 제57조제3항제16호 중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각각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로 한다.

⑧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20931호,2025. 4.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 제25조의2제1항, 제34조제2항제16호, 제35조제1항, 제56조제1항ㆍ제4항, 제5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67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6조, 제26조의2 및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설명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취업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제5조**(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① 제6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폐쇄요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67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932호,2025. 4. 22.>(아이돌봄 지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부칙** <제21065호,2025. 10. 1.>(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18>까지 생략

<419>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21조제8항, 제35조제2항, 제3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의2제1항, 제51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52조제1항ㆍ제2항, 제52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3조제1항ㆍ제2항, 제53조의2제1항,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6항 및 제59조제1항 중 “여성가족부

장관 ” 을 각각 “ 성평등가족부장관 ” 으로 한다.

제47조의2제4항, 제5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 및 제53조의2제2항 중 “ 여성가족부령 ” 을 각각 “ 성평등가족부령 ” 으로 한다.

법률 제20931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6조제1항제15호가목ㆍ나목, 같은 항 제18호 전단, 제57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다목 중 “ 여성가족부장관 ” 을 각각 “ 성평등가족부장관 ” 으로 한다.

제57조제2항 중 “ 여성가족부 ” 를 “ 성평등가족부 ” 로 한다.

법률 제11572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3항ㆍ제6항 및 제8조제2항ㆍ제5항 중 “ 여성가족부장관 ” 을 각각 “ 성평등가족부장관 ” 으로 한다.

법률 제11572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4항 후단 및 제8조제3항 후단 중 “ 여성가족부령 ” 을 각각 “ 성평등가족부령 ” 으로 한다.

법률 제15352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4항 중 “ 여성가족부장관 ” 을 “ 성평등가족부장관 ” 으로 한다.

<420>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066호,2025. 10. 1.>(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2@ 까지 생략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제1항 전단 중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을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로,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를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 로 한다.

2$ 부터4#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108호,2025. 11. 11.>(아동복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1호 중 “ 아동권리보장원 ” 을 “ 국가아동권리보장원 ” 으로 한다.
⑤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제21274호,2025. 12.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소시효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10. 23.] [대통령령 제35815호, 2025. 10. 10., 일부개정]

성평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일반사항) 02 - 2100 - 6405
성평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취업제한제도, 신고포상금) 02 - 2100 - 6416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20. 12. 29.>

## 제2장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 수사 절차와 신고ㆍ응급조치 등

**제3조** 삭제 <2020. 12. 29.>

**제4조** 삭제 <2020. 12. 29.>

**제5조(수사절차에서의 보호 조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수사기관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수사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 11. 17., 2020. 12. 29.>

1.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고지
2. 피해자에 대한 조사의 최소화
3. 피해자와 가해자의 대질신문 최소화
4. 긴급하지 않은 수사에서 피해자의 학습권 보장
5.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성범죄 수사 전문교육을 받은 인력이 피해자를 전담하여 조사
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ㆍ제12조ㆍ제18조ㆍ제27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 또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17조에 따라 운영되는 피해자 지원기관 등과의 연락 및 협조

**제5조의2(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준수사항)** 사법경찰관리는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신분비공개수사(이하 "신분비공개수사"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분위장수사(이하 "신분위장수사"라 한다)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수사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본래 범의(犯意)를 가지지 않은 자에게 범의를 유발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등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수사할 것
2. 피해아동ㆍ청소년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3. 법 제25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피해아동ㆍ청소년이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성폭력피해자에 관한 자료가 유포되지 않도록 할 것

[본조신설 2021. 9. 24.]

**제5조의3(신분비공개수사의 방법)**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신분 비공개는 경찰관임을 밝히지 않거나 부인(법 제25조의2제2항제1호에 이르지 않는 행위로서 경찰관 외의 신분을 고지하는 방식을 포함한다)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접근은 대화의 구성원으로서 관찰하는 등 대화에 참여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구입하거나 무상으로 제공받는 등의 방법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 9. 24.]

**제5조의4(신분비공개수사의 승인 절차 및 방법 등)** ① 신분비공개수사를 하려는 사법경찰관리는 법 제25조의3에 따라 바로 위 상급 경찰관서의 수사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면 신분비공개수사의 필요성ㆍ대상ㆍ범위ㆍ기간ㆍ장소 및 방법 등을 소명해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리는 신분비공개수사를 종료한 때에는 종료 일시 및 종료 사유 등을 바로 위 상급 경찰관서의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9. 24.]

**제5조의5(신분비공개수사에 대한 통제)** ① 법 제25조의7제1항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보고사항은 종료된 신분비공개수사의 승인요청 경찰관서, 승인기간, 종료일시, 종료사유, 수사대상, 수사방법, 사건요지 및 필요성으로 한다. <개정 2025. 10. 10.>

② 법 제25조의7제2항에 따른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보고사항은 종료된 신분비공개수사의 승인요청 경찰관서, 승인기간, 종료일시, 종료사유 및 승인건수로 한다.<개정 2025. 10. 1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는 전자적 파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전송하거나, 그 내용을 기록ㆍ보관ㆍ출력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저장매체에 기록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9. 24.]

**제6조(신고의무자 교육)**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에 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대상 및 교육시간 등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법 제34조제2항 각 호의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제7조(그 밖의 상담 및 치료의 대상)**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피해아동ㆍ청소년과 같은 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ㆍ청소년
2. 피해아동ㆍ청소년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아동ㆍ청소년으로서 정신적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
3. 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람 외에 피해아동ㆍ청소년과 함께 거주하는 가족으로서 상담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

## 제3장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ㆍ지원 등 <개정 2020. 11. 17.>

**제8조** 삭제 <2020. 11. 17.>

**제9조** 삭제 <2020. 11. 17.>

**제10조** 삭제 <2020. 11. 17.>

**제11조(수강명령 위탁 대상기관 등 추천)**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가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수강명령을 집행하는 보호관찰관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탁하려는 경우 그 대상기관 또는 단체를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7., 2025. 10. 1.>

**제12조(가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교육과정 등의 이수명령)** ① 검사는 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가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교육과정이나 상담과정(이하 “ 교육과정등 ”이라 한다)의 이수명령을 하는 경우 100시간 이내에서 교육 또는 상담시간을 정해야 한다. <개정 2020. 11. 17.>

② 검사는 교육과정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2025. 10. 1.>

1.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보호관찰소나 보호관찰지소
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 그 밖의 소년 관련 시설
3.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추천하는 시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제3호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추천한 시설에서 교육과정등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시설에 교육과정등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제13조(교육과정등의 결과 통지)** ① 제12조제2항에 따라 교육과정등을 집행한 자(성평등가족부장관이 추천한 시설에서 집행한 경우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을 말한다)는 교육과정등의 이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② 검사는 교육과정등의 이수명령을 받은 아동ㆍ청소년이 이수 시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하는 등 재범예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교육과정등의 이수명령을 취소하고,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수 있다.

**제14조(보호시설 등의 변호사 선임권 안내 등)** 법 제45조에 따른 보호시설 및 법 제46조에 따른 상담시설은 피해아동ㆍ청소년 등에게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변호사 선임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4호, 제11조제5호, 제13조제1항제4호 또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법률구조에 대하여 안내하고 지원하는 등 형사절차에서 피해아동ㆍ청소년 등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0. 11. 17., 2022. 8. 9.>

**제14조의2(가해아동ㆍ청소년과 법정대리인에 대한 교육ㆍ상담 지원)**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46조제2항제5호에 따라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가해아동ㆍ청소년과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교육ㆍ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20. 11. 17.]

**제15조(아동ㆍ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의 위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이하 "성교육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하는 단체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또는 청소년문화의집을 설치ㆍ운영하는 단체
3.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4. 성교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단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단체에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신설 2021. 1. 5.>

1. 제1항제3호의 단체: 청소년육성,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 관련 업무에 대한 사업실적
2. 제1항제4호의 단체: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교육 실적

③ 성교육 전문기관에 두는 종사자 등 직원의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21. 1. 5.>

④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 기준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21. 1. 5.>

**제16조(운영실적의 제출)** ①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전문단체의 장은 매 반기(半期) 종료 후 다음 달 10일까지 성교육 전문기관의 반기별 운영실적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② 제1항에 따라 반기별 운영실적을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 반기 종료 후 다음 달 20일까지 그 운영실적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매 반기 종료 후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운영실적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30., 2025. 10. 1.>

**제17조(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의 업무)** 법 제47조의2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진로 상담 및 지원
2. 진학 상담 및 지원
3. 직업훈련 상담 및 지원

[전문개정 2020. 11. 17.]

**제18조** 삭제 <2020. 11. 17.>

## 제4장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 등

**제19조(공개정보 전용 웹사이트 운영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49조제1항 및 제52조제1항에 따라 공개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공개정보(이하 "공개정보"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는 전용 웹사이트(이하 "전용 웹사이트"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전용 웹사이트에 등록된 공개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개정보의 단계적 접근, 공개정보 이용자에 의한 입력 및 출력 금지, 보안 등 기술적 조치를 하고, 이를 상시 감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제20조(공개정보의 내용 등)** ① 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공개정보의 구체적인 형태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6. 8., 2020. 8. 5., 2021. 6. 8.>

1. 성명: 한글과 한자(한자 성명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표기하되, 외국인인 경우 한글과 영문으로 표기한다.
2. 나이: 주민등록표상의 나이. 다만, 외국인은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의 나이로 표기한다.
3. 주소 및 실제 거주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표기하되,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3호의 도로명 및 같은 조 제5호의 건물번호까지 표기한다.

가. 내국인 및 재외국민의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신고한 주소와 실제 거주지 주소
나.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국내 체류지와 실제 거주지 주소
다.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신고한 국내거소와 실제 거주지 주소

4. 신체정보: 키와 몸무게를 표기하되, 키는 센티미터로, 몸무게는 킬로그램으로 각각 표기한다.
5. 사진: 등록된 사진을 게재한다.
6. 등록대상 성범죄의 요지: 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 및 해당 사건의 범죄사실 요지를 표기하되, 피해자를 알 수 있는 내용은 표기하지 아니한다.
7. 성폭력범죄 전과사실: 등록대상 사건의 확정 판결일 이전에 유죄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 죄명과 횟수를 표기한다.
8.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여부: 전자장치 부착 여부와 그 부착 기간을 표기한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공개정보를 송부받으면 제1항의 공개정보를 내용으로 하는 성범죄자 공개정보 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제2항에 따른 성범죄자 공개정보 원부의 서식과 작성 방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제21조(실명인증 및 열람정보 관리)** ① 법 제49조제6항에 따라 전용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공개정보를 열람하려는 사람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등의 방법으로 실명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9. 26.>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개정보를 열람한 사람의 신상정보와 접속정보를 일정 기간 동안 보관ㆍ관리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제22조(게시판 게시 업무의 위임)**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51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게시판 게시 업무를 고지대상자가 실제 거주하는 읍ㆍ면사무소의 장 또는 동 주민센터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 9. 26., 2025. 10. 1.>

**제22조의2(고지정보 및 공개정보의 정정 요청 등)** ① 법 제51조에 따라 집행된 고지정보 또는 법 제52조에 따라 집행된 공개정보의 정정을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이나 등기우편ㆍ팩스 등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6.>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지정보 또는 공개정보의 정정을 요청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3. 9. 26., 2025. 10. 1.>

③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고지정보 또는 공개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 확인을 요구받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23. 9. 26.>

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송부받은 결과를 확인한 결과 고지정보 또는 공개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정정하고, 그 변경된 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성범죄자 등록정보 원부(이하 "등록정보원부"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23. 9. 26.>

⑤ 법무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변경된 정보를 등록정보원부에 등록한 후 7일 이내에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⑥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송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4항에 따라 변경된 정보를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고지정보 또는 공개정보의 정정을 요청한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지정보 또는 공개정보의 정정을 요청한 자가 등기우편, 팩스 등 별도의 방법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통지할 수 있다.<개정 2023. 9. 26., 2025. 10. 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지정보 및 공개정보의 정정 요청, 정정 요청 처리 결과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3. 9. 26., 2025. 10. 1.>

[본조신설 2018. 7. 16.]

[제목개정 2023. 9. 26.]

**제23조(자료제출의 요청)**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53조에 따라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動向), 그 밖에 계도(啓導)에 필요한 사항을 공표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제24조** 삭제 <2025. 10. 10.>

**제25조(성범죄의 경력 조회)** ① 법 제56조제4항, 제5항 및 제8항에 따라 성범죄의 경력조회를 요청하려는 다음 각 호의 자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4. 20., 2016. 11. 29., 2018. 7. 16., 2021. 9. 24., 2023. 9. 26., 2025. 10. 10.>

1.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
2. 법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의 장 또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자
3.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

② 교육감, 교육장 또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 취업자등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취업자등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 4. 20., 2016. 11. 29., 2023. 9. 26.>

③ 제1항에 따라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자 또는 취업자등이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운영,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이 제한되는 사람(이하 "취업제한대상자"라 한다)인지 여부만을 확인하여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회신할 수 있다.<개정 2015. 4. 20., 2016. 11. 29., 2024. 10. 22.>

④ 제1항에 따른 성범죄의 경력 조회, 제2항에 따른 동의서 및 제3항에 따른 회신의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제26조(자료제출의 요구)** 법 제57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20. 12. 29.>

1. 자료제출 요구의 사유
2. 자료제출의 일시
3. 제출하여야 할 자료의 내용

**제2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ㆍ확인 결과 공개)** ① 법 제57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점검ㆍ확인(이하 "점검ㆍ확인"이라 한다) 결과를 그 점검ㆍ확인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개기간은 3개월 이상 12개월 이하로 한다. <개정 2020. 12. 29., 2024. 10. 22., 2025. 10. 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각 기관의 점검ㆍ확인 결과를 종합하여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그 현황을 공개할 수 있다.<신설 2024. 10. 22., 2025. 10. 1.>

③ 법 제57조제6항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점검ㆍ확인 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1. 22., 2016. 11. 29., 2020. 12. 29., 2024. 10. 22.>

1.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총 수, 점검ㆍ확인 기간 및 점검ㆍ확인 기관ㆍ인원 수에 대한 점검ㆍ확인 현황
2. 취업제한대상자가 운영,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을 하고 있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수 및 해당 기관별 취업제한대상자의 수
3.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취업제한대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 또는 조치한 내용
4. 취업제한대상자가 운영,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을 하고 있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명칭 및 주소[주소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로 한다]

**제28조(해임요구 및 폐쇄요구 등)** ① 법 제57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법 제58조에 따라 취업제한대상자의 해임을 요구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폐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사실, 요구내용 및 이행시한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6. 11. 29., 2020. 12. 29.>

② 법 제57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취업 중인 취업제한대상자의 해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취업제한대상자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개정 2020. 12. 29.>

③ 법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임요구 또는 폐쇄요구를 받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과 제2항에 따라 해임요구를 통지받은 취업제한대상자는 해임ㆍ폐쇄 요구 또는 해임요구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 제57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16. 11. 29., 2020. 12. 29.>

④ 법 제57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2주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과 취업제한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6. 11. 29., 2020. 12. 29.>

**제29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① 법 제59조에 따른 신고(고소ㆍ고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포상금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신고된 사람이 해당 범죄로 기소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경우에 지급한다. <개정 2024. 10. 2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24. 10. 22.>

1.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
2.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 범죄의 실행과 관련된 사람이 신고하는 등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범죄의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4.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신고한 경우

**제30조(포상금의 지급 절차)** ① 제29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포상금 지급 사유의 발생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포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 지급조서 및 지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제31조(포상금의 지급액 등)** ① 제29조에 따른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100만원 이내로 하되, 그 세부적인 지급액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 10. 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해당 범죄의 신고와 관련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보상금 또는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지급받은 금액이 제1항에 따른 포상금보다 큰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지급받은 금액이 제1항에 따른 포상금보다 적은 경우: 지급받은 금액을 빼고 지급한다.

**제32조(포상금의 환수)**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9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2., 2025. 10.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제29조제2항 각 호의 사유가 확인된 경우
3. 제3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제31조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감액분만 환수한다)
4. 그 밖에 착오 등으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제33조(권한의 위임)** 경찰청장은 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법 제56조제1항제14호에 따른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7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점검ㆍ확인
   나. 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
2. 법 제58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해임 요구
   나.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폐쇄 요구
   다.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폐쇄 요구 또는 등록ㆍ허가 등의 취소 요구
   라. 제2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ㆍ처리 및 통지
3. 법 제6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전문개정 2023. 9. 26.]

**제34조(보호관찰명령의 청구 및 집행지휘)** ① 검사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할 때에는 그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보호관찰명령 청구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및 죄명
2.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
3. 적용 법조

② 검사가 공소 제기와 동시에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할 경우에는 공소장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추가하여 적는 것으로 보호관찰명령 청구서를 대신할 수 있다.

③ 검사는 보호관찰명령의 판결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보호관찰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판결문 등본을 첨부하여 보호관찰명령 집행을 지휘하는 서면을 보내야 한다.

**제35조(조사)** ① 법원은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보호관찰소(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조사를 요청할 때에는 피고인의 인적사항 및 범죄사실의 요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참고자료를 함께 보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요청을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ㆍ군교도소의 장, 경찰서장에게 조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6조(보호관찰 기간 연장 신청)**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보호관찰명령을 받은 사람(이하 “ 보호관찰 대상자 ”라 한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및 직업
2. 신청의 취지
3. 보호관찰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사유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관찰 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제3항을 준용한다.<개정 2020. 8. 5.>

**제37조(보호관찰 대상자의 신고 의무)** ① 법 제63조제1항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소 및 연락처
2. 직업 관계
3. 가족 관계

② 법 제63조제2항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거
2. 직업
3. 생활계획
4.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

③ 보호관찰 대상자로부터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ㆍ군교도소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신고서 사본을 보호관찰 대상자가 출소하기 5일 전까지 보호관찰 대상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8조(보호관찰의 종료)** ① 법 제64조에 따른 보호관찰 심사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라 보호관찰의 종료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관찰 종료의 신청, 심사 및 결정에 관하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 부착명령의 임시해제 ”는 “ 보호관찰의 종료 ”로 본다.<개정 2020. 8. 5., 2022. 8. 9.>

**제3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법 제57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제33조에 따라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 범죄경력정보 ”라 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조에서 “ 주민등록번호등 ”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29., 2020. 11. 17., 2020. 12. 29.>

1. 법 제5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검ㆍ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57조제6항에 따른 점검ㆍ확인 결과 공개에 관한 사무
3. 법 제58조에 따른 해임 요구,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폐쇄 요구 및 등록ㆍ허가 등의 취소 요구에 관한 사무
4. 법 제6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주민등록번호등으로 한정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범죄경력정보 및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7. 3. 27.>

1. 법 제5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고지명령 집행을 위한 송부에 관한 사무
2.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공개명령 집행을 위한 송부에 관한 사무
3.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의 신고에 관한 사무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제22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의 게시판 게시업무를 위임받은 읍ㆍ면사무소의 장 또는 동 주민센터의 장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범죄경력정보 및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20. 12. 29., 2023. 9. 26., 2025. 10. 1.>

1. 법 제51조에 따른 고지명령의 집행
2. 법 제52조에 따른 공개명령의 집행
3. 법 제59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4. 제13조제1항에 따른 가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교육과정등의 이수 결과보고서 통지(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추천한 시설에서 집행한 경우만 해당한다)
5. 제19조에 따른 공개정보 전용 웹사이트의 운영ㆍ관리

④ 삭제<2020. 12. 29.>

⑤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삭제<2020. 11. 17.>
2. 법 제41조에 따른 피해아동ㆍ청소년 등을 위한 조치 청구에 관한 사무
3.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의 변경 및 종결 청구에 관한 사무
4. 법 제44조제5항에 따른 가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교육과정등 이수명령 발령에 관한 사무
5. 삭제<2020. 11. 17.>
6. 삭제<2020. 11. 17.>
7. 제13조제1항에 따른 가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교육과정등의 이수 결과보고서 통지 수리에 관한 사무
8. 제13조제2항에 따른 가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이수명령의 취소에 관한 사무

⑥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설치 또는 설립 인가ㆍ신고를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 및 경찰관서의 장은 법 제56조제4항, 제5항 및 제8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 및 회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범죄경력정보 및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개

정 2015. 4. 20., 2016. 11. 29., 2018. 7. 16., 2023. 9. 26., 2025. 10. 10.>

⑦ 제1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교육과정등을 집행한 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가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교육과정등의 이수 결과보고서 통지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4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부칙** <제24567호,2013. 5.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호관찰 대상자의 신고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출소한 자로서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5932호,2014.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영실적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분기별 운영실적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6209호,2015. 4. 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922호,2016. 1. 22.>(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2( 까지 생략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4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로 한다.

제3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6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8조”를 각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로 한다.

3! 부터4^ 까지 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 <제27215호,2016. 6. 8.>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639호,2016. 11. 29.>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960호,2017. 3. 27.>(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9044호,2018. 7. 16.>

이 영은 2018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6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908호,2020. 8. 5.>(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8호 중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6조제3항 및 제38조제2항 전단 중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부칙** <제31163호,2020. 11. 17.>

이 영은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제14조, 제33조제7항, 제39조제1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325호,2020. 12. 29.>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부터 제5조까지, 별표 1 및 별표 4 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349호,2020. 12. 31.>(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2# 까지 생략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7항 및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2% 부터4( 까지 생략

**부칙** <제31379호,2021. 1. 5.>(지정ㆍ위탁의 실적 요건 정비를 위한 2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 또는 위탁 요건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이 영에 의하여 개정되는 법령에 따른 지정 또는 위탁을 하기 위하여 그 지정 또는 위탁의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625호,2021. 4. 20.>(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2호 중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31726호,2021. 6. 8.>(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5호”를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3호”로, “같은 조 제7호”를 “같은 조 제5호”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32008호,2021. 9. 24.>

이 영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866호,2022. 8.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762호,2023. 9. 26.>

이 영은 2023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955호,2024. 10.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ㆍ확인 결과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실시되는 성범죄의 경력자 점검ㆍ확인부터 적용한다.

**제3조**(포상금의 지급 사유 추가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포상금 지급 제외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5806호,2025. 10. 1.>(성평등가족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ㆍ제2항, 제11조, 제12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13조제1항, 제14조의2, 제16조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2항, 제22조, 제22조의2제2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본문, 제23조, 제2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 중 “ 여성가족부장관 ”을 각각 “ 성평등가족부장관 ”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제22조의2제7항, 제25조제4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및 제31조제1항 중 “ 여성가족부령 ”을 각각 “ 성평등가족부령 ”으로 한다.

⑫부터2$ 까지 생략

**부칙** <제35815호,2025. 10. 10.>

이 영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삭제 <2020. 12. 29.>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2. 8. 9.>

## 성교육 전문기관에 두는 종사자 등 직원의 자격기준(제15조제3항 관련)

| 구분 | 자 격 기 준 |
|---|---|
| 성교육 전문 기관의 장 |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아동학, 청소년학, 여성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학, 간호학을 전공한 후 아동·청소년, 여성, 노인 및 복지 관련 단체에서 3년 이상 성교육 관련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br>2.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또는 교사의 자격증을 취득한 후 아동·청소년, 여성, 노인 및 복지 관련 단체에서 3년 이상의 성교육 관련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팀원 및 전문 강사 |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아동학, 청소년학, 여성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한 사람<br>2.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또는 교사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br>3. 아동·청소년, 여성, 노인 및 복지 관련 단체에서 1년 이상의 성교육 관련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비고: 지역의 사정으로 위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자격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5. 10. 10.>

##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 기준(제15조제4항 관련)

1. 입지조건

성교육 전문기관은 안전, 위생, 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구조 및 설비

가. 성교육 전문기관은 일조·채광·환기 등 이용자의 보건, 위생, 안전, 재해방지, 연령별 특성 등에 적합한 구조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성교육 전문기관은 다음의 사무실, 교육장, 성문화체험관 및 비상재해대비시설을 갖추되, 사무실, 교육장 및 성문화체험관을 합쳐 연면적 165㎡ 이상의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1) 사무실

사무처리를 위하여 책상, 전화기 등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교육장

25명 이상이 앉을 수 있는 공간과 교육에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어야 한다.

3) 성문화체험관

성 관련 지식습득 및 체험에 필요한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4) 비상재해대비시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기구, 경보설비 및 비상구를 설치하여 화재 등 비상재해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인력기준

가. 성교육 전문기관에는 기관의 장, 팀원, 전문강사 등 2명 이상의 교육 및 행정업무에 필요한 종사자를 두어야 한다.

나. 성교육 전문기관의 장은 상근(常勤)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동의를 받아 비상근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성교육 전문기관에는 팀장을 둔다.

4. 운영기준

가. 개관시간

성교육 전문기관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관한다.

나. 관리규정

성교육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사항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성교육 전문기관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여야 한다.

1)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운영방침

2) 직원의 업무 분장

3) 성교육 전문기관 이용자의 대응요령

4) 성교육 전문기관의 이용수칙

5) 그 밖에 성교육 전문기관의 운영·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다. 장부 등의 비치

성교육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1) 관리에 관한 장부

가) 성교육 전문기관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나) 직원 관계철(인사기록카드·이력서·사진을 포함한다)

다) 회의록 관계철

라) 소속 법인의 정관(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및 관계 결의 서류

마) 문서철(보고서 및 관계 행정기관과 송신 또는 수신한 문서를 포함한다)

바) 문서접수·발송대장

2) 사업에 관한 장부

가) 성교육일지

나) 그 밖에 상담 등 사업 관계 서류

3) 재무·회계에 관한 장부

가)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보조부

나) 금전출납부 및 그 증명서류

다) 예산서 및 결산서

라) 비품관리대장

마) 재산대장·재산목록과 그 소유 또는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바)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 서류

사) 각종 증명서류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5. 10. 10.>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피해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6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아동ㆍ청소년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 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가. 삭제 <2020. 12. 29.> | | | | |
| 나. 법 제3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법 제67조제4항제1호 | 300 | 300 | 300 |
| 다. 상담시설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법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상담·치료프로그램의 제공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 | 법 제67조제2항제1호 | 300 | 600 | 1,000 |
| 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이 법 제56조제5항을 위반하여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 | 법 제67조제3항 | 300 | 400 | 500 |
| 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이 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 법 제67조제4항제2호 | 300 | 300 | 300 |
| 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이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해임요구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 법 제67조제2항제2호 | 600 | 800 | 1,000 |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 10. 1.] [성평등가족부령 제1호, 2025. 10. 1., 타법개정]

성평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일반사항) 02 - 2100 - 6405
성평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취업제한제도, 신고포상금) 02 - 2100 - 64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친권상실 청구 등의 처리결과 통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2항에 따른 친권상실 청구 또는 후견인 변경 청구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의 통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을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라 통지한다.
[전문개정 2020. 11. 20.]

**제4조(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 위탁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47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설립 목적 또는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1. 성매매 방지
2. 성매매 피해자의 보호
3.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의 구제ㆍ보호 또는 지원

② 성평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7조의2제4항에 따라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 내용, 위탁 기관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개정 2025. 10. 1.>
[전문개정 2020. 11. 20.]

**제5조(교육과정등의 이수통보)** ① 삭제 <2020. 11. 20.>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가해아동ㆍ청소년의 교육과정등 이수결과 통보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0. 11. 20.>

**제6조(공개정보 원부의 작성)**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성범죄자 공개정보 원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되, 컴퓨터단말기에 의하여 열람이 가능한 형태의 컴퓨터 파일자료로 작성ㆍ관리하

여야 한다.

**제7조(고지명령의 집행)**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5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송부한다. <개정 2023. 10. 10., 2025. 10. 1.>

1. 우편송부
2.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통한 송부
3. 영 제19조에 따른 공개정보 전용 웹사이트를 통한 송부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우편송부를 통한 고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고지정보를 우편으로 송부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고지정보 우편송부 현황 관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내용을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④ 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고지명령의 집행 이후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고지정보의 송부는 반기별 1회로 한다.<개정 2023. 10. 10.>

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51조에 따른 고지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고지를 받을 사람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0. 11. 20., 2025. 10. 1.>

**제7조의2(고지정보 및 공개정보의 정정 요청 등)** ① 영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고지정보 또는 공개정보의 정정 요청은 별지 제8호의2서식의 고지정보(공개정보) 정정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개정 2023. 10. 10.>

② 영 제22조의2제6항 단서에 따른 고지정보 또는 공개정보 정정 요청의 처리 결과 통지는 별지 제8호의3서식의 고지정보(공개정보) 정정 요청 결과 통지서(전자문서로 된 통지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개정 2023. 10. 10.>

[본조신설 2018. 7. 16.]

[제목개정 2023. 10. 10.]

**제7조의3(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 실태조사)**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라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3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③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5. 10. 1.>

1.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유포 실태 등에 관한 사항
2.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의 피해에 관한 사항
3.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국민 인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과 관련한 범죄 예방과 재발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3. 10. 10.]

**제8조(성범죄 경력 조회 및 회신)** ①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교육장 또는 법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12. 31., 2022. 3. 14., 2023. 10. 10., 2025. 10. 1.>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자의 동의서 1부

1의2.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요청하는 경우

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사람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 본인의 동의서 1부

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 본인의 동의서 1부

2.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인ㆍ허가증 사본 등) 1부. 다만,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은 제외한다.

나. 취업자등 본인의 동의서 1부

②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려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자 또는 취업자등은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신설 2016. 11. 30., 2022. 3. 14.>

1. 신분 증명서(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본 1부

2. 운영하려는 기관 또는 취업대상 기관이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③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려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 각 호의 아동관련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통합하여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신설 2018. 3. 21., 2019. 12. 31., 2022. 3. 14., 2025. 10. 1.>

1.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아동관련기관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인ㆍ허가증 사본 등) 1부. 다만,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은 제외한다.

2.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의 통합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 1부

④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자 또는 취업자등은 제2항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려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 아동관련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통합하여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별지 제9호의4서식의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2. 3. 14.>

1. 운영하려는 기관이나 취업대상 기관이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아동관련기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2. 신분 증명서(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본 1부

⑤ 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조회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제1항제2호가목 단서 또는 제3항제1호 단서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 또는 아동관련기관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신설 2019. 12. 31., 2022. 3. 14., 2025. 10. 1.>

⑥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제3항제2호에 따른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의 통합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따른다.<개정 2015. 5. 1., 2016. 11. 30., 2018. 3. 21., 2019. 12. 31., 2022. 3. 14.>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에 대한 회신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22. 3. 14.>

1. 제1항에 따라 요청한 경우: 별지 제11호서식
2. 제2항에 따라 요청한 경우: 별지 제11호의2서식
3. 제3항에 따라 요청한 경우: 별지 제11호의3서식
4. 제4항에 따라 요청한 경우: 별지 제11호의4서식

**제9조(포상금의 지급 신청 및 절차)** ①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 5. 1.>

② 영 제30조제2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작성하는 포상금 지급조서 및 지급대장은 각각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5. 10. 1.>

**제10조(포상금의 지급액 등)**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9. 7. 16., 2020. 11. 20.>

1. 법 제11조제2항의 범죄: 30만원
2. 법 제13조의 범죄: 70만원
3. 법 제8조, 제8조의2, 제11조제1항ㆍ제4항, 제14조 및 제15조의 범죄: 100만원

**제11조(신고인의 보호)** 포상금의 지급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은 포상금의 지급 외의 목적으로 신고인의 인적 사항 등 신고인에 관한 정보를 사용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보호관찰 대상자의 신고 등)** ①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의 신고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의 신고에 관하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을 준용한다.<개정 2022. 3. 14.>

**제13조(종전의 성범죄자에 대한 공개명령의 청구)** 법률 제11572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검사에게 하는 공개명령청구 요청과 검사가 법원에 하는 공개명령청구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 10. 1.>

**제14조(종전의 성범죄자에 대한 고지명령의 청구)** 법률 제11572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검사에게 하는 고지명령청구 요청과 검사가 법원에 하는 고지명령청구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 10. 1.>

**제15조(준용규정)**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13조 및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5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2. 3. 14.>

1. 영 제34조에 따른 보호관찰명령 청구 및 집행지휘
2. 영 제36조에 따른 보호관찰 기간 연장 신청
3. 영 제38조에 따른 보호관찰의 종료

**부칙** <제38호,2013. 6. 4.>

이 규칙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호,2015. 5.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호,2015. 10. 22.>(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호,2016. 2.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호,2016. 6. 15.>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호,2016. 11. 30.>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9호,2018. 3.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6호,2018. 7. 16.>

이 규칙은 2018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1호,2019. 7. 16.>

이 규칙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호,2019.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서류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 같은 조 제3항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성범죄 경력 조회와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의 통합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7호,2020. 11.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ㆍ제10조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7항제13호 중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로 한다.

**부칙** <제160호,2021. 1.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1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의3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범죄 경력 조회 등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9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의3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거나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통합하여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3호,2022. 3. 14.>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호,2022. 7. 4.>(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중 “ ○○치료감호소장 ”을 “ 국립법무병원장 ”으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부칙** <제195호,2023. 10. 10.>

이 규칙은 2023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3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2025. 10. 1.>(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7조의3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4호, 제8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 같은 조 제3항제1호 단서,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9조제2항, 제13조, 제14조,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의2서식, 별지 제8호의3서식,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의3서식 앞쪽 및 별지 제12호서식 중 “ 여성가족부장관 ”을 각각 “ 성평등가족부장관 ”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중 “ 여성가족부 ”를 각각 “ 성평등가족부 ”로 한다.

⑩부터2@ 까지 생략

[별지 제1호서식]

# ○○지방검찰청○○지청

제　　호　　년　월　일

수 신　○○보호전문기관(시설)장　　발 신　○○지방검찰청○○지청장 직인

제 목　**친권상실 청구 등 처리결과 통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에 따라 친권상실 청구 또는 후견인 변경 청구에 대한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 | | | | |
|---|---|---|---|---|
| 청구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 | 주 소 | | | |
| | 전화번호 | | | |
| 관련 아동·청소년 | 성 명 | | 생년월일 | |
| | 주 소 | | | |
| 처리결과 | | | | |
| 담당자 | 소 속 | | 기관 전화번호 | |
| | 성 명 | | 그 밖의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 |

○○지방검찰청○○지청장 직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경 찰 서

수 신 수신자 참조
제 목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통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을 통지합니다.

| | | | | |
|---|---|---|---|---|
|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 성 명 | | 생년월일 | |
| | 주 소 | | | |
| | 전화번호 | | 전자우편주소 등 기타 연락처 | |
| | 재학 여부 |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학교 밖 청소년 □ 기타( ) | | |

| | | | | |
|---|---|---|---|---|
| 보호자 (친권자) | 성 명 | | 전화번호 | |
| | 관 계 | | 실질적 보호 여부 | □ 보호 중 □ 미보호 |
| 실질적 보호자 ※ 필요시 | 성 명 | | 전화번호 | |
| | 관 계 | | | |
| | ※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자(친권자)가 없는 경우 사실상 그 피해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 | | |

| | | | | |
|---|---|---|---|---|
| 사건 내용 | 피해 사실 | | | |
| | 발견 경위 | | | |
| | 사건 담당자 | 성명 | 소속 | |
| | | 전화번호 | 계급 | |

| | | |
|---|---|---|
| 지원 내용 | 경찰 지원사항 | ※ 국선변호인 선임요청 등 경찰 수사과정에서 지원한 사항 |
| | 지원 필요사항 | ※ 치료·상담 및 생활비 등 추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 ○ 경찰서장 직인

수신자 성평등가족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개정 2025. 10. 1.>

# ○○ 지방검찰청 (○○ 지청)

수신 수신자 참조

제목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통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을 통지합니다.

| | | | | |
|---|---|---|---|---|
|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 성 명 | | 생년월일 | |
| | 주 소 | | | |
| | 전화번호 | | 전자우편주소 | |
| | 학 교 | 학교 학년 반 | | |
| 보호자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 | 주 소 | | | |
| | 전화번호 | | 관 계 | |
| | 비고 | ※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자(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 그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 | |
| 실제 연락 가능한 사람 | 성 명 | | 관 계 | |
| | 주 소 | | 전화번호 | |
| | 비고 | ※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과 직접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실제 연락이 가능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 | |
| 담당자 | 성 명 | | 소 속 | |
| | 전화번호 | | 계 급 | |

○ ○ 지방검찰청 (○ ○ 지청장) 직인

수신자 성평등가족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20. 11. 20.>

[별지 제4호서식] 삭제 <2020. 11. 20.>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 10. 1.>

# 성평등가족부
# (교육과정등 집행기관)

제 호 년 월 일

수 신 ○○지방검찰청 ○○지청장

제 목 가해아동ㆍ청소년 교육과정등 이수결과 통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가해아동ㆍ청소년의 교육과정등 이수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 | | | | |
|---|---|---|---|---|
| 가해아동ㆍ청소년 | 성 명 | | 생년월일 | |
| | 주 소 | | | |
| | 전화번호 | | | |
| | 소속학교 | | 직 업 | |
| | 결정사항 | | | |
| 이수결과 | [ ] 교육 이수 완료, [ ] 부분이수( 시간), [ ] 교육 미이수 | | | |
| 조치사항 | 교육 이수 | 교육기간 | | |
| | | 참여시간 | | |
| | 교육 미이수 | 사유 | | |
| 담당자 | 소 속 | | 기관 전화번호 | |
| | 성 명 | | 그 밖의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 |

성평등가족부장관ㆍ(교육과정등 집행기관의 장) 직인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6. 6. 15.>

# 성범죄자 공개정보 원부

| 일련번호 | 공개 개시일 | 성명 (한자) [외국인인 경우 영문] | 나이 | 주소 및 실제거주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 주소는 외국인인 경우 국내 체류지,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국내거소 | 신체 정보 | 성범죄 요지 | | | | 사진 | 성폭력 범죄 전과사실 (죄명 및 횟수) | 전자장치 부착여부 ·부착기간 | 공개만료일 |
|---|---|---|---|---|---|---|---|---|---|---|---|---|---|
| | | | | | | 판결일자 | 죄명 | 선고형량 | 해당 사건의 범죄사실 요지 | | | | |
| | 판결확정일: | | | 주민등록상 주소: | 키(cm) | | | | | | | | |
| | 형(치료감호) 종료(면제일): | | | 실제거주지: | 몸 무 게 (kg) | | | | | | | | |
| | 판결확정일: | | | 주민등록상 주소: | 키(cm) | | | | | | | | |
| | 형(치료감호) 종료(면제일): | | | 실제거주지: | 몸 무 게 (kg) | | | | | | | | |
| | 판결확정일: | | | 주민등록상 주소: | 키(cm) | | | | | | | | |
| | 형(치료감호) 종료(면제일): | | | 실제거주지: | 몸 무 게 (kg) | | | | | | | | |

297㎜×210㎜[백상지 80g/㎡(재활용품)]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5. 10. 1.>

# 고 지 정 보 서

제 20○○-○○ 호 년 월 일

이 고지정보서는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지역주민 중 아동·청소년을 세대원으로 둔 세대 및 관련 기관(아래 참조)에 송부하는 것입니다.

※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경계를 같이 하는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포함),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학교교과교습학원, 아동복지시설 중 아동양육시설·아동일시보호시설·아동보호치료시설·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사진촬영일: 0000년 00월 00일)

| 정면 사진 | 좌측 사진 | 우측 사진 | 전신 사진 |
|---|---|---|---|

| 이름 | | 나이 | | 신체정보 (키·몸무게) | | |
|---|---|---|---|---|---|---|

| | |
|---|---|
| 주민등록상 주소 | (외국인인 경우 국내 체류지,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국내 거소) |
| 실제 거주지 | |
| 성범죄 요지 | |
| 성폭력범죄 전과사실 (죄명, 횟수) | |
| 전자장치부착여부 | |
| 부가기록 | *#부가기록 작성 예시*<br>*위 고지대상자는 신규 우편고지대상자임.*<br>*위 고지대상자가 위 거주지로 전입하였음.*<br>*위 고지대상자는 동일한 읍면동내에서 실거주지가 변경됨.*<br>*위 고지대상자가 위 기재된 실제거주지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였음.* |
| 참고사항 | *고지정보서를 송부받은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장은 게시판에 30일간 게시해야 함* |

## 유의사항

1. 이 정보는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신문·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공개(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하거나 공공장소 게시 등을 통해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형법」 제307조제1항 등).
2. 성범죄자 취업제한 시설이 아닌 곳에서 고지대상자의 고용, 주택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등에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귀 세대(기관)에서 이 고지서를 받은 시점에 고지대상자가 고지된 실제 거주지에 살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실제 거주지가 사실과 다른 경우 국민신문고,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로 알려주시면 처리결과를 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성범죄자 알림e 다운로드 및 설치**

(iOS) (안드로이드)

**성 평 등 가 족 부 장 관** 직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6. 6. 15.>

# 고지정보 우편송부 현황 관리대장

| (1) 고지번호 (고지연도 - 일련번호) | (2) 고지일자 | (3) 고지사유 | 고지대상자 | | | | (5) 고지지역 | (6) 고지정보 수령대상 세대 판단기준일 | (7) 고지정보 수령대상 세대수 | 비고 |
|---|---|---|---|---|---|---|---|---|---|---|
| | | | 성명 | 생년월일 | (4) 고지대상 주소정보 (주민등록상주소는 외국인인 경우 국내 체류지,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국내거소) | | | | | |
| | | | | | 주소구분 | 주소내역 | | | | |
| (예시) 2011- 0001 | 0000년 00월 00일 | [ ]신규등록<br>[ ]변경등록 | | | [ ]주민등록상주소 | 0000도 00시 000 동 000 번지 | - | - | - | |
| | | | | | [ ]실제거주지 | ××××도 ××시 ××× 동 ××× 번지 | ××××도 ××시 ×××동 | ××××년 ××월 ××일 | 3,000 | |
| (예시) 2011- 0002 | 0000년 00월 00일 | [ ]신규등록<br>[ ]변경등록 | | | [ ]주민등록상주소 | 0000도 00시 000 동 000 번지 | - | - | - | |
| | | | | | [ ]실제거주지 | 0000도 00시 000 동 000 번지 | ××××도 ××시 ×××동 | ××××년 ××월 ××일 | 3,000 | |
| | | [ ]신규등록<br>[ ]변경등록 | | | [ ]주민등록상주소 | | | | | |
| | | | | | [ ]실제거주지 | | | | | |
| | | [ ]신규등록<br>[ ]변경등록 | | | [ ]주민등록상주소 | | | | | |
| | | | | | [ ]실제거주지 | | | | | |

<작성요령>

(1) 고지번호는 고지되는 연도와 연도별 고지일련번호를 부여한다.

(2) 고지일자는 우체국에 고지우편물 송부를 의뢰한 날로 한다.

(3) 고지사유와 (4)고지대상 주소정보의 주소구분은 해당되는 사항의 [ ]안에 √표시한다.

(5) 고지지역, (6)고지정보 수령대상 세대 판단기준일 및 (7)고지정보수령대상 세대수는 (4)의 고지대상 주소정보 중 우편고지한 주소지를 기준으로 기재하고, 빈칸에는 - 표시한다.

297㎜×210㎜[백상지 70g/㎡(재활용품)]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 <개정 2025. 10. 1.>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https://www.sexoffender.go.kr) 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지정보 [ ] 공개정보 [ ] 정정 요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요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처리 절차란에 별도 기재 |
|---|---|---|

| | | |
|---|---|---|
| 요청인 | 성명: | |
| | 생년월일 | |
| | 주소: (연락처: ) ※ 답변완료 문자수신 안내를 원하는 경우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고지대상자 또는 공개대상자 (성범죄자) 인적사항 | 성명: | 나이: |
| | 세부 신상정보 | |
| 정정 요청 사항 | | |
| 정정 요청 사유 |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지정보[ ] 공개정보[ ] 의 정정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서명 또는 인, 정보통신망 이용 시 생략 가능)

성평등가족부장관 귀하

## 안내 사항

- 이 고지정보(공개정보) 정정 요청서는 고지 또는 공개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중 실제거주지 등 고지 또는 공개된 정보에 오류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 고지정보(공개정보) 정정 요청서는 등기우편, 팩스 외에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이용하여 제출이 가능합니다.

## 처리절차

| 요청서 작성 | → | 접수 | → (7일) | 신상정보 관리 (진위, 변경 여부) | → (지체없이) | 대상자 확인 (적합, 부적합) | → (7일) | 신상정보 정정 및 등록 | → (7일) | 통보 (14일 이내) |
|---|---|---|---|---|---|---|---|---|---|---|
| 요청인 | | 성평등가족부 장관 | | 법무부장관 | | 경찰서의 장 | | 법무부장관 | | 성평등가족부 장관 |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3서식] <개정 2025. 10. 1.>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https://www.sexoffender.go.kr)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고지정보 [ ] 공개정보 [ ] 정정 요청 결과 통지서

| | | |
|---|---|---|
| 요청인 | 성명 | |
| | 생년월일 | |
| 고지대상자 또는 공개대상자 (성범죄자) 인적사항 | 성명 | 나이 |
| | 세부 신상정보 | |
| 정정 요청 처리결과 |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제6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지정보[ ] 공개정보[ ] 정정 요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성평등가족부장관 직인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5. 10. 1.>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http://crims.police.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

(앞쪽)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즉시 |
|---|---|---|

| | | | |
|---|---|---|---|
| 신청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대상자 |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br>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br>※ 의료인의 경우 면허번호를 함께 적습니다. | | |
| 운영 또는 취업정보 |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기관명 | |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기관 주소<br>(전화번호: ) |
| | 조회 용도 | [ ]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조회 | [ ] 취업(예정)자에 대한 조회<br>(직종: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보통신망 이용 시 생략 가능)

_____경찰서장 귀하

| | |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려는 자의 동의서 1부<br>2.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요청하는 경우<br>가.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려는 사람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 본인의 동의서 1부<br>나.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 본인의 동의서 1부<br>3.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br>가.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인·허가증 사본 등) 1부. 다만,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은 제외합니다.<br>나.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 본인의 동의서 1부 | 수수료 없 음 |
|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의 장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자료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의 장 본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성명은 영문으로 적고,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을 적습니다.
2. 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3.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 기관이 의료기관인 경우 대상자는 의료인만 해당하며, 의료인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면허번호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 법제처 | | 국가법령정보센터 |
|---|---|---|

(뒤쪽)

| 연 번 | 성명<br>(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br>※ 의료인의 경우 면허번호를 함께 적습니다. | 취업자(취업예정자)의 직종(예정직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개정 2021. 1. 28.>

#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본인)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즉시 |
|---|---|---|

| | | | |
|---|---|---|---|
| 신청인 (대상자) |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 |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br>※ 의료인의 경우 면허번호를 함께 적습니다. | | |
| 운영 또는 취업정보 |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기관명 | |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기관 주소<br>(전화번호: ) |
| | 조회용도 | [ ] 운영하려는 자용 | [ ] 취업(예정)자용<br>(직종: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본인의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보통신망 이용 시 생략 가능)

_____경찰서장 귀하

| | |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신분 증명서(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본 1부<br>2. 운영하려는 기관 또는 취업대상 기관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 수수료 없 음 |

## 유의사항

1.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성명은 영문으로 적고,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을 적습니다.
2.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 기관이 의료기관인 경우 대상자는 의료인만 해당하며, 의료인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면허번호를 적습니다.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 | 접 수 | → | 취업제한 해당여부 확인 | → | 통보 |
|---|---|---|---|---|---|---|
| 신청인 | | 경찰서장 | | 경찰서장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3서식] <개정 2025. 10. 1.>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http://crims.police.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일시 | 처리기간 즉시 |
|---|---|---|---|

| | | |
|---|---|---|
| 신청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대상자 |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br>※ 의료인의 경우 면허번호를 함께 적습니다. | |
| 취업정보 | 취업(예정)기관명 | 취업(예정)기관 주소<br>(전화번호: ) |
| | 조회 용도: 취업(예정)자에 대한 조회 (직종: )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과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라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통합하여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보통신망 이용 시 생략 가능)

_____경찰서장 귀하

| | |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아동관련기관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인·허가증 사본 등) 1부. 다만,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은 제외한다.<br>2.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의 통합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 1부 | 수수료 없 음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자료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아동관련기관의 장 본인 (서명 또는 인)

## 유의사항

1.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성명은 영문으로 적고,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을 적습니다.
2. 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3. 취업(예정)기관이 의료기관인 경우 대상자는 의료인만 해당하며, 의료인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면허번호를 적습니다.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 | 접 수 | → | 취업제한 해당여부 확인 | → | 통보 |
|---|---|---|---|---|---|---|
| 신청인 | | 경찰서장 | | 경찰서장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연 번 | 성명<br>(외국인의 경우<br>영문으로 작성) | 주민등록번호<br>(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br>※ 의료인의 경우 면허번호를 함께 적습니다. | 취업자(취업예정자)의 직종<br>(예정직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4서식] <신설 2022. 3. 14.>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http://crims.police.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서(본인)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일시 | 처리기간 즉시 |
|---|---|---|---|

| | | |
|---|---|---|
| 신청인 (대상자) | 성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의료인의 경우 면허번호를 함께 적습니다. | |
| 운영 또는 취업정보 |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기관명 | 전화번호 |
| |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기관 주소 | |
| | 조회용도 | [ ]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조회<br>[ ] 취업(예정)자에 대한 조회(직종: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4항과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라 본인의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통합하여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보통신망 이용 시 생략 가능)

_____경찰서장 귀하

| | |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운영하려는 기관 또는 취업대상 기관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아동관련기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br>2. 신분 증명서(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본 1부 | 수수료 없음 |

## 유의사항

1.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성명은 영문으로 적고,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을 적습니다.
2.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기관이 의료기관인 경우 대상자는 의료인만 해당하며, 의료인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면허번호를 적습니다.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 | 접 수 | → | 취업제한 해당여부 확인 | → | 통보 |
|---|---|---|---|---|---|---|
| 신청인 | | 경찰서장 | | 경찰서장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8. 3. 21.>

(앞쪽)

#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 | |
|---|---|
| 대상자 |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 | 연락처(휴대전화 등) |

본인은 ○○기관(시설)(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 취업자(취업예정자)로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_____경찰서장 귀하

##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연 번 | 성명<br>(외국인의 경우<br>영문으로 작성) | 주민등록번호<br>(외국인의 경우<br>외국인등록번호/국적) | 연락처<br>(휴대전화 등) | 동의자 서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22. 3. 14.>

(앞쪽)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 |
|---|---|
| 대상자 |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 | 연락처(휴대전화 등) |

본인은 ○○기관(시설)(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의 취업자등으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의 통합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_____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연 번 | 성명<br>(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 주민등록번호<br>(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연락처<br>(휴대전화 등) | 동의자 서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1. 1. 28.>

#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

(앞쪽)

| | | |
|---|---|---|
| 신청인 | 성 명 | |
| | 기관명 | |

| | | |
|---|---|---|
| 대상자 | 성 명<br>(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 |
| | 주민등록번호<br>(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

| | |
|---|---|
| 취업제한 해당여부 | [ ] 해당 있음 (취업제한대상자) [ ] 해당 없음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여 통보합니다.

년 월 일

○ ○ ○(경찰서장) 직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1.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성명(영문), 외국인등록번호, 국적을 적습니다.
2. 취업제한 해당여부란에는 해당사항에 ○, V 등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뒤쪽)

## 성범죄 경력 유무 적용방법

대상이 되는 성범죄
년대상 성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및 제9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제8조의 죄는 2012. 3. 16. 이후의 죄를, 제9조 및 제10조의 죄는 2013. 6. 19. 이후 말함)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제11조, 제13조 및 제14조의 죄는 '12. 8. 2. 이후의 죄를, 제12는 '13. 6. 19. 이후의 죄를 말함)
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및 제305조의 죄(제297조의2의 죄는 '13. 6. 후의 죄를 말함)
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339조의 죄( '10. 4. 15. 이후의 죄를 말함)
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의 죄( '10. 4. 15. 이후의 죄를 말함)
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342조의 죄[(제339조의 미수범으로 한정)는 '18.7.17 이후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
ㆍ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

성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의2호)>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범죄(`10. 4. 15. 이후의 죄를 말함)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13. 6. 19. 이후의 죄를 말함)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범죄 중 형법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으로 한정)의 죄(`16.12.20 이후의 죄를 말함]
대상기관의 종류 및 적용시점ㆍ적용기간(법률 제15352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및 제5조)

| 종류 | 형의 종류 |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 | | | 아동ㆍ청소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자 | | | | | |
|---|---|---|---|---|---|---|---|---|---|---|
| | | 성범죄 발생 시점 | | | | 형 확정 시점 | 성범죄 발생 시점 | | | 형 확정 시점 |
| | | 2006. 6. 30. ~2008. 2. 3. | 2008. 2. 4. ~2009. 12. 31. | 2010. 1. 1. ~2010. 4. 14. | 2010. 4. 15. 이후 | 2012. 8. 2. 이후 | 2013. 6. 19. 이후 | 2016. 11. 30. 이후 | *위헌결정 이후* | 2018. 7. 17. 이후 |
| 고, 학원ㆍ년 보호 | 3년 초과의 징역ㆍ금고 | 형 확정일 부터 5년간 취업제한 | |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5년간 취업제한 | | | | | | |
| 청소년활 년쉼터, 동복지시 |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 | 형 확정일 부터 3년간 취업제한 | |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3년간 취업제한 | | | | | | |
| | 벌금형 |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 | |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 | | | | | | |
| | 3년 초과의 징역ㆍ금고 | 형 확정일 부터 5년간 취업제한 | |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5년간 취업제한 | | | | | | |
| |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 | 형 확정일 부터 3년간 취업제한 | |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3년간 취업제한 | | | | | | |
| | 벌금형 |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 | |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 | | | | | | |
| 설소, 청 , 공동주 소 | 3년 초과의 징역ㆍ금고 | 해당 없음 | 형 확정일 부터 5년간 취업제한 |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5년간 취업제한 | | | | | | |
| |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 | 해당 없음 | 형 확정일 부터 3년간 취업제한 |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3년간 취업제한 | | | | | | |
| | 벌금형 | 해당 없음 |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 |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 | | | | | | |
| 센터 | 3년 초과의 징역ㆍ금고 | 해당 없음 | |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5년간 취업제한 | | | | | | |
| |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 | 해당 없음 | |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3년간 취업제한 | | | | | | |
| | 벌금형 | 해당 없음 | |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 | | | | | | |
| 자 | 3년 초과의 징역ㆍ금고 | 해당 없음 | | |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5년간 취업제한 | | | | | |
| |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 | 해당 없음 | | |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3년간 취업제한 | | | | | |
| | 벌금형 | 해당 없음 | | |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 | | | | | |
| 원인), 가 교사 | 3년 초과의 징역ㆍ금고 | 해당 없음 | | | |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5년간 취업제한 | | | | |
| |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 | 해당 없음 | | | |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3년간 취업제한 | | | | |
| | 벌금형 | 해당 없음 | | | | | | | | |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은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내에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서식] <개정 2021. 1. 28.>

(앞쪽)

# 성범죄 경력 조회(본인) 회신서

| | | |
|---|---|---|
| 신청인 (대상자) | 성 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 |
|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
| 운영 또는 취업정보 |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기관명 | |
| |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 기관주소 | (전화번호: ) |
| 취업제한 해당여부 | | [ ] 해당 있음 (취업제한 대상자) [ ] 해당 없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여 통보합니다.

년 월 일

○ ○ ○ 경찰서장 직인

210㎜×297㎜[백상지(80g/㎡)]

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1.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성명(영문), 외국인등록번호, 국적을 적습니다.
2. 취업제한 해당여부란에는 해당사항에 ○, V 등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뒤쪽)

## 성범죄 경력 유무 적용방법

한 대상이 되는 성범죄

청소년대상 성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및 제9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제8조의 죄는 2012. 3. 16. 이후의 죄를, 제9조 및 제10조의 죄는 2013. 6. 19. 이후 죄를 말함)

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제11조, 제13조 및 제14조의 죄는 '12. 8. 2. 이후의 죄를, 제12 죄는 '13. 6. 19. 이후의 죄를 말함)

ㆍ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및 제305조의 죄(제297조의2의 죄는 '13. 6. 이후의 죄를 말함)

ㆍ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339조의 죄( '10. 4. 15. 이후의 죄를 말함)

ㆍ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의 죄( '10. 4. 15. 이후의 죄를 말함)

ㆍ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342조의 죄[(제339조의 미수범으로 한정)는 `18.7.17 이후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

아동ㆍ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

상 성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의2호)>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범죄(`10. 4. 15. 이후의 죄를 말함)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13. 6. 19. 이후의 죄를 말함)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범죄 중 형법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으로 한정)의 죄(`16.12.20 이후의 죄를 말함]

한 대상기관의 종류 및 적용시점 ㆍ적용기간(법률 제15352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및 제5조)

| 관의 종류 | 형의 종류 |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 | | | 아동ㆍ청소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자 | | | | | |
|---|---|---|---|---|---|---|---|---|---|---|
| | | 성범죄 발생 시점 | | | | 형 확정 시점 | 성범죄 발생 시점 | | | 형 확정 시점 |
| | | 2006. 6. 30. ~2008. 2. 3. | 2008. 2. 4. ~2009. 12. 31. | 2010. 1. 1. ~2010. 4. 14. | 2010. 4. 15. 이후 | 2012. 8. 2. 이후 | 2013. 6. 19. 이후 | 2016. 11.30. 이후 | 위헌결정 이후* | 2018. 7. 17. 이후 |
| 학교,학원ㆍ 청소년 보호 | 3년 초과의 징역ㆍ금고 | 형 확정일 부터 5년간 취업제한 | |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5년간 취업제한 | | | | | | |
| 터, 청소년활 청소년쉼터, 아동복지시 |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 | 형 확정일 부터 3년간 취업제한 | |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3년간 취업제한 | | | | | | |
| | 벌금형 |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 | |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 | | | | | | |
| 설 | 3년 초과의 징역ㆍ금고 | 형 확정일 부터 5년간 취업제한 | |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5년간 취업제한 | | | | | | |
| |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 | 형 확정일 부터 3년간 취업제한 | |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3년간 취업제한 | | | | | | |
| | 벌금형 |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 | |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 | | | | | | |
| 해상담소, 청 시설, 공동주 사무소 | 3년 초과의 징역ㆍ금고 | 해당 없음 | 형 확정일 부터 5년간 취업제한 |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5년간 취업제한 | | | | | | |
| |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 | 해당 없음 | 형 확정일 부터 3년간 취업제한 |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3년간 취업제한 | | | | | | |
| | 벌금형 | 해당 없음 |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 |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 | | | | | | |
| 복지센터 | 3년 초과의 징역ㆍ금고 | 해당 없음 | |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5년간 취업제한 | | | | | | |
| |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 | 해당 없음 | |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3년간 취업제한 | | | | | | |
| | 벌금형 | 해당 없음 | |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 | | | | | | |
| 교습자 | 3년 초과의 징역ㆍ금고 | 해당 없음 | | |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5년간 취업제한 | | | | | |
| |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 | 해당 없음 | | |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3년간 취업제한 | | | | | |
| | 벌금형 | 해당 없음 | | |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 | | | | | |
| 의료인), 가 학습 교사 | 3년 초과의 징역ㆍ금고 | 해당 없음 | | | |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5년간 취업제한 | | | | |
| |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 | 해당 없음 | | | |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3년간 취업제한 | | | | |
| | 벌금형 | 해당 없음 | | | |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 | | | | |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내에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3서식] <개정 2022. 3. 14.>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

| | | | |
|---|---|---|---|
| 신청인 | 성 명 | | |
| | 기관명 | | |
| 대상자 | 성 명<br>(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 | |
| | 주민등록번호<br>(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 |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취업제한 해당여부<br>(성범죄) | | [ ] 해당 있음<br>(취업제한대상자) | [ ] 해당 없음 |
|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해당여부<br>(아동학대관련범죄) | | [ ] 해당 있음<br>(취업제한대상자) | [ ] 해당 없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 「아동복지법」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여 통보합니다.

년 월 일

○ ○ ○경찰서장 직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1.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성명(영문),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을 적습니다.
2. 취업제한 해당여부란에는 해당사항에 ○, V 등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4서식] <신설 2022. 3. 14.>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본인) 회신서

| | | |
|---|---|---|
| 신청인<br>(대상자) | 성명<br>(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 |
| | 주민등록번호<br>(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
| 운영 또는 취업정보 |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기관명 | |
| |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 기관주소 | (전화번호: ) |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취업제한 해당여부<br>(성범죄) | [ ] 해당 있음(취업제한대상자) [ ] 해당 없음 | |
|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해당여부<br>(아동학대관련범죄) | [ ] 해당 있음(취업제한대상자) [ ] 해당 없음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4항과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여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경찰서장 직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비고(이 칸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1.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성명(영문),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을 적습니다.
2. 취업제한 해당여부란에는 해당사항에 ○, V 등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5. 10. 1.>

# 포상금 지급신청서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사건처리결과 확인후 45일 |
|---|---|---|---|

| | | | |
|---|---|---|---|
| 신청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 전화번호 | 전자우편 |
| | 종사하는 분야[학생( ), 직장인( ), 자유업( ), 그 밖의 분야( )] | | |
| | 신고접수번호 | 본인 명의 계좌번호 | |

| | |
|---|---|
| 포상금 지급제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 같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 범죄의 실행과 관련된 사람이 신고한 경우, 범죄의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등) | 예[ ] 아니오[ ] |
| 해당 범죄의 신고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 예[ ] 아니오[ ] |

| 포상금 지급 신고대상 | | | 해당 사항 표시 |
|---|---|---|---|
| 신고 대상 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 ㆍ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행위<br>ㆍ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거나 추행하게 한 행위 | |
|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 ㆍ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행위<br>ㆍ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거나 추행하게 한 행위 | |
|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 ㆍ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행위<br>ㆍ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행위<br>ㆍ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행위 | |
|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 ㆍ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br>ㆍ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행위 | |
|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 ㆍ강요행위(폭행, 협박, 위계, 권유, 업무, 고용 등)를 통해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행위<br>ㆍ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아동ㆍ청소년을 유인ㆍ권유한 행위<br>ㆍ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ㆍ권유한 행위 등 | |
|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 | ㆍ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영업행위를 포함한다)나 해당 사실을 알면서 자금ㆍ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행위 등<br>ㆍ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영업행위를 포함한다) 등<br>ㆍ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ㆍ알선하는 업소에 아동ㆍ청소년을 고용하도록 한 행위<br>ㆍ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 또는 강요한 행위(영업행위를 포함한다) |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평등가족부장관 귀하

처 리 절 차

| 포상금 지급신청서 작성 제출 | → | 접 수 | → | 포상금 지급신청서 검토(사건처리결과 확인) | → | 지급결정 | → | 통 보 |
|---|---|---|---|---|---|---|---|---|
| 신청인 | | 성평등가족부 | | 성평등가족부 | | 성평등가족부 | | |

[별지 제13호서식]

# 포상금 지급조서

(연번 호)

| | | |
|---|---|---|
| 포상금액 | 일금_____원 | |
| 지급대상자 인적사항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계좌번호 | |
| 신고개요 | | |
| 사건처리 내용 | 사건번호 | |
| | 사건개요 | |
| | 사건처리결과 | |
| 포상금 지급 검토 | 포상금 지급제한사유가 있는지 여부 | |
| | 타법에 따른 보상금, 포상금 수령 여부 | |
| 비고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14호서식]

# 포상금 지급대장

| 지급조서 번호 | 수령인 | 주 소 | 포상금 지급액 | 지급연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2. 7. 4.>

# 보호관찰 대상자 신고서

| |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판결(결정)기관: | 판결(결정)일자: |

| | |
|---|---|
| 판결(결정)내용 | 징역형(○○징역ㆍ금고 년 월), 보호관찰( 년) |

1. 출소 후 거주 예정지

거주지:

☎(집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2. 근무 예정지

| | |
|---|---|
| 직업: | 직장주소: |
| 직장명: | ☎전화번호: |

3. 가족 및 교우 관계

| 관계 | 이름 | 나이 | 성별 | 직업 | 연락처 | 주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교도소장(○○ 소년교도소장, ○○구치소장, ○○ 군교도소장, 국립법무병원장)귀하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5. 10. 1.> (앞쪽)

# 성 평 등 가 족 부

제 호 년 월 일

수 신 ○○○○검찰청

제 목 **공개명령청구 요청**

법률 제11572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개명령청구를 요청합니다.

| | | | | |
|---|---|---|---|---|
| 공개청구 대상자 | 성 명 | | | |
| | 주민등록번호 | - | 외국인인 경우: 국적·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국적·여권번호, 국내거소 신고번호(국내거소 신고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
| | 주 소 | (외국인인 경우 국내 체류지,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국내거소) | | |

| | | | |
|---|---|---|---|
| 죄 명 | | 사건번호 | |
| 열람결정(또는 열람명령)기관 | 국가청소년위원회 | 결정일자 | |
| | ○○○○법원 | 선고일자 | |
| 열람기간 | | | |
| 공개되는 신상정보 | | | |

붙임: 1. 판결문 사본 1부
2. 국가청소년위원회 결정문 사본(국가청소년위원회가 열람대상자로 결정한 자만 해당합니다) 1부
3. 공개명령청구 원인사실 및 요청 이유서 1부

○○○○검찰청 년 월 일

수 신: ○○○○법원

제 목: **공개명령청구**

위와 같이 공개명령청구의 요청이 있는 바 그 이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공개명령을 청구합니다.

검사 (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공개명령청구 원인사실 및 요청 이유서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5. 10. 1.> (앞쪽)

# 성 평 등 가 족 부

제 호 년 월 일

수 신 ○○○○검찰청

제 목 **고지명령청구 요청**

법률 제11572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지명령청구를 요청합니다.

| | | | | |
|---|---|---|---|---|
| 고지명령 청구대상자 | 성 명 | | | |
| | 주민등록번호 | - | 외국인인 경우: 국적·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국적·여권번호, 국내거소 신고번호(국내거소 신고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
| | 주 소 | (외국인인 경우 국내 체류지,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국내거소) | | |

| | | | |
|---|---|---|---|
| 죄 명 | | 사건번호 | |
| 공개명령기관 | ○○○○법원 | 선고일자 | |
| 공개기간 | | | |
| 공개되는 신상정보 | | | |

붙임: 1. 판결문 사본 1부.
2. 고지명령청구 원인사실 및 요청 이유서 1부.

○○○○검찰청 년 월 일

수 신: ○○○○법원

제 목: **고지명령청구**

위와 같이 고지명령청구의 요청이 있는 바 그 이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고지명령을 청구합니다.

검사 (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고지명령청구 원인사실 및 요청 이유서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청소년 기본법

[시행 2026. 10. 29.] [법률 제21601호, 2026. 4. 28., 일부개정]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02 - 2100 - 6238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ㆍ사회ㆍ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2. 3.>

[전문개정 2014. 3. 24.]

**제2조(기본이념)** ① 이 법은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ㆍ종합적 청소년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추진 방향으로 한다.<개정 2015. 2. 3.>

1. 청소년의 참여 보장
2. 창의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청소년의 능동적 삶의 실현
3. 청소년의 성장 여건과 사회 환경의 개선
4. 민주ㆍ복지ㆍ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 향상

[전문개정 2014. 3. 24.]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ㆍ교류활동ㆍ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5.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ㆍ물건ㆍ장소ㆍ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6. “ 청소년시설 ” 이란 청소년활동ㆍ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7. “ 청소년지도자 ” 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나.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다.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8. “ 청소년단체 ” 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청소년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취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5조(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①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은 청소년활동ㆍ청소년복지ㆍ청소년보호 등 청소년육성의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② 청소년은 인종ㆍ종교ㆍ성별ㆍ나이ㆍ학력ㆍ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
③ 청소년은 외부적 영향에 구애받지 아니하면서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밝히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④ 청소년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기발전을 추구하고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모든 형태의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⑤ 청소년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며 가정ㆍ사회 및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①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ㆍ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청소년 관련 정책의 심의ㆍ협의ㆍ조정 등을 위한 위원회ㆍ협의회 등에 청소년을 포함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7. 12. 12.>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신설 2017. 12. 12.>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제안된 내용이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7. 12. 12.>
⑥ 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7. 12. 12.>
[전문개정 2014. 3. 24.]

**제6조(가정의 책임)** ① 가정은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1차적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여야 하며,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통하여 청소년이 개성과 자질을 바탕으로 자기발전을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다음 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가정은 학교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에 청소년과 함께 참여하는 등 청소년을 바르게 육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가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유해매체물 접촉을 차단하는 등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④ 가정의 무관심ㆍ방치ㆍ억압 또는 폭력 등이 원인이 되어 청소년이 가출하거나 비행(非行)을 저지르는 경우 친권자 또는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자는 보호의무의 책임을 진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7조(사회의 책임)** ① 모든 국민은 청소년이 일상생활에서 즐겁게 활동하고 더불어 사는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청소년의 사고와 행동양식의 특성을 인식하고 사랑과 대화를 통하여 청소년을 이해하고 지도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비행을 바로잡는 등 그 선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청소년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서 청소년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을 정화하고 유익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모든 국민은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ㆍ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8조의2(교육 및 홍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청소년의 권리와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는 근로 청소년의 권리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상담을 청소년에게 실시하여야 하며,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신설 2016. 3. 2.>

③ 청소년 관련 기관과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교육적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2.>

[본조신설 2012. 2. 1.]

[제목개정 2016. 3. 2.]

## 제2장 청소년정책의 총괄ㆍ조정 <개정 2014. 3. 24., 2015. 2. 3.>

**제9조(청소년정책의 총괄ㆍ조정)** 청소년정책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총괄ㆍ조정한다. <개정 2015. 2. 3., 2025. 10. 1.>

[전문개정 2014. 3. 24.]

[제목개정 2015. 2. 3.]

**제10조(청소년정책위원회)** ①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에 청소년정책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5. 10. 1.>

② 청소년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청소년정책의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청소년정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5. 둘 이상의 행정기관에 관련되는 청소년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소년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청소년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4항제15호 및 제16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각각 전체 위원의 5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8. 12. 18.>

④ 위원장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복수 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개정 2017. 7. 26., 2018. 12. 18., 2025. 10. 1., 2026. 4. 28.>

1. 재정경제부차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3. 교육부차관
4. 통일부차관
5. 법무부차관
6. 행정안전부차관
7. 문화체육관광부차관
8. 산업통상부차관
9. 보건복지부차관
9의2.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10. 고용노동부차관
11. 중소벤처기업부차관
11의2. 기획예산처차관
1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부위원장
13. 경찰청장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15. 청소년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6.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활동실적 등이 풍부한 청소년 중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청소년

⑤ 제4항제15호 및 제16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18. 12. 18.>

⑥ 청소년정책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거나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는 등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정책위원회에 청소년정책실무위원회를 둔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소년정책위원회 및 청소년정책실무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위촉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8. 12. 18.>

[전문개정 2015. 2. 3.]

**제11조(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① 청소년육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속으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12조(청소년특별회의의 개최)** ① 국가는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정책과제의 설정·추진 및 점검을 위하여 청소년 분야의 전문가와 청소년이 참여하는 청소년특별회의를 해마다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3.>

② 청소년특별회의의 참석대상ㆍ운영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13조(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10조에 따른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3., 2025. 10. 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ㆍ평가
2.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방향
3. 청소년육성에 관한 추진목표
4.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능의 조정
5. 청소년육성의 분야별 주요 시책
6.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
7. 그 밖에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0. 5. 19., 2025. 10. 1.>
[전문개정 2014. 3. 24.]

**제1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다.<개정 2025. 10. 1.>
④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분석ㆍ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분석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공립 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청소년정책 분석ㆍ평가에 관한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분석ㆍ평가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⑥ 시행계획의 수립, 추진실적의 분석ㆍ평가 및 제5항에 따른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 2. 3.]

**제15조(계획 수립의 협조)**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ㆍ법인 및 단체

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2. 3.,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15조의2(실태조사)**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 등 효율적인 청소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3년마다 청소년의 의식ㆍ태도ㆍ생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절차 및 결과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22. 12. 27.]

**제16조(청소년의 달)** 청소년의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주인의식을 드높이고 모든 국민이 청소년 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을 청소년의 달로 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 제3장 삭제 <2008. 2. 29.>

**제16조의2** 삭제 <2008. 2. 29.>

**제16조의3** 삭제 <2008. 2. 29.>

**제16조의4** 삭제 <2008. 2. 29.>

**제16조의5** 삭제 <2008. 2. 29.>

**제16조의6** 삭제 <2008. 2. 29.>

**제16조의7** 삭제 <2008. 2. 29.>

**제16조의8** 삭제 <2008. 2. 29.>

## 제4장 청소년시설

**제17조(청소년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 청소년복지에 제공되는 시설,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 · 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19조(청소년시설의 지도 · 감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의 적합성ㆍ공공성ㆍ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그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 제5장 청소년지도자

**제20조(청소년지도자의 양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지도자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 등에 관한 기본방향과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21조(청소년지도사)**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청소년지도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개정 2025. 10. 1.>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신설 2020. 5. 19.>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의 연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0. 5. 19., 2025. 10. 1.>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소년지도사가 될 수 없다.<개정 2015. 6. 22., 2020. 5. 19.>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삭제<2025. 4. 29.>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4의2.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의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⑤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응시할 수 없다.<신설 2020. 5. 19.>

⑥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검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단체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15. 2. 3., 2020. 5. 19., 2025. 10. 1.>

⑦ 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의 등급, 자격검정, 연수 및 자격증 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5. 2. 3., 2020. 5. 19.>

[전문개정 2014. 3. 24.]

**제21조의2(청소년지도사 자격의 취소)**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2020. 5. 19., 2025. 10. 1.>

1. 제21조제4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3.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경우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신설 2020. 5. 19., 2025. 10. 1.>

[전문개정 2014. 3. 24.]

**제21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자격검정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간 자격검정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15. 6. 22.]

**제22조(청소년상담사)**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개정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의 자격검정, 연수 및 결격사유 등에 관하여는 제21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을 준용한다.<개정 2015. 2. 3., 2015. 6. 22., 2020. 5. 19.>

[전문개정 2014. 3. 24.]

**제23조(청소년지도사 · 청소년상담사의 배치 등)** ① 청소년시설과 청소년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육성을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사나 청소년상담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청소년단체나 청소년시설에 배치된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보수가 제25조에 따른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5. 2. 3.>
[전문개정 2014. 3. 24.]

**제24조(청소년지도사 · 청소년상담사의 채용 등)** ①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청소년육성에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면 청소년지도사나 청소년상담사를 채용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채용된 청소년지도사나 청소년상담사의 보수 등 채용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24조의2(청소년지도사 · 청소년상담사의 보수교육)** ①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학교 등에서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는 자질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학교 등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 단체 및 학교 등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④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대상、기간、내용、방법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전문개정 2014. 3. 24.]

**제25조(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읍、면、동 또는 제26조에 따른 청소년육성 전담기구에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은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③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은 관할구역의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 등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26조(청소년육성 전담기구의 설치)** ① 청소년육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청소년육성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따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육성 전담기구의 사무 범위, 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27조(청소년지도위원)**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육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소년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신설 2020. 5. 19.>
③ 청소년지도위원이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위원 자격을 상실한다.<신설 2020. 5. 19.>
④ 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위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개정 2020. 5. 19.>
[전문개정 2014. 3. 24.]

## 제6장 청소년단체

**제28조(청소년단체의 역할)** ① 청소년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학교교육과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청소년활동을 통한 청소년의 기량과 품성 함양
2. 청소년복지 증진을 통한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
3.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보호 업무 수행
② 청소년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역할을 수행할 때에 청소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28조의2(청소년단체 임원의 결격사유)** ① 청소년단체의 임원은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의 임원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자, 관리인 또는 그 밖에 회칙으로 정한 임원으로 한다. <개정 2025. 10. 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소년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5. 6. 22., 2020. 5. 19., 2024. 3. 26.>
1. 제21조제4항 각 호(제4호의2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삭제<2015. 6. 22.>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임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28조의3(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단체의 임원에게 제28조의2제2항제3호에서 정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4. 17.]

**제29조(청소년단체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ㆍ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은 청소년단체의 청소년활동에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할 수 있다.
③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청소년단체의 시설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보조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30조(수익사업)** ① 청소년단체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육성과 관련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범위, 수익금의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31조** 삭제 <2010. 5. 17.>

**제32조** 삭제 <2010. 5. 17.>

**제33조** 삭제 <2010. 5. 17.>

**제34조** 삭제 <2010. 5. 17.>

**제35조** 삭제 <2010. 5. 17.>

**제36조** 삭제 <2010. 5. 17.>

**제37조** 삭제 <2010. 5. 17.>

**제38조** 삭제 <2010. 5. 17.>

**제39조** 삭제 <2010. 5. 17.>

**제40조(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①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기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1. 회원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협조ㆍ지원
2. 청소년지도자의 연수와 권익 증진
3. 청소년 관련 분야의 국제기구활동
4. 외국 청소년단체와의 교류 및 지원
5. 남ㆍ북청소년 및 해외교포청소년과의 교류ㆍ지원
6. 청소년활동에 관한 조사ㆍ연구ㆍ지원
7. 청소년 관련 도서 출판 및 정보 지원
8. 청소년육성을 위한 홍보 및 실천 운동
9. 제41조에 따른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에 대한 협조 및 지원
10. 그 밖에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국가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⑥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설립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발생한 수익은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의 운영 또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의 시설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⑦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의 운영과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⑧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제1항에 따른 활동의 일부를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41조(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① 특정지역을 활동 범위로 하는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의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42조** 삭제 <2012. 2. 1.>

**제42조의2** 삭제 <2012. 2. 1.>

**제42조의3** 삭제 <2012. 2. 1.>

**제42조의4** 삭제 <2012. 2. 1.>

**제42조의5** 삭제 <2012. 2. 1.>

**제43조** 삭제 <2012. 2. 1.>

**제44조** 삭제 <2012. 2. 1.>

**제45조** 삭제 <2010. 5. 17.>

**제46조** 삭제 <2012. 2. 1.>

**제46조의2** 삭제 <2012. 2. 1.>

## 제7장 청소년활동 및 청소년복지 등 <개정 2014. 3. 24.>

**제47조(청소년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48조(학교교육 등과의 연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과 학교교육ㆍ평생교육을 연계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48조의2(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의 정규교육으로 보호할 수 없는 시간 동안 청소년의 전인적(全人的) 성장ㆍ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

및 활동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적인 지원 방안 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49조(청소년복지의 향상)** ① 국가는 청소년들의 의식ㆍ태도ㆍ생활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복지향상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생활 보장, 직업재활훈련, 청소년활동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ㆍ사회적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50조** 삭제 <2012. 2. 1.>

**제51조(청소년 유익환경의 조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정보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게 유익한 매체물의 제작ㆍ보급 등을 장려하여야 하며 매체물의 제작ㆍ보급 등을 하는 자에게 그 제작ㆍ보급 등에 관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단지의 청소년시설 배치 등 청소년을 위한 사회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52조(청소년 유해환경의 규제)**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거나 고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폭력ㆍ학대ㆍ성매매 등 유해한 행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ㆍ구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ㆍ약물ㆍ업소ㆍ행위 등의 규제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52조의2(근로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신고의무)** ① 누구든지 청소년의 근로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청소년의 근로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

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상담전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3.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6. 12. 20.]

**제52조의3(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청소년의 부당처우에 대한 해결을 돕는 등 청소년의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5. 19.]

## 제8장 청소년육성기금

**제53조(기금의 설치 등)** ①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소년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개정 2025. 10. 1.>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선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1. 제40조에 따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2.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조에 따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4. 「국민체육진흥법」 제36조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④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5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4. 12. 23.>

1. 정부의 출연금
2.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4항제1호 및 「경륜·경정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
3.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출연하는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출연하는 자는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할 수 있다. 다만, 특정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을 용도로 지정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55조(기금의 사용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5. 2. 3.>

1. 청소년활동의 지원
2. 청소년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위한 지원
3. 청소년지도자의 양성을 위한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운영과 활동을 위한 지원
5. 청소년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6. 청소년보호를 위한 지원
7. 청소년정책의 수행 과정에 관한 과학적 연구의 지원
8. 기금 조성 사업을 위한 지원
9. 그 밖에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금의 관리기관(이하 "기금관리기관"이라 한다)의 기금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관리기관에 국유 또는 공유의 시설·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을 그 용도나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③ 기금관리기관은 청소년육성 또는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기금의 일부 또는 기금관리기관의 시설·물품 등 재산의 일부를 청소년단체의 기본재산에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④ 기금관리기관은 기금 조성의 전망을 고려하여 기금 사용을 조절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청소년육성을 위한 재원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56조(지방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 ① 시·도지사는 관할구역의 청소년활동 지원 등 청소년육성을 위한 사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청소년육성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용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 제9장 보칙

**제57조(국유·공유 재산의 대부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의 설치, 청소년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청소년시설이나 청소년단체에 국유·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ㆍ사용ㆍ수익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해당 재산을 사용ㆍ수익하려는 자와 해당 재산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이의 계약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58조(조세 감면 등)**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기관과 그 기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시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감면할 수 있다.

1. 제40조에 따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2. 제41조에 따른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3.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4.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0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6.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7. 그 밖의 청소년단체

②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재산 등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1. 제1항 각 호의 기관과 그 기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시설에 출연되거나 기부된 재산
2. 제54조에 따라 기금에 출연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③ 국가는 제1항 각 호의 기관과 그 기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활동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품 등에 대해서는 「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1. 실험ㆍ실습ㆍ시청각 기자재와 그 밖에 필요한 용품
2. 고도의 정밀성 등으로 수입이 불가피한 청소년 시설ㆍ설비

[전문개정 2014. 3. 24.]

**제59조(감독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청소년시설
2. 제40조에 따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3. 제41조에 따른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4. 그 밖의 청소년단체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60조(포상)** 정부는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다른 청소년에게 모범이 되는 자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6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가 아닌 자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62조(수수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5. 10. 1.>
1.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응시하거나 연수과정을 이수하는 사람
2.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응시하거나 연수과정을 이수하는 사람

②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및 위탁운영을 하는 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6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전문개정 2014. 3. 24.]

**제6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1조제6항(제2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위탁받은 자격검정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 5. 19.>
[본조신설 2015. 2. 3.]

## 제10장 벌칙

**제64조(벌칙)** 제30조에 따라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외의 수익사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64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1. 제21조제2항(제2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
2. 제5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본조신설 2016. 12. 20.]

**제6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5. 17.]

**제6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61조를 위반한 자

②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25. 10. 1.>

[전문개정 2014. 3. 24.]

**부칙** <제7162호,2004. 2. 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일전이라도 이를 할 수 있다.

**제2조** (한국청소년진흥센터의 설립준비)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제3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국청소년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라 한다)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준비위원회는 설립준비위원장(이하 "준비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설립준비위원(이하 "준비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③준비위원장과 준비위원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④준비위원회는 이 법 시행전까지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준비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진흥센터의 설립등기를 한 후 소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⑥준비위원장 및 준비위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지방청소년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지방청소년위원회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로 본다.

**제4조** (청소년기본계획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은 제1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으로 본다.

**제5조**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은 제17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청소년활동시설로 본다.

**제6조** (사단법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의 권리ㆍ의무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이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제4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를 받은 때에는 협의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중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④협의회는 설립등기일에 사단법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의 모든 권리ㆍ의무 및 재산을 승계한다.

⑤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의 임ㆍ직원은 협의회의 임ㆍ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부칙** <제7421호,2005. 3. 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 이내에 청소년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조직 폐지 및 신설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문화관광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청소년에 관한 사무는 청소년위원회가 승계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문화관광부 청소년국 소속 공무원은 청소년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위원회가 승계하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소관사무에 관한 문화관광부령은 청소년위원회규칙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3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제42조제2항, 제43조제2항 및 제72조제3항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청소년위원회"로 한다.

제39조제1항제6호, 제41조제1항제5호 및 제43조제3항ㆍ제4항중 "문화관광부장관이"를 각각 "청소년위원회가"로 한다.

제45조제1항ㆍ제2항 및 제13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문화관광부장관에게"를 각각 "청소년위원회에"로 한다.

제69조중 "문화관광부장관은"을 "청소년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4호ㆍ제2항, 제13조제1항 후단ㆍ제2항 각호외의 부분, 제17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1항, 제31조제2항제3호ㆍ제5호, 동조제3항 및 제68조 각호외의 부분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청소년위원회규칙"으로 한다.

②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중 “ 문화관광부령 ” 을 “ 청소년위원회규칙 ” 으로 한다.

③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 문화체육부장관은 ” 을 “ 청소년위원회는 ” 으로 하고, 제7조 및 제8조제1항중 “ 문화체육부장관에게 ” 를 각각 “ 청소년위원회에 ” 로 하며, 제8조제2항중 “ 문화체육부장관이 ” 를 “ 청소년위원회가 ” 로 하고, 제9조중 “ 문화체육부장관은 ” 을 “ 청소년위원회는 ” 으로 한다.

④스카우트활동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 문화체육부장관이 ” 를 “ 청소년위원회가 ” 로 하고, 제7조중 “ 문화체육부장관 ” 을 “ 청소년위원회 ” 로 하며, 제8조중 “ 문화체육부장관은 ” 을 “ 청소년위원회는 ” 으로 하고, 제9조중 “ 문화체육부장관이 ” 를 “ 청소년위원회가 ” 로, “ 문화체육부장관에게 ” 를 “ 청소년위원회에 ” 로 한다.

⑤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3항중 “ 청소년보호위원회 ” 를 각각 “ 청소년위원회 ” 로 한다.

⑥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중 “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 ” 을 “ 청소년위원회 위원장 ” 으로 한다.

⑦담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중 “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 을 “ 청소년위원회 위원장 ” 으로 하고, 제25조제4항중 “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 ” 을 “ 청소년위원회 위원장 ” 으로 한다.

⑧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9호중 “ 청소년보호위원회 ” 를 “ 청소년위원회 ” 로 한다.

⑨출판및인쇄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중 “ 청소년보호위원회 ” 를 “ 청소년위원회 ” 로 한다.

**제4조** (조직 폐지 및 신설에 따른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청소년에 관한 사무와 관련하여 “ 문화관광부 ” 또는 “ 문화관광부장관 ” 을 인용한 경우에는 “ 청소년위원회 ” 를, “ 문화관광부 소속 공무원 ” 을 인용한 경우에는 “ 청소년위원회 소속 공무원 ” 을, 청소년위원회가 승계하는 문화관광부장관 소관사무에 관한 “ 문화관광부령 ” 을 인용한 경우에는 “ 청소년위원회규칙 ” 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428호,2005. 3. 3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16>생략

<117>청소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제2호 및 제35조제6항제2호중 “ 파산자 ”를 각각 “ 파산선고를 받은 자 ”로 한다.

<118>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7796호,2005. 12. 29.>(국가공무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8>생략

<59>청소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2항제1호중 “ 3급 이상 공무원 ”을 “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으로 한다.

<60>내지 <68>생략

**부칙** <제7799호,2005. 1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조직명칭 변경에 따른 소관 사무 및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청소년위원회가 행한 사무와 이 법 시행당시 청소년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승계하고, 청소년위원회 위원 및 소속 공무원은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 및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6호, 제41조제1항제5호, 제42조2항, 제43조제2항 내지 제4항, 제45조제1항ㆍ제2항, 제69조, 제72조제3항중 “ 청소년위원회 ”를 각각 “ 국가청소년위원회 ”로 한다.

②청소년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ㆍ제4호ㆍ제5호, 제8조제1항 내지 제6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 제12조제1항 내지 제6항, 제2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2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6조제2항, 제33조의2제1항ㆍ제3항, 제42조제1항ㆍ제2항, 제43조제1항, 제46조, 제48조제1항 및 제4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중 “ 청소년위원회 ”를 각각 “ 국가청소년위원회 ”로 한다.

③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3항 중 “ 청소년위원회 ”를 각각 “ 국가청소년위원회 ”로 한다.

④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7조, 제8조제1항ㆍ제2항 및 제9조 중 “ 청소년위원회 ”를 각각 “ 국가청소년위원회 ”로 한다.

⑤스카우트활동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내지 제9조 중 " 청소년위원회 " 를 각각 " 국가청소년위원회 " 로 한다.

⑥담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및 제25조제4항 중 " 청소년위원회 " 를 각각 " 국가청소년위원회 " 로 한다.

⑦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9호 중 " 청소년위원회 " 를 " 국가청소년위원회 " 로 한다.

⑧출판및인쇄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 청소년위원회 " 를 " 국가청소년위원회 " 로 한다.

⑨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4호 중 " 청소년위원회 " 를 " 국가청소년위원회 " 로 한다.

⑩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 청소년위원회 " 를 " 국가청소년위원회 " 로 한다.

⑪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 제42조 및 제46조 " 를 " 제42조, 제46조 및 제46조의2 " 로 하고, 제17조 중 " 제46조 " 를 " 제46조 및 제46조의2 " 로 하며, 제13조제2항 및 제17조 중 " 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 및 지방청소년상담센터 " 를 각각 " 기관 " 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청소년위원회를 인용한 경우에는 국가청소년위원회를, 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을, 청소년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가청소년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342호,2007. 4. 11.>(경륜ㆍ경정법)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④(다른 법률의 개정) 청소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제2호 중 " 「경륜ㆍ경정법」 제15조제1항제1호 " 를 " 「경륜ㆍ경정법」 제18조제1항제1호 " 로 한다.

⑤생략

**부칙** <제8344호,2007. 4. 11.>(국민체육진흥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청소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3항 중 “ 제24조 ”를 “ 제36조 ”로 한다.

제54조제1항제2호 중 “ 제20조제3항제1호 ”를 “ 제22조제3항제1호 ”로 한다.

**제9조** 생략

**부칙** <제8432호,2007. 5. 1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청소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3항 중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청소년개발원(이하 "청소년개발원"이라 한다) ”을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하 "청소년정책연구원"이라 한다) ”으로 한다.

제58조제1항 내지 제3항 중 “ 청소년개발원 ”을 각각 “ 청소년정책연구원 ”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8852호,2008. 2. 29.>(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55> 까지 생략

<756> 청소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8까지)을 삭제한다.

제37조제1항 및 제2항 중 “ 국가청소년위원회에 ”를 각각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을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으로 한다.

제43조제2항 중 “ 국가청소년위원회 ”를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 국가청소년위원회가 ”를 각각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로 한다.

제53조제2항 중 “ 국가청소년위원회가 ”를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을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으로 한다.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청소년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를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로 한다.

제9조, 제31조제1항제4호, 제36조제1항, 제42조제1항제9호, 제44조제1항 및 제48조제2항 중 “ 국가청소년위원회가 ”를 각각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로 한다.

제34조제2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 국가청소년위원회 ”를 각각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으로 한다.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 제34조제2항 및 제63조 중 “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을 각각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 국가청소년위원회 ”를 “ 보건복지가족부 ”로 한다.
<75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932호,2010. 1. 18.>(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17> 까지 생략
<118> 청소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 제31조제1항제4호, 제34조제2항,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전단,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제9호, 제43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44조제1항, 제48조제2항, 제53조제2항ㆍ제3항, 제63조 및 제6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을 각각 “ 여성가족부장관 ”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 보건복지가족부 ”를 “ 여성가족부 ”로 한다.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보건복지가족부령 ”을 “ 여성가족부령 ”으로 한다.
<119>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298호,2010. 5. 1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58호,2011. 5. 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89호,2012. 2. 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2 및 제6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90호,2012. 2. 1.>(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청소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5까지, 제43조, 제44조, 제46조, 제46조의2 및 제5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중 "협의회·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상담원·제46조 및 제4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관·청소년정책연구원"을 각각 "협의회,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제29조·제30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정책연구원"으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협의회·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상담원·제46조 및 제46조의2에 따른 기관 등"을 "협의회·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등"으로 한다.

제61조 중 "상담원·협의회"를 "협의회"로, "한국청소년상담원·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를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제11835호,2013. 5. 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329호,2014. 1. 21.>(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청소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3항 중 "「청소년활동진흥법」"을 "「청소년활동 진흥법」"으로 한다.

⑨ 생략

**부칙** <제12535호,2014. 3.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21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

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2856호,2014. 12. 23.>(국민체육진흥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청소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제2호 중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3항제1호”를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4항제1호”로 한다.

**부칙** <제13180호,2015. 2.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은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으로 본다.

**부칙** <제13370호,2015. 6.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제4호의2(제2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3(제2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행하는 자격검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21조제3항제3호(제2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 자격의 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인 사람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21조의2(제2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066호,2016. 3. 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45호,2016. 12. 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39호,2017. 7. 26.>(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4>까지 생략

<205> 청소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제3호ㆍ제6호ㆍ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6. 행정안전부차관

11. 중소벤처기업부차관

12.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206>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208호,2017. 12. 1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92호,2018. 4.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금형의 분리 선고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28조의2제2항제3호에서 정한 죄를 저지른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986호,2018. 12. 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85호,2020. 5.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하는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청소년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및 자격상실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사유로 인하여 종전의 제2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130호,2022. 1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태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의2에 따라 실시한 실태조사는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실시한 실태조사로 본다.

**부칙** <제20420호,2024. 3.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소년단체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20953호,2025. 4. 29.>(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조항 정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조치 등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1065호,2025. 10. 1.>(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

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26>까지 생략

<427> 청소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5호ㆍ제16호,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제1항, 제15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1조제1항ㆍ제3항ㆍ제6항,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1조의3, 제22조제1항, 제24조의2제3항, 제28조의2제1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2항, 제53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 및 제66조제3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제10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정경제부차관

8. 산업통상부차관

11의2. 기획예산처차관

제15조의2제3항, 제24조의2제3항ㆍ제4항 및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428>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066호,2025. 10. 1.>(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3* 까지 생략

3( 청소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부위원장

4) 부터4#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601호,2026. 4.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4항제9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4항제1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로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로 본다.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타법개정]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02 - 2100 - 6238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청소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5. 1.>
[전문개정 2011. 11. 18.]

**제2조(청소년단체의 범위)**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법 제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5. 5. 1., 2025. 10. 1.>
[전문개정 2011. 11. 18.]

**제2조의2(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참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성별ㆍ연령ㆍ지역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② 참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참여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③ 참여위원회는 효율적인 정책 제안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참여위원회는 청소년 관련 정책에 관한 의견 제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 토론회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참여위원회가 청소년 관련 정책의 전문적ㆍ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자문할 수 있도록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6. 5.]

## 제2장 청소년정책의 총괄ㆍ조정 <개정 2015. 5. 1.>

**제3조(청소년정책위원회의 운영)**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청소년정책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5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평등가족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개정 2025. 10. 1.>
⑤ 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등의 직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련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5. 5. 1.]

**제3조의2(청소년위원의 위촉기준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0조제4항제16호에 따른 청소년위원(이하 이 조에서 "청소년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구에서 활동한 경험·실적 등에 관한 사항
   가. 청소년단체
   나.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
   다. 법 제12조에 따른 청소년특별회의
   라.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운영위원회
2.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과정에 참여한 경험·실적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청소년위원의 위촉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연령별 또는 지역별로 적정한 균형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위원을 위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청소년위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19. 6. 11.]

**제4조(청소년정책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청소년정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성평등가족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법 제10조제4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5. 10. 1.>
②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5. 5. 1.]

**제5조** 삭제 <2005. 4. 27.>

**제6조** 삭제 <2005. 4. 27.>

**제7조** 삭제 <2005. 4. 27.>

**제8조** 삭제 <2005. 4. 27.>

**제9조** 삭제 <2005. 4. 27.>

**제10조** 삭제 <2005. 4. 27.>

**제11조** 삭제 <2005. 4. 27.>

**제12조(청소년특별회의의 참석 대상)** ① 법 제12조에 따른 청소년특별회의(이하 "특별회의"라 한다)에 참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0. 1.>

1. 제13조에 따른 지역회의에서 추천하는 청소년
2.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청소년
3. 청소년 관련 단체ㆍ시설ㆍ학계의 관계자
4.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한 청소년
5.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참석 대상을 정할 때에는 성별ㆍ연령별ㆍ지역별로 각각 전체 청소년을 대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전문개정 2011. 11. 18.]

**제13조(운영방법 등)** 특별회의는 매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단위의 지역회의를 개최한 후에 전국 단위의 회의를 개최하며, 청소년 관련 토론회 및 문화예술행사 등과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18. 6. 5.>

[전문개정 2011. 11. 18.]

**제14조(의제의 통지)**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특별회의의 의제(議題)를 선정하여 해당 연도의 최종 회의 개최 1개월 전까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 10. 1.>

[전문개정 2011. 11. 18.]

**제15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특별회의의 의제 선정 및 연구 등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특별회의의 의제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의에 참석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전문개정 2011. 11. 18.]

**제1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 시행계획 ”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지침(이하 “ 시행계획 수립지침 ”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매년 12월 31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과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작성한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성평등가족부 소관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해당 연도 시행계획과 성평등가족부 소관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전문개정 2015. 5. 1.]

**제16조의2(청소년정책 분석ㆍ평가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청소년정책 분석ㆍ평가에 관한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1. 사업계획서
2. 청소년정책 분석ㆍ평가 관련 인력 및 시설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3. 청소년정책 분석ㆍ평가 수행 실적에 관한 서류(해당 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청소년정책 분석ㆍ평가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ㆍ시설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하고,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15. 5. 1.]

**제17조(청소년의 달 행사)**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른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청소년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1. 청소년의 문화ㆍ예술ㆍ수련ㆍ체육에 관한 행사
2. 청소년의 인권증진 및 육성 등에 관한 연구 발표 행사
3. 모범청소년, 청소년지도자 및 우수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포상
4. 대중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 행사
5. 그 밖에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범국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전문개정 2011. 11. 18.]

**제17조의2** 삭제 <2008. 2. 29.>

## 제3장 청소년지도자

**제18조(청소년지도자의 자질향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이 청소년업무에 관한 자질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청소년지도자의 자질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단체ㆍ기관 및 대학 등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지도자 연수과정의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 연수시간이 40시간 이상인 연수과정을 대상으로 한다.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전문개정 2011. 11. 18.]

**제19조(청소년지도사의 등급)** 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이하 "청소년지도사"라 한다)의 등급은 1급, 2급, 3급으로 구분한다.

[전문개정 2011. 11. 18.]

**제20조(청소년지도사의 자격검정)**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 2025. 10. 1.>

1.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조에 따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내용과 수탁기관을 고시하여야 한다.<신설 2015. 5. 1., 2025. 10. 1.>

③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자격 기준과 자격검정의 과목 및 방법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개정 2015. 5. 1.>

④ 별표 1의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자격 기준에서 2급 청소년지도사의 응시자격 기준 제1호 및 제3호와 3급 청소년지도사의 응시자격 기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등급의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필기시험을 면제한다.<개정 2015. 5. 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소년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검정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5. 5. 1., 2025. 10. 1.>

[전문개정 2011. 11. 18.]
[제목개정 2015. 5. 1.]

**제21조(청소년지도사 연수 및 자격증 발급)** ① 제20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의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에 대한 연수는 청소년지도사의 등급별 또는 대상 특성별로 나누어 실시한다. 다만, 등

급별 또는 대상 특성별 인원과 연수 내용 등을 고려하여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수는 30시간 이상으로 하며, 청소년지도사로서의 자질과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는 내용으로 실시한다.

③ 청소년지도사 연수 실시기관의 장은 연수의 기간ㆍ장소ㆍ내용ㆍ방법과 그 밖에 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연수 실시 40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 1. 29.>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수를 마친 사람에게 등급별로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발급한다.<개정 2025. 10. 1.>

⑤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조에 따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으로 한다.

⑥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5항에 따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연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전문개정 2011. 11. 18.]

**제22조(청소년상담사의 등급)** 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이하 "청소년상담사"라 한다)의 등급은 1급, 2급, 3급으로 구분한다.

[전문개정 2011. 11. 18.]

**제23조(청소년상담사의 자격검정)**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 2025. 10. 1.>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내용과 수탁기관을 고시하여야 한다.<신설 2015. 5. 1., 2025. 10. 1.>

③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자격 기준과 자격검정의 과목 및 방법은 각각 별표 3 및 별표 4와 같다.<개정 2015. 5. 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소년상담사의 등급별 자격검정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5. 5. 1., 2025. 10. 1.>

[전문개정 2011. 11. 18.]

**제24조(청소년상담사 연수 및 자격증 발급)** ① 제23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에 대한 연수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연수는 청소년상담사의 등급별로 나누어 실시한다. 다만, 등급별 대상 인원과 연수 내용 등을 고려하여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연수는 100시간 이상으로 하며, 연수 내용은 이론 강의와 실습 등으로 한다.

④ 청소년상담사 연수 실시기관의 장은 연수의 기간ㆍ장소ㆍ내용ㆍ방법ㆍ평가기준과 그 밖에 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연수 실시 40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 1. 29.>
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수를 마친 사람에게 등급별로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발급한다.<개정 2025. 10. 1.>
⑥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수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 위탁하여 실시한다.<개정 2012. 7. 31., 2025. 10. 1.>
⑦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항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 연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 7. 31., 2025. 10. 1.>
[전문개정 2011. 11. 18.]

**제25조(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의 배치 등)** ① 청소년시설과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가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의 배치대상 및 배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전문개정 2011. 11. 18.]

**제26조(청소년지도위원에 대한 지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에게 청소년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청소년지도위원이 그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및 연수기회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1. 18.]

## 제4장 청소년단체

**제27조(청소년단체에 대한 지원 및 보조의 범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2. 20.>
1.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관한 사업
2. 국내외 주요 청소년 관련 국제행사
3.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수련거리의 개발 및 보급
4. 청소년지도자의 연수 및 국제교류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소년단체의 육성 또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1. 11. 18.]

**제28조(수익사업의 범위 등)** ① 청소년단체는 설립ㆍ운영 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9.>
②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수익금은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1. 18.]

**제29조** 삭제 <2010. 8. 11.>

**제30조** 삭제 <2012. 7. 31.>

**제31조** 삭제 <2012. 7. 31.>

**제32조** 삭제 <2010. 8. 11.>

**제33조** 삭제 <2012. 7. 31.>

**제33조의2** 삭제 <2012. 7. 31.>

## 제4장의2 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 <신설 2011. 11. 18.>

**제33조의3(청소년 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계획의 수립)** ① 법 제48조의2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계획(이하 이 장에서 "방과후종합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5., 2025. 10. 1.>
② 방과후종합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방과 후 활동의 수요 및 현황 조사
2. 방과 후 교육 및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방과 후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전문인력의 선발 및 배치
4. 제33조의4에 따른 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사업의 운영 및 평가
5. 그 밖에 관할 구역의 학교와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는 기관 및 단체 등과의 연계 등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1. 11. 18.]

**제33조의4(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사업 실시)** ① 성평등가족부장관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는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사업(이하 이 장에서 "방과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방과후사업은 장애청소년과 다문화청소년 등 특별한 교육 및 활동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② 방과후사업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포함한다.
1. 청소년의 역량 개발 지원
2. 청소년의 기본학습 및 보충학습 지원
3.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방과 후 활동을 위한 급식, 시설 지원 및 상담
4.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방과 후 활동을 위한 학부모 교육,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는 기관 및 단체 등의 개발 및 연계

5. 그 밖에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
[본조신설 2011. 11. 18.]

**제33조의5(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센터의 설치 · 운영)** ① 성평등가족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 지원센터 ”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지원센터를 방과 후 사업운영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25. 10. 1.>
1. 방과후종합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 방과후사업의 운영 관리, 컨설팅 및 평가
3.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 지원을 위한 국내외 자료조사
4. 방과후사업의 업무 종사자를 위한 교육ㆍ연수(성평등가족부장관이 설치하는 지원센터만 해당한다)
5. 방과후사업의 운영모형 개발(성평등가족부장관이 설치하는 지원센터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본조신설 2011. 11. 18.]

## 제5장 청소년육성기금

**제34조(기금의 관리 · 운용)** ① 법 제53조에 따른 청소년육성기금(이하 “ 기금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25. 10. 1.>
1. 금융회사 등에의 예치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3. 청소년육성 등을 위한 사업에 대한 투자 및 융자
4. 그 밖에 기금 조성을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
②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③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④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청소년육성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1. 18.]

**제35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기금수입 담당 책임자와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

책임자를, 그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 담당 책임자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 책임자는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개정 2025. 10. 1.>
[전문개정 2011. 11. 18.]

**제36조(그 밖의 수입금)** 법 제54조제1항제5호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 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개정 2025. 10. 1.>
1.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2.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입금
[전문개정 2011. 11. 18.]

**제37조(기금의 용도)** 법 제55조제1항제9호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 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 10. 1.>
1. 청소년육성에 관한 홍보
2. 청소년의 포상 및 격려
3. 기금의 운용 및 관리
4.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청소년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1. 11. 18.]

## 제5장의2 보칙 <신설 2012. 1. 6.>

**제3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성평등가족부장관(제20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조에 따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 7. 31., 2015. 5. 1., 2025. 10. 1.>
1. 법 제5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 수렴에 관한 사무
2. 법 제12조에 따른 청소년특별회의 개최에 관한 사무
3. 법 제20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에 관한 사무
4. 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의 자격검정, 연수 및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의 자격검정, 연수 및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청소년단체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7. 법 제48조의2에 따른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 1. 6.]

**제37조의3(규제의 재검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20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의 자격검정
2.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연수 및 자격증 발급
3. 제24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연수 및 자격증 발급

[전문개정 2026. 3. 24.]

## 제6장 벌칙

**제3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2. 12. 20.>

[전문개정 2011. 11. 18.]

**부칙** <제18742호,2005. 3. 1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2항,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전문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육성위원회에 둔 전문위원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육성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으로 본다.

③(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관한 경과조치)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응시자격기준과 자격검정 및 방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의 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설립된 청소년수련시설 및 청소년단체는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제25조 및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배치기준에 따라 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⑤(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8811호,2005. 4. 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문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육성위원회에 둔 전문위원은 제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청소년정책 관계기관 협의회에 두는 전문위원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중 " 문화관광부장관 " 을 " 청소년위원회 " 로 한다.

제9조제4항, 제19조제2항, 제24조제5호 및 제33조제1항제8호중 " 문화관광부장관이 " 를 각각 " 청소년위원회가 " 로 한다.

제25조 각호외의 부분 및 제26조 각호외의 부분중 " 문화관광부장관에게 " 를 각각 " 청소년위원회에 " 로 한다.

제32조제3항중 " 문화관광부장관은 " 을 " 청소년위원회는 " 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제3항중 " 문화관광부장관과 " 를 각각 " 청소년위원회와 " 로 한다.

제5조, 제6조제5호,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제17조제4항, 제22조제2항, 제29조제2항제2호、제6호 후단、제7호 후단, 제30조제2항, 제33조제4항 및 제34조제4항중 " 문화관광부령 " 을 각각 " 청소년위원회규칙 " 으로 한다.

②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내지 제7항중 " 문화관광부장관 " 을 각각 " 청소년위원회 " 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중 " 문화관광부장관이 " 를 각각 " 청소년위원회가 " 로 한다.

제4조제2항중 " 문화관광부장관은 " 을 " 청소년위원회는 " 으로 한다.

제5조제8항, 제6조제1항제2호, 제7조제2항제2호, 제8조제3항, 제9조제6항, 제13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5항, 제20조제4항 및 제22조제4항중 " 문화관광부령 " 을 각각 " 청소년위원회규칙 " 으로 한다.

③청소년보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24조、제25조、제27조 및 제2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제1항、제2항、제3항 각호외의 부분、제4항, 제6조 각호외의 부분、제2항, 제8조제2항、제3항 전단、제4항 전단, 제10조, 제15조제4항 후단, 제18조제1항, 제32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제3항 및 제41조중 " 청소년보호위원회 " 를 각각 " 청소년위원회 " 로 한다.

④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제3항, 제4조 및 제5조제1항제1호、제2항중 " 청소년보호위원회 " 를 각각 " 청소년위원회 " 로 한다.

⑤출판및인쇄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중 " 청소년보호위원회 " 를 " 청소년위원회 " 로 한다.

⑥건강가정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 청소년보호위원회 " 를 " 청소년위원회 " 로 한다.

⑦아동복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7제3항제1호중 " 청소년보호위원회 " 를 " 청소년위원회 " 로 한다.

⑧학교보건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8호중 " 청소년보호위원회 " 를 " 청소년위원회 " 로 한다.

**부칙** <제18873호,2005. 6. 23.>(여성가족부 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3) 생략

3!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 여성부차관 " 을 " 여성가족부차관 " 으로 한다.

3@ 내지3% 생략

**부칙** <제19431호,2006. 3.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강가정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 청소년위원회 " 를 " 국가청소년위원회 " 로 한다.

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가목중 "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 을 "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 " 으로 한다.

③보안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중 "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 을 "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 " 으로 한다.

④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7제3항제1호중 " 청소년위원회 " 를 " 국가청소년위원회 " 로 한다.

⑤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중 " 청소년위원회 " 를 " 국가청소년위원회 " 로 한다.

⑥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중 " 청소년위원회 " 를 " 국가청소년위원회 " 로 한다.

⑦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3항 내지 제7항 및 제6조제2항중 " 청소년위원회 " 를 각각 " 국가청소년위원회 " 로 한다.

제5조제8항, 제6조제1항제2호, 제7조제2항제2호, 제8조제3항, 제9조제6항, 제13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5항, 제20조제4항 및 제22조제4항중 " 청소년위원회규칙 " 을 각각 " 국가청소년위원회규칙 " 으로 한다.

⑧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ㆍ제3항, 제4조,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항중 " 청소년위원회 " 를 각각 " 국가청소년위원회 " 로 한다.

⑨청소년위원회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1조, 제2조 및 별표의 제목중 “ 청소년위원회 ”를 각각 “ 국가청소년위원회 ”로 한다.

⑩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제19조제2항, 제24조제5호,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3항, 제33조제1항제8호 및 제34조제1항중 “ 청소년위원회 ”를 각각 “ 국가청소년위원회 ”로 한다.

제5조, 제6조제5호,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제17조제4항, 제22조제2항제2호, 제29조제2항제2호、제6호 단서、제7호 단서, 제30조제2항, 제33조제4항 및 제34조제4항중 “ 청소년위원회규칙 ”을 각각 “ 국가청소년위원회규칙 ”으로 한다.

⑪출판및인쇄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중 “ 청소년위원회 ”를 “ 국가청소년위원회 ”로 한다.

⑫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의 제목、제1항 본문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 청소년위원회 ”를 각각 “ 국가청소년위원회 ”로 한다.

**부칙** <제19513호,2006. 6. 12.>(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07>생략

<208>청소년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 관계중앙행정기관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을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3급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으로 한다.

제29조제2항제4호중 “ 3급 이상 공무원 ”을 “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으로 한다.

<209>내지 <241>생략

**부칙** <제20679호,2008. 2. 29.>(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6> 까지 생략

<67>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4조제1항제4호, 제36조제2호, 제37조제4호, 별표 1의 주 제1호 및 제3호 후단, 별표 2의 주, 별표 4의 주 중 “ 국가청소년위원회가 ”를 각각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 법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위원장이 ”를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로, “ 교육인적자원부、법무부、행정자치부、문화관광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노동부、여성가족부、기획예산처、경찰청 그 밖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3급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중에서 ”를 “ 기획재정부차관、교육과학기술부차관、법무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문화체육관광부차관、지식경제부차관、보건복지가족부차관、노동부차관、여성부차관、경찰청장과 그 밖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그 밖의 이에 상당하는 지위를 가진 자 중에서 ”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 국가청소년위원회 ”를 “ 보건복지가족부 ”로 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중 “ 국가청소년위원회가 ”를 각각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을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으로 한다.

제14조,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4항 및 제6항, 제35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중 “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을 각각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을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 국가청소년위원회에 ”를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로 한다.

제17조의2를 삭제한다.

제18조제2항 중 “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을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 총리령 ”을 “ 보건복지가족부령 ”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 국가청소년위원회가 ”를 각각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 총리령 ”을 “ 보건복지가족부령 ”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 국가청소년위원회가 ”를 각각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 총리령 ”을 “ 보건복지가족부령 ”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 총리령 ”을 “ 보건복지가족부령 ”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중 “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을 각각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2항 전단 및 제3항 단서 중 “ 국가청소년위원회 ”를 각각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 총리령 ”을 “ 보건복지가족부령 ”으로 한다.

별표 3의 1급 청소년상담사의 응시자격 기준란 제4호, 2급 청소년상담사의 응시자격 기준란 제4호, 3급 청소년상담사의 응시자격 기준란 제6호 중 “ 총리령 ”을 각각 “ 보건복지가족부령 ”으로 하고, 같은 별표 주 제1호 중 “ 국가청소년위원회가 ”를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로 한다.

<68> 부터 <80> 까지 생략

**부칙** <제20947호,2008. 7. 29.>(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8> 까지 생략

<99>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2호 중 “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 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 으로 한다.

<100>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 <제22076호,2010. 3. 15.>(여성가족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2) 까지 생략

2!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2항, 제12조제1항제4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14조,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2항, 제20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21조제4항ㆍ제6항, 제23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24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34조제1항제4호, 제35조제1항ㆍ제2항 전단, 제36조제2호, 제37조제4호 및 제38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단서 중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을 각각 “ 여성가족부장관 ” 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 보건복지가족부차관ㆍ노동부차관ㆍ여성부차관 ” 을 “ 보건복지부차관ㆍ노동부차관 ” 으로 한다.

제3조제6항 중 “ 보건복지가족부 ” 를 “ 여성가족부 ” 로 한다.

제18조제4항, 제20조제4항, 제23조제3항, 제24조제1항 및 제38조제4항 중 “ 보건복지가족부령 ” 을 각각 “ 여성가족부령 ” 으로 한다.

별표 1의 주 제1호 및 제3호 후단, 별표 2의 주, 별표 3의 주 제1호 및 별표 4의 주 중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을 각각 “ 여성가족부장관 ” 으로 한다.

별표 3의 1급 청소년상담사의 응시자격기준란 제4호, 2급 청소년상담사의 응시자격기준란 제4호 및 3급 청소년상담사의 응시자격기준란 제6호 중 “ 보건복지가족부령 ” 을 각각 “ 여성가족부령 ” 으로 한다.

2@ 부터2^ 까지 생략

**부칙** <제22269호,2010. 7. 12.>(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18> 까지 생략

<119>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 노동부차관 ” 을 “ 고용노동부차관 ” 으로 한다.

<120>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 <제22335호,2010. 8. 11.>

이 영은 2010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302호,2011. 11.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3488호,2012. 1. 6.>(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4002호,2012. 7. 31.>(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제24조제6항 중 "법 제4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원"을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으로 한다.

제24조제7항 중 "한국청소년상담원"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으로 한다.

제30조, 제31조, 제33조 및 제33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3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원"을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의 배치대상 청소년시설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배치대상 청소년시설 |
| --- |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시·군·구에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

④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4243호,2012. 12. 20.>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446호,2013. 3. 23.>(여성가족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행정안전부차관"을 "안전행정부차관"으로, "지식경제부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 한다.

⑪ 및 ⑫ 생략

**부칙** <제25050호,2013. 12. 30.>(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751호,2014. 11. 19.>(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5>까지 생략

<346>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 안전행정부차관 ”을 “ 행정자치부차관 ”으로 한다.

<347>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5840호,2014. 12. 9.>(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청소년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별표 6 제2호다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6223호,2015. 5.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3급 청소년상담사란 및 비고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소년상담사의 응시자격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2016년 7월 1일 전에 공고한 자격검정에 대해서는 별표 3의 3급 청소년상담사란 및 비고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7751호,2016. 12. 30.>(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8471호,2017. 12. 12.>(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3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8937호,2018. 6. 5.>

이 영은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845호,2019. 6.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소년상담사의 응시자격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에 공고하는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375호,2020. 1.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의 연수 실시 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 및 제2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도에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또는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 실시하는 연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5806호,2025. 10. 1.>(성평등가족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1* 까지 생략

1(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2조제1항 제4호ㆍ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14조,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1조제4항ㆍ제6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33조의3제1항, 제33조의4제1항 전단, 제33조의5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4호ㆍ제5호, 제34조제1항제4호, 제3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6조제2호, 제37조제4호, 제3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1 비고 제1호ㆍ제3호, 별표 2 비고, 별표 3 비고 제1호 및 별표 4 비고 중 “ 여성가족부장관 ”을 각각 “ 성평등가족부장관 ”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중 “ 여성가족부 ”를 “ 성평등가족부 ”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 여성가족부차관 ”을 “ 성평등가족부차관 ”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및 제4항 중 “ 여성가족부 소관 ”을 각각 “ 성평등가족부 소관 ”으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4항, 제20조제5항, 제23조제4항, 제24조제1항, 별표 3 1급 청소년상담사의 응시자격 기준란 제1호ㆍ제4호, 같은 표 2급 청소

년상담사의 응시자격 기준란 제4호 및 같은 표 3급 청소년상담사의 응시자격 기준란 제6호 중 “ 여성가족부령 ” 을 각각 “ 성평등가족부령 ” 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34050호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및 별표 2 비고 제1호ㆍ제3호 중 “ 여성가족부장관 ” 을 각각 “ 성평등가족부장관 ” 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34050호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9조제6항 중 “ 여성가족부령 ” 을 “ 성평등가족부령 ” 으로 한다.

2) 부터2$ 까지 생략

**부칙** <제36220호,2026. 3. 24.>(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10. 1.>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자격 기준(제20조제3항 관련)

| 등 급 | 응 시 자 격 기 준 |
|---|---|
| 1급 청소년지도사 |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 2급 청소년지도사 | 1. 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br>2.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별표 1의2에 따른 과목을 이수한 사람<br>3. 대학원의 학위과정 수료(예정)자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br>4.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별표 1의2에 따른 과목 중 필수영역 과목을 이수한 사람<br>5. 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br>6.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br>7.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br>8.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
| 3급 청소년지도사 | 1.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br>2.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전문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별표 1의2에 따른 과목을 이수한 사람 |

| | |
|---|---|
| | 3.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br>4.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비고

1.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의 인정 범위와 내용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2.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대학원에서 1급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을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는 각각 2년 또는 3년의 경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다.
3. 제18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자 연수 등 청소년육성 관련 연수 또는 교육을 받은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점수로 환산하여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수 및 교육을 받은 사람의 경력환산 점수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4. 고등학교, 대학, 전문대학 및 대학원이란 각각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4호에 따른 대학·전문대학,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을 말한다.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10. 1.>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자격 기준(제19조제2항 관련)

| 등급 | 응시자격 기준 |
|---|---|
| 1. 1급 청소년지도사 |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 2. 2급 청소년지도사 |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별표 2에 따른 2급 청소년지도사의 검정과목을 모두 이수한 사람<br>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으로서 별표 2에 따른 2급 청소년지도사의 검정과목을 모두 이수한 사람<br>다. 대통령령 제34050호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br>1)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의 경력만 해당한다) 이상인 사람<br>2) 별표 2 제2호자목에 따른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을 이수한 사람<br>라.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br>1) 별표 1의2에 따른 대학 또는 대학원의 필수영역의 이수과목을 모두 이수할 것<br>2) 별표 2 제2호자목에 따른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을 이수할 것<br>마.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요 |

| | |
|---|---|
| | 건을 모두 갖춘 사람<br>1) 별표 1의2에 따른 대학 또는 대학원의 이수과목을 모두 이수할 것<br>2) 별표 2 제2호자목에 따른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을 이수할 것<br>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br>1) 별표 1의2에 따른 전문대학의 이수과목을 모두 이수할 것<br>2) 별표 1의2에 따른 대학 또는 대학원의 이수과목 중 1과목을 추가로 이수하거나 별표 2 제2호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검정과목 중 1과목을 추가로 이수할 것<br>3) 별표 2 제2호자목에 따른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을 이수할 것 |

비고

1.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의 인정 범위와 내용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2.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대학원에서 1급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을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는 각각 2년 또는 3년의 경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다.
3. 제18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자 연수 등 청소년육성 관련 연수 또는 교육을 받은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점수로 환산하여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수 및 교육을 받은 사람의 경력환산 점수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4. 별표 1의2에 따른 이수과목 이수, 별표 2에 따른 2급 청소년지도사의 검정과목 이수 및 같은 표 제2호자목에 따른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이수는 대학원의 학위과정 수료, 대학·전문대학의 졸업 또는 학력 인정 전과 후의 이수를 모두 포함한다.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11.11.18>

##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 등을 졸업한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자격 인정에 필요한 과목(별표 1 관련)

| 구 분 | 영 역 | 이 수 과 목 |
|---|---|---|
| 2급 | 필수영역 | 청소년심리, 청소년문화, 청소년복지, 청소년 육성법규와 행정,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지도방법론 |
| | 선택영역 | 청소년정책론, 청소년문제, 청소년상담, 청소년교류, 청소년환경,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중 3과목 |
| | | 봉사활동, 야외활동, 레크리에이션활동, 스포츠활동, 문화예술활동, 인성계발활동, 과학정보활동, 환경보전활동, 국제교류활동, 상담지도, 청소년기관 행정 및 운영, 동아리활동, 특수청소년지도 중 1과목 |
| 3급 | 필수영역 |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심리, 청소년문화, 청소년정책론, 청소년지도방법, 청소년문제 |
| | 선택영역 | 봉사활동, 야외활동, 레크리에이션활동, 스포츠활동, 문화예술활동, 인성계발활동, 과학정보활동, 환경보전활동, 국제교류활동, 상담지도, 청소년기관 행정 및 운영, 동아리활동, 특수청소년지도 중 1과목 |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23. 12. 26.>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 등을 졸업한 사람의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자격 인정에 필요한 과목(별표 1 관련)

| 구분 | 영역 | 이수과목 |
|---|---|---|
| 1. 대학 또는 대학원 | 가. 필수영역 | 청소년심리, 청소년문화, 청소년복지, 청소년 육성법규와 행정,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지도방법론 |
| | 나. 선택영역 | 청소년정책론, 청소년문제, 청소년상담, 청소년교류, 청소년환경,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중 3과목 |
| | | 봉사활동, 야외활동, 레크리에이션활동, 스포츠활동, 문화예술활동, 인성계발활동, 과학정보활동, 환경보전활동, 국제교류활동, 상담지도, 청소년기관 행정 및 운영, 동아리활동, 특수청소년지도 중 1과목 |
| 2. 전문대학 | 가. 필수영역 |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심리, 청소년문화, 청소년정책론, 청소년지도방법, 청소년문제 |
| | 나. 선택영역 | 봉사활동, 야외활동, 레크리에이션활동, 스포츠활동, 문화예술활동, 인성계발활동, 과학정보활동, 환경보전활동, 국제교류활동, 상담지도, 청소년기관 행정 및 운영, 동아리활동, 특수청소년지도 중 1과목 |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5. 10. 1.>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과목 및 방법(제20조제3항 관련)

<table>
<tr><th>구 분</th><th>검 정 과 목</th><th colspan="2">검 정 방 법</th></tr>
<tr><td>1급</td><td>청소년연구방법론, 청소년 인권과 참여, 청소년정책론, 청소년기관 운영, 청소년지도자론</td><td colspan="2">주관식·객관식 필기시험</td></tr>
<tr><td>2급</td><td>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문화,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청소년문제와 보호</td><td>객관식 필 기 시 험</td><td>면 접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는 면접시험 면제)</td></tr>
<tr><td>3급</td><td>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활동,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문화,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문제와 보호,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td><td>객관식 필 기 시 험</td><td>면 접</td></tr>
</table>

비고: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과목과 관련된 전공과목의 인정 범위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5. 10. 1.>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등급별 과목 및 방법(제19조제3항 관련)

| 등급 | 검정과목 | 검정방법 |
|---|---|---|
| 1. 1급 청소년 지도사 | 가. 청소년연구방법론<br>나. 청소년 인권과 참여<br>다. 청소년정책론<br>라. 청소년기관 운영<br>마. 청소년지도자론 | 객관식 필기시험 |
| 2. 2급 청소년 지도사 | 가. 청소년육성제도론<br>나. 청소년지도방법론<br>다. 청소년심리 및 상담<br>라. 청소년문화<br>마. 청소년활동<br>바. 청소년복지<br>사.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br>아. 청소년문제와 보호<br>자.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 서류 심사 |

비고

1. 청소년지도사의 검정과목과 관련된 인정 범위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2급 청소년지도사의 검정과목을 이수하려면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검정과목당 3학점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의 학위과정 수료의 경우에는 검정과목당 2학점 이상을 각각 취득해야 한다.
3. 제2호자목의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시간은 130시간 이상으로 하며, 실습기관의 요건, 선정·취소의 기준 및 실습 운영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5. 10. 1.>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자격 기준(제23조제3항 관련)

| 등 급 | 응 시 자 격 기 준 |
|---|---|
| 1급 청소년상담사 | 1. 대학원에서 청소년(지도)학·교육학·심리학·사회사업(복지)학·정신의학·아동(복지)학·상담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br>2.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br>3. 2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br>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 2급 청소년상담사 | 1.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br>2.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br>3. 3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br>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 3급 청소년상담사 | 1.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상담관련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br>2.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분야 전문학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br>3.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br>4.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br>5.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br>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비고

1. 상담 실무경력의 인정 범위와 내용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2. 고등학교, 대학, 전문대학 및 대학원은 별표 1의 비고 제4호와 같다.
3. 응시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자격검정 공고에서 정하는 서류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5. 10. 1.>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의 과목 및 방법(제23조제3항 관련)

| 등 급 | 검 정 과 목 | | 검정방법 | |
|---|---|---|---|---|
| | 구분 | 과 목 | | |
| 1급 청소년상담사 | 필수 | ○ 상담사 교육 및 사례지도<br>○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br>○ 상담연구방법론의 실제 | 필기시험 | 면접 |
| | 선택 | 비행상담·성상담·약물상담·위기상담 중 2과목 | | |
| 2급 청소년상담사 | 필수 | ○ 청소년 상담의 이론과 실제<br>○ 상담연구방법론의 기초<br>○ 심리측정 평가의 활용<br>○ 이상심리 | 필기시험 | 면접 |
| | 선택 | 진로상담·집단상담·가족상담·학업상담 중 2과목 | | |
| 3급 청소년상담사 | 필수 | ○ 발달심리<br>○ 집단상담의 기초<br>○ 심리측정 및 평가<br>○ 상담이론<br>○ 학습이론 | 필기시험 | 면접 |
| | 선택 | 청소년이해론·청소년수련활동론 중 1과목 | | |

비고: "청소년 관련 법"이란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활동진흥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소년법」을 말하며, 그 밖의 법령을 포함하는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한다.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0. 1. 29.>

## 청소년지도사 · 청소년상담사의 배치대상 및 배치기준(제25조제2항 관련)

1. 청소년지도사의 배치기준

가. 청소년수련시설

| 배치대상 | 배 치 기 준 |
|---|---|
| 청 소 년 수 련 관 | 1급 또는 2급 청소년지도사 각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 4명 이상의 청소년지도사를 두되, 수용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명을 초과하는 250명당 1급, 2급 또는 3급 청소년지도사 중 1명 이상을 추가로 둔다. |
| 청 소 년 수 련 원 | 1) 1급 또는 2급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을 포함하여 2명 이상의 청소년지도사를 두되, 수용정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급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과 500명을 초과하는 250명당 1급, 2급 또는 3급 청소년지도사 중 1명 이상을 추가로 둔다.<br>2) 지방자치단체에서 폐교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특정 계절에만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
| 유스호스텔 | 청소년지도사를 1명 이상 두되, 숙박정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급 또는 2급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을 추가로 둔다. |
| 청 소 년 야 영 장 | 1) 청소년지도사를 1명 이상 둔다. 다만, 설치 · 운영자가 동일한 시 · 도 안에 다른 수련시설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야영장을 운영하는 경우로서 다른 수련시설에 청소년지도사를 둔 경우에는 그 청소년야영장에 청소년지도사를 별도로 두지 않을 수 있다.<br>2)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법인이 설치 · 운영하는 청소년야영장으로서 청소년수련거리의 실시 없이 이용 편의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
| 청 소 년 문화의집 | 청소년지도사를 1명 이상 둔다. |
| 청 소 년 특화시설 | 1급 또는 2급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을 포함하여 2명 이상의 청소년지도사를 둔다. |

비고: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을 말한다.

나. 청소년단체

| | |
|---|---|
| 청소년단체 | 청소년회원 수가 2천명 이하인 경우에는 1급 청소년지도사 또는 2급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을 두되, 청소년회원 수가 2천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2천명마다 1급 청소년지도사 또는 2급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을 추가로 두며, 청소년회원 수가 1만명 이상인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사의 5분의 1 이상은 1급 청소년지도사로 두어야 한다. |

2. 청소년상담사의 배치기준

| 배치대상 청소년시설 | 배치기준 |
|---|---|
| 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청소년상담사 3명 이상을 둔다. |
| 나.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시·군·구에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청소년상담사 1명 이상을 둔다. |
| 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 청소년상담사 1명 이상을 둔다. |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3. 12. 26.>

## 청소년지도사 · 청소년상담사의 배치대상 및 배치기준(제25조제2항 관련)

1. 청소년지도사의 배치기준

가. 청소년수련시설

| 배치대상 | 배 치 기 준 |
|---|---|
| 청 소 년 수 련 관 | 1급 또는 2급 청소년지도사 각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 4명 이상의 청소년지도사를 두되, 수용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명을 초과하는 250명당 1급 또는 2급 청소년지도사나 대통령령 제34050호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1명 이상을 추가로 둔다. |
| 청 소 년 수 련 원 | 1) 1급 또는 2급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을 포함하여 2명 이상의 청소년지도사를 두되, 수용정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급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과 500명을 초과하는 250명당 1급 또는 2급 청소년지도사나 대통령령 제34050호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1명 이상을 추가로 둔다.<br>2) 지방자치단체에서 폐교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특정 계절에만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
| 유스호스텔 | 청소년지도사를 1명 이상 두되, 숙박정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급 또는 2급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을 추가로 둔다. |
| 청 소 년 야 영 장 | 1) 청소년지도사를 1명 이상 둔다. 다만, 설치 · 운영자가 동일한 시 · 도 안에 다른 수련시설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야영장을 운영하는 경우로서 다른 수련시설에 청소년지도사를 둔 경우에는 그 청소년야영장에 청소년지도사를 별도로 두지 않을 수 있다.<br>2)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법인이 설치 · 운영하는 청소년야영장으로서 청소년수련거리의 실시 없이 이용 편의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
| 청 소 년 문화의집 | 청소년지도사를 1명 이상 둔다. |
| 청 소 년 | 1급 또는 2급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을 포함하여 2명 이상의 청소 |

| | |
|---|---|
| 특화시설 | 년지도사를 둔다. |

비고: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을 말한다.

나. 청소년단체

| | |
|---|---|
| 청소년단체 | 청소년회원 수가 2천명 이하인 경우에는 1급 청소년지도사 또는 2급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을 두되, 청소년회원 수가 2천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2천명마다 1급 청소년지도사 또는 2급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을 추가로 두며, 청소년회원 수가 1만명 이상인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사의 5분의 1 이상은 1급 청소년지도사로 두어야 한다. |

2. 청소년상담사의 배치기준

| 배치대상 청소년시설 | 배치기준 |
|---|---|
| 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청소년상담사 3명 이상을 둔다. |
| 나.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시·군·구에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청소년상담사 1명 이상을 둔다. |
| 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 청소년상담사 1명 이상을 둔다. |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14.12.9.>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제2호가목은 제외한다)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사항을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사회적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 | | 1차 위반 | 2차 이상 위반 |
| 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66조제2항 | 30 | 50 |
| 나. 법 제2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 법 제66조제2항 | 50 | 100 |
| 다.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6조제1항제1호 | 100 | 200 |
| 라.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66조제1항제1호 | 200 | 300 |
| 마. 법 제61조를 위반한 경우 | 법 제66조제1항제2호 | 150 | 300 |

#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0. 2.] [성평등가족부령 제2호, 2025. 10. 2., 일부개정]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02 - 2100 - 623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5. 4.>

**제1조의2(청소년정책 분석ㆍ평가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①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청소년정책 분석ㆍ평가 전문지원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청소년정책 분석ㆍ평가 전문지원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 5. 4.]

**제1조의3(실태조사)** ①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청소년의 의식ㆍ태도ㆍ생활 등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0. 1.>

1. 청소년의 의식 및 가치관 등에 관한 사항
2. 청소년의 진로 및 직업관 등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등에 관한 사항
4. 청소년의 가정 및 학교 생활 등에 관한 사항
5. 청소년의 사회ㆍ문화 활동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효율적인 청소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표본조사 방식으로 실시하되, 면접조사ㆍ설문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연구기관(「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포함한다),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결과를 여성가족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개정 2025. 10. 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23. 6. 28.]

**제2조(청소년지도자 연수과정 지원)** 영 제18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지도자 연수과정의 운영에 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소년관련 단체ㆍ기관 및 대학 등의 장은 연수개시 30일 전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4. 27., 2008. 3. 3., 2010. 3. 19., 2015. 5. 4., 2025. 10. 1.>

1. 연수목적 및 과목
2. 교과 과정표 및 그 설명서
3. 연수기간 및 장소
4. 연수인원 및 강사현황
5. 연수에 소요되는 경비에 관한 예산명세서
6. 그 밖에 연수에 관한 참고사항

**제3조(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원서)** ①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응시원서를 포함한다)에 응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4., 2019. 12. 26.>

②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응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경력증명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응시자의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신설 2019. 12. 26.>

**제4조(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실시 등)** ①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지도사의 수급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5. 4. 27., 2008. 3. 3., 2010. 3. 19., 2025. 10. 1.>

②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을 실시할 때에는 검정 실시 90일 전까지 자격검정의 일시ㆍ장소ㆍ검정과목ㆍ검정방법 및 그 밖에 자격검정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개정 2023. 12. 28.>

**제5조(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합격결정 등)** ①1급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은 필기시험에서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②2급ㆍ3급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은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1. 필기시험에서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2. 영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자
③제2항의 면접시험은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평가한다.
1. 청소년지도자로서의 가치관 및 정신자세
2.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3. 의사발표의 정확성 및 논리성
4. 청소년에 관한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5. 창의력ㆍ의지력 및 지도력
④필기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에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⑤ 삭제<2019. 12. 26.>

**제6조(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의 교부 등)** ①영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5. 5. 4.>
②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이하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청소년지도사자격증교부대장에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의 교부사실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개정 2010. 8. 17., 2015. 5. 4., 2023. 6. 28.>
③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의 장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그 자격증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0. 8. 17., 2015. 5. 4.>

**제6조의2(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세부 사항 고시)**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원서의 제출, 자격검정의 실시 방법ㆍ절차 및 자격검정의 시험방법ㆍ채점기준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19. 12. 26.]

**제7조(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응시자격의 기준)** 영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1급청소년상담사 응시자격기준 제1호에서 "성평등가족부령이 정하는 상담 관련분야"라 함은 상담의 이론과 실제(상담원리ㆍ상담기법), 면접원리, 발달이론, 집단상담, 심리측정 및 평가, 이상심리, 성격심리,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상담교육, 진로상담, 가족상담, 학업상담, 비행상담, 성상담, 청소년상담 또는 이와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중 4과목 이상을 교과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학문분야를 말한다. <개정 2005. 4. 27., 2008. 3. 3., 2010. 3. 19., 2025. 10. 1.>

**제8조(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응시원서)** ①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응시원서를 포함한다)에 응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기관

”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4., 2019. 12. 26.>

②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응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경력증명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응시자의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신설 2019. 12. 26.>

**제9조(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의 실시ㆍ합격결정 등)** ①제4조의 규정은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의 실시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청소년지도사”는 이를 “청소년상담사”로 본다.

②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은 필기시험에서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로서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③제2항의 면접시험은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평가한다.

1. 청소년상담자로서의 가치관 및 정신자세
2. 청소년상담을 위한 전문적 지식 및 수련의 정도
3.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4.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5. 창의력, 판단력 및 지도력

④필기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에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⑤ 삭제<2019. 12. 26.>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19. 12. 26.>]

**제9조의2(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세부 사항 고시)** 제8조 및 제9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응시원서의 제출, 자격검정의 실시 방법ㆍ절차 및 자격검정의 시험 방법ㆍ채점기준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19. 12. 26.]

**제10조(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의 교부 등)** ①영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5. 5. 4.>

②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이하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교부대장에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의 교부사실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 8. 17., 2015. 5. 4.>

③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의 장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그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0. 8. 17., 2015. 5. 4.>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9조로 이동 <2019. 12. 26.>]

**제10조의2(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등)**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사는 2년(직전의 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15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5. 4., 2016. 12. 27., 2025. 10. 1.>

1.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중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
2.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에 따른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및 같은 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사유가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 말까지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다음 연도에 보수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연기신청서에 연기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4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5. 4., 2025. 10. 1., 2025. 10. 2.>

1.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수행, 질병, 해외체류 또는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1의2.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한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 대상자가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제4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다음 연도의 보수교육 대상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을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조에 따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또는 청소년육성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단체(이하 "활동진흥원등"이라 한다)에 위탁한다.<개정 2015. 5. 4., 2025. 10. 1.>

⑤ 보수교육의 교육과목, 교육방법 및 그 밖에 보수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활동진흥원등의 장이 정한다.<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12. 12. 20.]

**제10조의3(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등)**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종사하는 청소년상담사는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10. 1.>

1.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중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
2.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하 "청소년상담원"이라 한다),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면제신청서에 면제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4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위탁받은 청소년상담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5. 4., 2025. 10. 1., 2025. 10. 2.>

1.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수행, 질병, 해외체류 또는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1의2.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한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 대상자가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제4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위탁받은 청소년상담원의 장에게 다음 연도의 보수교육 대상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을 청소년상담원에 위탁한다.<개정 2025. 10. 1.>

⑤ 보수교육의 교육과목, 교육방법 및 그 밖에 보수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청소년상담원의 장이 정한다.<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12. 12. 20.]

**제10조의4(보수교육 계획 및 실적보고 등)** ① 활동진흥원등의 장 및 청소년상담원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 보수교육 계획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보수교육 실적보고서를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② 활동진흥원등의 장 및 청소년상담원의 장은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이수증 및 별지 제14호서식의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이수증을 내주어야 한다.<개정 2015. 5. 4.>

[본조신설 2012. 12. 20.]

**제10조의5(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 활동진흥원등의 장 및 청소년상담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1. 보수교육 대상자 명단(대상자의 교육이수 여부가 명시되어야 한다)
2. 제10조의2제2항 및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에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의 명단
3. 그 밖에 이수자의 보수교육 이수ㆍ연기 또는 면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본조신설 2012. 12. 20.]

**제11조** 삭제 <2012. 8. 2.>

**제12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5. 5. 4.>

**제13조(수수료)** ①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자격검정 수수료는 실비 등을 고려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5. 4. 27., 2008. 3. 3., 2010. 3. 19., 2025. 10. 1.>

②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연수과정 수수료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실비 등을 고려하여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의 장 및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한다.<개정 2005. 4. 27., 2008. 3. 3., 2010. 3. 19., 2010. 8. 17., 2025. 10. 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 및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에 납부한다.

**제14조(규제의 재검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7., 2025. 10. 1.>

1. 제10조의2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등
2. 제10조의3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등

[본조신설 2014. 12. 12.]

**부칙** <제107호,2005. 3.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호,2005. 4. 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문연수 경력의 기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문화관광부가 지원한 전문연수과정을 수료한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청소년위원회가 지원한 전문연수과정을 수료한 자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호외의 부분, 제5조 각호외의 부분,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별표 1 제5호 다목, 별표 2 제4호 다목,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 내지 별지 제18호서식중 "청소년보호위원회"를 각각 "청소년위원회"로 한다.

**부칙** <제1호,2008. 3. 3.>(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3> 까지 생략

<84>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 청소년위원회에 "를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로 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 청소년위원회는 "을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으로 한다.

제5조제5항 중 " 청소년위원회가 "를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로 한다.

제7조 중 " 총리령 "을 " 보건복지가족부령 "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중 " 청소년위원회가 "를 각각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2쪽 응시자 참고사항 제1호 ⑬ 중 " 청소년위원회 "를 " 보건복지가족부 "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중 " 청소년위원회위원장 "을 각각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으로 한다.

<85> 부터 <94> 까지 생략

**부칙** <제84호,2008. 12. 31.>(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중 " 문화관광부장관 "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으로 한다.

⑥ 생략

**부칙** <제1호,2010. 3. 19.>(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단서, 제5조제5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중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을 각각 " 여성가족부장관 "으로 한다.

제7조 중 " 보건복지가족부령 "을 " 여성가족부령 "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2쪽 응시자 참고사항 제1호 ⑬ 중 " 보건복지가족부 "를 " 여성가족부 "로 한다.

⑫ 부터 ⑮ 까지 생략

**부칙** <제5호,2010. 8. 17.>

이 규칙은 2010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호,2012. 8. 2.>(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36호,2012. 12.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대상자 명단 제출에 관한 특례) 제10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대상자가 종사하는 기관의 장은 2013년 1월 31일까지 2013년도 보수교육 대상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61호,2014. 12. 12.>(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호,2015. 5. 4.>

이 규칙은 2015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호,2015. 10. 22.>(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호,2016. 12. 27.>(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호,2019. 12.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9호,2023. 6. 28.>
이 규칙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호,2023. 12. 28.>
이 규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2025. 10. 1.>(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1^ 까지 생략
1&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제1항제6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단서, 제6조의2, 제9조의2, 제10조의2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0조의3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0조의4제1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 여성가족부장관 ”을 각각 “ 성평등가족부장관 ”으로 한다.
제1조의3제4항 중 “ 여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 ”를 “ 성평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 ”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 제2쪽 응시자 참고사항란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 여성가족부 ”를 각각 “ 성평등가족부 ”로 한다.
제7조 중 “ 여성가족부령 ”을 “ 성평등가족부령 ”으로 한다.
1* 부터2@ 까지 생략

**부칙** <제2호,2025. 10.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지방청소년상담센터의 권장설치기준(제11조관련)

1. 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
   가. 전용면적 : 160제곱미터 이상
   나. 상담실·검사실 등 : 개인면접상담실 2개소 이상, 집단상담실 1개소 이상, 전화·사이버상담실 2개소 이상, 심리검사실 1개소 이상, 상담대기실 1개소 이상, 행정실 1개소를 각각 분리하여 설치(집단상담실과 심리검사실은 같이 사용 가능)
2. 지방청소년상담센터
   가. 전용면적 : 100제곱미터 이상
   나. 상담실·검사실 등 : 개인면접상담실 1개소 이상, 집단상담실 1개소 이상, 전화·사이버상담실 1개소 이상, 심리검사실 1개소 이상, 상담대기실 1개소 이상, 행정실 1개소를 각각 분리하여 설치(집단상담실과 심리검사실은 같이 사용 가능)

■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10. 1.>

# 청소년정책 분석·평가 전문지원기관 지정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V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60일 |
|---|---|---|

| | | | | |
|---|---|---|---|---|
| 신청인 | 기관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 | 소재지 | | 전화번호 | |
| | 대표자 | | 생년월일 | |

「청소년 기본법」 제1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청소년정책 분석·평가 전문지원기관의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평등가족부장관 귀하

| | |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br>2. 청소년정책 분석·평가 관련 인력 및 시설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br>3. 청소년정책 분석·평가 수행 실적에 관한 서류(해당 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 없음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검토 | → | 결재 | → | 지정서 발급 |
|---|---|---|---|---|---|---|---|---|
| 신청인 | | 처리기관 (성평등가족부) | | 처리기관 (성평등가족부) | | 처리기관 (성평등가족부) | | 처리기관 (성평등가족부) |

■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10. 1.>

제　　호

# 청소년정책 분석·평가 전문지원기관 지정서

명　　칭 : 청소년정책 분석·평가 전문지원기관

기 관 명 :

대 표 자 :

소 재 지 :

「청소년 기본법」 제1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위 기관을 청소년정책 분석·평가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성평등가족부장관　　직인

210㎜× 297㎜[백상지 150g/㎡]

■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10. 1.> (제1쪽)

#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원서

( 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응시하고자 다음 사항을 서약하고 이 원서를 제출합니다.
이 원서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합격 후에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때에는 합격 취소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응시자 (서명 또는 인)

**자격검정기관의 장** 귀하

| | | | | |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응시자가 적지 않습니다.<br>[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①응시 등급 | [ ] 1급 [ ] 2급 [ ] 3급 | |
| *응시번호 | | | ②성별 | [ ]남 [ ]여 | 사 진<br>3.5㎝×4.5㎝<br>(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뒷 그림 없이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
| ③성명 | 한글 | | ④생년월일 | (만 세) | |
| | 한자 | | ⑤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 |
| ⑥주소 | 자택[ ] | | 연락처 | 자택전화 | |
| | 직장[ ] | | | 직장전화 | |
| | | | | 휴대전화 | |
| | | | | e-mail | |
| ⑦현재 직장 | 명칭 | 직위 | ⑧최종학력 | | |
| ⑨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 | 2급 취득일자 | 3급 취득일자 | ⑩면접 재 응시[ ]<br>※ 면접 재 응시자는 ⑪~⑬, ⑮란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 ⑪응시학력 | 년 월 일 학교 과 [ ]졸업 [ ]예정 | | | | |

| | 종사 기간 (연월일) | 종사 시설명·단체명·기관명 | 종사 분야 | 종사 개월·일 | *환산점수 |
|---|---|---|---|---|---|
| ⑫청소년육성 업무 경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연수 기간 (연월일) | 연수 실시기관 | 연수 과목 | 연수 시간 | *환산점수 |
|---|---|---|---|---|---|
| ⑬전문연수 경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⑭응시수수료 반환 계좌번호 | 은행명 | 계좌번호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제2쪽)

| | 검정 과목명<br>(인정 과목명) | 이수(예정) 과목명 | 이수 구분명 | 시간제 여부 | 이수 여부 |
|---|---|---|---|---|---|
| ⑮검정 과목 이수<br>(예정) 확인 | 청소년육성제도론<br>(청소년육성법규와 행정 또는 청소년정책론) | | | | |
| | 청소년지도방법론 | | | | |
| | 청소년심리 및 상담<br>(청소년심리 또는 청소년상담) | | | | |
| | 청소년문화 | | | | |
| | 청소년활동<br>(청소년수련활동) | | | | |
| |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 | | | |
| | 청소년문제와 보호<br>(청소년문제) | | | | |
| | 청소년복지 | | | | |

| 담당 직원<br>확인사항 |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 사항 [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응시자가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응시자 참고사항

1. 원서기재요령
①응시 등급 : 1급 · 2급 · 3급 중 응시하고자 하는 급수에 √표를 합니다.
②성별 :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③성명 : 한글과 한자로 적습니다.
④생년월일 :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⑤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⑥주소 : 자택 및 직장에 해당되는 우편번호, 도로명, 건물번호, 동/층/호(법정동, 공동주택명), 전화번호를 적습니다(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주소란에 √표를 합니다).
⑦현재 직장 :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장명, 직위를 적습니다.
⑧최종학력 : 최종학력을 적습니다.
⑨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 :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 일자(교부 일자)를 적습니다.
⑩면접 재 응시 : 전년도 필기시험에 합격하였으나, 면접시험에서 불합격된 사람은 면접 재 응시란에 √표를 합니다.
⑪응시학력 : 응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학력사항을 적습니다(예 : 최종학력이 대학졸업이라도 대학재학 중 청소년수련시설에서 2년을 근무한 경우 응시학력은 고등학교졸업으로 적고, 고등학교졸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⑫청소년육성 업무 경력 및 종사 기간 : 경력증명서와 동일하게 적되, 날짜까지 정확히 적습니다(예 : 2003. 1. 1. ~ 2004. 1. 15.).
· 종사 시설명·단체명·기관명 : 청소년육성 업무 종사 시설·단체·기관 등의 이름을 적습니다.
· 종사 분야 : 청소년육성 업무 종사 분야를 적습니다.
· 종사 개월·일 : 종사 기간을 개월과 나머지 날짜까지 정확히 적습니다.
(예 : 종사 기간이 2003. 1. 1. ~ 2004. 1. 15.인 경우 12개월 15일로 적습니다)
※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급 청소년지도사 응시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표의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기준 제

(제3쪽)

#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수험표
## (필기/면접)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 |
|---|---|---|---|
| *응시번호 | | 응시등급 급 | 사 진<br>3.5㎝×4.5㎝<br>(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뒷 그림 없이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
| 성명 | 한글 | 성별<br>[ ] 남 [ ] 여 | |
| | 한자 | | |
| 주민등록번호 | | (만 세) | |

년 월 일

**자격검정기관의 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10. 1.> (3쪽 중 1쪽)

#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원서

( 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응시하고자 다음 사항을 서약하고 이 원서를 제출합니다.
이 원서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과 다름 없으며, 만일 시험합격 후에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때에는 합격취소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응시자 (서명 또는 인)

**자격검정기관의 장** 귀하

| | | | |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응시자가 적지 않습니다.<br>[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①응시등급 | [ ]1급 [ ]2급 | |
| •응시번호 | | ②성별 | [ ]남 [ ]여 | 사 진<br>3cm×4cm<br>(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뒷 그림 없이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
| ③성명 | 한글 | ④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 |
| | 한자 | | | |
| ⑤주소 | 자택[ ] | 연락처 | 자택전화 | |
| | 직장[ ] | | 직장전화 | |
| | | | 휴대전화 | |
| | | | e-mail | |
| ⑥현재 직장 | 명칭 | 직위 | ⑦최종학력 | |
| ⑧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 | 2급 취득일자 | | 3급 취득일자 | |
| ⑨2급 자격 기준 응시 학력 | 년 월 일 학교 과 [ ]졸업, [ ]학위취득 | | | |

| | 종사 기간 (연월일) | 종사 시설명·단체명·기관명 | 종사 분야 | 종사 개월·일 | •환산점수 |
|---|---|---|---|---|---|
| ⑩청소년육성 업무 경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연수 기간 (연월일) | 연수 실시기관 | 연수 과목 | 연수 시간 | •환산점수 |
|---|---|---|---|---|---|
| ⑪전문연수경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⑫응시수수료 반환 계좌번호 | 은행명 | 계좌번호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중 2쪽)

| | 검정과목명<br>(인정과목명) | 이수 과목명 | 이수 구분명 | 이수학점 |
|---|---|---|---|---|
| ⑬검정과목 이수 확인 | 청소년육성제도론<br>(청소년육성법규와 행정 또는 청소년정책론) | | | |
| | 청소년지도방법론 | | | |
| | 청소년심리 및 상담<br>(청소년심리 또는 청소년상담) | | | |
| | 청소년문화 | | | |
| | 청소년활동<br>(청소년수련활동) | | | |
| | 청소년복지 | | | |
| |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 | | |
| | 청소년문제와 보호<br>(청소년문제) | | | |
| |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 | | |

| 담당 직원 확인사항 |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 사항 중 [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응시자가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응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응시자 참고사항**

1. 원서기재요령
   ①응시 등급: 1급 · 2급 중 응시하려는 급수에 √표를 합니다.
   ②성별: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③성명: 한글과 한자로 적습니다.
   ④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⑤주소: 자택 및 직장에 해당되는 우편번호, 도로명, 건물번호, 동/층/호(법정동, 공동주택명), 전화번호를 적습니다(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주소란에 √표를 합니다).
   ⑥현재 직장: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장명, 직위를 적습니다.
   ⑦최종학력: 최종학력을 적습니다.
   ⑧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 일자(교부 일자)를 적습니다.
   ⑨2급 자격기준 응시 학력: 2급 자격증 응시자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학력사항을 적습니다
   ⑩청소년육성 업무 경력 및 종사 기간: 경력증명서와 동일하게 적되, 날짜까지 정확히 적습니다(예: 2003. 1. 1. ~ 2004. 1. 15.).
   · 종사 시설명 · 단체명 · 기관명: 청소년육성 업무 종사 시설 · 단체 · 기관 등의 이름을 적습니다.
   · 종사 분야: 청소년육성 업무 종사 분야를 적습니다.
   · 종사 개월 · 일: 종사 기간을 개월과 나머지 날짜까지 정확히 적습니다.
   (예 : 종사 기간이 2003. 1. 1. ~ 2004. 1. 15.인 경우 12개월 15일로 적습니다)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1급 청소년지도사 응시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취득일 이후의 경력사항만 적고, 같은 표 제2호의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기준 중 다목1)에 해당하는 사람은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취득일 이후의 경력사항만 적습니다.
   ⑪전문연수 경력: 성평등가족부 지원 청소년지도자 전문연수과정(2003년 7월 이후)을 수료한 것만 차례대로 적습니다.
   ⑫응시수수료 반환 계좌번호: 응시자격 부적격자의 응시수수료 반환을 위한 것으로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⑬검정과목 이수 확인
   · 이수 과목명: 검정과목명을 참고하여 본인이 이수한 과목명을 적습니다.
   · 이수 구분명: 성적증명서를 참고하여 이수한 과목의 이수 구분명을 적습니다(예: 전공필수, 전공선택, 복수전공 등).
   · 이수학점: 본인이 이수한 과목의 이수학점을 적습니다.
2. 각종 구비 서류: 별도 첨부
3. 접수된 자격검정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4.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중 3쪽)

#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수험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 |
|---|---|---|---|
| *응시번호 | | 응시등급 급 | 사 진<br>3cm×4cm<br>(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뒷 그림 없이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
| 성명 | 한글 | 성별<br>[ ] 남 [ ] 여 | |
| | 한자 | | |
| 생년월일 | | | |

년 월 일

자격검정기관의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10. 1.>

제　　호

#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1. 성　　명:　　(생년월일:　　)

2. 자격등급:　　급

3. 자격취득일:

「청소년 기본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지도사 자격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성평등가족부장관　직인

210㎜×297㎜[백상지(80g/㎡)]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5.5.4.>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교부대장

년도 급 청소년지도사

| 순번 | 자격번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교부 연월일 | 재교부 연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보존용지(1종) 120g/㎡)

■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5.10.22.>

#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재교부신청서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7일 |
|---|---|---|---|

| | | | | |
|---|---|---|---|---|
| 신청인 | 성명 | | | 생년월일 |
| | 전화번호 | | | |
| | 주소 | | | |
| 자 격 | 등급 | ( ) 급 청소년지도사 | | |
| | 번호 | 제 호 | 자격취득일 | |
| 사 유 | | | | |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의 장 귀하

| 첨부서류 | 청소년지도사 자격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 | | | | |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확인 및 검토 | → | 결재 | → | 재발급 처리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9. 12. 26.>

#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응시원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응시자가 기재하지 않습니다. (앞쪽)

| | | | |
|---|---|---|---|
| 응시번호 | ※ | ①응시등급 급 | 사 진 3.5㎝×4.5㎝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뒷 그림 없이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
| ③성명 | 한글 | ②현등급 급 | |
| | 한자 | ④성별 [ ]남 [ ]여 | |
| ⑤생년월일 년 월 일 (만 세) | | ⑥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 |

| | | | |
|---|---|---|---|
| ⑦주소 | 자택 (우 - ) | 전화번호 | 자택 ( ) - |
| | 직장 (우 - ) | | 직장 ( ) - |
| | | | 핸드폰 |
| ⑧현직장명 | | ⑨E-mail 주소 | |

| | |
|---|---|
| ⑩학력 | 년 월 고등학교 / 검정고시<br>년 월 대학교 과(졸업 · 수료 · 재학 · 휴학)<br>년 월 대학교 대학원 과 석사과정 학기(졸업 · 수료 · 재학 · 휴학)<br>년 월 대학교 대학원 과 박사과정 학기(졸업 · 수료 · 재학 · 휴학) |

| | | | |
|---|---|---|---|
| ⑪검정선택 과목 | 1급 | 2급 | 3급 |
| | | | |
| | | | |

| | | | | | |
|---|---|---|---|---|---|
| ⑫필기시험 합격연도 | | ⑬필기시험 면제 확인 | ※ | ⑭응시자격 확인 | ※ |

이 원서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 합격 후에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때에는 합격취소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응시자 (서명 또는 인)

자격검정기관의 장 귀하

| | |
|---|---|
| 첨부서류 | 1. 등급별 응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졸업(예정)증명서 1통(※ 다만,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상담 관련분야 전공자는 상담 관련 교과목이 4개 이상 개설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첨부하여야 합니다)<br>2. 상담실무경력 증빙서류 1통(해당자만 첨부합니다) |
| 담당 직원 확인사항 |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 사항 [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응시자가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재직기간 | | 소속 및 직위 | 담당 업무 내용<br>(간략히 기술) |
|---|---|---|---|---|
| ⑮상담 실무 경력 사항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 | |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 | |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 | |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 | |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 | |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 | |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 | |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 | | |
| | 총 년 개월 | | ※ 상담실무경력의 증빙은 별도 서식에 자세히 기록함 | |

| | | | | |
|---|---|---|---|---|
| ⑯응시수수료 반환 계좌번호 | 은행명 | | 계좌번호 | |

## 작 성 방 법

**1. 원서기재 요령**

①응시등급 : 응시하려는 등급을 적습니다.

②현등급 : 이미 취득한 청소년상담사 자격 등급을 적습니다.

③성명 : 한글 및 한자 성명을 적습니다.

④성별 :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⑤생년월일 :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⑥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⑦주소 : 한글로 우편번호, 도로명, 건물번호, 동/층/호(법정동, 공동주택명), 전화번호를 정확히 적습니다.

⑧현직장명 :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명을 적습니다.

⑨E-mail 주소 :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적습니다.

⑩학력 : 출신학교명과 학과 및 졸업 연월일을 기재하고 수학구분 중 해당하는 것에 √표를 합니다.

⑪검정선택과목 : 시험에 응시하려는 선택과목을 적습니다.

⑫필기시험 합격연도 : 해당 연도 이전에 자격검정 필기시험에는 합격하였으나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사람으로서 필기시험을 면제받으려는 경우에 적습니다.

⑮상담실무경력사항 : 상담실무경력을 적습니다(해당자만 적습니다).

⑯응시수수료 반환 계좌번호: 응시자격 부적격자의 응시수수료 반환을 위한 것으로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2.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벗은 상반신 사진(3.5㎝×4.5㎝)을 부착합니다.

**3. 유의사항**

①접수된 자격검정원서의 기재사항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②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5. 10. 1.>

제　　호

#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1. 성　　명:　　(생년월일:　　)

2. 자격등급:　　급

3. 자격취득일:

「청소년 기본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상담사 자격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성평등가족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 150g/㎡]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5.5.4.>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교부대장

자격등급 : 급청소년상담사 기관명 :

| 등록번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교부 연월일 | 재교부 연월일 | 담당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54g/㎡)

■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5. 10. 1.>

#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재교부신청서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7일 |
|---|---|---|---|

| | | | | |
|---|---|---|---|---|
| 신청인 | 성명 | | | 생년월일 |
| | 전화번호 | | | |
| | 주소 | | | |
| 자 격 | 등급 | (  ) 급 청소년상담사 | | |
| | 번호 | 제  호 | 자격취득일 | |
| 사 유 | | | | |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의 장 귀하

| 첨부서류 | 청소년상담사 자격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 | 접 수 | → | 확 인 | → | 발 급 | → | 자격증 교부 |
|---|---|---|---|---|---|---|---|---|
| 신청인 | | 연수기관 | | | | 성평등가족부 | | 연수기관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5.5.4.>

#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연기신청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7 일 |
|---|---|---|

| | | |
|---|---|---|
| 연기 신청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자격 등급 급 | 자격증 번호 제 - 호 |
| | 소속 기관 | 연락처 |
| | 기관 소재지 | |

연기 사유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년도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
(보수교육 실시기관의 장) 귀하

| | | |
|---|---|---|
| 첨부서류 | 연기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처 리 절 차

| 신청서 작성 | → | 접 수 | → | 검 토 | → | 결 재 | → | 통 보 |
|---|---|---|---|---|---|---|---|---|
| 신청인 | | 처리기관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또는 보수교육 실시기관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담당 부서) | | | |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5.5.4.>

#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면제신청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7 일 |
|---|---|---|

| | | |
|---|---|---|
| 면제 신청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자격 등급 급 | 자격증 번호 제 - 호 |
| | 소속 기관 | 연락처 |
| | 기관 소재지 | |

면제 사유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년도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장 귀하

| 첨부서류 | 면제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처 리 절 차

| 신청서 작성 | → | 접 수 | → | 검 토 | → | 결 재 | → | 통 보 |
|---|---|---|---|---|---|---|---|---|
| 신청인 | | 처리기관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담당 부서) | | | | | | |

210㎜× 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5.5.4.>

제　　호

#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이수증

1. 성　　명:

2. 생 년 월 일:

3. 소　　속:

4. 자 격 번 호:

5. 교 육 기 간:　년　월　일 ~　월　일(　)시간

위 사람은　　년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기에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의4제2항에 따라 이수증을 수여합니다.

년　　월　　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
(보수교육 실시기관의 장)　　직인

210㎜ × 297㎜[백상지(1종)120g/㎡]

■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5.5.4.>

제　　호

#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이수증

1. 성　　명:

2. 생 년 월 일:

3. 소　　속:

4. 자 격 번 호:

5. 교 육 기 간:　년　월　일 ~　월　일(　)시간

위 사람은　　년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기에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의4제2항에 따라 이수증을 수여합니다.

년　　월　　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장　직인

210㎜ × 297㎜[백상지(1종)120g/㎡]

■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9. 12. 26.>

(앞쪽)

제　　호

**검사 공무원증**

사　진
3.5㎝×4.5㎝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성명
기관명

60㎜×90㎜[백상지 150g/㎡]

(색상: 연하늘색)

(뒤쪽)

**검사 공무원증**

소속/직급:
성명:
생년월일:
유효기간:　　.　.　.부터　　.　.　.까지

위의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59조에 따른 검사 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명의 직인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이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59조에 따른 검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3.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 청소년 보호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77호, 2025. 12. 30., 일부개정]

성평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02 - 2100 - 6292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ㆍ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2., 2013. 6. 4., 2014. 3. 24., 2016. 1. 6., 2016. 12. 20., 2017. 12. 12., 2018. 12. 11., 2025. 4. 22., 2025. 10. 1.>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2. “매체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 및 비디오물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
   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
   라. 「공연법」에 따른 공연(국악공연은 제외한다)
   마.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정보
   바. 「방송법」에 따른 방송프로그램(보도 방송프로그램은 제외한다)
   사.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주로 정치ㆍ경제ㆍ사회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신문은 제외한다), 특수일간신문(경제ㆍ산업ㆍ과학ㆍ종교 분야는 제외한다), 일반주간신문(정치ㆍ경제 분야는 제외한다), 특수주간신문(경제ㆍ산업ㆍ과학ㆍ시사ㆍ종교 분야는 제외한다), 인터넷신문(주로 보도ㆍ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기사는 제외한다)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아.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정치ㆍ경제ㆍ사회ㆍ시사ㆍ산업ㆍ과학ㆍ종교 분야는 제외한다),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및 그 밖의 간행물
   자.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간행물, 전자출판물 및 외국간행물(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매체물은 제외한다)
   차.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과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매체물에 수록ㆍ게재ㆍ전시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포함된 상업적 광고선전물

카. 그 밖에 청소년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물

3.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제7조제1항 본문 및 제11조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나.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11조에 따라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심의하거나 확인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4. “청소년유해약물등”이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약물(이하 “청소년유해약물”이라 한다)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물건(이하 “청소년유해물건”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청소년유해약물

1) 「주세법」에 따른 주류

2)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4)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5) 그 밖에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할 수 있는 약물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약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어 제36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소년보호위원회”라 한다)가 결정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나. 청소년유해물건

1)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기구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성 관련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2) 청소년에게 음란성ㆍ포악성ㆍ잔인성ㆍ사행성 등을 조장하는 완구류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3) 청소년유해약물과 유사한 형태의 제품으로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청소년유해약물 이용습관을 심각하게 조장할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5.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업소(이하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가.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ㆍ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7) 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들 사이의 음성대화 또는 화상대화를 매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통신을 매개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8)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9)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ㆍ생산ㆍ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10)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11) 「경륜ㆍ경정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외매장

나. 청소년고용금지업소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소극장업

5)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 다만, 유해화학물질 사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6)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빌려 주는 만화대여업

7)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ㆍ생산ㆍ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6. “유통”이란 매체물 또는 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방송ㆍ공연ㆍ상영ㆍ전시ㆍ진열ㆍ광고하거나 시청 또는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와 이러한 목적으로 매체물 또는 약물 등을 인쇄ㆍ복제 또는 수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7. “ 청소년폭력ㆍ학대 ”란 폭력이나 학대를 통하여 청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8. “ 청소년유해환경 ”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 폭력ㆍ학대를 말한다.

**제3조(가정의 역할과 책임)** ① 청소년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 또는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사람(이하 “ 친권자등 ”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청소년유해환경에 접촉하거나 출입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청소년이 유해한 매체물 또는 유해한 약물 등을 이용하고 있거나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려고 하면 즉시 제지하여야 한다.

② 친권자등은 제1항에 따른 노력이나 제지를 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상담기관과 단체 등에 상담하여야 하고, 해당 청소년이 가출하거나 비행 등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지도ㆍ단속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4조(사회의 책임)** ① 누구든지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청소년이 청소년유해환경에 접할 수 없도록 하거나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할 것
2. 청소년이 유해한 매체물 또는 유해한 약물 등을 이용하고 있거나 청소년폭력ㆍ학대 등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이를 제지하고 선도할 것
3.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유해한 약물 등이 유통되고 있거나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이 고용되어 있거나 출입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 또는 청소년이 청소년폭력ㆍ학대 등의 피해를 입고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제21조제3항에 따른 관계기관등에 신고ㆍ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

② 매체물과 약물 등의 유통을 업으로 하거나 청소년유해업소의 경영을 업으로 하는 자와 이들로 구성된 단체 및 협회 등은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청소년유해약물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청소년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율적인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자ㆍ통신기술 및 의약품 등의 발달에 따라 등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들 매체물과 약물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사업의 지원, 국가 간의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유해환경 감시ㆍ고발 활동을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민간의 건의사항을 관련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규제할 때 그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청소년유해환경의 규제에 관한 형사처벌을 할 때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2장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 및 유통 규제

**제7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ㆍ결정)** 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한지를 심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매체물의 윤리성ㆍ건전성을 심의할 수 있는 기관(이하 "각 심의기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한지를 각 심의기관에서 심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청소년에게 유해한지를 심의하여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할 수 있다.

1. 각 심의기관이 심의를 요청한 매체물
2. 청소년에게 유해한지에 대하여 각 심의기관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유통되는 매체물

④ 청소년보호위원회나 각 심의기관은 매체물 심의 결과 그 매체물의 내용이 「형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유통이 금지되는 내용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기관에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각 심의기관별로 해당 법령에 따로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른다.

⑤ 청소년보호위원회나 각 심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매체물의 종류, 제목, 내용 등을 특정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할 수 있다.

1. 제작ㆍ발행의 목적 등에 비추어 청소년이 아닌 자를 상대로 제작ㆍ발행된 매체물
2. 매체물 각각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서는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을 차단할 수 없는 매체물

⑥ 청소년보호위원회 심의ㆍ결정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등급 구분 등)** ①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제7조에 따라 매체물을 심의ㆍ결정하는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ㆍ결정하지 아니한 매체물에 대하여는 그 매체물의 특성, 청소년 유해의 정도, 이용시간과 장소 등을 고려하여 이용 대상 청소년의 나이에 따른 등급을 구분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② 제1항에 따른 등급 구분의 종류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5. 6. 22.>

**제9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 ①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제7조에 따른 심의를 할 때 해당 매체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한다.

1.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2.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3.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 행위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4. 도박과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것
5.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沮害)하는 반사회적ㆍ비윤리적인 것
6. 그 밖에 청소년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때에는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에 따르며 그 매체물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ㆍ예술적ㆍ교육적ㆍ의학적ㆍ과학적 측면과 그 매체물의 특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③ 청소년 유해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심의 기준과 그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심의 결과의 조정)**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 보호와 관련하여 각 심의기관이 동일한 매체물을 심의한 결과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심의 결과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각 심의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자율 규제)** ① 매체물의 제작자ㆍ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는 자율적으로 청소년 유해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한 내용의 확인을 청소년보호위원회나 각 심의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요청을 받은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은 심의 결과 그 결정 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청소년보호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이를 각 심의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나 각 심의기관이 확인을 한 경우에는 해당 매체물에 확인 표시를 부착할 수 있다.

④ 매체물의 제작자ㆍ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는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하는 매체물에 대하여 제13조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에 준하는 표시를 하거나 제14조에 따른 포장에 준하는 포장을 하여야 한다.

⑤ 청소년보호위원회나 각 심의기관은 제4항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한 매체물을 발견한 경우 청소년 유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매체물의 제작자ㆍ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가 제4항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한 매체물은 청소년보호위원회나 각 심의기관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이 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본다.

⑦ 정부는 자율 규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체물의 제작자ㆍ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에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 기준 등에 관한 교육 및 관련 정보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청소년 유해 여부의 결정과 확인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재심의)** ① 매체물의 제작자ㆍ발행자나 유통행위자는 제7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심의ㆍ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의ㆍ결정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는 제7조에 따른 심의ㆍ결정의 효력 및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고시 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③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ㆍ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재심의 결정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2. 1. 17.>

④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 및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제13조(청소년유해표시 의무)**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청소년유해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할 자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 3. 22.>

1.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인 경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라목에 따른 영화상영업자
2.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인 경우: 해당 비디오물을 제작ㆍ수입ㆍ복제한 자 또는 제공하는 자
3.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인 경우: 해당 게임물을 제작ㆍ수입ㆍ복제한 자 또는 제공하는 자
4.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인 경우: 해당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을 제작ㆍ수입ㆍ복제한 자 또는 제공하는 자
5.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공연법」에 따른 공연(국악공연은 제외한다)인 경우: 「공연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연자 중 공연을 주재(主宰)하는 자
6.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 정보인 경우: 해당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 정보를 제공하는 자
7. 청소년유해매체물이 「방송법」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인 경우: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8.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인터넷신문인 경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발행인

9.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기타간행물인 경우: 해당 잡지,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기타간행물을 제작ㆍ수입ㆍ발행한 자 또는 제공하는 자
10.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간행물, 전자출판물, 외국간행물인 경우: 해당 간행물, 전자출판물, 외국간행물을 제작ㆍ수입ㆍ발행한 자 또는 제공하는 자
11.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광고선전물 중 간행물에 포함된 것인 경우: 해당 간행물의 표시의무자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의 종류와 시기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2.>

**제14조(포장 의무)** ① 청소년유해매체물은 포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체물의 특성으로 인하여 포장할 수 없는 것은 포장에 준하는 보호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장을 하여야 할 매체물의 종류, 포장에 준하는 보호조치, 포장의무자, 포장방법, 그 밖에 포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표시ㆍ포장의 훼손 금지)** 누구든지 제13조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와 제14조에 따른 포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판매 금지 등)** ①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시청ㆍ관람ㆍ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청소년에게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시청ㆍ관람ㆍ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할 매체물은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지 아니한 상태로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거나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4조에 따라 포장을 하여야 할 매체물은 포장을 하지 아니한 상태로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거나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의 확인방법, 그 밖에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 금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구분ㆍ격리 등)** ①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ㆍ격리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거나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사목부터 자목까지에 해당하는 매체물은 자동기계장치 또는 무인판매장치를 통하여 유통시킬 목적으로 전시하거나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자동기계장치나 무인판매장치를 설치하는 자가 이를 이용하는 청소년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구입 행위 등을 제지할 수 있는 경우
2.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안에 설치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분ㆍ격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방송시간 제한)**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2조제2호바목에 해당하는 매체물과 같은 호 차목ㆍ카목에 해당하는 매체물 중 방송을 이용하는 매체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에는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광고선전 제한)** ①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2조제2호차목에 해당하는 매체물 중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ㆍ부착 또는 배포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업적 광고선전물을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기능이 없는 컴퓨터 통신을 통하여 설치ㆍ부착 또는 배포하여서도 아니 된다. <개정 2016. 1. 6.>

1.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외의 업소
2.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

②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2조제2호차목에 해당하는 매체물(「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은 제외한다)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시청ㆍ관람 또는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 1. 6.>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광고선전의 제한 방법과 제한 장소, 그 밖에 광고 제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 취소)**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이 더 이상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1조(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등의 통보ㆍ고시)** ① 각 심의기관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 확인 또는 결정 취소를 한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목록과 그 사유를 청소년보호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이 결정, 확인 또는 결정 취소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목록과 그 사유 및 효력 발생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힌 목록표(이하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라 한다)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를 각 심의기관, 청소년 또는 매체물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지도ㆍ단속 기관, 그 밖에 청소년 보호를 위한 관련 단체 등(이하 "관계기관등"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매체물의 유통을 업으로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통보할 수 있으며, 친권자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친권자등에게 통지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의 고시 및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제22조(외국 매체물에 대한 특례)** 누구든지 외국에서 제작ㆍ발행된 매체물로서 제9조의 심의기준에 해당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번역, 번안, 편집, 자막삽입 등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통하게 하거나 이와 같은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정보통신망을 통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자 등의 공표)**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ㆍ발행하거나 유통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제작자ㆍ발행자나 유통행위자 등의 업체명ㆍ대표자명ㆍ위반행위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1.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에게 제공한 경우
2.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를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한 경우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표하기 전에 정보 공표 대상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제1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장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ㆍ과몰입 예방 <개정 2021. 12. 7.>

**제24조(인터넷게임 이용자의 친권자등의 동의)**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게임물(이하 “인터넷게임”이라 한다)의 제공자(「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한 자를 말하며, 같은 조 제1항 후단 및 제4항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이 16세 미만의 청소년일 경우에는 친권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친권자등의 동의에 필요한 사항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5조(인터넷게임 제공자의 고지 의무)** ① 인터넷게임의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 회원가입자의 친권자등에게 해당 청소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제공되는 게임의 특성ㆍ등급(「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게임물의 등급을 말한다)ㆍ유료화정책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삭제<2021. 12. 7.>
3. 인터넷게임 이용 등에 따른 결제정보

② 제1항에 따른 고지에 필요한 사항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6조** 삭제 <2021. 12. 7.>

**제27조(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등의 예방 및 피해 청소년 지원)**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인터넷게임의 지나친 이용으로 인하여 인터넷게임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 손상을 입은 것을 말한다) 등 매체물의 오용·남용을 예방하고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피해를 입은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 상담·교육 및 치료와 재활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7.,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1. 12. 7.]

## 제4장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행위 및 청소년유해업소 등의 규제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권유·유인·강요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매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8. 12. 11.>

④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8. 1. 16., 2018. 12. 11.>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소년유해약물 중 주류나 담배(이하 "주류등"이라 한다)를 판매·대여·배포하는 경우 그 업소(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를 포함한다)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등의 판매·대여·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는 제외한다.<신설 2014. 3. 24., 2018. 12. 11., 2020. 12. 29.>

1.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류소매업의 영업자
2.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소매업의 영업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의 영업자

⑥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유해약물등 목록표를 작성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과 관련이 있는 관계기관등에 통보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약물 유통을 업으로 하는 개인·법인·단체에 통보할 수 있으며, 친권자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친권자등에게 통지할 수 있다.<개정 2014. 3. 24., 2018. 12. 11., 2025. 10. 1.>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에 대하여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2., 2014. 3. 24., 2018. 12. 11.>

1. 청소년유해약물을 제조·수입한 자

2.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작ㆍ수입한 자

⑧ 제6항에 따른 청소년유해약물등 목록표의 작성 방법, 통보 시기, 통보 대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4. 3. 24., 2018. 12. 11., 2025. 10. 1.>

⑨ 제5항에 따른 표시의 문구, 크기와 제7항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의 종류와 시기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3. 3. 22., 2014. 3. 24., 2018. 12. 11.>

⑩ 청소년유해약물등의 포장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매체물"은 각각 "청소년유해약물등"으로 본다.<신설 2013. 3. 22., 2014. 3. 24., 2018. 12. 11.>

**제29조(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 ①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조제5호나목2)의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주는 종사자를 배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등을 갖추어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제30조제8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신설 2016. 12. 20.>

④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나이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이나 그 밖에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이하 이 항에서 "증표"라 한다)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증표 제시를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그 업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0., 2023. 12. 26.>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 친권자등을 동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의 경우에는 출입할 수 없다.<개정 2016. 12. 20.>

⑥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그 업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20.>

**제30조(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
2.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
3.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4.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나 기형 등의 모습을 일반인들에게 관람시키는 행위
5.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6.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7.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8.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9. 주로 차 종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제31조(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구역의 지정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청소년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을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2.>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 범죄 또는 탈선의 예방 등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을 정하여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구역에 청소년이 통행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통행제한구역의 구체적인 지정기준과 선도 및 단속 방법 등은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 및 학교 등 해당 지역의 관계 기관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은 청소년이 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통행제한구역을 통행하려고 할 때에는 통행을 막을 수 있으며, 통행하고 있는 청소년은 해당 구역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다.

**제32조(청소년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효력 제한)** ① 제30조에 따른 행위를 한 자가 그 행위와 관련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로 한다.

② 제2조제5호가목3) 및 나목3)에 따른 업소의 업주가 고용과 관련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로 한다.

## 제5장 청소년 보호 사업의 추진

**제33조(청소년보호종합대책의 수립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이하 이 조에서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종합대책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관계 기관 점검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종합대책 수립 및 제2항에 따른 점검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5. 10. 1.>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종합대책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접촉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력하여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 및 단속 등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⑤ 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과 제2항에 따른 점검회의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와 청소년의 매체물 오용ㆍ남용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해소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1. 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2. 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와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3. 청소년의 매체물 이용과 관련한 상담 및 안내
4. 매체물 오용ㆍ남용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 대한 전문적 상담과 치료 등
5. 청소년유해약물 피해 예방 및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 대한 치료와 재활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제34조의2(환각물질 중독치료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독정신의학 또는 청소년정신의학 전문의 등의 인력과 관련 장비를 갖춘 시설 또는 기관을 청소년 환각물질 중독 전문 치료기관(이하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별 검사, 치료와 재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1. 환각물질 흡입 청소년의 중독 여부 판별 검사
2. 환각물질 중독으로 판명된 청소년에 대한 치료와 재활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환각물질 흡입 청소년에 대하여 본인, 친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신청, 「소년법」에 따른 법원의 보호처분결정 또는 검사의 조건부기소유예처분 등이 있는 경우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에서 중독 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검사를 받도록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한다.<개정 2025. 10. 1.>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환각물질 중독자로 판명된 청소년에 대하여 본인, 친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신청, 「소년법」에 따른 법원의 보호처분결정 또는 검사의 조건부기소유예처분 등이 있는 경우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에서 치료와 재활을 받도록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치료 및 재활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되,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결정을 하는 경우에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자문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⑤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의 지정ㆍ운영, 중독 판별 검사 및 치료와 재활, 친권자 등의 신청 및 자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5. 28.]

**제35조(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피해 청소년의 치료와 재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이하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③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장 청소년보호위원회

**제36조(청소년보호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10. 1.>
1.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 등의 심의ㆍ결정 등에 관한 사항
2. 제54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3.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가 심의ㆍ결정하도록 정한 사항

**제3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명하는 청소년 업무 담당 공무원 1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5. 10. 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 관련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25. 10. 1.>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청소년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

3.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청소년 관련 업무에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4. 청소년 시설ㆍ단체 및 각급 교육기관 등에서 청소년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

**제38조(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 12. 18.>
②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이고 재임 중인 위원의 수가 8명 이상인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3. 3. 22.>

**제40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41조(회의 및 운영)**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의2(유해매체물 심의 분과위원회)**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ㆍ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해매체물 심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1. 17.]

## 제7장 보칙

**제42조(보고 등)**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의 이행 및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유통하는 자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

한 보고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제43조(검사 및 조사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의 이행 및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의 유통과 청소년의 청소년유해업소 고용 및 출입 등에 관련된 장부, 서류, 장소,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ㆍ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당사자ㆍ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듣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별한 학식ㆍ경험이 있는 자에게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44조(수거ㆍ파기)**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소유자나 유통에 종사하는 자에게 그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의 수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2., 2014. 3. 24., 2018. 12. 11., 2025. 10. 1.>

1. 제13조제1항 및 제28조제7항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제14조(제28조제10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포장되지 아니하고 유통되고 있는 경우
2. 청소년에게 유해한지에 대하여 각 심의기관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유통되고 있는 매체물로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경우

②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거명령을 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수거명령을 받은 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직접 수거하거나 파기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③ 성평등가족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은 청소년이 소유하거나 소지하는 청소년유해약물등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수거하여 폐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④ 성평등가족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은 제3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품명ㆍ수량ㆍ소유자 또는 소지자 및 그 처분 내용 등을 관계 장부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수거ㆍ파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시정명령)**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2., 2014. 3. 24., 2016. 1. 6., 2016. 12. 20., 2018. 12. 11., 2025. 10. 1.>

1. 제13조제1항 및 제28조제7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에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28조제10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포장하지 아니한 자
3. 영리를 목적으로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거나 진열한 자
4. 영리를 목적으로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포장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거나 진열한 자
5. 영리를 목적으로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구분ㆍ격리하지 아니하고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거나 진열한 자
6. 영리를 목적으로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사목부터 자목까지에 해당하는 매체물을 자동기계장치나 무인판매장치를 통하여 유통시킬 목적으로 전시하거나 진열한 자
7.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2조제2호차목에 해당하는 매체물 중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외의 업소나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ㆍ부착 또는 배포한 자 또는 상업적 광고선전물을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기능이 없는 컴퓨터 통신을 통하여 설치ㆍ부착 또는 배포한 자

7의2. 제28조제5항을 위반하여 주류등의 판매ㆍ대여ㆍ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8. 제29조제6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종류ㆍ절차 및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처분의 이유 명시)**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4조와 제45조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25. 10. 1.>

**제47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 10. 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제48조(민간단체에 대한 행정적 지원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소년유해환경 개선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활동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민간단체의 구체적인 종류 등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제49조(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
2.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에 청소년이 고용되어 있거나 출입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
3. 그 밖에 이 법을 위반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신고자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제49조의2(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한 협조)** 제16조, 제28조 또는 제29조에 따라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 등을 요청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4. 22.]

**제50조(선도ㆍ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의 통보)**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은 제16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위반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게 하거나 나이를 속이는 등 그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에 대하여는 친권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5. 10. 1., 2025. 12. 30.>

② 성평등가족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은 제1항의 청소년 중 그 내용ㆍ정도 등을 고려하여 선도ㆍ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에 대하여는 소속 학교의 장(학생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친권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제51조(지방청소년사무소의 설치 등)**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그 관할 구역의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청소년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2.>

**제52조(권한의 위탁)**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 보호, 매체물 또는 약물 등과 관련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제5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4조(과징금)**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조제2호사목ㆍ아목에 따른 매체물을 발행하거나 수입한 자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심의 기준에 저촉되는 매체물을 제13조 및 제14조에 준하는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ㆍ고시 전에 유통

하였거나 유통 중일 때에는 그 매체물을 발행하거나 수입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8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5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영업허가 취소,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8조제1호·제3호·제4호·제5호(제30조제8호를 위반하는 행위에 한정한다) 또는 제59조제6호·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하여 그 행위자로 하여금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한 사정 또는 행위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하게 한 사정이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6. 3. 2., 2025. 4. 22.>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3. 8. 6., 2016. 3. 2., 2020. 3. 24., 2025. 10. 1.>

⑤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 3. 26., 2025. 10. 1.>

⑥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징수 주체가 사용하되,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2.>

1. 청소년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2. 청소년에게 유익한 매체물의 제작과 지원
3. 민간의 청소년 선도·보호사업 및 청소년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시민운동 지원
4. 그 밖에 청소년 선도·보호를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⑦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방법,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6. 3. 2.>

## 제8장 벌칙

**제55조(벌칙)** 제30조제1호의 위반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56조(벌칙)** 제30조제2호 또는 제3호의 위반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57조(벌칙)** 제30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위반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 2016. 12. 20.>

1. 영리를 목적으로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시청ㆍ관람ㆍ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2. 영리를 목적으로 제22조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유통하게 한 자
3.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4)ㆍ5)의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1)ㆍ2)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
4.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한 자
5. 제30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위반행위를 한 자
6.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수거하지 아니한 자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3. 22., 2014. 3. 24., 2016. 1. 6., 2016. 3. 2., 2016. 12. 20., 2018. 12. 11.>

1. 제13조제1항 및 제28조제7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에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28조제10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포장하지 아니한 자
3. 제18조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방송한 자
4.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2조제2호차목에에 해당하는 매체물 중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외의 업소나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ㆍ부착 또는 배포한 자 또는 상업적 광고선전물을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기능이 없는 컴퓨터 통신을 통하여 설치ㆍ부착 또는 배포한 자
5. 삭제<2021. 12. 7.>
6.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1)ㆍ2)의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3)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자
7.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제2조제4호가목1)ㆍ2)의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한 자

7의2. 영리를 목적으로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매하게 한 자

7의3. 제28조제5항을 위반하여 주류등의 판매ㆍ대여ㆍ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8.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 출입시킨 자
9. 제29조제6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제60조(벌칙)** 제15조(제28조제10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이나 청소년유해약물등의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훼손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3. 22., 2014. 3. 24., 2018. 12. 11.>

**제61조(벌칙)** ① 제34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

② 제43조를 위반하여 관계 공무원의 검사 및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4. 5. 28.]

**제6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3조(형의 감경)** 제59조의 죄를 범한 자가 제45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면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제64조(과태료)** ① 제45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7호ㆍ제7호의2ㆍ제8호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 3. 2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2조에 따른 보고와 자료 제출을 요구받고도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45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25. 10. 1.>

**부칙** <제11048호,2011. 9.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터넷게임 중 심각한 인터넷게임 중독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를 이용한 인터넷게임에 대한 심야시간대 제공시간 제한에 관한 부분은 2013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게임물의 범위 평가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의 범위에 대한 평가는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 11월 20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제3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종전의 제54조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2항 중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3”을 “「청소년 보호법」 제26조”로 하고, 제27조제3호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② 공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청소년보호법」 제10조”를 각각 “「청소년 보호법」 제9조”로 한다.

③ 공중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및 제11조의4제1항 중 “「청소년보호법」”을 각각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④ 담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⑥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4호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⑦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⑧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나목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단서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⑩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1)”을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3)”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나목(1)”을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나목3)”으로 한다.

⑪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2에 따른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를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로 한다.

⑫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보호ㆍ재활센터

제28조제1항제3호 및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 「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2의 청소년보호센터 또는 청소년재활센터 ”를 각각 “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 ”로 한다.

제44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

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3조제1항 중 “ 「청소년보호법」 제7조제4호 ”를 각각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마목 ”으로 한다.

제44조의7제1항제5호 중 “ 「청소년보호법」 ”을 “ 「청소년 보호법」 ”으로 한다.

제61조제1호 중 “ 「청소년보호법」 제17조 ”를 “ 「청소년 보호법」 제16조 ”로 한다.

⑭ 직업안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제3항 중 “ 「청소년보호법」 ”을 “ 「청소년 보호법」 ”으로 한다.

제38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 「청소년보호법」 ”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⑮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1호 중 “ 「청소년보호법」 ”을 “ 「청소년 보호법」 ”으로 한다.

제18조제3호 중 “ 「청소년보호법」 제7조제6호 ”를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사목ㆍ아목 및 자목 ”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 「청소년보호법」 제10조제1항 ”을 “ 「청소년 보호법」 제9조제1항 ”으로 한다.

1^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제4호 중 “ 「청소년보호법」 ”을 “ 「청소년 보호법」 ”으로 한다.

1&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9호 중 “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5) ”를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7) ”으로, “ 같은 호 가목(6) 및 같은 호 나목(7) ”을 “ 같은 호 가목8) 또는 9) 및 같은 호 나목7) ”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청소년보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179호,2012. 1. 1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0980호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11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29일부터, 법률 제11048호 청소년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제12조제3항ㆍ제4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73호,2013. 3. 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862호,2013. 6. 4.>(화학물질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청소년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4)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로 한다.

제2조제5호나목5)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 다만, 유해화학물질 사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⑪부터2(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11998호,2013. 8. 6.>(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

<65> 청소년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3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66>부터 <71>까지 생략

**부칙** <제12534호,2014. 3. 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4항 및 제8항, 제45조제1항제7호의2, 제59조제7호의2의 개정규정 중 주류등의 판매ㆍ대여ㆍ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699호,2014. 5. 28.>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371호,2015. 6. 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726호,2016. 1. 6.>(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1^ 까지 생략

1& 청소년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차목,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5조제1항제7호 및 제59조제4호 중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을 각각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로 한다.

1* 및1(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4067호,2016. 3. 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446호,2016. 12.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58조제3호와 제59조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5209호,2017. 12. 12.>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53호,2018. 1. 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13호,2018. 12. 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5호가목10) 및 11)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87호,2018. 12. 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91호,2020. 3. 24.>(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1>까지 생략

<92> 청소년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4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93>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7761호,2020. 12. 29.>(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청소년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5항제1호 중 "「주세법」"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조** 생략

**부칙** <제18550호,2021. 12. 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 방법 및 절차와 제2항의 평가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를 “ 방법 및 절차 등에 ”로 한다.

②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2항제11호 중 “ 중독 ”을 “ 중독ㆍ과몰입 ”으로, “ 피해 ”를 “ 예방 및 피해 ”로 한다.

**부칙** <제19841호,2023. 12. 26.>(주민등록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청소년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4항 중 “ 주민등록증 ”을 “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으로 한다.

⑫ 및 ⑬ 생략

**부칙** <제20423호,2024. 3. 26.>(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0935호,2025. 4.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의 영업행위에 대한 과징금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과징금 부과ㆍ징수 절차가 진행 중인 위반행위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21065호,2025. 10. 1.>(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27>까지 생략

<428> 청소년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ㆍ나목, 같은 조 제4호가목5), 같은 호 나목1)부터 3)까지, 같은 조 제5호가목8)ㆍ9), 같은 호 나목7), 제21조제2항ㆍ제3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6항, 제3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3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의2제1항, 제42조, 제43조제1항ㆍ제2항,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 제47조제1항ㆍ제2항, 제48조제1항, 제50조제1항ㆍ제2항, 제52조, 제54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64조제3항 중 “ 여성가족부장관 ”을 각각 “ 성평등가족부장관 ”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제21조제4항, 제28조제8항 및 제48조제2항 중 “ 여성가족부령 ”을 각각 “ 성평등가족부령 ”으로 한다.

<429>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277호,2025. 12. 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12호, 2026. 6. 16., 일부개정]

성평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02 - 2100 - 6292

**제1조(목적)** 이 영은 「청소년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매체물의 범위)** 「청소년 보호법」(이하 " 법 " 이라 한다) 제2조제2호카목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물 " 이란 사무실ㆍ가정 등 옥내(屋內)에 배포되는 광고용의 전단(傳單) 및 이와 유사한 광고 선전물을 말한다.

**제3조(청소년유해약물의 결정기준)** 법 제2조제4호가목5)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청소년의 정신기능에 영향을 미쳐 판단력 장애 등 일시적 또는 영구적 정신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약물일 것
2. 청소년의 신체기능에 영향을 미쳐 정상적인 신체발육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약물일 것.
3. 습관성, 중독성, 내성(耐性) 또는 금단증상 등을 유발함으로써 청소년의 정상적인 심신발달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약물일 것

**제4조(청소년유해물건의 결정기준)** ① 법 제2조제4호나목1)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 7. 2.>

1. 청소년이 사용할 경우 성 관련 신체부위의 훼손 등 신체적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물건일 것
2. 청소년에게 인격 비하, 동물과의 성행위 등 반인륜적 성의식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물건일 것
3. 청소년에게 음란성이나 비정상적인 성적 호기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거나 지나치게 성적 자극에 빠지게 할 우려가 있는 물건일 것

② 법 제2조제4호나목2)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8. 12. 24.>

1. 물건의 형상ㆍ구조ㆍ기능 등이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건일 것
2. 물건의 형상ㆍ구조ㆍ기능 등이 청소년에게 포악성 또는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또는 성적인 욕구를 지나치게 자극하는 선정적이거나 음란한 것으로서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물건일 것

③ 법 제2조제4호나목3)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7. 6. 20.>

1. 해당 물건을 매개로 청소년유해약물을 이용할 우려가 있을 것
2. 청소년유해약물과 형상ㆍ구조ㆍ기능이 유사하여 해당 물건의 반복적 이용이 청소년유해약물의 이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을 것

**제5조(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범위)** ① 법 제2조제5호가목1)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1. 일반게임제공업
2.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만, 둘 이상의 업종(1개의 기기에서 게임, 노래연습, 영화감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같은 장소에서 영업하는 경우로서 제1호의 업소 및 법 제2조제5호가목2)부터 9)까지의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가 포함되지 아니한 업소는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한다.

② 법 제2조제5호가목3)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을 말한다.

③ 법 제2조제5호가목5)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노래연습장업을 말한다. 다만,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의 경우에는 청소년실에 한정하여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한다.

④ 법 제2조제5호가목9)에서 “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영업의 형태나 목적이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술ㆍ노래ㆍ춤의 제공 등 유흥접객행위가 이루어지는 영업일 것
2. 주로 성인용의 매체물을 유통하는 영업일 것
3. 청소년유해매체물ㆍ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ㆍ생산ㆍ유통하는 영업 중 청소년의 출입ㆍ고용이 청소년의 심신발달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영업일 것

**제6조(청소년고용금지업소의 범위)** ① 법 제2조제5호나목2)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21. 1. 26.>

1. 숙박업. 다만,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숙박업은 제외하며, 라목 및 마목에 따른 숙박업의 경우에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학습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현장실습을 실시한 업소에서 해당 현장실습을 받은 청소년을 고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외한다.
   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
   나.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숙박시설에 의한 숙박업
   다. 「농어촌정비법」을 적용받는 숙박시설에 의한 숙박업
   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1조에 따른 휴양펜션업
   마. 「관광진흥법」을 적용받는 숙박시설에 의한 숙박업(가목은 제외한다)

2. 목욕장업 중 안마실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거나 개별실(個別室)로 구획하여 하는 영업
3. 이용업.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취업이 금지되지 아니한 남자 청소년을 고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법 제2조제5호나목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1. 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 중 종업원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 등을 배달·판매하게 하면서 소요 시간에 따라 대가를 받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2. 일반음식점영업 중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③ 법 제2조제5호나목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제5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중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영업을 말한다.<개정 2014. 12. 9.>

④ 법 제2조제5호나목7)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이 고용되어 근로할 경우에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에 쉽게 접촉되어 고용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영업일 것
2. 외관상 영업행위가 성인·청소년 모두를 대상으로 하지만 성인 대상의 영업이 이루어짐으로써 고용 청소년에게 유해한 근로행위를 요구할 것이 우려되는 영업일 것

**제7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결정 및 통보)** ① 법 제36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소년보호위원회"라 한다) 및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매체물의 윤리성·건전성을 심의할 수 있는 기관(이하 "각 심의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1항·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명시하여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자와 제14조제2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포장하여야 할 의무자에게 각각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는 우편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소불명 등으로 우편에 의한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 내용을 성평등가족부 또는 각 심의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17., 2025. 10. 1.>

②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 매체물이 둘 이상의 기관에 관계되는 매체물인 경우에는 관계되는 각 심의기관의 의견을 들어 주로 관련되는 심의기관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이 유통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 줄 것을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보호위원회는 해당 매체물이 각 심의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것이면 각 심의기관에 그 결정을 의뢰

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1.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관계기관등
2. 해당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30명 이상의 서명을 받은 자
3. 매체물의 소비자 또는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허가ㆍ등록ㆍ신고 등을 한 비영리민간단체

④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은 해당 매체물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인지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등급 구분의 종류ㆍ방법)** ①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ㆍ결정되지 아니한 매체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체물의 등급을 구분할 수 있다. 다만, 각 심의기관에서 소관 매체물에 대하여 별도로 등급을 구분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9세 이상 가: 9세 이상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매체물
2. 12세 이상 가: 12세 이상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매체물
3. 15세 이상 가: 15세 이상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매체물

② 제1항에 따른 등급 구분의 기준은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이 정한다.

③ 삭제<2016. 1. 6.>

**제9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구체적인 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유해매체물의 자율규제)** ① 법 제11조제1항ㆍ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른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체물의 창작ㆍ제작 및 유통과 관련된 단체ㆍ협회 또는 이들로 구성된 협의체
2. 그 밖에 매체물의 유해 여부를 심의할 수 있는 자체 심의기구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매체물의 제작자ㆍ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이하 "자율규제단체등"이라 한다)가 청소년 유해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제2항에 따라 매체물에 대한 청소년 유해 여부의 확인 요청을 받은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은 해당 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여부에 관한 확인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명시하여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와 제14조에 따른 포장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개정 2013. 9. 17.>

④ 법 제11조제6항에서 "청소년보호위원회나 각 심의기관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란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 또는 확인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법 제21조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한 날을 말한다.<개정 2025. 10. 1.>

**제11조(자율규제단체등의 지원)**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자율규제단체등의 자율심의를 활성화하고 그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율규제단체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1. 6.>

1. 자율규제단체등이 적용할 심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교육ㆍ홍보
2. 자율규약의 제정ㆍ개정
3. 그 밖에 자율심의 활성화와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삭제 <2013. 9. 17.>

**제13조(청소년유해표시의 종류ㆍ방법)**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고시가 있으면 지체 없이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유해표시방법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 9. 17.>

②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지 아니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유통의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에게 지체 없이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거나 직접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 유통시킬 수 있다.<개정 2013. 9. 17.>

**제14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포장)** ① 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라 포장하여야 할 청소년유해매체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해당 매체물을 대여하여 반환받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2조제2호사목에 해당하는 것(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는 제외한다)
2. 법 제2조제2호아목에 해당하는 것(전자간행물은 제외한다)
3. 법 제2조제2호자목에 해당하는 것(전자출판물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포장하여야 할 의무자는 이를 발행하거나 제작ㆍ수입한 자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포장의무자는 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포장하여야 한다.

④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포장은 포장에 이용된 용지 등을 뜯거나 훼손하지 아니하고는 그 내용물을 열람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소년보호위원회 및 각 심의기관이 매체물의 겉표지가 법 제9조에 따른 심의 기준에 따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따로 결정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매체물에 대해서는 명칭을 제외한 겉표지의 내용이 보이지 아니하도록 불투명한 용지를 사용하여 포장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2., 2025. 10. 1.>

⑤ 포장이 되어 있지 아니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유통의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자는 제2항에 따른 포장의무자에게 지체 없이 포장을 하여 줄 것을 요구하거나 직접 포장을 하여 유통시킬 수 있다.

**제15조(포장에 준하는 보호조치)** ①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포장에 준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할 청소년유해매체물은 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매체물, 같은 호 사목에 따른 인터넷신문ㆍ인터넷뉴스서비스,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전자간행물 및 같은 호 자목에 따른 전자출판물 등 전자적 형태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른 포장에 준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는 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전자적 형태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매개하는 자로 한다.

③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른 포장에 준하는 보호조치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매체물 이용자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 제공되는 매체물의 정보를 통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한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정보 등이 제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한다.

**제16조(판매 금지 등)**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에게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시청ㆍ관람ㆍ이용(이하 "판매등"이라 한다)에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은 법 제2조제2호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사목부터 카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말한다.

**제17조(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방법)**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등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6., 2020. 12. 8., 2021. 1. 26., 2025. 10. 1.>

1. 대면(對面)을 통한 신분증 확인이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수신한 신분증 사본 확인
2.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
4.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
5. 신용카드를 통한 인증
6. 휴대전화를 통한 인증. 이 경우 휴대전화를 통한 문자전송, 음성 자동응답 등의 방법을 추가하여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단이나 방법과 유사한 것으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등에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 등에 회원으로 가입한 상대방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 후 1년까지는 해당 인터넷 사이트 등에 가입된 회원임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16. 1. 6.>

**제18조(구분ㆍ격리 방법)**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구분ㆍ격리하여야 하는 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구분ㆍ격리된 장소 또는 시설에 별표 5에 따른 방법으로 청소년에 대하여 해당 매체물의 판매나 대여가 금지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구분ㆍ격리하여 전시ㆍ진열할 장소 또는 시설은 그 업소에서 영업자가 맨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서 청소년의 이용을 통제하기 가장 쉬운 곳이어야 한다.<개정 2019. 7. 2.>

**제19조(청소년 시청 보호시간대)** ① 법 제18조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방송해서는 아니 되는 방송시간은 평일은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와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하고,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방학기간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다만, 「방송법」에 따른 방송 중 시청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채널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방송의 경우에는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방송시간에 방송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예고 방송에는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내용을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정보통신망을 통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자 등의 공표)**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제작자ㆍ발행자 또는 유통행위자 등의 업체명ㆍ대표자명ㆍ위반행위의 내용 등을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공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성평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개정 2025. 10. 1.>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하기 20일 전까지 정보 공표 대상자에게 해당 공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것을 통지하여야 하고, 정보 공표 대상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제21조** 삭제 <2022. 4. 5.>

**제22조** 삭제 <2022. 4. 5.>

**제23조(인터넷게임 중독ㆍ과몰입 등의 예방 및 피해 청소년 지원)**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4. 5., 2025. 10. 1.>

1.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ㆍ과몰입 여부 진단
2.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ㆍ과몰입 예방을 위한 교육ㆍ상담 및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3. 인터넷게임 중독ㆍ과몰입 청소년과 그 가족의 치료ㆍ재활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4. 인터넷게임 중독ㆍ과몰입 청소년과 그 가족의 치료ㆍ재활을 위하여 협력하는 병원의 지정
5.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등에 대한 인터넷게임 중독ㆍ과몰입 전문상담 교육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중 청소년 보호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제목개정 2022. 4. 5.]

**제24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청소년의 친권자ㆍ후견인ㆍ교사, 직장의 감독자 그 밖에 해당 청소년을 보호ㆍ감독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위에 있는 자가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교육 또는 실험용으로 사용할 것임을 전화 등을 통하여 확인한 경우
2. 「의료법」 제18조에 따라 의사나 치과의사로부터 발급받은 처방전에 청소년유해약물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제25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청소년유해표시)** ① 법 제2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주류 또는 담배의 판매ㆍ대여ㆍ배포 금지내용의 표시문구 및 크기 등은 별표 6과 같다. <신설 2015. 3. 17., 2021. 1. 26.>

② 법 제28조제7항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는 별표 7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유해표시방법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개정 2013. 9. 17., 2015. 3. 17., 2021. 1. 26.>

③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지 아니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유통의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자는 법 제28조제7항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에게 지체 없이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거나 직접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 유통시킬 수 있다.<개정 2013. 9. 17., 2015. 3. 17., 2021. 1. 26.>

**제26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포장)** ① 법 제28조제10항에 따라 포장하여야 할 청소년유해약물등은 법 제2조제4호나목1)에 해당하는 청소년유해물건으로 한다. <개정 2013. 9. 17., 2015. 3. 17., 2021. 1. 26.>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유해물건을 포장하여야 하는 의무자는 이를 제작하거나 수입한 자로 한다.

③ 청소년유해물건의 포장은 포장에 이용되는 용지 등을 뜯거나 훼손하지 아니하고는 그 내용물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④ 포장이 되어 있지 아니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유통의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자는 제2항에 따른 포장의무자에게 지체 없이 포장을 하여 줄 것을 요구하거나 직접 포장을 하여 유통시킬 수 있다.

**제27조(친권자등을 동반한 청소년의 출입 허용 등)** ① 법 제2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으로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해

당 신분증의 진위여부를 지문대조, 안면대조 등의 전자식별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설비를 말한다. <신설 2017. 6. 20., 2024. 12. 3.>

1.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2.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 운전면허증
3. 「여권법」에 따른 여권
4.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② 법 제29조제5항 본문에 따라 청소년이 청소년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 또는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사람(이하 "친권자등"이라 한다)을 동반한 경우에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청소년과 친권자등과의 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0.>

③ 법 제29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란 단란주점영업소 및 유흥주점영업소를 말한다.<개정 2017. 6. 20.>

**제28조(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표시)** 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소를 제외한다)의 업주 및 종사자는 해당 업소의 출입구 중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별표 8에 따른 방법으로 청소년의 출입·이용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0.>

**제29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설정)** 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은 청소년의 통행을 24시간 금지하는 구역으로 하고,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은 청소년의 통행을 일정 시간 제한하는 구역으로 한다. 다만, 친권자, 후견인, 교사 그 밖에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때에는 통행할 수 있다.

**제30조(청소년보호종합대책의 수립·시행)**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10. 1.>

1.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등의 규제, 청소년유해업소로부터 청소년의 보호 등 청소년유해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인터넷의 건전성 확보 및 인터넷 중독 예방·치료와 재활에 관한 사항
3. 청소년폭력·학대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해행위 예방에 관한 사항
4.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점검·단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소년 보호를 위해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관별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③ 성평등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대책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

체의 장에게 연도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제31조(청소년보호종합대책 점검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종합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관계 기관 간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점검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점검회의의 위원장은 성평등가족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소속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 9. 17., 2025. 10. 1.>

**제31조의2(청소년 전문 치료기관의 지정)**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인력, 장비 및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청소년 환각물질 중독 전문 치료기관(이하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1. 중독정신의학 전문의 또는 청소년정신의학 전문의
2. 심리검사에 필요한 인력
3. 혈청분석기 및 뇌파검사기
4. 그 밖에 환각물질 중독 청소년의 치료와 재활에 필요한 것으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및 장비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1. 청소년 환각물질 중독 치료ㆍ재활 관련 사업계획서
2. 제1항 각 호의 인력, 장비 및 시설의 보유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한 의료기관을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⑤ 제4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 재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지정의 기준ㆍ절차 및 유효기간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5. 10. 1.>

⑦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재지정을 받으려면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알려 주어야 한다.<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15. 5. 26.]

**제31조의3(청소년 전문 치료기관의 지정 취소)**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정서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15. 5. 26.]

**제31조의4(환각물질 중독 판별 검사)** ① 법 제34조의2제2항 전단에서 " 본인, 친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본인
2. 친권자
3. 직계존속
4. 미성년후견인

② 제1항에 따른 사람은 법 제34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환각물질 중독 여부 판별 검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판별 검사 신청서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법원 또는 검사는 법 제34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소년법」에 따른 법원의 보호처분결정 또는 검사의 조건부기소유예처분 등을 받은 청소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환각물질 중독 여부 판별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거나 제3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판별 검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 또는 의뢰인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5. 10. 1.>

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판별 검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의 장에게 해당 청소년에 대한 환각물질 중독 여부 판별 검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⑥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에 대한 환각물질 중독 여부 판별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판별 검사 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신청인 또는 의뢰인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15. 5. 26.]

**제31조의5(환각물질 중독 치료 및 재활)** ① 법 제34조의2제3항 전단에서 " 본인, 친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본인

2. 친권자
3. 직계존속
4. 미성년후견인

② 제1항에 따른 사람은 법 제34조의2제3항 전단에 따라 환각물질 중독 치료 및 재활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환각물질 중독 치료 및 재활 신청서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법원 또는 검사는 법 제34조의2제3항 전단에 따라 「소년법」에 따른 법원의 보호처분결정 또는 검사의 조건부기소유예처분 등을 받은 청소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환각물질 중독 치료 및 재활을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거나 제3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치료 및 재활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 또는 의뢰인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5. 10. 1.>

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치료 및 재활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의 장에게 해당 청소년에 대한 치료 및 재활을 실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⑥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의 장은 제5항의 요청에 따라 환각물질 중독 청소년에 대하여 치료 및 재활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치료 및 재활 기간(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치료 및 재활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신청인 또는 의뢰인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5. 10. 1.>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의 장은 치료 및 재활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당 청소년이 완치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치료 및 재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신청인 또는 의뢰인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5. 10. 1.>

⑧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의2제3항 후단에 따라 치료 및 재활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치료 및 재활 기간 연장 요청서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⑨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8항에 따른 요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치료 및 재활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의 장과 신청인 또는 의뢰인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15. 5. 26.]

**제32조(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사업)**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개정 2025. 10. 1.>

1. 학습·정서·행동상의 장애를 가진 청소년에 대한 보호·상담 및 치료·재활 지원
2. 약물 또는 인터넷 중독 청소년에 대한 보호·상담 및 치료·재활 지원
3. 청소년유해환경으로 인한 피해 청소년 실태 파악 및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자료 구축·관리

4. 그 밖에 청소년유해환경으로 인한 피해 예방, 상담 및 치료ㆍ재활을 위해 필요하다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제33조(청소년보호위원회의 운영 등)** ①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이해관계인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의결서 작성 등 청소년보호위원회 심의ㆍ결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④ 청소년보호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청소년보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유해매체물 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해매체물 심의 분과위원회(이하 "심의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매체물별로 둘 수 있다.

② 심의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매체물 또는 청소년 분야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25. 10. 1.>

④ 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심의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5조(위원의 해촉)**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1. 심신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한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6조(보고 등)**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42조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1. 법 제42조에 따라 확인하려는 사항과 관련하여 보고 또는 제출하여야 할 내용 및 자료의 내역
2.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일시
3. 보고 또는 제출하여야 할 자료

**제37조(검사 및 조사의 장소)** 법 제43조제1항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란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의 사무소ㆍ사업장과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25. 10. 1.>

**제38조(수거 의무자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에 대한 수거를 명할 때에는 해당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의 소유자에게 그 수거를 명하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통행위자에게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거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1. 위반행위의 내용
2. 수거하는 사유
3. 수거방법 및 수거기간
4. 수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수거하거나 파기할 수 있다는 사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파기하려면 해당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영치하고 7일 이상의 공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5. 10. 1.>

**제39조(시정명령의 종류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1. 위반행위의 내용
2. 시정명령의 내용
3. 시정명령을 하는 사유
4. 시정기간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종류는 별표 9와 같다.

**제40조(증표 발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개선활동을 수행하는 민간의 감시ㆍ고발 단체에 청소년유해환경 감시활동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표로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기관 지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제41조(신고방법)** ① 법 제49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 접수대장에 신고 내용을 기록하여야 하며, 신고 내용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42조(선도ㆍ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의 통보 등)**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이 법 위반사실을 친권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청소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0. 1.>

1.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또는 종사자 등 법 준수 의무자를 강박(强迫)하는 방법으로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
2. 신분증 위조ㆍ변조 등의 방법으로 나이를 속이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

② 성평등가족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선도ㆍ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이하 "선도ㆍ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이라 한다)을 결정하는 경우 청소년지도자, 청소년상담가, 의사, 변호사 등 청소년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③ 법 제50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이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 또는 선도ㆍ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이하 "통보대상 청소년"이라 한다)을 친권자등이나 소속 학교의 장(학생인 경우만 해당한다)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개정 2025. 10. 1., 2026. 6. 16.>

1. 통보대상 청소년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
2. 통보대상 청소년이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

2의2.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의 신청에 관한 정보

3. 선도ㆍ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의 경우에는 선도ㆍ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실

④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친권자등 또는 소속 학교의 장은 통보대상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통보대상 청소년을 통보한 성평등가족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 통보를 받은 친권자등 또는 소속 학교의 장은 통보대상 청소년의 인적 사항이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제43조(지방청소년사무소의 업무 협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51조에 따른 지방청소년사무소에 대하여 청소년 보호 사무처리의 기본방침을 통보하여야 하며,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제4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0과 같다.

②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1과 같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기간,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징금 부과ㆍ징수 대상자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24. 3. 29.>

1. 과징금 부과ㆍ징수 대상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2. 과징금 부과ㆍ징수 대상자가 청소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3. 과징금 부과ㆍ징수 대상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송치 또는 불기소(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다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⑤ 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ㆍ징수 대상자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로 확정된 경우(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신설 2024. 3. 29.>

**제45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과징금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54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개정 2023. 12. 12.>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과징금 부과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과징금의 징수절차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제46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① 법 제54조제5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

여 과징금 부과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9., 2025. 10. 1.>

② 과징금 부과권자는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의 허용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법 제54조제5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6. 7. 19.>

④ 법 제54조제5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분할된 납부기한간의 간격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4회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6. 7. 19.>

⑤ 과징금 부과권자는 법 제54조제5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6. 7. 19.>

1. 분할납부하기로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였을 때
2. 강제집행이나 경매가 개시된 경우,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법인이 해산된 경우,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등 즉시 징수하지 아니하면 과징금의 전부 또는 나머지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47조(과징금의 용도)** 법 제54조제6항제4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 7. 19.>

1.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운영
2.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자에 대한 포상
3. 그 밖에 과징금 부과권자가 인정하는 청소년 보호사업

**제47조의2(규제의 재검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의 범위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6. 3. 24.]

**제4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부칙** <제24102호,2012. 9.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 및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발생한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검사직무대리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7호 중 “ 「청소년보호법」 ”을 “ 「청소년 보호법」 ”으로 한다.

②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4제1항제1호 중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18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16조의2제1호나목 단서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③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9조의2제1항 단서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

제22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소년보호법」 제44조”를 “「청소년 보호법」 제49조”로 한다.

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호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⑥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6)”을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9)”로 한다.

⑦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2에 따른 청소년보호센터”를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로 한다.

⑧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4제2항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4754호,2013. 9. 17.>

이 영은 2013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050호,2013. 12. 30.>(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836호,2014. 12. 9.>(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유독물 사용업 중 유독물을”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제5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중 유해화학물질을”로 한다.

⑫부터1(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5840호,2014. 12. 9.>(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별표 12 제2호자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 및 제16조 생략

**부칙** <제26151호,2015. 3. 17.>

이 영은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250호,2015. 5. 26.>

이 영은 2015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866호,2016. 1. 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354호,2016. 7. 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751호,2016. 12. 30.>(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8133호,2017. 6. 20.>

이 영은 2017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425호,2018. 12. 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950호,2019. 7. 2.>(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222호,2020. 12. 8.>(전자서명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3# 까지 생략

3$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3% 부터3&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1337호,2020. 12. 29.>(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제도 도입에 따른 22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당시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31415호,2021. 1.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되는 숙박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라목 및 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현장실습을 받은 청소년을 이 영 시행 이후에 해당 숙박업에 고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1450호,2021. 2. 17.>(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1호 및 제3호의 구분란 중 “「주세법」”을 각각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32567호,2022. 4.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913호,2023. 12. 12.>(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373호,2024. 3.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ㆍ징수 면제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4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당시 과징금 부과ㆍ징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5038호,2024. 12. 3.>(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1( 까지 생략

2)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중 “ 주민등록증 ”을 “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으로 한다.

2! 부터2# 까지 생략

**부칙** <제35806호,2025. 10. 1.>(성평등가족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1( 까지 생략

2)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후단 및 제20조제2항 중 “ 여성가족부 ”를 각각 “ 성평등가족부 ”로 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0조제2항, 제31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1조의4제2항, 제31조의5제2항, 같은 조 제8항, 제40조, 제45조제5항 및 제46조제1항ㆍ제2항 중 “ 여성가족부령 ”을 각각 “ 성평등가족부령 ”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제14조제4항 후단, 제17조제1항제7호, 제19조제1항 본문, 제20조제1항ㆍ제3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0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1조제1항, 제3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3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1조의4제2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31조의5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32조제4호, 제34조제3항,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 제3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43조, 제44조제3항, 제45조제1항, 제4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7 제2호라목 중 “ 여성가족부장관 ”을 각각 “ 성평등가족부장관 ”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 여성가족부차관 ”을 “ 성평등가족부차관 ”으로 한다.

2! 부터2$ 까지 생략

**부칙** <제36220호,2026. 3. 24.>(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412호,2026. 6. 16.>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별표 1] 삭제 <2016.1.6.>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9. 7. 2.>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제9조 관련)

1. 일반 심의 기준

가. 매체물에 관한 심의는 해당 매체물의 전체 또는 부분에 관하여 평가하되, 부분에 대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전반적 맥락을 함께 고려할 것

나. 매체물 중 연속물에 대한 심의는 개별 회분을 대상으로 할 것. 다만, 법 제7조제5항에 해당하는 매체물에 대한 심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심의위원 중 최소한 2명 이상이 해당 매체물의 전체 내용을 파악한 후 심의할 것

라.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실제로 제작·발행 또는 수입이 되지 아니한 매체물에 대하여 심의할 때에는 구체적·개별적 매체물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사회통념상 매체물의 종류, 제목, 내용 등을 특정할 수 있는 포괄적인 명칭 등을 사용하여 심의할 것

2. 개별 심의 기준

가. 음란한 자태를 지나치게 묘사한 것

나. 성행위와 관련하여 그 방법·감정·음성 등을 지나치게 묘사한 것

다. 동물과의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집단 성행위, 근친상간, 가학·피학성 음란증 등 변태 성행위, 성매매 그 밖에 사회 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를 조장하는 것

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행위를 조장하거나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기술하는 등 성 윤리를 왜곡시키는 것

마. 존속에 대한 상해·폭행·살인 등 전통적인 가족 윤리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

바. 잔인한 살인·폭행·고문 등의 장면을 자극적으로 묘사하거나 조장하는 것

사. 성폭력·자살·자학행위, 그 밖에 육체적·정신적 학대를 미화하거나 조장하는 것

아. 범죄를 미화하거나 범죄방법을 상세히 묘사하여 범죄를 조장하는 것

자.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국가와 사회 존립의 기본체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

차. 저속한 언어나 대사를 지나치게 남용하는 것

카. 도박과 사행심 조장 등 건전한 생활 태도를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것

타. 청소년유해약물등의 효능 및 제조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그 복용·제조 및 사용을 조장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

파. 청소년유해업소에의 청소년 고용과 청소년 출입을 조장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

하.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 또는 매개할 우려가 있는 것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별표 3] 삭제 <2013.9.17>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별표 4]

## 매체물의 종류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 방법(제13조제1항 관련)

| 구분 | 표시문구 | 표시방법 |
|---|---|---|
| 1. 영화 | 19세 미만 관람 불가 | 가. 표시문구는 한쪽이 400㎜ 이상, 다른 한쪽이 100㎜ 이상인 붉은색 바탕의 직사각형 안에 흰색 글씨로 기재한다.<br>나. 표시는 해당 영화상영관의 매표소와 출입구에 한다. |
| 2. 비디오물 | 19세 미만 시청 불가 | 가. 표시문구는 한쪽이 60㎜ 이상, 다른 한쪽이 15㎜ 이상인 붉은색 바탕의 직사각형 안에 흰색 글씨로 기재한다.<br>나. 표시는 해당 매체물에 표시한다.<br>다.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이 프로그램은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시청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자막 표시를 한다. |
| 3. 게임물 | 19세 미만 이용 불가 | 가. 표시문구는 한쪽이 60㎜ 이상, 다른 한쪽이 15㎜ 이상인 붉은색 바탕의 직사각형 안에 흰색 글씨로 기재한다.<br>나. 표시는 해당 매체물에 표시한다.<br>다. 게임물의 경우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이 프로그램은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자막 표시를 한다. |
| 4. 음반, 음악영상물 | 19세 미만 청취 불가 | 가. 표시문구는 한쪽이 60㎜ 이상, 다른 한쪽이 15㎜ 이상인 붉은색 바탕의 직사각형 안에 |

| | | |
|---|---|---|
| | | 흰색 글씨로 기재한다.<br>나. 표시는 해당 매체물에 표시한다.<br>다. 음악영상의 경우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이 프로그램은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시청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자막 표시를 한다. |
| 5. 음악파일, 음악영상파일 | 19세 미만 이용 불가 |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이 프로그램은 19세 미만 청소년이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자막 표시를 한다. |
| 6. 공연(국악공연은 제외한다) | 19세 미만 관람 불가 | 가. 표시문구는 한쪽이 400㎜ 이상, 다른 한쪽이 100㎜ 이상인 붉은색 바탕의 직사각형 안에 흰색 글씨로 기재한다.<br>나. 표시는 해당 공연장의 매표소와 출입구에 한다. |
| 7.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정보 | 19세 미만 이용 불가 |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이 프로그램은 19세 미만 청소년이 이용해서는 안됩니다."라는 자막 표시를 한다. |
| 8. 방송프로그램(라디오방송은 제외한다) | 19세 미만 시청 불가 | 가. 프로그램의 방송을 시작하기전에 "이 프로그램은 19세 미만 청소년이 시청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자막 표시를 한다.<br>나. 프로그램의 방송 중에는 지름 20㎜ 이상이고 붉은색 테두리 두께가 3㎜ 이상인 크기의 원형 마크 안에 "19"라는 숫자를 흰색 바탕에 검정색으로 기재하여 화면 오른쪽 상단에 표시한다. |

| | | |
|---|---|---|
| 9. 신문 | 19세 미만 구독 불가 | 가. 표시문구는 한쪽이 60㎜ 이상, 다른 한쪽이 15㎜ 이상인 붉은색 바탕의 직사각형 안에 흰색 글씨로 기재한다.<br>나. 표시는 해당 매체물의 앞표지와 뒷표지의 오른쪽 상단에 한다. |
| 10. 인터넷신문 | 19세 미만 이용 불가 |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이 프로그램은 19세 미만 청소년이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자막 표시를 한다. |
| 11. 잡지, 정보간행물 및 그 밖의 간행물 | 19세 미만 구독 불가 | 가. 표시문구는 한쪽이 60㎜ 이상, 다른 한쪽이 15㎜ 이상인 붉은색 바탕의 직사각형 안에 흰색 글씨로 기재한다.<br>나. 표시는 해당 매체물의 앞표지와 뒷표지의 오른쪽 상단에 한다. |
| 12. 간행물 및 외국 간행물 | 19세 미만 구독 불가 | 가. 표시문구는 한쪽이 60㎜ 이상, 다른 한쪽이 15㎜ 이상인 붉은색 바탕의 직사각형 안에 흰색 글씨로 기재한다.<br>나. 표시는 해당 매체물의 앞표지와 뒷표지의 오른쪽 상단에 한다. |
| 13. 전자간행물 및 전자출판물 | 19세 미만 이용 불가 |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이 프로그램은 19세 미만 청소년이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자막 표시를 한다. |
| 14. 광고선전물 중 간행물에 포함된 것 | 19세 미만 구독 불가 | 가. 표시문구는 한쪽이 60㎜ 이상, 다른 한쪽이 15㎜ 이상인 붉은색 바탕의 직사각형 안에 흰색 글씨로 기재한다.<br>나. 표시는 해당 매체물의 앞표지와 뒷표지의 오른쪽 상단에 한다. |

비고: 표시문구 및 표시방법의 경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별표 5]

## 청소년유해매체물 판매·대여 금지의 구체적인 표시방법(제18조제1항 관련)

| 구 분 | 표 시 문 구 | 표 시 방 법 |
|---|---|---|
| 1. 음반·음악영상물 판매업소 | 19세 미만 구입 불가 | 표시문구는 한쪽이 400㎜ 이상, 다른 한쪽이 100㎜ 이상인 붉은색 바탕의 직사각형 안에 흰색 글씨로 기재한다. |
| 2. 비디오물 판매업소 | | |
| 3. 만화 판매업소 | | |
| 4. 간행물, 전자출판물, 외국간행물, 정기간행물 판매업소 | | |
| 5. 비디오물 대여업소 | 19세 미만 대여 불가 | |
| 6. 만화 대여업소 | | |
| 7. 간행물, 전자출판물, 외국간행물, 정기간행물 대여업소 | | |

비고: 표시문구 및 표시방법의 경우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1. 2. 17.>

## 주류 또는 담배의 판매·대여·배포 금지내용의 표시문구 및 크기 등

(제25조제1항 관련)

| 구분 | 표시문구 | 표시크기 | 표시장소 |
|---|---|---|---|
| 1.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류소매업의 영업자 |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 판매금지 | 표시문구는 한 면이 40센티미터 이상, 다른 한 면이 10센티미터 이상인 직사각형 안에 충분히 알아볼 수 있게 적는다. | 영업장 안의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한다. |
| 2.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소매업의 영업자 |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금지 | | |
| 3.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류소매업과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소매업을 겸하는 영업자 |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 | |
| 4.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소매업의 영업자 중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 |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금지 | 표시문구는 한 면이 5센티미터 이상, 다른 한 면이 15센티미터 이상인 직사각형 안에 충분히 알아볼 수 있게 적는다. | 담배자동판매기 앞면의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한다. |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별표 7] <개정 2025. 10. 1.>

## 청소년유해약물등의 종류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방법(제25조제2항 관련)

1. 주류

가. 표시문구

1) 문구는 "19세 미만 판매 금지" 또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 금지"로 한다.

2) 군납용으로서 "군인 외의 사람에게 판매 금지"의 문구를 표시한 경우에는 1)의 문구를 생략할 수 있다.

나. 크기

1) 문구는 아래 기준에 따라 사각형(테두리의 모서리 부분을 둥글게 처리한 사각형으로 한다) 안에 표시한다.

| 용량 기준 | 글자 크기 | 사각형 크기 | 전면 코팅용기 (캔류, 코팅 병 등) |
|---|---|---|---|
| 300㎖ 이하 | 12포인트 이상 | 2㎠ 이상 | 같은 용량 기준보다 글자 크기는 2포인트 이상, 사각형 크기는 1㎠ 이상 각각 크게 한다. |
| 300㎖ 초과 500㎖ 이하 | 14포인트 이상 | 3.5㎠ 이상 | |
| 500㎖ 초과 750㎖ 이하 | 16포인트 이상 | 5㎠ 이상 | |
| 750㎖ 초과 1ℓ 이하 | 18포인트 이상 | 6㎠ 이상 | |
| 1ℓ 초과 | 20포인트 이상 | 7.5㎠ 이상 | |

2) 글자체는 견고딕체를 사용한다.

다. 색상

1) 사각형 테두리 내 배경색은 상표 도안의 색상과 보색 관계에 있는 색상으로서 선명해야 한다.

2) 문구의 색상은 사각형 배경색과 보색 관계에 있는 색상으로서 선명해야 한다.

라. 위치 : 제25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이하 이 표에서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라 한다)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곳

2. 주류 외의 청소년유해약물등

| 구분 | 표시문구 | 표시방법 | | |
|---|---|---|---|---|
| | | 크기 | 색상 | 위치 |
| 가. 담 배 |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를 금지한다"는 내용 | 담뱃갑 뒷면 단면 면적의 1/5 이상 | 바탕색과 보색 | 담뱃갑 뒷면 |

| | | | | |
|---|---|---|---|---|
| | 이 포함되어야 한다. | 크기의 사각형 안에 기재 | | |
| 나. 부탄가스 | "이 제품은 흡입 시 심신장애 등 심각한 피해를 가져옵니다. 이 제품을 흡입한 사람은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으며, 특히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로 한다. | 용기 면적의 1/20 이상 크기의 면적에 기재 | 바탕색과 보색 |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곳 |
| 다. 부탄가스 외 환각물질(공업용은 제외한다) |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로 한다. | 업계 자율로 하되, 다른 의무기재사항이 있는 경우 그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 | 바탕색과 보색 |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곳 |
| 라. 법 제2조제4호가목5)의 약물 및 같은 호 나목의 물건 |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로 한다. | 상표 면적의 1/10 이상 크기의 면적에 기재 | 바탕색과 보색 |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곳 |
| |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청소년유해물건 중 해당 청소년유해약물이나 청소년유해물건의 특성상 표시문구나 표시방법을 달리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다. | | | |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별표 8]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제한 표시방법(제28조 관련)

| 구분 | 표시문구 | 표시방법 |
|---|---|---|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 표시문구는 한 면이 400㎜ 이상, 다른 한 면이 100㎜ 이상인 직사각형 안에 외관상 충분히 식별이 가능한 크기로 해야 한다. |

비고: 표시문구 및 표시방법의 경우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별표 9] <개정 2021. 1. 26.>

## 시정명령의 종류(제39조제2항 관련)

| 의무내용 | 시정명령의 종류 |
|---|---|
| 1. 법 제13조제1항 및 제28조제7항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 표시의무 | 표시명령, 표시방법 변경명령 |
| 2. 법 제14조(법 제28조제10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 포장의무 | 포장명령, 포장방법 변경명령 |
| 3.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전시·진열 금지의무 | 전시·진열 금지명령 |
| 4.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포장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전시·진열 금지 의무 | 전시·진열 금지명령 |
| 5.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구분·격리 의무 | 구분·격리 명령 |
| 6.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자동기계장치 또는 무인판매기 판매를 위한 전시·진열 금지의무 | 전시·진열 금지명령 |
| 7.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유해광고선전물의 설치·부착·배포 금지의무 | 설치광고선전물 철거명령, 부착광고선전물 제거명령, 배포광고선전물 회수명령 |
| 8.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주류등의 판매·대여·배포 금지내용 표시의무 | 표시부착명령, 표시방법 변경명령 |
| 9.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출입·고용제한 표시의무 | 표시부착명령, 표시방법 변경명령 |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별표 10]

## 청소년유해 정기간행물 등의 발행·수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제44조제1항 관련)

| 과징금 금액 / 구분 | 경고 |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 횟수별 300만원 |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 횟수별 500만원 |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 횟수별 1,000만원 |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 횟수별 2,000만원 |
|---|---|---|---|---|---|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특수일간신문 | 1회 | 2회·3회 | 4회·5회 | 6회부터 10회까지 | 11회 이상 |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주간신문, 특수주간신문 | 1회 | 2회부터 5회까지 | 6회부터 8회까지 | 9회 이상 | |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 | 1회 | 2회 | 3회·4회 | 5회 이상 | |

비고: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고시 횟수는 매년 1월 1일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별표 11]

##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제44조제2항 관련)

| 위반행위 | 과징금 금액 |
|---|---|
| 1.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한 경우 | 위반 횟수마다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 |
| 2.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외국매체물을 유통하게 한 경우 | 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 |
| 3.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1)의 주류 또는 같은 목 2)의 담배를 판매한 경우 | 위반 횟수마다 주류판매자 100만원, 담배판매자 100만원 |
| 4.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같은 목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한 경우 | 위반 횟수마다 100만원 |
| 5.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 및 이 영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 1명 1회 고용마다 1,000만원 |
| 6.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나목1)·2)·4)·5)·6)·7)에 해당하는 업소 또는 이 영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 1명 1회 고용마다 500만원 |
| 7.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 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 |
| 8. 법 제30조제7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 위반 횟수마다 300만원 |
| 9. 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남녀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 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위반 횟수마다 300만원 |
| 10. 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한 경우 | 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 |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별표 12] <개정 2022. 4. 5.>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과태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사회적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 | | 1차 위반 | 2차 이상 위반 |
| 가. 법 제42조에 따른 보고와 자료제출을 요구받고도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또는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 | 법 제64조제2항제1호 | 50 | 100 |
| 나. 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4조제1항 | 300 | 500 |
| 다.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4조제1항 | 300 | 500 |
| 라.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4조제2항제2호 | 50 | 100 |
| 마. 법 제45조제1항제4호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4조제2항제2호 | 50 | 100 |
| 바. 법 제45조제1항제5호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4조제2항제2호 | 50 | 100 |

| | | | |
|---|---|---|---|
| 사. 법 제45조제1항제6호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4조제2항제2호 | 50 | 100 |
| 아. 법 제45조제1항제7호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4조제1항 | 300 | 500 |
| 자. 법 제45조제1항제7호의2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4조제1항 | 100 | 300 |
| 차. 법 제45조제1항제8호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4조제1항 | 100 | 300 |

#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0. 1.] [성평등가족부령 제1호, 2025. 10. 1., 타법개정]

성평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02 - 2100 - 629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고시)**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등 및 청소년유해업소의 고시는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3조(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신청서)** 법 제7조 및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법 제36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소년보호위원회"라 한다) 또는 법 제7조제1항 단서의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매체물의 윤리성、건전성을 심의할 수 있는 기관(이하 "각 심의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를 기재한 서류
2. 해당 매체물
3. 30명 이상의 서명을 받은 서면(영 제7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만 첨부한다)

**제4조(청소년 유해 여부 확인 신청서)**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매체물제작자、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이하 "자율규제단체등"이라 한다)가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에 매체물에 대한 청소년 유해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소년 유해 여부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매체물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자율규제단체등이 청소년 유해 여부를 결정한 내용을 기재한 서류
2. 확인을 요청하려는 매체물

**제5조(청소년유해매체물 재심의 청구 및 결정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재심의 청구서를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청구한 자는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재심의를 위한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재심의하여 결정한 결과를 재심의를 청구한 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 취소)** 청소년보호위원회 및 각 심의기관이 법 제20조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을 취소한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영 제12조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와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포장 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제7조(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의 작성·통보)**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의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를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②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를 통보하여야 하는 관계기관등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5. 10. 1.>

**제8조(청소년유해약물등 목록표의 작성·통보)**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청소년유해약물 목록표와 별지 제10호서식의 청소년유해물건 목록표를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10., 2020. 6. 25., 2025. 10. 1.>

②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청소년유해약물등 목록표를 통보하여야 하는 관계기관등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5. 3. 10., 2020. 6. 25., 2025. 10. 1.>

**제8조의2(청소년 환각물질 중독 전문 치료기관 지정신청서 등)** ① 영 제31조의2제3항에 따른 청소년 환각물질 중독 전문 치료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1조의2제4항에 따른 청소년 환각물질 중독 전문 치료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 5. 29.]

**제8조의3(환각물질 중독 판별 검사 신청서)** 영 제31조의4제2항에 따른 환각물질 중독 판별 검사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4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 5. 29.]

**제8조의4(환각물질 중독 치료 및 재활 신청서 등)** ① 영 제31조의5제2항에 따른 환각물질 중독 치료 및 재활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4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1조의5제8항에 따른 환각물질 중독 치료 및 재활 기간 연장 요청서는 별지 제10호의5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 5. 29.]

**제8조의5(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접촉실태 조사 실시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접촉실태 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접촉실태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1. 청소년유해매체물 접촉실태에 관한 사항

2. 청소년유해약물등 접촉실태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유해업소 접촉실태에 관한 사항
4. 청소년 대상 유해행위 실태에 관한 사항
5. 청소년의 근로실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소년 보호와 관련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접촉실태 조사 결과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가족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18. 6. 12.]

**제9조(민간의 감시ㆍ고발 단체)**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법 제48조제1항 및 영 제40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개선활동을 수행하는 학교 관련 단체 또는 시민단체를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민간단체의 종류는 학교 관련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시민단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으로 한다.

**제10조(증표)** 영 제40조에 따른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제11조(과징금의 징수절차)** 영 제45조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의 방법 및 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의 신청 등)** ① 영 제46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의 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서에 따른다.

② 영 제46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의 허용 여부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허용 통지서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과징금 분할납부 허용 통지서에 따른다.

**부칙** <제34호,2012. 9. 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제37호,2013. 3. 23.>(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 중 " 교육과학기술부ㆍ법무부ㆍ행정안전부 "를 " 미래창조과학부ㆍ교육부ㆍ법무부ㆍ안전행정부 "로 한다.

별표 2 제1호 중 " 교육과학기술부 "를 " 교육부 "로, " 행정안전부 "를 " 안전행정부 "로, " 식품의약품안전청 "을 " 식품의약품안전처 "로 한다.

**부칙** <제60호,2014. 11. 19.>(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 중 " 미래창조과학부ㆍ교육부ㆍ법무부ㆍ안전행정부 "를 " 교육부ㆍ미래창조과학부ㆍ법무부ㆍ행정자치부 "로 한다.

별표 2 제1호 중 " 안전행정부 "를 " 행정자치부 "로 한다.

**부칙** <제66호,2015. 3. 10.>

이 규칙은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호,2015. 5. 29.>

이 규칙은 2015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호,2015. 10. 22.>(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호,2017. 7. 31.>(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3호,2018. 6.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호,2020. 6.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2025. 10. 1.>(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1& 까지 생략
1*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제2항, 제8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별표 1 제5호다목, 별표 2 제4호다목, 별지 제10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0호의5서식까지 및 별지 제12호서식부터 별지 제15호서식까지 중 “ 여성가족부장관 ”을 각각 “ 성평등가족부장관 ”으로 한다.
제8조의5제3항 중 “ 여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 ”를 “ 성평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 ”로 한다.
별표 1 제2호 중 “ 기획재정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방송통신위원회 ”를 “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로 한다.
별표 2 제1호 중 “ 환경부 ”를 “ 기후에너지환경부 ”로 한다.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 여성가족부 ”를 각각 “ 성평등가족부 ”로 한다.
1( 부터2@ 까지 생략

■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5. 10. 1.>

##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 통보 대상기관(제7조제2항 관련)

1. 각 심의기관
2. 청소년 또는 매체물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3.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지도·단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 경찰청·지방경찰청, 시·도교육청
4. 자율규제단체등
5. 청소년 보호를 위한 단체
   가. 「청소년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나.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행정기관 및 지도·단속 기관으로부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받아 청소년 보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협회 등
   다. 청소년 보호 사업을 수행하는 청소년·여성·종교·문화예술·소비자 관련 단체 중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

■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5. 10. 1.>

## 청소년유해약물등 목록표 통보 대상기관(제8조제2항 관련)

1. 청소년유해약물등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 교육부 · 법무부 · 행정안전부 · 문화체육관광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2.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지도 · 단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대검찰청 · 고등검찰청 · 지방검찰청, 경찰청 · 지방경찰청, 시 · 도교육청
3. 자율규제단체등
4. 청소년 보호를 위한 단체
   가. 「청소년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나.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 및 지도 · 단속 기관으로부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받아 청소년 보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 단체 · 협회 등
   다. 청소년 보호 사업을 수행하는 청소년 · 여성 · 종교 · 문화예술 · 소비자 관련 단체 중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

■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 10. 22.>

#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신청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 | 통보일 | 처리기간 30일 |
|---|---|---|---|

| | | |
|---|---|---|
| 신청인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소(사업장) | 전화번호 |
| | 기관명(단체명) | |
| 매체물 | 제명 | |
| | 매체물의 종류 | |
| | 제작자명 | 제작 연월일 |
| | 그 밖의 사항 | |

「청소년 보호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위 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각 심의기관의 장) 귀하

| | | |
|---|---|---|
| 첨부서류 | 1. 해당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를 기재한 서류<br>2. 해당 매체물 1부(개)<br>3. 30명 이상의 서명을 받은 서면(해당자만 제출합니다) 1부 | 수수료<br>없 음 |

## 유의사항

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이 유통되고 있는 경우에 「청소년 보호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관계기관등 또는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에 관하여 30명 이상의 서명을 받은 자는 해당 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 줄 것을 청소년보호위원회(각 심의기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청소년보호위원회(각 심의기관)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이를 청소년에게 판매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처 리 절 차

| 신청서 작성 | → | 접 수 | → | 심의 · 결정 | → | 결 재 | → | 통 보 |
|---|---|---|---|---|---|---|---|---|
| 신청인 | | 처리기관<br>청소년보호위원회<br>(각 심의기관) | | 처리기관<br>청소년보호위원회<br>(각 심의기관) | | 처리기관<br>청소년보호위원회<br>(각 심의기관)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 10. 22.>

# 청소년 유해 여부 확인 신청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30일 |
|---|---|---|

| | | |
|---|---|---|
| 신청인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소 | |
| | 단체명 | |
| | 단체의 소재지 | |

| | |
|---|---|
| 매체물의 종류 | 매체명(제목) |

청소년 유해 여부 결정의 요지

「청소년 보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 유해 여부의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각 심의기관의 장)** 귀하

| | | |
|---|---|---|
| 첨부서류 | 1. 자율규제단체등이 청소년 유해 여부를 결정한 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br>2. 확인을 요청하려는 매체물 1부(개) | 수수료<br>없 음 |

## 유의사항

가. 자율규제단체등은 자율적으로 청소년 유해 여부를 결정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에 그 결정 내용의 확인을 신청하여 청소년 유해 여부의 결정에 관한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신청한 매체물이 청소년유해매체물로심의·결정되었을 경우에는 「청소년 보호법」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 포장,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전시·진열 금지 등과 청소년에 대한 판매 금지 등 각종 제한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위 "나"의 제한사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에게 판매(대여 등 각종 유통행위를 포함합니다)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처 리 절 차

| 신청서 작성 | → | 접 수 | → | 심의·결정 | → | 결 재 | → | 통 보 |
|---|---|---|---|---|---|---|---|---|
| 신청인 | | 처리기관<br>청소년보호위원회<br>(각 심의기관) | | 처리기관<br>청소년보호위원회<br>(각 심의기관) | | 처리기관<br>청소년보호위원회<br>(각 심의기관)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청소년유해매체물 재심의 청구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30일 |
|---|---|---|

| | | | |
|---|---|---|---|
| 매체물명 | | | |
| 제작자(수입자·유통자)명 | | | |
| 성명 | | 전화번호 | (휴대전화)<br>(사무실) |
| 주소 | | | |
| 원심 결정일 | | | |
| 원심 결정 사유 | | | |
| 재심의 청구 사유 | | | |
| 그 밖의 사항 | | | |
| 출석 진술 여부 | [ ] (※ 출석하여 직접 진술을 원하는 경우에만 "√" 표시합니다) | | |

「청소년 보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심의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청소년보호위원회 귀하

| | | |
|---|---|---|
| 비고 | 1. 기재란이 부족하면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br>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수수료<br>없 음 |

## 유의사항

가. 매체물의 제작자·발행자나 유통행위자는 「청소년 보호법」 제7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심의·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의·결정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위 재심의 청구는 「청소년 보호법」 제7조에 따른 심의·결정의 효력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고시 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 처 리 절 차

| 신청서 작성 | → | 접 수 | → | 재심의·결정 | → | 결 재 | → | 통 보 |
|---|---|---|---|---|---|---|---|---|
| 신청인 | | 처리기관<br>청소년보호위원회<br>(각 심의기관) | | 처리기관<br>청소년보호위원회(<br>각 심의기관) | | 처리기관<br>청소년보호위원회<br>(각 심의기관) | | |

210㎜×297㎜[백상지 80g/㎡]

■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물) 목록표

| 일련번호 | 음반물 제명 | 가요명 | 가수 | 제작자/수입자 | 심의·결정기관 | 심의 번호 | 결정 연월일 | 결정 사유 | 고시의 효력 발생일 |
|---|---|---|---|---|---|---|---|---|---|
| | | | | | | | | | |

297mm×210mm(백상지 80g/㎡)

■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청소년유해매체물(영화 · 비디오 · 그 밖의 영상물) 목록표

[종류명]

| 일련번호 | 제명 | 원제명 | 주연 | 제작자/수입자 | 심의 · 결정기관 | 심의번호 | 결정 연월일 | 결정 사유 | 고시의 효력 발생일 |
|---|---|---|---|---|---|---|---|---|---|
| | | | | | | | | | |

297mm×210mm(백상지 80g/㎡)

■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 목록표

[종류명]

| 일련번호 | 제목 | 정보 위치 | 정보 제공자 | 심의·<br>결정기관 | 심의번호 | 결정 연월일 | 결정 사유 | 고시의<br>효력 발생일 |
|---|---|---|---|---|---|---|---|---|
| | | | | | | | | |

297mm×210mm(백상지 80g/㎡)

■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청소년유해매체물(방송물) 목록표

[장르명]

| 일련번호 | 제명/원제명 | 부제명 | 주연/가수 | 방송사 | 심의 · 결정기관 | 심의번호 | 결정 연월일 | 결정 사유 | 고시의 효력 발생일 |
|---|---|---|---|---|---|---|---|---|---|
| | | | | | | | | | |

297mm×210mm(백상지 80g/㎡)

■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 목록표

[정기간행물]

| 일련번호 | 서명 | 권호수 | 출판사/수입자 | 출판 연월일 | 심의·결정기관 | 심의번호 | 결정 연월일 | 결정 사유 | 고시의 효력 발생일 |
|---|---|---|---|---|---|---|---|---|---|
| | | | | | | | | | |

[장르명]

| 일련번호 | 서명 | 저자 | 출판사/수입자 | 출판 연월일 | 심의·결정기관 | 심의번호 | 결정 연월일 | 결정 사유 | 고시의 효력 발생일 |
|---|---|---|---|---|---|---|---|---|---|
| | | | | | | | | | |

297mm×210mm(백상지 80g/㎡)

■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 청소년유해약물 목록표

| 일련번호 | 약물의 종류 | 약물의 명칭 | 주요 성분 | 제조자/수입자 | 심의 · 결정기관 | 결정 연월일 | 결정 사유 | 고시의 효력 발생일 |
|---|---|---|---|---|---|---|---|---|
| | | | | | | | | |

297mm×210mm(백상지 80g/㎡)

■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청소년유해물건 목록표

| 일련번호 | 물건의 종류 | 물건의 명칭 | 주요 소재 | 제작자/수입자 | 심의 · 결정기관 | 결정 연월일 | 결정 사유 | 고시의 효력 발생일 |
|---|---|---|---|---|---|---|---|---|
| | | | | | | | | |

297mm×210mm(백상지 80g/㎡)

■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25. 10. 1.>

# 청소년 환각물질 중독 전문 치료기관 지정신청서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

| | | | | |
|---|---|---|---|---|
| 신청 의료기관 | 의료기관명 | | 등록번호 | |
| | 소재지 | | 전화번호 | |
| | 대표자(생년월일) | | 진료과목명 | |
| | 담당자 | 성명 | 부서명 | 직책 |
| | | 전화번호 | 팩스 | |

「청소년 보호법」 제34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 환각물질 중독 전문 치료기관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평등가족부장관 귀하

| | | |
|---|---|---|
| 첨부서류 | 1. 청소년 환각물질 중독 치료·재활 관련 사업계획서<br>2. 다음 각 목의 인력, 장비 및 시설의 보유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br>가. 중독정신의학 전문의 또는 청소년정신의학 전문의<br>나. 심리검사에 필요한 인력<br>다. 혈청분석기 및 뇌파검사기<br>라. 그 밖에 환각물질 중독 청소년의 치료와 재활에 필요한 것으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및 장비 | 수수료 없음 |

처 리 절 차

| 신청서 작성 | → | 접 수 | → | 청소년보호위원회 심의 | → | 결 재 | → | 지정서 교부 |
|---|---|---|---|---|---|---|---|---|
| 신청인 | | 처리기관 (성평등가족부) | | 처리기관 (성평등가족부) | | 처리기관 (성평등가족부) | | 처리기관 (성평등가족부)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의3서식] <개정 2025. 10. 1.>

# 청소년 환각물질 중독 전문 치료기관 지정서

지정번호 : 제 호

기 관 명 :

대 표 자 :

소 재 지 :

귀 기관을 「청소년 보호법」 제34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청소년 환각물질 중독 전문 치료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성평등가족부장관 직인

210㎜×297㎜[백상지 150g/㎡]

■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의4서식] <개정 2025. 10. 1.>

# 환각물질 중독 [ ] 판별 검사 [ ] 치료 및 재활 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
|---|---|---|
| 성명 | | 생년월일 |
| 주소 | | |
| 학력 | 직업 | 성별 |
| 흡입 환각 물질류 | | |
| 흡입 기간 | |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31조의4제2항 및 제31조의5제2항에 따라 위 사람에 대한 환각물질 중독 ([ ]판별 검사를, [ ]치료 및 재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각물질 중독 청소년과의 관계: )

성평등가족부장관 귀하

210㎜× 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의5서식] <개정 2025. 10. 1.>

# 환각물질 중독 치료 및 재활 기간 연장 요청서

| | | | |
|---|---|---|---|
| 성 명 | | 생년월일 | |
| 중 독 환각물질류 | | | |
| 당초 치료 예정 기간 | | | |
| 연장 기간 | | | |
| 연장 이유 | | | |

「청소년 보호법」 제34조의2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5제8항에 따라 위 사람의 치료 및 재활 기간 연장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청소년 환각물질 중독 전문 치료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성평등가족부장관 귀하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기관 지정서

1. 지 정 번 호:

2. 운영기관명:

3. 감 시 단 명:

「청소년 보호법」 제5조제3항 및 제48조에 따라 귀 기관을 청소년유해환경 및 「청소년 보호법」 위반사항에 대한 감시·고발활동과 청소년보호활동을 하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5. 10. 1.>

#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7일 |
|---|---|---|

| | |
|---|---|
| 신청인 | 성명(대표자) |
| |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
| | 주소<br>(전화번호: ) |
| 신청내용 | 당초의 기한 |
| | 연장받으려는 기간<br>년 월 일부터<br>년 월 일까지( 일간) |
| | 연장받으려는 사유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평등가족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 첨부서류 | 연장받으려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br>없음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 | 접 수 | → | 검 토 | → | 통지서 작성 | → | 결 재 | → | 납부기한 연장 허용 여부 통지 |
|---|---|---|---|---|---|---|---|---|---|---|

신청인 처리기관: 성평등가족부, 시·군·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5. 10. 1.>

#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서

※ 뒤쪽의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7일 |
|---|---|---|

| | |
|---|---|
| 신청인 | 업소 또는 법인명 |
| | 납부의무자 성명 |
| |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 업소 또는 소재지 (전화번호 : ) |
| 당 초 부과명세 | 납부고지서 수령일 |
| | 납부고지서 코드번호 |
| | 부과일시 |
| | 부과금액 |
| | 납부기한 |

분할납부 신청 내역

| 분할납부 신청금액 | 합 계 | 1차 | 2차 | 3차 | 4차 |
|---|---|---|---|---|---|
| | | | | |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과징금의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평등가족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 분할납부하려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 음 |
|---|---|---|

처 리 절 차

| 신청서 작성 | → | 접 수 | → | 검 토 | → | 통지서 작성 | → | 결 재 | → | 분할납부 허용 여부 통지 |
|---|---|---|---|---|---|---|---|---|---|---|

신청인 처리기관: 성평등가족부, 시·군·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5. 10. 1.>

#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 ]허용 [ ]불허용 통지서

| | |
|---|---|
| 신청인 | 업소 또는 법인명 |
| |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
| | 주소<br>(전화번호: ) |
| 통지내용 | 당초의 기한 |
| | 연장한 기간<br>년 월 일부터<br>년 월 일까지( 일간) |
| | 연장 허용 또는 연장 불허용의 사유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귀하의 과징금에 대하여 위와 같이 납부기한 연장을 [ ]허 용 [ ]불허용 ] 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성평등가족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297㎜[백상지 80g/㎡]

■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5. 10. 1.>

# 과징금 분할납부 [ ]허용 [ ]불허용 통지서

| | |
|---|---|
| 신청인 | 업소 또는 법인명 |
| | 납부의무자 성명 |
| |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 | 업소 또는 소재지 |

| 부과기간 | 납부고지 코드번호 | 부과금액 | 분할납부 금액 | 분할납부 기한 간격 |
|---|---|---|---|---|
| | | | | |

분할납부사항

| 분할 횟수 | 납부기한 | 분할납부 금액 |
|---|---|---|
| 1 차 | . . . | |
| 2 차 | . . . | |
| 3 차 | . . . | |
| 4 차 | . . . | |
| 합 계 | |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귀하의 과징금에 대하여 위와 같이 분할납부를 [ ]허 용 [ ]불허용 ] 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성평등가족부장관
시장 · 군수 · 구청장 직인

안 내 말 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분할납부에 관계되는 금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습니다.

1. 분할납부하기로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았을 때
2. 강제집행이나 경매가 개시된 경우,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 법인이 해산된 경우
4.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210㎜×297㎜[백상지 80g/㎡]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78호, 2025. 12. 30., 일부개정]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02 - 2100 - 6272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02 - 2100 - 6243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02 - 2100 - 6351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3. 23., 2025. 12. 30.>

1. “ 청소년 ” 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 청소년복지 ” 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청소년복지를 말한다.
3. “ 보호자 ” 란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4. “ 위기청소년 ” 이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5. “ 가정 밖 청소년 ” 이란 위기청소년 중에서 가정 내 갈등ㆍ학대ㆍ폭력ㆍ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말한다.

5의2. “ 고립ㆍ은둔 청소년 ” 이란 위기청소년 중에서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을 말한다.

6. “ 청소년부모 ” 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을 말한다.

**제2조의2(실태조사)**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위기청소년의 위기 원인 및 실태를 파악하는 등 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위기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7., 2025. 10. 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절차 및 결과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18. 12. 18.]

## 제2장 청소년의 우대 등

**제3조(청소년의 우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운영하는 수송시설ㆍ문화시설ㆍ여가시설 등을 청소년이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청소년에게 그 시설의 이용료를 할인하여 주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보조를 받는 자
2. 관계 법령에 따라 세제상의 혜택을 받는 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자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으려는 청소년은 시설의 관리자에게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학생증, 제4조에 따른 청소년증 등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또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26.>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청소년의 나이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청소년증)**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증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청소년증 외에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제작ㆍ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청소년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 제3장 청소년의 건강보장

**제5조(건강한 성장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질병 예방, 건강 교육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호자는 양육하는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성별 특성을 반영한 청소년의 건강ㆍ체력 기준을 설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0.>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한다.<신설 2017. 12. 12., 2021. 4. 20.>

④ 제1항에 따른 시책의 마련, 제2항에 따른 건강ㆍ체력 기준의 설정ㆍ보급 및 제3항에 따른 생리용품 지원의 기준ㆍ범위, 방법, 신청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7. 12. 12., 2021. 4. 20.>

[제목개정 2017. 12. 12.]

**제6조(체력검사와 건강진단)**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체력검사와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체력검사 및 건강진단의 결과를 청소년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력검사ㆍ건강진단의 실시와 그 결과 통보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력검사ㆍ건강진단의 실시와 그 결과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제7조(건강진단 결과의 분석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를 분석하여 청소년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분석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8조(건강진단 결과의 공개 금지)** 제6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근무하였거나 근무하는 사람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강진단 결과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장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등

**제9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의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통합지원체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통합지원체계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2(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통합지원체계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에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공무원 및 민간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③ 관계 행정기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이하 "청소년단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전담공무원 및 민간 전문인력의 업무 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의 사무 범위, 조직 및 운영, 제2항에 따른 전담공무원의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3. 23.]

**제10조(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기청소년의 복지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 3. 23.>
② 심의위원회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와 그 밖에 청소년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 3. 23.>
③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신설 2021. 3. 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및 회의 절차 등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 3. 23.>
[제목개정 2021. 3. 23.]

**제11조(주민의 자원 활동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단체를 구성하여 위기청소년의 발견·보호 및 지원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상담과 전화 설치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청소년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상담을 위하여 전화를 설치·운영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전화의 설치·운영 및 정보통신망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2(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위기청소년 관련 정보의 효율적 처리, 정보 공유 및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등 통합지원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 수집·보유·이용·제공·연계할 수 있다.<개정 2021. 12. 7., 2025. 10. 1.>
1.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에 관한 정보
2. 제12조에 따른 전문가 상담에 관한 정보

3. 제13조에 따른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에 관한 정보
4. 제14조에 따른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에 관한 정보
5. 제16조에 따른 가정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정보
6. 제18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관한 정보
7. 제19조에 따른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에 관한 정보
8.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관한 정보
9.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 관한 정보
10.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관련 정보
11. 「청소년 보호법」 제27조에 따른 인터넷게임 중독ㆍ과몰입 등의 예방 및 피해 청소년 지원 관련 정보
12.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 관련 정보
1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사회보장급여 중 청소년 관련 정보
14.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자료 또는 정보
1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자료 또는 정보
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청소년 지원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이를 수집ㆍ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5. 10. 1.>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위기청소년의 효과적인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정보를 처리하는 민간단체 및 기관과 필요한 정보연계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연계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단체와 기관은 연계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은 통합정보시스템이 보유하는 자료ㆍ정보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성평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이 관련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정보를 제공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은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만 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⑥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⑦ 통합정보시스템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관계 전산망을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⑧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⑨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의 자료 또는 정보를 취득하여 관리ㆍ이용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자료ㆍ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ㆍ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 그 밖에 통합지원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3. 23.]

## 제5장 위기청소년 지원

**제13조(상담 및 교육)**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청소년에게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상담 및 교육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 성실히 상담 및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소득 이하의 가족 및 보호자가 제1항의 상담 및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제14조(위기청소년 특별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청소년에게 필요한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이하 "특별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특별지원은 생활지원, 학업지원, 의료지원, 직업훈련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한다. 다만, 위기청소년의 지원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전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③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 기준,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특별지원의 신청 및 선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기청소년을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중 보호자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람은 해당 청소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12. 18.>
1. 청소년 본인 또는 그 보호자
2.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
3.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4.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5.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여부와 지원 내용 및 기간을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18., 2021. 3. 23.>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2항의 결정을 할 수 있다.<개정 2018. 12. 18., 2021. 3. 23.>

**제16조(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교육·홍보·연구·조사 등 각종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2023. 10. 24., 2025. 10. 1.>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상담, 보호, 자립 지원,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1. 3. 23.>

③ 보호자는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사회 복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노력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1. 3. 23.>

④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보호·지원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1. 3. 23., 2025. 10. 1.>

[제목개정 2021. 3. 23.]

**제16조의2(고립·은둔 청소년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립·은둔 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을 돕기 위하여 상담, 교육, 관계 증진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고립·은둔 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을 돕기 위한 업무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3.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4. 그 밖에 고립·은둔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본조신설 2025. 12. 30.]

**제16조의3(위기청소년 학교 복귀·적응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교육감을 포함한다)는 위기청소년이 학교에 원만히 복귀 또는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2. 30.]

**제17조** 삭제 <2014. 5. 28.>

**제18조(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하여 상담 및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2.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 제5장의2 청소년부모 지원 <신설 2021. 3. 23.>

**제18조의2(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에게 다음 각 호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2. 「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5호사목에 따른 방문건강관리사업 서비스
3. 교육ㆍ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 서비스

② 제1항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대상 청소년부모의 선정 기준,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3. 23.]

**제18조의3(청소년부모에 대한 복지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에게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은 아동양육비지원, 생활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금전, 물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한다.<개정 2025. 12. 30.>

③ 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 대상 청소년부모의 선정 기준,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복지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또는 내용은 소득ㆍ재산 정도, 취업상태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달리하여 정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0.>

[본조신설 2021. 3. 23.]

**제18조의4(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이하 "복지지원"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복지지원을 신청한 청소년부모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복지지원 대상 선정 기준(이하 이 조에서 "복지지원기준"이라 한다)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정보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받아야 한다.

1. 금융정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2. 신용정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3. 보험정보: 「보험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낸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부모가 제1항에 따라 제

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복지지원을 받고 있는 청소년부모가 복지지원기준에 적합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적은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청소년부모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 및 제3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의 방법·절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 12. 30.]

[종전 제18조의4는 제18조의5로 이동 <2025. 12. 30.>]

**제18조의5(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가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부모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학적 유지를 위한 지원 및 교육비 지원 또는 검정고시 지원
2.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교육비 지원
3.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른 교육 지원
4. 그 밖에 청소년부모의 교육 지원을 위하여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의 학업과 양육의 병행을 위하여 그 자녀가 청소년부모가 속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청소년부모가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 청소년부모의 선정 기준,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3. 23.]
[제18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5는 제18조의6으로 이동 <2025. 12. 30.>]

**제18조의6(청소년부모에 대한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가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프로그램
2.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3. 직업소개 및 관리
4. 그 밖에 청소년부모의 직업체험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3. 23.]
[제18조의5에서 이동 <2025. 12. 30.>]

## 제6장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 <개정 2018. 12. 18.>

**제19조(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의 실시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의 비행·일탈을 예방하고 가정·학교·사회 생활에 복귀 및 적응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에 대하여 청소년 본인,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청소년이 취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의 신청에 따라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이하 "보호지원"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학교의 장이 보호지원을 신청하는 때에는 청소년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12. 18.>
1. 비행·일탈을 저지른 청소년
2. 일상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가정 또는 학교 외부의 교육적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
② 보호지원은 해당 청소년이 정상적인 가정·학교·사회 생활에 복귀 및 적응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서 상담·교육·자원봉사·수련·체육·단체활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한다.<개정 2018. 12. 18.>
③ 보호지원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지원의 결과를 검토하여 보호지원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소년 본인의 동의를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8. 12. 18.>
④ 보호지원 대상자의 선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8. 12. 18., 2025. 10. 1.>
[제목개정 2018. 12. 18.]

**제20조(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보호지원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보호지원 활동에 대한 지원 및 지도자 교육 등 보호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8.>

**제21조(보호지원후견인)**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제42조제2항에 따라 보호지원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보호지원 업무를 위탁받은 청소년단체를 말한다)는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을 개인별로 전담하여 지도하는 보호지원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지원후견인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 중에서 지정한다.<개정 2018. 12. 18.>

③ 제1항에 따른 보호지원후견인의 임무ㆍ지정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8. 12. 18., 2025. 10. 1.>

[제목개정 2018. 12. 18.]

## 제7장 청소년복지지원기관

**제22조(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① 국가는 청소년복지 관련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하 "청소년상담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21. 3. 23.>

1. 삭제<2021. 3. 23.>
2. 삭제<2021. 3. 23.>
3. 삭제<2021. 3. 23.>
4. 삭제<2021. 3. 23.>
5. 삭제<2021. 3. 23.>
6. 삭제<2021. 3. 23.>
7. 삭제<2021. 3. 23.>
8. 삭제<2021. 3. 23.>
9. 삭제<2021. 3. 23.>

② 청소년상담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신설 2021. 3. 23.>

1. 청소년 상담 및 복지와 관련된 정책의 연구
2. 청소년 상담ㆍ복지 사업의 개발 및 운영ㆍ지원
3. 청소년 상담기법의 개발 및 상담자료의 제작ㆍ보급
4. 청소년 상담ㆍ복지 인력의 양성 및 교육
5. 청소년 상담ㆍ복지 관련 기관 간의 연계 및 지원
6.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복지시설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대한 지도 및 지원
7. 청소년 가족에 대한 상담ㆍ교육

8.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9. 국가가 설치하는 청소년치료재활센터 및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유지·관리 및 운영
10. 그 밖에 청소년상담원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수사업

③ 청소년상담원은 법인으로 한다.<개정 2021. 3. 23.>

④ 청소년상담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원(分院)을 둘 수 있다.<개정 2021. 3. 23.>

⑤ 청소년상담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개정 2021. 3. 23.>

**제23조(정관)** ① 청소년상담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청소년상담원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5. 10. 1.>

**제24조(사업계획서의 제출 등)** ① 청소년상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② 청소년상담원은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회계감사를 받은 후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고, 3월 말일까지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개정 2015. 2. 3., 2025. 10. 1.>

**제25조(보조금 및 출연 등)** ①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년상담원의 사업 및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 3. 24.>

②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청소년상담원의 운영 또는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4. 3. 24.]

**제26조(임원)** ① 청소년상담원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개정 2016. 12. 20.>

② 이사(이사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개정 2016. 12. 20.>
③ 이사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임면(任免)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25. 10. 1.>
④ 감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면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25. 10. 1.>

**제27조(이사장)** ①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임면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0., 2025. 10. 1.>
② 이사장은 청소년상담원을 대표하고 청소년상담원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6. 12. 20.>
[제목개정 2016. 12. 20.]

**제28조(「민법」의 준용)** 청소년상담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시·군·구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업무를 지도·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18.>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군·구에 설치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군·구에 설치하는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4. 1. 21.>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법인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을 위한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②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장 청소년복지시설

**제31조(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 「청소년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이하 “청소년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5. 29., 2021. 3. 23.>

1. 청소년쉼터: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
2. 청소년자립지원관: 일정 기간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
3. 청소년치료재활센터: 학습·정서·행동상의 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성장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청소년에게 적합한 치료·교육 및 재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거주형 시설
4.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소년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호 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 대하여 보호자를 대신하여 그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가 상담·주거·학업·자립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제32조(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해당 시설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18.>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8. 12. 18., 2025. 10. 1.>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8. 12. 18.>

⑤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생명·신체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18.>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8. 12. 18., 2025. 10. 1.>

**제32조의2(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쉼터 이용)** ① 청소년쉼터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해당 청소년쉼터에 미성년자인 가정 밖 청소년이 입소하는 경우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에게 그 입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2. 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5. 12. 30.>

1. 가정폭력, 친족에 의한 성폭력 또는 아동학대로 인하여 입소하는 경우
2. 보호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청소년쉼터(가정 밖 청소년을 7일의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청소년쉼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해당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가정 밖 청소년이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원인이 되어 입소한 경우에는 그 가정 밖 청소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퇴소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가정 밖 청소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 3. 23., 2021. 4. 20., 2025. 12. 30.>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경우
2. 청소년쉼터 안에서 현저한 질서문란 행위를 한 경우

④ 청소년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제3항 단서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을 퇴소시키는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청소년복지시설에의 입소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1. 4. 20., 2025. 10. 1., 2025. 12. 30.>

[본조신설 2016. 12. 20.]
[제목개정 2021. 3. 23., 2025. 12. 30.]

**제32조의3(자립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3.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의 절차와 방법, 자립지원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의 범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0. 24.]

**제33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제32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청소년복지시설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再開)하려면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업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8., 2025. 10. 1.>

**제34조(청소년복지시설의 종사자)** ① 청소년복지시설에는 각 시설의 사업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종사자를 두어야 한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를 양성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신설 2023. 10. 24.>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 및 배치기준,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3. 10. 24., 2025. 10. 1.>

**제35조(시설개선, 사업정지, 폐쇄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신고한 청소년복지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시설의 개선, 1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1.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인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3. 회계 부정, 이용자에 대한 인권 침해 등 불법행위가 확인된 경우
4. 사업정지 기간에 사업을 한 경우
5.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제36조(청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5조제1항에 따라 시설의 개선, 사업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8.>

## 제9장 보칙

**제37조(비밀 누설의 금지)** 청소년상담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이하 "청소년복지지원기관"이라 한다)나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청소년복지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동일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이 아니면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또는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9조(감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에는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하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거나 종사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40조(예산의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 관련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41조(기관ㆍ시설 등의 평가)**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 또는 이 법에 따라 청소년복지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 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성과평가 또는 경영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10. 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 등의 감독과 지원에 반영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제42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각각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② 이 법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2조의2(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 ① 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은 필요한 경우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13. 5. 28.]

## 제10장 벌칙

**제43조(벌칙)** ① 제12조의2제9항을 위반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의 자료ㆍ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ㆍ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1. 3. 2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21. 3. 23.>
1. 제8조를 위반하여 건강진단 결과를 공개한 사람
2. 제37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21. 3. 23.>

1. 제32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2.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명령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을 받고도 그 사업을 하거나 시설을 운영한 자

**제4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8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39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33조를 위반하여 휴업ㆍ폐업 또는 운영 재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증을 양도하거나 빌려준 사람 또는 양도받거나 빌린 사람
2.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제작하거나 사용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8. 12. 18.>

**부칙** <제11290호,2012. 2.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별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청소년은 이 법에 따라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으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한국청소년상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청소년기본법」 제42조에 따라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한국청소년상담원은 이 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으로 본다.

**제4조**(시ㆍ도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청소년기본법」 제46조에 따라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시ㆍ도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 또는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라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시ㆍ군ㆍ구 청소년지원 등의 기관은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본다.

**제5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제22조제2항제1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 「청소년복지지원법」제14조의 청소년쉼터, 「청소년기본법」 제46조의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 및 같은 법 제46조의2의 청소년지원 등의 기관 ”을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 성매매피해상담소, 「청소년기본법」 제46조의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 및 같은 법 제46조의2의 청소년지원 등의 기관은 ”을 “ 성매매피해상담소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으로 한다.

제44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제45조제1항제4호 중 “ 제44조제1항제4호의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과 청소년지원 등의 기관, 같은 항 제5호 ”를 “ 제44조제1항제5호 ”로, “ 청소년쉼터 ”를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쉼터 ”로 한다.

② 청소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5까지, 제43조, 제44조, 제46조, 제46조의2 및 제5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중 “ 협의회ㆍ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ㆍ상담원ㆍ제46조 및 제4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관ㆍ청소년정책연구원 ”을 각각 “ 협의회,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ㆍ제29조ㆍ제30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ㆍ청소년상담복지센터ㆍ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정책연구원 ”으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 협의회ㆍ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ㆍ상담원ㆍ제46조 및 제46조의2에 따른 기관 등 ”을 “ 협의회ㆍ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등 ”으로 한다.

제61조 중 “ 상담원ㆍ협의회 ”를 “ 협의회 ”로, “ 한국청소년상담원ㆍ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를 “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청소년복지지원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836호,2013. 5.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탁기준 및 방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탁하는 청소년복지지원기관ㆍ청소년복지지설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329호,2014. 1. 21.>(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중 “ 「청소년활동진흥법」 ”을 “ 「청소년활동 진흥법」 ”으로 한다.

**부칙** <제12536호,2014. 3. 2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700호,2014. 5. 28.>(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3181호,2015. 2. 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237호,2016. 5. 2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47호,2016. 12.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 및 제2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원장에 관한 경과조치) 제26조 및 제27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원장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이사장으로 본다.

**부칙** <제15210호,2017. 12. 1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88호,2018. 12.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 및 제33조 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973호,2021. 3. 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영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부칙** <제18101호,2021. 4.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리용품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생리용품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8550호,2021. 12. 7.>(청소년 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2항제11호 중 "중독"을 "중독ㆍ과몰입"으로, "피해"를 "예방 및 피해"로 한다.

**부칙** <제19131호,2022. 12. 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61호,2023. 10. 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841호,2023. 12. 26.>(주민등록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 주민등록증 "을 "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으로 한다.

⑬ 생략

**부칙** <제21065호,2025. 10. 1.>(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28>까지 생략

<429>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2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6항ㆍ제8항, 제16조제1항ㆍ제4항, 제18조의4제3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4조제2항, 제4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42조제1항 중 “ 여성가족부장관 ”을 각각 “ 성평등가족부장관 ”으로 한다.

제2조의2제3항, 제4조제4항, 제6조제4항, 제9조의2제2항, 제13조제3항, 제18조의4제1항제4호, 제19조제4항, 제21조제3항, 제32조제3항ㆍ제6항, 제32조의2제2항, 제33조 전단, 제34조제4항, 제35조제2항, 제41조제1항 본문 및 제42조의2제2항 중 “ 여성가족부령 ”을 각각 “ 성평등가족부령 ”으로 한다.

제26조제4항 중 “ 기획재정부장관 ”을 “ 재정경제부장관 ”으로 한다.

<430>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278호,2025. 12. 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13호, 2026. 6. 16., 일부개정]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02 - 2100 - 6272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02 - 2100 - 6243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02 - 2100 - 6351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장의2 청소년의 우대 <신설 2015. 7. 24.>

**제1조의2(청소년의 우대)** ①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는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3. 19.>

1.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2.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이용시설

② 법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는 청소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으로 한다.

1. 9세 이상 18세 이하인 청소년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초과 24세 이하인 청소년

[본조신설 2015. 7. 24.]

## 제2장 청소년의 건강보장

**제2조(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시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한 시책으로서 청소년이 참가하는 체육대회를 장려하고, 청소년 스포츠 동호인 활동을 적극 지원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대회 개최 및 동호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3. 19.>

**제3조(청소년 건강·체력 기준의 설정·보급)**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청소년의 건강·체력 기준을 설정하고 보급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성장 환경을 고려하여 5년 이내의 기간마다 청소년의 건강·체력 기준을 새로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제3조의2(생리용품 지원의 대상과 방법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사람의 가구원인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을 지원한다. <개정 2022. 4. 19., 2025. 10. 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의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4.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생리용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직접 지급하거나 생리용품의 이용권[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4. 19.>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 대상 결정 등 생리용품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2. 4. 19.>

④ 제2항에 따라 생리용품 또는 생리용품의 이용권을 지급받으려는 여성청소년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해야 한다.<개정 2019. 3. 19., 2022. 4. 19., 2025. 10. 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에 필요한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18. 6. 5.]

[제목개정 2022. 4. 19.]

## 제3장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등

**제4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성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이하 "필수연계기관"이라 한다)를 반드시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28., 2014. 6. 11., 2015. 7. 24., 2015. 11. 18., 2018. 10. 30., 2019. 3. 19., 2020. 12. 31.>

1. 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청소년 지원시설
3.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4.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6.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7.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
8.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9.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의2에 따른 청소년 비행예방센터
11.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 및 제23조에 따른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
1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1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통합지원체계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지역주민단체의 위기청소년 발견ㆍ보호 및 지원을 위한 활동 지원
2.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상담전화(이하 “상담전화”라 한다) 등의 설치ㆍ운영
3.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보호, 의료지원, 학업지원 및 자활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③ 필수연계기관은 담당 업무와 관련되어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 의뢰가 있는 경우에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④ 필수연계기관의 협력의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12. 4., 2014. 6. 11., 2015. 7. 24., 2018. 10. 30., 2021. 9. 24.>

1. 지방자치단체: 통합지원체계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수연계기관의 활동을 상호 연계하거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의 추진
2. 시ㆍ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관할지역 안의 학교폭력, 학업중단 등 위기상황에 처한 학생에 대한 상담 지원 의뢰 및 학교 내 상담 활성화를 위한 협조
3. 각급 학교: 해당 학교의 학생이 학교폭력 등 위기상황, 학교부적응 등의 사유로 결석하거나 자퇴를 희망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전문적인 상담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담지원 의뢰
4.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위기청소년에 대한 비행예방교육 및 상담활동 협조
5. 경찰관서: 가정 밖 청소년 등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보호 의뢰 및 긴급구조를 필요로 하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구조 협조
6. 지방고용노동관서: 위기청소년에 대하여 직업훈련 또는 취업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협조
7.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소: 위기청소년에 대하여 진료 또는 치료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협조
8. 청소년복지시설 및 청소년지원시설: 청소년에 대한 일시ㆍ단기 또는 중장기적 보호 협조
9.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위기청소년에 대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협조

10. 보호관찰소: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에 대하여 전문적인 상담ㆍ복지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담ㆍ복지지원 등의 의뢰

**제5조(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사항)**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3. 19., 2021. 9. 24.>

1.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9조에 따른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이하 "보호지원"이라 한다)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6.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의 제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목개정 2021. 9. 24.]

**제6조(상담전화 설치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상담전화를 설치하여 청소년 관련 신고접수, 상담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② 상담전화는 전국적으로 같은 번호로 하루 24시간 운영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터넷, 무선통신 등 다양한 방식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청소년 상담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담전화의 설치ㆍ운영 및 정보통신망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25. 10. 1.>

**제6조의2(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1. 위기청소년 지원 등에 관한 정보 안내 및 지원 신청 접수
2.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간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한 통합지원관리
3.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통계 생성 및 관리
4. 그 밖에 위기청소년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법 제12조의2제2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청소년 지원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 중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1. 「아동복지법」 제15조의4에 따른 아동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대상아동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입력ㆍ관리 정보 및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통합서비스 지원대상에 관한 정보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의 자살 관련 상담과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에 관한 정보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이 관리하는 정신질환자에 관한 정보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관리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정보
5. 「병역법」 제77조의5제1항에 따른 병역 정보 중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전문적인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판정받은 병역의무자에 관한 정보
6. 그 밖에 제4조제4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정한 통합지원체계 필수연계기관의 협력의무 수행을 위하여 해당 기관과 협의한 정보

[본조신설 2021. 9. 24.]

## 제4장 위기청소년 지원

**제7조(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내용 등)** ① 법 제14조에 따른 위기청소년에 대한 특별지원(이하 "특별지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원은 제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한다. <개정 2013. 12. 4., 2015. 1. 6., 2015. 9. 15., 2015. 12. 30., 2023. 4. 18., 2025. 10. 1.>

1. 청소년이 일상적인 의ㆍ식ㆍ주 등 기초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등의 지원
2. 청소년이 신체적ㆍ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건강검진 및 치료 등을 위한 비용의 지원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1호ㆍ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 등 학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비용의 지원
4. 취업을 위한 지식ㆍ기술ㆍ기능 등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훈련비의 지원
5. 폭력이나 학대 등 위기상황에 있는 청소년에게 필요한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의 지원
6. 그 밖에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용의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만 해당하며, 지원 내용에 따른 구체적인 금액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25. 10. 1.>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그 지원기간을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지원은 두 번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8조(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기준)** ①법 제14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이하 “특별지원대상청소년”이라 한다)은 해당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일정 기준금액 이하인 청소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기청소년 중에서 선정한다. <개정 2015. 7. 24., 2015. 12. 30., 2019. 3. 19., 2021. 9. 24., 2023. 4. 18., 2025. 11. 18.>

1. 보호지원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3.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4.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

② 제1항에 따른 해당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산정방법과 기준금액에 대해서는 가구원의 소득활동 유형, 가구원 수 및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5. 12. 30., 2025. 10. 1.>

**제9조(특별지원대상청소년 선정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선정 여부와 제7조에 따른 지원 내용 등을 결정해야 한다. 다만, 제8조에 따른 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4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 3. 19., 2021. 9. 24.>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19. 3. 19.>

1. 보호자의 유무 및 보호정도 등 보호자에 관한 사항
2. 청소년의 생계, 학업 및 건강상태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및 재산에 관한 사항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원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개정 2019. 3. 19.>

④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지원대상청소년 선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1. 9. 24., 2025. 10. 1.>

[제목개정 2021. 9. 24.]

**제10조(특별지원 내용 등 통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기청소년에 대하여 특별지원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의 요지(특별지원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원 내용·금액 및 기간을 포함한다)를 청소년 본인, 보호자 및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19.>

## 제4장의2 청소년부모 지원 <신설 2021. 9. 24.>

**제10조의2(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및 복지지원)** ① 법 제18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 서비스”란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1. 자녀양육 지도, 정서지원 등의 생활도움 서비스
2. 청소년부모에 필요한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한 통합지원관리 서비스

② 법 제18조의3제2항에서 “아동양육비지원, 생활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개정 2025. 10. 1., 2026. 6. 16.>

1. 청소년부모가 18세 미만인 자녀를 보호ㆍ양육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지원

1의2.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의 의식주 등 기초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

2.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의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 연계 및 상담서비스 지원
3. 청소년부모에게 필요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 연계 지원
4. 그 밖에 청소년부모의 성장과 그 자녀의 안정적 양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복지지원

③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및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아이돌봄 지원법」,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한다.

④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및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 대상자는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사람 중에서 재산정도 및 취업상태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이 경우 해당 비율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5. 10. 1.>

⑤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및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 기간은 1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2026. 6. 16.>

[본조신설 2021. 9. 24.]

**제10조의3(금융정보 등의 범위)** ① 법 제18조의4제1항제1호에서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 납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 가액
5.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금 또는 할인액

② 법 제18조의4제1항제2호에서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2.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③ 법 제18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보험증권: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2. 연금보험: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의 보험증권 및 연금보험에서 발생하는 이자 또는 배당금

[본조신설 2026. 6. 16.]
[종전 제10조의3은 제10조의5로 이동 <2026. 6. 16.>]

**제10조의4(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8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법 제18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및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요청해야 한다.
1.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 대상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 조회 기준일 및 조회 기간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금융정보등을 제공해야 한다.
1.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 대상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명칭
3.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 금융정보등의 내용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해당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6. 16.]

**제10조의5(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 법 제1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교육비 지원 및 검정고시 지원 대상자는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사람 중에서 재산정도 및 취업상태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해당 비율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3. 25., 2025. 10. 1., 2026. 6. 16.>

[본조신설 2021. 9. 24.]

[제10조의3에서 이동 <2026. 6. 16.>]

## 제5장 청소년 보호지원 <개정 2019. 3. 19.>

**제11조(보호지원 내용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보호지원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과 상담하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호지원후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들어 보호지원의 내용ㆍ방법 및 기간을 정해야 한다. 이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에 대해서는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19.>

② 법 제19조제2항에서 "상담ㆍ교육ㆍ자원봉사ㆍ수련ㆍ체육ㆍ단체활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신설 2019. 3. 19., 2025. 10. 1.>

1. 개인상담, 가족ㆍ보호자 상담 및 집단상담 등의 지원
2. 인성교육, 취업훈련, 진로교육 및 건강교육 등의 지원
3.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센터 또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연계한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4.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에서의 수련ㆍ문화ㆍ체육ㆍ단체활동 등의 지원
5. 그 밖에 청소년의 비행ㆍ일탈을 예방하고 가정ㆍ학교ㆍ사회 생활의 복귀 및 적응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목개정 2019. 3. 19.]

## 제6장 청소년복지지원기관

**제12조(사업계획서)**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하 "청소년상담원"이라 한다)이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10. 1.>

1. 사업의 목표, 사업의 수행 방침, 주요 사업의 내용 등 사업의 개요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財源)의 구성
3. 정부의 보조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액수 및 사용계획
4. 사업 수행의 기대효과
5.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13조(세입ㆍ세출 결산서)** 청소년상담원이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세입ㆍ세출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1.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집행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한 서류
2. 청소년상담원 감사의 감사의견서 및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을 포함한다)의 감사의견서
3.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결산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하는 자료

**제14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9. 3. 19.>

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ㆍ복지지원
2. 상담ㆍ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5. 청소년 폭력ㆍ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 보호 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自活) 및 재활(再活) 지원
7.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② 시ㆍ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는 장 1명을 두고, 관리업무,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 일반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두며, 일시보호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생활지도를 하는 직원을 둔다.

③ 시ㆍ군ㆍ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는 장 1명을 두고, 관리업무,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둔다.

④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신설 2022. 4. 19.>

**제15조(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업무)**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이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이주배경청소년 복지에 관한 종합적 안내
2. 이주배경청소년과 그 부모에 대한 상담 및 교육
3. 이주배경청소년의 지원을 위한 인력의 양성 및 연수
4.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사업
5. 이주배경청소년의 실태에 관한 조사ㆍ연구
6.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 제7장 청소년복지시설

**제16조(청소년복지시설의 보험 가입)**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보험금액의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 경우 지급되는 보험금액은 실손해액(實損害額)으로 하되, 사망의 경우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9. 3. 19., 2023. 4. 18.>

1. 사망의 경우: 1억5천만원
2. 부상의 경우: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금액
3. 부상의 경우에 그 치료가 완료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장해(이하 "후유장해"라 한다)가 생긴 경우: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금액
4. 부상자가 치료 중에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5. 부상자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6. 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해당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제1호의 금액에서 제3호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뺀 금액

**제17조(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등)**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9. 3. 19.>

**제17조의2(청소년쉼터 입소 사실 통보의 예외 사유)** 법 제32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보호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2. 보호자가 수신을 거부하거나 교정시설 또는 치료ㆍ보호 시설에 수용 또는 입소하는 등의 사유로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전문개정 2026. 6. 16.]

**제17조의3(자립지원)** ① 법 제32조의3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 10. 1.>

1.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등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2. 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치료재활센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종사자에 대한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 관련 교육ㆍ훈련의 실시
3.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의 범위는 청소년복지시설에 입소하여 이용하고 있거나 퇴소한 사람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 4. 16.]

## 제8장 보칙

**제1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법 제6조제3항, 제12조의2제8항, 제16조제4항 및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4., 2018. 6. 5., 2019. 3. 19., 2021. 9. 24., 2022. 4. 19., 2025. 10. 1.>

1. 법 제4조에 따른 청소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신청과 교부에 관한 업무
1의2.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생리용품 지원 등에 관한 업무
2. 법 제6조에 따른 체력검사와 건강진단의 실시, 결과 통보 및 치료 등에 관한 업무
3. 법 제12조에 따른 청소년에 대한 전문가 상담에 관한 사무
3의2. 법 제12조의2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3조에 따른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에 관한 사무
5. 법 제14조에 따른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및 대상 선정에 관한 사무
6. 법 제16조에 따른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무
7. 삭제<2015. 5. 28.>
8. 법 제18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 등에 관한 사무
9. 법 제19조에 따른 보호지원 대상자의 선정 및 보호지원 실시 등에 관한 사무

[제목개정 2013. 12. 4.]

**제19조(업무의 위탁)**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의 건강ㆍ체력 기준의 설정 및 보급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4., 2018. 6. 5., 2025. 10. 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제19조의2(규제의 재검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7조 및 별표 3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에 대해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 2025. 11. 18.>

[전문개정 2018. 12. 24.]

## 제9장 벌칙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부칙** <제24002호,2012. 7.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1290호 청소년복지지원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보는 시ㆍ도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과 시ㆍ군ㆍ구 청소년지원 등의 기관의 설치ㆍ운영 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종전 규정에 따라 운영하되, 이 영 시행 후 3년 이내에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청소년쉼터는 이 영 시행 후 3년 이내에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치ㆍ운영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②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③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제24조제6항 중 "법 제4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원"을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으로 한다.

제24조제7항 중 "한국청소년상담원"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으로 한다.

제30조, 제31조, 제33조 및 제33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3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원"을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의 배치대상 청소년시설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배치대상 청소년시설 |
| --- |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시ㆍ군ㆍ구에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

④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에 따른 청소년쉼터”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4340호,2013. 1. 28.>(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8호 중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로 한다.

④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4905호,2013. 12. 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375호,2014. 6. 11.>(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⑧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25840호,2014. 12. 9.>(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5961호,2015. 1. 6.>(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를 "중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로 한다.

**부칙** <제26287호,2015. 5. 28.>(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7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26448호,2015. 7. 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521호,2015. 9. 15.>(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중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를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로 하고,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를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로 한다.

**부칙** <제26651호,2015. 11. 18.>(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9호 중 “ 「지역보건법」 제7조 ”를 “ 「지역보건법」 제10조 ”로 한다.

⑧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6811호,2015.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한 경우 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7638호,2016. 11.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소년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호자를 대신하여 감호 위탁을 받은 사람이 운영하는 시설을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청소년회복지원시설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2년까지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부칙** <제28108호,2017. 6. 13.>

이 영은 2017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938호,2018. 6. 5.>

이 영은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266호,2018. 10.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421호,2018. 12. 24.>(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628호,2019. 3. 19.>

이 영은 2019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950호,2019. 7. 2.>(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349호,2020. 12. 31.>(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3( 까지 생략

4)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7호 중 “「경찰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방경찰청”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4! 부터4( 까지 생략

**부칙** <제32007호,2021. 9. 24.>

이 영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593호,2022. 4. 19.>

이 영은 2022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004호,2022. 11. 29.>(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3! 까지 생략

3@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을 각각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로 한다.

3# 부터3( 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33422호,2023. 4.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거나 종전의 보험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험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보험에 가입한 경우로서 보험금액이 제16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해당 보험의 갱신 기간이 2023년 9월 30일 전에 도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2023년 9월 30일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도록 종전의 보험 계약을 변경해야 한다.

**부칙** <제33761호,2023. 9. 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417호,2024. 4. 16.>

이 영은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396호,2025. 3. 25.>(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806호,2025. 10. 1.>(성평등가족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2) 까지 생략

2!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조의2제1항제4호, 제6조제4항,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7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2항, 제10조의2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10조의3 후단, 제11조제2항제5호,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17조의3제1항제3호,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의2, 별표 1 제3호나목2), 별표 2 제1호나목6) 및 같은 호 다목8) 중 “ 여성가족부장관 ”을 각각 “ 성평등가족부장관 ”으로 한다.

제3조의2제4항ㆍ제5항, 제9조제4항 중 “ 여성가족부령 ”을 각각 “ 성평등가족부령 ”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35396호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조 중 “ 여성가족부장관 ”을 “ 성평등가족부장관 ”으로 한다.

2@ 부터2$ 까지 생략

**부칙** <제35850호,2025. 11. 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413호,2026. 6. 16.>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10. 1.>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운영 기준(제14조제4항 관련)

1. 입지기준

일조·채광·환기 등이 원활하고 급수 및 교통수단 등이 갖추어져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의 건강 유지 및 재해 방지가 가능하고, 종사자 및 이용자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적합한 위치여야 한다.

2. 시설의 구조 및 설비

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다음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사무실

1개 이상

2) 상담대기실

1개 이상(도서 등을 열람할 수 있는 시설 설치)

3) 집단상담 및 심리검사실

1개 이상(집단상담실과 심리검사실의 공동 사용 가능)

4) 전화 등 상담실

1개 이상(전화상담실과 그 밖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상담실의 공동 사용 가능)

5) 위생시설

근무하는 종사자와 예상되는 이용자의 수에 적합한 화장실, 세면장

6) 사업실

수행하는 사업의 수와 같은 수의 분리된 공간

7) 교육실

청소년 및 보호자 등을 교육할 교육실 1개 이상

8) 개인상담실

가)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 5개 이상

(2) 원활한 상담과 개인비밀 보호를 위해 분리된 공간 또는 방음(防音) 장치

나)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 3개소 이상

(2) 원활한 상담과 개인비밀 보호를 위해 분리된 공간 또는 방음 장치

9) 일시보호소(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 남성용·여성용 각각 별도로 1개 이상

(2) 숙소, 세면장, 취사시설, 사무실 및 상담실 등 각 1개 이상
(3) 전화, 소방장비 등 비치

나. 규모
1)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의 독립된 공간
2)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독립된 공간

3. 운영기준
가.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14명 이상의 직원,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5명 이상의 직원으로 운영하되, 지역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이 경우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3명 이상의 청소년상담사를,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1명 이상의 청소년상담사를 반드시 두어야 한다.
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의 업무를 같이 수행할 수 없다. 다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설치·운영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인 경우
2) 그 밖에 업무 관련성·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다른 기관의 업무를 같이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그 다른 기관의 장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의 경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5. 10. 1.>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제14조제4항 관련)

1. 시 · 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구분 | 자격기준 |
|---|---|
| 가.센터장 | 1)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br>가) 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 과정을 이수한 사람<br>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br>2)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br>가)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br>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br>3)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br>가) 상담복지 분야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br>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br>4)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분야에 능력과 자질이 있다고 전문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 시 ·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
| 나. 관리 업무 수행 직원 | 1)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br>가) 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 과정을 이수한 사람<br>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br>2)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br>가)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br>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br>3) 청소년상담사 1급인 사람<br>4)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청소년대상 실무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br>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정신건강임상심리사(이하 "정신건강임상심리사"라 한다) 1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br>6) 국민의 심리적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 학회 중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 · 학회에서 시행하는 임상심리전문 |

| | |
|---|---|
| | 가 자격을 취득한 사람 |
| 다.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 수행 직원 | 1)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 상담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br>2)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br>가) 상담복지 분야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br>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br>3)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br>가)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br>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br>4)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인 사람<br>5)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br>6)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임상심리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br>7)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br>가) 청소년상담사 3급, 청소년지도사 2급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인 사람<br>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br>8) 국민의 심리적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학회 중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학회에서 시행하는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사람 |
| 라. 행정업무 수행 직원 |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
| 마. 생활 지도 직원 | 1) 상담복지 분야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 상담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br>2)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br>가)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br>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br>3)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 | |
|---|---|
| | 가)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또는 사회복지사<br>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2. 시 · 군 · 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구분 | 자격기준 |
|---|---|
| 가. 센터장 | 1)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br>가) 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 과정을 이수한 사람<br>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br>2)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br>가)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br>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br>3)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br>가) 상담복지 분야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br>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br>4) 청소년상담사 1급인 사람<br>5)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분야에 능력과 자질이 있다고 전문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 나. 관리 업무 수행 직원 | 1) 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과정을 이수한 사람<br>2)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br>가)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br>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br>3)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인 사람<br>4)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청소년대상 실무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
| 다.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 수행 직원 | 1)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br>2)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br>가) 상담복지 분야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br>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br>3)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 | |
|---|---|
| | 가) 상담복지 분야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br>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br>4)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br>가)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br>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br>5)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인 사람<br>6)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br>가) 청소년상담사 3급, 청소년지도사 2급 또는 사회복지사 2급인 사람<br>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비고

제1호 및 제2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담복지 분야"란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청소년(지도)학 및 상담복지와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분야를 말한다.
2.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란 다음 각 목의 경우를 말한다.
   가.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복지에 관한 업무를 상시근무직으로 수행한 경우
   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청소년 정책 관련 업무를 상시근무직으로 수행한 경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5. 11. 18.>

#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운영 기준(제17조 관련)

## 1. 청소년복지시설 설치기준

### 가. 일시 청소년쉼터

#### 1) 고정형

| 구분 | 기준 |
|---|---|
| 입지조건 | ▪ 시설의 적정한 분포와 보건·위생·급수·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의 부지에 설치 |
| 건물형태 | ▪ 단독건물 또는 상가건물<br>▪ 입소인원 1인당 연면적 11제곱미터 이상 |
| 침실 | ▪ 남·여용 구분 설치<br>▪ 채광, 환기 및 냉난방 가능 공간 |
| 조리실·식당 | ▪ 채광 및 환기 가능 구조<br>▪ 위생적인 취사·조리 및 식기소독 설비의 구비 |
| 화장실·목욕실 | ▪ 남·여용 구분 설치<br>▪ 수세식 화장실, 세면·샤워 설비 및 온수 공급 |
| 세탁·건조장 | ▪ 세탁 및 건조용 설비 |
| 상담실 | ▪ 칸막이 또는 방음장치를 설치하여 개별상담 및 집단상담이 가능한 공간 |
| 단체활동실 | ▪ 15명 이상(수용정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수용정원의 120퍼센트 이상)이 참석할 수 있는 공간 |
| 사무실 | ▪ 사무를 위한 설비를 갖춘 분리된 공간<br>▪ 이동형 일시쉼터를 같이 운영하는 경우 고정형 일시쉼터 운영을 위한 사무실과 별도의 사무실 |
| 비상재해 대비시설 |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소화기 및 피난기구 등 시설 실정에 맞는 비상재해대비시설 및 장비의 설치·구비 |

#### 2) 이동형

| 구분 | 기준 |
|---|---|
| 차량 | ▪ 대형버스 또는 이에 준하는 차량 |
| 휴게공간 | ▪ 간이침대, 소파 등 휴게용 시설<br>▪ 조리시설 및 식탁<br>▪ 인터넷 및 문화공간 등 단체활동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
| 상담공간 | ▪ 개별상담 및 집단상담이 가능한 공간 및 설비<br>▪ 응급 약품 |
| 사무실 | ▪ 업무용 책상 및 컴퓨터 등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br>※ 이동형 차량과 별도의 사무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
| 비상재해 대비시설 | ▪ 소화기 |

### 나. 단기·중장기 청소년쉼터

| 구분 | 기준 |
|---|---|
| 입지조건 | ▪ 시설의 적정한 분포와 보건·위생·급수·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고려한 쾌적한 환경의 부지에 설치 |
| 건물형태 | ▪ 단독건물, 연립주택, 상가건물, 아파트 등<br>▪ 입소인원 1인당 연면적 11제곱미터 이상 |
| 침실 | ▪ 채광, 환기 및 냉난방 가능 공간 |
| 조리실·식당 | ▪ 채광 및 환기 가능<br>▪ 위생적인 취사·조리 및 식기소독 설비의 구비 |
| 화장실·목욕실 | ▪ 남·여용 구분 설치<br>▪ 수세식 화장실, 세면·샤워 설비 및 온수 공급 |
| 세탁·건조장 | ▪ 세탁 및 건조용 설비 |
| 상담실 | ▪ 칸막이 또는 방음장치를 설치하여 개별상담 및 집단상담이 가능한 공간 |
| 단체활동실 | ▪ 15명 이상(수용정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수용정원의 120퍼센트 이상)이 참석할 수 있는 공간 |
| 사무실 | ▪ 사무를 위한 컴퓨터, 책상 등 설비를 갖춘 공간 |
| 숙직실 | ▪ 숙직을 위한 침구류 등을 갖춘 공간 |
| 비상재해 대비시설 |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소화기 및 피난기구 등 시설 실정에 맞는 비상재해대비시설 및 장비의 설치·구비 |

다. 청소년자립지원관

1) 숙박형 생활시설: 숙박 등 생활 지원과 자립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

| 구분 | 기준 |
|---|---|
| 입지조건 | ▪ 시설의 적정한 분포와 보건·위생·급수·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의 부지에 설치 |
| 건물형태 | ▪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br>▪ 수용 인원 1명당 연면적 11제곱미터 이상 |
| 침실 | ▪ 남성용·여성용 구분 설치<br>▪ 채광, 환기 및 냉난방 가능 공간 |
| 조리실·식당 | ▪ 채광 및 환기 가능<br>▪ 위생적인 취사·조리 및 식기소독 설비의 구비 |
| 화장실·목욕실 | ▪ 남성용·여성용 구분 설치<br>▪ 수세식 화장실, 세면·샤워 설비 및 온수 공급 |
| 세탁·건조장 | ▪ 세탁 및 건조용 설비 |
| 상담실·사무실·숙직실 | ▪ 상담 및 사무를 위한 컴퓨터, 책상 등 적절한 설비 구비<br>▪ 시설의 여건을 고려하여 숙직실로 통합운영 가능 |
| 비상재해 대비시설 |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소화기 및 피난기구 등 시설 실정에 맞는 비상재해대비시설 및 장비의 설치 및 구비 |

2) 비숙박형 이용시설: 숙박 지원이 없이 자립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

| 구분 | 기준 |
|---|---|
| 입지조건 | ■ 시설의 적정한 분포와 보건·위생·급수·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의 부지에 설치 |
| 시설형태 | ■ 자립지원프로그램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 |
| 화장실 | ■ 남성용·여성용 구분 설치<br>■ 수세식 화장실, 세면 설비 및 온수 공급 |
| 상담실·사무실 | ■ 상담 및 사무를 위한 컴퓨터, 책상 등 적절한 설비 구비<br>■ 시설의 여건을 고려하여 통합운영 가능 |
| 비상재해 대비시설 |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소화기 및 피난기구 등 시설 실정에 맞는 비상재해대비시설 및 장비의 설치 및 구비 |

라. 청소년치료재활센터

| 구분 | | 기준 |
|---|---|---|
| 공동생활시설 | | · 남·여용 구분 설치<br>· 1개의 공동생활시설은 5~7명의 청소년 및 보호·자립지원 요원 1명이 가족 형태로 생활할 수 있는 거주형 공간 마련<br>· 채광·환기 및 냉난방이 가능한 침실을 설치<br>· 휴식을 취하거나 공동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 마련<br>· 간단한 요리가 가능한 시설 설치<br>· 변기, 세면대와 샤워부스가 갖춰진 위생 공간 및 간단한 세탁을 위한 설비 마련<br>· 생활지도를 위한 사무실 및 보호·자립지원 요원 침실을 설치 |
| 교육·재활 훈련시설 | 학습실 | · 1실당 10명 이상의 청소년이 공부할 수 있는 시설 |
| | 공연실 | · 각종 공연활동과 심리극을 연출할 수 있는 공간 |
| | 체육활동실 | · 단체 체육활동이 가능한 공간 |
| | 진로체험실 | · 진로체험이 가능한 설비를 갖춘 공간 |
| | 다목적실 | · 다양한 소규모 활동이 가능한 공간 |
| | 생태체험실 | · 다양한 생태문화를 접할 수 있는 산책로와 생태체험 공간 |
| | 의무실 | · 진찰, 건강상담 및 치료를 위한 공간<br>· 응급환자를 위한 대비시설 및 비상의약품 상비 |
| 전문치료시설 | 심리검사실 | · 지능검사, 성격검사, 적성검사 및 학력검사가 가능하고, 방음시설이 마련된 공간 |
| | 심리치료실 | · 놀이, 미술, 음악 등을 이용한 심리치료 공간 |

| | | |
|---|---|---|
| | | · 개인치료와 집단치료 공간을 분리하되, 자유롭고 안전하며 안락한 분위기로 조성하고, 방음시설을 구비 |
| | 관찰실 | · 상담상황 및 안전 상태를 관찰할 수 있는 공간<br>· 입소 청소년의 보호자가 입소 청소년에 대한 상담과 치료를 관찰할 수 있는 공간 |
| | 상담실 | ·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이 가능하고, 칸막이 또는 방음시설이 마련된 공간 |
| 편의시설 | 휴게실 | · 입소 청소년의 휴식, 이용편의와 정서 안정을 위한 실내 및 실외 휴게 공간 |
| | 조리실, 식당 | · 위생적인 취사·조리 및 식기소독 설비의 구비<br>· 입소 청소년 전원이 함께 식사가 가능한 공간 마련 |
| | 세탁·건조장 | · 세탁 및 건조 설비를 갖춘 공간 |
| | 화장실·목욕실 | · 남·여용 구분 설치<br>· 수세식 화장실, 세면·샤워 설비 및 온수 공급 |
| 지원시설 | 사무실 | · 업무용 책상, 컴퓨터 등 사무에 필요한 설비를 갖춘 공간 |
| | 숙직실 | · 숙직을 위한 침구류 등을 갖춘 공간 |
| | 보호자실 | · 보호자 대기 시 이용편의를 위한 공간<br>· 보호자를 위한 침구류 등을 갖춘 공간 |

마. 청소년회복지원시설

| 구분 | 기준 |
|---|---|
| 1) 입지조건 | · 시설의 적정한 분포와 보건·위생·급수·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의 부지에 설치 |
| 2) 건물형태 | · 단독주택, 연립주택, 상가건물 또는 아파트 등<br>· 입소인원 1명당 연면적 11제곱미터 이상이고, 최소 5명 이상이 생활할 수 있을 것 |
| 3) 침실 | · 채광, 환기 및 냉난방이 가능한 공간 |
| 4) 사무실 | · 사무를 위한 컴퓨터 및 책상 등의 설비를 갖춘 공간 |
| 5) 숙직실 | · 숙직을 위한 침구류 등을 갖춘 공간 |
| 6) 상담실 | · 상담을 위한 적당한 설비를 갖춘 공간 |
| 7) 조리실·식당 | · 채광 및 환기가 가능한 공간<br>· 위생적인 취사·조리 및 식기소독 설비를 갖춘 공간 |
| 8) 화장실·목욕실 | · 수세식 화장실<br>· 목욕실은 세면·샤워 설비를 갖추고 온수 공급이 가능한 공 |

| | 간 |
|---|---|
| 9) 세탁·건조장 | · 세탁 및 건조용 설비 |
| 10) 비상재해 대비시설 |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소화기 및 피난기구 등 시설 실정에 맞는 비상재해 대비시설 및 장비의 설치·구비 |

비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 간에는 하나의 공간에 설치하여 겸용할 수 있다.

1. 사무실, 숙직실 또는 상담실
2. 조리실·식당 또는 세탁·건조장
3. 화장실·목욕실 또는 세탁·건조장

2. 청소년복지시설 운영기준

가. 관리규정

청소년복지시설의 장은 다음 사항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효율적으로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1) 청소년복지시설의 운영방침
2) 정원 및 직원의 업무 분장
3) 청소년복지시설의 입소 요령
4) 청소년복지시설의 이용 수칙
5) 그 밖에 청소년복지시설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내용

나. 장부 등의 비치

청소년복지시설의 장은 다음의 장부 및 서류(전자적 파일 형태의 장부 및 서류를 포함한다)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관리에 관한 장부
가) 청소년복지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나) 직원 관계철(인사기록카드·이력서·사진을 포함한다)
다) 회의록
라) 소속 법인의 정관 및 관계 결의에 관한 서류
마) 문서철(보고서 및 관계 행정기관과 송신 또는 수신한 문서를 포함한다)
바) 문서접수·발송대장

2) 사업에 관한 장부
가) 청소복지시설의 입소자 관계 서류(신상조사서, 건강기록부, 입소자·퇴소자 명단, 보호의 경과, 지도·상담, 법률 지원의 내용 등). 다만,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장은 입소자·퇴소자 명단을 갈음하여 감호소년명부를 갖추어 둘 수 있으며, 보호의 경과에 관한 서류는 갖추어 두지 않을 수 있다.
나) 운영일지 및 상담일지
다) 운영프로그램 관리대장(프로그램 운영일지 및 평가 관련 서류)

라) 종사자 교육·훈련 관계 서류

3) 재무·회계에 관한 장부

가) 총계정원장(總計定元帳) 및 수입·지출 보조부

나) 금전출납부(金錢出納簿) 및 그 증명서류

다) 예산서 및 결산서

라) 삭제 <2019. 7. 2.>

마) 비품관리대장

바) 재산대장·재산목록과 그 소유 또는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 서류

아) 감호비용의 수입·지출 및 집행상황에 관한 서류(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자) 각종 증명서류

다. 그 밖의 사항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안에서는 감호 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과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종사자 외에는 거주하지 못한다.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2. 4. 19.>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사회적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 | | 1차 위반 | 2차 이상 위반 |
| 가. 법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증을 양 | 법 제45조 | 20 | 50 |

| | | | |
|---|---|---|---|
| 출을 하지 않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제1항제2호 | | |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0. 1.] [성평등가족부령 제1호, 2025. 10. 1., 타법개정]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02 - 2100 - 6272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02 - 2100 - 6243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02 - 2100 - 635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실태조사의 대상 등)** ①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위기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6. 28., 2025. 10. 1.>

1. 위기청소년의 성별, 나이 등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위기청소년의 가정환경 및 생활환경 등에 관한 사항
3. 위기청소년의 위기 경험 등에 관한 사항
4. 위기청소년의 심리적·정서적 상태에 관한 사항
5. 위기청소년의 안전 및 복지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표본조사의 방식으로 실시하되, 면접조사·설문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실태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연구기관(「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포함한다),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결과를 여성가족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개정 2023. 6. 28., 2025. 10. 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19. 8. 2.]
[제목개정 2023. 6. 28.]

**제2조(청소년증의 발급신청)**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증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청소년증 발급신청서에 사진 1장을 첨부하여 주소지와 관계없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9. 8. 2., 2023. 6. 28.>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인이 청소년증 발급 전에 임시증명서로 활용하기 위하여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진 1장을 추가로 제출받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2.>

③ 제1항 또는 제4조에 따른 청소년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리할 수 있다.<개정 2023. 11. 22.>

1.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3.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제3조(청소년증의 발급)** 제2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증의 발급을 신청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인 또는 대리인을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청소년증 발급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 후 청소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9. 8. 2.>

**제4조(청소년증의 분실 등)** ① 청소년증을 발급받은 청소년은 그 청소년증을 잃어버리거나 청소년증이 훼손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에 청소년증(청소년증이 훼손된 경우에만 제출한다)을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2019. 8. 2.>

② 청소년증을 발급받은 청소년은 그 청소년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에 청소년증과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30., 2019. 8. 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청소년증 발급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인 또는 대리인을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청소년증 발급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 후 청소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30., 2019. 8. 2.>

④ 신청인이 주소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청소년증 발급을 신청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된 청소년증을 찾아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청소년증을 발급하여 보관하고 있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청소년증을 보내야 한다.<개정 2019. 8. 2.>

**제5조(청소년증의 파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청소년증(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훼손된 청소년증)을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

1. 훼손으로 다시 청소년증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2. 분실 등의 사유로 보관하고 있거나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라 발급된 청소년증에 대하여 수령안내를 통지한 날부터 1년이 지난 경우

**제6조(청소년증)**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증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증을 발급하는 경우, 직인의 날인은 그 직인의 인영(印影: 도장을 찍은 모양)을 인쇄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9. 8. 28.>

**제7조(체력검사와 건강진단의 실시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체력검사 및 건강진단(이하 "건강진단등"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이하 "학교 밖 청소년"이라 한다) 중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을 우선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5. 5. 29.>

② 건강진단등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의 건강·체력 기준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검사 항목·방법에 따른다.<개정 2015. 12. 31., 2019. 8. 2.>

③ 성평등가족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건강진단등을 실시하는 경우 실시기간 및 실시장소 등 구체적인 실시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2., 2025. 10. 1.>

④ 청소년,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이하 "청소년지도자"라 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의 청소년 체력검사 및 건강진단 신청서에 학교 밖 청소년임을 증명하는 서류(학교 밖 청소년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청소년지도자가 신청하는 때에는 해당 청소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9. 8. 2., 2025. 10. 1.>

⑤ 성평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청소년 체력검사 및 건강진단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청소년 또는 그 보호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5. 5. 29., 2025. 10. 1.>

1. 삭제<2019. 8. 2.>
2. 주민등록표 등본

⑥ 성평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청소년 체력검사 및 건강진단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건강진단등의 실시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건강진단등의 신청을 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⑦ 성평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건강진단등을 실시한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청소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⑧ 성평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강진단등을 실시한 결과 질병의 치료 등이 필요한 해당 청소년에 대하여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제7조의2(생리용품 신청 등)** ① 법 제5조제3항 및 영 제3조의2에 따라 생리용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신청서에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8. 2., 2022. 4. 21.>

② 제1항에 따라 생리용품 지원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9. 8. 2., 2022. 4. 21.>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생리용품 지원 결정ㆍ기각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2019. 8. 2., 2022. 4. 21.>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생리용품 지원 신청 또는 생리용품 지원 결정ㆍ기각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을 따를 수 있다.<개정 2022. 4. 21.>

[본조신설 2018. 6. 12.]

[제목개정 2022. 4. 21.]

**제7조의3(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의 인력배치)** ①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에 배치하는 전담공무원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2호의 청소년육성에 관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담공무원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②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에 배치하는 민간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
2. 상담복지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지식과 실무 경험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③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에 전담기구의 장과 실무담당자를 전담공무원으로 배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9. 24.]

**제8조(일정소득 이하 가족의 범위)** 법 제13조제3항에서 “ 성평등가족부령이 정하는 일정소득 ”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을 말한다. <개정 2015. 12. 31., 2025. 10. 1.>

**제9조** 삭제 <2015. 12. 31.>

**제10조(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신청)**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사회복지관련 사업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를 말한다)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

② 제1항에 따라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호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해야 한다.<개정 2015. 12. 31., 2019. 8. 2., 2023. 4. 11.>

1. 영 제8조에 따른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또는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등의 서류를 말한다):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이하 “ 행정정보 공동이용 ”이라 한다)을 통하여 확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 신청인(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나.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선정대상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소득ㆍ재산 신고서: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라 한다)의 활용을 통하여 확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ㆍ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 신청인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활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나.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활용을 통하여 해당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ㆍ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다. 신청인이 제1항의 공통서식에 기재한 사항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3. 삭제<2015. 12. 31.>

**제11조(위기청소년 특별지원 현황 관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청소년에 대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사회복지관련 사업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라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

**제11조의2(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 법 제18조의4제1항제4호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학업 기간 중 청소년부모가 양육하고 있는 자녀를 돌보아 주는 지원을 말한다. <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21. 9. 24.]

**제12조(보호지원 신청)**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이하 "보호지원"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보호지원 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9. 8. 2.]

**제13조(보호지원 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2조에 따라 보호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조사ㆍ상담을 실시하고, 보호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문적인 조사ㆍ상담을 실시한 후 법 제10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보호지원 실시 여부, 보호지원 내용 및 보호지원 기간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ㆍ상담을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4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 2021. 9. 24.>
② 제1항에 따른 기본적인 조사ㆍ상담은 다음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1. 비행ㆍ일탈 유무 및 비행ㆍ일탈내용에 관한 사항
2. 청소년의 가정, 학교 등 생활환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선도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전문적인 조사ㆍ상담은 다음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1. 청소년의 인성, 적성 등에 관한 사항
2. 청소년의 장래희망, 학업 및 진로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선도 방향 및 기간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19. 8. 2.]

**제14조(보호지원 결정 등)**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그 결정의 요지, 보호지원 내용 및 보호지원 기간 등을 서면으로 청소년 본인,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 및 학교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청소년 본인 또는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가 보호지원을 신청한 경우 학교의 장에 대한 통보는 청소년 본인 또는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한다. <개정 2019. 8. 2.>
[제목개정 2019. 8. 2.]

**제15조(보호지원후견인의 임무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호지원후견인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8. 2.>

1.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지원
2.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의 보호지원 내용 변경, 보호지원 기간 종료 및 연장에 관한 의견제출
3. 그 밖에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조언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지원후견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 8. 2.>

[제목개정 2019. 8. 2.]

**제16조(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등)**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이하 "청소년복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청소년복지시설 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

1. 정관(법인만 해당한다)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4. 청소년복지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및 건물의 배치도(제2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으로 평면도와 배치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5.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청소년복지시설 설치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건물 및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을 확인한 후 별지 제8호서식의 청소년복지시설 신고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2.>

**제16조의2(청소년쉼터 강제퇴소 시 보호조치)** ①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청소년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가정 밖 청소년이 퇴소하기 전에 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등 관련 기관(이하 이 조에서 "관련기관"이라 한다)에서 입소 등 보호ㆍ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퇴소된 가정 밖 청소년이 관련기관에의 입소 등 보호ㆍ지원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퇴소일부터 6개월 이상 보호ㆍ지원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4. 21.]

**제17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① 법 제33조에 따라 청소년복지시설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청소년복지시설 휴업(폐업, 운영재개)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휴업(폐업, 운영재개) 1개월 전까지 해당 청소년복지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

1. 휴업(폐업, 운영재개)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휴업(폐업, 운영재개)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2. 청소년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이하 "시설이용청소년"이라 한다)에 대한 조치계획서(시설재개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청소년복지시설 신고증(시설폐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시설이용청소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2.>

1. 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계획의 이행여부 확인
2. 보조금 및 후원금품 등을 받은 경우 그 사용실태 확인
3. 그 밖에 시설이용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18조(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 및 배치기준)** 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종사자 직종별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별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청소년복지시설의 종사자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제19조(행정처분 기준)**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0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제21조(평가의 기준과 방법)**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 또는 이 법에 따라 청소년복지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관ㆍ시설 환경의 적정성
2. 기관ㆍ시설 운영 및 인력관리의 적정성
3. 사업내용의 적정성
4. 이용자 및 입소자의 서비스 만족도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 또는 이 법에 따라 청소년복지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는 3년 마다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제22조(위탁운영의 기준 및 방법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치한 청소년단체에 위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그 운영을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하려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청소년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청소년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3. 11. 29.]

**제23조(위탁계약의 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22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청소년단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5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1. 9. 24.>

[본조신설 2013. 11. 29.]

**제24조** 삭제 <2016. 12. 27.>

**부칙** <제31호,2012. 8.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 및 배치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 후 3년 이내에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45호,2013. 11.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종사자의 배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설치ㆍ운영 중인 자는 이 규칙 시행 후 2년 이내에 별표 2 가목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종사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부칙** <제53호,2014. 6. 19.>(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호,2014.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71호,2015. 5. 29.>(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법 제17조에 따른 학업중단 청소년(이하 "학업중단 청소년"이라 한다)”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이하 "학교 밖 청소년"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학업중단 청소년”을 “학교 밖 청소년

” 으로 한다.

**부칙** <제79호,2015. 10. 22.>(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호,2015.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3 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01호,2016. 11.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소년회복지원시설 종사자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소년법」 제32조제1항제1호 및 「소년심판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위탁보호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운영하는 시설을 청소년회복지원시설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까지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종사자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부칙** <제104호,2016. 12. 27.>(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호,2017. 7.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호,2018. 6. 12.>

이 규칙은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호,2018. 11. 16.>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2호,2019. 8.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3호,2019. 8. 28.>(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여성가족부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168호,2021. 9. 24.>

이 규칙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4호,2022. 4. 21.>

이 규칙은 2022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호,2023. 4.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호,2023. 6. 28.>

이 규칙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호,2023. 11.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호,2023. 11. 22.>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2025. 10. 1.>(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1* 까지 생략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제6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7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21조제2항, 별표 1 나목의 자격기준란 및 별지 제5호서식 중 “ 여성가족부장관 ”을 각각 “ 성평등가족부장관 ”으로 한다.

제1조의2제4항 중 “ 여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 ”를 “ 성평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 ”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5호의2서식 뒤쪽 중 “ 여성가족부 ”를 각각 “ 성평등가족부 ”로 한다.

제8조 및 제11조의2 중 “ 여성가족부령 ”을 각각 “ 성평등가족부령 ”으로 한다.

2) 부터2@ 까지 생략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5. 10. 1.>

## 청소년복지시설의 종사자 자격기준(제18조제1항 관련)

가.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 직종별 | 자격기준 |
|---|---|
| 시설장 | 1) 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청소년복지시설 실무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3년 이상인 사람<br>2)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복지시설 실무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5년 이상인 사람<br>3)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및 가족상담 전문가 등 청소년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전문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br>4)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청소년보호 및 지원에 대한 능력과 자질이 있다고 전문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 보호·상담원, 자립지원요원 | 1) 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이상의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br>2) 4년제 이상의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br>3) 상담복지 분야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br>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이하 "특수목적고등학교"라 한다) 또는 같은 영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등학교"라 한다)에서 상담복지 분야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다른 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졸업 또는 학력 인정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4년 이상인 사람<br>5)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및 가족상담 전문가 등 청소년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전문자격을 소지한 사람<br>6)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br>7) 그 밖에 1)부터 6)까지와 같은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 행정업무 수행직원 | 1)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br>2)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 조리원 |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조리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으로 해 |

| | |
|---|---|
| | 당 업무 수행이 가능한 사람 |

비고

1. "상담복지 분야"란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청소년(지도)학 및 상담복지와 관련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분야를 말한다.
2.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이 경우 자격증이나 학위 취득 전의 실무경력을 포함한다.
   가.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복지에 관한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력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분야에서 청소년 정책 관련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력

나. 청소년치료재활센터

| 직종별 | 자격기준 |
|---|---|
| 시설장 | 1) 청소년치료재활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치료재활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br>2) 청소년치료재활 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치료재활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br>3)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관련 전문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 실무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7년 이상인 사람<br>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청소년치료재활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5년 이상 사람<br>5) 청소년치료재활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중에서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대한 능력과 자질이 있다고 전문기관 및 단체가 추천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사람 |
| 관리업무 책임자 | 1) 청소년치료재활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치료재활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br>2) 청소년치료재활 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치료재활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br>3)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관련 전문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 실무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5년 이상인 사람 |

| | |
|---|---|
| |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청소년치료재활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br>5)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의료, 심리, 상담, 복지, 청소년 관련 실무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5년 이상인 사람<br>6) 청소년 관련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중에서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대한 능력과 자질이 있다고 전문기관 및 단체가 추천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사람 |
| 상담원 | 1)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관련 학과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 실무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2년 이상인 사람<br>2) 청소년상담사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 보호·자립 지원 요원 | 1)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관련 전문자격을 취득한 사람<br>2) 청소년(지도)학, 사회복지(사업)학, 교육학 관련 학과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 실무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2년 이상인 사람<br>3)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청소년학, 청소년지도학, 사회복지학, 사회복지사업학 또는 교육학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다른 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 실무경력(졸업 또는 학력 인정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4년 이상인 사람 |
| 의사 |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 간호사 |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 실무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1년 이상인 사람<br>2) 「의료법」 제7조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 실무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1년 이상인 사람 |
| 치료사·임상심리사 | 1) 심리치료 또는 임상심리 관련 분야의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 실무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1년 이상인 사람<br>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 | |
|---|---|
| |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 실무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1년 이상인 사람<br>3) 「자격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심리치료, 인지치료, 특수치료 관련 공인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 실무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2년 이상인 사람 |
| 행정업무 수행직원 | 1)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br>2)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 전산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산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취득자로서 관련 분야(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사무용 전산기기) 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3년 이상인 사람 |
| 영양사 |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 |
| 조리원 | 「식품위생법」 제53조에 따른 조리사 면허를 취득하거나 조리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 시설 관리원 | 건축, 전기, 기계, 소방설비, 건축설비, 산업안전, 배관설비, 열관리 등 시설관리 분야의 면허 또는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
| 운전원 | 1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취득자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운전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비고

1. "청소년치료재활 관련 분야"란 청소년(지도)학, 아동학,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사회학, 의학, 간호학을 말한다.
2. "청소년치료재활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란 다음 각 목의 경력을 말한다. 이 경우 자격이나 학위 취득 전의 실무경력을 포함한다.
   가. 청소년 및 사회·문화 관련 비영리 기관·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복지 및 교육·활동·지도에 관한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력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분야에서 청소년 정책 관련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력
   다. 의료기관 또는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료, 상담 관련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력

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

| 직종별 | 자격기준 |
|---|---|

| | |
|---|---|
| 시설장 | 1) 상담복지 또는 소년보호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br>2) 상담복지 또는 소년보호 분야에서 박사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또는 소년보호 관련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br>3) 상담복지 또는 소년보호 분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또는 소년보호 관련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br>4)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초등학교 교사, 중등학교 교사, 유치원교사, 보육교사 자격증 또는 가족상담 전문가 등 청소년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전문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또는 소년보호 관련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br>5) 청소년상담복지 또는 소년보호 관련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대한 능력과 자질이 있다고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 보호·상담원 | 1) 상담복지 또는 소년보호 분야의 4년제 이상의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br>2) 4년제 이상의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또는 소년보호 관련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br>3) 상담복지 분야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br>4)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상담복지 분야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다른 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졸업 또는 학력 인정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4년 이상인 사람<br>5)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초등학교 교사, 중등학교 교사, 유치원교사, 보육교사 자격증, 가족상담 전문가 등 청소년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전문자격을 소지한 사람<br>6) 그 밖에 1)부터 5)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비고

1. "상담복지 분야"란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아동복지(사업)학, 청소년(지도)학 및 상담복지와 관련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분야를 말한다.
2. "소년보호 분야"란 교정보호학, 경찰행정학, 법학, 범죄사회학, 교정학 및 소년보호와 관련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분야를 말한다.
3.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이 경우 자격증이나 학위 취득 전의 실무경력을 포함한다.
   가.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복지에 관한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력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분야에서 청소년 정책 관련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력
4. "소년보호 관련 실무경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이 경우 자격증이나 학위 취득 전의 실무경력을 포함한다.
   가. 소년보호 관련 기관·단체에서 소년을 대상으로 소년보호에 관한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력.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년 관련 분야에서 소년보호 정책 관련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력
   다. 「소년심판규칙」 제33조제1항에 근거하여 위탁보호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한 경력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9. 8. 28.>

##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별 배치기준(제18조제1항 관련)

가.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및 청소년회복지원시설

| 구분 | 일시 청소년 쉼터 | 단기 청소년쉼터 | | | | 중장기 청소년 쉼터 | 청소년 자립 지원관 | 청소년 회복지 원시설 |
|---|---|---|---|---|---|---|---|---|
| | | 10명 미만 | 10~15 명 미만 | 15~20 명 미만 | 20~25 명 미만 | | | |
| 시설장 | 1 | 1 | 1 | 1 | 1 | 1 | 1 | 1 |
| 보호·상담원 | 4 | 2 | 3 | 5 | 6 | 2 | – | 1 |
| 자립지원요원 | – | – | – | – | – | – | 1 | – |
| 행정원 | – | – | – | 1 | 1 | – | – | – |
| 조리원 | – | – | – | 1 | 1 | – | – | – |
| 행정원 또는 조리원 | 1 | 1 | 1 | – | – | 1 | 1 | – |
| 합 계 | 6 | 4 | 5 | 8 | 9 | 4 | 3 | 2 |

비고

1. 시설장은 상근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시설장이 공무원인 경우(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나. 업무 관련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2 이상의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및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 연계하여 운영하려는 경우
2.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재정여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설장과 보호·상담원을 겸임할 수 있다.
3. 청소년자립지원관의 경우 행정원 또는 조리원 대신 자립지원요원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나. 청소년치료재활센터

| 구분 | 20명 미만 | 20~30명 미만 | 30~40명 미만 | 40~50명 미만 | 50~60명 미만 | 60명 이상 |
|---|---|---|---|---|---|---|
| 시설장 | 1 | 1 | 1 | 1 | 1 | 1 |
| 관리업무 책임자 | – | – | – | 1 | 1 | 1 |

| | | | | | | |
|---|---|---|---|---|---|---|
| 상담원 | 4 | 5 | 6 | 7 | 8 | 9 |
| 보호·자립 지원 요원 | 7 | 11 | 15 | 19 | 23 | 27 |
| 의사 | 1 | 1 | 1 | 2 | 2 | 2 |
| 간호사 | 1 | 1 | 1 | 1 | 2 | 2 |
| 치료사 | 1 | 1 | 1 | 2 | 2 | 2 |
| 임상심리사 | 1 | 1 | 1 | 1 | 1 | 1 |
| 행정업무 수행 직원 | 2 | 2 | 3 | 3 | 4 | 4 |
| 전산원 | – | – | – | 1 | 1 | 1 |
| 영양사 | – | – | – | – | 1 | 1 |
| 조리원 | 1 | 1 | 1 | 1 | 1 | 1 |
| 시설관리원 | 1 | 1 | 1 | 1 | 2 | 2 |
| 운전원 | 1 | 1 | 1 | 1 | 2 | 2 |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2. 4. 21.>

##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1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이나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청소년복지시설을 양도·상속하거나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에는 양도·상속 또는 합병 전에 해당 청소년복지시설에 행하여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및 처분기간이 진행 중인 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의 법인이 승계한다.

마.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시설장의 교체인 경우에는 사업정지 15일로, 시설의 폐쇄인 경우에는 시설장의 교체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피해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복지시설이 사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해당 복지시설의 입소자를 수용할 수 있는 다른 적당한 보호시설이 없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 |
|---|---|---|---|---|---|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위반 |
| 가.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법 제35조 제1항제1호 | 개선 명령 | 사업 정지 15일 | 시설장의 교체 | 시설의 폐쇄 |
| 나.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인 경우 그 | 법 제35조 제1항제2호 | 시설의 폐쇄 | | | |

| | | | | | |
|---|---|---|---|---|---|
|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 | | | | |
| 다. 회계부정, 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가 확인된 경우 | 법 제35조 제1항제3호 | 개선명령 | 사업정지 15일 | 시설장의 교체 | 시설의 폐쇄 |
| 라. 사업정지 기간에 사업을 한 경우 | 법 제35조 제1항제4호 | 시설장의 교체 | 시설의 폐쇄 | | |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11. 22.>

(앞쪽)

#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14일 |
|---|---|---|

| | | | |
|---|---|---|---|
| 신청인 (본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주소 | | |
|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 | [ ]초·중·고 재학 중 [ ]초·중·고 재학하지 않음 [ ]고등학교 졸업 | | |
| 신청내용 | 신청구분 | [ ]신규<br>[ ]재발급([ ]분실 [ ]훼손 [ ]기타) | 사진<br>3.5cm×4.5cm<br>(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
| | 수령방법 | [ ]방문 [ ]등기우편 | |
| | 등기우편 수령 주소 | (우 ) | |
| 교통카드 기능 | [ ]신청: 종류( ) | [ ]신청하지 않음 | |

| | | | |
|---|---|---|---|
| 대리 신청인 | 성명 | 관계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 |
| | 전화번호 | | 휴대전화번호 |

위에 기재한 내용은 사실이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4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 신청서 제출 | → | 접수 | → | 제작 | → | 청소년증 발급 |
|---|---|---|---|---|---|---|
| 신청인 |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군·구 | | 한국조폐공사 |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군·구 |

210㎜×297㎜[백상지 80g/㎡]

(뒤쪽)

| | |
|---|---|
| 첨부서류 | 신청인 |
| | 1. 사진 1매(앞쪽의 사진란에 붙여 제출합니다)<br>2. 청소년증(청소년증이 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br>3.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br>4.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본인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에 따른 청소년증에 관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이용하고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수집목적 : 청소년증 발급 및 제도개선, 청소년 복지지원을 위한 자료 처리 등
- 이용기간 : 19세가 되는 날의 바로 전날까지
- 제공기관 : 한국조폐공사, 우정사업본부(우체국)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 청소년 복지지원을 위한 기관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신청안내

1. 청소년증의 (재)발급 신청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대리인은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3.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란에 (재)발급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4. "등기우편 수령"을 원하는 사람은 신청할 때 등기우편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5. "등기우편 수령"을 선택한 경우에는 "등기우편 수령 주소"란에 적은 주소로 청소년증이 발송되므로 주소를 정확하게 적습니다.
6. "등기우편 수령"을 선택한 경우, "등기우편 수령 주소"란에 작성된 주소로 발송한 청소년증을 신청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리 수령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발급 신청 기관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최초 발송한 날부터 5일 이내에 3회 발송을 했음에도 신청인의 사정으로 청소년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발급 신청 기관을 방문해 청소년증을 찾아가야 합니다.
7. "방문 수령"을 선택한 경우에는 신청 후 1년 이내에 청소년증을 찾아가기 바라며, 1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은 청소년증은 파기됩니다.
8. "교통카드 기능"을 원하는 사람은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사용하고자 하는 교통카드의 종류를 적습니다.
9. 제출한 사진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발급 기관은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 청소년증을 재발급 받은 이후 분실한 청소년증을 되찾은 경우에는 되찾은 청소년증을 발급 기관에 반납해야 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11. 22.>

#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 | | | | | | |
|---|---|---|---|---|---|---|
| 사 진<br>(3.5㎝×4.5㎝) | 성 명 | | | | | |
| | 주민등록번호 | | | | | |
| 간<br>인 | 주 소 | | | | | |
| 발급신청일자 | | 발급번호 | | 유효기간 | | |

위 사람은 청소년증의 발급을 신청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

직인

## 유 의 사 항

※ 발급 시 유의사항

이 확인서는 전산조직으로 출력하여 발급하거나 본 서식에 사진을 붙인 후 발급할 수 있으며, 반드시 기관장의 관인으로 간인하고, 사진을 포함한 인적사항 · 발급번호 · 유효기간은 투명스티커를 덧붙여야 합니다.

※ 이용자 유의사항

1. 이 확인서는 청소년증 발급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발급신청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것으로 청소년증을 대신하여 임시로 활용하는 증명서이며, 청소년증 발급통보를 받으면 청소년증을 별도로 수령해야 합니다.
2. 유효기간은 이 확인서 발급일부터 30일까지이며 청소년증을 발급받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 반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3. 이 확인서로 신분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증 발급기관(☎ - - )으로 문의하여 정상적으로 발급되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청소년증 발급대장

| 발급번호<br>(일자) | 성명 | 주민등록<br>번호 | 주소 | 유효기한 | 교부일<br>(인) | 비고<br>(재발급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 297㎜[백상지 80g/㎡]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 7. 14.>

(앞쪽)

# 청 소 년 증

| | |
|---|---|
| 사진<br>(2.5㎝×3㎝) | 성명:<br>주민등록번호:<br>주소:<br>유효기한:<br>. . . |

○○시(도)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86㎜×54㎜(플라스틱(PVC))

(뒤쪽)

| 연월일 | 주소 변동 사항 |
|---|---|
| | |
| | |
| | |

※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 10. 1.>

# 청소년 체력검사 및 건강진단 신청서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30일 |
|---|---|---|

| | | | |
|---|---|---|---|
| 대상자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 (전화번호: ) |
| | 최종학교명 | | |
| 신청구분 | [ ] 체력검사 [ ] 건강진단 | | |
| 보호자 | 성명 | 관계 | 생년월일 |
| | 주소 | | (전화번호: ) |
| 신청인 | 성명 | 관계 | 생년월일 |
| | 주소 | | (전화번호: )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 체력검사·건강진단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평등가족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 신청인 제출서류 | 학교 밖 청소년임을 증명하는 서류(학교 밖 청소년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수수료 없음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표 등본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처 리 절 차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검토 | → | 결재 | → | 통보 |
|---|---|---|---|---|---|---|---|---|

신청인 처리기관 : 성평등가족부, 시·도, 시·군·구

210㎜× 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개정 2025. 10. 1.>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14일 |
|---|---|---|

| | | | |
|---|---|---|---|
| 청소년 본인 신청인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
| | (집전화)<br>(휴대전화) | | (이메일) |
| 대리 신청인 | 성명 | 관계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 |
| | (집전화)<br>(휴대전화) | | (이메일) |
| 지원 대상 청소년<br>※ 대리 신청인 작성 | 1.성명 | | 1.주민등록번호 |
| | 2.성명 | | 2.주민등록번호 |
| | 3.성명 | | 3.주민등록번호 |

위에 기재한 내용은 사실이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4항에 따라 생리용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대리 신청의 경우)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 대리 신청인의 범위 | 1. 부모, 가족,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br>2. 「민법」에 따른 후견인(법정대리인)<br>3. 그 밖에 여성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사람으로서 사회복지시설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위탁가정의 위탁모 등 | 수수료 없음 |
| 첨부 서류 | 1. 청소년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명서 사본 및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br>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및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br>2.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관계기관 보유 개인정보 확인 동의서

이 신청서를 접수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수급자격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등 관련 정보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본인(대리 신청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성평등가족부, 사회보장정보원 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번호의 처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및 제24조의2(주민등록정보 처리의 제한)에 따라 생리용품 지원 등에 관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공합니다.

① 수집·이용·제공 목적: 생리용품 지원 및 관리

②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지원자격정보, 생리용품 지원 이력, 국민행복카드정보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회계서류 보존)

④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업무

- 제공받는 자: 사회보장정보원, 국민행복카드사
- 제공목적: 생리용품 이용권 생성 및 결제, 결제내역 송수신(SMS, 문자), 우편물 발송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생리용품 지원 대상자가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 보호규정을 준수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대상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만 14세 미만 청소년의 신청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필요 시)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3서식] <개정 2022. 4. 21.>

# 생리용품 지원 결정·기각 통지서

| | |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
| | (집전화)<br>(휴대전화) | (이메일) |

| [ ] 적 합 |
|---|
| 다음과 같이 생리용품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 대상자 성명 | 생년월일 | 지원내용 |
|---|---|---|
| | | |

| [ ] 부 적 합 | |
|---|---|
| 부 적 합 사 유 | [ ] 자격기준 미충족 [ ] 연령기준 미충족 |
| 안 내 | 1. 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생리용품 지원이 부적합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br>2. 향후 생리용품 신청자격 기준에 적합하게 되어 다시 신청한 결과, 적합으로 결정될 경우에 생리용품을 지원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4항에 따라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직급 성명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9. 8. 2.>

#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30일 |
|---|---|---|

| | |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전화번호: ) | |
| | 학교 또는 직장명 | |

| | | | | |
|---|---|---|---|---|
| 신청내용 | 신청구분 | 신규 [ ] 연장 [ ] | | |
| | 세대주 (보호자) | 성명 | 관계 | 생년월일 |
| | | 주소 (전화번호: ) | |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 첨부서류 | 청소년의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 동의서(보호자 또는 학교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 수수료 없 음 |

## 신 청 안 내

1. 대상연령: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
2. 선정기준
   1) 비행·일탈을 저지른 청소년
   2) 일상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가정 또는 학교 외부의 교육적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

## 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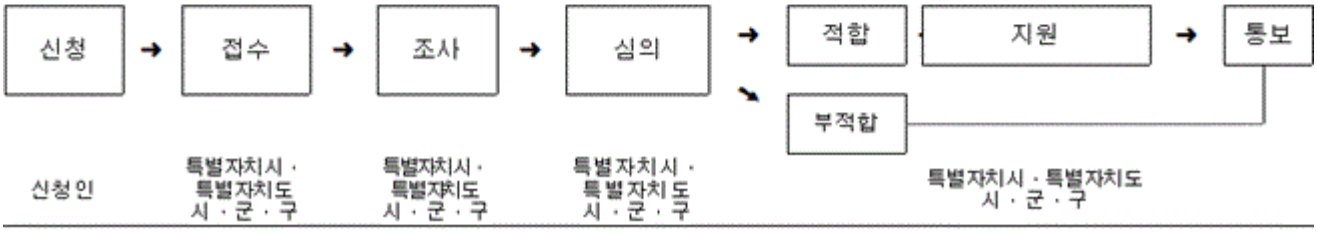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9. 8. 2.>

# 청소년복지시설 설치신고서

(앞쪽)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10일 |
|---|---|---|

| | | |
|---|---|---|
| 신고인 | 성명(대표자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법인명 | |
| | 주소<br>(전화번호: ) | |
| 시설개요 | 명칭(시설의 종류) | |
| | 시설장 성명 | 생년월일 |
| | 소재지<br>(전화번호: ) | |
| 시설설비 | 침실 ㎡ | 조리실(식당) ㎡ ( ㎡) / 화장실(목욕실) ㎡ ( ㎡) |
| | 세탁장(건조장) ㎡ ( ㎡) | 상담실 ㎡ / 단체활동실 ㎡ |
| | 사무실 ㎡ | 숙직실 ㎡ / 기타 ㎡ |
| 종사자 | 총 명(소장 명, 청소년지도사 명<br>청소년상담사 명, 기타 명) | 청소년 정원/현원 : / 명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복지시설 설치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시장·군수·구청장

| | | |
|---|---|---|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 수수료<br>없 음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br>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하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각 1부<br>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br>4. 시설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및 건물의 배치도(담당공무원이 건축물대장으로 평면도와 배치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각 1부<br>5. 시설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에 한하되, 자격증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합니다) 각 1부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br>2. 건물등기사항증명서<br>3. 토지등기사항증명서<br>4. 건축물대장 |

처 리 절 차

| 신고 | → | 접수 | → | 검토 | → | 결재 | → | 신고증 작성 | → | 교부 |
|---|---|---|---|---|---|---|---|---|---|---|
| 신고인 |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군·구 |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군·구 |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군·구 |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군·구 |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군·구 |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9. 8. 2.>

(앞쪽)

제　　호

# 청소년복지시설 신고증

1. 시설명칭:
2. 시설종류:
3. 소재지:
4. 수용정원:
5. 운영법인명(운영자명):
6.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7. 시설의 장(성명):　　(생년월일 :　　)
8. 법인 소재지(또는 주소):
9. 신고조건: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복지시설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297㎜[백상지 80g/㎡]

(뒤쪽)

| 변경사항 | | |
|---|---|---|
| 날짜 | 내용 | 기 록 자<br>(서명 또는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9. 8. 2.>

# 청소년복지시설 [ ] 휴업 [ ] 폐업 [ ] 운영재개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5일 |
|---|---|---|

| | | |
|---|---|---|
| 신고인 | 운영법인<br>(운영자) | 성명 |
| | 소재지<br>(주 소) | 전화번호 |
| 시설현황 | 시설명<br>(시설의 종류) | 시설장<br>성명 |
| | 주 소 | |
| | 휴업기간 | 휴업일, 폐업일 또는 사업 재개일 |

| | | | |
|---|---|---|---|
| 시설거주자 조치계획 | 퇴소<br>(귀가) 명, (전원) 명, (취업) 명 | 위탁<br>명 | 기타<br>명 |
| 재산활용 계획 | | | |
| 휴업 또는<br>폐업 사유 | | |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복지시설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 첨부서류 | 뒤쪽 확인 | 수수료<br>없 음 |

210㎜×297㎜[백상지 80g/㎡]

(뒤 쪽)

| | |
|---|---|
| 첨부서류 | 1. 시설의 휴업(폐업, 재개)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휴업(폐업, 재개)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합니다] 1부<br>2. 시설이용청소년에 대한 조치계획서(시설재개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br>3. 청소년복지시설신고증(시설폐지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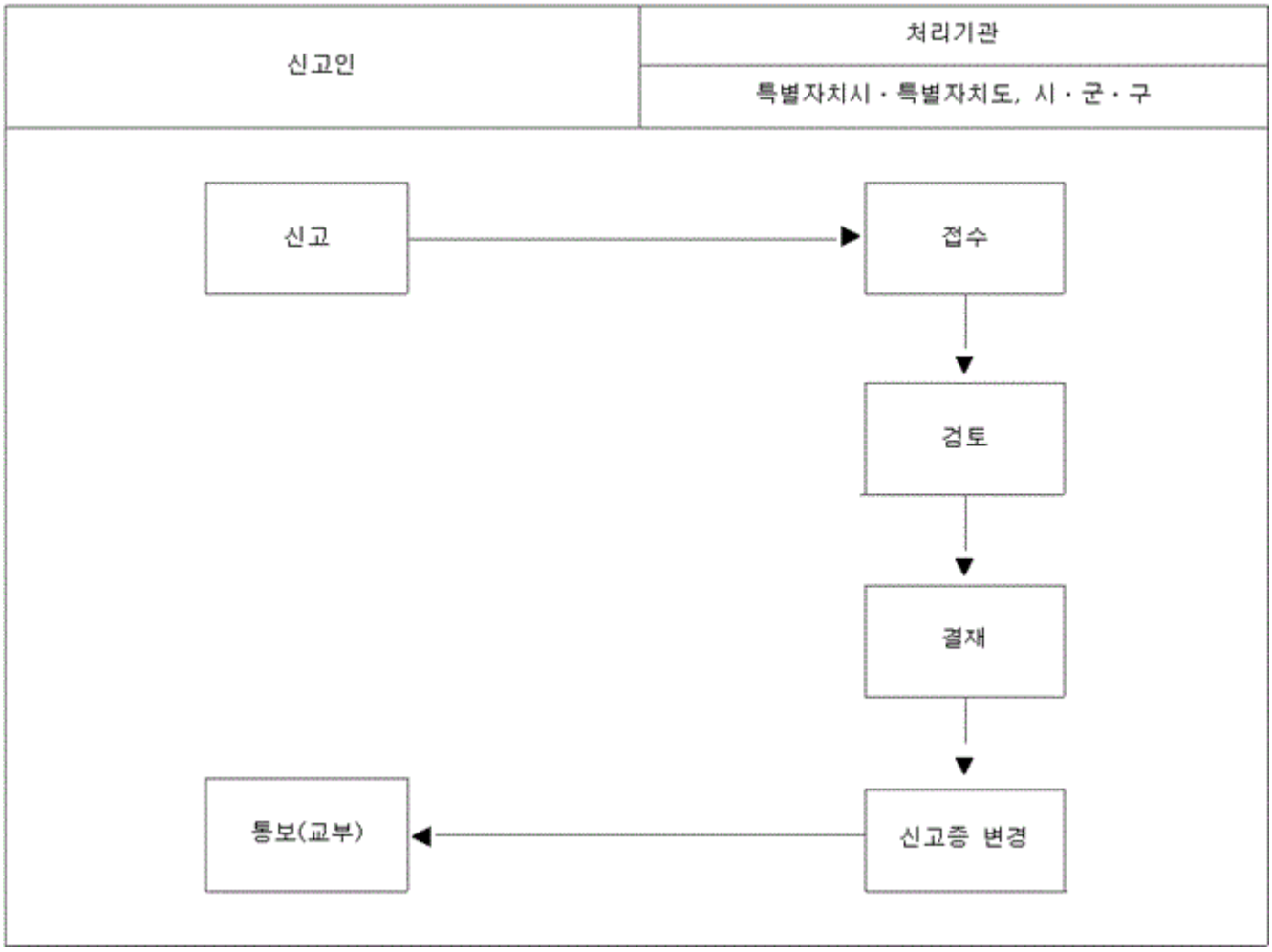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5.10.22.>

(앞쪽)

제　　호

**검사 공무원증**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성명
기관명

60㎜×90㎜[백상지 150g/㎡]

(색상: 연하늘색)

(뒤쪽)

**검사 공무원증**

소속/직급:
성명:
생년월일:
유효기간:　　.　.　.부터　　.　.　.까지

위의 사람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9조에 따른 검사 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명의 직인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이 사람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9조에 따른 검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3.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성평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02 - 2100 - 6252
성평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 02 - 2100 - 6262,6263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기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 1. 2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교류활동, 청소년문화활동 등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로서 제10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청소년수련활동”이란 청소년이 청소년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적 활동으로서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이하 “청소년지도자”라 한다)와 함께 청소년수련거리에 참여하여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교류활동”이란 청소년이 지역 간, 남북 간, 국가 간의 다양한 교류를 통하여 공동체의식 등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5. “청소년문화활동”이란 청소년이 예술활동, 스포츠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문화적 감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6. “청소년수련거리”란 청소년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말한다.
7.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이란 19세 미만의 청소년(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대상으로 청소년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떠나 제10조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 또는 그 외의 다른 장소에서 숙박·야영하거나 제10조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 또는 그 외의 다른 장소로 이동하면서 숙박·야영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을 말한다.
8.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이란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0조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 또는 그 외의 다른 장소에서 실시하는 청소년수련활동으로서 실시하는 날에 끝나거나 숙박 없이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4. 1. 21.]

**제3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학생인 청소년의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면 「청소년기본법」 제48조에 따라 교육부, 특별시·광역시·특

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이하 “ 교육청 ”이라 한다)과 협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4. 1. 21.]

**제4조(청소년운영위원회)** ① 제10조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이하 “ 수련시설 ”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및 제16조제3항에 따른 위탁운영단체(이하 “ 수련시설운영단체 ”라 한다)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2.>

② 수련시설운영단체의 대표자는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련시설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청소년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1. 21.]

## 제2장 청소년활동의 보장

**제5조(청소년활동의 지원)** ① 청소년은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충분한 기회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청소년지도자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1. 21.]

**제6조(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설치)** ①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육성(이하 “ 청소년육성 ”이라 한다)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하 “ 활동진흥원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6. 3. 2., 2017. 3. 21., 2025. 10. 1.>

1. 청소년활동,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청소년복지, 같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보호에 관한 종합적 안내 및 서비스 제공
2.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정보 등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
3.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위원회 등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의 운영
4.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5.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6. 국가가 설치하는 수련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업무의 수탁
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한 주요 청소년수련거리의 시범운영
8. 청소년활동시설이 실시하는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9. 청소년지도자의 연수
9의2. 제9조의2에 따른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지원에 대한 컨설팅 및 교육
10. 제18조의3에 따른 수련시설 종합 안전ㆍ위생점검에 대한 지원
11. 수련시설의 안전에 관한 컨설팅 및 홍보
11의2. 제18조의2에 따른 안전교육의 지원
12.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정하거나 활동진흥원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활동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활동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전문개정 2014. 1. 21.]

**제6조의2(정관)** 활동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0. 5. 17.]

**제6조의3(임원)** ① 활동진흥원에 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임명한다.<개정 2025. 10. 1.>

③ 상임이사는 활동진흥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비상임이사(활동진흥원의 정관에 따라 당연히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임명한다.<개정 2025. 10. 1.>

⑤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명한다.<개정 2025. 10. 1.>

⑥ 이사장의 임기는 3년,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 5. 17.]

**제6조의4(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활동진흥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 시작 전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

정 2025. 10. 1.>

② 활동진흥원은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원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회계감사를 받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10. 5. 17.]

**제6조의5(자료의 요청 등)** ① 활동진흥원은 제6조제1항제2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간행물이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활동진흥원은 제1항에 따라 제공된 간행물이나 자료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6조제1항제2호의 사업에 종사하는 임직원 및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4. 1. 21.]

**제6조의6(보조 및 출연 등)** ①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진흥원의 사업 및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出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9.>

②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활동진흥원의 사업 또는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개정 2020. 5. 19.>

[본조신설 2010. 5. 17.]

[제목개정 2020. 5. 19.]

**제6조의7(「민법」의 준용)** 활동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0. 5. 17.]

**제6조의8(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활동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0. 5. 17.]

**제6조의9(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조제1항제2호의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4. 1. 21.]

**제7조(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 등)**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이하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 청소년활동의 요구에 관한 조사
2. 지역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3.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의 지원
4. 인증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의 홍보와 지원
5.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6. 청소년활동에 대한 교육과 홍보
7. 제9조의2에 따른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에 대한 지원
8. 제9조의4에 따른 정보공개에 대한 지원
9. 그 밖에 청소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활동진흥원과 연계ㆍ협력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1. 21.]

**제8조(청소년활동 정보의 제공 등)** ① 활동진흥원과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청소년의 요구를 수용하여 청소년의 발달단계와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과 정보를 상시 안내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② 활동진흥원과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 청소년의 활동 요구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그 지역의 청소년활동시설과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이하 "청소년단체"라 한다)에 제공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1. 21.]

**제9조(학교와의 협력 등)** ① 활동진흥원과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청소년기본법」 제48조에 따라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과의 협력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활동진흥원과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해당 지역 각급학교 및 평생교육시설에서 필요로 하는 청소년활동 관련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활동진흥원과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상호 협의하여 청소년수련거리를 개발하고, 해당 지역의 수련시설에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④ 활동진흥원과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학생인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수련거리를 개발할 때 필요하면 교육청 및 각급학교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1. 21.]

**제9조의2(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①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및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이하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이라 한다)을 주최하려는 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는 제외한다. <개정 2025. 10. 1.>

1. 다른 법률에서 지도ㆍ감독 등을 받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2. 청소년이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참여하는 경우
3.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4.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중 제36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하는 활동이 아닌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8. 3. 13.>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8. 3. 13.>

④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최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모집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8. 3. 13.>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을 운영 또는 보조하려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8. 3. 13.>

1.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청소년기본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지도사가 될 수 없는 사람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5항에 따른 범죄경력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8. 3. 13.>

⑦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그 계획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8. 3. 13., 2025. 10. 1.>

⑧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통보받은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계획을 통보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완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8. 3. 13., 2025. 10. 1.>

⑨ 제8항에 따라 보완사항을 통보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주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8. 3. 13.>

[전문개정 2014. 1. 21.]

**제9조의3(건강상태 확인 및 의료조치 의무 등)** ① 제9조의2에 따라 신고를 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청소년활동에 참가하려는 청소년

의 건강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청소년활동에 참가하려는 청소년 및 보호자(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해당 청소년의 건강상태를 서면으로 보증한 때에는 신고자가 건강상태를 확인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 10. 1.>

② 신고자는 해당 청소년활동에 참가하는 청소년에게 질병ㆍ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의료조치가 필요하거나 참가자가 요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시설에서 신속하고 적정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3. 「약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본조신설 2013. 5. 28.]

**제9조의4(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관련 정보의 공개)**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조의2에 따라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해당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개를 위하여 온라인 종합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종합정보제공시스템의 운영을 활동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전문개정 2014. 1. 21.]

**제9조의5(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관련 정보의 표시ㆍ고지)** 제9조의2에 따라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가 수리된 자는 모집활동 및 계약을 할 경우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고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1. 제3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인지 여부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의 충족 여부
3. 제25조에 따른 보험 등 관련 보험의 가입 여부 및 보험의 종류와 약관

[본조신설 2014. 1. 21.]

**제9조의6(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의 제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신고ㆍ등록ㆍ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한 단체 및 개인은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중 제36조제2항에 따라 참가 인원이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청소년이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참여하는 경우 또는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4. 1. 21.]

**제9조의7(관계 기관과의 협력)**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조의2에 따라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를 수리한 후 필요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계 기관에 알려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위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4. 5. 20., 2022. 6. 10.>

1. 내수면, 해수면 등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수련활동인 경우 「수상레저안전법」 제43조에 따른 안전점검
2. 제36조제2항 본문에 따른 청소년수련활동인 경우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구조ㆍ구급활동
3. 제9조의2에 따라 신고 수리된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인 경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보호조치 등과 위험발생의 방지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안전에 관련한 조치

[본조신설 2014. 1. 21.]

## 제3장 청소년활동시설

**제10조(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수련시설
   가. 청소년수련관: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나. 청소년수련원: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다. 청소년문화의 집: 간단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ㆍ문화ㆍ예술 중심의 수련시설
   라.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의 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 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
   마. 청소년야영장: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청소년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
   바. 유스호스텔: 청소년의 숙박 및 체류에 적합한 시설ㆍ설비와 부대ㆍ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 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청소년수련활동 지원은 제11조에 따라 허가된 시설ㆍ설비의 범위에 한정한다)을 기능으로 하는 시설
2. 청소년이용시설: 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설치 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전문개정 2014. 1. 21.]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국가는 둘 이상의 시ㆍ도 또는 전국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각각 제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3.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읍ㆍ면ㆍ동에 제10조제1호다목에 따른 청소년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4.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특화시설ㆍ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규모의 부지 변경, 건축 연면적의 증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1. 21.]

**제12조(수련시설의 허가 요건)** ① 제11조제3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 10. 1.>

1. 제17조ㆍ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시설기준ㆍ안전기준 및 운영기준에 적합할 것
2. 해당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있을 것
3. 해당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것
4.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제3항에 따라 수련시설을 허가할 때 그 시설이 제1항에 따른 허가 요건 중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전문개정 2014. 1. 21.]

**제13조(수련시설의 등록)** ① 수련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이를 운영하기 전에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 1. 21., 2025. 10. 1.>

② 삭제<2007. 7. 27.>

③ 제1항에 따른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4. 1. 21.>

**제14조(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 ①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 또는 제16조에 따른 위탁운영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그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련시설에 대해서는 운영대표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이하 "수련시설의 대표자"라 한다) 또는 제16조에 따른 위탁운영단체의 대표자가 제1항에 따른 운영대표자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운영대표자가 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영대표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1. 21.]

**제1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련시설의 대표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 또는 운영대표자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삭제<2025. 4. 29.>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제22조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수련시설의 대표자로서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전문개정 2014. 1. 21.]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 업무의 내용, 위탁 계약의 기간ㆍ조건ㆍ해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신설 2017. 12. 12.>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이하 "위탁운영단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 12. 12.>

④ 위탁운영단체 및 그 대표자와 임원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개정 2017. 12. 12.>

[전문개정 2014. 1. 21.]

**제16조의2(수련시설 운영 위탁계약의 해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운영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를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종합 안전ㆍ위생점검 또는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위탁운영단체는 위탁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해당 위탁운영단체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위탁운영단체에 그 해지된 날부터 2년 동안 해당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7. 12. 12.]

**제17조(수련시설의 시설기준)** ①수련시설은 청소년이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데 적합한 시설ㆍ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수련시설의 종류별 시설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5. 3. 24., 2007. 7. 27., 2008. 2. 29., 2010. 1. 18., 2025. 10. 1.>

**제18조(수련시설의 안전점검 등)** ①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시설에 대하여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결과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에게 시설의 보완 또는 개수(改修)ㆍ보수(補修)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이나 시설의 보완 및 개수ㆍ보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시설의 범위ㆍ시기, 안전점검기관, 안전점검 절차 및 안전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1. 21.]

**제18조의2(안전교육)**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 또는 위탁운영단체는 수련시설의 이용자에게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련시설의 이용 및 청소년수련활동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14. 1. 21.]

[종전 제18조의2는 제18조의3으로 이동 <2014. 1. 21.>]

**제18조의3(감독기관의 종합 안전·위생점검)**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련시설의 안전과 위생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수련시설에 대한 종합 안전、위생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3., 2017. 3. 21., 2025. 10. 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 안전、위생점검을 실시하려면 미리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에게 그 종합 안전、위생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7. 12. 12., 2025. 10. 1.>

③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할 때 또는 그 통보 후에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에게 제1항에 따른 종합 안전、위생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신설 2017. 12. 12., 2025. 10. 1.>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종합 안전、위생점검 결과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에게 시설의 보완 또는 개수、보수, 위생상태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대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7. 3. 21., 2017. 12. 12.>

⑤ 제1항에 따른 종합 안전、위생점검의 주기, 절차, 방법 및 점검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5. 2. 3., 2017. 3. 21., 2017. 12. 12.>

[전문개정 2014. 1. 21.]

[제목개정 2017. 3. 21.]

[제18조의2에서 이동 <2014. 1. 21.>]

**제18조의4(수련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 및 종사자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수련시설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와 그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내용、방법、횟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16. 3. 2.]

**제19조(수련시설의 운영기준)** ①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그 종사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수련시설의 운영、안전、위생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수련시설의 청소년수련거리 운영, 생활지도,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종사자교육 등 운영기준은 수련시설 종류별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전문개정 2014. 1. 21.]

**제19조의2(수련시설의 종합평가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수련시설의 전문성 강화와 운영의 개선 등을 위하여 시설 운영 및 관리 체계, 활동프로그램 운영 등 수련시설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를 실시하려면 미리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에게 그 종합평가의 절차, 방법 및 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7. 12. 12., 2025. 10. 1.>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할 때 또는 그 통보 후에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에게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련시설의 대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신설 2017. 12. 12., 2025. 10. 1.>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의 결과 우수한 수련시설에 대하여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7. 12. 12.>

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의 결과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에게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7. 12. 12., 2025. 10. 1.>

⑥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의 결과를 교육부장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7. 12. 12., 2025. 10. 1.>

⑦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의 주기ㆍ방법ㆍ절차 및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7. 12. 12., 2025. 10. 1.>

[본조신설 2014. 1. 21.]

**제20조(시정명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 또는 위탁운영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17조의 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
2. 제18조의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제18조의3제4항에 따른 시설의 보완 또는 개수ㆍ보수, 위생상태의 개선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제19조의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
5. 제19조의2제5항에 따른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이나 그 밖의 조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20. 5. 19.]

**제20조의2(운영 중지 명령)**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련시설의 운영 또는 청소년활동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 또는 위탁운영단체,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주최자에게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 운영 또는 활동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시설이 붕괴되거나 붕괴할 우려가 있는 등 안전 확보가 현저히 미흡한 경우
2.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의 실시 중 참가자 또는 이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및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경우
4. 「아동복지법」 제17조의 금지행위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자세한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14. 1. 21.]

**제21조(금지행위)** 수련시설 설치·운영자 또는 위탁운영단체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청소년의 수련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
2. 청소년활동이 아닌 용도로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청소년단체가 아닌 자에게 수련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게 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4. 1. 21.]

**제22조(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련시설 설치·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련시설의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
2. 최근 2년 이내에 제72조제2항제8호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다시 같은 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련시설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그 수련시설의 설치 착수 또는 운영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기간에 수련시설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0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제19조의2에 따른 종합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14. 1. 21.]

**제23조(청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2조에 따른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1. 21.]

**제24조(이용료 및 수련비용)** ① 수련시설 설치·운영자 및 위탁운영단체는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자는 그 청소년수련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으로부터 수련비용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1. 21.]

**제25조(보험 가입)** ① 제9조의2에 따라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을 신고하려는 자,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 또는 위탁운영단체는 청소년활동의 운영 또는 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청소년활동 참가자 및 수련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 등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수련시설의 종류 및 보험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1. 21.]

**제26조(수련시설의 승계)** ①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받은 수련시설이 양도ㆍ양수, 상속 또는 증여되거나 수련시설을 설치한 법인이 합병되었을 때에는 그 양수인, 상속인, 증여를 받은 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수련시설의 허가 및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수련시설의 주요 부분을 인수한 자는 수련시설의 허가 또는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개정 2016. 12. 27., 2025. 10. 1.>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절차

[전문개정 2014. 1. 21.]

**제27조(수련시설운영의 휴지ㆍ폐지 등)** ①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가 시설의 운영을 휴지(休止), 재개(再開), 폐지(閉止)하려는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지원을 받은 수련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운영의 휴지 또는 폐지를 제한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휴지 또는 폐지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8. 3. 13.>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8. 3. 13.>

[전문개정 2014. 1. 21.]

**제28조(수련시설 건립 시 타당성의 사전 검토)**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수련시설이 청소년활동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입지 조건, 내부 구조, 그 밖의 설계사항 등 건립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설계사항을 사전에 심의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관련 설계사항의 심의 과정에는 청소년 관련 전문가 및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심의 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1. 21.]

**제29조** 삭제 <2016. 5. 29.>

**제30조(민간인의 참여 유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수련시설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토지ㆍ금융ㆍ세제 또는 그 밖의 행정절차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수련시설에 대하여 토지ㆍ금전 등을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연자의 성명 등을 그 수련시설의 명칭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1. 21.]

**제31조(수련시설의 이용)** ① 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청소년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위하여 시설 이용을 요청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청소년활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수련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0. 5. 19., 2025. 10. 1.>

1. 법인ㆍ단체 또는 직장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연수활동 등에 제공하는 경우
2.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3.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및 청소년야영장에서 개별적인 숙박ㆍ야영 편의 등을 제공하는 경우
4. 해당 수련시설에 설치된 관리실ㆍ사무실 등을 청소년단체의 활동공간으로 제공하는 경우
5.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③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이용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이용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0. 5. 19., 2025. 10. 1.>

[전문개정 2014. 1. 21.]

**제32조(청소년이용시설)** ① 제10조제2호의 청소년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공공기관 등은 그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그 시설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에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년이용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청소년이용시설의 종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1. 21.]

**제3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제11조제3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허가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해제ㆍ지정 또는 신고(이하 이 조에서 "허가ㆍ인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ㆍ인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ㆍ인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3. 26.>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ㆍ제86조 및 제88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의 인가
2. 「자연공원법」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공원사업 시행의 허가, 공원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3.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4. 「초지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및 신고
5.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6.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
7. 「사방사업법」 제14조 및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에서의 입목ㆍ죽의 벌채 등의 허가 및 사방지 지정의 해제
8.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9.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② 제13조에 따라 수련시설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수련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신고 또는 통보(이하 이 조에서 "신고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신고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신고등을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4. 3. 26.>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
2.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 중 이용업 및 미용업의 신고
3.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제88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ㆍ일반음식점영업의 신고 및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의 신고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제3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허가를 하거나 제13조에 따라 수련시설의 등록증을 발급할 때 제52조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기본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협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4. 3. 26.>

④ 허가ㆍ인가등 또는 신고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기본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3. 26.>

1. 허가ㆍ인가등의 협의기간: 20일
2. 신고등의 협의기간: 10일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에 따라 수련시설의 등록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등록증을 발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 3. 21., 2024. 3. 2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ㆍ인가등 및 신고등 의제의 기준ㆍ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따른다.<신설 2024. 3. 26.>

[전문개정 2014. 1. 21.]

**제33조의2(수련시설 현황 등의 통보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6., 2025. 10. 1.>

1.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수련시설의 현황
2.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허가 및 등록의 현황
3. 제9조의2에 따른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현황
4. 제18조에 따른 수련시설의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 결과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 청소년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및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운영자에게 청소년 이용률 현황, 운영프로그램 현황,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전문개정 2014. 1. 21.]
[제목개정 2024. 3. 26.]

## 제4장 청소년수련활동의 지원

**제34조(청소년수련거리의 개발ㆍ보급)**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수련활동에 필요한 청소년수련거리를 그 이용대상ㆍ나이ㆍ이용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형별로 균형 있게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발달원리와 선호도에 근거하여 청소년수련거리를 전문적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1. 21.]

**제35조(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의 운영)** ① 국가는 청소년수련활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내용과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를 활동진흥원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인증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신설 2015. 2. 3.>

④ 인증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15. 2. 3., 2025. 10. 1.>

1. 성평등가족부와 교육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각각 지명하는 사람
2. 활동진흥원의 이사장
3. 청소년활동의 안전에 관한 전문자격이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4. 그 밖에 청소년활동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⑤ 국가는 제3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이하 "인증수련활동"이라 한다)을 공개하여야 하며, 인증수련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의 활동기록을 유지·관리하고, 청소년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5. 2. 3.>

⑥ 인증위원회의 구성·운영, 청소년의 활동기록의 유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5. 2. 3.>

[전문개정 2014. 1. 21.]

**제36조(청소년수련활동의 인증 절차)**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법인·단체 등은 청소년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인증위원회에 그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재위탁을 포함하여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인원이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최하려는 자는 그 청소년수련활동에 대하여 미리 인증위원회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가 회원을 대상으로 수련활동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 10. 1.>

1.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카우트주관단체
2.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걸스카우트주관단체
3.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한국청소년연맹
4.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한국해양소년단연맹
5.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에 따라 운영되는 4에이치활동 주관단체
6.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운영되는 청소년적십자
7.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단체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청소년지도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청소년지도자가 전문인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인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개정 2025. 10. 1.>

1.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
2. 청소년활동의 안전에 필요한 전문자격이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청소년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활동의 장소·시기·목적·대상·내용·진행방법·평가·자원조달·청소년지도자 및 전문인력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인증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인증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을 할 때에는 현장방문 등 필요한 방법으로 인증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⑥ 인증위원회는 인증신청의 내용을 확인한 결과 제4항에 따른 신청사항이 누락되거나 신청사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1. 21.]

**제36조의2(인증의 사후 관리)** ① 인증위원회는 제36조에 따라 인증을 하는 경우 인증의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인증위원회는 인증수련활동의 실시에 대하여 인증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인증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인증수련활동의 내용과 실제로 실시되는 청소년수련활동의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 이행 여부 확인 및 시정 요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전문개정 2014. 1. 21.]

**제36조의3(인증의 취소 등)** ① 인증위원회는 청소년수련활동을 인증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인증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인증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수련활동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 인증수련활동의 내용과 실제로 실시되는 청소년수련활동의 내용에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경우로서 그 원인이 인증받은 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

② 인증위원회는 인증을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 인증수련활동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전문개정 2014. 1. 21.]

**제37조(인증수련활동의 결과 통보 등)** ① 인증수련활동을 실시한 자는 인증수련활동이 끝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위원회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인증위원회는 그 결과를 활동진흥원과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기록으로 유지ㆍ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청소년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 인증수련활동을 실시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청소년수련활동의 인증을 인증위원회에 신청할 수 없다.

1. 제1항에 따른 인증수련활동 실시 결과를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2. 제36조의3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
3. 인증을 받은 사항이 아닌 다른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한 경우

[전문개정 2014. 1. 21.]

**제38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36조의3에 따라 인증이 취소되거나 인증위원회의 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수련활동이나 청소년수련활동의 인증 등 인증을 받았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4. 1. 21.]

**제39조(청소년수련활동의 위탁 제한)** ①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자(청소년수련활동의 일부를 수탁 받은 자도 포함한다)가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신고ㆍ등록ㆍ인가ㆍ허가를 받은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게만 위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해당 청소년수련활동의 전부 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프로그램을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14. 1. 21.]

[종전 제39조는 제40조로 이동 <2014. 1. 21.>]

**제40조(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①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 및 위탁운영단체는 수련시설의 운영ㆍ발전을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이하 "시설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1. 시설협회의 회원인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 및 위탁운영단체가 실시하는 사업과 활동에 대한 협력 및 지원
2. 청소년지도자의 연수ㆍ권익증진 및 교류사업
3. 청소년수련활동의 활성화 및 수련시설의 안전에 관한 홍보 및 실천운동
4. 청소년수련활동에 대한 조사ㆍ연구ㆍ지원사업
5. 제41조에 따른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수련시설의 운영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② 시설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시설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협회의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설협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1조에 따른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시설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 1. 21.]
[제39조에서 이동 <2014. 1. 21.>]

**제41조(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 ① 특정 지역을 활동범위로 하는 수련시설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발전을 위하여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의 운영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1. 21.]
[제40조에서 이동 <2014. 1. 21.>

**제42조** 삭제 <2010. 5. 17.>

**제43조** 삭제 <2010. 5. 17.>

**제44조** 삭제 <2010. 5. 17.>

**제45조** 삭제 <2010. 5. 17.>

**제46조** 삭제 <2010. 5. 17.>

**제47조(청소년수련지구의 지정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명승고적지, 역사유적지 또는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으로서 청소년활동에 적합하고 이용이 편리한 지역을 청소년수련지구(이하 "수련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련지구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 내용을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련지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수련지구의 구역, 면적, 지정 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수련지구의 지정 절차, 수련지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ㆍ범위 및 면적, 수련지구에 설치할 수 없는 시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1. 21.]

**제48조(수련지구조성계획)**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7조제1항에 따라 수련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수련지구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법인 또는 단체는 수련지구를 지정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조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성계획은 자연 상태를 최대한 보존할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조성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⑤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1. 21.]

**제49조(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수련지구의 지정 등)**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지역이 아닌 인근지역을 포함하여 수련지구로 지정하거나 조성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인근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1. 21.]

**제50조(수용 및 사용)**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을 설치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조성계획의 시행자는 조성계획 시행에 필요한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토지 정착물이나 이에 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4. 1. 21.]

**제51조(조성계획에 따른 시설 설치 등)** ① 수련지구에 설치하는 수련시설이나 그 밖의 시설은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을 수립한 자가 설치한다. 다만, 조성계획을 수립한 자 외의 자가 그 조성계획을 수립한 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수련지구에 수련시설이나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이나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하는 자(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외한다)는 제11조제3항에 따른 수련시설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4. 1. 21.]

**제52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해제ㆍ신고 또는 지정(이하 이 조에서 “허가ㆍ면허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ㆍ면허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ㆍ면허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1. 29., 2024. 3. 26.>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의 인가
2.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3.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공사시행 또는 유지의 허가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5.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의 공사시행 또는 유지ㆍ보수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6.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의 공사시행 또는 유지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7.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8.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9.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10.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
11.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12. 「초지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및 신고
13. 「사방사업법」 제14조 및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에서의 입목ㆍ죽의 벌채 등의 허가 및 사방지 지정의 해제
14. 「자연공원법」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공원사업 시행 및 공원시설 관리의 허가, 공원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관계 법령에의 적합 여부에 관하여 미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ㆍ면허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개정 2024. 3. 26.>

④ 삭제<2024. 3. 26.>

[전문개정 2014. 1. 21.]

## 제5장 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제53조(청소년교류활동의 진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교류활동 진흥시책을 개발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시설과 청소년단체 등에 대하여 청소년교류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청소년교류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청소년교류활동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1. 21.]

**제54조(국제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지방자치단체、국제기구 또는 민간 등이 주관하는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다른 국가와 청소년교류협정을 체결하여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기구가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을 시행할 때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55조(지방자치단체의 자매도시협정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자매도시협정을 체결할 때에는 청소년교류활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교류를 위하여 청소년단체 등 민간기구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1. 21.]

**제56조(교포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포청소년의 모국방문、문화체험 및 국내 청소년과의 청소년교류활동을 지원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청소년단체 또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이 주관하는 교포청소년교류활동의 확대、발전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1. 21.]

**제57조(청소년교류활동의 사후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교류활동을 통한 성과가 지속되고 발전、향상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1. 21.]

**제58조(청소년교류센터의 설치・운영)** ① 국가는 제53조부터 제57조까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교류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청소년교류센터의 운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1. 21.]

**제59조(남・북청소년교류활동의 제도적 지원)** ① 국가는 남、북청소년 교류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남、북청소년이 교류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남、북청소년 교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체계적인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1. 21.]

## 제6장 청소년문화활동의 지원

**제60조(청소년문화활동의 진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문화활동 프로그램 개발, 문화시설 확충 등 청소년문화활동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 기반을 조성하는 시책을 개발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문화예술 관련 단체, 청소년동아리단체, 봉사활동단체 등이 청소년문화활동 진흥에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자발적 참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1. 21.]

**제61조(청소년문화활동의 기반 구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영역에서 청소년문화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문화예술 관련 단체 등 각종 지역사회의 문화기관은 청소년문화활동의 기반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1. 21.]

**제62조(전통문화의 계승)**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가 청소년문화활동에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1. 21.]

**제63조(청소년축제의 발굴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축제를 장려하는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64조(청소년동아리활동의 활성화)**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조직하고 운영하는 다양한 형태의 동아리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활동시설은 제1항에 따른 동아리활동에 필요한 장소 및 장비 등을 제공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1. 21.]

**제65조(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1. 21.]

## 제7장 보칙

**제66조(조세 감면 등)** ① 국가는 활동진흥원ㆍ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ㆍ청소년활동시설ㆍ시설협회 및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 등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는 활동진흥원ㆍ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ㆍ청소년활동시설ㆍ시설협회 및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 등에 출연 또는 기부된 재산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 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③ 국가는 활동진흥원ㆍ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ㆍ청소년활동시설ㆍ시설협회 및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가 수입하는 청소년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실험ㆍ실습ㆍ시청각 기자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용품에 대해서는 「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1. 21.]

**제67조(감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활동진흥원ㆍ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ㆍ청소년활동시설 및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운영기관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4. 1. 21.]

**제68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5. 10. 1.>
1. 제11조제3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를 신청하는 자
2.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48조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전문개정 2014. 1. 21.]

**제69조(권한의 위임 등)** 이 법에 따른 성평등가족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전문개정 2014. 1. 21.]

## 제8장 벌칙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2. 제11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변경한 자
3. 제22조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를 받은 자로서 계속하여 해당 수련시설을 운영한 자
4. 제48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조성계획을 시행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의6을 위반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신고ㆍ등록ㆍ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한 자
2. 제20조의2에 따른 시설 운영 중지 또는 활동의 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39조를 위반하여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탁한 자

[전문개정 2014. 1. 21.]

**제7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5. 17.]

**제7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의8을 위반하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6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7. 12. 12., 2018. 3. 13.>

1.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2. 제9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수련활동의 모집을 한 자
3. 제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의료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9조의5를 위반하여 표시 또는 고지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련시설을 운영한 자
6.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영대표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제18조의2를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7의2. 제18조의3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7의3. 제19조의2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8. 제2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9. 제21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행위를 한 자
10. 제25조를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11. 제2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련시설을 휴지, 재개 또는 폐지한 자
12. 제38조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수련활동이나 청소년수련활동의 인증 등 인증을 받았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25. 10. 1.>

[전문개정 2014. 1. 21.]

**부칙** <제7163호,2004. 2. 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벌칙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수련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청소년기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수련시설은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수련시설로 본다.

**제4조**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는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협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중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④시설협회는 설립등기일에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의 모든 권리ㆍ의무 및 재산을 승계한다.

⑤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의 임원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협회의 임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제5조** (한국청소년수련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한국청소년수련원은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청소년수련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부칙 제4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한국청소년수련원에 이를 준용한다.

**부칙** <제7420호,2005. 3. 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으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부칙** <제7421호,2005. 3. 24.>(청소년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 이내에 청소년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3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제42조제2항, 제43조제2항 및 제72조제3항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청소년위원회"로 한다.

제39조제1항제6호, 제41조제1항제5호 및 제43조제3항·제4항중 "문화관광부장관이"를 각각 "청소년위원회가"로 한다.

제45조제1항·제2항 및 제13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문화관광부장관에게"를 각각 "청소년위원회에"로 한다.

제69조중 "문화관광부장관은"을 "청소년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4호·제2항, 제13조제1항 후단·제2항 각호외의 부분, 제17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1항, 제31조제2항제3호·제5호, 동조제3항 및 제68조 각호외의 부분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청소년위원회규칙"으로 한다.

②내지 ⑨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7428호,2005. 3. 3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17>생략

<118>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26조제2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119>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7678호,2005. 8. 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3>생략

<64>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5호 및 제52조제1항제10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구역 안"을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으로 한다.

<65>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7799호,2005. 12. 29.>(청소년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6호, 제41조제1항제5호, 제42조2항, 제43조제2항 내지 제4항, 제45조제1항·제2항, 제69조 및 제72조제3항중 "청소년위원회"를 각각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②내지 ⑪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7941호,2006. 4. 28.>(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④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7995호,2006. 9. 27.>(초지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4호 및 제52조제1항제12호중 " 제23조제1항 " 을 각각 " 제23조제2항 및 제3항 " 으로 한다.

⑨생략

**부칙** <제8014호,2006. 9. 27.>(하수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4@ 생략

4#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3호중 " 하수도법 제13조 " 를 " 「하수도법」 제16조 " 로 한다.

4$ 내지 <57>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8338호,2007. 4. 6.>(하천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3@ 생략

3#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 또는 유지ㆍ보수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3$ 내지4*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8349호,2007. 4. 11.>(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제1호 중 " 제22조 " 를 " 제20조 " 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 <제8352호,2007. 4. 11.>(농지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0>생략

<61>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호 및 제52조제1항제11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각각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62>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8370호,2007. 4. 11.>(수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5) 생략

<51>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7호 및 제52조제1항제2호 중 "수도법 제36조"를 각각 "「수도법」 제52조"로 한다.

<52>내지 <66>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제8570호,2007. 7. 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19호,2007. 12. 27.>(공유수면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3! 까지 생략

3@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4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3# 부터4#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8852호,2008. 2. 29.>(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58> 까지 생략

<759>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1항 중 "총리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국가청소년위원회에"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위원장"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총리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6호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한다.

제41조제1항제5호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한다.

제43조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4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한다.

제4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에"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로 한다.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총리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69조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42조제2항 및 제72조제3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 제17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1항, 제31조제2항제3호·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36조의2제4항 및 제36조의3제3항 중 "총리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760>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976호,2008. 3. 21.>(도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5> 까지 생략

<76>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7호 중 “ 도로법 ”을 “ 「도로법」 ”으로, “ 동법 제40조 ”를 “ 같은 법 제38조 ”로 한다.

<77>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9313호,2008. 12. 31.>(자연공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2) 까지 생략

2!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연공원법」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공원사업 시행의 허가, 공원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제52조제1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자연공원법」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공원사업시행 및 공원시설관리의 허가, 공원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2@ 부터2( 까지 생략

**부칙** <제9432호,2009. 2. 6.>(식품위생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2# 까지 생략

2$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제3호 중 “ 식품위생법 제22조 및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을 “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제88조에 따른 ”으로 한다.

2% 부터3)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763호,2009. 6. 9.>(산림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4( 까지 생략

5)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5호 및 제52조제1항제10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를 각각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로 한다.

<51>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9932호,2010. 1. 18.>(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20> 까지 생략

<121>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호, 제41조제1항제5호, 제42조제2항, 제4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5조제1항ㆍ제2항, 제69조 및 제72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4호ㆍ제2항, 제13조제1항 후단, 제17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1항, 제31조제2항제3호 및 제5호ㆍ제3항,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36조의2제4항, 제36조의3제3항 및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122>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219호,2010. 3. 31.>(지방세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4* 까지 생략

4(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지방세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5) 부터 <61>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10272호,2010. 4. 15.>(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9> 까지 생략

<60>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61>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10299호,2010. 5.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활동진흥원의 설립준비)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10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거나 임명하여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진흥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활동진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되는 활동진흥원의 임원후보자는 제6조의3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도 불구하고 설립위원회가 추천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면 지체 없이 활동진흥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제4항의 설립등기를 마치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활동진흥원의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설립위원은 인계가 끝나면 해촉 또는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⑥ 설립위원회는 활동진흥원 설립준비를 위하여 드는 비용을 종전의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한국청소년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라 한다)와 종전의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한국청소년수련원(이하 "한국수련원"이라 한다)의 예산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⑦ 진흥센터 및 한국수련원은 이 법에 따른 활동진흥원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3조**(진흥센터 및 한국수련원의 재산과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진흥센터와 한국수련원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활동진흥원의 설립과 동시에 활동진흥원이 포괄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포괄 승계된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 그 밖에 공적 문서와 장부에 표시된 진흥센터와 한국수련원의 명의는 활동진흥원의 설립과 동시에 활동진흥원의 명의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진흥센터와 한국수련원의 행위 또는 진흥센터와 한국수련원에 대한 행위는 각각 활동진흥원의 행위 또는 활동진흥원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조직통합에 따른 소속 임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활동진흥원의 설립과 동시에 진흥센터와 한국수련원의 임원은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진흥센터와 한국수련원의 직원은 활동진흥원의 직원으로 본다.

**부칙** <제10331호,2010. 5. 31.>(산지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5> 까지 생략

<76>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5호 및 제52조제1항제10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각각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로 한다.

<77>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10660호,2011. 5. 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90호,2013. 3. 23.>(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32>까지 생략

<533>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53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837호,2013. 5.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에 부적합한 사람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참여에 부적합한 사람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248호,2014. 1. 14.>(도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7>까지 생략

<108>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7호 중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을 “「도로법」 제36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으로 한다.

<109>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제12329호,2014. 1.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5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10호 중 “「청소년활동진흥법」”을 “「청소년활동 진흥법」”으로 한다.

②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2항제26호 중 “「청소년활동진흥법」”을 “「청소년활동 진흥법」”으로 한다.

③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 중 “「청소년활동진흥법」”을 “「청소년활동 진흥법」”으로 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제12호, 제50조제5항, 제51조제4항ㆍ제5항 및 제56조제1항제5호 중 “「청소년활동진흥법」”을 각각 “「청소년활동 진흥법」”으로 한다.

⑤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2호 중 “「청소년활동진흥법」”을 “「청소년활동 진흥법」”으로 한다.

⑥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2제1항제1호 중 “「청소년활동진흥법」”을 “「청소년활동 진흥법」”으로 한다.

⑦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청소년활동진흥법」”을 “「청소년활동 진흥법」”으로 한다.

⑧ 청소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3항 중 “ 「청소년활동진흥법」 ”을 “ 「청소년활동 진흥법」 ”으로 한다.

⑨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중 “ 「청소년활동진흥법」 ”을 “ 「청소년활동 진흥법」 ”으로 한다.

**부칙** <제12600호,2014. 5. 20.>(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법률 제12329호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7제2항제3호 중 “ 「경찰관직무집행법」 ”을 “ 「경찰관 직무집행법」 ”으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제13182호,2015. 2.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05호,2016. 1. 19.>(주택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6>까지 생략

<77>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중 “ 「주택법」 제16조 ”를 “ 「주택법」 제15조 ”로 한다.

<78>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4068호,2016. 3. 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238호,2016. 5. 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76호,2016. 12. 27.>(지방세징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53>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4705호,2017. 3.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독기관의 종합 안전·위생점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10호 및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점검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4항·제5항 및 제52조제3항·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211호,2017. 12. 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련시설 운영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453호,2018. 3. 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제2항·제3항 및 제27조제3항·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또는 수련시설운영의 휴지·폐지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902호,2020. 1. 29.>(항만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4^ 까지 생략

4&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4* 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제17286호,2020. 5. 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958호,2022. 6. 10.>(수상레저안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7제2항제1호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45조"를 "「수상레저안전법」 제43조"로 한다.

⑥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 <제20421호,2024. 3. 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23호,2024. 3. 26.>(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0953호,2025. 4. 29.>(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조항 정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조치 등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1065호,2025. 10. 1.>(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29>까지 생략

<430>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6조제1항제12호, 제6조의3제2항ㆍ제4항, 제6조의4제1항ㆍ제2항, 제9조의2제7항ㆍ제8항, 제9조의4제2항ㆍ제3항, 제18조의3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8조의4제1항, 제19조제2항, 제19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5조제4항제3호ㆍ제4호,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제69조 및 제72조제3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3제5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조의3제1항 전단, 제9조의4제1항, 제9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 후단, 제17조제2항, 제18조의2, 제18조의4제2항, 제19조제3항, 제19조의2제7항, 제20조의2제2항,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제31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 제36조의2제4항, 제36조의3제3항, 제39조제2항 및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5조제4항제1호 중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431>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221호, 2026. 3. 24., 타법개정]

성평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 02 - 2100 - 6262,6263
성평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02 - 2100 - 6252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 7. 21.]

**제2조(지방청소년활동진흥협의회)** ①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하는 지방청소년활동진흥협의회(이하 “ 지방협의회 ”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7. 21.]

**제3조(청소년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운영위원회(이하 “ 운영위원회 ”라 한다)는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청소년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⑦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⑧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7. 21.]

## 제2장 청소년활동의 보장 <신설 2010. 8. 11.>

**제4조(사업계획서)**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하 “ 활동진흥원 ” 이라 한다)이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10. 1.>

1. 목표ㆍ방침ㆍ주요사업ㆍ소요예산 및 재원구성 등이 포함된 사업의 개요
2. 교부받으려는 보조금액 및 그 사용 계획
3. 사업의 효과 및 그 밖의 참고사항

[본조신설 2010. 8. 11.]

**제4조의2(세입ㆍ세출결산서)** 활동진흥원이 법 제6조의4제2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1.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집행실적 대비표
2. 활동진흥원 감사의 감사의견서 및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
3.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자료

[전문개정 2014. 7. 21.]

## 제3장 청소년활동시설

**제5조(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허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이하 “ 수련시설 ” 이라 한다) 설치ㆍ운영의 허가(제6조에 따른 중요 사항 변경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전문개정 2014. 7. 21.]

**제6조(수련시설의 중요 사항 변경)** 법 제11조제3항 후단에서 “ 대규모의 부지 변경, 건축 연면적의 증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 ”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 10. 1.>

1. 부지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면적의 증감
2.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면적의 증감
3.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허가ㆍ인가ㆍ해제ㆍ지정 또는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보는 내용의 변경
4. 수련시설 안에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여 운영하는 영업의 신설 또는 폐지
5. 그 밖에 수련시설의 시설기준 중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의 변경

[전문개정 2014. 7. 21.]

**제7조(수련시설의 등록)** ① 법 제13조에 따라 수련시설을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② 제1항의 등록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허가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그 내용을 등록대장에 기록한 후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교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등록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을 설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련시설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소관 수련시설의 관련 사항을 등록대장에 기록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요청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등록을 할 때 필요한 서류, 등록증 및 교육감에 대한 통지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 7. 21.]

**제8조(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의 자격)** ①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1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2.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중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청소년육성업무에 8년 이상 종사한 사람
6.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청소년육성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7. 제6호 외의 공무원 중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② 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에 관하여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전문개정 2014. 7. 21.]

**제9조(시범수련시설의 지정 및 육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의 활성화 및 청소년수련거리의 보급ㆍ확산을 위하여 관할구역에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련시설을 시범수련시설로 지정하여 육성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1. 시설ㆍ설비내용이 우수하고 청소년수련거리의 운영에 모범이 되는 수련시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개발ㆍ보급하는 청소년수련거리의 시범적용을 담당할 수련시설

3. 그 밖에 특별히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수련시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수련시설(이하 "시범수련시설"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른 수련시설에 우선하여 수련시설의 설치·운영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범수련시설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④ 시범수련시설의 지정 및 육성·지원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25. 10. 1.>

[전문개정 2014. 7. 21.]

**제10조(수련시설 안전점검)** ①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정기·수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수련시설의 범위는 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수련시설로 한다.

②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안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4. 7. 21.]

**제11조(감독기관의 종합 안전·위생점검 절차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수련시설에 대한 종합 안전·위생점검을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19., 2025. 10. 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수련시설의 종합 안전·위생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과 합동으로 제1항에 따른 종합 안전·위생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7. 9. 19., 2025. 10. 1.>

③ 제1항에 따른 종합 안전·위생점검의 분야 및 내용은 별표 1의2와 같다.<개정 2017. 9. 19.>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한 종합 안전·위생점검의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15. 8. 3., 2017. 9. 19., 2025. 10. 1.>

1.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종합 안전·위생점검의 결과: 종합 안전·위생점검을 실시한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2. 제2항에 따라 실시한 종합 안전·위생점검의 결과: 성평등가족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전문개정 2014. 7. 21.]

[제목개정 2017. 9. 19.]

**제12조(수련시설의 이용)** 법 제21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란 수련시설을 청소년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법 제31조제2항 각 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4. 7. 21.]

**제13조(보험가입)** ① 법 제25조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수련시설은 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수련시설로 한다. 다만, 건축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하인 청소년문화의 집은 제외한다.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보험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지급보험금액은 실손해액으로 하되, 사망의 경우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개정 2023. 4. 18.>

1. 사망의 경우에는 1억5천만원
2. 부상의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
3. 부상의 경우 그 치료가 완료된 후 해당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장해(이하 "후유장해"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별표 3에서 정하는 금액
4. 부상자가 치료 중에 해당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5. 부상자에게 해당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6. 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해당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3호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전문개정 2014. 7. 21.]

**제14조(수련시설의 휴지·폐지 제한)** 법 제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수련시설을 말한다.

1.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경비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수련시설
2. 「청소년 기본법」 제53조에 따른 청소년육성기금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아 설치한 수련시설

[전문개정 2014. 7. 21.]

**제15조(수련시설 건립심의위원회)**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심의 과정에 청소년 관련 전문가 및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관 수련시설 건립 시 수련시설건립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 중 청소년 및 청소년 전문가의 참여 비율은 각각 5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⑦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수련시설을 설치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수요자 요구조사, 운영계획 및 건축물의 설계계획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하도록 하고, 심의 결과는 수련

시설의 설계 및 건축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⑨ 심의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⑩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4. 7. 21.]

**제16조** 삭제 <2016. 8. 29.>

**제17조(청소년이용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청소년이용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7. 20.>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
2.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과학관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체육시설
4.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
5.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및 제19조에 따른 자연휴양림
6.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수목원
7.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의 사회복지관
8. 시민회관ㆍ어린이회관ㆍ공원ㆍ광장ㆍ둔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공용시설로서 청소년활동 또는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시설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청소년활동과 관련되어 설치된 시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청소년이용시설 중 상시 또는 정기적으로 청소년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로서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한 시설에 대해서는 그 설치ㆍ운영자의 신청을 받아 청소년이용권장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청소년이용권장시설에 대해서는 다른 청소년이용시설에 우선하여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청소년이용권장시설의 지정신청ㆍ지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전문개정 2014. 7. 21.]

**제18조** 삭제 <2017. 9. 19.>

## 제4장 청소년수련활동의 지원

**제19조(청소년수련활동 인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삭제 <2015. 8. 3.>

② 삭제<2015. 8. 3.>

③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같은 조 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개정 2015. 8. 3.>

④ 인증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5. 8. 3.>
⑤ 위원장은 인증위원회를 대표하고, 인증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⑧ 인증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인증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증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4. 7. 21.]

**제20조(활동기록 유지ㆍ관리 등)** ① 국가는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인증수련활동(이하 "인증수련활동"이라 한다)에 참여한 청소년의 활동기록을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해당 활동이 끝난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그 기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3.>
② 국가는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활동참여 청소년의 기록 자료가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ㆍ제공될 수 있도록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수련활동 참여기록이 청소년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 또는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8. 3.>
[전문개정 2014. 7. 21.]

**제21조(인증신청ㆍ절차 및 방법 등)** ① 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련활동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참가자 모집 또는 활동실시 시작 45일 이전에 인증위원회에 인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인증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인증위원회에서 정하는 인증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인증을 요청한 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인증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인증을 요청한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보완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 또는 개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보완 또는 개선의 요구를 받은 자는 10일 이내에 그 보완 또는 개선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인증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보완 또는 개선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증요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7. 21.]

**제22조(인증심사의 효율성 제고)** ① 인증위원회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청소년활동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인증심사원을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선발과 활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전문개정 2014. 7. 21.]

**제23조(수련활동 내용 등의 기록 및 통보)** ① 인증수련활동을 실시한 활동시설 및 개인, 법인ㆍ단체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이 참여한 수련활동에 관하여 개별 청소년의 인적사항, 활동참여 일자ㆍ시간, 장소, 주관기관, 수련활동 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인증수련활동을 실시한 활동시설 및 개인, 법인ㆍ단체는 제1항에 따른 개별 청소년의 활동 기록 및 인증수련활동 결과를 해당 인증수련활동이 끝난 후 15일 이내에 인증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7. 21.]

**제24조(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 위탁사업)** 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이하 "지방시설협회"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0. 1.>

1. 지방시설협회에 소속된 수련시설이 수행하는 사업과 활동에 대한 협력 및 지원
2. 지방시설협회에 소속된 수련시설에서 종사하는 사람의 연수, 권익증진 및 교류사업
3. 지방시설협회에 소속된 수련시설의 수련활동의 활성화 및 수련시설의 안전에 관한 홍보 및 실천운동
4. 지방시설협회에 소속된 수련시설의 수련활동에 대한 조사ㆍ연구ㆍ지원사업
5. 그 밖에 수련시설의 운영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지방시설협회 소관 사업

[전문개정 2014. 7. 21.]

**제25조** 삭제 <2010. 8. 11.>

**제26조** 삭제 <2010. 8. 11.>

**제27조(청소년수련지구의 지정 절차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청소년수련지구(이하 "수련지구"라 한다)를 지정함에 있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협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서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1. 수련지구의 지정사유 설명서
2. 수련지구로 지정할 구역의 지번 및 지적조서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ㆍ지구 등으로 지정된 지역에 수련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그 법률에서 해당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그 협의에 필요한 서류
4. 수련지구로 지정하는 지역의 도면(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

[전문개정 2014. 7. 21.]

**제28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47조제2항 단서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지적조사 또는 지적측량의 결과에 의한 면적의 정정 등으로 인한 면적의 변경
2. 수련지구 지정면적의 100분의 10 이내의 변경.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ㆍ지구 등으로 지정된 지역에 있는 수련지구의 지정면적 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4. 7. 21.]

**제29조(수련지구 내 필수시설 및 금지시설)** ① 법 제47조제4항에 따른 수련지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ㆍ범위 및 면적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47조제4항에 따른 수련지구에 설치할 수 없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12. 9., 2023. 11. 16., 2025. 10. 1.>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을 하기 위한 시설
2. 삭제<2024. 4. 23.>
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행행위영업을 하기 위한 시설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을 하기 위한 시설
5. 「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기 위한 시설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공장. 다만, 수련지구의 관리 또는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7.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의 폐기물처리시설. 다만, 수련지구의 관리 또는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8. 그 밖에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③ 수련지구에서의 시설의 설치는 법 제48조에 따라 수립된 수련지구조성계획(이하 “ 조성계획 ” 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7. 21.]

**제30조(법인ㆍ단체의 조성계획 승인신청)** ①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가 수립ㆍ시행할 수 있는 조성계획은 수련지구의 면적이 3백만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② 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을 하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조성계획승인신청서 및 제5조에 따라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의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전문개정 2014. 7. 21.]

**제31조(조성계획의 고시)** ①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고시하는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련지구의 명칭
2. 수련지구의 위치 및 면적
3. 수련지구의 조성목적과 그 개요
4. 조성계획의 시행자(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법인ㆍ단체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5. 시행기간(착공 및 준공예정일을 포함한다)
6. 조성계획의 시행으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이 필요한 경우,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에 대한 소재지ㆍ지번ㆍ지적ㆍ면적ㆍ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7. 조성계획 및 도면의 비치장소

②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은 고시하여야 하며, 법 제4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립되거나 승인된 조성계획 및 도면을 1개월 이상 갖추어 두고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7. 21.]

## 제5장 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제32조(국제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사회단체, 청소년단체 등의 장에게 사전 협의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공공기관, 사회단체, 청소년단체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청소년교류협정의 체결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다변화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전문개정 2014. 7. 21.]

## 제6장 보칙 <신설 2012. 1. 6.>

**제33조(업무의 위탁)**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69조에 따라 법 제18조의4에 따른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와 그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업무를 활동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16. 8. 29.]
[종전 제33조는 제33조의2로 이동 <2016. 8. 29.>]

**제3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여권번호의 경우에는 제2호 및 제8호만 해당하고, 외국인등록번호의 경우에는 제2호만 해당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8., 2025. 10. 1.>

1. 법 제5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청소년 활동내용 등의 기록관리 및 제공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의2에 따른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허가에 관한 사무
4. 법 제13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등록에 관한 사무
5. 법 제15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6. 법 제27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휴지ㆍ재개ㆍ폐지에 관한 사무
7. 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수련활동의 인증에 관한 사무
8. 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청소년교류활동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무
9. 법 제65조에 따른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무
10. 제17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이용권장시설 지정에 관한 사무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여권번호의 경우에는 제3호만 해당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활동진흥원: 활동진흥원의 사업에 필요한 청소년 활동내용 등의 기록관리 및 제공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7조에 따른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사업에 필요한 청소년 활동내용 등의 기록관리 및 제공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58조에 따른 청소년교류센터: 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청소년교류활동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무

[전문개정 2014. 7. 21.]

[제33조에서 이동, 종전 제33조의2는 제33조의3으로 이동 <2016. 8. 29.>]

**제33조의3(규제의 재검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 12. 9., 2017. 12. 12., 2022. 3. 8., 2025. 10. 1., 2026. 3. 24.>

1. 제6조에 따른 수련시설의 변경허가 대상: 2022년 1월 1일
2. 제7조에 따른 수련시설의 등록에 관한 사항: 2014년 1월 1일
3. 삭제<2026. 3. 24.>
4. 삭제<2026. 3. 24.>
5. 제14조에 따른 수련시설의 휴지ㆍ폐지 제한에 관한 사항: 2014년 1월 1일
6. 제29조 및 별표 4에 따른 수련지구 내 필수시설 및 금지시설: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 12. 30.]

[제33조의2에서 이동 <2016. 8. 29.>]

## 제7장 벌칙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7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삭제<2013. 11. 20.>

[전문개정 2010. 8. 11.]

**부칙** <제18740호,2005. 3. 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련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4호의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처음으로 허가하는 수련시설부터 적용한다.

**제3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책임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을 갖춘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책임자는 이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의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제8호중 " 청소년기본법 " 을 " 청소년활동진흥법 " 으로 한다.

②건축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8호 아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자목을 삭제한다.

아.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수련원、청소년문화의집、청소년특화시설、청소년야영장、유스호스텔 그 밖에 이에 유사한 것을 말한다)

③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중 " 청소년기본법 " 을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 " 로 한다.

④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4호중 " 청소년기본법 제26조제2항 " 을 " 「청소년활동진흥법」제11조제2항 " 으로 한다.

⑤보험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1항제9호중 " 청소년기본법 제33조 " 를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5조 " 로 한다.

⑥부가가치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중 " 청소년기본법 " 을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의 규정 " 으로 한다.

⑦사방사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9호중 " 청소년기본법 " 을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의 규정 " 으로 한다.

⑧산지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8항제3호중 "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5호 " 를 "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제1호 " 로 한다.

별표 1의 제3호중 "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 " 를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제47조제1항 " 으로 한다.

별표 5의 제4호 나목 대상시설란 (8)중 "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5호 " 를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 " 로 한다.

⑨영화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2호중 " 청소년기본법 제26조 " 를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 " 로 하고, 동조제3호중 " 청소년기본법 제40조 " 를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7조"로 하며, 동조제4호를 삭제한다.

⑩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제2호 너목중 "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5호 " 를 "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제1호 " 로 한다.

⑪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4호중 "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7조 " 를 "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제1호 " 로 한다.

⑫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의15제1항제4호중 "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7조 " 를 "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제1호 " 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8811호,2005. 4. 27.>(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중 " 문화관광부장관 " 을 " 청소년위원회 " 로 한다.

제9조제4항, 제19조제2항, 제24조제5호 및 제33조제1항제8호중 " 문화관광부장관이 " 를 각각 " 청소년위원회가 " 로 한다.

제25조 각호외의 부분 및 제26조 각호외의 부분중 " 문화관광부장관에게 " 를 각각 " 청소년위원회에 " 로 한다.

제32조제3항중 " 문화관광부장관은 " 을 " 청소년위원회는 " 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제3항중 “ 문화관광부장관과 ” 를 각각 “ 청소년위원회와 ” 로 한다.
제5조, 제6조제5호,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제17조제4항, 제22조제2항, 제29조제2항제2호、제6호 후단、제7호 후단, 제30조제2항, 제33조제4항 및 제34조제4항중 “ 문화관광부령 ” 을 각각 “ 청소년위원회규칙 ” 으로 한다.
②내지 ⑧생략

**부칙** <제19431호,2006. 3. 29.>(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제19조제2항, 제24조제5호,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3항, 제33조제1항제8호 및 제34조제1항중 “ 청소년위원회 ” 를 각각 “ 국가청소년위원회 ” 로 한다.
제5조, 제6조제5호,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제17조제4항, 제22조제2항제2호, 제29조제2항제2호、제6호 단서、제7호 단서, 제30조제2항, 제33조제4항 및 제34조제4항중 “ 청소년위원회규칙 ” 을 각각 “ 국가청소년위원회규칙 ” 으로 한다.
⑪및 ⑫생략

**부칙** <제19513호,2006. 6. 12.>(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08>생략
<209>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6호중 “ 별정직공무원 ” 을 “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 로 한다.
<210>내지 <241>생략

**부칙** <제19639호,2006. 8. 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2( 생략
3)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5호중 “ 「산림법」 제31조 ” 를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및 제19조 ” 로 한다.

3! 내지3%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0244호,2007. 9. 6.>(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7호 중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 ” 를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 ” 로 한다.

⑭ 부터1&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0568호,2008. 1.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79호,2008. 2. 29.>(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9> 까지 생략

<70>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 국가청소년위원회와 ” 를 각각 “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 ”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 국가청소년위원회가 ” 를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 로 한다.

제19조제2항제1호 중 “ 국가청소년위원회와 교육인적자원부 ” 를 “ 보건복지가족부와 교육과학기술부 ” 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이 ” 를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 로 한다.

제24조제5호 중 “ 국가청소년위원회가 ” 를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 로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 국가청소년위원회에 ” 를 각각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 로 한다.

제32조제3항 중 “ 국가청소년위원회는 ” 을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 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 국가청소년위원회 ”를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 총리령 ”을 “ 보건복지가족부령 ”으로 한다.

제5조, 제6조제5호,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제17조제4항, 제22조제2항, 제29조제2항제2호、제6호 단서 및 제7호 단서, 제30조제2항 및 별표 1의 제7호 중 “ 총리령 ”을 각각 “ 보건복지가족부령 ”으로 한다.

<71> 부터 <80> 까지 생략

**부칙** <제21676호,2009. 8. 6.>(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1호 중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을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으로 한다.

⑬ 부터1^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2076호,2010. 3. 15.>(여성가족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2@ 까지 생략

2#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6조제5호,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제17조제4항, 제22조제2항, 제29조제2항제2호、제6호、제7호, 제30조제2항 및 제34조제4항 중 “ 보건복지가족부령 ”을 각각 “ 여성가족부령 ”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제19조제2항제3호, 제24조제5호,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3항 및 제34조제1항 중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을 각각 “ 여성가족부장관 ”으로 한다.

제19조제2항제1호 중 “ 보건복지가족부 ”를 “ 여성가족부 ”로 한다.

별표 1의 제7호 중 “ 보건복지가족부령 ”을 “ 여성가족부령 ”으로 한다.

2$ 부터2^ 까지 생략

**부칙** <제22336호,2010. 8. 11.>

이 영은 2010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488호,2012. 1. 6.>(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4020호,2012. 8. 3.>(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7호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2"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로 한다.

⑫ 생략

**부칙** <제24446호,2013. 3. 23.>(여성가족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제32조제3항 중 "외교통상부와"를 "외교부장관과"로 한다.

⑫ 생략

**부칙** <제24502호,2013. 4. 22.>(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과학관육성법」"을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24870호,2013. 11. 20.>

이 영은 2013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050호,2013. 12. 30.>(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500호,2014. 7.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증수련활동 기록의 제공 및 통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끝났거나 실시 중인 인증수련활동의 경우에는 제20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5836호,2014. 12. 9.>(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기 위한 시설

⑬부터1(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5840호,2014. 12. 9.>(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파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 생략

**부칙** <제26416호,2015. 7. 20.>(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6호 중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26470호,2015. 8. 3.>

이 영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469호,2016. 8. 29.>

이 영은 2016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322호,2017. 9.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 안전ㆍ위생점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종합 안전ㆍ위생점검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471호,2017. 12. 12.>(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3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8967호,2018. 6. 12.>

이 영은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950호,2019. 7. 2.>(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380호,2021. 1. 5.>(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2169호,2021. 11. 30.>(과태료 부과 합리화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파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2528호,2022. 3. 8.>(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421호,2023. 4.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25조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거나 종전의 보험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험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보험에 가입한 경우로서 보험금액이 제13조제2항,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해당 보험의 갱신 기간이 2023년 9월 30일 전에 도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2023년 9월 30일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도록 종전의 보험 계약을 변경해야 한다.

**부칙** <제33434호,2023. 4. 25.>(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3858호,2023. 11. 16.>(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442호,2024. 4. 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806호,2025. 10. 1.>(성평등가족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2! 까지 생략

2@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제1호ㆍ제2호, 제24조제5호, 제32조제3항, 제33조,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6조제5호,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제17조제4항, 제22조제2항, 제29조제2항제6호 단서, 같은 항 제7호 단서, 제30조제2항 및 별표 1 제7호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4항제2호 중 "여성가족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성평등가족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2# 및2$ 생략

**부칙** <제36221호,2026. 3. 24.>(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 편의 개선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6. 3. 24.>

수련시설의 안전기준(제10조제2항 관련)

1. 수련시설의 설치·운영자는 항상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특히 장애 청소년 및 미취학아동 등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대피가 편리한 숙소를 배정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인솔자 교육을 강화하는 등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부상자·병자에 대하여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구호설비·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 병원, 경찰관서 및 소방관서 등과 비상연락망을 유지하여야 한다.
4. 안전사고·응급환자 발생 등에 대비하여 긴급 후송대책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5. 위험한 장소에는 방벽(防壁)·울타리·위험표지물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있을 때에는 안전요원 또는 긴급구조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6. 자연체험시설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시설의 종류에 따라 안전모·안전띠·구명대 등 필요한 개인보호장구를 갖추고, 이를 이용자에게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7. 매월 1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세부적인 점검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 시설물 안전점검기록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 안전점검기록대장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8. 시설물에 위험요인이 발견될 때에는 즉시 그 시설물의 이용을 중단시키고 보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 수련시설의 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시설의 이용방법, 유의사항, 비상 시의 대피경로 등을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1. 해당 시설이용 및 수련활동에 관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이용자(인솔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2. 태풍·홍수·해일 등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들을 신속히 대피시켜야 한다.
13. 해당 수련시설 안에 법 제33조제2항 각 호의 영업을 위한 시설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시설이 설치된 경우에 이 기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에서 정한 안전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14. 청소년수련시설의 숙박·집회시설 및 숙박·집회시설과 이어진 건축물에는 샌

드위치 판넬 등 연소 시 유독가스가 발생되는 건축자재는 사용할 수 없다.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19. 7. 2.>

종합 안전 · 위생점검의 분야 및 내용(제11조제3항 관련)

| 점검 대상 분야 | | 점 검 내 용 |
|---|---|---|
| 1. 안전 · 위생 분야 공통 | | 가. 안전 관련 보험 가입 여부<br>나. 설계도서 및 각종 서류 구비 여부<br>다. 법정 안전 · 위생관리자 선임 여부<br>라. 법정 안전 · 위생점검 실시 및 교육 이수 여부 |
| 2. 안전 | 건축 | 가. 지반상태, 구조체의 변형 · 균열상태 · 노후화 등 구조 안전성<br>나. 지붕마감, 내 · 외부마감, 창문 등 건축마감 상태 및 누수여부<br>다. 재난관리, 안전관리 등 건축물 관리 상태 |
| | 토목 | 가. 옹벽, 석축 및 담장의 구조부 침하, 균열, 전도 여부<br>나. 비탈면 유실 여부 등 관리 상태<br>다. 배수로, 집수정, 맨홀 등 청소 및 관리 상태 |
| | 기계 | 가. 급수 · 급탕설비, 오수설비, 빗물설비, 위생기구 등 개별 설비의 누수, 부식, 균열, 파손 여부<br>나. 열원기기, 공조기기 등 공기조화 · 환기설비의 누수, 부식, 파손 여부 및 정상 작동 여부 |
| | 소방 | 가. 소화설비(소화기구, 소화전 등), 경보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방송설비 등), 피난설비(유도등, 피난기구 등) 정상 작동 여부<br>나. 소화활동설비(연결송수관, 제연설비 등), 소화용수설비 및 피난 · 방화시설(피난계단, 방화문 등) 관리 상태<br>다. 위험물(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 관리 상태 |
| | 전기 | 가. 절연저항 측정 시 기준치 부합 여부<br>나. 누전차단기 및 배선용차단기의 설치 및 작동 여부<br>다. 전선의 규격품 사용, 피복 손상 여부, 콘센트의 적정 관리 상태 |
| | 가스 | 가. 가스 용기, 압력조정기, 가스계량기, 밸브, 호스 등 가스 설비 작동 상태<br>나. 배관 설치기준 준수 및 가스누출 여부<br>다. 연소기, 과압안전장치, 가스누출 차단장치 등 작동 상태 |
| 3. 위생 | | 가. 급식 시설 위생관리, 식재료 보관 및 위생관리 상태<br>나. 조리장, 급수시설, 보관시설, 화장실 등 시설기준 준수 여부<br>다. 원료의 사용, 공정관리 및 보관기준 준수 여부<br>라. 수질검사 실시 여부 |
| 비고: 종합 안전 · 위생점검은 관련 법령에 따른 각각의 해당 안전 · 위생기준을 준수하였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함. | | |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3. 4. 18.>

## 상해구분 및 보험금액(제13조제2항제2호 관련)

| 상해 급별 | 보험금액 | 상 해 부 위 |
|---|---|---|
| 1급 | 3천만원 | 1. 고관절의 골절 또는 골절성 탈구<br>2. 척추체 분쇄성 골절<br>3. 척추체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한 제신경증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br>4. 외상성 두개강안의 출혈로 개두술을 시행한 상해<br>5. 머리뼈의 함몰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 또는 경막하 수종, 수활액 낭종,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개두술을 시행한 상해<br>6. 고도의 뇌좌상(미만성 뇌축삭 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생명이 위독한 상해(48시간 이상 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에 한정한다)<br>7. 대퇴골 간부의 분쇄성 골절<br>8. 경골아래 3분의 1 이상의 분쇄성 골절<br>9. 화상·좌상·괴사창 등 연부조직에 손상이 심한 상해(체표의 9퍼센트 이상의 상해)<br>10. 사지와 몸통의 연부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경식피술을 시행한 상해<br>11. 상박골 경부 골절과 간부 분쇄골절이 중복된 경우 또는 상완골 삼각골절<br>12. 그 밖의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2급 | 1,500만원 | 1. 상박골 분쇄성 골절<br>2. 척주체의 압박골절이 있으나 제신경증상이 없는 상해 또는 경추탈구(아탈구 포함), 골절 등으로 할로베스트 등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br>3. 머리뼈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현저한 상해(48시간 미만의 혼 |

| | | |
|---|---|---|
| | | 수상태 또는 반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br>4. 내부장기 파열과 골반골 골절이 동반된 상해 또는 골반골 골절과 요도 파열이 동반된 상해<br>5. 슬관절 탈구<br>6. 족관절부 골절과 골절성 탈구가 동반된 상해<br>7. 척골 간부 골절과 요골 골두 탈구가 동반된 상해<br>8. 천장골간 관절 탈구<br>9. 슬관절 전·후십자인대 및 내측부인대 파열과 내·외측 반월상 연골이 전부 파열된 상해<br>10. 그 밖의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3급 | 1,200만원 | 1. 상박골 경부 골절<br>2. 상박골 과부 골절과 주관절 탈구가 동반된 상해<br>3. 요골과 척골의 간부 골절이 동반된 상해<br>4. 수근 주상골 골절<br>5. 요골 신경손상을 동반한 상박골 간부 골절<br>6. 대퇴골 간부 골절(소아의 경우에는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만 한정하며, 그 외의 사람의 경우에는 수술 여부를 불문한다)<br>7. 무릎골(슬개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분쇄 골절과 탈구로 인하여 무릎골 완전 적출술을 시행한 상해<br>8. 경골 과부 골절이 관절면을 침범하는 상해(경골극 골절로 관혈적 수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br>9. 족근 골척골간 관절 탈구와 골절이 동반된 상해 또는 리스프랑씨시(Lisfranc) 관절의 골절 및 탈구<br>10. 전·후십자인대 또는 내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과 경골극골절 등이 복합된 슬내장<br>11. 복부 내장 파열로 수술이 불가피한 상해 또는 복강내출혈로 수 |

| | | |
|---|---|---|
| | | 술한 상해<br>12. 뇌손상으로 뇌신경 마비를 동반한 상해<br>13. 중증도의 뇌좌상(미만성 뇌축삭 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48시간 미만의 혼수상태 또는 반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br>14. 개방성 공막 열창으로 양안구가 파열되어 양안 적출술을 시행한 상해<br>15. 경추궁의 선상 골절<br>16. 항문 파열로 인공항문 조성술 또는 요도 파열로 요도성형술을 시행한 상해<br>17. 관절면을 침범한 대퇴골 과부 분쇄 골절<br>18. 그 밖의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4급 | 1천만원 | 1. 대퇴골 과부(원외부, 과상부 및 대퇴과간을 포함한다) 골절<br>2. 경골 간부 골절, 관절면 침범이 없는 경골 과부골절<br>3. 거골 경부 골절<br>4. 슬개인대 파열<br>5. 견갑 관절부위의 회선근개 골절<br>6. 상박골 외측상과 전위 골절<br>7. 주관절부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br>8. 화상, 좌창, 괴사창 등으로 연부조직의 손상이 체표의 약 4.5퍼센트 이상인 상해<br>9. 안구 파열로 적출술이 불가피한 상해 또는 개방성공막열창으로 안구 적출술, 각막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br>10. 대퇴 사두근, 이두근 파열로 관혈적 수술을 시행한 상해<br>11. 슬관절부의 내·외측부 인대, 전·후십자 인대, 내·외측반 월상 연골 완전 파열(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

| | | |
|---|---|---|
| | | 12.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소아의 경·비골 아래 3분의 1 이상의 분쇄성 골절<br>13. 그 밖의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5급 | 900만원 | 1. 골반골의 중복 골절(말가이그니씨 골절 등을 포함한다)<br>2. 족관절부의 내외과 골절이 동반된 상해<br>3. 족종골 골절<br>4. 상박골 간부 골절<br>5. 요골 원위부(Colles, Smith, 수근 관절면, 요골원위 골단 골절을 포함한다) 골절<br>6. 척골 근위부 골절<br>7. 다발성 늑골 골절로 혈흉, 기흉이 동반된 상해 또는 단순 늑골 골절과 혈흉, 기흉이 동반되어 흉관삽관술을 시행한 상해<br>8. 족배부 근건 파열창<br>9. 수장부 근건 파열창(상완심부 열창으로 삼각근, 이두근 근건 파열을 포함한다)<br>10. 아킬레스건 파열<br>11. 소아의 상박골 간부 골절(분쇄골절을 포함한다)로 수술한 상해<br>12. 결막, 공막, 망막 등의 자체 파열로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br>13. 거골 골절(경부는 제외한다)<br>14.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소아의 경·비골 아래의3분의 1 이상의 분쇄골절<br>15.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소아의 경골 분쇄 골절<br>16. 23치 이상의 치아보철이 필요한 상해<br>17. 그 밖의 5급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6급 | 700만원 | 1. 소아의 하지 장관골 골절(분쇄 골절 또는 성장판 손상을 포함한다)<br>2. 대퇴골 대전자부 절편 골절 |

| | | |
|---|---|---|
| | | 3. 대퇴골 소전자부 절편 골절<br>4. 다발성 발바닥뼈(중족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골절<br>5. 치골·좌골·장골·천골의 단일 골절 또는 미골 골절로 수술한 상해<br>6. 치골 상·하지 골절 또는 양측 치골 골절<br>7. 단순 손목뼈 골절<br>8. 요골 간부 골절(원위부 골절은 제외한다)<br>9. 척골 간부 골절(근위부 골절은 제외한다)<br>10. 척골 주두부 골절<br>11. 다발성 손바닥뼈(중수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골절<br>12. 머리뼈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미한 상해<br>13. 외상성 경막하 수종, 수활액 낭종,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수술하지 아니한 상해(천공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br>14. 늑골 골절이 없이 혈흉 또는 기흉이 동반되어 흉관 삽관술을 시행한 상해<br>15. 상박골 대결절 견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br>16. 대퇴골 또는 대퇴골 과부 견연 골절<br>17. 19치 이상 22치 이하의 치아보철이 필요한 상태<br>18. 그 밖의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7급 | 500만원 | 1. 소아의 상지 장관골 골절<br>2. 족과절 내과골 또는 외과골 골절<br>3. 상박골 상과부굴곡 골절<br>4. 고관절 탈구<br>5. 견갑 관절 탈구<br>6. 견봉쇄골간 관절 탈구, 관절낭 또는 견봉쇄골간 인대 파열<br>7. 족관절 탈구 |

| | | |
|---|---|---|
| | | 8. 천장관절 이개 또는 치골 결합부 이개<br>9. 다발성 얼굴 머리뼈 골절 또는 신경손상과 동반된 얼굴 머리뼈 골절<br>10. 16치 이상 18치 이하의 치아보철이 필요한 상태<br>11. 그 밖의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8급 | 300만원 | 1. 상박골 절과부 신전 골절 또는 상박골 대결절 견연 골절로 수술하지 아니한 상해<br>2. 쇄골 골절<br>3. 주관절 탈구<br>4. 견갑골(견갑골극 또는 체부, 흉곽내 탈구, 경부, 과부, 견봉돌기, 오훼돌기를 포함한다) 골절<br>5. 견봉쇄골 인대 또는 오구쇄골 인대 완전 파열<br>6. 주관절내 상박골 소두 골절<br>7. 비골(다리) 골절, 비골 근위부 골절(신경손상 또는 관절 면침범을 포함한다)<br>8. 발가락뼈(족지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br>9. 다발성 늑골 골절<br>10. 뇌좌상(미만성 뇌축삭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미한 상해<br>11. 안면부 열창, 두개부 타박 등에 의한 뇌손상이 없는 뇌신경 손상<br>12. 상악골, 하악골, 치조골, 얼굴 머리뼈 골절<br>13. 안구적출술없이 시신경의 손상으로 실명된 상해<br>14. 족부 인대 파열(부분 파열은 제외한다)<br>15. 3치 이상 15치 이하의 치아보철이 필요한 상해 |

| | | |
|---|---|---|
| | | 16. 그 밖의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9급 | 240만원 | 1. 척주골의 극상돌기, 횡돌기 골절 또는 하관절 돌기 골절(다발성 골절을 포함한다)<br>2. 요골 골두골 골절<br>3. 완관절내 월상골 전방 탈구 등 손목뼈 탈구<br>4. 손가락뼈(수지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br>5. 손바닥뼈 골절<br>6. 수근 골절(주상골은 제외한다)<br>7. 발목뼈(족근골을 말한다) 골절(거골·종골은 제외한다)<br>8. 발바닥뼈 골절<br>9. 족관절부 염좌, 경·비골 이개, 족부 인대 또는 아킬레스건의 부분파열<br>10. 늑골, 흉골, 늑연골 골절 또는 단순 늑골 골절과 혈흉, 기흉이 동반되어 수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br>11. 척주체간 관절부 염좌로서 그 부근의 연부조직(인대·근육 등) 손상이 동반된 상해<br>12. 척수 손상으로 마비증상 없고 수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br>13. 완관절 탈구(요골, 손목뼈 관절 탈구 또는 수근간 관절탈구, 하요척골 관절 탈구를 포함한다)<br>14. 미골 골절로 수술하지 아니한 상해<br>15. 슬관절부 인대의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br>16. 11치 이상 12치 이하의 치아보철이 필요한 상해<br>17. 그 밖의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10급 | 200만원 | 1. 외상성 슬관절내 혈종(활액막염을 포함한다)<br>2. 손바닥뼈 지골간 관절 탈구<br>3. 손목뼈 손바닥뼈간 관절 탈구 |

| | | |
|---|---|---|
| | | 4. 상지부 각 관절부(견관절, 주관절, 완관절) 염좌<br>5. 척골·요골 경상돌기 골절, 제불완전골절[비골(코) 골절·수지 골절 및 발가락뼈 골절은 제외한다]<br>6. 수지 신전근건 파열<br>7. 9치 이상 10치 이하의 치아보철이 필요한 상해<br>8. 그 밖의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11급 | 160만원 | 1. 발가락뼈 관절 탈구 및 염좌<br>2. 수지 골절·탈구 및 염좌<br>3. 비골(코) 골절<br>4. 손가락뼈 골절<br>5. 발가락뼈 골절<br>6. 뇌진탕<br>7. 고막 파열<br>8. 6치 이상 8치 이하의 치아보철이 필요한 상해<br>9. 그 밖의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12급 | 120만원 | 1. 8일부터 14일간(8일 이상 14일 이하)의 입원이 필요한 상해<br>2. 15일부터 26일간의 통원이 필요한 상해<br>3. 4치 이상 5치 이하의 치아보철이 필요한 상해 |
| 13급 | 80만원 | 1. 4일부터 7일간의 입원이 필요한 상해<br>2. 8일부터 14일간의 통원이 필요한 상해<br>3. 2치 이상 3치 이하의 치아보철이 필요한 상해 |
| 14급 | 50만원 | 1. 3일 이하의 입원이 필요한 상해<br>2. 7일 이하의 통원이 필요한 상해<br>3. 1치 이하의 치아보철이 필요한 상해 |

[비고]

1.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개방성 골절은 해당 등급보다 한 등급 높게 배상한다.

2.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단순성 선상 골절로 인한 골편의 전위가 없는 골절은 해당 등급보다 한 등급 낮게 배상한다.
3.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두 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로부터 하위 3등급(예: 상해 내용이 주로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급까지) 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 한정하여 가장 높은 상해 내용의 등급보다 한 등급 높게 배상한다.
4. 일반 외상과 치아보철이 필요한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1급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각 상해 등급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산액을 배상한다.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3. 4. 18.>

후유장해 구분 및 보험금액(제13조제2항제3호관련)

| 등급 | 보험금액 | 신 체 장 해 |
|---|---|---|
| 1급 | 1억5천만원 |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br>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br>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br>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br>5. 반신마비가 된 사람<br>6.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br>7.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br>8.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br>9.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 2급 | 1억3,500만원 |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br>2.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된 사람<br>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br>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br>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br>6.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
| 3급 | 1억2천만원 |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자<br>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br>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br>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br>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 4급 | 1억500만원 | 1. 두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br>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br>3. 고막의 전부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br>4.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 | | |
|---|---|---|
| | | 5.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br>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br>7. 두 발을 족근중족 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 5급 | 9천만원 |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br>2. 한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br>3.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br>4. 한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br>5. 한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br>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br>7.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br>8.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 6급 | 7,500만원 | 1. 두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br>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br>3. 고막의 대부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모두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br>4.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br>5. 척주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br>6. 한 팔의 3대 관절중 2개 관절이 못쓰게 된 사람<br>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2개 관절이 못쓰게 된 사람<br>8.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 7급 | 6천만원 |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br>2.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br>3.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br>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

| | | |
|---|---|---|
| | | 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br>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br>7.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br>8. 한 발을 족근중족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br>9.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br>10.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br>11.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br>12.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br>13.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
| 8급 | 4,500만원 | 1. 한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br>2. 척주에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br>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을 잃은 사람<br>4.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br>5. 한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br>6. 한 팔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이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br>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이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br>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br>9.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br>10.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br>11. 비장 또는 한 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
| 9급 | 3,800만원 |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6 이하로 된 사람<br>2. 한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br>3. 두 눈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br>4.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br>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br>6.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br>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br>8.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는 큰 말소 |

| | | |
|---|---|---|
| | | 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br>9.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br>10.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br>1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br>12.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br>13.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br>14.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br>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br>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
| 10급 | 2,700만원 | 1. 한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br>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br>3. 14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br>4.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br>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는 데 지장이 있는 사람<br>6.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br>7.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br>8. 한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br>9.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br>10. 한 팔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br>11.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

| | | |
|---|---|---|
| 11급 | 2,300만원 | 1. 두 눈이 모두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또는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br>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br>3. 한 눈의 눈꺼풀에 결손이 남은 사람<br>4. 한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br>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br>6. 척주에 기형이 남은 사람<br>7.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br>8.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br>9.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br>10.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br>11. 10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
| 12급 | 1,900만원 | 1. 한 눈의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거나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br>2.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br>3. 7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br>4.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되 사람<br>5.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br>6. 한 팔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br>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br>8.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br>9.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br>10.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사람,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br>11.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 | |
|---|---|---|
| | | 12. 국부에 뚜렷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br>13.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br>14. 삭제 <2008.1.28> |
| 13급 | 1,500만원 | 1. 한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br>2. 한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br>3.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br>4. 5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br>5.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br>6.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br>7.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br>8.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끝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br>9. 한 다리가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br>10.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br>11.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14급 | 1천만원 | 1. 한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있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br>2. 3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br>3. 한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br>4. 팔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br>5. 다리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br>6.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br>7.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손가락의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br>8.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손가락의 끝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br>9.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br>10.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br>11. 삭제 <2008.1.28> |

[비 고]

1. 신체장해가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보다 한 등급 높게 배상한다.
2. 시력의 측정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시력표에 의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3. "손가락을 잃은 것"이란 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그 밖의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지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4.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손가락의 말단의 2분의 1 이상을 잃거나 중수지 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5. "발가락을 잃은 것"이란 발가락의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한다.
6.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엄지발가락에 있어서는 끝관절의 2분의 1이상을, 그 밖의 발가락에 있어서는 끝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 또는 중족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발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7. "흉터가 남은 것"이란 성형수술을 하였어도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흔적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8.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배뇨 등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9.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배뇨 등은 가능하나, 그 외의 일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10. "항상보호 또는 수시보호를 받아야 하는 기간"은 의사가 판정하는 노동능력 상실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한다.
11.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3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고,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2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며, "장해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14.7.21>

## 수련지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범위 및 면적(제29조제1항 관련)

1. 시설의 종류

| 시 설 종 류 | 내 용 |
|---|---|
| 가. 수련시설 | 법 제10조제1호다목 및 바목에 따른 청소년수련원 및 유스호스텔 각각 1개소 이상 |
| 나. 체육시설 | 실내체육시설 1개소 이상 및 실외체육시설 3개소 이상 |
| 다. 문화시설 |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중 1개소 이상 |
| 라. 자연탐구시설 또는 환경학습시설 | 자연학습원, 환경학습장, 동·식물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중 1개소 이상 |
| 마. 모험활동시설 | 수상·해양·항공 또는 산악 훈련장, 극기훈련장, 모험활동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모험활동 시설 중 1개소 이상 |
| 바. 녹 지 | 수련지구 지정면적의 10퍼센트 이상 |

2. 범위 및 면적

가. 제1호에 따른 시설의 면적은 해당 수련지구 내 전체 시설면적 중 도로·광장 등 공용시설을 제외한 시설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나. 제1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에 드는 투자비는 해당 수련지구의 조성에 드는 전체 투자비 중 도로·광장·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에 투자되는 비용을 제외한 투자비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3. 4. 25.>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4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과태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사회적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가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2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청소년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가. 법 제6조의8을 위반하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 법 제72조제1항제1호 | 300만원 |
| 나. 법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 | 법 제72조제 | 200만원 |

| | | |
|---|---|---|
| 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 2항제1호 | |
| 다. 법 제9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수련활동의 모집을 한 경우 | 법 제72조제2항제2호 | 200만원 |
| 라. 법 제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의료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제2항제3호 | 200만원 |
| 마. 법 제9조의5를 위반하여 표시 또는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제2항제4호 | 200만원 |
| 바. 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않고 수련시설을 운영한 경우 | 법 제72조제2항제5호 | 200만원 |
| 사.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영대표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법 제72조제2항제6호 | 200만원 |
| 아. 법 제18조의2를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제2항제7호 | 200만원 |
| 자. 법 제18조의3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의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제2항제7호의2 | 200만원 |
| 차. 법 제19조의2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의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제2항제7호의3 | 200만원 |
| 카. 법 제2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72조제2항제8호 | 200만원 |
| 타. 법 제21조를 위반하여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br>1) 법 제21조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청소년의 수련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br>2) 법 제21조제2호를 위반하여 청소년활동이 아닌 용도에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행위. 다만, 제12조에 따른 용도에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br>3) 법 제21조제3호를 위반하여 청소년단체가 아닌 자에게 수련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게 하는 행위 | 법 제72조제2항제9호 | 200만원 |
| 파. 법 제25조를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br>1)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br>2)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초과 30일 이하인 경우<br>3)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60일 이하인 경우 | 법 제72조제2항제10호 | <br>10만원<br>10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br>3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 |

| | | |
|---|---|---|
| 4)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 | 마다 3만원을 더한 금액<br>120만원에 6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6만원을 더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 하.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수련시설을 휴지, 재개 또는 폐지한 경우 | 법 제72조제2항제11호 | 200만원 |
| 거. 법 제38조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수련활동이나 청소년수련활동의 인증 등 인증을 받았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 법 제72조제2항제12호 | 100만원 |
| 너.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72조제1항제2호 | 300만원 |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6. 3. 24.] [성평등가족부령 제6호, 2026. 3. 24., 타법개정]

성평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02 - 2100 - 6252
성평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 02 - 2100 - 6262,626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 7. 21.]

**제1조의2(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등)** ①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 법 ” 이라 한다)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및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이하 “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 이라 한다) 계획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참가자 모집 14일 전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을 신고하려는 자는 제2호의 주최자ㆍ운영자ㆍ보조자의 변동이 없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프로그램이 반복될 경우에는 4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간의 최초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의 참가자 모집 14일 전까지 한꺼번에 신고(이하 이 조에서 “ 일괄신고 ” 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23. 6. 30., 2025. 6. 9.>

1. 별표 1의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기준을 준수한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청소년수련활동 운영계획서(법 제3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별지 제2호서식의 주최자ㆍ운영자ㆍ보조자 명단
3. 삭제<2025. 6. 9.>
4. 법 제25조에 따른 보험가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증명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일괄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는 기간 동안 신고한 내용과 실제 운영되는 활동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신설 2023. 6. 30.>

④ 제1항에 따라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을 신고한 자는 신고한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서에 변경 사유, 신고번호가 기재된 변경 내용 및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소년수련활동 시작 3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중에 신고한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3. 6. 30., 2025. 6. 9.>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 중 운영자 또는 보조자의 변경을 신고 받은 경우에는 해당 운영자 또는 보조자가 법 제9조의2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신설 2023. 6. 30.>

[전문개정 2014. 7. 21.]

**제1조의3(건강상태 확인 방법)** ① 제1조의2에 따라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을 신고한 자는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해당 청소년수련활동에 참가하려는 청소년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프로그램 활동을 시작하기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어느 하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30.>

1.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검진기관에서 발행한 건강진단서
2. 별지 제6호서식의 건강상태 확인서(개인)
3.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건강상태 확인서(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는 활동 종료일부터 4주간 보관할 수 있으며, 보관 기간이 지난 후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에 따라 파기해야 한다.<신설 2023. 6. 30.>

[전문개정 2014. 7. 21.]

**제1조의4(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정보의 공개)**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또는 계획변경의 신고를 수리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의 내용을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9., 2025. 10. 1.>

[전문개정 2014. 7. 21.]

**제1조의5(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관련 정보의 표시ㆍ고지 방법 등)**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또는 계획변경의 신고가 수리된 자는 법 제9조의5에 따라 모집활동 및 계약을 하는 경우 인쇄물,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 참가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ㆍ고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가자 등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1. 법 제18조의3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안전점검의 실시일자, 실시기관 및 안전점검의 내용 등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2. 법 제25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상품명, 보험금액, 보험가입기간 등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
3. 법 제3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인 경우 인증번호 및 인증유효기간 등 청소년수련활동의 인증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4. 7. 21.]

**제2조(청소년수련시설 설치ㆍ운영의 허가서류 등)** ①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의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21.>

1. 별표 2에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설치ㆍ운영계획서
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만 해당된다)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처리기간 만료 7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4. 7. 21.]

**제3조** 삭제 <2016. 12. 27.>

**제4조(조건부허가)** 법 제12조제2항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수련시설의 시설기준 중 시설ㆍ설비의 면적이나 수량 등이 일부 미달된 경우로서 수련시설의 등록 전까지 보완이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 12. 27., 2025. 10. 1.>

[전문개정 2014. 7. 21.]

**제5조(등록신청서류 등)** ①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등록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르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7호의 서류는 제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와 그 내용이 같은 경우에는 이를 생략한다. <개정 2020. 6. 12., 2024. 11. 21.>

1. 별지 제9호서식의 청소년수련시설 시설별일람표
2. 운영계획서
3.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4. 청소년지도사 명단 및 자격증 사본
5. 해당 수련시설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았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허가서 등의 사본
6.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7.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8.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운영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9.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5항 전단에 따른 완성검사증명서(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0. 6. 12.>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10항제1호에 따른 완성검사 증명서(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청소년수련시설 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등록증 및 청소년수련시설등록대장은 각각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 7. 21.]

**제5조의2(수련시설의 중요 사항 변경 등록)** 법 제13조제1항 후단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 11. 8., 2025. 10. 1.>

1. 운영대표자의 변경
2. 수련시설 종류의 변경
3. 법 제26조에 따른 수련시설의 승계에 따른 설치ㆍ운영자의 변경
4. 부지면적의 변경
5. 건축연면적의 변경
6. 수련시설 명칭의 변경
7. 이용 정원의 변경
8. 별표 3 제1호나목에 따른 단위시설의 설치ㆍ이전ㆍ철거 또는 면적의 변경

[본조신설 2014. 7. 21.]

**제6조(등록증의 재교부신청)**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증재교부 신청서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7. 21.]

**제7조(수련시설 운영대표자의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개정 2008. 1. 28., 2025. 6. 9.>

1. 수련시설에서 청소년지도업무에 종사한 경력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이하 "청소년단체"라 한다)에서 청소년지도ㆍ연구업무에 종사한 경력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육성관련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에서 청소년단체의 활동 지도교사로 종사한 경력

[제목개정 2008. 1. 28.]

**제8조(수련시설의 시설기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수련시설의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14. 7. 21.]

**제8조의2(수련시설의 안전점검)**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수련시설 안전점검의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4에 따른다. <개정 2013. 11. 19.>

[본조신설 2008. 1. 28.]

**제8조의3(안전교육)** 법 제18조의2에 따라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 또는 위탁운영단체는 수련시설의 이용자 및 청소년수련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수련시설 이용 시 유의사항 및 비상시 행동요령에 관한 사항
2. 청소년수련활동 유형별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3. 성폭력ㆍ성희롱 예방 및 대처요령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해당 수련시설의 이용 및 청소년수련활동에 필요한 안전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4. 7. 21.]

**제8조의4(안전교육의 내용ㆍ방법 등)** ①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수련활동 및 수련시설의 안전관련 법령
2. 청소년수련활동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3. 수련시설의 안전점검 및 위생관리
4. 그 밖에 수련시설 종사자 등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안전교육은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이러닝(이하 "이러닝"이라 한다), 집합교육 또는 이러닝과 집합교육을 혼합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안전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본조신설 2016. 9. 2.]

**제9조(수련시설의 운영기준)**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수련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전문개정 2014. 7. 21.]

**제9조의2(수련시설의 종합평가 방법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수련시설에 대한 종합평가를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는 수련시설의 관리ㆍ운영,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의 내용ㆍ전문성, 시설ㆍ설비 및 안전관리 등을 평가기준으로 하여 서면, 전산입력 등의 방법으로 평가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평가를 할 수 있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를 교육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련시설의 종합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14. 7. 21.]

**제9조의3(운영 중지 명령의 행정처분 기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본조신설 2014. 7. 21.]

**제10조(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 후 조치)**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수련시설의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수련시설 허가ㆍ등록 취소처분 기록대장에 그 처분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22조에 따라 수련시설의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처분내용을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4. 7. 21.]

**제11조(수련시설 승계)** 법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수련시설의 주요 부분”이란 수련시설의 토지 및 건물을 말한다. <개정 2025. 10. 1.>

[전문개정 2014. 7. 21.]

**제12조(수련시설의 휴지ㆍ재개ㆍ폐지신고)** ① 법 제27조에 따라 수련시설을 휴지(休止), 재개(再開) 또는 폐지(閉止)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청소년수련시설 휴지ㆍ재개ㆍ폐지신고서에 청소년수련시설등록증을 첨부하여 휴지ㆍ재개ㆍ폐지 예정일 7일 전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8.>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련시설의 휴지ㆍ재개ㆍ폐지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고인 및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 통지하여야 하며, 등록대장에 휴지ㆍ재개ㆍ폐지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7. 21.]

**제13조(수련시설의 이용범위)** ① 법 제31조제2항제5호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란 청소년 외의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수련시설을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11. 20., 2025. 10. 1.>

1. 당일에 한하는 일시적인 집회에의 사용
2.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에서 생활관 또는 숙박실 외의 부대ㆍ편익시설 등의 사용
3.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및 청소년특화시설에서 청소년의 이용이 적은 시간대의 사용

② 법 제31조제3항에서 “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이용 범위 ”란 해당 수련시설을 이용한 청소년 외의 연간이용자 수가 그 수련시설 연간이용가능인원 수의 100분의 40 이내인 범위를 말하되, 가족이 청소년과 함께 수련시설을 이용한 경우 그 가족은 청소년 외의 연간이용자 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전년도의 외국인 이용자가 연간 5만명 이상인 유스호스텔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이내인 범위를 말한다.<개정 2020. 11. 20., 2025. 10. 1.>

[전문개정 2014. 7. 21.]

**제14조(청소년이용권장시설의 지정)** ① 영 제17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이용권장시설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청소년이용권장시설 지정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이용권장시설 지정신청을 한 시설부터 반경(半徑) 50미터 이내에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 또는 그 밖에 청소년의 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시설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이용권장시설의 지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청소년이용권장시설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7. 21.]

**제14조의2(수련시설 현황 등의 통보 등)** ① 법 제33조의2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기별로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9.>

1.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수련시설의 현황
2. 수련시설의 허가ㆍ변경허가 및 허가취소에 관한 사항
3. 수련시설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항
4. 별지 제16호서식의 청소년시설 운영현황
5. 수련시설의 휴지ㆍ재개ㆍ폐지신고에 관한 사항
6. 청소년이용권장시설 지정에 관한 사항
7. 수련지구의 지정 및 수련지구조성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8.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현황
9. 수련시설의 안전점검 결과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매년 1월 31일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5. 6. 9., 2025.

10. 1.>
[전문개정 2014. 7. 21.]
[제목개정 2025. 6. 9.]

**제15조(인증심사원의 자격 및 선발 등)**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이하 “ 인증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이하 “ 인증심사원 ”이라 한다)을 선발한다.
1. 1급 또는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소지자
2. 청소년활동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② 인증심사원이 되려는 사람은 인증위원회에서 실시하는 면접 등 절차를 거쳐 선발한다.
③ 인증심사원이 되려는 사람은 인증기준, 인증절차 등 인증심사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인증위원회가 실시하는 직무연수를 40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④ 인증심사원은 2년마다 2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를 이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7. 21.]

**제15조의2(인증을 받아야 하는 청소년수련활동)** 법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참가인원이 150명 이상인 청소년수련활동
2. 별표 7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
[본조신설 2014. 7. 21.]
[종전 제15조의2는 제15조의5로 이동 <2014. 7. 21.>]

**제15조의3(인증을 받아야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의 예외)** 법 제36조제2항제7호에서 “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단체 ”란 청소년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 6. 9., 2025. 10. 1.>
[본조신설 2014. 7. 21.]
[종전 제15조의3은 제15조의6으로 이동 <2014. 7. 21.>]

**제15조의4(전문인력 요건)** ① 법 제3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6. 9.>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교육 수료자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2.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7조제4호에 따라 대한적십자사가 수행하는 응급구호사업 전문종사자 및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6조의3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4. 「수상레저안전법」 제4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5. 그 밖에 인증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응급처치 또는 청소년수련활동의 안전에 필요한 전문자격이나 전문자격에 관한 분야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본조신설 2014. 7. 21.]
[종전 제15조의4는 제15조의7로 이동 <2014. 7. 21.>]

**제15조의5(인증수련활동의 사후관리)** ①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수련활동의 유효기간은 인증받은 날부터 4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인증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인증위원회에서 정하는 유효기간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증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인증위원회는 인증수련활동에 대하여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행확인의 절차에 대하여는 인증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④ 법 제36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대하여 시정을 한 자는 그 결과를 인증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정요구 및 시정결과의 제출에 필요한 절차는 인증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7. 21.]
[제15조의2에서 이동 <2014. 7. 21.>]

**제15조의6(인증의 취소 등에 대한 의견제출)** ① 법 제36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라 인증위원회가 인증을 취소하거나 정지하려는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인증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 대상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자는 인증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7. 21.]
[제15조의3에서 이동 <2014. 7. 21.>]

**제15조의7(인증의 취소 등 행정처분)** ① 인증위원회는 법 제3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법 제36조의3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전문개정 2014. 7. 21.]
[제15조의4에서 이동 <2014. 7. 21.>]

**제15조의8(위탁 제한 중요 프로그램의 범위)** 법 제39조제2항에서 “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프로그램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 10. 1.>
1. 청소년수련활동의 명칭 및 구성 내용 등으로 볼 때 해당 활동을 대표하거나 활동의 주제가 되는 프로그램
2. 운영 시간이 전체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 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프로그램(위탁하려는 프로그램이 둘 이상인 경우 각 프로그램 운영 시간을 모두 합한 시간이 전체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 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그 프로그램 모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4. 7. 21.]

**제16조(청소년수련지구 내 시설)** ① 영 제29조제2항제6호 단서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청소년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 10. 1.>

② 영 제29조제2항제7호 단서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이하 “수련지구”라 한다)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등의 처리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5. 10. 1.>

[전문개정 2014. 7. 21.]

**제17조(법인ㆍ단체의 조성계획 승인신청)** 영 제30조제2항에 따라 수련지구조성계획승인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수련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수련지구 조성의 기본계획
3.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종류에 따라 구분된 토지이용계획
4. 조감도
5. 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자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이 표시된 토지조서
6. 자금조달계획
7. 환경오염의 예방 및 저감대책
8.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계획
   가. 시설물배치계획(축척 6백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의 지적도에 시설물의 수량, 건축 연면적 및 건축물의 층수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나. 조경계획(식재계획ㆍ조경시설 및 조경구조물 설치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9.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
   가. 시설물관리계획
   나. 수련지구 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10. 수련지구조성계획 시행일정
11.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전문개정 2014. 7. 21.]

**제18조** 삭제 <2008. 1. 28.>

**제19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 7. 21.]

**제20조(수수료)** ① 법 제68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9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중 수련지구 조성계획 승인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7. 21.]

**제21조(규제의 재검토)** ①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12., 2025. 10. 1.>
1. 제8조 및 별표 3에 따른 수련시설의 시설기준: 2014년 1월 1일
2. 삭제<2026. 3. 24.>
3. 제15조의2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의 종류: 2014년 7월 22일
② 삭제<2025. 6. 9.>
[전문개정 2014. 7. 21.]

**제22조** 삭제 <2008. 9. 29.>

**부칙** <제110호,2005. 3.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2호,2008. 1. 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련시설의 시설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등록된 수련시설에 체육활동장으로 설치된 시설 중 골프연습장, 등록을 신청한 수련시설의 체육활동장 시설 중에 포함되어 있는 골프연습장에 대하여는 별표 2제1호나목(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호,2008. 3. 3.>(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6> 까지 생략
<87>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본문, 제11조, 제13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총리령 ” 을 각각 “ 보건복지가족부령 ” 으로 한다.
제14조의2제2항 중 “ 국가청소년위원장 ” 을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 총리령 ” 을 각각 “ 보건복지가족부령 ” 으로 한다.

별표 3 제3호사목, 별지 제10호서식 중 “ 문화관광부장관 ”을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으로 한다.

<88> 부터 <94> 까지 생략

**부칙** <제66호,2008. 9.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호,2009. 2.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호,2009. 7. 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항,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청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호,2010. 3. 19.>(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본문, 제11조, 제13조제1항 본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6조제1항、제2항 중 “ 보건복지가족부령 ”을 각각 “ 여성가족부령 ”으로 한다.

제14조의2제2항, 별표 3 제3호사목 및 별지 제10호서식 중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을 각각 “ 여성가족부장관 ”으로 한다.

⑮ 생략

**부칙** <제34호,2012. 9. 14.>(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을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으로 한다.

**부칙** <제43호,2013. 11. 19.>

이 규칙은 2013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호,2013. 12. 31.>(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호,2014. 7. 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신청서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신청을 한 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청소년수련활동 인증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위원회에 인증을 요청한 청소년수련활동의 경우에는 제15조의5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61호,2014. 12. 12.>(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호,2015. 10. 22.>(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호,2016. 9. 2.>

이 규칙은 2016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호,2016. 12. 27.>(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7호,2018. 8.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5호,2018. 12. 21.>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3호,2019. 8. 28.>(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여성가족부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151호,2020. 6.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서류 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련시설의 등록 신청이 행해진 경우 해당 등록 신청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서류 확인에 관하여는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56호,2020. 11.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련시설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13조에 따라 수련시설로 등록한 자(생활관 또는 유스호스텔의 숙박실만 해당한다)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3 제1호나목 표의 8)사)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부칙** <제170호,2021. 11. 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련시설의 변경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이 규칙 제5조에 따라 수련시설을 등록한 자 중 제5조의2조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개정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변경한 자는 이 규칙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관할 행정청에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부칙** <제191호,2023. 6.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0호,2024. 11.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0호,2025. 6.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계획 신고 또는 계획 변경의 신고를 한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에 관해서는 제1조의2,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의 정보공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계획 신고 또는 계획 변경의 신고를 한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의 정보공개에 관해서는 제1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호,2025. 10. 1.>(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1( 까지 생략

2)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4, 제9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4조의2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5 제3호사목 중 “ 여성가족부장관 ”을 각각 “ 성평등가족부장관 ”으로 한다.

제4조, 제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5조의3, 제15조의8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6조제1항ㆍ제2항 중 “ 여성가족부령 ”을 각각 “ 성평등가족부령 ”으로 한다.

제9조의2제3항 중 “ 여성가족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를 “ 성평등가족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로 한다.

2! 및2@ 생략

**부칙** <제6호,2026. 3. 24.>(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 편의 개선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성평등가족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4.7.21>

##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기준(제1조의2제1항제1호 관련)

1. 안전 확보

가.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프로그램에 참가하려는 청소년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프로그램 지도자는 항상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나. 안전사고·응급환자 발생 등에 대비하여 긴급 후송대책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참가자(지도 인력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사항을 확인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2. 프로그램 운영

가. 프로그램 진행에 적절한 인력, 기자재 및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나. 충분한 휴식 및 영양공급, 안전한 취침을 위한 공간·장비 확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프로그램을 실시할 때에는 청소년 개인의 정신적·신체적 능력을 고려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프로그램에 강제로 참여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라. 프로그램을 실시할 때에는 청소년에게 음주·흡연행위를 금지하여야 하고, 지도 인력도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마. 청소년에게 정신적·신체적 폭행이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바. 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련하여 정당한 경비 외의 부당한 수수료 또는 금품을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

사.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관계법령에 따라 신고·등록·허가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해당 신고·등록·허가를 거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아. 프로그램 일정, 참가비, 지도자 자격 및 경력, 인증수련활동 여부, 가입보험 종류 및 약관, 사목에 따른 신고·등록·허가 여부, 안전관리 대책 등의 정보를 주최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사전에 공개하여야 한다.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5. 6. 9.>

## 수련시설 설치·운영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제2조제1항제1호 관련)

1. 설치계획
   가. 설치장소
   나. 토지이용계획
   다. 설치예정지역의 위치도
   라. 토지명세서(지번별로 지목·면적·소유주·용도지역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마. 시설배치계획도(지적도면상에 표시하여야 한다)
   바. 시설별·층별 평면도 및 실별 면적일람표
   사. 주요기기 및 기구 배치계획
   아. 자금조달계획서(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자. 공사추진일정표
   차. 환경오염의 예방 및 저감대책 등(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에 한정한다)
   ※ 설치하려는 시설이 청소년문화의 집인 경우에는 나목, 라목 및 마목을 생략할 수 있다.
2. 운영계획
   가. 주요 수련거리 운영계획(시설·설비의 설치계획과 연계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나. 청소년지도사 배치계획
   다. 시설물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라. 운영규칙
   마. 연간 운영예산 및 운영비 조달방안
   바. 비상시의 대피계획(「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1. 11. 8.>

## 수련시설의 시설기준(제8조 관련)

1. 공통기준

가. 일반기준

| 구 분 | 기 준 |
|---|---|
| 1) 입지 |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함양에 적합한 장소로서 수련시설은 다음의 입지조건을 갖추어야 한다.<br>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특화시설: 일상생활권, 도심지 근교 및 그 밖의 지역 중 청소년수련활동 실시에 적합한 곳으로서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지역이어야 한다.<br>나)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 국립·도립·군립공원, 그 밖의 지역 중 자연과 더불어 행하는 청소년수련활동 실시에 적합한 곳으로서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지역이어야 한다.<br>다) 유스호스텔: 명승고적지, 역사유적지 부근 및 그 밖의 지역 중 청소년이 여행활동 시 이용하기에 편리한 지역이어야 한다. |
| 2) 구조 | 가) 시설 및 기구·설비 등은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장애인을 위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br>나) 수용정원에 적합한 면적과 구조로 하여야 한다. |
| 3) 설치기준 | 가) 주변 환경을 자연친화적으로 보존·활용하여야 한다.<br>나) 시설의 종류별로 개별기준에 정한 시설·설비를 설치하되, 그 설치기준은 개별기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나. 단위시설·설비기준에 따른다.<br>다) 법 제33조제2항 각 호의 영업을 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해당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br>라) 폐교시설 등 기존시설을 활용한 수련시설의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 | |
|---|---|
| | 마)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청소년특화시설 및 유스호스텔은 전용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청소년수련활동과 연계할 수 있는 다음의 시설과는 복합시설로 설치할 수 있다.<br>(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3호의 문화시설<br>(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체육시설<br>(3)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 및 나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위한 근린생활시설 중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자에게만 음식을 제공하는 시설 |
| 4) 관리시설 | 관리실·사무실·안내시설 등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시설·설비를 수련시설의 종류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5) 기타시설 | 수련시설의 종류 및 기능의 범위에서 입지여건·특성·자연환경 등에 따라 해당 수련시설의 개별기준에서 정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종류의 수련시설의 개별기준에서 정한 시설·설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 6) 금지시설 | 동일 건물 또는 해당 시설에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가 있어서는 안 되며, 설치예정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에는 유흥주점 등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이 있어서는 안 된다. |

나. 단위시설·설비기준

※ 2. 개별기준에 따라 시설·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별기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다음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 구 분 | 기 준 |
|---|---|
| 1) 실내집회장 | 가) 강당·회의실 등으로서 개별기준에서 정한 집회장 수용인원이 150명 이하인 경우에는 150제곱미터, 15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1명마다 0.8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의 면적이어야 하며, 그 면적의 합계가 8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80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br>나) 둘 이상의 강의실 사이에 이동식 칸막이를 설치하여 이를 쉽게 강당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한 경우 이를 실내집회장으로 볼 수 있다(개별기준에서 실내집회장을 두도록 정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한다). |

| | |
|---|---|
| 2) 야외집회장 | 가) 무대, 확성설비 등 집회활동에 필요한 기구 ·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br>나) 해당 집회장에 수용할 인원이 150명 이하인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15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1명마다 0.7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의 면적이어야 하며, 그 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br>다) 운동장에 야외집회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구 · 설비를 갖춘 경우에는 이를 야외집회장으로 볼 수 있다. |
| 3) 체육활동장 | 가)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골프장업 · 골프연습장업 · 스키장업 · 자동차경주장업 ·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용 체육시설은 제외한다) 및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청소년의 체육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br>나) 체육활동장의 설치기준은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같은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종목별 경기단체가 정하는 시설관계 공인규정 등을 준용한다(관람석 등은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 4) 수련의 숲 | 가) 자연림 또는 인공적으로 조성한 숲지대로서 그 안에 야외탁자 · 장(長)의자 · 예술조형물 · 그늘집 등의 조경시설물과 휴게소 등을 설치하여 휴식 및 명상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br>나) 자연체험장을 숲지대에 설치한 경우로서 그 숲지대에 조경시설물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이를 수련의 숲으로 볼 수 있다. |
| 5) 특성화수련 활동장 | 가) 문화적 감성 함양 활동장<br>문화적 감성을 개발하고 정서를 순화하며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취미활동 등의 함양을 위한 활동에 필요한 활동장으로서 극장 · 공연장 · 음악감상실 · 전시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br>나) 과학 및 정보화능력 함양활동장<br>창조적 능력 · 탐구심 · 정보화능력 · 미래과학능력 등을 함양하기 위한 활동에 필요한 활동장으로서 컴퓨터실, 과학실습 · 자연관찰 · 천체관측시설, 요리실습시설, 어류 · 조수사육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br>다) 봉사와 협력정신 함양활동장 |

| | |
|---|---|
| | 인간존중의 정신 및 심성을 개발하고 정의감 · 상부상조정신 등을 배양하기 위한 활동에 필요한 활동장으로서 자원봉사정보 및 활용센터, 자원봉사체험 연계 네트워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br>라) 모험심과 개척정신 함양활동장<br>신체의 강건함 · 용기 · 인내심 · 탐험정신 · 도전의식 · 진취성 등을 키울 수 있는 활동에 필요한 활동장으로서 탐험시설, 수상 · 해양 · 항공훈련시설, 영농시설, 산악자전거장, 개척물설치훈련장, 암벽등반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br>마) 전문적 직업능력 함양활동장<br>직업 전문성, 현실적응능력 등을 배양하고 직업관 등을 확립하기 위한 활동에 필요한 활동장으로서 취업정보센터, 직업교육용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br>바) 국제감각 함양활동장<br>세계문화의 이해와 외국의 교류체험 및 한민족의 정체성 등을 고양하기 위한 활동에 필요한 활동장으로서 국제교류관(국제회의실 · 접견실 · 회의실 · 친선교류실 등), 학습 · 정보관(청소년교육정보센터 등), 어학실습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br>사) 그 밖의 특성화활동장<br>가)부터 바)까지에서 규정한 분야 외의 환경의식 함양 등 특성화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활동장을 말한다. |
| 6) 자치활동실 | 동아리활동 · 분임토의 등에 이용되는 시설로서 의자 · 탁자 등을 갖추어야 한다. |
| 7) 강의실 | 가) 1실당 면적은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br>나) 칠판 · 교탁 · 책상 · 걸상 등과 그 밖에 필요한 기구 ·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br>다) 책상면과 칠판면의 조도가 150럭스(lux) 이상이어야 한다. |
| 8) 생활관(유스호스텔의 숙박실을 포함한다) | 가) 숙박실은 숙박정원 1인당 2.4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중학생 또는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생활관 또는 숙박실의 전체 숙박정원의 100분의 10(중학생) 또는 100분의 20(초등학생)을 추가한 인원을 해당 수련시설의 숙박정원으로 할 수 있다. |

| | |
|---|---|
| | 나) 채광과 통풍이 양호하여야 하며, 지하실 등에 설치되어서는 안 된다.<br>다) 가족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둘 이상으로 구획된 침실과 거실, 주방 등을 갖춘 형식으로 할 수 있으며, 거실을 갖춘 경우에는 거실면적 중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면적을 숙박실의 면적으로 본다.<br>라) 생활관의 형태를 소규모로 분산 설치할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자용 숙박실을 청소년용 숙박실 근처에 배치하여야 한다.<br>마) 숙박실이 있는 층마다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샤워장·세면장을 설치하여야 한다(생활관을 소규모로 분산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거리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층의 숙박실 전체에 화장실 등이 설치된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br>바) 공동세탁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세면장·샤워장 등을 세탁실로도 사용할 수 있는 구조 및 면적으로 한 경우에는 세탁실을 별도로 갖추지 않을 수 있다.<br>사) 난방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개별 숙박실마다 난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숙박실 내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에 따라 제품검사를 받은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
| 9) 야영지 | 가) 야영정원 1인당 2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br>나) 자가취사장·화장실 및 세면장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야영지 주변에 그와 같은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br>다) 평지 또는 완경사 지역으로서 절벽·급류 등 위험한 장소의 인근에 설치되어서는 안 되며, 홍수의 범람·해일 등 재해의 우려가 없는 지역이어야 한다.<br>라) 배수가 잘 이루어져야 하며, 자연배수가 되지 않는 지반일 경우 배수로 또는 덮은 도랑 등을 설치하여 인공적으로 배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 10) 식당 | 매식을 하는 식당 또는 집단급식소로서 급식인원 1인당 1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이어야 하며, 급식인원에 알맞는 조리기구·배식설비·식탁·의자 등의 기구·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 11) 자가취사장 | 가) 배기가 잘 되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화재 등을 예방할 수 있 |

| | |
|---|---|
| | 도록 소화장비를 갖추어야 한다.<br>나) 급수 · 배수설비, 개수설비, 오물처리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br>다) 유스호스텔의 경우에는 취사설비(가스레인지 또는 전열취사기구 등과 조리대 및 개수대를 말한다)와 식탁 · 의자 및 개별 취사용구 · 부식 등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대를 구비하여야 한다.<br>라)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 12) 위생시설 | 가) 화장실은 수세식 또는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남녀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br>나) 취사 및 음용에 공급되는 물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 보건소에서 보건위생상 해가 없다고 증명한 것이어야 한다. |
| 13) 지도자실 | 청소년지도자들이 청소년수련활동 지도 등을 위한 준비실로 사용하는 실내공간으로 의자 · 탁자 등 필요한 기구 ·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 14) 상담실 | 가) 내부의 장식 · 설비 등은 안락함이 느껴지도록 설치하여야 한다.<br>나) 응접세트 또는 의자 · 탁자 등을 갖추어야 한다.<br>다) 다수의 상담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설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칸막이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 15) 양호실 | 가) 간단한 구급약품의 비치나 상병자에 대한 응급처치 등을 할 수 있도록 약품보관함 · 침대 · 침구 등을 갖추어야 한다.<br>나) 관리실 · 사무실 등에 병설하여 설치할 수 있다(개별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한다). |
| 16) 휴게실 | 가) 이용자들의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의자 및 탁자를 갖추어야 한다.<br>나) 공유면적에 의자 및 탁자를 배치하여 휴식장소로 이용할 경우에는 이를 휴게실로 볼 수 있다(개별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한다). |
| 17) 물품보관시설 | 물품보관시설을 설치하거나 물품보관함을 비치하여야 한다. |

| | |
|---|---|
| 18) 방송설비 | 해당 수련시설에서 안내방송 등을 할 수 있는 설비로서 주된 장치는 별도의 방송실에 설치하거나 관리실 등에 병설할 수 있다. |

2. 개별기준

가. 청소년수련관

| 구 분 | 기 준 |
|---|---|
| 1) 면적 | 연건축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 2) 실내집회장 | 1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
| 3) 체육활동장 |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상의 실내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 4) 자치활동실 |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 5) 특성화수련 활동장 | 2개 이상의 시설을 선택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 6) 상담실 |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 7) 휴게실 |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 8) 위생시설 | 수용정원에 적합한 화장실, 세면장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 9) 지도자실 |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 10) 기타설비 | 방송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 11) 수용정원 | 2)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시설(실내시설에 한정한다)을 일시에 사용할 수 있는 적정인원을 말한다. |

나. 청소년문화의 집

| 구 분 | 기 준 |
|---|---|
| 1) 활동시설 | 1. 공통기준 나목의 1) 및 5)부터 7)까지에 해당하는 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
| 2) 휴게시설 | 휴게실을 별도로 설치하거나 실내공간 또는 마당을 청소년의 휴식 및 대화장소로 제공할 수 있는 구조로 배치하여야 한다. |
| 3) 위생시설 | 수용정원에 적합한 화장실 · 세면장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 4) 기타시설 | 물품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 5) 수용정원 | 1)에 해당하는 시설(실내시설에 한정한다)을 일시에 사용할 수 있는 적정인원을 말한다. |

다. 청소년수련원

| 구 분 | 기 준 |
|---|---|
| 1) 생활관 | 가) 100명 이상이 숙박할 수 있어야 한다. |

| | |
|---|---|
| | 나) 각각의 숙박실은 10명 이하의 규모로 하여야 한다. |
| 2) 식당 | 생활관 숙박정원의 100분의 30 이상의 인원에게 일시에 급식할 수 있어야 한다. |
| 3) 실내집회장 | 생활관 숙박정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
| 4) 야외집회장 | 생활관 숙박정원의 100분의 60 이상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
| 5) 체육활동장 |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의 실내체육시설 또는 연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실외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 6) 수련의 숲 |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 7) 강의실 | 1실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 8) 특성화수련 활동장 | 1개 이상의 시설을 선택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 9) 지도자실 |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 10) 휴게실 |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 11) 비상설비 | 가) 비상조명설비 또는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br>나) 비상급수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 12) 기타시설 | 방송설비, 양호실, 물품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 13) 숙박정원 | 생활관에서 일시에 숙박할 수 있는 적정인원을 말한다. |

※ 비고

폐교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청소년수련원은 1)부터 3)까지 및 5)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기준규모 이하로 할 수 있으며, 6)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라. 청소년야영장

| 구 분 | 기 준 |
|---|---|
| 1) 야영지 | 100명 이상이 야영할 수 있어야 한다. |
| 2) 야외집회장 | 수용정원의 100분의 40 이상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
| 3) 대피시설 | 가) 폭우 · 폭설 등 급작스런 재해에 대비하여 대피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용도의 시설이 있어 이를 대피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대피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br>나) 대피시설의 구조는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 4) 체육활동장 |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실외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 5) 비상설비 | 가) 비상시 야영지에서 대피시설까지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

| | |
|---|---|
| | 비상조명설비 또는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br>나) 야영지에서 대피시설 또는 관리사무소에 연락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 |
| 6) 야영정원 | 야영지에서 일시에 야영할 수 있는 적정인원을 말한다. |

※ 비고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이 도시공원·자연공원 또는 관광지 등에 설치하는 청소년야영장으로서 관련법령에 따른 조성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 기준에 불구하고 그 계획에 따른다.

2) 생활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숙박정원을 100명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3) 폐교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청소년야영장은 1), 2) 및 4)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기준 규모 이하로 할 수 있다.

마. 청소년특화시설

| 구 분 | 기 준 |
|---|---|
| 1) 활동시설 | 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 환경 등의 특화된 분야의 활동을 행할 수 있는 전문 자료실, 동아리방, 연구실, 체험실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 2) 휴게실 |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 3) 지도자실 |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 4) 냉·난방시설 | 냉·난방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 5) 비상설비 | 가) 비상조명설비 또는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br>나) 비상급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 6) 기타시설 | 방송설비 및 물품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 7) 수용정원 | 활동시설(실내시설에 한정한다)에서 일시에 수용할 수 있는 적정인원을 말한다. |

바. 유스호스텔

| 구 분 | 기 준 |
|---|---|
| 1) 숙박실 | 가) 각각의 숙박실은 10명 이하의 규모로 하되, 2인실 이하의 숙박정원의 합계는 전체 숙박정원의 100분의 40을 초과할 수 없다.<br>나) 청소년을 동반한 가족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가족실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그 숙박정원의 합계는 전체 숙박정원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

| | |
|---|---|
| 2) 대화 · 정보실 | 여행 · 문화정보 등을 제공하고 만남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성한다. |
| 3) 자가취사장 | 숙박정원 50인당 1조 이상의 취사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그 합계가 5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조로 할 수 있다. |
| 4) 휴게실 |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 5) 지도자실 |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 6) 난방시설 | 난방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 7) 비상설비 | 가) 비상조명설비 또는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br>나) 비상급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 8) 기타시설 | 방송설비 및 물품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 9) 숙박정원 | 숙박실에서 일시에 숙박할 수 있는 적정인원을 말한다. |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19. 8. 28.>

#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표(제8조의2 관련)

◆ 점검일시 :

◆ 점 검 자 : (인)

□ 안전관리체계 및 교육

| 구 분 | 번호 | 항 목 별 | 점검사항 | | |
|---|---|---|---|---|---|
| | | | 적합 | 부적합 | 지적사항 |
| 안전관리 체계 및 교육 | 1 | 운영대표자의 책임 아래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는지(점검결과 기록유지) 여부 | | | |
| | 2 | 수련시설에 입교 시 수련시설에서 안전사고 예방방법 및 교육기간 동안 지켜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는지 여부 | | | |
| | 3 | 분야별 안전관리 책임자 지정 · 운영 여부 | | | |
| | 4 | 유사시 신속대응을 위한 비상 구조구난 체제 구축과 계획 수립 및 이와 관련한 직원 교육의 실시 여부 | | | |
| | 5 | 시설 이용방법, 이용 시 유의사항 및 비상시의 대피경로 등을 각 실별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고 있는지 여부 | | | |

□ 토목부문

| 구 분 | 번호 | 항 목 별 | 점검사항 | | |
|---|---|---|---|---|---|
| | | | 적합 | 부적합 | 지적사항 |
| 진입로 | | 수련시설은 비상시 소방차, 구급차 등의 접근이 용이한 진입로를 확보하고 있는가? | | | |
| 옹벽, 석축 및 담장 | 1 | 옹벽, 석축 및 담장 등의 붕괴 위험은 없는가? | | | |
| | 2 | 옹벽 및 담장 기초부분에 침하된 부분이 있는가? | | | |
| | 3 | 옹벽 부분에 배부름 현상이 있는가? | | | |
| 경사면 | 1 | 경사면의 붕괴 위험은 없는가? | | | |
| | 2 | 경사면의 토사유출 우려는 없는가? | | | |
| 배수로 | 1 | 배수로 덮개의 설치상태는 견고한가? | | | |
| | 2 | 배수로의 덮개에는 발, 구두 굽(하이힐 등) 등이 빠질 수 있는 틈새가 있는가? | | | |

□ 건축부문

| 구 분 | 번호 | 항 목 별 | 점검사항 | | |
|---|---|---|---|---|---|
| | | | 적합 | 부적합 | 지적사항 |
| 구조 | 1 | 모든 건축물의 내 · 외벽에 균열은 없는가? | | | |
| | 2 | 옥상 부분에 돌출된 파라펫(parapet) 및 난간의 설치상태는 견고한가? | | | |
| | 3 | 난간의 간격은 적정한가? | | | |
| | 4 | 불법으로 증 · 개축한 시설은 아닌가? | | | |
| | 5 | 처마 및 모서리 부분의 균열이나 낙하위험은 없는가? | | | |
| | 6 | 천정, 벽체 및 바닥의 누수는 없는가? | | | |
| 주출입구 | 1 | 주출입구는 장애인의 출입이 용이한 구조로 설치되어 있는가? | | | |
| | 2 | 주출입구의 중앙 및 양측에 손가락보호대가 설치되어 있는가? | | | |
| 현관 및 로비 | 1 | 각종 안내표시판이 적절하게 게시되어 있는가? | | | |
| | 2 | 안내 데스크는 장애인을 고려한 구조로 설치되어 있는가? | | | |
| | 3 | 안내 데스크 모서리 등은 충돌 시 부상을 예방 · 완화할 수 있는 마감재를 사용하고 있는가? | | | |
| 복도 | 1 | 복도는 통행, 피난 및 방향전환 등을 하기에 적절한 구조로 되어 있는가? | | | |
| | 2 | 바닥은 턱, 요철 등으로 인한 높낮이 차이 때문에 통행 중 쉽게 넘어지거나, 미끄러지지 않는가? | | | |
| | 3 | 바닥 마감재는 미끄럽지 않고 평탄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 | | |
| | 4 | 피난유도등, 피난유도표지 등은 사람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는가? | | | |
| | 5 | 복도에 통행 및 피난을 방해할 수 있는 장애물(의자, 자판기, 공중전화 등) 및 돌출물(못, 철물)이 있지 않은가? | | | |
| 계단 | 1 | 중정형 계단의 경우 추락방지를 위한 그물망이 설치되어 있는가? | | | |
| | 2 | 추락방지용 그물망의 지지상태(철물고정, 철물의 녹슨 정도, 그물의 하중상태)는 양호한가? | | | |
| | 3 | 계단에 통행 및 피난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장애물이 있지 않은가? | | | |
| | 4 | 각 디딤판의 끝부분에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미끄럼 | | | |

| | | | | | |
|---|---|---|---|---|---|
| | | 방지장치가 설치되어 있는가? | | | |
| 생활관 | 1 | 소방법에 적합하게 하강기 등 피난시설을 준비하고 있는가? | | | |
| | 2 | 피난이 용이한 구조로 되어 있는가(창문에 안전손잡이 설치유무 등)? | | | |
| | 3 | 침구류 등의 위생상태는 양호한가? | | | |
| | 4 | 각 실내 전반적인 청소상태는 양호한가? | | | |
| 화장실 | 1 | 바닥은 넘어짐이나 미끄럼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재질로 설치되어 있는가? | | | |
| | 2 | 화장실에 설치된 전기설비에는 보호 덮개가 설치되어 있는가? | | | |
| 양호실 | 1 | 비상구급약은 마련되어 있는가? | | | |
| | 2 | 상주인원(양호교사, 간호사 등)에 의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 | |
| | 3 | 상주인원 부재 시 비상연락이 가능한 연락망은 게시되어 있는가? | | | |
| 엘리베이터 또는 에스컬레이터 | 1 | 정기적인 보수점검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 | | |
| | 2 | 적재중량, 비상시 연락이 가능한 벨 등 각종 안전장치의 작동상태는 양호한가? | | | |
| 실내수영장 | 1 | 수심표시 등 안전표시판은 적절히 부착되어 있는가? | | | |
| | 2 | 풀장에 설치된 각종 난간, 계단 및 사다리 등의 고정상태는 양호한가? | | | |
| | 3 | 풀장 내·외부의 바닥은 미끄럼방지를 위한 재질로 설계되어 있는가? | | | |
| 모험시설 및 옥외구조물 | 1 | 모험시설 상호 간 일정한 이격거리를 유지하고 있는가? | | | |
| | 2 | 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상태나 안전망의 설치상태 등은 양호한가? | | | |
| | 3 | 모험시설에 설치된 난간의 높이는 적정한가? | | | |
| | 4 | 안전수칙 및 위험경고 표시가 부착되어 있는가? | | | |
| | 5 | 활동에 필요한 보호장비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가? | | | |
| | 6 | 안전요원, 그 밖의 수련시설 관리자의 적절한 교육 및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 | |
| 기계, 전기 및 가스 | 1 | 전기안전관리자의 책임 아래 전기시설을 적절히 관리하고 있는가? | | | |
| | 2 | 보일러를 포함한 냉·난방기기는 관련법규에 따라 검사를 받고 있는가? | | | |

| | | | | | |
|---|---|---|---|---|---|
| | 3 | 가스시설의 누설 체크는 관련법규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가? | | | |
| 소방 | 1 | 소화기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는가? | | | |
| | 2 | 소화기의 충전량은 적정한가? | | | |
| | 3 | 소화전 수압 호스의 연결 상태는 양호한가? | | | |
| | 4 | 스프링쿨러 배관 및 밸브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 | | |
| | 5 | 유도등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 | | |
| | 6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 | | |
| | 7 | 사용하고 있는 전원이 차단될 경우 비상전원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 | | |
| | 8 | 하강기 및 피난사다리의 설치상태는 양호한가? | | | |
| | 9 | 위험물 저장시설에는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도록 통제하고 있는가? | | | |
| | 10 | 위험물 저장시설의 차광 및 환기상태는 양호한가? | | | |
| | 11 | 화기시설과 가연성 물질 사이에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있는가? | | | |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6. 3. 24.>

## 수련시설의 운영기준(제9조 관련)

1. 청소년수련활동 운영

가. 청소년수련거리별로 추구하려는 구체적인 목적이 명시되어야 한다.

나. 청소년수련거리는 청소년지도사에 의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다. 청소년수련거리의 실시에 있어서는 청소년 개인의 정신적·신체적 능력을 참작하여야 하며, 청소년수련거리에 강제로 참여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라. 수련시설은 법 제35조에 따라 인증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2. 생활지도

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3시 이전에 취침하도록 하여야 하며, 취침시간 후에는 취침을 방해하는 행위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청소년의 남녀혼숙을 금하여야 한다.

다.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음주·흡연행위를 금하여야 하며, 성인이라 하더라도 흡연은 정해진 장소에서 하도록 하고, 음주 등으로 인하여 해당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지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음주자 등 시설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마. 집단급식소 등은 청소년들의 자립정신의 배양을 위하여 자급식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바. 청소년에게 정신적·신체적 폭행이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사. 청소년의 탈선을 방지하고 타인으로부터의 위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시설의 관리 및 운영

가.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증을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나. 숙박실별로 해당 숙박실의 숙박정원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 시설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고,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라. 해당 수련시설의 시설기준을 초과하여 운영하여서는 안 된다.

마. 수련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정당한 경비 외의 부당한 수수료 또는 금품을 제공받거나 수련시설이용자의 유치 등을 목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바. 해당 수련시설에 법 제33조제2항 각 호의 시설이나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이 기 준에서 정한 것 외에 그 법령에서 정한 위생기준, 관리·운영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 유스호스텔의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사단법인 한국유스호스텔연맹이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유스호스텔의 시설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종사자 교육

수련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수련시설의 종사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수련시설의 운영·안전·위생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 기록의 유지관리 등

다음 각 목의 장부·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장부·서류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유지할 수 있다.

가. 일일 청소년수련활동실시 현황부

나. 청소년수련활동참여자 명단(유스호스텔의 경우는 숙박실 이용자 명단을 포함한다)

다. 청소년지도사 및 직원명부

라. 시설물안전점검 기록대장

마. 현금출납부 및 그 밖의 경리관계 장부·서류

바. 등록관계 서류

사.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실시기록대장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신설 2014.7.21>

## 운영 중지 명령의 행정처분 기준(제9조의3 관련)

Ⅰ. 일반기준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2.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의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3. 처분권자는 사고 등의 발생 사유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가. 사유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수요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Ⅱ. 개별기준

| 위반사항 | 근거법령 | 행정처분 | |
|---|---|---|---|
| | | 1차 위반 | 2차 이상 위반 |
| 1. 시설이 붕괴된 경우 | 법 제20조의2 제1항제1호 | 3개월 운영 중지 | |
| 2. 시설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등 안전 확보가 현저히 미흡한 경우 | 법 제20조의2 제1항제1호 | 2개월 운영 중지 | 3개월 운영 중지 |
| 3.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의 실시 중 참가자 또는 이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 법 제20조의2 제1항제2호 | 2개월 운영 중지 | 3개월 운영 중지 |
|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및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경우 | 법 제20조의2 제1항제3호 | 2개월 운영 중지 | 3개월 운영 중지 |
| 5. 「아동복지법」 제17조의 금지행위가 발생한 경우 | 법 제20조의2 제1항제4호 | 2개월 운영 중지 | 3개월 운영 중지 |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19. 8. 28.>

##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제15조의2제2호 관련)

| 구 분 | 프로그램 |
|---|---|
| 수상활동 | 래프팅, 모터보트, 동력요트,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수중스쿠터, 레저용 공기부양정, 수상스키, 조정, 카약, 카누, 수상자전거, 서프보드, 스킨스쿠버 |
| 항공활동 | 패러글라이딩, 행글라이딩 |
| 산악활동 | 암벽타기(자연암벽, 빙벽), 산악스키, 야간등산(4시간 이상의 경우만 해당한다) |
| 장거리걷기활동 | 10Km 이상 도보이동 |
| 그 밖의 활동 | 유해성 물질(발화성, 부식성, 독성 또는 환경유해성 등), 하강레포츠, ATV탑승 등 사고위험이 높은 물질·기구·장비 등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청소년수련활동 |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14.7.21>

## 인증의 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제15조의7제2항 관련)

Ⅰ. 일반기준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의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3.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수요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 행위자가 최근 5년간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없이 인증수련활동을 해 온 경우
   라.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Ⅱ. 개별기준

| 위반사항 | 근거법령 | 행정처분 | | |
|---|---|---|---|---|
| | | 1차 | 2차 | 3차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법 제36조의3 제1항제1호 | 취소 | | |
| 2. 인증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수련활동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6조의3 제1항제2호 | 경고 | 3개월 정지 | 취소 |
| 3. 인증수련활동의 내용과 실제로 실시되는 청소년수련활동의 내용에 중 | 법 제36조의3 제1항제3호 | 3개월 정지 | 6개월 정지 | 취소 |

| | | | | |
|---|---|---|---|---|
| 요한 차이가 있는 경우로서 그 원인이 인증받은 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발생된 경우 | | | | |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9] <개정 2014.7.21>

## 수 수 료(제20조 관련)

| 구 분 | 수수료액 |
|---|---|
| 1.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수련시설의 설치허가신청(변경허가신청의 경우를 포함한다) | |
| 가. 청소년수련관·청소년수련원·유스호스텔·청소년특화시설 | 25,000원 |
| 나. 청소년야영장·청소년문화의 집 | 17,000원 |
|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련시설의 등록신청(변경등록신청의 경우를 포함한다) | |
| 가. 청소년수련관·청소년수련원·유스호스텔·청소년특화시설 | 22,000원 |
| 나. 청소년야영장·청소년문화의 집 | 15,000원 |
| 3.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수련지구조성계획의 승인신청 | 100,000원 |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6. 9.>

#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변경신고)서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14일 |
|---|---|---|

| | | |
|---|---|---|
| 주최자 | 상호명(성명) | 전화번호 |
| | 소재지 | |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기관(시설) 종류<br>[ ]청소년수련관 [ ]청소년수련원 [ ]청소년문화의집 [ ]청소년특화시설<br>[ ]청소년야영장 [ ]유스호스텔 [ ]영리법인 [ ]기타( ) | |

| | | | |
|---|---|---|---|
| 청소년 수련활동 | 청소년수련활동명(청소년수련활동명을 변경할 경우, 변경 전의 청소년수련활동명을 함께 기재합니다) | | 활동기간 |
| | 주요 프로그램 내용 | | 참가인원(총인원)<br>1인당 참가비 |
| | 주요 이동경로 및 수단 | | 프로그램 형태<br>[ ]숙박형 [ ]비숙박형 |
| | 인증수련활동 여부<br>[ ]여(인증번호: 제 호) [ ]부 | | 위험도가 높은 활동<br>[ ]포함 [ ]미포함 |
| | 지도인력(총인원) | 보험명 | 보험금액(1인당, 사망시 기준) |
| | 프로그램 위탁 여부 [ ]여 [ ]부 | | 위탁 기관명 |
| | 위탁 내용 | | |
| | 변경 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하며, 신고번호를 함께 기재합니다) | | |
| | 변경 사유 | |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항·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을 신고(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
| 첨부서류 | <신고 시><br>1.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기준을 준수한 같은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청소년수련활동 운영계획서(「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의 경우는 제외합니다.)<br>2.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주최자·운영자·보조자 명단<br>3.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5조에 따른 보험증권 등 보험가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변경 신고 시><br>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br>없 음 |

## 유 의 사 항

청소년수련활동 운영계획서에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참가자에 대한 건강상태 확인 방법을 포함하고, 프로그램 개시 전까지 참가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7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 처분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 | 접 수 | → | 검 토 | → | 결 재 | → | 신고증명서 발급 |
|---|---|---|---|---|---|---|---|---|
| 신고인 | |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 군 · 구)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신설 2025. 6. 9.>

# 청소년수련활동 운영계획서

## 1. 운영 기본정보

| | | | |
|---|---|---|---|
| 주최자<br>(기관)명 | | 활동명 | |
| 활동기간 | 부터 까지 | 참가대상 | 청소년 ( )명 장애청소년 ( )명<br>청소년 외 ( )명 총인원 ( )명 |
| | [ ]당일 [ ]단기(2~3일)<br>[ ]중기(4~6일) [ ]장기(7일이상) | | [ ] 9세~13세(초등학생 연령대)<br>[ ]14세~16세(중학생 연령대)<br>[ ]17세~19세(고등학생 연령대)<br>[ ]20세~24세 [ ]기타 |
| 활동장소 | (주소) | 숙박장소 | (주소) |
| 활동형태 | [ ]고정형 [ ]이동형 [ ]혼합형 | | |
| 운영목적 | | | |
| 정보공개 | [ ]홈페이지 [ ]SNS [ ]인쇄물 [ ]게시판 [ ]기타( ) | | |

## 2. 안전 확보

| | | | | |
|---|---|---|---|---|
| 참가자<br>건강상태 | 확인방법 | | 확인(예정)일 | |

| | | |
|---|---|---|
| 활동<br>안전관리<br>계획 | 긴급 후송대책 | |
| | 프로그램 진행(운영) 중 | |
| | 취침 시(숙박) | |
| | 이동 중(이동형 활동의 경우) | |
| | 휴식시간 운영 | |

| | | | |
|---|---|---|---|
| 사전<br>안전교육 | 구분 | 청소년대상 | 지도자대상 |
| | 교육(예정)일시 | | |
| | 교육방법 | [ ]직접교육 [ ]시청각자료 | [ ]직접교육 [ ]시청각자료 |
| | 교육내용 | | |
| 안전점검<br>확인 | 구분 | 활동장소 | 숙소 |
| | 확인여부 | [ ]여 [ ]부 | [ ]여 [ ]부 |
| | 확인내용 | | |
| | 최근 안전점검일 | | |
| | 안전점검기관 | | |

## 3. 프로그램 운영

| | | | | |
|---|---|---|---|---|
| 기자재·장비<br>확보 | 종류 | 확보 형태 | 확보 현황 | 확보(예정)일 |
| | | [ ]자체보유 [ ]임대 | 개, 개 | |
| | | [ ]자체보유 [ ]임대 | 개, 개 | |
| | | [ ]자체보유 [ ]임대 | 개, 개 | |
| 영양공급 | [ ]도시락 [ ]구내식당 [ ]외부식당 [ ]기타(자체조리 등) | | | |
| 세부<br>운영일정 | 프로그램 운영 일정표 등 첨부가 가능합니다. | | | |

| | | |
|---|---|---|
| 운영기준<br>이행계획 | 준수사항 | [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능력을 고려하고, 프로그램 강제 참여 금지<br>[ ]청소년 및 지도 인력의 음주·흡연행위 금지<br>[ ]청소년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폭행이나 유사행위 금지<br>[ ]부당한 수수료 또는 금품 수수 금지<br>[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신고·등록·허가를 거쳐 운영 |
| | 사전공개 | [ ]프로그램 일정 [ ]참가비 [ ]지도자 자격 및 경력 [ ]인증수련활동 여부<br>[ ]가입 보험 종류 및 약관 [ ]관계법령에 따른 신고·등록·허가 여부 [ ]안전관리 대책 |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6. 30.>

# 주최자 · 운영자 · 보조자 명단

| 소속 | 성명 | 주민등록번호<br>(여권번호,<br>외국인등록번호) | 담당업무 | 자격증 | 자격발급<br>기관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25. 6. 9.>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7.21>

신고번호 :

#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증명서

프로그램명 :

실시기간 : 20 . . ~ 20 . .

활동 지역 :

1. 상호명 :

2. 소재지 :

3. 대표자 성명 :

4. 생년월일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직인

210㎜×297㎜[백상지 120g/㎡]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4.7.21>

#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관리대장

| | | | | |
|---|---|---|---|---|
| 신고인 | | | 신고번호 | |
| 신고일 | | | 신고처리일 | |
| 주최자 | 상호명(성명) | | 전화번호 | |
| | 소재지 | | | |
| | 대표자 성명 | | 생년월일 | |
| 청소년 수련활동 | 청소년 수련활동명 | | 기 간 | |
| | 주요 프로그램 내용 | | | |
| | 주요 이동경로 (이동수단 포함) | | | |
| | 숙박 / 야영 장소 | | 인증수련활동 여부 | |
| | 참가인원 | | 1인당 참가비 | |

| 지도자 자격사항 | 직책 | 성명 | 자격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격사유 조회결과 | |
| 행정처분내역 | |

210㎜×297㎜[백 상지 120g/㎡]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4.7.21>

# 건강상태 확인서(개인)

1. 참가자명 :

2. 성별 :

3. 청소년수련활동

| 신고번호 | 주최자(기관명) | 청소년수련활동명 |
|---|---|---|
| | | |

4. 건강상태(질병, 장애, 특이체질 등)

| 증상 | 요청사항 |
|---|---|
| | |

년 월 일

보호자 서명 또는 (인)

210㎜× 297㎜[백상지 80g/㎡]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신설 2014.7.21>

# 건강상태 확인서(단체)

1. 청소년수련활동

| 신고번호 | 주최자(기관명) | 청소년수련활동명 |
|---|---|---|
| | | |

2. 건강상태 (질병, 장애, 특이체질 등)

| 연번 | 참가자명 | 성별 |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소속기관장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4. 11. 21.>

#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 ] 허 가 / [ ] 변경허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45일 |
|---|---|---|

| | | | | |
|---|---|---|---|---|
| 신청인 | 법인 · 단체명 | | | |
| | 성명(대표자) | | 생년월일 | |
| | 주 소 | | 전화번호 | |

| | | | |
|---|---|---|---|
| 수련시설의 명칭 | | 수련시설의 종류 | |
| 설 치 장 소 | | | |
| 허 가 근 거 | | 허 가 연 월 일 | |
| 시 설 규 모 | 부지면적 ㎡ 건축연면적 ㎡ (지하 층, 지상 층) | | |
| 정 원 | 수용정원 명 숙박정원 명 야영정원 명 | | |
| 소 요 자 금 | | 공 사 기 간 | ~ |

| 변 경 항 목 | 변 경 전 | 변 경 후 |
|---|---|---|
| | | |
| | | |
| | |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 수 수 료 뒤쪽참조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 | |
|---|---|
|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 허가 근거, 허가연월일 및 공사기간은 변경허가 신청 시에만 적습니다. |
| 신청인 제출서류 | ※ 변경허가의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항과 관련된 서류만 제출합니다.<br>1.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설치·운영계획서 1부<br>2.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1부<br>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됩니다) |

수수료

| 구 분 | 수수료 |
|---|---|
| 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특화시설 | 25,000원 |
| 나. 청소년야영장, 청소년문화의집 | 17,000원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 | 결재 | → | 허가처리 통보 |
|---|---|---|---|---|---|---|---|---|
| 신청인 | | | | 처리기관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br>* 협조(관계)기관 : 관계 법률과의 적합 여부 검토 | | | | |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4. 11. 21.>

# 청소년수련시설 [ ] 등 록 / [ ] 변경등록 / [ ] 등록증재교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1. 등록 · 변경등록 : 18일<br>2. 등록증 재교부 : 1일 |
|---|---|---|

| | | | | |
|---|---|---|---|---|
| 설치 · 운영자 | 법인 · 단체명 | | | |
| | 성명(대표자) | | 생년월일 | |
| | 주 소 | | 전화번호 | |
| 수련시설의 명칭 | | | 수련시설의 종류 | |
| 설 치 장 소 | | | | |
| 허 가 근 거 | | | 허 가 연 월 일 | |
| 등 록 번 호 | | | 등 록 연 월 일 | |
| 시 설 규 모 | 부지면적 ㎡ | | 건축연면적 ㎡<br>(지하 층, 지상 층) | |
| 정원 | 비숙박수련시설 | 명 | | |
| | 숙박(야영)수련시설 | 숙박정원 명(중학생 명, 초등학생 명)<br>야영정원 명 | | |
| | 유스호스텔시설 | 숙박정원 명(중학생 명, 초등학생 명) | | |
| 운영 대표자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 | 주 소 | | | |

| 변 경 사 항 | 변 경 전 | 변 경 후 |
|---|---|---|
| | | |
| | | |

| | |
|---|---|
| 등록증재교부 신청사유 |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 제2항 및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 뒤쪽참조 | 수수료<br>뒤쪽참조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 | |
|---|---|
|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 1.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및 변경사항은 변경등록신청 시에만 적습니다.<br>2. 등록증재교부 신청 시에는 설치운영자, 수련시설의 명칭, 설치장소,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및 등록증재교부 신청사유만 적습니다. |
| 신청인 제출서류 | <등록 · 변경등록의 경우><br>1. 시설별일람표(「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br>2. 운영계획서 1부<br>3.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br>4. 청소년지도사 명단 및 자격증 사본<br>5. 등록신청하려는 수련시설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 인가 · 승인 등을 받았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허가서 등의 사본<br>6.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br>7.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br>8.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운영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br>9.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5항 전단에 따른 완성검사증명서(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br>※ 등록신청의 경우 구비서류 중 제2호 · 제3호 및 제7호의 서류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 운영허가신청 시에 제출한 서류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만 제출하며, 변경등록신청의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항과 관련되는 서류만 제출합니다.<br><br><등록증재교부의 경우> : 없음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br>2.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br>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10항제1호에 따른 완성검사 증명서(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성명 (서명 또는 인)

## 수수료

| 구 분 | 수수료 |
|---|---|
| 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특화시설<br>나. 청소년야영장, 청소년문화의집 | 22,000원<br>15,000원 |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결재 → 등록처리 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5.10.22.>

(4쪽 중 제1쪽)

# 청소년수련시설 시설별일람표

| | | | |
|---|---|---|---|
| ①수련시설명 | | ②수련시설의 종류 | |
| ③위 치 | | | |

| | | | | | | | |
|---|---|---|---|---|---|---|---|
| ④ 허 가 근 거 | | ⑤ 허 가 연월일 | | ⑥ 착 공 연월일 | | ⑦ 준 공 연월일 | |

| | | | | | |
|---|---|---|---|---|---|
| ⑧건 설 소 요 자 금 | 계: | | | | |
| | 자기자본: | | | | |
| | 보 조: | (국고보조 : | 지방비보조 : | 기타: | ) |
| | 융 자: | (청소년육성기금융자 : | 일반융자 : | | ) |

| | | | | | |
|---|---|---|---|---|---|
| ⑨부 지 면 적 | ㎡ | ⑩총 건 축 연 면 적 | ㎡ | ⑪건물동수 | 동 |

| | | | | |
|---|---|---|---|---|
| ⑫주 건 물 | 주된용도 | | 구 조 | 조, 지상 층, 지하 층 |
| | 바닥면적 | ㎡ | 연면적 | ㎡ |

| | 명 칭 | 주된용도 | 구 조 | 연 면 적 | 세부시설 및 설비 개요 |
|---|---|---|---|---|---|
| ⑬주 요 시 설<br>※ 주건물을 제외한 건물의 동별 또는 시설별로 적어 넣으십시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⑭세 부 시 설 내 용

1. 사무실 : 개소 ㎡
2. 지도자실 : 개소 ㎡
3. 휴게실 : 개소 ㎡
4. 매 점 : 개소 ㎡
5. 화장실 : 개소 ㎡(생활관 또는 숙박시설안의 것은 제외)
6. 세면장 : 개소 ㎡(생활관 또는 숙박시설안의 것은 제외)
7. 샤워장 : 개소 ㎡(생활관 또는 숙박시설안의 것은 제외)
8. 양호실 : 개소 ㎡
9. 주차장 : 개소 ㎡(주차능력 대)
10. 전화교환실 : ㎡
11. 방 송 실 : ㎡
12. 발전·기관실 : ㎡

210㎜×297㎜[백상지 80g/㎡]

(4쪽 중 제2쪽)

13. 실내집회장 개소 ㎡
가. : 개소 ㎡
나. : 개소 ㎡
다. : 개소 ㎡
라. : 개소 ㎡

14. 야외집회장 개소 ㎡
가. : 개소 ㎡
나. : 개소 ㎡
다. : 개소 ㎡

15. 체육활동장 개소 ㎡(실내 ㎡, 실외 ㎡)
가. : 개소 ㎡
나. : 개소 ㎡
다. : 개소 ㎡
라. : 개소 ㎡

16. 수련의 숲 : ㎡

17. 특성화 활동장
가. : ㎡
나. : ㎡

18. 자치활동실 개소 ㎡

(4쪽 중 제3쪽)

19. 생활관 : 조, 동, ㎡(숙박정원 : 명)
(※ 유스호스텔의 경우에는 숙박실)
가. 지도자숙박실 : 개소 ㎡(숙박정원 : 명)
나. 청소년숙박실 : 개소 ㎡(숙박정원 : 명)
(1) 인실 : 개소 ㎡
(2) 인실 : 개소 ㎡
(3) 인실 : 개소 ㎡
(4) 인실 : 개소 ㎡
(5) 인실 : 개소 ㎡
다. 공동화장실 : 개소 ㎡
라. 공동세면장 : 개소 ㎡
마. 공동샤워장 : 개소 ㎡
바. 공동세탁실 : 개소 ㎡
사. 기타시설 : 개소 ㎡
20. 야영지 : ㎡(숙박정원 : 명)
가. 자가취사장 : 개소 ㎡
나. 대피시설 : 개소 ㎡
다. 공동화장실 : 개소 ㎡
라. 공동세면장 : 개소 ㎡
마. 공동샤워장 : 개소 ㎡
바. 기타시설 : 개소 ㎡
21. 식 당 : 개소 ㎡(주방 : 개소 ㎡)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당일 경우 신고의 종류 및 근거 :
22. 자가취사장 : 개소 ㎡(취사설비 조)
23. 물품보관시설 : 개소(보관함 : 개)
24. 기타시설(시설내용별로 적어 넣고, 다른 법령에 따라 따로 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종류·허가번호·허가연월일 등을 괄호안에 적음
가. : 개소 ㎡( )
나. : 개소 ㎡( )
다. : 개소 ㎡( )
라. : 개소 ㎡( )
마. : 개소 ㎡( )
바. : 개소 ㎡( )

(4쪽 중 제4쪽)

| 실시가능한 활동의 종류<br>※ 실시가능한 종류에 "○"표를 하고,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종류는 직접 적어 넣으십시오. | | | | | | | |
|---|---|---|---|---|---|---|---|
| 수련거리 참여시 실시가능한 활동 | | 수련거리 참여시 실시가능한 활동 | | 수련거리 참여시 실시가능한 활동 | | 수련거리 참여시 실시가능한 활동 | |
| 개별적 이용이 가능한 활동 | | 개별적 이용이 가능한 활동 | | 개별적 이용이 가능한 활동 | | 개별적 이용이 가능한 활동 | |
| 활동의 종류 | | 활동의 종류 | | 활동의 종류 | | 활동의 종류 | |
| ◦ 영 화 | | ◦ 육 상 | | ◦ 아 영 | | ◦ 생태계관찰 | |
| ◦ 연 극 | | ◦ 축구·럭비 | | ◦ 담력훈련 | | ◦ 화초관찰 | |
| ◦ 춤 | | ◦ 하 키 | | ◦ 극기훈련 | | ◦ 암석관찰 | |
| ◦ 노래·연주 | | ◦ 배 구 | | ◦ 오리엔티어링 | | ◦ 수목관찰 | |
| ◦ 음악감상 | | ◦ 농 구 | | ◦ 개척물제작 | | ◦ 곤충관찰 | |
| ◦ 문학발표회 | | ◦ 야 구 | | ◦ 등 산 | | ◦ 조수관찰 | |
| ◦ 전시회 | | ◦ 소프트볼 | | ◦ 암벽등반 | | ◦ 어류관찰 | |
| ◦ 강 의 | | ◦ 탁 구 | | ◦ 산악자전거 | | ◦ 천체관찰 | |
| ◦ 세미나 | | ◦ 테니스 | | ◦ 행글라이딩 | | ◦ 기상관측 | |
| ◦ 상 담 | | ◦ 사이클링 | | ◦ 패러글라이딩 | | ◦ 영농(곡물) | |
| ◦ 소그룹활동 | | ◦ 승 마 | | ◦ 모터글라이딩 | | ◦ 영농(원예) | |
| ◦ 꽃꽂이 | | ◦ 양 궁 | | ◦ 열기구타기 | | ◦ 영농(과수) | |
| ◦ 독 서 | | ◦ 국 궁 | | ◦ 수상스키 | | ◦ 조수사육 | |
| ◦ 서 예 | | ◦ 조정·카누 | | ◦ 보트타기 | | ◦ 어류사육 | |
| ◦ 도 예 | | ◦ 요 트 | | ◦ 뗏목타기 | | ◦ 근 로 | |
| ◦ 예법익히기 | | ◦ 롤러스케이트 | | ◦ 써 핑 | | ◦ 유물관찰 | |
| ◦ 수 예 | | ◦ 빙 상 | | ◦ 윈드써핑 | | ◦ 자연사학습 | |
| ◦ 요리실습 | | ◦ 스 키 | | ◦ 스킨다이빙 | | ◦ 고적답사 | |
| ◦ 의상실습 | | ◦ 수 영 | | ◦ 스쿠버다이빙 | | ◦ 동굴탐사 | |
| ◦ 어학실습 | | ◦ 사 격 | | ◦ 인명구조 | | ◦ 무인도탐사 | |
| ◦ 회화·조각 | | ◦ 볼 링 | | ◦ 응급처치 | | ◦ 자연림탐사 | |
| ◦ 공작·공예 | | ◦ 씨 름 | | ◦ 모닥불집회 | | ◦ 환경학습 | |
| ◦ 과학실험 | | ◦ 태권·쿵후등 | | ◦ 산 책 | | | |
| ◦ 컴퓨터실습 | | ◦ 유 도 | | ◦ 낚 시 | | | |
| ◦ 아마튜어무선 | | ◦ 복싱·레스링 | | ◦ 해수욕 | | | |
| ◦ 사진촬영·인화 | | ◦ 검도·펜싱 | | ◦ 산림욕 | | | |
| ◦ 슬라이드제작 | | ◦ 체 조 | | ◦ 야외요리 | | | |
| ◦ 비디오제작 | | ◦ 미용체조 | | | | | |
| ◦ 오디오실습 | | ◦ 체력단련 | | | | | |
| ◦ 바둑·장기 | | ◦ 족구·발야구 | | | | | |
| ◦ 고누·공기 | | ◦ 격 구 | | | | | |
| ◦ 전자오락 | | ◦ 실내축구 | | | | | |
| ◦ 탈 춤 | | ◦ 석 궁 | | | | | |
| ◦ 사물놀이 | | ◦ 비치발리볼 | | | | | |
| ◦ 차전놀이 | | ◦ 트램플링 | | | | | |
| ◦ 그 네 | | ◦ 게이트볼 | | | | | |
| ◦ 널뛰기 | | ◦ 라켓볼·스쿼시 | | | | | |
| ◦ 투 호 | | ◦ 크리켓 | | | | | |
| ◦ 그 밖의 민속놀이 | | ◦ 눈썰매 | | | | | |
| | | ◦ 잔디썰매 | | | | | |
| | | ◦ 잔디스키 | | | | | |
| | | ◦ 스케이트보드 | | | | | |
| | | ◦ 롤러블레이드 | | | | | |
| | | ◦ 윈드크루즈 | | | | | |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5.10.22.>

제　　호

# 청소년수련시설등록증

1. 수련시설의 명칭 :
2. 수련시설의 종류 :
3. 수 용 정 원 :　　명( ※ 비숙박시설의 경우만 기재)
4. 숙 박 정 원 :　　명( ※ 중학생　　명, 초등학생　　명)
5. 야 영 정 원 :　　명( ※ 야영장이 있는 경우만 기재)
6. 소 재 지 :
7. 대 표 자　성 명 :

(법인은 법인명 및 대표자)

8. 주　　소 :
9. 운영대표자 성명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수련시설로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직인

210㎜×297㎜[백상지 150g/㎡]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5.10.22.>

# 청소년수련시설등록대장

| ①등 록 번 호 | ②등록일 | ③허가근거 (허가일) | ④시설의 명칭 / ⑤시설의 종류 | ⑥시설의 소재 (전화번호) | ⑦수용정원 | 설 치 · 운 영 자 | | | ⑪폐지일 및 근거 | ⑫비고 |
|---|---|---|---|---|---|---|---|---|---|---|
| | | | | | | ⑧법인 · 단체명 | ⑨성명(대표자) | ⑩생년월일 | | |
| | | ( ) | | ( ) | 명<br>숙박정원 명<br>야영정원 명 | | | | | |
| | | ( ) | | ( ) | 명<br>숙박정원 명<br>야영정원 명 | | | | | |
| | | ( ) | | ( ) | 명<br>숙박정원 명<br>야영정원 명 | | | | | |
| | | ( ) | | ( ) | 명<br>숙박정원 명<br>야영정원 명 | | | | | |
| | | ( ) | | ( ) | 명<br>숙박정원 명<br>야영정원 명 | | | | | |
| | | ( ) | | ( ) | 명<br>숙박정원 명<br>야영정원 명 | | | | | |

297㎜× 210㎜[백상지 80g/㎡]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5.10.22.>

# 수련시설 허가·등록 취소처분 기록대장

| 일련번호 | 문서번호 | 시설의 명칭<br>시설의 종류 | 소 재 지 | 성명(대표자) | 위반사항 | 처분내용 및 처분일 | 근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 210㎜[백상지 80g/㎡]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4.7.21>

# 청소년수련시설 [ ] 휴지 [ ] 재개 [ ] 폐지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7일 |
|---|---|---|
| 신고인 | 법인·단체명 | |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수련시설 | 명칭 | 종류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등록번호 | 등록연월일 |
| 신고사항 | 휴지기간 ~ ( 일간) | |
| | 폐지예정일 | |
| 신고사유 | |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휴지·재개·폐지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증 | 수수료 없음 |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 | 접수 | → | 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 | → | 결재 | → | 휴지·재개·폐지 처리 통보 |
|---|---|---|---|---|---|---|---|---|
| 신고인 | | | | 처리기관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5.10.22.>

# 청소년이용권장시설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7일 |
|---|---|---|

| | | |
|---|---|---|
| 신고인 | 법인·단체명 | |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 |
|---|---|---|
| 지정받으려는 시설의 내용 | 시설의 종류 | 시설명 |
| | 주요시설설비 | |

| | |
|---|---|
| 주요청소년수련거리운영계획 | |

| | |
|---|---|
| 지정신청사유 |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이용권장시설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 첨부서류 | 청소년수련거리 운영 세부계획서 | 수수료<br>없 음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 | 결재 | → | 지정 처리 통보 |
|---|---|---|---|---|---|---|---|---|
| 신청인 | | | | 처리기관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5.10.22.>

# 청소년이용권장시설 지정서

1. 시설의 명칭 :

2. 시설의 종류 :

3. 소 재 지 :

4. 대표자성명 :

(법인은 법인명 및 대표자)

5. 주 소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이용권장시설로 지정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직인

210㎜×297㎜(백상지 150g/㎡)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3.11.19>

# 청소년시설 운영현황

1. 시 설 명 :

2. 일반현황

가. 청소년이용률(연간청소년이용자수÷연간전체이용자수×100) : %

| 구 분 | 계 | | | 1월 | | 2월 | | 3월 | | 4월 | | 5월 | | 6월 | | 7월 | | 8월 | | 9월 | | 10월 | | 11월 | | 12월 | |
|---|---|---|---|---|---|---|---|---|---|---|---|---|---|---|---|---|---|---|---|---|---|---|---|---|---|---|---|
| | 계 | 청소년 | 기타 | 청소년 | 기타 | 청소년 | 기타 | 청소년 | 기타 | 청소년 | 기타 | 청소년 | 기타 | 청소년 | 기타 | 청소년 | 기타 | 청소년 | 기타 | 청소년 | 기타 | 청소년 | 기타 | 청소년 | 기타 | 청소년 | 기타 |
| 이용자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시설가동률(연간전체이용자수÷(수용정원×가동일수)×100) : %

| 구분 | 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가동일수 | | | | | | | | | | | | | |

3. 운영프로그램 현황 단위 : 명(연인원)

| 프로그램명 | 계 | 청소년(9세~24세) | | | | | | 성인 | 유아 아동 | 청소년 비율(%) | 수련활동 인증여부 |
|---|---|---|---|---|---|---|---|---|---|---|---|
| | | 소계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대학생 | 비학생 | | | | |
| 총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5.10.22.>

# 행 정 처 분 기 록 대 장

| 일련번호 | 인증번호 및 인증일 | 인증수련활동 명 | 단체·시설명 | 대표자 | 위반사항 | 처분내용 및 처분일 | 근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210㎜[백상지 80g/㎡]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5.10.22.>

(앞쪽)

제 호

## 검사 공무원증

사 진
3cm×4cm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성명
기관명

60mm×90mm[백상지 150g/㎡]

(색상: 연하늘색)

(뒤쪽)

## 검사 공무원증

소속/직급:
성명:
생년월일:
유효기간: . . .부터 . . .까지

위의 사람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7조에 따른 검사 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명의 직인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이 사람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7조에 따른 검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3.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5. 27.] [법률 제20144호, 2024. 1. 26., 타법개정]

우주항공청 (우주항공문화인력양성과) 055 - 856 - 4232

**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 중심사회의 주역인 대한민국 청소년들에게 미래를 향한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과학 한국을 이끌어 나갈 창의적 인재로 육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과학기술 개발의지를 높이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조 및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이하 "과학청소년단"이라 한다)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와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조(보조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과학청소년단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시설비 및 국내외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과학청소년단의 시설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제4조(조세감면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과학청소년단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과학청소년단에 기부한 금전,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제5조(지원단체의 수익사업 실시)** 과학청소년단을 지원하는 자 또는 단체(이하 "과학청소년단지원단체"라 한다)는 우주항공청장의 승인을 받아 과학청소년단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24. 1. 26.>

**제6조(수익사업의 정지명령)** 우주항공청장은 제5조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는 과학청소년단지원단체가 해당 사업으로부터 생긴 수익을 과학청소년단 지원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학청소년단지원단체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24. 1. 26.>

**제7조(예산서 등의 제출)** 과학청소년단은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 연도 예산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 7. 26., 2024. 1. 26.>

**제8조(결산보고서 등의 제출)** 과학청소년단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보고서와 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4. 1. 26.>

**제9조(업무의 검사 등)** 우주항공청장은 필요한 때에는 과학청소년단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자료 또는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24. 1. 26.>

**제10조(동일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과학청소년단이 아닌 자는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1조(과태료)** ① 제10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우주항공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7. 7. 26., 2024. 1. 26.>

**부칙** <제13592호,2015. 12.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산서 등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7조 및 제8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의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은 이 법에 따른 과학청소년단으로 본다.

**부칙** <제14839호,2017. 7. 26.>(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0>까지 생략
<341>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1조제2항 중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을 각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으로 한다.
<342>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0144호,2024. 1. 26.>(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6조, 제7조 전단, 제8조, 제9조 및 제11조제2항 중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을 각각 “ 우주항공청장 ”으로 한다.

⑧ 생략

**제11조** 및 제12조 생략

#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성평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02 - 2100 - 6250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청소년에 대한 전인교육(全人敎育)과 훈련을 통하여 새로운 민족관과 국가관을 정립시켜 조국통일과 민족 웅비(雄飛)의 새 역사 창조에 이바지할 수 있는 민족주체세력을 양성함과 동시에 세계로 향한 진취적 기상을 북돋우기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연맹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민족의 번영과 국가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2조(협조 및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청소년연맹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 협조ㆍ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3조(활동 조정)**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국가시책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청소년연맹의 활동 내용과 방법의 일부를 수정ㆍ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전문개정 2011. 5. 19.]

**제4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청소년연맹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ㆍ공유재산, 학교시설 및 군사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과 조건은 해당 재산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한국청소년연맹 간의 계약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5조(보조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청소년연맹에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시설비 및 국내외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한국청소년연맹의 시설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6조(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한국청소년연맹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5조제2항에 따라 한국청소년연맹에 기부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7조(예산 등의 보고)** 한국청소년연맹은 매 회계연도 시작 전에 다음 해의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25. 10. 1.>
[전문개정 2011. 5. 19.]

**제8조(결산 등의 보고 등)** ① 한국청소년연맹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와 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② 제1항의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에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한다.<개정 2025. 10. 1.>
[전문개정 2011. 5. 19.]

**제9조(업무검사 등)**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감독에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청소년연맹에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전문개정 2011. 5. 19.]

**제10조(유사 명칭의 사용금지)** 누구든지 한국청소년연맹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11조(과태료)** ① 제10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25. 10. 1.>
[전문개정 2010. 5. 17.]

**제12조** 삭제 <2010. 5. 17.>

**부칙** <제3434호,1981. 4. 13.>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68호,1990. 12. 27.>(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부처간 사무조정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관한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7조, 제8조제1항ㆍ제2항 및 제9조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체육청소년부장관"으로 한다.

④내지 ⑩생략

**제9조** 및 제10조 생략

**부칙** <제4541호,1993. 3. 6.>(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 <생략> ㆍㆍㆍ 부칙 제3조 내지 제5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그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로 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문화체육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7조, 제8조제1항ㆍ제2항 및 제9조중 "체육청소년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⑤내지3% 생략

**제4조** 및 제5조 생략

**부칙** <제7421호,2005. 3. 24.>(청소년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 이내에 청소년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문화체육부장관은"을 "청소년위원회는"으로 하고, 제7조 및 제8조제1항중 "문화체육부장관에게"를 각각 "청소년위원회에"로 하며, 제8조제2항중 "문화체육부장관이"를 "청소년위원회가"로 하고, 제9조중 "문화체육부장관은"을 "청소년위원회는"으로 한다.

④내지 ⑨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7799호,2005. 12. 29.>(청소년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7조,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 중 " 청소년위원회 " 를 각각 " 국가청소년위원회 " 로 한다.

⑤내지 ⑪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8852호,2008. 2. 29.>(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59> 까지 생략

<760>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 국가청소년위원회는 " 을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 으로 한다.

제7조 전단 중 " 국가청소년위원회에 " 를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 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 국가청소년위원회에 " 를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 국가청소년위원회가 " 를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 로 한다.

제9조 중 " 국가청소년위원회는 " 을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 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제9932호,2010. 1. 18.>(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29> 까지 생략

<130>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7조 전단, 제8조제1항、제2항 및 제9조 중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을 각각 " 여성가족부장관 " 으로 한다.

<131>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295호,2010. 5. 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0661호,2011. 5. 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065호,2025. 10. 1.>(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생략>、、、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31>까지 생략

<432>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7조 전단,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 및 제11조제2항 중 “ 여성가족부장관 ”을 각각 “ 성평등가족부장관 ”으로 한다.

<433>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 1945년이후종전의규정에의한학교졸업자자격인정령

[시행 1969. 12. 4.] [대통령령 제4401호, 1969. 12. 4., 전부개정]

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 044 - 203 - 6531

**제1조**년 5월 31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초급중학교 제3학년 및 중학교 제3학년을 수료한 자는 교육법에 의한 중학교 제3학년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로 인정한다.

**제2조**년 5월 31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초급중학교 전수학과를 졸업한 자 및 중학교 제4학년을 수료한 자는 교육법에 의한 중학교 제4학년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로 인정한다.

**제3조**년 3월 31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 및 고급중학교를 졸업한 자는 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로 인정한다.

**제4조**년 5월 31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사범학교를 졸업한 자는 교육법에 의한 사범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로 인정한다.

**제5조**년 3월 31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초급대학 및 대학을 졸업한 자는 교육법에 의한 초급대학 및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로 인정한다.

**제6조**년 5월 31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대학의 전문부를 졸업한 자는 교육법에 의한 초급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로 인정한다.

**부칙** <제4401호,1969. 12. 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1945년이후종전의규정에의한학교졸업자자격인정령

[시행 1969. 12. 4.] [대통령령 제4401호, 1969. 12. 4., 전부개정]

**제1조**년 5월 31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초급중학교 제3학년 및 중학교 제3학년을 수료한 자는 교육법에 의한 중학교 제3학년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로 인정한다.

**제2조**년 5월 31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초급중학교 전수학과를 졸업한 자 및 중학교 제4학년을 수료한 자는 교육법에 의한 중학교 제4학년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로 인정한다.

**제3조**년 3월 31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 및 고급중학교를 졸업한 자는 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로 인정한다.

**제4조**년 5월 31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사범학교를 졸업한 자는 교육법에 의한 사범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로 인정한다.

**제5조**년 3월 31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초급대학 및 대학을 졸업한 자는 교육법에 의한 초급대학 및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로 인정한다.

**제6조**년 5월 31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대학의 전문부를 졸업한 자는 교육법에 의한 초급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로 인정한다.

**부칙** <제4401호,1969. 12. 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타법개정]

교육부 (학교정책과) 044 - 203 - 6702
교육부 (학교시설개선팀) 044 - 203 - 7133
교육부 (영유아재정과) 044 - 203 - 7224, 7225

**제1조(목적)** 이 영은 「유아교육법」 제8조,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 「사립학교법」 제5조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8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공민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고등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대안학교는 제외한다)의 설립ㆍ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시설ㆍ설비기준과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 10. 31., 2005. 1. 29., 2005. 3. 25., 2009. 11. 5.>

**제2조(시설ㆍ설비기준)**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공민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고등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기준은 제3조 내지 제12조 및 제17조와 같다. <개정 2001. 10. 31.>

**제3조(교사)** ①각급학교의 교사(교실, 도서실 등 교수ㆍ학습활동에 직ㆍ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말한다)는 교수ㆍ학습에 적합하여야 하고, 그 내부환경은 「학교보건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1. 4.>

② 유치원의 교사는 교실, 화장실 및 교사실을 갖추어야 하고, 유치원에서 조리한 음식을 유아의 급식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리실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병설유치원의 교사실과 조리실은 병설된 학교의 교사 중 유치원으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에 둘 수 있다.<개정 2017. 12. 29.>

③ 각급학교의 교사 기준면적(연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1에 따른 기준면적(유치원 교사 중 교실 총면적 기준은 제외한다)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이하 "시ㆍ도교육감"이라 한다)이 각급학교의 학교별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상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완화할 수 있다.<신설 2017. 12. 29.>

**제3조의2(복합시설)** 교육부장관 또는 시ㆍ도교육감은 국ㆍ공립학교에 교육상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문화 및 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의 복합시설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12. 29.>

[본조신설 2007. 5. 2.]

**제3조의3** 삭제 <2018. 6. 26.>

**제4조(교사용 대지)** 교사용 대지의 기준면적은 건축관련법령의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출한 면적으로 한다.

**제5조(체육장)** ①각급학교의 체육장(옥외체육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배수가 잘 되거나 배수시설을 갖춘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장의 기준면적은 별표 2와 같다.

③교육부장관 또는 시ㆍ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교육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장을 두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장의 기준면적을 완화하여 인가할 수 있다.<개정 2001. 1. 29., 2001. 10. 31., 2005. 3. 25., 2007. 5. 2., 2008. 2. 29., 2013. 3. 23.>

1. 새로이 설립되는 각급학교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체육장 또는 공공체육시설 등과 인접하여 공동사용이 용이한 경우
2. 도심지 및 도서ㆍ벽지 등 지역의 여건상 기준면적 규모의 체육장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3. 삭제<2001. 10. 31.>

**제6조(교지)** 각급학교의 교지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교사용 대지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장의 면적을 합한 용지로서 교사의 안전ㆍ방음ㆍ환기ㆍ채광ㆍ소방ㆍ배수 및 학생의 통학에 지장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제7조(사립학교 교사 및 교지의 소유주체 등)** ① 사립인 각급학교의 교사 및 교지는 해당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자(이하 "설립주체"라 한다)의 소유이어야 한다. 다만, 사립인 유치원의 설립주체가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시설ㆍ건축물 또는 토지를 그 유치원의 교사 또는 교지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6.>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 기관

② 사립인 각급학교의 교지에는 설립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는 시설ㆍ건축물이 없어야 한다. 다만, 설립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건축물은 교지 안에 둘 수 있다.<개정 2018. 11. 6.>

1.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교사로 사용하는 시설ㆍ건축물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ㆍ건축물

가. 설립주체에게 소유권 이전이 예정되어 있거나 설립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연구기관 또는 산업체가 소유하는 것에 동의하였을 것
나. 문화·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평생교육시설 또는 주차장 등 공공의 목적에 부합할 것
다. 학생의 교육 및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전문개정 2017. 5. 29.]

**제8조(교구)** ①각급학교에는 학과 또는 교과별로 필요한 도서·기계·기구 등의 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구의 종목 및 기준은 시·도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의 실험·실습실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전문계학과를 설치한 일반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는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에 필요한 실험·실습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 4. 12., 2010. 6. 29.>
[제목개정 2010. 6. 29.]

**제10조(급수·온수공급시설)** ①각급학교에는 급수시설을 두어야 하되, 수질검사결과 위생상 무해하다고 판명된 것이어야 한다.
②학교에는 온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1조** 삭제 <2005. 11. 4.>

**제12조(각종학교 등의 시설기준)** 시·도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중학교(이하 "특성화중학교"라 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등학교"라 한다), 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 및 각종학교에 대하여 교육상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완화하여 인가할 수 있다. <개정 2001. 10. 31., 2005. 3. 25.>

**제13조(수익용기본재산)** ①사립의 각급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이하 "특수학교"라 한다)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이하 "학교법인"이라 한다)은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0. 31., 2005. 3. 25., 2016. 7. 12.>
② 제1항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은 그 총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연간 수익이 발생하여야 한다.<개정 2016. 7. 12.>
③시·도교육감은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도시개발구역안에 위치한 각급학교 및 특수학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용기본재산을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차적으로 확보하도록 할 수 있다.<신설 2001. 10. 31., 2005. 3. 25., 2008. 2. 29., 2013. 3. 23.>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용기본재산 및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의 범위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1. 1. 29., 2001. 10. 31., 2008. 2. 29., 2013. 3. 23.>

**제14조(학교운영경비의 부담)** ①학교법인은 매년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수익의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을 소속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 및 그 부속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상비에서 인건비를 제외한 경비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이를 인건비로 충당할 수 있다.<신설 2001. 10. 3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1. 1. 29., 2001. 10. 31., 2008. 2. 29., 2013. 3. 23.>

**제15조(각급학교의 인가기준 등)** ①시·도교육감은 사립의 고등학교를 설립·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기준을 갖추어 학교설립의 인가를 신청한 때에는 이를 인가한다. 이 경우 학교의 전학년의 총학생정원은 60명이상이어야 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교사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교지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용기본재산

②사립의 각급학교 및 특수학교를 설립·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학교설립의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설립계획서를 시·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기존학교를 개편하여 다른 종류의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와 이 영에 의한 시설·설비기준을 확보한 경우 및 국가시책상 특히 필요하여 설립되는 학교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1. 1. 29., 2001. 10. 31., 2005. 3. 25., 2008. 2. 29., 2013. 3. 23., 2015. 1. 6.>

③제1항의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의 분교설치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1. 10. 31., 2005. 3. 25.>

[제목개정 2015. 1. 6.]

**제16조(학교헌장)** ①국·공립학교의 장 또는 설립주체는 학교의 건학이념, 교육프로그램 등 학사운영계획, 교직원 인사행정, 재정운용방안과 교육시설·설비확보계획, 교직원 및 학생의 복리후생, 학생지도와 학교의 장기발전계획 등을 포함하는 학교헌장을 제정·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헌장을 공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에게 이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학교헌장을 개정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1. 1. 29., 2008. 2. 29., 2013. 3. 23.>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성화중학교·특성화고등학교 및 「초·중등교육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는 학교헌장을 제정하여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에게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01. 1. 29., 2001. 10. 31., 2005. 3. 25.,

2008. 2. 29., 2013. 3. 23.>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는 관보·일간신문·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한다.<개정 2020. 11. 24.>

**제17조(학생정원의 증원 등에 따른 시설기준 등)** ① 학급 또는 학과를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그 증설 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이 영에 의한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수익용기본재산의 경우에는 증설 또는 증원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2. 10. 25.>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교육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유지하기 위하여 학급의 증설이나 학생정원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시·도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의 기준을 그 증설 또는 증원분에 대하여 적용하지 않는다.<신설 2022. 10. 25.>

[제목개정 2022. 10. 25.]

**제18조(보고)** ①각급학교의 장은 교육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4월 1일 현재의 시설·설비 및 교원 등의 보유현황을 4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 29., 2008. 2. 29., 2013. 3. 23.>

②설립주체는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3년마다 7월 1일 현재의 수익용기본재산의 보유현황을 7월 31일까지 시·도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기준미달학교에 대한 조치)** 시·도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영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는 사립의 각급학교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이 영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간내에 이행하지 못한 학교에 대하여는 학생정원의 감축 또는 학생모집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으며, 행정 및 재정지원정책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01. 10. 31., 2005. 3. 25.>

**제20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체육장의 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6. 3. 24.]

**부칙** <제15483호,1997. 9. 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학교시설·설비기준령 및 학교법인의학교경영재산기준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기존의 학교법인 및 각급학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설립된 학교법인 및 각급학교와 종전의 설립인가기준에 의하여 학교설립계획승인을 얻고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아

니한 설립주체에 대하여는 이 영의 규정을 적용하되, 이 영에 의한 기준중 교지ㆍ교사 및 수익용기본재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및 학교법인의학교경영재산기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수익용기본재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학교법인의학교경영재산기준령이 이 영에 의한 기준보다 해당 학교법인ㆍ각급학교나 설립주체에게 불리한 경우 이 영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2. 10. 25.>

②이 영 시행당시의 학교법인 또는 각급학교의 시설ㆍ설비 등(제1항에 따른 교지ㆍ교사 및 수익용기본재산을 제외한다) 이 이 영에 의한 기준에 미달되는 때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5년이내에 이 영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25.>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특수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다른 법령의 준용)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 제19조는 학교에 이를 준용한다.

②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4항제2호중 " 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 을 "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 " 으로 한다.

③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 제2항제1호중 " 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 을 "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 " 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또는 학교법인의학교경영재산기준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7115호,2001. 1. 29.>(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본문, 제11조제2항, 제15조제2항 단서, 제16조제1항 후단ㆍ제2항 및 제18조제1항중 " 교육부장관 " 을 각각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 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 본문 및 제16조제2항중 " 교육부령 " 을 각각 " 교육인적자원부령 " 으로 한다.

⑨내지 <152>생략

**부칙** <제17397호,2001. 10. 31.>

이 영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90호,2005. 1. 29.>(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ㆍ사립학교법 제5조 및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 "을 " 「유아교육법」 제8조,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 「사립학교법」 제5조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8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 "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제18751호,2005. 3. 2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12호,2005. 11. 4.>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03호,2007. 4. 12.>(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중 " 실업계고등학교 "를 " 전문계고등학교 "로 하고, 동조 제목 외의 부분중 " 실업계고등학교 "를 " 전문계고등학교 "로, " 실업계 "를 " 전문계 "로 한다.

별표 1 학교란중 " 실업계열 "을 " 전문계열 "로 한다.

③내지 ⑫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0040호,2007. 5.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740호,2008. 2. 29.>(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단서, 제16조제1항 후단ㆍ제2항, 제18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3항ㆍ제4항, 제14조제4항, 제15조제2항 단서, 제16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④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 <제21809호,2009. 11. 5.>(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각종학교"를 "각종학교(대안학교는 제외한다)"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22234호,2010. 6. 29.>(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전문계고등학교등의 실험ㆍ실습실등)"을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의 실험ㆍ실습실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전문계고등학교(전문계학과를 설치한 종합고등학교를 포함한다)"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전문계학과를 설치한 일반고등학교"로 한다.

③ 부터 ⑨ 까지 생략

**제8조** 및 제9조 생략

**부칙** <제24423호,2013. 3. 2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단서, 제16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18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3항ㆍ제4항, 제14조제4항, 제15조제2항 본문 및 제16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⑤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 <제25050호,2013. 12. 30.>(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963호,2015. 1. 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327호,2016. 7. 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051호,2017. 5.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518호,2017. 1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치원 교사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 및 별표 1 유치원란(교사 중 교실 총면적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설립인가를 받은 사립유치원 및 이 영 시행 이후 설립 준비를 완료한 국ㆍ공립유치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삭제 <2018. 6. 26.>

**부칙** <제28996호,2018. 6. 26.>(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을 삭제한다.

대통령령 제28518호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29275호,2018. 11. 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509호,2020. 3. 3.>(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176호,2020. 11. 24.>(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956호,2022. 10. 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220호,2026. 3. 24.>(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1] <개정 2017. 12. 29.>

교사의 기준면적(제3조제3항관련)

(단위 : ㎡)

<table>
<tr><th colspan="2">학 교</th><th colspan="3">학생수별 기준면적</th></tr>
<tr><td colspan="2" rowspan="3">유 치 원</td><td>40명 이하</td><td colspan="2">41명 이상</td></tr>
<tr><td>5N</td><td colspan="2">80+3N</td></tr>
<tr><td colspan="3">교사 중 교실 총면적 2.2N</td></tr>
<tr><td colspan="2" rowspan="2">초등학교·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td><td>240명이하</td><td>241명이상 960명이하</td><td>961명이상</td></tr>
<tr><td>7N</td><td>720+4N</td><td>1,680+3N</td></tr>
<tr><td colspan="2" rowspan="2">중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td><td>120명이하</td><td>121명이상 720명이하</td><td>721명이상</td></tr>
<tr><td>14N</td><td>1,080+5N</td><td>1,800+4N</td></tr>
<tr><td rowspan="4">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td><td>계 열 별</td><td>120명이하</td><td>121명이상 720명이하</td><td>721명이상</td></tr>
<tr><td>인 문 계 열</td><td rowspan="3">14N</td><td>960+6N</td><td>1,680+5N</td></tr>
<tr><td>전 문 계 열</td><td>720+8N</td><td>2,160+6N</td></tr>
<tr><td>예·체능계열</td><td>480+10N</td><td>1,920+8N</td></tr>
</table>

비 고

1. N은 각급학교의 전학년의 학생정원을 말한다.
2. 위 표의 고등학교 계열구분은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동일고등학교에 2이상의 계열이 있는 경우에는 각 계열별 기준면적을 합한 면적을 적용한다.
3.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운영학교 및 동일구내에 2이상의 각급학교가 위치하는 경우에는 각 학교 급별 기준면적을 합한 면적을 적용한다.
4. 주간수업과 야간수업을 겸하여 행하는 학교에 대하여는 그중 인가학생정원이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
5. 수준별 교육과정의 심화·보충 학습에 필요한 시설의 기준면적은 지역 및 학교 특성에 따라 시·도교육감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별표 2] <개정 2007.5.2>

체육장의 기준면적(제5조제2항관련)

(단위 : ㎡)

| 학 교 | 학생수별 기준면적 | | |
|---|---|---|---|
| 유 치 원 | 40명이하 | 41명이상 | |
| | 160 | 120+N | |
| 초등학교·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600명이하 | 601명이상 1,800명이하 | 1,801명이상 |
| | 3,000 | 1,800+2N | 3,600+N |
| 중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600명이하 | 601명이상 1,800명이하 | 1,801명이상 |
| | 4,200 | 3,000+2N | 4,800+N |
|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600명이하 | 601명이상 1,800명이하 | 1,801명이상 |
| | 4,800 | 3,600+2N | 5,400+N |

비 고

1. N은 각급학교의 전학년의 학생정원을 말한다.
2. 교내에 수영장·체육관·강당·무용실등 실내체육시설이 있는 경우 실내체육시설 바닥면적의 2배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3.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운영학교 및 동일구내에 2이상의 각급학교가 위치하는 경우에는 각 학교 급별 기준면적을 합한 면적을 적용한다.
4. 주간수업과 야간수업을 겸하여 행하는 학교에 대하여는 그중 인가학생정원이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3] 삭제 <2005.11.4>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 · 운영 규정

[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유아교육법」 제8조,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 「사립학교법」 제5조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8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공민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고등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대안학교는 제외한다)의 설립ㆍ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시설ㆍ설비기준과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 10. 31., 2005. 1. 29., 2005. 3. 25., 2009. 11. 5.>

**제2조(시설 · 설비기준)**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공민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고등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기준은 제3조 내지 제12조 및 제17조와 같다. <개정 2001. 10. 31.>

**제3조(교사)** ①각급학교의 교사(교실, 도서실 등 교수ㆍ학습활동에 직ㆍ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말한다)는 교수ㆍ학습에 적합하여야 하고, 그 내부환경은 「학교보건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1. 4.>

② 유치원의 교사는 교실, 화장실 및 교사실을 갖추어야 하고, 유치원에서 조리한 음식을 유아의 급식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리실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병설유치원의 교사실과 조리실은 병설된 학교의 교사 중 유치원으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에 둘 수 있다.<개정 2017. 12. 29.>

③ 각급학교의 교사 기준면적(연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1에 따른 기준면적(유치원 교사 중 교실 총면적 기준은 제외한다)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이하 "시ㆍ도교육감"이라 한다)이 각급학교의 학교별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상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완화할 수 있다.<신설 2017. 12. 29.>

**제3조의2(복합시설)** 교육부장관 또는 시ㆍ도교육감은 국ㆍ공립학교에 교육상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문화 및 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의 복합시설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12. 29.>

[본조신설 2007. 5. 2.]

**제3조의3** 삭제 <2018. 6. 26.>

**제4조(교사용 대지)** 교사용 대지의 기준면적은 건축관련법령의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출한 면적으로 한다.

**제5조(체육장)** ①각급학교의 체육장(옥외체육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배수가 잘 되거나 배수시설을 갖춘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장의 기준면적은 별표 2와 같다.

③교육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교육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장을 두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장의 기준면적을 완화하여 인가할 수 있다.<개정 2001. 1. 29., 2001. 10. 31., 2005. 3. 25., 2007. 5. 2., 2008. 2. 29., 2013. 3. 23.>

1. 새로이 설립되는 각급학교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체육장 또는 공공체육시설 등과 인접하여 공동사용이 용이한 경우
2. 도심지 및 도서·벽지 등 지역의 여건상 기준면적 규모의 체육장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3. 삭제<2001. 10. 31.>

**제6조(교지)** 각급학교의 교지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교사용 대지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장의 면적을 합한 용지로서 교사의 안전·방음·환기·채광·소방·배수 및 학생의 통학에 지장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제7조(사립학교 교사 및 교지의 소유주체 등)** ① 사립인 각급학교의 교사 및 교지는 해당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이하 "설립주체"라 한다)의 소유이어야 한다. 다만, 사립인 유치원의 설립주체가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시설·건축물 또는 토지를 그 유치원의 교사 또는 교지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6.>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출연 기관

② 사립인 각급학교의 교지에는 설립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는 시설·건축물이 없어야 한다. 다만, 설립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건축물은 교지 안에 둘 수 있다.<개정 2018. 11. 6.>

1.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교사로 사용하는 시설·건축물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건축물
   가. 설립주체에게 소유권 이전이 예정되어 있거나 설립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연구기관 또는 산업체가 소유하는 것에 동의하였을 것
   나. 문화·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평생교육시설 또는 주차장 등 공공의 목적에 부합할 것
   다. 학생의 교육 및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전문개정 2017. 5. 29.]

**제8조(교구)** ①각급학교에는 학과 또는 교과별로 필요한 도서·기계·기구 등의 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구의 종목 및 기준은 시·도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의 실험·실습실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전문계학과를 설치한 일반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는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에 필요한 실험·실습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 4. 12., 2010. 6. 29.>
[제목개정 2010. 6. 29.]

**제10조(급수·온수공급시설)** ①각급학교에는 급수시설을 두어야 하되, 수질검사결과 위생상 무해하다고 판명된 것이어야 한다.
②학교에는 온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1조** 삭제 <2005. 11. 4.>

**제12조(각종학교 등의 시설기준)** 시·도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중학교(이하 "특성화중학교"라 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등학교"라 한다), 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 및 각종학교에 대하여 교육상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완화하여 인가할 수 있다. <개정 2001. 10. 31., 2005. 3. 25.>

**제13조(수익용기본재산)** ①사립의 각급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이하 "특수학교"라 한다)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이하 "학교법인"이라 한다)은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0. 31., 2005. 3. 25., 2016. 7. 12.>
② 제1항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은 그 총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연간 수익이 발생하여야 한다.<개정 2016. 7. 12.>
③시·도교육감은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도시개발구역안에 위치한 각급학교 및 특수학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용기본재산을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차적으로 확보하도록 할 수 있다.<신설 2001. 10. 31., 2005. 3. 25., 2008. 2. 29., 2013. 3. 23.>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용기본재산 및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의 범위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1. 1. 29., 2001. 10. 31., 2008. 2. 29., 2013. 3. 23.>

**제14조(학교운영경비의 부담)** ①학교법인은 매년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수익의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을 소속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 및 그 부속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상비에서 인건비를 제외한 경비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이를 인건비로 충당할 수 있다.<신설 2001. 10. 3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1. 1. 29., 2001. 10. 31., 2008. 2. 29., 2013. 3. 23.>

**제15조(각급학교의 인가기준 등)** ①시·도교육감은 사립의 고등학교를 설립·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기준을 갖추어 학교설립의 인가를 신청한 때에는 이를 인가한다. 이 경우 학교의 전학년의 총학생정원은 60명이상이어야 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교사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교지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용기본재산

②사립의 각급학교 및 특수학교를 설립·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학교설립의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설립계획서를 시·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기존학교를 개편하여 다른 종류의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와 이 영에 의한 시설·설비기준을 확보한 경우 및 국가시책상 특히 필요하여 설립되는 학교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1. 1. 29., 2001. 10. 31., 2005. 3. 25., 2008. 2. 29., 2013. 3. 23., 2015. 1. 6.>

③제1항의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의 분교설치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1. 10. 31., 2005. 3. 25.>

[제목개정 2015. 1. 6.]

**제16조(학교헌장)** ①국·공립학교의 장 또는 설립주체는 학교의 건학이념, 교육프로그램 등 학사운영계획, 교직원 인사행정, 재정운용방안과 교육시설·설비확보계획, 교직원 및 학생의 복리후생, 학생지도와 학교의 장기발전계획 등을 포함하는 학교헌장을 제정·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헌장을 공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에게 이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학교헌장을 개정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1. 1. 29., 2008. 2. 29., 2013. 3. 23.>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성화중학교·특성화고등학교 및 「초·중등교육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는 학교헌장을 제정하여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에게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01. 1. 29., 2001. 10. 31., 2005. 3. 25., 2008. 2. 29., 2013. 3. 23.>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는 관보·일간신문·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한다.<개정 2020. 11. 24.>

**제17조(학생정원의 증원 등에 따른 시설기준 등)** ① 학급 또는 학과를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그 증설 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이 영에 의한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수익용기본재산의 경우에는 증설 또는 증원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2. 10. 25.>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교육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유지하기 위하여 학급의 증설이나 학생정원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시·도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의 기준을 그 증설 또는 증원분에 대하여 적용하지 않는다.<신설 2022. 10. 25.>

[제목개정 2022. 10. 25.]

**제18조(보고)** ①각급학교의 장은 교육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4월 1일 현재의 시설·설비 및 교원 등의 보유현황을 4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 29., 2008. 2. 29., 2013. 3. 23.>

②설립주체는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3년마다 7월 1일 현재의 수익용기본재산의 보유현황을 7월 31일까지 시·도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기준미달학교에 대한 조치)** 시·도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영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는 사립의 각급학교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이 영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간내에 이행하지 못한 학교에 대하여는 학생정원의 감축 또는 학생모집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으며, 행정 및 재정지원정책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01. 10. 31., 2005. 3. 25.>

**제20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체육장의 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6. 3. 24.]

**부칙** <제15483호,1997. 9. 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학교시설·설비기준령 및 학교법인의학교경영재산기준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기존의 학교법인 및 각급학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설립된 학교법인 및 각급학교와 종전의 설립인가기준에 의하여 학교설립계획승인을 얻고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한 설립주체에 대하여는 이 영의 규정을 적용하되, 이 영에 의한 기준중 교지·교사 및 수익용기본재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학교시설·설비기준령 및 학교법인의학교경영재산기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수익용기본재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학교법인의학교경영재산기준령이 이 영에 의한 기준보다 해당 학교법인·각급학교나 설립주체에게 불리한 경우 이 영에 의

한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2. 10. 25.>

②이 영 시행당시의 학교법인 또는 각급학교의 시설ㆍ설비 등(제1항에 따른 교지ㆍ교사 및 수익용기본재산을 제외한다) 이 이 영에 의한 기준에 미달되는 때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5년이내에 이 영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25.>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특수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다른 법령의 준용)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 제19조는 학교에 이를 준용한다.

②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4항제2호중 " 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 을 "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 " 으로 한다.

③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 제2항제1호중 " 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 을 "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 " 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또는 학교법인의학교경영재산기준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7115호,2001. 1. 29.>(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본문, 제11조제2항, 제15조제2항 단서, 제16조제1항 후단ㆍ제2항 및 제18조제1항중 " 교육부장관 " 을 각각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 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 본문 및 제16조제2항중 " 교육부령 " 을 각각 " 교육인적자원부령 " 으로 한다.

⑨내지 <152>생략

**부칙** <제17397호,2001. 10. 31.>

이 영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90호,2005. 1. 29.>(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ㆍ사립학교법 제5조 및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을 "「유아교육법」 제8조,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 「사립학교법」 제5조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8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제18751호,2005. 3. 2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12호,2005. 11. 4.>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03호,2007. 4. 12.>(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중 "실업계고등학교"를 "전문계고등학교"로 하고, 동조 제목 외의 부분중 "실업계고등학교"를 "전문계고등학교"로, "실업계"를 "전문계"로 한다.

별표 1 학교란중 "실업계열"을 "전문계열"로 한다.

③내지 ⑫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0040호,2007. 5.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740호,2008. 2. 29.>(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단서, 제16조제1항 후단ㆍ제2항, 제18조제1항 중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을 각각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으로 한다.

제13조제3항ㆍ제4항, 제14조제4항, 제15조제2항 단서, 제16조제2항 중 " 교육인적자원부령 "을 각각 " 교육과학기술부령 "으로 한다.

④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 <제21809호,2009. 11. 5.>(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각종학교 "를 " 각종학교(대안학교는 제외한다) "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22234호,2010. 6. 29.>(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 (전문계고등학교등의 실험ㆍ실습실등) "을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의 실험ㆍ실습실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 전문계고등학교(전문계학과를 설치한 종합고등학교를 포함한다) "를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전문계학과를 설치한 일반고등학교 "로 한다.

③ 부터 ⑨ 까지 생략

**제8조** 및 제9조 생략

**부칙** <제24423호,2013. 3. 2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단서, 제16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18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3항ㆍ제4항, 제14조제4항, 제15조제2항 본문 및 제16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⑤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 <제25050호,2013. 12. 30.>(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963호,2015. 1. 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327호,2016. 7. 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051호,2017. 5.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518호,2017. 1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치원 교사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 및 별표 1 유치원란(교사 중 교실 총면적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설립인가를 받은 사립유치원 및 이 영 시행 이후 설립 준비를 완료한 국ㆍ공립유치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삭제 <2018. 6. 26.>

**부칙** <제28996호,2018. 6. 26.>(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을 삭제한다.

대통령령 제28518호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29275호,2018. 11. 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509호,2020. 3. 3.>(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176호,2020. 11. 24.>(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956호,2022. 10. 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220호,2026. 3. 24.>(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1] <개정 2017. 12. 29.>

교사의 기준면적(제3조제3항관련)

(단위 : ㎡)

<table>
<tr><th colspan="2">학 교</th><th colspan="3">학생수별 기준면적</th></tr>
<tr><td colspan="2" rowspan="3">유 치 원</td><td>40명 이하</td><td colspan="2">41명 이상</td></tr>
<tr><td>5N</td><td colspan="2">80+3N</td></tr>
<tr><td colspan="3">교사 중 교실 총면적 2.2N</td></tr>
<tr><td colspan="2" rowspan="2">초등학교·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td><td>240명이하</td><td>241명이상 960명이하</td><td>961명이상</td></tr>
<tr><td>7N</td><td>720+4N</td><td>1,680+3N</td></tr>
<tr><td colspan="2" rowspan="2">중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td><td>120명이하</td><td>121명이상 720명이하</td><td>721명이상</td></tr>
<tr><td>14N</td><td>1,080+5N</td><td>1,800+4N</td></tr>
<tr><td rowspan="4">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td><td>계 열 별</td><td>120명이하</td><td>121명이상 720명이하</td><td>721명이상</td></tr>
<tr><td>인 문 계 열</td><td rowspan="3">14N</td><td>960+6N</td><td>1,680+5N</td></tr>
<tr><td>전 문 계 열</td><td>720+8N</td><td>2,160+6N</td></tr>
<tr><td>예·체능계열</td><td>480+10N</td><td>1,920+8N</td></tr>
</table>

비 고

1. N은 각급학교의 전학년의 학생정원을 말한다.
2. 위 표의 고등학교 계열구분은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동일고등학교에 2이상의 계열이 있는 경우에는 각 계열별 기준면적을 합한 면적을 적용한다.
3.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운영학교 및 동일구내에 2이상의 각급학교가 위치하는 경우에는 각 학교 급별 기준면적을 합한 면적을 적용한다.
4. 주간수업과 야간수업을 겸하여 행하는 학교에 대하여는 그중 인가학생정원이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
5. 수준별 교육과정의 심화·보충 학습에 필요한 시설의 기준면적은 지역 및 학교 특성에 따라 시·도교육감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별표 2] <개정 2007.5.2>

체육장의 기준면적(제5조제2항관련)

(단위 : ㎡)

| 학 교 | 학생수별 기준면적 | | |
|---|---|---|---|
| 유 치 원 | 40명이하 | 41명이상 | |
| | 160 | 120+N | |
| 초등학교·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600명이하 | 601명이상 1,800명이하 | 1,801명이상 |
| | 3,000 | 1,800+2N | 3,600+N |
| 중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600명이하 | 601명이상 1,800명이하 | 1,801명이상 |
| | 4,200 | 3,000+2N | 4,800+N |
|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600명이하 | 601명이상 1,800명이하 | 1,801명이상 |
| | 4,800 | 3,600+2N | 5,400+N |

비 고

1. N은 각급학교의 전학년의 학생정원을 말한다.
2. 교내에 수영장·체육관·강당·무용실등 실내체육시설이 있는 경우 실내체육시설 바닥면적의 2배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3.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운영학교 및 동일구내에 2이상의 각급학교가 위치하는 경우에는 각 학교 급별 기준면적을 합한 면적을 적용한다.
4. 주간수업과 야간수업을 겸하여 행하는 학교에 대하여는 그중 인가학생정원이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3] 삭제 <2005.11.4>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17. 1. 18.] [교육부령 제116호, 2017. 1. 18., 일부개정]

교육부 (학교정책과) 044 - 203 - 6702
교육부 (학교시설개선팀) 044 - 203 - 7133
교육부 (영유아재정과) 044 - 203 - 7224, 044 - 203 - 72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3. 5.>

**제2조(학교설립계획서 등의 제출)**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2항 본문에 따라 사립의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공민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고등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 또는 특수학교를 설립ㆍ경영하려는 자는 매년 3월 31일까지 학교의 종류ㆍ목적ㆍ명칭ㆍ위치ㆍ개교예정일 및 학생정원 등을 기재한 별지 서식의 학교설립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시ㆍ도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학교,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이하 "특성화중학교"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등학교"라 한다)를 설립ㆍ경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첨부서류 외에 영 제16조에 따른 학교헌장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5.>

1. 교지(校地) 확보계획서
2. 교사(校舍) 건축계획서
3. 소요경비 조달계획서
4. 설립자의 이력서(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이력서)
5. 설립자의 재산명세서 및 재산확보계획서

②제1항제1호의 개교예정일은 학교설립계획서의 제출일부터 3년이내이어야 한다.

③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을 새로 설립하여 각급학교 또는 특수학교를 설립ㆍ경영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학교설립계획서에 같은 항에 따른 첨부서류 및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학교법인의 설립허가신청서와 그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5.>

④ 학교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자가 각급학교 또는 특수학교를 설립ㆍ경영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학교설립계획서에 같은 항에 따른 첨부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5. 3. 5.>

1. 정관변경계획서(변경사유서 및 신ㆍ구대조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2. 관련 이사회회의록 사본
3.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서류
4.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설립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예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⑤ 시ㆍ도교육감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학교설립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5. 3. 5.>

1. 설립ㆍ경영자가 사인(私人)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증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2. 설립ㆍ경영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제3조(학교법인 설립허가 등의 통보)** 시ㆍ도교육감은 제2조제1항에 따라 학교설립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여부, 제2조제3항에 따라 학교법인의 설립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 여부를 각각 제출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인이 유치원을 설립하는 경우와 학교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운 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학교설립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3. 5.]

**제4조(시설 등의 확보와 설립인가 신청)** ① 제3조에 따라 학교설립계획의 승인 통보를 받은 자 또는 영 제15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가 학교설립 인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에 따른 교사의 사용승인(유치원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말한다)을 받은 후에 신청하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조(유치원의 경우에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을 말한다)에 따른 학교설립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개교예정일 6개월(유치원의 경우에는 4개월. 다만,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가 영 제15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전까지 시ㆍ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설립하려는 학교의 시설ㆍ설비기준에 따른 시설ㆍ설비를 모두 확보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3. 5., 2017. 1. 18.>

1. 인가 후 보충할 시설의 연도별 보충계획
2. 연도별 교육시설ㆍ설비 확보계획에 관한 이행상황보고서

②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학교설립 인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그 기한 내에 설립인가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립인가신청서의 제출을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2015. 3. 5.>

③시ㆍ도교육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기기간이 경과하여도 학교의 설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학교설립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1. 11. 20.>

[제목개정 2015. 3. 5.]

**제5조(학교 설립인가의 통보 등)** ① 시ㆍ도교육감은 제4조에 따라 학교설립 인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인가 여부를 개교예정일 3개월 이전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유치원의 경우에는 학교설립 인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5.>

②시ㆍ도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설립의 인가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시설등의 확보여부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5. 3. 5.]

**제6조(학교의 위치 변경인가 신청)** 각급학교 또는 특수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자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조제2항(유치원의 경우에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4항을 말한다)에 따라 학교의 위치 변경인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교사와 교지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교사와 교지를 갖추기 전에 학교의 위치변경계획서를 시ㆍ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1. 20., 2015. 3. 5.>

[제목개정 2015. 3. 5.]

**제7조(취소권의 유보)** 시ㆍ도교육감이 학교설립을 인가할 때에는 인가후 보충할 시설의 연도별 보충계획에 따른 시설보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한다는 부관을 붙여야 한다.

**제8조(수익용기본재산의 범위)** ①영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안에 위치한 각급학교 및 특수학교가 연차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01. 11. 20.>

1. 학교설립 인가시 : 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이하 이 항에서 "수익용기본재산"이라 한다)의 50퍼센트 이상
2. 학교설립인가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2월 31일까지 : 수익용기본재산의 75퍼센트 이상
3. 학교설립인가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다음 연도 12월 31일까지 : 수익용기본재산의 100퍼센트

②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으로서 수익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개정 2001. 11. 20., 2008. 3. 4., 2013. 3. 23., 2015. 3. 5.>

1. 토지
2. 건물
3. 주식(공개법인 또는 상장법인의 주식)
4. 정기예금, 금전신탁 또는 그 밖에 원금이 보장되는 금융상품
5. 국채ㆍ공채

③ 제2항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의 가액(價額)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개정 2015. 3. 5.>

1.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재산: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된 가액 중에서 학교법인이 정한 것
   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
   다.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
2.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서 정한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

**제9조(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의 범위)** ①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은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산출된 해당 학년도별 학교회계 운영수익의 총액으로 한다. 다만, 학급·학과 또는 학생정원을 증설 또는 증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 11. 3.>

$$\text{증설 또는 증원하는 연도의 직전연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 + \left( \frac{\text{증설 또는 증원하는 연도의 직전연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 \times 0.5}{\text{증설 또는 증원하는 연도의 직전연도 학급 수 또는 학생 수}} \times \text{증설되는 학급 수 또는 증원되는 학생 수} \right)$$

※ 학급 수와 학생 수가 동시에 증가하는 경우에는 학급 수를 기준으로 한다.

② 학교회계 운영수익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별표 3(이하 "세입표"라 한다)에 따른 학교세입 합계액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6. 11. 3.>

1. 세입표 제1장제4관에 따른 그 밖의 이전수입
2. 세입표 제2장제1관제1항제3목에 따른 학교운영지원비
3. 세입표 제2장제1관제2항에 따른 수익자부담수입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성화중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 중 시·도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의 경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사립학교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수입액(이하 "보조금수입액"이라 한다)을 뺀 금액을 학교회계 운영수익으로 한다.<신설 2016. 11. 3.>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2015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비학교법인 특수학교에서 학교법인 특수학교로 전환하거나 전환을 신청한 특수학교 중 시·도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조금수입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뺀 금액을 학교회계 운영수익으로 한다.<신설 2015. 3. 5., 2016. 11. 3.>

1. 전환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간: 보조금수입액 전부

2. 제1호에 따른 기간이 종료한 이후부터 4년간: 보조금수입액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의 비율에 따른 일부
가. 1년: 100분의 80
나. 2년: 100분의 60
다. 3년: 100분의 40
라. 4년: 100분의 20

**제10조(수익의 범위 등)** ①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익은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총수입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호의 비용은 시·도교육감이 해당 학교법인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수입에서 학교법인 운영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공제한다. <개정 2016. 11. 3.>
1. 제세공과금
2. 학교법인운영필요경비
3. 법정부담경비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비용의 세부 내용 및 범위 등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6. 11. 3.>
[제목개정 2001. 11. 20.]

**제11조(제출기간등의 조정)** 시·도교육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5조까지에 규정된 기간을 해당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3. 5.>

**부칙** <제700호,1997. 10. 1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학교설립인가사무처리규칙, 학교법인의학교경영재산기준령시행규칙 및 각종학교등의체육장기준에관한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특성화 고등학교의 설립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①1998학년도 1학기 개교를 예정으로 특성화 고등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한에 불구하고 교사의 주요구조부의 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개교예정일 3월이전까지 학교설립계획서의 제출과 학교법인 설립허가신청 및 학교설립인가신청를 함께 할 수 있다.
②시·도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설립인가신청등을 받은 때에는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한에 불구하고 당해학교의 개교예정일 2월이전까지 승인·허가 및 인가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기존의 학교법인 및 각급학교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설립인가기준에 의하여 학교설립계획승인을 얻고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한 설립주체의 학교설립인

가에 관하여는 종전의 학교설립인가사무처리규칙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설립된 학교법인 및 각급학교의 기존의 수익용기본재산과 체육장기준면적(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주체의 경우에는 학교설립계획승인시에 포함된 것을 말한다)에 관하여는 종전의 학교법인의학교경영재산기준령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와 각종 학교등의체육장기준에관한규칙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산업체의근로청소년의교육을위한특별학급등의설치기준령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중 “ 학교설립인가사무처리규칙 ”을 “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시행규칙 ”으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학교설립인가사무처리규칙, 학교법인의학교경영재산기준령시행규칙, 각종학교등의체육장기준에관한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95호,2001. 11. 20.>

이 규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2008. 3. 4.>(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3호 및 제5호 중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을 각각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으로 한다.

③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 <제93호,2011. 2. 9.>(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사학기관재무ㆍ회계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을 “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별표 3에 따른 ”으로 한다.

**부칙** <제1호,2013. 3. 2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3호 및 제5호 중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을 각각 " 교육부장관 "으로 한다.

④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제58호,2015. 3.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설립계획서 등의 제출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2조에 따라 학교설립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학교설립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4조제1항에 따라 학교설립의 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학교설립 인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3조**(제출기간등의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에 따른 시ㆍ도 교육규칙이 없는 경우에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1조에 따른다.

**부칙** <제109호,2016. 11.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호,2017. 1.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개정 2016. 11. 3.>

공제비용의 세부 내용 및 범위 등(제10조제2항 관련)

| 구 분 | 세 부 내 용 및 범 위 |
|---|---|
| 1. 제세공과금 | 해당 수익용기본재산에 부과되는 세금 및 보험료 등 |
| 2. 학교법인운영필요경비 | 가. 세부 내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br>1) 이사회의 회의비 및 직원 인건비 등 학교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것으로 교육감이 인정하는 비용(이하 "운영비용"이라 한다)<br>2) 해당 수익용기본재산의 수익 유지에 필요한 것으로 교육감이 인정하는 비용(이하 "수익비용"이라 한다)<br>나. 범위: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의 합계<br>1) 운영비용: 교육감이 실제 학교법인의 운영에 소요되거나 소요될 비용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금액. 다만,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총수입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후 남는 금액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br>2) 수익비용: 교육감이 실제 수익용기본재산의 수익 유지에 소요되거나 소요될 비용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금액 |
| 3. 법정부담경비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당 학교법인에서 부담하는 경비 |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신설 2015.3.5.>

# 학교설립계획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특수학교) 3개월<br>(사인이 설립하는 유치원 또는 이미 학교법인을 설립한 법인의 학교설립) 2개월 |
|---|---|---|---|

| | | |
|---|---|---|
| 설립자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 주소 | |

| | | | | | | | | | |
|---|---|---|---|---|---|---|---|---|---|
| 신청 내용 | 종류 | [ ] 유치원, [ ] 초등학교, [ ] 중학교, [ ] 고등학교,<br>[ ] 공민학교, [ ] 고등공민학교, [ ] 고등기술학교,<br>[ ] 기타(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 특수학교 | | | | | | | |
| | 목적 | | | | | | | | |
| | 명칭 | | | | | | | | |
| | 위치 | | | | | | | | |
| | 개교(원)예정일 | | | | | | | | |
| | 학생 정원 | 유치원 | 구분 | 만3세 | 만4세 | 만5세 | 만3·4세 | 만4·5세 | 계 |
| | | | 학급수 | | | | | | |
| | | | 학생수 | | | | | | |
| | | 유치원 이외의 학교 | 계열별 | | 학과 | | 학생정원 | | |
| | | | | | | | 입학정원 | 총정원 | |
| | | | | | | | | | |

| | | | |
|---|---|---|---|
| 위임받은 사람의 정보 (위임 신청시) | 성명 | 생년월일 | 설립자와의 관계 |
| | 주소 | | 전화번호 |
| | 위임받은 사람 (서명 또는 인) | 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15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학교설립계획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접수기관의 장 귀하

210㎜× 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 | |
|---|---|---|
| 제출서류 | 1. 교지(校地) 확보계획서 1부<br>2. 교사(校舍) 건축계획서 1부<br>3. 소요경비 조달계획서 1부<br>4. 설립자의 이력서(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이력서) 1부<br>5. 설립자의 재산명세서 및 재산확보계획서 각 1부<br>6. 학교법인을 새로 설립하여 학교를 설립·경영하려는 경우에는 학교법인 설립허가신청서와 그 첨부서류 각 1부<br>7. 이미 학교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 학교를 설립·경영하려는 경우<br>가. 정관 변경계획서(변경사유 및 신구대조표 포함) 1부<br>나. 관련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br>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서류 각 1부<br>라.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 설립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예산서 첨부) 1부<br>8. 「초·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학교, 특성화중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학교헌장 1부 | 수수료<br>없음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 설립자가 사인(私人)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증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br>2.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작성방법

○ 회색 음영으로 표현된 부분(접수번호, 접수일)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 신청내용 중 학교종류는 설립하고자 하는 해당 학교급의 [ ] 안에 "√"표시를 합니다.
단, 각종학교의 경우 기타의 [ ] 안에 "√"표시를 하고, 학교 중에서 해당 각종학교가 준하는 급(유치원 제외)의 [ ] 안에도 "√"표시를 함께 합니다.
*유치원은 유치원에만 "√"표시를 합니다.

○ 신청인의 제출서류와 관련하여
- 1.~5.에 해당하는 서식은 접수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접수기관에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 학교법인을 설립하여 학교를 설립·경영하려는 경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이미 학교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6.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 신청인이 설립자의 위임을 받은 경우
- 위임받은 사람과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처리 | → | 통보<br>(승인 여부 등) |
|---|---|---|---|---|---|---|
| 신청인 | | 접수기관 | 이송 | 처리기관(부서) | | |

※ 접수기관별로 적절하게 조정 가능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17. 1. 18.] [교육부령 제116호, 2017. 1. 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3. 5.>

**제2조(학교설립계획서 등의 제출)**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2항 본문에 따라 사립의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공민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고등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 또는 특수학교를 설립ㆍ경영하려는 자는 매년 3월 31일까지 학교의 종류ㆍ목적ㆍ명칭ㆍ위치ㆍ개교예정일 및 학생정원 등을 기재한 별지 서식의 학교설립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시ㆍ도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학교,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이하 "특성화중학교"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등학교"라 한다)를 설립ㆍ경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첨부서류 외에 영 제16조에 따른 학교헌장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5.>

1. 교지(校地) 확보계획서
2. 교사(校舍) 건축계획서
3. 소요경비 조달계획서
4. 설립자의 이력서(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이력서)
5. 설립자의 재산명세서 및 재산확보계획서

②제1항제1호의 개교예정일은 학교설립계획서의 제출일부터 3년이내이어야 한다.

③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을 새로 설립하여 각급학교 또는 특수학교를 설립ㆍ경영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학교설립계획서에 같은 항에 따른 첨부서류 및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학교법인의 설립허가신청서와 그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5.>

④ 학교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자가 각급학교 또는 특수학교를 설립ㆍ경영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학교설립계획서에 같은 항에 따른 첨부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5. 3. 5.>

1. 정관변경계획서(변경사유서 및 신ㆍ구대조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2. 관련 이사회회의록 사본
3.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서류
4.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설립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예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⑤ 시·도교육감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학교설립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5. 3. 5.>

1. 설립·경영자가 사인(私人)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증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2. 설립·경영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제3조(학교법인 설립허가 등의 통보)** 시·도교육감은 제2조제1항에 따라 학교설립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여부, 제2조제3항에 따라 학교법인의 설립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 여부를 각각 제출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인이 유치원을 설립하는 경우와 학교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운 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학교설립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3. 5.]

**제4조(시설 등의 확보와 설립인가 신청)** ① 제3조에 따라 학교설립계획의 승인 통보를 받은 자 또는 영 제15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가 학교설립 인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에 따른 교사의 사용승인(유치원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말한다)을 받은 후에 신청하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조(유치원의 경우에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을 말한다)에 따른 학교설립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개교예정일 6개월(유치원의 경우에는 4개월. 다만,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가 영 제15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전까지 시·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설립하려는 학교의 시설·설비기준에 따른 시설·설비를 모두 확보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3. 5., 2017. 1. 18.>

1. 인가 후 보충할 시설의 연도별 보충계획
2. 연도별 교육시설·설비 확보계획에 관한 이행상황보고서

②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학교설립 인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그 기한 내에 설립인가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립인가신청서의 제출을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2015. 3. 5.>

③시·도교육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기기간이 경과하여도 학교의 설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학교설립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1. 11. 20.>

[제목개정 2015. 3. 5.]

**제5조(학교 설립인가의 통보 등)** ① 시·도교육감은 제4조에 따라 학교설립 인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인가 여부를 개교예정일 3개월 이전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유치원의 경우에는 학교설립 인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개정 2015. 3. 5.>

②시ㆍ도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설립의 인가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시설등의 확보여부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5. 3. 5.]

**제6조(학교의 위치 변경인가 신청)** 각급학교 또는 특수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자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조제2항(유치원의 경우에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4항을 말한다)에 따라 학교의 위치 변경인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교사와 교지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교사와 교지를 갖추기 전에 학교의 위치변경계획서를 시ㆍ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1. 20., 2015. 3. 5.>

[제목개정 2015. 3. 5.]

**제7조(취소권의 유보)** 시ㆍ도교육감이 학교설립을 인가할 때에는 인가후 보충할 시설의 연도별 보충계획에 따른 시설보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한다는 부관을 붙여야 한다.

**제8조(수익용기본재산의 범위)** ①영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안에 위치한 각급학교 및 특수학교가 연차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01. 11. 20.>

1. 학교설립 인가시 : 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이하 이 항에서 "수익용기본재산"이라 한다)의 50퍼센트 이상
2. 학교설립인가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2월 31일까지 : 수익용기본재산의 75퍼센트 이상
3. 학교설립인가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다음 연도 12월 31일까지 : 수익용기본재산의 100퍼센트

②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으로서 수익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개정 2001. 11. 20., 2008. 3. 4., 2013. 3. 23., 2015. 3. 5.>

1. 토지
2. 건물
3. 주식(공개법인 또는 상장법인의 주식)
4. 정기예금, 금전신탁 또는 그 밖에 원금이 보장되는 금융상품
5. 국채ㆍ공채

③ 제2항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의 가액(價額)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개정 2015. 3. 5.>

1.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재산: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된 가액 중에서 학교법인이 정한 것
   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

다.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

2.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서 정한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

**제9조(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의 범위)** ①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은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산출된 해당 학년도별 학교회계 운영수익의 총액으로 한다. 다만, 학급ㆍ학과 또는 학생정원을 증설 또는 증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 11. 3.>

$$\text{증설 또는 증원하는 연도의 직전연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 + \left( \frac{\text{증설 또는 증원하는 연도의 직전연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 \times 0.5}{\text{증설 또는 증원하는 연도의 직전연도 학급 수 또는 학생 수}} \times \text{증설되는 학급 수 또는 증원되는 학생 수} \right)$$

※ 학급 수와 학생 수가 동시에 증가하는 경우에는 학급 수를 기준으로 한다.

② 학교회계 운영수익은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별표 3(이하 "세입표"라 한다)에 따른 학교세입 합계액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6. 11. 3.>

1. 세입표 제1장제4관에 따른 그 밖의 이전수입
2. 세입표 제2장제1관제1항제3목에 따른 학교운영지원비
3. 세입표 제2장제1관제2항에 따른 수익자부담수입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성화중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 중 시ㆍ도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의 경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사립학교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수입액(이하 "보조금수입액"이라 한다)을 뺀 금액을 학교회계 운영수익으로 한다.<신설 2016. 11. 3.>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2015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비학교법인 특수학교에서 학교법인 특수학교로 전환하거나 전환을 신청한 특수학교 중 시ㆍ도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조금수입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뺀 금액을 학교회계 운영수익으로 한다.<신설 2015. 3. 5., 2016. 11. 3.>

1. 전환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간: 보조금수입액 전부
2. 제1호에 따른 기간이 종료한 이후부터 4년간: 보조금수입액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의 비율에 따른 일부
   가. 1년: 100분의 80
   나. 2년: 100분의 60
   다. 3년: 100분의 40

라. 4년: 100분의 20

**제10조(수익의 범위 등)** ①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익은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총수입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호의 비용은 시·도교육감이 해당 학교법인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수입에서 학교법인 운영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공제한다. <개정 2016. 11. 3.>

1. 제세공과금
2. 학교법인운영필요경비
3. 법정부담경비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비용의 세부 내용 및 범위 등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6. 11. 3.>

[제목개정 2001. 11. 20.]

**제11조(제출기간등의 조정)** 시·도교육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5조까지에 규정된 기간을 해당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3. 5.>

**부칙** <제700호,1997. 10. 1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학교설립인가사무처리규칙, 학교법인의학교경영재산기준령시행규칙 및 각종학교등의체육장기준에관한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특성화 고등학교의 설립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①1998학년도 1학기 개교를 예정으로 특성화 고등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한에 불구하고 교사의 주요구조부의 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개교예정일 3월이전까지 학교설립계획서의 제출과 학교법인 설립허가신청 및 학교설립인가신청를 함께 할 수 있다.

②시·도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설립인가신청등을 받은 때에는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한에 불구하고 당해학교의 개교예정일 2월이전까지 승인·허가 및 인가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기존의 학교법인 및 각급학교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설립인가기준에 의하여 학교설립계획승인을 얻고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한 설립주체의 학교설립인가에 관하여는 종전의 학교설립인가사무처리규칙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설립된 학교법인 및 각급학교의 기존의 수익용기본재산과 체육장기준면적(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주체의 경우에는 학교설립계획승인시에 포함된 것을 말한다)에 관하여는 종전의 학교법인의학교경영재산기준령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와 각종 학교등의체육장기준에관한규칙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산업체의근로청소년의교육을위한특별학급등의설치기준령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중 " 학교설립인가사무처리규칙 " 을 "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시행규칙 " 으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학교설립인가사무처리규칙, 학교법인의학교경영재산기준령시행규칙, 각종학교등의체육장기준에관한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95호,2001. 11. 20.>

이 규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2008. 3. 4.>(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3호 및 제5호 중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 을 각각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으로 한다.

③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 <제93호,2011. 2. 9.>(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사학기관재무ㆍ회계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 을 "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별표 3에 따른 " 으로 한다.

**부칙** <제1호,2013. 3. 2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3호 및 제5호 중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을 각각 “ 교육부장관 ” 으로 한다.

④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제58호,2015. 3.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설립계획서 등의 제출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2조에 따라 학교설립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학교설립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4조제1항에 따라 학교설립의 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학교설립 인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3조**(제출기간등의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에 따른 시ㆍ도 교육규칙이 없는 경우에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1조에 따른다.

**부칙** <제109호,2016. 11.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호,2017. 1.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개정 2016. 11. 3.>

공제비용의 세부 내용 및 범위 등(제10조제2항 관련)

| 구 분 | 세 부 내 용 및 범 위 |
|---|---|
| 1. 제세공과금 | 해당 수익용기본재산에 부과되는 세금 및 보험료 등 |
| 2. 학교법인운영필요경비 | 가. 세부 내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br>1) 이사회의 회의비 및 직원 인건비 등 학교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것으로 교육감이 인정하는 비용(이하 "운영비용"이라 한다)<br>2) 해당 수익용기본재산의 수익 유지에 필요한 것으로 교육감이 인정하는 비용(이하 "수익비용"이라 한다)<br>나. 범위: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의 합계<br>1) 운영비용: 교육감이 실제 학교법인의 운영에 소요되거나 소요될 비용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금액. 다만,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총수입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후 남는 금액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br>2) 수익비용: 교육감이 실제 수익용기본재산의 수익 유지에 소요되거나 소요될 비용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금액 |
| 3. 법정부담경비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당 학교법인에서 부담하는 경비 |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신설 2015.3.5.>

# 학교설립계획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특수학교) 3개월<br>(사인이 설립하는 유치원 또는 이미 학교법인을 설립한 법인의 학교설립) 2개월 |
|---|---|---|---|

| | | |
|---|---|---|
| 설립자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 주소 | |

| | | | | | | | | | |
|---|---|---|---|---|---|---|---|---|---|
| 신청 내용 | 종류 | [ ] 유치원, [ ] 초등학교, [ ] 중학교, [ ] 고등학교,<br>[ ] 공민학교, [ ] 고등공민학교, [ ] 고등기술학교,<br>[ ] 기타(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 특수학교 | | | | | | | |
| | 목적 | | | | | | | | |
| | 명칭 | | | | | | | | |
| | 위치 | | | | | | | | |
| | 개교(원)예정일 | | | | | | | | |
| | 학생 정원 | 유치원 | 구분 | 만3세 | 만4세 | 만5세 | 만3·4세 | 만4·5세 | 계 |
| | | | 학급수 | | | | | | |
| | | | 학생수 | | | | | | |
| | | 유치원 이외의 학교 | 계열별 | | 학과 | | 학생정원 | | |
| | | | | | | | 입학정원 | 총정원 | |
| | | | | | | | | | |

| | | | |
|---|---|---|---|
| 위임받은 사람의 정보 (위임 신청시) | 성명 | 생년월일 | 설립자와의 관계 |
| | 주소 | | 전화번호 |
| | 위임받은 사람 (서명 또는 인) | 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15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학교설립계획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접수기관의 장 귀하

210㎜× 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 | |
|---|---|---|
| 제출서류 | 1. 교지(校地) 확보계획서 1부<br>2. 교사(校舍) 건축계획서 1부<br>3. 소요경비 조달계획서 1부<br>4. 설립자의 이력서(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이력서) 1부<br>5. 설립자의 재산명세서 및 재산확보계획서 각 1부<br>6. 학교법인을 새로 설립하여 학교를 설립·경영하려는 경우에는 학교법인 설립허가신청서와 그 첨부서류 각 1부<br>7. 이미 학교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 학교를 설립·경영하려는 경우<br>가. 정관 변경계획서(변경사유 및 신구대조표 포함) 1부<br>나. 관련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br>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서류 각 1부<br>라.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 설립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예산서 첨부) 1부<br>8. 「초·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학교, 특성화중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학교헌장 1부 | 수수료<br>없음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 설립자가 사인(私人)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증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br>2.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작성방법

○ 회색 음영으로 표현된 부분(접수번호, 접수일)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 신청내용 중 학교종류는 설립하고자 하는 해당 학교급의 [ ] 안에 "√"표시를 합니다.
단, 각종학교의 경우 기타의 [ ] 안에 "√"표시를 하고, 학교 중에서 해당 각종학교가 준하는 급(유치원 제외)의 [ ] 안에도 "√"표시를 함께 합니다.
*유치원은 유치원에만 "√"표시를 합니다.

○ 신청인의 제출서류와 관련하여
- 1.~5.에 해당하는 서식은 접수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접수기관에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 학교법인을 설립하여 학교를 설립·경영하려는 경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이미 학교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6.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 신청인이 설립자의 위임을 받은 경우
- 위임받은 사람과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처리 | → | 통보<br>(승인 여부 등) |
|---|---|---|---|---|---|---|
| 신청인 | | 접수기관 | 이송 | 처리기관(부서) | | |

※ 접수기관별로 적절하게 조정 가능

#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 2017. 6. 22.] [법률 제14609호, 2017. 3. 21., 타법개정]

국방부 (교육훈련정책과) 02 - 748 - 6243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군의 항공과학 분야 부사관이 될 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공군에 둔다.

**제3조(수업연한)** 학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제4조(입학자격)**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초·중등교육법」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 입학자격이 있는 자로서 15세 이상 17세 미만인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할 수 없다.

1. 「군인사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학칙이 규정하는 신체기준에 미달한 자

**제5조(병적)** 학생은 입학한 날에 부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한다.

**제6조(교육과정)** ①학교의 교육과정은 군사학 과정과 일반학 과정으로 구성된다. 이 경우 교육과정의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일반학 과정은 「초·중등교육법」제45조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 교육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③일반학 과정의 교육과정 및 시설·설비에 관하여는 「초·중등교육법」제4조 및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교장과 교직원)** ①학교에 교장과 교직원으로 부교장, 교관 및 행정직원을 둔다.

②교장은 공군의 장성급(將星級) 또는 영관급 장교 중에서 공군참모총장의 제청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보한다.<개정 2017. 3. 21.>

③교직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군인 및 군무원으로 한다.

**제8조(교직원의 자격 및 임용)** 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일반학 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관의 자격에 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일반학 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관은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9조(부서의 설치)** ①학교에 군사교육과·보통교육과 및 전문교육과를 둔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를 폐합 또는 증설하거나 과 외의 필요

한 부서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의 설치ㆍ폐합 또는 증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졸업자의 임용 등)** 3년의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는 「군인사법」제3조의 규정에 따른 공군의 하사로 임용한다. 이 경우 복무는 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장기복무로 한다.

**제11조(자격인정)** 학교를 졸업한 자는 「초ㆍ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본다.

**제12조(학교운영위원회)** ①다음 각 호의 학교운영 사항에 관하여 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둔다.

1. 교육계획 심의에 관한 사항
2. 신입생 선발 및 퇴교 심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교운영의 중요한 정책에 관한 사항

②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개정 2014. 3. 11.>

1. 학부모위원
2. 교직원위원
3. 지역위원

③위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본조신설 2014. 3. 11.]

**부칙** <제7899호,2006. 3. 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여학생의 모집시기에 관한 특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여학생의 모집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 (종전의 공군기술고등학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군기술고등학교 설치법」에 의한 공군기술고등학교는 이 법에 따른 학교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공군기술고등학교의 교과과정과 학생ㆍ교장 및 교직원 등은 이 법에 따른 학교의 교과과정과 학생ㆍ교장 및 교직원 등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군기술고등학교 설치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852호,2008. 2. 29.>(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70> 까지 생략

<171>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 을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으로 한다.

<17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690호,2013. 3. 23.>(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37>까지 생략

<138>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을 " 교육부장관 " 으로 한다.

<13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398호,2014. 3.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구성되는 학교운영위원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609호,2017. 3. 21.>(군인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 장관급 " 을 " 장성급(將星級) " 으로 한다.

③부터1(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 2017. 6. 22.] [법률 제14609호, 2017. 3. 2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군의 항공과학 분야 부사관이 될 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공군에 둔다.

**제3조(수업연한)** 학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제4조(입학자격)**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초·중등교육법」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 입학자격이 있는 자로서 15세 이상 17세 미만인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할 수 없다.

1. 「군인사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학칙이 규정하는 신체기준에 미달한 자

**제5조(병적)** 학생은 입학한 날에 부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한다.

**제6조(교육과정)** ①학교의 교육과정은 군사학 과정과 일반학 과정으로 구성된다. 이 경우 교육과정의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일반학 과정은 「초·중등교육법」제45조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 교육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③일반학 과정의 교육과정 및 시설·설비에 관하여는 「초·중등교육법」제4조 및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교장과 교직원)** ①학교에 교장과 교직원으로 부교장, 교관 및 행정직원을 둔다.

②교장은 공군의 장성급(將星級) 또는 영관급 장교 중에서 공군참모총장의 제청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보한다.<개정 2017. 3. 21.>

③교직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군인 및 군무원으로 한다.

**제8조(교직원의 자격 및 임용)** 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일반학 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관의 자격에 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일반학 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관은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9조(부서의 설치)** ①학교에 군사교육과·보통교육과 및 전문교육과를 둔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를 폐합 또는 증설하거나 과 외의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의 설치ㆍ폐합 또는 증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졸업자의 임용 등)** 3년의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는 「군인사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공군의 하사로 임용한다. 이 경우 복무는 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장기복무로 한다.

**제11조(자격인정)** 학교를 졸업한 자는 「초ㆍ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본다.

**제12조(학교운영위원회)** ①다음 각 호의 학교운영 사항에 관하여 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둔다.

1. 교육계획 심의에 관한 사항
2. 신입생 선발 및 퇴교 심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교운영의 중요한 정책에 관한 사항

②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개정 2014. 3. 11.>

1. 학부모위원
2. 교직원위원
3. 지역위원

③위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본조신설 2014. 3. 11.]

**부칙** <제7899호,2006. 3. 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여학생의 모집시기에 관한 특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여학생의 모집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 (종전의 공군기술고등학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군기술고등학교 설치법」에 의한 공군기술고등학교는 이 법에 따른 학교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공군기술고등학교의 교과과정과 학생ㆍ교장 및 교직원 등은 이 법에 따른 학교의 교과과정과 학생ㆍ교장 및 교직원 등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군기술고등학교 설치법」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852호,2008. 2. 29.>(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70> 까지 생략

<171>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을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으로 한다.

<17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690호,2013. 3. 23.>(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37>까지 생략

<138>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을 " 교육부장관 "으로 한다.

<13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398호,2014. 3.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구성되는 학교운영위원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609호,2017. 3. 21.>(군인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 장관급 ” 을 “ 장성급(將星級) ” 으로 한다.

③부터1(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

[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

국방부 (교육훈련정책과) 02 - 748 - 6243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장 등)** ①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이하 “ 학교 ”라 한다)에 교장과 부교장 각 1인을 둔다.

②교장은 공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개정 2019. 7. 2.>

③부교장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와 그 밖의 행정을 관장하고,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부교장의 임용)** 부교장은 공군의 영관급 장교 중에서 공군참모총장이 보한다.

**제4조(과의 분장사무 등)** ①「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이하 “ 법 ”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과ㆍ보통교육과 및 전문교육과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군사교육과 : 군사학 과정의 교육ㆍ군사훈련 및 훈육에 관한 사항
2. 보통교육과 : 일반학 과정 중 보통교육과목의 교육에 관한 사항
3. 전문교육과 : 일반학 과정 중 전문교육과목의 교육에 관한 사항

②교장은 필요한 경우 과의 폐합 또는 증설 그 밖에 필요한 부서의 설치에 따른 분장사무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부서의 장)**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과 또는 부서에는 과장 또는 부서의 장을 두고, 과장 및 부서의 장은 학교에 소속하는 공군의 장교 또는 군무원 중에서 교장이 보한다.

②과장 및 부서의 장은 소속 상관의 명을 받아 담당업무를 처리하고, 그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조(교관)** ①학교에 군사학 교관 및 일반학 교관을 둔다.

②군사학 교관은 군사학 과정인 군사학과목의 교육, 군사훈련 및 훈육을, 일반학 교관은 일반학 과정인 보통교육과목 및 전문교육과목의 교육을 각각 분장한다.

③군사학 교관은 교장이 보하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④일반학 교관은 교장의 추천에 따라 공군참모총장의 제청으로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국방부장관이 임용하며, 그 배치기준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7조(교직원)** ①학교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군인과 군무원은 소속 상관의 명을 받아 담당업무를 처리한다.

**제8조(학생의 선발 등)** ①학생은 입학을 지원하는 자 중에서 공개경쟁 시험을 거쳐 선발한다.
②학생의 편입학과 전학은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9조(생활적응교육)** ①교장은 입학예정자에 대하여 입학일 전에 학교생활의 적응에 필요한 예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예비교육의 기간과 교육내용은 학교장이 정하며, 그 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한 급식과 피복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퇴학사유)** ①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퇴학시킬 수 있다.
1. 군기(軍紀)를 문란하게 하거나 학칙 그 밖의 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자
2. 성적이 불량하여 졸업의 가망이 없는 자
3. 질병 그 밖의 심신장애로 계속하여 학업을 수행하기 곤란한 자
4. 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자

②제1항에 따라 퇴학된 자는 그 퇴학된 날에 부사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적된다.

**제11조(다른 학교에서의 교육)** 교장은 공군참모총장의 승인을 받아 학생을 공군의 다른 학교나 부대에 파견하여 교육시킬 수 있다.

**제12조(학년과정 수료 등)** 학생의 학년과정 수료와 졸업의 인정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취득성적을 고려하여 행한다.

**제13조(교육과목)** 학교의 군사학 과정의 교육과목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칙으로 정하고, 일반학 과정의 교육과목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수업일수)** 학교의 군사학 과정의 수업일수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칙으로 정하고, 일반학 과정의 수업일수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임시휴업)** ①교장은 비상재해 그 밖의 급박한 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임시휴업을 명한 때에는 이를 즉시 공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학칙)** ①교장은 공군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칙을 정한다.
②국방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학칙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개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17조(학칙 기재사항)** 제16조의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년ㆍ학기와 휴업일에 관한 사항

2. 학급편제와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교과와 수업일수에 관한 사항
4. 교사와 학년과정수료의 인정에 관한 사항
5. 입학ㆍ퇴학ㆍ휴학ㆍ졸업과 상벌에 관한 사항
6.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제18조(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①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그 밖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9821호,2007. 1. 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여학생의 모집시기) 법률 제7899호 공군기술고등학교설치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여학생의 모집은 2008학년도부터 실시한다.

**부칙** <제20675호,2008. 2. 29.>(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및 제16조제2항 전단 중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을 각각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으로 한다.
⑧ 부터3) 까지 생략

**부칙** <제24413호,2013. 3. 23.>(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및 제16조제2항 전단 중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을 각각 “ 교육부장관 ”으로 한다.
④부터3@ 까지 생략

**부칙** <제29950호,2019. 7. 2.>(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

[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장 등)** ①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교장과 부교장 각 1인을 둔다.

②교장은 공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개정 2019. 7. 2.>

③부교장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와 그 밖의 행정을 관장하고,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부교장의 임용)** 부교장은 공군의 영관급 장교 중에서 공군참모총장이 보한다.

**제4조(과의 분장사무 등)** ①「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과·보통교육과 및 전문교육과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군사교육과 : 군사학 과정의 교육·군사훈련 및 훈육에 관한 사항
2. 보통교육과 : 일반학 과정 중 보통교육과목의 교육에 관한 사항
3. 전문교육과 : 일반학 과정 중 전문교육과목의 교육에 관한 사항

②교장은 필요한 경우 과의 폐합 또는 증설 그 밖에 필요한 부서의 설치에 따른 분장사무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부서의 장)**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과 또는 부서에는 과장 또는 부서의 장을 두고, 과장 및 부서의 장은 학교에 소속하는 공군의 장교 또는 군무원 중에서 교장이 보한다.

②과장 및 부서의 장은 소속 상관의 명을 받아 담당업무를 처리하고, 그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조(교관)** ①학교에 군사학 교관 및 일반학 교관을 둔다.

②군사학 교관은 군사학 과정인 군사학과목의 교육, 군사훈련 및 훈육을, 일반학 교관은 일반학 과정인 보통교육과목 및 전문교육과목의 교육을 각각 분장한다.

③군사학 교관은 교장이 보하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④일반학 교관은 교장의 추천에 따라 공군참모총장의 제청으로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국방부장관이 임용하며, 그 배치기준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7조(교직원)** ①학교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군인과 군무원은 소속 상관의 명을 받아 담당업무를 처리한다.

**제8조(학생의 선발 등)** ①학생은 입학을 지원하는 자 중에서 공개경쟁 시험을 거쳐 선발한다.
②학생의 편입학과 전학은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9조(생활적응교육)** ①교장은 입학예정자에 대하여 입학일 전에 학교생활의 적응에 필요한 예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예비교육의 기간과 교육내용은 학교장이 정하며, 그 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한 급식과 피복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퇴학사유)** ①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퇴학시킬 수 있다.
1. 군기(軍紀)를 문란하게 하거나 학칙 그 밖의 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자
2. 성적이 불량하여 졸업의 가망이 없는 자
3. 질병 그 밖의 심신장애로 계속하여 학업을 수행하기 곤란한 자
4. 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자

②제1항에 따라 퇴학된 자는 그 퇴학된 날에 부사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적된다.

**제11조(다른 학교에서의 교육)** 교장은 공군참모총장의 승인을 받아 학생을 공군의 다른 학교나 부대에 파견하여 교육시킬 수 있다.

**제12조(학년과정 수료 등)** 학생의 학년과정 수료와 졸업의 인정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취득성적을 고려하여 행한다.

**제13조(교육과목)** 학교의 군사학 과정의 교육과목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칙으로 정하고, 일반학 과정의 교육과목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수업일수)** 학교의 군사학 과정의 수업일수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칙으로 정하고, 일반학 과정의 수업일수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임시휴업)** ①교장은 비상재해 그 밖의 급박한 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임시휴업을 명한 때에는 이를 즉시 공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학칙)** ①교장은 공군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칙을 정한다.
②국방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학칙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개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17조(학칙 기재사항)** 제16조의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년ㆍ학기와 휴업일에 관한 사항

2. 학급편제와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교과와 수업일수에 관한 사항
4. 교사와 학년과정수료의 인정에 관한 사항
5. 입학ㆍ퇴학ㆍ휴학ㆍ졸업과 상벌에 관한 사항
6.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제18조(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①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그 밖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9821호,2007. 1. 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여학생의 모집시기) 법률 제7899호 공군기술고등학교설치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여학생의 모집은 2008학년도부터 실시한다.

**부칙** <제20675호,2008. 2. 29.>(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및 제16조제2항 전단 중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을 각각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으로 한다.
⑧ 부터3) 까지 생략

**부칙** <제24413호,2013. 3. 23.>(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및 제16조제2항 전단 중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을 각각 “ 교육부장관 ”으로 한다.
④부터3@ 까지 생략

**부칙** <제29950호,2019. 7. 2.>(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과학 · 수학 · 정보 교육 진흥법

[시행 2018. 4. 25.] [법률 제14903호, 2017. 10. 24., 전부개정]

교육부 (인공지능교육진흥과) 044 - 203 - 7085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환경의 변화에 대비하는 핵심 교과인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융합형 인재 양성에 기여함으로써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가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이란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과학ㆍ수학ㆍ정보에 관한 교육을 말한다.
2.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에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원을 양성하는 학교
   다. 교육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교육연수기관, 학생수련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등
3.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원”이란 교육기관에서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 및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과학 · 수학 · 정보 교육의 기본방향)** ① 과학교육환경은 과학적 소양, 과학적 지식ㆍ탐구능력 및 과학적 창의력을 키울 수 있도록 조성되어야 한다.

② 수학교육환경은 수학적 소양, 수학적 지식ㆍ문제해결능력 및 수학적 창의력을 키울 수 있도록 조성되어야 한다.

③ 정보교육환경은 정보문화 소양, 정보적 지식ㆍ문제해결능력 및 컴퓨팅 사고력을 키울 수 있도록 조성되어야 한다.

④ 과학ㆍ수학ㆍ정보의 교과별 교육과 더불어 두 교과 이상의 융합을 통하여 창의적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이 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2.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원의 양성ㆍ확보ㆍ처우 및 전문성 강화
3.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을 위한 교재ㆍ교육자료(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개발ㆍ보급 및 실험ㆍ실습 시설의 확충
4. 과학ㆍ수학ㆍ정보의 교육과정과 교육프로그램 개발
5. 원격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을 위한 기반 구축
6. 과학관, 수학관 등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관련 전시ㆍ체험시설의 설치ㆍ운영
7. 실험실습비, 연구조성비 및 장학금의 지급
8.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연구단체의 지원
9.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을 위한 각종 청소년 행사의 개최 및 지원
10. 그 밖에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는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에 관한 시책의 추진이 부진하거나 예산 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증액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연구시설의 이용)** ① 교육기관은 과학ㆍ수학ㆍ정보에 관한 연구ㆍ실험 및 학습을 위하여 시설의 이용이 필요한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영ㆍ공영 기업체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시설의 이용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이용에 관한 요구를 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융합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①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융합위원회(이하 "융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에 관한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ㆍ융합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본정책과 종합계획에 대한 이행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그 밖에 융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연구기관의 지정)**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평가에 관한 연구
2. 창의적 융합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평가에 관한 연구
3.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의 교재ㆍ교육자료 개발
4. 원격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5.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운영

6.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
7. 그 밖에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에 필요한 업무

**제9조(재정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기관 및 교육 연구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및 교원의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에 관한 탐구활동과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을 위한 교재ㆍ교육자료ㆍ전용교실의 확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교육기관이 교재ㆍ교육자료를 확보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교육기관이 전용교실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재ㆍ교육자료 및 제2항에 따른 전용교실의 종류 및 기준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이 정한다.

**제11조(국제협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외국정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관련 기관, 훈련기관, 연구기관, 산업체 등과의 국제협력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에 관한 정보 교류
2.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원 및 관련 전문가 교류 및 연수
3.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과 관련된 각종 활동에의 참가
4. 그 밖에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에 필요한 국제협력의 증진

**제12조(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요청)**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부칙** <제14903호,2017. 10.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과학교육 진흥법」 또는 그 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과학 · 수학 · 정보 교육 진흥법

[시행 2018. 4. 25.] [법률 제14903호, 2017. 10. 24.,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환경의 변화에 대비하는 핵심 교과인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융합형 인재 양성에 기여함으로써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가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이란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과학ㆍ수학ㆍ정보에 관한 교육을 말한다.
2.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에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원을 양성하는 학교
   다. 교육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교육연수기관, 학생수련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등
3.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원”이란 교육기관에서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 및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과학 · 수학 · 정보 교육의 기본방향)** ① 과학교육환경은 과학적 소양, 과학적 지식ㆍ탐구능력 및 과학적 창의력을 키울 수 있도록 조성되어야 한다.

② 수학교육환경은 수학적 소양, 수학적 지식ㆍ문제해결능력 및 수학적 창의력을 키울 수 있도록 조성되어야 한다.

③ 정보교육환경은 정보문화 소양, 정보적 지식ㆍ문제해결능력 및 컴퓨팅 사고력을 키울 수 있도록 조성되어야 한다.

④ 과학ㆍ수학ㆍ정보의 교과별 교육과 더불어 두 교과 이상의 융합을 통하여 창의적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이 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2.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원의 양성ㆍ확보ㆍ처우 및 전문성 강화
3.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을 위한 교재ㆍ교육자료(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개발ㆍ보급 및 실험ㆍ실습 시설의 확충
4. 과학ㆍ수학ㆍ정보의 교육과정과 교육프로그램 개발
5. 원격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을 위한 기반 구축
6. 과학관, 수학관 등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관련 전시ㆍ체험시설의 설치ㆍ운영
7. 실험실습비, 연구조성비 및 장학금의 지급
8.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연구단체의 지원
9.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을 위한 각종 청소년 행사의 개최 및 지원
10. 그 밖에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는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에 관한 시책의 추진이 부진하거나 예산 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증액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연구시설의 이용)** ① 교육기관은 과학ㆍ수학ㆍ정보에 관한 연구ㆍ실험 및 학습을 위하여 시설의 이용이 필요한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영ㆍ공영 기업체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시설의 이용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이용에 관한 요구를 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융합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①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융합위원회(이하 “융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에 관한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ㆍ융합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본정책과 종합계획에 대한 이행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그 밖에 융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연구기관의 지정)**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평가에 관한 연구
2. 창의적 융합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평가에 관한 연구
3.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의 교재ㆍ교육자료 개발
4. 원격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5.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운영
6.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

7. 그 밖에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에 필요한 업무

**제9조(재정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기관 및 교육 연구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및 교원의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에 관한 탐구활동과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을 위한 교재ㆍ교육자료ㆍ전용교실의 확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교육기관이 교재ㆍ교육자료를 확보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교육기관이 전용교실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재ㆍ교육자료 및 제2항에 따른 전용교실의 종류 및 기준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이 정한다.

**제11조(국제협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외국정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관련 기관, 훈련기관, 연구기관, 산업체 등과의 국제협력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에 관한 정보 교류
2.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원 및 관련 전문가 교류 및 연수
3.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과 관련된 각종 활동에의 참가
4. 그 밖에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에 필요한 국제협력의 증진

**제12조(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요청)**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부칙** <제14903호,2017. 10.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과학교육 진흥법」 또는 그 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과학 · 수학 · 정보 교육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8호, 2025. 12. 30., 타법개정]

교육부 (인공지능교육진흥과) 044 - 203 - 7085

**제1조(목적)** 이 영은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학 · 수학 · 정보 교육융합위원회의 구성)** ①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융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교육부차관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위원장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 10. 1., 2025. 12. 30.>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3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 교육부
   다. 기획예산처
   라.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 중앙행정기관
2.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또는 창의적 융합교육 분야의 학계 전문가 및 교원 등 관련 전문성이 있는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위원의 해촉)** 교육부장관은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필요한 경우 5명 이상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의 회의 전에 해당 사안을 미리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직무 수행을 위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28798호,2018. 4.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과학교육진흥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과학교육진흥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5802호,2025. 10. 1.>(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다. 교육부
③부터1^ 까지 생략

**부칙** <제35948호,2025. 12. 30.>(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가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가목 및 나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기획예산처

1^ 부터 <176>까지 생략

# 과학 · 수학 · 정보 교육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8호, 2025. 12. 30.,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학 · 수학 · 정보 교육융합위원회의 구성)** ①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융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교육부차관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위원장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 10. 1., 2025. 12. 30.>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3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 교육부
   다. 기획예산처
   라.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 중앙행정기관
2.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또는 창의적 융합교육 분야의 학계 전문가 및 교원 등 관련 전문성이 있는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위원의 해촉)** 교육부장관은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필요한 경우 5명 이상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의 회의 전에 해당 사안을 미리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직무 수행을 위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28798호,2018. 4.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과학교육진흥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과학교육진흥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5802호,2025. 10. 1.>(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다. 교육부
③부터1^ 까지 생략

**부칙** <제35948호,2025. 12. 30.>(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가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가목 및 나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기획예산처

1^ 부터 <176>까지 생략

※ 본 법령은 공포 후 시행전 개정된 사항을 모두 포함한 법령이며, 개별 시행일별로 공포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연혁' 또는 조문 앞의 '연' 아이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

[시행 2007. 2. 9.] [교육인적자원부령 제900호, 2007. 2. 9., 일부개정]

교육부 (학교정책과) 044 - 203 - 668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 2. 13., 2005. 1. 19.>

**제2조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 2. 13., 2001. 2. 15., 2004. 2. 10., 2005. 1. 19., 2007. 2. 9.>

1. 서울특별시
2. 부산광역시
3. 대구광역시
4. 인천광역시
5. 광주광역시
6. 대전광역시
7. 울산광역시
8. 경기도 수원시·성남시·안양시·부천시·고양시·군포시·과천시 및 의왕시
9. 충청북도 청주시
10. 전라북도 전주시·익산시 및 군산시
11. 전라남도 목포시·여수시 및 순천시

11의2. 경상북도 포항시

12. 경상남도 창원시·마산시·진주시 및 김해시
13. 제주특별자치도(종전의 제주시 일원에 한한다)

**부칙** <제653호,1994. 8.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9호,1999. 2.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0호,2001. 2.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8호,2004. 2.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2호,2005. 1.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0호,2007. 2.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본 법령은 공포 후 시행전 개정된 사항을 모두 포함한 법령이며, 개별 시행일별로 공포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연혁' 또는 조문 앞의 '연' 아이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

[시행 2007. 2. 9.] [교육인적자원부령 제900호, 2007. 2. 9.,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 2. 13., 2005. 1. 19.>

**제2조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 2. 13., 2001. 2. 15., 2004. 2. 10., 2005. 1. 19., 2007. 2. 9.>

1. 서울특별시
2. 부산광역시
3. 대구광역시
4. 인천광역시
5. 광주광역시
6. 대전광역시
7. 울산광역시
8. 경기도 수원시·성남시·안양시·부천시·고양시·군포시·과천시 및 의왕시
9. 충청북도 청주시
10. 전라북도 전주시·익산시 및 군산시
11. 전라남도 목포시·여수시 및 순천시

11의2. 경상북도 포항시

12. 경상남도 창원시·마산시·진주시 및 김해시
13. 제주특별자치도(종전의 제주시 일원에 한한다)

**부칙** <제653호,1994. 8.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9호,1999. 2.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0호,2001. 2.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8호,2004. 2.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2호,2005. 1.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0호,2007. 2.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 2021. 10. 14.] [법률 제17995호, 2021. 4. 13., 일부개정]

국방부 (교육훈련정책과) 02 - 748 - 6244

**제1조(설치의 목적)** 군(軍)의 간호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간호사관학교를 둔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2조(수업연한)** 국군간호사관학교(이하 "간호사관학교"라 한다)의 수업연한(修業年限)은 4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3조(입학 자격)** 간호사관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 9. 1., 2021. 4. 13.>

1. 17세 이상 21세 미만으로서 미혼일 것. 다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연령 상한을 연장한다.
2.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고등교육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학력이 있을 것
4. 학칙으로 정하는 신체기준에 적합할 것

[전문개정 2010. 3. 17.]

**제4조(군적)** 간호사관학교에 입학한 사람은 입학한 날에 사관생도의 군적(軍籍)에 편입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5조(교과과정)** ① 간호사관학교의 교과는 군사학과정과 일반학과정으로 나누되, 군사학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일반학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교과과정은 학위를 수여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신설 2019. 4. 23.>
③ 제1항의 일반학과정과 그 시설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중 대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9. 4. 23.>
[전문개정 2010. 3. 17.]

**제6조(교장 등의 임용)** ① 간호사관학교에는 교장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공무원[군인, 군무원(軍務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둔다.
② 교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개정 2017. 3. 21.>

[전문개정 2010. 3. 17.]

**제7조(교수 등의 자격 및 임용)** ① 제6조제1항의 공무원 중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의 직종(職種) 및 자격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16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가운데 교수 및 부교수는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조교수는 교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며, 조교는 교장이 임명한다.<개정 2011. 7. 21.>
③ 대통령은 제2항에 따른 교수 및 부교수의 임명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7조의2(「교육공무원법」 등의 준용)** 일반학 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중 군인ㆍ군무원이 아닌 사람은 특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임용기간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을 준용하며, 보수ㆍ연수ㆍ신분보장ㆍ징계 및 소청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6. 2. 3.>
[본조신설 2013. 3. 22.]

**제8조(졸업자의 임용)** ① 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간호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소위(少尉)로 임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위로 임용되지 아니한 사람은 군적에서 제적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9조(졸업자의 자격)** 제8조제1항에 따라 소위로 임용된 사람에게는 간호학사 학위를 수여하되, 그 절차와 등록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10조** 삭제 <1994. 12. 31.>

**제11조** 삭제 <2010. 3. 17.>

**부칙** <제2828호,1975.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재학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군간호학교령에 의한 국군간호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되는 국군간호학교에 재학하는 자로 본다.
③(졸업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군간호학교령에 의한 국군간호학교에 재학중인 자에 대하여는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하며, 이 법 시행이전에 국군간호학교령에 의한 국군간호학교(동령 부칙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간호학교를 포함한다)를 졸업하고 간호장교로 임용된 자에게도 간호계전문학교졸업자격을 인정하고 이중 이 법 시행당시 군에 복무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3247호,1980. 1. 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재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국군간호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이 법에 의한 국군간호사관학교에 재학하는 자로 본다.

③(졸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국군간호학교를 졸업하고 간호계전문학교졸업자격이 부여된 자는 이 법에 의한 국군간호사관학교졸업자에 준하여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 편입학할 수 있다.

**부칙** <제3267호,1980. 12. 4.>

①(시행일) 이 법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재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제1학년 및 제2학년에 재학중인 자는 이 법에 의한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제1학년 및 제2학년에 각각 재학하는 자로 본다.

**부칙** <제4268호,1990. 12. 27.>(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7조제2항중 " 문교부장관 " 을 각각 " 교육부장관 " 으로 한다.

⑩내지5) 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제4839호,1994. 12. 31.>(군인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6400호,2001. 1. 29.>(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4% 생략

4^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7조제2항중 " 교육부장관 " 을 각각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 으로 한다.

4& 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7084호,2004. 1. 2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남자사관생도의 모집시기에 관한 특례) 제3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간호사관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남자사관생도의 모집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8852호,2008. 2. 29.>(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71> 까지 생략

<172>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 을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으로 한다.

<17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103호,2010. 3. 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66호,2011. 7. 21.>(고등교육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 전임강사 및 조교 ”를 “ 조교 ”로 한다.

⑥부터2&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1637호,2013. 3.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공무원법」 등의 준용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일반학 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690호,2013. 3. 23.>(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39>까지 생략

<140>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을 “ 교육부장관 ”으로 한다.

<14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500호,2015. 9. 1.>

이 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36호,2016. 2. 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중 “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을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으로 한다.

④부터 ⑧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4609호,2017. 3. 21.>(군인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 장관급 " 을 " 장성급(將星級) " 으로 한다.

⑤부터1(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6348호,2019. 4. 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95호,2021. 4. 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 2021. 10. 14.] [법률 제17995호, 2021. 4. 13., 일부개정]

**제1조(설치의 목적)** 군(軍)의 간호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간호사관학교를 둔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2조(수업연한)** 국군간호사관학교(이하 “간호사관학교”라 한다)의 수업연한(修業年限)은 4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3조(입학 자격)** 간호사관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 9. 1., 2021. 4. 13.>

1. 17세 이상 21세 미만으로서 미혼일 것. 다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연령 상한을 연장한다.
2.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고등교육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학력이 있을 것
4. 학칙으로 정하는 신체기준에 적합할 것

[전문개정 2010. 3. 17.]

**제4조(군적)** 간호사관학교에 입학한 사람은 입학한 날에 사관생도의 군적(軍籍)에 편입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5조(교과과정)** ① 간호사관학교의 교과는 군사학과정과 일반학과정으로 나누되, 군사학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일반학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교과과정은 학위를 수여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신설 2019. 4. 23.>
③ 제1항의 일반학과정과 그 시설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중 대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9. 4. 23.>
[전문개정 2010. 3. 17.]

**제6조(교장 등의 임용)** ① 간호사관학교에는 교장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공무원[군인, 군무원(軍務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둔다.
② 교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개정 2017. 3. 21.>
[전문개정 2010. 3. 17.]

**제7조(교수 등의 자격 및 임용)** ① 제6조제1항의 공무원 중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의 직종(職種) 및 자격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16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가운데 교수 및 부교수는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조교수는 교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며, 조교는 교장이 임명한다.<개정 2011. 7. 21.>
③ 대통령은 제2항에 따른 교수 및 부교수의 임명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7조의2(「교육공무원법」 등의 준용)** 일반학 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중 군인ㆍ군무원이 아닌 사람은 특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임용기간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을 준용하며, 보수ㆍ연수ㆍ신분보장ㆍ징계 및 소청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6. 2. 3.>
[본조신설 2013. 3. 22.]

**제8조(졸업자의 임용)** ① 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간호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소위(少尉)로 임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위로 임용되지 아니한 사람은 군적에서 제적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9조(졸업자의 자격)** 제8조제1항에 따라 소위로 임용된 사람에게는 간호학사 학위를 수여하되, 그 절차와 등록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10조** 삭제 <1994. 12. 31.>

**제11조** 삭제 <2010. 3. 17.>

**부칙** <제2828호,1975.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재학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군간호학교령에 의한 국군간호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되는 국군간호학교에 재학하는 자로 본다.
③(졸업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군간호학교령에 의한 국군간호학교에 재학중인 자에 대하여는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하며, 이 법 시행이전에 국군간호학교령에 의한 국군간호학교(동령 부칙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간호학교를 포함한다)를 졸업하고 간호장교로 임용된 자에게도 간호계전문학교졸업자격을 인정하고 이중 이 법 시행당시 군에 복무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3247호,1980. 1. 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재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국군간호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이 법에 의한 국군간호사관학교에 재학하는 자로 본다.

③(졸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국군간호학교를 졸업하고 간호계전문학교졸업자격이 부여된 자는 이 법에 의한 국군간호사관학교졸업자에 준하여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 편입학할 수 있다.

**부칙** <제3267호,1980. 12. 4.>

①(시행일) 이 법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재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제1학년 및 제2학년에 재학중인 자는 이 법에 의한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제1학년 및 제2학년에 각각 재학하는 자로 본다.

**부칙** <제4268호,1990. 12. 27.>(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7조제2항중 " 문교부장관 " 을 각각 " 교육부장관 " 으로 한다.

⑩내지5) 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제4839호,1994. 12. 31.>(군인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6400호,2001. 1. 29.>(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4% 생략

4^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7조제2항중 " 교육부장관 " 을 각각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 으로 한다.

4& 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7084호,2004. 1. 2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남자사관생도의 모집시기에 관한 특례) 제3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간호사관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남자사관생도의 모집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8852호,2008. 2. 29.>(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71> 까지 생략

<172>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 을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으로 한다.

<17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103호,2010. 3. 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66호,2011. 7. 21.>(고등교육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 전임강사 및 조교 ”를 “ 조교 ”로 한다.

⑥부터2&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1637호,2013. 3.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공무원법」 등의 준용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일반학 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690호,2013. 3. 23.>(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39>까지 생략

<140>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을 “ 교육부장관 ”으로 한다.

<14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500호,2015. 9. 1.>

이 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36호,2016. 2. 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중 “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을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으로 한다.

④부터 ⑧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4609호,2017. 3. 21.>(군인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 장관급 " 을 " 장성급(將星級) " 으로 한다.

⑤부터1(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6348호,2019. 4. 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95호,2021. 4. 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시행 2026. 4. 7.] [대통령령 제36240호, 2026. 4. 7., 일부개정]

국방부 (교육훈련정책과) 02 - 748 - 6244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라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2. 8.]

**제2조(위치)** 국군간호사관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위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로 한다.
[전문개정 2011. 2. 8.]

**제3조(사관생도)** ① 학교에서 수학하는 사람을 "사관생도"라 한다.
② 사관생도의 대우는 준사관(準士官)에 준한다. 다만, 보수에 관하여는 「군인보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 2. 8.]

**제4조(교장 등)** ① 학교에 교장 외에 부교장 1명을 두며, 부교장은 간호과의 영관급장교 중에서 임명한다.
② 교장은 학교의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부교장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1. 2. 8.]

**제5조(부서의 설치 등)** ① 학교에 교수부·생도대 및 행정부를 두며, 그 밖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② 각 부서에는 각각 장(長)을 두며, 교수부장·생도대장 및 행정부장은 영관급장교 중에서 임명하고, 그 밖의 부서의 장은 영관급장교 또는 위관급장교 중에서 임명한다.
③ 교수부는 군사학과정 및 일반학과정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생도대는 훈육과 그 밖에 교수부가 분장하는 교육 외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행정부는 인사행정·보급과 그 밖에 다른 부서가 분장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④ 제1항의 그 밖에 필요한 부서의 설치 및 사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 2. 8.]

**제6조(교관 등)** 학교에 군사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관을 두며,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이하 "일반학교관"이라 한다)와 시간강사 및 조교를 둔다.
<개정 2012. 2. 29.>

[전문개정 2011. 2. 8.]
[제목개정 2026. 4. 7.]

**제6조의2(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 ① 대통령은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 및 부교수의 임명권을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 10. 14.>
② 제1항에 따라 임명권을 위임받은 국방부장관은 교장이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육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제청하는 사람 중에서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 및 부교수를 임명한다.<개정 2013. 3. 18., 2026. 4. 7.>
[전문개정 2011. 2. 8.]

**제7조(정원)** ① 학교에 군인 및 군무원을 두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 일반학교관, 시간강사 및 조교의 배치기준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학"은 "국군간호사관학교"로, "학생"은 "사관생도"로 본다.
[전문개정 2026. 4. 7.]

**제8조(입학 등)** ① 사관생도의 입학ㆍ퇴학 및 휴학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장이 허가한다.
② 사관생도는 입학 지원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시험을 거쳐 선발한다.
③ 사관생도의 입학 시기는 학년 초부터 30일 내로 한다.
[전문개정 2011. 2. 8.]

**제8조의2(입학연령 상한 연장)** 법 제3조제1호 단서에 따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이하 "제대군인"이라 한다)에 대한 입학연령 상한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연장한다.
1.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3세
2.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2세
3.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1세
[본조신설 2021. 10. 14.]

**제9조** 삭제 <2004. 9. 9.>

**제10조(임시 입학)** ① 교장은 예비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입학 예정자를 입학기일 전에 임시 입학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임시 입학기간은 50일을 초과하지 못하며, 임시 입학한 사람에게는 급식과 의복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1. 2. 8.]

**제11조(교과)** 학교의 교과는 학칙으로 정하며, 일반학과정의 교과는 대학의 교과에 준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11. 2. 8.]

**제12조(과정 수료의 단위)** 학교 과정 수료의 단위는 학년으로 하며, 학기의 구분은 대학의 학기에 준한다.
[전문개정 2011. 2. 8.]

**제13조(수업일수)** 학교의 수업일수는 학칙으로 정하며, 일반학과정의 수업일수는 대학의 수업일수에 준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11. 2. 8.]

**제14조(수업의 시작 및 종료 시각)** 수업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은 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 2. 8.]

**제15조(휴업일 등)** ① 학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학칙에서 정하는 하기 및 동기 휴가와 개교기념일
3.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군(軍) 행사일

② 교장은 비상재해 또는 그 밖의 급박한 사태가 발생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임시 휴업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2. 8.]

**제16조(편입학 등)** 사관생도의 편입학과 전학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 2. 8.]

**제17조(학년과정 수료 등)** 사관생도의 학년과정 수료와 졸업을 인정하려면 그 학년의 성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2. 8.]

**제18조(퇴학 사유)** ① 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관생도를 퇴학시킬 수 있다.
1. 품행이 매우 불량한 사관생도
2. 군기(軍紀)를 문란하게 하거나 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관생도
3. 학업성적의 불량 등으로 졸업할 가능성이 없는 사관생도
4. 질병이나 그 밖의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정해진 과정을 이수할 수 없는 사관생도

② 제1항에 따라 퇴학된 사관생도는 그 퇴학된 날에 군적(軍籍)에서 제적된다.
[전문개정 2011. 2. 8.]

**제19조(학칙)** ① 교장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칙을 정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학칙을 승인하려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개정 2013. 3. 23.>

③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학년ㆍ학기와 휴업일에 관한 사항
2. 학급 편제와 사관생도의 정원에 관한 사항
3. 교과 및 수업일수에 관한 사항
4. 평가와 학년과정 수료의 인정에 관한 사항
5. 입학ㆍ퇴학ㆍ휴학 및 졸업과 상벌에 관한 사항
6. 졸업 자격에 관한 사항
7. 제20조에 따른 교육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학교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1. 2. 8.]

**제20조(교육운영위원회)** ① 교육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해 교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학교에 교육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교장이 된다.<개정 2026. 4. 7.>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26. 4. 7.>

1. 교수부장, 생도대장 및 행정부장
2. 교장이 지명하는 교관 등 군인 또는 군무원(학교에 소속된 사람에 한정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항 각 호의 위원 중 선임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26. 4. 7.>

⑥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개정 2026. 4. 7.>

[전문개정 2011. 2. 8.]

**제21조(남자사관생도의 모집 시기)** 법 제3조제1호 및 법률 제7084호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 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른 국군간호사관학교 남자사관생도의 모집은 2012학년도부터 실시한다. <개정 2021. 10. 14.>

[본조신설 2011. 6. 15.]

**제2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조에 따른 입학 자격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에 따른 학위 수여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4. 8. 6.]

**부칙** <제8028호,1976. 3. 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국군간호학교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9763호,1980. 2. 1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43호,1981. 1. 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282호,1991. 2. 1.>(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14>생략
<115>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중 " 문교부장관 " 을 " 교육부장관 " 으로 한다.
<116>내지 <148>생략

**부칙** <제17115호,2001. 1. 29.>(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71>생략
<72>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전단중 " 교육부장관 " 을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 으로 한다.
<73>내지 <152>생략

**부칙** <제18539호,2004. 9.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75호,2008. 2. 29.>(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전단 중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을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으로 한다.

② 부터3) 까지 생략

**부칙** <제22658호,2011. 2. 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973호,2011. 6. 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644호,2012. 2. 29.>(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1& 까지 생략

1*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 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 "를 " 부교수 및 조교수 "로 한다.

1( 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4401호,2013. 3. 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413호,2013. 3. 23.>(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전단 중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을 “ 교육부장관 ” 으로 한다.

⑥부터3@ 까지 생략

**부칙** <제25532호,2014. 8. 6.>(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033호,2021. 10. 14.>

이 영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240호,2026. 4.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시행 2026. 4. 7.] [대통령령 제36240호, 2026. 4.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라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2. 8.]

**제2조(위치)** 국군간호사관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위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로 한다.
[전문개정 2011. 2. 8.]

**제3조(사관생도)** ① 학교에서 수학하는 사람을 "사관생도"라 한다.
② 사관생도의 대우는 준사관(準士官)에 준한다. 다만, 보수에 관하여는 「군인보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 2. 8.]

**제4조(교장 등)** ① 학교에 교장 외에 부교장 1명을 두며, 부교장은 간호과의 영관급장교 중에서 임명한다.
② 교장은 학교의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부교장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1. 2. 8.]

**제5조(부서의 설치 등)** ① 학교에 교수부·생도대 및 행정부를 두며, 그 밖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② 각 부서에는 각각 장(長)을 두며, 교수부장·생도대장 및 행정부장은 영관급장교 중에서 임명하고, 그 밖의 부서의 장은 영관급장교 또는 위관급장교 중에서 임명한다.
③ 교수부는 군사학과정 및 일반학과정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생도대는 훈육과 그 밖에 교수부가 분장하는 교육 외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행정부는 인사행정·보급과 그 밖에 다른 부서가 분장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④ 제1항의 그 밖에 필요한 부서의 설치 및 사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 2. 8.]

**제6조(교관 등)** 학교에 군사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관을 두며,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이하 "일반학교관"이라 한다)와 시간강사 및 조교를 둔다. <개정 2012. 2. 29.>
[전문개정 2011. 2. 8.]

[제목개정 2026. 4. 7.]

**제6조의2(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 ① 대통령은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 및 부교수의 임명권을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 10. 14.>

② 제1항에 따라 임명권을 위임받은 국방부장관은 교장이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육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제청하는 사람 중에서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 및 부교수를 임명한다.<개정 2013. 3. 18., 2026. 4. 7.>

[전문개정 2011. 2. 8.]

**제7조(정원)** ① 학교에 군인 및 군무원을 두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 일반학교관, 시간강사 및 조교의 배치기준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학”은 “국군간호사관학교”로, “학생”은 “사관생도”로 본다.

[전문개정 2026. 4. 7.]

**제8조(입학 등)** ① 사관생도의 입학ㆍ퇴학 및 휴학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장이 허가한다.

② 사관생도는 입학 지원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시험을 거쳐 선발한다.

③ 사관생도의 입학 시기는 학년 초부터 30일 내로 한다.

[전문개정 2011. 2. 8.]

**제8조의2(입학연령 상한 연장)** 법 제3조제1호 단서에 따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이하 “제대군인”이라 한다)에 대한 입학연령 상한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연장한다.

1.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3세
2.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2세
3.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1세

[본조신설 2021. 10. 14.]

**제9조** 삭제 <2004. 9. 9.>

**제10조(임시 입학)** ① 교장은 예비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입학 예정자를 입학기일 전에 임시 입학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임시 입학기간은 50일을 초과하지 못하며, 임시 입학한 사람에게는 급식과 의복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1. 2. 8.]

**제11조(교과)** 학교의 교과는 학칙으로 정하며, 일반학과정의 교과는 대학의 교과에 준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11. 2. 8.]

**제12조(과정 수료의 단위)** 학교 과정 수료의 단위는 학년으로 하며, 학기의 구분은 대학의 학기에 준한다.
[전문개정 2011. 2. 8.]

**제13조(수업일수)** 학교의 수업일수는 학칙으로 정하며, 일반학과정의 수업일수는 대학의 수업일수에 준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11. 2. 8.]

**제14조(수업의 시작 및 종료 시각)** 수업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은 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 2. 8.]

**제15조(휴업일 등)** ① 학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학칙에서 정하는 하기 및 동기 휴가와 개교기념일
3.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군(軍) 행사일

② 교장은 비상재해 또는 그 밖의 급박한 사태가 발생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임시 휴업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2. 8.]

**제16조(편입학 등)** 사관생도의 편입학과 전학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 2. 8.]

**제17조(학년과정 수료 등)** 사관생도의 학년과정 수료와 졸업을 인정하려면 그 학년의 성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2. 8.]

**제18조(퇴학 사유)** ① 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관생도를 퇴학시킬 수 있다.
1. 품행이 매우 불량한 사관생도
2. 군기(軍紀)를 문란하게 하거나 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관생도
3. 학업성적의 불량 등으로 졸업할 가능성이 없는 사관생도
4. 질병이나 그 밖의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정해진 과정을 이수할 수 없는 사관생도

② 제1항에 따라 퇴학된 사관생도는 그 퇴학된 날에 군적(軍籍)에서 제적된다.
[전문개정 2011. 2. 8.]

**제19조(학칙)** ① 교장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칙을 정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학칙을 승인하려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개정 2013. 3. 23.>

③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학년ㆍ학기와 휴업일에 관한 사항
2. 학급 편제와 사관생도의 정원에 관한 사항
3. 교과 및 수업일수에 관한 사항
4. 평가와 학년과정 수료의 인정에 관한 사항
5. 입학ㆍ퇴학ㆍ휴학 및 졸업과 상벌에 관한 사항
6. 졸업 자격에 관한 사항
7. 제20조에 따른 교육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학교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1. 2. 8.]

**제20조(교육운영위원회)** ① 교육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해 교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학교에 교육운영위원회(이하 “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교장이 된다.<개정 2026. 4. 7.>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26. 4. 7.>
1. 교수부장, 생도대장 및 행정부장
2. 교장이 지명하는 교관 등 군인 또는 군무원(학교에 소속된 사람에 한정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항 각 호의 위원 중 선임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26. 4. 7.>
⑥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개정 2026. 4. 7.>
[전문개정 2011. 2. 8.]

**제21조(남자사관생도의 모집 시기)** 법 제3조제1호 및 법률 제7084호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 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른 국군간호사관학교 남자사관생도의 모집은 2012학년도부터 실시한다. <개정 2021. 10. 14.>
[본조신설 2011. 6. 15.]

**제2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조에 따른 입학 자격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에 따른 학위 수여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4. 8. 6.]

**부칙** <제8028호,1976. 3. 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국군간호학교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9763호,1980. 2. 1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43호,1981. 1. 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282호,1991. 2. 1.>(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14>생략
<115>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중 " 문교부장관 " 을 " 교육부장관 " 으로 한다.
<116>내지 <148>생략

**부칙** <제17115호,2001. 1. 29.>(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71>생략
<72>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전단중 " 교육부장관 " 을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 으로 한다.
<73>내지 <152>생략

**부칙** <제18539호,2004. 9.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75호,2008. 2. 29.>(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전단 중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 을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으로 한다.

② 부터3) 까지 생략

**부칙** <제22658호,2011. 2. 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973호,2011. 6. 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644호,2012. 2. 29.>(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1& 까지 생략

1*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 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 ” 를 “ 부교수 및 조교수 ” 로 한다.

1( 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4401호,2013. 3. 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413호,2013. 3. 23.>(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전단 중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을 “ 교육부장관 ” 으로 한다.

⑥부터3@ 까지 생략

**부칙** <제25532호,2014. 8. 6.>(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033호,2021. 10. 14.>

이 영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240호,2026. 4.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국립 각급 학교 관인규칙

[시행 2021. 3. 22.] [교육부령 제234호, 2021. 3. 22., 일부개정]

교육부 (운영지원과) 044 - 203 - 61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4조제2항에 따라 국립 각급 학교에서 사용하는 관인의 규격 및 등록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3. 22.>
[전문개정 2012. 7. 17.]

**제2조(관인의 규격)** 국립 각급 학교의 관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며,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2. 7. 17.]

**제3조(관인의 재료)** 관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7. 17.]

**제4조(관인의 내용)** ① 관인의 글자는 국민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개정 2019. 9. 17., 2021. 3. 22.>
②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에 따른 특수한 업무 처리에 사용하는 관인은 해당 관인의 하단부에 폭 5밀리미터의 여백을 두고 선을 긋고 그 여백에 "민원업무전용" 등의 표시를 하여 해당 업무의 내용을 분명히 밝히도록 한다. <개정 2021. 3. 22.>
[전문개정 2012. 7. 17.]
[제목개정 2021. 3. 22.]

**제5조(직인의 사용)** 직인은 그 직(職)의 서리(署理)도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7. 17.]

**제6조(찍는 위치)** 관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 글자가 인영(印影: 도장을 찍은 모양)의 가운데에 오도록 찍는다. 다만,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 사용하는 직인은 발급기관장 명칭의 끝 글자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개정 2021. 3. 22.>
[전문개정 2012. 7. 17.]

**제6조의2(관인 인영의 색)** 관인 인영의 색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검은색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7. 17.]

**제7조(등록 및 관리)** ① 국립 각급 학교의 관인의 인영은 해당 학교의 관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은 해당 학교의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관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사용하지 못한다.

③ 국립 각급 학교는 제1항에 따라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인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각각 그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을 등록하여 관리해야 한다.<개정 2021. 3. 22.>

④ 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는 국립 각급 학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 담당부서가 전자이미지관인대장을 관리하며, 정보화 담당부서가 전자이미지관인을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할 때에는 문서 담당부서의 공무원이 관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관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관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⑥ 국립 각급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서 전자이미지관인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1. 3. 22.>

[전문개정 2012. 7. 17.]

**제8조(재등록 및 폐기)** ① 국립 각급 학교는 관인이 분실되거나 닳아 없어지는 등의 사유로 관인을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학교에 관인을 재등록해야 한다. 이 경우 관인대장 또는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재등록 사유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3. 22.>

② 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는 국립 각급 학교는 관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관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관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관인으로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는 국립 각급 학교는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국립 각급 학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학교의 통폐합이나 폐쇄 등의 사유로 관인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관인대장 또는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관인 폐기일과 폐기 사유 등을 적고, 폐기되는 관인은 제9조에 따른 관인 폐기 공고문과 함께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2.>

[전문개정 2012. 7. 17.]

**제9조(공고)** 국립 각급 학교는 영 제39조에 따라 관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사실을 관보에 공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이 경우 전자이미지관인의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관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1. 3. 22.>

1. 관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등록ㆍ재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관인의 폐기 연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4. 공고 기관의 장
[전문개정 2012. 7. 17.]

**제10조(인영의 인쇄 사용)** ① 업무 처리를 주관하는 과(課)ㆍ담당관 등(이하 “처리과”라 한다)의 장은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관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려면 미리 해당 관인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한 후 해당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처리과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관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3호서식의 관인인쇄용지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그 사용 명세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7. 17.]

**부칙** <제606호,1991. 10. 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용중인 관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ㆍ등록되어 사용중인 관인은 이 규칙에 의하여 교부ㆍ등록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에 의하여 관인의 규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관인의 교부기관은 1991년 12월 31일까지 변경된 관인을 해당학교에 재교부하여야 한다.
③(다른 법령의 폐지) 국립및공립제학교관인규격에관한건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646호,1994. 3.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9호,2001. 1. 31.>(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본문ㆍ제1호ㆍ제2호중 “교육부”를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⑬내지4! 생략

**부칙** <제823호,2003. 12. 31.>

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호,2008. 9. 29.>(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직인의 구분란 제1호 중 "방송통신대학"을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 <제75호,2010. 9.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 중인 관인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국립 및 공립의 전문대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관인은 새로운 관인을 등록할 때까지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립 초·중등학교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3항 중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을 "「국립 및 공립 각급학교 관인규칙」"으로 한다.

**부칙** <제153호,2012. 7.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호,2016. 4. 20.>(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88호,2019. 9. 17.>(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4호,2021. 3.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국립 각급 학교 관인규칙 [별표] <개정 2012.7.17>

## 국립 각급 학교의 관인 규격(제2조 관련)

| 관인의 구분 | 한 변의 길이<br>(단위: ㎝) |
|---|---|
|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기술대학 및 각종학교의 장의 직인 | 3 |
|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 및 「국립학교 설치령」 제6조에 따른 단과대학의 장의 직인 | 2.7 |
|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중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의 장의 직인 | 2.4 |

■ 국립 각급 학교 관인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2.7.17>

# 관 인 대 장

| | | | | | |
|---|---|---|---|---|---|
| 관인 명칭 | | | | | |
| 종류 | [ ]청인(廳印) [ ] 직인 [ ] 특수 관인 | | | 관리부서 | |
| [ ] 등록<br>[ ] 재등록 | (인 영) | 등 록 일<br>(재등록일) | 년 월 일 | | |
| | | 새긴 날짜 | 년 월 일 | | |
| | | 새긴 사람 | 주소:<br>성명 및 상호:<br>생년월일: | | |
| | | 최초 사용일 | 년 월 일 | | |
| | | 재 료 | | | |
| | | 등록(재등록) 사유 | | | |
| | | 관보 공고 | 년 월 일<br>공고 제 - 호 | | |
| | | 비 고 | | | |
| 폐 기 | (인 영) | 등 록 일<br>(재등록일) | 년 월 일 | | |
| | | 폐 기 일<br>(분실일) | 년 월 일 | | |
| | | 폐기 사유 | [ ] 닳음 [ ] 분실 [ ] 기타( ) | | |
| | | 폐기 방법 | [ ] 이관 [ ] 기타( ) | | |
| | | 폐기한 또는 분실한 사람 | 소속:<br>직급: 성명: | | |
| | | 관보 공고 | 년 월 일<br>공고 제 - 호 | | |
| | | 비 고 | | | |

< 작성방법 >

1. 관인을 처음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 ] 등록란에 "√" 표를, 재등록하는 경우에는 [ ] 재등록란에 "√" 표시를 한다.
2. 비고란에는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210mm×297mm(백상지 150g/㎡)

■ 국립 각급 학교 관인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2.7.17>

# 전자이미지관인대장

<table>
<tr><td>관인 명칭</td><td colspan="5"></td></tr>
<tr><td>종류</td><td colspan="5">[ ] 청인(廳印) [ ] 직인 [ ] 특수 관인</td></tr>
<tr><td rowspan="9">[ ] 등록<br>[ ] 재등록</td><td rowspan="4">전자이미지관인 인영</td><td>등록일(재등록일)</td><td colspan="3">년 월 일</td></tr>
<tr><td>등록(재등록) 사유</td><td colspan="3"></td></tr>
<tr><td>관리부서</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4">전자이미지관인 사용 기관(부서) 현황</td></tr>
<tr><td rowspan="5">전자이미지관인 등록 당시 관인의 인영</td><td>사용 기관(부서)</td><td>시스템 명칭</td><td>통보일</td><td>최초 사용일</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비고</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9">폐기</td><td rowspan="9">전자이미지관인 인영</td><td>폐기일</td><td colspan="3">년 월 일</td></tr>
<tr><td>폐기 사유</td><td colspan="3"></td></tr>
<tr><td>폐기한 사람</td><td colspan="3">소속: 직급: 성명:</td></tr>
<tr><td colspan="4">전자이미지관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td></tr>
<tr><td>사용 기관(부서)</td><td>시스템 명칭</td><td>통보일</td><td>최종 사용일</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6">< 작성 방법 ><br>1. 최초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 ] 등록 관인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경우에는 [ ] 재등록 관인란에 √표를 한다.<br>2. 비고란에는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br>3.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관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td></tr>
</table>

210mm×297mm(백상지 150g/㎡)

■ 국립 각급 학교 관인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 4. 20.>

# 관인인쇄용지 관리대장

| 인쇄문서명 | | | |
|---|---|---|---|
| 관인명 | | 인쇄관인규격 | |

| 일자 | 인쇄량(장) | 사용량(장) | 사용명세 | 잔여량(장) | 확인(서명) |
|---|---|---|---|---|---|
| | | | | | |

210㎜ × 297㎜[백상지(150g/㎡)]

# 국립 각급 학교 관인규칙

[시행 2021. 3. 22.] [교육부령 제234호, 2021. 3. 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4조제2항에 따라 국립 각급 학교에서 사용하는 관인의 규격 및 등록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3. 22.>
[전문개정 2012. 7. 17.]

**제2조(관인의 규격)** 국립 각급 학교의 관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며,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2. 7. 17.]

**제3조(관인의 재료)** 관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7. 17.]

**제4조(관인의 내용)** ① 관인의 글자는 국민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개정 2019. 9. 17., 2021. 3. 22.>
②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에 따른 특수한 업무 처리에 사용하는 관인은 해당 관인의 하단부에 폭 5밀리미터의 여백을 두고 선을 긋고 그 여백에 "민원업무전용" 등의 표시를 하여 해당 업무의 내용을 분명히 밝히도록 한다. <개정 2021. 3. 22.>
[전문개정 2012. 7. 17.]
[제목개정 2021. 3. 22.]

**제5조(직인의 사용)** 직인은 그 직(職)의 서리(署理)도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7. 17.]

**제6조(찍는 위치)** 관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 글자가 인영(印影: 도장을 찍은 모양)의 가운데에 오도록 찍는다. 다만,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 사용하는 직인은 발급기관장 명칭의 끝 글자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개정 2021. 3. 22.>
[전문개정 2012. 7. 17.]

**제6조의2(관인 인영의 색)** 관인 인영의 색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검은색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7. 17.]

**제7조(등록 및 관리)** ① 국립 각급 학교의 관인의 인영은 해당 학교의 관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은 해당 학교의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관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사용하지 못한다.
③ 국립 각급 학교는 제1항에 따라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인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각각 그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을 등록하여 관리해야 한다.<개정 2021. 3. 22.>
④ 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는 국립 각급 학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 담당부서가 전자이미지관인대장을 관리하며, 정보화 담당부서가 전자이미지관인을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할 때에는 문서 담당부서의 공무원이 관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관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관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⑥ 국립 각급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서 전자이미지관인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1. 3. 22.>
[전문개정 2012. 7. 17.]

**제8조(재등록 및 폐기)** ① 국립 각급 학교는 관인이 분실되거나 닳아 없어지는 등의 사유로 관인을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학교에 관인을 재등록해야 한다. 이 경우 관인대장 또는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재등록 사유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3. 22.>
② 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는 국립 각급 학교는 관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관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관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관인으로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는 국립 각급 학교는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국립 각급 학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학교의 통폐합이나 폐쇄 등의 사유로 관인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관인대장 또는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관인 폐기일과 폐기 사유 등을 적고, 폐기되는 관인은 제9조에 따른 관인 폐기 공고문과 함께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2.>
[전문개정 2012. 7. 17.]

**제9조(공고)** 국립 각급 학교는 영 제39조에 따라 관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사실을 관보에 공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이 경우 전자이미지관인의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관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1. 3. 22.>
1. 관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등록ㆍ재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관인의 폐기 연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4. 공고 기관의 장

[전문개정 2012. 7. 17.]

**제10조(인영의 인쇄 사용)** ① 업무 처리를 주관하는 과(課)ㆍ담당관 등(이하 “처리과”라 한다)의 장은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관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려면 미리 해당 관인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한 후 해당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처리과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관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3호서식의 관인인쇄용지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그 사용 명세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7. 17.]

**부칙** <제606호,1991. 10. 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용중인 관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ㆍ등록되어 사용중인 관인은 이 규칙에 의하여 교부ㆍ등록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에 의하여 관인의 규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관인의 교부기관은 1991년 12월 31일까지 변경된 관인을 해당학교에 재교부하여야 한다.

③(다른 법령의 폐지) 국립및공립제학교관인규격에관한건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646호,1994. 3.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9호,2001. 1. 31.>(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본문ㆍ제1호ㆍ제2호중 “교육부”를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⑬내지4! 생략

**부칙** <제823호,2003. 12. 31.>

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호,2008. 9. 29.>(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직인의 구분란 제1호 중 "방송통신대학"을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 <제75호,2010. 9.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 중인 관인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국립 및 공립의 전문대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관인은 새로운 관인을 등록할 때까지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립 초·중등학교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3항 중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을 "「국립 및 공립 각급학교 관인규칙」"으로 한다.

**부칙** <제153호,2012. 7.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호,2016. 4. 20.>(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88호,2019. 9. 17.>(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4호,2021. 3.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국립 각급 학교 관인규칙 [별표] <개정 2012.7.17>

## 국립 각급 학교의 관인 규격(제2조 관련)

| 관인의 구분 | 한 변의 길이<br>(단위: ㎝) |
|---|---|
|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기술대학 및 각종학교의 장의 직인 | 3 |
|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 및 「국립학교 설치령」 제6조에 따른 단과대학의 장의 직인 | 2.7 |
|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중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의 장의 직인 | 2.4 |

■ 국립 각급 학교 관인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2.7.17>

# 관 인 대 장

| | | | | | |
|---|---|---|---|---|---|
| 관인 명칭 | | | | | |
| 종류 | [ ]청인(廳印) [ ] 직인 [ ] 특수 관인 | | | 관리부서 | |
| [ ] 등록<br>[ ] 재등록 | (인 영) | 등 록 일<br>(재등록일) | 년 월 일 | | |
| | | 새긴 날짜 | 년 월 일 | | |
| | | 새긴 사람 | 주소:<br>성명 및 상호:<br>생년월일: | | |
| | | 최초 사용일 | 년 월 일 | | |
| | | 재 료 | | | |
| | | 등록(재등록) 사유 | | | |
| | | 관보 공고 | 년 월 일<br>공고 제 - 호 | | |
| | | 비 고 | | | |
| 폐 기 | (인 영) | 등 록 일<br>(재등록일) | 년 월 일 | | |
| | | 폐 기 일<br>(분실일) | 년 월 일 | | |
| | | 폐기 사유 | [ ] 닳음 [ ] 분실 [ ] 기타( ) | | |
| | | 폐기 방법 | [ ] 이관 [ ] 기타( ) | | |
| | | 폐기한 또는 분실한 사람 | 소속:<br>직급: 성명: | | |
| | | 관보 공고 | 년 월 일<br>공고 제 - 호 | | |
| | | 비 고 | | | |

< 작성방법 >

1. 관인을 처음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 ] 등록란에 "√" 표를, 재등록하는 경우에는 [ ] 재등록란에 "√" 표시를 한다.
2. 비고란에는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210mm×297mm(백상지 150g/㎡)

■ 국립 각급 학교 관인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2.7.17>

# 전자이미지관인대장

<table>
<tr><td>관인 명칭</td><td colspan="5"></td></tr>
<tr><td>종류</td><td colspan="5">[ ] 청인(廳印) [ ] 직인 [ ] 특수 관인</td></tr>
<tr><td rowspan="9">[ ] 등록<br>[ ] 재등록</td><td rowspan="4">전자이미지관인 인영</td><td>등록일(재등록일)</td><td colspan="3">년 월 일</td></tr>
<tr><td>등록(재등록) 사유</td><td colspan="3"></td></tr>
<tr><td>관리부서</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4">전자이미지관인 사용 기관(부서) 현황</td></tr>
<tr><td rowspan="5">전자이미지관인 등록 당시 관인의 인영</td><td>사용 기관(부서)</td><td>시스템 명칭</td><td>통보일</td><td>최초 사용일</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비고</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9">폐기</td><td rowspan="9">전자이미지관인 인영</td><td>폐기일</td><td colspan="3">년 월 일</td></tr>
<tr><td>폐기 사유</td><td colspan="3"></td></tr>
<tr><td>폐기한 사람</td><td colspan="3">소속: 직급: 성명:</td></tr>
<tr><td colspan="4">전자이미지관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td></tr>
<tr><td>사용 기관(부서)</td><td>시스템 명칭</td><td>통보일</td><td>최종 사용일</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6">< 작성 방법 ><br>1. 최초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 ] 등록 관인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경우에는 [ ] 재등록 관인란에 √표를 한다.<br>2. 비고란에는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br>3.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관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td></tr>
</table>

210mm×297mm(백상지 150g/㎡)

■ 국립 각급 학교 관인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 4. 20.>

# 관인인쇄용지 관리대장

| 인쇄문서명 | | | |
|---|---|---|---|
| 관인명 | | 인쇄관인규격 | |

| 일자 | 인쇄량(장) | 사용량(장) | 사용명세 | 잔여량(장) | 확인(서명) |
|---|---|---|---|---|---|
| | | | | | |

210㎜ × 297㎜[백상지(150g/㎡)]

# 국립공업고등학교 설치령

[시행 2024. 12. 27.] [대통령령 제35089호, 2024. 12. 24., 타법개정]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044 - 204 - 7448

**제1조(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2조제2항 및 「교육공무원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의 설립ㆍ운영 및 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산업현장에 필요한 기술ㆍ기능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이하 "국립공업고등학교"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국립공업고등학교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제3조(공무원의 정원)** 국립공업고등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定員)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정한다. <개정 2017. 7. 26.>

**제4조(교원의 임용 등)** ① 국립공업고등학교에 교장을 둔다.

② 「교육공무원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국립공업고등학교의 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개정 2017. 7. 26.>

③ 제2항에 따른 교장의 임용권(교장으로 임명하는 임용권은 제외한다)은 「교육공무원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위임한다.<개정 2017. 7. 26.>

④ 「교육공무원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국립공업고등학교의 교감ㆍ수석교사 및 교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임용한다.<개정 2017. 7. 26.>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임용권 중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교육공무원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국립공업고등학교의 교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7. 7. 26.>

1. 소속 교사의 임용
2. 소속 교감의 승급

**제5조(인사교류에 관한 특례)** ① 국립공업고등학교가 소재한 지역의 교육감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립공업고등학교 소속 교육공무원을 포함하여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립공업고등학교 소속 교육공무원의 인사교류의 규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국립공업고등학교의 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 <2013. 3. 23.>

**제7조(학비보조 등)** ① 국립공업고등학교의 학생에 대해서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국립공업고등학교의 학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에 필요한 자료비ㆍ의류비와 그 밖의 학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 7. 26., 2021. 1. 5.>

**제8조(경비 부담)** 국립공업고등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예산에서 부담한다. <개정 2017. 7. 26.>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국립공업고등학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권한의 위탁)** 교육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국립공업고등학교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부칙** <제23815호,2012. 5.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립공업고등학교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라 설치된 국립공업고등학교는 이 영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교원의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임용된 국립공업고등학교의 교원은 이 영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4432호,2013. 3. 23.>(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립공업고등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10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24490호,2013. 3. 23.>(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립공업고등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28213호,2017. 7. 26.>(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립공업고등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및 제10조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중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를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로 한다.

제8조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③부터2@ 까지 생략

**부칙** <제31380호,2021. 1. 5.>(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5089호,2024. 12. 24.>(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립공업고등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의 소재지란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③부터3$ 까지 생략

■ 국립공업고등학교 설치령 [별표] <개정 2024. 12. 24.>

## 국립공업고등학교의 소재지(제2조제2항 관련)

| 학교명 | 소재지 |
|---|---|
|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 경상북도 |
|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 부산광역시 |
|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 전북특별자치도 |

# 국립공업고등학교 설치령

[시행 2024. 12. 27.] [대통령령 제35089호, 2024. 12. 24.,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2조제2항 및 「교육공무원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의 설립ㆍ운영 및 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산업현장에 필요한 기술ㆍ기능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이하 "국립공업고등학교"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국립공업고등학교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제3조(공무원의 정원)** 국립공업고등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定員)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정한다. <개정 2017. 7. 26.>

**제4조(교원의 임용 등)** ① 국립공업고등학교에 교장을 둔다.

② 「교육공무원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국립공업고등학교의 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개정 2017. 7. 26.>

③ 제2항에 따른 교장의 임용권(교장으로 임명하는 임용권은 제외한다)은 「교육공무원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위임한다.<개정 2017. 7. 26.>

④ 「교육공무원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국립공업고등학교의 교감ㆍ수석교사 및 교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임용한다.<개정 2017. 7. 26.>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임용권 중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교육공무원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국립공업고등학교의 교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7. 7. 26.>

1. 소속 교사의 임용
2. 소속 교감의 승급

**제5조(인사교류에 관한 특례)** ① 국립공업고등학교가 소재한 지역의 교육감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립공업고등학교 소속 교육공무원을 포함하여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립공업고등학교 소속 교육공무원의 인사교류의 규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국립공업고등학교의 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 <2013. 3. 23.>

**제7조(학비보조 등)** ① 국립공업고등학교의 학생에 대해서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국립공업고등학교의 학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에 필요한 자료비ㆍ의류비와 그 밖의 학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 7. 26., 2021. 1. 5.>

**제8조(경비 부담)** 국립공업고등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예산에서 부담한다. <개정 2017. 7. 26.>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국립공업고등학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권한의 위탁)** 교육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국립공업고등학교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부칙** <제23815호,2012. 5.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립공업고등학교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라 설치된 국립공업고등학교는 이 영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교원의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임용된 국립공업고등학교의 교원은 이 영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4432호,2013. 3. 23.>(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립공업고등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10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24490호,2013. 3. 23.>(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립공업고등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28213호,2017. 7. 26.>(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립공업고등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및 제10조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중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를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로 한다.

제8조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③부터2@ 까지 생략

**부칙** <제31380호,2021. 1. 5.>(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5089호,2024. 12. 24.>(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립공업고등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의 소재지란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③부터3$ 까지 생략

■ 국립공업고등학교 설치령 [별표] <개정 2024. 12. 24.>

## 국립공업고등학교의 소재지(제2조제2항 관련)

| 학교명 | 소재지 |
|---|---|
|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 경상북도 |
|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 부산광역시 |
|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 전북특별자치도 |

# 국립 국악ㆍ전통예술학교 설치령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492호, 2024. 5. 7.,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044 - 203 - 2735

**제1조(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2조제2항 및 「교육공무원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의 설립ㆍ운영 및 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20.>

**제2조(설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국악 및 전통예술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과 전문 국악인 및 전통예술인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설립ㆍ운영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0. 20.>

1. 다음 각 목의 고등학교
   가. 국립국악고등학교
   나.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2. 중학교 과정의 다음 각 목의 각종학교
   가. 국립국악중학교
   나. 국립전통예술중학교

② 제1항 각 호의 학교 소재지는 서울특별시로 한다.

**제3조(공무원의 정원)**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定員)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정한다. <개정 2015. 10. 20.>

**제4조(교원의 임용 등)** ①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에 교장을 둔다. <개정 2015. 10. 20.>

② 「교육공무원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의 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개정 2015. 10. 20.>

③ 제2항에 따른 교장의 임용권(교장으로 임명하는 임용권은 제외한다)은 「교육공무원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위임한다.

④ 「교육공무원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의 교감ㆍ수석교사 및 교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용한다.<개정 2015. 10. 20.>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임용권 중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교육공무원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의 교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5. 10. 20.>

1. 소속 교사의 임용
2. 소속 교감의 승급

**제5조(인사교류에 관한 특례)** ①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가 소재한 지역의 교육감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 소속 교육공무원을 포함하여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0.>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 소속 교육공무원의 인사교류의 규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의 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20.>

**제6조** 삭제 <2013. 3. 23.>

**제7조(산학겸임교사의 자격기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 2에 따른 산학겸임교사의 자격기준에도 불구하고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에 두는 산학겸임교사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0. 20., 2016. 3. 25., 2020. 11. 3., 2024. 5. 7.>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국악 및 전통예술 분야의 국내 대회 입상자로서 담당 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전승교육사 및 이수자 등으로서 담당 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제8조(교육과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교육부장관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할 때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0. 20.>

**제9조(입학전형)** ① 국립국악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은 해당 학교의 교장이 실시한다. 이 경우 입학전형방법 등 입학전형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학교의 교장이 정한다. <개정 2015. 10. 20.>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국립국악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의 다음 학년도 입학전형의 실시절차ㆍ방법 및 변경사항 등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입학전형기본계획을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 이후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에 따른 고등학교의 구분이 변경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입학전형 실시기일 3개월 전까지 변경계획을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수

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5. 10. 20.>

③ 국립국악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의 교장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입학전형기본계획의 범위에서 그 실시기일 3개월 전까지 입학전형 일시, 원서접수 및 전형방법 등 입학전형의 실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20.>

④ 국립국악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중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갈음하여 활용하는 자료를 말한다)과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영하되, 중학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실시한다.<개정 2015. 10. 20.>

1.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중학교의 교원의 추천서
2. 면접
3. 그 밖에 실기시험 성적 등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른 방법 외의 방법으로 입학전형을 할 수 있다.

**제10조(실기연수과정의 운영)** ①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의 교장은 국악ㆍ전통예술 분야의 인재를 조기에 육성하기 위하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국악ㆍ전통예술 분야 실기연수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0.>

② 제1항에 따른 실기연수과정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의 교장이 정한다.<개정 2015. 10. 20.>

**제11조(학비보조 등)** ①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의 학생에 대해서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5. 10. 20.>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의 학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에 필요한 자료비ㆍ피복비와 그 밖의 학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 10. 20.>

**제12조(학비보조금의 지급정지)**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의 학생이 휴학하거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학을 당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 중 제11조에 따른 학비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개정 2015. 10. 20.>

**제13조(학비보조금의 상환)** ① 국립국악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의 학생으로서 퇴학하는 사람은 재학 중에 지급받은 학비를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국악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의 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상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0.>

② 제1항에 따른 상환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제14조(경비 부담)**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산에서 부담한다. <개정 2015. 10. 20.>

**제1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10. 20.>

**제16조(권한의 위탁)** 교육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0. 20.>

**부칙** <제23814호,2012. 5.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악고등학교, 전통예술고등학교, 국악학교 및 전통예술학교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라 설치된 국악고등학교, 전통예술고등학교, 국악학교 및 전통예술학교는 이 영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교원의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임용된 국악고등학교, 전통예술고등학교, 국악학교 및 전통예술학교의 교원은 이 영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산학겸임교사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초ㆍ중등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임용된 국악고등학교, 전통예술고등학교, 국악학교 및 전통예술학교의 산학겸임교사는 제7조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부칙** <제24453호,2013. 3. 2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립 국악ㆍ전통예술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을 “ 교육부장관 ”으로 한다.

제8조 중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을 각각 “ 교육부장관 ”으로 한다.

제9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을 각각 “ 교육부장관 ”으로 한다.

제16조 중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을 “ 교육부장관 ”으로 한다.

⑥부터1^ 까지 생략

**부칙** <제24490호,2013. 3. 23.>(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립 국악ㆍ전통예술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③ 생략

**부칙** <제26596호,2015. 10.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악고등학교 등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국악고등학교, 전통예술고등학교, 국악학교 및 전통예술학교는 각각 이 영에 따른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또는 국립전통예술중학교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2호다목3)다) 중 "국립의 국악학교 및 국악고등학교"를 "국립국악중학교 및 국립국악고등학교"로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국악고등학교ㆍ국악학교ㆍ전통예술고등학교ㆍ전통예술학교"를 "국립국악고등학교ㆍ국립국악중학교ㆍ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ㆍ국립전통예술중학교"로 한다.

제11조제3항제36호 중 "국악고등학교ㆍ국악학교ㆍ전통예술고등학교 및 전통예술학교"를 "국립국악고등학교ㆍ국립국악중학교ㆍ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로 한다.

제3장의2의 제목, 제28조의2, 제28조의3제1항 및 제28조의4 중 "국악고등학교 및 국악학교"를 각각 "국립국악고등학교 및 국립국악중학교"로 한다.

제3장의3의 제목, 제28조의5, 제28조의6제1항 및 제28조의7 중 "전통예술고등학교 및 전통예술학교"를 각각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국악고등학교, 전통예술고등학교, 국악학교 또는 전통예술학교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이 영에 따른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또는 국립전통예술중학교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7056호,2016. 3. 25.>(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립 국악ㆍ전통예술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중 “ 중요무형문화재 ”를 “ 국가무형문화재 ”로, “ 전수(傳授) 교육 조교 ”를 “ 전수교육조교 ”로 한다.

④부터 ⑭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31138호,2020. 11. 3.>(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립 국악ㆍ전통예술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중 “ 전수교육조교 ”를 “ 전승교육사 ”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제34492호,2024. 5. 7.>(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립 국악ㆍ전통예술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중 “ 국가무형문화재 ”를 “ 국가무형유산 ”으로 한다.

④부터 ⑮까지 생략

**제3조** 생략

# 국립 국악ㆍ전통예술학교 설치령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492호, 2024. 5. 7.,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2조제2항 및 「교육공무원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의 설립ㆍ운영 및 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20.>

**제2조(설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국악 및 전통예술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과 전문 국악인 및 전통예술인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설립ㆍ운영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0. 20.>

1. 다음 각 목의 고등학교
   가. 국립국악고등학교
   나.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2. 중학교 과정의 다음 각 목의 각종학교
   가. 국립국악중학교
   나. 국립전통예술중학교

② 제1항 각 호의 학교 소재지는 서울특별시로 한다.

**제3조(공무원의 정원)**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定員)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정한다. <개정 2015. 10. 20.>

**제4조(교원의 임용 등)** ①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에 교장을 둔다. <개정 2015. 10. 20.>

② 「교육공무원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의 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개정 2015. 10. 20.>

③ 제2항에 따른 교장의 임용권(교장으로 임명하는 임용권은 제외한다)은 「교육공무원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위임한다.

④ 「교육공무원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의 교감ㆍ수석교사 및 교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용한다.<개정 2015. 10. 20.>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임용권 중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교육공무원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의 교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5. 10. 20.>

1. 소속 교사의 임용
2. 소속 교감의 승급

**제5조(인사교류에 관한 특례)** ①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가 소재한 지역의 교육감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 소속 교육공무원을 포함하여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0.>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 소속 교육공무원의 인사교류의 규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의 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20.>

**제6조** 삭제 <2013. 3. 23.>

**제7조(산학겸임교사의 자격기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 2에 따른 산학겸임교사의 자격기준에도 불구하고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에 두는 산학겸임교사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0. 20., 2016. 3. 25., 2020. 11. 3., 2024. 5. 7.>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국악 및 전통예술 분야의 국내 대회 입상자로서 담당 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전승교육사 및 이수자 등으로서 담당 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제8조(교육과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교육부장관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할 때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0. 20.>

**제9조(입학전형)** ① 국립국악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은 해당 학교의 교장이 실시한다. 이 경우 입학전형방법 등 입학전형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학교의 교장이 정한다. <개정 2015. 10. 20.>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국립국악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의 다음 학년도 입학전형의 실시절차ㆍ방법 및 변경사항 등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입학전형기본계획을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 이후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에 따른 고등학교의 구분이 변경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입학전형 실시기일 3개월 전까지 변경계획을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수

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5. 10. 20.>

③ 국립국악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의 교장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입학전형기본계획의 범위에서 그 실시기일 3개월 전까지 입학전형 일시, 원서접수 및 전형방법 등 입학전형의 실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20.>

④ 국립국악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중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갈음하여 활용하는 자료를 말한다)과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영하되, 중학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실시한다.<개정 2015. 10. 20.>

1.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중학교의 교원의 추천서
2. 면접
3. 그 밖에 실기시험 성적 등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른 방법 외의 방법으로 입학전형을 할 수 있다.

**제10조(실기연수과정의 운영)** ①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의 교장은 국악ㆍ전통예술 분야의 인재를 조기에 육성하기 위하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국악ㆍ전통예술 분야 실기연수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0.>

② 제1항에 따른 실기연수과정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의 교장이 정한다.<개정 2015. 10. 20.>

**제11조(학비보조 등)** ①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의 학생에 대해서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5. 10. 20.>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의 학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에 필요한 자료비ㆍ피복비와 그 밖의 학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 10. 20.>

**제12조(학비보조금의 지급정지)**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의 학생이 휴학하거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학을 당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 중 제11조에 따른 학비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개정 2015. 10. 20.>

**제13조(학비보조금의 상환)** ① 국립국악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의 학생으로서 퇴학하는 사람은 재학 중에 지급받은 학비를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국악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의 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상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0.>

② 제1항에 따른 상환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제14조(경비 부담)**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산에서 부담한다. <개정 2015. 10. 20.>

**제1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10. 20.>

**제16조(권한의 위탁)** 교육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0. 20.>

**부칙** <제23814호,2012. 5.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악고등학교, 전통예술고등학교, 국악학교 및 전통예술학교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라 설치된 국악고등학교, 전통예술고등학교, 국악학교 및 전통예술학교는 이 영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교원의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임용된 국악고등학교, 전통예술고등학교, 국악학교 및 전통예술학교의 교원은 이 영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산학겸임교사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초ㆍ중등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임용된 국악고등학교, 전통예술고등학교, 국악학교 및 전통예술학교의 산학겸임교사는 제7조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부칙** <제24453호,2013. 3. 2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립 국악ㆍ전통예술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을 “ 교육부장관 ”으로 한다.

제8조 중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을 각각 “ 교육부장관 ”으로 한다.

제9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을 각각 “ 교육부장관 ”으로 한다.

제16조 중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을 “ 교육부장관 ”으로 한다.

⑥부터1^ 까지 생략

**부칙** <제24490호,2013. 3. 23.>(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립 국악ㆍ전통예술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③ 생략

**부칙** <제26596호,2015. 10.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악고등학교 등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국악고등학교, 전통예술고등학교, 국악학교 및 전통예술학교는 각각 이 영에 따른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또는 국립전통예술중학교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2호다목3)다) 중 "국립의 국악학교 및 국악고등학교"를 "국립국악중학교 및 국립국악고등학교"로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국악고등학교ㆍ국악학교ㆍ전통예술고등학교ㆍ전통예술학교"를 "국립국악고등학교ㆍ국립국악중학교ㆍ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ㆍ국립전통예술중학교"로 한다.

제11조제3항제36호 중 "국악고등학교ㆍ국악학교ㆍ전통예술고등학교 및 전통예술학교"를 "국립국악고등학교ㆍ국립국악중학교ㆍ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로 한다.

제3장의2의 제목, 제28조의2, 제28조의3제1항 및 제28조의4 중 "국악고등학교 및 국악학교"를 각각 "국립국악고등학교 및 국립국악중학교"로 한다.

제3장의3의 제목, 제28조의5, 제28조의6제1항 및 제28조의7 중 "전통예술고등학교 및 전통예술학교"를 각각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국악고등학교, 전통예술고등학교, 국악학교 또는 전통예술학교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이 영에 따른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또는 국립전통예술중학교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7056호,2016. 3. 25.>(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립 국악ㆍ전통예술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중 “ 중요무형문화재 ”를 “ 국가무형문화재 ”로, “ 전수(傳授) 교육 조교 ”를 “ 전수교육조교 ”로 한다.

④부터 ⑭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31138호,2020. 11. 3.>(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립 국악ㆍ전통예술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중 “ 전수교육조교 ”를 “ 전승교육사 ”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제34492호,2024. 5. 7.>(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립 국악ㆍ전통예술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중 “ 국가무형문화재 ”를 “ 국가무형유산 ”으로 한다.

④부터 ⑮까지 생략

**제3조** 생략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교육부 (국립대학지원과) 044 - 203 - 6918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를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무를 제고하고 교육 및 연구 역량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설립ㆍ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고등교육법」에 따른다.

③ 제33조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부설하는 초ㆍ중등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다.<신설 2013. 12. 30.>

**제3조(법인격 등)**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법인으로 한다.

②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③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설립등기와 그 밖에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정관)**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사항
7. 임원과 교직원에 관한 주요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평의원회, 학사위원회 및 재경위원회에 관한 사항
10.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와 관련 법인, 조합 및 기관 등과의 관계
11. 학교규칙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2.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3. 해산 및 합병에 관한 사항
14. 이 법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15. 그 밖에 학교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②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3. 3. 23.>

## 제2장 조직

**제5조(임원)**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이 경우 제13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1명의 감사는 상근(常勤)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제6조(총장)**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총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④ 총장의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총장의 선출)** ① 총장은 총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이사회가 선출하여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3. 3. 23.>

② 총장추천위원회는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 및 외부인사 등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부총장 등)**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대학 운영과 관련한 총장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2명 이상의 부총장을 둔다.

② 부총장은 총장이 선임(選任)한다.

③ 부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부총장의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부총장 외의 총장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이사)** ①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소속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2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5. 10. 1.>

1. 총장
2. 부총장 중 정관으로 정하는 2명
3. 기획예산처차관

4. 교육부차관
5. 제16조에 따른 평의원회의 추천을 받은 인사 1명
6. 그 밖에 대학 운영에 필요한 지식과 안목이 있는 인사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교육부장관의 취임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 3. 23.>

③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사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이사회)**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제12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互選)하되, 그 선임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이사장이 궐위(闕位)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⑥ 감사는 직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⑦ 이사회는 이 법과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이사장과 이사는 자신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⑨ 제8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재적이사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1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총장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거나, 감사가 제13조제5항에 따라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때에는 소집 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사회의 소집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1. 3. 23.>

1. 총장의 선임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4.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5. 정관으로 정하는 주요 조직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중장기 대학 운영 및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정관으로 정하는 주요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9. 대학의 발전을 위한 기금의 조성 및 후원에 관한 사항
10. 이 법이나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11. 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감사)** ① 감사 중 1명은 교육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다른 1명은 제16조에 따른 평의원회의 추천을 받아 각각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교육부장관의 취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평의원회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감사로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업무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그 밖에 정관으로 감사의 직무로 정하는 일

④ 감사는 제3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면 이사회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⑤ 감사는 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⑥ 감사의 업무 수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4조(결격사유 등)**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②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임원(총장은 제외한다)이 회계부정, 횡령, 뇌물 수수(授受) 등의 비리(非理)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학교 경영에 명백하고 중대한 장애를 발생하게 한 경우 교육부장관은 제9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임원 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21. 3. 23.>

**제15조(교직원 등)**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원ㆍ직원 및 조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등을 둔다.

②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임면(任免)한다.

③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의 자격ㆍ임면ㆍ복무, 신분보장ㆍ사회보장 및 징계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립학교법」을 준용한다.

**제15조의2(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 ① 제15조제3항 및 「사립학교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제15조에 따른 교원 중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학생의 교육ㆍ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총장의 허가를 받아 상업ㆍ공업ㆍ금융업,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른 해당 회

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겸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는 그 해에 「상법」 제388조에 따라 해당 사기업체로부터 받은 보수 전부를 총장에게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 3. 23.>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의 구체적인 기준·방법·절차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8. 20.]

**제15조의3(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교원 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교원 중 특정 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원의 성별 구성에 관한 연도별 목표 비율은 학칙으로 정한다.

③ 총장은 대학의 교원을 임용할 때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3년마다 계열별 임용 목표비율이 제시된 임용계획 등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추진 실적을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계획 및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공표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계열별 구분과 계획의 수립 및 제4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 29.]

**제16조(평의원회)**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1. 중장기 대학 운영 및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임원 추천에 관한 사항
3. 정관으로 정하는 교육, 연구 및 교직원 복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총장, 이사장, 평의원회 의장 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학교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② 평의원회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 50명 이내로 구성하되, 그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두며, 평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평의원회의 심의 결과는 총장에게 전달하고, 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또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을 이사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의원회의 구성, 운영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7조(학사위원회)**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교육과 연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사위원회를 둔다.

1. 제32조에 따른 연도별 대학운영계획 중 교육 및 연구와 관련된 사항
2. 학생의 입학과 졸업에 관한 사항
3. 교원 인사에 관한 사항
4. 교수평가와 연구에 관한 사항
5. 교육과정, 성적 및 학위 등 학사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총장 또는 이사회가 교육 및 연구와 관련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② 학사위원회는 총장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원 중 25명 이상 35명 이하로 구성하되, 그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학사위원회에 위원장을 두며, 위원장은 총장이 겸임한다.

④ 학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학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총장에게 전달하고, 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또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을 이사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8조(재경위원회)**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재무경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경위원회를 둔다.

1. 제32조에 따른 연도별 대학운영계획 중 재무경영과 관련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입학금과 수업료 등 학생의 금전적 부담에 관한 사항
4. 정관으로 정하는 주요 사업의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5. 정관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6. 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사항
7. 재정의 부담을 수반하는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8. 회계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9. 임원과 교직원의 보수 및 퇴직수당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총장 또는 이사회가 대학의 재무경영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② 재경위원회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과 외부인사를 포함하여 25명 이상 35명 이하로 구성하되, 외부인사가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재경위원회에 위원장을 두며, 위원장은 재경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재경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재경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총장에게 전달하고, 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또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을 이사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경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3장 재무회계

**제19조(법인회계 등)**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법인회계를 설치하며, 그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회계연도는 그 해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20조(자본금 등)**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자본금은 제22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은 재산을 포함한 자산의 평가액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기채(起債) 또는 장기차입으로 발생하는 부채평가액에 따라 결정되며 자본금의 산정방식, 재산과 부채의 평가방법, 자본금의 증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은 재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ㆍ연구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과 그 외의 재산으로 구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재산 중 교육ㆍ연구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ㆍ면적ㆍ규모 등을 고려한 경미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재산 중 대학 교육ㆍ연구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매도ㆍ증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③ 「고등교육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권리 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관리하는 계좌에 대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예금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제22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무상 양도)** ①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당시의 서울대학교(이하 "종전의 서울대학교"라 한다)가 관리하고 있던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국가유산을 제외한 국유재산 및 물품에 관하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이를 무상으로 양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해당 재산이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운영에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총장의 의견을 듣고,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3. 5. 16., 2025. 10. 1.>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서울대학교가 관리하고 있던 공유재산 및 물품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③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양도ㆍ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5. 10. 1.>

④ 지방자치단체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양도ㆍ대부 또는 사용허가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학교용지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24조(개인재산의 양여 또는 출연)**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양도받거나 그 밖의 출연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제공한 자의 의사 또는 그와의 계약에 따르되, 이에 대하여 특별히 정한 것이 없고 의사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25조(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대학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장기차입을 하거나 학교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교육부장관은 장기차입 또는 학교채 발행을 승인하려면 기획예산처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5. 10. 1.>

**제26조(예산 및 결산 등)** ① 총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총장은 회계연도마다 회계법인의 검사를 받은 재무제표를 포함한 결산서를 이사회의 의결이 있은 후 2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③ 총장은 법인회계의 예산 및 결산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3. 12. 30.>

**제27조(잉여금의 처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을 부채 상환에 우선 충당하고, 남을 때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거나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되 학교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28조(수익사업 등)**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교육ㆍ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수익금은 학교 경영에 충당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4장 지원 및 육성 등

**제29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①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육의 질 향상과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를 통하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중ㆍ장기적 교육 및 연구 등의 발전과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에 드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된 기금에 대하여 각종 세금과 공과금에 관한 특례를 규정할 수 있다.<개정 2021. 3. 23.>

**제30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방법 등)** ①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매년 인건비, 경상적 경비, 시설확충비 및 교육ㆍ연구 발전을 위한 지원금을 출연(出捐)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당시 종전의 서울대학교의 예산, 고등교육예산 규모 및 그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매년 출연금을 산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추진하는 사업에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교부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국립대학의 사회적 책무 및 국가의 지원)**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기초학문 등 필요한 분야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4년 단위의 계획을 수립ㆍ공표하고,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실행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우수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ㆍ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학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학ㆍ복지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학생의 경제적 부담과 관련이 없는 자체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노력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32조(대학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 및 국가의 지원)** ① 총장은 4년 단위로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대학운영성과목표를 설정하고,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대학운영성과목표를 반영한 연도별 대학운영계획을 수립ㆍ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도별 대학운영계획의 운영성과를 매년 평가ㆍ공표하고, 그 결과를 행정 및 재정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담당할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기관을 설치하거나 그 평가를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 제5장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부설학교 <개정 2013. 12. 30.>

**제33조(부설학교 등)**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이전에 국가가 설치ㆍ경영하던 종전의 서울대학교 사범계 단과대학에 부설된 초ㆍ중등학교는 제1항에 따른 부설학교로 본다.<개정 2013. 1. 23.>

③ 국가는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제2항의 부설학교에 관한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양도하여야 한다.<개정 2013. 1. 23.>

**제33조의2(수업료 등)**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부설하여 설치ㆍ운영하는 학교(이하 "부설학교"라 한다)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의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에 관한 사항은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제2항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3. 12. 30.]

**제33조의3(교직원 임면)** ① 부설학교에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원 및 직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원 및 직원은 총장이 임면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원 및 직원의 자격ㆍ임면ㆍ복무, 신분보장 및 징계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립학교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할청"은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3. 12. 30.]

**제33조의4(법인회계와 부설학교회계의 통합 운영)** 부설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에 따른 학교회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제19조에 따른 법인회계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설학교 부분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12. 30.]

**제33조의5(양도받은 재산 및 물품의 자본금 산정 등)** ① 제33조제3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양도받은 재산 및 물품의 자본금 산정과 관리ㆍ보호 등에 대하여는 제20조와 제21조를 적용한다.

② 부설학교의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 등의 지원금은 제3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부설학교"로 본다.

[본조신설 2013. 12. 30.]

## 제6장 보칙 <신설 2013. 12. 30.>

**제34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아닌 자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명칭과 표장(標章)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임원 및 교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6조(「민법」의 준용)**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7장 벌칙 <개정 2013. 12. 30.>

**제37조(과태료 등)** ① 제34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3. 3. 23.>

**부칙** <제10413호,2010. 1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준비위원회) ① 종전의 서울대학교 총장은 이 법 시행 전에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설립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설립준비위원으로 구성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설립준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설립준비위원은 종전의 서울대학교 총장을 포함하여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설립준비위원회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종전의 서울대학교 총장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 위촉한다.
③ 설립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은 종전의 서울대학교 총장이 겸임한다.

**제3조**(설립절차) ① 설립준비위원회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최초의 이사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준비위원회에서 선임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선임되는 이사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로 하고, 제2항에 따라 선임되는 감사는 2명으로 하되, 감사 중 1명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어야 한다.
④ 설립준비위원회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이사와 감사가 선임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제3조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 설립준비위원회는 제4항의 등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무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총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⑥ 설립준비위원은 제5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 해임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총장 임명에 관한 특례) ① 종전의 서울대학교 총장은 「교육공무원법」 제28조제1호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 동안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총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② 종전의 서울대학교 총장은 그 남은 임기 동안 이사장을 겸임한다.

**제5조**(교직원의 임용 특례) ① 종전의 서울대학교 총장은 종전의 서울대학교 소속 교직원을 본인의 희망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될 사람과 그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될 것을 희망한 사람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설립된 때에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될 것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소속, 신분 보장 및 복무 관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교원인 공무원의 경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설립된 이후 5년간 공무원 신분을 보유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된 사람의 정년은 그 교직원의 퇴직 당시의 직급에 적용되던 「국가공무원법」 또는 「교육공무원법」 상의 정년에 따른다. 다만,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 정년이 「국가공무원법」 또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정년보다 장기일 때에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의 정년을 따른다.

**제6조**(기성회 직원의 임용 특례) ① 종전의 서울대학교 기성회(설립자의 부담으로 미치지 못하는 긴급한 교육시설, 대학 운영 등을 지원함으로써 면학 분위기 조성과 교육 여건 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종전의 서울대학교에 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직원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설립된 때에 그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직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종전의 서울대학교 기성회 직원에서 퇴직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직원으로 임용되는 사람의 정년은 제2항에 따라 그 직원이 퇴직하는 당시의 기성회의 규약상의 정년에 따른다. 다만,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직원 정년이 기성회의 규약상의 정년보다 장기일 때에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직원의 정년을 따른다.

**제7조**(연금 적용의 특례) ①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는 교직원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이후 임용되는 교직원에 대하여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한다. 다만,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되는 교직원 중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당시 공무원인 교직원은 국립대

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된 때부터 20년간 다음 각 호에 따라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1.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원하는 사람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원연금법」의 적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공무원연금법」의 적용 신청을 한 사람(이하 "공무원연금법적용교직원"이라 한다)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본다.
3. 공무원연금법적용교직원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된 때부터 20년이 되는 달의 말일에 공무원에서 퇴직한 것으로 본다. 다만, 20년이 되기 전에 국립대학법인에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까지 공무원으로 재직한 것으로 본다.
4. 공무원연금법적용교직원의 보수월액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될 당시의 공무원 보수월액에 매년 공무원평균보수인상률과 호봉승급분을 반영한 금액으로 한다.
5. 공무원연금법적용교직원에 대하여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서의 재직ㆍ직무(「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기간 동안의 재직ㆍ직무를 말한다)를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직ㆍ공무로 본다.
6. 공무원연금법적용교직원에 대하여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총장을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관장으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직원으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를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기여금징수의무자로 본다.

②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당시 공무원이었던 종전의 서울대학교 교직원 중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의 퇴직급여와 유족급여(「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제1항에서 준용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족연금 및 「공무원연금법」 제61조에 따른 유족보상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퇴직수당을 별도 회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직원의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에 필요한 비용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반납금,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개인부담금,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국가부담금, 같은 법 제48조의3에 따른 병역복무기간의 부담금 및 그 운용수익금과 같은 법 제52조의2에 따른 연금액의 이체금액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은 국가가 보전(補塡)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퇴직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같은 법 제31조제1항의 재직기간에 공무원 재직기간을 합산한다. 다만, 그 교직원이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당시 「공무원연금법」 제61조의2에 따른 퇴직수당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공무원연금공단은 제4항 본문에 따라 공무원 재직기간을 합산하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의 퇴직수당을 공무원에서 퇴직한 때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산정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이체하여야 한다.

⑥ 제4항 본문에 따른 재직기간 합산을 위하여 제5항에 따른 이체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은 국가가 지원한다.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과 제6항에 따른 국가의 보전금 및 지원금을 별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⑧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당시 공무원이었던 종전의 서울대학교 교직원 중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교직원에 대한 국가부담금은 같은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법」 제69조제1항 본문을 준용한다.

**제8조**(국가의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종전의 서울대학교 학교 경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국가의 권리ㆍ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다만, 권리ㆍ의무의 성격상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포괄 승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내용 및 귀속 관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종전의 서울대학교 총장이 행한 행위의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서울대학교 총장이 학교 운영상 한 행위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총장이 행한 행위로 본다.

**제10조**(종전의 서울대학교 재적생 등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서울대학교의 재적생(在籍生), 졸업생 및 제적(除籍)ㆍ제명(除名)된 사람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재적생, 졸업생 및 제적ㆍ제명된 사람으로 본다.

**제11조**(종전의 서울대학교 회계의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법인회계는 종전의 서울대학교 국고지원금을 관리하던 회계와 기성회의 회계를 승계한다.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국립학교"를 "국가가 설립ㆍ경영하거나 국가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로 한다.

②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원

제7조의2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직원 및 조교

③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4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가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설치하는 국립대학교의 교원, 직원 및 조교 중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교원, 직원 및 조교에 대하여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교원, 직원 및 조교는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직원으로, 국가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설치하는 국립대학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학교경영기관으로 본다.

④ 초ㆍ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법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하거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제11621호,2013. 1. 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설학교 교직원의 임용에 관한 특례)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총장은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부설학교 교직원(이하 "부설학교 교직원"이라 한다)을 본인의 희망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될 사람과 그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될 것을 희망한 사람은 이 법이 시행되는 때에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될 것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소속, 신분 보장 및 복무 관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교원인 공무원의 경우 이 법 시행 후 5년간 공무원 신분을 보유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된 사람의 정년은 그 교직원의 퇴직 당시의 직급에 적용되던 「국가공무원법」 또는 「교육공무원법」 상의 정년에 따른다. 다만,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 정년이 「국가공무원법」 또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정년보다 장기일 때에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의 정년을 따른다.

**제3조**(부설학교 교직원에 대한 연금 적용에 관한 특례) ①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는 교직원과 이 법 시행 후 임용되는 교직원에 대하여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되는 교직원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무원이었던 교직원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된 때부터 20년간 다음 각 호에 따라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1.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원하는 사람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공무원연금공단에 같은 법의 적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공무원연금법」의 적용 신청을 한 사람(이하 "공무원연금법적용교직원"이라 한다)은 같은 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본다.
3. 공무원연금법적용교직원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된 때부터 20년이 되는 달의 말일에 공무원에서 퇴직한 것으로 본다. 다만, 20년이 되기 전에 국립대학법인에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까지 공무원으로 재직한

것으로 본다.

4. 공무원연금법적용교직원의 보수월액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될 당시의 공무원 보수월액에 매년 공무원평균보수인상률과 호봉승급분을 반영한 금액으로 한다.
5. 공무원연금법적용교직원에 대하여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서의 재직ㆍ직무(「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기간 동안의 재직ㆍ직무를 말한다)를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직ㆍ공무로 본다.
6. 공무원연금법적용교직원에 대하여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총장을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관장으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직원으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를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기여금징수의무자로 본다.

②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이 법 시행 전에 공무원이었던 부설학교 교직원 중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의 퇴직급여와 유족급여(「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제1항에서 준용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족연금 및 「공무원연금법」 제61조에 따른 유족보상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퇴직수당을 별도 회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직원의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에 필요한 비용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반납금,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개인부담금,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국가부담금, 같은 법 제48조의3에 따른 병역복무기간의 부담금 및 그 운용수익금과 같은 법 제52조의2에 따른 연금액의 이체금액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은 국가가 보전(補塡)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퇴직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의 재직기간에 공무원 재직기간을 합산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공무원연금법」 제61조의2에 따른 퇴직수당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공무원연금공단은 이 법 시행 전에 공무원이었던 부설학교 교직원 중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의 퇴직급여 및 제4항 본문에 따라 공무원 재직기간을 합산하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의 퇴직수당을 공무원에서 퇴직한 때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산정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이체하여야 한다.

⑥ 제4항 본문에 따른 재직기간 합산을 위하여 제5항에 따른 이체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은 국가가 지원한다.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과 제6항에 따른 국가의 보전금 및 지원금을 별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⑧ 이 법 시행 전에 공무원이었던 부설학교 교직원 중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교직원에 대한 국가부담금은 같은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법」 제69조제1항 본문을 준용한다.

**부칙** <제11690호,2013. 3. 23.>(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2* 까지 생략

2(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5조 후단,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4조제2항, 제21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22조제1항 후단, 제3항 후단,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37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3) 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122호,2013. 12.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산 및 결산 내용의 공시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결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438호,2019. 8.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겸직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교원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872호,2020. 1. 2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54호,2021. 3. 23.>(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9409호,2023. 5. 16.>(국가유산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전단 중 “「문화재보호법」”을 “「국가유산기본법」”으로, “문화재를”을 “국가유산을”로 한다.

⑥부터2^ 까지 생략

**부칙** <제21065호,2025. 10. 1.>(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획예산처차관

제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교육부차관

제22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60>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를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무를 제고하고 교육 및 연구 역량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설립ㆍ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고등교육법」에 따른다.

③ 제33조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부설하는 초ㆍ중등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다.<신설 2013. 12. 30.>

**제3조(법인격 등)**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법인으로 한다.

②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③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설립등기와 그 밖에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정관)**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사항
7. 임원과 교직원에 관한 주요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평의원회, 학사위원회 및 재경위원회에 관한 사항
10.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와 관련 법인, 조합 및 기관 등과의 관계
11. 학교규칙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2.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3. 해산 및 합병에 관한 사항
14. 이 법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15. 그 밖에 학교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②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3. 3. 23.>

## 제2장 조직

**제5조(임원)**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이 경우 제13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1명의 감사는 상근(常勤)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제6조(총장)**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총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④ 총장의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총장의 선출)** ① 총장은 총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이사회가 선출하여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3. 3. 23.>

② 총장추천위원회는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 및 외부인사 등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부총장 등)**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대학 운영과 관련한 총장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2명 이상의 부총장을 둔다.

② 부총장은 총장이 선임(選任)한다.

③ 부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부총장의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부총장 외의 총장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이사)** ①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소속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2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5. 10. 1.>

1. 총장
2. 부총장 중 정관으로 정하는 2명
3. 기획예산처차관
4. 교육부차관

5. 제16조에 따른 평의원회의 추천을 받은 인사 1명
6. 그 밖에 대학 운영에 필요한 지식과 안목이 있는 인사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교육부장관의 취임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 3. 23.>

③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사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이사회)**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제12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互選)하되, 그 선임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이사장이 궐위(闕位)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⑥ 감사는 직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⑦ 이사회는 이 법과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이사장과 이사는 자신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⑨ 제8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재적이사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1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총장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거나, 감사가 제13조제5항에 따라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때에는 소집 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사회의 소집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1. 3. 23.>

1. 총장의 선임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4.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5. 정관으로 정하는 주요 조직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중장기 대학 운영 및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정관으로 정하는 주요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9. 대학의 발전을 위한 기금의 조성 및 후원에 관한 사항
10. 이 법이나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11. 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감사)** ① 감사 중 1명은 교육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다른 1명은 제16조에 따른 평의원회의 추천을 받아 각각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교육부장관의 취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평의원회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감사로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업무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그 밖에 정관으로 감사의 직무로 정하는 일

④ 감사는 제3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면 이사회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⑤ 감사는 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⑥ 감사의 업무 수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4조(결격사유 등)**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②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임원(총장은 제외한다)이 회계부정, 횡령, 뇌물 수수(授受) 등의 비리(非理)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학교 경영에 명백하고 중대한 장애를 발생하게 한 경우 교육부장관은 제9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임원 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21. 3. 23.>

**제15조(교직원 등)**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원·직원 및 조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등을 둔다.

②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임면(任免)한다.

③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의 자격·임면·복무, 신분보장·사회보장 및 징계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립학교법」을 준용한다.

**제15조의2(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 ① 제15조제3항 및 「사립학교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제15조에 따른 교원 중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는 학생의 교육·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총장의 허가를 받아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른 해당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겸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그 해에 「상법」 제388조에 따라 해당 사기업체로부터 받은 보수 전부를 총장에게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 3. 23.>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의 구체적인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ㆍ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8. 20.]

**제15조의3(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교원 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교원 중 특정 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원의 성별 구성에 관한 연도별 목표 비율은 학칙으로 정한다.

③ 총장은 대학의 교원을 임용할 때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3년마다 계열별 임용 목표비율이 제시된 임용계획 등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추진 실적을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계획 및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공표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계열별 구분과 계획의 수립 및 제4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 29.]

**제16조(평의원회)**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1. 중장기 대학 운영 및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임원 추천에 관한 사항
3. 정관으로 정하는 교육, 연구 및 교직원 복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총장, 이사장, 평의원회 의장 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학교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② 평의원회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 50명 이내로 구성하되, 그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두며, 평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평의원회의 심의 결과는 총장에게 전달하고, 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또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을 이사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의원회의 구성, 운영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7조(학사위원회)**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교육과 연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사위원회를 둔다.

1. 제32조에 따른 연도별 대학운영계획 중 교육 및 연구와 관련된 사항
2. 학생의 입학과 졸업에 관한 사항
3. 교원 인사에 관한 사항
4. 교수평가와 연구에 관한 사항
5. 교육과정, 성적 및 학위 등 학사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총장 또는 이사회가 교육 및 연구와 관련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② 학사위원회는 총장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원 중 25명 이상 35명 이하로 구성하되, 그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학사위원회에 위원장을 두며, 위원장은 총장이 겸임한다.

④ 학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학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총장에게 전달하고, 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또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을 이사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8조(재경위원회)**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재무경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경위원회를 둔다.

1. 제32조에 따른 연도별 대학운영계획 중 재무경영과 관련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입학금과 수업료 등 학생의 금전적 부담에 관한 사항
4. 정관으로 정하는 주요 사업의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5. 정관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6. 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사항
7. 재정의 부담을 수반하는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8. 회계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9. 임원과 교직원의 보수 및 퇴직수당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총장 또는 이사회가 대학의 재무경영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② 재경위원회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과 외부인사를 포함하여 25명 이상 35명 이하로 구성하되, 외부인사가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재경위원회에 위원장을 두며, 위원장은 재경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재경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재경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총장에게 전달하고, 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또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을 이사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경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3장 재무회계

**제19조(법인회계 등)**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법인회계를 설치하며, 그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회계연도는 그 해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20조(자본금 등)**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자본금은 제22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은 재산을 포함한 자산의 평가액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기채(起債) 또는 장기차입으로 발생하는 부채평가액에 따라 결정되며 자본금의 산정방식, 재산과 부채의 평가방법, 자본금의 증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은 재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ㆍ연구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과 그 외의 재산으로 구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재산 중 교육ㆍ연구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ㆍ면적ㆍ규모 등을 고려한 경미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재산 중 대학 교육ㆍ연구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매도ㆍ증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③ 「고등교육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권리 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관리하는 계좌에 대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예금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제22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무상 양도)** ①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당시의 서울대학교(이하 "종전의 서울대학교"라 한다)가 관리하고 있던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국가유산을 제외한 국유재산 및 물품에 관하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이를 무상으로 양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해당 재산이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운영에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총장의 의견을 듣고,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3. 5. 16., 2025. 10. 1.>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서울대학교가 관리하고 있던 공유재산 및 물품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③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양도ㆍ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5. 10. 1.>

④ 지방자치단체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양도ㆍ대부 또는 사용허가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학교용지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24조(개인재산의 양여 또는 출연)**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양도받거나 그 밖의 출연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제공한 자의 의사 또는 그와의 계약에 따르되, 이에 대하여 특별히 정한 것이 없고 의사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25조(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대학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장기차입을 하거나 학교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교육부장관은 장기차입 또는 학교채 발행을 승인하려면 기획예산처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5. 10. 1.>

**제26조(예산 및 결산 등)** ① 총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총장은 회계연도마다 회계법인의 검사를 받은 재무제표를 포함한 결산서를 이사회의 의결이 있은 후 2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③ 총장은 법인회계의 예산 및 결산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3. 12. 30.>

**제27조(잉여금의 처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을 부채 상환에 우선 충당하고, 남을 때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거나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되 학교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28조(수익사업 등)**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교육ㆍ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수익금은 학교 경영에 충당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4장 지원 및 육성 등

**제29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①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육의 질 향상과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를 통하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중ㆍ장기적 교육 및 연구 등의 발전과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에 드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된 기금에 대하여 각종 세금과 공과금에 관한 특례를 규정할 수 있다.<개정 2021. 3. 23.>

**제30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방법 등)** ①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매년 인건비, 경상적 경비, 시설확충비 및 교육ㆍ연구 발전을 위한 지원금을 출연(出捐)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당시 종전의 서울대학교의 예산, 고등교육예산 규모 및 그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매년 출연금을 산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추진하는 사업에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교부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국립대학의 사회적 책무 및 국가의 지원)**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기초학문 등 필요한 분야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4년 단위의 계획을 수립ㆍ공표하고,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실행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우수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ㆍ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학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학ㆍ복지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학생의 경제적 부담과 관련이 없는 자체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노력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32조(대학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 및 국가의 지원)** ① 총장은 4년 단위로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대학운영성과목표를 설정하고,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대학운영성과목표를 반영한 연도별 대학운영계획을 수립ㆍ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도별 대학운영계획의 운영성과를 매년 평가ㆍ공표하고, 그 결과를 행정 및 재정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담당할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기관을 설치하거나 그 평가를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 제5장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부설학교 <개정 2013. 12. 30.>

**제33조(부설학교 등)**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이전에 국가가 설치ㆍ경영하던 종전의 서울대학교 사범계 단과대학에 부설된 초ㆍ중등학교는 제1항에 따른 부설학교로 본다.<개정 2013. 1. 23.>

③ 국가는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제2항의 부설학교에 관한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양도하여야 한다.<개정 2013. 1. 23.>

**제33조의2(수업료 등)**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부설하여 설치ㆍ운영하는 학교(이하 "부설학교"라 한다)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의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에 관한 사항은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제2항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3. 12. 30.]

**제33조의3(교직원 임면)** ① 부설학교에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원 및 직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원 및 직원은 총장이 임면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원 및 직원의 자격ㆍ임면ㆍ복무, 신분보장 및 징계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립학교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할청"은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3. 12. 30.]

**제33조의4(법인회계와 부설학교회계의 통합 운영)** 부설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에 따른 학교회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제19조에 따른 법인회계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설학교 부분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12. 30.]

**제33조의5(양도받은 재산 및 물품의 자본금 산정 등)** ① 제33조제3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양도받은 재산 및 물품의 자본금 산정과 관리ㆍ보호 등에 대하여는 제20조와 제21조를 적용한다.

② 부설학교의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 등의 지원금은 제3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부설학교"로 본다.

[본조신설 2013. 12. 30.]

## 제6장 보칙 <신설 2013. 12. 30.>

**제34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아닌 자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명칭과 표장(標章)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임원 및 교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6조(「민법」의 준용)**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7장 벌칙 <개정 2013. 12. 30.>

**제37조(과태료 등)** ① 제34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3. 3. 23.>

**부칙** <제10413호,2010. 1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준비위원회) ① 종전의 서울대학교 총장은 이 법 시행 전에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설립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설립준비위원으로 구성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설립준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설립준비위원은 종전의 서울대학교 총장을 포함하여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설립준비위원회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종전의 서울대학교 총장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 위촉한다.
③ 설립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은 종전의 서울대학교 총장이 겸임한다.

**제3조**(설립절차) ① 설립준비위원회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최초의 이사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준비위원회에서 선임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선임되는 이사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로 하고, 제2항에 따라 선임되는 감사는 2명으로 하되, 감사 중 1명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어야 한다.
④ 설립준비위원회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이사와 감사가 선임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제3조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 설립준비위원회는 제4항의 등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무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총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⑥ 설립준비위원은 제5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 해임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총장 임명에 관한 특례) ① 종전의 서울대학교 총장은 「교육공무원법」 제28조제1호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 동안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총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② 종전의 서울대학교 총장은 그 남은 임기 동안 이사장을 겸임한다.

**제5조**(교직원의 임용 특례) ① 종전의 서울대학교 총장은 종전의 서울대학교 소속 교직원을 본인의 희망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될 사람과 그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될 것을 희망한 사람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설립된 때에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될 것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소속, 신분 보장 및 복무 관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교원인 공무원의 경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설립된 이후 5년간 공무원 신분을 보유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된 사람의 정년은 그 교직원의 퇴직 당시의 직급에 적용되던 「국가공무원법」 또는 「교육공무원법」 상의 정년에 따른다. 다만,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 정년이 「국가공무원법」 또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정년보다 장기일 때에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의 정년을 따른다.

**제6조**(기성회 직원의 임용 특례) ① 종전의 서울대학교 기성회(설립자의 부담으로 미치지 못하는 긴급한 교육시설, 대학 운영 등을 지원함으로써 면학 분위기 조성과 교육 여건 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종전의 서울대학교에 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직원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설립된 때에 그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직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종전의 서울대학교 기성회 직원에서 퇴직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직원으로 임용되는 사람의 정년은 제2항에 따라 그 직원이 퇴직하는 당시의 기성회의 규약상의 정년에 따른다. 다만,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직원 정년이 기성회의 규약상의 정년보다 장기일 때에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직원의 정년을 따른다.

**제7조**(연금 적용의 특례) ①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는 교직원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이후 임용되는 교직원에 대하여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한다. 다만,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되는 교직원 중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당시 공무원인 교직원은 국립대

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된 때부터 20년간 다음 각 호에 따라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1.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원하는 사람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원연금법」의 적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공무원연금법」의 적용 신청을 한 사람(이하 "공무원연금법적용교직원"이라 한다)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본다.
3. 공무원연금법적용교직원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된 때부터 20년이 되는 달의 말일에 공무원에서 퇴직한 것으로 본다. 다만, 20년이 되기 전에 국립대학법인에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까지 공무원으로 재직한 것으로 본다.
4. 공무원연금법적용교직원의 보수월액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될 당시의 공무원 보수월액에 매년 공무원평균보수인상률과 호봉승급분을 반영한 금액으로 한다.
5. 공무원연금법적용교직원에 대하여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서의 재직ㆍ직무(「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기간 동안의 재직ㆍ직무를 말한다)를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직ㆍ공무로 본다.
6. 공무원연금법적용교직원에 대하여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총장을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관장으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직원으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를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기여금징수의무자로 본다.

②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당시 공무원이었던 종전의 서울대학교 교직원 중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의 퇴직급여와 유족급여(「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제1항에서 준용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족연금 및 「공무원연금법」 제61조에 따른 유족보상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퇴직수당을 별도 회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직원의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에 필요한 비용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반납금,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개인부담금,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국가부담금, 같은 법 제48조의3에 따른 병역복무기간의 부담금 및 그 운용수익금과 같은 법 제52조의2에 따른 연금액의 이체금액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은 국가가 보전(補塡)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퇴직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같은 법 제31조제1항의 재직기간에 공무원 재직기간을 합산한다. 다만, 그 교직원이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당시 「공무원연금법」 제61조의2에 따른 퇴직수당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공무원연금공단은 제4항 본문에 따라 공무원 재직기간을 합산하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의 퇴직수당을 공무원에서 퇴직한 때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산정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이체하여야 한다.

⑥ 제4항 본문에 따른 재직기간 합산을 위하여 제5항에 따른 이체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은 국가가 지원한다.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과 제6항에 따른 국가의 보전금 및 지원금을 별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⑧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당시 공무원이었던 종전의 서울대학교 교직원 중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교직원에 대한 국가부담금은 같은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법」 제69조제1항 본문을 준용한다.

**제8조**(국가의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종전의 서울대학교 학교 경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국가의 권리ㆍ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다만, 권리ㆍ의무의 성격상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포괄 승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내용 및 귀속 관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종전의 서울대학교 총장이 행한 행위의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서울대학교 총장이 학교 운영상 한 행위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총장이 행한 행위로 본다.

**제10조**(종전의 서울대학교 재적생 등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서울대학교의 재적생(在籍生), 졸업생 및 제적(除籍)ㆍ제명(除名)된 사람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재적생, 졸업생 및 제적ㆍ제명된 사람으로 본다.

**제11조**(종전의 서울대학교 회계의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법인회계는 종전의 서울대학교 국고지원금을 관리하던 회계와 기성회의 회계를 승계한다.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국립학교"를 "국가가 설립ㆍ경영하거나 국가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로 한다.

②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원

제7조의2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직원 및 조교

③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4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가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설치하는 국립대학교의 교원, 직원 및 조교 중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교원, 직원 및 조교에 대하여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교원, 직원 및 조교는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직원으로, 국가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설치하는 국립대학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학교경영기관으로 본다.

④ 초ㆍ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법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하거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제11621호,2013. 1. 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설학교 교직원의 임용에 관한 특례)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총장은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부설학교 교직원(이하 "부설학교 교직원"이라 한다)을 본인의 희망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될 사람과 그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될 것을 희망한 사람은 이 법이 시행되는 때에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될 것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소속, 신분 보장 및 복무 관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교원인 공무원의 경우 이 법 시행 후 5년간 공무원 신분을 보유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된 사람의 정년은 그 교직원의 퇴직 당시의 직급에 적용되던 「국가공무원법」 또는 「교육공무원법」 상의 정년에 따른다. 다만,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 정년이 「국가공무원법」 또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정년보다 장기일 때에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의 정년을 따른다.

**제3조**(부설학교 교직원에 대한 연금 적용에 관한 특례) ①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는 교직원과 이 법 시행 후 임용되는 교직원에 대하여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되는 교직원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무원이었던 교직원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된 때부터 20년간 다음 각 호에 따라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1.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원하는 사람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공무원연금공단에 같은 법의 적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공무원연금법」의 적용 신청을 한 사람(이하 "공무원연금법적용교직원"이라 한다)은 같은 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본다.
3. 공무원연금법적용교직원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된 때부터 20년이 되는 달의 말일에 공무원에서 퇴직한 것으로 본다. 다만, 20년이 되기 전에 국립대학법인에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까지 공무원으로 재직한

것으로 본다.

4. 공무원연금법적용교직원의 보수월액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될 당시의 공무원 보수월액에 매년 공무원평균보수인상률과 호봉승급분을 반영한 금액으로 한다.
5. 공무원연금법적용교직원에 대하여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서의 재직ㆍ직무(「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기간 동안의 재직ㆍ직무를 말한다)를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직ㆍ공무로 본다.
6. 공무원연금법적용교직원에 대하여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총장을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관장으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직원으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를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기여금징수의무자로 본다.

②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이 법 시행 전에 공무원이었던 부설학교 교직원 중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의 퇴직급여와 유족급여(「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제1항에서 준용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족연금 및 「공무원연금법」 제61조에 따른 유족보상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퇴직수당을 별도 회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직원의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에 필요한 비용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반납금,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개인부담금,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국가부담금, 같은 법 제48조의3에 따른 병역복무기간의 부담금 및 그 운용수익금과 같은 법 제52조의2에 따른 연금액의 이체금액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은 국가가 보전(補塡)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퇴직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의 재직기간에 공무원 재직기간을 합산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공무원연금법」 제61조의2에 따른 퇴직수당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공무원연금공단은 이 법 시행 전에 공무원이었던 부설학교 교직원 중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의 퇴직급여 및 제4항 본문에 따라 공무원 재직기간을 합산하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의 퇴직수당을 공무원에서 퇴직한 때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산정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이체하여야 한다.

⑥ 제4항 본문에 따른 재직기간 합산을 위하여 제5항에 따른 이체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은 국가가 지원한다.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과 제6항에 따른 국가의 보전금 및 지원금을 별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⑧ 이 법 시행 전에 공무원이었던 부설학교 교직원 중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교직원에 대한 국가부담금은 같은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법」 제69조제1항 본문을 준용한다.

**부칙** <제11690호,2013. 3. 23.>(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2* 까지 생략

2(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5조 후단,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4조제2항, 제21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22조제1항 후단, 제3항 후단,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37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3) 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122호,2013. 12.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산 및 결산 내용의 공시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결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438호,2019. 8.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겸직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교원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872호,2020. 1. 2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54호,2021. 3. 23.>(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9409호,2023. 5. 16.>(국가유산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전단 중 “「문화재보호법」”을 “「국가유산기본법」”으로, “문화재를”을 “국가유산을”로 한다.

⑥부터2^ 까지 생략

**부칙** <제21065호,2025. 10. 1.>(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획예산처차관

제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교육부차관

제22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60>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타법개정]

교육부 (국립대학지원과) 044 - 203 - 6918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등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자산의 총액

**제3조(이전등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 1. 21.]

**제4조(변경등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제2조 각 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3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 1. 21.]

**제5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각의 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설립등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
2. 제3조에 따른 이전등기: 주된 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3. 제4조에 따른 변경등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제6조(등기기간의 기산)**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기할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이 필요한 것은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된 날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起算)한다. <개정 2013. 3. 23.>

**제7조(결격사유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법이나 이 영 또는 「고등교육법」으로 정하는 규정의 위반이나 이에 따른 명령의 불이행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사유로 인한 임원 취임승인의 취소는 교육부장관이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5일이 지나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제7조의2(교수 등의 사외이사 겸직허가 기준 등)** ① 총장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에 대한 사외이사 겸직허가를 하려면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4제1항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허가의 필요성
2. 허가 기간의 적절성
3. 허가 대상기업의 적합성
4. 그 밖에 총장이 학생의 교육ㆍ지도 및 학문연구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그 해에 해당 사기업체로부터 받은 보수 일체를 보고하는 경우 해당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지급 내역이 포함된 서류를 해당 사기업체로부터 발급받아 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연도 보수 일체의 월별 지급 내역
2. 교통비 및 회의수당 등 항목별 지급 내역

③ 제1항에 따른 겸직허가의 세부기준은 총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 2. 18.]

**제7조의3(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15조의3제3항 전단에 따른 대학의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 등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이하 "양성평등조치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한 계열별 구분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1의 계열별 구분에 따른다.

② 총장은 양성평등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개시 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추진 실적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이 법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양성평등조치계획 및 그 추진 실적을 평가할 때에는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방문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7. 21.]

**제8조(교육ㆍ연구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ㆍ연구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2항에 따른 교사(校舍) 및 교지(校地)(이하 "교사 및 교지"라 한다)
2. 그 밖에 교육ㆍ연구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ㆍ설비 및 교재ㆍ교구

**제9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①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교사 및 교지를 제외하고 교육ㆍ연구에 사용되는 재산을 말한다.

②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ㆍ면적ㆍ규모 등을 고려한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한 처분
2. 10억원 미만의 가액 한도에서 하는 매도, 증여, 교환, 용도변경 또는 담보 제공

③ 교사 및 교지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매도ㆍ증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학교 이전 또는 시설 노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교육ㆍ연구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환하거나 용도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제10조(국가유산 관리 업무의 위탁 및 재정 지원)**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당시의 서울대학교(이하 “종전의 서울대학교”라 한다)가 관리하고 있던 「국가유산기본법」 제33조에 따른 국유에 속하는 국가유산에 관하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육ㆍ연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관리 업무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5. 7.>

②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제1항의 관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 5. 7.]

**제11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무상 양도)**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무상으로 양도하여야 하는 국유재산 및 물품은 2011년 12월 28일 현재 교육, 연구, 사회봉사, 산학협력 및 학생ㆍ교직원의 복리 후생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될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른 협의를 할 때에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설립등기일 3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의견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5. 12. 30.>

1. 국유재산과 물품의 표시, 수량, 가격, 현황 및 용도
2. 무상 양도의 목적 또는 사유
3. 제1항에 따라 교육, 연구, 사회봉사, 산학협력 및 학생ㆍ교직원의 복리 후생에 사용될 계획이 수립된 국유재산 및 물품의 경우에는 그 사업의 계획서와 예산서 등 필요한 자금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무상 양도와 관련된 사항

③ 법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국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재산 및 물품의 가격은 대장(臺帳) 가격으로 한다.

④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무상 양도, 무상 대부 또는 무상 사용은 교육부장관이 국유재산 및 물품의 표시, 수량, 가격, 현황 및 용도 등을 명확히 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와 맺은 양도, 대부 또는 사용의 계약에 따른다.<개정 2013. 3. 23., 2025.

12. 30.>

⑤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의 무상 대부 또는 무상 사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와 맺은 대부 또는 사용 계약에 따른다.

**제12조(「국유재산법」 등의 적용)** ① 법 제2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의 무상 양도, 무상 대부 또는 무상 사용의 절차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국유재산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또는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

② 법 제22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의 무상 양도, 무상 대부 또는 무상 사용의 절차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차입을 하거나 학교채를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차입금액, 차입처 및 차입사유를 적은 서류(장기차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2. 학교채 발행한도액, 모집대상 및 발행사유를 적은 서류(학교채 발행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상환방법 및 상환계획을 적은 서류
4. 이사회 회의록 사본

**제14조(예산안ㆍ결산서 제출)** ① 총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5일 전까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예산 총칙
2. 직원의 보수(수당 포함) 일람표
3. 기구와 정원 일람표
4. 이사회 회의록 사본

② 총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1. 해당 연도의 운영계산서 및 재무상태표 등 재무제표
2.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3. 해당 연도에 검사를 한 회계법인의 의견서와 감사보고서
4. 이사회 회의록 사본
5. 그 밖에 결산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14조의2(예산의 공시 항목 및 시기 등)** ① 총장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법인회계의 예산의 내용을 공시할 때에는 등록금 명세서, 인건비 명세서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예산부속명세서를 포함한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법인회계의 예산의 내용을 공시할 때에는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5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시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③ 총장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법인회계의 예산의 내용을 공시할 때에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6. 25.]

**제14조의3(결산의 공시 항목 및 시기 등)** ① 총장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법인회계의 결산의 내용을 공시할 때에는 받을 어음 명세서, 유형고정자산 명세서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결산 부속명세서를 포함한 결산서와 제1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감사보고서(의견서를 포함한다)를 공시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법인회계의 결산의 내용을 공시할 때에는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시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③ 총장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법인회계의 결산의 내용을 공시할 때에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6. 25.]

**제15조(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① 총장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2. 출연금 예산요구서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는 데 필요한 서류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출연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내용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출연금 예산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총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제16조(출연금의 지급)** ① 총장은 출연금을 받으려면 그 지급신청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은 교육부장관은 사업계획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분기별로 출연금을 지급한다.<개정 2013. 3. 23.>

**제17조(기초학문의 지원ㆍ육성)**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기초학문 등 필요한 분야의 지원ㆍ육성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기초학문진흥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기초학문진흥위원회는 15명 이내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내외의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기초학문진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초학문 등 필요한 분야의 지원ㆍ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기초학문 등 필요한 분야의 지원ㆍ육성계획 시행을 위한 재원확충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기초학문 등 필요한 분야의 지원ㆍ육성계획 시행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초학문진흥위원회가 기초학문 등 필요한 분야의 지원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기초학문진흥위원회는 제3항의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전달하고, 총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초학문진흥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 총장은 국가로부터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1. 지원ㆍ육성사업의 목표 및 효과
2. 지원ㆍ육성 분야 및 실행계획
3. 지원ㆍ육성사업에 드는 경비와 지원받으려는 금액

**제18조(학생의 장학ㆍ복지)**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학생의 장학ㆍ복지 시책 수립 등을 위하여 장학ㆍ복지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장학ㆍ복지위원회는 15명 이내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내외의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장학ㆍ복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의 장학ㆍ복지 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학생의 장학ㆍ복지 시책 시행을 위한 재원확충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학생의 장학ㆍ복지 시책 시행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학ㆍ복지위원회가 학생의 장학ㆍ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장학ㆍ복지위원회는 제3항의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전달하고, 총장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학ㆍ복지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9조(자체재원의 확충)**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자체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실행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부설학교 등)** ① 삭제 <2014. 1. 21.>

② 삭제<2014. 1. 21.>

③ 삭제<2014. 1. 21.>

④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설학교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14. 1. 21.>

⑤ 삭제<2014. 1. 21.>

⑥ 삭제<2014. 1. 21.>

⑦ 총장은 서울특별시가 설립ㆍ경영하는 고등학교를 서울특별시교육감과 협약을 통하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사범계 단과대학의 부설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제23116호,2011. 9.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서울대학교 설치령을 폐지한다.

**제3조**(교직원의 임용 특례) ① 법 부칙 제5조제3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되기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종전의 서울대학교 소속 교원인 공무원은 공무원 신분으로 교육부에 소속되고, 그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파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파견기간은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5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원은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국립대학의 교원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원에 대하여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2호 비고에 따라 연봉상한액을 책정하는 경우에 "소속 국립대학의 장의 연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특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보수"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교원에 대하여 「공무원보수규정」 제39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에 "국립대학의 장"은 "교육부장관"으로 보고, "대학별로 실시하는 성과평가"는 "교육부장관이 실시하는 성과평가"로 한다. <개정 2013. 3. 23.>

⑥ 제2항에 따라 파견근무를 하는 교원의 인사관리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다만,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 3. 23.>

⑦ 법 부칙 제5조제3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직원으로 임용되기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종전의 서울대학교 소속 직원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설립된 이후 1년간 공무원 신분으로 교육부에 소속되고, 그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⑧ 제7항에 따른 직원의 신분보장 및 복무 관계 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다.

**제4조**(국가부담금의 계상 및 납부 등) ① 국가는 법 부칙 제7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국가보전금 및 국가지원금(이하 "국가보전금 및 국가지원금"이라 한다)을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년도에 부족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도 함께 계상하여야 한다.

②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매년 3월 31일까지 국가보전금 및 국가지원금의 다음 해 소요액을 산출하고 그 산출내역을 명백히 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보전금 및 국가지원금을 1년을 4기로 나누어 매 분기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연금수납기관에 납입하여야 하며, 이를 수납한 연금수납기관은 영수증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발급하고 지체 없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입금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④ 국가가 국가보전금 및 국가지원금으로 해당 회계연도 말까지 납입한 금액이 실제 든 비용보다 적거나 많을 때에는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정산하지 아니한 경우(해당 회계연도 내에 전액을 공단에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금액을 원금으로 하고 이자(해당 연도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 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가산한 금액으로 정산하되, 이자는 회계연도마다 복리로 계산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국립학교 설치령」 제9조제1항, 「서울대학교 설치령」 제11조제1항”을 “「국립학교 설치령」 제9조제1항”으로, “서울대학교 및 한국교원대학교”를 “한국교원대학교”로 한다.

②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이”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에서”로 한다.

제14조 중 “서울대학교총장”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총장”으로 한다.

③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서울대학교”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이”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에서”로 한다.

제14조 중 “서울대학교총장”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총장”으로 한다.

④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서울대학교”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로 한다.

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5항 중 “「국립학교 설치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의 장의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동설치령 별표 5 및 「서울대학교 설치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립학교 설치령」 별표 1에 따른 특수학교와 각종학교 및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학교의 장의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국립학교 설치령」 별표 5에 따른”으로 한다.

⑥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립학교 설치령」, 「서울대학교 설치령」”을 “「국립학교 설치령」”으로 한다.

⑦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2호나목4) 중 “ 기획연구실장(서울대학교의 경우는 기획실장) ”을 “ 기획연구실장 ”으로 한다.

별표 13의 교육공무원의 지급대상란 중 “ 기획연구실장(서울대학교의 경우는 기획실장) ”을 “ 기획연구실장 ”으로 한다.

⑧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다목 중 “ 기획연구실장(서울대학교의 경우는 기획실장) ”을 “ 기획연구실장 ”으로 한다.

⑨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각종 학교 ”를 “ 각종 학교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의 학교 ”로 한다.

**부칙** <제24423호,2013. 3. 2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2@ 까지 생략

2#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7조제2항, 제9조제3항 단서,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5항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 중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을 각각 “ 교육부장관 ”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3116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1항ㆍ제7항 중 “ 교육과학기술부 ”를 각각 “ 교육부 ”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 단서 중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을 각각 “ 교육부장관 ”으로 한다.

2$ 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 <제25105호,2014. 1.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직원의 임용 특례)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0조제1항 각 호의 학교 소속 교원인 공무원으로서 법률 제11621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3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부설학교(이하 “ 부설학교 ”라 한다)의 교원으로 임용되기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은 공무원 신분으로 교육부에 소속되고, 그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에 따라 부설학교에 파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파견기간은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5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원은 「공무원보수규정」,「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국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원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라 파견근무를 하는 것으로 보는 교원의 인사관리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다만,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0조제1항 각 호의 학교 소속 직원으로서 법률 제11621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3항에 따라 부설학교의 직원으로 임용되기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이 영 시행 이후 1년간 공무원 신분으로 교육부에 소속되고, 그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⑥ 제5항에 따른 직원의 신분보장 및 복무 관계 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다.

**제3조**(부설학교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설학교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제20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3개월까지는 종전의 제20조제1항 각 호의 학교 학칙에 따른다.

**부칙** <제25395호,2014. 6. 25.>

이 영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414호,2020. 2. 18.>

이 영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857호,2020. 7. 21.>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487호,2024. 5. 7.>(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문화재 관리 업무의 위탁 및 재정 지원)"을 "(국가유산 관리 업무의 위탁 및 재정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문화재보호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국유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3조에 따른 국유에 속하는 국가유산"으로 한다.

⑬부터 <5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5228호,2025. 1. 21.>(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47호,2025. 12. 30.>(재정경제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9>까지 생략

<90>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 기획재정부장관 ”을 각각 “ 재정경제부장관 ”으로 한다.

<91>부터 <313>까지 생략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등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자산의 총액

**제3조(이전등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 1. 21.]

**제4조(변경등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제2조 각 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3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 1. 21.]

**제5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각의 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설립등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
2. 제3조에 따른 이전등기: 주된 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3. 제4조에 따른 변경등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제6조(등기기간의 기산)**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기할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이 필요한 것은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된 날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起算)한다. <개정 2013. 3. 23.>

**제7조(결격사유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법이나 이 영 또는 「고등교육법」으로 정하는 규정의 위반이나 이에 따른 명령의 불이행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사유로 인한 임원 취임승인의 취소는 교육부장관이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5일이 지나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제7조의2(교수 등의 사외이사 겸직허가 기준 등)** ① 총장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에 대한 사외이사 겸직허가를 하려면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4제1항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허가의 필요성
2. 허가 기간의 적절성
3. 허가 대상기업의 적합성
4. 그 밖에 총장이 학생의 교육ㆍ지도 및 학문연구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그 해에 해당 사기업체로부터 받은 보수 일체를 보고하는 경우 해당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지급 내역이 포함된 서류를 해당 사기업체로부터 발급받아 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연도 보수 일체의 월별 지급 내역
2. 교통비 및 회의수당 등 항목별 지급 내역

③ 제1항에 따른 겸직허가의 세부기준은 총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 2. 18.]

**제7조의3(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15조의3제3항 전단에 따른 대학의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 등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이하 "양성평등조치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한 계열별 구분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1의 계열별 구분에 따른다.

② 총장은 양성평등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개시 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추진 실적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이 법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양성평등조치계획 및 그 추진 실적을 평가할 때에는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방문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7. 21.]

**제8조(교육ㆍ연구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ㆍ연구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2항에 따른 교사(校舍) 및 교지(校地)(이하 "교사 및 교지"라 한다)
2. 그 밖에 교육ㆍ연구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ㆍ설비 및 교재ㆍ교구

**제9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①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교사 및 교지를 제외하고 교육ㆍ연구에 사용되는 재산을 말한다.

②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ㆍ면적ㆍ규모 등을 고려한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한 처분
2. 10억원 미만의 가액 한도에서 하는 매도, 증여, 교환, 용도변경 또는 담보 제공

③ 교사 및 교지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매도ㆍ증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학교 이전 또는 시설 노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교육ㆍ연구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환하거나 용도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제10조(국가유산 관리 업무의 위탁 및 재정 지원)**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당시의 서울대학교(이하 "종전의 서울대학교"라 한다)가 관리하고 있던 「국가유산기본법」 제33조에 따른 국유에 속하는 국가유산에 관하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육ㆍ연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관리 업무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5. 7.>

②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제1항의 관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 5. 7.]

**제11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무상 양도)**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무상으로 양도하여야 하는 국유재산 및 물품은 2011년 12월 28일 현재 교육, 연구, 사회봉사, 산학협력 및 학생ㆍ교직원의 복리 후생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될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른 협의를 할 때에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설립등기일 3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의견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5. 12. 30.>

1. 국유재산과 물품의 표시, 수량, 가격, 현황 및 용도
2. 무상 양도의 목적 또는 사유
3. 제1항에 따라 교육, 연구, 사회봉사, 산학협력 및 학생ㆍ교직원의 복리 후생에 사용될 계획이 수립된 국유재산 및 물품의 경우에는 그 사업의 계획서와 예산서 등 필요한 자금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무상 양도와 관련된 사항

③ 법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국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재산 및 물품의 가격은 대장(臺帳) 가격으로 한다.

④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무상 양도, 무상 대부 또는 무상 사용은 교육부장관이 국유재산 및 물품의 표시, 수량, 가격, 현황 및 용도 등을 명확히 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와 맺은 양도, 대부 또는 사용의 계약에 따른다.<개정 2013. 3. 23., 2025. 12. 30.>

⑤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의 무상 대부 또는 무상 사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와 맺은 대부 또는 사용 계약에 따른다.

**제12조(「국유재산법」 등의 적용)** ① 법 제2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의 무상 양도, 무상 대부 또는 무상 사용의 절차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국유재산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또는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

② 법 제22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의 무상 양도, 무상 대부 또는 무상 사용의 절차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차입을 하거나 학교채를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차입금액, 차입처 및 차입사유를 적은 서류(장기차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2. 학교채 발행한도액, 모집대상 및 발행사유를 적은 서류(학교채 발행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상환방법 및 상환계획을 적은 서류
4. 이사회 회의록 사본

**제14조(예산안ㆍ결산서 제출)** ① 총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5일 전까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예산 총칙
2. 직원의 보수(수당 포함) 일람표
3. 기구와 정원 일람표
4. 이사회 회의록 사본

② 총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1. 해당 연도의 운영계산서 및 재무상태표 등 재무제표
2.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3. 해당 연도에 검사를 한 회계법인의 의견서와 감사보고서
4. 이사회 회의록 사본
5. 그 밖에 결산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14조의2(예산의 공시 항목 및 시기 등)** ① 총장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법인회계의 예산의 내용을 공시할 때에는 등록금 명세서, 인건비 명세서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예산부속명세서를 포함한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법인회계의 예산의 내용을 공시할 때에는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5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시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③ 총장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법인회계의 예산의 내용을 공시할 때에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6. 25.]

**제14조의3(결산의 공시 항목 및 시기 등)** ① 총장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법인회계의 결산의 내용을 공시할 때에는 받을 어음 명세서, 유형고정자산 명세서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결산 부속명세서를 포함한 결산서와 제1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감사보고서(의견서를 포함한다)를 공시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법인회계의 결산의 내용을 공시할 때에는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시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③ 총장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법인회계의 결산의 내용을 공시할 때에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6. 25.]

**제15조(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① 총장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2. 출연금 예산요구서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는 데 필요한 서류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출연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내용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출연금 예산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총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제16조(출연금의 지급)** ① 총장은 출연금을 받으려면 그 지급신청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은 교육부장관은 사업계획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분기별로 출연금을 지급한다.<개정 2013. 3. 23.>

**제17조(기초학문의 지원ㆍ육성)**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기초학문 등 필요한 분야의 지원ㆍ육성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기초학문진흥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기초학문진흥위원회는 15명 이내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내외의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기초학문진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초학문 등 필요한 분야의 지원ㆍ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기초학문 등 필요한 분야의 지원ㆍ육성계획 시행을 위한 재원확충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기초학문 등 필요한 분야의 지원ㆍ육성계획 시행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초학문진흥위원회가 기초학문 등 필요한 분야의 지원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기초학문진흥위원회는 제3항의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전달하고, 총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초학문진흥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 총장은 국가로부터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1. 지원ㆍ육성사업의 목표 및 효과
2. 지원ㆍ육성 분야 및 실행계획
3. 지원ㆍ육성사업에 드는 경비와 지원받으려는 금액

**제18조(학생의 장학ㆍ복지)**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학생의 장학ㆍ복지 시책 수립 등을 위하여 장학ㆍ복지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장학ㆍ복지위원회는 15명 이내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내외의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장학ㆍ복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의 장학ㆍ복지 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학생의 장학ㆍ복지 시책 시행을 위한 재원확충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학생의 장학ㆍ복지 시책 시행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학ㆍ복지위원회가 학생의 장학ㆍ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장학ㆍ복지위원회는 제3항의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전달하고, 총장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학ㆍ복지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9조(자체재원의 확충)**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자체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실행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부설학교 등)** ① 삭제 <2014. 1. 21.>
② 삭제<2014. 1. 21.>
③ 삭제<2014. 1. 21.>
④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설학교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14. 1. 21.>
⑤ 삭제<2014. 1. 21.>
⑥ 삭제<2014. 1. 21.>
⑦ 총장은 서울특별시가 설립ㆍ경영하는 고등학교를 서울특별시교육감과 협약을 통하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사범계 단과대학의 부설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제23116호,2011. 9.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서울대학교 설치령을 폐지한다.

**제3조**(교직원의 임용 특례) ① 법 부칙 제5조제3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되기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종전의 서울대학교 소속 교원인 공무원은 공무원 신분으로 교육부에 소속되고, 그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파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파견기간은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5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원은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국립대학의 교원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원에 대하여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2호 비고에 따라 연봉상한액을 책정하는 경우에 "소속 국립대학의 장의 연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특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보수"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교원에 대하여 「공무원보수규정」 제39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에 "국립대학의 장"은 "교육부장관"으로 보고, "대학별로 실시하는 성과평가"는 "교육부장관이 실시하는 성과평가"로 한다. <개정 2013. 3. 23.>

⑥ 제2항에 따라 파견근무를 하는 교원의 인사관리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다만,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 3. 23.>

⑦ 법 부칙 제5조제3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직원으로 임용되기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종전의 서울대학교 소속 직원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설립된 이후 1년간 공무원 신분으로 교육부에 소속되고, 그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⑧ 제7항에 따른 직원의 신분보장 및 복무 관계 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다.

**제4조**(국가부담금의 계상 및 납부 등) ① 국가는 법 부칙 제7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국가보전금 및 국가지원금(이하 "국가보전금 및 국가지원금"이라 한다)을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년도에 부족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도 함께 계상하여야 한다.

②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매년 3월 31일까지 국가보전금 및 국가지원금의 다음 해 소요액을 산출하고 그 산출내역을 명백히 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보전금 및 국가지원금을 1년을 4기로 나누어 매 분기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연금수납기관에 납입하여야 하며, 이를 수납한 연금수납기관은 영수증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발급하고 지체 없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

교교직원연금공단에 입금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④ 국가가 국가보전금 및 국가지원금으로 해당 회계연도 말까지 납입한 금액이 실제 든 비용보다 적거나 많을 때에는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정산하지 아니한 경우(해당 회계연도 내에 전액을 공단에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금액을 원금으로 하고 이자(해당 연도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 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가산한 금액으로 정산하되, 이자는 회계연도마다 복리로 계산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국립학교 설치령」 제9조제1항, 「서울대학교 설치령」 제11조제1항”을 “「국립학교 설치령」 제9조제1항”으로, “서울대학교 및 한국교원대학교”를 “한국교원대학교”로 한다.

②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이”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에서”로 한다.

제14조 중 “서울대학교총장”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총장”으로 한다.

③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서울대학교”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이”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에서”로 한다.

제14조 중 “서울대학교총장”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총장”으로 한다.

④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서울대학교”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로 한다.

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5항 중 “「국립학교 설치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의 장의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동설치령 별표 5 및 「서울대학교 설치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립학교 설치령」 별표 1에 따른 특수학교와 각종학교 및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학교의 장의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국립학교 설치령」 별표 5에 따른”으로 한다.

⑥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립학교 설치령」, 「서울대학교 설치령」”을 “「국립학교 설치령」”으로 한다.

⑦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2호나목4) 중 “기획연구실장(서울대학교의 경우는 기획실장)”을 “기획연구실장”으로 한다.

별표 13의 교육공무원의 지급대상란 중 “ 기획연구실장(서울대학교의 경우는 기획실장) ”을 “ 기획연구실장 ”으로 한다.

⑧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다목 중 “ 기획연구실장(서울대학교의 경우는 기획실장) ”을 “ 기획연구실장 ”으로 한다.

⑨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각종 학교 ”를 “ 각종 학교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의 학교 ”로 한다.

**부칙** <제24423호,2013. 3. 2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2@ 까지 생략

2#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7조제2항, 제9조제3항 단서,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5항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 중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을 각각 “ 교육부장관 ”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3116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1항ㆍ제7항 중 “ 교육과학기술부 ”를 각각 “ 교육부 ”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 단서 중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을 각각 “ 교육부장관 ”으로 한다.

2$ 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 <제25105호,2014. 1.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직원의 임용 특례)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0조제1항 각 호의 학교 소속 교원인 공무원으로서 법률 제11621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3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부설학교(이하 “ 부설학교 ”라 한다)의 교원으로 임용되기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은 공무원 신분으로 교육부에 소속되고, 그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에 따라 부설학교에 파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파견기간은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5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원은 「공무원보수규정」,「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국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원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라 파견근무를 하는 것으로 보는 교원의 인사관리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다만,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0조제1항 각 호의 학교 소속 직원으로서 법률 제11621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3항에 따라 부설학교의 직원으로 임용되기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이 영 시행 이후 1년간 공무원 신분으로 교육부에 소속되고, 그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⑥ 제5항에 따른 직원의 신분보장 및 복무 관계 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다.

**제3조**(부설학교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설학교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제20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3개월까지는 종전의 제20조제1항 각 호의 학교 학칙에 따른다.

**부칙** <제25395호,2014. 6. 25.>

이 영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414호,2020. 2. 18.>

이 영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857호,2020. 7. 21.>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487호,2024. 5. 7.>(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문화재 관리 업무의 위탁 및 재정 지원)”을 “(국가유산 관리 업무의 위탁 및 재정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문화재보호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국유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3조에 따른 국유에 속하는 국가유산”으로 한다.

⑬부터 <5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5228호,2025. 1. 21.>(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47호,2025. 12. 30.>(재정경제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9>까지 생략

<90>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91>부터 <313>까지 생략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 6. 30.] [교육부령 제240호, 2021. 6. 30., 타법개정]

교육부 (국립대학지원과) 044 - 203 - 69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자금 ” 이란 현금, 예금, 수표 및 우편환(郵便換) 등을 말한다.
2. “ 전기말 ” 이란 전(前) 회계연도의 말일을 말한다.
3. “ 기말 ” 이란 해당 회계연도의 말일을 말한다.
4. “ 당기(當期) ” 란 해당 회계연도를 말한다.
5. “ 적립금 ” 이란 특정한 경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치하는 자금으로서 기금 등에 대응하는 적립액을 말한다.

**제3조(예산부속명세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 영 ” 이라 한다) 제14조의2제1항에서 “ 등록금 명세서, 인건비 명세서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예산부속명세서 ” 란 다음 각 호의 명세서를 말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전기말 추정 미수금 명세서
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전기말 추정 차입금 명세서
3.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등록금 명세서
4.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인건비 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명세서

**제4조(결산부속명세서)** 영 제14조의3제1항에서 “ 받을 어음 명세서, 유형고정자산 명세서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결산부속명세서 ” 란 다음 각 호의 명세서를 말한다. <개정 2019. 9. 17.>

1. 제5조에 따른 재무상태표 부속명세서
2. 제6조에 따른 운영계산서 부속명세서

**제5조(재무상태표 부속명세서)** 재무상태표 부속명세서는 다음 각 호의 명세서로 한다. <개정 2019. 9. 17.>

1.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현금 및 예금 명세서
2.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수표 출납 명세서
3.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선급금(先給金) 명세서
4.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가지급금(假支給金) 명세서

5.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선급(先給) 법인세 명세서
6.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받을 어음 명세서
7.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투자와 기타자산 명세서
8.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투자유가증권 명세서
9.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유형고정자산 명세서
10.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무형고정자산 명세서
11.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단기(장기) 차입금 명세서
12.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미지급금 명세서
13.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가수금(假受金) 명세서
14.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지급 어음 명세서
15.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어음 출납 명세서
16.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차관(외화 장기차입금) 명세서
17.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학교채 명세서
18.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적립금 명세서
19. 그 밖에 필요한 명세서

[제목개정 2019. 9. 17.]

**제6조(운영계산서 부속명세서)** 운영계산서 부속명세서는 다음 각 호의 명세서로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등록금 명세서
2.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전입금 명세서
3.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예비비 사용액 명세서
4.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명세서

**부칙** <제37호,2014. 7. 1.>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호,2019. 9. 17.>(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0호,2021. 6. 30.>(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 전기말 추정 미수금 명세서

(단위: 천원)

| 구 분 | 내 용 | 금 액 | | 비 고 |
|---|---|---|---|---|
| | | | | |
| 합 계 | | | | |

※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를 조정(추가·삭제)할 수 있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 전기말 추정 차입금 명세서

(단위: 천원)

| 허가 근거 | 차입처 | 차입내역 | | 전기말 잔 액 | 지 급 이자율 | 남아 있는 상환기간 | 차기 상환 예 정 액 | 비 고 |
|---|---|---|---|---|---|---|---|---|
| | | 연월일 | 금 액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를 조정(추가·삭제)할 수 있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등록금 명세서

(단위: 천원 또는 원)

| 구분 | 구분(대학ㆍ계열) | 과정 | 세분 | 학기 | 학년(학기) | 학생 수 | 입학금 | | 수업료 | | 합계 | 비고 |
|---|---|---|---|---|---|---|---|---|---|---|---|---|
| | | | | | | | 1인당 금액 | 금액 | 1인당 금액 |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br>·<br>· | ·<br>·<br>· | ·<br>·<br>· | ·<br>·<br>· | ·<br>·<br>· | ·<br>·<br>· | ·<br>·<br>· | ·<br>·<br>· | ·<br>·<br>· | ·<br>·<br>· | ·<br>·<br>· | ·<br>·<br>· |
| 총 계 | | | | | | | | | | | | |

※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를 조정(추가ㆍ삭제)할 수 있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1. 6. 30.>

# 인건비 명세서

(단위: 천원 또는 원)

| 구 분 | 종 류 | 직 급 (또는 대학) | 세 분 | 인 원 | 금 액 | | 비 고 |
|---|---|---|---|---|---|---|---|
| | | | | | 1인당 평균액 | 금 액 | |
| 교 원 | 급 여 | | | | | | |
| | | 소 계 | | | | | |
| | 상 여 | | | | | | |
| | 수 당 | | | | | | |
| | 법정부담금 | | | | | | |
| | 퇴직금 | | | | | | |
| | 합 계 | | | | | | |
| 강 사 | 시간강사<br>특별강사 | | | | | | |
| | 합 계 | | | | | | |
| 조 교 | 인건비 | | | | | | |
| 직 원 | 급 여<br>상 여<br>수 당<br>법정부담금<br>퇴직금 | | | | | | |
| | 합 계 | | | | | | |
| 임시직 | 임금<br>퇴직금 | | | | | | |
| | 합 계 | | | | | | |
| 총 계 | | | | | | | |

※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를 조정(추가·삭제)할 수 있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 현금 및 예금 명세서

(단위: 원)

| 자금의 종 류 | 구 분 (현금 또는 예금) | 용 도 | 예치 기관 | 예금 종류 | 계좌 번호 | (예치) 금액 | 만기일 | 이자율 | 비 고 |
|---|---|---|---|---|---|---|---|---|---|
| 유동 자금 | | | | | | | | | |
| | 계 | | | | | | | | |
| 특정 기금 | | | | | | | | | |
| | 계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를 조정(추가 · 삭제)할 수 있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9. 9. 17.>

# 수표 출납 명세서

| 거래 은행 | 구입 매수 | | | 발행 매수 | | | | 폐기 매수 | | 미사용 매수 | | 비고 |
|---|---|---|---|---|---|---|---|---|---|---|---|---|
| | 구입일 | 번호 | 매수 | 상거래 | 차입용 | 담 보 제공 등 | 매수 소계 | 번호 | 매수 | 번호 | 매수 | |
| | 전기이월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를 조정(추가·삭제)할 수 있음

※ 미사용수표 매수 = 전기이월수표 매수 + 당기구입수표 매수 - 당기발행수표 매수 - 당기폐기수표 매수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

# 선급금 명세서

(단위: 원)

| 구 분 | 내 용 | 금 액 | | 비 고 |
|---|---|---|---|---|
| | | | | |

※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를 조정(추가·삭제)할 수 있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 가지급금 명세서

(단위: 원)

| 구 분 | 수령부서 | 내 용 | 지 급 일 | 금 액 | | 비 고 |
|---|---|---|---|---|---|---|
| | | | | | | |
| 합 계 | | | | | | |

※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를 조정(추가·삭제)할 수 있으나, 지급일은 반드시 표시하여야 함

※ 원칙적으로 가지급금은 결산 시점에 해당 과목으로 대체하거나 정리하여야 함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 선급 법인세 명세서

(단위: 원)

| 연월일 | 내 용 | 징수의무자 | 과세표준<br>(수입이자) | 선급 법인세<br>(원천납부액) | 비 고 |
|---|---|---|---|---|---|
| | | | | | |
| 합 계 | | | | | |

※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를 조정(추가 · 삭제)할 수 있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 받을 어음 명세서

(단위: 원)

| 수령일 | 발행인(기관) | 지급은행 | 어음번호 | 만기일 | 금 액 |
|---|---|---|---|---|---|
| | | | | | |
| 합 계 | | | | | |

※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를 조정(추가·삭제)할 수 있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

# 투자와 기타자산 명세서

(단위: 원)

| 구분 | | 내 용 | 전 기 이월액 | 당기 증감액 | | 기말잔액 | 비 고 |
|---|---|---|---|---|---|---|---|
| | | | | 증가액 | 감소액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를 조정(추가 · 삭제)할 수 있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

# 투자유가증권 명세서

(단위: 원)

| 구 분 | 종 목 | 보유목적 (취득사유) | 1주의 금액 | 주 수 | 취득가액 | 시 가 | 시가 차액 | 비 고 |
|---|---|---|---|---|---|---|---|---|
| 주식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공사채<br>국 채<br>지방채 | 종 목 | | | 액면가액 | 취득가액 | 시 가 | 시가 차액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합 계 | | | | | | | | |

※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를 조정(추가 · 삭제)할 수 있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9. 9. 17.>

# 유형고정자산 명세서

(단위: 원)

| 과 목 | 기초잔액 | 당 기 증가액 | 당 기 감소액 | 기말잔액 | 감가상각 누 계 액 | 미상각 잔 액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작성 시 주의사항

1. 유형고정자산을 재무상태표에 적은 과목별로 구분하여 적음
2. 기초잔액, 당기 증가액, 당기 감소액 및 기말잔액은 그 자산의 취득원가로 적음
3. 자본적 지출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취득원가가 수정된 경우에는 그로 인한 당기 증가액 또는 당기 감소액을 당기 증가액란 또는 당기 감소액란에 괄호를 하여 적고 증가의 사유를 비고란에 적음
4. 기말잔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잔액을 미상각 잔액란에 적음
5.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를 조정(추가·삭제)할 수 있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9. 9. 17.>

# 무형고정자산 명세서

(단위: 원)

| 과 목 | 기초잔액 | 당 기 증가액 | 당 기 감소액 | 기말잔액 | 상각 누계액 | 미상각 잔액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작성 시 주의사항

1. 무형고정자산은 재무상태표에 적은 과목별로 구분하여 적음
2. 자본적 지출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취득원가가 수정된 경우에는 그로 인한 당기 증가액 또는 당기 감소액을 당기 증가액란 또는 당기감 소액란에 괄호를 하여 적고 증가의 사유를 비고란에 적음
3.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를 조정(추가·삭제)할 수 있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5호서식]

# 단기(장기) 차입금 명세서

(단위: 원)

| 허가 근거 | 차입처 | 차입내역 | | 전 기 이월액 | 당기 증감액 | | 기말 잔액 | 지 급 이자율 | 상환 기한 | 상환 회계 | 비고 |
|---|---|---|---|---|---|---|---|---|---|---|---|
| | | 연월일 | 금액 | | 증가액 | 감소액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를 조정(추가 · 삭제)할 수 있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6호서식]

# 미지급금 명세서

(단위: 원)

| 구 분 | 내 용 | 금 액 | | 비 고 |
|---|---|---|---|---|
| | | | | |
| 합 계 | | | | |

※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를 조정(추가·삭제)할 수 있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7호서식]

# 가수금 명세서

(단위: 원)

| 구 분 | 내 용 | 수령일 | 금 액 | | 비 고 |
|---|---|---|---|---|---|
| | | | | | |
| 합 계 | | | | | |

※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를 조정(추가·삭제)할 수 있으나, 수령일은 반드시 표시하여야 함

※ 원칙적으로 가수금은 결산 시점에 해당 과목으로 대체하거나 정리하여야 함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8호서식]

# 지급 어음 명세서

(단위: 원)

| 거래은행 | 발행일 | 발행처 | 내용 | 어음번호 | 매수 | 금액 | | 만기일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를 조정(추가·삭제)할 수 있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9. 9. 17.>

# 어음 출납 명세서

| 거래 은행 | 구입매수 | | | 발행매수 | | | | 폐기매수 | | 미사용매수 | | 비고 |
|---|---|---|---|---|---|---|---|---|---|---|---|---|
| | 구입일 | 번호 | 매수 | 상거래 | 차입용 | 담보 제공 등 | 매수 소계 | 번호 | 매수 | 번호 | 매수 | |
| | 전기이월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를 조정(추가·삭제)할 수 있음

※ 미사용어음 매수 = 전기이월어음 매수 + 당기구입어음 매수 - 당기발행어음 매수 - 당기폐기어음 매수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0호서식]

# 차관(외화 장기차입금) 명세서

(단위: 원)

| 허가근거 | 차입(차관)내용 | | 구 분 | 장부가액 | 평가액 | 평가차액 | 비 고 |
|---|---|---|---|---|---|---|---|
| | 구 분 | 내 용 | | | | | |
| | 승인일 | | 외 화 | | | | |
| | 도입 외화 | | | | | | |
| | 이자율 | | 환 율 | | | | |
| | 용 도 | | | | | | |
| | 상환기간 | | 원 화 | | | | |
| | 승인일 | | 외 화 | | | | |
| | 도입 외화 | | | | | | |
| | 이자율 | | 환 율 | | | | |
| | 용 도 | | | | | | |
| | 상환기간 | | 원 화 | | | | |
| | 승인일 | | 외 화 | | | | |
| | 도입 외화 | | | | | | |
| | 이자율 | | 환 율 | | | | |
| | 용 도 | | | | | | |
| | 상환기간 | | 원 화 | | | | |
| 합 계 | | | | | | | |

※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를 조정(추가 · 삭제)할 수 있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1호서식]

# 학교채 명세서

(단위: 명, 원)

| 학년도 | 구 분 | 기초잔액 | | 당기 증가 | | 당기 상환 | | 기말잔액 | | 비고 |
|---|---|---|---|---|---|---|---|---|---|---|
| | | 인원 | 금액 | 인원 | 금액 | 인원 | 금액 | 인원 | 금액 | |
| 학년도 | 학부모<br>동 문<br>교직원<br>기 타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학년도 | 학부모<br>동 문<br>교직원<br>기 타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학년도 | 학부모<br>동 문<br>교직원<br>기 타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를 조정(추가·삭제)할 수 있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2호서식]

# 적립금 명세서

(단위: 원)

| 계정과목 | | 기초금액 | 수입 | | | 지출 | | | 기말잔액 |
|---|---|---|---|---|---|---|---|---|---|
| 항 | 목 | | 적립 | 수입 | 대체 | 사용 | 전출 | 대체 | |
| 원금보존적립금 | 연구적립금 | | | | | | | | |
| | 건축적립금 | | | | | | | | |
| | 장학적립금 | | | | | | | | |
| | 퇴직적립금 | | | | | | | | |
| | 기타적립금 | | | | | | | | |
| 임의적립금 | 연구적립금 | | | | | | | | |
| | 건축적립금 | | | | | | | | |
| | 장학적립금 | | | | | | | | |
| | 퇴직적립금 | | | | | | | | |
| | 기타적립금 | | | | | | | | |

※ 작성 시 주의사항

1. 수입란의 "수입"은 원금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경우 수입이자에 대한 적수(積數)를 계산하여 적음
2. 지출란의 "사용"은 기금회계에서 구분하여 회계처리한 금액을 적음
3. 지출란의 "전출"은 등록금회계로 전출한 금액을 적음
4. 지출란의 "대체"는 임의적립금에서 원금보존적립금으로 대체한 금액을 적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3호서식]

# 전입금 명세서

(단위: 원)

| 계정과목 | 종 류 | 내용(또는 계산 근거) | 금 액 | 비 고 |
|---|---|---|---|---|
| | | | | |
| 합 계 | | | | |

※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를 조정(추가·삭제)할 수 있음

※ 기부금수입·전출금 등의 계정과목에도 응용할 수 있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

# 예비비 사용액 명세서

(단위: 원)

| 예비비 사용과목 | | | 내 용 | 예비비 사용 결 정 액 | 예비비 지출액 | 비 고 |
|---|---|---|---|---|---|---|
| 관 | 항 | 목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를 조정(추가·삭제)할 수 있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5호서식]

#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명세서

(단위: 원)

| 구 분 | 과 목 | 취 득 원 가 | 감가상각 | | | | 기말 미상각 잔액 | 비고 |
|---|---|---|---|---|---|---|---|---|
| | | | 기초감가 상각누계액 | 감가상각 대 상 액 | 감 가 상각액 | 감가상각 누 계 액 | | |
| 유 형 고 정 자 산 | 건 물 | | | | | | | |
| | 구축물 | | | | | | | |
| | 기계장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무 형 고 정 자 산 | 지적재산권 | | | | | | | |
| | 개발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합 계 | | | | | | | | |

※ 작성 시 주의사항

1. 기말 미상각 잔액은 취득원가에서 기말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금액으로 적음
2.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를 조정(추가·삭제)할 수 있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 6. 30.] [교육부령 제240호, 2021. 6. 30.,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자금 ” 이란 현금, 예금, 수표 및 우편환(郵便換) 등을 말한다.
2. “ 전기말 ” 이란 전(前) 회계연도의 말일을 말한다.
3. “ 기말 ” 이란 해당 회계연도의 말일을 말한다.
4. “ 당기(當期) ” 란 해당 회계연도를 말한다.
5. “ 적립금 ” 이란 특정한 경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치하는 자금으로서 기금 등에 대응하는 적립액을 말한다.

**제3조(예산부속명세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 영 ” 이라 한다) 제14조의2제1항에서 “ 등록금 명세서, 인건비 명세서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예산부속명세서 ” 란 다음 각 호의 명세서를 말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전기말 추정 미수금 명세서
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전기말 추정 차입금 명세서
3.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등록금 명세서
4.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인건비 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명세서

**제4조(결산부속명세서)** 영 제14조의3제1항에서 “ 받을 어음 명세서, 유형고정자산 명세서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결산부속명세서 ” 란 다음 각 호의 명세서를 말한다. <개정 2019. 9. 17.>

1. 제5조에 따른 재무상태표 부속명세서
2. 제6조에 따른 운영계산서 부속명세서

**제5조(재무상태표 부속명세서)** 재무상태표 부속명세서는 다음 각 호의 명세서로 한다. <개정 2019. 9. 17.>

1.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현금 및 예금 명세서
2.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수표 출납 명세서
3.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선급금(先給金) 명세서
4.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가지급금(假支給金) 명세서
5.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선급(先給) 법인세 명세서

6.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받을 어음 명세서
7.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투자와 기타자산 명세서
8.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투자유가증권 명세서
9.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유형고정자산 명세서
10.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무형고정자산 명세서
11.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단기(장기) 차입금 명세서
12.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미지급금 명세서
13.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가수금(假受金) 명세서
14.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지급 어음 명세서
15.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어음 출납 명세서
16.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차관(외화 장기차입금) 명세서
17.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학교채 명세서
18.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적립금 명세서
19. 그 밖에 필요한 명세서

[제목개정 2019. 9. 17.]

**제6조(운영계산서 부속명세서)** 운영계산서 부속명세서는 다음 각 호의 명세서로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등록금 명세서
2.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전입금 명세서
3.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예비비 사용액 명세서
4.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명세서

**부칙** <제37호,2014. 7. 1.>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호,2019. 9. 17.>(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0호,2021. 6. 30.>(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 전기말 추정 미수금 명세서

(단위: 천원)

| 구 분 | 내 용 | 금 액 | | 비 고 |
|---|---|---|---|---|
| | | | | |
| 합 계 | | | | |

※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를 조정(추가·삭제)할 수 있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 전기말 추정 차입금 명세서

(단위: 천원)

| 허가 근거 | 차입처 | 차입내역 | | 전기말 잔 액 | 지 급 이자율 | 남아 있는 상환기간 | 차기 상환 예 정 액 | 비 고 |
|---|---|---|---|---|---|---|---|---|
| | | 연월일 | 금 액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를 조정(추가·삭제)할 수 있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등록금 명세서

(단위: 천원 또는 원)

| 구분 | 구분(대학ㆍ계열) | 과정 | 세분 | 학기 | 학년(학기) | 학생 수 | 입학금 | | 수업료 | | 합계 | 비고 |
|---|---|---|---|---|---|---|---|---|---|---|---|---|
| | | | | | | | 1인당 금액 | 금액 | 1인당 금액 |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br>·<br>· | ·<br>·<br>· | ·<br>·<br>· | ·<br>·<br>· | ·<br>·<br>· | ·<br>·<br>· | ·<br>·<br>· | ·<br>·<br>· | ·<br>·<br>· | ·<br>·<br>· | ·<br>·<br>· | ·<br>·<br>· |
| 총 계 | | | | | | | | | | | | |

※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를 조정(추가ㆍ삭제)할 수 있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1. 6. 30.>

# 인건비 명세서

(단위: 천원 또는 원)

| 구 분 | 종 류 | 직 급 (또는 대학) | 세 분 | 인 원 | 금 액 | | 비 고 |
|---|---|---|---|---|---|---|---|
| | | | | | 1인당 평균액 | 금 액 | |
| 교 원 | 급 여 | | | | | | |
| | | 소 계 | | | | | |
| | 상 여 | | | | | | |
| | 수 당 | | | | | | |
| | 법정부담금 | | | | | | |
| | 퇴직금 | | | | | | |
| | 합 계 | | | | | | |
| 강 사 | 시간강사<br>특별강사 | | | | | | |
| | 합 계 | | | | | | |
| 조 교 | 인건비 | | | | | | |
| 직 원 | 급 여<br>상 여<br>수 당<br>법정부담금<br>퇴직금 | | | | | | |
| | 합 계 | | | | | | |
| 임시직 | 임금<br>퇴직금 | | | | | | |
| | 합 계 | | | | | | |
| 총 계 | | | | | | | |

※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를 조정(추가·삭제)할 수 있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 현금 및 예금 명세서

(단위: 원)

| 자금의 종 류 | 구 분 (현금 또는 예금) | 용 도 | 예치 기관 | 예금 종류 | 계좌 번호 | (예치) 금액 | 만기일 | 이자율 | 비 고 |
|---|---|---|---|---|---|---|---|---|---|
| 유동 자금 | | | | | | | | | |
| | 계 | | | | | | | | |
| 특정 기금 | | | | | | | | | |
| | 계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를 조정(추가 · 삭제)할 수 있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9. 9. 17.>

# 수표 출납 명세서

| 거래 은행 | 구입 매수 | | | 발행 매수 | | | | 폐기 매수 | | 미사용 매수 | | 비고 |
|---|---|---|---|---|---|---|---|---|---|---|---|---|
| | 구입일 | 번호 | 매수 | 상거래 | 차입용 | 담 보 제공 등 | 매수 소계 | 번호 | 매수 | 번호 | 매수 | |
| | 전기이월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를 조정(추가·삭제)할 수 있음

※ 미사용수표 매수 = 전기이월수표 매수 + 당기구입수표 매수 - 당기발행수표 매수 - 당기폐기수표 매수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

# 선급금 명세서

(단위: 원)

| 구 분 | 내 용 | 금 액 | | 비 고 |
|---|---|---|---|---|
| | | | | |

※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를 조정(추가·삭제)할 수 있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 가지급금 명세서

(단위: 원)

| 구 분 | 수령부서 | 내 용 | 지 급 일 | 금 액 | | 비 고 |
|---|---|---|---|---|---|---|
| | | | | | | |
| 합 계 | | | | | | |

※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를 조정(추가·삭제)할 수 있으나, 지급일은 반드시 표시하여야 함

※ 원칙적으로 가지급금은 결산 시점에 해당 과목으로 대체하거나 정리하여야 함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 선급 법인세 명세서

(단위: 원)

| 연월일 | 내 용 | 징수의무자 | 과세표준<br>(수입이자) | 선급 법인세<br>(원천납부액) | 비 고 |
|---|---|---|---|---|---|
| | | | | | |
| 합 계 | | | | | |

※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를 조정(추가 · 삭제)할 수 있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 받을 어음 명세서

(단위: 원)

| 수령일 | 발행인(기관) | 지급은행 | 어음번호 | 만기일 | 금 액 |
|---|---|---|---|---|---|
| | | | | | |
| 합 계 | | | | | |

※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를 조정(추가·삭제)할 수 있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

# 투자와 기타자산 명세서

(단위: 원)

| 구분 | | 내 용 | 전 기 이월액 | 당기 증감액 | | 기말잔액 | 비 고 |
|---|---|---|---|---|---|---|---|
| | | | | 증가액 | 감소액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를 조정(추가 · 삭제)할 수 있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

# 투자유가증권 명세서

(단위: 원)

| 구 분 | 종 목 | 보유목적 (취득사유) | 1주의 금액 | 주 수 | 취득가액 | 시 가 | 시가 차액 | 비 고 |
|---|---|---|---|---|---|---|---|---|
| 주식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공사채<br>국 채<br>지방채 | 종 목 | | | 액면가액 | 취득가액 | 시 가 | 시가 차액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합 계 | | | | | | | | |

※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를 조정(추가 · 삭제)할 수 있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9. 9. 17.>

# 유형고정자산 명세서

(단위: 원)

| 과 목 | 기초잔액 | 당 기 증가액 | 당 기 감소액 | 기말잔액 | 감가상각 누 계 액 | 미상각 잔 액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작성 시 주의사항

1. 유형고정자산을 재무상태표에 적은 과목별로 구분하여 적음
2. 기초잔액, 당기 증가액, 당기 감소액 및 기말잔액은 그 자산의 취득원가로 적음
3. 자본적 지출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취득원가가 수정된 경우에는 그로 인한 당기 증가액 또는 당기 감소액을 당기 증가액란 또는 당기 감소액란에 괄호를 하여 적고 증가의 사유를 비고란에 적음
4. 기말잔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잔액을 미상각 잔액란에 적음
5.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를 조정(추가·삭제)할 수 있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9. 9. 17.>

# 무형고정자산 명세서

(단위: 원)

| 과 목 | 기초잔액 | 당 기 증가액 | 당 기 감소액 | 기말잔액 | 상각 누계액 | 미상각 잔액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작성 시 주의사항

1. 무형고정자산은 재무상태표에 적은 과목별로 구분하여 적음
2. 자본적 지출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취득원가가 수정된 경우에는 그로 인한 당기 증가액 또는 당기 감소액을 당기 증가액란 또는 당기감 소액란에 괄호를 하여 적고 증가의 사유를 비고란에 적음
3.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를 조정(추가·삭제)할 수 있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5호서식]

# 단기(장기) 차입금 명세서

(단위: 원)

| 허가 근거 | 차입처 | 차입내역 | | 전 기 이월액 | 당기 증감액 | | 기말 잔액 | 지 급 이자율 | 상환 기한 | 상환 회계 | 비고 |
|---|---|---|---|---|---|---|---|---|---|---|---|
| | | 연월일 | 금액 | | 증가액 | 감소액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를 조정(추가 · 삭제)할 수 있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6호서식]

# 미지급금 명세서

(단위: 원)

| 구 분 | 내 용 | 금 액 | | 비 고 |
|---|---|---|---|---|
| | | | | |
| 합 계 | | | | |

※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를 조정(추가·삭제)할 수 있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7호서식]

# 가수금 명세서

(단위: 원)

| 구 분 | 내 용 | 수령일 | 금 액 | | 비 고 |
|---|---|---|---|---|---|
| | | | | | |
| 합 계 | | | | | |

※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를 조정(추가·삭제)할 수 있으나, 수령일은 반드시 표시하여야 함

※ 원칙적으로 가수금은 결산 시점에 해당 과목으로 대체하거나 정리하여야 함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8호서식]

# 지급 어음 명세서

(단위: 원)

| 거래은행 | 발행일 | 발행처 | 내용 | 어음번호 | 매수 | 금액 | | 만기일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를 조정(추가·삭제)할 수 있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9. 9. 17.>

# 어음 출납 명세서

| 거래 은행 | 구입매수 | | | 발행매수 | | | | 폐기매수 | | 미사용매수 | | 비고 |
|---|---|---|---|---|---|---|---|---|---|---|---|---|
| | 구입일 | 번호 | 매수 | 상거래 | 차입용 | 담보 제공 등 | 매수 소계 | 번호 | 매수 | 번호 | 매수 | |
| | 전기이월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를 조정(추가·삭제)할 수 있음

※ 미사용어음 매수 = 전기이월어음 매수 + 당기구입어음 매수 - 당기발행어음 매수 - 당기폐기어음 매수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0호서식]

# 차관(외화 장기차입금) 명세서

(단위: 원)

| 허가근거 | 차입(차관)내용 | | 구 분 | 장부가액 | 평가액 | 평가차액 | 비 고 |
|---|---|---|---|---|---|---|---|
| | 구 분 | 내 용 | | | | | |
| | 승인일 | | 외 화 | | | | |
| | 도입 외화 | | | | | | |
| | 이자율 | | 환 율 | | | | |
| | 용 도 | | | | | | |
| | 상환기간 | | 원 화 | | | | |
| | 승인일 | | 외 화 | | | | |
| | 도입 외화 | | | | | | |
| | 이자율 | | 환 율 | | | | |
| | 용 도 | | | | | | |
| | 상환기간 | | 원 화 | | | | |
| | 승인일 | | 외 화 | | | | |
| | 도입 외화 | | | | | | |
| | 이자율 | | 환 율 | | | | |
| | 용 도 | | | | | | |
| | 상환기간 | | 원 화 | | | | |
| 합 계 | | | | | | | |

※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를 조정(추가 · 삭제)할 수 있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1호서식]

# 학교채 명세서

(단위: 명, 원)

| 학년도 | 구 분 | 기초잔액 | | 당기 증가 | | 당기 상환 | | 기말잔액 | | 비고 |
|---|---|---|---|---|---|---|---|---|---|---|
| | | 인원 | 금액 | 인원 | 금액 | 인원 | 금액 | 인원 | 금액 | |
| 학년도 | 학부모<br>동 문<br>교직원<br>기 타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학년도 | 학부모<br>동 문<br>교직원<br>기 타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학년도 | 학부모<br>동 문<br>교직원<br>기 타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를 조정(추가·삭제)할 수 있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2호서식]

# 적립금 명세서

(단위: 원)

| 계정과목 | | 기초금액 | 수입 | | | 지출 | | | 기말잔액 |
|---|---|---|---|---|---|---|---|---|---|
| 항 | 목 | | 적립 | 수입 | 대체 | 사용 | 전출 | 대체 | |
| 원금보존적립금 | 연구적립금 | | | | | | | | |
| | 건축적립금 | | | | | | | | |
| | 장학적립금 | | | | | | | | |
| | 퇴직적립금 | | | | | | | | |
| | 기타적립금 | | | | | | | | |
| 임의적립금 | 연구적립금 | | | | | | | | |
| | 건축적립금 | | | | | | | | |
| | 장학적립금 | | | | | | | | |
| | 퇴직적립금 | | | | | | | | |
| | 기타적립금 | | | | | | | | |

※ 작성 시 주의사항

1. 수입란의 "수입"은 원금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경우 수입이자에 대한 적수(積數)를 계산하여 적음
2. 지출란의 "사용"은 기금회계에서 구분하여 회계처리한 금액을 적음
3. 지출란의 "전출"은 등록금회계로 전출한 금액을 적음
4. 지출란의 "대체"는 임의적립금에서 원금보존적립금으로 대체한 금액을 적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3호서식]

# 전입금 명세서

(단위: 원)

| 계정과목 | 종 류 | 내용(또는 계산 근거) | 금 액 | 비 고 |
|---|---|---|---|---|
| | | | | |
| 합 계 | | | | |

※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를 조정(추가·삭제)할 수 있음

※ 기부금수입·전출금 등의 계정과목에도 응용할 수 있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

# 예비비 사용액 명세서

(단위: 원)

| 예비비 사용과목 | | | 내 용 | 예비비 사용 결 정 액 | 예비비 지출액 | 비 고 |
|---|---|---|---|---|---|---|
| 관 | 항 | 목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를 조정(추가·삭제)할 수 있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5호서식]

#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명세서

(단위: 원)

| 구 분 | 과 목 | 취 득 원 가 | 감가상각 | | | | 기말 미상각 잔액 | 비고 |
|---|---|---|---|---|---|---|---|---|
| | | | 기초감가 상각누계액 | 감가상각 대 상 액 | 감 가 상각액 | 감가상각 누 계 액 | | |
| 유 형 고 정 자 산 | 건 물 | | | | | | | |
| | 구축물 | | | | | | | |
| | 기계장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무 형 고 정 자 산 | 지적재산권 | | | | | | | |
| | 개발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합 계 | | | | | | | | |

※ 작성 시 주의사항

1. 기말 미상각 잔액은 취득원가에서 기말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금액으로 적음
2.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를 조정(추가·삭제)할 수 있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교육부 (국립대학지원과) 044 - 203 - 6918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를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고 교육 및 연구 역량을 향상시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를 국제경쟁력을 갖춘 거점대학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설립ㆍ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고등교육법」에 따른다.

**제3조(법인격)**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법인으로 한다.

**제4조(설립등기)**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②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설립등기와 그 밖에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정관)**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정관(定款)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주요 사항
7. 임원과 교직원에 관한 주요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평의원회ㆍ교육연구위원회 및 재무경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학교규칙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2.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13. 해산 및 합병에 관한 사항

14. 이 법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15. 그 밖에 학교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②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3. 3. 23.>

**제6조(교직원 등)**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는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직원과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등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교직원과 겸임교원 등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임면(任免)한다.

③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교직원과 겸임교원 등의 자격·임면·복무·신분보장·사회보장 및 징계 등에 관하여 「사립학교법」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의2(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교원 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교원 중 특정 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원의 성별 구성에 관한 연도별 목표 비율은 학칙으로 정한다.

③ 총장은 대학의 교원을 임용할 때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3년마다 계열별 임용목표비율이 제시된 임용계획 등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추진 실적을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계획 및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공표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계열별 구분과 계획의 수립 및 제4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 29.]

**제6조의3(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 ① 제6조제3항 및 「사립학교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제6조에 따른 교원 중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는 학생의 교육·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총장의 허가를 받아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른 해당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겸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는 그 해에 「상법」 제388조에 따라 해당 사기업체로부터 받은 보수의 전부를 총장에게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의 구체적인 기준·방법·절차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3. 24.]

**제7조(임원)**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 1명은 상근(常勤)으로 한다.

**제8조(총장 등)**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총장은 총장추천위원회에서 3명 이내의 후보자를 추천하여 이사회가 1명을 선임하고 교육부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개정 2013. 3. 23.>

④ 총장추천위원회는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총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총장의 직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부총장 등)**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대학 운영과 관련한 총장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1명 이상의 부총장을 둔다.

② 부총장은 총장이 선임한다.

③ 부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부총장의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부총장 외의 총장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이사)** ①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소속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2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5. 10. 1.>

1. 총장
2. 부총장 중 정관으로 정하는 1명
3.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1명
4. 기획예산처장관이 추천하는 1명
5.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1명
6.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총동문회장이 추천하는 1명
7. 제15조에 따른 평의원회가 추천하는 1명
8. 그 밖에 대학 경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인사

② 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교육부장관의 취임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 3. 23.>

③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이사의 구성과 관련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이사회)**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제12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총장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감사가 제13조제4항에 따라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 감사는 직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이사장 또는 이사는 자신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⑦ 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6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재적이사 수에서 제외한다.<개정 2021. 3. 23.>
⑧ 이사장이 궐위(闕位)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⑨ 그 밖에 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1. 3. 23.>
1. 총장의 선임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4.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5. 정관으로 정하는 주요 조직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중장기 대학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정관으로 정하는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9. 대학의 발전을 위한 기금의 조성 및 후원에 관한 사항
10. 이 법이나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11. 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감사)** ① 감사 중 1명은 교육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다른 1명은 제15조에 따른 평의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각각 선임하되, 교육부장관의 취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평의원회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감사로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재산상황과 회계 감사
2.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 감사
3. 그 밖에 정관으로 감사의 직무로 정하는 사항
③ 감사는 제2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사회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④ 감사는 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⑥ 감사의 업무 수행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4조(결격사유 등)**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②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임원(총장은 제외한다)이 회계부정·횡령·뇌물 수수(授受) 등의 비리(非理)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학교경영에 명백하고 중대한 장애를 발생하게 한 경우 교육부장관은 제10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임원 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21. 3. 23.>

**제15조(평의원회)**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1. 중장기 대학 운영 및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제10조제1항제7호 및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임원 추천에 관한 사항
3. 정관으로 정하는 교육·연구 및 교직원 복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총장, 이사장, 평의원회 의장 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학교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② 평의원회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교직원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그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두며, 평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평의원회는 그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전달하여야 하고, 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또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을 이사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의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6조(교육연구위원회)**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교육과 연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연구위원회를 둔다.
1. 학생의 입학과 졸업에 관한 사항
2. 교원 인사에 관한 사항

3. 교수 평가와 연구에 관한 사항
4. 교육과정ㆍ성적 및 학위 등 학사관리에 관한 사항
5. 제30조에 따른 연도별 대학운영계획 중 교육 및 연구와 관련된 사항
6. 그 밖에 총장 또는 이사회가 교육 및 연구와 관련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② 교육연구위원회의 위원은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교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되, 그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교육연구위원회에 위원장을 두며, 위원장은 총장이 겸임한다.

④ 교육연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교육연구위원회는 그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전달하여야 하고, 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또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을 이사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연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7조(재무경영위원회)**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재무경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무경영위원회를 둔다.

1.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2. 입학금, 수업료 등 학생의 금전적 부담에 관한 사항
3. 제30조에 따른 연도별 대학운영계획 중 재무경영과 관련된 사항
4. 정관으로 정하는 주요 사업의 투자계획과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5. 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사항
6.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7. 회계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8. 임원과 교직원의 보수 및 퇴직수당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총장 또는 이사회가 대학의 재무경영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② 재무경영위원회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교직원과 외부인사를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되, 외부인사가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재무경영위원회에 위원장을 두며, 위원장은 재무경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재무경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재무경영위원회는 그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전달하여야 하고, 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또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을 이사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무경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8조(법인회계의 설치 등)**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법인회계를 설치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회계연도는 해당 연도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9조(자본금 등)**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자본금은 제2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으로 양여받은 재산을 평가한 금액과 증자 등으로 인한 변동을 가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산의 평가금액은 무상으로 양여받은 당시의 시가(時價)로 하되 평가금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3. 3. 23.>
③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가 제1항에 따른 재산을 처분(담보제공과 교환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으로 양여받은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3. 3. 23.>

**제20조(출연금 등)** ① 국가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설립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총액으로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보조금 등 전입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설립ㆍ운영 및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21조(공유재산 등의 무상 양여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 당시 대학 소관의 공유재산 및 물품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무상으로 양여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국유에 속하는 국가유산은 제1항을 적용받지 아니한다.<개정 2023. 5. 16.>
③ 지방자치단체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물품관리법」ㆍ「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 허가의 조건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개인재산의 양여 또는 출연)**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양도받거나 그 밖의 출연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제공한 자의 의사 또는 그와의 계약에 따르되, 이에 대하여 특별히 정한 것이 없고 의사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23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학교용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제24조(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대학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장기

차입을 하거나 학교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장기차입 또는 학교채 발행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5. 10. 1.>

**제25조(예산ㆍ결산 등)** ① 총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안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총장은 회계연도마다 회계법인의 검사를 받은 재무제표(財務諸表)를 포함한 결산서를 이사회 의결 후 2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③ 총장은 법인회계의 예산 및 결산의 명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3. 12. 30.>

**제26조(잉여금의 처분)**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를 먼저 부채상환에 충당하고, 그 다음으로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하며, 그 나머지가 있는 경우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거나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되 학교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27조(수익사업 등)**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교육ㆍ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익금은 학교경영에 사용하여야 하며, 그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등)** ①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를 국제경쟁력을 갖춘 거점대학으로 육성하고 국립대학법인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매년 인건비, 경상적 경비, 시설확충비 및 교육ㆍ연구 발전을 위한 지원금을 출연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 당시 종전의 인천대학교의 예산, 고등교육예산 규모 및 그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매년 출연금을 산정한다.

④ 제10조제1항에 따라 이사를 추천한 기관의 장 및 그 소속 기관의 장은 시설비의 보조, 장학금의 지급, 산학협력체제 구축 등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9조(국립대학법인의 사회적 책무 및 국가의 지원)**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기초학문 등 필요한 분야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4년 단위의 계획을 수립ㆍ공표하고,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실행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우수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ㆍ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학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학ㆍ복지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0조(대학운영계획의 수립 및 평가)** ① 총장은 4년 단위로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대학운영성과목표를 설정하고, 매 회계연도 시작 전에 대학운영성과목표를 반영한 연도별 대학운영계획을 수립ㆍ공표하며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도별 대학운영계획에 따른 실적을 매년 평가ㆍ공표하고, 그 결과를 행정 및 재정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담당할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기관을 설치하거나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제31조(부설학교 등)**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32조(「민법」의 준용)**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 3. 23.>

**제33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가 아닌 자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과 표장(標章)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4조(과태료)**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가 아닌 자가 제33조를 위반하여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과 표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3. 3. 23.>

**부칙** <제11147호,2012. 1.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준비위원회) ① 종전의 인천대학교 총장은 이 법 시행 전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설립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립준비위원회를 종전의 인천대학교에 설치한다.

② 설립준비위원회는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람을 포함하여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설립준비위원회의 위원은 종전의 인천대학교 총장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④ 설립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은 종전의 인천대학교 총장이 겸임한다.

⑤ 설립준비위원회는 법인설립 과정에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조**(설립절차) ① 설립준비위원회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최초의 이사와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준비위원회에서 선임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설립준비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이사와 감사가 선임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제4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설립준비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무를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총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준비위원회의 위원은 제4항에 따른 사무 인계가 끝난 때에 해임되거나 해촉(解囑)된 것으로 본다.

**제4조**(총장 임명에 관한 특례) ① 종전의 인천대학교 총장은 「교육공무원법」 제28조제1호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 동안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총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② 종전의 인천대학교 총장은 그 남은 임기 동안 이사장을 겸임한다.

**제5조**(교직원 임용의 특례) ① 종전의 인천대학교 총장은 종전의 인천대학교 소속 교직원을 본인의 희망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되는 사람과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사람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전환될 것을 희망한 사람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가 설립된 때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며, 동시에 공무원에서 퇴직한 것으로 본다.

③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설립 당시 제1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교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되는 사람에 대한 근로계약상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며, 신분상 불이익이 없도록 임용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된 사람의 정년은 그 교직원의 퇴직 당시의 직급에 적용되던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 또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정년에 따른다. 다만,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교직원 정년이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 또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정년보다 장기인 경우에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교직원의 정년을 따른다.

⑤ 제1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될 것을 희망하지 아니한 공무원의 소속, 신분보장 및 복무관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교원인 공무원의 경우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가 설립된 이후 5년간 공무원 신분을 보유한다.

**제6조**(기성회 직원 임용의 특례) ① 종전의 인천대학교 기성회(설립자의 부담으로 미치지 못하는 긴급한 교육시설, 대학 운영 등을 지원함으로써 면학 분위기 조성과 교육 여건 개선에 기여하게 하기 위하여 종전의 인천대학교에 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직원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가 설립된 때에 그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기성회 직원에서 퇴직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직원으로 임용된 사람의 정년은 그 직원의 퇴직 당시의 기성회 직원에 적용되던 기성회 규약상의 정년에 따른다. 다만,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교직원 정년이 기성회 규약상의 정년보다 장기인 경우에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교직원 정년을 따른다.

**제7조**(연금 적용의 특례) ①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는 교직원과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 이후 임용되는 교직원에 대하여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한다. 다만,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되는 교직원 중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 당시 공무원인 교직원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된 때부터 20년간 다음 각 호에 따라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1.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원하는 사람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원연금법」의 적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공무원연금법」의 적용 신청을 한 사람(이하 "공무원연금법적용교직원"이라 한다)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본다.
3. 공무원연금법적용교직원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된 때부터 20년이 되는 달의 말일에 공무원에서 퇴직한 것으로 본다. 다만, 20년이 되기 전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까지 공무원으로 재직한 것으로 본다.
4. 공무원연금법적용교직원의 보수월액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될 당시의 공무원 보수월액에 매년 공무원평균보수인상률과 호봉승급분을 반영한 금액으로 한다.
5. 공무원연금법적용교직원에 대하여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서의 재직ㆍ직무(「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기간 동안의 재직ㆍ직무를 말한다)를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직ㆍ공무로 본다.
6. 공무원연금법적용교직원에 대하여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총장을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관장으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직원으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를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기여금징수의무자로 본다.

②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 당시 공무원이었던 종전의 인천대학교 교직원 중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의 퇴직급여와 유족급여(「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제1항에서 준용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족연금 및 「공무원연금법」 제61조에 따른 유족보상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퇴직수당을 별도 회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직원의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에 필요한 비용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반납금,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개인부담금,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국가부담금, 같은 법 제48조의3에 따른 병역복무기간의 부담금 및 그 운용수익금과 같은 법 제52조의2에 따른 연금액의 이체금액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은 국가가 보전(補塡)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퇴직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의 재직기간에 공무원 재직

기간을 합산한다. 다만, 그 교직원이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 당시 「공무원연금법」 제61조의2에 따른 퇴직수당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공무원연금공단은 제4항 본문에 따라 공무원 재직기간을 합산하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교직원의 퇴직수당을 공무원에서 퇴직한 때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산정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이체하여야 한다.

⑥ 제4항 본문에 따른 재직기간 합산을 위하여 제5항에 따른 이체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은 국가가 지원한다.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과 제6항에 따른 국가의 보전금 및 지원금을 별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⑧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 당시 공무원이었던 종전의 인천대학교 교직원 중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교직원에 대한 국가부담금은 같은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법」 제69조제1항 본문을 준용한다.

**제8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종전의 인천대학교 학교 경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천광역시의 권리ㆍ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다만, 권리ㆍ의무의 성격상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가 포괄 승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종전의 인천대학교 총장이 학교 운영상 한 행위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총장이 행한 행위로 본다.

③ 종전의 인천대학교 재적생(在籍生), 졸업생 및 제적(除籍)ㆍ제명(除名)된 사람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재적생ㆍ졸업생 및 제적ㆍ제명된 사람으로 본다.

④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법인회계는 종전의 인천대학교의 인천광역시 지원금을 관리하던 회계와 기성회의 회계를 승계한다.

⑤ 제1항 단서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내용 및 귀속관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교원

제7조의2제2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직원

② 초ㆍ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2. 3. 21.>

제62조제1항 중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및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로 한다.

**부칙** <제11384호,2012. 3. 21.>(초ㆍ중등교육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제1항은 ㆍㆍㆍ<생략>ㆍㆍㆍ 같은 조 제2항은 2013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법률 제11147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1147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초ㆍ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1항 중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및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제11690호,2013. 3. 23.>(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3) 까지 생략

3!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8조제3항, 제10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4조제2항, 제1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1조제1항 후단, 제24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34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3@ 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123호,2013. 12.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인회계의 예산 및 결산의 공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844호,2014. 11. 19.>(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2^ 까지 생략

2&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후단 중 " 안전행정부장관 " 을 " 행정자치부장관 " 으로 한다.

2* 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4839호,2017. 7. 26.>(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후단 중 " 행정자치부장관 " 을 " 행정안전부장관 " 으로 한다.

⑭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6873호,2020. 1. 2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76호,2020. 3.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겸직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에 따라 허가를 받아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교원은 제6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17954호,2021. 3. 23.>(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9409호,2023. 5. 16.>(국가유산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유문화재는 ” 을 “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국유에 속하는 국가유산은 ” 으로 한다.

⑦부터2^ 까지 생략

**부칙** <제21065호,2025. 10. 1.>(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4호 및 제24조제2항 중 “ 기획재정부장관 ” 을 각각 “ 기획예산처장관 ” 으로 한다.

<61>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를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고 교육 및 연구 역량을 향상시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를 국제경쟁력을 갖춘 거점대학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설립ㆍ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고등교육법」에 따른다.

**제3조(법인격)**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법인으로 한다.

**제4조(설립등기)**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②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설립등기와 그 밖에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정관)**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정관(定款)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주요 사항
7. 임원과 교직원에 관한 주요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평의원회ㆍ교육연구위원회 및 재무경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학교규칙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2.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13. 해산 및 합병에 관한 사항
14. 이 법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15. 그 밖에 학교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②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3. 3. 23.>

**제6조(교직원 등)**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는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직원과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등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교직원과 겸임교원 등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임면(任免)한다.

③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교직원과 겸임교원 등의 자격ㆍ임면ㆍ복무ㆍ신분보장ㆍ사회보장 및 징계 등에 관하여 「사립학교법」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의2(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교원 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교원 중 특정 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원의 성별 구성에 관한 연도별 목표 비율은 학칙으로 정한다.

③ 총장은 대학의 교원을 임용할 때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3년마다 계열별 임용목표비율이 제시된 임용계획 등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추진 실적을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계획 및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공표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계열별 구분과 계획의 수립 및 제4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 29.]

**제6조의3(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 ① 제6조제3항 및 「사립학교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제6조에 따른 교원 중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학생의 교육ㆍ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총장의 허가를 받아 상업ㆍ공업ㆍ금융업,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른 해당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겸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그 해에 「상법」 제388조에 따라 해당 사기업체로부터 받은 보수의 전부를 총장에게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의 구체적인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ㆍ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3. 24.]

**제7조(임원)**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 1명은 상근(常勤)으로 한다.

**제8조(총장 등)**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총장은 총장추천위원회에서 3명 이내의 후보자를 추천하여 이사회가 1명을 선임하고 교육부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개정 2013. 3. 23.>

④ 총장추천위원회는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총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총장의 직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부총장 등)**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대학 운영과 관련한 총장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1명 이상의 부총장을 둔다.

② 부총장은 총장이 선임한다.

③ 부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부총장의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부총장 외의 총장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이사)** ①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소속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2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5. 10. 1.>

1. 총장
2. 부총장 중 정관으로 정하는 1명
3.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1명
4. 기획예산처장관이 추천하는 1명
5.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1명
6.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총동문회장이 추천하는 1명
7. 제15조에 따른 평의원회가 추천하는 1명
8. 그 밖에 대학 경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인사

② 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교육부장관의 취임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 3. 23.>

③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이사의 구성과 관련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이사회)**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제12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총장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감사가 제13조제4항에 따라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 감사는 직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이사장 또는 이사는 자신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⑦ 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6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재적이사 수에서 제외한다.<개정 2021. 3. 23.>

⑧ 이사장이 궐위(闕位)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⑨ 그 밖에 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1. 3. 23.>

1. 총장의 선임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4.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5. 정관으로 정하는 주요 조직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중장기 대학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정관으로 정하는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9. 대학의 발전을 위한 기금의 조성 및 후원에 관한 사항
10. 이 법이나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11. 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감사)** ① 감사 중 1명은 교육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다른 1명은 제15조에 따른 평의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각각 선임하되, 교육부장관의 취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평의원회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감사로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재산상황과 회계 감사

2.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 감사
3. 그 밖에 정관으로 감사의 직무로 정하는 사항

③ 감사는 제2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사회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④ 감사는 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⑥ 감사의 업무 수행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4조(결격사유 등)**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②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임원(총장은 제외한다)이 회계부정·횡령·뇌물 수수(授受) 등의 비리(非理)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학교경영에 명백하고 중대한 장애를 발생하게 한 경우 교육부장관은 제10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임원 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21. 3. 23.>

**제15조(평의원회)**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1. 중장기 대학 운영 및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제10조제1항제7호 및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임원 추천에 관한 사항
3. 정관으로 정하는 교육·연구 및 교직원 복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총장, 이사장, 평의원회 의장 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학교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② 평의원회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교직원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그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두며, 평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평의원회는 그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전달하여야 하고, 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또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을 이사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의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6조(교육연구위원회)**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교육과 연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연구위원회를 둔다.

1. 학생의 입학과 졸업에 관한 사항
2. 교원 인사에 관한 사항
3. 교수 평가와 연구에 관한 사항
4. 교육과정·성적 및 학위 등 학사관리에 관한 사항

5. 제30조에 따른 연도별 대학운영계획 중 교육 및 연구와 관련된 사항
6. 그 밖에 총장 또는 이사회가 교육 및 연구와 관련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② 교육연구위원회의 위원은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교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되, 그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교육연구위원회에 위원장을 두며, 위원장은 총장이 겸임한다.

④ 교육연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교육연구위원회는 그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전달하여야 하고, 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또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을 이사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연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7조(재무경영위원회)**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재무경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무경영위원회를 둔다.

1.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2. 입학금, 수업료 등 학생의 금전적 부담에 관한 사항
3. 제30조에 따른 연도별 대학운영계획 중 재무경영과 관련된 사항
4. 정관으로 정하는 주요 사업의 투자계획과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5. 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사항
6.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7. 회계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8. 임원과 교직원의 보수 및 퇴직수당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총장 또는 이사회가 대학의 재무경영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② 재무경영위원회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교직원과 외부인사를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되, 외부인사가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재무경영위원회에 위원장을 두며, 위원장은 재무경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재무경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재무경영위원회는 그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전달하여야 하고, 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또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을 이사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무경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8조(법인회계의 설치 등)**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법인회계를 설치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회계연도는 해당 연도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9조(자본금 등)**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자본금은 제2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으로 양여받은 재산을 평가한 금액과 증자 등으로 인한 변동을 가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산의 평가금액은 무상으로 양여받은 당시의 시가(時價)로 하되 평가금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3. 3. 23.>
③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가 제1항에 따른 재산을 처분(담보제공과 교환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으로 양여받은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3. 3. 23.>

**제20조(출연금 등)** ① 국가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설립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총액으로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보조금 등 전입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설립ㆍ운영 및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21조(공유재산 등의 무상 양여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 당시 대학 소관의 공유재산 및 물품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무상으로 양여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국유에 속하는 국가유산은 제1항을 적용받지 아니한다.<개정 2023. 5. 16.>
③ 지방자치단체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물품관리법」ㆍ「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 허가의 조건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개인재산의 양여 또는 출연)**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양도받거나 그 밖의 출연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제공한 자의 의사 또는 그와의 계약에 따르되, 이에 대하여 특별히 정한 것이 없고 의사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23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학교용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제24조(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대학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장기차입을 하거나 학교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장기차입 또는 학교채 발행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5. 10. 1.>

**제25조(예산·결산 등)** ① 총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안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총장은 회계연도마다 회계법인의 검사를 받은 재무제표(財務諸表)를 포함한 결산서를 이사회 의결 후 2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③ 총장은 법인회계의 예산 및 결산의 명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3. 12. 30.>

**제26조(잉여금의 처분)**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를 먼저 부채상환에 충당하고, 그 다음으로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하며, 그 나머지가 있는 경우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거나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되 학교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27조(수익사업 등)**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익금은 학교경영에 사용하여야 하며, 그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등)** ①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를 국제경쟁력을 갖춘 거점대학으로 육성하고 국립대학법인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매년 인건비, 경상적 경비, 시설확충비 및 교육·연구 발전을 위한 지원금을 출연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 당시 종전의 인천대학교의 예산, 고등교육예산 규모 및 그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매년 출연금을 산정한다.

④ 제10조제1항에 따라 이사를 추천한 기관의 장 및 그 소속 기관의 장은 시설비의 보조, 장학금의 지급, 산학협력체제 구축 등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9조(국립대학법인의 사회적 책무 및 국가의 지원)**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기초학문 등 필요한 분야의 지원·육성에 관한 4년 단위의 계획을 수립·공표하고,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실행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우수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학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학·복지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0조(대학운영계획의 수립 및 평가)** ① 총장은 4년 단위로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대학운영성과목표를 설정하고, 매 회계연도 시작 전에 대학운영성과목표를 반영한 연도별 대학운영계

획을 수립·공표하며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도별 대학운영계획에 따른 실적을 매년 평가·공표하고, 그 결과를 행정 및 재정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담당할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기관을 설치하거나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제31조(부설학교 등)**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32조(「민법」의 준용)**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 3. 23.>

**제33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가 아닌 자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과 표장(標章)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4조(과태료)**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가 아닌 자가 제33조를 위반하여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과 표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교육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개정 2013. 3. 23.>

**부칙** <제11147호,2012. 1.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준비위원회) ① 종전의 인천대학교 총장은 이 법 시행 전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설립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립준비위원회를 종전의 인천대학교에 설치한다.

② 설립준비위원회는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람을 포함하여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설립준비위원회의 위원은 종전의 인천대학교 총장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④ 설립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은 종전의 인천대학교 총장이 겸임한다.

⑤ 설립준비위원회는 법인설립 과정에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조**(설립절차) ① 설립준비위원회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최초의 이사와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준비위원회에서 선임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설립준비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이사와 감사가 선임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제4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설립준비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무를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총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준비위원회의 위원은 제4항에 따른 사무 인계가 끝난 때에 해임되거나 해촉(解囑)된 것으로 본다.

**제4조**(총장 임명에 관한 특례) ① 종전의 인천대학교 총장은 「교육공무원법」 제28조제1호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 동안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총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② 종전의 인천대학교 총장은 그 남은 임기 동안 이사장을 겸임한다.

**제5조**(교직원 임용의 특례) ① 종전의 인천대학교 총장은 종전의 인천대학교 소속 교직원을 본인의 희망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되는 사람과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사람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전환될 것을 희망한 사람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가 설립된 때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며, 동시에 공무원에서 퇴직한 것으로 본다.

③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설립 당시 제1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교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되는 사람에 대한 근로계약상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며, 신분상 불이익이 없도록 임용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된 사람의 정년은 그 교직원의 퇴직 당시의 직급에 적용되던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 또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정년에 따른다. 다만,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교직원 정년이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 또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정년보다 장기인 경우에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교직원의 정년을 따른다.

⑤ 제1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될 것을 희망하지 아니한 공무원의 소속, 신분보장 및 복무관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교원인 공무원의 경우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가 설립된 이후 5년간 공무원 신분을 보유한다.

**제6조**(기성회 직원 임용의 특례) ① 종전의 인천대학교 기성회(설립자의 부담으로 미치지 못하는 긴급한 교육시설, 대학 운영 등을 지원함으로써 면학 분위기 조성과 교육 여건 개선에 기여하게 하기 위하여 종전의 인천대학교에 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직원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가 설립된 때에 그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기성회 직원에서 퇴직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직원으로 임용된 사람의 정년은 그 직원의 퇴직 당시의 기성회 직원에 적용되던 기성회 규약상의 정년에 따른다. 다만,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교직원 정년이 기성회 규약상의 정년보다 장기인 경우에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교직원 정년을 따른다.

**제7조**(연금 적용의 특례) ①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는 교직원과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 이후 임용되는 교직원에 대하여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한다. 다만,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되는 교직원 중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 당시 공무원인 교직원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된 때부터 20년간 다음 각 호에 따라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1.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원하는 사람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원연금법」의 적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공무원연금법」의 적용 신청을 한 사람(이하 "공무원연금법적용교직원"이라 한다)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본다.
3. 공무원연금법적용교직원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된 때부터 20년이 되는 달의 말일에 공무원에서 퇴직한 것으로 본다. 다만, 20년이 되기 전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까지 공무원으로 재직한 것으로 본다.
4. 공무원연금법적용교직원의 보수월액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될 당시의 공무원 보수월액에 매년 공무원평균보수인상률과 호봉승급분을 반영한 금액으로 한다.
5. 공무원연금법적용교직원에 대하여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서의 재직ㆍ직무(「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기간 동안의 재직ㆍ직무를 말한다)를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직ㆍ공무로 본다.
6. 공무원연금법적용교직원에 대하여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총장을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관장으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직원으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를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기여금징수의무자로 본다.

②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 당시 공무원이었던 종전의 인천대학교 교직원 중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의 퇴직급여와 유족급여(「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제1항에서 준용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족연금 및 「공무원연금법」 제61조에 따른 유족보상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퇴직수당을 별도 회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직원의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에 필요한 비용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반납금,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개인부담금,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국가부담금, 같은 법 제48조의3에 따른 병역복무기간의 부담금 및 그 운용수익금과 같은 법 제52조의2에 따른 연금액의 이체금액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은 국가가 보전(補塡)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퇴직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의 재직기간에 공무원 재직기간을 합산한다. 다만, 그 교직원이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 당시 「공무원연금법」 제

61조의2에 따른 퇴직수당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공무원연금공단은 제4항 본문에 따라 공무원 재직기간을 합산하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교직원의 퇴직수당을 공무원에서 퇴직한 때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산정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이체하여야 한다.

⑥ 제4항 본문에 따른 재직기간 합산을 위하여 제5항에 따른 이체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은 국가가 지원한다.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과 제6항에 따른 국가의 보전금 및 지원금을 별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⑧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 당시 공무원이었던 종전의 인천대학교 교직원 중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교직원에 대한 국가부담금은 같은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법」 제69조제1항 본문을 준용한다.

**제8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종전의 인천대학교 학교 경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천광역시의 권리ㆍ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다만, 권리ㆍ의무의 성격상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가 포괄 승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종전의 인천대학교 총장이 학교 운영상 한 행위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총장이 행한 행위로 본다.

③ 종전의 인천대학교 재적생(在籍生), 졸업생 및 제적(除籍)ㆍ제명(除名)된 사람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재적생ㆍ졸업생 및 제적ㆍ제명된 사람으로 본다.

④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법인회계는 종전의 인천대학교의 인천광역시 지원금을 관리하던 회계와 기성회의 회계를 승계한다.

⑤ 제1항 단서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내용 및 귀속관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교원

제7조의2제2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직원

② 초ㆍ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2. 3. 21.>

제62조제1항 중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및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로 한다.

**부칙** <제11384호,2012. 3. 21.>(초ㆍ중등교육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제1항은 ㆍㆍㆍ<생략>ㆍㆍㆍ 같은 조 제2항은 2013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법률 제11147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1147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초ㆍ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1항 중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및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제11690호,2013. 3. 23.>(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3) 까지 생략

3!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8조제3항, 제10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4조제2항, 제1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1조제1항 후단, 제24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34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3@ 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123호,2013. 12.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인회계의 예산 및 결산의 공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844호,2014. 11. 19.>(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

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2^ 까지 생략

2&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후단 중 “ 안전행정부장관 ” 을 “ 행정자치부장관 ” 으로 한다.

2* 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4839호,2017. 7. 26.>(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후단 중 “ 행정자치부장관 ” 을 “ 행정안전부장관 ” 으로 한다.

⑭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6873호,2020. 1. 2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76호,2020. 3.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겸직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에 따라 허가를 받아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교원은 제6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17954호,2021. 3. 23.>(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9409호,2023. 5. 16.>(국가유산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유문화재는 ”을 “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국유에 속하는 국가유산은 ”으로 한다.

⑦부터2^ 까지 생략

**부칙** <제21065호,2025. 10. 1.>(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4호 및 제24조제2항 중 “ 기획재정부장관 ”을 각각 “ 기획예산처장관 ”으로 한다.

<61>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1. 31.] [대통령령 제35228호, 2025. 1. 21., 타법개정]

교육부 (국립대학지원과) 044 - 203 - 6918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등기)**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자산의 총액

**제3조(이전등기)**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 1. 21.]

**제4조(변경등기)**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제2조 각 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3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 1. 21.]

**제5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각의 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설립등기: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정관
2. 제3조에 따른 이전등기: 주된 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3. 제4조에 따른 변경등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제6조(등기기간의 기산)**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기할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이 필요한 것은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된 날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起算)한다. <개정 2013. 3. 23.>

**제6조의2(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6조의2제3항 전단에 따른 대학의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 등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이하 "양성평등조치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한 계열별 구분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1의 계열별 구분

에 따른다.

② 총장은 양성평등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개시 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추진 실적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이 법 제6조의2제4항에 따라 양성평등조치계획 및 그 추진 실적을 평가할 때에는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방문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7. 21.]

**제6조의3(교수 등의 사외이사 겸직허가 기준 등)** ① 총장은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에 대한 사외이사 겸직허가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4제1항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겸직의 필요성
2. 겸직 기간의 적절성
3. 겸직 대상기업의 적합성
4. 그 밖에 총장이 학생의 교육ㆍ지도 및 학문연구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그 해에 해당 사기업체로부터 받은 보수의 전부를 보고하는 경우 해당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지급 내역이 포함된 서류를 해당 사기업체로부터 발급받아 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연도 보수 전부의 월별 지급 내역
2. 교통비 및 회의수당 등 항목별 지급 내역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겸직허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 9. 22.]

**제7조(결격사유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법이나 이 영 또는 「고등교육법」에서 정하는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이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의 사유에 따른 임원 취임 승인의 취소는 교육부장관이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5일이 지나도 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제8조(공유재산 등의 무상 양여 등)** ①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하는 경우 그 재산 및 물품의 대장(臺帳) 가격을 해당 재산 및 물품의 가격으로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협의를 할 때에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설립등기 예정일 3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공유재산과 물품의 표시, 수량, 가격, 현황 및 용도

2. 무상 양여의 목적 또는 사유
3. 교육, 연구, 사회봉사, 산학협력 및 학생ㆍ교직원의 복리 후생에 사용될 계획이 수립된 공유재산 및 물품의 경우에는 그 사용계획서와 예산서 등 해당 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무상 양여와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③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의 무상 대부 또는 무상 사용ㆍ수익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와 맺은 대부계약 또는 사용ㆍ수익계약에 따른다.

**제9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적용)** 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의 무상 양여, 무상 대부 또는 무상 사용ㆍ수익의 절차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법 제2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차입을 하거나 학교채를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장기차입을 하는 경우
   가. 차입금액, 차입처 및 차입 사유를 적은 서류
   나. 상환방법 및 상환계획을 적은 서류
   다. 이사회 회의록 사본
2. 학교채를 발행하는 경우
   가. 학교채 발행한도액, 모집대상 및 발행 사유를 적은 서류
   나. 제1호나목 및 다목의 서류

②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장기차입을 말한다.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인회계의 기본금에 대한 총차입금(차입 예정인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비율이 20퍼센트 미만일 것
2. 총차입금이 200억원 미만일 것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차입을 할 것

③ 제2항제1호의 기본금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순자산으로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계속적으로 투입ㆍ운용되는 기본적 자산의 가액으로 한다.

**제11조(예산안ㆍ결산서 제출)** ① 총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5일 전까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예산 총칙

2. 직원의 보수(수당을 포함한다) 일람표
3. 기구와 정원 일람표
4. 이사회 회의록 사본

② 총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결산서를 제출할 때에는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1. 해당 연도의 운영계산서 및 재무상태표 등 재무제표
2.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3. 해당 연도에 검사를 한 회계법인의 의견서와 감사보고서
4. 이사회 회의록 사본
5. 그 밖에 결산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11조의2(예산의 공시 항목 및 시기 등)** ① 총장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법인회계의 예산의 명세를 공시할 때에는 등록금 명세서, 인건비 명세서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예산부속명세서를 포함한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법인회계의 예산의 명세를 공시할 때에는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5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시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③ 총장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법인회계의 예산의 명세를 공시할 때에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6. 25.]

**제11조의3(결산의 공시 항목 및 시기 등)** ① 총장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법인회계의 결산의 명세를 공시할 때에는 받을 어음 명세서, 유형고정자산 명세서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결산부속명세서를 포함한 결산서와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감사보고서(의견서를 포함한다)를 공시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법인회계의 결산의 명세를 공시할 때에는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시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③ 총장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법인회계의 결산의 명세를 공시할 때에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6. 25.]

**제12조(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① 총장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출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2. 출연금 예산요구서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는 데 필요한 서류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출연 요구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내용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하고, 출연금 예산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총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13조(출연금의 지급)** ① 총장은 출연금을 받으려면 그 지급신청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은 교육부장관은 사업계획과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분기별로 출연금을 지급한다.<개정 2013. 3. 23.>

**제14조(기초학문진흥위원회의 설치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기초학문진흥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기초학문진흥위원회는 11명 이내의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내외의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기초학문진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초학문 등 필요한 분야의 지원·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기초학문 등 필요한 분야의 지원·육성계획 시행을 위한 재원(財源) 확충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기초학문 등 필요한 분야의 지원·육성계획 시행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초학문진흥위원회가 기초학문 등 필요한 분야의 지원·육성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기초학문진흥위원회는 제3항의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전달하고, 총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초학문진흥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 총장은 국가로부터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1. 지원·육성사업의 목표 및 효과
2. 지원·육성 분야 및 실행계획
3. 지원·육성사업에 드는 경비와 지원을 받으려는 금액

**제15조(장학·복지위원회의 설치 등)** ①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장학·복지 시책의 수립·시행 등을 위하여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장학·복지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장학·복지위원회는 11명 이내의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내외의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장학·복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의 장학·복지 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학생의 장학·복지 시책 시행을 위한 재원 확충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학생의 장학·복지 시책 시행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학·복지위원회가 학생의 장학·복지 증진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장학ㆍ복지위원회는 제3항의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전달하고, 총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학ㆍ복지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부칙** <제24108호,2012. 9.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직원 임용의 특례) ① 법 부칙 제5조제5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되기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종전의 인천대학교 소속 교원인 공무원은 공무원 신분으로 인천광역시에 소속되고, 그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파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파견기간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5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원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공립대학의 교원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라 파견근무를 하는 교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다만, 인천광역시장은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법 부칙 제5조제5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직원으로 임용되기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종전의 인천대학교 소속 직원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가 설립된 이후 1년간 공무원 신분으로 인천광역시에 소속되고, 그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⑥ 제5항에 따른 직원의 신분보장 및 복무 관계 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다.

**제3조**(국가부담금의 계상 및 납부 등) ① 국가는 법 부칙 제7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국가보전금 및 국가지원금(이하 "국가보전금등"이라 한다)을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년도에 부족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도 함께 계상하여야 한다.

②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매년 3월 31일까지 국가보전금등의 다음 연도 소요액을 산출하고 그 산출 명세를 명백히 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보전금등을 1년을 4기로 나누어 매 분기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연금수납기관에 납입하여야 하며, 이를 수납한 연금수납기관은 영수증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발급하고 지체 없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입금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④ 국가가 국가보전금등으로 해당 회계연도 말까지 납입한 금액이 실제 든 비용보다 적거나 많을 때에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정산하지 아니한 경우(해당 회계연도 내에 전액을 공단에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금액

을 원금으로 하여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정산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이자는 해당 연도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 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로 산정하며, 회계연도마다 복리로 계산한다.

**부칙** <제24423호,2013. 3. 2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2$ 까지 생략

2%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및 제14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 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 <제25396호,2014. 6. 25.>

이 영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751호,2014. 11. 19.>(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53>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8211호,2017. 7. 26.>(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4) 까지 생략

4!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행정자치부장관 " 을 " 행정안전부장관 " 으로 한다.

4@ 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30858호,2020. 7. 21.>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023호,2020. 9. 22.>

이 영은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228호,2025. 1. 21.>(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1. 31.] [대통령령 제35228호, 2025. 1. 2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등기)**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자산의 총액

**제3조(이전등기)**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 1. 21.]

**제4조(변경등기)**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제2조 각 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3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 1. 21.]

**제5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각의 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설립등기: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정관
2. 제3조에 따른 이전등기: 주된 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3. 제4조에 따른 변경등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제6조(등기기간의 기산)**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기할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이 필요한 것은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된 날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起算)한다. <개정 2013. 3. 23.>

**제6조의2(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6조의2제3항 전단에 따른 대학의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 등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이하 "양성평등조치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한 계열별 구분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1의 계열별 구분에 따른다.

② 총장은 양성평등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개시 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추진 실적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이 법 제6조의2제4항에 따라 양성평등조치계획 및 그 추진 실적을 평가할 때에는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방문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7. 21.]

**제6조의3(교수 등의 사외이사 겸직허가 기준 등)** ① 총장은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에 대한 사외이사 겸직허가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4제1항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겸직의 필요성
2. 겸직 기간의 적절성
3. 겸직 대상기업의 적합성
4. 그 밖에 총장이 학생의 교육ㆍ지도 및 학문연구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그 해에 해당 사기업체로부터 받은 보수의 전부를 보고하는 경우 해당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지급 내역이 포함된 서류를 해당 사기업체로부터 발급받아 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연도 보수 전부의 월별 지급 내역
2. 교통비 및 회의수당 등 항목별 지급 내역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겸직허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 9. 22.]

**제7조(결격사유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법이나 이 영 또는 「고등교육법」에서 정하는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이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의 사유에 따른 임원 취임 승인의 취소는 교육부장관이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5일이 지나도 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제8조(공유재산 등의 무상 양여 등)** ①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하는 경우 그 재산 및 물품의 대장(臺帳) 가격을 해당 재산 및 물품의 가격으로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협의를 할 때에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설립등기 예정일 3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공유재산과 물품의 표시, 수량, 가격, 현황 및 용도
2. 무상 양여의 목적 또는 사유

3. 교육, 연구, 사회봉사, 산학협력 및 학생ㆍ교직원의 복리 후생에 사용될 계획이 수립된 공유재산 및 물품의 경우에는 그 사용계획서와 예산서 등 해당 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무상 양여와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③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의 무상 대부 또는 무상 사용ㆍ수익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와 맺은 대부계약 또는 사용ㆍ수익계약에 따른다.

**제9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적용)** 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의 무상 양여, 무상 대부 또는 무상 사용ㆍ수익의 절차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법 제2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차입을 하거나 학교채를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장기차입을 하는 경우
   가. 차입금액, 차입처 및 차입 사유를 적은 서류
   나. 상환방법 및 상환계획을 적은 서류
   다. 이사회 회의록 사본
2. 학교채를 발행하는 경우
   가. 학교채 발행한도액, 모집대상 및 발행 사유를 적은 서류
   나. 제1호나목 및 다목의 서류

②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장기차입을 말한다.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인회계의 기본금에 대한 총차입금(차입 예정인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비율이 20퍼센트 미만일 것
2. 총차입금이 200억원 미만일 것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차입을 할 것

③ 제2항제1호의 기본금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순자산으로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계속적으로 투입ㆍ운용되는 기본적 자산의 가액으로 한다.

**제11조(예산안ㆍ결산서 제출)** ① 총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5일 전까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예산 총칙
2. 직원의 보수(수당을 포함한다) 일람표

3. 기구와 정원 일람표
4. 이사회 회의록 사본

② 총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결산서를 제출할 때에는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1. 해당 연도의 운영계산서 및 재무상태표 등 재무제표
2.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3. 해당 연도에 검사를 한 회계법인의 의견서와 감사보고서
4. 이사회 회의록 사본
5. 그 밖에 결산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11조의2(예산의 공시 항목 및 시기 등)** ① 총장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법인회계의 예산의 명세를 공시할 때에는 등록금 명세서, 인건비 명세서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예산부속명세서를 포함한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법인회계의 예산의 명세를 공시할 때에는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5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시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③ 총장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법인회계의 예산의 명세를 공시할 때에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6. 25.]

**제11조의3(결산의 공시 항목 및 시기 등)** ① 총장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법인회계의 결산의 명세를 공시할 때에는 받을 어음 명세서, 유형고정자산 명세서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결산부속명세서를 포함한 결산서와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감사보고서(의견서를 포함한다)를 공시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법인회계의 결산의 명세를 공시할 때에는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시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③ 총장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법인회계의 결산의 명세를 공시할 때에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6. 25.]

**제12조(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① 총장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출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2. 출연금 예산요구서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는 데 필요한 서류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출연 요구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내용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하고, 출연금 예산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총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13조(출연금의 지급)** ① 총장은 출연금을 받으려면 그 지급신청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은 교육부장관은 사업계획과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분기별로 출연금을 지급한다.<개정 2013. 3. 23.>

**제14조(기초학문진흥위원회의 설치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기초학문진흥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기초학문진흥위원회는 11명 이내의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내외의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기초학문진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초학문 등 필요한 분야의 지원·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기초학문 등 필요한 분야의 지원·육성계획 시행을 위한 재원(財源) 확충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기초학문 등 필요한 분야의 지원·육성계획 시행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초학문진흥위원회가 기초학문 등 필요한 분야의 지원·육성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기초학문진흥위원회는 제3항의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전달하고, 총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초학문진흥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 총장은 국가로부터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1. 지원·육성사업의 목표 및 효과
2. 지원·육성 분야 및 실행계획
3. 지원·육성사업에 드는 경비와 지원을 받으려는 금액

**제15조(장학·복지위원회의 설치 등)** ①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장학·복지 시책의 수립·시행 등을 위하여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장학·복지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장학·복지위원회는 11명 이내의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내외의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장학·복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의 장학·복지 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학생의 장학·복지 시책 시행을 위한 재원 확충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학생의 장학·복지 시책 시행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학·복지위원회가 학생의 장학·복지 증진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장학ㆍ복지위원회는 제3항의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전달하고, 총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학ㆍ복지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부칙** <제24108호,2012. 9.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직원 임용의 특례) ① 법 부칙 제5조제5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되기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종전의 인천대학교 소속 교원인 공무원은 공무원 신분으로 인천광역시에 소속되고, 그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파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파견기간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5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원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공립대학의 교원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라 파견근무를 하는 교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다만, 인천광역시장은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법 부칙 제5조제5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직원으로 임용되기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종전의 인천대학교 소속 직원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가 설립된 이후 1년간 공무원 신분으로 인천광역시에 소속되고, 그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⑥ 제5항에 따른 직원의 신분보장 및 복무 관계 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다.

**제3조**(국가부담금의 계상 및 납부 등) ① 국가는 법 부칙 제7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국가보전금 및 국가지원금(이하 "국가보전금등"이라 한다)을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년도에 부족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도 함께 계상하여야 한다.

②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매년 3월 31일까지 국가보전금등의 다음 연도 소요액을 산출하고 그 산출 명세를 명백히 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보전금등을 1년을 4기로 나누어 매 분기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연금수납기관에 납입하여야 하며, 이를 수납한 연금수납기관은 영수증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발급하고 지체 없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입금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④ 국가가 국가보전금등으로 해당 회계연도 말까지 납입한 금액이 실제 든 비용보다 적거나 많을 때에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정산하지 아니한 경우(해당 회계연도 내에 전액을 공단에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금액

을 원금으로 하여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정산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이자는 해당 연도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 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로 산정하며, 회계연도마다 복리로 계산한다.

**부칙** <제24423호,2013. 3. 2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2$ 까지 생략

2%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및 제14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 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 <제25396호,2014. 6. 25.>

이 영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751호,2014. 11. 19.>(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53>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8211호,2017. 7. 26.>(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4) 까지 생략

4!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행정자치부장관 " 을 " 행정안전부장관 " 으로 한다.

4@ 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30858호,2020. 7. 21.>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023호,2020. 9. 22.>

이 영은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228호,2025. 1. 21.>(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 6. 30.] [교육부령 제240호, 2021. 6. 30., 타법개정]

교육부 (국립대학지원과) 044 - 203 - 69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자금 ” 이란 현금, 예금, 수표 및 우편환(郵便換) 등을 말한다.
2. “ 전기말 ” 이란 전(前) 회계연도의 말일을 말한다.
3. “ 기말 ” 이란 해당 회계연도의 말일을 말한다.
4. “ 당기(當期) ” 란 해당 회계연도를 말한다.
5. “ 적립금 ” 이란 특정한 경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치하는 자금으로서 기금 등에 대응하는 적립액을 말한다.

**제3조(예산부속명세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 영 ” 이라 한다) 제11조의2제1항에서 “ 등록금 명세서, 인건비 명세서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예산부속명세서 ” 란 다음 각 호의 명세서를 말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전기말 추정 미수금 명세서
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전기말 추정 차입금 명세서
3.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등록금 명세서
4.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인건비 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명세서

**제4조(결산부속명세서)** 영 제11조의3제1항에서 “ 받을 어음 명세서, 유형고정자산 명세서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결산부속명세서 ” 란 다음 각 호의 명세서를 말한다. <개정 2019. 9. 17.>

1. 제5조에 따른 재무상태표 부속명세서
2. 제6조에 따른 운영계산서 부속명세서

**제5조(재무상태표 부속명세서)** 재무상태표 부속명세서는 다음 각 호의 명세서로 한다. <개정 2019. 9. 17.>

1.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현금 및 예금 명세서
2.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수표 출납 명세서
3.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선급금(先給金) 명세서
4.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가지급금(假支給金) 명세서

5.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선급(先給) 법인세 명세서
6.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받을 어음 명세서
7.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투자와 기타자산 명세서
8.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투자유가증권 명세서
9.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유형고정자산 명세서
10.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무형고정자산 명세서
11.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단기(장기) 차입금 명세서
12.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미지급금 명세서
13.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가수금(假受金) 명세서
14.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지급 어음 명세서
15.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어음 출납 명세서
16.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차관(외화 장기차입금) 명세서
17.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학교채 명세서
18.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적립금 명세서
19. 그 밖에 필요한 명세서

[제목개정 2019. 9. 17.]

**제6조(운영계산서 부속명세서)** 운영계산서 부속명세서는 다음 각 호의 명세서로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등록금 명세서
2.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전입금 명세서
3.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예비비 사용액 명세서
4.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명세서

**부칙** <제38호,2014. 7. 1.>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호,2019. 9. 17.>(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0호,2021. 6. 30.>(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 전기말 추정 미수금 명세서

(단위: 천원)

| 구 분 | 내 용 | 금 액 | | 비 고 |
|---|---|---|---|---|
| | | | | |
| 합 계 | | | | |

※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를 조정(추가·삭제)할 수 있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 전기말 추정 차입금 명세서

(단위: 천원)

| 허가 근거 | 차입처 | 차입내역 | | 전기말 잔 액 | 지 급 이자율 | 남아 있는 상환기간 | 차기 상환 예 정 액 | 비 고 |
|---|---|---|---|---|---|---|---|---|
| | | 연월일 | 금 액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를 조정(추가·삭제)할 수 있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등록금 명세서

(단위: 천원 또는 원)

| 구분 | 구분(대학ㆍ계열) | 과정 | 세분 | 학기 | 학년(학기) | 학생 수 | 입학금 | | 수업료 | | 합계 | 비고 |
|---|---|---|---|---|---|---|---|---|---|---|---|---|
| | | | | | | | 1인당 금액 | 금액 | 1인당 금액 |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br>·<br>· | ·<br>·<br>· | ·<br>·<br>· | ·<br>·<br>· | ·<br>·<br>· | ·<br>·<br>· | ·<br>·<br>· | ·<br>·<br>· | ·<br>·<br>· | ·<br>·<br>· | ·<br>·<br>· | ·<br>·<br>· |
| 총 계 | | | | | | | | | | | | |

※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를 조정(추가ㆍ삭제)할 수 있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1. 6. 30.>

# 인건비 명세서

(단위: 천원 또는 원)

| 구 분 | 종 류 | 직 급 (또는 대학) | 세 분 | 인 원 | 금 액 | | 비 고 |
|---|---|---|---|---|---|---|---|
| | | | | | 1인당 평균액 | 금 액 | |
| 교 원 | 급 여 | | | | | | |
| | | 소 계 | | | | | |
| | 상 여 | | | | | | |
| | 수 당 | | | | | | |
| | 법정부담금 | | | | | | |
| | 퇴직금 | | | | | | |
| | 합 계 | | | | | | |
| 강 사 | 시간강사<br>특별강사 | | | | | | |
| | 합 계 | | | | | | |
| 조 교 | 인건비 | | | | | | |
| 직 원 | 급 여<br>상 여<br>수 당<br>법정부담금<br>퇴직금 | | | | | | |
| | 합 계 | | | | | | |
| 임시직 | 임금<br>퇴직금 | | | | | | |
| | 합 계 | | | | | | |
| 총 계 | | | | | | | |

※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를 조정(추가 · 삭제)할 수 있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 현금 및 예금 명세서

(단위: 원)

| 자금의 종 류 | 구 분 (현금 또는 예금) | 용 도 | 예치 기관 | 예금 종류 | 계좌 번호 | (예치) 금액 | 만기일 | 이자율 | 비 고 |
|---|---|---|---|---|---|---|---|---|---|
| 유동 자금 | | | | | | | | | |
| | 계 | | | | | | | | |
| 특정 기금 | | | | | | | | | |
| | 계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를 조정(추가·삭제)할 수 있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9. 9. 17.>

# 수표 출납 명세서

| 거래 은행 | 구입 매수 | | | 발행 매수 | | | | 폐기 매수 | | 미사용 매수 | | 비고 |
|---|---|---|---|---|---|---|---|---|---|---|---|---|
| | 구입일 | 번호 | 매수 | 상거래 | 차입용 | 담 보 제공 등 | 매수 소계 | 번호 | 매수 | 번호 | 매수 | |
| | 전기이월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를 조정(추가·삭제)할 수 있음

※ 미사용수표 매수 = 전기이월수표 매수 + 당기구입수표 매수 - 당기발행수표 매수 - 당기폐기수표 매수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

# 선급금 명세서

(단위: 원)

| 구 분 | 내 용 | 금 액 | | 비 고 |
|---|---|---|---|---|
| | | | | |

※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를 조정(추가·삭제)할 수 있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 가지급금 명세서

(단위: 원)

| 구 분 | 수령부서 | 내 용 | 지 급 일 | 금 액 | | 비 고 |
|---|---|---|---|---|---|---|
| | | | | | | |
| 합 계 | | | | | | |

※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를 조정(추가·삭제)할 수 있으나, 지급일은 반드시 표시하여야 함

※ 원칙적으로 가지급금은 결산 시점에 해당 과목으로 대체하거나 정리하여야 함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 선급 법인세 명세서

(단위: 원)

| 연월일 | 내 용 | 징수의무자 | 과세표준<br>(수입이자) | 선급 법인세<br>(원천납부액) | 비 고 |
|---|---|---|---|---|---|
| | | | | | |
| 합 계 | | | | | |

※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를 조정(추가 · 삭제)할 수 있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 받을 어음 명세서

(단위: 원)

| 수령일 | 발행인(기관) | 지급은행 | 어음번호 | 만기일 | 금 액 |
|---|---|---|---|---|---|
| | | | | | |
| 합 계 | | | | | |

※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를 조정(추가·삭제)할 수 있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

# 투자와 기타자산 명세서

(단위: 원)

| 구분 | | 내 용 | 전 기 이월액 | 당기 증감액 | | 기말잔액 | 비 고 |
|---|---|---|---|---|---|---|---|
| | | | | 증가액 | 감소액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를 조정(추가 · 삭제)할 수 있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

# 투자유가증권 명세서

(단위: 원)

| 구 분 | 종 목 | 보유목적 (취득사유) | 1주의 금액 | 주 수 | 취득가액 | 시 가 | 시가 차액 | 비 고 |
|---|---|---|---|---|---|---|---|---|
| 주식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공사채<br>국 채<br>지방채 | 종 목 | | | 액면가액 | 취득가액 | 시 가 | 시가 차액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합 계 | | | | | | | | |

※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를 조정(추가 · 삭제)할 수 있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9. 9. 17.>

# 유형고정자산 명세서

(단위: 원)

| 과 목 | 기초잔액 | 당 기 증가액 | 당 기 감소액 | 기말잔액 | 감가상각 누 계 액 | 미상각 잔 액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작성 시 주의사항

1. 유형고정자산을 재무상태표에 적은 과목별로 구분하여 적음
2. 기초잔액, 당기 증가액, 당기 감소액 및 기말잔액은 그 자산의 취득원가로 적음
3. 자본적 지출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취득원가가 수정된 경우에는 그로 인한 당기 증가액 또는 당기 감소액을 당기 증가액란 또는 당기 감소액란에 괄호를 하여 적고 증가의 사유를 비고란에 적음
4. 기말잔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잔액을 미상각 잔액란에 적음
5.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를 조정(추가·삭제)할 수 있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9. 9. 17.>

# 무형고정자산 명세서

(단위: 원)

| 과 목 | 기초잔액 | 당 기 증가액 | 당 기 감소액 | 기말잔액 | 상각 누계액 | 미상각 잔액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작성 시 주의사항

1. 무형고정자산은 재무상태표에 적은 과목별로 구분하여 적음
2. 자본적 지출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취득원가가 수정된 경우에는 그로 인한 당기 증가액 또는 당기 감소액을 당기 증가액란 또는 당기감 소액란에 괄호를 하여 적고 증가의 사유를 비고란에 적음
3.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를 조정(추가·삭제)할 수 있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5호서식]

# 단기(장기) 차입금 명세서

(단위: 원)

| 허가 근거 | 차입처 | 차입내역 | | 전 기 이월액 | 당기 증감액 | | 기말 잔액 | 지 급 이자율 | 상환 기한 | 상환 회계 | 비고 |
|---|---|---|---|---|---|---|---|---|---|---|---|
| | | 연월일 | 금액 | | 증가액 | 감소액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를 조정(추가 · 삭제)할 수 있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6호서식]

# 미지급금 명세서

(단위: 원)

| 구 분 | 내 용 | 금 액 | | 비 고 |
|---|---|---|---|---|
| | | | | |
| 합 계 | | | | |

※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를 조정(추가·삭제)할 수 있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7호서식]

# 가수금 명세서

(단위: 원)

| 구 분 | 내 용 | 수령일 | 금 액 | | 비 고 |
|---|---|---|---|---|---|
| | | | | | |
| 합 계 | | | | | |

※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를 조정(추가·삭제)할 수 있으나, 수령일은 반드시 표시하여야 함

※ 원칙적으로 가수금은 결산 시점에 해당 과목으로 대체하거나 정리하여야 함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8호서식]

# 지급 어음 명세서

(단위: 원)

| 거래은행 | 발행일 | 발행처 | 내용 | 어음번호 | 매수 | 금액 | | 만기일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를 조정(추가 · 삭제)할 수 있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9. 9. 17.>

# 어음 출납 명세서

| 거래은행 | 구입매수 | | | 발행매수 | | | | 폐기매수 | | 미사용매수 | | 비고 |
|---|---|---|---|---|---|---|---|---|---|---|---|---|
| | 구입일 | 번호 | 매수 | 상거래 | 차입용 | 담보 제공 등 | 매수 소계 | 번호 | 매수 | 번호 | 매수 | |
| | 전기이월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를 조정(추가·삭제)할 수 있음

※ 미사용어음 매수 = 전기이월어음 매수 + 당기구입어음 매수 - 당기발행어음 매수 - 당기폐기어음 매수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0호서식]

# 차관(외화 장기차입금) 명세서

(단위: 원)

| 허가근거 | 차입(차관)내용 | | 구 분 | 장부가액 | 평가액 | 평가차액 | 비 고 |
|---|---|---|---|---|---|---|---|
| | 구 분 | 내 용 | | | | | |
| | 승인일 | | 외 화 | | | | |
| | 도입 외화 | | | | | | |
| | 이자율 | | 환 율 | | | | |
| | 용 도 | | | | | | |
| | 상환기간 | | 원 화 | | | | |
| | 승인일 | | 외 화 | | | | |
| | 도입 외화 | | | | | | |
| | 이자율 | | 환 율 | | | | |
| | 용 도 | | | | | | |
| | 상환기간 | | 원 화 | | | | |
| | 승인일 | | 외 화 | | | | |
| | 도입 외화 | | | | | | |
| | 이자율 | | 환 율 | | | | |
| | 용 도 | | | | | | |
| | 상환기간 | | 원 화 | | | | |
| 합 계 | | | | | | | |

※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를 조정(추가ㆍ삭제)할 수 있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1호서식]

# 학교채 명세서

(단위: 명, 원)

| 학년도 | 구 분 | 기초잔액 | | 당기 증가 | | 당기 상환 | | 기말잔액 | | 비고 |
|---|---|---|---|---|---|---|---|---|---|---|
| | | 인원 | 금액 | 인원 | 금액 | 인원 | 금액 | 인원 | 금액 | |
| 학년도 | 학부모<br>동 문<br>교직원<br>기 타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학년도 | 학부모<br>동 문<br>교직원<br>기 타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학년도 | 학부모<br>동 문<br>교직원<br>기 타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를 조정(추가·삭제)할 수 있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2호서식]

# 적립금 명세서

(단위: 원)

| 계정과목 | | 기초금액 | 수입 | | | 지출 | | | 기말잔액 |
|---|---|---|---|---|---|---|---|---|---|
| 항 | 목 | | 적립 | 수입 | 대체 | 사용 | 전출 | 대체 | |
| 원금보존적립금 | 연구적립금 | | | | | | | | |
| | 건축적립금 | | | | | | | | |
| | 장학적립금 | | | | | | | | |
| | 퇴직적립금 | | | | | | | | |
| | 기타적립금 | | | | | | | | |
| 임의적립금 | 연구적립금 | | | | | | | | |
| | 건축적립금 | | | | | | | | |
| | 장학적립금 | | | | | | | | |
| | 퇴직적립금 | | | | | | | | |
| | 기타적립금 | | | | | | | | |

※ 작성 시 주의사항

1. 수입란의 "수입"은 원금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경우 수입이자에 대한 적수(積數)를 계산하여 적음
2. 지출란의 "사용"은 기금회계에서 구분하여 회계처리한 금액을 적음
3. 지출란의 "전출"은 등록금회계로 전출한 금액을 적음
4. 지출란의 "대체"는 임의적립금에서 원금보존적립금으로 대체한 금액을 적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3호서식]

# 전입금 명세서

(단위: 원)

| 계정과목 | 종 류 | 내용(또는 계산 근거) | 금 액 | 비 고 |
|---|---|---|---|---|
| | | | | |
| 합 계 | | | | |

※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를 조정(추가·삭제)할 수 있음

※ 기부금수입·전출금 등의 계정과목에도 응용할 수 있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

# 예비비 사용액 명세서

(단위: 원)

| 예비비 사용과목 | | | 내 용 | 예비비 사용 결 정 액 | 예비비 지출액 | 비 고 |
|---|---|---|---|---|---|---|
| 관 | 항 | 목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를 조정(추가·삭제)할 수 있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5호서식]

#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명세서

(단위: 원)

| 구 분 | 과 목 | 취 득 원 가 | 감가상각 | | | | 기말 미상각 잔액 | 비고 |
|---|---|---|---|---|---|---|---|---|
| | | | 기초감가 상각누계액 | 감가상각 대 상 액 | 감 가 상각액 | 감가상각 누 계 액 | | |
| 유 형 고 정 자 산 | 건 물 | | | | | | | |
| | 구축물 | | | | | | | |
| | 기계장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무 형 고 정 자 산 | 지적재산권 | | | | | | | |
| | 개발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합 계 | | | | | | | | |

※ 작성 시 주의사항

1. 기말 미상각 잔액은 취득원가에서 기말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금액으로 적음
2.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를 조정(추가 · 삭제)할 수 있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 6. 30.] [교육부령 제240호, 2021. 6. 30.,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자금 ” 이란 현금, 예금, 수표 및 우편환(郵便換) 등을 말한다.
2. “ 전기말 ” 이란 전(前) 회계연도의 말일을 말한다.
3. “ 기말 ” 이란 해당 회계연도의 말일을 말한다.
4. “ 당기(當期) ” 란 해당 회계연도를 말한다.
5. “ 적립금 ” 이란 특정한 경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치하는 자금으로서 기금 등에 대응하는 적립액을 말한다.

**제3조(예산부속명세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 영 ” 이라 한다) 제11조의2제1항에서 “ 등록금 명세서, 인건비 명세서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예산부속명세서 ” 란 다음 각 호의 명세서를 말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전기말 추정 미수금 명세서
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전기말 추정 차입금 명세서
3.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등록금 명세서
4.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인건비 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명세서

**제4조(결산부속명세서)** 영 제11조의3제1항에서 “ 받을 어음 명세서, 유형고정자산 명세서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결산부속명세서 ” 란 다음 각 호의 명세서를 말한다. <개정 2019. 9. 17.>

1. 제5조에 따른 재무상태표 부속명세서
2. 제6조에 따른 운영계산서 부속명세서

**제5조(재무상태표 부속명세서)** 재무상태표 부속명세서는 다음 각 호의 명세서로 한다. <개정 2019. 9. 17.>

1.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현금 및 예금 명세서
2.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수표 출납 명세서
3.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선급금(先給金) 명세서
4.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가지급금(假支給金) 명세서
5.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선급(先給) 법인세 명세서

6.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받을 어음 명세서
7.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투자와 기타자산 명세서
8.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투자유가증권 명세서
9.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유형고정자산 명세서
10.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무형고정자산 명세서
11.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단기(장기) 차입금 명세서
12.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미지급금 명세서
13.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가수금(假受金) 명세서
14.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지급 어음 명세서
15.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어음 출납 명세서
16.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차관(외화 장기차입금) 명세서
17.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학교채 명세서
18.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적립금 명세서
19. 그 밖에 필요한 명세서

[제목개정 2019. 9. 17.]

**제6조(운영계산서 부속명세서)** 운영계산서 부속명세서는 다음 각 호의 명세서로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등록금 명세서
2.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전입금 명세서
3.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예비비 사용액 명세서
4.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명세서

**부칙** <제38호,2014. 7. 1.>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호,2019. 9. 17.>(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0호,2021. 6. 30.>(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 전기말 추정 미수금 명세서

(단위: 천원)

| 구 분 | 내 용 | 금 액 | | 비 고 |
|---|---|---|---|---|
| | | | | |
| 합 계 | | | | |

※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를 조정(추가·삭제)할 수 있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 전기말 추정 차입금 명세서

(단위: 천원)

| 허가 근거 | 차입처 | 차입내역 | | 전기말 잔 액 | 지 급 이자율 | 남아 있는 상환기간 | 차기 상환 예 정 액 | 비 고 |
|---|---|---|---|---|---|---|---|---|
| | | 연월일 | 금 액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를 조정(추가·삭제)할 수 있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등록금 명세서

(단위: 천원 또는 원)

| 구분 | 구분(대학ㆍ계열) | 과정 | 세분 | 학기 | 학년(학기) | 학생 수 | 입학금 | | 수업료 | | 합계 | 비고 |
|---|---|---|---|---|---|---|---|---|---|---|---|---|
| | | | | | | | 1인당 금액 | 금액 | 1인당 금액 |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br>·<br>· | ·<br>·<br>· | ·<br>·<br>· | ·<br>·<br>· | ·<br>·<br>· | ·<br>·<br>· | ·<br>·<br>· | ·<br>·<br>· | ·<br>·<br>· | ·<br>·<br>· | ·<br>·<br>· | ·<br>·<br>· |
| 총 계 | | | | | | | | | | | | |

※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를 조정(추가ㆍ삭제)할 수 있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1. 6. 30.>

# 인건비 명세서

(단위: 천원 또는 원)

| 구 분 | 종 류 | 직 급 (또는 대학) | 세 분 | 인 원 | 금 액 | | 비 고 |
|---|---|---|---|---|---|---|---|
| | | | | | 1인당 평균액 | 금 액 | |
| 교 원 | 급 여 | | | | | | |
| | | 소 계 | | | | | |
| | 상 여 | | | | | | |
| | 수 당 | | | | | | |
| | 법정부담금 | | | | | | |
| | 퇴직금 | | | | | | |
| | 합 계 | | | | | | |
| 강 사 | 시간강사<br>특별강사 | | | | | | |
| | 합 계 | | | | | | |
| 조 교 | 인건비 | | | | | | |
| 직 원 | 급 여<br>상 여<br>수 당<br>법정부담금<br>퇴직금 | | | | | | |
| | 합 계 | | | | | | |
| 임시직 | 임금<br>퇴직금 | | | | | | |
| | 합 계 | | | | | | |
| 총 계 | | | | | | | |

※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를 조정(추가 · 삭제)할 수 있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 현금 및 예금 명세서

(단위: 원)

| 자금의 종 류 | 구 분 (현금 또는 예금) | 용 도 | 예치 기관 | 예금 종류 | 계좌 번호 | (예치) 금액 | 만기일 | 이자율 | 비 고 |
|---|---|---|---|---|---|---|---|---|---|
| 유동 자금 | | | | | | | | | |
| | 계 | | | | | | | | |
| 특정 기금 | | | | | | | | | |
| | 계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를 조정(추가·삭제)할 수 있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9. 9. 17.>

# 수표 출납 명세서

| 거래 은행 | 구입 매수 | | | 발행 매수 | | | | 폐기 매수 | | 미사용 매수 | | 비고 |
|---|---|---|---|---|---|---|---|---|---|---|---|---|
| | 구입일 | 번호 | 매수 | 상거래 | 차입용 | 담 보 제공 등 | 매수 소계 | 번호 | 매수 | 번호 | 매수 | |
| | 전기이월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를 조정(추가·삭제)할 수 있음

※ 미사용수표 매수 = 전기이월수표 매수 + 당기구입수표 매수 - 당기발행수표 매수 - 당기폐기수표 매수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

# 선급금 명세서

(단위: 원)

| 구 분 | 내 용 | 금 액 | | 비 고 |
|---|---|---|---|---|
| | | | | |

※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를 조정(추가·삭제)할 수 있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 가지급금 명세서

(단위: 원)

| 구 분 | 수령부서 | 내 용 | 지 급 일 | 금 액 | | 비 고 |
|---|---|---|---|---|---|---|
| | | | | | | |
| 합 계 | | | | | | |

※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를 조정(추가·삭제)할 수 있으나, 지급일은 반드시 표시하여야 함

※ 원칙적으로 가지급금은 결산 시점에 해당 과목으로 대체하거나 정리하여야 함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 선급 법인세 명세서

(단위: 원)

| 연월일 | 내 용 | 징수의무자 | 과세표준<br>(수입이자) | 선급 법인세<br>(원천납부액) | 비 고 |
|---|---|---|---|---|---|
| | | | | | |
| 합 계 | | | | | |

※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를 조정(추가 · 삭제)할 수 있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 받을 어음 명세서

(단위: 원)

| 수령일 | 발행인(기관) | 지급은행 | 어음번호 | 만기일 | 금 액 |
|---|---|---|---|---|---|
| | | | | | |
| 합 계 | | | | | |

※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를 조정(추가·삭제)할 수 있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

# 투자와 기타자산 명세서

(단위: 원)

| 구분 | | 내 용 | 전 기 이월액 | 당기 증감액 | | 기말잔액 | 비 고 |
|---|---|---|---|---|---|---|---|
| | | | | 증가액 | 감소액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를 조정(추가 · 삭제)할 수 있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

# 투자유가증권 명세서

(단위: 원)

| 구 분 | 종 목 | 보유목적 (취득사유) | 1주의 금액 | 주 수 | 취득가액 | 시 가 | 시가 차액 | 비 고 |
|---|---|---|---|---|---|---|---|---|
| 주식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공사채<br>국 채<br>지방채 | 종 목 | | | 액면가액 | 취득가액 | 시 가 | 시가 차액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합 계 | | | | | | | | |

※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를 조정(추가 · 삭제)할 수 있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9. 9. 17.>

# 유형고정자산 명세서

(단위: 원)

| 과 목 | 기초잔액 | 당 기 증가액 | 당 기 감소액 | 기말잔액 | 감가상각 누 계 액 | 미상각 잔 액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작성 시 주의사항

1. 유형고정자산을 재무상태표에 적은 과목별로 구분하여 적음
2. 기초잔액, 당기 증가액, 당기 감소액 및 기말잔액은 그 자산의 취득원가로 적음
3. 자본적 지출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취득원가가 수정된 경우에는 그로 인한 당기 증가액 또는 당기 감소액을 당기 증가액란 또는 당기 감소액란에 괄호를 하여 적고 증가의 사유를 비고란에 적음
4. 기말잔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잔액을 미상각 잔액란에 적음
5.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를 조정(추가·삭제)할 수 있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9. 9. 17.>

# 무형고정자산 명세서

(단위: 원)

| 과 목 | 기초잔액 | 당 기 증가액 | 당 기 감소액 | 기말잔액 | 상각 누계액 | 미상각 잔액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작성 시 주의사항

1. 무형고정자산은 재무상태표에 적은 과목별로 구분하여 적음
2. 자본적 지출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취득원가가 수정된 경우에는 그로 인한 당기 증가액 또는 당기 감소액을 당기 증가액란 또는 당기감 소액란에 괄호를 하여 적고 증가의 사유를 비고란에 적음
3.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를 조정(추가·삭제)할 수 있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5호서식]

# 단기(장기) 차입금 명세서

(단위: 원)

| 허가 근거 | 차입처 | 차입내역 | | 전 기 이월액 | 당기 증감액 | | 기말 잔액 | 지 급 이자율 | 상환 기한 | 상환 회계 | 비고 |
|---|---|---|---|---|---|---|---|---|---|---|---|
| | | 연월일 | 금액 | | 증가액 | 감소액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를 조정(추가 · 삭제)할 수 있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6호서식]

# 미지급금 명세서

(단위: 원)

| 구 분 | 내 용 | 금 액 | | 비 고 |
|---|---|---|---|---|
| | | | | |
| 합 계 | | | | |

※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를 조정(추가·삭제)할 수 있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7호서식]

# 가수금 명세서

(단위: 원)

| 구 분 | 내 용 | 수령일 | 금 액 | | 비 고 |
|---|---|---|---|---|---|
| | | | | | |
| 합 계 | | | | | |

※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를 조정(추가·삭제)할 수 있으나, 수령일은 반드시 표시하여야 함

※ 원칙적으로 가수금은 결산 시점에 해당 과목으로 대체하거나 정리하여야 함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8호서식]

# 지급 어음 명세서

(단위: 원)

| 거래은행 | 발행일 | 발행처 | 내용 | 어음번호 | 매수 | 금액 | | 만기일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를 조정(추가 · 삭제)할 수 있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9. 9. 17.>

# 어음 출납 명세서

| 거래은행 | 구입매수 | | | 발행매수 | | | | 폐기매수 | | 미사용매수 | | 비고 |
|---|---|---|---|---|---|---|---|---|---|---|---|---|
| | 구입일 | 번호 | 매수 | 상거래 | 차입용 | 담보 제공 등 | 매수 소계 | 번호 | 매수 | 번호 | 매수 | |
| | 전기이월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를 조정(추가·삭제)할 수 있음

※ 미사용어음 매수 = 전기이월어음 매수 + 당기구입어음 매수 - 당기발행어음 매수 - 당기폐기어음 매수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0호서식]

# 차관(외화 장기차입금) 명세서

(단위: 원)

| 허가근거 | 차입(차관)내용 | | 구 분 | 장부가액 | 평가액 | 평가차액 | 비 고 |
|---|---|---|---|---|---|---|---|
| | 구 분 | 내 용 | | | | | |
| | 승인일 | | 외 화 | | | | |
| | 도입 외화 | | | | | | |
| | 이자율 | | 환 율 | | | | |
| | 용 도 | | | | | | |
| | 상환기간 | | 원 화 | | | | |
| | 승인일 | | 외 화 | | | | |
| | 도입 외화 | | | | | | |
| | 이자율 | | 환 율 | | | | |
| | 용 도 | | | | | | |
| | 상환기간 | | 원 화 | | | | |
| | 승인일 | | 외 화 | | | | |
| | 도입 외화 | | | | | | |
| | 이자율 | | 환 율 | | | | |
| | 용 도 | | | | | | |
| | 상환기간 | | 원 화 | | | | |
| 합 계 | | | | | | | |

※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를 조정(추가ㆍ삭제)할 수 있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1호서식]

# 학교채 명세서

(단위: 명, 원)

| 학년도 | 구 분 | 기초잔액 | | 당기 증가 | | 당기 상환 | | 기말잔액 | | 비고 |
|---|---|---|---|---|---|---|---|---|---|---|
| | | 인원 | 금액 | 인원 | 금액 | 인원 | 금액 | 인원 | 금액 | |
| 학년도 | 학부모<br>동 문<br>교직원<br>기 타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학년도 | 학부모<br>동 문<br>교직원<br>기 타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학년도 | 학부모<br>동 문<br>교직원<br>기 타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를 조정(추가·삭제)할 수 있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2호서식]

# 적립금 명세서

(단위: 원)

| 계정과목 | | 기초금액 | 수입 | | | 지출 | | | 기말잔액 |
|---|---|---|---|---|---|---|---|---|---|
| 항 | 목 | | 적립 | 수입 | 대체 | 사용 | 전출 | 대체 | |
| 원금보존적립금 | 연구적립금 | | | | | | | | |
| | 건축적립금 | | | | | | | | |
| | 장학적립금 | | | | | | | | |
| | 퇴직적립금 | | | | | | | | |
| | 기타적립금 | | | | | | | | |
| 임의적립금 | 연구적립금 | | | | | | | | |
| | 건축적립금 | | | | | | | | |
| | 장학적립금 | | | | | | | | |
| | 퇴직적립금 | | | | | | | | |
| | 기타적립금 | | | | | | | | |

※ 작성 시 주의사항

1. 수입란의 "수입"은 원금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경우 수입이자에 대한 적수(積數)를 계산하여 적음
2. 지출란의 "사용"은 기금회계에서 구분하여 회계처리한 금액을 적음
3. 지출란의 "전출"은 등록금회계로 전출한 금액을 적음
4. 지출란의 "대체"는 임의적립금에서 원금보존적립금으로 대체한 금액을 적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3호서식]

# 전입금 명세서

(단위: 원)

| 계정과목 | 종 류 | 내용(또는 계산 근거) | 금 액 | 비 고 |
|---|---|---|---|---|
| | | | | |
| 합 계 | | | | |

※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를 조정(추가·삭제)할 수 있음

※ 기부금수입·전출금 등의 계정과목에도 응용할 수 있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

# 예비비 사용액 명세서

(단위: 원)

| 예비비 사용과목 | | | 내 용 | 예비비 사용 결 정 액 | 예비비 지출액 | 비 고 |
|---|---|---|---|---|---|---|
| 관 | 항 | 목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를 조정(추가·삭제)할 수 있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5호서식]

#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명세서

(단위: 원)

| 구 분 | 과 목 | 취 득 원 가 | 감가상각 | | | | 기말 미상각 잔액 | 비고 |
|---|---|---|---|---|---|---|---|---|
| | | | 기초감가 상각누계액 | 감가상각 대 상 액 | 감 가 상각액 | 감가상각 누 계 액 | | |
| 유 형 고 정 자 산 | 건 물 | | | | | | | |
| | 구축물 | | | | | | | |
| | 기계장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무 형 고 정 자 산 | 지적재산권 | | | | | | | |
| | 개발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합 계 | | | | | | | | |

※ 작성 시 주의사항

1. 기말 미상각 잔액은 취득원가에서 기말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금액으로 적음
2.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를 조정(추가 · 삭제)할 수 있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 2026. 8. 20.] [법률 제21351호, 2026. 2. 19., 일부개정]

교육부 (의대교육기반과) 044 - 203 - 6945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대학병원(서울대학교병원은 제외한다)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기관으로서 자율성을 바탕으로 「고등교육법」에 따른 의학 등에 관한 교육ㆍ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2. 19.>
[전문개정 2010. 3. 17.]

**제2조(법인격)** 국립대학병원(이하 “ 대학병원 ” 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3조(등기)** ① 대학병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4조(정관)** ① 대학병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의학 및 약학 등의 교육ㆍ연구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조직에 관한 사항
8.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12. 해산(解散)에 관한 사항

② 대학병원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6. 2. 19.>
[전문개정 2010. 3. 17.]

**제5조(설립)** ① 대학병원은 의학과(약학과 또는 제약학과가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 의학계 ” 라 한다)가 설치된 국립대학(이하 “ 관련대학 ” 이라 한다)별로 설립한다.

② 대학병원은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원(分院)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6조(대학병원의 명칭)** 대학병원의 명칭은 관련대학명에 “ 병원 ”을 붙여 사용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7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대학병원이 아닌 자는 제6조에 따른 대학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8조(사업)** 대학병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4. 1. 7., 2022. 9. 27.>
1. 의학계 학생의 임상교육(臨床敎育)
2. 전공의(專攻醫)의 수련과 의료 요원의 훈련
3. 의학계 관련 연구
3의2. 의학계와 이공계[이학(理學)ㆍ공학(工學)을 말한다] 등 다른 학문과 융합에 기반을 둔 응용학문(이하 “ 융합의학 ”이라 한다)의 교육 및 연구
4. 임상연구
5. 진료사업
6.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사업
7. 그 밖에 국민보건 향상에 필요한 사업
[전문개정 2010. 3. 17.]

**제9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책무)** ① 대학병원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대학병원은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 7.]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14. 1. 7.>]

**제9조의2(융합의학 전문인력의 양성)** ① 정부는 융합의학 전문인력의 양성을 지원 및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
② 대학병원은 융합의학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9. 27.]

**제10조(임원)** ① 대학병원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이사 11명과 감사 1명을 둔다. <개정 2014. 1. 7.>
② 이사장은 관련대학의 총장이 되며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 당연직 이사 ”라 한다)과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중에는 병원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 7., 2025. 10. 1., 2026. 2. 19.>

1. 해당 대학병원의 장
2. 관련대학의 의과대학장
3. 관련대학의 치과병원장(해당 학교에 치과병원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이 해당 부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5. 해당 대학병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

③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개정 2013. 3. 23., 2026. 2. 19.>

④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감사 또는 대학병원장이 될 수 없다.

⑤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감사 또는 대학병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퇴직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4. 1. 7.>]

**제11조(임원의 임기)**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14. 1. 7.>]

**제12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의 대행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안을 심의한다.

④ 감사는 대학병원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監査)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14. 1. 7.>]

**제13조(이사회)** ① 대학병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4. 1. 7.>

1. 조직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3.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5.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및 시행결과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14. 1. 7.>]

**제14조(대학병원장)** ① 대학병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대학병원을 대표하며, 대학병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개정 2013. 3. 23., 2026. 2. 19.>
④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의 대행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2. 회계부정(會計不正)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대학병원의 운영에 지장을 준 경우
3. 심신 장애로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⑦ 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장을 해임하려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정수(定數)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해임을 건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14. 1. 7.>]

**제15조(직원 등의 임면)** 대학병원에는 의료 요원과 직원을 두되, 그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14. 1. 7.>]

**제16조(임상교수요원)** ① 대학병원에 제8조 각 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임상교수요원(臨床敎授要員)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상교수요원의 직명(職名) 및 자격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16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임상교수요원을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의 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대학병원에서 임상교수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관련대학의 교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4. 1. 7.>
④ 임상교수요원의 임용기간, 임용절차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14. 1. 7.>]

**제17조(겸직)** ① 대학병원이 제8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대학병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다. <개정 2014. 1. 7.>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의 겸직은 원장의 요청에 따라 관련대학 총장이 허가한다.<개정 2014. 1. 7.>

③ 제1항에 따라 대학병원의 직무를 겸하는 관련대학의 교육공무원의 직무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4. 1. 7.>

[전문개정 2010. 3. 17.]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14. 1. 7.>]

**제18조(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① 정부는 대학병원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학병원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讓與)ㆍ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의 내용, 조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14. 1. 7.>]

**제19조(출연 또는 보조)** ① 정부는 대학병원의 기본 시설ㆍ설비 등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출연금(出捐金)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대학병원의 의학계 교육 및 연구에 드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부가 보조한다.

③ 대학병원의 운영비 및 시설ㆍ설비에 드는 경비와 차관(借款)의 원리금 상환 경비는 대학병원의 수익으로 충당한다. 다만, 부족한 경우에는 정부가 보조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는 대학병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병원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14. 1. 7.>]

**제20조(회계연도)** 대학병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14. 1. 7.>]

**제2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26. 2. 19.>

[전문개정 2010. 3. 17.]

[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 <2014. 1. 7.>]

**제22조(결산서의 제출 등)** ① 원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6. 2. 19.>

② 제1항의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2. 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3.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전문개정 2010. 3. 17.]

[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제23조로 이동 <2014. 1. 7.>]

**제23조(감독)**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학병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업무ㆍ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6. 2. 19.>

[전문개정 2010. 3. 17.]

[제22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제24조로 이동 <2014. 1. 7.>]

**제24조(「민법」의 준용)** 대학병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23조에서 이동, 종전 제24조는 제25조로 이동 <2014. 1. 7.>]

**제25조(과태료)** ① 제7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 12. 18.>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 3. 23., 2026. 2. 19.>

[전문개정 2010. 3. 17.]

[제24조에서 이동 <2014. 1. 7.>]

**부칙** <제4350호,1991. 3. 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립대학교부속병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립대학교부속병원(이하 "부속병원"이라 한다) 은 이 법에 의한 대학병원으로 설립한다. 다만, 그 설립시기는 당해 부속병원의 재산ㆍ시설ㆍ설비 및 재정상태 등을 참작하여 교육부장관이 순차적으로 정한다.

**제3조** (설립준비) ①대학병원을 설립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은 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고 그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대학병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대학병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대학병원의 원장이 임명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무를 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설립비용) 대학병원의 설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대학병원이 이를 부담한다.

**제5조** (국유재산의 대부 등) 부속병원을 이 법에 의한 대학병원으로 설립하는 경우에 국립대학교부속병원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중 종전의 당해 부속병원소관 국유재산은 일반회계가 이를 무상으로 승계하며, 그 승계한 국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중 당해 대학병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이를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권리·의무의 승계) 부속병원을 이 법에 의한 대학병원으로 설립하는 경우에 종전의 부속병원의 권리·의무는 당해 대학병원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제7조** (전입금 등의 교부) 부속병원이 이 법에 의한 대학병원으로 설립된 당시 특별회계에 전입할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예산중 당해 부속병원소관의 전입금이 있거나 대학병원 설립연도의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 대학병원에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 (설립당시의 예산) ①부속병원이 이 법에 의한 대학병원으로 설립된 경우에 당해 대학병원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종전의 부속병원소관 예산을 종전의 예에 따라 지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된 경비는 대학병원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9조** (설립당시의 원장임명) 대학병원의 설립당시의 원장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련대학교 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제10조** (설립당시의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이사임명) 대학병원의 설립당시의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이사는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제11조** (설립당시의 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대학병원 설립 당시 종전의 부속병원에 재직중인 직원은 이 법에 의한 대학병원에 재직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자는 계속 교육부소속 공무원의 직을 가지며 그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병원에 재직하게 된 직원의 정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대학병원에서의 정년이 종전의 정년보다 장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5454호,1997. 12. 13.>(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5982호,1999. 5. 24.>(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2) 생략

2!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 재정경제원장관 " 을 " 기획예산처장관 " 으로 한다.

2@ 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제6101호,1999. 12. 31.>(기금관리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0호를 삭제한다.

제18조의 제목 " (기금 및 출연금등) " 을 " (출연금등) " 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삭제하며, 동조제2항중 "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조성과 " 를 " 정부는 " 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설치ㆍ운용과 " 를 "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 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 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조성과 " 를 " 단체는 " 으로 한다.

⑧내지2@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6400호,2001. 1. 29.>(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3조제3항, 제20조 전단, 제21조 및 제22조중 " 교육부장관 " 을 각각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 으로 한다.

⑪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6711호,2002. 8. 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감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감사의 임기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 또는 국립대학교병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거나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국립대학병원설치법 또는 국립대학병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796호,2005. 12. 29.>(국가공무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국립대학병원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 그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 을 " 그 부처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으로 한다.

⑮내지 <68>생략

**부칙** <제7888호,2006. 3. 24.>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37호,2007. 10. 17.>(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의학 및 치의학 " 을 " 의학 " 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5호 중 " 의학, 치의학 및 약학 " 을 " 의학 및 약학 " 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 치의학과, 약학과 또는 제약학과 " 를 " 약학과 또는 제약학과 " 로 한다.

제6조 중 " " 병원 " 또는 " 치과병원 " " 을 " " 병원 " " 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 의과대학장 및 치과대학장(치과대학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을 " 의과대학장 및 관련대학의 치과병원장(해당 학교에 치과병원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으로 한다.

② 생략

**제15조** 및 제16조 생략

**부칙** <제8852호,2008. 2. 29.>(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1> 까지 생략

<72>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 을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 기획예산처장관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 " 을 " 기획재정부장관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으로,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 을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 을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제20조 전단, 제22조 중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 을 각각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 을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으로 한다.

<7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071호,2010. 3. 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1690호,2013. 3. 23.>(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3! 까지 생략

3@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13조제3항, 제20조 전단, 제21조제1항, 제22조 및 제24조제2항 중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을 각각 " 교육부장관 " 으로 한다.

3# 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177호,2014. 1. 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51호,2018. 12. 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979호,2022. 9. 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065호,2025. 10. 1.>(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

<61>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4호 중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62>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351호,2026. 2.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행한 행위 및 교육부장관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행위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시행 2026. 8. 20.] [대통령령 제36582호, 2026. 8. 18., 일부개정]

교육부 (의대교육기반과) 044 - 203 - 6945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1. 28.]

**제2조(설립등기 등)** ① 국립대학병원(서울대학교병원은 제외하며, 이하 “ 대학병원 ” 이라 한다)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이하 “ 법 ” 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정관을 인가받은 날부터 3주일 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대학병원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대표권에 관한 사항
6. 공고의 방법
③ 대학병원은 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3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1. 28.]

**제3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대학병원의 정관
2. 제2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전문개정 2013. 1. 28.]

**제3조의2(외부인사의 자격)** 법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병원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의 종합병원을 3년 이상 경영한 경력이 있거나 종합병원에서 진료 또는 행정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 8. 9.]

**제4조(대학병원장의 추천)**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학병원장(이하 “ 원장 ” 이라 한다)으로 추천해야 한다. <개정 2019. 5. 7., 2022.

8. 9.>

1.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을 포함한다)의 교원으로서 1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2.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으로서 10년 이상의 의료경력이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원장으로 추천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에 제출해야 하며, 이사장은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 8. 9., 2026. 8. 18.>

1. 병원경영계획서 및 연도별 경영실천계획서
2. 병원공공성강화계획서 및 연도별 공공성강화실천계획서(계획서별로 법 제8조제6호의 공공보건의료사업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

③ 삭제<2022. 8. 9.>

[전문개정 2013. 1. 28.]

[제목개정 2022. 8. 9.]

**제5조(하부조직)** ① 대학병원에는 원장 밑에 진료부문ㆍ공공부문ㆍ사무국ㆍ간호부ㆍ약제부ㆍ기획조정실 및 교육연구실을 두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8. 9.>

② 진료부문 및 공공부문에 각각 부원장 1명을, 사무국에 국장 1명을, 간호부 및 약제부에 각각 부장 1명을, 기획조정실 및 교육연구실에 각각 실장 1명을 두되, 대학병원의 실정에 따라 겸임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 8. 9.>

③ 제1항에 따른 공공부문은 법 제8조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총괄ㆍ조정 업무를 담당한다.<개정 2022. 8. 9.>

④ 제1항에 따른 부문ㆍ국ㆍ부 및 실의 업무분장과 그 밖의 하부조직의 구성 및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신설 2022. 8. 9., 2026. 8. 18.>

[전문개정 2013. 1. 28.]

**제6조(겸직교원의 직무와 보수)**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대학병원의 직무를 겸하는 교육공무원(이하 "겸직교원"이라 한다)은 대학병원의 정관 및 각종 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병원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19. 5. 7.>

② 대학병원을 설립한 국립대학(이하 "관련대학"이라 한다)의 총장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조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2항에 따른 직위에 보직된 겸직교원의 교수시간을 감축할 수 있다.

③ 겸직교원의 보수는 겸직교원의 원소속 기관에서 지급한다.

④ 대학병원은 겸직교원에게 정관 및 각종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1. 28.]

**제7조(겸직해제 등)** 원장은 겸직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련대학 총장에게 겸직해제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6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13. 1. 28.]

**제8조(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① 법 제18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 양여ㆍ대부 또는 사용ㆍ수익의 내용, 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해당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ㆍ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하려는 대학병원 간의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9. 5. 7.>
② 대학병원이 제1항에 따라 대부받았거나 사용ㆍ수익하는 재산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1. 28.]

**제9조** 삭제 <2002. 12. 11.>

**제10조** 삭제 <2002. 12. 11.>

**제11조(출연금의 요구 및 지급 신청)** ① 원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으려면 매년 4월 30일까지 출연금 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9. 5. 7., 2019. 7. 2., 2026. 8. 18.>
1. 사업계획서
2. 추정 재무상태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출연금 요구서의 내용을 분명히 밝히는 데 필요한 서류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출연금 예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이를 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6. 8. 18.>
③ 원장은 출연금을 받으려면 출연금 지급신청서에 해당 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6. 8. 18.>
[전문개정 2013. 1. 28.]
[제목개정 2026. 8. 18.]

**제12조(보조금의 요구 및 지급 신청)** ① 원장은 법 제19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면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학계 교육 및 연구를 위한 보조금, 시설ㆍ설비의 운영을 위한 보조금 및 차관원리금 상환을 위한 보조금으로 구분한 보조금 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9. 5. 7., 2026. 8. 18.>
1. 의학계교육계획서 및 임상연구계획서(의학계 교육 및 연구를 위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시설ㆍ설비의 운영계획서(시설ㆍ설비의 운영을 위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차관원리금 상환계획서(차관원리금 상환을 위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추정 손익계산서

5. 그 밖에 보조금 요구서의 내용을 분명히 밝히는 데 필요한 서류

② 보조금 예산의 확정통보와 보조금의 지급신청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 1. 28.]

[제목개정 2026. 8. 18.]

**제13조(잉여금의 처리)** 대학병원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월손실금을 보전(補塡)하는 데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1. 28.]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원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사업별 예상 수입ㆍ지출금액이 드러나도록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해 회계연도 개시 20일 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9. 5. 7., 2026. 8. 18.>

[전문개정 2013. 1. 28.]

**제15조(결산서의 첨부서류)** 법 제22조제2항제3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9. 5. 7.]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18. 4. 24.]

**부칙** <제13625호,1992. 3. 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유재산의 대부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회계가 무상으로 승계한 국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중 대학병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국유재산은 이 영에 의하여 당해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각각 당해 대학병원에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 허가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752호,1995. 8. 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50호,1999. 4. 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15호,2001. 1. 29.>(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2! 생략

2@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전단, 제11조제1항 본문ㆍ제2항ㆍ제3항 및 제12조제1항 본문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 내지 <152>생략

**부칙** <제17797호,2002. 12. 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740호,2008. 2. 29.>(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 국립대학병원설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 <제20768호,2008. 4. 16.>(국립대학치과병원설치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립대학병원설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을 "의과대학"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5조제1항 중 "진료처ㆍ치과진료처(치과대학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진료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진료처 및 치과진료처에 처장 각 1인을"을 "진료처에 처장 1인을"로 한다.

②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4335호,2013. 1.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423호,2013. 3. 2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2% 까지 생략

2^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 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 <제28811호,2018. 4. 24.>(과태료 규정 정비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727호,2019. 5.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950호,2019. 7. 2.>(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2858호,2022. 8.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582호,2026. 8.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이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국립대학병원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교육부장관의 소관 사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승계한다.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별표] <개정 2019. 5. 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
| |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이상 위반 |
| 법 제7조를 위반하여 국립대학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 법 제25조제1항 | 200만원 | 350만원 | 500만원 |

# 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시행 2019. 9. 17.] [교육부령 제188호, 2019. 9. 17., 타법개정]

교육부 (예산담당관) 044 - 203 - 6166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6항 및 제19조의8제6항과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5항 및 제30조의3제6항에 따라 국립 유치원의 유치원회계와 국립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교회계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2. 26.>

**제2조(회계운영의 기본원칙)**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1항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국립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설치하는 회계(이하 "학교회계"라 한다)는 학교의 설립목적과 교육과정에 따라 건전하게 관리ㆍ운영되어야 한다. <개정 2012. 12. 26.>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①학교회계의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②학교회계의 수입 및 지출은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회계연도를 구분한다.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소속 회계연도를 구분한다.

**제4조(출납폐쇄기한)** 학교회계의 출납은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이 되는 날에 폐쇄한다.

**제5조(회계의 방법)** 학교회계는 복식부기 방식으로 처리한다.

[전문개정 2016. 3. 8.]

**제6조(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학교의 장은 학교회계의 모든 수입을 제5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융회사 등이나 체신관서에 예치하여야 하며, 이 규칙 또는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1. 1. 13.>

**제7조(통합ㆍ운영국립학교의 회계)** 법 제30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56조에 따른 통합ㆍ운영국립학교에는 하나의 학교회계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삭제 <2012. 12. 26.>

## 제2장 예산

**제9조(예산총계주의)** 학교회계의 세입과 세출은 모두 「유아교육법」 제19조의8제2항에 따른 유치원회계세입세출예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른 학교회계 세입세출예산(이하 "예산"이라 한다)에 각각 편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2. 26.]

**제10조(예산편성매뉴얼)** 교육부장관은 매년 예산편성매뉴얼을 작성하여 소속 학교의 장에게 알릴 수 있다. 다만, 예산편성매뉴얼을 알린 후 학교회계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교육시책이 수립되거나 수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예산편성매뉴얼을 변경하여 다시 알릴 수 있다. <개정 2008. 3. 4., 2013. 3. 23., 2016. 3. 8.>

**제11조(전입금의 교부계획통보)** ①교육부장관은 학교회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2항제1호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전입금의 총 규모 및 분기별 자금교부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4., 2012. 12. 26., 2013. 3. 23.>
②교육부장관은 예산의 증감 등으로 인하여 전입금의 총 규모 및 분기별 자금교부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을 학교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4., 2013. 3. 23.>

**제12조(예산안의 편성)** ①학교의 장은 제10조에 따른 예산편성매뉴얼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예산안의 편성에 있어서 교직원은 학교운영 및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기재한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학교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학교의 장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8제2항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라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한 예산안을 제11조제2항에 따른 전입금의 변경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정하려는 경우에는 수정예산안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2. 12. 26.>

**제13조(예산의 내용 및 구분)** ①예산은 예산총칙, 세입ㆍ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를 총칭한다.
②예산총칙에는 세입ㆍ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기타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③세입ㆍ세출예산 중 세입예산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ㆍ관ㆍ항ㆍ목으로 구분하고, 세출예산은 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정책사업ㆍ단위사업ㆍ세부사업ㆍ목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1. 1. 13.>

④ 제3항에 따른 세입예산의 장ㆍ관ㆍ항ㆍ목과 세출예산의 정책사업ㆍ단위사업의 구분과 설정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고 세출예산의 세부사업ㆍ목의 구분과 설정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사업ㆍ단위사업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한다.<개정 2011. 1. 13., 2013. 3. 23.>

**제14조(예산안심의)** ①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8제2항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된 예산안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학교운영위원회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6.>

②학교의 장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8제3항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가 예산안을 심의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예산안에 관한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26.>

③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설립목적과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예산안을 성실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④학교운영위원회는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의결에 의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⑤학교운영위원회는 예산안을 심의하는 경우에 학생(유치원생을 포함한다)의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관련 교직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12. 12. 26.>

⑥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장의 동의 없이 세출예산 각목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제15조(추가경정예산)** ①학교의 장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편성 및 예산심의절차 등에 있어서 제12조에서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2항제2호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경비(이하 "수익자부담경비"라 한다)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같은 회계연도 내의 다음 번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26.>

**제16조(예비비의 사용제한 및 관리)** ①「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4항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4항에 따른 예비비는 업무추진비에 지출할 수 없다. <개정 2011. 1. 13., 2012. 12. 26.>

②학교의 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정책사업ㆍ단위사업ㆍ세부사업ㆍ목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비비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1. 1. 13.>

**제1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예산의 이용)** 학교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사이에 상호 이용(移用)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상 필요에 따라 미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

다. <개정 2011. 1. 13.>

**제18조(예산의 전용)** ①학교의 장은 인건비ㆍ시설비를 제외한 예산의 동일한 정책사업 안에서 각 단위사업ㆍ세부사업ㆍ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다만, 회계연도 경과 후 또는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1. 1. 13.>
②제17조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이용 또는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제21조에 따른 세입ㆍ세출결산서에 이를 명시하고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9조(계속비)** ①학교의 장은 공사나 제조 기타의 사업을 완성하는데 수년도가 소요되는 경우에는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미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속비로서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계속비로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해당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해당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ㆍ세출예산에 명시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비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세출예산 중 해당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부대경비를 포함한다)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계속비의 연도별 소요경비의 금액 중 해당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해당계속비의 사업완성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3장 결산

**제21조(결산심의)** ①학교의 장이 「유아교육법」 제19조의8제5항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3제5항에 따라 세입ㆍ세출결산서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6.>
1. 제16조에 따른 예비비사용 내역
2.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세출예산의 이용 및 전용 내역
3. 제19조에 따른 계속비 내역
4. 제20조에 따른 이월경비 내역
5. 기타 결산심의에 필요한 자료

②학교운영위원회는 결산심의결과를 회계연도 종료 후 4월 안에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학교운영위원회의 결산심의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한다.

④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서류 서식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 제4호의 서류 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 내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22조(수익자부담경비의 관리)** ①학교의 장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대하여 각 사업별로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하고 해당 사업이 끝난 후 10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13.>
②학교의 장은 수익자부담사업의 사업별 예산ㆍ결산내역을 해당 사업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1. 1. 13.>
③제2항에 따른 예산ㆍ결산내역의 공개항목, 방법 및 기간 등에 대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정한다.<개정 2012. 12. 26.>

**제23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서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한다.

## 제4장 수입

**제24조(세입의 징수와 수납)** 학교회계의 세입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 또는 수납하여야 한다.

**제25조(전입금의 교부)** 교육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분기별 자금교부계획에 따라 전입금을 분기별로 학교회계에 전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4., 2011. 1. 13., 2013. 3. 23.>

**제26조(사용료 및 수수료)** ①「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2항제4호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수입을 말한다. <개정 2011. 1. 13., 2012. 12. 26.>
1. 「국유재산법」 제32조에 따른 학교시설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수입
2. 「물품관리법」 제41조에 따라 물품의 대부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

②「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2항제4호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수수료는 「국립학교 각종 증명 수수료 규칙」에 따른 학교의 수수료를 말한다.<개정 2012. 12. 26., 2014. 2. 24.>

**제27조(그 밖의 수입 등)** ①「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2항제6호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2항제7호에 따른 물품매각대금은 「물품관리법」 제36조에 따라 불용결정을 한 물품의 매각대금, 실습물 매각대금 등을 말한다. <개정 2012. 12. 26.>
②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2항제7호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2항제8호에 따른 그 밖의 수입은 예금이자와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학교 자체수입으로 정하는 수입을 말한다.<개정 2012. 12. 26., 2013. 3. 23.>
[제목개정 2012. 12. 26.]

**제28조(징수기관과 징수결정ㆍ고지 등)** ①학교의 장은 학교회계의 세입을 징수결정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세입에 대하여 법령의 위배 또는 소속 회계연도와 세입과목에 착오가 없는지를 조사한 후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수결정을 한 후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납입고지서로서 납입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납부금의 목적, 납부 장소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술ㆍ공고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납입의 고지를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징수결정된 세입의 납입기한은 법령 등에서 납기가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입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징수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징수부 및 별지 제8호서식의 징수결의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26.>

**제29조(수납기관과 수납의 방법)** ①학교의 모든 세입의 수납은 금융회사 등이나 체신관서에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회계출납원(이하 "출납원"이라 한다)이 담당한다. <개정 2011. 1. 13.>
②출납원은 수납한 수납금을 수납일 다음 날까지 제5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융회사 등이나 체신관서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소재지에 제5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융회사 등이나 체신관서가 없는 경우에는 수납일부터 5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11. 1. 13.>

**제30조(과오납금의 처리)** ①학교의 장은 징수결정 및 수납의 착오ㆍ중복, 납입후의 납입금 감면 또는 법령의 개정 등의 사유로 징수 또는 수납하여야 하는 금액을 초과한 납입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과오납금 반환금으로 결정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해당연도의 출납폐쇄기한까지의 수입에 대하여는 과오납된 연도의 세입에서 반환
2.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수입에 대하여는 반환하는 연도의 세입에서 반환
②학교의 장은 출납원이 수납금을 제5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융회사 등이나 체신관서에 납입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과오납금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수납금 중에서 과오납금을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11. 1. 13.>

**제31조(미수납액의 처리)** ①학교의 장은 해당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해당연도 출납폐쇄기한까지 수납하지 못한 미수납액은 다음 회계연도 세입의 징수결정액으로 이월한다.
②학교의 장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채무가 면제되거나 시효의 완성 기타의 사유로 징수결정된 금액을 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납결손처분을 한다.

## 제5장 지출

**제32조(지출원인행위)** ①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의 행위(이하 "지출원인행위"라 한다)는 학교의 장이 행한다.

②학교의 장은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학교의 자금수급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3조(지출의 원칙)** ①출납원은 학교의 장으로부터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를 송부 받거나 채권자로부터 지급의 청구가 있는 때는 지출원인행위 또는 청구가 정당한지를 조사한 후 지출하여야 한다.

②출납원은 「민법」에 따라 학교의 채무와 학교 외의 자의 학교에 대한 채무를 상계(相計)한 때에는 학교가 지출할 금액에서 상계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지출하여야 한다.

③출납원은 과오지급된 지출금을 반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초 지출된 해당세출과목에 이를 반납할 수 있다. 다만, 출납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나 출납폐쇄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그렇지 않다.

**제34조(지급의 방법)** 출납원의 지급행위는 금융회사 등의 예금계좌 또는 체신관서의 우편대체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이나 전산망을 통한 자금 이체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지급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와 제37조에 따른 개산급의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 13.>

**제35조(증빙서류)** ①학교의 장 및 출납원이 세출예산을 집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계좌입금에 관한 증빙서류 등 채권자의 영수증서(경비의 성질상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1차 수령인의 영수증서)
2. 별지 제9호서식의 지출결의서
3. 계약에 관한 증빙서류

②학교의 장 및 출납원은 제1항의 증빙서류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분하여 편철하고, 표지에는 총 건수, 총 매수 및 총 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1호의 영수증서의 도장날인은 지출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36조(선금급)**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선금급으로 할 수 있다.

1. 운임 및 사례금
2. 관보 및 정기간행물의 대가
3. 기타 미리 지급하지 않으면 학교운영 또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

**제37조(개산급)** ①다음 각 호의 경비는 개산급(槪算給)으로 할 수 있다.

1. 여비 및 업무추진비(직책급업무추진비에 한한다)
2. 수학여행비ㆍ수련활동비 등 성질상 개산하여 지급하지 않으면 학교운영 또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

②개산급을 받은 자는 그 경비를 지출한 후 5일 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빙서와 함께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는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 제6장 계약 등

**제38조(계약의 원칙)**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39조(계약의 방법)** 학교의 장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제40조(수의계약 대상 등)** ① 제39조의 단서에 따라 학교의 장이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로 한다. <개정 2016. 3. 8.>

②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명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명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16. 3. 8.>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의 경우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 다만,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3. 제3항 본문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명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③학교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지 아니하고 견적서를 제출받을 수 있다.<개정 2016. 3. 8.>

1. 학교 급식 재료 구입 등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
2.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학술연구용역의 경우
3. 그 밖에 계약의 목적이나 성질상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실상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4. 삭제<2016. 3. 8.>

5. 삭제<2016. 3. 8.>
6. 삭제<2016. 3. 8.>
7. 삭제<2016. 3. 8.>
8. 삭제<2016. 3. 8.>

**제41조(직접구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체결시 견적서를 생략하고 직접구매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3. 4., 2013. 3. 23.>
1. 추정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경우
2. 품질 및 신선도가 고려되어야 하는 농축수산물 및 제조가공식품을 구매하는 경우
3. 기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제42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수의 공급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학교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ㆍ협상의 기준과 절차 등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43조(다른 법령의 준용)** 학교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44조(구매내역 공개)** 학교의 장은 제4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41조에 따라 구매한 물품 중 단가가 50만원 이상이거나 구매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학교홈페이지에 구매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장 회계관계직원

**제45조(회계관계직원의 정의)**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직원"이란 학교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 12. 26.>
1. 학교의 장 및 출납원
2. 제1호에 규정된 자가 집행하는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

**제46조(출납원)** ①출납원은 「유아교육법」 제20조제2항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행정직원 (이하 이 조에서 "행정직원"이라 한다)으로서 행정직렬에 속하는 사람 중 최상급자로 하되, 해당 학교에 행정직렬에 속하는 행정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1. 1. 13., 2012. 12. 26.>
②출납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ㆍ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1. 1. 13.>

**제47조(임시출납원의 임명)** 학교의 장은 출납원이 장기휴가나 장기출장 등으로 장기간 회계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수학여행ㆍ현장학습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출납원의 사무를 대리하여 처리하는 임시출납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제48조(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①회계관계직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책임을 진다.
②출납원은 그 보관에 속하는 현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다는 증명을 하지 못한 때에는 변상책임을 진다.<개정 2019. 9. 17.>

**제49조(회계관계직원의 재정보증)** ①회계관계직원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개정 2016. 3. 8.>
②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의 한도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로 한다.<개정 2016. 3. 8.>

## 제8장 세입세출외 현금 및 장부ㆍ서식 등

**제50조(세입세출외 현금의 관리)** ①세입세출외현금은 다음 구분에 따라 정리하여 출납원이 관리한다.
1. 보증금
2. 보관금
3. 기타 잡종금
②세입세출외 현금의 이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회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51조(금융회사 등의 이용)** ①학교의 장은 금융회사 등이나 체신관서를 지정하여 출납원 명의로 거래계좌를 개설하고 학교회계의 소관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과 그 밖의 업무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13.>
②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자수입의 증대를 위하여 학교회계의 여유자금을 금융회사 등이나 체신관서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별도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11. 1. 13.>
[제목개정 2011. 1. 13.]

**제52조(재산 및 물품의 귀속 및 관리)** 학교회계에서 취득한 재산 및 물품은 국가에 귀속하고, 학교의 장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53조(장부의 비치와 관리)** 회계관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학교의 장 : 별지 제7호서식의 징수부
2. 출납원 : 별지 제10호서식의 현금출납부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지출부

**제54조(장부 등의 보존기간)** 학교의 장은 제53조의 장부와 관련 증명서류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13.>

**제55조(기타 서식)** 학교의 장은 이 규칙에서 정한 서식 외에 학교회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서식을 정할 수 있다.

**제56조(전자문서의 보존ㆍ관리)** ①학교회계의 장부 및 서식 등은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전자문서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전산프로그램으로부터 출력한 자료는 학교의 장의 확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하며, 동 자료가 입력된 자기테이프 또는 자기디스크 등의 전산보조기억매체는 관련 장부 및 서식의 보존기한까지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전자문서를 보존ㆍ관리함에 있어서 멸실ㆍ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57조(직인의 비치 및 등록)** ①회계관계직원은 회계사무를 처리할 때 사용하는 직인(이하 "직인"이라 한다)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직인은 해당학교에 등록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못한다.

③회계관계직원 중 학교의 장의 직인은 「국립 및 공립 각급학교 관인 규칙」에 의하고, 출납원의 직인의 자체ㆍ규격 및 인영(印影: 도장에 새겨지는 모양) 내용은 별표에 의한다.<개정 2019. 9. 17.>

**제58조(예산ㆍ결산의 공개 및 자료의 제출)** ①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세입ㆍ세출예산서 및 결산서를 학부모 및 교직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교육부장관은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예산과 결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8. 3. 4., 2013. 3. 23.>

**부칙** <제898호,2006. 12. 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병설유치원에 대한 적용례) 제8조의 규정은 2007학년도부터 적용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및공립초ㆍ중등학교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립및공립초ㆍ중등학교회계규칙"을 "공립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중 "국ㆍ공립"을 각각 "공립"으로 한다.

제9조중 "학교의 경우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를 삭제한다.

제25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31조제3항중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삭제한다.

**부칙** <제1호,2008. 3. 4.>(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국립 초ㆍ중등학교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본문,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4항, 제27조제2항, 제40조제1항제5호, 제41조제3호 및 제58조제2항 중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을 각각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으로 한다.

제25조 중 " 교육인적자원부 "를 " 교육과학기술부 "로 한다.

⑮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 <제90호,2011. 1.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에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예산편성매뉴얼의 시달 등)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학교의 장이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일에 시작되는 회계연도의 예산편성매뉴얼을 시달하거나 예산안을 편성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야 한다.

**부칙** <제168호,2012. 12. 26.>

이 규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2013. 3. 2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1* 까지 생략

1( 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본문,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4항, 제25조, 제27조제2항, 제40조제1항제5호, 제41조제3호 및 제58조제2항 중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을 각각 " 교육부장관 "으로 한다.

2) 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제25호,2014. 2. 24.>(국립학교 각종 증명 수수료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국립학교 각종 증명 수수료 징수규칙」”을 “「국립학교 각종 증명 수수료 규칙」”으로 한다.

**부칙** <제25호,2016. 3. 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의계약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학교의 장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처음으로 견적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1명의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학교의 장이 처음으로 견적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8호,2019. 9. 17.>(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국립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회계규칙 [별표] <개정 2012.12.26>

## 출납원의 직인의 인영내용 · 규격 및 자체(제57조제3항관련)

| | |
|---|---|
| 인영내용 | ○○학교(유치원)회계출납원 |
| 규 격 | 1.8센티미터의 정사각형 |
| 자 체 | 한글 전서체(篆書體) |

■ 국립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회계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1.1.13>

# 예비비사용명세서

(단위 : 원)

| 과 목 | | | | | 총 사업비 (예산현액) | 예비비 지 출 결정액 | 예비비 사용액 | 예비비 사 용 잔 액 | 지출 결정일 | 예비비 사용 명세 | 비 고 |
|---|---|---|---|---|---|---|---|---|---|---|---|
| 정책 | 단위 | 세부 | 항목 | 원가목 | | | | | | | |
| | | | | | | | | | | | |

210㎜×297㎜[보존용지(1종) 70g/㎡]

■ 국립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회계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1.1.13>

# 세출예산 이용(전용) 명세서

(단위 : 천원)

| 과목 | | | | | 이(전)용액 | | 이(전)용 사유 |
|---|---|---|---|---|---|---|---|
| 정책 | 단위 | 세부 | 항목 | 원가목 | 증 | 감 | |
| | | | | | | | |

210㎜×297㎜[보존용지(1종) 70g/㎡]

■ 국립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회계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1.1.13>

# 계속비 조서

(단위 : 천원)

| 사업명 | 구분 | 총액 | 전전회계연도 이전 | | | 전회계연도 | | | 해당 회계연도 | ○○ 회계연도 | ○○ 회계연도 |
|---|---|---|---|---|---|---|---|---|---|---|---|
| | | | 예산액 | 집행액 | 집행잔액 | 예산액 | 집행액 | 집행잔액 | 계획액 | 계획액 | 계획액 |
| | 당초 | | | | | | | | | | |
| | 수정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당초 | | | | | | | | | | |
| | 수정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당초 | | | | | | | | | | |
| | 수정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당초 | | | | | | | | | | |
| | 수정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당초 | | | | | | | | | | |
| | 수정 | | | | | | | | | | |
| | 계 | | | | | | | | | | |

비고: 전회계연도란까지는 예산액 · 집행액 · 집행잔액을 적고 해당 회계연도란부터는 계획액만 기입함

210㎜×297㎜[보존용지(1종) 70g/㎡]

■ 국립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회계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1.1.13>

# 명시이월비 명세서

(단위 : 천원)

| 과목 | | | | | 예산현액① | 지출액② | 지출잔액③ | 이월액④ | 불용액 ①-②-④ | 사유 |
|---|---|---|---|---|---|---|---|---|---|---|
| 정책 | 단위 | 세부 | 항목 | 원가목 | | | | | | |
| | | | | | | | | | | |

210㎜×297㎜[보존용지(1종) 70g/㎡]

■ 국립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회계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1.1.13>

# 사고이월비 명세서

(단위 : 천원)

| 과목 | | | | | 예산 현액 ① | 지출원인 행 위 액 ② | 지출액 ③ | 지출잔액 (④=②-③) | 이월액 ⑤ | 불용액 ①-③-⑤ | 사유 |
|---|---|---|---|---|---|---|---|---|---|---|---|
| 정책 | 단위 | 세부 | 항목 | 원가목 | | | | | | | |
| | | | | | | | | | | | |

210㎜×297㎜[보존용지(1종) 70g/㎡]

■ 국립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회계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1.1.13>

# 계속이월비 명세서

(단위 : 천원)

| 과목 | | | | | 사업기간 | 총사업비 | 예산 현액 ① | 지출액 ② | 이월액 ③ | 불용액 ①-②-③ | 사유 |
|---|---|---|---|---|---|---|---|---|---|---|---|
| 정책 | 단위 | 세부 | 항목 | 원가목 | | | | | | | |
| | | | | | | | | | | | |

210㎜×297㎜[보존용지(1종) 70g/㎡]

■ 국립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회계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1.1.13>

# 징 수 부

장 관 항 목

| 년 월 일 | | 적 요 | 예산액 | 징 수 결정액 ① | 수납액 ② | 불 납 결손액 ③ | 미수납액 ①-②-③ |
|---|---|---|---|---|---|---|---|
| | | | | | | | |

210㎜×297㎜[보존용지(1종) 70g/㎡]

■ 국립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회계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2.12.26>

# 징 수 결 의 서

회계연도　　학교(유치원)회계　　증 제　　호

| | | | | |
|---|---|---|---|---|
| 발 의 | | | 장 | |
| 고지서 발행 | | | 관 | |
| 납입기한 | | | 항 | |
| 징수부 등기 | | | 목 | |
| 고지서 번호 | | | | |
| | | | | |
| | 일금 | | 원정 | |
| | | | ₩ | |
| 납부자 주소<br>성명(상호) | | | | |

| | |
|---|---|
| 적 요<br>(산출근거) | |

| 결 재 | | | 협 조 | | | 참 조 | | | |
|---|---|---|---|---|---|---|---|---|---|
| 직위 | 이름 | 승인일 | 직위 | 이름 | 승인일 | 직위 | 이름 | 직위 | 이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보존용지(1종) 70g/㎡]

■ 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6.3.8.>

# 지 출 결 의 서

(총4쪽 중 제1쪽)

회계연도 학교(유치원)회계

| | | | | | |
|---|---|---|---|---|---|
| 발의일 | | 정책사업 | | 청구일 | |
| 원인행위부 등기 | | 단위사업 | | 발의일 | |
| 계약일 | | 세부사업 | | 지출부 등기 | |
| 준공/납품일 | | 목 | | 결의 번호 | |
| 검수일 | | 세목 | | 지급명령 번호 | |
| 계약/품의 번호 | | 원가목 | | 지출 구분 | |
| 원인행위 번호 | | 지급 방법 | | 물품(재산) 대장 등기 | |
| 건 명 | | | | | |
| 적 요 | | 채 주 | | 공급가액 | ₩ |
| | | 수령인명 (실거래처) | | 부가세액 | ₩ |
| | | | | 합 계 | ₩ |
| | | 사업자번호 (생년월일) | | 소득세 | ₩ |
| | | 주소 | | 주민세 | ₩ |
| | | | | 그 밖의 공제 | ₩ |
| 원인행위액 | ₩ | 예금주 | | 공제 합계 | ₩ |
| 기 지출액 | ₩ | 지급계좌 | | 채주 지급액 | ₩ |
| 금회 지출액 | ₩ | 오른쪽 금액을 영수함. | | 지급액 | 일금 원정 |
| 지출 잔액 | ₩ | | | | ₩ |

**지출결의 결재정보**

| 결 재 | | | 협 조 | | | 참 조 | | | |
|---|---|---|---|---|---|---|---|---|---|
| 직 위 | 이 름 | 승인일 | 직 위 | 이 름 | 승인일 | 직 위 | 이 름 | 직 위 | 이 름 |
| | | | | | | | | | |
| | | | | | | | | | |

**원인행위 결재정보**

| 결 재 | | | 협 조 | | | 참 조 | | | |
|---|---|---|---|---|---|---|---|---|---|
| 직 위 | 이 름 | 승인일 | 직 위 | 이 름 | 승인일 | 직 위 | 이 름 | 직 위 | 이 름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 80g/㎡)

(총4쪽 중 제2쪽)

| 예산세부항목 명세서 | | | | |
|---|---|---|---|---|
| 정책사업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원인행위 금액 | 지출결의 금액 |
| 목 | 세목 | 원가통계비목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물 품 (구매, 수선, 임차) 명 세 서 | | | | | | | | |
|---|---|---|---|---|---|---|---|---|
| G2B 코드 | | 품명 | 규격 | 수량 | 단위 | 단가 | 금액 | 용도(적요) |
| | | | | | | | | |

| 공 사 재 산 명 세 서 | | | | | |
|---|---|---|---|---|---|
| 유형 | 자산(재산)명 | 품명 | | 수량 | 단위 |
| 단가 | 금액 | 소재지 | 지번 | 관련교과 | 용도(적요) |
| | | | | | |

| 재 산 임 차 명 세 서 | | | | | | | | | |
|---|---|---|---|---|---|---|---|---|---|
| 품명 | 규격 | 수량 | 단위 | 단가 | 금액 | 임차기간 | 소재지 | 지번 | 용도(적요) |
| | | | | | | | | | |

| 일 반 수 령 인 명 세 서 | | | | | |
|---|---|---|---|---|---|
| 수령인 구분 | 수령인명 | 내용 | 지급액 | 비고 | 확인 |
| | | | | | |

| 학 생 지 원 명 세 서 | | | | | | |
|---|---|---|---|---|---|---|
| 학년/반 | 학생 | 지급액 | 납입금 | 차수 | 비고 | 확인 |
| | | | | | | |

| 일 반 학 생 명 세 서 | | | | | |
|---|---|---|---|---|---|
| 학년/반 | 학생 | 내용 | 지급액 | 관련교과 | 비고 |
| | | | | | |

| 보 수 일 용 명 세 서 | | | | | | |
|---|---|---|---|---|---|---|
| 수령인명 | 소득구분 | 강사료 | 일용임금 | 소득세 | 기타 | 지급 예정액 |
| | | 원고료 | 그 밖의 수당 | 주민세 | 공제금액 | 실지급 예정액 |
| | | | | | | |

| 용 역 명 세 서 | | | | | |
|---|---|---|---|---|---|
| 용역명 | 수량 | 단위 | 단가 | 금액 | 용도(적요) |
| | | | | | |

210㎜×297㎜(백상지 80g/㎡)

(총4쪽 중 제3쪽)

| 서비스용역명세서 | | | | | |
|---|---|---|---|---|---|
| 서비스 용역명 | 거래처 | 지급 예정일 | 지급 예정 금액 | 금액 | 용도(적요) |
| | | | | | |

| 급식명세서 | | | | | | |
|---|---|---|---|---|---|---|
| 품명 | 규격 | 수량 | 단위 | 단가 | 금액 | 용도(적요) |
| | | | | | | |

| 여비명세서 | | | | | | | |
|---|---|---|---|---|---|---|---|
| 출장자 | 출장구분 | 출장지 | 출장기간 | 교통비 | 숙박비 | 그 밖의 금액 | 금회 지급액 |
| | 출장 목적 | | | 일비 | 식비 | 계좌번호 | |
| | | | | | | | |

| 보수인건비명세서 | | | |
|---|---|---|---|
| 수령인명 | 수당총액 | 공제총액 | 지급금액 |
| | | | |

| 공제명세서 | | | | | |
|---|---|---|---|---|---|
| 수령인명 | 공제구분 | 공제내역 | 실수령인명 | 지급계좌 | 공제금액 |
| | | | | | |

## 승낙사항 (공사 집행)

1) 규격서 및 도면에 따라 (　　)년 (　)월 (　)일 착공하고 (　　)년 (　)월 (　)일 까지 준공하여야 한다.
2) 설계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에 증감이 생긴 때에는 명세서상의 단가로 증감하고 명세서상의 단가에 따르기 어려운 때에는 설계변경 당시의 단가에 따른다.
3) 기한 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지연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분의 (　)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계약대가에서 상계할 수 있다.
4) 계약대상자는 그 공사 준공일부터 (　)년간 그 공사의 공종별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진다.
5) 그 밖에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년　　월　　일

상호 또는 법인명칭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210㎜×297㎜(백상지 80g/㎡)

(총4쪽 중 제4쪽)

## 승낙사항 (물품 구입)

1) (　　)년 (　)월 (　)일 까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된 물품 중 검사에 불합격한 물품이 있을 때에는 지정기일까지 교환하여야 한다.
2) 납품기한 내에 완납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지연일수 1일에 대하여 납품되지 아니한 물품대가의 1,000분의(　)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납품기한 또는 교환기간 경과 후 (　)일까지 납품하지 못하는 때 또는 납품된 물품이 규격서·견본 등과 다른 때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제3호에 따라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손해배상으로서 계약이 해제된 물품대가의 100분의 (　)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5)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물품대금과 상계할 수 있다.

년　　월　　일

상호 또는 법인명칭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 승낙사항 (용역 집행)

1) 계약사항에 의하여 (　　)년 (　)월 (　)일 착공하고 (　　)년 (　)월 (　)일 까지 준공하여야 한다.
2) 계약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에 증감이 생긴 때에는 명세서상의 단가로 증감하고 명세서상의 단가에 따르기 어려운 때에는 설계변경 당시의 단가에 따른다.
3) 기한 내에 용역을 준공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지연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분의 (　)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계약대가에서 상계할 수 있다.
4) 계약대상자는 그 용역 준공일부터 (　)년간 그 용역의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진다.
5) 그 밖에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년　　월　　일

상호 또는 법인명칭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 비고 1. 승낙사항은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 작성함.
2. 명세서는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별도의 계약서·명세서·견적서 등)가 있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을 수 있음.

210㎜×297㎜(백상지 80g/㎡)

■ 국립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회계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1.1.13>

# 현 금 출 납 부

| 년 월 일 | | 적 요 | 채주(납부자) | 수입액 ① | 지출액 ② | 잔 액 ①-② |
|---|---|---|---|---|---|---|
| | | | | | | |

210㎜×297㎜[보존용지(1종) 70g/㎡]

■ 국립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회계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1.1.13>

# 지 출 부

| 정책사업 | | | | | 단위사업 | | | | 세부사업 | | | |
|---|---|---|---|---|---|---|---|---|---|---|---|---|
| 일자 | 제목 | 채 주<br>(납부자) | 세 부<br>항 목 | 원 가<br>비 목 | 예 산<br>현 액 | 원 인<br>행위액 | 지 출<br>결의액 | 지급액 | 예산<br>잔액 | 결의<br>잔액 | 미<br>지급액 | 지 출<br>번 호 |
| | | | | | | | | | | | | |

210㎜×297㎜[보존용지(1종) 70g/㎡]

# 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시행 2019. 9. 17.] [교육부령 제188호, 2019. 9. 17., 타법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6항 및 제19조의8제6항과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5항 및 제30조의3제6항에 따라 국립 유치원의 유치원회계와 국립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교회계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2. 26.>

**제2조(회계운영의 기본원칙)**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1항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국립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설치하는 회계(이하 "학교회계"라 한다)는 학교의 설립목적과 교육과정에 따라 건전하게 관리ㆍ운영되어야 한다. <개정 2012. 12. 26.>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①학교회계의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②학교회계의 수입 및 지출은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회계연도를 구분한다.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소속 회계연도를 구분한다.

**제4조(출납폐쇄기한)** 학교회계의 출납은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이 되는 날에 폐쇄한다.

**제5조(회계의 방법)** 학교회계는 복식부기 방식으로 처리한다.

[전문개정 2016. 3. 8.]

**제6조(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학교의 장은 학교회계의 모든 수입을 제5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융회사 등이나 체신관서에 예치하여야 하며, 이 규칙 또는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1. 1. 13.>

**제7조(통합ㆍ운영국립학교의 회계)** 법 제30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56조에 따른 통합ㆍ운영국립학교에는 하나의 학교회계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삭제 <2012. 12. 26.>

## 제2장 예산

**제9조(예산총계주의)** 학교회계의 세입과 세출은 모두 「유아교육법」 제19조의8제2항에 따른 유치원회계세입세출예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른 학교회계 세입세출예산(이하 "예산"이라 한다)에 각각 편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2. 26.]

**제10조(예산편성매뉴얼)** 교육부장관은 매년 예산편성매뉴얼을 작성하여 소속 학교의 장에게 알릴 수 있다. 다만, 예산편성매뉴얼을 알린 후 학교회계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교육시책이 수립되거나 수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예산편성매뉴얼을 변경하여 다시 알릴 수 있다. <개정 2008. 3. 4., 2013. 3. 23., 2016. 3. 8.>

**제11조(전입금의 교부계획통보)** ①교육부장관은 학교회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2항제1호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전입금의 총 규모 및 분기별 자금교부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4., 2012. 12. 26., 2013. 3. 23.>
②교육부장관은 예산의 증감 등으로 인하여 전입금의 총 규모 및 분기별 자금교부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을 학교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4., 2013. 3. 23.>

**제12조(예산안의 편성)** ①학교의 장은 제10조에 따른 예산편성매뉴얼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예산안의 편성에 있어서 교직원은 학교운영 및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기재한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학교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학교의 장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8제2항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라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한 예산안을 제11조제2항에 따른 전입금의 변경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정하려는 경우에는 수정예산안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2. 12. 26.>

**제13조(예산의 내용 및 구분)** ①예산은 예산총칙, 세입ㆍ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를 총칭한다.
②예산총칙에는 세입ㆍ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기타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③세입ㆍ세출예산 중 세입예산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ㆍ관ㆍ항ㆍ목으로 구분하고, 세출예산은 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정책사업ㆍ단위사업ㆍ세부사업ㆍ목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1. 1. 13.>
④ 제3항에 따른 세입예산의 장ㆍ관ㆍ항ㆍ목과 세출예산의 정책사업ㆍ단위사업의 구분과 설정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고 세출예산의 세부사업ㆍ목의 구분과 설정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사업ㆍ단위사업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한다.<개정 2011. 1. 13., 2013. 3. 23.>

**제14조(예산안심의)** ①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8제2항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된 예산안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학교운영위원회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6.>

②학교의 장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8제3항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가 예산안을 심의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예산안에 관한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26.>

③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설립목적과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예산안을 성실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④학교운영위원회는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의결에 의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⑤학교운영위원회는 예산안을 심의하는 경우에 학생(유치원생을 포함한다)의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관련 교직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12. 12. 26.>

⑥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장의 동의 없이 세출예산 각목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제15조(추가경정예산)** ①학교의 장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편성 및 예산심의절차 등에 있어서 제12조에서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2항제2호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경비(이하 "수익자부담경비"라 한다)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같은 회계연도 내의 다음 번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26.>

**제16조(예비비의 사용제한 및 관리)** ①「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4항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4항에 따른 예비비는 업무추진비에 지출할 수 없다. <개정 2011. 1. 13., 2012. 12. 26.>

②학교의 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정책사업ㆍ단위사업ㆍ세부사업ㆍ목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비비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1. 1. 13.>

**제1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예산의 이용)** 학교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사이에 상호 이용(移用)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상 필요에 따라 미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1. 1. 13.>

**제18조(예산의 전용)** ①학교의 장은 인건비ㆍ시설비를 제외한 예산의 동일한 정책사업 안에서 각 단위사업ㆍ세부사업ㆍ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다만, 회계연도 경과 후 또는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1. 1. 13.>
②제17조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이용 또는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제21조에 따른 세입ㆍ세출결산서에 이를 명시하고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9조(계속비)** ①학교의 장은 공사나 제조 기타의 사업을 완성하는데 수년도가 소요되는 경우에는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미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속비로서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계속비로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해당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해당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ㆍ세출예산에 명시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비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세출예산 중 해당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부대경비를 포함한다)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계속비의 연도별 소요경비의 금액 중 해당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해당계속비의 사업완성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3장 결산

**제21조(결산심의)** ①학교의 장이 「유아교육법」 제19조의8제5항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3제5항에 따라 세입ㆍ세출결산서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6.>
1. 제16조에 따른 예비비사용 내역
2.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세출예산의 이용 및 전용 내역
3. 제19조에 따른 계속비 내역
4. 제20조에 따른 이월경비 내역
5. 기타 결산심의에 필요한 자료

②학교운영위원회는 결산심의결과를 회계연도 종료 후 4월 안에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학교운영위원회의 결산심의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한다.
④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서류 서식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 제4호의 서류 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 내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22조(수익자부담경비의 관리)** ①학교의 장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대하여 각 사업별로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하고 해당 사업이 끝난 후 10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13.>
②학교의 장은 수익자부담사업의 사업별 예산ㆍ결산내역을 해당 사업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1. 1. 13.>
③제2항에 따른 예산ㆍ결산내역의 공개항목, 방법 및 기간 등에 대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정한다.<개정 2012. 12. 26.>

**제23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서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한다.

## 제4장 수입

**제24조(세입의 징수와 수납)** 학교회계의 세입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 또는 수납하여야 한다.

**제25조(전입금의 교부)** 교육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분기별 자금교부계획에 따라 전입금을 분기별로 학교회계에 전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4., 2011. 1. 13., 2013. 3. 23.>

**제26조(사용료 및 수수료)** ①「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2항제4호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수입을 말한다. <개정 2011. 1. 13., 2012. 12. 26.>
1. 「국유재산법」 제32조에 따른 학교시설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수입
2. 「물품관리법」 제41조에 따라 물품의 대부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
②「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2항제4호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수수료는 「국립학교 각종 증명 수수료 규칙」에 따른 학교의 수수료를 말한다.<개정 2012. 12. 26., 2014. 2. 24.>

**제27조(그 밖의 수입 등)** ①「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2항제6호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2항제7호에 따른 물품매각대금은 「물품관리법」 제36조에 따라 불용결정을 한 물품의 매각대금, 실습물 매각대금 등을 말한다. <개정 2012. 12. 26.>
②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2항제7호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2항제8호에 따른 그 밖의 수입은 예금이자와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학교 자체수입으로 정하는 수입을 말한다.<개정 2012. 12. 26., 2013. 3. 23.>
[제목개정 2012. 12. 26.]

**제28조(징수기관과 징수결정ㆍ고지 등)** ①학교의 장은 학교회계의 세입을 징수결정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세입에 대하여 법령의 위배 또는 소속 회계연도와 세입과목에 착오가 없는지를 조사한 후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수결정을 한 후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납입고지서로서 납입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납부금의 목적, 납부 장소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술ㆍ공고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납입의 고지를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징수결정된 세입의 납입기한은 법령 등에서 납기가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입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징수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징수부 및 별지 제8호서식의 징수결의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26.>

**제29조(수납기관과 수납의 방법)** ①학교의 모든 세입의 수납은 금융회사 등이나 체신관서에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회계출납원(이하 "출납원"이라 한다)이 담당한다. <개정 2011. 1. 13.>
②출납원은 수납한 수납금을 수납일 다음 날까지 제5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융회사 등이나 체신관서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소재지에 제5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융회사 등이나 체신관서가 없는 경우에는 수납일부터 5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11. 1. 13.>

**제30조(과오납금의 처리)** ①학교의 장은 징수결정 및 수납의 착오ㆍ중복, 납입후의 납입금 감면 또는 법령의 개정 등의 사유로 징수 또는 수납하여야 하는 금액을 초과한 납입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과오납금 반환금으로 결정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해당연도의 출납폐쇄기한까지의 수입에 대하여는 과오납된 연도의 세입에서 반환
2.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수입에 대하여는 반환하는 연도의 세입에서 반환
②학교의 장은 출납원이 수납금을 제5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융회사 등이나 체신관서에 납입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과오납금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수납금 중에서 과오납금을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11. 1. 13.>

**제31조(미수납액의 처리)** ①학교의 장은 해당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해당연도 출납폐쇄기한까지 수납하지 못한 미수납액은 다음 회계연도 세입의 징수결정액으로 이월한다.
②학교의 장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채무가 면제되거나 시효의 완성 기타의 사유로 징수결정된 금액을 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납결손처분을 한다.

## 제5장 지출

**제32조(지출원인행위)** ①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의 행위(이하 "지출원인행위"라 한다)는 학교의 장이 행한다.
②학교의 장은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학교의 자금수급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3조(지출의 원칙)** ①출납원은 학교의 장으로부터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를 송부 받거나 채권자로부터 지급의 청구가 있는 때는 지출원인행위 또는 청구가 정당한지를 조사한 후 지출하여야 한다.

②출납원은 「민법」에 따라 학교의 채무와 학교 외의 자의 학교에 대한 채무를 상계(相計)한 때에는 학교가 지출할 금액에서 상계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지출하여야 한다.

③출납원은 과오지급된 지출금을 반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초 지출된 해당세출과목에 이를 반납할 수 있다. 다만, 출납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나 출납폐쇄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그렇지 않다.

**제34조(지급의 방법)** 출납원의 지급행위는 금융회사 등의 예금계좌 또는 체신관서의 우편대체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이나 전산망을 통한 자금 이체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지급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와 제37조에 따른 개산급의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 13.>

**제35조(증빙서류)** ①학교의 장 및 출납원이 세출예산을 집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계좌입금에 관한 증빙서류 등 채권자의 영수증서(경비의 성질상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1차 수령인의 영수증서)
2. 별지 제9호서식의 지출결의서
3. 계약에 관한 증빙서류

②학교의 장 및 출납원은 제1항의 증빙서류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분하여 편철하고, 표지에는 총 건수, 총 매수 및 총 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1호의 영수증서의 도장날인은 지출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36조(선금급)**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선금급으로 할 수 있다.

1. 운임 및 사례금
2. 관보 및 정기간행물의 대가
3. 기타 미리 지급하지 않으면 학교운영 또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

**제37조(개산급)** ①다음 각 호의 경비는 개산급(槪算給)으로 할 수 있다.

1. 여비 및 업무추진비(직책급업무추진비에 한한다)
2. 수학여행비ㆍ수련활동비 등 성질상 개산하여 지급하지 않으면 학교운영 또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

②개산급을 받은 자는 그 경비를 지출한 후 5일 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빙서와 함께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는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 제6장 계약 등

**제38조(계약의 원칙)**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39조(계약의 방법)** 학교의 장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제40조(수의계약 대상 등)** ① 제39조의 단서에 따라 학교의 장이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로 한다. <개정 2016. 3. 8.>

②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명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명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16. 3. 8.>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의 경우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 다만,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3. 제3항 본문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명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③학교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지 아니하고 견적서를 제출받을 수 있다.<개정 2016. 3. 8.>

1. 학교 급식 재료 구입 등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
2.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학술연구용역의 경우
3. 그 밖에 계약의 목적이나 성질상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실상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4. 삭제<2016. 3. 8.>
5. 삭제<2016. 3. 8.>

6. 삭제<2016. 3. 8.>
7. 삭제<2016. 3. 8.>
8. 삭제<2016. 3. 8.>

**제41조(직접구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체결시 견적서를 생략하고 직접구매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3. 4., 2013. 3. 23.>
1. 추정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경우
2. 품질 및 신선도가 고려되어야 하는 농축수산물 및 제조가공식품을 구매하는 경우
3. 기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제42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수의 공급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학교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ㆍ협상의 기준과 절차 등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43조(다른 법령의 준용)** 학교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44조(구매내역 공개)** 학교의 장은 제4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41조에 따라 구매한 물품 중 단가가 50만원 이상이거나 구매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학교홈페이지에 구매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장 회계관계직원

**제45조(회계관계직원의 정의)**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직원"이란 학교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 12. 26.>
1. 학교의 장 및 출납원
2. 제1호에 규정된 자가 집행하는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

**제46조(출납원)** ①출납원은 「유아교육법」 제20조제2항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행정직원 (이하 이 조에서 "행정직원"이라 한다)으로서 행정직렬에 속하는 사람 중 최상급자로 하되, 해당 학교에 행정직렬에 속하는 행정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1. 1. 13., 2012. 12. 26.>
②출납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ㆍ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1. 1. 13.>

**제47조(임시출납원의 임명)** 학교의 장은 출납원이 장기휴가나 장기출장 등으로 장기간 회계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수학여행ㆍ현장학습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출납원의 사무를 대리하여 처리하는 임시출납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제48조(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①회계관계직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책임을 진다.
②출납원은 그 보관에 속하는 현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다는 증명을 하지 못한 때에는 변상책임을 진다.<개정 2019. 9. 17.>

**제49조(회계관계직원의 재정보증)** ①회계관계직원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개정 2016. 3. 8.>
②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의 한도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로 한다.<개정 2016. 3. 8.>

## 제8장 세입세출외 현금 및 장부ㆍ서식 등

**제50조(세입세출외 현금의 관리)** ①세입세출외현금은 다음 구분에 따라 정리하여 출납원이 관리한다.
1. 보증금
2. 보관금
3. 기타 잡종금
②세입세출외 현금의 이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회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51조(금융회사 등의 이용)** ①학교의 장은 금융회사 등이나 체신관서를 지정하여 출납원 명의로 거래계좌를 개설하고 학교회계의 소관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과 그 밖의 업무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13.>
②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자수입의 증대를 위하여 학교회계의 여유자금을 금융회사 등이나 체신관서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별도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11. 1. 13.>
[제목개정 2011. 1. 13.]

**제52조(재산 및 물품의 귀속 및 관리)** 학교회계에서 취득한 재산 및 물품은 국가에 귀속하고, 학교의 장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53조(장부의 비치와 관리)** 회계관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학교의 장 : 별지 제7호서식의 징수부
2. 출납원 : 별지 제10호서식의 현금출납부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지출부

**제54조(장부 등의 보존기간)** 학교의 장은 제53조의 장부와 관련 증명서류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13.>

**제55조(기타 서식)** 학교의 장은 이 규칙에서 정한 서식 외에 학교회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서식을 정할 수 있다.

**제56조(전자문서의 보존ㆍ관리)** ①학교회계의 장부 및 서식 등은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전자문서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전산프로그램으로부터 출력한 자료는 학교의 장의 확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하며, 동 자료가 입력된 자기테이프 또는 자기디스크 등의 전산보조기억매체는 관련 장부 및 서식의 보존기한까지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전자문서를 보존ㆍ관리함에 있어서 멸실ㆍ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57조(직인의 비치 및 등록)** ①회계관계직원은 회계사무를 처리할 때 사용하는 직인(이하 "직인"이라 한다)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직인은 해당학교에 등록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못한다.

③회계관계직원 중 학교의 장의 직인은 「국립 및 공립 각급학교 관인 규칙」에 의하고, 출납원의 직인의 자체ㆍ규격 및 인영(印影: 도장에 새겨지는 모양) 내용은 별표에 의한다.<개정 2019. 9. 17.>

**제58조(예산ㆍ결산의 공개 및 자료의 제출)** ①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세입ㆍ세출예산서 및 결산서를 학부모 및 교직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교육부장관은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예산과 결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8. 3. 4., 2013. 3. 23.>

**부칙** <제898호,2006. 12. 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병설유치원에 대한 적용례) 제8조의 규정은 2007학년도부터 적용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및공립초ㆍ중등학교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립및공립초ㆍ중등학교회계규칙"을 "공립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중 "국ㆍ공립"을 각각 "공립"으로 한다.

제9조중 "학교의 경우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를 삭제한다.

제25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31조제3항중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삭제한다.

**부칙** <제1호,2008. 3. 4.>(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국립 초ㆍ중등학교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본문,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4항, 제27조제2항, 제40조제1항제5호, 제41조제3호 및 제58조제2항 중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을 각각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으로 한다.

제25조 중 " 교육인적자원부 "를 " 교육과학기술부 "로 한다.

⑮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 <제90호,2011. 1.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에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예산편성매뉴얼의 시달 등)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학교의 장이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일에 시작되는 회계연도의 예산편성매뉴얼을 시달하거나 예산안을 편성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야 한다.

**부칙** <제168호,2012. 12. 26.>

이 규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2013. 3. 2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1* 까지 생략

1( 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본문,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4항, 제25조, 제27조제2항, 제40조제1항제5호, 제41조제3호 및 제58조제2항 중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을 각각 " 교육부장관 "으로 한다.

2) 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제25호,2014. 2. 24.>(국립학교 각종 증명 수수료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국립학교 각종 증명 수수료 징수규칙」”을 “「국립학교 각종 증명 수수료 규칙」”으로 한다.

**부칙** <제25호,2016. 3. 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의계약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학교의 장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처음으로 견적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1명의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학교의 장이 처음으로 견적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8호,2019. 9. 17.>(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국립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회계규칙 [별표] <개정 2012.12.26>

## 출납원의 직인의 인영내용 · 규격 및 자체(제57조제3항관련)

| | |
|---|---|
| 인영내용 | ○○학교(유치원)회계출납원 |
| 규 격 | 1.8센티미터의 정사각형 |
| 자 체 | 한글 전서체(篆書體) |

■ 국립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회계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1.1.13>

# 예비비사용명세서

(단위 : 원)

| 과 목 | | | | | 총 사업비 (예산현액) | 예비비 지 출 결정액 | 예비비 사용액 | 예비비 사 용 잔 액 | 지출 결정일 | 예비비 사용 명세 | 비 고 |
|---|---|---|---|---|---|---|---|---|---|---|---|
| 정책 | 단위 | 세부 | 항목 | 원가목 | | | | | | | |
| | | | | | | | | | | | |

210㎜×297㎜[보존용지(1종) 70g/㎡]

■ 국립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회계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1.1.13>

# 세출예산 이용(전용) 명세서

(단위 : 천원)

| 과목 | | | | | 이(전)용액 | | 이(전)용 사유 |
|---|---|---|---|---|---|---|---|
| 정책 | 단위 | 세부 | 항목 | 원가목 | 증 | 감 | |
| | | | | | | | |

210㎜×297㎜[보존용지(1종) 70g/㎡]

■ 국립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회계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1.1.13>

# 계속비 조서

(단위 : 천원)

| 사업명 | 구분 | 총액 | 전전회계연도 이전 | | | 전회계연도 | | | 해당 회계연도 | ○○ 회계연도 | ○○ 회계연도 |
|---|---|---|---|---|---|---|---|---|---|---|---|
| | | | 예산액 | 집행액 | 집행잔액 | 예산액 | 집행액 | 집행잔액 | 계획액 | 계획액 | 계획액 |
| | 당초 | | | | | | | | | | |
| | 수정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당초 | | | | | | | | | | |
| | 수정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당초 | | | | | | | | | | |
| | 수정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당초 | | | | | | | | | | |
| | 수정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당초 | | | | | | | | | | |
| | 수정 | | | | | | | | | | |
| | 계 | | | | | | | | | | |

비고: 전회계연도란까지는 예산액 · 집행액 · 집행잔액을 적고 해당 회계연도란부터는 계획액만 기입함

210㎜×297㎜[보존용지(1종) 70g/㎡]

■ 국립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회계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1.1.13>

# 명시이월비 명세서

(단위 : 천원)

| 과목 | | | | | 예산현액① | 지출액② | 지출잔액③ | 이월액④ | 불용액 ①-②-④ | 사유 |
|---|---|---|---|---|---|---|---|---|---|---|
| 정책 | 단위 | 세부 | 항목 | 원가목 | | | | | | |
| | | | | | | | | | | |

210㎜×297㎜[보존용지(1종) 70g/㎡]

■ 국립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회계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1.1.13>

# 사고이월비 명세서

(단위 : 천원)

| 과목 | | | | | 예산 현액 ① | 지출원인 행 위 액 ② | 지출액 ③ | 지출잔액 (④=②-③) | 이월액 ⑤ | 불용액 ①-③-⑤ | 사유 |
|---|---|---|---|---|---|---|---|---|---|---|---|
| 정책 | 단위 | 세부 | 항목 | 원가목 | | | | | | | |
| | | | | | | | | | | | |

210㎜×297㎜[보존용지(1종) 70g/㎡]

■ 국립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회계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1.1.13>

# 계속이월비 명세서

(단위 : 천원)

| 과목 | | | | | 사업기간 | 총사업비 | 예산 현액 ① | 지출액 ② | 이월액 ③ | 불용액 ①-②-③ | 사유 |
|---|---|---|---|---|---|---|---|---|---|---|---|
| 정책 | 단위 | 세부 | 항목 | 원가목 | | | | | | | |
| | | | | | | | | | | | |

210㎜×297㎜[보존용지(1종) 70g/㎡]

■ 국립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회계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1.1.13>

# 징 수 부

장 관 항 목

| 년 월 일 | | 적 요 | 예산액 | 징 수 결정액 ① | 수납액 ② | 불 납 결손액 ③ | 미수납액 ①-②-③ |
|---|---|---|---|---|---|---|---|
| | | | | | | | |

210㎜×297㎜[보존용지(1종) 70g/㎡]

■ 국립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회계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2.12.26>

# 징 수 결 의 서

회계연도　　학교(유치원)회계　　증 제　　호

| | | | | |
|---|---|---|---|---|
| 발 의 | | | 장 | |
| 고지서 발행 | | | 관 | |
| 납입기한 | | | 항 | |
| 징수부 등기 | | | 목 | |
| 고지서 번호 | | | | |
| | | | | |
| | 일금 | | 원정 | |
| | | | ₩ | |
| 납부자 주소<br>성명(상호) | | | | |

| | |
|---|---|
| 적 요<br>(산출근거) | |

| 결 재 | | | 협 조 | | | 참 조 | | | |
|---|---|---|---|---|---|---|---|---|---|
| 직위 | 이름 | 승인일 | 직위 | 이름 | 승인일 | 직위 | 이름 | 직위 | 이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보존용지(1종) 70g/㎡]

■ 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6.3.8.>

# 지 출 결 의 서

(총4쪽 중 제1쪽)

회계연도 학교(유치원)회계

| | | | | | |
|---|---|---|---|---|---|
| 발의일 | | 정책사업 | | 청구일 | |
| 원인행위부 등기 | | 단위사업 | | 발의일 | |
| 계약일 | | 세부사업 | | 지출부 등기 | |
| 준공/납품일 | | 목 | | 결의 번호 | |
| 검수일 | | 세목 | | 지급명령 번호 | |
| 계약/품의 번호 | | 원가목 | | 지출 구분 | |
| 원인행위 번호 | | 지급 방법 | | 물품(재산) 대장 등기 | |
| 건 명 | | | | | |
| 적 요 | | 채 주 | | 공급가액 | ₩ |
| | | 수령인명 (실거래처) | | 부가세액 | ₩ |
| | | | | 합 계 | ₩ |
| | | 사업자번호 (생년월일) | | 소득세 | ₩ |
| | | 주소 | | 주민세 | ₩ |
| | | | | 그 밖의 공제 | ₩ |
| 원인행위액 | ₩ | 예금주 | | 공제 합계 | ₩ |
| 기 지출액 | ₩ | 지급계좌 | | 채주 지급액 | ₩ |
| 금회 지출액 | ₩ | 오른쪽 금액을 영수함. | | 지급액 | 일금 원정 |
| 지출 잔액 | ₩ | | | | ₩ |

**지출결의 결재정보**

| 결 재 | | | 협 조 | | | 참 조 | | | |
|---|---|---|---|---|---|---|---|---|---|
| 직 위 | 이 름 | 승인일 | 직 위 | 이 름 | 승인일 | 직 위 | 이 름 | 직 위 | 이 름 |
| | | | | | | | | | |
| | | | | | | | | | |

**원인행위 결재정보**

| 결 재 | | | 협 조 | | | 참 조 | | | |
|---|---|---|---|---|---|---|---|---|---|
| 직 위 | 이 름 | 승인일 | 직 위 | 이 름 | 승인일 | 직 위 | 이 름 | 직 위 | 이 름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 80g/㎡)

(총4쪽 중 제2쪽)

| 예산세부항목 명세서 | | | | |
|---|---|---|---|---|
| 정책사업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원인행위 금액 | 지출결의 금액 |
| 목 | 세목 | 원가통계비목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물 품 (구매, 수선, 임차) 명 세 서 | | | | | | | | |
|---|---|---|---|---|---|---|---|---|
| G2B 코드 | | 품명 | 규격 | 수량 | 단위 | 단가 | 금액 | 용도(적요) |
| | | | | | | | | |

| 공 사 재 산 명 세 서 | | | | | |
|---|---|---|---|---|---|
| 유형 | 자산(재산)명 | 품명 | | 수량 | 단위 |
| 단가 | 금액 | 소재지 | 지번 | 관련교과 | 용도(적요) |
| | | | | | |

| 재 산 임 차 명 세 서 | | | | | | | | | |
|---|---|---|---|---|---|---|---|---|---|
| 품명 | 규격 | 수량 | 단위 | 단가 | 금액 | 임차기간 | 소재지 | 지번 | 용도(적요) |
| | | | | | | | | | |

| 일 반 수 령 인 명 세 서 | | | | | |
|---|---|---|---|---|---|
| 수령인 구분 | 수령인명 | 내용 | 지급액 | 비고 | 확인 |
| | | | | | |

| 학 생 지 원 명 세 서 | | | | | | |
|---|---|---|---|---|---|---|
| 학년/반 | 학생 | 지급액 | 납입금 | 차수 | 비고 | 확인 |
| | | | | | | |

| 일 반 학 생 명 세 서 | | | | | |
|---|---|---|---|---|---|
| 학년/반 | 학생 | 내용 | 지급액 | 관련교과 | 비고 |
| | | | | | |

| 보 수 일 용 명 세 서 | | | | | | |
|---|---|---|---|---|---|---|
| 수령인명 | 소득구분 | 강사료 | 일용임금 | 소득세 | 기타 | 지급 예정액 |
| | | 원고료 | 그 밖의 수당 | 주민세 | 공제금액 | 실지급 예정액 |
| | | | | | | |

| 용 역 명 세 서 | | | | | |
|---|---|---|---|---|---|
| 용역명 | 수량 | 단위 | 단가 | 금액 | 용도(적요) |
| | | | | | |

210㎜×297㎜(백상지 80g/㎡)

(총4쪽 중 제3쪽)

| 서비스용역명세서 | | | | | |
|---|---|---|---|---|---|
| 서비스 용역명 | 거래처 | 지급 예정일 | 지급 예정 금액 | 금액 | 용도(적요) |
| | | | | | |

| 급식명세서 | | | | | | |
|---|---|---|---|---|---|---|
| 품명 | 규격 | 수량 | 단위 | 단가 | 금액 | 용도(적요) |
| | | | | | | |

| 여비명세서 | | | | | | | |
|---|---|---|---|---|---|---|---|
| 출장자 | 출장구분 | 출장지 | 출장기간 | 교통비 | 숙박비 | 그 밖의 금액 | 금회 지급액 |
| | 출장 목적 | | | 일비 | 식비 | 계좌번호 | |
| | | | | | | | |

| 보수인건비명세서 | | | |
|---|---|---|---|
| 수령인명 | 수당총액 | 공제총액 | 지급금액 |
| | | | |

| 공제명세서 | | | | | |
|---|---|---|---|---|---|
| 수령인명 | 공제구분 | 공제내역 | 실수령인명 | 지급계좌 | 공제금액 |
| | | | | | |

## 승낙사항 (공사 집행)

1) 규격서 및 도면에 따라 (　　)년 (　)월 (　)일 착공하고 (　　)년 (　)월 (　)일 까지 준공하여야 한다.
2) 설계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에 증감이 생긴 때에는 명세서상의 단가로 증감하고 명세서상의 단가에 따르기 어려운 때에는 설계변경 당시의 단가에 따른다.
3) 기한 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지연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분의 (　)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계약대가에서 상계할 수 있다.
4) 계약대상자는 그 공사 준공일부터 (　)년간 그 공사의 공종별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진다.
5) 그 밖에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년　　월　　일

상호 또는 법인명칭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210㎜×297㎜(백상지 80g/㎡)

(총4쪽 중 제4쪽)

## 승낙사항 (물품 구입)

1) (　　)년 (　)월 (　)일 까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된 물품 중 검사에 불합격한 물품이 있을 때에는 지정기일까지 교환하여야 한다.
2) 납품기한 내에 완납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지연일수 1일에 대하여 납품되지 아니한 물품대가의 1,000분의(　)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납품기한 또는 교환기간 경과 후 (　)일까지 납품하지 못하는 때 또는 납품된 물품이 규격서·견본 등과 다른 때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제3호에 따라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손해배상으로서 계약이 해제된 물품대가의 100분의 (　)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5)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물품대금과 상계할 수 있다.

년　　월　　일

상호 또는 법인명칭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 승낙사항 (용역 집행)

1) 계약사항에 의하여 (　　)년 (　)월 (　)일 착공하고 (　　)년 (　)월 (　)일 까지 준공하여야 한다.
2) 계약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에 증감이 생긴 때에는 명세서상의 단가로 증감하고 명세서상의 단가에 따르기 어려운 때에는 설계변경 당시의 단가에 따른다.
3) 기한 내에 용역을 준공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지연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분의 (　)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계약대가에서 상계할 수 있다.
4) 계약대상자는 그 용역 준공일부터 (　)년간 그 용역의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진다.
5) 그 밖에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년　　월　　일

상호 또는 법인명칭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 비고 1. 승낙사항은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 작성함.
2. 명세서는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별도의 계약서·명세서·견적서 등)가 있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을 수 있음.

210㎜×297㎜(백상지 80g/㎡)

■ 국립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회계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1.1.13>

# 현 금 출 납 부

| 년 월 일 | | 적 요 | 채주(납부자) | 수입액 ① | 지출액 ② | 잔 액 ①-② |
|---|---|---|---|---|---|---|
| | | | | | | |

210㎜×297㎜[보존용지(1종) 70g/㎡]

■ 국립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회계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1.1.13>

# 지 출 부

| 정책사업 | | | | | 단위사업 | | | | 세부사업 | | | |
|---|---|---|---|---|---|---|---|---|---|---|---|---|
| 일자 | 제목 | 채 주<br>(납부자) | 세 부<br>항 목 | 원 가<br>비 목 | 예 산<br>현 액 | 원 인<br>행위액 | 지 출<br>결의액 | 지급액 | 예산<br>잔액 | 결의<br>잔액 | 미<br>지급액 | 지 출<br>번 호 |
| | | | | | | | | | | | | |

210㎜×297㎜[보존용지(1종) 70g/㎡]

#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3. 1.] [대통령령 제36095호, 2026. 2. 19.,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044 - 205 - 2370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 044 - 203 - 6053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1. 8. 16.>

**제2조(공무원의 정원)** ①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1., 2013. 3. 23., 2018. 2. 20., 2021. 2. 25., 2023. 11. 16., 2024. 2. 27., 2024. 12. 17., 2025. 2. 25.>

②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정원은 100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포함한다) 정원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을 포함한다) 정원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개정 2008. 12. 31., 2011. 12. 28., 2013. 3. 23., 2025. 2. 25., 2026. 2. 19.>

[전문개정 2008. 2. 22.]

**제3조(한시정원)** ① 국립경국대학교로 통합되는 기존 경북도립대학교 재학생의 교육수요 대응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2월 29일까지 별표 2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둔다. <개정 2025. 12. 30.>

② 전남도립대학교를 통합하는 국립목포대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30년 2월 28일까지 별표 2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둔다.<신설 2026. 2. 19.>

③ 경남도립거창대학 및 경남도립남해대학을 통합하는 국립창원대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30년 2월 28일까지 별표 2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둔다.<신설 2026. 2. 19.>

④ 「국립학교 설치령」 제9조의2에 따른 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신설 2025. 12. 30., 2026. 2. 19.>

⑤ 「국립학교 설치령」 제9조의3에 따른 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신설 2026. 2. 19.>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25. 12. 30., 2026. 2. 19.>

[본조신설 2025. 2. 25.]

**부칙** <제4305호,1969. 11. 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46호,1970. 2. 2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87호,1970. 2. 28.>
이 영은 197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71호,1970. 4. 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96호,1971. 1. 2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42호,1971. 3. 2.>
이 영은 197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578호,1971. 3. 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76호,1971. 6. 1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85호,1971. 9. 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44호,1971. 11. 1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61호,1971. 12. 6.>
이 영은 1971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025호,1972. 2. 1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동일하게 될 때까지 그 초과된 현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6071호,1972. 2. 1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19호,1972. 3. 2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99호,1972. 7. 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78호,1972. 11. 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41호,1972. 12. 3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32호,1973. 3. 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12호,1973. 5. 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공립고등학교 공무원 정원ㆍ공립중학교 공무원 정원ㆍ공립국민학교 공무원 정원중 이 영에 의하여 감축되는 정원수에 대한 현원은 지방공무원으로 바꾸어 임명될 때까지 그 현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7052호,1974. 1. 2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84호,1974. 3. 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86호,1974. 10. 2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99호,1974. 11. 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53호,1975. 2. 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67호,1975. 2. 28.>
①(시행일) 이 영은 197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서울대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현원이 서울대학교에 배정된 공무원의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된 현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7704호,1975. 7. 2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11호,1975. 9. 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08호,1976. 3. 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18호,1976. 8. 2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59호,1976. 9. 3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국립 및 공립 각급학교 공무원정원표중 국립실업고등전문학교ㆍ전문학교 공무원정원과 공립실업고등전문학교ㆍ전문학교 공무원정원에 관하여는 1976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399호,1976.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59호,1977. 2. 28.>
이 영은 197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06호,1977. 9. 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공립전문학교 공무원정원중 이 영에 의하여 감축되는 일반직공무원 및 고용원의 인원수에 대한 현원은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될 때까지 그 현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그 기간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3월을 초과할 수 없다.

**부칙** <제8867호,1978. 3. 3.>
이 영은 197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362호,1979. 3. 8.>
이 영은 197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519호,1979. 6. 2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48호,1980. 2. 1.>(체신부직제등일부개정령)
①(시행일) 이 영은 198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및 ③생략

**부칙** <제9791호,1980. 2. 27.>
이 영은 19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96호,1980. 5. 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19호,1980. 9. 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총리령 제226호 잡급직원정원령의 별표 29 문교부잡급직원정원표중 국립각급학교란의 7중 3갑(상당) 16인은 1980년 12월 31일에 감축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이전에 이 영에 의하여 증원된 공무원정원이 충원되는 때에는 그 범위안에서 충원된 때에 잡급직원정원이 감축되는 것으로 한다.

**부칙** <제10204호,1981. 2. 1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05호,1981. 2. 26.>(내무부직제등일부개정령)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잡급직원은 1981년 12월 31일까지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전에 이 영에 의하여 증원되는 공무원정원이 충원되는 때에는 그 범위안에서 충원된 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잡급직원의 정원이 감축된 것으로 본다.

④(증원되는 공무원의 충원) 이 영에 의하여 충원되는 공무원중 별정직공무원과 고용원의 충원에 있어서는 이 영 시행당시 각 기관에 재직중인 잡급직원을 우선 채용하여야 한다.

⑤(신규 임용시 연령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잡급직원으로서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용원으로 임용되는 자에 대하여는 채용시험의 응시연령 또는 신규임용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부칙** <제10222호,1981. 2. 28.>

이 영은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92호,1981. 12. 31.>(세무대학의조직과운영에관한규정)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국립및공립각급학교공무원정원표중 1. 총괄표란의 총계 "202,041"을 "202,002"로, 별정직계 "195,288"을 "195,269"로, 교육대학·전문대학란의 학장 "48"을 "47"로,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 "1,860"을 "1,846"으로, 조교 "210"을 "208"로, 별정직란의 군사교육교관(3급을류 또는 4급갑류상당) "161"을 "160"으로, 군사교육조교(5급갑류 또는 5급을류상당) "141"을 "140"으로 하고, 2급 내지 5급 계 "3,337"을 "3,325"로, 행정사무관 "209"를 "208"로, 행정주사 "484"를 "482"로 하며, "행정주사 또는 세무주사 1"을 삭제하고, 건축기사 "70"을 "69"로, 행정주사보 "432"를 "430"으로, 행정서기 "245"를 "240"으로, 고용원 "3,315"를 "3,307"로 한다.

동표중 5. 국립전문대학란의 총계 "2,125"를 "2,086"으로, 별정직계 "1,353"을 "1,334"로, 전문대학란의 학장 "19"를 "18"로,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 "1,085"를 "1,071"로, 조교 "153"을 "151"로, 별정직란의 군사교육교관(3급을류 또는 4급갑류상당) "22"를 "21"로, 군사교육조교(5급갑류 또는 5급을류상당) "19"를 "18"로 하고, 3급 내지 5급 계 "227"을 "215"로, 행정사무관 "17"을 "16"으로,

행정주사 “76”을 “74”로 하며, “행정주사 또는 세무주사 1”을 삭제하고, 건축기사 “16”을 “15”로, 행정주사보 “63”을 “61”로, 행정서기 “29”를 “24”로, 고용원 “508”을 “500”으로 한다.

③내지 ④생략

**부칙** <제10743호,1982. 2. 27.>

이 영은 198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60호,1983. 2. 23.>

이 영은 198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38호,1983. 10. 7.>(경제기획원직제등일부개정령)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고용직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각 기관별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83년 10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373호,1984. 2. 29.>

이 영은 198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51호,1985. 2. 27.>

이 영은 198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860호,1986. 2. 28.>

①(시행일) 이 영은 198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교육공무원중 3,400인(국민학교교사 1,400인, 중학교교사 1,570인, 고등학교교사 430인)의 증원에 관한 사항은 198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학교설치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중 “간호기정”을 “간호원”으로, “약무기정 또는 약무기좌”를 “약사”로 한다.

**부칙** <제12082호,1987. 2. 27.>

①(시행일) 이 영은 198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교육공무원중 3,500인(국민학교교사 500인, 중학교교사 2,000인, 고등학교교사 1,000인)의 증원에 관한 사항은 198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 정원 1인(이사관ㆍ부이사관ㆍ시설기감 또는 시설부기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87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2284호,1987. 12. 5.>(중앙기상대직제등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341호,1987. 12. 31.>(경제기획원직제등일부개정령)

이 영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383호,1988. 1. 29.>

이 영은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교육공무원중 4,937인(국민학교 교사581인, 중학교교사 2,935인, 고등학교교사 1,421인)의 증원에 관한 사항은 198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631호,1989. 2. 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교육공무원중 9,500인(중학교교사 6,650인, 고등학교교사 2,850인)의 증원에 관한 사항은 198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경찰대학의조직과학사운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경찰대학공무원정원표중 “ 군사교육교관(5급상당) ”을 “ 예비군담당요원 (5급상당) ”으로, “ 군사교육조교(8급상당) ”를 “ 예비군담당요원(8급상당) ”으로 한다.

②세무대학의조직과운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세무대학공무원정원표중 “ 군사교육교관(5급상당 또는 6급상당) ”을 “ 예비군담당요원(5급상당 또는 6급상당) ”으로, “ 군사교육조교(8급상당 또는 9급상당) ”를 “ 예비군담당요원(8급상당 또는 9급상당) ”으로 한다.

**제3조** (군사교육교관 및 조교정원의 감축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군사교육교관 68인(별정직 3급상당 9, 별정직 4급상당 16, 별정직 5ㆍ6급 36, 별정직 8ㆍ9급 7)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0년 2월 말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

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 (예비군담당요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정직 예비군담당요원 203명중 일부에 대하여는 1990년 2월 말일까지 시설관리 또는 후생관리업무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12724호,1989. 6. 15.>(문교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국립 및 공립각급학교공무원정원표중 1. 총괄표 교육공무원 계 "258,446"을 "258,445"로, 교육전문직 "121"을 "120"으로 하고, "장학관 1"을 삭제하며, 일반직 계 "5,186"을 "5,187"로,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10" 다음에 "이사관·부이사관·교수·부교수·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1"을 신설하고, 2. 국립대학교 공무원 계 "9,636"을 "9,635"로 하며, "장학관 1"을 삭제하고, 일반직 계 "3,986"을 "3,987"로 하며,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10" 다음에 "이사관·부이사관·교수·부교수·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1"을 신설한다.

②생략

**부칙** <제12733호,1989. 6. 17.>(경제기획원직제등일부개정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고용직공무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현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때까지 그 현원에 대한 고용직공무원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그 현원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은 이를 충원할 수 없다.

**제3조** (잡무직렬 기능직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2704호 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부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직렬의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자는 이 영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등급으로 재직할 수 있다.

**제4조** 및 제5조 생략

**부칙** <제12739호,1989. 6. 30.>(국립의료원직제등일부개정령)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직급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종전의 의료직공무원은 이 영 시행후 이 영에 의한 직급으로 임용될 때까지 종전의 직급에서 당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부칙** <제12800호,1989. 9. 5.>(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도의교육위원회직제)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국립 및 공립각급학교공무원정원표중 2. 국립대학교란의 총계 "16,860"을 "16,874"로, 교육공무원계 "9,635"를 "9,649"로, 국민학교교사 "59"를 "73"으로 하고, 13. 공립국민학교란의 총계 및 교육공무원계 "133,185"를 "133,171"로, 교사 "119,732"를 "119,718"로 한다.

**부칙** <제12944호,1990. 3. 7.>

이 영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교육공무원중 1,800인(중학교교사 800인, 고등학교교사 1,000인)의 증원에 관한 사항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958호,1990. 3. 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사편찬위원회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국사편찬위원회공무원정원표중 총계 "90"을 "89"로 하고, 일반직계 "63"을 "62"로 하며, "건축기좌 1"을 삭제하고, 행정주사 "2"를 "3"으로 하며, "기계기사 1"을 삭제하고, "행정주사보 2" 다음에 "전산처리사보 1"을 신설하며, "건축기사보 1"을 삭제한다.

②중앙교육연수원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앙교육연수원공무원정원표중 총계 "109"를 "110"으로 하고, 일반직계 "20"을 "21"로 하며, "전기기사 1" 다음에 "기계기사 1"을 신설한다.

③문교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문교부공무원정원표중 행정주사 "74"를 "91"로 하고, 행정주사보 "55"를 "38"로 한다.

④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도의교육위원회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건축기좌로"를 "건축기좌ㆍ토목기좌ㆍ전기기좌 또는 기계기좌로"로 한다.

[별표 1] 교육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과 교육장소속하에 두는 국가공무원정원표중 1. 총괄표의 총계 "3,726"을 "3,727"로, 일반직계 "123"을 "124"로 하고 "건축기좌 12" 다음에 "건축기좌ㆍ토목기좌ㆍ전기기좌 또는 기계기좌 1"을 신설하며, 2. 교육위원회의 총계 "938"을 "939"로, 일반직계 "107"을 "108"로 하고, "건축기좌 12" 다음에 "건축기좌ㆍ토목기좌ㆍ전기기좌 또는 기계기좌 1"을 신설한다.

**부칙** <제13023호,1990. 6. 20.>(중앙교육평가원직제)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국립및공립각급학교공무원정원표중 1. 총괄표 총계 "276,630"을 "276,626"으로, 교육공무원계 "265,157"을 "265,153"으로, 대학(교) "12,440"을 "12,436"으로, 교수·부교수·조교수 또는 전임강사 "9,897"을 "9,893"으로, 사서서기 "142"를 "140"으로, 학예연구사 "11"을 "13"으로 하고, 2. 국립대학교란의 사서서기 "97"을 "95"로, 학예연구사 "11"을 "13"으로 하며, 3. 국립대학 총계 "4.482"를 "4,478"로, 교육공무원계 "2,792"를 "2,788"로, 교수·부교수·조교수 또는 전임강사 "2,122"를 "2,118"로 한다.

**부칙** <제13323호,1991. 2. 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국사편찬위원회공무원정원표중 총계 "89"를 "91"로 하고, 별정직 계 "4"를 "5"로 하며, "사진기사(7급상당) 2" 다음에 "표구사(7급상당) 1"을 신설하고, 기능직 계 "22"를 "23"으로 하며, "10등급 방호원 4" 다음에 "10등급 교환원 1"을 신설한다.

**부칙** <제13451호,1991. 8. 16.>(지방교육행정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을 "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으로 한다.

제1조중 "각급학교에"를 "국립의 각급학교에"로 한다.

제2조중 "국립 및 공립"을 "국립의"로 한다.

[별표]의 제명중 "국립 및 공립"을 "국립의"로 하고, 1.총괄표의 총계 "281,916"을 "28,742"로, 교육공무원 계 "269,910"을 "16,736"으로 하며,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44,113"을 "1,023"으로, 교장 "857"을 "19"로, 교감 "953"을 "23"으로, 교사 "42,303"을 "981"로 하고, 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65,590"을 "396"으로, 교장 "1,809"를 "9"로, 교감 "1,927"을 "10"으로, 교사 "65,854"를 "377"로 하며, 국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137,818"을 "472"로,

교장 “6,311”을 “17”로, 교감 “7,118”을 “20”으로, 교사 “124,389”를 “436”로 하고, 유치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3,555”를 “11”로 하며, “원장1” 및 “원감30”을 각각 삭제하고, 교사 “3,524”를 “11”로 하며, “10. 공립고등학교”、“11. 공립중학교”、“12. 공립특수학교”、“13. 공립국민학교” 및 “14. 공립유치원”의 정원표를 각각 삭제한다.

②생략

**부칙** <제13479호,1991. 9. 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608호,1992. 3. 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교육부공무원정원표중 “사서보 1”을 “사서주사보 1”, “전산처리사보 또는 별정직(7급상당) 1”을 “전산주사보 1”로 한다.

[별표 2] 국사편찬위원회공무원정원표중 총계 “91”을 “98”로, 일반직 계 “62”를 “68”로, “사서관(5급) 1”을 “사서사무관 1”로, “사서 1”을 “사서주사 1”로, 행정주사보 “2”를 “4”로, “전산처리사보 1”을 “전산주사보 1”로, “사서보 2”를 “사서주사보 2”로 하고, 행정서기 2 다음에 “전산서기 1” 및 “사서서기 1”을 각각 신설하며, 편사연구사 또는 교육연구사 “27”을 “29”로, 기능직 계 “23”을 “24”로, 10등급 사무보조원 “12”를 “13”으로 한다.

[별표 3] 중앙교육평가원공무원정원표중 총계 “135”를 “136”으로, “전산처리사 2”를 “전산주사 2”로, “전산처리사보 2”를 “전산주사보 2”로, 기능직 계 “22”를 “23”으로 하고, 기능직 계 23 다음에 “10등급 교환원 1”을 신설한다.

[별표 5] 중앙교육연수원공무원정원표중 총계 “110”을 “111”로, “사서 1”을 “사서주사 1”로, 기능직 계 “38”을 “39”로, 10등급 운전원 “4”를 “5”로 한다.

③(군사교육교관 및 조교정원의 감축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군사교육교관 및 군사교육조교 19인(별정직 5급 또는 6급상당 8, 별정직 8급 또는 9급상당 11)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3년 2월 말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623호,1992. 3. 28.>(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국립의각급학교공무원정원표중 1. 총괄표의 총계 “29,802”를 “29,741”로, 교육공무원 계 “17,195”를 “17,154”로,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1,051”을 “1,046”으로, 교사 “1,007”을 “1,002”로, 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414”를 “409”로, 교사 “395”를 “390”으로, 국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480”을 “478”로, 교사 “443”을 “441”로, 교육전문직 “142”를 “113”으로, 교육연구관 “39”를 “36”으로, 교육연구사 “103”을 “77”로 하고, 일반직 계 “6,434”를 “6,428”로 하며, “이사관、부이사관、교수、부교수、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1”을 삭제하고, 행정사무관 “344”를 “343”으로, 행정주사보 “626”을 “625”로, 행정서기 “265”를 “262”로 하며, 기능직 계 “5,922”를 “5,908”로, 8등급 기계원 “85”를 “84”로, 10등급 운전원 “444”를 “441”로, 10등급 위생원 “1,178”을 “1,175”로, 10등급 사무보조원 “1,840”을 “1,835”로, 10등급 방호원 “654”를 “652”로 하고, 2. 국립대학교 총계 “22,472”를 “22,414”로, 교육공무원 계 “12,717”을 “12,679”로, 고등학교교사 “526”을 “521”로, 중학교교사 “332”를 “327”로, 교육연구관 “33”을 “30”으로, 교육연구사 “90”을 “65”로 하며, 일반직 계 “5,328”을 “5,322”로 하고, “이사관、부이사관、교수、부교수、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1”을 삭제하며, 행정사무관 “294”를 “293”으로, 행정주사보 “444”를 “443”으로, 행정서기 “196”을 “193”으로 하고, 기능직 계 “4,262”를 “4,248”로, 8등급 기계원 “54”를 “53”으로, 10등급 운전원 “302”를 “299”로, 10등급 위생원 “894”를 “891”로, 10등급 사무보조원 “1,334”를 “1,329”로, 10등급 방호원 “434”를 “432”로 하며, 3. 국립대학 총계 “2,673”을 “2,672”로, 교육공무원 계 “1,508”을 “1,507”로, 교육연구사 “13”을 “12”로 하고, 4. 교육대학 총계 “1,918”을 “1,916”으로, 교육공무원 계 “1,244”를 “1,242”로, 국민학교 교사 “308”을 “306”으로 한다.

②내지 ⑩생략

**부칙** <제13866호,1993. 2. 24.>

이 영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51호,1993. 8. 9.>(경제기획원직제등일부개정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운전원、체신원、철도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감축되는 기능직 10등급 운전원、체신원、철도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

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생략

**부칙** <제14128호,1994. 1. 17.>(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국립의각급학교공무원정원표중 " 행정사무관 " 을 " 교육행정사무관 " 으로, " 행정주사 " 를 " 교육행정주사 " 로, " 행정주사보 " 를 " 교육행정주사보 " 로, " 행정서기 " 를 " 교육행정서기 " 로, " 행정서기보 " 를 " 교육행정서기보 " 로 한다.

③생략

**제3조** (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학술원사무국, 국립의 각급학교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행정사무관은 교육행정사무관으로, 행정주사는 교육행정주사로, 행정주사보는 교육행정주사보로, 행정서기는 교육행정서기로, 행정서기보는 교육행정서기보로 이 영 시행일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193호,1994. 3. 1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부칙 제2항의 규정은 199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해직된 교원의 채용을 위한 별도정원) 노동조합활동과 관련하여 면직된 교원의 특별채용을 위한 교사 1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에 의한 정원외에 국립고등학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당해 정원은 그에 대한 최초의 결원이 발생한 때에 소멸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356호,1994. 8. 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97호,1994. 12. 31.>(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국립의각급학교공무원정원표의 1. 총괄표란중 총계 “28,959”를 “28,749”로, 교육공무원 계 “17,950”을 “17,743”으로, 대학 “14,483”을 “14,276”으로, 총장 “35”를 “34”로,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전임강사 “11,633”을 “11,467”로, 조교 “2,815”를 “2,775”로, 별정직 계 “246”을 “243”으로, 예비군담당요원(5급 또는 6급상당) “110”을 “108”로, 예비군담당요원(8급 또는 9급상당) “110”을 “109”로 하고, 동표의 8. 공립대학란을 삭제한다.

**부칙** <제14586호,1995. 4. 12.>(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국립의각급학교공무원정원표 1. 총괄표란중 기능직란의 9등급 화공원 3 다음에 “9등급 교환원 4”ㆍ“9등급 운전원 19”ㆍ“9등급 보건원 4”ㆍ“9등급 간호조무원 4”ㆍ“9등급 위생원 52”ㆍ“9등급 사무보조원 80” 및 “9등급 방호원 32”를 각각 신설하고, 동란중 10등급 교환원 “77”을 “73”으로, 10등급 운전원 “386”을 “367”로, 10등급 보건원 “84”를 “80”으로, 10등급 간호조무원 “77”을 “73”으로, 10등급 위생원 “1,023”을 “971”로, 10등급 사무보조원 “1,606”을 “1,526”으로, 10등급 방호원 “631”을 “599”로 한다.

별표 국립의각급학교공무원정원표 2. 국립대학란중 기능직란의 9등급 화공원 3 다음에 “9등급 교환원 4”ㆍ“9등급 운전원 15”ㆍ“9등급 보건원 3”ㆍ“9등급 간호조무원 4”ㆍ“9등급 위생원 43”ㆍ“9등급 사무보조원 68” 및 “9등급 방호원 25”를 각각 신설하고, 동란중 10등급 교환원 “68”을 “64”로, 10등급 운전원 “310”을 “295”로, 10등급 보건원 “64”를 “61”로, 10등급 간호조무원 “76”을 “72”로, 10등급 위생원 “837”을 “794”로, 10등급 사무보조원 “1,351”을 “1,283”으로, 10등급 방호원 “513”을 “488”로 한다.

별표 국립의각급학교공무원정원표 3. 교육대학란중 기능직란의 8등급 기계원 10 다음에 “9등급 운전원 2”ㆍ“9등급 위생원 4”ㆍ“9등급 사무보조원 6” 및 “9등급 방호원 3”을 각각 신설하고, 동란중 10등급 운전원 “39”를 “37”로, 10등급 위생원 “82”를 “78”로, 10등급 사무보조원 “111”을 “105”로, 10등급 방호원 “54”를 “51”로 한다.

별표 국립의각급학교공무원정원표 4. 국립전문대학란중 기능직란의 8등급 통신원 1 다음에 “9등급 운전원 1”ㆍ“9등급 위생원 2”ㆍ“9등급 사무보조원 3” 및 “9등급 방호원 1”을 각각 신설하고, 동란중 10등급 운전원 “15”를 “14”로, 10등급 위생원 “36”을 “34”로, 10등급 사무보조원 “66”을 “63”으로, 10등급 방호원 “19”를 “18”로 한다.

별표 국립의각급학교공무원정원표 5. 국립고등학교란중 기능직란의 9등급 기계원 1 다음에 "9등급 운전원 1"、"9등급 위생원 2"、"9등급 사무보조원 2" 및 "9등급 방호원 2"를 각각 신설하고, 동란중 10등급 운전원 "12"를 "11"로, 10등급 위생원 "49"를 "47"로, 10등급 사무보조원 "45"를 "43"으로, 10등급 방호원 "36"을 "34"로 한다.

별표 국립의각급학교공무원정원표 6. 국립특수학교란중 기능직란의 8등급 통신원 1 다음에 "9등급 보건원 1"、"9등급 위생원 1"、"9등급 사무보조원 1" 및 "9등급 방호원 1"을 각각 신설하고, 동란중 10등급 보건원 "12"를 "11"로, 10등급 위생원 "19"를 "18"로, 10등급 사무보조원 "31"을 "30"으로, 10등급 방호원 "9"를 "8"로 한다.

**부칙** <제14661호,1995. 6. 1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교육행정주사 3인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립대학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교육행정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공립 각급학교의 국가공무원정원표중 1. 총괄표의 총계 "261,281"을 "261,229"로, 교육공무원 계 "261,281"을 "261,229"로 하고, 2. 중학교·고등학교의 총계 "119,555"를 "119,525"로, 교육공무원 계 "119,555"를 "119,525"로, 교사 "113,586"을 "113,556"으로 하며, 4. 국민학교의 총계 "135,883"을 "135,861"로, 교육공무원 계 "135,883"을 "135,861"로, 교사 "123,574"를 "123,552"로 한다.

**부칙** <제14930호,1996. 2. 2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의 개정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1,709인(일반직 또는 교육전문직 1,156, 별정직 13, 기능직 540)중 법률 제4350호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 부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자외에 196인(일반직 또는 교육전문직 43, 기능직 153)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립대학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5114호,1996. 7. 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 영에 의하여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33인(서기관 5, 공업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 1, 건축사무관ㆍ토목사무관ㆍ전기사무관 또는 기계사무관 1, 교육행정주사 2, 기계주사 2, 토목주사 1, 건축주사1, 약무주사보 1, 선박주사보 1, 환경서기 1, 6등급기관장 1, 7등급 통신장 1, 7등급선장 2, 7등급 기관장 1, 8등급 선원 3, 10등급 전기원 1, 10등급 기계원 1, 10등급선원 3, 10등급 기관원 3, 10등급 사무보조원 1)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립대학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별정직 예비군담당요원(5급상당 또는 6급상당) 1인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6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5294호,1997. 2. 27.>

①(시행일) 이 영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각급학교별 정원중 감축되는 정원 175인(간호주사보 1, 축산주사보 2, 건축주사보 1, 교육행정서기 34, 보건서기 1, 건축서기 2, 교육행정서기보 6, 사서서기보 7, 기계서기보 2, 7등급 통신장 1, 9등급화공원 1, 10등급 건축원 2, 10등급 교환원 4, 10등급 전기원 3, 10등급 기계원 4, 10등급 농림원 3, 10등급 위생원 46, 10등급 사무원 28, 10등급 방호원 27)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5305호,1997. 3. 20.>(기능직공무원정원감축을위한각급행정기관직제의 일부개정령)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감축되는 기능직 교환원ㆍ운전원ㆍ위생원ㆍ사무원 및 방호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5462호,1997. 8. 13.>(실무인력조정등을위한중앙행정기관등직제의일부개정령)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당해 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정원이 당해 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5595호,1997. 12. 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31호,1998. 2. 12.>
①(시행일) 이 영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감축되는 정원 140인(교육행정서기 10, 사서서기 1, 기계서기 5, 전기서기 5, 토목서기 1, 건축서기 5, 교육행정서기보 8, 전산서기보 2, 사서서기보 7, 화공서기보 1, 식품위생서기보 2, 의료기술서기보 1, 환경서기보 1, 선박서기보 2, 10등급 운전원 10, 10등급 위생원 36, 10등급 사무원 23, 10등급 방호원 20)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당해 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5718호,1998. 2. 28.>
①(시행일) 이 영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3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099호,1999. 2. 5.>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978인(중ㆍ고등학교 교사 1, 교육연구관 30, 교육연구사 70, 일반직 6급 43, 7급 20, 8급 52, 9급 17, 별정직 5급상당 또는 6급상당 11, 6급상당 2, 8급상당 2, 8급상당 또는 9급상당 6, 기능직 기능7급 3, 기능8급 2, 기능9급 13, 기능10급 706)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2월 29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999년 8월 31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728호,2000. 2. 28.>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축되는 정원 509인(일반직 6급 16, 7급 28, 8급 61, 9급 16, 별정직 6급상당 1, 8급상당 1, 기능직 기능6급 7, 기능9급 47, 기능10급 332)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1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2000년 8월 31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공무원의 이체) 별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축되는 정원 11인(기능6급 4, 기능7급 4, 기능8급 3)은 2000년 3월 1일부터 기상청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기상청에 이체한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기상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중 “ 9등급 ” 및 “ 10등급 ”을 각각 “ 기능9급 ” 및 “ 기능10급 ”으로 한다.

별표 3중 총계 “ 737 ”을 “ 748 ”로 하고, 기능직 계 “ 146 ”을 “ 157 ”로 하며, 그 다음에 “ 기능6급 4 ”, “ 기능7급 4 ”, “ 기능8급 3 ”을 각각 신설하고, “ 9등급 ” 및 “ 10등급 ”을 각각 “ 기능9급 ” 및 “ 기능10급 ”으로 한다.

**부칙** <제17115호,2001. 1. 29.>(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총계 “ 26,595 ”를 “ 26,581 ”로 하고, 별정직 계 “ 192 ”를 “ 180 ”으로, 예비군담당(5급상당 또는 6급상당) “ 89 ”를 “ 77 ”로 하며, 일반직 계 “ 3,689 ”를 “ 3,687 ”로 하고, 서기관 “ 88 ”을 “ 86 ”으로, 서기관 또는 교육행정사무관 “ 32 ”를 “ 31 ”로, 공업서기관、시설서기관、기계서기관、전기사무관、토목사무관 또는 건축사무관 “ 4 ”를 “ 5 ”로 한다.

②내지 <152>생략

**부칙** <제17143호,2001. 3. 2.>(국립학교설치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대학 “ 16,810 ”을 “ 16,888 ”로, 대학의 교수、부교수、조교수 또는 전임강사 “ 13,573 ”을 “ 13,638 ”로, 대학의 조교 “ 3,193 ”을 “ 3,206 ”으로, 전문대학 “ 478 ”을 “ 400 ”으로, 전문대학의 학장 “ 7 ”을 “ 6 ”으로, 전문대학의 교수、부교수、조교수 또는 전임강사 “ 390 ”을 “ 326 ”으로, 전문대학의 조교 “ 81 ”을 “ 68 ”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제17162호,2001. 3. 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69호,2001. 9. 29.>(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총계 “ 26,581 ”을 “ 26,571 ”로 하고, 별정직 계 “ 166 ”을 “ 156 ”으로 하며, 예비군담당(5급상당 또는 6급상당) “ 77 ”을 “ 67 ”로 한다.
③및 ④생략

**부칙** <제17531호,2002. 3.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15호,2003. 2. 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90호,2004. 2. 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총계 “ 453 ”을 “ 454 ”로 하고, 일반직 계 “ 299 ”를 “ 300 ”으로 하며, 6급 “ 102 ”를 “ 103 ”으로 한다.
별표 2중 총계 “ 140 ”을 “ 141 ”로 하고, 기능직 계 “ 30 ”을 “ 31 ”로 하며, 기능10급 “ 25 ”를 “ 26 ”으로 한다.

**부칙** <제18723호,2005. 2. 28.>(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총계 “ 28,870 ”을 “ 28,859 ”로 하고, 별정직 계 “ 137 ”을 “ 127 ”로 하며, 예비군담당(5급상당 또는 6급상당) “ 54 ”를 “ 45 ”로, 예비군담당(8급상당 또는 9급상당) “ 40 ”을 “ 39 ”로 하고, 일반직 계 “ 3,757 ”을 “ 3,756 ”으로 하며, 서기관 또는 교육행정사무관 “ 32 ”를 “ 31 ”로 한다.

③생략

**부칙** <제18725호,2005. 2.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364호,2006. 2. 28.>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영양교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감축되는 정원 12인(식품위생서기 12)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현원이 영양교사로 전환될 때까지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당학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9596호,2006. 6. 30.>(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 등에 따른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총정원의 한도란 중 “281인”을 “286인”으로 한다.

**부칙** <제19912호,2007. 2. 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이 영에 따라 감축되는 정원 14인(식품위생주사보 4, 식품위생서기 10)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현원이 영양교사로 전환될 때까지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 당시 이 영에 따라 감축되는 정원 6인(행정6급 1, 기능10급 사무원 5)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8년 2월 29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643호,2008. 2. 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 영에 따라 감축되는 정원 14명(교육연구관 2명, 교육연구사 6명, 교육행정주사 1명, 교육행정주사보 1명, 교육행정서기 1명, 기능직 10급 사무원 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9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현원

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1214호,2008. 12. 31.>(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4* 까지 생략

4(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중 " 교육인적자원부령 "을 각각 " 교육과학기술부령 "으로 한다.

5)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제22065호,2010. 2. 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678호,2011. 2. 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116호,2011. 9. 6.>(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 「국립학교 설치령」 제9조제1항, 「서울대학교 설치령」 제11조제1항 "을 " 「국립학교 설치령」 제9조제1항 "으로, " 서울대학교 및 한국교원대학교 "를 " 한국교원대학교 "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23404호,2011. 12.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3,077명(총장 1명,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전임강사 1,923명, 조교 419명, 별정직 11명, 고위공무원단 2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72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 제10413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제3항 및 대통령령 제23116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제7항에 따라 교원인 공무원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설립된 이후 5년간, 교원이 아닌 공무원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설립된 이후 1년간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교육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부칙** <제23636호,2012. 2. 28.>

이 영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 중 전임강사의 직명을 삭제하는 부분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809호,2012. 5.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립국악고등학교 등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악고등학교ㆍ국악학교ㆍ전통예술고등학교 및 전통예술학교를 설치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른 국악고등학교ㆍ국악학교ㆍ전통예술고등학교 및 전통예술학교에 두는 공무원 137명(교장 2명, 교감 4명, 교사 103명, 5급 2명, 6급 3명, 7급 5명, 8급 4명, 기능직 14명)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문화체육관광부로 이체한다.

② 중소기업청장 소속으로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ㆍ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를 설치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른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ㆍ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에 두는 공무원 479명(교장 3명, 교감 5명, 교사 340명, 5급 3명, 6급 12명, 7급 3명, 8급 14명, 9급 4명, 기능직 95명)은 중소기업청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중소기업청으로 이체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가공무원총정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다음 각 목의 교원 정원

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원의 정원

나.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원의 정원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교원의 정원 외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에 두는 공무원인 교원의 정원

**부칙** <제24383호,2013. 2. 20.>

이 영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467호,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부산해사고등학교 및 인천해사고등학교를 설치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른 부산해사고등학교 및 인천해사고등학교의 공무원 156명(교장 2명, 교감 2명, 교사 107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45명)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해양수산부로 이체한다.

**부칙** <제24945호,2013. 12.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42명(3급 또는 4급 이하 4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립의 각급 학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5108호,2014. 1.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23명(교장 4명, 교감 4명, 교사 196명, 3급 또는 4급 이하 19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 제11621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제3항 및 대통령령 제25105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교원인 공무원은 2014년 1월 24일 이후 5년간, 교원이 아닌 공무원은 2014년 1월 24일 이후 1년간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교육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5219호,2014. 2. 27.>

이 영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967호,2015.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57명(3급 또는 4급 이하 57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립의 각급 학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6111호,2015. 2. 26.>

이 영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410호,2015. 7. 20.>(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총계 “25,959”를 “25,954”로 하고, 일반직 계 “6,221”을 “6,216”으로 하며, 전문경력관 “75”를 “70”으로 한다.

**부칙** <제26660호,2015. 11. 20.>(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총계 “25,954”를 “25,950”으로 하고, 일반직 계 “6,216”을 “6,212”로 하며, 전문경력관 “70”을 “66”으로 한다.

**부칙** <제26780호,2015. 12. 30.>(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정원 57명(5급 1명, 6급 17명, 7급 12명, 8급 8명, 9급 19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립의 각급 학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26조** 부터 제31조까지 생략

**부칙** <제26999호,2016. 2. 29.>

이 영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685호,2016. 12. 27.>(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0조 생략

**제31조**(「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정원 57명(5급 2명, 6급 16명, 7급 12명, 8급 8명, 9급 19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립의 각급 학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2조** 부터 제34조까지 생략

**부칙** <제27871호,2017. 2. 28.>

이 영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673호,2018. 2. 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131호,2018. 9. 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598호,2019. 2. 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470호,2020. 2. 25.>

이 영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502호,2021. 2. 25.>

이 영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498호,2022. 2. 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921호,2022. 9. 27.>(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총계 “ 26,561 ”을 “ 26,556 ”으로 하고, 일반직 계 “ 6,218 ”을 “ 6,213 ”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 6,118 ”을 “ 6,113 ”으로 한다.

**부칙** <제33072호,2022. 12. 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55명(6급 18명, 7급 13명, 8급 10명, 9급 1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립의 각급 학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3305호,2023. 2.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 정원에 관한 특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7월 31일까지는 별표 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33867호,2023. 11.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7명(고위공무원단 18명, 3급 또는 4급 이하 9명) 중 초과현원 9명(고위공무원단 6명, 3급 또는 4급 이하 3명)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교육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3973호,2023. 12.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55명(5급 1명, 6급 17명, 7급 13명, 8급 10명, 9급 13명, 학예연구사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립의 각급 학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4236호,2024. 2.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특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7월 31일까지는 별표 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35071호,2024. 12.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55명(5급 1명, 6급 16명, 7급 13명, 8급 10명, 9급 13명, 연구사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립의 각급 학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5289호,2025. 2.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특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 5월 31일까지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35951호,2025. 12.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095호,2026. 2. 19.>

이 영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별표 1] <개정 2026. 2. 19.>

국립의 각급 학교 공무원 정원표(제2조제1항 관련)

| | |
|---|---|
| 총계 | 27,009 |
| 교육공무원 계 | 20,843 |
| 대학 계 | 19,102 |
| 총장 | 36 |
|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 | 16,191 |
| 조교 | 2,875 |
| 중·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계 | 801 |
| 교장 | 17 |
| 교감 | 17 |
| 교사 | 767 |
|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계 | 428 |
| 교장 | 16 |
| 교감 | 16 |
| 교사 | 396 |
| 유치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계 | 19 |
| 원장 | 1 |
| 원감 | 3 |
| 교사 | 15 |
| 특수학교 계 | 385 |
| 교장 | 6 |
| 교감 | 10 |
| 교사(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특수학급 담당 특수교사를 포함한다) | 369 |
| 각급 학교에 두는 보건교사 등 계 | 87 |

| | |
|---|---|
| 보건교사 | 41 |
| 영양교사 | 31 |
| 사서교사 | 12 |
| 전문상담교사 | 3 |
| 교육전문직 계 | 21 |
| 교육연구관 | 7 |
| 교육연구사 | 14 |
| 별정직 계 | 26 |
| 고위공무원단 | 17 |
|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이하 | 9 |
| 일반직 계 | 6,140 |
| 3급 또는 4급 이하 | 6,058 |
| 전문경력관 | 82 |

■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별표 1의2] 삭제 <2025. 12. 30.>

■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별표 2] <개정 2026. 2. 19.>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 한시정원표(제3조 관련)

1. 제3조제1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8년 2월 29일)

| | |
|---|---|
| 총계 | 19 |
| 교육공무원 계 | 19 |
| 대학 계 | 19 |
|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 | 14 |
| 조교 | 5 |

2. 제3조제2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30년 2월 28일)

| | |
|---|---|
| 총계 | 53 |
| 교육공무원 계 | 53 |
| 대학 계 | 53 |
|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 | 38 |
| 조교 | 15 |

3. 제3조제3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30년 2월 28일)

| | |
|---|---|
| 총계 | 65 |
| 교육공무원 계 | 65 |
| 대학 계 | 65 |
|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 | 47 |
| 조교 | 18 |

4. 제3조제4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8년 12월 31일)

| | |
|---|---|
| 총계 | 18 |
| 일반직 계 | 18 |
| 5급 이하 | 18 |

5. 제3조제5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30년 2월 28일)

| | |
|---|---|
| 총계 | 41 |
| 일반직 계 | 41 |
| 4급 이하 | 41 |

#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3. 1.] [대통령령 제36095호, 2026. 2. 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1. 8. 16.>

**제2조(공무원의 정원)** ①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1., 2013. 3. 23., 2018. 2. 20., 2021. 2. 25., 2023. 11. 16., 2024. 2. 27., 2024. 12. 17., 2025. 2. 25.>

②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정원은 100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포함한다) 정원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을 포함한다) 정원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개정 2008. 12. 31., 2011. 12. 28., 2013. 3. 23., 2025. 2. 25., 2026. 2. 19.>

[전문개정 2008. 2. 22.]

**제3조(한시정원)** ① 국립경국대학교로 통합되는 기존 경북도립대학교 재학생의 교육수요 대응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2월 29일까지 별표 2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둔다. <개정 2025. 12. 30.>

② 전남도립대학교를 통합하는 국립목포대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30년 2월 28일까지 별표 2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둔다.<신설 2026. 2. 19.>

③ 경남도립거창대학 및 경남도립남해대학을 통합하는 국립창원대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30년 2월 28일까지 별표 2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둔다.<신설 2026. 2. 19.>

④ 「국립학교 설치령」 제9조의2에 따른 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신설 2025. 12. 30., 2026. 2. 19.>

⑤ 「국립학교 설치령」 제9조의3에 따른 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신설 2026. 2. 19.>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25. 12. 30., 2026. 2. 19.>

[본조신설 2025. 2. 25.]

**부칙** <제4305호,1969. 11. 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46호,1970. 2. 2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87호,1970. 2. 28.>
이 영은 197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71호,1970. 4. 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96호,1971. 1. 2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42호,1971. 3. 2.>
이 영은 197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578호,1971. 3. 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76호,1971. 6. 1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85호,1971. 9. 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44호,1971. 11. 1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61호,1971. 12. 6.>
이 영은 1971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025호,1972. 2. 1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동일하게 될 때까지 그 초과된 현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6071호,1972. 2. 1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19호,1972. 3. 2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99호,1972. 7. 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78호,1972. 11. 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41호,1972. 12. 3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32호,1973. 3. 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12호,1973. 5. 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공립고등학교 공무원 정원ㆍ공립중학교 공무원 정원ㆍ공립국민학교 공무원 정원중 이 영에 의하여 감축되는 정원수에 대한 현원은 지방공무원으로 바꾸어 임명될 때까지 그 현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7052호,1974. 1. 2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84호,1974. 3. 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86호,1974. 10. 2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99호,1974. 11. 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53호,1975. 2. 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67호,1975. 2. 28.>
①(시행일) 이 영은 197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서울대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현원이 서울대학교에 배정된 공무원의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된 현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7704호,1975. 7. 2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11호,1975. 9. 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08호,1976. 3. 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18호,1976. 8. 2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59호,1976. 9. 3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국립 및 공립 각급학교 공무원정원표중 국립실업고등전문학교ㆍ전문학교 공무원정원과 공립실업고등전문학교ㆍ전문학교 공무원정원에 관하여는 1976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399호,1976.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59호,1977. 2. 28.>
이 영은 197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06호,1977. 9. 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공립전문학교 공무원정원중 이 영에 의하여 감축되는 일반직공무원 및 고용원의 인원수에 대한 현원은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될 때까지 그 현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그 기간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3월을 초과할 수 없다.

**부칙** <제8867호,1978. 3. 3.>
이 영은 197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362호,1979. 3. 8.>
이 영은 197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519호,1979. 6. 2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48호,1980. 2. 1.>(체신부직제등일부개정령)
①(시행일) 이 영은 198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및 ③생략

**부칙** <제9791호,1980. 2. 27.>
이 영은 19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96호,1980. 5. 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19호,1980. 9. 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총리령 제226호 잡급직원정원령의 별표 29 문교부잡급직원정원표중 국립각급학교란의 7중 3갑(상당) 16인은 1980년 12월 31일에 감축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이전에 이 영에 의하여 증원된 공무원정원이 충원되는 때에는 그 범위안에서 충원된 때에 잡급직원정원이 감축되는 것으로 한다.

**부칙** <제10204호,1981. 2. 1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05호,1981. 2. 26.>(내무부직제등일부개정령)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잡급직원은 1981년 12월 31일까지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전에 이 영에 의하여 증원되는 공무원정원이 충원되는 때에는 그 범위안에서 충원된 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잡급직원의 정원이 감축된 것으로 본다.

④(증원되는 공무원의 충원) 이 영에 의하여 충원되는 공무원중 별정직공무원과 고용원의 충원에 있어서는 이 영 시행당시 각 기관에 재직중인 잡급직원을 우선 채용하여야 한다.

⑤(신규 임용시 연령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잡급직원으로서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용원으로 임용되는 자에 대하여는 채용시험의 응시연령 또는 신규임용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부칙** <제10222호,1981. 2. 28.>

이 영은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92호,1981. 12. 31.>(세무대학의조직과운영에관한규정)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국립및공립각급학교공무원정원표중 1. 총괄표란의 총계 "202,041"을 "202,002"로, 별정직계 "195,288"을 "195,269"로, 교육대학·전문대학란의 학장 "48"을 "47"로,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 "1,860"을 "1,846"으로, 조교 "210"을 "208"로, 별정직란의 군사교육교관(3급을류 또는 4급갑류상당) "161"을 "160"으로, 군사교육조교(5급갑류 또는 5급을류상당) "141"을 "140"으로 하고, 2급 내지 5급 계 "3,337"을 "3,325"로, 행정사무관 "209"를 "208"로, 행정주사 "484"를 "482"로 하며, "행정주사 또는 세무주사 1"을 삭제하고, 건축기사 "70"을 "69"로, 행정주사보 "432"를 "430"으로, 행정서기 "245"를 "240"으로, 고용원 "3,315"를 "3,307"로 한다.

동표중 5. 국립전문대학란의 총계 "2,125"를 "2,086"으로, 별정직계 "1,353"을 "1,334"로, 전문대학란의 학장 "19"를 "18"로,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 "1,085"를 "1,071"로, 조교 "153"을 "151"로, 별정직란의 군사교육교관(3급을류 또는 4급갑류상당) "22"를 "21"로, 군사교육조교(5급갑류 또는 5급을류상당) "19"를 "18"로 하고, 3급 내지 5급 계 "227"을 "215"로, 행정사무관 "17"을 "16"으로,

행정주사 “76”을 “74”로 하며, “행정주사 또는 세무주사 1”을 삭제하고, 건축기사 “16”을 “15”로, 행정주사보 “63”을 “61”로, 행정서기 “29”를 “24”로, 고용원 “508”을 “500”으로 한다.

③내지 ④생략

**부칙** <제10743호,1982. 2. 27.>

이 영은 198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60호,1983. 2. 23.>

이 영은 198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38호,1983. 10. 7.>(경제기획원직제등일부개정령)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고용직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각 기관별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83년 10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373호,1984. 2. 29.>

이 영은 198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51호,1985. 2. 27.>

이 영은 198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860호,1986. 2. 28.>

①(시행일) 이 영은 198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교육공무원중 3,400인(국민학교교사 1,400인, 중학교교사 1,570인, 고등학교교사 430인)의 증원에 관한 사항은 198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학교설치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중 “간호기정”을 “간호원”으로, “약무기정 또는 약무기좌”를 “약사”로 한다.

**부칙** <제12082호,1987. 2. 27.>

①(시행일) 이 영은 198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교육공무원중 3,500인(국민학교교사 500인, 중학교교사 2,000인, 고등학교교사 1,000인)의 증원에 관한 사항은 198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 정원 1인(이사관ㆍ부이사관ㆍ시설기감 또는 시설부기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87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2284호,1987. 12. 5.>(중앙기상대직제등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341호,1987. 12. 31.>(경제기획원직제등일부개정령)

이 영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383호,1988. 1. 29.>

이 영은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교육공무원중 4,937인(국민학교 교사581인, 중학교교사 2,935인, 고등학교교사 1,421인)의 증원에 관한 사항은 198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631호,1989. 2. 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교육공무원중 9,500인(중학교교사 6,650인, 고등학교교사 2,850인)의 증원에 관한 사항은 198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경찰대학의조직과학사운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경찰대학공무원정원표중 “ 군사교육교관(5급상당) ”을 “ 예비군담당요원 (5급상당) ”으로, “ 군사교육조교(8급상당) ”를 “ 예비군담당요원(8급상당) ”으로 한다.

②세무대학의조직과운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세무대학공무원정원표중 “ 군사교육교관(5급상당 또는 6급상당) ”을 “ 예비군담당요원(5급상당 또는 6급상당) ”으로, “ 군사교육조교(8급상당 또는 9급상당) ”를 “ 예비군담당요원(8급상당 또는 9급상당) ”으로 한다.

**제3조** (군사교육교관 및 조교정원의 감축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군사교육교관 68인(별정직 3급상당 9, 별정직 4급상당 16, 별정직 5ㆍ6급 36, 별정직 8ㆍ9급 7)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0년 2월 말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

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 (예비군담당요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정직 예비군담당요원 203명중 일부에 대하여는 1990년 2월 말일까지 시설관리 또는 후생관리업무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12724호,1989. 6. 15.>(문교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국립 및 공립각급학교공무원정원표중 1. 총괄표 교육공무원 계 "258,446"을 "258,445"로, 교육전문직 "121"을 "120"으로 하고, "장학관 1"을 삭제하며, 일반직 계 "5,186"을 "5,187"로,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10" 다음에 "이사관·부이사관·교수·부교수·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1"을 신설하고, 2. 국립대학교 공무원 계 "9,636"을 "9,635"로 하며, "장학관 1"을 삭제하고, 일반직 계 "3,986"을 "3,987"로 하며,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10" 다음에 "이사관·부이사관·교수·부교수·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1"을 신설한다.

②생략

**부칙** <제12733호,1989. 6. 17.>(경제기획원직제등일부개정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고용직공무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현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때까지 그 현원에 대한 고용직공무원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그 현원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은 이를 충원할 수 없다.

**제3조** (잡무직렬 기능직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2704호 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부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직렬의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자는 이 영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등급으로 재직할 수 있다.

**제4조** 및 제5조 생략

**부칙** <제12739호,1989. 6. 30.>(국립의료원직제등일부개정령)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직급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종전의 의료직공무원은 이 영 시행후 이 영에 의한 직급으로 임용될 때까지 종전의 직급에서 당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부칙** <제12800호,1989. 9. 5.>(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도의교육위원회직제)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국립 및 공립각급학교공무원정원표중 2. 국립대학교란의 총계 "16,860"을 "16,874"로, 교육공무원계 "9,635"를 "9,649"로, 국민학교교사 "59"를 "73"으로 하고, 13. 공립국민학교란의 총계 및 교육공무원계 "133,185"를 "133,171"로, 교사 "119,732"를 "119,718"로 한다.

**부칙** <제12944호,1990. 3. 7.>

이 영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교육공무원중 1,800인(중학교교사 800인, 고등학교교사 1,000인)의 증원에 관한 사항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958호,1990. 3. 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사편찬위원회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국사편찬위원회공무원정원표중 총계 "90"을 "89"로 하고, 일반직계 "63"을 "62"로 하며, "건축기좌 1"을 삭제하고, 행정주사 "2"를 "3"으로 하며, "기계기사 1"을 삭제하고, "행정주사보 2" 다음에 "전산처리사보 1"을 신설하며, "건축기사보 1"을 삭제한다.

②중앙교육연수원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앙교육연수원공무원정원표중 총계 "109"를 "110"으로 하고, 일반직계 "20"을 "21"로 하며, "전기기사 1" 다음에 "기계기사 1"을 신설한다.

③문교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문교부공무원정원표중 행정주사 "74"를 "91"로 하고, 행정주사보 "55"를 "38"로 한다.

④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도의교육위원회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건축기좌로"를 "건축기좌ㆍ토목기좌ㆍ전기기좌 또는 기계기좌로"로 한다.

[별표 1] 교육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과 교육장소속하에 두는 국가공무원정원표중 1. 총괄표의 총계 "3,726"을 "3,727"로, 일반직계 "123"을 "124"로 하고 "건축기좌 12" 다음에 "건축기좌ㆍ토목기좌ㆍ전기기좌 또는 기계기좌 1"을 신설하며, 2. 교육위원회의 총계 "938"을 "939"로, 일반직계 "107"을 "108"로 하고, "건축기좌 12" 다음에 "건축기좌ㆍ토목기좌ㆍ전기기좌 또는 기계기좌 1"을 신설한다.

**부칙** <제13023호,1990. 6. 20.>(중앙교육평가원직제)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국립및공립각급학교공무원정원표중 1. 총괄표 총계 "276,630"을 "276,626"으로, 교육공무원계 "265,157"을 "265,153"으로, 대학(교) "12,440"을 "12,436"으로, 교수·부교수·조교수 또는 전임강사 "9,897"을 "9,893"으로, 사서서기 "142"를 "140"으로, 학예연구사 "11"을 "13"으로 하고, 2. 국립대학교란의 사서서기 "97"을 "95"로, 학예연구사 "11"을 "13"으로 하며, 3. 국립대학 총계 "4.482"를 "4,478"로, 교육공무원계 "2,792"를 "2,788"로, 교수·부교수·조교수 또는 전임강사 "2,122"를 "2,118"로 한다.

**부칙** <제13323호,1991. 2. 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국사편찬위원회공무원정원표중 총계 "89"를 "91"로 하고, 별정직 계 "4"를 "5"로 하며, "사진기사(7급상당) 2" 다음에 "표구사(7급상당) 1"을 신설하고, 기능직 계 "22"를 "23"으로 하며, "10등급 방호원 4" 다음에 "10등급 교환원 1"을 신설한다.

**부칙** <제13451호,1991. 8. 16.>(지방교육행정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을 "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으로 한다.

제1조중 "각급학교에"를 "국립의 각급학교에"로 한다.

제2조중 "국립 및 공립"을 "국립의"로 한다.

[별표]의 제명중 "국립 및 공립"을 "국립의"로 하고, 1.총괄표의 총계 "281,916"을 "28,742"로, 교육공무원 계 "269,910"을 "16,736"으로 하며,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44,113"을 "1,023"으로, 교장 "857"을 "19"로, 교감 "953"을 "23"으로, 교사 "42,303"을 "981"로 하고, 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65,590"을 "396"으로, 교장 "1,809"를 "9"로, 교감 "1,927"을 "10"으로, 교사 "65,854"를 "377"로 하며, 국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137,818"을 "472"로,

교장 “6,311”을 “17”로, 교감 “7,118”을 “20”으로, 교사 “124,389”를 “436”로 하고, 유치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3,555”를 “11”로 하며, “원장1” 및 “원감30”을 각각 삭제하고, 교사 “3,524”를 “11”로 하며, “10. 공립고등학교”、“11. 공립중학교”、“12. 공립특수학교”、“13. 공립국민학교” 및 “14. 공립유치원”의 정원표를 각각 삭제한다.

②생략

**부칙** <제13479호,1991. 9. 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608호,1992. 3. 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교육부공무원정원표중 “사서보 1”을 “사서주사보 1”, “전산처리사보 또는 별정직(7급상당) 1”을 “전산주사보 1”로 한다.

[별표 2] 국사편찬위원회공무원정원표중 총계 “91”을 “98”로, 일반직 계 “62”를 “68”로, “사서관(5급) 1”을 “사서사무관 1”로, “사서 1”을 “사서주사 1”로, 행정주사보 “2”를 “4”로, “전산처리사보 1”을 “전산주사보 1”로, “사서보 2”를 “사서주사보 2”로 하고, 행정서기 2 다음에 “전산서기 1” 및 “사서서기 1”을 각각 신설하며, 편사연구사 또는 교육연구사 “27”을 “29”로, 기능직 계 “23”을 “24”로, 10등급 사무보조원 “12”를 “13”으로 한다.

[별표 3] 중앙교육평가원공무원정원표중 총계 “135”를 “136”으로, “전산처리사 2”를 “전산주사 2”로, “전산처리사보 2”를 “전산주사보 2”로, 기능직 계 “22”를 “23”으로 하고, 기능직 계 23 다음에 “10등급 교환원 1”을 신설한다.

[별표 5] 중앙교육연수원공무원정원표중 총계 “110”을 “111”로, “사서 1”을 “사서주사 1”로, 기능직 계 “38”을 “39”로, 10등급 운전원 “4”를 “5”로 한다.

③(군사교육교관 및 조교정원의 감축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군사교육교관 및 군사교육조교 19인(별정직 5급 또는 6급상당 8, 별정직 8급 또는 9급상당 11)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3년 2월 말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623호,1992. 3. 28.>(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국립의각급학교공무원정원표중 1. 총괄표의 총계 “29,802”를 “29,741”로, 교육공무원 계 “17,195”를 “17,154”로,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1,051”을 “1,046”으로, 교사 “1,007”을 “1,002”로, 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414”를 “409”로, 교사 “395”를 “390”으로, 국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480”을 “478”로, 교사 “443”을 “441”로, 교육전문직 “142”를 “113”으로, 교육연구관 “39”를 “36”으로, 교육연구사 “103”을 “77”로 하고, 일반직 계 “6,434”를 “6,428”로 하며, “이사관、부이사관、교수、부교수、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1”을 삭제하고, 행정사무관 “344”를 “343”으로, 행정주사보 “626”을 “625”로, 행정서기 “265”를 “262”로 하며, 기능직 계 “5,922”를 “5,908”로, 8등급 기계원 “85”를 “84”로, 10등급 운전원 “444”를 “441”로, 10등급 위생원 “1,178”을 “1,175”로, 10등급 사무보조원 “1,840”을 “1,835”로, 10등급 방호원 “654”를 “652”로 하고, 2. 국립대학교 총계 “22,472”를 “22,414”로, 교육공무원 계 “12,717”을 “12,679”로, 고등학교교사 “526”을 “521”로, 중학교교사 “332”를 “327”로, 교육연구관 “33”을 “30”으로, 교육연구사 “90”을 “65”로 하며, 일반직 계 “5,328”을 “5,322”로 하고, “이사관、부이사관、교수、부교수、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1”을 삭제하며, 행정사무관 “294”를 “293”으로, 행정주사보 “444”를 “443”으로, 행정서기 “196”을 “193”으로 하고, 기능직 계 “4,262”를 “4,248”로, 8등급 기계원 “54”를 “53”으로, 10등급 운전원 “302”를 “299”로, 10등급 위생원 “894”를 “891”로, 10등급 사무보조원 “1,334”를 “1,329”로, 10등급 방호원 “434”를 “432”로 하며, 3. 국립대학 총계 “2,673”을 “2,672”로, 교육공무원 계 “1,508”을 “1,507”로, 교육연구사 “13”을 “12”로 하고, 4. 교육대학 총계 “1,918”을 “1,916”으로, 교육공무원 계 “1,244”를 “1,242”로, 국민학교 교사 “308”을 “306”으로 한다.

②내지 ⑩생략

**부칙** <제13866호,1993. 2. 24.>

이 영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51호,1993. 8. 9.>(경제기획원직제등일부개정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운전원、체신원、철도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감축되는 기능직 10등급 운전원、체신원、철도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

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생략

**부칙** <제14128호,1994. 1. 17.>(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국립의각급학교공무원정원표중 " 행정사무관 " 을 " 교육행정사무관 " 으로, " 행정주사 " 를 " 교육행정주사 " 로, " 행정주사보 " 를 " 교육행정주사보 " 로, " 행정서기 " 를 " 교육행정서기 " 로, " 행정서기보 " 를 " 교육행정서기보 " 로 한다.

③생략

**제3조** (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학술원사무국, 국립의 각급학교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행정사무관은 교육행정사무관으로, 행정주사는 교육행정주사로, 행정주사보는 교육행정주사보로, 행정서기는 교육행정서기로, 행정서기보는 교육행정서기보로 이 영 시행일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193호,1994. 3. 1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부칙 제2항의 규정은 199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해직된 교원의 채용을 위한 별도정원) 노동조합활동과 관련하여 면직된 교원의 특별채용을 위한 교사 1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에 의한 정원외에 국립고등학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당해 정원은 그에 대한 최초의 결원이 발생한 때에 소멸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356호,1994. 8. 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97호,1994. 12. 31.>(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국립의각급학교공무원정원표의 1. 총괄표란중 총계 “28,959”를 “28,749”로, 교육공무원 계 “17,950”을 “17,743”으로, 대학 “14,483”을 “14,276”으로, 총장 “35”를 “34”로,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전임강사 “11,633”을 “11,467”로, 조교 “2,815”를 “2,775”로, 별정직 계 “246”을 “243”으로, 예비군담당요원(5급 또는 6급상당) “110”을 “108”로, 예비군담당요원(8급 또는 9급상당) “110”을 “109”로 하고, 동표의 8. 공립대학란을 삭제한다.

**부칙** <제14586호,1995. 4. 12.>(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국립의각급학교공무원정원표 1. 총괄표란중 기능직란의 9등급 화공원 3 다음에 “9등급 교환원 4”ㆍ“9등급 운전원 19”ㆍ“9등급 보건원 4”ㆍ“9등급 간호조무원 4”ㆍ“9등급 위생원 52”ㆍ“9등급 사무보조원 80” 및 “9등급 방호원 32”를 각각 신설하고, 동란중 10등급 교환원 “77”을 “73”으로, 10등급 운전원 “386”을 “367”로, 10등급 보건원 “84”를 “80”으로, 10등급 간호조무원 “77”을 “73”으로, 10등급 위생원 “1,023”을 “971”로, 10등급 사무보조원 “1,606”을 “1,526”으로, 10등급 방호원 “631”을 “599”로 한다.

별표 국립의각급학교공무원정원표 2. 국립대학란중 기능직란의 9등급 화공원 3 다음에 “9등급 교환원 4”ㆍ“9등급 운전원 15”ㆍ“9등급 보건원 3”ㆍ“9등급 간호조무원 4”ㆍ“9등급 위생원 43”ㆍ“9등급 사무보조원 68” 및 “9등급 방호원 25”를 각각 신설하고, 동란중 10등급 교환원 “68”을 “64”로, 10등급 운전원 “310”을 “295”로, 10등급 보건원 “64”를 “61”로, 10등급 간호조무원 “76”을 “72”로, 10등급 위생원 “837”을 “794”로, 10등급 사무보조원 “1,351”을 “1,283”으로, 10등급 방호원 “513”을 “488”로 한다.

별표 국립의각급학교공무원정원표 3. 교육대학란중 기능직란의 8등급 기계원 10 다음에 “9등급 운전원 2”ㆍ“9등급 위생원 4”ㆍ“9등급 사무보조원 6” 및 “9등급 방호원 3”을 각각 신설하고, 동란중 10등급 운전원 “39”를 “37”로, 10등급 위생원 “82”를 “78”로, 10등급 사무보조원 “111”을 “105”로, 10등급 방호원 “54”를 “51”로 한다.

별표 국립의각급학교공무원정원표 4. 국립전문대학란중 기능직란의 8등급 통신원 1 다음에 “9등급 운전원 1”ㆍ“9등급 위생원 2”ㆍ“9등급 사무보조원 3” 및 “9등급 방호원 1”을 각각 신설하고, 동란중 10등급 운전원 “15”를 “14”로, 10등급 위생원 “36”을 “34”로, 10등급 사무보조원 “66”을 “63”으로, 10등급 방호원 “19”를 “18”로 한다.

별표 국립의각급학교공무원정원표 5. 국립고등학교란중 기능직란의 9등급 기계원 1 다음에 "9등급 운전원 1"、"9등급 위생원 2"、"9등급 사무보조원 2" 및 "9등급 방호원 2"를 각각 신설하고, 동란중 10등급 운전원 "12"를 "11"로, 10등급 위생원 "49"를 "47"로, 10등급 사무보조원 "45"를 "43"으로, 10등급 방호원 "36"을 "34"로 한다.

별표 국립의각급학교공무원정원표 6. 국립특수학교란중 기능직란의 8등급 통신원 1 다음에 "9등급 보건원 1"、"9등급 위생원 1"、"9등급 사무보조원 1" 및 "9등급 방호원 1"을 각각 신설하고, 동란중 10등급 보건원 "12"를 "11"로, 10등급 위생원 "19"를 "18"로, 10등급 사무보조원 "31"을 "30"으로, 10등급 방호원 "9"를 "8"로 한다.

**부칙** <제14661호,1995. 6. 1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교육행정주사 3인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립대학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교육행정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공립 각급학교의 국가공무원정원표중 1. 총괄표의 총계 "261,281"을 "261,229"로, 교육공무원 계 "261,281"을 "261,229"로 하고, 2. 중학교·고등학교의 총계 "119,555"를 "119,525"로, 교육공무원 계 "119,555"를 "119,525"로, 교사 "113,586"을 "113,556"으로 하며, 4. 국민학교의 총계 "135,883"을 "135,861"로, 교육공무원 계 "135,883"을 "135,861"로, 교사 "123,574"를 "123,552"로 한다.

**부칙** <제14930호,1996. 2. 2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의 개정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1,709인(일반직 또는 교육전문직 1,156, 별정직 13, 기능직 540)중 법률 제4350호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 부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자외에 196인(일반직 또는 교육전문직 43, 기능직 153)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립대학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5114호,1996. 7. 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 영에 의하여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33인(서기관 5, 공업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 1, 건축사무관ㆍ토목사무관ㆍ전기사무관 또는 기계사무관 1, 교육행정주사 2, 기계주사 2, 토목주사 1, 건축주사1, 약무주사보 1, 선박주사보 1, 환경서기 1, 6등급기관장 1, 7등급 통신장 1, 7등급선장 2, 7등급 기관장 1, 8등급 선원 3, 10등급 전기원 1, 10등급 기계원 1, 10등급선원 3, 10등급 기관원 3, 10등급 사무보조원 1)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립대학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별정직 예비군담당요원(5급상당 또는 6급상당) 1인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6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5294호,1997. 2. 27.>

①(시행일) 이 영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각급학교별 정원중 감축되는 정원 175인(간호주사보 1, 축산주사보 2, 건축주사보 1, 교육행정서기 34, 보건서기 1, 건축서기 2, 교육행정서기보 6, 사서서기보 7, 기계서기보 2, 7등급 통신장 1, 9등급화공원 1, 10등급 건축원 2, 10등급 교환원 4, 10등급 전기원 3, 10등급 기계원 4, 10등급 농림원 3, 10등급 위생원 46, 10등급 사무원 28, 10등급 방호원 27)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5305호,1997. 3. 20.>(기능직공무원정원감축을위한각급행정기관직제의 일부개정령)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감축되는 기능직 교환원ㆍ운전원ㆍ위생원ㆍ사무원 및 방호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5462호,1997. 8. 13.>(실무인력조정등을위한중앙행정기관등직제의일부개정령)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당해 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정원이 당해 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5595호,1997. 12. 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31호,1998. 2. 12.>
①(시행일) 이 영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감축되는 정원 140인(교육행정서기 10, 사서서기 1, 기계서기 5, 전기서기 5, 토목서기 1, 건축서기 5, 교육행정서기보 8, 전산서기보 2, 사서서기보 7, 화공서기보 1, 식품위생서기보 2, 의료기술서기보 1, 환경서기보 1, 선박서기보 2, 10등급 운전원 10, 10등급 위생원 36, 10등급 사무원 23, 10등급 방호원 20)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당해 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5718호,1998. 2. 28.>
①(시행일) 이 영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3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099호,1999. 2. 5.>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978인(중ㆍ고등학교 교사 1, 교육연구관 30, 교육연구사 70, 일반직 6급 43, 7급 20, 8급 52, 9급 17, 별정직 5급상당 또는 6급상당 11, 6급상당 2, 8급상당 2, 8급상당 또는 9급상당 6, 기능직 기능7급 3, 기능8급 2, 기능9급 13, 기능10급 706)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2월 29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999년 8월 31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728호,2000. 2. 28.>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축되는 정원 509인(일반직 6급 16, 7급 28, 8급 61, 9급 16, 별정직 6급상당 1, 8급상당 1, 기능직 기능6급 7, 기능9급 47, 기능10급 332)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1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2000년 8월 31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공무원의 이체) 별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축되는 정원 11인(기능6급 4, 기능7급 4, 기능8급 3)은 2000년 3월 1일부터 기상청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기상청에 이체한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기상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중 “ 9등급 ” 및 “ 10등급 ”을 각각 “ 기능9급 ” 및 “ 기능10급 ”으로 한다.

별표 3중 총계 “ 737 ”을 “ 748 ”로 하고, 기능직 계 “ 146 ”을 “ 157 ”로 하며, 그 다음에 “ 기능6급 4 ”, “ 기능7급 4 ”, “ 기능8급 3 ”을 각각 신설하고, “ 9등급 ” 및 “ 10등급 ”을 각각 “ 기능9급 ” 및 “ 기능10급 ”으로 한다.

**부칙** <제17115호,2001. 1. 29.>(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총계 “ 26,595 ”를 “ 26,581 ”로 하고, 별정직 계 “ 192 ”를 “ 180 ”으로, 예비군담당(5급상당 또는 6급상당) “ 89 ”를 “ 77 ”로 하며, 일반직 계 “ 3,689 ”를 “ 3,687 ”로 하고, 서기관 “ 88 ”을 “ 86 ”으로, 서기관 또는 교육행정사무관 “ 32 ”를 “ 31 ”로, 공업서기관、시설서기관、기계서기관、전기사무관、토목사무관 또는 건축사무관 “ 4 ”를 “ 5 ”로 한다.

②내지 <152>생략

**부칙** <제17143호,2001. 3. 2.>(국립학교설치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대학 “ 16,810 ”을 “ 16,888 ”로, 대학의 교수、부교수、조교수 또는 전임강사 “ 13,573 ”을 “ 13,638 ”로, 대학의 조교 “ 3,193 ”을 “ 3,206 ”으로, 전문대학 “ 478 ”을 “ 400 ”으로, 전문대학의 학장 “ 7 ”을 “ 6 ”으로, 전문대학의 교수、부교수、조교수 또는 전임강사 “ 390 ”을 “ 326 ”으로, 전문대학의 조교 “ 81 ”을 “ 68 ”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제17162호,2001. 3. 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69호,2001. 9. 29.>(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총계 “ 26,581 ”을 “ 26,571 ”로 하고, 별정직 계 “ 166 ”을 “ 156 ”으로 하며, 예비군담당(5급상당 또는 6급상당) “ 77 ”을 “ 67 ”로 한다.
③및 ④생략

**부칙** <제17531호,2002. 3.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15호,2003. 2. 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90호,2004. 2. 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총계 “ 453 ”을 “ 454 ”로 하고, 일반직 계 “ 299 ”를 “ 300 ”으로 하며, 6급 “ 102 ”를 “ 103 ”으로 한다.
별표 2중 총계 “ 140 ”을 “ 141 ”로 하고, 기능직 계 “ 30 ”을 “ 31 ”로 하며, 기능10급 “ 25 ”를 “ 26 ”으로 한다.

**부칙** <제18723호,2005. 2. 28.>(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총계 “ 28,870 ”을 “ 28,859 ”로 하고, 별정직 계 “ 137 ”을 “ 127 ”로 하며, 예비군담당(5급상당 또는 6급상당) “ 54 ”를 “ 45 ”로, 예비군담당(8급상당 또는 9급상당) “ 40 ”을 “ 39 ”로 하고, 일반직 계 “ 3,757 ”을 “ 3,756 ”으로 하며, 서기관 또는 교육행정사무관 “ 32 ”를 “ 31 ”로 한다.

③생략

**부칙** <제18725호,2005. 2.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364호,2006. 2. 28.>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영양교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감축되는 정원 12인(식품위생서기 12)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현원이 영양교사로 전환될 때까지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당학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9596호,2006. 6. 30.>(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 등에 따른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총정원의 한도란 중 “281인”을 “286인”으로 한다.

**부칙** <제19912호,2007. 2. 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이 영에 따라 감축되는 정원 14인(식품위생주사보 4, 식품위생서기 10)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현원이 영양교사로 전환될 때까지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 당시 이 영에 따라 감축되는 정원 6인(행정6급 1, 기능10급 사무원 5)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8년 2월 29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643호,2008. 2. 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 영에 따라 감축되는 정원 14명(교육연구관 2명, 교육연구사 6명, 교육행정주사 1명, 교육행정주사보 1명, 교육행정서기 1명, 기능직 10급 사무원 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9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현원

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1214호,2008. 12. 31.>(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4* 까지 생략

4(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중 " 교육인적자원부령 "을 각각 " 교육과학기술부령 "으로 한다.

5)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제22065호,2010. 2. 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678호,2011. 2. 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116호,2011. 9. 6.>(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 「국립학교 설치령」 제9조제1항, 「서울대학교 설치령」 제11조제1항 "을 " 「국립학교 설치령」 제9조제1항 "으로, " 서울대학교 및 한국교원대학교 "를 " 한국교원대학교 "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23404호,2011. 12.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3,077명(총장 1명,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전임강사 1,923명, 조교 419명, 별정직 11명, 고위공무원단 2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72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 제10413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제3항 및 대통령령 제23116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제7항에 따라 교원인 공무원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설립된 이후 5년간, 교원이 아닌 공무원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설립된 이후 1년간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교육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부칙** <제23636호,2012. 2. 28.>

이 영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 중 전임강사의 직명을 삭제하는 부분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809호,2012. 5.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립국악고등학교 등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악고등학교ㆍ국악학교ㆍ전통예술고등학교 및 전통예술학교를 설치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른 국악고등학교ㆍ국악학교ㆍ전통예술고등학교 및 전통예술학교에 두는 공무원 137명(교장 2명, 교감 4명, 교사 103명, 5급 2명, 6급 3명, 7급 5명, 8급 4명, 기능직 14명)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문화체육관광부로 이체한다.

② 중소기업청장 소속으로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ㆍ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를 설치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른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ㆍ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에 두는 공무원 479명(교장 3명, 교감 5명, 교사 340명, 5급 3명, 6급 12명, 7급 3명, 8급 14명, 9급 4명, 기능직 95명)은 중소기업청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중소기업청으로 이체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가공무원총정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다음 각 목의 교원 정원

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원의 정원

나.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원의 정원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교원의 정원 외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에 두는 공무원인 교원의 정원

**부칙** <제24383호,2013. 2. 20.>

이 영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467호,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부산해사고등학교 및 인천해사고등학교를 설치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른 부산해사고등학교 및 인천해사고등학교의 공무원 156명(교장 2명, 교감 2명, 교사 107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45명)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해양수산부로 이체한다.

**부칙** <제24945호,2013. 12.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42명(3급 또는 4급 이하 4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립의 각급 학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5108호,2014. 1.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23명(교장 4명, 교감 4명, 교사 196명, 3급 또는 4급 이하 19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 제11621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제3항 및 대통령령 제25105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교원인 공무원은 2014년 1월 24일 이후 5년간, 교원이 아닌 공무원은 2014년 1월 24일 이후 1년간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교육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5219호,2014. 2. 27.>

이 영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967호,2015.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57명(3급 또는 4급 이하 57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립의 각급 학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6111호,2015. 2. 26.>

이 영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410호,2015. 7. 20.>(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총계 “25,959”를 “25,954”로 하고, 일반직 계 “6,221”을 “6,216”으로 하며, 전문경력관 “75”를 “70”으로 한다.

**부칙** <제26660호,2015. 11. 20.>(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총계 “25,954”를 “25,950”으로 하고, 일반직 계 “6,216”을 “6,212”로 하며, 전문경력관 “70”을 “66”으로 한다.

**부칙** <제26780호,2015. 12. 30.>(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정원 57명(5급 1명, 6급 17명, 7급 12명, 8급 8명, 9급 19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립의 각급 학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26조** 부터 제31조까지 생략

**부칙** <제26999호,2016. 2. 29.>

이 영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685호,2016. 12. 27.>(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0조 생략

**제31조**(「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정원 57명(5급 2명, 6급 16명, 7급 12명, 8급 8명, 9급 19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립의 각급 학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2조** 부터 제34조까지 생략

**부칙** <제27871호,2017. 2. 28.>

이 영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673호,2018. 2. 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131호,2018. 9. 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598호,2019. 2. 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470호,2020. 2. 25.>

이 영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502호,2021. 2. 25.>

이 영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498호,2022. 2. 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921호,2022. 9. 27.>(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총계 “ 26,561 ”을 “ 26,556 ”으로 하고, 일반직 계 “ 6,218 ”을 “ 6,213 ”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 6,118 ”을 “ 6,113 ”으로 한다.

**부칙** <제33072호,2022. 12. 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55명(6급 18명, 7급 13명, 8급 10명, 9급 1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립의 각급 학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3305호,2023. 2.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 정원에 관한 특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7월 31일까지는 별표 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33867호,2023. 11.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7명(고위공무원단 18명, 3급 또는 4급 이하 9명) 중 초과현원 9명(고위공무원단 6명, 3급 또는 4급 이하 3명)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교육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3973호,2023. 12.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55명(5급 1명, 6급 17명, 7급 13명, 8급 10명, 9급 13명, 학예연구사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립의 각급 학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4236호,2024. 2.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특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7월 31일까지는 별표 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35071호,2024. 12.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55명(5급 1명, 6급 16명, 7급 13명, 8급 10명, 9급 13명, 연구사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립의 각급 학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5289호,2025. 2.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특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 5월 31일까지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35951호,2025. 12.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095호,2026. 2. 19.>

이 영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별표 1] <개정 2026. 2. 19.>

국립의 각급 학교 공무원 정원표(제2조제1항 관련)

| | |
|---|---|
| 총계 | 27,009 |
| 교육공무원 계 | 20,843 |
| 대학 계 | 19,102 |
| 총장 | 36 |
|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 | 16,191 |
| 조교 | 2,875 |
| 중·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계 | 801 |
| 교장 | 17 |
| 교감 | 17 |
| 교사 | 767 |
|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계 | 428 |
| 교장 | 16 |
| 교감 | 16 |
| 교사 | 396 |
| 유치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계 | 19 |
| 원장 | 1 |
| 원감 | 3 |
| 교사 | 15 |
| 특수학교 계 | 385 |
| 교장 | 6 |
| 교감 | 10 |
| 교사(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특수학급 담당 특수교사를 포함한다) | 369 |
| 각급 학교에 두는 보건교사 등 계 | 87 |

| | |
|---|---|
| 보건교사 | 41 |
| 영양교사 | 31 |
| 사서교사 | 12 |
| 전문상담교사 | 3 |
| 교육전문직 계 | 21 |
| 교육연구관 | 7 |
| 교육연구사 | 14 |
| 별정직 계 | 26 |
| 고위공무원단 | 17 |
|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이하 | 9 |
| 일반직 계 | 6,140 |
| 3급 또는 4급 이하 | 6,058 |
| 전문경력관 | 82 |

■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별표 1의2] 삭제 <2025. 12. 30.>

■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별표 2] <개정 2026. 2. 19.>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 한시정원표(제3조 관련)

1. 제3조제1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8년 2월 29일)

| | |
|---|---|
| 총계 | 19 |
| 교육공무원 계 | 19 |
| 대학 계 | 19 |
|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 | 14 |
| 조교 | 5 |

2. 제3조제2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30년 2월 28일)

| | |
|---|---|
| 총계 | 53 |
| 교육공무원 계 | 53 |
| 대학 계 | 53 |
|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 | 38 |
| 조교 | 15 |

3. 제3조제3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30년 2월 28일)

| | |
|---|---|
| 총계 | 65 |
| 교육공무원 계 | 65 |
| 대학 계 | 65 |
|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 | 47 |
| 조교 | 18 |

4. 제3조제4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8년 12월 31일)

| | |
|---|---|
| 총계 | 18 |
| 일반직 계 | 18 |
| 5급 이하 | 18 |

5. 제3조제5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30년 2월 28일)

| | |
|---|---|
| 총계 | 41 |
| 일반직 계 | 41 |
| 4급 이하 | 41 |

#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26. 7. 21.] [교육부령 제390호, 2026. 7. 21., 일부개정]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 044 - 203 - 605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무원의 정원)** ①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 공무원의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08. 10. 31., 2013. 2. 28., 2018. 2. 27., 2021. 2. 25., 2023. 11. 16., 2025. 2. 25.>

②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고등교육법」 제34조의2에 따른 입학사정관 업무를 담당하는 18명(6급 10명, 7급 8명) 및 그 밖의 업무를 담당하는 11명(4급 1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신설 2013. 2. 28., 2013. 12. 12., 2023. 11. 16.>

**제3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직무등급)** 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직위 중 고위공무원단으로 임명하는 다음 각 호의 직위의 직무등급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 12. 28., 2018. 2. 27., 2023. 11. 16.>

1. 「국립학교 설치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사무국장
2.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무국장

[제목개정 2023. 11. 16.]

**제4조(기관별 · 직급별 공무원 정원)** ①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기관별 공무원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5. 2. 25.>

②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기관별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8. 31.]

**제4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 2. 25.]

**제4조의3** 삭제 <2018. 2. 27.>

**제5조(한시정원)** ① 「국립학교 설치령」 제9조의2에 따른 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6. 2. 19.>

② 「국립학교 설치령」 제9조의3에 따른 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26. 2. 19.>

[본조신설 2025. 12. 30.]

**부칙** <제930호,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의 표시 등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

**부칙** <제17호,2008. 10.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호,2008. 10.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호,2008. 12. 31.>(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등급란의 " 마등급 " 을 각각 " 나등급 " 으로 한다.

⑤ 부터 ⑩ 까지 생략

**부칙** <제44호,2009. 10.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시행특례) 제1항의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기능직공무원 193명(기능8급 1명, 기능9급 12명, 기능10급 180명)의 감축 및 일반직공무원 193명(주사보 5명, 서기 121명, 서기보 67명)의 증원은 2009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93명(주사보 5명, 서기 121명, 서기보 67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 <제45호,2009. 11.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호,2010. 2.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호,2010. 6.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93명(행정주사보 4명, 행정서기 109명, 행정서기보 80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 <제80호,2010. 10. 21.>

이 규칙은 2010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호,2011. 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 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212명(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 140명, 행정서기보 7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 <제132호,2011. 1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간) 이 규칙에 따라 조정되는 일반직 6급 1명, 일반직 7급 2명, 기능직 6급 1명, 기능직 7급 3명, 기능직 8급 1명, 기능직 9급 1명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15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일반직 7급 1명, 일반직 8급 2명, 기능직 7급 1명, 기능직 8급 1명, 기능직 10급 4명으로 본다.

**제3조**(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교육공무원 2,343명(총장 1명,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전임강사 1,923명, 조교 419명), 별정직 11명(5급 상당 3명, 6급 상당 5명, 7급 상당 3명), 일반직 449명(고위공무원단 2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18명, 4ㆍ5급 1명, 5급 43명, 6급 184명, 7급 93명, 8급 66명, 9급 31명, 연구관 3명, 연구사 7명), 기능직 274명(6급 8명, 7급 9명, 8급 6명, 9급 17명, 10급 234명) 등 총 3,077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 제10413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제3항 및 대통령령 제23116호「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제7항에 따라 교원인 공무원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설립된 이후 5년간, 교원이 아닌 공무원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설립된 이후 1년간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8호,2012. 2. 29.>

이 규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 중 전임강사의 직명을 삭제하는 부분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9호,2012. 5.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호,2012. 8.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 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57명(행정서기보 57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 <제167호,2012. 11.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4호,2013. 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간) 이 규칙에 따라 상향 조정되는 일반직 7급 1명과 기능직 6급 1명은 2016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며, 2016년 3월 1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일반직 8급 1명, 기능직 7급 1명으로 본다.

**부칙** <제1호,2013. 3. 2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1& 까지 생략

1*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2항 중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을 각각 " 교육부장관 "으로 한다.

별표 1 중 총계 " 26,300 "을 " 26,144 "로 하고, 교육공무원 계 " 19,959 "를 " 19,848 "로 하며, 중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 1,353 "을 " 1,242 "로 하고, 중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장 " 27 "을 " 25 "로, 교감 " 27 "을 " 25 "로, 교사 " 1,299 "를 " 1,192 "로 하며, 일반직 계 " 4,194 "를 " 4,179 "로 하고, 행정사무관 " 321 "을 " 319 "로, 행정주사 " 882 "를 " 878 "로, 시설주사 " 134 "를 " 132 "로, 행정주사보 " 574 "를 " 571 "로, 행정서기 " 453 "을 " 450 "으로, 사서서기 " 108 "을 " 107 "로 하며, 기능직 계 " 2,054 "를 " 2,024 "로 하고, 기능7급 전기장 " 38 "을 " 36 "으로, 기능8급 기계원 " 75 "를 " 74 "로, 기능9급 건축원 " 98 "을 " 96 "으로, 기능9급 전기원 " 77 "을 " 76 "으로, 기능9급 기계원 " 145 "를 " 144 "로, 기능9급 열관리원 " 55 "를 " 54 "로, 기능9급 운전원 " 233 "을 " 231 "로, 기능9급 위생원 또는 조리실무원 " 157 "을 " 146 "으로, 기능9급 사무실무원 " 368 "을 " 366 "으로, 기능9급 방호원 " 32 "를 " 25 "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 26,300 "을 " 26,144 "로 하고, 교육공무원 계 " 19,959 "를 " 19,848 "로 하며, 중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 1,353 "을 " 1,242 "로 하고, 중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장 " 27 "을 " 25 "로, 교감 " 27 "을 " 25 "로, 교사 " 1,299 "를 " 1,192 "로 하며, 일반직 계 " 4,194 "를 " 4,179 "로 하고, 행정사무관 " 379 "를 " 377 "로, 행정주사 " 870 "을 " 866 "으로, 시설주사 " 132 "를 " 130 "으로, 행정주사보 " 530 "을 " 527 "로, 행정서기 " 452 "를 " 449 "로, 사서서기 " 106 "을 " 105 "로 하며, 기능직 계 " 2,054 "를 " 2,024 "로 하고, 기능7급 전기장 " 31 "을 " 29 "로, 기능8급 기계원 " 72 "를 " 71 "로, 기능9급 건축원 " 97 "을 " 95 "로, 기능9급 전기원 " 76 "을 " 75 "로, 기능9급 기계원 " 145 "를 " 144 "로, 기능9급 열관리원 " 55 "를 " 54 "로, 기능9급 운전원 " 232 "를 " 230 "으로, 기능9급 위생원 또는 조리실무원 " 156 "을 " 145 "로, 기능9급 사무실무원 " 346 "을 " 344 "로, 기능9급 방호원 " 31 "을 " 24 "로 한다.

별표 3 중 부산해사고등학교란 및 인천해사고등학교란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 합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 |
|---|---|---|---|
| 합계 | 19,848 | 6,296 | 26,144 |

1( 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제5호,2013. 9. 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2명(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보 1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 <제17호,2013. 12.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945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42명(5급 1명, 6급 18명, 7급 10명, 8급 4명, 9급 9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립의 각급 학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개정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국립의 각급 학교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3호,2014. 1. 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감축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교육공무원 204명(교장 4명, 교감 4명, 교사 196명)과 일반직공무원 19명(5급 1명, 6급 3명, 7급 2명, 8급 6명, 9급 7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 제11621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3항 및 대통령령 제25105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교원인 공무원은 2014년 1월 24일 이후 5년간, 교원이 아닌 공무원은 2014년 1월 24일 이후 1년간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교육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7호,2014. 2. 28.>

이 규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호,2015. 1.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5967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 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57명(5급 1명, 6급 18명, 7급 13명, 8급 8명, 9급 17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립의 각급 학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56호,2015. 2. 27.>

이 규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호,2015. 7. 21.>(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25,959”를 “25,954”로, 하고 일반직 계 “6,221”을 “6,216”으로 하며, 전문경력관 나군(예비군담당) “71”을 “66”으로 한다.

별표 3 중 강원대학교란, 부경대학교란, 전남대학교란 및 합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 | | |
|---|---|---|---|
| 강원대학교 | 1,240 | 283 | 1,523 |

| | | | |
|---|---|---|---|
| 부경대학교 | 734 | 285 | 1,019 |

| | | | |
|---|---|---|---|
| 전남대학교 | 1,557 | 423 | 1,980 |

| | | | |
|---|---|---|---|
| 합계 | 19,738 | 6,216 | 25,954 |

**부칙** <제78호,2015. 11. 20.>(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25,954”를 “25,950”으로 하고, 일반직 계 “6,216”을 “6,212”로 하며, 전문경력관 나군(예비군담당) “66”을 “62”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25,959”를 “25,950”으로 일반직 계 “6,221”을 “6,212”로 하며, 전문경력관 나군(예비군담당) “71”을 “62”로 한다.

별표 3 중 경상대학교란, 부경대학교란, 전남대학교란 및 합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 | | |
|---|---|---|---|
| 경상대학교 | 1,014 | 297 | 1,311 |
| 부경대학교 | 734 | 283 | 1,017 |
| 전남대학교 | 1,557 | 422 | 1,979 |
| 합계 | 19,738 | 6,212 | 25,950 |

**부칙** <제80호,2015. 11.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호,2015.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호,2016. 2. 29.>

이 규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호,2016. 4.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호,2016. 8.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호,2016. 12.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호,2017. 2. 28.>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호,2017. 12.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9호,2018. 2.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호,2018. 9.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8호,2018.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호,2019. 2.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호,2019. 6.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호,2019. 9.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호,2019. 12.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호,2020. 2. 28.>

이 규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8호,2020. 9.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삭제 <2023. 6. 23.>

② 삭제 <2021. 11. 30.>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하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별표 1의2의 정원 중 1명(공업주사보 1명)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2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의2의 공업주사 1명으로 본다.

**부칙** <제232호,2021. 2. 25.>

이 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9호,2021. 11.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2. 2. 22.>

**부칙** <제260호,2022. 2. 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2. 11. 8.>

**부칙** <제282호,2022. 9. 27.>(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26,561"을 "26,556"으로 하고, 일반직 계 "6,218"을 "6,213"로 하며, 전산주사 "103"을 "102"로, 전산주사보 "101"을 "99"로, 전산서기보

“ 29 ”를 “ 27 ”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 26,561 ”을 “ 26,556 ”으로 하고, 일반직 계 “ 6,218 ”을 “ 6,213 ”으로 하며, 전산주사 “ 108 ”을 “ 107 ”로, 전산주사보 “ 96 ”을 “ 94 ”로, 전산서기보 “ 29 ”를 “ 27 ”로 한다.

별표 3 중 전남대학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 |
|---|---|---|---|
| 전남대학교 | 1,577 | 419 | 1,996 |

**부칙** <제289호,2022. 11. 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3. 6. 23.>

**부칙** <제294호,2022. 12.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8호,2023. 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 정원에 관한 특례) ①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7월 31일까지는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7월 31일까지는 별표 1의4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 제4조제1항에 따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기관별 공무원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7월 31일까지는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305호,2023. 6.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4. 2. 27.>

**부칙** <제311호,2023. 11.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5호,2023. 12.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2호,2024. 2.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립학교 공무원 정원에 관한 특례) ①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7월 31일까지는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7월 31일까지는 별표 1의4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 제4조제1항에 따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기관별 공무원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7월 31일까지는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삭제 <2024. 7. 1.>

**부칙** <제335호,2024. 7.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4. 12. 31.>

**부칙** <제347호,2024.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종전의 교육부령 제335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종전의 직급으로 환원되는 정원 3명(행정사무관 1명, 전산주사 1명, 사무운영주사보 1명)을 제외한 별표 1의2의 정원 17명(행정사무관 7명, 행정주사 6명, 사서주사 1명, 시설주사 1명, 전산주사 1명, 사무운영주사보 1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의2의 정원 17명(행정주사 7명, 행정주사보 6명, 사서주사보 1명, 시설주사보 1명, 전산주사보 1명, 사무운영서기보 1명)으로 본다. <개정 2025. 12. 30.>

**부칙** <제350호,2025. 2.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특례) ①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 5월 31일까지는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 5월 31일까지는 별표 1의4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 제4조제1항에 따라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기관별 공무원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 5월 31일까지는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373호,2025.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6호,2026. 2. 19.>

이 규칙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0호,2026. 7.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6. 7. 21.>

##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2조제1항 본문 관련)

| | |
|---|---|
| 총계 | 27,009 |
| 교육공무원 계 | 20,843 |
| 대학 계 | 19,102 |
| 총장 | 36 |
|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 | 16,191 |
| 조교 | 2,875 |
| 중·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계 | 801 |
| 교장 | 17 |
| 교감 | 17 |
| 교사 | 767 |
|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계 | 428 |
| 교장 | 16 |
| 교감 | 16 |
| 교사 | 396 |
| 유치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계 | 19 |
| 원장 | 1 |
| 원감 | 3 |
| 교사 | 15 |
| 특수학교 계 | 385 |
| 교장 | 6 |
| 교감 | 10 |
| 교사(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특수학급 담당 특수교사를 포함한다) | 369 |
| 각급 학교에 두는 보건교사 등 계 | 87 |
| 보건교사 | 41 |
| 영양교사 | 31 |

| | |
|---|---|
| 사서교사 | 12 |
| 전문상담교사 | 3 |
| 교육전문직 계 | 21 |
| 교육연구관 | 7 |
| 교육연구사 | 14 |
| 별정직 계 | 26 |
| 고위공무원단 | 17 |
|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 9 |
| 일반직 계 | 6,140 |
|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 4 |
| 서기관 | 75 |
| 과학기술서기관 | 12 |
|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 38 |
|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보건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 2 |
| 서기관 또는 사서사무관 | 2 |
| 과학기술서기관 ·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 5 |
| 행정사무관 | 322 |
| 사서사무관 | 27 |
|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 29 |
| 임업사무관 | 2 |
| 해양수산사무관 | 7 |
| 전산사무관 | 14 |
| 방송무대사무관 | 1 |
| 행정주사 | 931 |
| 행정주사 · 공업주사 · 보건주사 · 시설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 27 |
| 직업상담주사 | 2 |
| 사서주사 | 188 |
| 공업주사 | 210 |

| | |
|---|---|
| 농업주사 | 15 |
| 임업주사 | 13 |
| 수의주사 | 12 |
| 해양수산주사 | 85 |
| 보건주사 | 2 |
| 의료기술주사 | 5 |
| 식품위생주사 | 11 |
| 약무주사 | 2 |
| 간호주사 | 17 |
| 환경주사 | 10 |
| 항공주사 | 1 |
| 시설주사 | 131 |
| 전산주사 | 101 |
| 방송통신주사 | 6 |
| 방송무대주사 | 7 |
| 조리주사 | 3 |
| 토목운영주사 | 1 |
| 전기운영주사 | 1 |
| 기계운영주사 | 4 |
| 행정주사보 | 619 |
|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 14 |
| 직업상담주사보 | 4 |
| 사회복지주사보 | 8 |
| 사서주사보 | 137 |
| 공업주사보 | 156 |
| 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 4 |
| 공업주사보 · 시설주사보 또는 환경주사보 | 5 |
| 농업주사보 | 12 |
| 임업주사보 | 8 |

| | |
|---|---|
| 수의주사보 | 10 |
| 해양수산주사보 | 102 |
| 보건주사보 | 10 |
| 의료기술주사보 | 6 |
| 식품위생주사보 | 13 |
| 약무주사보 | 1 |
| 간호주사보 | 12 |
| 환경주사보 | 9 |
| 항공주사보 | 7 |
| 시설주사보 | 65 |
| 전산주사보 | 104 |
| 방송통신주사보 | 7 |
| 방송무대주사보 | 7 |
| 운전주사보 | 3 |
| 위생주사보 | 1 |
| 조리주사보 | 7 |
| 건축운영주사보 | 1 |
| 전기운영주사보 | 2 |
| 기계운영주사보 | 6 |
| 선박기관운영주사보 | 1 |
| 행정서기 | 496 |
| 직업상담서기 | 2 |
| 사회복지서기 | 24 |
| 사서서기 | 99 |
| 공업서기 | 137 |
| 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 10 |
| 농업서기 | 15 |
| 임업서기 | 16 |
| 해양수산서기 | 56 |

| | |
|---|---|
| 보건서기 | 12 |
| 의료기술서기 | 4 |
| 식품위생서기 | 1 |
| 간호서기 | 11 |
| 환경서기 | 4 |
| 항공서기 | 3 |
| 시설서기 | 51 |
| 전산서기 | 48 |
| 방송통신서기 | 6 |
| 방송무대서기 | 1 |
| 운전서기 | 8 |
| 위생서기 | 2 |
| 조리서기 | 10 |
| 통신운영서기 | 1 |
| 전기운영서기 | 1 |
| 기계운영서기 | 4 |
| 선박기관운영서기 | 1 |
| 농림운영서기 | 2 |
| 행정서기보 | 610 |
| 직업상담서기보 | 5 |
| 사회복지서기보 | 10 |
| 사서서기보 | 22 |
| 방호서기보 | 19 |
| 공업서기보 | 89 |
| 공업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 9 |
| 농업서기보 | 12 |
| 임업서기보 | 9 |
| 해양수산서기보 | 33 |
| 보건서기보 | 3 |

| | |
|---|---|
| 의료기술서기보 | 5 |
| 식품위생서기보 | 5 |
| 간호조무서기보 | 1 |
| 항공서기보 | 2 |
| 시설서기보 | 46 |
| 방재안전서기보 | 2 |
| 전산서기보 | 28 |
| 방송통신서기보 | 4 |
| 방송무대서기보 | 3 |
| 운전서기보 | 199 |
| 위생서기보 | 56 |
| 위생서기보 또는 조리서기보 | 12 |
| 조리서기보 | 39 |
| 건축운영서기보 | 7 |
| 통신운영서기보 | 1 |
| 전화상담운영서기보 | 3 |
| 전기운영서기보 | 5 |
| 기계운영서기보 | 8 |
| 열관리운영서기보 | 4 |
| 화공운영서기보 | 1 |
| 선박항해운영서기보 | 1 |
| 선박기관운영서기보 | 1 |
| 농림운영서기보 | 6 |
| 사무운영서기보 | 27 |
| 수의연구관 | 1 |
| 학예연구사 | 27 |
| 기록연구사 | 39 |
| 공업연구사 | 2 |
| 농업연구사 | 2 |

| | |
|---|---|
| 수의연구사 | 5 |
| 해양수산연구사 | 2 |
| 보건연구사 | 2 |
| 전문경력관 나군(예비군 담당) | 20 |
| 전문경력관 나군(통역 담당) | 3 |
| 전문경력관 나군(노무 담당) | 27 |
| 전문경력관 나군(심리상담 담당) | 29 |
| 전문경력관 다군(통역 담당) | 2 |
| 전문경력관 다군(심리상담 담당) | 1 |

■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 1의2] <개정 2026. 7. 21.>

##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2조제1항 단서 관련)

| | |
|---|---|
| 총계 | 27,009 |
| 교육공무원 계 | 20,843 |
| 대학 계 | 19,102 |
| 총장 | 36 |
|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 | 16,191 |
| 조교 | 2,875 |
| 중·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계 | 801 |
| 교장 | 17 |
| 교감 | 17 |
| 교사 | 767 |
|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계 | 428 |
| 교장 | 16 |
| 교감 | 16 |
| 교사 | 396 |
| 유치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계 | 19 |
| 원장 | 1 |
| 원감 | 3 |
| 교사 | 15 |
| 특수학교 계 | 385 |
| 교장 | 6 |
| 교감 | 10 |
| 교사(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특수학급 담당 특수교사를 포함한다) | 369 |
| 각급 학교에 두는 보건교사 등 계 | 87 |
| 보건교사 | 41 |
| 영양교사 | 31 |

| | |
|---|---|
| 사서교사 | 12 |
| 전문상담교사 | 3 |
| 교육전문직 계 | 21 |
| 교육연구관 | 7 |
| 교육연구사 | 14 |
| 별정직 계 | 26 |
| 고위공무원단 | 17 |
|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 9 |
| 일반직 계 | 6,140 |
|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 4 |
| 서기관 | 75 |
| 과학기술서기관 | 12 |
|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 38 |
|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보건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 2 |
| 서기관 또는 사서사무관 | 2 |
| 과학기술서기관 ·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 5 |
| 행정사무관 | 329 |
| 사서사무관 | 27 |
|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 29 |
| 임업사무관 | 2 |
| 해양수산사무관 | 7 |
| 전산사무관 | 14 |
| 방송무대사무관 | 1 |
| 행정주사 | 930 |
| 행정주사 · 공업주사 · 보건주사 · 시설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 27 |
| 직업상담주사 | 2 |
| 사서주사 | 189 |
| 공업주사 | 210 |

| | |
|---|---|
| 농업주사 | 15 |
| 임업주사 | 13 |
| 수의주사 | 12 |
| 해양수산주사 | 85 |
| 보건주사 | 2 |
| 의료기술주사 | 5 |
| 식품위생주사 | 11 |
| 약무주사 | 2 |
| 간호주사 | 17 |
| 환경주사 | 10 |
| 항공주사 | 1 |
| 시설주사 | 132 |
| 전산주사 | 102 |
| 방송통신주사 | 6 |
| 방송무대주사 | 7 |
| 조리주사 | 3 |
| 토목운영주사 | 1 |
| 전기운영주사 | 1 |
| 기계운영주사 | 4 |
| 행정주사보 | 613 |
|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 14 |
| 직업상담주사보 | 4 |
| 사회복지주사보 | 8 |
| 사서주사보 | 136 |
| 공업주사보 | 156 |
| 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 4 |
| 공업주사보 · 시설주사보 또는 환경주사보 | 5 |
| 농업주사보 | 12 |
| 임업주사보 | 8 |

| | |
|---|---|
| 수의주사보 | 10 |
| 해양수산주사보 | 102 |
| 보건주사보 | 10 |
| 의료기술주사보 | 6 |
| 식품위생주사보 | 13 |
| 약무주사보 | 1 |
| 간호주사보 | 12 |
| 환경주사보 | 9 |
| 항공주사보 | 7 |
| 시설주사보 | 64 |
| 전산주사보 | 103 |
| 방송통신주사보 | 7 |
| 방송무대주사보 | 7 |
| 운전주사보 | 3 |
| 위생주사보 | 1 |
| 조리주사보 | 7 |
| 건축운영주사보 | 1 |
| 전기운영주사보 | 2 |
| 기계운영주사보 | 6 |
| 선박기관운영주사보 | 1 |
| 사무운영주사보 | 1 |
| 행정서기 | 496 |
| 직업상담서기 | 2 |
| 사회복지서기 | 24 |
| 사서서기 | 99 |
| 공업서기 | 137 |
| 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 10 |
| 농업서기 | 15 |
| 임업서기 | 16 |

| | |
|---|---|
| 해양수산서기 | 56 |
| 보건서기 | 12 |
| 의료기술서기 | 4 |
| 식품위생서기 | 1 |
| 간호서기 | 11 |
| 환경서기 | 4 |
| 항공서기 | 3 |
| 시설서기 | 51 |
| 전산서기 | 48 |
| 방송통신서기 | 6 |
| 방송무대서기 | 1 |
| 운전서기 | 8 |
| 위생서기 | 2 |
| 조리서기 | 10 |
| 통신운영서기 | 1 |
| 전기운영서기 | 1 |
| 기계운영서기 | 4 |
| 선박기관운영서기 | 1 |
| 농림운영서기 | 2 |
| 행정서기보 | 610 |
| 직업상담서기보 | 5 |
| 사회복지서기보 | 10 |
| 사서서기보 | 22 |
| 방호서기보 | 19 |
| 공업서기보 | 89 |
| 공업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 9 |
| 농업서기보 | 12 |
| 임업서기보 | 9 |
| 해양수산서기보 | 33 |

| | |
|---|---|
| 보건서기보 | 3 |
| 의료기술서기보 | 5 |
| 식품위생서기보 | 5 |
| 간호조무서기보 | 1 |
| 항공서기보 | 2 |
| 시설서기보 | 46 |
| 방재안전서기보 | 2 |
| 전산서기보 | 28 |
| 방송통신서기보 | 4 |
| 방송무대서기보 | 3 |
| 운전서기보 | 199 |
| 위생서기보 | 56 |
| 위생서기보 또는 조리서기보 | 12 |
| 조리서기보 | 39 |
| 건축운영서기보 | 7 |
| 통신운영서기보 | 1 |
| 전화상담운영서기보 | 3 |
| 전기운영서기보 | 5 |
| 기계운영서기보 | 8 |
| 열관리운영서기보 | 4 |
| 화공운영서기보 | 1 |
| 선박항해운영서기보 | 1 |
| 선박기관운영서기보 | 1 |
| 농림운영서기보 | 6 |
| 사무운영서기보 | 26 |
| 수의연구관 | 1 |
| 학예연구사 | 27 |
| 기록연구사 | 39 |
| 공업연구사 | 2 |

| | |
|---|---|
| 농업연구사 | 2 |
| 수의연구사 | 5 |
| 해양수산연구사 | 2 |
| 보건연구사 | 2 |
| 전문경력관 나군(예비군 담당) | 20 |
| 전문경력관 나군(통역 담당) | 3 |
| 전문경력관 나군(노무 담당) | 27 |
| 전문경력관 나군(심리상담 담당) | 29 |
| 전문경력관 다군(통역 담당) | 2 |
| 전문경력관 다군(심리상담 담당) | 1 |

■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 1의3] 삭제 <2025. 12. 30.>

■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 1의4] 삭제 <2025. 12. 30.>

■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6. 2. 19.>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제3조 관련)

| 구 분 | 직 위 | 등 급 |
|---|---|---|
| 강원대학교 | 사무국장 | 나등급 |
| 경북대학교 | 사무국장 | 나등급 |
| 경상국립대학교 | 사무국장 | 나등급 |
| 국립공주대학교 | 사무국장 | 나등급 |
| 국립군산대학교 | 사무국장 | 나등급 |
| 국립목포대학교 | 사무국장 | 나등급 |
| 국립부경대학교 | 사무국장 | 나등급 |
| 부산대학교 | 사무국장 | 나등급 |
| 국립순천대학교 | 사무국장 | 나등급 |
| 국립경국대학교 | 사무국장 | 나등급 |
| 전남대학교 | 사무국장 | 나등급 |
| 전북대학교 | 사무국장 | 나등급 |
| 제주대학교 | 사무국장 | 나등급 |
| 국립창원대학교 | 사무국장 | 나등급 |
| 충남대학교 | 사무국장 | 나등급 |
| 충북대학교 | 사무국장 | 나등급 |
| 한국교원대학교 | 사무국장 | 나등급 |

■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6. 2. 19.>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기관별 공무원 정원표(제4조제1항 관련)

| 구분 | 교육공무원 | 일반직 · 별정직 · 관리운영직 공무원 | 계 |
|---|---|---|---|
| 강원대학교 | 1,755 | 428 | 2,183 |
| 경북대학교 | 1,665 | 342 | 2,007 |
| 경상국립대학교 | 1,306 | 363 | 1,669 |
| 국립공주대학교 | 796 | 223 | 1,019 |
| 국립군산대학교 | 423 | 180 | 603 |
| 국립금오공과대학교 | 281 | 87 | 368 |
| 국립목포대학교 | 395 | 130 | 525 |
| 국립목포해양대학교 | 148 | 116 | 264 |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233 | 219 | 452 |
| 국립부경대학교 | 787 | 274 | 1,061 |
| 부산대학교 | 1,595 | 335 | 1,930 |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489 | 152 | 641 |
| 국립순천대학교 | 412 | 135 | 547 |
| 국립경국대학교 | 365 | 127 | 492 |
| 전남대학교 | 1,629 | 417 | 2,046 |
| 전북대학교 | 1,338 | 309 | 1,647 |
| 제주대학교 | 862 | 265 | 1,127 |
| 국립창원대학교 | 423 | 121 | 544 |
| 충남대학교 | 1,189 | 255 | 1,444 |
| 충북대학교 | 1,064 | 239 | 1,303 |
| 한경국립대학교 | 317 | 109 | 426 |
| 한국교원대학교 | 408 | 157 | 565 |
| 국립한국교통대학교 | 385 | 138 | 523 |
| 한국체육대학교 | 182 | 79 | 261 |
| 국립한국해양대학교 | 333 | 195 | 528 |
| 국립한밭대학교 | 346 | 103 | 449 |
| 경인교육대학교 | 190 | 82 | 272 |

| | | | |
|---|---|---|---|
| 공주교육대학교 | 136 | 42 | 178 |
| 광주교육대학교 | 150 | 49 | 199 |
| 대구교육대학교 | 161 | 49 | 210 |
| 부산교육대학교 | 132 | 47 | 179 |
| 서울교육대학교 | 159 | 51 | 210 |
| 전주교육대학교 | 123 | 41 | 164 |
| 진주교육대학교 | 117 | 44 | 161 |
| 청주교육대학교 | 107 | 42 | 149 |
| 춘천교육대학교 | 115 | 43 | 158 |
| 서울맹학교 | 74 | 54 | 128 |
| 서울농학교 | 49 | 28 | 77 |
| 한국선진학교 | 68 | 37 | 105 |
| 한국경진학교 | 66 | 34 | 100 |
| 한국우진학교 | 70 | 25 | 95 |
| 합 계 | 20,843 | 6,166 | 27,009 |

■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 3의2] 삭제 <2025. 12. 30.>

■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6. 2. 19.>

국립의 각급 학교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직급별 정원표(제5조 관련)

1. 제5조제1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8년 12월 31일)

| 구분 | 일반직 | | 계 |
|---|---|---|---|
| |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 |
| 가. 강원대학교 | 1 | 1 | 2 |
| 나. 경북대학교 | 1 | 1 | 2 |
| 다. 경상국립대학교 | 1 | 1 | 2 |
| 라. 부산대학교 | 1 | 1 | 2 |
| 마. 전남대학교 | 1 | 1 | 2 |
| 바. 전북대학교 | 1 | 1 | 2 |
| 사. 제주대학교 | 1 | 1 | 2 |
| 아. 충남대학교 | 1 | 1 | 2 |
| 자. 충북대학교 | 1 | 1 | 2 |
| 합계 | 9 | 9 | 18 |

2. 제5조제2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30년 2월 28일)

| 구분 | 직급 | 정원 |
|---|---|---|
| 가. 국립목포대학교 | 서기관 | 1 |
| | 행정주사 | 3 |
| | 시설주사 | 1 |
| | 행정주사보 | 2 |
| | 사서주사보 | 1 |
| | 간호주사보 | 1 |
| | 전산주사보 | 1 |

| | | |
|---|---|---|
| | 행정서기 | 1 |
| | 전산서기 | 1 |
| | 공업서기 | 1 |
| | 운전서기 | 1 |
| | 합계 | 14 |
| 나. 국립창원대학교 | 서기관 | 2 |
| | 행정주사 | 8 |
| | 시설주사 | 2 |
| | 행정주사보 | 4 |
| | 시설주사보 | 1 |
| | 사서주사보 | 2 |
| | 행정서기 | 2 |
| | 시설서기 | 1 |
| | 전산서기 | 2 |
| | 공업서기 | 1 |
| | 운전서기 | 2 |
| | 합계 | 27 |

#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26. 7. 21.] [교육부령 제390호, 2026. 7. 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무원의 정원)** ①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 공무원의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08. 10. 31., 2013. 2. 28., 2018. 2. 27., 2021. 2. 25., 2023. 11. 16., 2025. 2. 25.>

②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고등교육법」 제34조의2에 따른 입학사정관 업무를 담당하는 18명(6급 10명, 7급 8명) 및 그 밖의 업무를 담당하는 11명(4급 1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신설 2013. 2. 28., 2013. 12. 12., 2023. 11. 16.>

**제3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직무등급)** 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직위 중 고위공무원단으로 임명하는 다음 각 호의 직위의 직무등급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 12. 28., 2018. 2. 27., 2023. 11. 16.>

1. 「국립학교 설치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사무국장
2.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무국장

[제목개정 2023. 11. 16.]

**제4조(기관별 · 직급별 공무원 정원)** ①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기관별 공무원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5. 2. 25.>

②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기관별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8. 31.]

**제4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 2. 25.]

**제4조의3** 삭제 <2018. 2. 27.>

**제5조(한시정원)** ① 「국립학교 설치령」 제9조의2에 따른 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6. 2. 19.>

② 「국립학교 설치령」 제9조의3에 따른 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26. 2. 19.>

[본조신설 2025. 12. 30.]

**부칙** <제930호,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의 표시 등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

**부칙** <제17호,2008. 10.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호,2008. 10.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호,2008. 12. 31.>(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등급란의 “ 마등급 ”을 각각 “ 나등급 ”으로 한다.

⑤ 부터 ⑩ 까지 생략

**부칙** <제44호,2009. 10.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시행특례) 제1항의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기능직공무원 193명(기능8급 1명, 기능9급 12명, 기능10급 180명)의 감축 및 일반직공무원 193명(주사보 5명, 서기 121명, 서기보 67명)의 증원은 2009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93명(주사보 5명, 서기 121명, 서기보 67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 <제45호,2009. 11.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호,2010. 2.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호,2010. 6.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93명(행정주사보 4명, 행정서기 109명, 행정서기보 80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 <제80호,2010. 10. 21.>

이 규칙은 2010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호,2011. 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 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212명(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 140명, 행정서기보 7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 <제132호,2011. 1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간) 이 규칙에 따라 조정되는 일반직 6급 1명, 일반직 7급 2명, 기능직 6급 1명, 기능직 7급 3명, 기능직 8급 1명, 기능직 9급 1명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15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일반직 7급 1명, 일반직 8급 2명, 기능직 7급 1명, 기능직 8급 1명, 기능직 10급 4명으로 본다.

**제3조**(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교육공무원 2,343명(총장 1명,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전임강사 1,923명, 조교 419명), 별정직 11명(5급 상당 3명, 6급 상당 5명, 7급 상당 3명), 일반직 449명(고위공무원단 2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18명, 4ㆍ5급 1명, 5급 43명, 6급 184명, 7급 93명, 8급 66명, 9급 31명, 연구관 3명, 연구사 7명), 기능직 274명(6급 8명, 7급 9명, 8급 6명, 9급 17명, 10급 234명) 등 총 3,077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 제10413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제3항 및 대통령령 제23116호「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제7항에 따라 교원인 공무원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설립된 이후 5년간, 교원이 아닌 공무원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설립된 이후 1년간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8호,2012. 2. 29.>

이 규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 중 전임강사의 직명을 삭제하는 부분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9호,2012. 5.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호,2012. 8.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 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57명(행정서기보 57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 <제167호,2012. 11.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4호,2013. 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간) 이 규칙에 따라 상향 조정되는 일반직 7급 1명과 기능직 6급 1명은 2016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며, 2016년 3월 1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일반직 8급 1명, 기능직 7급 1명으로 본다.

**부칙** <제1호,2013. 3. 2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1& 까지 생략

1*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2항 중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을 각각 " 교육부장관 "으로 한다.

별표 1 중 총계 " 26,300 "을 " 26,144 "로 하고, 교육공무원 계 " 19,959 "를 " 19,848 "로 하며, 중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 1,353 "을 " 1,242 "로 하고, 중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장 " 27 "을 " 25 "로, 교감 " 27 "을 " 25 "로, 교사 " 1,299 "를 " 1,192 "로 하며, 일반직 계 " 4,194 "를 " 4,179 "로 하고, 행정사무관 " 321 "을 " 319 "로, 행정주사 " 882 "를 " 878 "로, 시설주사 " 134 "를 " 132 "로, 행정주사보 " 574 "를 " 571 "로, 행정서기 " 453 "을 " 450 "으로, 사서서기 " 108 "을 " 107 "로 하며, 기능직 계 " 2,054 "를 " 2,024 "로 하고, 기능7급 전기장 " 38 "을 " 36 "으로, 기능8급 기계원 " 75 "를 " 74 "로, 기능9급 건축원 " 98 "을 " 96 "으로, 기능9급 전기원 " 77 "을 " 76 "으로, 기능9급 기계원 " 145 "를 " 144 "로, 기능9급 열관리원 " 55 "를 " 54 "로, 기능9급 운전원 " 233 "을 " 231 "로, 기능9급 위생원 또는 조리실무원 " 157 "을 " 146 "으로, 기능9급 사무실무원 " 368 "을 " 366 "으로, 기능9급 방호원 " 32 "를 " 25 "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 26,300 "을 " 26,144 "로 하고, 교육공무원 계 " 19,959 "를 " 19,848 "로 하며, 중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 1,353 "을 " 1,242 "로 하고, 중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장 " 27 "을 " 25 "로, 교감 " 27 "을 " 25 "로, 교사 " 1,299 "를 " 1,192 "로 하며, 일반직 계 " 4,194 "를 " 4,179 "로 하고, 행정사무관 " 379 "를 " 377 "로, 행정주사 " 870 "을 " 866 "으로, 시설주사 " 132 "를 " 130 "으로, 행정주사보 " 530 "을 " 527 "로, 행정서기 " 452 "를 " 449 "로, 사서서기 " 106 "을 " 105 "로 하며, 기능직 계 " 2,054 "를 " 2,024 "로 하고, 기능7급 전기장 " 31 "을 " 29 "로, 기능8급 기계원 " 72 "를 " 71 "로, 기능9급 건축원 " 97 "을 " 95 "로, 기능9급 전기원 " 76 "을 " 75 "로, 기능9급 기계원 " 145 "를 " 144 "로, 기능9급 열관리원 " 55 "를 " 54 "로, 기능9급 운전원 " 232 "를 " 230 "으로, 기능9급 위생원 또는 조리실무원 " 156 "을 " 145 "로, 기능9급 사무실무원 " 346 "을 " 344 "로, 기능9급 방호원 " 31 "을 " 24 "로 한다.

별표 3 중 부산해사고등학교란 및 인천해사고등학교란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 합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 |
|---|---|---|---|
| 합계 | 19,848 | 6,296 | 26,144 |

1( 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제5호,2013. 9. 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2명(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보 1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 <제17호,2013. 12.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945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42명(5급 1명, 6급 18명, 7급 10명, 8급 4명, 9급 9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립의 각급 학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개정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국립의 각급 학교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3호,2014. 1. 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감축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교육공무원 204명(교장 4명, 교감 4명, 교사 196명)과 일반직공무원 19명(5급 1명, 6급 3명, 7급 2명, 8급 6명, 9급 7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 제11621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3항 및 대통령령 제25105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교원인 공무원은 2014년 1월 24일 이후 5년간, 교원이 아닌 공무원은 2014년 1월 24일 이후 1년간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교육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7호,2014. 2. 28.>

이 규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호,2015. 1.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5967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 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57명(5급 1명, 6급 18명, 7급 13명, 8급 8명, 9급 17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립의 각급 학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56호,2015. 2. 27.>

이 규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호,2015. 7. 21.>(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25,959”를 “25,954”로, 하고 일반직 계 “6,221”을 “6,216”으로 하며, 전문경력관 나군(예비군담당) “71”을 “66”으로 한다.

별표 3 중 강원대학교란, 부경대학교란, 전남대학교란 및 합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 | | |
|---|---|---|---|
| 강원대학교 | 1,240 | 283 | 1,523 |

| | | | |
|---|---|---|---|
| 부경대학교 | 734 | 285 | 1,019 |

| | | | |
|---|---|---|---|
| 전남대학교 | 1,557 | 423 | 1,980 |

| | | | |
|---|---|---|---|
| 합계 | 19,738 | 6,216 | 25,954 |

**부칙** <제78호,2015. 11. 20.>(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25,954”를 “25,950”으로 하고, 일반직 계 “6,216”을 “6,212”로 하며, 전문경력관 나군(예비군담당) “66”을 “62”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25,959”를 “25,950”으로 일반직 계 “6,221”을 “6,212”로 하며, 전문경력관 나군(예비군담당) “71”을 “62”로 한다.

별표 3 중 경상대학교란, 부경대학교란, 전남대학교란 및 합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 | | |
|---|---|---|---|
| 경상대학교 | 1,014 | 297 | 1,311 |
| 부경대학교 | 734 | 283 | 1,017 |
| 전남대학교 | 1,557 | 422 | 1,979 |
| 합계 | 19,738 | 6,212 | 25,950 |

**부칙** <제80호,2015. 11.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호,2015.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호,2016. 2. 29.>

이 규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호,2016. 4.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호,2016. 8.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호,2016. 12.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호,2017. 2. 28.>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호,2017. 12.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9호,2018. 2.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호,2018. 9.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8호,2018.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호,2019. 2.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호,2019. 6.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호,2019. 9.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호,2019. 12.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호,2020. 2. 28.>

이 규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8호,2020. 9.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삭제 <2023. 6. 23.>

② 삭제 <2021. 11. 30.>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하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별표 1의2의 정원 중 1명(공업주사보 1명)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2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의2의 공업주사 1명으로 본다.

**부칙** <제232호,2021. 2. 25.>

이 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9호,2021. 11.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2. 2. 22.>

**부칙** <제260호,2022. 2. 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2. 11. 8.>

**부칙** <제282호,2022. 9. 27.>(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26,561"을 "26,556"으로 하고, 일반직 계 "6,218"을 "6,213"로 하며, 전산주사 "103"을 "102"로, 전산주사보 "101"을 "99"로, 전산서기보

“ 29 ”를 “ 27 ”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 26,561 ”을 “ 26,556 ”으로 하고, 일반직 계 “ 6,218 ”을 “ 6,213 ”으로 하며, 전산주사 “ 108 ”을 “ 107 ”로, 전산주사보 “ 96 ”을 “ 94 ”로, 전산서기보 “ 29 ”를 “ 27 ”로 한다.

별표 3 중 전남대학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 |
|---|---|---|---|
| 전남대학교 | 1,577 | 419 | 1,996 |

**부칙** <제289호,2022. 11. 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3. 6. 23.>

**부칙** <제294호,2022. 12.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8호,2023. 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 정원에 관한 특례) ①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7월 31일까지는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7월 31일까지는 별표 1의4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 제4조제1항에 따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기관별 공무원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7월 31일까지는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305호,2023. 6.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4. 2. 27.>

**부칙** <제311호,2023. 11.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5호,2023. 12.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2호,2024. 2.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립학교 공무원 정원에 관한 특례) ①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7월 31일까지는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7월 31일까지는 별표 1의4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 제4조제1항에 따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기관별 공무원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7월 31일까지는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삭제 <2024. 7. 1.>

**부칙** <제335호,2024. 7.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4. 12. 31.>

**부칙** <제347호,2024.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종전의 교육부령 제335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종전의 직급으로 환원되는 정원 3명(행정사무관 1명, 전산주사 1명, 사무운영주사보 1명)을 제외한 별표 1의2의 정원 17명(행정사무관 7명, 행정주사 6명, 사서주사 1명, 시설주사 1명, 전산주사 1명, 사무운영주사보 1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의2의 정원 17명(행정주사 7명, 행정주사보 6명, 사서주사보 1명, 시설주사보 1명, 전산주사보 1명, 사무운영서기보 1명)으로 본다. <개정 2025. 12. 30.>

**부칙** <제350호,2025. 2.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특례) ①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 5월 31일까지는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 5월 31일까지는 별표 1의4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 제4조제1항에 따라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기관별 공무원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 5월 31일까지는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373호,2025.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6호,2026. 2. 19.>

이 규칙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0호,2026. 7.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6. 7. 21.>

##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2조제1항 본문 관련)

| | |
|---|---|
| 총계 | 27,009 |
| 교육공무원 계 | 20,843 |
| 대학 계 | 19,102 |
| 총장 | 36 |
|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 | 16,191 |
| 조교 | 2,875 |
| 중·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계 | 801 |
| 교장 | 17 |
| 교감 | 17 |
| 교사 | 767 |
|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계 | 428 |
| 교장 | 16 |
| 교감 | 16 |
| 교사 | 396 |
| 유치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계 | 19 |
| 원장 | 1 |
| 원감 | 3 |
| 교사 | 15 |
| 특수학교 계 | 385 |
| 교장 | 6 |
| 교감 | 10 |
| 교사(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특수학급 담당 특수교사를 포함한다) | 369 |
| 각급 학교에 두는 보건교사 등 계 | 87 |
| 보건교사 | 41 |
| 영양교사 | 31 |

| | |
|---|---|
| 사서교사 | 12 |
| 전문상담교사 | 3 |
| 교육전문직 계 | 21 |
| 교육연구관 | 7 |
| 교육연구사 | 14 |
| 별정직 계 | 26 |
| 고위공무원단 | 17 |
|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 9 |
| 일반직 계 | 6,140 |
|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 4 |
| 서기관 | 75 |
| 과학기술서기관 | 12 |
|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 38 |
|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보건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 2 |
| 서기관 또는 사서사무관 | 2 |
| 과학기술서기관 ·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 5 |
| 행정사무관 | 322 |
| 사서사무관 | 27 |
|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 29 |
| 임업사무관 | 2 |
| 해양수산사무관 | 7 |
| 전산사무관 | 14 |
| 방송무대사무관 | 1 |
| 행정주사 | 931 |
| 행정주사 · 공업주사 · 보건주사 · 시설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 27 |
| 직업상담주사 | 2 |
| 사서주사 | 188 |
| 공업주사 | 210 |

| | |
|---|---|
| 농업주사 | 15 |
| 임업주사 | 13 |
| 수의주사 | 12 |
| 해양수산주사 | 85 |
| 보건주사 | 2 |
| 의료기술주사 | 5 |
| 식품위생주사 | 11 |
| 약무주사 | 2 |
| 간호주사 | 17 |
| 환경주사 | 10 |
| 항공주사 | 1 |
| 시설주사 | 131 |
| 전산주사 | 101 |
| 방송통신주사 | 6 |
| 방송무대주사 | 7 |
| 조리주사 | 3 |
| 토목운영주사 | 1 |
| 전기운영주사 | 1 |
| 기계운영주사 | 4 |
| 행정주사보 | 619 |
|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 14 |
| 직업상담주사보 | 4 |
| 사회복지주사보 | 8 |
| 사서주사보 | 137 |
| 공업주사보 | 156 |
| 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 4 |
| 공업주사보 · 시설주사보 또는 환경주사보 | 5 |
| 농업주사보 | 12 |
| 임업주사보 | 8 |

| | |
|---|---|
| 수의주사보 | 10 |
| 해양수산주사보 | 102 |
| 보건주사보 | 10 |
| 의료기술주사보 | 6 |
| 식품위생주사보 | 13 |
| 약무주사보 | 1 |
| 간호주사보 | 12 |
| 환경주사보 | 9 |
| 항공주사보 | 7 |
| 시설주사보 | 65 |
| 전산주사보 | 104 |
| 방송통신주사보 | 7 |
| 방송무대주사보 | 7 |
| 운전주사보 | 3 |
| 위생주사보 | 1 |
| 조리주사보 | 7 |
| 건축운영주사보 | 1 |
| 전기운영주사보 | 2 |
| 기계운영주사보 | 6 |
| 선박기관운영주사보 | 1 |
| 행정서기 | 496 |
| 직업상담서기 | 2 |
| 사회복지서기 | 24 |
| 사서서기 | 99 |
| 공업서기 | 137 |
| 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 10 |
| 농업서기 | 15 |
| 임업서기 | 16 |
| 해양수산서기 | 56 |

| | |
|---|---|
| 보건서기 | 12 |
| 의료기술서기 | 4 |
| 식품위생서기 | 1 |
| 간호서기 | 11 |
| 환경서기 | 4 |
| 항공서기 | 3 |
| 시설서기 | 51 |
| 전산서기 | 48 |
| 방송통신서기 | 6 |
| 방송무대서기 | 1 |
| 운전서기 | 8 |
| 위생서기 | 2 |
| 조리서기 | 10 |
| 통신운영서기 | 1 |
| 전기운영서기 | 1 |
| 기계운영서기 | 4 |
| 선박기관운영서기 | 1 |
| 농림운영서기 | 2 |
| 행정서기보 | 610 |
| 직업상담서기보 | 5 |
| 사회복지서기보 | 10 |
| 사서서기보 | 22 |
| 방호서기보 | 19 |
| 공업서기보 | 89 |
| 공업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 9 |
| 농업서기보 | 12 |
| 임업서기보 | 9 |
| 해양수산서기보 | 33 |
| 보건서기보 | 3 |

| | |
|---|---|
| 의료기술서기보 | 5 |
| 식품위생서기보 | 5 |
| 간호조무서기보 | 1 |
| 항공서기보 | 2 |
| 시설서기보 | 46 |
| 방재안전서기보 | 2 |
| 전산서기보 | 28 |
| 방송통신서기보 | 4 |
| 방송무대서기보 | 3 |
| 운전서기보 | 199 |
| 위생서기보 | 56 |
| 위생서기보 또는 조리서기보 | 12 |
| 조리서기보 | 39 |
| 건축운영서기보 | 7 |
| 통신운영서기보 | 1 |
| 전화상담운영서기보 | 3 |
| 전기운영서기보 | 5 |
| 기계운영서기보 | 8 |
| 열관리운영서기보 | 4 |
| 화공운영서기보 | 1 |
| 선박항해운영서기보 | 1 |
| 선박기관운영서기보 | 1 |
| 농림운영서기보 | 6 |
| 사무운영서기보 | 27 |
| 수의연구관 | 1 |
| 학예연구사 | 27 |
| 기록연구사 | 39 |
| 공업연구사 | 2 |
| 농업연구사 | 2 |

| | |
|---|---|
| 수의연구사 | 5 |
| 해양수산연구사 | 2 |
| 보건연구사 | 2 |
| 전문경력관 나군(예비군 담당) | 20 |
| 전문경력관 나군(통역 담당) | 3 |
| 전문경력관 나군(노무 담당) | 27 |
| 전문경력관 나군(심리상담 담당) | 29 |
| 전문경력관 다군(통역 담당) | 2 |
| 전문경력관 다군(심리상담 담당) | 1 |

■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 1의2] <개정 2026. 7. 21.>

##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2조제1항 단서 관련)

| | |
|---|---|
| 총계 | 27,009 |
| 교육공무원 계 | 20,843 |
| 대학 계 | 19,102 |
| 총장 | 36 |
|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 | 16,191 |
| 조교 | 2,875 |
| 중·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계 | 801 |
| 교장 | 17 |
| 교감 | 17 |
| 교사 | 767 |
|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계 | 428 |
| 교장 | 16 |
| 교감 | 16 |
| 교사 | 396 |
| 유치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계 | 19 |
| 원장 | 1 |
| 원감 | 3 |
| 교사 | 15 |
| 특수학교 계 | 385 |
| 교장 | 6 |
| 교감 | 10 |
| 교사(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특수학급 담당 특수교사를 포함한다) | 369 |
| 각급 학교에 두는 보건교사 등 계 | 87 |
| 보건교사 | 41 |
| 영양교사 | 31 |

| | |
|---|---|
| 사서교사 | 12 |
| 전문상담교사 | 3 |
| 교육전문직 계 | 21 |
| 교육연구관 | 7 |
| 교육연구사 | 14 |
| 별정직 계 | 26 |
| 고위공무원단 | 17 |
|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 9 |
| 일반직 계 | 6,140 |
|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 4 |
| 서기관 | 75 |
| 과학기술서기관 | 12 |
|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 38 |
|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보건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 2 |
| 서기관 또는 사서사무관 | 2 |
| 과학기술서기관 ·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 5 |
| 행정사무관 | 329 |
| 사서사무관 | 27 |
|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 29 |
| 임업사무관 | 2 |
| 해양수산사무관 | 7 |
| 전산사무관 | 14 |
| 방송무대사무관 | 1 |
| 행정주사 | 930 |
| 행정주사 · 공업주사 · 보건주사 · 시설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 27 |
| 직업상담주사 | 2 |
| 사서주사 | 189 |
| 공업주사 | 210 |

| | |
|---|---|
| 농업주사 | 15 |
| 임업주사 | 13 |
| 수의주사 | 12 |
| 해양수산주사 | 85 |
| 보건주사 | 2 |
| 의료기술주사 | 5 |
| 식품위생주사 | 11 |
| 약무주사 | 2 |
| 간호주사 | 17 |
| 환경주사 | 10 |
| 항공주사 | 1 |
| 시설주사 | 132 |
| 전산주사 | 102 |
| 방송통신주사 | 6 |
| 방송무대주사 | 7 |
| 조리주사 | 3 |
| 토목운영주사 | 1 |
| 전기운영주사 | 1 |
| 기계운영주사 | 4 |
| 행정주사보 | 613 |
|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 14 |
| 직업상담주사보 | 4 |
| 사회복지주사보 | 8 |
| 사서주사보 | 136 |
| 공업주사보 | 156 |
| 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 4 |
| 공업주사보 · 시설주사보 또는 환경주사보 | 5 |
| 농업주사보 | 12 |
| 임업주사보 | 8 |

| | |
|---|---|
| 수의주사보 | 10 |
| 해양수산주사보 | 102 |
| 보건주사보 | 10 |
| 의료기술주사보 | 6 |
| 식품위생주사보 | 13 |
| 약무주사보 | 1 |
| 간호주사보 | 12 |
| 환경주사보 | 9 |
| 항공주사보 | 7 |
| 시설주사보 | 64 |
| 전산주사보 | 103 |
| 방송통신주사보 | 7 |
| 방송무대주사보 | 7 |
| 운전주사보 | 3 |
| 위생주사보 | 1 |
| 조리주사보 | 7 |
| 건축운영주사보 | 1 |
| 전기운영주사보 | 2 |
| 기계운영주사보 | 6 |
| 선박기관운영주사보 | 1 |
| 사무운영주사보 | 1 |
| 행정서기 | 496 |
| 직업상담서기 | 2 |
| 사회복지서기 | 24 |
| 사서서기 | 99 |
| 공업서기 | 137 |
| 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 10 |
| 농업서기 | 15 |
| 임업서기 | 16 |

| | |
|---|---|
| 해양수산서기 | 56 |
| 보건서기 | 12 |
| 의료기술서기 | 4 |
| 식품위생서기 | 1 |
| 간호서기 | 11 |
| 환경서기 | 4 |
| 항공서기 | 3 |
| 시설서기 | 51 |
| 전산서기 | 48 |
| 방송통신서기 | 6 |
| 방송무대서기 | 1 |
| 운전서기 | 8 |
| 위생서기 | 2 |
| 조리서기 | 10 |
| 통신운영서기 | 1 |
| 전기운영서기 | 1 |
| 기계운영서기 | 4 |
| 선박기관운영서기 | 1 |
| 농림운영서기 | 2 |
| 행정서기보 | 610 |
| 직업상담서기보 | 5 |
| 사회복지서기보 | 10 |
| 사서서기보 | 22 |
| 방호서기보 | 19 |
| 공업서기보 | 89 |
| 공업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 9 |
| 농업서기보 | 12 |
| 임업서기보 | 9 |
| 해양수산서기보 | 33 |

| | |
|---|---|
| 보건서기보 | 3 |
| 의료기술서기보 | 5 |
| 식품위생서기보 | 5 |
| 간호조무서기보 | 1 |
| 항공서기보 | 2 |
| 시설서기보 | 46 |
| 방재안전서기보 | 2 |
| 전산서기보 | 28 |
| 방송통신서기보 | 4 |
| 방송무대서기보 | 3 |
| 운전서기보 | 199 |
| 위생서기보 | 56 |
| 위생서기보 또는 조리서기보 | 12 |
| 조리서기보 | 39 |
| 건축운영서기보 | 7 |
| 통신운영서기보 | 1 |
| 전화상담운영서기보 | 3 |
| 전기운영서기보 | 5 |
| 기계운영서기보 | 8 |
| 열관리운영서기보 | 4 |
| 화공운영서기보 | 1 |
| 선박항해운영서기보 | 1 |
| 선박기관운영서기보 | 1 |
| 농림운영서기보 | 6 |
| 사무운영서기보 | 26 |
| 수의연구관 | 1 |
| 학예연구사 | 27 |
| 기록연구사 | 39 |
| 공업연구사 | 2 |

| | |
|---|---|
| 농업연구사 | 2 |
| 수의연구사 | 5 |
| 해양수산연구사 | 2 |
| 보건연구사 | 2 |
| 전문경력관 나군(예비군 담당) | 20 |
| 전문경력관 나군(통역 담당) | 3 |
| 전문경력관 나군(노무 담당) | 27 |
| 전문경력관 나군(심리상담 담당) | 29 |
| 전문경력관 다군(통역 담당) | 2 |
| 전문경력관 다군(심리상담 담당) | 1 |

■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 1의3] 삭제 <2025. 12. 30.>

■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 1의4] 삭제 <2025. 12. 30.>

■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6. 2. 19.>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제3조 관련)

| 구 분 | 직 위 | 등 급 |
|---|---|---|
| 강원대학교 | 사무국장 | 나등급 |
| 경북대학교 | 사무국장 | 나등급 |
| 경상국립대학교 | 사무국장 | 나등급 |
| 국립공주대학교 | 사무국장 | 나등급 |
| 국립군산대학교 | 사무국장 | 나등급 |
| 국립목포대학교 | 사무국장 | 나등급 |
| 국립부경대학교 | 사무국장 | 나등급 |
| 부산대학교 | 사무국장 | 나등급 |
| 국립순천대학교 | 사무국장 | 나등급 |
| 국립경국대학교 | 사무국장 | 나등급 |
| 전남대학교 | 사무국장 | 나등급 |
| 전북대학교 | 사무국장 | 나등급 |
| 제주대학교 | 사무국장 | 나등급 |
| 국립창원대학교 | 사무국장 | 나등급 |
| 충남대학교 | 사무국장 | 나등급 |
| 충북대학교 | 사무국장 | 나등급 |
| 한국교원대학교 | 사무국장 | 나등급 |

■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6. 2. 19.>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기관별 공무원 정원표(제4조제1항 관련)

| 구분 | 교육공무원 | 일반직 · 별정직 · 관리운영직 공무원 | 계 |
|---|---|---|---|
| 강원대학교 | 1,755 | 428 | 2,183 |
| 경북대학교 | 1,665 | 342 | 2,007 |
| 경상국립대학교 | 1,306 | 363 | 1,669 |
| 국립공주대학교 | 796 | 223 | 1,019 |
| 국립군산대학교 | 423 | 180 | 603 |
| 국립금오공과대학교 | 281 | 87 | 368 |
| 국립목포대학교 | 395 | 130 | 525 |
| 국립목포해양대학교 | 148 | 116 | 264 |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233 | 219 | 452 |
| 국립부경대학교 | 787 | 274 | 1,061 |
| 부산대학교 | 1,595 | 335 | 1,930 |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489 | 152 | 641 |
| 국립순천대학교 | 412 | 135 | 547 |
| 국립경국대학교 | 365 | 127 | 492 |
| 전남대학교 | 1,629 | 417 | 2,046 |
| 전북대학교 | 1,338 | 309 | 1,647 |
| 제주대학교 | 862 | 265 | 1,127 |
| 국립창원대학교 | 423 | 121 | 544 |
| 충남대학교 | 1,189 | 255 | 1,444 |
| 충북대학교 | 1,064 | 239 | 1,303 |
| 한경국립대학교 | 317 | 109 | 426 |
| 한국교원대학교 | 408 | 157 | 565 |
| 국립한국교통대학교 | 385 | 138 | 523 |
| 한국체육대학교 | 182 | 79 | 261 |
| 국립한국해양대학교 | 333 | 195 | 528 |
| 국립한밭대학교 | 346 | 103 | 449 |
| 경인교육대학교 | 190 | 82 | 272 |

| | | | |
|---|---|---|---|
| 공주교육대학교 | 136 | 42 | 178 |
| 광주교육대학교 | 150 | 49 | 199 |
| 대구교육대학교 | 161 | 49 | 210 |
| 부산교육대학교 | 132 | 47 | 179 |
| 서울교육대학교 | 159 | 51 | 210 |
| 전주교육대학교 | 123 | 41 | 164 |
| 진주교육대학교 | 117 | 44 | 161 |
| 청주교육대학교 | 107 | 42 | 149 |
| 춘천교육대학교 | 115 | 43 | 158 |
| 서울맹학교 | 74 | 54 | 128 |
| 서울농학교 | 49 | 28 | 77 |
| 한국선진학교 | 68 | 37 | 105 |
| 한국경진학교 | 66 | 34 | 100 |
| 한국우진학교 | 70 | 25 | 95 |
| 합 계 | 20,843 | 6,166 | 27,009 |

■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 3의2] 삭제 <2025. 12. 30.>

■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6. 2. 19.>

국립의 각급 학교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직급별 정원표(제5조 관련)

1. 제5조제1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8년 12월 31일)

| 구분 | 일반직 | | 계 |
|---|---|---|---|
| |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 |
| 가. 강원대학교 | 1 | 1 | 2 |
| 나. 경북대학교 | 1 | 1 | 2 |
| 다. 경상국립대학교 | 1 | 1 | 2 |
| 라. 부산대학교 | 1 | 1 | 2 |
| 마. 전남대학교 | 1 | 1 | 2 |
| 바. 전북대학교 | 1 | 1 | 2 |
| 사. 제주대학교 | 1 | 1 | 2 |
| 아. 충남대학교 | 1 | 1 | 2 |
| 자. 충북대학교 | 1 | 1 | 2 |
| 합계 | 9 | 9 | 18 |

2. 제5조제2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30년 2월 28일)

| 구분 | 직급 | 정원 |
|---|---|---|
| 가. 국립목포대학교 | 서기관 | 1 |
| | 행정주사 | 3 |
| | 시설주사 | 1 |
| | 행정주사보 | 2 |
| | 사서주사보 | 1 |
| | 간호주사보 | 1 |
| | 전산주사보 | 1 |

| | | |
|---|---|---|
| | 행정서기 | 1 |
| | 전산서기 | 1 |
| | 공업서기 | 1 |
| | 운전서기 | 1 |
| | 합계 | 14 |
| 나. 국립창원대학교 | 서기관 | 2 |
| | 행정주사 | 8 |
| | 시설주사 | 2 |
| | 행정주사보 | 4 |
| | 시설주사보 | 1 |
| | 사서주사보 | 2 |
| | 행정서기 | 2 |
| | 시설서기 | 1 |
| | 전산서기 | 2 |
| | 공업서기 | 1 |
| | 운전서기 | 2 |
| | 합계 | 27 |

# 국립학교의 각종 증명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4. 12.] [교육부령 제301호, 2023. 4. 12., 일부개정]

교육부 (반부패청렴담당관) 044 - 203 - 610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부 소관 국립의 각급 학교에서 발급하는 증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증명의 종류 등)** ① 교육부 소관 국립의 각급 학교(이하 “ 학교 ”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증명의 종류는 별표와 같다.

② 학교는 필요한 경우 제3조에 따른 시행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증명 외의 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명은 수수료를 받지 아니하고 발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수수료를 받도록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

**제3조(시행 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학교의 증명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한다.

**부칙** <제145호,2018. 1. 3.>

이 규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1호,2023. 4.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국립학교의 각종 증명 발급 등에 관한 규칙 [별표] <개정 2023. 4. 12.>

학교에서 발급하는 증명의 종류(제2조제1항 관련)

| 학교 구분 | 증명의 종류 |
|---|---|
|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 | 가. 재학 증명<br>나. 졸업 증명<br>다. 유치원생활기록부 증명<br>라. 교육비 납입 증명 |
|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 | 가. 재학 증명<br>나. 성적 증명(초등학교 및 그에 상응하는 학교는 제외한다)<br>다. 학교생활기록부 증명<br>라. 제적(정원 외 관리) 증명<br>마. 졸업(예정) 증명<br>바. 교육비 납입 증명 |
|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 | 가. 재학 증명<br>나. 성적 증명<br>다. 학적부 증명<br>라. 제적 증명<br>마. 졸업(예정) 증명<br>바. 합격 증명<br>사. 입학 증명<br>아. 휴학 증명<br>자. 복학 증명<br>차. 자퇴 증명<br>카. 수료(예정) 증명<br>타. 학위 수여(예정) 증명<br>파. 복수전공 이수(예정) 증명<br>하. 부전공 이수(예정) 증명<br>거. 교육비 납입 증명<br>너. 교직과정 이수(예정) 증명<br>더. 강사 경력 증명 |

# 국립학교의 각종 증명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4. 12.] [교육부령 제301호, 2023. 4. 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부 소관 국립의 각급 학교에서 발급하는 증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증명의 종류 등)** ① 교육부 소관 국립의 각급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증명의 종류는 별표와 같다.

② 학교는 필요한 경우 제3조에 따른 시행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증명 외의 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명은 수수료를 받지 아니하고 발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수수료를 받도록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

**제3조(시행 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학교의 증명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한다.

**부칙** <제145호,2018. 1. 3.>

이 규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1호,2023. 4.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국립학교의 각종 증명 발급 등에 관한 규칙 [별표] <개정 2023. 4. 12.>

학교에서 발급하는 증명의 종류(제2조제1항 관련)

| 학교 구분 | 증명의 종류 |
|---|---|
|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 | 가. 재학 증명<br>나. 졸업 증명<br>다. 유치원생활기록부 증명<br>라. 교육비 납입 증명 |
|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 | 가. 재학 증명<br>나. 성적 증명(초등학교 및 그에 상응하는 학교는 제외한다)<br>다. 학교생활기록부 증명<br>라. 제적(정원 외 관리) 증명<br>마. 졸업(예정) 증명<br>바. 교육비 납입 증명 |
|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 | 가. 재학 증명<br>나. 성적 증명<br>다. 학적부 증명<br>라. 제적 증명<br>마. 졸업(예정) 증명<br>바. 합격 증명<br>사. 입학 증명<br>아. 휴학 증명<br>자. 복학 증명<br>차. 자퇴 증명<br>카. 수료(예정) 증명<br>타. 학위 수여(예정) 증명<br>파. 복수전공 이수(예정) 증명<br>하. 부전공 이수(예정) 증명<br>거. 교육비 납입 증명<br>너. 교직과정 이수(예정) 증명<br>더. 강사 경력 증명 |

# 국립학교 설치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23호, 2026. 6. 23., 타법개정]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 044 - 203 - 6067
교육부 (국립대학지원과) 044 - 203 - 6919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기본법」 제11조제1항,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 및 「고등교육법」 제18조ㆍ제19조에 따라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학교의 설치ㆍ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2. 28., 2009. 2. 27.>

**제2조(적용범위)**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 및 「고등교육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립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설치 및 조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 2. 28.>

**제3조(명칭 등)** 교육부장관의 관할 아래 두는 학교의 명칭ㆍ소재지 및 과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4조(공무원의 정원)**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학교의 장)** ①대학 및 교육대학에 총장을, 특수학교에 교장을 각각 둔다. <개정 2009. 9. 3., 2012. 2. 29., 2012. 5. 23., 2013. 3. 23., 2022. 11. 8.>
②총장 및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개정 2009. 9. 3., 2019. 7. 2.>

**제5조의2(부총장)** ① 대학 및 교육대학에 총장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해당 대학 및 교육대학의 교수 중에서 부총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 2. 27., 2012. 2. 29.>
②부총장은 대학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사 등 일부의 권한에 대하여 총장의 위임을 받아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부총장은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09. 2. 27.>
[본조신설 2006. 2. 28.]

**제6조(단과대학 등)** ①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대학은 단과대학 및 대학원을, 교육대학은 대학원을 각각 둘 수 있다. <개정 2009. 2. 27., 2012. 2. 29.>
②대학의 단과대학(단과대학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학을 말한다) 및 대학원에 학과ㆍ학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이하 "학과등"이라 한다)을, 교육대학 및 그 대학원에 학과등을 둘 수 있다.<개정 2005. 2. 28., 2012. 2. 29., 2022. 11. 8., 2024. 3. 1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단과대학ㆍ대학원 및 학과등에 장을 각각 두되, 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학과등의 장은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중에서 둔다. 다만

,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장은 다른 대학원의 장이나 관련 단과대학 또는 학과등의 장 중에서 둘 수 있다.<개정 2009. 2. 27., 2024. 3. 12.>

④대학의 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장은 총장의, 학과등의 장은 단과대학의 장(단과대학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장을 말한다) 또는 대학원의 장의 명을 받아 당해 단과대학ㆍ대학원 및 학과등의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개정 2005. 2. 28., 2012. 2. 29., 2019. 7. 2., 2024. 3. 12.>

⑤ 삭제<2005. 2. 28.>

⑥교육대학의 대학원의 장은 총장의, 학과등의 장은 총장 또는 대학원의 장의 명을 받아 당해 대학원 및 학과등의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개정 2019. 7. 2., 2024. 3. 12.>

⑦ 삭제<2022. 11. 8.>

**제7조(시설 등)** ①대학(교육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 및 제21조에서 같다)에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지원시설ㆍ연구시설ㆍ부속시설 및 그 밖의 필요한 시설(이하 "부속시설등"이라 한다)을, 특수학교에 필요한 실습시설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 2. 14., 2009. 2. 27., 2012. 2. 29., 2013. 3. 23., 2022. 11. 8., 2023. 11. 16.>

② 대학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ㆍ지원시설 및 연구시설을 이 영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학교의 소재지에 두어야 한다. 다만, 교육ㆍ연구활동에 필요한 경우로서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대학설립ㆍ개편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소재지 외의 지역에 본문에 따른 교육기본시설ㆍ지원시설 및 연구시설을 둘 수 있다.<신설 2023. 11. 16.>

③부속시설등의 장은 관련 단과대학ㆍ대학원 또는 학과등의 장 중에서 두되, 필요한 경우 학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06. 2. 28., 2009. 2. 27., 2009. 9. 3., 2023. 11. 16., 2024. 3. 12.>

④부속시설등의 장은 총장, 단과대학 또는 대학원의 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한다.<개정 2009. 2. 27., 2009. 9. 3., 2019. 7. 2., 2023. 11. 16.>

⑤총장은 부속시설등의 시설 중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연구시설ㆍ부속시설(공통시설을 제외한다)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해당 시설의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존속 또는 폐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정한다.<개정 2008. 2. 14., 2009. 2. 27., 2009. 9. 3., 2023. 11. 16.>

[제목개정 2023. 11. 16.]

**제8조(부설학교)** ①대학의 사범계 단과대학(이하 이 조에서 "사범대학"이라 한다), 교육대학에 별표 5의 학교를 부설한다. <개정 2009. 9. 3.>

②제1항에 따른 부설학교에 장을 각각 두되, 부설학교의 장은 사범대학의 장 또는 총장의 명을 받아 해당 학교의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 또는 원생을 지도한다.<개정 2009. 9. 3., 2019. 7. 2.>

**제9조(대학의 하부조직)** ①대학에 사무국ㆍ행정본부(강원대학교ㆍ경북대학교ㆍ경상국립대학교 및 전남대학교로 한정한다)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ㆍ실ㆍ본부ㆍ단 등의 하부조직을 둔다. <개정 2006. 2. 28., 2006. 6. 30., 2007. 2. 28., 2008. 2. 14., 2009. 2. 27., 2012. 2. 29., 2020. 3. 31., 2021. 2. 26., 2023. 11. 16.>

②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거나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보한다.<신설 2023. 11. 16., 2024. 3. 12.>

③ 행정본부장은 3급 일반직공무원, 4급 일반직공무원 또는 5급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처ㆍ실ㆍ본부ㆍ단 등의 하부조직의 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보한다. 이 경우 행정본부장의 명칭에 관하여는 총장이 이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신설 2023. 11. 16.>

④사무국장은 별표 7의 사무를 분장하고, 처ㆍ실ㆍ본부ㆍ단 등의 하부조직의 장의 분장사무는 학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 2. 27., 2020. 3. 31., 2023. 11. 16.>

⑤부속시설등과 제1항에 따른 사무국 및 처ㆍ실ㆍ본부ㆍ단 등의 하부조직에 별표 6의 범위에서 과 및 담당관을 둔다. 이 경우 과 및 담당관의 명칭에 관하여는 총장이 이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개정 2009. 2. 27., 2020. 3. 31., 2023. 11. 16.>

⑥과장 및 담당관은 3급 일반직공무원, 4급 일반직공무원 또는 5급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학생실습과 선박운항을 담당하는 과장 및 담당관은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중에서 둘 수 있고, 부속시설에 두는 과장 및 담당관은 4급 일반직공무원 또는 5급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2006. 2. 28., 2007. 2. 28., 2009. 2. 27., 2023. 11. 16.>

⑦대학의 단과대학 및 대학원에 별표 8의 범위에서 행정실을 두되, 실장은 4급 일반직공무원 또는 5급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실을 통합하여 둘 수 있다.<개정 2006. 2. 28., 2007. 2. 28., 2009. 2. 27., 2009. 9. 3., 2023. 11. 16., 2024. 3. 12.>

**제9조의2(대학 집중 육성 추진 관련 한시조직)** ① 다음 각 호의 대학의 사무국 및 처ㆍ실ㆍ본부ㆍ단 등의 하부조직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1개의 과를 둔다.

1. 강원대학교
2. 경북대학교
3. 경상국립대학교
4. 부산대학교
5. 전남대학교
6. 전북대학교
7. 제주대학교
8. 충남대학교
9. 충북대학교

② 제1항에 따른 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5급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의 전략산업과 연계한 대학 집중 육성 추진 정책의 기획ㆍ총괄
2. 인공지능 기반 교육체계 개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 12. 30.]
[제목개정 2026. 2. 27.]

**제9조의3(대학 통ㆍ폐합 추진 관련 한시조직)**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학의 사무국 및 처ㆍ실ㆍ본부ㆍ단 등의 하부조직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 제1호에 따라 2030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을 둔다.
1. 국립목포대학교: 1개 과
2. 국립창원대학교: 2개 과
② 제1항에 따른 과에 각각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ㆍ폐합되는 기존 공립대학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2. 통ㆍ폐합되는 기존 공립대학의 교지(校地) 및 교사(校舍) 등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통ㆍ폐합 이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6. 2. 27.]

**제10조(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사무국장 임용에 관한 특례)** ① 제9조제2항에 따른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은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2조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임용한다.
② 제9조제2항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임용하되, 대통령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총장에게 위임한다.
③ 총장은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2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임용자격기준을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④ 총장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2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시험을 실시한다. 이 경우 총장은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의5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용시험의 필요성 등에 관한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의3제1항
2.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5조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영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
⑤ 총장은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의4제2항에 따라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이 경우 총장은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의4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도 불구하고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시험위원을 각각 3명 이상으로 해야 한다.
⑥ 제5항 후단에 따른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시험위원은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의 범위에서 임용후보자를 선발한다. 이 경우 면접시험에서의 평가 방법에 관하여는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의4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⑦ 제6항 전단에 따라 선발된 임용후보자에 대해서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같은 규정에 따른 역량평가를 생략할 수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6제3항 단서에 따라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생략할 수 있다.
⑧ 총장은 제6항 전단에 따라 선발된 임용후보자 중에서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⑨ 제9조제2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를 한 차례 이상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연장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⑩ 제9조제2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은 임용 당시 총장의 임기만료(총장이 임기 중 면직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함께 면직된다. 다만,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부총장 또는 총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당시 총장의 임기만료 시점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별정직공무원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⑪ 제9조제2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의2, 제6조, 제7조의4 및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9조의2를 적용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23. 11. 16.]

**제11조** 삭제 <2012. 2. 29.>

**제12조** 삭제 <2012. 2. 29.>

**제13조(교육대학의 하부조직)** ①교육대학에 총무처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ㆍ실ㆍ본부ㆍ단 등의 하부조직을 두되, 총무처장은 4급 일반직공무원 또는 5급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외의 처ㆍ실ㆍ본부ㆍ단 등의 하부조직의 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둔다. <개정 2004. 10. 29., 2006. 2. 28., 2007. 2. 28., 2009. 2. 27., 2020. 3. 31., 2023. 11. 16.>
②총무처장은 별표 7의 사무를 분장하고, 그 외의 처ㆍ실ㆍ본부ㆍ단 등의 하부조직의 장의 분장사무는 학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 3. 31.>

**제14조** 삭제 <2022. 11. 8.>

**제15조(월정직책급 등)** 제5조의2, 제6조, 제7조, 제9조 및 제13조에 따라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가 겸직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학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봉급ㆍ기말수당 및 정근수당 총액의 일정비율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 계상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직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9. 3., 2012. 2. 29., 2022. 11. 8.>
[제목개정 2009. 9. 3.]

**제16조(학비보조 등)** ①대학의 학사과정 간호계 학과 또는 학부의 제3학년 이상의 학생은 재학 중 기숙사에 입사하여 생활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들 학생에 대하여는 기숙사비ㆍ피복비 및 그 밖의 학비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급한다.

②국립한국해양대학교의 해사대학, 국립목포해양대학교의 해사대학, 한국체육대학교의 체육학과 및 경기지도과의 학생에 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개정 2012. 2. 29., 2015. 2. 3., 2023. 11. 16.>

③국립한국해양대학교의 해사대학, 국립목포해양대학교의 해사대학, 한국체육대학교의 체육학과 및 경기지도과의 학생은 재학중 승선생활관 또는 생활관에 입관하여 생활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립한국해양대학교 및 국립목포해양대학교의 학생에 대하여는 승선생활관비ㆍ피복비 및 그 밖의 학비를, 한국체육대학교의 학생에 대하여는 생활관비를 국고에서 지급한다.<개정 2012. 2. 29., 2023. 11. 16.>

④국립한국해양대학교ㆍ국립목포해양대학교 및 한국체육대학교의 총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선생활관 또는 생활관에 입관한 학생중 우수해기사 또는 체육지도자 양성대상자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있을 때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선생활관 또는 생활관에서 퇴관시킬 수 있다.<개정 2023. 11. 16.>

⑤국립한국해양대학교의 해사대학, 국립목포해양대학교의 해사대학 학생은 재학중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선실습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실습비는 국고에서 지급한다.<개정 2012. 2. 29., 2023. 11. 16.>

⑥승선실습 기간 중 실습선에 승선 근무하는 경상국립대학교ㆍ국립군산대학교ㆍ국립목포해양대학교ㆍ국립부경대학교ㆍ전남대학교ㆍ제주대학교 및 국립한국해양대학교의 교직원과 학생에 대해서는 식비를 국고에서 지급한다.<개정 2006. 2. 28., 2008. 2. 29., 2013. 3. 23., 2021. 2. 26., 2023. 11. 16.>

⑦ 국립한국교통대학교의 항공운항학과 학생은 재학 중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행실습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실습비는 국고에서 지급한다.<신설 2020. 3. 31., 2023. 11. 16.>

⑧교육대학의 야간 또는 계절제 학생으로 수학하는 현직 교원에 대하여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한다.<개정 2020. 3. 31.>

⑨한경국립대학교의 학생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신설 2002. 2. 4., 2012. 8. 31., 2015. 2. 3., 2020. 3. 31., 2022. 11. 8., 2023. 11. 16.>

⑩ 삭제<2013. 3. 23.>

⑪ 삭제<2013. 3. 23.>

⑫특수학교의 학생은 재학중 기숙사에 입사하여 생활훈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⑬제12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에 대하여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고, 기숙사비를 국고에서 지급한다.<개정 2002. 2. 4.>

**제17조(학비보조금의 지급정지)** 대학의 간호계 학과 또는 학부, 국립한국해양대학교의 해사대학, 국립목포해양대학교의 해사대학, 한국체육대학교의 체육학과 및 경기지도과의 학생이 휴학하거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학을 당한 때에는 그 기간중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비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개정 2004. 12. 30., 2008. 2. 14., 2012. 2. 29., 2012. 5. 23., 2013. 3. 23., 2023. 11. 16.>

**제18조(취업 지원 의무)** 국립한국해양대학교의 장 및 국립목포해양대학교의 장은 각각의 대학의 해사대학의 졸업자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무에 취업 및 종사할 수 있도록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직무와 관련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 11. 16.]

**제19조** 삭제 <2023. 11. 16.>

**제20조(경비부담 등)** ①이 영에 따라 설립된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부담한다. <개정 2004. 12. 30., 2007. 2. 28., 2008. 2. 14., 2008. 2. 29., 2009. 2. 27., 2011. 2. 25., 2012. 2. 29., 2012. 5. 23., 2013. 3. 23.>
② 삭제<2013. 3. 23.>

**제21조(대학 간 통·폐합에 관한 특례)** 대학 간 통、폐합에 관하여는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 11. 16.]

**제22조(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 ①각 학교의 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②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5. 2. 28., 2009. 2. 27., 2024. 3. 12.>
1. 단과대학、대학원 및 학과등의 설치
2. 부설학교、부속시설등 및 실습시설의 설치
3. 하부조직(단과대학、대학원 및 부속시설등에 두는 하부조직을 포함한다)과 그 분장사무
4. 그 밖에 조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학교의 장은 업무의 성질과 양에 따라 조직 및 인력배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정하되,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제17143호,2001. 3. 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7조, 제9조(사무국장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다), 제11조(총무과 및 총무과장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다), 제12조(총무과 및 총무과장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다), 제13조(총무과 및 총무과장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다), 제14조(총무과 및 총무과장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다)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교명칭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대전산업대학교에 재적하는 학생(대학원생을 포함한다)은 이 영에 의한 한밭대학교의 해당 학과의 해당 학년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대전산업대학교소속 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한밭대학교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 (폐지되는 공주문화대학의 학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공주문화대학은 2003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동학교 및 이 영 시행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고, 공주문화대학의 학생중 정당한 사유로 그 존속기간내에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자가 있을 때에는 다른 전문대학이나 공주대학교에 각각 편입학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입학하는 당해 학교에 그 학생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공주문화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및 조교외의 공무원은 공주대학교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공주문화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및 조교는 2002년 2월 28일까지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 별표의 교수 및 조교의 자격기준에 의한 해당 자격에 따라 공주대학교 정원의 범위안에서 공주대학교의 교원 및 조교로 임용한다. 다만, 임용되기전까지는 공주대학교의 교원 및 조교로 보되, 교원 및 조교의 자격·보수 등에 관하여는 전문대학 교원 및 조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폐지된 학교의 학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1982년 3월 1일 당시 순천농업전문대학의 재적생중 정당한 사유로 1983년 2월 말일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가 있을 때에는 다른 전문대학에 그 학생에 대한 졸업정원 및 입학인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아 전과 또는 편입학할 수 있다.

②1983년 3월 1일 당시 경기공업전문대학의 재적생중 정당한 사유로 1984년 2월 말일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가 있을 때에는 개편된 해당 학교의 전문대학과정 또는 다른 전문대학에 그 학생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아 전과 또는 편입학할 수 있다.

③1984년 3월 1일 당시 전북대학교의과대학부속간호전문대학 및 전남대학교의과대학부속간호전문대학의 재학생중 정당한 사유로 1986년 2월 28일까지 해당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자 또는 철도간호전문대학·부산공업전문대학 및 대전공업전문대학의 재학생중 정당한 사유로 1985년 2월 28일까지 해당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자가 있을 때에는 전북대학교의과대학부속간호전문대학·전남대학교의과대학부속간호전문대학 및 철도간호전문대학의 재학생은 다른 전문대학에, 부산공업전문대학 및 대전공업전문대학의 재학생은 개편된 해당학교 또는 다른 전문대학에 각각 편입학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입학하는 당해 학교에 그 학생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④국립학교설치령중개정령(1984. 2. 29., 대통령령 제11375호)의 시행으로 폐지된 학교를 퇴학한 자 또는 졸업한 자의 학비보조금의 상환·복무의무 등에 관하여는 국립학교설치령중개정령(1984. 2. 29., 대통령령 제11375호)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1980년 5월 17일부터 1983년 12월 21일 사이에 경기공업전문대학의 학칙중 학생활동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제적된 자에 대하여는 개편된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편된 해당 학교의 학생으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⑥국립학교설치령중개정령(1987. 2. 28., 대통령령 제12088호)의 시행으로 폐지된 여수수산전문대학은 1989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동 학교 및 국립학교설치령중개정령(1987. 2. 28., 대통령령 제12088호) 시행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국립학교설치령중개정령(1987. 2. 28., 대통령령 제12088호)전의 규정을 적용하며, 여수수산전문대학의 학생중 정당한 사유로 그 존속기간내에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자가 있을 때에는 다른 전문대학 또는 개편된 해당학교에 각각 편입학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입학하는 당해 학교에 그 학생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⑦국립학교설치령중개정령(1991. 2. 28., 대통령령 제13322호)의 시행으로 폐지된 삼척공업전문대학 및 상주농업전문대학은 1992년 2월말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동 학교 및 국립학교설치령중개정령(1991. 2. 28., 대통령령 제13322호) 시행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국립학교설치령중개정령(1991. 2. 28., 대통령령 제13322호)전의 규정을 적용하며, 삼척공업전문대학과 상주농업전문대학의 학생중 정당한 사유로 그 존속기간내에 해당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자가 있을 때에는 다른 전문대학 또는 개편된 해당 학교에 각각 편입학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입학하는 당해 학교에 그 학생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⑧국립학교설치령중개정령(1992. 3. 6., 대통령령 제13604호)의 시행으로 폐지된 군산수산전문대학은 1994년 2월말일까지, 예산농업전문대학은 1993년 2월말일까지 각각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동 학교 및 국립학교설치령중개정령(1992. 3. 6., 대통령령 제13604호)의 시행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국립학교설치령중개정령(1992. 3. 6., 대통령령 제13604호)전의 규정을 적용하며, 군산수산전문대학과 예산농업전문대학의 학생중 정당한 사유로 그 존속기간내에 해당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자가 있을 때에는 다른 전문대학 또는 개편된 해당 학교에 각각 편입학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입학하는 당해 학교에 그 학생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⑨국립학교설치령중개정령(1993. 2. 24., 대통령령 제13859호)의 시행으로 폐지된 목포해양전문대학ㆍ부산선원학교 및 인천선원학교는 1995년 2월 28일까지, 충주공업전문대학ㆍ안성농업전문대학ㆍ진주농림전문대학 및 밀양전문대학은 1994년 2월 28일까지 각각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동학교 및 국립학교설치령중개정령(1993. 2. 24., 대통령령 제13859호)의 시행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국립학교설치령중개정령(1993. 2. 24., 대통령령 제13859호)전의 규정을 적용하며, 폐지되는 학교의 학생중 정당한 사유로 그 존속기간내에 해당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전문대학 학생은 다른 전문대학이나 개편된 해당 학교에, 선원학교 학생은 개편된 해당 고등학교에 각각 편입학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입학하는 당해 학교에 그 학생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⑩국립학교설치령중개정령(1993. 2. 24., 대통령령 제13859호)의 시행으로 폐지된 목포해양전문대학과 부산선원학교 및 인천선원학교를 퇴학 또는 졸업한 자의 복무의무와 학비상환

、학비의 급여정지등에 관하여는 국립학교설치령중개정령(1993. 2. 24., 대통령령 제13859호)전의 규정에 의한다.

⑪국립학교설치령중개정령(1993. 2. 24., 대통령령 제13859호)의 시행전에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에 입학하여 퇴학 또는 졸업한 자의 학비상환, 학비의 급여정지 및 복무의무 등에 관하여는 국립학교설치령중개정령(1993. 2. 24., 대통령령 제13859호)전의 규정에 의한다.

⑫국립학교설치령중개정령(1995. 2. 28., 대통령령 제14539호)의 시행으로 폐지된 통영수산전문대학은 1997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동학교 및 국립학교설치령중개정령(1995. 2. 28., 대통령령 제14539호)의 시행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국립학교설치령중개정령(1995. 2. 28., 대통령령 제14539호)전의 규정을 적용하고, 통영수산전문대학의 학생중 정당한 사유로 그 존속기간내에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자가 있을 때에는 다른 전문대학이나 경상대학교 수산대학에 각각 편입학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입학하는 당해 학교에 그 학생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 (부속학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부속학교는 이 영에 의한 부설학교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대학 "16,810"을 "16,888"로, 대학의 교수、부교수、조교수 또는 전임강사 "13,573"을 "13,638"로, 대학의 조교 "3,193"을 "3,206"으로, 전문대학 "478"을 "400"으로, 전문대학의 학장 "7"을 "6"으로, 전문대학의 교수、부교수、조교수 또는 전임강사 "390"을 "326"으로, 전문대학의 조교 "81"을 "68"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7502호,2002. 2. 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국재활복지대학의 설립준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이 영 시행전에 한국재활복지대학의 설립준비에 필요한 사무를 행할 수 있다.

**제3조** (학교명칭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서울선희학교에 재적중인 학생은 이 영에 의한 서울농학교의 해당 학년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서울선희학교 소속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서울농학교 소속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제17911호,2003. 2. 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교명칭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인천교육대학교에 재적중인 학생은 이 영에 의한 경인교육대학교의 해당학년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인천교육대학교 소속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경인교육대학교 소속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제18053호,2003. 7. 25.>(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0조** 중 "사무국장중 2인"을 "사무국장중 1인"으로 하고, 별표 6중 목포대학교의 과·담당관란 "10"을 "9"로 한다.

**부칙** <제18287호,2004. 2. 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03호,2004. 3. 5.>(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0조** 를 삭제한다.

**부칙** <제18567호,2004. 10.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14호,2004. 12. 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한국철도대학에 재적중인 학생의 학비보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한국철도대학에 재적중인 학생의 학비보조에 관하여는 제16조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실습비 및 여비 등의 학비는 건설교통부소관 예산에서 지급한다.

**부칙** <제18719호,2005. 2. 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되는 천안공업대학의 학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천안공업대학은 2007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동학교 및 이 영 시행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고, 천안공업대학의 학생중 정당한 사유로 그 존속기간내에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자가 있을 때에는 다른 전문대학이나 공주대학교에 각각 편입학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입학하는 당해 학교에 그 학생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천안공업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조교외의 공무원은 공주대학교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천안공업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조교는 2006년 2월 28일까지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의 교수 및 조교의 자격기준에 의한 해당 자격에 따라 공주대학교 정원의 범위안에서 공주대학교의 조교로 임용한다. 다만, 임용되기전까지는 공주대학교의 조교로 보되, 조교의 자격ㆍ보수 등에 관하여는 전문대학 조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9357호,2006. 2. 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 별표 1 내지 별표 3, 별표 6, 별표 6의2, 별표 8, 별표 9 및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되는 밀양대학교 학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밀양대학교는 2010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동학교 및 이 영 시행 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되, 부산대학교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소정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부산대학교의 학칙을 적용할 수 있고, 밀양대학교의 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그 존속기간 내에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자가 있을 때에는 다른 산업대학이나 부산대학교에 각각 편입학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입학하는 당해 학교에 그 학생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밀양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은 부산대학교 소속의 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 (폐지되는 삼척대학교 학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삼척대학교는 2010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동학교 및 이 영 시행 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되, 강원대학교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소정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강원대학교의 학칙을 적용할 수 있고, 삼척대학교의 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그 존속기간 내에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자가 있을 때에는 다른 산업대학이나 강원대학교에 각각 편입학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입학하는 당해 학교에 그 학생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삼척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은 강원대학교 소속의 공무원으로 본다.

**제4조** (폐지되는 여수대학교 학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여수대학교는 2010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동학교 및 이 영 시행 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되, 전남대학교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소정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전남대학교 학칙을 적용할 수 있고, 여수대학교의 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그 존속기간 내에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자가 있을 때에는 다른 대학이나 전남대학교에 각각 편입학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입학하는 당해 학교에 그 학생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

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여수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은 전남대학교 소속의 공무원으로 본다.

**제5조** (폐지되는 청주과학대학 학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청주과학대학은 200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동학교 및 이 영 시행 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고, 청주과학대학의 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그 존속기간 내에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자가 있을 때에는 다른 전문대학이나 충주대학교에 각각 편입학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입학하는 당해 학교에 그 학생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청주과학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조교 외의 공무원은 충주대학교 소속의 공무원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청주과학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조교는 2007년 2월 28일까지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의 교수 및 조교의 자격기준에 의한 해당자격에 따라 충주대학교의 정원의 범위 안에서 충주대학교의 조교로 임용한다. 다만, 임용되기 전까지는 충주대학교의 조교로 보되, 조교의 자격ㆍ보수 등에 관하여는 전문대학의 조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9591호,2006. 6. 30.>(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립학교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중 "이사관ㆍ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제19902호,2007. 2. 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되는 원주대학 학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원주대학은 2009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대학 및 이 영 시행 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원주대학의 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같은 대학 존속기간 내에 같은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자가 있을 때에는 다른 전문대학이나 강릉대학교에 각각 편입학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입학하는 학교에 그 학생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원주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조교 외의 공무원은 강릉대학교 소속의 공무원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원주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조교는 2008년 2월 29일까지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의 교수 및 조교의 자격기준에 따른 해당 자격에 따라 강릉대

학교의 정원의 범위 안에서 강릉대학교의 조교로 임용한다. 다만, 임용되기 전까지는 강릉대학교의 조교로 보되, 조교의 자격ㆍ보수 등에 관하여는 전문대학의 조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폐지되는 국립의료원간호대학 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국립의료원간호대학은 2009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대학 및 이 영 시행 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국립의료원간호대학의 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같은 대학 존속기간 내에 같은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자가 있을 때에는 다른 전문대학이나 승계되는 대학교에 각각 편입학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입학하는 학교에 그 학생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중 " 기계사무관ㆍ전기사무관ㆍ토목사무관ㆍ건축사무관 "을 " 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으로 한다.

②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중 " 기계사무관ㆍ전기사무관ㆍ토목사무관ㆍ건축사무관 "을 " 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으로 한다.

**부칙** <제20608호,2008. 2. 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되는 상주대학교 학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상주대학교는 2012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학교, 이 영 시행 전에 입학한 학생 및 입학을 허가받은 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되, 경북대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는 소정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경북대학교의 학칙을 적용할 수 있고, 상주대학교의 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그 존속기간 내에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자가 있을 때에는 다른 산업대학이나 경북대학교에 편입학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입학하는 해당 학교에 그 학생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상주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은 경북대학교 소속의 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 (폐지되는 익산대학 학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익산대학은 2010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학교 및 이 영 시행 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고, 익산대학의 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그 존속기간 내에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자가 있을 때에는 다른 전문대학이나 전북대학교에 편입학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입학하는 해당 학교에 그 학생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익산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조교 외의 공무원은 전북대학교 소속의 공무원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익산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조교는 2009년 2월 28일까지 「교수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의 교수 및 조교의 자격기준에 따른 해당 자격에 따라 전북대학교의 정원의 범위에서 전북대학교의 조교로 임용한다. 다만, 임용되기 전까지는 전북대학교의 조교로 보되, 조교의 자격ㆍ보수 등에 관하여는 전문대학의 조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폐지되는 제주교육대학교 학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제주교육대학교는 2012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학교, 이 영 시행 전에 입학한 학생 및 입학을 허가받은 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되, 제주대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는 소정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제주대학교의 학칙을 적용할 수 있고, 제주교육대학교의 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그 존속기간 내에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자가 있을 때에는 다른 교육대학이나 제주대학교에 편입학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입학하는 해당 학교에 그 학생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제주교육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은 제주대학교 소속의 공무원으로 본다.

**제5조** (서울국악예술고등학교ㆍ서울국악예술학교의 국립화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사립학교인 서울국악예술고등학교 및 서울국악예술학교는 각각 이 영에 따른 전통예술고등학교 및 전통예술학교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서울국악예술고등학교 및 서울국악예술학교 재적학생은 각각 이 영에 따른 전통예술고등학교 및 전통예술학교의 해당 학년, 해당 학과 또는 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서울국악예술고등학교 및 서울국악예술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각각 이 영에 따른 전통예술고등학교 및 전통예술학교의 교원으로 임용한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서울국악예술고등학교 및 서울국악예술학교에 3년 이상 재직 중인 직원은 각각 이 영에 따른 전통예술고등학교 및 전통예술학교 소속의 국가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다.

⑤ 이 영 시행 당시 서울국악예술고등학교 및 서울국악예술학교에 재직 중인 직원을 이 영에 따른 전통예술고등학교 및 전통예술학교 소속의 국가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에 그 특별채용시험방법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부칙** <제20740호,2008. 2. 29.>(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1& 까지 생략

1*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 을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으로 한다.

제16조제6항 중 “ 해양수산부소관 ” 을 “ 국토해양부 소관 ” 으로 하고, 제16조제10항 중 “ 문화관광부소관 ” 을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으로, “ 해양수산부소관 ” 을 “ 국토해양부 소관 ” 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본문 중 “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 ” 을 “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 ” 을 “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 을 각각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 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 ” 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 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 ” 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단서 중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 을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및 제4항 중 “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 을 각각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 ” 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 건설교통부소관 ” 을 “ 국토해양부소관 ” 으로, “ 문화관광부소관 ” 을 “ 문화체육관광부소관 ” 으로, “ 해양수산부소관 ” 을 “ 국토해양부소관 ”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 건설교통부장관ㆍ문화관광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 을 “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으로 한다.

제21조 중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 을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으로, “ 건설교통부장관ㆍ문화관광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 을 “ 국토해양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 ” 으로 한다.

1(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 <제21334호,2009. 2. 27.>

이 영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707호,2009. 9.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문대학의 학장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총장으로 본다.

**부칙** <제22054호,2010. 2.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되는 충주대학교 학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충주대학교(이 영 시행 전 산업대학으로서의 충주대학교를 말한다)는 2016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학교 및 이 영 시행 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되, 충주대학교(이 영 시행 후 일반대학으로서의 충주대학교를 말한다)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소정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충주대학교(이 영 시행 후 일반대학으로서의 충주대학교를 말한다)의 학칙을 적용할 수 있고, 폐지되는 충주대학교(이 영 시행 전 산업대학으로서의 충주대학교를 말한다)의 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그 존속기간 내에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다른 산업대학교나 충주대학교(이 영 시행 후 일반대학으로서의 충주대학교를 말한다)에 편입학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입학하는 해당 학교에 그 학생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충주대학교(이 영 시행 전 산업대학으로서의 충주대학교를 말한다)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은 충주대학교(이 영 시행 후 일반대학으로서의 충주대학교를 말한다) 소속의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제22354호,2010. 8.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별표 6의2 및 별표 9의 개정규정 중 진주산업대학교의 명칭을 경남과학기술대학교로 변경하는 부분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명칭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서울산업대학교 및 진주산업대학교에 재적 중인 학생은 각각 이 영에 따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및 경남과학기술대학교의 해당 학과의 해당 학년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서울산업대학교 및 진주산업대학교의 소속 공무원은 각각 이 영에 따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및 경남과학기술대학교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제22677호,2011. 2.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되는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학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종전의 산업대학으로서의 경남과학기술대학교는 2017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학교 및 이 영 시행 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되, 이 영 시행 후 일반대학으로서의 경남과학기술대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는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 영 시행 후 일반대학으로서의 경남과학기술대학교의 학칙을 적용할 수 있고, 폐지되는 산업대학으로서의 경남과학기술대학교의 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그 존속기간 내에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다른 산업대학교나 이 영 시행 후 일반대학으로서의 경남과학

기술대학교에 편입학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입학하는 해당 학교에 그 학생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산업대학으로서의 경남과학기술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은 이 영 시행 후 일반대학으로서의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소속의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제23644호,2012. 2. 29.>(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ㆍ제2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 중 전임강사에 관한 부분과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1* 까지 생략

1(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 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전임강사 "를 " 부교수 또는 조교수 "로 한다.

2) 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3646호,2012.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충주대학교에 재적 중인 학생은 이 영에 따른 한국교통대학교의 해당 학과의 해당 학년에 재적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전에 입학한 학생 중 종전의 충주대학교로 졸업을 희망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한국교통대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충주대학교로 졸업할 수 있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충주대학교 소속 공무원은 이 영에 따른 한국교통대학교 소속의 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폐지되는 한국철도대학 학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한국철도대학은 2016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이 영 시행 전에 해당 학교에 입학한 학생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되, 한국철도대학의 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그 존속기간 내에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다른 전문대학이나 한국교통대학교에 편입학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입학하는 해당 학교에 그 학생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한국철도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은 한국교통대학교 소속의 공무원으로 본다.

**제4조**(폐지되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ㆍ한경대학교ㆍ한밭대학교 학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종전의 산업대학으로서의 서울과학기술대학교ㆍ한경대학교ㆍ한밭대학교는 2018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이 영 시행 전에 해당 학교에 입학한 학생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되, 이 영 시행 후 일반대학으로서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한경대학교、한밭대학교에서 각각의 학칙으로 정하는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 영 시행 후 일반대학으로서의 서울과학기술대학교、한경대학교、한밭대학교의 학칙을 각각 적용할 수 있고, 폐지되는 산업대학으로서의 서울과학기술대학교、한경대학교、한밭대학교의 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그 존속기간 내에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학생이 있을 때에는 이 영 시행 후 일반대학으로서의 서울과학기술대학교、한경대학교、한밭대학교에 각각 편입학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입학하는 해당 학교에 그 학생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산업대학으로서의 서울과학기술대학교、한경대학교、한밭대학교에 각각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은 이 영 시행 후 일반대학으로서의 서울과학기술대학교、한경대학교、한밭대학교 각각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제23804호,2012. 5. 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075호,2012. 8.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 명칭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한국재활복지대학에 재적 중인 학생은 이 영에 따른 한국복지대학교의 해당 학과의 해당 학년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한국재활복지대학 소속 공무원은 이 영에 따른 한국복지대학교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학교 명칭의 변경에 따른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한국재활복지대학"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복지대학교"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4423호,2013. 3. 2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2* 까지 생략

2(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8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2항 단서 및 제21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6항、제10항 및 제20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18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6항 본문、단서, 제19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20조제2항 및 제21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3) 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 <제24490호,2013. 3. 23.>(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특수학교"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고등학교"를 "특수학교"로 한다.

제16조제6항 중 "제주대학교·한국해양대학교·부산해사고등학교 및 인천해사고등학교"를 "제주대학교 및 한국해양대학교"로, "국고(부산해사고등학교 및 인천해사고등학교는 국토해양부 소관 예산)"를 "국고"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7조 중 "경기지도과, 해사고등학교"를 "경기지도과"로, "제16조제1항·제3항 및 제10항"을 "제16조제1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18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19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0조제1항 중 "국고(해사고등학교는 국토해양부 소관 예산)"를 "국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별표 1 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25751호,2014. 11. 19.>(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54>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6080호,2015. 2. 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260호,2016. 6.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950호,2019. 7. 2.>(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0361호,2020. 1.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548호,2020. 3.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506호,2021. 2.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경상대학교에 재적 중인 학생은 경상국립대학교의 해당 학과의 해당 학년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경상대학교에 입학을 허가받은 사람은 경상국립대학교에 입학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상대학교의 학생으로서 졸업하는 것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경상국립대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대학교의 학생으로서 졸업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경상대학교에 소속된 공무원은 경상국립대학교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폐지되는 경남과학기술대학교의 재학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경남과학기술대학교에 재적 중인 학생 및 이 영 시행 전에 같은 학교에 입학을 허가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2027년 2월 28일까지(건축학과의 경우 2028년 2월 29일까지) 같은 학교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상국립대학교의 학생으로서 졸업하는 것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학교의 학생으로서 졸업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로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간 내에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대학 또는 경상국립대학교에 편입학할 수 있다. 이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편입학하려는 학교에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경남과학기술대학교에 소속된 공무원은 경상국립대학교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제32980호,2022. 11.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 명칭이 변경되는 한경대학교의 학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한경대학교에 재적 중인 학생은 한경국립대학교의 해당 학과의 해당 학년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한경대학교에 입학을 허가받은 사람은 한경국립대학교에 입학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한경대학교의 학생으로서 졸업하는 것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한경국립대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경대학교의 학생으로서 졸업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한경대학교에 소속된 공무원은 한경국립대학교 소속의 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폐지되는 한국복지대학교의 학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한국복지대학교에 재적 중인 학생과 이 영 시행 전에 같은 학교에 입학을 허가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2028년 2월 29일까지 같은 학교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경국립대학교의 학생으로서 졸업하는 것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한경국립대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경국립대학교의 학생으로서 졸업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로 같은 항에 따른 기한 내에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전문대학이나 한경국립대학교에 편입학할 수 있다. 이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편입학하려는 학교에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한국복지대학교에 소속된 공무원은 한경국립대학교 소속의 공무원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2 비고 제1호가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나목 중 "한경대학교"를 "한경국립대학교"로 한다.

②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64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33862호,2023. 11.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1 제1호 국립군산대학교란의 개정규정(소재지를 변경하는 부분만 해당한다), 전북대학교란의 개정규정, 같은 표 제2호의 전주교육대학교란의 개정규정, 별표 5 중 전북대학교란 및 전주교육대학교란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8일
2. 별표 5 중 국립공주대학교란의 개정규정(부설특수학교를 신설하는 부분만 해당한다): 2024년 3월 1일

**제2조**(학교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강릉원주대학교、공주대학교、군산대학교、금오공과대학교、목포대학교、목포해양대학교、부경대학교、순천대학교、안동대학교、창원대학교、한국교통대학교、한국해양대학교 및 한밭대학교에 재적 중인 학생은 각각 이 영에 따른 국립강릉원주대학교、국립공주대학교、국립군산대학교、국립금오공과대학교、국립목포대학교、국립목포해양대학교、국립부경대학교、국립순천대학교、국립안동대학교、국립창원대학교、국립한국교통대학교、국립한국해양대학교 및 국립한밭대학교의 해당 학과의 해당 학년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강릉원주대학교、공주대학교、군산대학교、금오공과대학교、목포대학교、목포해양대학교、부경대학교、순천대학교、안동대학교、창원대학교、한국교통대학교、한국해양대학교 및 한밭대학교 소속 공무원은 각각 이 영에 따른 국립강릉원주대학교、국립공주대학교、국립군산대학교、국립금오공과대학교、국립목포대학교、국립목포해양대학교、국립부경대학교、국립순천대학교、국립안동대학교、국립창원대학교、국립한국교통대학교、국립한국해양대학교 및 국립한밭대학교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2 비고 제1호나목 중 “금오공과대학교”를 “국립금오공과대학교”로, “목포해양대학교”를 “국립목포해양대학교”로, “한밭대학교”를 “국립한밭대학교”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강릉원주대학교”를 “국립강릉원주대학교”로, “공주대학교”를 “국립공주대학교”로, “군산대학교”를 “국립군산대학교”로, “목포대학교”를 “국립목포대학교”로, “부경대학교”를 “국립부경대학교”로, “순천대학교”를 “국립순천대학교”로, “안동대학교”를 “국립안동대학교”로, “창원대학교”를 “국립창원대학교”로, “한국교통대학교”를 “국립한국교통대학교”로, “한국해양대학교”를 “국립한국해양대학교”로 한다.

**부칙** <제34298호,2024. 3. 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282호,2025. 2.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 명칭이 변경되는 국립안동대학교의 학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국립안동대학교에 재적 중인 학생은 국립경국대학교의 해당 학과의 해당 학년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국립안동대학교에 입학을 허가받은 사람은 국립경국대학교에 입학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립안동대학교의 학생으로서 졸업하는 것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립경국대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안동대학교의 학생으로서 졸업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국립안동대학교에 소속된 공무원은 국립경국대학교 소속의 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경북도립대학교의 통ㆍ폐합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경북도립대학교에 재적 중인 학생과 이 영 시행 전에 같은 학교에 입학을 허가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2030년 2월 28일까지 같은 학교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관계 법령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립경국대학교의 학생으로서 졸업하는 것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립경국대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경국대학교의 학생으로서 졸업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로 같은 항에 따른 기한 내에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전문대학이나 국립경국대학교에 편입학할 수 있다. 이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편입학하려는 학교에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경북도립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과 조교는 국립경국대학교 소속의 교원과 조교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교원과 조교의 보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경북도립대학교 소속 교원과 조교의 호봉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⑤ 이 영 시행 당시 경북도립대학교 소속의 지방공무원(교원과 조교는 제외한다)은 대통령령 제35289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에 따라 국립경국대학교에 증원되는 일반직 공무원의 정원의 범위에서 국립경국대학교 소속의 국가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할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비고 제1호다목 중 "국립안동대학교"를 "국립경국대학교"로 한다.

**부칙** <제35946호,2025. 12.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147호,2026. 2.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립강릉원주대학교의 통ㆍ폐합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국립강릉원주대학교에 재적 중인 학생 및 이 영 시행 전에 같은 학교에 입학을 허가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2032년 2월 29일까지(치의학과의 경우 2034년 2월 28일까지) 같은 학교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강원대학교의 학생으로서 졸업하는 것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강원대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강원대학교의 학생으로서 졸업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로 같은 항에 따른 기한 내에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대학 또는 강원대학교에 편입학할 수 있다. 이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편입학하려는 학교에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국립강릉원주대학교에 소속된 공무원은 강원대학교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전남도립대학교의 통ㆍ폐합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전남도립대학교에 재적 중인 학생과 이 영 시행 전에 같은 학교에 입학을 허가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2032년 2월 29일까지 같은 학교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관계 법령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립목포대학교의 학생으로서 졸업하는 것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립목포대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목포대학교의 학생으로서 졸업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로 같은 항에 따른 기한 내에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전문대학이나 국립목포대학교에 편입학할 수 있다. 이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편입학하려는 학교에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전남도립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과 조교는 국립목포대학교 소속의 교원과 조교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교원과 조교의 보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전남도립대학교 소속 교원과 조교의 호봉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⑤ 이 영 시행 당시 전남도립대학교 소속의 지방공무원(교원과 조교는 제외한다)은 대통령령 제36095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에 따라 국립목포대학교에 증원되는 일반직 공무원의 정원의 범위에서 국립목포대학교 소속의 국가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할 수 있다.

**제4조**(경남도립거창대학 및 경남도립남해대학의 통ㆍ폐합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경남도립거창대학 및 경남도립남해대학에 재적 중인 학생과 이 영 시행 전에 각각 같은 학교에 입학을 허가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2032년 2월 29일까지 각각 같은 학교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관계 법령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립창원대학교의 학생으로서 졸업하는 것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립창원대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창원대학교의 학생으로서 졸업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로 같은 항에 따른 기한 내에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전문대학이나 국립창원대학교에 편입학할 수 있다. 이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편입학하려는 학교에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경남도립거창대학 및 경남도립남해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과 조교는 국립창원대학교 소속의 교원과 조교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교원과 조교의 보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경남도립거창대학 및 경남도립남해대학 소속 교원과 조교의 호봉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⑤ 이 영 시행 당시 경남도립거창대학 및 경남도립남해대학 소속의 지방공무원(교원과 조교는 제외한다)은 대통령령 제36095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에 따라 국립창원대학교에 증원되는 일반직 공무원의 정원의 범위에서 국립창원대학교 소속의 국가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할 수 있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2 비고 제1호나목 중 “ 국립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를 “ 강원대학교 ”로 한다.

**부칙** <제36423호,2026. 6. 2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의 전남대학교의 소재지란 중 “ 광주광역시ㆍ전라남도 ”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로 하고, 같은 호 국립목포대학교, 국립목포해양대학교 및 국립순천대학교의 소재지란 중 “ 전라남도 ”를 각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로 하며, 같은 표 제2호의 광주교육대학교의 소재지란 중 “ 광주광역시 ”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로 한다.

별표 5 전남대학교의 위치란 중 “ 광주광역시 ”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로 하고, 같은 표 광주교육대학교의 위치란 중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로 한다.

1^ 부터 <78>까지 생략

■ 국립학교 설치령 [별표 1] <개정 2026. 6. 23.>

학교의 명칭·소재지 및 과정(제3조 관련)

1. 대학

| 학교명 | 소재지 | 학교명 | 소재지 |
|---|---|---|---|
| 강원대학교 | 강원특별자치도 | 국립경국대학교 | 경상북도 |
| 경북대학교 | 대구광역시·경상북도 | 전남대학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경상국립대학교 | 경상남도 | 전북대학교 | 전북특별자치도 |
| 국립공주대학교 | 충청남도·세종특별자치시 | 제주대학교 | 제주특별자치도 |
| 국립군산대학교 | 전북특별자치도 | 국립창원대학교 | 경상남도 |
| 국립금오공과대학교 | 경상북도 | 충남대학교 |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 |
| 국립목포대학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충북대학교 | 충청북도·세종특별자치시 |
| 국립목포해양대학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한경국립대학교 | 경기도 |
| 국립부경대학교 | 부산광역시 | 국립한국교통대학교 | 충청북도·경기도 |
| 부산대학교 | 부산광역시·경상남도 | 한국체육대학교 | 서울특별시 |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서울특별시 | 국립한국해양대학교 | 부산광역시 |
| 국립순천대학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국립한밭대학교 |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 |

2. 교육대학

| 학교명 | 소재지 | 학교명 | 소재지 |
|---|---|---|---|
| 공주교육대학교 | 충청남도 | 경인교육대학교 | 인천광역시·경기도 |
| 광주교육대학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전주교육대학교 | 전북특별자치도 |
| 대구교육대학교 | 대구광역시 | 진주교육대학교 | 경상남도 |
| 부산교육대학교 | 부산광역시 | 청주교육대학교 | 충청북도 |
| 서울교육대학교 | 서울특별시 | 춘천교육대학교 | 강원특별자치도 |

3. 특수학교

| 학교명 | 소재지 | 과정 |
|---|---|---|
| 서울맹학교 | 서울특별시 | 유치부(「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 |

| | | |
|---|---|---|
| | | 치원 과정과 동등한 정도의 교육을 말한다. 이하 같다)·초등부(「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과정과 동등한 정도의 교육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학부(「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학교 과정과 동등한 정도의 교육을 말한다. 이하 같다)·고등부(「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과정과 동등한 정도의 교육을 말한다. 이하 같다) |
| 서울농학교 | 서울특별시 | 유치부·초등부·중학교·고등부 |
| 한국경진학교 | 경기도 | 유치부·초등부·중학교·고등부 |
| 한국선진학교 | 경기도 | 유치부·초등부·중학교·고등부 |
| 한국우진학교 | 서울특별시 | 유치부·초등부·중학교·고등부 |

■ 국립학교 설치령 [별표 2] 삭제 <2009.2.27>

■ 국립학교 설치령 [별표 3] 삭제 <2009.2.27>

■ 국립학교 설치령 [별표 4] 삭제 <2009.2.27>

■ 국립학교 설치령 [별표 5] <개정 2026. 6. 23.>

## 대학 및 교육대학에 두는 부설학교의 명칭 및 위치

(제8조제1항관련)

| 학교명 | 부설학교명 | 위치 |
|---|---|---|
| 강원대학교 | 부설유치원<br>부설고등학교 | 강원특별자치도 |
| 경북대학교 | 부설초등학교<br>부설중학교<br>부설고등학교 | 대구광역시 |
| 경상국립대학교 | 부설중학교<br>부설고등학교 | 경상남도 |
| 국립공주대학교 | 부설유치원<br>부설중학교<br>부설고등학교<br>부설특수학교 | 충청남도 |
| 부산대학교 | 부설고등학교 | 부산광역시 |
| 전남대학교 | 부설중학교<br>부설고등학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전북대학교 | 부설고등학교 | 전북특별자치도 |
| 제주대학교 | 부설초등학교<br>부설중학교<br>부설고등학교 | 제주특별자치도 |
| 충북대학교 | 부설중학교<br>부설고등학교 | 충청북도 |
| 공주교육대학교 | 부설초등학교 | 충청남도 |
| 광주교육대학교 | 광주부설초등학교<br>목포부설초등학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대구교육대학교 | 대구부설초등학교<br>안동부설초등학교 | 대구광역시<br>경상북도 |
| 부산교육대학교 | 부설초등학교 | 부산광역시 |
| 서울교육대학교 | 부설초등학교 | 서울특별시 |
| 경인교육대학교 | 부설초등학교 | 인천광역시 |
| 전주교육대학교 | 전주부설초등학교<br>군산부설초등학교 | 전북특별자치도 |
| 진주교육대학교 | 부설초등학교 | 경상남도 |
| 청주교육대학교 | 부설초등학교 | 충청북도 |
| 춘천교육대학교 | 부설초등학교 | 강원특별자치도 |

■ 국립학교 설치령 [별표 6] <개정 2026. 2. 27.>

대학의 부속시설등과 사무국 및 처·실·본부·단 등의 하부조직에 두는 과 및 담당관의 설치범위(제9조제5항 관련)

| 학교명 | 과·담당관 |
|---|---|
| 강원대학교 | 32 |
| 경북대학교 | 16 |
| 경상국립대학교 | 15 |
| 국립공주대학교 | 11 |
| 국립군산대학교 | 10 |
| 국립금오공과대학교 | 3 |
| 국립목포대학교 | 12 |
| 국립목포해양대학교 | 1 |
| 국립부경대학교 | 11 |
| 부산대학교 | 14 |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9 |
| 국립순천대학교 | 10 |
| 국립경국대학교 | 10 |
| 전남대학교 | 17 |
| 전북대학교 | 12 |
| 제주대학교 | 12 |
| 국립창원대학교 | 10 |
| 충남대학교 | 13 |
| 충북대학교 | 12 |
| 한경국립대학교 | 7 |
| 국립한국교통대학교 | 10 |
| 한국체육대학교 | 2 |
| 국립한국해양대학교 | 10 |
| 국립한밭대학교 | 7 |

■ 국립학교 설치령 [별표 6의2] 삭제 <2012.2.29>

■ 국립학교 설치령 [별표 7] <개정 2023. 11. 16.>

사무국장 또는 총무처장의 분장사무(제9조제4항 및 제13조제2항 관련)

| 명 칭 | 분 장 사 무 |
|---|---|
| 사 무 국 장<br>또 는<br>총 무 처 장 | 보안, 관인관리, 직원인사, 급여, 문서관리, 법무, 자체감사,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회계 및 결산,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 각종공사 및 시설관리,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원 관리, 비상기획, 국립대학 운영 혁신 지원 보좌, 그 밖에 학교의 장이 정하는 사항 |

■ 국립학교 설치령 [별표 8] <개정 2026. 2. 27.>

대학의 단과대학 및 대학원에 두는 행정실의 설치범위(제9조제7항 관련)

| 학교명 | 행정실 | 학교명 | 행정실 |
|---|---|---|---|
| 강원대학교 | 11 | 국립경국대학교 | 4 |
| 경북대학교 | 12 | 전남대학교 | 13 |
| 경상국립대학교 | 12 | 전북대학교 | 10 |
| 국립공주대학교 | 7 | 제주대학교 | 8 |
| 국립군산대학교 | 4 | 국립창원대학교 | 5 |
| 국립금오공과대학교 | | 충남대학교 | 10 |
| 국립목포대학교 | 1 | 충북대학교 | 8 |
| 국립목포해양대학교 | | 한경국립대학교 | 2 |
| 국립부경대학교 | 6 | 국립한국교통대학교 | 5 |
| 부산대학교 | 12 | 한국체육대학교 | |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4 | 국립한국해양대학교 | 4 |
| 국립순천대학교 | 4 | 국립한밭대학교 | 3 |

■ 국립학교 설치령 [별표 10] <개정 2008.2.14>

■ 국립학교 설치령 [별표 10] 삭제 <2020. 3. 31.>

■ 국립학교 설치령 [별표 11] 삭제 <2020. 3. 31.>

# 국립학교 설치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23호, 2026. 6. 23.,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기본법」 제11조제1항,「초ㆍ중등교육법」 제3조 및 「고등교육법」 제18조ㆍ제19조에 따라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학교의 설치ㆍ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2. 28., 2009. 2. 27.>

**제2조(적용범위)**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 및 「고등교육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립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설치 및 조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 2. 28.>

**제3조(명칭 등)** 교육부장관의 관할 아래 두는 학교의 명칭ㆍ소재지 및 과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4조(공무원의 정원)**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학교의 장)** ①대학 및 교육대학에 총장을, 특수학교에 교장을 각각 둔다. <개정 2009. 9. 3., 2012. 2. 29., 2012. 5. 23., 2013. 3. 23., 2022. 11. 8.>

②총장 및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개정 2009. 9. 3., 2019. 7. 2.>

**제5조의2(부총장)** ① 대학 및 교육대학에 총장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해당 대학 및 교육대학의 교수 중에서 부총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 2. 27., 2012. 2. 29.>

②부총장은 대학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사 등 일부의 권한에 대하여 총장의 위임을 받아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부총장은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09. 2. 27.>

[본조신설 2006. 2. 28.]

**제6조(단과대학 등)** ①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대학은 단과대학 및 대학원을, 교육대학은 대학원을 각각 둘 수 있다. <개정 2009. 2. 27., 2012. 2. 29.>

②대학의 단과대학(단과대학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학을 말한다) 및 대학원에 학과ㆍ학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이하 "학과등"이라 한다)을, 교육대학 및 그 대학원에 학과등을 둘 수 있다.<개정 2005. 2. 28., 2012. 2. 29., 2022. 11. 8., 2024. 3. 1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단과대학ㆍ대학원 및 학과등에 장을 각각 두되, 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학과등의 장은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중에서 둔다. 다만,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장은 다른 대학원의 장이나 관련 단과대학 또는 학과등의 장 중

에서 둘 수 있다.<개정 2009. 2. 27., 2024. 3. 12.>

④대학의 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장은 총장의, 학과등의 장은 단과대학의 장(단과대학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장을 말한다) 또는 대학원의 장의 명을 받아 당해 단과대학ㆍ대학원 및 학과등의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개정 2005. 2. 28., 2012. 2. 29., 2019. 7. 2., 2024. 3. 12.>

⑤ 삭제<2005. 2. 28.>

⑥교육대학의 대학원의 장은 총장의, 학과등의 장은 총장 또는 대학원의 장의 명을 받아 당해 대학원 및 학과등의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개정 2019. 7. 2., 2024. 3. 12.>

⑦ 삭제<2022. 11. 8.>

**제7조(시설 등)** ①대학(교육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 및 제21조에서 같다)에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지원시설ㆍ연구시설ㆍ부속시설 및 그 밖의 필요한 시설(이하 "부속시설등"이라 한다)을, 특수학교에 필요한 실습시설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 2. 14., 2009. 2. 27., 2012. 2. 29., 2013. 3. 23., 2022. 11. 8., 2023. 11. 16.>

② 대학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ㆍ지원시설 및 연구시설을 이 영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학교의 소재지에 두어야 한다. 다만, 교육ㆍ연구활동에 필요한 경우로서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대학설립ㆍ개편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소재지 외의 지역에 본문에 따른 교육기본시설ㆍ지원시설 및 연구시설을 둘 수 있다.<신설 2023. 11. 16.>

③부속시설등의 장은 관련 단과대학ㆍ대학원 또는 학과등의 장 중에서 두되, 필요한 경우 학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06. 2. 28., 2009. 2. 27., 2009. 9. 3., 2023. 11. 16., 2024. 3. 12.>

④부속시설등의 장은 총장, 단과대학 또는 대학원의 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한다.<개정 2009. 2. 27., 2009. 9. 3., 2019. 7. 2., 2023. 11. 16.>

⑤총장은 부속시설등의 시설 중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연구시설ㆍ부속시설(공통시설을 제외한다)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해당 시설의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존속 또는 폐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정한다.<개정 2008. 2. 14., 2009. 2. 27., 2009. 9. 3., 2023. 11. 16.>

[제목개정 2023. 11. 16.]

**제8조(부설학교)** ①대학의 사범계 단과대학(이하 이 조에서 "사범대학"이라 한다), 교육대학에 별표 5의 학교를 부설한다. <개정 2009. 9. 3.>

②제1항에 따른 부설학교에 장을 각각 두되, 부설학교의 장은 사범대학의 장 또는 총장의 명을 받아 해당 학교의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 또는 원생을 지도한다.<개정 2009. 9. 3., 2019. 7. 2.>

**제9조(대학의 하부조직)** ①대학에 사무국ㆍ행정본부(강원대학교ㆍ경북대학교ㆍ경상국립대학교 및 전남대학교로 한정한다)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ㆍ실ㆍ본부ㆍ단 등의 하부조직을 둔다. <개정 2006. 2. 28., 2006. 6. 30., 2007. 2. 28., 2008. 2. 14., 2009. 2. 27., 2012. 2. 29., 2020. 3. 31., 2021. 2. 26., 2023. 11. 16.>

②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거나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보한다.<신설 2023. 11. 16., 2024. 3. 12.>

③ 행정본부장은 3급 일반직공무원, 4급 일반직공무원 또는 5급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처ㆍ실ㆍ본부ㆍ단 등의 하부조직의 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보한다. 이 경우 행정본부장의 명칭에 관하여는 총장이 이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신설 2023. 11. 16.>

④사무국장은 별표 7의 사무를 분장하고, 처ㆍ실ㆍ본부ㆍ단 등의 하부조직의 장의 분장사무는 학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 2. 27., 2020. 3. 31., 2023. 11. 16.>

⑤부속시설등과 제1항에 따른 사무국 및 처ㆍ실ㆍ본부ㆍ단 등의 하부조직에 별표 6의 범위에서 과 및 담당관을 둔다. 이 경우 과 및 담당관의 명칭에 관하여는 총장이 이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개정 2009. 2. 27., 2020. 3. 31., 2023. 11. 16.>

⑥과장 및 담당관은 3급 일반직공무원, 4급 일반직공무원 또는 5급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학생실습과 선박운항을 담당하는 과장 및 담당관은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중에서 둘 수 있고, 부속시설에 두는 과장 및 담당관은 4급 일반직공무원 또는 5급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2006. 2. 28., 2007. 2. 28., 2009. 2. 27., 2023. 11. 16.>

⑦대학의 단과대학 및 대학원에 별표 8의 범위에서 행정실을 두되, 실장은 4급 일반직공무원 또는 5급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실을 통합하여 둘 수 있다.<개정 2006. 2. 28., 2007. 2. 28., 2009. 2. 27., 2009. 9. 3., 2023. 11. 16., 2024. 3. 12.>

**제9조의2(대학 집중 육성 추진 관련 한시조직)** ① 다음 각 호의 대학의 사무국 및 처ㆍ실ㆍ본부ㆍ단 등의 하부조직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1개의 과를 둔다.

1. 강원대학교
2. 경북대학교
3. 경상국립대학교
4. 부산대학교
5. 전남대학교
6. 전북대학교
7. 제주대학교
8. 충남대학교
9. 충북대학교

② 제1항에 따른 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5급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의 전략산업과 연계한 대학 집중 육성 추진 정책의 기획ㆍ총괄
2. 인공지능 기반 교육체계 개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 12. 30.]
[제목개정 2026. 2. 27.]

**제9조의3(대학 통ㆍ폐합 추진 관련 한시조직)**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학의 사무국 및 처ㆍ실ㆍ본부ㆍ단 등의 하부조직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 제1호에 따라 2030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을 둔다.
1. 국립목포대학교: 1개 과
2. 국립창원대학교: 2개 과
② 제1항에 따른 과에 각각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ㆍ폐합되는 기존 공립대학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2. 통ㆍ폐합되는 기존 공립대학의 교지(校地) 및 교사(校舍) 등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통ㆍ폐합 이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6. 2. 27.]

**제10조(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사무국장 임용에 관한 특례)** ① 제9조제2항에 따른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은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2조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임용한다.
② 제9조제2항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임용하되, 대통령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총장에게 위임한다.
③ 총장은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2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임용자격기준을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④ 총장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2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시험을 실시한다. 이 경우 총장은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의5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용시험의 필요성 등에 관한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의3제1항
2.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5조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영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
⑤ 총장은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의4제2항에 따라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이 경우 총장은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의4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도 불구하고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시험위원을 각각 3명 이상으로 해야 한다.
⑥ 제5항 후단에 따른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시험위원은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의 범위에서 임용후보자를 선발한다. 이 경우 면접시험에서의 평가 방법에 관하여는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의4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⑦ 제6항 전단에 따라 선발된 임용후보자에 대해서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같은 규정에 따른 역량평가를 생략할 수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6제3항 단서에 따라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생략할 수 있다.
⑧ 총장은 제6항 전단에 따라 선발된 임용후보자 중에서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⑨ 제9조제2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를 한 차례 이상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연장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⑩ 제9조제2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은 임용 당시 총장의 임기만료(총장이 임기 중 면직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함께 면직된다. 다만,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부총장 또는 총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당시 총장의 임기만료 시점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별정직공무원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⑪ 제9조제2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의2, 제6조, 제7조의4 및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9조의2를 적용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23. 11. 16.]

**제11조** 삭제 <2012. 2. 29.>

**제12조** 삭제 <2012. 2. 29.>

**제13조(교육대학의 하부조직)** ①교육대학에 총무처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ㆍ실ㆍ본부ㆍ단 등의 하부조직을 두되, 총무처장은 4급 일반직공무원 또는 5급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외의 처ㆍ실ㆍ본부ㆍ단 등의 하부조직의 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둔다. <개정 2004. 10. 29., 2006. 2. 28., 2007. 2. 28., 2009. 2. 27., 2020. 3. 31., 2023. 11. 16.>
②총무처장은 별표 7의 사무를 분장하고, 그 외의 처ㆍ실ㆍ본부ㆍ단 등의 하부조직의 장의 분장사무는 학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 3. 31.>

**제14조** 삭제 <2022. 11. 8.>

**제15조(월정직책급 등)** 제5조의2, 제6조, 제7조, 제9조 및 제13조에 따라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가 겸직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학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봉급ㆍ기말수당 및 정근수당 총액의 일정비율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 계상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직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9. 3., 2012. 2. 29., 2022. 11. 8.>
[제목개정 2009. 9. 3.]

**제16조(학비보조 등)** ①대학의 학사과정 간호계 학과 또는 학부의 제3학년 이상의 학생은 재학 중 기숙사에 입사하여 생활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들 학생에 대하여는 기숙사비ㆍ피복비 및 그 밖의 학비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급한다.

②국립한국해양대학교의 해사대학, 국립목포해양대학교의 해사대학, 한국체육대학교의 체육학과 및 경기지도과의 학생에 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개정 2012. 2. 29., 2015. 2. 3., 2023. 11. 16.>

③국립한국해양대학교의 해사대학, 국립목포해양대학교의 해사대학, 한국체육대학교의 체육학과 및 경기지도과의 학생은 재학중 승선생활관 또는 생활관에 입관하여 생활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립한국해양대학교 및 국립목포해양대학교의 학생에 대하여는 승선생활관비ㆍ피복비 및 그 밖의 학비를, 한국체육대학교의 학생에 대하여는 생활관비를 국고에서 지급한다.<개정 2012. 2. 29., 2023. 11. 16.>

④국립한국해양대학교ㆍ국립목포해양대학교 및 한국체육대학교의 총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선생활관 또는 생활관에 입관한 학생중 우수해기사 또는 체육지도자 양성대상자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있을 때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선생활관 또는 생활관에서 퇴관시킬 수 있다.<개정 2023. 11. 16.>

⑤국립한국해양대학교의 해사대학, 국립목포해양대학교의 해사대학 학생은 재학중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선실습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실습비는 국고에서 지급한다.<개정 2012. 2. 29., 2023. 11. 16.>

⑥승선실습 기간 중 실습선에 승선 근무하는 경상국립대학교ㆍ국립군산대학교ㆍ국립목포해양대학교ㆍ국립부경대학교ㆍ전남대학교ㆍ제주대학교 및 국립한국해양대학교의 교직원과 학생에 대해서는 식비를 국고에서 지급한다.<개정 2006. 2. 28., 2008. 2. 29., 2013. 3. 23., 2021. 2. 26., 2023. 11. 16.>

⑦ 국립한국교통대학교의 항공운항학과 학생은 재학 중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행실습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실습비는 국고에서 지급한다.<신설 2020. 3. 31., 2023. 11. 16.>

⑧교육대학의 야간 또는 계절제 학생으로 수학하는 현직 교원에 대하여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한다.<개정 2020. 3. 31.>

⑨한경국립대학교의 학생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신설 2002. 2. 4., 2012. 8. 31., 2015. 2. 3., 2020. 3. 31., 2022. 11. 8., 2023. 11. 16.>

⑩ 삭제<2013. 3. 23.>

⑪ 삭제<2013. 3. 23.>

⑫특수학교의 학생은 재학중 기숙사에 입사하여 생활훈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⑬제12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에 대하여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고, 기숙사비를 국고에서 지급한다.<개정 2002. 2. 4.>

**제17조(학비보조금의 지급정지)** 대학의 간호계 학과 또는 학부, 국립한국해양대학교의 해사대학, 국립목포해양대학교의 해사대학, 한국체육대학교의 체육학과 및 경기지도과의 학생이 휴학하거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학을 당한 때에는 그 기간중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비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개정 2004. 12. 30., 2008. 2. 14., 2012. 2. 29., 2012. 5. 23., 2013. 3. 23., 2023. 11. 16.>

**제18조(취업 지원 의무)** 국립한국해양대학교의 장 및 국립목포해양대학교의 장은 각각의 대학의 해사대학의 졸업자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무에 취업 및 종사할 수 있도록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직무와 관련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 11. 16.]

**제19조** 삭제 <2023. 11. 16.>

**제20조(경비부담 등)** ①이 영에 따라 설립된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부담한다. <개정 2004. 12. 30., 2007. 2. 28., 2008. 2. 14., 2008. 2. 29., 2009. 2. 27., 2011. 2. 25., 2012. 2. 29., 2012. 5. 23., 2013. 3. 23.>
② 삭제<2013. 3. 23.>

**제21조(대학 간 통·폐합에 관한 특례)** 대학 간 통、폐합에 관하여는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 11. 16.]

**제22조(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 ①각 학교의 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②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5. 2. 28., 2009. 2. 27., 2024. 3. 12.>
1. 단과대학、대학원 및 학과등의 설치
2. 부설학교、부속시설등 및 실습시설의 설치
3. 하부조직(단과대학、대학원 및 부속시설등에 두는 하부조직을 포함한다)과 그 분장사무
4. 그 밖에 조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학교의 장은 업무의 성질과 양에 따라 조직 및 인력배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정하되,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제17143호,2001. 3. 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7조, 제9조(사무국장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다), 제11조(총무과 및 총무과장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다), 제12조(총무과 및 총무과장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다), 제13조(총무과 및 총무과장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다), 제14조(총무과 및 총무과장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다)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교명칭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대전산업대학교에 재적하는 학생(대학원생을 포함한다)은 이 영에 의한 한밭대학교의 해당 학과의 해당 학년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대전산업대학교소속 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한밭대학교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 (폐지되는 공주문화대학의 학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공주문화대학은 2003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동학교 및 이 영 시행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고, 공주문화대학의 학생중 정당한 사유로 그 존속기간내에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자가 있을 때에는 다른 전문대학이나 공주대학교에 각각 편입학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입학하는 당해 학교에 그 학생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공주문화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및 조교외의 공무원은 공주대학교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공주문화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및 조교는 2002년 2월 28일까지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 별표의 교수 및 조교의 자격기준에 의한 해당 자격에 따라 공주대학교 정원의 범위안에서 공주대학교의 교원 및 조교로 임용한다. 다만, 임용되기전까지는 공주대학교의 교원 및 조교로 보되, 교원 및 조교의 자격·보수 등에 관하여는 전문대학 교원 및 조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폐지된 학교의 학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1982년 3월 1일 당시 순천농업전문대학의 재적생중 정당한 사유로 1983년 2월 말일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가 있을 때에는 다른 전문대학에 그 학생에 대한 졸업정원 및 입학인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아 전과 또는 편입학할 수 있다.

②1983년 3월 1일 당시 경기공업전문대학의 재적생중 정당한 사유로 1984년 2월 말일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가 있을 때에는 개편된 해당 학교의 전문대학과정 또는 다른 전문대학에 그 학생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아 전과 또는 편입학할 수 있다.

③1984년 3월 1일 당시 전북대학교의과대학부속간호전문대학 및 전남대학교의과대학부속간호전문대학의 재학생중 정당한 사유로 1986년 2월 28일까지 해당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자 또는 철도간호전문대학·부산공업전문대학 및 대전공업전문대학의 재학생중 정당한 사유로 1985년 2월 28일까지 해당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자가 있을 때에는 전북대학교의과대학부속간호전문대학·전남대학교의과대학부속간호전문대학 및 철도간호전문대학의 재학생은 다른 전문대학에, 부산공업전문대학 및 대전공업전문대학의 재학생은 개편된 해당학교 또는 다른 전문대학에 각각 편입학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입학하는 당해 학교에 그 학생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④국립학교설치령중개정령(1984. 2. 29., 대통령령 제11375호)의 시행으로 폐지된 학교를 퇴학한 자 또는 졸업한 자의 학비보조금의 상환·복무의무 등에 관하여는 국립학교설치령중개정령(1984. 2. 29., 대통령령 제11375호)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1980년 5월 17일부터 1983년 12월 21일 사이에 경기공업전문대학의 학칙중 학생활동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제적된 자에 대하여는 개편된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편된 해당 학교의 학생으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⑥국립학교설치령중개정령(1987. 2. 28., 대통령령 제12088호)의 시행으로 폐지된 여수수산전문대학은 1989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동 학교 및 국립학교설치령중개정령(1987. 2. 28., 대통령령 제12088호) 시행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국립학교설치령중개정령(1987. 2. 28., 대통령령 제12088호)전의 규정을 적용하며, 여수수산전문대학의 학생중 정당한 사유로 그 존속기간내에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자가 있을 때에는 다른 전문대학 또는 개편된 해당학교에 각각 편입학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입학하는 당해 학교에 그 학생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⑦국립학교설치령중개정령(1991. 2. 28., 대통령령 제13322호)의 시행으로 폐지된 삼척공업전문대학 및 상주농업전문대학은 1992년 2월말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동 학교 및 국립학교설치령중개정령(1991. 2. 28., 대통령령 제13322호) 시행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국립학교설치령중개정령(1991. 2. 28., 대통령령 제13322호)전의 규정을 적용하며, 삼척공업전문대학과 상주농업전문대학의 학생중 정당한 사유로 그 존속기간내에 해당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자가 있을 때에는 다른 전문대학 또는 개편된 해당 학교에 각각 편입학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입학하는 당해 학교에 그 학생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⑧국립학교설치령중개정령(1992. 3. 6., 대통령령 제13604호)의 시행으로 폐지된 군산수산전문대학은 1994년 2월말일까지, 예산농업전문대학은 1993년 2월말일까지 각각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동 학교 및 국립학교설치령중개정령(1992. 3. 6., 대통령령 제13604호)의 시행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국립학교설치령중개정령(1992. 3. 6., 대통령령 제13604호)전의 규정을 적용하며, 군산수산전문대학과 예산농업전문대학의 학생중 정당한 사유로 그 존속기간내에 해당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자가 있을 때에는 다른 전문대학 또는 개편된 해당 학교에 각각 편입학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입학하는 당해 학교에 그 학생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⑨국립학교설치령중개정령(1993. 2. 24., 대통령령 제13859호)의 시행으로 폐지된 목포해양전문대학ㆍ부산선원학교 및 인천선원학교는 1995년 2월 28일까지, 충주공업전문대학ㆍ안성농업전문대학ㆍ진주농림전문대학 및 밀양전문대학은 1994년 2월 28일까지 각각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동학교 및 국립학교설치령중개정령(1993. 2. 24., 대통령령 제13859호)의 시행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국립학교설치령중개정령(1993. 2. 24., 대통령령 제13859호)전의 규정을 적용하며, 폐지되는 학교의 학생중 정당한 사유로 그 존속기간내에 해당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전문대학 학생은 다른 전문대학이나 개편된 해당 학교에, 선원학교 학생은 개편된 해당 고등학교에 각각 편입학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입학하는 당해 학교에 그 학생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⑩국립학교설치령중개정령(1993. 2. 24., 대통령령 제13859호)의 시행으로 폐지된 목포해양전문대학과 부산선원학교 및 인천선원학교를 퇴학 또는 졸업한 자의 복무의무와 학비상환

、학비의 급여정지등에 관하여는 국립학교설치령중개정령(1993. 2. 24., 대통령령 제13859호)전의 규정에 의한다.

⑪국립학교설치령중개정령(1993. 2. 24., 대통령령 제13859호)의 시행전에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에 입학하여 퇴학 또는 졸업한 자의 학비상환, 학비의 급여정지 및 복무의무 등에 관하여는 국립학교설치령중개정령(1993. 2. 24., 대통령령 제13859호)전의 규정에 의한다.

⑫국립학교설치령중개정령(1995. 2. 28., 대통령령 제14539호)의 시행으로 폐지된 통영수산전문대학은 1997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동학교 및 국립학교설치령중개정령(1995. 2. 28., 대통령령 제14539호)의 시행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국립학교설치령중개정령(1995. 2. 28., 대통령령 제14539호)전의 규정을 적용하고, 통영수산전문대학의 학생중 정당한 사유로 그 존속기간내에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자가 있을 때에는 다른 전문대학이나 경상대학교 수산대학에 각각 편입학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입학하는 당해 학교에 그 학생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 (부속학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부속학교는 이 영에 의한 부설학교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대학 "16,810"을 "16,888"로, 대학의 교수、부교수、조교수 또는 전임강사 "13,573"을 "13,638"로, 대학의 조교 "3,193"을 "3,206"으로, 전문대학 "478"을 "400"으로, 전문대학의 학장 "7"을 "6"으로, 전문대학의 교수、부교수、조교수 또는 전임강사 "390"을 "326"으로, 전문대학의 조교 "81"을 "68"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7502호,2002. 2. 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국재활복지대학의 설립준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이 영 시행전에 한국재활복지대학의 설립준비에 필요한 사무를 행할 수 있다.

**제3조** (학교명칭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서울선희학교에 재적중인 학생은 이 영에 의한 서울농학교의 해당 학년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서울선희학교 소속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서울농학교 소속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제17911호,2003. 2. 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교명칭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인천교육대학교에 재적중인 학생은 이 영에 의한 경인교육대학교의 해당학년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인천교육대학교 소속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경인교육대학교 소속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제18053호,2003. 7. 25.>(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0조** 중 "사무국장중 2인"을 "사무국장중 1인"으로 하고, 별표 6중 목포대학교의 과·담당관란 "10"을 "9"로 한다.

**부칙** <제18287호,2004. 2. 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03호,2004. 3. 5.>(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0조** 를 삭제한다.

**부칙** <제18567호,2004. 10.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14호,2004. 12. 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한국철도대학에 재적중인 학생의 학비보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한국철도대학에 재적중인 학생의 학비보조에 관하여는 제16조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실습비 및 여비 등의 학비는 건설교통부소관 예산에서 지급한다.

**부칙** <제18719호,2005. 2. 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되는 천안공업대학의 학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천안공업대학은 2007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동학교 및 이 영 시행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고, 천안공업대학의 학생중 정당한 사유로 그 존속기간내에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자가 있을 때에는 다른 전문대학이나 공주대학교에 각각 편입학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입학하는 당해 학교에 그 학생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천안공업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조교외의 공무원은 공주대학교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천안공업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조교는 2006년 2월 28일까지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의 교수 및 조교의 자격기준에 의한 해당 자격에 따라 공주대학교 정원의 범위안에서 공주대학교의 조교로 임용한다. 다만, 임용되기전까지는 공주대학교의 조교로 보되, 조교의 자격ㆍ보수 등에 관하여는 전문대학 조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9357호,2006. 2. 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 별표 1 내지 별표 3, 별표 6, 별표 6의2, 별표 8, 별표 9 및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되는 밀양대학교 학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밀양대학교는 2010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동학교 및 이 영 시행 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되, 부산대학교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소정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부산대학교의 학칙을 적용할 수 있고, 밀양대학교의 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그 존속기간 내에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자가 있을 때에는 다른 산업대학이나 부산대학교에 각각 편입학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입학하는 당해 학교에 그 학생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밀양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은 부산대학교 소속의 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 (폐지되는 삼척대학교 학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삼척대학교는 2010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동학교 및 이 영 시행 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되, 강원대학교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소정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강원대학교의 학칙을 적용할 수 있고, 삼척대학교의 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그 존속기간 내에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자가 있을 때에는 다른 산업대학이나 강원대학교에 각각 편입학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입학하는 당해 학교에 그 학생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삼척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은 강원대학교 소속의 공무원으로 본다.

**제4조** (폐지되는 여수대학교 학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여수대학교는 2010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동학교 및 이 영 시행 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되, 전남대학교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소정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전남대학교 학칙을 적용할 수 있고, 여수대학교의 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그 존속기간 내에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자가 있을 때에는 다른 대학이나 전남대학교에 각각 편입학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입학하는 당해 학교에 그 학생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

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여수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은 전남대학교 소속의 공무원으로 본다.

**제5조** (폐지되는 청주과학대학 학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청주과학대학은 200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동학교 및 이 영 시행 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고, 청주과학대학의 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그 존속기간 내에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자가 있을 때에는 다른 전문대학이나 충주대학교에 각각 편입학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입학하는 당해 학교에 그 학생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청주과학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조교 외의 공무원은 충주대학교 소속의 공무원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청주과학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조교는 2007년 2월 28일까지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의 교수 및 조교의 자격기준에 의한 해당자격에 따라 충주대학교의 정원의 범위 안에서 충주대학교의 조교로 임용한다. 다만, 임용되기 전까지는 충주대학교의 조교로 보되, 조교의 자격ㆍ보수 등에 관하여는 전문대학의 조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9591호,2006. 6. 30.>(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립학교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중 "이사관ㆍ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제19902호,2007. 2. 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되는 원주대학 학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원주대학은 2009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대학 및 이 영 시행 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원주대학의 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같은 대학 존속기간 내에 같은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자가 있을 때에는 다른 전문대학이나 강릉대학교에 각각 편입학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입학하는 학교에 그 학생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원주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조교 외의 공무원은 강릉대학교 소속의 공무원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원주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조교는 2008년 2월 29일까지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의 교수 및 조교의 자격기준에 따른 해당 자격에 따라 강릉대

학교의 정원의 범위 안에서 강릉대학교의 조교로 임용한다. 다만, 임용되기 전까지는 강릉대학교의 조교로 보되, 조교의 자격ㆍ보수 등에 관하여는 전문대학의 조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폐지되는 국립의료원간호대학 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국립의료원간호대학은 2009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대학 및 이 영 시행 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국립의료원간호대학의 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같은 대학 존속기간 내에 같은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자가 있을 때에는 다른 전문대학이나 승계되는 대학교에 각각 편입학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입학하는 학교에 그 학생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중 " 기계사무관ㆍ전기사무관ㆍ토목사무관ㆍ건축사무관 "을 " 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으로 한다.

②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중 " 기계사무관ㆍ전기사무관ㆍ토목사무관ㆍ건축사무관 "을 " 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으로 한다.

**부칙** <제20608호,2008. 2. 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되는 상주대학교 학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상주대학교는 2012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학교, 이 영 시행 전에 입학한 학생 및 입학을 허가받은 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되, 경북대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는 소정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경북대학교의 학칙을 적용할 수 있고, 상주대학교의 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그 존속기간 내에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자가 있을 때에는 다른 산업대학이나 경북대학교에 편입학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입학하는 해당 학교에 그 학생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상주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은 경북대학교 소속의 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 (폐지되는 익산대학 학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익산대학은 2010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학교 및 이 영 시행 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고, 익산대학의 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그 존속기간 내에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자가 있을 때에는 다른 전문대학이나 전북대학교에 편입학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입학하는 해당 학교에 그 학생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익산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조교 외의 공무원은 전북대학교 소속의 공무원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익산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조교는 2009년 2월 28일까지 「교수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의 교수 및 조교의 자격기준에 따른 해당 자격에 따라 전북대학교의 정원의 범위에서 전북대학교의 조교로 임용한다. 다만, 임용되기 전까지는 전북대학교의 조교로 보되, 조교의 자격ㆍ보수 등에 관하여는 전문대학의 조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폐지되는 제주교육대학교 학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제주교육대학교는 2012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학교, 이 영 시행 전에 입학한 학생 및 입학을 허가받은 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되, 제주대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는 소정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제주대학교의 학칙을 적용할 수 있고, 제주교육대학교의 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그 존속기간 내에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자가 있을 때에는 다른 교육대학이나 제주대학교에 편입학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입학하는 해당 학교에 그 학생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제주교육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은 제주대학교 소속의 공무원으로 본다.

**제5조** (서울국악예술고등학교ㆍ서울국악예술학교의 국립화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사립학교인 서울국악예술고등학교 및 서울국악예술학교는 각각 이 영에 따른 전통예술고등학교 및 전통예술학교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서울국악예술고등학교 및 서울국악예술학교 재적학생은 각각 이 영에 따른 전통예술고등학교 및 전통예술학교의 해당 학년, 해당 학과 또는 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서울국악예술고등학교 및 서울국악예술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각각 이 영에 따른 전통예술고등학교 및 전통예술학교의 교원으로 임용한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서울국악예술고등학교 및 서울국악예술학교에 3년 이상 재직 중인 직원은 각각 이 영에 따른 전통예술고등학교 및 전통예술학교 소속의 국가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다.

⑤ 이 영 시행 당시 서울국악예술고등학교 및 서울국악예술학교에 재직 중인 직원을 이 영에 따른 전통예술고등학교 및 전통예술학교 소속의 국가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에 그 특별채용시험방법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부칙** <제20740호,2008. 2. 29.>(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1& 까지 생략

1*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 을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으로 한다.

제16조제6항 중 “ 해양수산부소관 ” 을 “ 국토해양부 소관 ” 으로 하고, 제16조제10항 중 “ 문화관광부소관 ” 을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으로, “ 해양수산부소관 ” 을 “ 국토해양부 소관 ” 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본문 중 “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 ” 을 “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 ” 을 “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 을 각각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 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 ” 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 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 ” 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단서 중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 을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및 제4항 중 “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 을 각각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 ” 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 건설교통부소관 ” 을 “ 국토해양부소관 ” 으로, “ 문화관광부소관 ” 을 “ 문화체육관광부소관 ” 으로, “ 해양수산부소관 ” 을 “ 국토해양부소관 ”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 건설교통부장관ㆍ문화관광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 을 “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으로 한다.

제21조 중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 을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으로, “ 건설교통부장관ㆍ문화관광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 을 “ 국토해양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 ” 으로 한다.

1(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 <제21334호,2009. 2. 27.>

이 영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707호,2009. 9.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문대학의 학장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총장으로 본다.

**부칙** <제22054호,2010. 2.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되는 충주대학교 학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충주대학교(이 영 시행 전 산업대학으로서의 충주대학교를 말한다)는 2016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학교 및 이 영 시행 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되, 충주대학교(이 영 시행 후 일반대학으로서의 충주대학교를 말한다)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소정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충주대학교(이 영 시행 후 일반대학으로서의 충주대학교를 말한다)의 학칙을 적용할 수 있고, 폐지되는 충주대학교(이 영 시행 전 산업대학으로서의 충주대학교를 말한다)의 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그 존속기간 내에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다른 산업대학교나 충주대학교(이 영 시행 후 일반대학으로서의 충주대학교를 말한다)에 편입학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입학하는 해당 학교에 그 학생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충주대학교(이 영 시행 전 산업대학으로서의 충주대학교를 말한다)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은 충주대학교(이 영 시행 후 일반대학으로서의 충주대학교를 말한다) 소속의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제22354호,2010. 8.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별표 6의2 및 별표 9의 개정규정 중 진주산업대학교의 명칭을 경남과학기술대학교로 변경하는 부분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명칭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서울산업대학교 및 진주산업대학교에 재적 중인 학생은 각각 이 영에 따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및 경남과학기술대학교의 해당 학과의 해당 학년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서울산업대학교 및 진주산업대학교의 소속 공무원은 각각 이 영에 따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및 경남과학기술대학교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제22677호,2011. 2.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되는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학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종전의 산업대학으로서의 경남과학기술대학교는 2017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학교 및 이 영 시행 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되, 이 영 시행 후 일반대학으로서의 경남과학기술대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는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 영 시행 후 일반대학으로서의 경남과학기술대학교의 학칙을 적용할 수 있고, 폐지되는 산업대학으로서의 경남과학기술대학교의 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그 존속기간 내에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다른 산업대학교나 이 영 시행 후 일반대학으로서의 경남과학

기술대학교에 편입학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입학하는 해당 학교에 그 학생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산업대학으로서의 경남과학기술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은 이 영 시행 후 일반대학으로서의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소속의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제23644호,2012. 2. 29.>(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ㆍ제2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 중 전임강사에 관한 부분과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1* 까지 생략

1(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 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전임강사 "를 " 부교수 또는 조교수 "로 한다.

2) 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3646호,2012.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충주대학교에 재적 중인 학생은 이 영에 따른 한국교통대학교의 해당 학과의 해당 학년에 재적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전에 입학한 학생 중 종전의 충주대학교로 졸업을 희망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한국교통대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충주대학교로 졸업할 수 있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충주대학교 소속 공무원은 이 영에 따른 한국교통대학교 소속의 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폐지되는 한국철도대학 학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한국철도대학은 2016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이 영 시행 전에 해당 학교에 입학한 학생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되, 한국철도대학의 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그 존속기간 내에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다른 전문대학이나 한국교통대학교에 편입학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입학하는 해당 학교에 그 학생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한국철도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은 한국교통대학교 소속의 공무원으로 본다.

**제4조**(폐지되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ㆍ한경대학교ㆍ한밭대학교 학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종전의 산업대학으로서의 서울과학기술대학교ㆍ한경대학교ㆍ한밭대학교는 2018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이 영 시행 전에 해당 학교에 입학한 학생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되, 이 영 시행 후 일반대학으로서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한경대학교、한밭대학교에서 각각의 학칙으로 정하는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 영 시행 후 일반대학으로서의 서울과학기술대학교、한경대학교、한밭대학교의 학칙을 각각 적용할 수 있고, 폐지되는 산업대학으로서의 서울과학기술대학교、한경대학교、한밭대학교의 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그 존속기간 내에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학생이 있을 때에는 이 영 시행 후 일반대학으로서의 서울과학기술대학교、한경대학교、한밭대학교에 각각 편입학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입학하는 해당 학교에 그 학생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산업대학으로서의 서울과학기술대학교、한경대학교、한밭대학교에 각각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은 이 영 시행 후 일반대학으로서의 서울과학기술대학교、한경대학교、한밭대학교 각각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제23804호,2012. 5. 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075호,2012. 8.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 명칭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한국재활복지대학에 재적 중인 학생은 이 영에 따른 한국복지대학교의 해당 학과의 해당 학년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한국재활복지대학 소속 공무원은 이 영에 따른 한국복지대학교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학교 명칭의 변경에 따른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한국재활복지대학"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복지대학교"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4423호,2013. 3. 2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2* 까지 생략

2(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8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2항 단서 및 제21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6항、제10항 및 제20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18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6항 본문、단서, 제19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20조제2항 및 제21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3) 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 <제24490호,2013. 3. 23.>(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특수학교"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고등학교"를 "특수학교"로 한다.

제16조제6항 중 "제주대학교·한국해양대학교·부산해사고등학교 및 인천해사고등학교"를 "제주대학교 및 한국해양대학교"로, "국고(부산해사고등학교 및 인천해사고등학교는 국토해양부 소관 예산)"를 "국고"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7조 중 "경기지도과, 해사고등학교"를 "경기지도과"로, "제16조제1항·제3항 및 제10항"을 "제16조제1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18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19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0조제1항 중 "국고(해사고등학교는 국토해양부 소관 예산)"를 "국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별표 1 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25751호,2014. 11. 19.>(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54>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6080호,2015. 2. 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260호,2016. 6.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950호,2019. 7. 2.>(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0361호,2020. 1.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548호,2020. 3.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506호,2021. 2.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경상대학교에 재적 중인 학생은 경상국립대학교의 해당 학과의 해당 학년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경상대학교에 입학을 허가받은 사람은 경상국립대학교에 입학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상대학교의 학생으로서 졸업하는 것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경상국립대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대학교의 학생으로서 졸업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경상대학교에 소속된 공무원은 경상국립대학교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폐지되는 경남과학기술대학교의 재학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경남과학기술대학교에 재적 중인 학생 및 이 영 시행 전에 같은 학교에 입학을 허가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2027년 2월 28일까지(건축학과의 경우 2028년 2월 29일까지) 같은 학교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상국립대학교의 학생으로서 졸업하는 것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학교의 학생으로서 졸업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로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간 내에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대학 또는 경상국립대학교에 편입학할 수 있다. 이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편입학하려는 학교에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경남과학기술대학교에 소속된 공무원은 경상국립대학교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제32980호,2022. 11.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 명칭이 변경되는 한경대학교의 학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한경대학교에 재적 중인 학생은 한경국립대학교의 해당 학과의 해당 학년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한경대학교에 입학을 허가받은 사람은 한경국립대학교에 입학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한경대학교의 학생으로서 졸업하는 것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한경국립대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경대학교의 학생으로서 졸업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한경대학교에 소속된 공무원은 한경국립대학교 소속의 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폐지되는 한국복지대학교의 학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한국복지대학교에 재적 중인 학생과 이 영 시행 전에 같은 학교에 입학을 허가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2028년 2월 29일까지 같은 학교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경국립대학교의 학생으로서 졸업하는 것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한경국립대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경국립대학교의 학생으로서 졸업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로 같은 항에 따른 기한 내에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전문대학이나 한경국립대학교에 편입학할 수 있다. 이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편입학하려는 학교에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한국복지대학교에 소속된 공무원은 한경국립대학교 소속의 공무원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2 비고 제1호가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나목 중 "한경대학교"를 "한경국립대학교"로 한다.

②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64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33862호,2023. 11.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1 제1호 국립군산대학교란의 개정규정(소재지를 변경하는 부분만 해당한다), 전북대학교란의 개정규정, 같은 표 제2호의 전주교육대학교란의 개정규정, 별표 5 중 전북대학교란 및 전주교육대학교란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8일
2. 별표 5 중 국립공주대학교란의 개정규정(부설특수학교를 신설하는 부분만 해당한다): 2024년 3월 1일

**제2조**(학교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강릉원주대학교、공주대학교、군산대학교、금오공과대학교、목포대학교、목포해양대학교、부경대학교、순천대학교、안동대학교、창원대학교、한국교통대학교、한국해양대학교 및 한밭대학교에 재적 중인 학생은 각각 이 영에 따른 국립강릉원주대학교、국립공주대학교、국립군산대학교、국립금오공과대학교、국립목포대학교、국립목포해양대학교、국립부경대학교、국립순천대학교、국립안동대학교、국립창원대학교、국립한국교통대학교、국립한국해양대학교 및 국립한밭대학교의 해당 학과의 해당 학년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강릉원주대학교、공주대학교、군산대학교、금오공과대학교、목포대학교、목포해양대학교、부경대학교、순천대학교、안동대학교、창원대학교、한국교통대학교、한국해양대학교 및 한밭대학교 소속 공무원은 각각 이 영에 따른 국립강릉원주대학교、국립공주대학교、국립군산대학교、국립금오공과대학교、국립목포대학교、국립목포해양대학교、국립부경대학교、국립순천대학교、국립안동대학교、국립창원대학교、국립한국교통대학교、국립한국해양대학교 및 국립한밭대학교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2 비고 제1호나목 중 “금오공과대학교”를 “국립금오공과대학교”로, “목포해양대학교”를 “국립목포해양대학교”로, “한밭대학교”를 “국립한밭대학교”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강릉원주대학교”를 “국립강릉원주대학교”로, “공주대학교”를 “국립공주대학교”로, “군산대학교”를 “국립군산대학교”로, “목포대학교”를 “국립목포대학교”로, “부경대학교”를 “국립부경대학교”로, “순천대학교”를 “국립순천대학교”로, “안동대학교”를 “국립안동대학교”로, “창원대학교”를 “국립창원대학교”로, “한국교통대학교”를 “국립한국교통대학교”로, “한국해양대학교”를 “국립한국해양대학교”로 한다.

**부칙** <제34298호,2024. 3. 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282호,2025. 2.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 명칭이 변경되는 국립안동대학교의 학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국립안동대학교에 재적 중인 학생은 국립경국대학교의 해당 학과의 해당 학년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국립안동대학교에 입학을 허가받은 사람은 국립경국대학교에 입학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립안동대학교의 학생으로서 졸업하는 것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립경국대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안동대학교의 학생으로서 졸업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국립안동대학교에 소속된 공무원은 국립경국대학교 소속의 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경북도립대학교의 통ㆍ폐합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경북도립대학교에 재적 중인 학생과 이 영 시행 전에 같은 학교에 입학을 허가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2030년 2월 28일까지 같은 학교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관계 법령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립경국대학교의 학생으로서 졸업하는 것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립경국대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경국대학교의 학생으로서 졸업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로 같은 항에 따른 기한 내에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전문대학이나 국립경국대학교에 편입학할 수 있다. 이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편입학하려는 학교에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경북도립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과 조교는 국립경국대학교 소속의 교원과 조교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교원과 조교의 보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경북도립대학교 소속 교원과 조교의 호봉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⑤ 이 영 시행 당시 경북도립대학교 소속의 지방공무원(교원과 조교는 제외한다)은 대통령령 제35289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에 따라 국립경국대학교에 증원되는 일반직 공무원의 정원의 범위에서 국립경국대학교 소속의 국가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할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비고 제1호다목 중 "국립안동대학교"를 "국립경국대학교"로 한다.

**부칙** <제35946호,2025. 12.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147호,2026. 2.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립강릉원주대학교의 통ㆍ폐합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국립강릉원주대학교에 재적 중인 학생 및 이 영 시행 전에 같은 학교에 입학을 허가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2032년 2월 29일까지(치의학과의 경우 2034년 2월 28일까지) 같은 학교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강원대학교의 학생으로서 졸업하는 것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강원대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강원대학교의 학생으로서 졸업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로 같은 항에 따른 기한 내에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대학 또는 강원대학교에 편입학할 수 있다. 이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편입학하려는 학교에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국립강릉원주대학교에 소속된 공무원은 강원대학교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전남도립대학교의 통ㆍ폐합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전남도립대학교에 재적 중인 학생과 이 영 시행 전에 같은 학교에 입학을 허가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2032년 2월 29일까지 같은 학교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관계 법령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립목포대학교의 학생으로서 졸업하는 것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립목포대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목포대학교의 학생으로서 졸업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로 같은 항에 따른 기한 내에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전문대학이나 국립목포대학교에 편입학할 수 있다. 이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편입학하려는 학교에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전남도립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과 조교는 국립목포대학교 소속의 교원과 조교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교원과 조교의 보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전남도립대학교 소속 교원과 조교의 호봉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⑤ 이 영 시행 당시 전남도립대학교 소속의 지방공무원(교원과 조교는 제외한다)은 대통령령 제36095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에 따라 국립목포대학교에 증원되는 일반직 공무원의 정원의 범위에서 국립목포대학교 소속의 국가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할 수 있다.

**제4조**(경남도립거창대학 및 경남도립남해대학의 통ㆍ폐합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경남도립거창대학 및 경남도립남해대학에 재적 중인 학생과 이 영 시행 전에 각각 같은 학교에 입학을 허가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2032년 2월 29일까지 각각 같은 학교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관계 법령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립창원대학교의 학생으로서 졸업하는 것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립창원대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창원대학교의 학생으로서 졸업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로 같은 항에 따른 기한 내에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전문대학이나 국립창원대학교에 편입학할 수 있다. 이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편입학하려는 학교에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경남도립거창대학 및 경남도립남해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과 조교는 국립창원대학교 소속의 교원과 조교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교원과 조교의 보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경남도립거창대학 및 경남도립남해대학 소속 교원과 조교의 호봉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⑤ 이 영 시행 당시 경남도립거창대학 및 경남도립남해대학 소속의 지방공무원(교원과 조교는 제외한다)은 대통령령 제36095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에 따라 국립창원대학교에 증원되는 일반직 공무원의 정원의 범위에서 국립창원대학교 소속의 국가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할 수 있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2 비고 제1호나목 중 “ 국립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를 “ 강원대학교 ”로 한다.

**부칙** <제36423호,2026. 6. 2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의 전남대학교의 소재지란 중 “ 광주광역시ㆍ전라남도 ”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로 하고, 같은 호 국립목포대학교, 국립목포해양대학교 및 국립순천대학교의 소재지란 중 “ 전라남도 ”를 각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로 하며, 같은 표 제2호의 광주교육대학교의 소재지란 중 “ 광주광역시 ”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로 한다.

별표 5 전남대학교의 위치란 중 “ 광주광역시 ”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로 하고, 같은 표 광주교육대학교의 위치란 중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로 한다.

1^ 부터 <78>까지 생략

■ 국립학교 설치령 [별표 1] <개정 2026. 6. 23.>

학교의 명칭·소재지 및 과정(제3조 관련)

1. 대학

| 학교명 | 소재지 | 학교명 | 소재지 |
|---|---|---|---|
| 강원대학교 | 강원특별자치도 | 국립경국대학교 | 경상북도 |
| 경북대학교 | 대구광역시·경상북도 | 전남대학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경상국립대학교 | 경상남도 | 전북대학교 | 전북특별자치도 |
| 국립공주대학교 | 충청남도·세종특별자치시 | 제주대학교 | 제주특별자치도 |
| 국립군산대학교 | 전북특별자치도 | 국립창원대학교 | 경상남도 |
| 국립금오공과대학교 | 경상북도 | 충남대학교 |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 |
| 국립목포대학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충북대학교 | 충청북도·세종특별자치시 |
| 국립목포해양대학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한경국립대학교 | 경기도 |
| 국립부경대학교 | 부산광역시 | 국립한국교통대학교 | 충청북도·경기도 |
| 부산대학교 | 부산광역시·경상남도 | 한국체육대학교 | 서울특별시 |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서울특별시 | 국립한국해양대학교 | 부산광역시 |
| 국립순천대학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국립한밭대학교 |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 |

2. 교육대학

| 학교명 | 소재지 | 학교명 | 소재지 |
|---|---|---|---|
| 공주교육대학교 | 충청남도 | 경인교육대학교 | 인천광역시·경기도 |
| 광주교육대학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전주교육대학교 | 전북특별자치도 |
| 대구교육대학교 | 대구광역시 | 진주교육대학교 | 경상남도 |
| 부산교육대학교 | 부산광역시 | 청주교육대학교 | 충청북도 |
| 서울교육대학교 | 서울특별시 | 춘천교육대학교 | 강원특별자치도 |

3. 특수학교

| 학교명 | 소재지 | 과정 |
|---|---|---|
| 서울맹학교 | 서울특별시 | 유치부(「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 |

| | | |
|---|---|---|
| | | 치원 과정과 동등한 정도의 교육을 말한다. 이하 같다)·초등부(「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과정과 동등한 정도의 교육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학부(「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학교 과정과 동등한 정도의 교육을 말한다. 이하 같다)·고등부(「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과정과 동등한 정도의 교육을 말한다. 이하 같다) |
| 서울농학교 | 서울특별시 | 유치부·초등부·중학교·고등부 |
| 한국경진학교 | 경기도 | 유치부·초등부·중학교·고등부 |
| 한국선진학교 | 경기도 | 유치부·초등부·중학교·고등부 |
| 한국우진학교 | 서울특별시 | 유치부·초등부·중학교·고등부 |

■ 국립학교 설치령 [별표 2] 삭제 <2009.2.27>

■ 국립학교 설치령 [별표 3] 삭제 <2009.2.27>

■ 국립학교 설치령 [별표 4] 삭제 <2009.2.27>

■ 국립학교 설치령 [별표 5] <개정 2026. 6. 23.>

## 대학 및 교육대학에 두는 부설학교의 명칭 및 위치

(제8조제1항관련)

| 학교명 | 부설학교명 | 위치 |
|---|---|---|
| 강원대학교 | 부설유치원<br>부설고등학교 | 강원특별자치도 |
| 경북대학교 | 부설초등학교<br>부설중학교<br>부설고등학교 | 대구광역시 |
| 경상국립대학교 | 부설중학교<br>부설고등학교 | 경상남도 |
| 국립공주대학교 | 부설유치원<br>부설중학교<br>부설고등학교<br>부설특수학교 | 충청남도 |
| 부산대학교 | 부설고등학교 | 부산광역시 |
| 전남대학교 | 부설중학교<br>부설고등학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전북대학교 | 부설고등학교 | 전북특별자치도 |
| 제주대학교 | 부설초등학교<br>부설중학교<br>부설고등학교 | 제주특별자치도 |
| 충북대학교 | 부설중학교<br>부설고등학교 | 충청북도 |
| 공주교육대학교 | 부설초등학교 | 충청남도 |
| 광주교육대학교 | 광주부설초등학교<br>목포부설초등학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대구교육대학교 | 대구부설초등학교<br>안동부설초등학교 | 대구광역시<br>경상북도 |
| 부산교육대학교 | 부설초등학교 | 부산광역시 |
| 서울교육대학교 | 부설초등학교 | 서울특별시 |
| 경인교육대학교 | 부설초등학교 | 인천광역시 |
| 전주교육대학교 | 전주부설초등학교<br>군산부설초등학교 | 전북특별자치도 |
| 진주교육대학교 | 부설초등학교 | 경상남도 |
| 청주교육대학교 | 부설초등학교 | 충청북도 |
| 춘천교육대학교 | 부설초등학교 | 강원특별자치도 |

■ 국립학교 설치령 [별표 6] <개정 2026. 2. 27.>

대학의 부속시설등과 사무국 및 처·실·본부·단 등의 하부조직에 두는 과 및 담당관의 설치범위(제9조제5항 관련)

| 학교명 | 과·담당관 |
|---|---|
| 강원대학교 | 32 |
| 경북대학교 | 16 |
| 경상국립대학교 | 15 |
| 국립공주대학교 | 11 |
| 국립군산대학교 | 10 |
| 국립금오공과대학교 | 3 |
| 국립목포대학교 | 12 |
| 국립목포해양대학교 | 1 |
| 국립부경대학교 | 11 |
| 부산대학교 | 14 |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9 |
| 국립순천대학교 | 10 |
| 국립경국대학교 | 10 |
| 전남대학교 | 17 |
| 전북대학교 | 12 |
| 제주대학교 | 12 |
| 국립창원대학교 | 10 |
| 충남대학교 | 13 |
| 충북대학교 | 12 |
| 한경국립대학교 | 7 |
| 국립한국교통대학교 | 10 |
| 한국체육대학교 | 2 |
| 국립한국해양대학교 | 10 |
| 국립한밭대학교 | 7 |

■ 국립학교 설치령 [별표 6의2] 삭제 <2012.2.29>

■ 국립학교 설치령 [별표 7] <개정 2023. 11. 16.>

사무국장 또는 총무처장의 분장사무(제9조제4항 및 제13조제2항 관련)

| 명 칭 | 분 장 사 무 |
|---|---|
| 사 무 국 장<br>또 는<br>총 무 처 장 | 보안, 관인관리, 직원인사, 급여, 문서관리, 법무, 자체감사,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회계 및 결산,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 각종공사 및 시설관리,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원 관리, 비상기획, 국립대학 운영 혁신 지원 보좌, 그 밖에 학교의 장이 정하는 사항 |

■ 국립학교 설치령 [별표 8] <개정 2026. 2. 27.>

대학의 단과대학 및 대학원에 두는 행정실의 설치범위(제9조제7항 관련)

| 학교명 | 행정실 | 학교명 | 행정실 |
|---|---|---|---|
| 강원대학교 | 11 | 국립경국대학교 | 4 |
| 경북대학교 | 12 | 전남대학교 | 13 |
| 경상국립대학교 | 12 | 전북대학교 | 10 |
| 국립공주대학교 | 7 | 제주대학교 | 8 |
| 국립군산대학교 | 4 | 국립창원대학교 | 5 |
| 국립금오공과대학교 | | 충남대학교 | 10 |
| 국립목포대학교 | 1 | 충북대학교 | 8 |
| 국립목포해양대학교 | | 한경국립대학교 | 2 |
| 국립부경대학교 | 6 | 국립한국교통대학교 | 5 |
| 부산대학교 | 12 | 한국체육대학교 | |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4 | 국립한국해양대학교 | 4 |
| 국립순천대학교 | 4 | 국립한밭대학교 | 3 |

■ 국립학교 설치령 [별표 10] <개정 2008.2.14>

■ 국립학교 설치령 [별표 10] 삭제 <2020. 3. 31.>

■ 국립학교 설치령 [별표 11] 삭제 <2020. 3. 31.>

# 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051 - 773 - 5741,5748

**제1조(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2조제2항 및 「교육공무원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부산해사고등학교 및 인천해사고등학교의 설립ㆍ운영 및 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해사에 관한 기술ㆍ기능의 체계적인 교육과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부산해사고등학교 및 인천해사고등학교(이하 "국립해사고등학교"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한다.

② 국립해사고등학교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제3조(공무원의 정원)** 국립해사고등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定員)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정한다.

**제4조(교원의 임용 등)** ① 국립해사고등학교에 교장을 둔다.

② 「교육공무원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국립해사고등학교의 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장의 임용권(교장으로 임명하는 임용권은 제외한다)은 「교육공무원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임한다.

④ 「교육공무원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국립해사고등학교의 교감ㆍ수석교사 및 교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임용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임용권 중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교육공무원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국립해사고등학교의 교장에게 위임한다.

1. 소속 교사의 임용
2. 소속 교감의 승급

**제5조(인사교류에 관한 특례)** ① 국립해사고등학교가 소재한 지역의 교육감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립해사고등학교 소속 교육공무원을 포함하여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립해사고등학교 소속 교육공무원의 인사교류의 규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국립해사고등학교의 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학비보조 등)** ① 국립해사고등학교의 학생에 대해서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립해사고등학교의 학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에 필요한 자료비ㆍ의복비와 그 밖의 학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 1. 5.>

**제7조(경비부담)** 국립해사고등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에서 부담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국립해사고등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권한의 위탁)** 교육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제62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국립해사고등학교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탁한다.

**부칙** <제24490호,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립해사고등학교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라 설치된 국립해사고등학교는 이 영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교원의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교육공무원법」및「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임용된 국립해사고등학교의 교원은 이 영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립공업고등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② 국립 국악ㆍ전통예술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③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를 “ 특수학교 ”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 고등학교 ”를 “ 특수학교 ”로 한다.

제16조제6항 중 “ 제주대학교ㆍ한국해양대학교ㆍ부산해사고등학교 및 인천해사고등학교 ”를 “ 제주대학교 및 한국해양대학교 ”로, “ 국고(부산해사고등학교 및 인천해사고등학교는 국토해양부 소관 예산) ”를 “ 국고 ”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7조 중 “ 경기지도과, 해사고등학교 ”를 “ 경기지도과 ”로, “ 제16조제1항ㆍ제3항 및 제10항 ”을 “ 제16조제1항 및 제3항 ”으로 한다.

제18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19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0조제1항 중 “ 국고(해사고등학교는 국토해양부 소관 예산) ”를 “ 국고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별표 1 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31380호,2021. 1. 5.>(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 [별표]

**국립해사고등학교의 소재지**(제2조제2항 관련)

| 학교명 | 소재지 |
|---|---|
| 부산해사고등학교 | 부산광역시 |
| 인천해사고등학교 | 인천광역시 |

# 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제62조제2항 및「교육공무원법」제33조제2항에 따라 부산해사고등학교 및 인천해사고등학교의 설립ㆍ운영 및 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제62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해사에 관한 기술ㆍ기능의 체계적인 교육과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부산해사고등학교 및 인천해사고등학교(이하 "국립해사고등학교"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한다.

② 국립해사고등학교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제3조(공무원의 정원)** 국립해사고등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定員)은「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정한다.

**제4조(교원의 임용 등)** ① 국립해사고등학교에 교장을 둔다.

② 「교육공무원법」제33조제2항에 따라 국립해사고등학교의 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장의 임용권(교장으로 임명하는 임용권은 제외한다)은 「교육공무원법」제33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임한다.

④ 「교육공무원법」제33조제2항에 따라 국립해사고등학교의 교감ㆍ수석교사 및 교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임용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임용권 중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교육공무원법」제33조제2항에 따라 국립해사고등학교의 교장에게 위임한다.

1. 소속 교사의 임용
2. 소속 교감의 승급

**제5조(인사교류에 관한 특례)** ① 국립해사고등학교가 소재한 지역의 교육감은 「교육공무원임용령」제13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립해사고등학교 소속 교육공무원을 포함하여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립해사고등학교 소속 교육공무원의 인사교류의 규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국립해사고등학교의 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학비보조 등)** ① 국립해사고등학교의 학생에 대해서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립해사고등학교의 학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에 필요한 자료비ㆍ의복비와 그 밖의 학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 1. 5.>

**제7조(경비부담)** 국립해사고등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에서 부담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국립해사고등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권한의 위탁)** 교육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제62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국립해사고등학교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탁한다.

**부칙** <제24490호,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립해사고등학교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라 설치된 국립해사고등학교는 이 영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교원의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교육공무원법」및「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임용된 국립해사고등학교의 교원은 이 영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립공업고등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② 국립 국악ㆍ전통예술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③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를 “ 특수학교 ”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 고등학교 ”를 “ 특수학교 ”로 한다.

제16조제6항 중 “ 제주대학교ㆍ한국해양대학교ㆍ부산해사고등학교 및 인천해사고등학교 ”를 “ 제주대학교 및 한국해양대학교 ”로, “ 국고(부산해사고등학교 및 인천해사고등학교는 국토해양부 소관 예산) ”를 “ 국고 ”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7조 중 “ 경기지도과, 해사고등학교 ”를 “ 경기지도과 ”로, “ 제16조제1항ㆍ제3항 및 제10항 ”을 “ 제16조제1항 및 제3항 ”으로 한다.

제18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19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0조제1항 중 “ 국고(해사고등학교는 국토해양부 소관 예산) ”를 “ 국고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별표 1 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31380호,2021. 1. 5.>(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 [별표]

**국립해사고등학교의 소재지**(제2조제2항 관련)

| 학교명 | 소재지 |
|---|---|
| 부산해사고등학교 | 부산광역시 |
| 인천해사고등학교 | 인천광역시 |

#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 2017. 6. 22.] [법률 제14609호, 2017. 3. 21., 타법개정]

국방부 (교육훈련정책과) 02 - 748 - 6245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안보정책ㆍ국방관리 등에 관한 학술의 교육ㆍ연구ㆍ분석 및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국방대학교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 6. 11.]

**제2조(설치)**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대학교를 둔다.
[전문개정 2014. 6. 11.]

**제3조(대학원 등의 설치)** ① 국방대학교에 안전보장대학원, 국방관리대학원 및 직무연수부를 둔다.
② 국방대학교의 하부조직으로 교수부(敎授部)와 그 밖에 필요한 부서를 둔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각 대학원, 직무연수부 및 교수부 등의 조직ㆍ임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6. 11.]

**제4조(과정 및 수업연한 등)** ① 국방대학교에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기본과정(이하 "기본과정"이라 한다)과 학위를 수여하는 학위과정(이하 "학위과정"이라 한다)을 두고,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과정을 둘 수 있다.
② 기본과정의 수업연한은 1년으로 하고, 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고등교육법」 제31조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특별과정의 수업연한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③ 기본과정 및 학위과정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6. 11.]

**제5조(입학자격)** 국방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군, 정부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선발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1. 기본과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2. 학위과정: 「고등교육법」 제33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3. 특별과정: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전문개정 2014. 6. 11.]

**제6조(교과)** ① 기본과정의 교과는 국가안전보장정책의 수립ㆍ집행에 필요한 것으로 한다.

② 학위과정의 교과는 국가안전보장 및 국방과학에 관한 학문적 연구에 필요한 것으로 하되,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특별과정의 교과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4. 6. 11.]

**제7조(학위 수여 등)** 학위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고등교육법」 제35조에 따라 학위를 수여하고 등록하되, 학위의 종류는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14. 6. 11.]

**제8조(총장 등의 임명)** ① 국방대학교에 총장 1명과 부총장 1명을 두고, 각 대학원에 대학원장 각 1명을 두며, 직무연수부에 직무연수부장 1명을 두고, 교수부에 교수부장 1명을 둔다.
② 국방대학교에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이하 "교수등"이라 한다)와 그 밖에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③ 총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부총장ㆍ대학원장 및 교수부장은 장성급 장교 또는 교수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부총장ㆍ대학원장 및 교수부장을 교수 중에서 임명하는 경우에는 총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개정 2017. 3. 21.>
④ 부총장ㆍ대학원장 및 교수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장성급 장교를 부총장ㆍ대학원장 또는 교수부장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 3. 21.>
⑤ 직무연수부장의 임명 및 임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6. 11.]

**제9조(교수등의 임용 등)** ① 학위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등은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이 경우 교수 및 부교수는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조교수는 총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이 각각 임명한다.
② 기본과정 및 특별과정의 교육을 전담하는 교수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영관급 장교 또는 군무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수 및 부교수의 임명권을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학위과정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등은 계약에 의하여 임용하되, 그 임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수: 8년 이내
2. 부교수: 6년 이내
3. 조교수: 4년 이내
⑤ 교수등을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임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특정직 국가공무원으로 하고, 그 보수ㆍ연수ㆍ신분보장ㆍ징계 및 소청(訴請)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각각 준용한다.<개정 2016. 2. 3.>

[전문개정 2014. 6. 11.]

**제10조(부설기관)** ① 국방대학교에 부설기관으로 국가안전보장문제 연구소 및 도서관을 둔다.
② 국가안전보장문제 연구소 및 도서관의 조직ㆍ임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6. 11.]

**제11조(수업료 등의 징수)** ① 총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국방대학교에 입학하는 사람에게 수업료 및 그 밖의 징수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업료 및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6. 11.]

**부칙** <제6017호,1999. 9. 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국방대학원설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군인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중 " 국방대학원 " 을 " 국방대학교 " 로 한다.

**제4조** (재학생 및 졸업생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국방대학원설치법에 의한 국방대학원(이하 " 국방대학원 " 이라 한다)에 재학중인 자는 이 법에 의한 국방대학교(이하 " 국방대학교 " 라 한다)에 재학하는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에 국방대학원 안보과정을 졸업한 자는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또는 국방관리대학원의 기본과정을 졸업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전에 국방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을 졸업한 자는 국방대학교 해당학위과정을 졸업한 것으로 본다.

**제5조** (교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국방대학원의 교직원은 국방대학교 정원의 범위안에서 국방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는 교직원에 대하여는 국방대학원에서의 직급 및 호봉을 인정하며 최초 소속하였던 교육기관에서의 임용일을 이 법에 의한 임용일로 본다.

**부칙** <제6400호,2001. 1. 29.>(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4^ 생략
4& 국방대학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7조 및 제9조제3항중 " 교육부장관 " 을 각각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 으로 한다.

4* 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7088호,2004. 1. 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52호,2008. 2. 29.>(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72> 까지 생략

<173> 국방대학교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7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7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866호,2011. 7. 21.>(고등교육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방대학교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이, 전임강사는 총장이"를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4호를 삭제한다.

⑧부터2&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1633호,2013. 3.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준용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학위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등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690호,2013. 3. 23.>(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40>까지 생략

<141> 국방대학교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7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4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745호,2014. 6. 1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36호,2016. 2. 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중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⑤부터 ⑧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4609호,2017. 3. 21.>(군인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본문 중 "총장은 장관급(將官級) 장교"를 "총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교수부장은 장관급 장교"를 "교수부장은 장성급 장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⑧부터1(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 2017. 6. 22.] [법률 제14609호, 2017. 3. 2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안보정책ㆍ국방관리 등에 관한 학술의 교육ㆍ연구ㆍ분석 및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국방대학교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 6. 11.]

**제2조(설치)**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대학교를 둔다.
[전문개정 2014. 6. 11.]

**제3조(대학원 등의 설치)** ① 국방대학교에 안전보장대학원, 국방관리대학원 및 직무연수부를 둔다.
② 국방대학교의 하부조직으로 교수부(敎授部)와 그 밖에 필요한 부서를 둔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각 대학원, 직무연수부 및 교수부 등의 조직ㆍ임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6. 11.]

**제4조(과정 및 수업연한 등)** ① 국방대학교에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기본과정(이하 "기본과정"이라 한다)과 학위를 수여하는 학위과정(이하 "학위과정"이라 한다)을 두고,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과정을 둘 수 있다.
② 기본과정의 수업연한은 1년으로 하고, 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고등교육법」 제31조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특별과정의 수업연한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③ 기본과정 및 학위과정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6. 11.]

**제5조(입학자격)** 국방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군, 정부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선발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1. 기본과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2. 학위과정: 「고등교육법」 제33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3. 특별과정: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전문개정 2014. 6. 11.]

**제6조(교과)** ① 기본과정의 교과는 국가안전보장정책의 수립ㆍ집행에 필요한 것으로 한다.
② 학위과정의 교과는 국가안전보장 및 국방과학에 관한 학문적 연구에 필요한 것으로 하되,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특별과정의 교과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4. 6. 11.]

**제7조(학위 수여 등)** 학위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고등교육법」 제35조에 따라 학위를 수여하고 등록하되, 학위의 종류는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14. 6. 11.]

**제8조(총장 등의 임명)** ① 국방대학교에 총장 1명과 부총장 1명을 두고, 각 대학원에 대학원장 각 1명을 두며, 직무연수부에 직무연수부장 1명을 두고, 교수부에 교수부장 1명을 둔다.
② 국방대학교에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이하 "교수등"이라 한다)와 그 밖에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③ 총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부총장ㆍ대학원장 및 교수부장은 장성급 장교 또는 교수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부총장ㆍ대학원장 및 교수부장을 교수 중에서 임명하는 경우에는 총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개정 2017. 3. 21.>
④ 부총장ㆍ대학원장 및 교수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장성급 장교를 부총장ㆍ대학원장 또는 교수부장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 3. 21.>
⑤ 직무연수부장의 임명 및 임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6. 11.]

**제9조(교수등의 임용 등)** ① 학위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등은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이 경우 교수 및 부교수는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조교수는 총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이 각각 임명한다.
② 기본과정 및 특별과정의 교육을 전담하는 교수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영관급 장교 또는 군무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수 및 부교수의 임명권을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학위과정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등은 계약에 의하여 임용하되, 그 임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수: 8년 이내
2. 부교수: 6년 이내
3. 조교수: 4년 이내
⑤ 교수등을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임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특정직 국가공무원으로 하고, 그 보수ㆍ연수ㆍ신분보장ㆍ징계 및 소청(訴請)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각각 준용한다.<개정 2016. 2. 3.>
[전문개정 2014. 6. 11.]

**제10조(부설기관)** ① 국방대학교에 부설기관으로 국가안전보장문제 연구소 및 도서관을 둔다.
② 국가안전보장문제 연구소 및 도서관의 조직ㆍ임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6. 11.]

**제11조(수업료 등의 징수)** ① 총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국방대학교에 입학하는 사람에게 수업료 및 그 밖의 징수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업료 및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6. 11.]

**부칙** <제6017호,1999. 9. 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국방대학원설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군인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중 " 국방대학원 " 을 " 국방대학교 " 로 한다.

**제4조** (재학생 및 졸업생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국방대학원설치법에 의한 국방대학원(이하 " 국방대학원 " 이라 한다)에 재학중인 자는 이 법에 의한 국방대학교(이하 " 국방대학교 " 라 한다)에 재학하는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에 국방대학원 안보과정을 졸업한 자는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또는 국방관리대학원의 기본과정을 졸업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전에 국방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을 졸업한 자는 국방대학교 해당학위과정을 졸업한 것으로 본다.

**제5조** (교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국방대학원의 교직원은 국방대학교 정원의 범위안에서 국방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는 교직원에 대하여는 국방대학원에서의 직급 및 호봉을 인정하며 최초 소속하였던 교육기관에서의 임용일을 이 법에 의한 임용일로 본다.

**부칙** <제6400호,2001. 1. 29.>(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4^ 생략
4& 국방대학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7조 및 제9조제3항중 " 교육부장관 " 을 각각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 으로 한다.

4* 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7088호,2004. 1. 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52호,2008. 2. 29.>(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72> 까지 생략

<173> 국방대학교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7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7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866호,2011. 7. 21.>(고등교육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방대학교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이, 전임강사는 총장이"를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4호를 삭제한다.

⑧부터2&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1633호,2013. 3.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준용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학위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등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690호,2013. 3. 23.>(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40>까지 생략

<141> 국방대학교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7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4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745호,2014. 6. 1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36호,2016. 2. 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중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⑤부터 ⑧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4609호,2017. 3. 21.>(군인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본문 중 "총장은 장관급(將官級) 장교"를 "총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교수부장은 장관급 장교"를 "교수부장은 장성급 장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⑧부터1(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시행 2024. 10. 8.] [대통령령 제34932호, 2024. 10. 8., 일부개정]

국방부 (교육훈련정책과) 02 - 748 - 6245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방대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19., 2015. 2. 3.>

**제2조(안전보장대학원)** ①「국방대학교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장대학원은 국가안전보장정책 및 군사전략에 관한 학술을 교수(敎授)한다. <개정 2009. 10. 19., 2015. 2. 3.>

②안전보장대학원에 교학처를 두되, 교학처장은 교수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국방대학교 총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개정 2022. 12. 6.>

**제3조(국방관리대학원)** ①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방관리대학원은 국방자원관리ㆍ정보자원관리 및 국방과학에 관한 학술을 교수한다.

②국방관리대학원에 교학처를 두되, 교학처장은 교수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22. 12. 6.>

**제4조** 삭제 <2014. 12. 9.>

**제5조(직무연수부)** ①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연수부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특별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학술을 교수한다.

② 직무연수부장은 3급 이상 군무원 또는 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되, 교수 중에서 임명하는 경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22. 12. 6.>

**제6조(교수부 등)** ①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대학교에 두는 하부조직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2. 3., 2022. 12. 6.>

1. 교수부
2. 기획조정실
3. 행정지원부
4. 대외협력실
5. 국제평화활동센터

② 제1항에 따른 국방대학교의 하부조직별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2. 3., 2022. 12. 6.>

1. 교수부: 국방대학교의 교육과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이하 "교수등"이라 한다)의 임용ㆍ운용 등 교수등의 인사에 관한 업무

2. 기획조정실: 국방대학교의 학교발전계획에 관한 업무 및 국방대학교의 조직과 예산의 편성、운영、집행 등에 관한 업무
3. 행정지원부: 국방대학교의 교수등 외의 사람에 대한 임용、운용 등의 인사에 관한 업무 및 군수물자의 조달、보급、수송 등 군수지원에 관한 업무
4. 대외협력실: 국내외 교류협력 및 국방대학교 홍보 활동에 관한 업무
5. 국제평화활동센터: 해외파병 관련자 교육 및 국제평화활동 분야의 군사 업무에 관한 정책연구 업무

③교수부、기획조정실、행정지원부、대외협력실 및 국제평화활동센터의 사무분장、조직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개정 2015. 2. 3., 2022. 12. 6.>

**제7조(학위과정의 수업연한 등)**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학위과정은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으로 하고, 그 수업연한은 석사학위과정은 2년 이상, 박사학위과정은 3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1. 9. 12., 2007. 10. 23.>

**제8조(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 법 제5조 본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교육기관 및 학술단체
2.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
3. 방송사、신문사 또는 통신사 등 언론기관
4. 경제、사회단체
5. 기업체

**제9조(입학자격)** ①안전보장대학원、국방관리대학원의 기본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6. 6. 12., 2022. 12. 6.>

1. 현역장교로서 각군대학을 졸업한 사람
2. 4급 이상의 공무원、군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3. 제8조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간부 중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삭제<2014. 12. 9.>

③ 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09. 10. 19.>

1.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군무원
2. 공무원
3. 제8조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④총장은 제1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자외에 외국군 장교 기타 국방대학교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원의 범위안에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입학시킬 수 있다.<개정 2015. 2. 3.>

**제10조(학생의 정원 및 선발)** ①국방대학교에 입학할 학생의 정원ㆍ선발 및 입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학위과정에 입학할 학생의 정원에 관하여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 29., 2008. 2. 29., 2013. 3. 23.>
②총장은 학위과정에 입학한 자의 명단을 입학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총장 등)** ①총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9. 7. 2., 2022. 12. 6.>
②국방대학교의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고,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안전보장대학원 및 국방관리대학원의 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당해 대학원 및 대학의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개정 2014. 12. 9., 2019. 7. 2., 2022. 12. 6.>
④교수부장은 교수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국방대학교의 교육 및 교수등의 인사에 관하여 총장을 보좌한다.<개정 2019. 7. 2.>

**제12조(교수등의 정원 등)**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위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 및 부교수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②국방대학교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 및 부교수를 제외한다)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3조(교수등의 자격)**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기본과정 및 특별과정의 교육을 전담하는 교수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 8. 9.>
1. 해당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국방분야의 정책부서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2.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해당 실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 및 국방관련 정책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풍부하고, 군 교육기관에서 2년 이상 교관 또는 교수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제13조의2(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 ①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은 학위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 및 부교수의 임명권을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한다.
②학위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 및 부교수는 총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제청한다.
[본조신설 2004. 9. 9.]

**제14조(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이하 "안보문제연구소"라 한다)에 소장을 두되, 소장은 총장이 겸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성급(將星級)장교 또는 교수중에서 총장의 제청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따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7. 9. 5.>

②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소장을 겸하는 경우에는 총장으로 재임하는 기간을 그 임기로 한다.

③안보문제연구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학술연구
2. 국방정책 및 군사전략에 관한 연구
3. 국방대학교의 각 교육분야별 학술이론의 연구
4.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학술회의의 개최
5. 국내ㆍ외 연구기관과의 교류 및 자료의 수집
6. 출판물의 간행
7. 교수 및 학생의 연구업무 지원ㆍ지도

④안보문제연구소에 연구기획실과 필요한 연구센터를 두되, 그 사무분장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5. 2. 3.>

**제15조(도서관)**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에 관장을 두되, 관장은 교수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2. 12. 6.>

②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도서관의 업무를 총괄하되,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19. 7. 2.>

③국방대학교의 원활한 교육지원을 위하여 도서관에 자료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도서관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6조** 삭제 <2014. 12. 9.>

**제17조(학칙)** ①총장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학칙을 정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학칙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 학위과정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1. 1. 29., 2008. 2. 29., 2013. 3. 23.>

③학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기ㆍ수업일수 및 휴학에 관한 사항
2. 입학 및 퇴학에 관한 사항
3. 수업연한과 재학연한에 관한 사항
4. 교과에 관한 사항
5. 다른 학교와의 학점교류에 관한 사항
6. 학사보고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7. 학업평가ㆍ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8. 기타 국방대학교의 교육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8조(위원회)** ①국방대학교에 교수등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수인사위원회를 두고, 수업ㆍ전공ㆍ교과ㆍ학위수여 및 기타 교육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

하여 학사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19조** 삭제 <2021. 7. 27.>

**제2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총장은 법 제7조에 따른 학위 수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8. 6.]

**부칙** <제16626호,1999. 12. 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국방대학원설치법시행령 및 국방참모대학설치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국방참모대학 졸업생 및 교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전에 국방참모대학을 졸업한 자는 이 영에 의한 합동참모대학을 졸업한 것으로 본다.

②이 영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국방참모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은 국방대학교의 정원의 범위안에서 국방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는 교직원에 대하여는 국방참모대학의 직급 및 호봉을 인정하고, 동대학에서의 임용일을 국방대학교에서의 임용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군인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가목중 “ 국방대학원장 ” 을 “ 국방대학교 총장 ” 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중 “ 국방대학원교수 ” 를 “ 국방대학교 교수 ” 로, “ 안보과정 ” 을 “ 기본과정 ” 으로 한다.

제1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방대학원의 교수ㆍ부교수는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는 바에 의하여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조교수는 국방대학교 총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며, 전임강사는 국방대학교 총장이 임명하고, 국방대학교의 기본과정 및 특별과정의 교육을 전담하는 자는 국방대학교설치법시행령 제1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

제17조제2호 본문중 “ 국방대학원 ” 을 “ 국방대학교 ” 로, “ 국방대학원설치법 제6조제5항 ” 을 “ 국방대학교설치법 제9조제4항 ” 으로 하고, 동호 단서중 “ 안보과정담당교수 ” 를 “ 기본과정 및 특별과정의 교육을 전담하는 교수 ” 로 한다.

②경찰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2호중 “ 국방대학원 ” 을 “ 국방대학교 ” 로 한다.

③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공무원별봉급표 구분표중 별표 12의 적용대상 공무원란중 “ 국방대학원 ” 을 “ 국방대학교 ” 로 한다.

④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의 지급대상란,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 국방대학원 ” 을 각각 “ 국방대학교 ” 로 한다.

⑤소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2호중 “ 국방대학원 ” 을 “ 국방대학교 ” 로 한다.

⑥외무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방대학교의 기본과정 또는 학위과정에의 입교

**부칙** <제17115호,2001. 1. 29.>(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72>생략

<73>국방대학교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제10조제1항 후단 및 제17조제2항 전단중 “ 교육부장관 ” 을 각각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 으로 한다.

<74>내지 <152>생략

**부칙** <제17355호,2001. 9. 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36호,2004. 9.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13호,2006. 6. 12.>(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52>생략

<53>국방대학교설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4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제9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5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제9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6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54>내지 <241>생략

**부칙** <제20337호,2007. 10. 23.>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75호,2008. 2. 29.>(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국방대학교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후단 중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을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전단 중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을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으로 한다.
⑥ 부터3) 까지 생략

**부칙** <제21780호,2009. 10. 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644호,2012. 2. 29.>(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1( 까지 생략
2) 국방대학교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 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 "를 " 부교수 및 조교수 "로 한다.
2! 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4413호,2013. 3. 23.>(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후단 및 제17조제2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⑩부터3@ 까지 생략

**부칙** <제25532호,2014. 8. 6.>(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824호,2014. 12. 9.>(합동군사대학교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9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1조제3항 중 "국방관리대학원의 원장과 합동참모대학의 학장은"을 "국방관리대학원의 원장은"으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26084호,2015. 2. 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266호,2017. 9. 5.>(군인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2@ 까지 생략

2#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단서 중 “ 장관급 ” 을 “ 장성급(將星級) ” 으로 한다.

2$ 부터 <90>까지 생략

**부칙** <제29950호,2019. 7. 2.>(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908호,2021. 7. 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868호,2022. 8. 9.>(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019호,2022. 12. 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932호,2024. 10. 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별표] <개정 2024. 10. 8.>

## 국방대학교의 학위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 및 부교수의 정원표

(제12조제1항관련)

| | |
|---|---|
| 총 계 | 61 |
| 군인인 교수 및 부교수 | 28 |
| 군무원인 교수 및 부교수 | 7 |
| 군인·군무원 이외의 특정직 국가공무원인 교수 및 부교수 | 26 |

#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시행 2024. 10. 8.] [대통령령 제34932호, 2024. 10.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방대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19., 2015. 2. 3.>

**제2조(안전보장대학원)** ①「국방대학교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장대학원은 국가안전보장정책 및 군사전략에 관한 학술을 교수(敎授)한다. <개정 2009. 10. 19., 2015. 2. 3.>

②안전보장대학원에 교학처를 두되, 교학처장은 교수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국방대학교 총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개정 2022. 12. 6.>

**제3조(국방관리대학원)** ①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방관리대학원은 국방자원관리ㆍ정보자원관리 및 국방과학에 관한 학술을 교수한다.

②국방관리대학원에 교학처를 두되, 교학처장은 교수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22. 12. 6.>

**제4조** 삭제 <2014. 12. 9.>

**제5조(직무연수부)** ①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연수부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특별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학술을 교수한다.

② 직무연수부장은 3급 이상 군무원 또는 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되, 교수 중에서 임명하는 경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22. 12. 6.>

**제6조(교수부 등)** ①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대학교에 두는 하부조직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2. 3., 2022. 12. 6.>

1. 교수부
2. 기획조정실
3. 행정지원부
4. 대외협력실
5. 국제평화활동센터

② 제1항에 따른 국방대학교의 하부조직별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2. 3., 2022. 12. 6.>

1. 교수부: 국방대학교의 교육과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이하 "교수등"이라 한다)의 임용ㆍ운용 등 교수등의 인사에 관한 업무
2. 기획조정실: 국방대학교의 학교발전계획에 관한 업무 및 국방대학교의 조직과 예산의 편성ㆍ운영ㆍ집행 등에 관한 업무

3. 행정지원부: 국방대학교의 교수등 외의 사람에 대한 임용ㆍ운용 등의 인사에 관한 업무 및 군수물자의 조달ㆍ보급ㆍ수송 등 군수지원에 관한 업무
4. 대외협력실: 국내외 교류협력 및 국방대학교 홍보 활동에 관한 업무
5. 국제평화활동센터: 해외파병 관련자 교육 및 국제평화활동 분야의 군사 업무에 관한 정책연구 업무

③교수부ㆍ기획조정실ㆍ행정지원부ㆍ대외협력실 및 국제평화활동센터의 사무분장ㆍ조직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개정 2015. 2. 3., 2022. 12. 6.>

**제7조(학위과정의 수업연한 등)**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학위과정은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으로 하고, 그 수업연한은 석사학위과정은 2년 이상, 박사학위과정은 3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1. 9. 12., 2007. 10. 23.>

**제8조(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 법 제5조 본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교육기관 및 학술단체
2.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
3. 방송사ㆍ신문사 또는 통신사 등 언론기관
4. 경제ㆍ사회단체
5. 기업체

**제9조(입학자격)** ①안전보장대학원ㆍ국방관리대학원의 기본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6. 6. 12., 2022. 12. 6.>

1. 현역장교로서 각군대학을 졸업한 사람
2. 4급 이상의 공무원ㆍ군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3. 제8조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간부 중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삭제<2014. 12. 9.>

③ 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09. 10. 19.>

1.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군무원
2. 공무원
3. 제8조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④총장은 제1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자외에 외국군 장교 기타 국방대학교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원의 범위안에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입학시킬 수 있다.<개정 2015. 2. 3.>

**제10조(학생의 정원 및 선발)** ①국방대학교에 입학할 학생의 정원ㆍ선발 및 입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학위과정에 입학할 학생의 정원에 관

하여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 29., 2008. 2. 29., 2013. 3. 23.>
②총장은 학위과정에 입학한 자의 명단을 입학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총장 등)** ①총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9. 7. 2., 2022. 12. 6.>
②국방대학교의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고,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안전보장대학원 및 국방관리대학원의 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당해 대학원 및 대학의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개정 2014. 12. 9., 2019. 7. 2., 2022. 12. 6.>
④교수부장은 교수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국방대학교의 교육 및 교수등의 인사에 관하여 총장을 보좌한다.<개정 2019. 7. 2.>

**제12조(교수등의 정원 등)**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위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 및 부교수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②국방대학교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 및 부교수를 제외한다)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3조(교수등의 자격)**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기본과정 및 특별과정의 교육을 전담하는 교수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 8. 9.>
1. 해당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국방분야의 정책부서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2.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해당 실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 및 국방관련 정책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풍부하고, 군 교육기관에서 2년 이상 교관 또는 교수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제13조의2(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 ①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은 학위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 및 부교수의 임명권을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한다.
②학위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 및 부교수는 총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제청한다.
[본조신설 2004. 9. 9.]

**제14조(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이하 "안보문제연구소"라 한다)에 소장을 두되, 소장은 총장이 겸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성급(將星級)장교 또는 교수중에서 총장의 제청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따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7. 9. 5.>
②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소장을 겸하는 경우에는 총장으로 재임하는 기간을 그 임기로 한다.

③안보문제연구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학술연구
2. 국방정책 및 군사전략에 관한 연구
3. 국방대학교의 각 교육분야별 학술이론의 연구
4.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학술회의의 개최
5. 국내ㆍ외 연구기관과의 교류 및 자료의 수집
6. 출판물의 간행
7. 교수 및 학생의 연구업무 지원ㆍ지도
④안보문제연구소에 연구기획실과 필요한 연구센터를 두되, 그 사무분장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5. 2. 3.>

**제15조(도서관)**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에 관장을 두되, 관장은 교수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2. 12. 6.>
②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도서관의 업무를 총괄하되,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19. 7. 2.>
③국방대학교의 원활한 교육지원을 위하여 도서관에 자료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도서관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6조** 삭제 <2014. 12. 9.>

**제17조(학칙)** ①총장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학칙을 정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학칙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 학위과정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1. 1. 29., 2008. 2. 29., 2013. 3. 23.>
③학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기ㆍ수업일수 및 휴학에 관한 사항
2. 입학 및 퇴학에 관한 사항
3. 수업연한과 재학연한에 관한 사항
4. 교과에 관한 사항
5. 다른 학교와의 학점교류에 관한 사항
6. 학사보고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7. 학업평가ㆍ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8. 기타 국방대학교의 교육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8조(위원회)** ①국방대학교에 교수등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수인사위원회를 두고, 수업ㆍ전공ㆍ교과ㆍ학위수여 및 기타 교육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사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19조** 삭제 <2021. 7. 27.>

**제2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총장은 법 제7조에 따른 학위 수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8. 6.]

**부칙** <제16626호,1999. 12. 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국방대학원설치법시행령 및 국방참모대학설치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국방참모대학 졸업생 및 교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전에 국방참모대학을 졸업한 자는 이 영에 의한 합동참모대학을 졸업한 것으로 본다.
②이 영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국방참모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은 국방대학교의 정원의 범위안에서 국방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는 교직원에 대하여는 국방참모대학의 직급 및 호봉을 인정하고, 동대학에서의 임용일을 국방대학교에서의 임용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군인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가목중 “ 국방대학원장 ” 을 “ 국방대학교 총장 ” 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중 “ 국방대학원교수 ” 를 “ 국방대학교 교수 ” 로, “ 안보과정 ” 을 “ 기본과정 ” 으로 한다.
제1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방대학원의 교수ㆍ부교수는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는 바에 의하여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조교수는 국방대학교 총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며, 전임강사는 국방대학교 총장이 임명하고, 국방대학교의 기본과정 및 특별과정의 교육을 전담하는 자는 국방대학교설치법시행령 제1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
제17조제2호 본문중 “ 국방대학원 ” 을 “ 국방대학교 ” 로, “ 국방대학원설치법 제6조제5항 ” 을 “ 국방대학교설치법 제9조제4항 ” 으로 하고, 동호 단서중 “ 안보과정담당교수 ” 를 “ 기본과정 및 특별과정의 교육을 전담하는 교수 ” 로 한다.
②경찰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2호중 “ 국방대학원 ” 을 “ 국방대학교 ” 로 한다.
③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공무원별봉급표 구분표중 별표 12의 적용대상 공무원란중 “ 국방대학원 ”을 “ 국방대학교 ”로 한다.

④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의 지급대상란,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 국방대학원 ”을 각각 “ 국방대학교 ”로 한다.

⑤소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2호중 “ 국방대학원 ”을 “ 국방대학교 ”로 한다.

⑥외무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방대학교의 기본과정 또는 학위과정에의 입교

**부칙** <제17115호,2001. 1. 29.>(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72>생략

<73>국방대학교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제10조제1항 후단 및 제17조제2항 전단중 “ 교육부장관 ”을 각각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으로 한다.

<74>내지 <152>생략

**부칙** <제17355호,2001. 9. 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36호,2004. 9.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13호,2006. 6. 12.>(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52>생략

<53>국방대학교설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4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제9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5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제9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6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54>내지 <241>생략

**부칙** <제20337호,2007. 10. 23.>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75호,2008. 2. 29.>(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국방대학교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후단 중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을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전단 중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을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으로 한다.
⑥ 부터3) 까지 생략

**부칙** <제21780호,2009. 10. 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644호,2012. 2. 29.>(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1( 까지 생략
2) 국방대학교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 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 "를 " 부교수 및 조교수 "로 한다.
2! 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4413호,2013. 3. 23.>(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후단 및 제17조제2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⑩부터3@ 까지 생략

**부칙** <제25532호,2014. 8. 6.>(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824호,2014. 12. 9.>(합동군사대학교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9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1조제3항 중 "국방관리대학원의 원장과 합동참모대학의 학장은"을 "국방관리대학원의 원장은"으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26084호,2015. 2. 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266호,2017. 9. 5.>(군인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2@ 까지 생략

2#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단서 중 “ 장관급 ” 을 “ 장성급(將星級) ” 으로 한다.

2$ 부터 <90>까지 생략

**부칙** <제29950호,2019. 7. 2.>(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908호,2021. 7. 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868호,2022. 8. 9.>(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019호,2022. 12. 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932호,2024. 10. 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별표] <개정 2024. 10. 8.>

## 국방대학교의 학위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 및 부교수의 정원표

(제12조제1항관련)

| | |
|---|---|
| 총 계 | 61 |
| 군인인 교수 및 부교수 | 28 |
| 군무원인 교수 및 부교수 | 7 |
| 군인·군무원 이외의 특정직 국가공무원인 교수 및 부교수 | 26 |

# 국방대학교 학생 선발 및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칙

[시행 2018. 1. 2.] [국방부령 제944호, 2018. 1. 2., 일부개정]

국방부 (교육훈련정책과) 02 - 748 - 624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방대학교 학생의 입학정원ㆍ선발ㆍ입학절차 및 수업료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학자격 등)** ① 삭제 <2009. 10. 19.>

②「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방대학교의 기본과정 또는 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추천권자의 입학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개정 2008. 3. 4., 2009. 10. 19., 2013. 3. 23., 2014. 11. 19., 2015. 3. 5., 2017. 8. 1., 2018. 1. 2.>

1. 현역군인 : 소속 군참모총장
2. 공무원
   가.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인사혁신처장. 다만,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속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을 말한다.
   나. 군무원 : 소속 군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직할부대ㆍ기관의 장
3. 영 제8조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업무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만, 국방대학교의 학위과정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을 말한다.

③영 제9조제1항제3호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부장급 이상의 간부를 말한다.<개정 2009. 10. 19.>

④ 삭제<2009. 10. 19.>

**제3조(입학정원 등)**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학생의 입학정원(入學定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해당 연도의 교육소요에 따라 제2호에 따른 학위과정의 입학정원을 감축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10.>

1. 기본과정: 260명
2. 학위과정: 400명

②국방대학교의 각 과정별 입학정원의 구성비율은 별표와 같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구성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4. 12. 10.>

**제4조(입학추천)** ①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권자(이하 "추천권자"라 한다)는 각 과정별 교육예정인원을 매년 6월 30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기본과정의 입학추천자 명단은 매년 10월 31일까지, 학위과정의 입학추천자 명단은 매년 9월 30일까지 국방부장관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추천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대학교의 입학추천을 하는 경우에는 상위계급 또는 직급에의 진급 또는 승진이 가능한 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입학추천자 명단의 제출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8. 1. 2.>

**제5조(학생선발)** ①기본과정의 학생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추천을 받은 자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선발한다.

②학위과정의 학생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추천을 받은 자로서 입학시험에 합격한 자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선발한다.

③제2항에 따른 입학시험의 방법과 절차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8. 1. 2.>

④국방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선발ㆍ입학시험 등에 관한 업무를 국방대학교 총장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입학허가 등)** ①국방대학교에의 입학은 국방부장관이 허가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을 허가한 때에는 현역군인에 대하여는 매년 11월 30일까지 입학을 명하고, 현역군인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입학허가자의 명단을 추천권자에게 통보한다.

③제2항에 따른 입학허가자(제2조제2항제2호가목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 단서에 해당하여 입학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의 명단을 통보받은 추천권자는 통보받은 입학허가자의 명단을 해당자의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통보한다.<개정 2018. 1. 2.>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입학이 허가된 자에 대하여 입학을 명하고, 그 사실을 추천권자에게 통보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추천권자는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한다.

**제7조(수업료 등)** 「국방대학교 설치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료 기타 징수금은 「국립학교 설치령」에 의하여 설치된 대학에 준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3. 5.>

**부칙** <제507호,2000. 1. 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국방대학원학생선발및입학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군사학교각종증명수수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방대학교설치법에 의한 국방대학교

**부칙** <제646호,2008. 3. 4.>(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방대학교학생선발및수업료징수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가목 중 " 행정자치부장관 "을 " 행정안전부장관 "으로 한다.

② 부터 ⑪ 까지 생략

**부칙** <제690호,2009. 10.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3호,2013. 3. 23.>(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방대학교 학생 선발 및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가목 중 " 행정안전부장관 "을 " 안전행정부장관 "으로 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835호,2014. 11.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2호,2014. 12. 10.>

이 규칙은 2014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5호,2015. 3. 5.>(의무ㆍ수의 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방대학교 학생 선발 및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국방대학교설치법 시행령」 "을 "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으로 한다.

제7조 중 “국방대학교설치법”을 “「국방대학교 설치법」”으로, “국립학교설치령”을 “「국립학교 설치령」”으로 한다.

**부칙** <제891호,2016. 4. 11.>(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1호,2017. 8. 1.>(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을 위한 국방대학교 학생 선발 및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칙 등 5개 부령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4호,2018. 1.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학생선발, 입학절차, 입학시험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개정 2014.12.10.>

**국방대학교의 각 과정별 입학정원의 구성비율**(제3조제2항 관련)

| 구 분 | 기본과정<br>(260명) | 학위과정<br>(400명) |
|---|---|---|
| 육 군 | 20~30% | 50~65% |
| 해 군 | 5~20% | 10~15% |
| 공 군 | 5~20% | 10~15% |
| 일 반 | 30~60% | 15~20% |
| 계 | 100% | 100% |

■ 국방대학교 학생 선발 및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8. 1. 2.>

# 0000년도 국방대학교 00과정 입학추천자 명단

| ① 과정명 (지역/전공) | ② 현소속 | ③ 계급 | ④ 군번 (순번) | ⑤ 직책 | ⑥ 성명 | ⑦ 생년월일 | ⑧ 병과 (직능) | ⑨ 진급일자 | ⑩임관일 (임용일) | ⑪ 보직일자 | ⑫ 최종 교육 | | ⑬ 주요경력 | | ⑭ 비밀취급인가등급 (현역만) | ⑮ 연락처 | ⑯ 메일주소 | (현 공/정 |
|---|---|---|---|---|---|---|---|---|---|---|---|---|---|---|---|---|---|---|
| | | | | | | | | | | | 학교 | 전공 | 소속·직책 | 근무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본과정 작성요령

○ 일반인: ①, ⑥, ⑦, ⑫, ⑯, ⑰, ⑱ 필수 기재합니다.

364mm×257mm [백상지(80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18. 1. 2.>

# 국방대학교 학생 선발 및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칙

[시행 2018. 1. 2.] [국방부령 제944호, 2018. 1.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방대학교 학생의 입학정원ㆍ선발ㆍ입학절차 및 수업료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학자격 등)** ① 삭제 <2009. 10. 19.>

②「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방대학교의 기본과정 또는 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추천권자의 입학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개정 2008. 3. 4., 2009. 10. 19., 2013. 3. 23., 2014. 11. 19., 2015. 3. 5., 2017. 8. 1., 2018. 1. 2.>

1. 현역군인 : 소속 군참모총장
2. 공무원
   가.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인사혁신처장. 다만,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속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을 말한다.
   나. 군무원 : 소속 군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직할부대ㆍ기관의 장
3. 영 제8조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업무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만, 국방대학교의 학위과정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을 말한다.

③영 제9조제1항제3호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부장급 이상의 간부를 말한다.<개정 2009. 10. 19.>

④ 삭제<2009. 10. 19.>

**제3조(입학정원 등)**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학생의 입학정원(入學定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해당 연도의 교육소요에 따라 제2호에 따른 학위과정의 입학정원을 감축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10.>

1. 기본과정: 260명
2. 학위과정: 400명

②국방대학교의 각 과정별 입학정원의 구성비율은 별표와 같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구성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4. 12. 10.>

**제4조(입학추천)** ①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권자(이하 "추천권자"라 한다)는 각 과정별 교육예정인원을 매년 6월 30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기본과정의 입학추천자 명단은 매년 10월 31일까지, 학위과정의 입학추천자 명단은 매년 9월 30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추천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대학교의 입학추천을 하는 경우에는 상위계급 또는 직급에의 진급 또는 승진이 가능한 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입학추천자 명단의 제출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8. 1. 2.>

**제5조(학생선발)** ①기본과정의 학생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추천을 받은 자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선발한다.

②학위과정의 학생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추천을 받은 자로서 입학시험에 합격한 자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선발한다.

③제2항에 따른 입학시험의 방법과 절차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8. 1. 2.>

④국방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선발ㆍ입학시험 등에 관한 업무를 국방대학교 총장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입학허가 등)** ①국방대학교에의 입학은 국방부장관이 허가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을 허가한 때에는 현역군인에 대하여는 매년 11월 30일까지 입학을 명하고, 현역군인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입학허가자의 명단을 추천권자에게 통보한다.

③제2항에 따른 입학허가자(제2조제2항제2호가목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 단서에 해당하여 입학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의 명단을 통보받은 추천권자는 통보받은 입학허가자의 명단을 해당자의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통보한다.<개정 2018. 1. 2.>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입학이 허가된 자에 대하여 입학을 명하고, 그 사실을 추천권자에게 통보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추천권자는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한다.

**제7조(수업료 등)** 「국방대학교 설치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료 기타 징수금은 「국립학교 설치령」에 의하여 설치된 대학에 준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3. 5.>

**부칙** <제507호,2000. 1. 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국방대학원학생선발및입학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군사학교각종증명수수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방대학교설치법에 의한 국방대학교

**부칙** <제646호,2008. 3. 4.>(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방대학교학생선발및수업료징수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가목 중 " 행정자치부장관 "을 " 행정안전부장관 "으로 한다.

② 부터 ⑪ 까지 생략

**부칙** <제690호,2009. 10.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3호,2013. 3. 23.>(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방대학교 학생 선발 및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가목 중 " 행정안전부장관 "을 " 안전행정부장관 "으로 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835호,2014. 11.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2호,2014. 12. 10.>

이 규칙은 2014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5호,2015. 3. 5.>(의무ㆍ수의 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방대학교 학생 선발 및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국방대학교설치법 시행령」 "을 "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으로 한다.

제7조 중 “국방대학교설치법”을 “「국방대학교 설치법」”으로, “국립학교설치령”을 “「국립학교 설치령」”으로 한다.

**부칙** <제891호,2016. 4. 11.>(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1호,2017. 8. 1.>(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을 위한 국방대학교 학생 선발 및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칙 등 5개 부령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4호,2018. 1.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학생선발, 입학절차, 입학시험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개정 2014.12.10.>

**국방대학교의 각 과정별 입학정원의 구성비율**(제3조제2항 관련)

| 구 분 | 기본과정<br>(260명) | 학위과정<br>(400명) |
|---|---|---|
| 육 군 | 20~30% | 50~65% |
| 해 군 | 5~20% | 10~15% |
| 공 군 | 5~20% | 10~15% |
| 일 반 | 30~60% | 15~20% |
| 계 | 100% | 100% |

■ 국방대학교 학생 선발 및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8. 1. 2.>

# 0000년도 국방대학교 00과정 입학추천자 명단

| ① 과정명 (지역/전공) | ② 현소속 | ③ 계급 | ④ 군번 (순번) | ⑤ 직책 | ⑥ 성명 | ⑦ 생년월일 | ⑧ 병과 (직능) | ⑨ 진급일자 | ⑩임관일 (임용일) | ⑪ 보직일자 | ⑫ 최종 교육 | | ⑬ 주요경력 | | ⑭ 비밀취급인가등급 (현역만) | ⑮ 연락처 | ⑯ 메일주소 | (현 공/정 |
|---|---|---|---|---|---|---|---|---|---|---|---|---|---|---|---|---|---|---|
| | | | | | | | | | | | 학교 | 전공 | 소속·직책 | 근무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본과정 작성요령

○ 일반인: ①, ⑥, ⑦, ⑫, ⑯, ⑰, ⑱ 필수 기재합니다.

364mm×257mm [백상지(80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18. 1. 2.>

# 군사학교 각종 증명수수료 규칙

[시행 2011. 6. 1.] [국방부령 제739호, 2011. 6. 1., 일부개정]

국방부 (교육훈련정책과) 02 - 748 - 624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방부소관 군사학교(이하 " 학교 " 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 증명별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학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0. 1. 10., 2011. 6. 1.>

1. 「국방대학교설치법」에 따른 국방대학교
2. 「사관학교설치법」에 따른 육ㆍ해ㆍ공군사관학교
3.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국군간호사관학교
4.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육군3사관학교
5.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에 따른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제3조(각종증명과 수수료의 금액)** 수수료를 납부할 각종 증명과 증명별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와 같다.

**제4조(수수료의 납부방법)** 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3조의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 12. 10., 2011. 6. 1.>

**제5조(수수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6. 1.>

1. 공무원이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면제규정이 있는 경우
3.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나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

**제6조(시행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외의 수수료의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이를 정한다.

**부칙** <제382호,1986. 12. 31.>

이 규칙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7호,2000. 1. 10.>(국방대학교학생선발및수업료징수에관한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군사학교각종증명수수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방대학교설치법에 의한 국방대학교

**부칙** <제566호,2004. 12. 10.>(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국방부및병무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등중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9호,2011. 6.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각종 증명별 수수료의 금액표

| 증 명 의 종 류 | 수수료의금액 | 비 고 |
|---|---|---|
| 1. 입학증명<br>2. 합격증명<br>3. 재학증명<br>4. 제적증명<br>5. 수료(예정)증명<br>6. 졸업(예정)증명<br>7. 성적증명<br>8. 학위수여<br>9. 학적부(생활기록부)증명<br>10. 재직증명<br>11. 교수경력증명 | 1통당 국문증명의 경우에는 100원, 외국문증명의 경우에는 150원 | 이 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각종 증명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수수료의 납부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

#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시행 2026. 5. 26.] [대통령령 제36345호, 2026. 5. 26., 타법개정]

국방부 (복지정책과) 02 - 748 - 6625
교육부 (학교정책과) 044 - 203 - 6688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및 입학전형의 지원에 관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17.>

**제2조(정의)** 이 영에서 "군인자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군인복지기본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군인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
2. 「군인사법」 제54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전사자ㆍ순직자의 전사 또는 순직 당시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전사 또는 순직 후 출생한 전사자ㆍ순직자의 자녀를 포함한다)

[전문개정 2024. 12. 17.]

**제3조(적용 대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의 고등학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이하 "군인자녀학교"라 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2026. 5. 26.>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고등학교
   가. 설립 당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고등학교가 아닐 것
   나. 국방부장관이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군인 자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설립되는 학교로 인정하는 고등학교일 것
2. 교육감이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5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전문개정 2024. 12. 17.]

**제4조(군인자녀학교의 학생 모집에 관한 특례)** ① 군인자녀학교의 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입학정원의 일부를 군인자녀로 모집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7.>

② 군인자녀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범위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입학전형기본계획의 입학전형 시기와 다르게 그 학교의 입학전형 시기를 정하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입학전형의 실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할 수 있다.<신설 2015. 9. 25.>

③ 군인자녀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의2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학생으로 모집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5. 9. 25.>

1. 해당 군인자녀학교가 있는 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중학교에 재학 한 군인자녀
2. 해당 군인자녀학교가 있는 지역 외의 지역에 거주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인자녀

**제5조(군인자녀학교 지원에 관한 특례)** 제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인자녀가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려는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모집하는 군인자녀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5.>

**제6조(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정기간 연장 등의 협의)** 교육감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5제3항에 따라 이 영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군인자녀학교의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정을 연장하거나 연장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 및 국방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6. 5. 26.>

[본조신설 2024. 12. 17.]

**부칙** <제24233호,2012. 12. 20.>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423호,2013. 3. 2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3@ 까지 생략

3#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설립하는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을 “ 교육부장관 ”으로 한다.

3$ 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 <제26554호,2015. 9. 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069호,2024. 12. 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345호,2026. 5. 26.>(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4”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5”로 한다.

제6조 중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4제3항”을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5제3항”으로 한다.

③ 생략

#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시행 2026. 5. 26.] [대통령령 제36345호, 2026. 5. 26.,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및 입학전형의 지원에 관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17.>

**제2조(정의)** 이 영에서 "군인자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군인복지기본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군인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
2. 「군인사법」 제54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전사자ㆍ순직자의 전사 또는 순직 당시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전사 또는 순직 후 출생한 전사자ㆍ순직자의 자녀를 포함한다)

[전문개정 2024. 12. 17.]

**제3조(적용 대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의 고등학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이하 "군인자녀학교"라 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2026. 5. 26.>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고등학교
   가. 설립 당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고등학교가 아닐 것
   나. 국방부장관이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군인 자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설립되는 학교로 인정하는 고등학교일 것
2. 교육감이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5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전문개정 2024. 12. 17.]

**제4조(군인자녀학교의 학생 모집에 관한 특례)** ① 군인자녀학교의 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입학정원의 일부를 군인자녀로 모집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7.>

② 군인자녀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범위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입학전형기본계획의 입학전형 시기와 다르게 그 학교의 입학전형 시기를 정하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입학전형의 실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할 수 있다.<신설 2015. 9. 25.>

③ 군인자녀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의2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학생으로 모집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5. 9. 25.>

1. 해당 군인자녀학교가 있는 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중학교에 재학 한 군인자녀

2. 해당 군인자녀학교가 있는 지역 외의 지역에 거주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인자녀

**제5조(군인자녀학교 지원에 관한 특례)** 제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인자녀가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려는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모집하는 군인자녀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5.>

**제6조(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정기간 연장 등의 협의)** 교육감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5제3항에 따라 이 영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군인자녀학교의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정을 연장하거나 연장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 및 국방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6. 5. 26.>

[본조신설 2024. 12. 17.]

**부칙** <제24233호,2012. 12. 20.>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423호,2013. 3. 2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3@ 까지 생략

3#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설립하는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을 “ 교육부장관 ”으로 한다.

3$ 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 <제26554호,2015. 9. 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069호,2024. 12. 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345호,2026. 5. 26.>(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4”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5”로 한다.

제6조 중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4제3항”을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5제3항”으로 한다.

③ 생략

#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타법개정]

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 044 - 203 - 6531

**제1조(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은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11. 5.]

**제3조(시설ㆍ설비기준)** ①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시설ㆍ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ㆍ방음ㆍ환기ㆍ채광ㆍ소방 및 배수 등의 면에서 교수ㆍ학습에 적합한 교사[교사(교실, 도서실 등 교수ㆍ학습활동에 직ㆍ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말한다)]
2. 배수가 잘 되는 옥외체육장
3. 학생의 통학에 지장이 없는 곳에 위치한 교지[교지(교사용 대지와 옥외체육장용 대지를 합한 용지를 말한다)]
4. 학습에 필요한 도서ㆍ기계ㆍ기구 등의 교구
5. 수질검사 결과 위생상 무해하다고 판명된 급수시설 및 온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

② 제1항의 교사 및 옥외체육장의 기준면적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③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대안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교육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 제2항 및 별표 2를 적용하지 않거나 별표 2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17. 1. 10., 2022. 7. 5.>

1. 새로 설립되는 대안학교가 「초ㆍ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장 또는 공공체육시설 등과 인접하여 해당 대안학교의 학생 등이 쉽게 체육장 또는 공공체육시설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2. 도심지 및 도서ㆍ벽지 등 지역의 여건상 별표 2에 따른 옥외체육장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전문개정 2009. 11. 5.]

**제3조의2(사립 대안학교 교사ㆍ교지 등의 소유주체 등)** ① 사립 대안학교의 교사 및 교지는 해당 대안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자의 소유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안학교의 정원을 기준으로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재한외국인의

자녀 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을 교육대상으로 하는 대안학교를 설립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건물ㆍ시설 또는 부지를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상 임대하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교사와 교지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개정 2017. 1. 10., 2022. 7. 5.>

1.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교
2. 교육감이 안정적 사용이 가능하고 교육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건물이나 시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안학교를 설립하려는 자가 제3조의 기준에 적합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산을 분할 납부하는 조건으로 매입하는 경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원녹지 또는 국ㆍ공립 체육시설 등의 체육장 대용시설을 임대 등을 통하여 확보하는 경우로서 교육감이 안정적 사용이 가능하고 교육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제3조제1항제2호의 옥외체육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9. 11. 5.]

**제4조(설립인가)** ①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사립 대안학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교지의 지적도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설립자가 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2009. 11. 5., 2010. 5. 4., 2010. 11. 2., 2017. 1. 10.>

1. 목적
2. 명칭
3. 위치
4. 학칙
5. 삭제<2017. 1. 10.>
6. 경비와 유지방법
7. 설비
8. 삭제<2008. 12. 31.>
9. 교사(체육장을 포함한다)의 배치도ㆍ평면도
10. 개교연월일
11. 병설학교 등을 둘 때에는 그 계획서
12.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13. 설립자가 사인인 경우에는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14.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15. 교직원 배치계획서

② 교육감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대안학교를 설립인가하는 경우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고려하여 그 대안학교를 졸업한 사람에게 인정할 수 있는 학력을 설립인가서에 표시하여야 한다.<신설 2009. 11. 5., 2017. 1. 10.>

③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사립 대안학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가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갖추기 전에 대안학교 설립계획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은 설립인가의 가능성 등 대안학교 설립을 위한 협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신설 2009. 11. 5.>
④ 제3항에 따른 대안학교 설립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등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09. 11. 5.>

**제5조(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안교육관련 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 시ㆍ도 교육청의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교육감이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9. 11. 5.>
1. 대안학교의 설립인가ㆍ변경인가 및 인가취소에 관한 사항
2. 대안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및 제4조제2항에 따른 인정학력에 관한 사항
3. 대안학교의 평가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이 영에서 심의하도록 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⑥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5조의2(산학겸임교사 등의 배치)** 대안학교의 장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배치기준에 따라 필요한 교원 정원의 3분의 1의 범위에서 교원을 대체하여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7. 5.]

**제6조(학력인정)** 국ㆍ공립 대안학교를 졸업한 자와 제4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대안학교를 졸업한 자는 국ㆍ공립 대안학교의 설립 시 계획된 학교 급별 또는 사립 대안학교의 설립인가 시 표시된 인정학력에 따라 법 제2조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 11. 5.]

**제7조(학기운영 및 학년제)** ①대안학교의 학기 운영은 학교교육과정을 고려하여 학칙으로 정한다.
②대안학교의 장은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학년 구분 없이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수업연한 및 수업일수)** ①대안학교의 수업연한은 법 제39조, 제42조 및 제46조 본문에 따른다. <개정 2009. 11. 5.>

②대안학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8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대안학교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가 시작되기 30일 전까지 법 제6조에 따른 지도ㆍ감독기관에 보고해야 한다.<개정 2020. 5. 26.>

**제9조(교육과정)** 대안학교의 교육과정은 대안학교의 장이 학칙으로 정한다. 다만,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교과 중에서 국어 및 사회(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의 사회 교과는 국사 또는 역사를 포함한다)를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상 수업시간 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11. 5.]

**제10조(교과용 도서)** ①대안학교의 장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국정도서, 검정도서, 인정도서 중에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25.>

②대안학교의 장은 자체 개발한 도서를 교과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9. 11. 5., 2014. 12. 9.>

**제10조의2** 삭제 <2022. 7. 5.>

**제11조(학교생활기록 및 건강검사기록 유지)** 대안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 사항이 기록된 것으로서 학교의 학업 성취도 등 학생 생활에 관한 기록 및 「학교보건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건강검사기록 중 학생의 진학이나 전학에 필요한 내용을 적절한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1. 인적사항
2. 학적사항
3. 출결상황
4. 자격증 및 인증취득상황
5. 교과학습발달상황
6.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제12조(국ㆍ공립 대안학교의 위탁운영)** ① 국ㆍ공립 대안학교의 설립자는 위탁운영계약을 통하여 「사립학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학교법인과 그 밖에 안정적으로 대안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게 대안학교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국ㆍ공립 대안학교의 설립자가 대안학교를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때에는 위탁업무의 범위, 수탁법인의 선정절차 등이 포함된 위탁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위탁운영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대안학교 운영의 안정적이고 계속적인 이행이 가능할 것
2. 대안학교 운영의 책임체제가 명확할 것
3. 학생의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할 것

④ 공립 대안학교의 설립자가 제2항의 위탁운영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국ㆍ공립 대안학교의 설립자는 제1항에 따라 대안학교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위탁계약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운영 위탁 대안학교의 명칭
2. 위탁 대상업무 등 위탁의 범위
3. 위탁 계약기간
4. 위탁 계약기간의 수정ㆍ갱신에 관한 사항
5.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6. 위탁계약 해지 시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7. 위탁운영 비용 지급에 관한 사항
8. 회계 구분에 관한 사항
9. 공무원인 교직원을 위탁운영하는 대안학교에 파견하는 경우 그 업무 구분에 관한 사항

⑥ 국ㆍ공립 대안학교의 설립자는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탁법인의 명칭,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운영 개시일자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2009. 11. 5.]

**제13조(다른 학교 학생의 위탁교육)** ① 대안학교는 재학생 외에 다른 학교 학생을 위탁받아 대안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교육기간은 학교장 간 협의에 따라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교육을 받은 학생은 위탁교육기간이 종료된 후 재학 중인 학교로 복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탁교육을 받은 학생이 원하는 경우 학교장 간 협의에 따라 위탁교육을 받은 대안학교로 전학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교육을 받은 학생이 「교육기본법」 제8조에 따른 의무교육 대상자인 경우에는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탁교육을 받을 학생의 선정기준, 학사관리에 관한 사항 등 대안학교의 위탁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9. 11. 5.]

**제14조(입학전형 등)** 대안학교의 장은 입학전형 및 학생 선발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 11. 5.]

**제15조(보고)** 대안학교의 장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4월 1일 현재의 시설ㆍ설비 및 교원 등의 보유현황을 4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09. 11. 5.]

**제16조** 삭제 <2026. 3. 24.>

**부칙** <제20116호,2007. 6. 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①2008학년도 제1학기 개교를 예정으로 이 영에 따른 대안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령에 따른 시한에 불구하고 개교예정일 4개월 이전까지 학교설립계획서 제출과 학교법인 설립허가신청 및 학교설립인가신청을 함께 할 수 있다.

②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학교설립인가신청 등을 받은 때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령에 따른 시한에 불구하고 해당 학교의 개교 예정일 1개월 이전까지 승인ㆍ허가 및 인가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초등학교 학력인정 지정을 받은 대안학교를 졸업한 자

제97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중학교 학력인정 지정을 받은 대안학교를 졸업한 자

제98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 학력인정 지정을 받은 대안학교를 졸업한 자

**부칙** <제20740호,2008. 2. 29.>(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2! 까지 생략

2@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단서 중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을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으로 한다.

2#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 <제21215호,2008. 12. 31.>(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809호,2009. 11.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교육감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대안학교가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과정을 충족하는 경우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대안학교를 졸업한 자에게 인정할 수 있는 학력을 설립인가서에 표시하여 이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각종학교 "를 " 각종학교(대안학교는 제외한다) "로 한다.

②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4호 중 " 초등학교 학력인정 지정을 받은 대안학교를 졸업한 자 "를 " 초등학교 과정 학력인정을 받은 자 "로 한다.

제97조제1항제6호 중 " 중학교 학력인정 지정을 받은 대안학교를 졸업한 자 "를 " 중학교 과정 학력인정을 받은 자 "로 한다.

제98조제1항제8호 중 " 고등학교 학력인정 지정을 받은 대안학교를 졸업한 자 "를 " 고등학교 과정 학력인정을 받은 자 "로 한다.

별표 2의 산학겸임교사란의 제1호 중 " 특성화중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를 " 특성화중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및 대안학교 "로 한다.

**부칙** <제22151호,2010. 5. 4.>(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7> 까지 생략

<58>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을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으로 한다.

<59>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제22467호,2010. 11. 2.>(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423호,2013. 3. 2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3( 까지 생략

4)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단서, 제10조의2제6항 및 제15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4! 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 <제25840호,2014. 12. 9.>(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7751호,2016. 12. 30.>(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7772호,2017. 1. 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693호,2020. 5. 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768호,2022. 7.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856호,2025. 11. 25.>(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을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제36220호,2026. 3. 24.>(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 1] <개정 2022. 7. 5.>

교사의 기준면적(제3조제2항 관련)

(단위: ㎡)

| 학 교 | 학생수별 기준면적 | |
|---|---|---|
| 초등학교 과정 대안학교 | 120명 이하 | 121명 이상 |
| | 3.5×총학생정원 | 120+2.5×총학생정원 |
| 중학교 과정 대안학교 | 60명 이하 | 61명 이상 |
| | 7×총학생정원 | 210+3.5×총학생정원 |
| 고등학교 과정 대안학교 | 60명 이하 | 61명 이상 |
| | 7×총학생정원 | 180+4×총학생정원 |

비 고

1. 총학생정원은 각급학교의 전학년의 학생정원을 말한다.
2. 법 제60조의3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운영하는 대안학교의 경우에는 각 학교 급별 기준면적을 합한 면적을 적용한다.

■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 2] <개정 2022. 7. 5.>

옥외체육장의 기준면적(제3조제2항 관련)

(단위: ㎡)

| 학 교 | 학생수별 기준면적 | |
|---|---|---|
| 초등학교 과정 대안학교 | 120명 이하 | 121명 이상 |
| | 1,500 | 1,350+0.5×총학생정원 |
| 중학교 과정 대안학교 | 60명 이하 | 61명 이상 |
| | 2,000 | 2,025+0.5×총학생정원 |
| 고등학교 과정 대안학교 | 60명 이하 | 61명 이상 |
| | 2,000 | 2,325+0.5×총학생정원 |

비 고

1. 총학생정원은 각급학교의 전학년의 학생정원을 말한다.
2. 수영장·체육관·강당·무용실 등 실내체육시설이 있는 경우 실내체육시설 바닥면적의 2배 면적은 제외할 수 있다.
3. 법 제60조의3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운영하는 대안학교의 경우에는 총학생 정원을 최상급학교의 학생정원으로 보아 적용한다.

#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은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11. 5.]

**제3조(시설ㆍ설비기준)** ①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시설ㆍ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ㆍ방음ㆍ환기ㆍ채광ㆍ소방 및 배수 등의 면에서 교수ㆍ학습에 적합한 교사[교사(교실, 도서실 등 교수ㆍ학습활동에 직ㆍ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말한다)]
2. 배수가 잘 되는 옥외체육장
3. 학생의 통학에 지장이 없는 곳에 위치한 교지[교지(교사용 대지와 옥외체육장용 대지를 합한 용지를 말한다)]
4. 학습에 필요한 도서ㆍ기계ㆍ기구 등의 교구
5. 수질검사 결과 위생상 무해하다고 판명된 급수시설 및 온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

② 제1항의 교사 및 옥외체육장의 기준면적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③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대안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교육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 제2항 및 별표 2를 적용하지 않거나 별표 2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17. 1. 10., 2022. 7. 5.>
1. 새로 설립되는 대안학교가 「초ㆍ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장 또는 공공체육시설 등과 인접하여 해당 대안학교의 학생 등이 쉽게 체육장 또는 공공체육시설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2. 도심지 및 도서ㆍ벽지 등 지역의 여건상 별표 2에 따른 옥외체육장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전문개정 2009. 11. 5.]

**제3조의2(사립 대안학교 교사ㆍ교지 등의 소유주체 등)** ① 사립 대안학교의 교사 및 교지는 해당 대안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자의 소유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안학교의 정원을 기준으로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재한외국인의 자녀 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을 교육대상으로 하는 대안학교를 설립하려

는 자가 다음 각 호의 건물ㆍ시설 또는 부지를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상 임대하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교사와 교지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개정 2017. 1. 10., 2022. 7. 5.>

1.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교
2. 교육감이 안정적 사용이 가능하고 교육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건물이나 시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안학교를 설립하려는 자가 제3조의 기준에 적합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산을 분할 납부하는 조건으로 매입하는 경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원녹지 또는 국ㆍ공립 체육시설 등의 체육장 대용시설을 임대 등을 통하여 확보하는 경우로서 교육감이 안정적 사용이 가능하고 교육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제3조제1항제2호의 옥외체육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9. 11. 5.]

**제4조(설립인가)** ①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사립 대안학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교지의 지적도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설립자가 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2009. 11. 5., 2010. 5. 4., 2010. 11. 2., 2017. 1. 10.>

1. 목적
2. 명칭
3. 위치
4. 학칙
5. 삭제<2017. 1. 10.>
6. 경비와 유지방법
7. 설비
8. 삭제<2008. 12. 31.>
9. 교사(체육장을 포함한다)의 배치도ㆍ평면도
10. 개교연월일
11. 병설학교 등을 둘 때에는 그 계획서
12.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13. 설립자가 사인인 경우에는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14.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15. 교직원 배치계획서

② 교육감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대안학교를 설립인가하는 경우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고려하여 그 대안학교를 졸업한 사람에게 인정할 수 있는 학력을 설립인가서에 표시하여야 한다.<신설 2009. 11. 5., 2017. 1. 10.>

③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사립 대안학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가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갖추기 전에 대안학교 설립계획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은 설립인가의 가능

성 등 대안학교 설립을 위한 협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신설 2009. 11. 5.>

④ 제3항에 따른 대안학교 설립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등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09. 11. 5.>

**제5조(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안교육관련 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 시ㆍ도 교육청의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교육감이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9. 11. 5.>

1. 대안학교의 설립인가ㆍ변경인가 및 인가취소에 관한 사항
2. 대안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및 제4조제2항에 따른 인정학력에 관한 사항
3. 대안학교의 평가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이 영에서 심의하도록 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⑥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5조의2(산학겸임교사 등의 배치)** 대안학교의 장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배치기준에 따라 필요한 교원 정원의 3분의 1의 범위에서 교원을 대체하여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7. 5.]

**제6조(학력인정)** 국ㆍ공립 대안학교를 졸업한 자와 제4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대안학교를 졸업한 자는 국ㆍ공립 대안학교의 설립 시 계획된 학교 급별 또는 사립 대안학교의 설립인가 시 표시된 인정학력에 따라 법 제2조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 11. 5.]

**제7조(학기운영 및 학년제)** ①대안학교의 학기 운영은 학교교육과정을 고려하여 학칙으로 정한다.

②대안학교의 장은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학년 구분 없이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수업연한 및 수업일수)** ①대안학교의 수업연한은 법 제39조, 제42조 및 제46조 본문에 따른다. <개정 2009. 11. 5.>

②대안학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8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대안학교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가 시작되기 30일 전까지 법 제6조에 따른 지도ㆍ감독기관에 보고해야 한다.<개정 2020. 5. 26.>

**제9조(교육과정)** 대안학교의 교육과정은 대안학교의 장이 학칙으로 정한다. 다만,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교과 중에서 국어 및 사회(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의 사회 교과는 국사 또는 역사를 포함한다)를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상 수업시간 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11. 5.]

**제10조(교과용 도서)** ①대안학교의 장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국정도서, 검정도서, 인정도서 중에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25.>
②대안학교의 장은 자체 개발한 도서를 교과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9. 11. 5., 2014. 12. 9.>

**제10조의2** 삭제 <2022. 7. 5.>

**제11조(학교생활기록 및 건강검사기록 유지)** 대안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 사항이 기록된 것으로서 학교의 학업 성취도 등 학생 생활에 관한 기록 및 「학교보건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건강검사기록 중 학생의 진학이나 전학에 필요한 내용을 적절한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1. 인적사항
2. 학적사항
3. 출결상황
4. 자격증 및 인증취득상황
5. 교과학습발달상황
6.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제12조(국ㆍ공립 대안학교의 위탁운영)** ① 국ㆍ공립 대안학교의 설립자는 위탁운영계약을 통하여 「사립학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학교법인과 그 밖에 안정적으로 대안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게 대안학교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국ㆍ공립 대안학교의 설립자가 대안학교를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때에는 위탁업무의 범위, 수탁법인의 선정절차 등이 포함된 위탁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위탁운영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대안학교 운영의 안정적이고 계속적인 이행이 가능할 것

2. 대안학교 운영의 책임체제가 명확할 것
3. 학생의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할 것

④ 공립 대안학교의 설립자가 제2항의 위탁운영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국ㆍ공립 대안학교의 설립자는 제1항에 따라 대안학교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위탁계약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운영 위탁 대안학교의 명칭
2. 위탁 대상업무 등 위탁의 범위
3. 위탁 계약기간
4. 위탁 계약기간의 수정ㆍ갱신에 관한 사항
5.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6. 위탁계약 해지 시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7. 위탁운영 비용 지급에 관한 사항
8. 회계 구분에 관한 사항
9. 공무원인 교직원을 위탁운영하는 대안학교에 파견하는 경우 그 업무 구분에 관한 사항

⑥ 국ㆍ공립 대안학교의 설립자는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탁법인의 명칭,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운영 개시일자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2009. 11. 5.]

**제13조(다른 학교 학생의 위탁교육)** ① 대안학교는 재학생 외에 다른 학교 학생을 위탁받아 대안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교육기간은 학교장 간 협의에 따라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교육을 받은 학생은 위탁교육기간이 종료된 후 재학 중인 학교로 복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탁교육을 받은 학생이 원하는 경우 학교장 간 협의에 따라 위탁교육을 받은 대안학교로 전학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교육을 받은 학생이 「교육기본법」 제8조에 따른 의무교육 대상자인 경우에는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탁교육을 받을 학생의 선정기준, 학사관리에 관한 사항 등 대안학교의 위탁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9. 11. 5.]

**제14조(입학전형 등)** 대안학교의 장은 입학전형 및 학생 선발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 11. 5.]

**제15조(보고)** 대안학교의 장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4월 1일 현재의 시설ㆍ설비 및 교원 등의 보유현황을 4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09. 11. 5.]

**제16조** 삭제 <2026. 3. 24.>

**부칙** <제20116호,2007. 6. 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①2008학년도 제1학기 개교를 예정으로 이 영에 따른 대안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령에 따른 시한에 불구하고 개교예정일 4개월 이전까지 학교설립계획서 제출과 학교법인 설립허가신청 및 학교설립인가신청을 함께 할 수 있다.
②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학교설립인가신청 등을 받은 때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령에 따른 시한에 불구하고 해당 학교의 개교 예정일 1개월 이전까지 승인ㆍ허가 및 인가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초등학교 학력인정 지정을 받은 대안학교를 졸업한 자
제97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중학교 학력인정 지정을 받은 대안학교를 졸업한 자
제98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 학력인정 지정을 받은 대안학교를 졸업한 자

**부칙** <제20740호,2008. 2. 29.>(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2! 까지 생략
2@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단서 중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을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으로 한다.
2#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 <제21215호,2008. 12. 31.>(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809호,2009. 11.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교육감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대안학교가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과정을 충족하는 경우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대안학교를 졸업한 자에게 인정할 수 있는 학력을 설립인가서에 표시하여 이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각종학교 "를 " 각종학교(대안학교는 제외한다) "로 한다.

②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4호 중 " 초등학교 학력인정 지정을 받은 대안학교를 졸업한 자 "를 " 초등학교 과정 학력인정을 받은 자 "로 한다.

제97조제1항제6호 중 " 중학교 학력인정 지정을 받은 대안학교를 졸업한 자 "를 " 중학교 과정 학력인정을 받은 자 "로 한다.

제98조제1항제8호 중 " 고등학교 학력인정 지정을 받은 대안학교를 졸업한 자 "를 " 고등학교 과정 학력인정을 받은 자 "로 한다.

별표 2의 산학겸임교사란의 제1호 중 " 특성화중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를 " 특성화중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및 대안학교 "로 한다.

**부칙** <제22151호,2010. 5. 4.>(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7> 까지 생략

<58>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을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으로 한다.

<59>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제22467호,2010. 11. 2.>(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423호,2013. 3. 2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3( 까지 생략

4)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단서, 제10조의2제6항 및 제15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4! 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 <제25840호,2014. 12. 9.>(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7751호,2016. 12. 30.>(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7772호,2017. 1. 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693호,2020. 5. 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768호,2022. 7.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856호,2025. 11. 25.>(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을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제36220호,2026. 3. 24.>(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 1] <개정 2022. 7. 5.>

교사의 기준면적(제3조제2항 관련)

(단위: ㎡)

| 학 교 | 학생수별 기준면적 | |
|---|---|---|
| 초등학교 과정 대안학교 | 120명 이하 | 121명 이상 |
| | 3.5×총학생정원 | 120+2.5×총학생정원 |
| 중학교 과정 대안학교 | 60명 이하 | 61명 이상 |
| | 7×총학생정원 | 210+3.5×총학생정원 |
| 고등학교 과정 대안학교 | 60명 이하 | 61명 이상 |
| | 7×총학생정원 | 180+4×총학생정원 |

비 고

1. 총학생정원은 각급학교의 전학년의 학생정원을 말한다.
2. 법 제60조의3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운영하는 대안학교의 경우에는 각 학교 급별 기준면적을 합한 면적을 적용한다.

■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 2] <개정 2022. 7. 5.>

옥외체육장의 기준면적(제3조제2항 관련)

(단위: ㎡)

| 학 교 | 학생수별 기준면적 | |
|---|---|---|
| 초등학교 과정 대안학교 | 120명 이하 | 121명 이상 |
| | 1,500 | 1,350+0.5×총학생정원 |
| 중학교 과정 대안학교 | 60명 이하 | 61명 이상 |
| | 2,000 | 2,025+0.5×총학생정원 |
| 고등학교 과정 대안학교 | 60명 이하 | 61명 이상 |
| | 2,000 | 2,325+0.5×총학생정원 |

비 고

1. 총학생정원은 각급학교의 전학년의 학생정원을 말한다.
2. 수영장·체육관·강당·무용실 등 실내체육시설이 있는 경우 실내체육시설 바닥면적의 2배 면적은 제외할 수 있다.
3. 법 제60조의3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운영하는 대안학교의 경우에는 총학생 정원을 최상급학교의 학생정원으로 보아 적용한다.

#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 2019. 4. 23.] [법률 제16331호, 2019. 4. 23., 타법개정]

교육부 (대학정책과) 044 - 203 - 6938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ㆍ공립 및 사립대학의 대학교원 기간임용제에서 재임용이 탈락된 교원에게 재임용을 위한 재심사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부당하게 재임용에서 탈락된 대학교원의 권익보호와 구제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학교원 기간임용제”라 함은 대학교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임면하는 제도로, 법률 제2774호 「교육공무원법」, 법률 제2775호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1975년 7월 23일 이후 도입된 제도를 말한다.
2. “재임용 탈락”이라 함은 대학교원 기간임용제에 따라 임용된 교원 중 법률 제7352호 「사립학교법」 및 법률 제7353호 「교육공무원법」의 시행일 전일까지 임용권자 또는 임면권자로부터 임용기간 만료(해임, 파면 또는 면직된 후 이를 다투는 소송과정에서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소의 이익이 없다는 판결을 받은 경우 및 해임, 파면 또는 면직된 후 이를 다투는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임용기간 만료라는 사유로 재임용 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재임용 심사기준 미달 등의 사유로 재임용 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3. “재임용 재심사”라 함은 재임용 탈락 교원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준에 따라 재임용 탈락이 부당하였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의 설치 등)** ①재임용 탈락 교원에 대한 재임용 재심사 및 소송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07. 5. 11.>

1. 재임용 탈락 교원에 대한 재임용 재심사
2. 재임용 재심사 결과에 불복한 당사자가 제기한 소송업무
3. 그 밖에 재임용 재심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심의 및 결정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이 겸임하고, 위원 중 2인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개정 2008. 2. 29., 2011. 7. 21., 2013. 3. 23.>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자

2.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자
3. 교육행정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3급 이상 공무원 이었던 자
4. 사립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법인의 임원 또는 사립대학 경영자

⑤위원회는 재임용 재심사 업무가 종료하는 때까지를 그 존속기간으로, 위원은 당해 기간을 임기로 한다.

⑥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⑦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⑧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특별 재임용 재심사 등)** 재임용 탈락 교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재심 결정, 법원의 소송 등을 통하여 이미 재임용 탈락 결정의 적정성 여부를 다투었다 할지라도 이 법에 의한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5조(퇴직ㆍ사망자의 재임용 재심사 청구)** ①재임용 탈락 교원 중 이미 그 나이가 대학교원의 정년에 달하거나 정년을 초과한 교원도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재임용 탈락 교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상속인이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6조(재임용 재심사 신청기한)** 재임용 탈락 교원은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위원회에 재임용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제7조(심사기준)** 위원회는 재임용 탈락 교원에 대한 재임용 재심사를 함에 있어 재임용 탈락이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재임용 관련 학칙 또는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등 정당하고 객관적인 사유에 따라 이루어 졌었는지 여부를 심사기준으로 한다.

**제8조(재임용 재심사의 결정)** ①위원회는 재임용 재심사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재임용 탈락의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재임용 탈락 관련 서류의 멸실, 학교법인의 해산 등으로 재임용 탈락의 타당성 판단에 필요한 자료가 없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재임용 재심사의 청구ㆍ심사 및 결정 등 재심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재임용 재심사 결정의 효력)** ① 삭제 <2007. 5. 11.>

②재임용 재심사 결정의 효력은 재임용 탈락 당시의 임용주체가 변경된 경우 포괄승계한 임용주체를 기속한다.

[2007. 5. 11. 법률 제8416호에 의하여 2006. 4. 27.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제9조제1항을 삭제함.]

**제10조(「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준용)** ①위원회 위원의 겸직금지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8조제3항 및 제8조의3을 준용한다. <개정 2016. 2. 3., 2019. 4. 23.>

②위원회의 결정에 관하여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제3항을 준용한다.<개정 2016. 2. 3.>

[제목개정 2016. 2. 3.]

**부칙** <제7583호,2005. 7. 13.>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16호,2007. 5. 1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원회의 잔여업무의 이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 따른 재임용 재심사 청구사건의 심사·결정업무 종료 후 이에 따른 소송업무 등 그 잔여업무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관한다.

**부칙** <제8852호,2008. 2. 29.>(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4> 까지 생략

<75>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을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으로 한다.

<7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866호,2011. 7. 21.>(고등교육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2호 중 “ 전임강사 ”를 “ 조교수 ”로 한다.

⑪부터2&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1690호,2013. 3. 23.>(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3* 까지 생략

3(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을 “ 교육부장관 ”으로 한다.

4) 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936호,2016. 2. 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의 준용) ”을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준용)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 ”을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8조제3항 및 제4항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3항의 규정 ”을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제3항 ”으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6331호,2019. 4. 2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 제4항 ” 을 “ 제8조의3 ” 으로 한다.

#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 2019. 4. 23.] [법률 제16331호, 2019. 4. 23.,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ㆍ공립 및 사립대학의 대학교원 기간임용제에서 재임용이 탈락된 교원에게 재임용을 위한 재심사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부당하게 재임용에서 탈락된 대학교원의 권익보호와 구제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학교원 기간임용제”라 함은 대학교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임면하는 제도로, 법률 제2774호 「교육공무원법」, 법률 제2775호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1975년 7월 23일 이후 도입된 제도를 말한다.
2. “재임용 탈락”이라 함은 대학교원 기간임용제에 따라 임용된 교원 중 법률 제7352호 「사립학교법」 및 법률 제7353호 「교육공무원법」의 시행일 전일까지 임용권자 또는 임면권자로부터 임용기간 만료(해임, 파면 또는 면직된 후 이를 다투는 소송과정에서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소의 이익이 없다는 판결을 받은 경우 및 해임, 파면 또는 면직된 후 이를 다투는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임용기간 만료라는 사유로 재임용 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재임용 심사기준 미달 등의 사유로 재임용 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3. “재임용 재심사”라 함은 재임용 탈락 교원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준에 따라 재임용 탈락이 부당하였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의 설치 등)** ①재임용 탈락 교원에 대한 재임용 재심사 및 소송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07. 5. 11.>

1. 재임용 탈락 교원에 대한 재임용 재심사
2. 재임용 재심사 결과에 불복한 당사자가 제기한 소송업무
3. 그 밖에 재임용 재심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심의 및 결정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이 겸임하고, 위원 중 2인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개정 2008. 2. 29., 2011. 7. 21., 2013. 3. 23.>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자
2.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자

3. 교육행정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3급 이상 공무원 이었던 자
4. 사립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법인의 임원 또는 사립대학 경영자

⑤위원회는 재임용 재심사 업무가 종료하는 때까지를 그 존속기간으로, 위원은 당해 기간을 임기로 한다.

⑥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⑦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⑧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특별 재임용 재심사 등)** 재임용 탈락 교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재심 결정, 법원의 소송 등을 통하여 이미 재임용 탈락 결정의 적정성 여부를 다투었다 할지라도 이 법에 의한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5조(퇴직ㆍ사망자의 재임용 재심사 청구)** ①재임용 탈락 교원 중 이미 그 나이가 대학교원의 정년에 달하거나 정년을 초과한 교원도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재임용 탈락 교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상속인이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6조(재임용 재심사 신청기한)** 재임용 탈락 교원은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위원회에 재임용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제7조(심사기준)** 위원회는 재임용 탈락 교원에 대한 재임용 재심사를 함에 있어 재임용 탈락이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재임용 관련 학칙 또는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등 정당하고 객관적인 사유에 따라 이루어 졌었는지 여부를 심사기준으로 한다.

**제8조(재임용 재심사의 결정)** ①위원회는 재임용 재심사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재임용 탈락의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재임용 탈락 관련 서류의 멸실, 학교법인의 해산 등으로 재임용 탈락의 타당성 판단에 필요한 자료가 없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재임용 재심사의 청구ㆍ심사 및 결정 등 재심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재임용 재심사 결정의 효력)** ① 삭제 <2007. 5. 11.>

②재임용 재심사 결정의 효력은 재임용 탈락 당시의 임용주체가 변경된 경우 포괄승계한 임용주체를 기속한다.

[2007. 5. 11. 법률 제8416호에 의하여 2006. 4. 27.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제9조제1항을 삭제함.]

**제10조(「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준용)** ①위원회 위원의 겸직금지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8조제3항 및 제8조의3을 준용한다. <개정 2016. 2. 3., 2019. 4. 23.>

②위원회의 결정에 관하여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제3항을 준용한다.<개정 2016. 2. 3.>

[제목개정 2016. 2. 3.]

**부칙** <제7583호,2005. 7. 13.>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16호,2007. 5. 1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원회의 잔여업무의 이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 따른 재임용 재심사 청구사건의 심사ㆍ결정업무 종료 후 이에 따른 소송업무 등 그 잔여업무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관한다.

**부칙** <제8852호,2008. 2. 29.>(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4> 까지 생략

<75>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을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으로 한다.

<7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866호,2011. 7. 21.>(고등교육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2호 중 “ 전임강사 ”를 “ 조교수 ”로 한다.

⑪부터2&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1690호,2013. 3. 23.>(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3* 까지 생략

3(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을 “ 교육부장관 ”으로 한다.

4) 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936호,2016. 2. 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의 준용) ”을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준용)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 ”을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8조제3항 및 제4항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3항의 규정 ”을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제3항 ”으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6331호,2019. 4. 2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 제4항 ” 을 “ 제8조의3 ” 으로 한다.

#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5. 12. 30.] [대통령령 제26774호, 2015. 12. 30., 타법개정]

교육부 (대학정책과) 044 - 203 - 6938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의 운영)** ①「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주재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결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위원장은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임용재심사(이하 "재임용 재심사"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사전검토 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상임위원에게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⑤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조(사무직원)** ①법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4조(재임용 재심사의 청구 등)** ①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임용 재심사 청구서와 그 부본 1부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0.>

1.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전화번호
2. 청구인(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한 재임용 탈락 교원의 상속인이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망한 재임용 탈락 교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소속하였던 대학의 명칭 및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임용 탈락(이하 "재임용 탈락"이라 한다) 당시의 직위
3. 피청구인(재임용 탈락 당시 청구인의 임용권자 또는 임면권자를 말하되, 대통령이 임용권자인 경우에는 그 임용 제청권자를, 임용권자 또는 임면권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포괄승계한 자를 말한다. 제6조에 의하여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도 같다)

4. 재임용 재심사 청구의 대상이 되는 재임용 탈락의 내용
5. 재임용 재심사 청구의 취지
6. 재임용 재심사 청구의 이유 및 입증방법

②청구인이 재임용 탈락 당시 청구인의 임용권자 또는 임면권자로부터 받은 사유설명서 또는 인사발령통지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본 1부를 제1항의 재임용 재심사 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상속인의 재임용 재심사 청구)** ①재임용 탈락 교원의 상속인이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임용 재심사 청구서에 재임용 탈락 교원의 상속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재임용 탈락 교원의 상속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임용 탈락 교원의 상속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한 때에는 재임용 재심사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정을 명할 수 있다.

③3인 이상인 재임용 탈락 교원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하는 때에는 청구인중에서 2인 이하의 대표자(이하 "선정대표자"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3인 이상인 재임용 탈락 교원의 상속인이 선정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고 공동으로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청구인들에게 2인 이하의 선정대표자를 선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선정대표자는 각각 다른 청구인을 위하여 재임용 재심사의 청구·심사 및 결정에 관하여 청구인으로서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재임용 재심사 청구의 취하는 다른 청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동의를 얻은 사실을 서면으로 위원회에 소명하여야 한다.

⑥선정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청구인들은 그 대표자를 통하여만 그 재임용 재심사에 관한 청구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⑦선정대표자를 선정한 청구인들은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인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⑧위원회는 2인 이상의 교원의 상속인이 각각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이를 병합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6조(준용규정)** 재임용 재심사의 청구 및 위원회의 심사·결정 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9085호,2005. 10. 13.>

이 영은 2005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774호,2015. 12. 30.>(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6ㆍ25 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5. 12. 30.] [대통령령 제26774호, 2015. 12. 30.,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의 운영)** ①「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주재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결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위원장은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임용재심사(이하 "재임용 재심사"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사전검토 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상임위원에게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⑤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조(사무직원)** ①법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4조(재임용 재심사의 청구 등)** ①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임용 재심사 청구서와 그 부본 1부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0.>

1.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전화번호
2. 청구인(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한 재임용 탈락 교원의 상속인이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망한 재임용 탈락 교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소속하였던 대학의 명칭 및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임용 탈락(이하 "재임용 탈락"이라 한다) 당시의 직위
3. 피청구인(재임용 탈락 당시 청구인의 임용권자 또는 임면권자를 말하되, 대통령이 임용권자인 경우에는 그 임용 제청권자를, 임용권자 또는 임면권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포괄승계한 자를 말한다. 제6조에 의하여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도 같다)

4. 재임용 재심사 청구의 대상이 되는 재임용 탈락의 내용
5. 재임용 재심사 청구의 취지
6. 재임용 재심사 청구의 이유 및 입증방법

②청구인이 재임용 탈락 당시 청구인의 임용권자 또는 임면권자로부터 받은 사유설명서 또는 인사발령통지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본 1부를 제1항의 재임용 재심사 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상속인의 재임용 재심사 청구)** ①재임용 탈락 교원의 상속인이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임용 재심사 청구서에 재임용 탈락 교원의 상속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재임용 탈락 교원의 상속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임용 탈락 교원의 상속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한 때에는 재임용 재심사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정을 명할 수 있다.

③3인 이상인 재임용 탈락 교원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하는 때에는 청구인중에서 2인 이하의 대표자(이하 "선정대표자"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3인 이상인 재임용 탈락 교원의 상속인이 선정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고 공동으로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청구인들에게 2인 이하의 선정대표자를 선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선정대표자는 각각 다른 청구인을 위하여 재임용 재심사의 청구·심사 및 결정에 관하여 청구인으로서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재임용 재심사 청구의 취하는 다른 청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동의를 얻은 사실을 서면으로 위원회에 소명하여야 한다.

⑥선정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청구인들은 그 대표자를 통하여만 그 재임용 재심사에 관한 청구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⑦선정대표자를 선정한 청구인들은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인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⑧위원회는 2인 이상의 교원의 상속인이 각각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이를 병합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6조(준용규정)** 재임용 재심사의 청구 및 위원회의 심사·결정 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9085호,2005. 10. 13.>

이 영은 2005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774호,2015. 12. 30.>(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6ㆍ25 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타법개정]

교육부 (대학정책과) 044 - 203 - 6938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라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강사 및 조교의 자격기준 및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3. 2. 8., 1998. 2. 24., 2012. 2. 29., 2019. 6. 11.>

**제2조(교원 및 조교의 자격)**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강사(이하 "교원"이라 한다) 또는 조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0. 7. 10., 2012. 2. 29., 2019. 6. 11.>

1. 별표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교육공무원법」 제5조에 따른 대학인사위원회 또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3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의 인정을 받은 사람(교원의 경우에 한한다)

[본조신설 1998. 2. 24.]
[제목개정 2012. 2. 29.]
[종전 제2조는 제2조의2로 이동<1998ㆍ2ㆍ24>]

**제2조의2(동등자격자의 범위)** ①별표에 규정된 전문대학(기술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과 종전의 2년제교육대학ㆍ초급대학ㆍ전문학교ㆍ실업고등전문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와 동등자격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78. 12. 30., 1991. 2. 1., 1998. 2. 24., 2001. 1. 29., 2008. 2. 29., 2008. 6. 5., 2013. 3. 23.>

1.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1945년이후종전의규정에의한학교졸업자자격인정령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급대학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자로 인정된 자
3. 전문대학과 동등정도의 학교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교의 졸업자 및 종전에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았던 학교의 졸업자
4. 외국에서 14년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전문대학정도의 전공과정을 2년이상 전공한 자

②별표에 규정된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기술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의 학사학위과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와 동등자격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1. 2. 1., 1998. 2. 24., 2001. 1. 29., 2008. 2. 29., 2008. 6. 5., 2013. 3. 23.>

1.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1조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자
2. 1945년이후종전의규정에의한학교졸업자자격인정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자로 인정된 자
3. 대학과 동등정도의 학교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교의 졸업자 및 종전에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았던 학교의 졸업자
4. 외국에서 16년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대학정도의 전공과정을 3년이상 전공한 자

③교육부장관이 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에 의하여 학교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1. 2. 1., 2001. 1. 29., 2008. 2. 29., 2013. 3. 23.>

[제2조에서 이동<1998、2、24>]

**제3조(연구실적 및 교육경력의 범위)** ①별표에 규정된 연구실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적 또는 경력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실적 및 경력은 대학、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정도의 학교를 졸업한 후의 실적 또는 경력으로 하되, 제11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 2. 24., 2000. 7. 10., 2012. 2. 29., 2024. 9. 10.>

1. 교원이 담당하는 학과목과 관련하여 대학 기타 연구기관에서 연구한 실적
2. 산업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시설에서 교원이 담당하는 학과목과 관련되는 직무에 근무한 경력

②별표에 규정된 교육경력은 대학、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정도의 학교의 교육경력으로 한다.<개정 1978. 12. 30., 1998. 2. 24.>

**제4조(연구실적의 환산율)** ①별표에 규정된 연구실적은 다음 각호의 환산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1978. 12. 30., 1983. 3. 18., 1991. 2. 1., 1995. 3. 25., 1997. 6. 17., 1998. 2. 24., 2000. 7. 10., 2001. 1. 29., 2002. 1. 14., 2007. 7. 3., 2008. 2. 29., 2013. 3. 23., 2024. 9. 10.>

1. 대학、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정도의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학술연구(실험、실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대학、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정도의 학교에서 행한 연구실적은 100퍼센트
2.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한 연구기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시설에서 전임으로 연구에 종사한 실적은 100퍼센트
3.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시설에서 연구를 주로하거나 전문학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종사한 실적(제5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은 30퍼센트부터 70퍼센트까지. 다만, 그 직무가 순수연구업무와 동일시 될 때에는 100퍼센트까지 인정할 수 있다.
4.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 기관 또는 시설에서 전공학과 및 그에 관련되는 학과의 학문분야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한 경력(제5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은 70퍼센트부터 100퍼센트까지

5.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 기관 또는 시설에서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이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료행위(이하 이 호에서 "의료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의료행위와 관련되는 직무에 종사한 경력은 100퍼센트

②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환산율의 산출기준은 학교장이 정한다.<개정 1991. 2. 1., 2000. 7. 10., 2007. 7. 3.>

**제4조의2(자격인정과 자격기준의 관계)** 제14조에 따라 자격인정을 받아 교원으로 임용된 사람은 그 직에서 상위의 직에 임용되는 경우에 그 자격인정을 받은 직에 해당하는 별표의 학력、연구실적 및 교육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8. 2. 24., 2012. 2. 29.>

[본조신설 1984. 8. 3.]

## 제2장 삭제 <2000. 7. 10.>

**제5조** 삭제 <2000. 7. 10.>

**제6조** 삭제 <2000. 7. 10.>

**제7조** 삭제 <2000. 7. 10.>

**제8조** 삭제 <2000. 7. 10.>

**제9조** 삭제 <2000. 7. 10.>

**제10조** 삭제 <2000. 7. 10.>

## 제3장 자격인정

**제11조(자격인정의 대상)**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을 받아 교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71、12、31, 1978.12.30, 1984.8.3, 1991.2.1, 1998.2.24, 2000.7.10, 2012.2.29>

1. 대학、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그 졸업 또는 자격취득후 별표의 직명별 연구실적과 교육경력의 합계연도의 2분의 1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2. 대학、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그 졸업 또는 자격취득후 별표의 연구실적 연수와 대학、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정도의 학교이외의 학교에서 별표의 교육경력 연수에 해당하는 연수의 교육경력을 가진 자. 이 경우에 교육학、윤리학등 학교장이 특히 인정하는 학과목의 교육경력 연수는 이를 연구실적 연수로 대체할 수 있다.
3. 국내의 학교교육으로는 이수할 수 없었거나 곤란하였던 학과목을 담당할 자로서 연구실적이 별표의 연구실적 연수에 해당하거나, 논문、저서 기타 연구업적이 현저하나 학력이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4.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과학계의 연구관 또는 5급이상의 농촌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

**제12조(자격인정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원자격의 인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1973. 2. 8., 1984. 8. 3., 1998. 2. 24., 2012. 2. 29., 2019. 6. 11.>

**제13조(자격인정의 신청)** 교원자격의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학교원 자격인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장을 거쳐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 위원장 " 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0. 7. 10., 2012. 2. 29.>

1. 논문 또는 저서 7부
2. 연구실적요지서 7부
3. 이력서와 경력증명서(자격인정에 필요한 것에 한함) 각 1부
4. 학력증명서 1부

[전문개정 1972. 7. 28.]

**제14조(자격심사)** ①각 위원장은 교원자격의 인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교원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신청인 1명에 대하여 3명 이상의 예비심사위원을 선정하여 논문 기타 자료의 심사를 위촉한다. <개정 1998. 2. 24., 2000. 7. 10., 2012. 2. 29.>

②예비심사위원은 지정기일내에 심사를 완결하고 각기 의견을 첨부하여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각 위원장은 제2항의 예비심사보고를 받은 때에는 각 위원회를 소집하여 인정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00. 7. 10.>

**제15조(자료의 조사등)** 각 위원회는 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을 각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보충자료의 제출 또는 실험등을 명하거나 관계기관에 대하여 그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00. 7. 10.>

**제16조(의결정족수)** 각 위원회의 의사는 위원장ㆍ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자격인정의 결정에 있어서는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행한다. <개정 1978. 12. 30., 2000. 7. 10.>

**제17조(위원의 제척)** ①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과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는 그 신청인에 대한 예비심사 또는 각 위원회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00. 7. 10.>

②제1항에 의하여 제척된 위원은 제16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재적위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8ㆍ12ㆍ30, 1998.2.24>

**제18조(신청직이하의 자격인정)** 각 위원회는 신청인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신청한 직이하의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0. 7. 10.>

**제19조(위원에 대한 실비변상)** 각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 7. 10.]

**제20조(자격인정의 무효등)** ①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자격인정을 받거나, 또는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심사를 중지 또는 무효로 한다.
②제1항의 중지 또는 무효의 결정을 받은 자는 그 결정일로부터 2년이내에 자격인정을 신청할 수 없다.

**제21조(심사결과의 통지)** ①각 위원회에서 자격인정의 여부가 결정된 때에는 위원장은 학교장을 거쳐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한다. <개정 2000. 7. 10.>
②제1항에 따라 자격인정이 결정된 사람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대학교원자격인정서를 발급한다.<신설 1972. 7. 28., 2012. 2. 29.>

**제22조(수수료)** ①각 위원회는 자격인정에 있어서 그 신청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0. 7. 10.>
②제1항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개정 1991. 2. 1., 2000. 7. 10.>

**제23조** 삭제 <2026. 3. 24.>

**부칙** <제4395호,1969. 12. 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48호,1971.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07호,1972. 7. 2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93호,1973. 2. 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59호,1978. 12. 30.>

①(시행일) 이 영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초급대학ㆍ전문학교 및 실업고등전문학교는 이 영에 의한 전문대학으로 본다.

**부칙** <제11075호,1983. 3. 1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82호,1984. 8. 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55호,1988. 12. 19.>(서식중본적란삭제를위한상훈법시행령등의일부개정령)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영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3282호,1991. 2. 1.>(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교수자격인정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내지 제3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2항ㆍ제3항, 제7조 및 제11조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 으로 하고, 제5조중 "문교부에"를 "교육부에"로 하며, 제6조제2항중 "문교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동조제3항 및 제10조제2항중 "문교부"를 각각 "교육부"로 하고, 제22조제2항 및 제23조중 "문교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⑬내지 <148>생략

**부칙** <제14553호,1995. 3. 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96호,1997. 6. 17.>(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교수자격인정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본문중 "개방대학 및 전문대학"을 "개방대학ㆍ기술대학 및 전문대학"으로 한다.

**부칙** <제15666호,1998. 2. 24.>

①(시행일) 이 영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교수자격인정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교수자격인정령 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5942호,1998. 12. 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01호,2000. 7. 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15호,2001. 1. 29.>(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호ㆍ제2항제3호ㆍ제3항 및 제4조제1항제2호ㆍ제3호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⑬내지 <152>생략

**부칙** <제17485호,2002. 1. 14.>

이 영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4호,2007. 7. 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채용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740호,2008. 2. 29.>(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호ㆍ제2항제3호ㆍ제3항, 제4조제1항제2호ㆍ제3호 본문 및 제4호 중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을 각각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으로 한다.

⑦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 <제20797호,2008. 6. 5.>(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방송대학ㆍ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을 각각 "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 "으로 한다.

④ 부터1* 까지 생략

**부칙** <제23644호,2012.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ㆍ제2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 중 전임강사에 관한 부분과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임강사 경력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3조제1항, 제15항, 제16항, 제24항, 제25항, 제28항, 제29항, 제30항, 제33항, 제34항, 제37항, 제38항, 제40항, 제41항, 제42항, 제44항, 제45항, 제46항, 제47항, 제50항, 제51항, 제52항 및 제5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임강사 경력은 해당 규정에 따른 조교수 경력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나목1) 중 “ 전임강사 ”를 “ 조교수 ”로 한다.

②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제2호 중 “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을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으로, “ 대학전임강사 ”를 “ 조교수 ”로 한다.

③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 조교수ㆍ전임강사 ”를 “ 조교수 ”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 전임강사ㆍ교수요원 ”을 “ 교수요원 ”으로 한다.

④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중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전임강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

⑤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2호 중 “ 전임강사 ”를 “ 조교수 ”로 한다.

⑥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호 중 “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을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으로, “ 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전임강사 ”를 “ 부교수 또는 조교수 ”로 한다.

⑦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2호가목5) 중 “ 조교수ㆍ전임강사 ”를 “ 조교수 ”로 한다.

별표 11 제2호가목6)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전임강사 ”를 “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조교수 ”로, “ 조교수 및 전임강사 ”를 “ 조교수 ”로 한다.

별표 11 제2호가목9) 및 같은 목 9)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 조교수ㆍ전임강사 ”를 각각 “ 조교수 ”로 한다.

별표 11 제3호가목1)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가) 중 “ 기능6급 이상ㆍ전임강사 및 경감 ”을 “ 기능6급 및 경감 ”으로 한다.

⑧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가목 중 “ 조교수 및 전임강사 ”를 “ 조교수 ”로 한다.

⑨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제3호 중 “ 조교수ㆍ전임강사 ”를 “ 조교수 ”로 한다.

⑩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중 교육공무원(사립학교 교원 포함)란 중 대학(교육대학ㆍ전문대학 포함)교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 | | | | |
|---|---|---|---|---|---|---|---|
| 대학(교육대학ㆍ전문대학 포함) | 교수 | 부교수 | 조교수 | | | | |

⑪ 관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2항제3호 중 “ 전임강사 ”를 “ 조교수 ”로 한다.

⑫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 임용제청을 하고자 하거나 전임강사를 임용하고자 할 때의 그 임용제청 또는 임용의 ”를 “ 임용제청을 하려고 할 때 그 임용제청의 ”로 한다.

⑬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제1호다목 중 “ 조교수 및 전임강사 ”를 “ 조교수 ”로 한다.

⑭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5호 중 “ 조교수ㆍ전임강사 ”를 “ 조교수 ”로 한다.

⑮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2호라목 중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른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 또는 동법 제2조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대학 ”을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로 한다.

1^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3호 중 “ 전임강사 ”를 “ 조교수 ”로 한다.

1&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6급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 | | | | | | | | | | |
|---|---|---|---|---|---|---|---|---|---|---|---|---|---|
| 6급 | 기능직 기능1급 ~ 6급 | 6급 | 기능직 기능1급 ~ 6급 | 6급 | 대위 3년 미만 중위 3년 이상 | 경감 경위 | 소방경 소방위 | | | | 계장 (대리) | 과장 (차장) | |

1*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 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 ”를 “ 부교수 및 조교수 ”로 한다.

1(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 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전임강사 ”를 “ 부교수 또는 조교수 ”로 한다.

2) 국방대학교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 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 ”를 “ 부교수 및 조교수 ”로 한다.

2!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중 교육공무원(사립학교 교원 포함)란 중 대학(교육대학ㆍ전문대학 포함)교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 | | | | | | |
|---|---|---|---|---|---|---|---|---|---|
| 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 | 교수 3년 이상 | 교수 | 부교수 | 조교수 | | | | | |

2@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4조제1항제2호 중 “ 전임강사 ”를 “ 조교수 ”로 한다.

2#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호가목ㆍ나목, 제16조 단서 및 제17조제1항제2호 본문 중 “ 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 ”를 각각 “ 부교수 및 조교수 ”로 한다.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호 중 “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을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으로, “ 교수 ”를 “ 대학교원 ”으로 한다.

별표 1 중 2급란 제3호 중 “ 전임강사 ”를 “ 조교수 ”로 한다.

별표 1의2 중 전임강사란을 삭제한다.

2%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2호 중 “ 전임강사 ”를 “ 조교수 ”로 한다.

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경영 분야란 제2호 중 “ 전임강사 ”를 “ 조교수 ”로 하고, 같은 표 기술 분야란 제2호 중 “ 전임강사 ”를 “ 조교수 ”로 한다.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 중 “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을 각각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으로, “ 교수 ”를 각각 “ 대학교원 ”으로 한다.

2*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농작물재해보험란 제4호 중 “ 전임강사 ”를 “ 조교수 ”로 한다.

별표 2 임산물재해보험란 제4호 중 “ 전임강사 ”를 “ 조교수 ”로 한다.

별표 2 가축재해보험란 제4호 중 “ 전임강사 ”를 “ 조교수 ”로 한다.

별표 2 양식수산물재해보험란 제4호 중 “ 전임강사 ”를 “ 조교수 ”로 한다.

2(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5제1항제1호나목 및 제11조의7제2호 중 “ 전임강사 ”를 각각 “ 조교수 ”로 한다.

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5호 중 “ 전임강사 ”를 “ 조교수 ”로 한다.

3!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전임강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

3@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 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전임강사 ”를 “ 부교수 또는 조교수 ”로 한다.

별표 2 중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전임강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

3#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5제1항제2호 중 “ 전임강사 ”를 “ 조교수 ”로 한다.
3$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1호 중 “ 5년 이상(전임강사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 ”을 “ 5년 이상 ”으로 한다.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경영 분야란 제2호 중 “ 전임강사 ”를 “ 조교수 ”로 한다.
별표 2 기술 분야란 제2호 중 “ 전임강사 ”를 “ 조교수 ”로 한다.
3^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 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 ”를 “ 부교수 및 조교수 ”로 한다.
3&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제1항제2호 중 “ 전임강사 ”를 “ 조교수 ”로 한다.
3*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1호나목 중 “ 전임강사 ”를 “ 조교수 ”로 한다.
3(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 조교수ㆍ전임강사 ”를 “ 조교수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 부교수ㆍ조교수와 전임강사 ”를 “ 부교수와 조교수 ”로 한다.
제15조제4항 중 “ 전임강사ㆍ강사 ”를 “ 강사 ”로 한다.
4) 상법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2. 4. 10.>
제37조제2항제2호 중 “ 전임강사 ”를 “ 조교수 ”로 한다.
4!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5항제2호 중 “ 전임강사 ”를 “ 조교수 ”로 한다.
4@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중 “ 전임강사 ”를 “ 조교수 ”로 한다.
4#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제2호 중 “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을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으로, “ 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전임강사 ”를 “ 부교수 또는 조교수 ”로 한다.
4$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2호 중 “ 전임강사 ”를 “ 조교수 ”로 한다.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2호 중 “ 전임강사 ”를 “ 조교수 ”로 한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9제2호 중 “ 전임강사 ”를 “ 조교수 ”로 한다.
4&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마목 중 “ 전임강사 ”를 “ 조교수 ”로 한다.

4*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 중 “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을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으로 한다.
4(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 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 ”를 “ 부교수 및 조교수 ”로 한다.
5) 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 전임강사 ”를 “ 조교수 ”로 한다.
<51> 1인 창조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인력의 지정기준란 제1호 중 “ 전임강사 ”를 각각 “ 조교수 ”로 한다.
<5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2호 중 “ 전임강사 ”를 “ 조교수 ”로 한다.
<5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4항제2호다목 중 “ 전임강사 ”를 “ 조교수 ”로 한다.
<54> 정신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2호 중 “ 전임강사 ”를 “ 조교수 ”로 한다.
별표 2 1급 정신보건간호사란 제3호 중 “ 전임강사 ”를 “ 조교수 ”로 한다.
<55>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경영분야란 제1호 중 “ 전임강사 ”를 “ 조교수 ”로 하고, 같은 표 기술분야란 제3호 중 “ 전임강사 ”를 “ 조교수 ”로 한다.
<56>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5호 중 “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을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으로, “ 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전임강사 ”를 “ 부교수 또는 조교수 ”로 한다.
<57>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전단 중 “ 조교수ㆍ전임강사 ”를 “ 조교수 ”로 한다.
<58>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5제2항제3호 중 “ 조교수, 전임강사 ”를 “ 조교수 ”로 한다.
<59>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교육 및 연구분야란 중 3. 연구업무수당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
|---|---|---|
| 3. 연구 업무 수당 | 가. 연구직공무원 | 월 80,000원<br>(가산금)<br>3급 상당 직위에 임용된 연구관에게는 월 6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 | 나.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직접 강의를 담당하는 공무원(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조교는 제외한다) | ·5급·지방소방령 이상: 월 60,000원<br>·6급·지방소방경 이하: 월 40,000원<br><br>(비 고)<br>지급대상란의 나목의 해당자가 다목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각각 병급할 수 있다. |
| | 다.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원장, 부장,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 | ·원장: 월 110,000원<br>·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 월 110,000원 이하<br>·부장: 월 100,000원<br><br>(비 고)<br>교수, 부교수 또는 조교수가 부장인 경우에는 교수, 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월지급액을 적용한다. |

**<60>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6항제2호 중 “조교수나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61>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55조제3항 중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각각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6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63> 한국과학기술원학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대학의 전임강사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연구실적연수나 교육경력연수가 2년이상, 조교수는”을 “조교수는”으로 한다.**

**<64>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 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전임강사 ”를 “ 부교수 또는 조교수 ”로 한다.

<65>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 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 ”를 “ 부교수 및 조교수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 조교수, 전임강사 ”를 “ 조교수 ”로 한다.

<66>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 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전임강사 ”를 “ 부교수 또는 조교수 ”로 한다.

<67>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 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 ”를 “ 부교수 및 조교수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 조교수ㆍ전임강사 ”를 “ 조교수 ”로 한다.

제8조의2 중 “ 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전임강사 ”를 “ 부교수 또는 조교수 ”로 한다.

<68> 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 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 ”를 “ 부교수 및 조교수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 조교수ㆍ전임강사 ”를 “ 조교수 ”로 한다.

<69>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 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전임강사 ”를 “ 부교수 또는 조교수 ”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 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 ”를 “ 부교수 및 조교수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 조교수ㆍ전임강사 ”를 “ 조교수 ”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3720호,2012. 4. 10.>(상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대통령령 제23644호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40항 중 “ 제16조제2항제2호 ”를 “ 제37조제2항제2호 ”로 한다.

**제9조** 생략

**부칙** <제24423호,2013. 3. 2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4) 까지 생략

4!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1항제2호, 같은 항 제3호 본문 및 같은 항 제4호 중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을 각각 “ 교육부장관 ”으로 한다.
4@ 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 <제25050호,2013. 12. 30.>(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9814호,2019. 6. 11.>

이 영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875호,2024. 9.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실적의 환산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교원 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6220호,2026. 3. 24.>(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개정 2019. 6. 11.>

**교원 및 조교의 자격기준**(제2조, 제2조의2, 제3조, 제4조, 제4조의2 및 제11조 관련)

(단위: 년)

| 학력 / 연구·교육 경력연수 / 직명 | 대학졸업자·동등자격자 | | | 전문대학졸업자·동등자격자 | | |
|---|---|---|---|---|---|---|
| | 연구실적 연수 | 교육경력 연수 | 계 | 연구실적 연수 | 교육경력 연수 | 계 |
| 교수 | 4 | 6 | 10 | 5 | 8 | 13 |
| 부교수 | 3 | 4 | 7 | 4 | 6 | 10 |
| 조교수 | 2 | 2 | 4 | 3 | 4 | 7 |
| 강사 | 1 | 1 | 2 | 1 | 2 | 3 |
| 조교 | 근무하려는 학교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학력이 있는 사람 | | | | | |

비고: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 중 어느 하나가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의 합계가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2.2.29>

# 대학교원자격 인정신청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 리 기 간 30 일 |
|---|---|---|

| | | |
|---|---|---|
| 신 청 인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　　)대학 (　　)자격의 인정을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학인사위원회위원장
교원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 | |
|---|---|---|
| 첨부서류 | 1. 논문 또는 저서 7부<br>2. 연구실적요지서 7부<br>3. 이력서와 경력증명서(자격인정에 필요한 것에 한함) 각 1부<br>4. 학력증명서 1부<br>※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수수료<br>없 음 |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심 사 → 결 정 → 신청자에게 통지

신청인　　처 리 기 관 : 대학인사위원회 또는 교원인사위원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2.2.29>

제　　호

# 대학교원자격인정서

성 명

생 년 월 일　　년　　월　　일생

전 공 과 목

인 정 직 위　　대학

논 문 제 목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1조제2항에 따라 귀하가 신청한 대학교원 자격인정에 관하여 위와 같이 인정합니다.

년　　월　　일

**대학인사위원회위원장**
**교원인사위원회위원장**　　직인

210㎜×297㎜(백상지 120g/㎡)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타법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라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강사 및 조교의 자격기준 및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3. 2. 8., 1998. 2. 24., 2012. 2. 29., 2019. 6. 11.>

**제2조(교원 및 조교의 자격)**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강사(이하 "교원"이라 한다) 또는 조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0. 7. 10., 2012. 2. 29., 2019. 6. 11.>

1. 별표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교육공무원법」 제5조에 따른 대학인사위원회 또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3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의 인정을 받은 사람(교원의 경우에 한한다)

[본조신설 1998. 2. 24.]
[제목개정 2012. 2. 29.]
[종전 제2조는 제2조의2로 이동<1998ㆍ2ㆍ24>]

**제2조의2(동등자격자의 범위)** ①별표에 규정된 전문대학(기술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과 종전의 2년제교육대학ㆍ초급대학ㆍ전문학교ㆍ실업고등전문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와 동등자격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78. 12. 30., 1991. 2. 1., 1998. 2. 24., 2001. 1. 29., 2008. 2. 29., 2008. 6. 5., 2013. 3. 23.>

1.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1945년이후종전의규정에의한학교졸업자자격인정령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급대학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자로 인정된 자
3. 전문대학과 동등정도의 학교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교의 졸업자 및 종전에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았던 학교의 졸업자
4. 외국에서 14년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전문대학정도의 전공과정을 2년이상 전공한 자

②별표에 규정된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기술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의 학사학위과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와 동등자격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1. 2. 1., 1998. 2. 24., 2001. 1. 29., 2008. 2. 29., 2008. 6. 5., 2013. 3. 23.>

1.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1조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자

2. 1945년이후종전의규정에의한학교졸업자자격인정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자로 인정된 자
3. 대학과 동등정도의 학교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교의 졸업자 및 종전에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았던 학교의 졸업자
4. 외국에서 16년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대학정도의 전공과정을 3년이상 전공한 자

③교육부장관이 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에 의하여 학교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1. 2. 1., 2001. 1. 29., 2008. 2. 29., 2013. 3. 23.>

[제2조에서 이동<1998ㆍ2ㆍ24>]

**제3조(연구실적 및 교육경력의 범위)** ①별표에 규정된 연구실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적 또는 경력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실적 및 경력은 대학ㆍ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정도의 학교를 졸업한 후의 실적 또는 경력으로 하되, 제11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 2. 24., 2000. 7. 10., 2012. 2. 29., 2024. 9. 10.>

1. 교원이 담당하는 학과목과 관련하여 대학 기타 연구기관에서 연구한 실적
2. 산업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시설에서 교원이 담당하는 학과목과 관련되는 직무에 근무한 경력

②별표에 규정된 교육경력은 대학ㆍ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정도의 학교의 교육경력으로 한다.<개정 1978. 12. 30., 1998. 2. 24.>

**제4조(연구실적의 환산율)** ①별표에 규정된 연구실적은 다음 각호의 환산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1978. 12. 30., 1983. 3. 18., 1991. 2. 1., 1995. 3. 25., 1997. 6. 17., 1998. 2. 24., 2000. 7. 10., 2001. 1. 29., 2002. 1. 14., 2007. 7. 3., 2008. 2. 29., 2013. 3. 23., 2024. 9. 10.>

1. 대학ㆍ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정도의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학술연구(실험ㆍ실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대학ㆍ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정도의 학교에서 행한 연구실적은 100퍼센트
2.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한 연구기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시설에서 전임으로 연구에 종사한 실적은 100퍼센트
3.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시설에서 연구를 주로하거나 전문학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종사한 실적(제5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은 30퍼센트부터 70퍼센트까지. 다만, 그 직무가 순수연구업무와 동일시 될 때에는 100퍼센트까지 인정할 수 있다.
4.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 기관 또는 시설에서 전공학과 및 그에 관련되는 학과의 학문분야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한 경력(제5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은 70퍼센트부터 100퍼센트까지
5.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 기관 또는 시설에서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이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료행위(이하 이 호에서 "의료행위"라 한다

)를 하거나 의료행위와 관련되는 직무에 종사한 경력은 100퍼센트

②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환산율의 산출기준은 학교장이 정한다.<개정 1991. 2. 1., 2000. 7. 10., 2007. 7. 3.>

**제4조의2(자격인정과 자격기준의 관계)** 제14조에 따라 자격인정을 받아 교원으로 임용된 사람은 그 직에서 상위의 직에 임용되는 경우에 그 자격인정을 받은 직에 해당하는 별표의 학력、연구실적 및 교육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8. 2. 24., 2012. 2. 29.>
[본조신설 1984. 8. 3.]

## 제2장 삭제 <2000. 7. 10.>

**제5조** 삭제 <2000. 7. 10.>

**제6조** 삭제 <2000. 7. 10.>

**제7조** 삭제 <2000. 7. 10.>

**제8조** 삭제 <2000. 7. 10.>

**제9조** 삭제 <2000. 7. 10.>

**제10조** 삭제 <2000. 7. 10.>

## 제3장 자격인정

**제11조(자격인정의 대상)**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을 받아 교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71、12、31, 1978.12.30, 1984.8.3, 1991.2.1, 1998.2.24, 2000.7.10, 2012.2.29>

1. 대학、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그 졸업 또는 자격취득후 별표의 직명별 연구실적과 교육경력의 합계연도의 2분의 1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2. 대학、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그 졸업 또는 자격취득후 별표의 연구실적 연수와 대학、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정도의 학교이외의 학교에서 별표의 교육경력 연수에 해당하는 연수의 교육경력을 가진 자. 이 경우에 교육학、윤리학등 학교장이 특히 인정하는 학과목의 교육경력 연수는 이를 연구실적 연수로 대체할 수 있다.
3. 국내의 학교교육으로는 이수할 수 없었거나 곤란하였던 학과목을 담당할 자로서 연구실적이 별표의 연구실적 연수에 해당하거나, 논문、저서 기타 연구업적이 현저하나 학력이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4.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과학계의 연구관 또는 5급이상의 농촌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

**제12조(자격인정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원자격의 인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1973. 2. 8., 1984. 8. 3., 1998. 2. 24., 2012. 2. 29., 2019. 6. 11.>

**제13조(자격인정의 신청)** 교원자격의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학교원 자격인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장을 거쳐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 위원장 " 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0. 7. 10., 2012. 2. 29.>

1. 논문 또는 저서 7부
2. 연구실적요지서 7부
3. 이력서와 경력증명서(자격인정에 필요한 것에 한함) 각 1부
4. 학력증명서 1부

[전문개정 1972. 7. 28.]

**제14조(자격심사)** ①각 위원장은 교원자격의 인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교원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신청인 1명에 대하여 3명 이상의 예비심사위원을 선정하여 논문 기타 자료의 심사를 위촉한다. <개정 1998. 2. 24., 2000. 7. 10., 2012. 2. 29.>

②예비심사위원은 지정기일내에 심사를 완결하고 각기 의견을 첨부하여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각 위원장은 제2항의 예비심사보고를 받은 때에는 각 위원회를 소집하여 인정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00. 7. 10.>

**제15조(자료의 조사등)** 각 위원회는 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을 각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보충자료의 제출 또는 실험등을 명하거나 관계기관에 대하여 그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00. 7. 10.>

**제16조(의결정족수)** 각 위원회의 의사는 위원장ㆍ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자격인정의 결정에 있어서는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행한다. <개정 1978. 12. 30., 2000. 7. 10.>

**제17조(위원의 제척)** ①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과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는 그 신청인에 대한 예비심사 또는 각 위원회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00. 7. 10.>

②제1항에 의하여 제척된 위원은 제16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재적위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8ㆍ12ㆍ30, 1998.2.24>

**제18조(신청직이하의 자격인정)** 각 위원회는 신청인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신청한 직이하의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0. 7. 10.>

**제19조(위원에 대한 실비변상)** 각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 7. 10.]

**제20조(자격인정의 무효등)** ①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자격인정을 받거나, 또는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심사를 중지 또는 무효로 한다.
②제1항의 중지 또는 무효의 결정을 받은 자는 그 결정일로부터 2년이내에 자격인정을 신청할 수 없다.

**제21조(심사결과의 통지)** ①각 위원회에서 자격인정의 여부가 결정된 때에는 위원장은 학교장을 거쳐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한다. <개정 2000. 7. 10.>
②제1항에 따라 자격인정이 결정된 사람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대학교원자격인정서를 발급한다.<신설 1972. 7. 28., 2012. 2. 29.>

**제22조(수수료)** ①각 위원회는 자격인정에 있어서 그 신청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0. 7. 10.>
②제1항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개정 1991. 2. 1., 2000. 7. 10.>

**제23조** 삭제 <2026. 3. 24.>

**부칙** <제4395호,1969. 12. 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48호,1971.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07호,1972. 7. 2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93호,1973. 2. 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59호,1978. 12. 30.>
①(시행일) 이 영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초급대학ㆍ전문학교 및 실업고등전문학교는 이 영에 의한 전문대학으로 본다.

**부칙** <제11075호,1983. 3. 1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82호,1984. 8. 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55호,1988. 12. 19.>(서식중본적란삭제를위한상훈법시행령등의일부개정령)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영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3282호,1991. 2. 1.>(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교수자격인정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내지 제3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2항ㆍ제3항, 제7조 및 제11조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 으로 하고, 제5조중 "문교부에"를 "교육부에"로 하며, 제6조제2항중 "문교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동조제3항 및 제10조제2항중 "문교부"를 각각 "교육부"로 하고, 제22조제2항 및 제23조중 "문교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⑬내지 <148>생략

**부칙** <제14553호,1995. 3. 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96호,1997. 6. 17.>(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교수자격인정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본문중 “ 개방대학 및 전문대학 ”을 “ 개방대학ㆍ기술대학 및 전문대학 ”으로 한다.

**부칙** <제15666호,1998. 2. 24.>

①(시행일) 이 영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교수자격인정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교수자격인정령 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5942호,1998. 12. 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01호,2000. 7. 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15호,2001. 1. 29.>(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호ㆍ제2항제3호ㆍ제3항 및 제4조제1항제2호ㆍ제3호중 “ 교육부장관 ”을 각각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으로 한다.

⑬내지 <152>생략

**부칙** <제17485호,2002. 1. 14.>

이 영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4호,2007. 7. 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채용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740호,2008. 2. 29.>(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호、제2항제3호、제3항, 제4조제1항제2호、제3호 본문 및 제4호 중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을 각각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으로 한다.

⑦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 <제20797호,2008. 6. 5.>(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을 각각 "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 "으로 한다.

④ 부터1* 까지 생략

**부칙** <제23644호,2012.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2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 중 전임강사에 관한 부분과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임강사 경력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3조제1항, 제15항, 제16항, 제24항, 제25항, 제28항, 제29항, 제30항, 제33항, 제34항, 제37항, 제38항, 제40항, 제41항, 제42항, 제44항, 제45항, 제46항, 제47항, 제50항, 제51항, 제52항 및 제5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임강사 경력은 해당 규정에 따른 조교수 경력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나목1) 중 " 전임강사 "를 " 조교수 "로 한다.

②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제2호 중 "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을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으로, " 대학전임강사 "를 " 조교수 "로 한다.

③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 조교수ㆍ전임강사 ”를 “ 조교수 ”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 전임강사ㆍ교수요원 ”을 “ 교수요원 ”으로 한다.
④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중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전임강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

⑤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2호 중 “ 전임강사 ”를 “ 조교수 ”로 한다.
⑥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호 중 “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을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으로, “ 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전임강사 ”를 “ 부교수 또는 조교수 ”로 한다.
⑦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2호가목5) 중 “ 조교수ㆍ전임강사 ”를 “ 조교수 ”로 한다.
별표 11 제2호가목6)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전임강사 ”를 “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조교수 ”로, “ 조교수 및 전임강사 ”를 “ 조교수 ”로 한다.
별표 11 제2호가목9) 및 같은 목 9)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 조교수ㆍ전임강사 ”를 각각 “ 조교수 ”로 한다.
별표 11 제3호가목1)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가) 중 “ 기능6급 이상ㆍ전임강사 및 경감 ”을 “ 기능6급 및 경감 ”으로 한다.
⑧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가목 중 “ 조교수 및 전임강사 ”를 “ 조교수 ”로 한다.
⑨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제3호 중 “ 조교수ㆍ전임강사 ”를 “ 조교수 ”로 한다.
⑩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중 교육공무원(사립학교 교원 포함)란 중 대학(교육대학ㆍ전문대학 포함)교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 | | | | |
|---|---|---|---|---|---|---|---|
| 대학(교육대학ㆍ전문대학 포함) | 교수 | 부교수 | 조교수 | | | | |

⑪ 관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2항제3호 중 “ 전임강사 ”를 “ 조교수 ”로 한다.
⑫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 임용제청을 하고자 하거나 전임강사를 임용하고자 할 때의 그 임용제청 또는 임용의 ”를 “ 임용제청을 하려고 할 때 그 임용제청의 ”로 한다.
⑬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제1호다목 중 “ 조교수 및 전임강사 ”를 “ 조교수 ”로 한다.

⑭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5호 중 “ 조교수ㆍ전임강사 ”를 “ 조교수 ”로 한다.

⑮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2호라목 중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른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 또는 동법 제2조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대학 ”을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로 한다.

1^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3호 중 “ 전임강사 ”를 “ 조교수 ”로 한다.

1&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6급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 | | | | | | | | | | |
|---|---|---|---|---|---|---|---|---|---|---|---|---|---|
| 6급 | 기능직 기능1급 ~ 6급 | 6급 | 기능직 기능1급 ~ 6급 | 6급 | 대위 3년 미만 중위 3년 이상 | 경감 경위 | 소방경 소방위 | | | | 계장 (대리) | 과장 (차장) | |

1*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 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 ”를 “ 부교수 및 조교수 ”로 한다.

1(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 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전임강사 ”를 “ 부교수 또는 조교수 ”로 한다.

2) 국방대학교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 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 ”를 “ 부교수 및 조교수 ”로 한다.

2!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중 교육공무원(사립학교 교원 포함)란 중 대학(교육대학ㆍ전문대학 포함)교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 | | | | | | |
|---|---|---|---|---|---|---|---|---|---|
| 대학(교육대학ㆍ전문대학 포함) | 교수 3년 이상 | 교수 | 부교수 | 조교수 | | | | | |

2@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4조제1항제2호 중 “ 전임강사 ”를 “ 조교수 ”로 한다.

2#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호가목ㆍ나목, 제16조 단서 및 제17조제1항제2호 본문 중 “ 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 ”를 각각 “ 부교수 및 조교수 ”로 한다.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호 중 “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을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으로, “ 교수 ”를 “ 대학교원 ”으로 한다.
별표 1 중 2급란 제3호 중 “ 전임강사 ”를 “ 조교수 ”로 한다.
별표 1의2 중 전임강사란을 삭제한다.
2%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2호 중 “ 전임강사 ”를 “ 조교수 ”로 한다.
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경영 분야란 제2호 중 “ 전임강사 ”를 “ 조교수 ”로 하고, 같은 표 기술 분야란 제2호 중 “ 전임강사 ”를 “ 조교수 ”로 한다.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 중 “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을 각각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으로, “ 교수 ”를 각각 “ 대학교원 ”으로 한다.
2*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농작물재해보험란 제4호 중 “ 전임강사 ”를 “ 조교수 ”로 한다.
별표 2 임산물재해보험란 제4호 중 “ 전임강사 ”를 “ 조교수 ”로 한다.
별표 2 가축재해보험란 제4호 중 “ 전임강사 ”를 “ 조교수 ”로 한다.
별표 2 양식수산물재해보험란 제4호 중 “ 전임강사 ”를 “ 조교수 ”로 한다.
2(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5제1항제1호나목 및 제11조의7제2호 중 “ 전임강사 ”를 각각 “ 조교수 ”로 한다.
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5호 중 “ 전임강사 ”를 “ 조교수 ”로 한다.
3!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전임강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

3@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 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전임강사 ”를 “ 부교수 또는 조교수 ”로 한다.
별표 2 중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전임강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

3#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5제1항제2호 중 “ 전임강사 ”를 “ 조교수 ”로 한다.
3$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1호 중 “ 5년 이상(전임강사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 ”을 “ 5년 이상 ”으로 한다.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경영 분야란 제2호 중 “ 전임강사 ”를 “ 조교수 ”로 한다.
별표 2 기술 분야란 제2호 중 “ 전임강사 ”를 “ 조교수 ”로 한다.
3^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 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 ”를 “ 부교수 및 조교수 ”로 한다.
3&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제1항제2호 중 “ 전임강사 ”를 “ 조교수 ”로 한다.
3*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1호나목 중 “ 전임강사 ”를 “ 조교수 ”로 한다.
3(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 조교수ㆍ전임강사 ”를 “ 조교수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 부교수ㆍ조교수와 전임강사 ”를 “ 부교수와 조교수 ”로 한다.
제15조제4항 중 “ 전임강사ㆍ강사 ”를 “ 강사 ”로 한다.
4) 상법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2. 4. 10.>
제37조제2항제2호 중 “ 전임강사 ”를 “ 조교수 ”로 한다.
4!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5항제2호 중 “ 전임강사 ”를 “ 조교수 ”로 한다.
4@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중 “ 전임강사 ”를 “ 조교수 ”로 한다.
4#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제2호 중 “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을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으로, “ 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전임강사 ”를 “ 부교수 또는 조교수 ”로 한다.
4$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2호 중 “ 전임강사 ”를 “ 조교수 ”로 한다.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2호 중 “ 전임강사 ”를 “ 조교수 ”로 한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9제2호 중 “ 전임강사 ”를 “ 조교수 ”로 한다.
4&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마목 중 “ 전임강사 ”를 “ 조교수 ”로 한다.
4*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 중 “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을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으로 한다.
4(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 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 ”를 “ 부교수 및 조교수 ”로 한다.

5) 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 전임강사 ”를 “ 조교수 ”로 한다.
<51> 1인 창조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인력의 지정기준란 제1호 중 “ 전임강사 ”를 각각 “ 조교수 ”로 한다.
<5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2호 중 “ 전임강사 ”를 “ 조교수 ”로 한다.
<5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4항제2호다목 중 “ 전임강사 ”를 “ 조교수 ”로 한다.
<54> 정신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2호 중 “ 전임강사 ”를 “ 조교수 ”로 한다.
별표 2 1급 정신보건간호사란 제3호 중 “ 전임강사 ”를 “ 조교수 ”로 한다.
<55>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경영분야란 제1호 중 “ 전임강사 ”를 “ 조교수 ”로 하고, 같은 표 기술분야란 제3호 중 “ 전임강사 ”를 “ 조교수 ”로 한다.
<56>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5호 중 “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을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으로, “ 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전임강사 ”를 “ 부교수 또는 조교수 ”로 한다.
<57>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전단 중 “ 조교수ㆍ전임강사 ”를 “ 조교수 ”로 한다.
<58>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5제2항제3호 중 “ 조교수, 전임강사 ”를 “ 조교수 ”로 한다.
<59>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교육 및 연구분야란 중 3. 연구업무수당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
|---|---|---|
| 3. 연구 업무 수당 | 가. 연구직공무원 | 월 80,000원<br>(가산금)<br>3급 상당 직위에 임용된 연구관에게는 월 6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 | 나.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직접 강의를 담당하는 공무원(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조교는 제외한다) | ·5급·지방소방령 이상: 월 60,000원<br>·6급·지방소방경 이하: 월 40,000원<br><br>(비 고)<br>지급대상란의 나목의 해당자가 다목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각각 병급할 수 있다. |
| | 다.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원장, 부장,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 | ·원장: 월 110,000원<br>·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 월 110,000원 이하<br>·부장: 월 100,000원<br><br>(비 고)<br>교수, 부교수 또는 조교수가 부장인 경우에는 교수, 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월지급액을 적용한다. |

**<60>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6항제2호 중 “조교수나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61>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55조제3항 중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각각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6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63> 한국과학기술원학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대학의 전임강사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연구실적연수나 교육경력연수가 2년이상, 조교수는”을 “조교수는”으로 한다.**

**<64>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 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전임강사 ”를 “ 부교수 또는 조교수 ”로 한다.

<65>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 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 ”를 “ 부교수 및 조교수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 조교수, 전임강사 ”를 “ 조교수 ”로 한다.

<66>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 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전임강사 ”를 “ 부교수 또는 조교수 ”로 한다.

<67>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 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 ”를 “ 부교수 및 조교수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 조교수ㆍ전임강사 ”를 “ 조교수 ”로 한다.

제8조의2 중 “ 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전임강사 ”를 “ 부교수 또는 조교수 ”로 한다.

<68> 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 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 ”를 “ 부교수 및 조교수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 조교수ㆍ전임강사 ”를 “ 조교수 ”로 한다.

<69>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 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전임강사 ”를 “ 부교수 또는 조교수 ”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 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 ”를 “ 부교수 및 조교수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 조교수ㆍ전임강사 ”를 “ 조교수 ”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3720호,2012. 4. 10.>(상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대통령령 제23644호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40항 중 “ 제16조제2항제2호 ”를 “ 제37조제2항제2호 ”로 한다.

**제9조** 생략

**부칙** <제24423호,2013. 3. 2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4) 까지 생략

4!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1항제2호, 같은 항 제3호 본문 및 같은 항 제4호 중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을 각각 “ 교육부장관 ”으로 한다.
4@ 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 <제25050호,2013. 12. 30.>(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9814호,2019. 6. 11.>

이 영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875호,2024. 9.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실적의 환산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교원 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6220호,2026. 3. 24.>(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개정 2019. 6. 11.>

**교원 및 조교의 자격기준**(제2조, 제2조의2, 제3조, 제4조, 제4조의2 및 제11조 관련)

(단위: 년)

| 학력 / 연구·교육 경력연수 / 직명 | 대학졸업자·동등자격자 | | | 전문대학졸업자·동등자격자 | | |
|---|---|---|---|---|---|---|
| | 연구실적 연수 | 교육경력 연수 | 계 | 연구실적 연수 | 교육경력 연수 | 계 |
| 교수 | 4 | 6 | 10 | 5 | 8 | 13 |
| 부교수 | 3 | 4 | 7 | 4 | 6 | 10 |
| 조교수 | 2 | 2 | 4 | 3 | 4 | 7 |
| 강사 | 1 | 1 | 2 | 1 | 2 | 3 |
| 조교 | 근무하려는 학교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학력이 있는 사람 | | | | | |

비고: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 중 어느 하나가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의 합계가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2.2.29>

# 대학교원자격 인정신청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 리 기 간 30 일 |
|---|---|---|

| | | |
|---|---|---|
| 신 청 인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　　)대학 (　　)자격의 인정을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학인사위원회위원장
교원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 | |
|---|---|---|
| 첨부서류 | 1. 논문 또는 저서 7부<br>2. 연구실적요지서 7부<br>3. 이력서와 경력증명서(자격인정에 필요한 것에 한함) 각 1부<br>4. 학력증명서 1부<br>※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수수료<br>없 음 |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심 사 → 결 정 → 신청자에게 통지

신청인　　처 리 기 관 : 대학인사위원회 또는 교원인사위원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2.2.29>

제　　호

# 대학교원자격인정서

성 명

생 년 월 일　　년　　월　　일생

전 공 과 목

인 정 직 위　　대학

논 문 제 목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1조제2항에 따라 귀하가 신청한 대학교원 자격인정에 관하여 위와 같이 인정합니다.

년　　월　　일

**대학인사위원회위원장**
**교원인사위원회위원장**　　직인

210㎜×297㎜(백상지 120g/㎡)

#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 · 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

[시행 2018. 8. 30.] [교육부령 제161호, 2018. 8. 30., 일부개정]

교육부 (대입정책과) 044 - 203 - 688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등교육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입의 항목 및 산정방법)** 입학전형료 결정의 기준이 되는 수입의 항목은 입학전형료이며, 입학전형료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당 및 경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8. 8. 30.>

**제3조(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 ① 입학전형료 결정의 기준이 되는 지출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8. 30.>

1. 수당: 입학전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비용. 이 경우 수당은 실비(實費)를 지급하는 것 외에 성과급 등 다른 목적으로 지급해서는 아니 된다.
   가. 출제 수당: 논술 및 실기 등 문제 출제에 따른 비용
   나. 감독 수당: 논술 및 실기 등 시험 감독에 따른 비용
   다. 평가 수당: 서류, 논술 및 실기 등의 채점 및 평가에 따른 비용
   라. 준비ㆍ진행 수당: 면접, 논술 및 실기 등 입학전형 준비 및 진행에 따른 비용
   마. 전형안내 수당: 설명회 및 박람회의 개최 등 입학전형 홍보에 따른 비용
   바. 회의 수당: 대학이 주최하는 입학전형 관련 회의의 참석에 따른 비용
2. 경비: 입학전형 관련 업무에 사용하는 비용 중 수당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홍보비: 입학전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설명회 개최, 박람회 참여, 입학에 관한 홍보자료나 입학전형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 이 경우 홍보비는 홍보물품을 제작하거나 구입하는 데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나. 회의비: 입학전형 관련 회의를 개최하는 데 드는 비용
   다. 업무위탁 수수료: 입학전형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데 드는 비용
   라. 인쇄비: 입학원서, 모집요강 및 안내책자 등 입학전형 관련 인쇄물 제작 등에 드는 비용
   마. 자료 구입비: 입학전형 업무 수행에 따른 자료의 구입비용
   바. 소모품비: 입학전형 업무 수행에 따른 소모품의 구입비용
   사. 공공요금: 입학전형 업무 수행에 따른 전기료, 수도료, 통신료, 난방비 및 우편료 등의 비용
   아. 식비: 입학전형 업무 수행에 따른 식비
   자. 여비: 입학전형 업무 수행에 따른 출장비

차. 주차료: 입학전형 업무 수행에 따른 주차료

카. 시설 사용료: 입학전형 업무 수행에 따른 시설 사용료

3. 삭제<2018. 8. 30.>

4. 삭제<2018. 8. 30.>

5. 삭제<2018. 8. 30.>

6. 삭제<2018. 8. 30.>

7. 삭제<2018. 8. 30.>

8. 삭제<2018. 8. 30.>

9. 삭제<2018. 8. 30.>

10. 삭제<2018. 8. 30.>

11. 삭제<2018. 8. 30.>

12. 삭제<2018. 8. 30.>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당과 경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지급단가 등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등 대학별 입학전형 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신설 2018. 8. 30.>

1. 수당은 전형별 지원자 수를 예측하여 투입인원, 투입시간 등을 정하고 대학별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경비는 전형별 지원자 수를 예측하여 투입인원, 투입시간, 수량, 면적, 횟수 등을 정하고 대학별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③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홍보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8. 8. 30.>

1. 입학정원이 1,300명 미만인 대학: 전형료 총지출의 35퍼센트

2. 입학정원이 1,300명 이상 2,500명 미만인 대학: 전형료 총지출의 25퍼센트

3. 입학정원이 2,500명 이상인 대학: 전형료 총지출의 15퍼센트

**부칙** <제15호,2013. 11.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호,2018. 8.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 · 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

[시행 2018. 8. 30.] [교육부령 제161호, 2018. 8. 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등교육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입의 항목 및 산정방법)** 입학전형료 결정의 기준이 되는 수입의 항목은 입학전형료이며, 입학전형료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당 및 경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8. 8. 30.>

**제3조(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 ① 입학전형료 결정의 기준이 되는 지출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8. 30.>

1. 수당: 입학전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비용. 이 경우 수당은 실비(實費)를 지급하는 것 외에 성과급 등 다른 목적으로 지급해서는 아니 된다.
   가. 출제 수당: 논술 및 실기 등 문제 출제에 따른 비용
   나. 감독 수당: 논술 및 실기 등 시험 감독에 따른 비용
   다. 평가 수당: 서류, 논술 및 실기 등의 채점 및 평가에 따른 비용
   라. 준비ㆍ진행 수당: 면접, 논술 및 실기 등 입학전형 준비 및 진행에 따른 비용
   마. 전형안내 수당: 설명회 및 박람회의 개최 등 입학전형 홍보에 따른 비용
   바. 회의 수당: 대학이 주최하는 입학전형 관련 회의의 참석에 따른 비용
2. 경비: 입학전형 관련 업무에 사용하는 비용 중 수당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홍보비: 입학전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설명회 개최, 박람회 참여, 입학에 관한 홍보자료나 입학전형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 이 경우 홍보비는 홍보물품을 제작하거나 구입하는 데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나. 회의비: 입학전형 관련 회의를 개최하는 데 드는 비용
   다. 업무위탁 수수료: 입학전형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데 드는 비용
   라. 인쇄비: 입학원서, 모집요강 및 안내책자 등 입학전형 관련 인쇄물 제작 등에 드는 비용
   마. 자료 구입비: 입학전형 업무 수행에 따른 자료의 구입비용
   바. 소모품비: 입학전형 업무 수행에 따른 소모품의 구입비용
   사. 공공요금: 입학전형 업무 수행에 따른 전기료, 수도료, 통신료, 난방비 및 우편료 등의 비용
   아. 식비: 입학전형 업무 수행에 따른 식비
   자. 여비: 입학전형 업무 수행에 따른 출장비
   차. 주차료: 입학전형 업무 수행에 따른 주차료

카. 시설 사용료: 입학전형 업무 수행에 따른 시설 사용료

3. 삭제<2018. 8. 30.>

4. 삭제<2018. 8. 30.>

5. 삭제<2018. 8. 30.>

6. 삭제<2018. 8. 30.>

7. 삭제<2018. 8. 30.>

8. 삭제<2018. 8. 30.>

9. 삭제<2018. 8. 30.>

10. 삭제<2018. 8. 30.>

11. 삭제<2018. 8. 30.>

12. 삭제<2018. 8. 30.>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당과 경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지급단가 등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등 대학별 입학전형 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신설 2018. 8. 30.>

1. 수당은 전형별 지원자 수를 예측하여 투입인원, 투입시간 등을 정하고 대학별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경비는 전형별 지원자 수를 예측하여 투입인원, 투입시간, 수량, 면적, 횟수 등을 정하고 대학별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③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홍보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8. 8. 30.>

1. 입학정원이 1,300명 미만인 대학: 전형료 총지출의 35퍼센트

2. 입학정원이 1,300명 이상 2,500명 미만인 대학: 전형료 총지출의 25퍼센트

3. 입학정원이 2,500명 이상인 대학: 전형료 총지출의 15퍼센트

**부칙** <제15호,2013. 11.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호,2018. 8.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시행 2022. 2. 18.] [대통령령 제32447호, 2022. 2. 17., 타법개정]

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 044 - 203 - 6531

**제1조(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43조의2 및 제51조에 따라 국립ㆍ공립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두는 방송통신중학교와 국립ㆍ공립 고등학교에 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설치ㆍ교육과정ㆍ교육방법ㆍ수업연한ㆍ입학자격 및 학력인정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1. 6.>

[전문개정 2011. 8. 22.]

**제2조(설치)** ① 국립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두는 방송통신중학교와 국립 고등학교에 두는 방송통신고등학교는 교육부장관이 설치한다. <개정 2013. 3. 23.>

② 공립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두는 방송통신중학교와 공립 고등학교에 두는 방송통신고등학교는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설치한다.

[전문개정 2012. 11. 6.]

**제3조(교육과정)** ① 국립 방송통신고등학교에 두는 학과는 교육부장관이 정하고, 공립 방송통신고등학교에 두는 학과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② 방송통신중학교와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과에 관하여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각 교과의 교수(敎授) 요지, 과목, 수업시간수, 그 밖에 학습활동에 관한 사항은 국립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고, 공립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11. 6.]

**제3조의2(학교 외 학습경험의 인정 등)** ① 방송통신중학교의 장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습경험이 있는 학생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방송통신중학교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과목 이수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6., 2013. 3. 23., 2017. 12. 29., 2022. 2. 17.>

1. 「평생교육법」 제23조에 따라 평가인정된 학습과정을 통한 학습경험

1의2. 방송통신중학교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 입학 전에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의 과목 이수

2. 방송통신중학교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 입학 전에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에서의 과목 이수

3. 방송통신중학교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 입학 전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1호 또는 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검정고시에서의 과목 합격
4. 「자격기본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가자격이나 국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의 취득
5.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의 학습경험
6.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학원에서의 학습경험
7. 그 밖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방송통신중학교의 장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이 학칙으로 정하는 학교 외 학습경험

② 방송통신중학교의 장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과목 이수를 인정할 때에는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2. 11. 6.>

③ 방송통신중학교의 장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중학교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학생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과목 이수를 인정받은 학생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학년을 정하여 입학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 11. 6.>

④ 방송통신중학교의 장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조기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 11. 6.>

[본조신설 2011. 8. 22.]

**제4조(교육방법 및 수업연한)** ① 방송통신중학교와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육은 방송·정보통신을 통한 수업과 출석수업으로 한다. 다만, 학교나 학생의 학습환경 등을 고려할 때 방송·정보통신을 사용하거나 출석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방송통신중학교의 장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방법으로 교육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6.>

② 방송·정보통신을 통한 수업 및 출석수업의 일수·시간수 및 시기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③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의 수업연한을 1년의 범위에서 단축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2012. 11. 6., 2017. 12. 29.>

[전문개정 2011. 8. 22.]

**제5조(입학자격 등)** ① 방송통신중학교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초·중등교육법」 제43조제1항 또는 제4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방송통신중학교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 재입학, 퇴학, 전학, 편입학 및 휴학의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고, 공립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11. 6.]

**제6조(학력인정)** 방송통신중학교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중학교 졸업의 학력을 인정하고, 방송통신고등학교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을 인정한다.
[전문개정 2012. 11. 6.]

**제7조** 삭제 <1989. 4. 11.>

**제8조** 삭제 <1989. 4. 11.>

**제9조** 삭제 <1989. 4. 11.>

**제10조(방송ㆍ정보통신을 통한 수업 등의 위탁)** ① 방송통신중학교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설치한 자가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송ㆍ정보통신을 통한 수업을 교육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ㆍ정보통신을 통한 수업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방송통신중학교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설치한 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2. 11. 6.>
② 방송통신중학교의 장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3조의2에 따른 학교 외 학습경험의 심의 및 이수인정평가를 교육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이수인정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수인정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2. 11. 6.>
[전문개정 2011. 8. 22.]
[제목개정 2012. 11. 6.]

**제11조(교직원의 배치기준 등)** ① 방송통신중학교와 방송통신고등학교에 두는 교직원의 배치기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조에 따른 지도ㆍ감독기관이 정한다. <개정 2018. 12. 1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방송통신중학교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직원을 겸직하게 할 수 있다.
1. 방송통신중학교가 설치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교직원
2. 방송통신고등학교가 설치된 고등학교의 교직원
3. 제11조의2에 따른 협력학교의 교직원
[전문개정 2012. 11. 6.]

**제11조의2(협력학교 등의 지정)**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방송통신중학교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육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중학교의 장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의 신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협력학교 또는 협력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6., 2013. 3. 23.>
1. 협력학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학교
   가. 방송통신중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나. 방송통신고등학교: 고등학교

2. 협력기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나.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제9항에 따른 상담 전문기관 등 상담기관
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과 비슷한 기관으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인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른 협력학교 및 협력기관의 장은 학교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육시설 이용, 교직원 활용, 그 밖에 방송통신중학교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2. 11. 6.>

③ 제1항에 따른 협력학교 및 협력기관의 지정과 제2항에 따른 협력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2. 11. 6., 2013. 3. 23.>

[전문개정 2011. 8. 22.]

**제12조** 삭제 <2006. 3. 10.>

**부칙** <제7008호,1974. 1. 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49호,1975. 2. 1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고등학교방송통신교육과정에서 수강하고 있는 자는 이 영에 의한 방송통신고등학교의 해당학과에 재학하는 자로 본다.

**부칙** <제8475호,1977. 3. 8.>

이 영은 197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683호,1989. 4. 1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교육장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의 개정규정중 “교육장”은 특별시·직할시·도별로 교육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이를 “교육감”으로 본다.

**부칙** <제13282호,1991. 2. 1.>(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2! 생략

2@ 방송통신고등학교설치기준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 문교부장관 " 을 " 교육부장관 " 으로 하고,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3항 및 제12조중 " 문교부령 " 을 각각 " 교육부령 " 으로 한다.

2# 내지 <148>생략

**부칙** <제17115호,2001. 1. 29.>(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2( 생략

3) 방송통신고등학교설치기준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 교육부장관 " 을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 으로 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3항 및 제12조중 " 교육부령 " 을 각각 " 교육인적자원부령 " 으로 한다.

3! 내지 <152>생략

**부칙** <제19376호,2006. 3. 1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및 제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고등학교 소정의 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740호,2008. 2. 29.>(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2& 까지 생략

2*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 을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으로 하고, 제4조제3항 중 " 교육인적자원부령 " 을 " 교육과학기술부령 " 으로 한다.

2(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 <제23090호,2011. 8. 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157호,2012. 1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제2항 및 부칙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1호 중 " 방송통신고등학교 "를 "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로 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33호 중 " 방송통신대학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를 " 방송통신중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및 방송통신대학 "으로 한다.

③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초ㆍ중등교육법」 제43조의2 및 제51조에 따른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④ 대통령령 제24137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초ㆍ중등교육법」 제43조의2 및 제51조에 따른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7항제7호 중 " 방송통신고등학교 "를 "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로 한다.

**부칙** <제24423호,2013. 3. 2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4& 까지 생략

4*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3조2제1항제7호, 제5조제2항,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라목 및 같은 조 제3항 중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을 각각 " 교육부장관 "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 교육과학기술부령 "을 " 교육부령 "으로 한다.

4( 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 <제28517호,2017. 12.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395호,2018. 12. 18.>(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2447호,2022. 2. 17.>(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2* 까지 생략

2(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제5호 중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을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으로 한다.

3) 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시행 2022. 2. 18.] [대통령령 제32447호, 2022. 2. 17.,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초·중등교육법」 제43조의2 및 제51조에 따라 국립·공립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두는 방송통신중학교와 국립·공립 고등학교에 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설치·교육과정·교육방법·수업연한·입학자격 및 학력인정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1. 6.>

[전문개정 2011. 8. 22.]

**제2조(설치)** ① 국립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두는 방송통신중학교와 국립 고등학교에 두는 방송통신고등학교는 교육부장관이 설치한다. <개정 2013. 3. 23.>

② 공립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두는 방송통신중학교와 공립 고등학교에 두는 방송통신고등학교는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설치한다.

[전문개정 2012. 11. 6.]

**제3조(교육과정)** ① 국립 방송통신고등학교에 두는 학과는 교육부장관이 정하고, 공립 방송통신고등학교에 두는 학과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② 방송통신중학교와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과에 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각 교과의 교수(敎授) 요지, 과목, 수업시간수, 그 밖에 학습활동에 관한 사항은 국립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고, 공립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11. 6.]

**제3조의2(학교 외 학습경험의 인정 등)** ① 방송통신중학교의 장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습경험이 있는 학생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방송통신중학교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과목 이수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6., 2013. 3. 23., 2017. 12. 29., 2022. 2. 17.>

1. 「평생교육법」 제23조에 따라 평가인정된 학습과정을 통한 학습경험

1의2. 방송통신중학교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 입학 전에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의 과목 이수

2. 방송통신중학교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 입학 전에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에서의 과목 이수

3. 방송통신중학교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 입학 전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1호 또는 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검정고시에서의 과목 합격

4. 「자격기본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가자격이나 국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의 취득
5.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의 학습경험
6.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학원에서의 학습경험
7. 그 밖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방송통신중학교의 장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이 학칙으로 정하는 학교 외 학습경험

② 방송통신중학교의 장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과목 이수를 인정할 때에는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2. 11. 6.>

③ 방송통신중학교의 장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중학교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학생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과목 이수를 인정받은 학생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학년을 정하여 입학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 11. 6.>

④ 방송통신중학교의 장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조기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 11. 6.>

[본조신설 2011. 8. 22.]

**제4조(교육방법 및 수업연한)** ① 방송통신중학교와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육은 방송ㆍ정보통신을 통한 수업과 출석수업으로 한다. 다만, 학교나 학생의 학습환경 등을 고려할 때 방송ㆍ정보통신을 사용하거나 출석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방송통신중학교의 장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방법으로 교육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6.>

② 방송ㆍ정보통신을 통한 수업 및 출석수업의 일수ㆍ시간수 및 시기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③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의 수업연한을 1년의 범위에서 단축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2012. 11. 6., 2017. 12. 29.>

[전문개정 2011. 8. 22.]

**제5조(입학자격 등)** ① 방송통신중학교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초ㆍ중등교육법」 제43조제1항 또는 제4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방송통신중학교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 재입학, 퇴학, 전학, 편입학 및 휴학의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고, 공립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11. 6.]

**제6조(학력인정)** 방송통신중학교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중학교 졸업의 학력을 인정하고, 방송통신고등학교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을 인정한다.

[전문개정 2012. 11. 6.]

**제7조** 삭제 <1989. 4. 11.>

**제8조** 삭제 <1989. 4. 11.>

**제9조** 삭제 <1989. 4. 11.>

**제10조(방송ㆍ정보통신을 통한 수업 등의 위탁)** ① 방송통신중학교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설치한 자가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송ㆍ정보통신을 통한 수업을 교육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ㆍ정보통신을 통한 수업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방송통신중학교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설치한 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2. 11. 6.>

② 방송통신중학교의 장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3조의2에 따른 학교 외 학습경험의 심의 및 이수인정평가를 교육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이수인정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수인정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2. 11. 6.>

[전문개정 2011. 8. 22.]

[제목개정 2012. 11. 6.]

**제11조(교직원의 배치기준 등)** ① 방송통신중학교와 방송통신고등학교에 두는 교직원의 배치기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조에 따른 지도ㆍ감독기관이 정한다. <개정 2018. 12. 1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방송통신중학교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직원을 겸직하게 할 수 있다.

1. 방송통신중학교가 설치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교직원
2. 방송통신고등학교가 설치된 고등학교의 교직원
3. 제11조의2에 따른 협력학교의 교직원

[전문개정 2012. 11. 6.]

**제11조의2(협력학교 등의 지정)**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방송통신중학교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육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중학교의 장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의 신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협력학교 또는 협력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6., 2013. 3. 23.>

1. 협력학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학교
   가. 방송통신중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나. 방송통신고등학교: 고등학교
2. 협력기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나.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제9항에 따른 상담 전문기관 등 상담기관

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과 비슷한 기관으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인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른 협력학교 및 협력기관의 장은 학교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육시설 이용, 교직원 활용, 그 밖에 방송통신중학교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2. 11. 6.>

③ 제1항에 따른 협력학교 및 협력기관의 지정과 제2항에 따른 협력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2. 11. 6., 2013. 3. 23.>

[전문개정 2011. 8. 22.]

**제12조** 삭제 <2006. 3. 10.>

**부칙** <제7008호,1974. 1. 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49호,1975. 2. 1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고등학교방송통신교육과정에서 수강하고 있는 자는 이 영에 의한 방송통신고등학교의 해당학과에 재학하는 자로 본다.

**부칙** <제8475호,1977. 3. 8.>

이 영은 197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683호,1989. 4. 1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교육장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의 개정규정중 "교육장"은 특별시·직할시·도별로 교육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이를 "교육감"으로 본다.

**부칙** <제13282호,1991. 2. 1.>(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2! 생략

2@ 방송통신고등학교설치기준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 문교부장관 ” 을 “ 교육부장관 ” 으로 하고,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3항 및 제12조중 “ 문교부령 ” 을 각각 “ 교육부령 ” 으로 한다.
2# 내지 <148>생략

**부칙** <제17115호,2001. 1. 29.>(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2( 생략
3) 방송통신고등학교설치기준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 교육부장관 ” 을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 으로 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3항 및 제12조중 “ 교육부령 ” 을 각각 “ 교육인적자원부령 ” 으로 한다.
3! 내지 <152>생략

**부칙** <제19376호,2006. 3. 1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및 제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고등학교 소정의 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740호,2008. 2. 29.>(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2& 까지 생략
2*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 을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으로 하고, 제4조제3항 중 “ 교육인적자원부령 ” 을 “ 교육과학기술부령 ” 으로 한다.
2(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 <제23090호,2011. 8. 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157호,2012. 1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제2항 및 부칙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1호 중 " 방송통신고등학교 "를 "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로 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33호 중 " 방송통신대학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를 " 방송통신중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및 방송통신대학 "으로 한다.

③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초ㆍ중등교육법」 제43조의2 및 제51조에 따른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④ 대통령령 제24137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초ㆍ중등교육법」 제43조의2 및 제51조에 따른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7항제7호 중 " 방송통신고등학교 "를 "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로 한다.

**부칙** <제24423호,2013. 3. 2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4& 까지 생략

4*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3조2제1항제7호, 제5조제2항,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라목 및 같은 조 제3항 중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을 각각 " 교육부장관 "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 교육과학기술부령 "을 " 교육부령 "으로 한다.

4( 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 <제28517호,2017. 12.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395호,2018. 12. 18.>(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2447호,2022. 2. 17.>(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2* 까지 생략

2(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제5호 중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을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으로 한다.

3) 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시행규칙

[시행 2022. 4. 27.] [교육부령 제265호, 2022. 4. 27., 타법개정]

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 044 - 203 - 65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1. 6.>
[전문개정 2011. 8. 22.]

**제2조** 삭제 <2006. 3. 10.>

**제3조** 삭제 <2006. 3. 10.>

**제4조(수업일수 등)** ①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수업일수는 해당 방송통신중학교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가 설치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수업일수를 따른다. 이 경우 수업일수에는 제2항에 따른 출석수업일수가 포함된다. <개정 2012. 11. 6.>
② 출석수업은 방송통신중학교의 장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이 정하는 날에 실시한다. 이 경우 출석수업일수는 매 학년 20일 이상으로 하고, 출석수업시간은 1일 6시간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2. 11. 6.>
③ 방송통신중학교의 장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지역사회의 실정 및 학생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석수업을 계절수업, 야간수업 또는 시간제수업으로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2. 11. 6.>
④ 방송통신중학교의 장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교외 현장활동이나 체험활동으로 출석수업을 대체하게 할 수 있으며, 장애나 그 밖의 사정으로 정상적인 출석수업이 곤란한 학생에 대해서는 방송ㆍ정보통신을 통한 수업으로 출석수업을 대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 11. 6.>
⑤ 방송통신중학교의 장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교무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 및 제2항의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해진 수업일수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학교의 장은 다음 학년도가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 11. 6., 2013. 3. 23.>
[전문개정 2011. 8. 22.]

**제5조** 삭제 <1989. 6. 30.>

**제6조(교과용도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과용도서에 관하여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 11. 6.>

[전문개정 2011. 8. 22.]

**제7조** 삭제 <2011. 8. 22.>

**제8조** 삭제 <2011. 8. 22.>

**제9조** 삭제 <2006. 3. 10.>

**제10조(수업료 등)** ① 국립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은 「국립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정한다. 다만, 수업료 등의 금액은 같은 규칙에 따라 정해진 국립 고등학교의 수업료등의 금액보다 적어야 한다.

② 공립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수업료등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수업료등의 금액은 해당 시·도의 조례에 따라 정해진 공립 고등학교의 수업료등의 금액보다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1. 6.]

**제11조** 삭제 <2022. 4. 27.>

**부칙** <제335호,1974. 2. 25.>

이 영은 1974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6호,1975. 3. 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2호,1989. 6.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4호,1991. 3. 16.>(각종학교에관한규칙등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3호,1996. 5.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조·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7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79호,2001. 1. 31.>(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2) 생략

2! 방송통신고등학교설치기준령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중 " 교육부장관 " 을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 으로 한다.

제9조중 " 교육부령 " 을 " 교육인적자원부령 " 으로 한다.

2@ 내지4! 생략

**부칙** <제876호,2006. 3. 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 및 제4조제5항의 수업일수 감축에 관한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방송통신고등학교수료자의고등학교졸업학력인정평가시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15호,2011. 8.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호,2012. 11. 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업일수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방송통신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수업일수에 관하여는 2013년 2월 28일까지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2항제27호 중 " 한국방송통신대학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 를 " 방송통신중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및 방송통신대학 " 으로 한다.

**부칙** <제1호,2013. 3. 2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2* 까지 생략

2(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후단 중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을 “ 교육부장관 ”으로 한다.

3) 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제88호,2015. 12. 31.>(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5호,2022. 4. 27.>(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시행규칙

[시행 2022. 4. 27.] [교육부령 제265호, 2022. 4. 27.,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1. 6.>
[전문개정 2011. 8. 22.]

**제2조** 삭제 <2006. 3. 10.>

**제3조** 삭제 <2006. 3. 10.>

**제4조(수업일수 등)** ①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수업일수는 해당 방송통신중학교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가 설치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수업일수를 따른다. 이 경우 수업일수에는 제2항에 따른 출석수업일수가 포함된다. <개정 2012. 11. 6.>
② 출석수업은 방송통신중학교의 장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이 정하는 날에 실시한다. 이 경우 출석수업일수는 매 학년 20일 이상으로 하고, 출석수업시간은 1일 6시간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2. 11. 6.>
③ 방송통신중학교의 장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지역사회의 실정 및 학생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석수업을 계절수업, 야간수업 또는 시간제수업으로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2. 11. 6.>
④ 방송통신중학교의 장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교외 현장활동이나 체험활동으로 출석수업을 대체하게 할 수 있으며, 장애나 그 밖의 사정으로 정상적인 출석수업이 곤란한 학생에 대해서는 방송ㆍ정보통신을 통한 수업으로 출석수업을 대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 11. 6.>
⑤ 방송통신중학교의 장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교무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 및 제2항의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해진 수업일수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학교의 장은 다음 학년도가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 11. 6., 2013. 3. 23.>
[전문개정 2011. 8. 22.]

**제5조** 삭제 <1989. 6. 30.>

**제6조(교과용도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과용도서에 관하여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 11. 6.>
[전문개정 2011. 8. 22.]

**제7조** 삭제 <2011. 8. 22.>

**제8조** 삭제 <2011. 8. 22.>

**제9조** 삭제 <2006. 3. 10.>

**제10조(수업료 등)** ① 국립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은 「국립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정한다. 다만, 수업료 등의 금액은 같은 규칙에 따라 정해진 국립 고등학교의 수업료등의 금액보다 적어야 한다.

② 공립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수업료등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수업료등의 금액은 해당 시·도의 조례에 따라 정해진 공립 고등학교의 수업료등의 금액보다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1. 6.]

**제11조** 삭제 <2022. 4. 27.>

**부칙** <제335호,1974. 2. 25.>

이 영은 1974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6호,1975. 3. 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2호,1989. 6.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4호,1991. 3. 16.>(각종학교에관한규칙등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3호,1996. 5.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조·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7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79호,2001. 1. 31.>(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2) 생략

2! 방송통신고등학교설치기준령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중 " 교육부장관 " 을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 으로 한다.

제9조중 " 교육부령 " 을 " 교육인적자원부령 " 으로 한다.

2@ 내지4! 생략

**부칙** <제876호,2006. 3. 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 및 제4조제5항의 수업일수 감축에 관한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방송통신고등학교수료자의고등학교졸업학력인정평가시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15호,2011. 8.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호,2012. 11. 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업일수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방송통신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수업일수에 관하여는 2013년 2월 28일까지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2항제27호 중 " 한국방송통신대학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 를 " 방송통신중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및 방송통신대학 " 으로 한다.

**부칙** <제1호,2013. 3. 2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2* 까지 생략

2(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후단 중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을 “ 교육부장관 ”으로 한다.

3) 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제88호,2015. 12. 31.>(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5호,2022. 4. 27.>(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관학교 설치법

[시행 2021. 10. 14.] [법률 제18004호, 2021. 4. 13., 일부개정]

국방부 (교육훈련정책과) 02 - 748 - 6244

**제1조(사관학교의 설치)** ① 육군ㆍ해군ㆍ공군의 정규 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육군ㆍ해군ㆍ공군에 각각 사관학교를 둔다.

② 군사과학기술의 발전과 장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각군 사관학교에 이공계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6. 9.]

**제2조(수업연한)** ① 사관학교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② 대학원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6. 9.]

**제3조(입학자격)** ① 사관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 4. 13.>

1. 17세 이상 21세 미만의 미혼일 것. 다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연령 상한을 연장한다.
2.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고등교육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학력이 있을 것
4. 학칙으로 정하는 신체기준에 맞을 것

②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교육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소령 이하의 현역 장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직원

[전문개정 2011. 6. 9.]

**제4조(교과)** ① 사관학교의 교과는 군사학 과정과 일반학 과정으로 나누며, 군사학 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일반학 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교과과정은 학위를 수여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③ 일반학 과정과 그 시설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중 대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대학원 석사과정의 교과는 군사과학기술에 관한 학문적 연구에 필요한 것으로 하되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6. 9.]

**제5조(교장과 공무원의 임명)** ① 사관학교에 교장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공무원과 군인, 군무원(이하 " 공무원 " 이라 한다)을 둔다.
② 교장은 각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중에서 각군 참모총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개정 2017. 3. 21.>
③ 대학원장은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6. 9.]

**제6조(교수 등의 자격 및 임용)** ① 공무원 중 일반학 과정 및 대학원 석사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의 직종과 자격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16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일반학 과정 및 대학원 석사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중 교수ㆍ부교수는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조교수는 교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며, 조교는 교장이 임명한다.<개정 2011. 7. 21.>
③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교수 및 부교수의 임명권을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6. 9.]

**제6조의2(「교육공무원법」 등의 준용 등)** 일반학 과정 및 대학원 석사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중 군인ㆍ군무원이 아닌 사람은 특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임용기간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을 준용하며, 보수ㆍ연수ㆍ신분보장ㆍ징계 및 소청(訴請)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6. 2. 3.>
[전문개정 2011. 6. 9.]

**제7조(졸업생의 임명)** 사관학교의 4년 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은 각군의 소위로 임명한다.
[전문개정 2011. 6. 9.]

**제8조(학위 수여)** ① 사관학교는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수업연한 4년의 대학으로 보고, 그 졸업자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이 경우 학위의 종류 등 학사학위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대학원의 정하여진 전과정을 이수하고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석사학위를 수여하되 그 학위의 종류, 수여 절차 및 등록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 6. 9.]

**제9조** 삭제 <2011. 6. 9.>

**부칙** <제374호,1955. 10. 1.>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교과의 기준과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직종 및 자격에 관한 기준은 본법 시행후 90일 이내에 이를 구비시켜야 한다.

**부칙** <제1263호,1963. 2. 9.>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8호,1963. 12. 16.>

이 법은 1962년 12월 26일에 공포된 개정헌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70호,1973. 12. 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42호,1980. 12. 31.>(군무원인사법)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국군조직법 제12조제3항ㆍ제4항 및 동법 제16조, 국방대학원설치법 제6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동법 제7조, 사관학교설치법 제5조제1항, 단기사관학교설치법 제5조제1항, 공군기술고등학교설치법 제5조제1항 및 군행형법 제10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중 "군속"을 각각 "군무원"으로 한다.

**부칙** <제3455호,1981. 11. 2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전임강사 및 조교는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268호,1990. 12. 27.>(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사관학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3항중 “ 문교부장관 ” 을 각각 “ 교육부장관 ” 으로 한다.

⑧내지5) 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제4706호,1994. 1.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58호,1995. 12. 29.>

①(시행일) 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여자사관생도의 모집시기에 관한 특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육군 및 해군에 두는 사관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여자사관생도의 모집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5265호,1997. 1. 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54호,1997. 12. 13.>(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6400호,2001. 1. 29.>(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4* 생략

4( 사관학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4항,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중 “ 교육부장관 ” 을 각각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 으로 한다.

5) 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7087호,2004. 1. 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52호,2008. 2. 29.>(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80> 까지 생략

<181> 사관학교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항 및 제5조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8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794호,2011. 6. 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66호,2011. 7. 21.>(고등교육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전임강사와 조교”를 “조교”로 한다.

⑮부터2&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1690호,2013. 3. 23.>(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45>까지 생략

<146>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4항 및 제5조제3항 중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을 각각 “ 교육부장관 ”으로 한다.

<14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936호,2016. 2. 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중 “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을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으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4609호,2017. 3. 21.>(군인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1^ 까지 생략

1&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 장관급(將官級) ”을 “ 장성급(將星級) ”으로 한다.

1* 및1(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8004호,2021. 4. 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관학교 설치법

[시행 2021. 10. 14.] [법률 제18004호, 2021. 4. 13., 일부개정]

**제1조(사관학교의 설치)** ① 육군ㆍ해군ㆍ공군의 정규 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육군ㆍ해군ㆍ공군에 각각 사관학교를 둔다.

② 군사과학기술의 발전과 장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각군 사관학교에 이공계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6. 9.]

**제2조(수업연한)** ① 사관학교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② 대학원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6. 9.]

**제3조(입학자격)** ① 사관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 4. 13.>

1. 17세 이상 21세 미만의 미혼일 것. 다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연령 상한을 연장한다.
2.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고등교육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학력이 있을 것
4. 학칙으로 정하는 신체기준에 맞을 것

②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교육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소령 이하의 현역 장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직원

[전문개정 2011. 6. 9.]

**제4조(교과)** ① 사관학교의 교과는 군사학 과정과 일반학 과정으로 나누며, 군사학 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일반학 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교과과정은 학위를 수여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③ 일반학 과정과 그 시설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중 대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대학원 석사과정의 교과는 군사과학기술에 관한 학문적 연구에 필요한 것으로 하되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6. 9.]

**제5조(교장과 공무원의 임명)** ① 사관학교에 교장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공무원과 군인, 군무원(이하 “ 공무원 ” 이라 한다)을 둔다.
② 교장은 각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중에서 각군 참모총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개정 2017. 3. 21.>
③ 대학원장은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6. 9.]

**제6조(교수 등의 자격 및 임용)** ① 공무원 중 일반학 과정 및 대학원 석사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의 직종과 자격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16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일반학 과정 및 대학원 석사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중 교수ㆍ부교수는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조교수는 교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며, 조교는 교장이 임명한다.<개정 2011. 7. 21.>
③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교수 및 부교수의 임명권을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6. 9.]

**제6조의2(「교육공무원법」 등의 준용 등)** 일반학 과정 및 대학원 석사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중 군인ㆍ군무원이 아닌 사람은 특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임용기간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을 준용하며, 보수ㆍ연수ㆍ신분보장ㆍ징계 및 소청(訴請)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6. 2. 3.>
[전문개정 2011. 6. 9.]

**제7조(졸업생의 임명)** 사관학교의 4년 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은 각군의 소위로 임명한다.
[전문개정 2011. 6. 9.]

**제8조(학위 수여)** ① 사관학교는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수업연한 4년의 대학으로 보고, 그 졸업자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이 경우 학위의 종류 등 학사학위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대학원의 정하여진 전과정을 이수하고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석사학위를 수여하되 그 학위의 종류, 수여 절차 및 등록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 6. 9.]

**제9조** 삭제 <2011. 6. 9.>

**부칙** <제374호,1955. 10. 1.>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교과의 기준과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직종 및 자격에 관한 기준은 본법 시행후 90일 이내에 이를 구비시켜야 한다.

**부칙** <제1263호,1963. 2. 9.>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8호,1963. 12. 16.>

이 법은 1962년 12월 26일에 공포된 개정헌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70호,1973. 12. 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42호,1980. 12. 31.>(군무원인사법)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국군조직법 제12조제3항、제4항 및 동법 제16조, 국방대학원설치법 제6조제1항、제3항、제4항 및 동법 제7조, 사관학교설치법 제5조제1항, 단기사관학교설치법 제5조제1항, 공군기술고등학교설치법 제5조제1항 및 군행형법 제10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중 "군속"을 각각 "군무원"으로 한다.

**부칙** <제3455호,1981. 11. 2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전임강사 및 조교는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268호,1990. 12. 27.>(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사관학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3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⑧내지5) 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제4706호,1994. 1.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58호,1995. 12. 29.>

①(시행일) 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여자사관생도의 모집시기에 관한 특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육군 및 해군에 두는 사관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여자사관생도의 모집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5265호,1997. 1. 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54호,1997. 12. 13.>(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6400호,2001. 1. 29.>(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4* 생략

4( 사관학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4항,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중 " 교육부장관 "을 각각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으로 한다.

5) 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7087호,2004. 1. 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52호,2008. 2. 29.>(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80> 까지 생략

<181> 사관학교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항 및 제5조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8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794호,2011. 6. 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66호,2011. 7. 21.>(고등교육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전임강사와 조교"를 "조교"로 한다.

⑮부터2&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1690호,2013. 3. 23.>(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45>까지 생략

<146>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4항 및 제5조제3항 중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을 각각 “ 교육부장관 ”으로 한다.

<14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936호,2016. 2. 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중 “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을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으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4609호,2017. 3. 21.>(군인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1^ 까지 생략

1&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 장관급(將官級) ”을 “ 장성급(將星級) ”으로 한다.

1* 및1(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8004호,2021. 4. 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8호, 2025. 12. 30., 타법개정]

국방부 (교육훈련정책과) 02 - 748 - 6244

## 제1장 총칙

**제1조(명칭과 위치)** ①사관학교설치법(이하 “ 법 ”이라 한다) 제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육、해、공군사관학교(이하 “ 각 학교 ”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개정 1994. 9. 8.>

② 삭제<2000. 12. 30.>

[제목개정 2000. 12. 30.]

**제2조(사관생도)** ①각 학교에서 수학하는 자를 “ 사관생도 ”라 한다.

② 삭제<2000. 12. 30.>

③사관생도는 준사관의 대우를 받는다.

[제목개정 2000. 12. 30.]

**제3조(학칙)** ①각 학교의 장은 해당군의 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학칙을 정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국방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칙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칙중 정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4. 12. 23., 1999. 5. 24., 2001. 1. 29., 2008. 2. 29., 2013. 3. 23., 2025. 12. 30.>

[전문개정 1994. 9. 8.]

**제4조(학칙기재사항)**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학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2. 30.>

1. 학년、학기와 휴업일에 관한 사항
2. 학급편제와 사관생도의 정원에 관한 사항
3. 교과와 수업일수에 관한 사항
4. 고사와 학년、학기과정수료의 인정에 관한 사항
5. 입학、퇴학、휴학、수료、졸업과 상벌에 관한 사항
6. 교육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7. 학위에 관한 사항

② 삭제<2000. 12. 30.>
[전문개정 1994. 9. 8.]

**제4조의2** 삭제 <2000. 12. 30.>

## 제2장 조직

### 제1절 학교조직과 업무분장

**제5조(교장ㆍ부교장의 직무)** ①각 학교에 교장과 부교장을 둔다. <개정 1994. 9. 8.>
②교장은 당해 군 참모총장에 소속하며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사관생도를 교육한다.<개정 1994. 9. 8., 2000. 12. 30., 2019. 7. 2.>
③부교장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94. 9. 8.>
④ 삭제<1994. 9. 8.>
⑤ 삭제<1994. 9. 8.>

**제6조(부서의 설치등)** ①각 학교에 행정부ㆍ교수부ㆍ생도대 및 지원부대를 두며, 행정부에 행정부장, 교수부에 교수부장, 생도대에 생도대장, 지원부대에 지원부대장을 둔다. <개정 1994. 9. 8., 2000. 12. 30.>
② 삭제<1994. 9. 8.>
③행정부장ㆍ교수부장ㆍ생도대장 및 지원부대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1994. 9. 8., 2000. 12. 30.>

**제7조(교수부)** ①교수부는 일반학과정과 군사학과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② 삭제<2000. 12. 30.>
[제목개정 2000. 12. 30.]

**제8조(생도대)** 생도대는 훈육 기타 필요한 과정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9조(지원부대)** 지원부대는 학교의 경비와 보급 기타 지원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0조(분장업무의 변경)** 각 학교의 장은 필요에 따라 이 절에서 규정한 분장업무를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개정 1994. 9. 8.>

### 제2절 교관

**제11조(직원의 직무)** ①각 학교에 군사학교관과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와 조교를 둔다. <개정 2012. 2. 29.>
②군사학교관은 군사학과정의 교육을, 교수ㆍ부교수와 조교수(이하 “ 일반학교관 ” 이라 한다)는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한다.<개정 1994. 9. 8., 2000. 12. 30., 2012. 2. 29.>

③조교는 교수와 부교수의 지도를 받아 학술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

**제12조(일반학교관의 배치기준)** ①각 학교의 일반학교관의 배치기준에 관하여는 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7. 3. 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학교관의 정수는 그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시간강사 3인으로써 그 1인에 대치할 수 있다.<개정 1994. 9. 8.>
③일반학교관의 교수시간은 1인당 매주 9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제3절 직원의 임용과 정원

**제13조(부교장등의 임용)** ①부교장ㆍ행정부장ㆍ교수부장 및 생도대장은 장성급(將星級) 또는 영관급 장교중에서 각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각군 참모총장이 보하고, 지원부대장은 영관급 장교중에서 학교장이 보한다. <개정 1994. 9. 8., 2017. 9. 5.>
② 삭제<2000. 12. 30.>

**제14조(일반학교관의 정원)** 각 학교의 일반학교관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5조(교수등의 임용)** ①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은 일반학교관중 교수 및 부교수에 대한 임명권을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4. 9. 9.>
②각 학교의 일반학교관중 교수 및 부교수는 각 학교의 장이 당해 학교의 교육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군참모총장에게 추천하고, 그 군참모총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제청한다.<신설 2004. 9. 9.>
③각 학교의 일반학과정의 조교수는 당해 학교의 교육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각 학교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신설 1994. 9. 8.>
④각 학교의 일반학교관중 강사 및 조교는 각 학교의 장이 당해 학교의 교육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개정 2012. 2. 29.>

**제16조(군사학교관의 정원등)** 각 학교의 군사학교관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그 임명은 해당 학교의 장이 행한다.

**제17조(군인ㆍ군무원의 정원과 업무)** ①각 학교에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병(이하 "군인"이라 한다)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4. 9. 8., 2001. 3. 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인과 군무원은 소속 상관의 명을 받아 담당한 업무를 처리한다.<개정 1994. 9. 8.>

## 제3장 교과와 수업

**제18조(교육과목)** 각 학교의 일반학과정의 교육과목은 고등교육법시행령에 의하여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고, 군사학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0. 12. 30.>

**제19조(과정수료의 단위 등)** 각 학교의 과정수료의 단위는 학년으로 하고, 학기의 구분은 고등교육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전문개정 2000. 12. 30.]

**제20조(수업일수)** 각 학교의 일반학수업일수는 고등교육법시행령에 준하고, 군사학수업일수는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0. 12. 30.>

**제21조(수업시종의 시각)** 수업시종의 시각은 각 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22조(휴업일)** 각 학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학칙에서 정하는 하기 및 동기휴가와 개교기념일
3.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군 행사일

**제23조(임시휴업)** ①각 학교의 장은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명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그 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4. 9. 8.>

**제24조(다른 학교에서의 교육)** 각 학교의 장은 그 군의 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관생도를 다른 군의 학교 또는 부대, 국내외 대학이나 외국의 사관학교에 파견하여 수학시킬 수 있다. <개정 2022. 8. 2.>
[제목개정 2022. 8. 2.]

**제25조(입학등)** ①사관생도의 입학ㆍ퇴학과 휴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각 학교의 장이 명한다. <개정 1994. 9. 8., 2000. 12. 30.>
②입학지원자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고사를 하여야 한다.

**제25조의2(입학연령 상한 연장)** 법 제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이하 "제대군인"이라 한다)에 대한 입학연령 상한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연장한다.
1.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3세
2.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2세
3.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1세
[본조신설 2021. 10. 14.]

**제26조(입학시기)** ①사관생도를 입학시킬 시기는 학년초로부터 30일이내로 한다.
②각 학교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비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입학예정자를 입학기일전에 가입학시킬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입학기간은 50일을 초과하지 못하며, 가입학된 자에게는 급식과 피복을 제공한다.<개정 1994. 9. 8.>

**제27조** 삭제 <2004. 9. 9.>

**제28조(군적)** 사관생도는 입학한 날로부터 각군의 군적에 편입된다.

**제29조(학년과정수료 및 학위 등)** ①사관생도의 학년과정수료와 졸업을 인정함에는 그 학년의 성적을 고사하여 정한다.
②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위는 이학분야를 전공한 자에게는 이학사를, 인문사회학분야를 전공한 자에게는 문학사를, 공학분야를 전공한 자에게는 공학사를 각각 수여하고, 그 밖에 학위의 종류 등 학사학위의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신설 2004. 9. 9.>
[제목개정 2004. 9. 9.]

**제30조(편입학등)** 사관생도의 편입학과 전학은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31조(퇴학사유)** ①각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관생도를 퇴학시킬 수 있다.
1. 품행이 극히 불량한 자
2. 군기를 문란하게 하거나 제 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자
3. 학술ㆍ기능의 성적이 불량하여 졸업의 가망이 없는 자
4. 질병 기타 심신이상으로 인하여 계속 취학하기 곤란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학된 자는 그 날로부터 그 군의 군적에서 제적된다.<개정 1994. 9. 8.>

## 제4장 교육운영위원회등 <개정 1994. 9. 8.>

**제32조(교육운영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①각 학교에 그 교육운영을 위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교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0. 12. 30.>
②교육운영위원회는 부교장ㆍ교수부장ㆍ생도대장과 교장이 정하는 5인이상 20인이하의 교관으로 구성한다.<개정 2000. 12. 30.>
[전문개정 1994. 9. 8.]
[제목개정 2000. 12. 30.]

**제33조(위원장의 직무등)** ①교육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장 또는 선임자가 된다. <개정 2000. 12. 30.>

②교육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0. 12. 30., 2019. 7. 2.>

③교육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개정 2000. 12. 30.>

[전문개정 1994. 9. 8.]

**제3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조에 따른 입학자격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학위 수여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4. 8. 6.]

**부칙** <제4900호,1970. 4. 1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82호,1991. 2. 1.>(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08>생략

<109>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15조제1항중 " 문교부장관 " 을 각각 " 교육부장관 " 으로 한다.

<110>내지 <148>생략

**부칙** <제14375호,1994. 9. 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국방대학원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중 " 법 제3조제1항제4호 " 를 " 법 제3조제1항제3호 " 로 한다.

**부칙** <제14438호,1994. 12. 23.>(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94>생략

<295>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 경제기획원장관 ” 을 “ 재정경제원장관 ” 으로 한다.
<296>내지 <327>생략

**부칙** <제15315호,1997. 3. 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여자사관생도의 모집시기) 법률 제5058호 사관학교설치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육군사관학교 여자사관생도의 모집은 1998학년도부터 실시하고, 해군사관학교 여자사관생도의 모집은 1999학년도부터 실시한다. <개정 1998. 2. 7.>

**부칙** <제15623호,1998. 2.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326호,1999. 5. 24.>(기획예산처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55>생략
<56>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후단중 “ 재정경제원장관 ” 을 “ 기획예산처장관 ” 으로 한다.
<57>내지 <109>생략

**부칙** <제17060호,2000. 12. 30.>
이 영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15호,2001. 1. 29.>(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79>생략
<80>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전단 및 제15조제1항중 “ 교육부장관 ” 을 각각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 으로 한다.
<81>내지 <152>생략

**부칙** <제17158호,2001. 3. 27.>(군인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 하사관 " 을 " 부사관 " 으로 한다.

⑥내지2%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8537호,2004. 9.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75호,2008. 2. 29.>(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2) 까지 생략

2! 사관학교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 을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으로, " 기획예산처장관 " 을 " 기획재정부장관 " 으로 한다.

2@ 부터3) 까지 생략

**부칙** <제23644호,2012. 2. 29.>(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3* 까지 생략

3(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 조교수·전임강사 " 를 " 조교수 "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 부교수·조교수와 전임강사 " 를 " 부교수와 조교수 " 로 한다.

제15조제4항 중 " 전임강사·강사 " 를 " 강사 " 로 한다.

4) 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4413호,2013. 3. 23.>(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2) 까지 생략

2!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전단 중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을 " 교육부장관 " 으로 한다.

2@ 부터3@ 까지 생략

**부칙** <제25532호,2014. 8. 6.>(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266호,2017. 9. 5.>(군인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5) 까지 생략

<51>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 장관급 " 을 " 장성급(將星級) " 으로 한다.

<52>부터 <90>까지 생략

**부칙** <제29950호,2019. 7. 2.>(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2032호,2021. 10. 14.>

이 영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835호,2022. 8.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48호,2025. 12. 30.>(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4@ 까지 생략

4#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후단 중 “ 기획재정부장관 ” 을 “ 기획예산처장관 ” 으로 한다.

4$ 부터 <176>까지 생략

■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별표] <개정 1994.9.8>

명칭 및 위치

| 명칭 | 위치 |
|---|---|
| 육군사관학교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
| 해군사관학교 | 경상남도 진해시 앵곡동 |
| 공군사관학교 | 충청북도 청원군 남일면 |

#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8호, 2025. 12. 30., 타법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명칭과 위치)** ①사관학교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육、해、공군사관학교(이하 “각 학교”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개정 1994. 9. 8.>

② 삭제<2000. 12. 30.>

[제목개정 2000. 12. 30.]

**제2조(사관생도)** ①각 학교에서 수학하는 자를 “사관생도”라 한다.

② 삭제<2000. 12. 30.>

③사관생도는 준사관의 대우를 받는다.

[제목개정 2000. 12. 30.]

**제3조(학칙)** ①각 학교의 장은 해당군의 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학칙을 정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국방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칙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칙중 정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4. 12. 23., 1999. 5. 24., 2001. 1. 29., 2008. 2. 29., 2013. 3. 23., 2025. 12. 30.>

[전문개정 1994. 9. 8.]

**제4조(학칙기재사항)**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학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2. 30.>

1. 학년、학기와 휴업일에 관한 사항
2. 학급편제와 사관생도의 정원에 관한 사항
3. 교과와 수업일수에 관한 사항
4. 고사와 학년、학기과정수료의 인정에 관한 사항
5. 입학、퇴학、휴학、수료、졸업과 상벌에 관한 사항
6. 교육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7. 학위에 관한 사항

② 삭제<2000. 12. 30.>

[전문개정 1994. 9. 8.]

**제4조의2** 삭제 <2000. 12. 30.>

## 제2장 조직

### 제1절 학교조직과 업무분장

**제5조(교장ㆍ부교장의 직무)** ①각 학교에 교장과 부교장을 둔다. <개정 1994. 9. 8.>

②교장은 당해 군 참모총장에 소속하며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사관생도를 교육한다.<개정 1994. 9. 8., 2000. 12. 30., 2019. 7. 2.>

③부교장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94. 9. 8.>

④ 삭제<1994. 9. 8.>

⑤ 삭제<1994. 9. 8.>

**제6조(부서의 설치등)** ①각 학교에 행정부ㆍ교수부ㆍ생도대 및 지원부대를 두며, 행정부에 행정부장, 교수부에 교수부장, 생도대에 생도대장, 지원부대에 지원부대장을 둔다. <개정 1994. 9. 8., 2000. 12. 30.>

② 삭제<1994. 9. 8.>

③행정부장ㆍ교수부장ㆍ생도대장 및 지원부대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1994. 9. 8., 2000. 12. 30.>

**제7조(교수부)** ①교수부는 일반학과정과 군사학과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② 삭제<2000. 12. 30.>

[제목개정 2000. 12. 30.]

**제8조(생도대)** 생도대는 훈육 기타 필요한 과정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9조(지원부대)** 지원부대는 학교의 경비와 보급 기타 지원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0조(분장업무의 변경)** 각 학교의 장은 필요에 따라 이 절에서 규정한 분장업무를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개정 1994. 9. 8.>

### 제2절 교관

**제11조(직원의 직무)** ①각 학교에 군사학교관과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와 조교를 둔다. <개정 2012. 2. 29.>

②군사학교관은 군사학과정의 교육을, 교수ㆍ부교수와 조교수(이하 “일반학교관”이라 한다)는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한다.<개정 1994. 9. 8., 2000. 12. 30., 2012. 2. 29.>

③조교는 교수와 부교수의 지도를 받아 학술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

**제12조(일반학교관의 배치기준)** ①각 학교의 일반학교관의 배치기준에 관하여는 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7. 3. 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학교관의 정수는 그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시간강사 3인으로써 그 1인에 대치할 수 있다.<개정 1994. 9. 8.>
③일반학교관의 교수시간은 1인당 매주 9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제3절 직원의 임용과 정원

**제13조(부교장등의 임용)** ①부교장ㆍ행정부장ㆍ교수부장 및 생도대장은 장성급(將星級) 또는 영관급 장교중에서 각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각군 참모총장이 보하고, 지원부대장은 영관급 장교중에서 학교장이 보한다. <개정 1994. 9. 8., 2017. 9. 5.>
② 삭제<2000. 12. 30.>

**제14조(일반학교관의 정원)** 각 학교의 일반학교관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5조(교수등의 임용)** ①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은 일반학교관중 교수 및 부교수에 대한 임명권을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4. 9. 9.>
②각 학교의 일반학교관중 교수 및 부교수는 각 학교의 장이 당해 학교의 교육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군참모총장에게 추천하고, 그 군참모총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제청한다.<신설 2004. 9. 9.>
③각 학교의 일반학과정의 조교수는 당해 학교의 교육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각 학교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신설 1994. 9. 8.>
④각 학교의 일반학교관중 강사 및 조교는 각 학교의 장이 당해 학교의 교육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개정 2012. 2. 29.>

**제16조(군사학교관의 정원등)** 각 학교의 군사학교관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그 임명은 해당 학교의 장이 행한다.

**제17조(군인ㆍ군무원의 정원과 업무)** ①각 학교에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병(이하 "군인"이라 한다)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4. 9. 8., 2001. 3. 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인과 군무원은 소속 상관의 명을 받아 담당한 업무를 처리한다.<개정 1994. 9. 8.>

## 제3장 교과와 수업

**제18조(교육과목)** 각 학교의 일반학과정의 교육과목은 고등교육법시행령에 의하여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고, 군사학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0. 12. 30.>

**제19조(과정수료의 단위 등)** 각 학교의 과정수료의 단위는 학년으로 하고, 학기의 구분은 고등교육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전문개정 2000. 12. 30.]

**제20조(수업일수)** 각 학교의 일반학수업일수는 고등교육법시행령에 준하고, 군사학수업일수는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0. 12. 30.>

**제21조(수업시종의 시각)** 수업시종의 시각은 각 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22조(휴업일)** 각 학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학칙에서 정하는 하기 및 동기휴가와 개교기념일
3.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군 행사일

**제23조(임시휴업)** ①각 학교의 장은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명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그 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4. 9. 8.>

**제24조(다른 학교에서의 교육)** 각 학교의 장은 그 군의 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관생도를 다른 군의 학교 또는 부대, 국내외 대학이나 외국의 사관학교에 파견하여 수학시킬 수 있다. <개정 2022. 8. 2.>
[제목개정 2022. 8. 2.]

**제25조(입학등)** ①사관생도의 입학ㆍ퇴학과 휴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각 학교의 장이 명한다. <개정 1994. 9. 8., 2000. 12. 30.>
②입학지원자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고사를 하여야 한다.

**제25조의2(입학연령 상한 연장)** 법 제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이하 "제대군인"이라 한다)에 대한 입학연령 상한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연장한다.
1.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3세
2.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2세
3.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1세
[본조신설 2021. 10. 14.]

**제26조(입학시기)** ①사관생도를 입학시킬 시기는 학년초로부터 30일이내로 한다.
②각 학교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비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입학예정자를 입학기일전에 가입학시킬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입학기간은 50일을 초과하지 못하며, 가입학된 자에게는 급식과 피복을 제공한다.<개정 1994. 9. 8.>

**제27조** 삭제 <2004. 9. 9.>

**제28조(군적)** 사관생도는 입학한 날로부터 각군의 군적에 편입된다.

**제29조(학년과정수료 및 학위 등)** ①사관생도의 학년과정수료와 졸업을 인정함에는 그 학년의 성적을 고사하여 정한다.
②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위는 이학분야를 전공한 자에게는 이학사를, 인문사회학분야를 전공한 자에게는 문학사를, 공학분야를 전공한 자에게는 공학사를 각각 수여하고, 그 밖에 학위의 종류 등 학사학위의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신설 2004. 9. 9.>
[제목개정 2004. 9. 9.]

**제30조(편입학등)** 사관생도의 편입학과 전학은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31조(퇴학사유)** ①각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관생도를 퇴학시킬 수 있다.
1. 품행이 극히 불량한 자
2. 군기를 문란하게 하거나 제 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자
3. 학술ㆍ기능의 성적이 불량하여 졸업의 가망이 없는 자
4. 질병 기타 심신이상으로 인하여 계속 취학하기 곤란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학된 자는 그 날로부터 그 군의 군적에서 제적된다.<개정 1994. 9. 8.>

## 제4장 교육운영위원회등 <개정 1994. 9. 8.>

**제32조(교육운영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①각 학교에 그 교육운영을 위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교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0. 12. 30.>
②교육운영위원회는 부교장ㆍ교수부장ㆍ생도대장과 교장이 정하는 5인이상 20인이하의 교관으로 구성한다.<개정 2000. 12. 30.>
[전문개정 1994. 9. 8.]
[제목개정 2000. 12. 30.]

**제33조(위원장의 직무등)** ①교육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장 또는 선임자가 된다. <개정 2000. 12. 30.>

②교육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0. 12. 30., 2019. 7. 2.>

③교육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개정 2000. 12. 30.>

[전문개정 1994. 9. 8.]

**제3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조에 따른 입학자격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학위 수여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4. 8. 6.]

**부칙** <제4900호,1970. 4. 1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82호,1991. 2. 1.>(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08>생략

<109>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15조제1항중 " 문교부장관 " 을 각각 " 교육부장관 " 으로 한다.

<110>내지 <148>생략

**부칙** <제14375호,1994. 9. 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국방대학원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중 " 법 제3조제1항제4호 " 를 " 법 제3조제1항제3호 " 로 한다.

**부칙** <제14438호,1994. 12. 23.>(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94>생략

<295>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 경제기획원장관 ” 을 “ 재정경제원장관 ” 으로 한다.
<296>내지 <327>생략

**부칙** <제15315호,1997. 3. 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여자사관생도의 모집시기) 법률 제5058호 사관학교설치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육군사관학교 여자사관생도의 모집은 1998학년도부터 실시하고, 해군사관학교 여자사관생도의 모집은 1999학년도부터 실시한다. <개정 1998. 2. 7.>

**부칙** <제15623호,1998. 2.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326호,1999. 5. 24.>(기획예산처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55>생략
<56>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후단중 “ 재정경제원장관 ” 을 “ 기획예산처장관 ” 으로 한다.
<57>내지 <109>생략

**부칙** <제17060호,2000. 12. 30.>
이 영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15호,2001. 1. 29.>(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79>생략
<80>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전단 및 제15조제1항중 “ 교육부장관 ” 을 각각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 으로 한다.
<81>내지 <152>생략

**부칙** <제17158호,2001. 3. 27.>(군인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 하사관 " 을 " 부사관 " 으로 한다.

⑥내지2%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8537호,2004. 9.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75호,2008. 2. 29.>(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2) 까지 생략

2! 사관학교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 을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으로, " 기획예산처장관 " 을 " 기획재정부장관 " 으로 한다.

2@ 부터3) 까지 생략

**부칙** <제23644호,2012. 2. 29.>(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3* 까지 생략

3(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 조교수·전임강사 " 를 " 조교수 "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 부교수·조교수와 전임강사 " 를 " 부교수와 조교수 " 로 한다.

제15조제4항 중 " 전임강사·강사 " 를 " 강사 " 로 한다.

4) 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4413호,2013. 3. 23.>(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2) 까지 생략

2!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전단 중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을 " 교육부장관 " 으로 한다.

2@ 부터3@ 까지 생략

**부칙** <제25532호,2014. 8. 6.>(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266호,2017. 9. 5.>(군인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5) 까지 생략

<51>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 장관급 " 을 " 장성급(將星級) " 으로 한다.

<52>부터 <90>까지 생략

**부칙** <제29950호,2019. 7. 2.>(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2032호,2021. 10. 14.>

이 영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835호,2022. 8.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48호,2025. 12. 30.>(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4@ 까지 생략

4#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후단 중 “ 기획재정부장관 ” 을 “ 기획예산처장관 ” 으로 한다.

4$ 부터 <176>까지 생략

■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별표] <개정 1994.9.8>

명칭 및 위치

| 명칭 | 위치 |
|---|---|
| 육군사관학교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
| 해군사관학교 | 경상남도 진해시 앵곡동 |
| 공군사관학교 | 충청북도 청원군 남일면 |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 2025. 11. 11.] [법률 제21072호, 2025. 11. 11., 일부개정]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044 - 203 - 6507

## 제1장 총칙 <개정 2009. 12. 31.>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ㆍ사망 및 직무로 인한 질병ㆍ부상ㆍ장해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4. 17.>
[전문개정 2009. 12. 31.]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5. 29., 2018. 3. 20., 2018. 4. 17., 2021. 3. 23.>

1. “교직원”이란 「사립학교법」 제54조에 따라 그 임명에 관한 사항이 관할청에 보고된 교원과,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을 말한다. 다만, 임시로 임명된 사람, 조건부로 임명된 사람 및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유족”이란 교직원이거나 교직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재직 당시에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한정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나. 자녀(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다. 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는 제외한다)
   라. 손자녀(孫子女)(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손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손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마. 조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조부모는 제외한다)
3. “퇴직”이란 면직(免職), 사직(辭職), 그 밖의 사망 외의 모든 해직(解職)을 말한다. 다만, 교직원의 신분이 소멸된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다시 교직원으로 임명되고 이 법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기준소득월액”이란 부담금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일정기간 재직하고 얻은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연지급합계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 및 비과세소득의 범위, 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 및 적용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평균기준소득월액”이란 재직기간(제3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재직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재직기간에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으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퇴직 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의 전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합한 금액을 재직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및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퇴직유족연금(교직원이었던 사람이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받다가 사망하여 그 유족이 퇴직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기준소득월액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평균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6. “학교경영기관”이란 제3조에 규정된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를 말한다.
7. “부담금”이란 국가부담금·개인부담금·법인부담금 및 재해보상부담금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8. “개인부담금”이란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 교직원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9. “국가부담금”이란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10. “법인부담금”이란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11. “재해보상부담금”이란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에 따른 급여 중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재해보상급여 준비금에서 지급되는 급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학교기관이 이 법에 따라 따로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자녀는 19세 미만인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장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상태에 있는 19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정한다.<개정 2013. 4. 5., 2018. 4. 17.>

③ 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손자녀는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에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개정 2013. 4. 5., 2018. 4. 17.>

1. 19세 미만인 사람
2.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에 있는 사람

④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의 재해유족급여에 대해서는 제2항 및 제3항 각 호 중 “19세”를 각각 “25세”로 한다.<신설 2025. 11. 11.>

⑤ 교직원인 사람 또는 교직원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의 태아는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5. 11. 11.>

[전문개정 2009. 12. 31.]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학교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에게 적용한다.

1. 「사립학교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특수학교 중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
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립학교 및 학교경영기관 중 특히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립학교와 이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2.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
3. 2017년 1월 1일 이후 교직원으로 신규 임용(제2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되는 경우로서 임용 당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정년을 초과한 교직원
   가. 교원: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정년
   나. 사무직원: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정년

[전문개정 2016. 5. 29.]

## 제2장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개정 2009. 12. 31.>

**제4조(설립)**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부담금 징수
2. 각종 급여의 결정과 지급
3. 자산의 운용
4. 교직원 복지사업의 수행
5. 그 밖에 연금에 관한 업무

[전문개정 2009. 12. 31.]

**제5조(법인격)** ①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②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6조(사무소)** 공단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와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7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조직에 관한 사항
5.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사업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② 공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12. 31.]

**제8조(등기)** ① 공단의 등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9조(해산)** 공단의 해산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10조(임원)** ① 공단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 2명 이내의 상임이사, 6명 이내의 비상임이사 및 감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비상임이사 중에는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교육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 1명을 두고,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는 교직원을 대표하는 사람과 학교경영기관의 장을 대표하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이사장은 이사장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개정 2024. 2. 27.>

③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한다.<신설 2024. 2. 27.>

④ 비상임이사는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신설 2024. 2. 27.>

⑤ 감사는 이사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신설 2024. 2. 27.>

⑥ 제2항의 이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를 준용하며, 그 밖에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신설 2024. 2. 27.>

[전문개정 2009. 12. 31.]

**제11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비상임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임원은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12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상임이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分掌)하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한다.
④ 감사는 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12조의2(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단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13조(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② 임원이 제1항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지면 그 임원은 당연히 퇴직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14조(이사회)** ① 공단의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며, 이사장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15조(벌칙 적용시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16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① 공단의 임원(비상임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이사장ㆍ상임이사 및 감사는 제10조에 따른 임명권자(이하 "임명권자"로 한다)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으며, 직원은 공단 이사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개정 2024. 2. 27.>
[전문개정 2009. 12. 31.]

**제17조(보수의 제한)** 비상임이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실비의 보상만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18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19조(공단의 권한 등)** ① 공단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급여에 관련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에게 장부ㆍ서류나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급여와 관련한 보고
2.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시
3. 일정한 장소에의 출석과 의견의 진술 또는 설명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단의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이 법에 따라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또는 의료기관이 제1항에 따른 요구 및 검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요구 및 검사에 따를 때까지 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또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급여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개정 2021. 3. 23.>

④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 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3. 5. 22., 2014. 11. 19., 2015. 12. 22., 2017. 7. 26., 2018. 4. 17., 2018. 8. 14., 2021. 3. 23., 2022. 10. 18.>

1. 연금수급자의 주소지 및 가족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한 범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하여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2. 교직원, 연금수급자 및 제39조에 따른 급여 환수 대상자의 과세소득을 확인하기 위한 범위: 국세청장에 대하여 근로소득자료 및 사업소득자료
3. 교직원 및 연금수급자의 소득월액을 확인하기 위한 범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대하여 보수월액자료
4. 교직원의 직무상 질병ㆍ부상 및 장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범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대하여 건강보험 요양급여자료

4의2. 교직원 및 교직원이었던 사람의 요양급여, 장해급여 및 재해유족급여의 지급심사를 위한 범위: 의료기관에 대하여 해당 진료에 관한 자료

5. 연금수급자의 사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범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대하여 건강검진 결과자료
6. 교직원 및 교직원이었던 사람의 주소지, 연금수급자의 사망ㆍ주민등록말소ㆍ국외이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범위: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하여 주민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7. 연금수급자의 재혼 또는 친족관계 종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범위: 법원행정처장에 대하여 가족관계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8. 교직원 및 교직원이었던 사람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는지 또는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범위: 경찰청장에 대하여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소관 검찰청의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 대하여 판결문 사본

9. 이 법에 따라 급여를 적정하게 산정하고 지급하기 위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자료 중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⑤ 공단은 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신설 2013. 5. 22.>

⑥ 제4항에 따라 공단이 받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을 면제한다.<개정 2013. 5. 22.>

[전문개정 2009. 12. 31.]

**제20조(업무의 위탁)** ① 공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인부담금, 법인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의 수납에 관한 업무와 급여 및 그 밖의 지출금의 지급, 교직원 후생복지사업을 위한 업무를 체신관서,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그 밖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21조** 삭제 <2000. 1. 12.>

**제22조(회계연도)** 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23조(공단의 수입ㆍ지출)** ① 공단의 수입과 지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 3. 23.>

1. 수입
   가. 부담금
   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이입충당금(移入充當金)
   다. 그 밖의 수입금
2. 지출
   가. 이 법에 따른 급여금ㆍ적립금ㆍ반환금
   나. 그 밖에 공단 운영을 위한 경비

② 제1항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은 전년도 기금운용 수익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24조(예산)** ① 이사장은 매 회계연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회계연도개시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예산은 예산총칙ㆍ추정재무상태표ㆍ추정손익계산서ㆍ자금계획서를 내용으로 하고 그 내용을 명백하게 함에 필요한 부속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1. 3. 23.>

[전문개정 2009. 12. 31.]

**제25조(결산)** 이사장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결산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 및 잉여금처분계산서를 말한다)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1. 3. 23.>
[전문개정 2009. 12. 31.]

**제26조** 삭제 <2000. 1. 12.>

**제27조(잉여금의 처리)**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잉여금이 있으면 손실금을 보전(補塡)하고, 나머지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의 수입으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28조(공단에 대한 감독)** 교육부장관은 공단의 업무를 감독하며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1. 3. 23.>
[전문개정 2009. 12. 31.]

**제29조(임원의 해임)** 임명권자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때
2.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집행이 곤란하게 된 때
[전문개정 2009. 12. 31.]

**제30조(보고와 검사)** 교육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단에 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업무상황 또는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12. 31.]

**제30조의2(「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 제3장 재직기간 <개정 2009. 12. 31.>

**제31조(재직기간의 계산)**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를 계산할 때 교직원의 재직기간은 교직원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年月數)로 계산한다. 이 경우 개월을 연(年)으로 환산할 때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② 교직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다음 각 호의 복무기간은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재직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다.<개정 2016. 12. 20., 2019. 12. 31., 2021. 3. 23.>

1.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또는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방위소집ㆍ상근예비역소집ㆍ보충역소집 또는 대체역소집에 의하여 복무한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을 포함한다)
2. 1979년 1월 1일부터 1992년 5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른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기간
   가. 종전의 「국민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1980년 12월 31일 법률 제33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나. 종전의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1991년 12월 14일 법률 제443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다. 종전의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1993년 12월 31일 법률 제468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은 제1항의 재직기간에서 제외한다.<신설 2016. 5. 29., 2021. 3. 23.>

1. 교원: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정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2. 사무직원: 제3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른 정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④ 제3항에 따른 정년의 계산에 관하여는 교원은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2항을, 사무직원은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제4항을 각각 준용한다.<신설 2016. 5. 29.>

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28조제4호에 따른 퇴직수당(이하 "퇴직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때에는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하거나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 5. 29., 2018. 3. 20., 2021. 3. 23.>

1. 제2항에 따른 복무기간
2. 제32조제1항에 따라 합산한 재직기간
3. 법률 제3684호 사립학교교원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법률 제7536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항 및 법률 제7889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라 포함된 소급통산 재직기간

⑥ 퇴직수당 지급시 재직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정직기간 및 강등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 1을 각각 뺀다.<개정 2013. 5. 22., 2016. 5. 29.>

1.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2.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마치기 위한 휴직
3. 국제기구, 외국기관, 재외국민 교육기관, 국내외 대학 또는 국내외 연구기관에 임시 채용되어 하게 된 휴직
4.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제11호 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휴직
5.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제7호 및 제70조의2에 따른 자녀의 양육 또는 여성 교직원의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휴직

6.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휴직
[전문개정 2009. 12. 31.]
[2016. 12. 20. 법률 제14394호에 의하여 2016. 2. 25.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2항을 개정함.]

**제31조의2(임용 전 복무기간의 산입방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복무기간에 포함시키려는 사람은 복무기간 산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2., 2021. 3. 23.>
[전문개정 2009. 12. 31.]
[제목개정 2016. 12. 20.]

**제32조(재직기간의 합산)** ① 퇴직한 교직원ㆍ공무원 또는 군인(이 법과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던 사람은 제외한다)이 교직원으로 임용되고 재직기간 합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제31조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 받으려는 사람이 공단으로부터 그 합산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퇴직 당시에 받은 퇴직급여액이나 퇴역급여액[「공무원연금법」 제65조(이 법 제4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군인연금법」 제38조에 따라 급여액의 제한을 받았을 때에는 그 제한이 없는 경우에 받았어야 할 급여액을 말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교직원이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의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연금인 급여는 반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 3. 20., 2019. 12. 10.>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반납하여야 할 급여액과 이자(이하 "반납금"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내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다.
④ 공단은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합산이 인정된 재직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합산 제외를 신청하거나 반납금을 6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합산 제외를 신청한 기간 또는 합산 승인된 재직기간에서 이미 낸 반납금에 상당하는 재직기간을 공제한 기간을 합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31.]

## 제4장 급여 <개정 2009. 12. 31.>

**제33조(급여)** 교직원의 퇴직ㆍ사망ㆍ장해(직무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 제28조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고, 교직원의 직무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장해ㆍ사망에 대해서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다. <개정 2021. 3. 23.>
[전문개정 2018. 3. 20.]

**제33조의2(간병급여 등의 지급)** ① 제33조에 따른 급여를 받은 사람이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요양기간이 지난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는 간병급여를 지급하고, 신체상의 장해로 보조기구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보조기구나 보조기구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3. 5. 22., 2018. 3. 20., 2018. 4. 17., 2021. 3. 23.>

② 제1항에 따른 간병급여 등의 지급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8. 3. 20., 2018. 4. 17.>

[전문개정 2009. 12. 31.]

[제목개정 2018. 3. 20., 2018. 4. 17.]

**제33조의3(재요양)** ① 제33조에 따른 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된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직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33조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요양(이하 이 조에서 "재요양"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 5. 22., 2018. 3. 20., 2018. 4. 17.>

②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8조에 따른 장해연금의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는 재요양이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재요양이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장해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개정 2018. 4. 17.>

③ 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34조(급여의 결정)** ① 각종 급여는 그 권리를 가질 사람의 신청을 받아 공단이 결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급여를 결정할 때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심의회(이하 "급여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질 사람이 제1항에 따른 급여 중 다음 각 호의 급여를 신청할 때에는 그 교직원이 소속되었던 학교경영기관의 장(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9. 12. 10.>

1.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제1호에 따른 요양급여
2.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제3호에 따른 장해급여
3.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제5호나목에 따른 순직유족급여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급여심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35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① 다음 각 호의 급여의 산정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한다. 이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연금법」 제30조제1항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1. 5. 19., 2018. 3. 20., 2018. 4. 17.>

1.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사망조위금

2.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28조에 따른 급여(「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및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퇴직유족연금은 제외한다)
3.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8조에 따른 장해급여 및 같은 법 제35조·제36조에 따른 장해유족연금·순직유족연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6조에 따른 유족연금 및 같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사망조위금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금액을 각각 해당 교직원의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신설 2018. 4. 17.>

③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및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퇴직유족연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기초로 한다. 이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연금법」 제30조제2항제2호 후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5. 12. 15., 2018. 3. 20., 2018. 4. 17.>

1.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의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
   가. 퇴직 3년 전 연도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퇴직 3년 전 연도와 대비한 퇴직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환산한 금액
   나. 퇴직 2년 전 연도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퇴직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퇴직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환산한 금액
   다. 퇴직 전년도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2. 평균기준소득월액

④ 다음 각 호의 급여의 산정은 「공무원연금법」 제30조제3항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산정되는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기초로 한다.<신설 2011. 5. 19., 2018. 3. 20., 2018. 4. 17.>

1.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7조에 따른 순직유족보상금
2.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2조에 따른 재난부조금
3.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사망조위금

[전문개정 2009. 12. 31.]

**제36조(유족의 우선순위)**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상속받는 순위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37조(동순위자의 경합)** 유족 중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38조(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지급의 특례)** ① 교직원이거나 교직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금액을 그 직계존비속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직계존비속이 없을 때에는 공단은 관계 학교경영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그 사망한 사람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2.>

② 제1항에 따른 직계존비속에 대한 급여 지급에 관하여는 제36조와 제37조를 준용한다.<개정 2013. 5. 22.>

[전문개정 2009. 12. 31.]

**제39조(급여의 환수)**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수급자(상속인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에는 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제3호 또는 제4호의 경우로서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2. 이 법에 따라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질 사람이 제34조제1항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면서 공단에 급여제한사유에 대하여 사실과 달리 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급여지급 이후 발생한 급여제한사유 또는 수급권 상실사유를 공단에 사실과 달리 신고(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늦게 신고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3. 급여를 받은 후 그 급여의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4. 그 밖에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전문개정 2009. 12. 31.]

**제39조의2(미납금의 공제지급)** ①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사람이 퇴직 또는 사망 시까지 다음 각 호의 미납금이나 그 밖에 공단에 대한 채무가 있을 때에는 퇴직급여ㆍ퇴직유족급여ㆍ재해유족급여 또는 퇴직수당의 금액에서 공제하여 지급한다. 다만, 학교기관의 장의 귀책사유로 미납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5. 22., 2018. 3. 20., 2018. 4. 17.>

1. 제32조제3항에 따른 반납금의 원리금
2. 제39조에 따른 환수금의 원리금
3.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50조에 따른 지급정지금액의 정산과 관련된 차액
4. 제45조 및 제51조에 따른 개인부담금과 그 연체금
5. 제53조의3제2항제3호에 따라 대여하는 자금의 원리금과 제60조의3에 따라 국가가 공단에 위탁하여 행하는 사업의 원리금
6. 공단에 대한 그 밖의 채무

② 연금인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채무(제1호는 제외한다)가 있을 때에는 연금인 급여 외의 퇴직급여ㆍ퇴직유족급여ㆍ재해유족급여 또는 퇴직수당에서 우선 공제하여 지급하고 남은 채무가 있을 때에는 해당 연금월액의 2분의 1 이상을 초과하여 공제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 3. 20., 2018. 4. 17.>

③ 교직원 및 교직원이었던 사람이 급여청구 시 제1항의 미납금 및 채무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교직원이 소속되었던 학교경영기관의 장(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인 경우에는 학교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9. 12. 10.>
[전문개정 2009. 12. 31.]

**제40조(권리의 보호)** ①급여를 받을 권리는 다음 각 호의 경우가 아니면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13. 12. 30., 2025. 11. 11.>
1.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및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
2. 급여를 받을 권리를 공단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3. 수급권자에 대하여 확정된 양육비 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연금인 급여(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의 급여는 제외한다)를 받을 권리에서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를 초과하는 금액을 압류하는 경우

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다.<신설 2013. 12. 30.>
[전문개정 2009. 12. 31.]

**제41조(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① 다른 법령에 따라 학교경영기관의 부담으로 이 법에 따른 급여와 같은 종류의 급여를 받는 사람에게는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 법에 따른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에 공단은 공제한 금액을 학교경영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은 그 급여 사유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급여액(장해연금 및 비직무상 장해연금의 경우에는 장해일시금 및 5년분의 비직무상 장해연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3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손해배상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8. 3. 20.>
1. 해당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사람의 배우자
2. 해당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사람의 직계존비속
3. 직무수행 중인 교직원

③ 제2항의 경우에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같은 사유로 이미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배상액의 범위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42조(「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준용)** ① 제33조에 따른 급여의 종류, 급여의 사유, 급여액 및 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 제28조,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40조, 제41조, 제43조부터 제52조까지, 제54조부터 제65조까지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33조

까지,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 중 해당 규정(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및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각각 “교직원(「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2조제1항의 재난부조금 산정과 같은 법 제43조제3항의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의 사망에 따른 사망조위금 산정, 「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의 지급정지 대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으로, “공무상”은 각각 “직무상”으로, “비공무상”은 각각 “비직무상”으로, “순직공무원”은 각각 “직무상사망교직원”으로, “순직”은 각각 “직무상”으로, “공단” 및 “인사혁신처장”은 각각 “공단”으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으로, “사립학교교직원”은 “공무원”으로, 「공무원연금법」 제34조제1항 단서 중 “제25조”는 이 법 “제31조”로, 「공무원연금법」 제40조제2항 및 제3항과 같은 법 제43조제3항의 “제26조”는 이 법 “제32조”로, 「공무원연금법」 제52조제5항의 “제31조와 제32조”는 이 법 “제36조와 제37조”로, “기여금”은 각각 “개인부담금”으로, 「공무원연금법」 제63조제4항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급여심의회”로 본다. <개정 2018. 4. 17., 2022. 10. 18.>

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 제51조, 제54조, 제55조, 제58조 및 제62조의 해당 규정에 따른 급여의 사유, 재직기간, 재직연수 및 공제재직연수를 산정할 때 제31조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재직기간은 계산에서 제외한다.<신설 2016. 5. 29., 2018. 3. 20., 2021. 3. 23.>

③ 제2항에 따른 정년의 계산 방법은 제31조제4항에 따른다.<신설 2016. 5. 29.>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6. 5. 29., 2018. 3. 20.>

⑤ 삭제<2019. 12. 10.>

[전문개정 2009. 12. 31.]

[제목개정 2018. 3. 20., 2018. 4. 17.]

## 제5장 비용부담 <개정 2009. 12. 31.>

**제43조(비용 부담의 원칙)** 급여나 그 밖에 이 법을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그 비용의 예상액과 개인부담금, 국가부담금, 법인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및 그 예정운용수익금의 합계액이 장래에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급여에 드는 비용은 적어도 5년마다 다시 계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44조(개인부담금)** ① 개인부담금은 교직원이 그가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부담한다.

② 교직원이 퇴직한 달에 다시 교직원으로 임용되었을 경우에는 재임용 후 다시 그 달의 개인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에 따른 재직기간 합산을 받은 경우에는 재임용된 달

(1일자로 재임용된 경우의 달은 제외한다)의 개인부담금은 부담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부담금 납부기간이 36년을 초과하거나 제3조제2항제3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정년을 초과하여 재직하는 사람은 개인부담금을 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정년의 계산 방법은 제31조제4항에 따른다.<개정 2015. 12. 15., 2016. 5. 29.>

④ 제1항의 개인부담금은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90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연금법」 제67조제2항 후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12. 15., 2018. 3. 20.>

[전문개정 2009. 12. 31.]

**제45조(개인부담금의 납부)** ① 개인부담금은 해당 학교기관의 장이 매월 보수에서 징수하여 보수지급일부터 3일 이내에 공단에 내야 한다.

② 교직원이 보수의 전부를 지급받지 못할 사유로 보수를 받지 못하는 달에는 개인부담금을 보수 지급일부터 2일 이내에 해당 학교기관의 장에게 내야 한다. 다만, 교직원이 휴직한 경우에는 교직원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 5. 22.>

1. 휴직기간 동안 매월 그 달에 해당하는 개인부담금을 계속 납부
2.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휴직기간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매월 개인부담금을 추가로 납부. 이 경우 매월 추가로 납부하는 개인부담금은 납부하는 달에 해당하는 개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복직 후 미납한 기간에 해당하는 개인부담금을 한꺼번에 납부. 이 경우 한꺼번에 납부하는 개인부담금은 납부하는 달에 해당하는 개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학교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개인부담금을 받으면 지체 없이 공단에 내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46조(국가부담금)** ① 국가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2. 1. 26.>

1. 제44조제4항에 따라 교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의 합계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48조의3에 따라 교직원이 내는 소급개인부담금 합계액과 같은 금액
3.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 중 제4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부담하는 금액

② 국가는 제1항의 부담금을 공단에 내야 한다.

③ 국가부담금을 더 내거나 덜 냈을 때에는 다음 기(期)의 국가부담금을 낼 때에 가감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더 내거나 덜 낸 국가부담금을 다음 기의 국가부담금을 낼 때에 정산하지 아니한 경우(해당 회계연도 내에 전액을 공단에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금액을 원금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에 대한 국가부담액에 대하여는 해당 회계연도 말까지 국가가 납입한 금액이 실제 든  비용보다 적거나 많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정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정산하여야 한다.<개정 2021. 3. 23.>

[전문개정 2009. 12. 31.]

**제47조(법인부담금)** ① 법인부담금은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한다. 다만, 학교경영기관이 그 학교에 필요한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② 「사립학교법」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경영기관이 제1항 단서에 따라 법인부담금의 부족액을 학교가 부담하게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학교경영기관의 재정여건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기간을 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신설 2012. 1. 26., 2013. 3. 23.>

③ 제1항의 법인부담금은 해당 학교 교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의 합계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및 그 학교기관의 사무직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 합계액과 같은 금액에 교직원의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은 공단이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으며, 국가는 공단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한다.<개정 2012. 1. 26.>

④ 제3항에 따른 퇴직수당의 지급에 드는 비용의 부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2. 1. 26.>

⑤ 학교경영기관은 제3항에 따른 법인부담금을 매년 학교기관의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에 필요한 법인부담금은 학교경영기관의 업무 예산에서 학교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학교에서 부담하게 된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 1. 26.>

[전문개정 2009. 12. 31.]

**제47조의2(책임준비금의 적립)** 국가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재정의 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책임준비금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48조(법인부담금의 납부)** 법인부담금은 학교기관의 장이 매월 개인부담금과 함께 공단에 내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48조의2(재해보상부담금)** ① 재해보상부담금은 교직원의 개인부담금 합계액의 10,000분의 181 이상 10,000분의 54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부담 및 납부에 관하여는 제47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과 제4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 1. 26.>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납부된 재해보상부담금을 재해보상급여 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적립된 재해보상급여 준비금에서 지급되는 급여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에 따른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재해유족급여(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및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은 제외한다) 및 부조급여로 한다.<개정 2018. 4.

17.>

④ 재해보상급여 준비금은 공단의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하며,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48조의3(복무기간의 부담금)** 제31조제2항에 따라 복무기간이 재직기간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직원은 그 산입기간에 대하여 공단이 산입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해당 월분의 개인부담금과 같은 금액의 소급개인부담금을 추가로 공단에 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교직원이 그 소급개인부담금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하고자 하는 달의 개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잔여 소급개인부담금을 계산하여 일시에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 도중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잔여 소급개인부담금을 계산하여 이를 해당 퇴직급여ㆍ퇴직유족급여ㆍ재해유족급여 또는 퇴직수당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6. 12. 20., 2018. 3. 20., 2021. 3. 23.>

[전문개정 2009. 12. 31.]

[제목개정 2016. 12. 20.]

**제49조(전출 시의 부담금)** 교직원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다른 학교기관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전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개인부담금 및 법인부담금은 전출 전의 학교기관의 장이 내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50조(과오납의 정산)** 개인부담금과 법인부담금을 잘못 납부하였을 때에는 각각 다음 부담금 납부 시에 가감하여 정산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51조(연체금)** 공단은 개인부담금, 법인부담금 또는 재해보상부담금을 정하여진 날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52조(강제 징수)** ① 공단은 부담금 또는 제39조에 따른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다.

② 공단이 제1항에 따라 독촉을 할 때에는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사람이 그 기한까지 부담금 또는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공단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직접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21. 3. 23.>

④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하거나 급여액을 환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으면 결손처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
2.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을 하는 공단의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본다.

⑥ 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을 할 때에 공단이 가지는 채권의 변제 순위는 조세(租稅) 다음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52조의2(연금액의 이체)** ①「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ㆍ퇴역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교직원으로 임용되어 제32조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 합산을 받은 후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국방부장관은 그 퇴직한 사람 또는 그 유족(제38조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ㆍ퇴역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직유족연금(제38조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과 퇴직유족연금부가금 및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포함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이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체금액의 산정방법 및 이체기한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5. 22., 2018. 3. 20.>

②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 제4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은 해당 연도의 재해보상부담금 재원으로 이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 중 직무로 사망하거나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한 교직원의 유족이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퇴직유족연금의 수급자인 경우에는 퇴직유족연금일시금을 받는 것으로 보아 이체할 금액을 산정한다.<신설 2013. 5. 22., 2018. 3. 20., 2021. 3. 23.>

[전문개정 2009. 12. 31.]

**제53조(심사의 청구)** ① 급여에 관한 결정, 개인부담금의 징수,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처분 또는 급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사 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심사 청구를 할 수 없었던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에 규정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재심위원회는 공단에 두되 그 조직과 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 제6장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개정 2009. 12. 31.>

**제53조의2(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이하 “ 기금 ” 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금은 공단의 예산에 계상된 적립금과 결산상 잉여금 및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조성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53조의3(기금의 관리 · 운용)** ① 기금은 공단이 관리 · 운용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개정 2020. 12. 22.>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預入) 또는 신탁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매
3. 교직원 및 연금수급자에 대한 자금의 대여
4. 기금 증식과 교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증식사업 또는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③ 공단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0. 12. 22.>
④ 공단은 기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0. 12. 22., 2021. 3. 23.>
[전문개정 2009. 12. 31.]

**제53조의4(사립학교교직원 연금운영위원회)** 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운영위원회(이하 “ 운영위원회 ” 라 한다)를 둔다.
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제도에 관한 사항
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재정계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에 의한 사립학교교직원 후생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단 이사장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단 이사장이 되고, 위원은 교육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3. 3. 23.>
1. 기금 관련 중앙행정기관 소속공무원
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업무와 관련한 공단의 임원
3. 교직원 단체가 추천하는 사립학교 교직원
4. 사립학교 설립 · 경영자
5. 퇴직연금수급자
6.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7.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운영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53조의5(기금에서의 차입 및 이입 충당)** ①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급여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기금에서 일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일시 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급여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금에서 이입하여 충당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53조의6(회계처리의 원칙)**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53조의7(국가의 지원)** 법률 또는 제도적인 사유로 이 법에 따른 급여를 기금으로 충당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가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31.]

## 제7장 보칙 <개정 2009. 12. 31.>

**제54조(시효)**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요양급여、간병급여、부조급여는 3년간, 퇴직급여、퇴직유족급여、비직무상장해급여、퇴직수당、장해급여、재해유족급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퇴직유족급여、비직무상장해급여、퇴직수당、장해급여、재해유족급여를 받을 권리가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부담금을 징수할 권리도 소멸한다.<개정 2018. 3. 20.>
③ 잘못 납부한 부담금을 반환 받거나 징수할 권리 및 급여를 환수할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개정 2021. 3. 23.>
④ 부담금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환수금 등의 납부 고지 및 독촉, 급여의 지급 청구 또는 잘못 납부한 부담금 등의 반환 청구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진다.
⑤ 제4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납부의 고지 또는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55조(효력발생 기간)** 이 법에 따른 급여 또는 심사 청구, 신고 등에 관한 기간을 계산할 때에 그 서류가 우편 발송된 경우 우송에 걸린 일수는 그 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 3. 23.>
[전문개정 2009. 12. 31.]

**제56조(끝자리 수 처리)** 부담금의 징수와 급여의 지급 시 끝자리 수 처리는 「국고금관리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57조(학교경영기관의 장의 확인)** ① 학교경영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급여 사유의 발생, 개인부담금의 납부, 재직기간의 계산에 필요한 이력사항과 그 밖에 교직원이거나 교직원이었던 사람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조사 확인하여야 한다.
② 학교경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교직원이거나 교직원이었던 사람, 그 밖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58조(학교기관의 장의 책임)** 학교기관의 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개인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법인부담금 또는 재해보상부담금을 내지 아니하여 공단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나 보고를 하여 공단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59조(전시ㆍ사변의 특례)** 전시 또는 사변으로 급여에 드는 비용이 해당 연도의 개인부담금, 국가부담금, 법인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및 운용수익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단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급여시기를 일시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12. 31.]

**제60조(국고 보조)** 국가는 공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60조의2(관할청의 업무 협조)** 「사립학교법」 제4조에 따른 관할청은 학교의 설립ㆍ폐지를 인가하거나 인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학교경영기관의 설립ㆍ해산을 인가하거나 인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60조의3(국가사업의 위탁 등)** ① 국가는 교직원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공단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에 드는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관리방법은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교육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12. 31.]

**제60조의4(적용범위의 특례)** ① 법률에 따라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학교 또는 대학원을 설치ㆍ운영하는 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의 교수요원, 연구요원 및 교직원(「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또는 군인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교수요원, 연구요원 및 교직원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직원(이하 이 조에서 "교직원"이라 한다)으

로 보고, 연구기관은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학교경영기관(이하 이 조에서 “학교경영기관”이라 한다)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②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평생교육시설의 교원 및 사무직원에 대하여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교원 및 사무직원은 교직원으로 보고,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람 또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는 법인은 학교경영기관으로 본다.<개정 2013. 3. 23.>

③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의 직원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공단의 직원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무직원으로 보고, 공단은 학교경영기관으로 본다.<개정 2012. 1. 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2. 1. 26., 2013. 3. 23.>

1. 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 연구요원 및 교직원의 범위
2. 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교원 및 사무직원의 범위
3. 제3항에 따른 공단의 직원의 범위

⑤ 국가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설치하는 국립대학교의 교원, 직원 및 조교 중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교원, 직원 및 조교에 대하여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교원, 직원 및 조교는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직원으로, 국가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설치하는 국립대학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학교경영기관으로 본다.<신설 2010. 12. 27.>

⑥ 국가가 법인으로 설치한 서울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임상교수요원, 직원(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탁을 받아 운영하는 병원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임상교수요원, 직원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직원으로, 서울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학교경영기관으로 본다.<신설 2016. 1. 28.>

⑦ 국가가 법인으로 설치한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임상교수요원, 직원(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탁을 받아 운영하는 병원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임상교수요원, 직원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직원으로,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은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학교경영기관으로 본다.<신설 2016. 1. 28.>

[전문개정 2009. 12. 31.]

**제61조** 삭제 <2000. 1. 12.>

## 제8장 벌칙 <개정 2009. 12. 31.>

**제62조(과태료)** ① 공단의 임직원이 제30조에 따른 검사를 기피ㆍ방해 또는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사람 또는 검사를 방해하거나 기피한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12. 31.]

**부칙** <제2650호,1973. 12. 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민생활의안정을위한대통령긴급조치 제3호에 의해 197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정지]

**제2조** (재직자에 대한 경과조치) 1975년 1월 1일 현재 재직중인 교원은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75년 1월 1일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1974. 12. 26.]

**제3조** 삭제 <1979. 12. 28.>

**제4조** (설립위원) ①문교부장관은 관리공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5인의 설립위원을 위촉한다.

②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관리공단의 이사장이 임명된 때에는 지체없이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5조** (감사의 임기에 대한 특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임명되는 감사의 임기는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년으로 한다.

**부칙** <제2737호,1974. 12. 26.>

이 법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32호,1975.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급여사유발생의 유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급여사유가 발생한 유족에 대하여는 이 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유족급여를 지급한다.

**부칙** <제2983호,1976.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이사장ㆍ상무이사 및 이사의 임기는 이 법에 의한 임기로 하되,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부칙** <제3058호,1977.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197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사무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1978년 1월 1일부터 현재 재직중인 사무직원은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③삭제 <1979. 12. 28.>

④삭제 <1979. 12. 28.>

**부칙** <제3115호,1978. 12. 5.>

이 법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06호,1979. 12. 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에 관한 규정은 198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직기간의 소급통산등) ①교직원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학교기관 (학교경영기관이 동일한 다른 학교를 포함한다)에 1974년 12월 31일(사무직원은 1977년 12월 31일)이전부터 계속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 1961년 12월 4일부터 1974년 12월 31일(사무직원은 1977년 12월 31일)사이에 계속근무한 기간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당해 월분의 개인부담금 및 법인부담금을 따로 소급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소급납부한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통산할 수 있다.

②소급부담금을 납부하고 있거나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재직 또는 퇴직이나 사망한 때의 당해 월분의 부담금을 기준으로 하여, 소급통산하는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개인부담금(사망의 경우에는 그의 유족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 및 법인부담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에 납부할 수 있다. 다만, 퇴직 또는 사망의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하는 개인부담금을 퇴직급여 또는 유족급여의 액에서 멸하여 지급받음으로써 그의 납부에 갈음할 수 있다.

**제3조** (관련조항의 정비) 법률 제2650호 사립학교교원연금법 부칙 제3조와 법률 제3058호 사립학교교원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항 및 제4항은 이를 삭제한다. 다만, 폐지되는 부칙에 의하여 납부된 소급부담금은 이 법 부칙 제2조제1항에 의하여 납부된 소급부담금으로 본다.

**부칙** <제3395호,1981. 3. 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수학교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특수학교 및 그 학교경영기관에 재직중인 교직원은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3조제2호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학교기관으로 지정받은 특수학교 및 그 학교경영기관에 재직중인 교직원은 그 지정을 받은 날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3조** (특수학교교직원 재직기간의 소급통산) ①부칙 제2조의 특수학교 및 그 학교경영기관의 교직원으로서 1961년 12월 4일부터 이 법 시행일의 전날(부칙 제2조 단서에 해당하는 학교기관의 교직원은 그 지정을 받은 전날)사이에 당해 학교기관에 계속 근무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개인부담금 및 법인부담금과 동액의 소급부담금을 따로 납부하는 때에는 그 납부한 기간을 재직기간에 통산한다.

②제1항의 교직원으로서 소급부담금을 납부하고 있거나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소급부담금을 납부하는 날이 속하는 달 또는 퇴직이나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부담금을 기준으로 하여 소급통산하는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개인부담금(사망의 경우에는 개인부담금은 그 유족이 부담한다) 및 법인부담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에 납부할 수 있다. 다만, 퇴직 또는 사망의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하는 개인부담금을 퇴직급여 또는 유족급여의 액에서 이를 공제하여 지급받음으로써 그 납부에 갈음할 수 있다.

**부칙** <제3582호,1982. 12. 27.>

①(시행일) 이 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병역복무기간의 재직기간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으로서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병역복무기간이 재직기간에 산입되는 교직원은 그 산입기간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당해 월분의 개인부담금과 같은 금액의 소급개인부담금을 관리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교직원이 그 납부 도중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퇴직 또는 사망당시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잔여소급개인부담금을 계산하여 이를 당해 퇴직 또는 유족급여에서 공제한다.

③(재직기간합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교직원으로서 제32조의 개정규정에 해당되어 재직기간의 합산을 하고자 하는 자는 종전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합산할 수 있다.

**부칙** <제3684호,1983. 12. 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의 규정은 198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직기간의 소급통산) ①교직원으로서 1948년 8월 15일부터 1974년 12월 31일(사무직원은 1977년 12월 31일, 사립의 특수학교 및 학교경영기관에 재직중인 교직원은 1981년

3월 19일, 제3조제3호 또는 제6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 적용대상의 학교ㆍ학교경영기관 또는 연구기관으로 지정받은 학교기관에 재직중인 교직원은 그 지정을 받은 전날) 사이에 교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있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월 당해 월분의 개인부담금 및 법인부담금을 따로 소급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소급납부한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통산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한 소급통산에 있어서 소급납부하는 모든 부담금은 당해 교직원이 전액을 부담하되, 그 금액은 매월 당해 월분의 개인부담금의 2배에 해당하는 액으로 한다.

1. 재직하고 있는 학교기관(학교경영기관이 동일한 다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아닌 학교기관에 교직원으로 근무한 기간
2. 재직하고 있는 학교기관의 교직원이었던 자가 퇴직한 후 다시 당해 학교기관에 재임용된 경우의 그 퇴직전의 교직원으로 근무한 기간

②삭제 <2009. 12. 31.>

**제3조** (소급납부하는 부담금의 일시납부) ①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소급납부하고 있거나 소급납부하고자 하는 교직원은 당해 월분의 부담금을 기준으로 하여 나머지의 소급통산할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개인부담금 및 법인부담금(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직원이 부담하는 부담금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시에 납부할 수 있다.

②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소급납부하고 있는 교직원이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나머지의 소급납부할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개인부담금 및 법인부담금(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직원이 부담하는 부담금을 말한다)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퇴직급여(퇴직연금을 제외한다) 또는 유족급여(유족연금을 제외한다)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퇴직급여 또는 유족급여에서 일시에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을 공제하여 지급함으로써 그 납부에 갈음한다.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3760호,1984.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보험료충당금 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은 자로서 연금수급자의 자격으로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에 의한 피보험대상이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4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충당금을 관리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행위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사립학교교원연금급여심사위원회가 행한 행위나 동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사립학교교원연금급여재심사위원회가 행한 행위나 동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④(급여사유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3954호,1987. 11. 28.>
이 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35호,1988. 12. 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급여사유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4226호,1990. 4. 7.>(사립학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사립학교교원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중 " 감독청의 승인을 받았거나 감독청에 보고된 교원 " 을 " 관할청에 보고된 교원 " 으로 한다.
제60조의2의 제목 및 본문중 " 감독청 " 을 각각 " 관할청 " 으로 한다.

**부칙** <제4268호,1990. 12. 27.>(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1* 생략
1( 사립학교교원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제7조제2항, 제10조제2항、제3항, 제16조, 제21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25조, 제28조 내지 제30조, 제52조제3항, 제59조, 제60조의4제1항、제2항 및 제62조제3항 내지 제5항중 " 문교부장관 " 을 각각 " 교육부장관 " 으로 한다.
제60조의3제3항중 " 문교부령 " 을 " 교육부령 " 으로 한다.
2) 내지5) 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제4455호,1991. 12. 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1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급여사유 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1991년 9월 30일이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재직기간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자에 대한 퇴직수당 지급에 있어서는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 시행이후의 휴직(제31조제4항 각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 1을 각각 감한다.

④(퇴직수당 비용부담에 관한 경과조치) 1991년 10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전일까지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퇴직수당을 지급하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와 관리공단이 부담한다.

⑤(재직기간 합산시 반납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고 반납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1991년 9월 30일이전에 퇴직한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가산금을 포함하여 납부하고, 1991년 10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전일까지 퇴직한 자는 이 법,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퇴직수당액과 그 이자를 합한 금액을 포함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부칙** <제5068호,1995. 1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퇴직일 또는 퇴직일의 다음날에 다시 임용된 교직원에 관한 적용의 특례) 이 법 시행전에 퇴직일 또는 퇴직일의 다음날에 다시 임용된 자로서 재임용전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수령한 자가 1996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반납하는 경우(1996년 6월 30일까지 반납의 의사를 표시하고 제32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분할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계속 재직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과오납된 부담금을 환부받거나 징수할 권리 및 급여를 환수할 권리부터 적용한다.

**제4조** (유족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1995년 12월 31일이전에 퇴직하여 이 법 시행전에 혼인 또는 출생하거나 입양관계가 성립된 배우자ㆍ자녀(1995년 12월 31일 현재의 태아를 포함한다)ㆍ부모ㆍ손자녀(1995년 12월 31일 현재의 태아를 포함한다) 및 조부모에 대하여는 제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재직기간의 합산에 관한 경과조치) 1995년 12월 31일 현재 재직중인 교직원으로서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고자 하는 자(종전의 제32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12월 31일까지 재직기간의 합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종전 호봉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1995년 12월 31일 현재 재직중인 교직원으로서 감액전의 호봉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35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3월 31일까지 종전 호봉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 (급여사유의 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7조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6124호,2000. 1. 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은 이 법에 의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이 행한 행위 기타 법률관계에 있어서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의 명의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의 명의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⑤이 법 시행당시의 사립학교교원연금급여심의회 및 사립학교교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는 이를 각각 이 법에 의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급여심의회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로 본다.

⑥이 법 시행당시의 재해보상기금은 이 법에 의한 재해보상급여준비금으로 본다.

**제3조** (감사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감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 (심사청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행한 처분등부터 적용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등) ①국민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단서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하고, 제8조제1항 단서、제67조제1항제4호 및 제77조의3제1항제2호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각각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한다.

②국민의료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및 제4호、제27조제3항 및 제50조제1항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각각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한다.

③군인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제19조의3、제21조제5항제1호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각각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하고, 제40조의2제1항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각각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 으로, “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 ” 을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 으로 한다.

④고용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호중 “ 사립학교교원연금법 ” 을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 으로 한다.

⑤공공자금관리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중 “ 사립학교교원연금법 ” 을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 으로, “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 ” 을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 으로 한다.

⑥공무원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24조제2항 전단、제45조의2 및 제47조제1호중 “ 사립학교교원연금법 ” 을 각각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 으로 하고, 제70조제1항중 “ 사립학교교원연금법 ” 을 각각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 으로, “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 ” 을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 으로 한다.

⑦상속세및증여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중 “ 사립학교교원연금법 ” 을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 으로 한다.

⑧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 바목 및 하목중 “ 사립학교교원연금법 ” 을 각각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 으로 한다.

⑨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3조제2항、제291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제7호중 “ 사립학교교원연금법 ” 을 각각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 으로, “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 ” 을 각각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 으로 한다.

⑩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별표 2중 제4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9.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⑪국민보건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다목중 “ 사립학교교원연금법 ” 을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 으로 한다.

⑫노인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본문중 “ 사립학교교원연금법 ” 을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 으로 한다.

⑬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중 “ 사립학교교원연금법 ” 을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 으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 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이 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또는 이 법의 각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290호,2000. 12. 26.>(군인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법률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중 “ 하사관 ”을 “ 부사관 ”으로 한다.

⑮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 <제6330호,2000. 12. 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1호 및 제4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과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38조의 규정(2000. 12. 30., 법률 제6328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에 의하여 개정된 규정을 말한다)은 2002년 1월 1일부터, 동법 제47조의 규정(2000. 12. 30., 법률 제6328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에 의하여 개정된 규정을 말한다)은 5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급여사유발생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평균보수월액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평균보수월액은 이 법 시행이후의 재직기간 및 이 법 시행이후에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된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기초로 산정한다.

**제4조** (임용전 병역복무기간의 재직기간 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2000년 12월 31일 현재 재직중인 교직원의 임용전 병역복무기간의 재직기간 산입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재직기간의 합산에 관한 특례) 2000년 12월 31일 현재 재직중인 교직원으로서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자중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의 단축으로 인하여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 근무하여도 재직기간이 20년에 미달하는 자는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12월 31일까지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제6조** (급여액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 및 조기퇴직연금과 동법 제5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의 산정에 있어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진, 강임이나 강등, 전직, 보직변경 또는 재임용(퇴직한 교직원ㆍ공무원ㆍ군인이 교직원으로 임용되어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의 합산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된 후 1년 이내에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승진, 강임이나 강등, 전직, 보직변경 또는 재임용되기 전의 보수월액과 퇴직 또는 사

망한 당시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을 급여액 산정의 기초로 한다.

**제7조** (연금액의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2000년 12월 31일 현재 연금수급자의 연금액은 2000년 12월 31일 현재의 연금액을 기준으로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2의 규정(2000. 12. 30., 법률 제6328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에 의하여 개정된 규정을 말한다)에 의하여 조정한다.

②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2제3항의 규정(2000. 12. 30., 법률 제6328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에 의하여 개정된 규정을 말한다)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이후 최초의 연금액의 조정은 이 법 시행후 2년이 경과할 때 실시한다. <개정 2003. 3. 12.>

**제8조** (퇴직연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교직원에 대하여는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1항의 규정(2000. 12. 30., 법률 제6328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에 의하여 개정된 규정을 말한다)에 불구하고 퇴직한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교직원(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임용되었거나, 1996년 1월 1일 이후에 임용된 교직원으로서 1995년 12월 31일 이전의 교직원ㆍ공무원ㆍ군인경력을 합산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제3항 및 제4항에서 같다)으로서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자가 이 법 시행이후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 되어 퇴직한 경우의 퇴직연금은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2000. 12. 30., 법률 제6328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에 의하여 개정된 규정을 말한다)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퇴직연도(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연도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연도를 말한다)별로 정한 해당 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지급한다. 다만,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에 먼저 도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001년부터 2002년 : 50세
2. 2003년부터 2004년 : 51세
3. 2005년부터 2006년 : 52세
4. 2007년부터 2008년 : 53세
5. 2009년부터 2010년 : 54세
6. 2011년부터 2012년 : 55세
7. 2013년부터 2014년 : 56세
8. 2015년부터 2016년 : 57세
9. 2017년부터 2018년 : 58세
10. 2019년부터 2020년 : 59세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당시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교직원이 재직기간이 20년에 도달하고 이 법 시행당시 재직기간이 20년에 미달하였던 기간 이상을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그 때부터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령에 먼저 도달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이 법 시행당시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교직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의하여 제2항 각호의 연도별로 정한 해당 연령에 미달하는 연수를 적용하여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퇴직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이 법 시행이후에 제32조제1항 및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 시행전의 교직원、공무원、군인경력(1995년 12월 31일 이전의 경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재직기간에 합산하고 재직기간 20년 이상이 되어 퇴직한 때에는 합산받은 경력을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 법 시행당시의 재직기간으로 보아 동 규정에 의한 연금지급의 시점 또는 연령에 달한 때부터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지급한다.

**제9조** (퇴직연금 등의 지급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7조(동법 제55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2000. 12. 30., 법률 제6328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에 의하여 개정된 규정을 말한다)은 동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10조**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퇴직한 교직원이 폐질상태로 된 경우에도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51조제1항의 규정(2000. 12. 30., 법률 제6328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에 의하여 개정된 규정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부칙** <제6400호,2001. 1. 29.>(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제7조제2항, 제10조제2항、제3항, 제16조, 제24조제1항, 제25조, 제28조, 제29조 본문, 제30조, 제52조제3항, 제53조의3제3항, 제59조, 제60조의4제1항 전단、제2항 및 제62조제3항 내지 제5항중 “ 교육부장관 ”을 각각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으로 한다.

제60조의3제3항중 “ 교육부령 ”을 “ 교육인적자원부령 ”으로 한다.

1& 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6862호,2003. 3. 1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2제3항의 규정(2003. 3. 12. 법률 제6859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에 의하여 개정된 규정을 말한다)은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삭제 <2015. 12. 15.>

**부칙** <제7347호,2005. 1. 27.>(국고금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중 " 국고금단수계산법 " 을 " 국고금관리법 " 으로 한다.

⑦생략

**부칙** <제7536호,2005. 5. 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46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간병비 등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연금을 받고 있거나 장해보상금을 받은 자도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간병비, 보철구 또는 보철구수당 및 재요양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③(재직기간의 소급통산) 제60조의4제1항 내지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구기관의 사무직원,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원 및 사무직원과 관리공단의 임원 및 직원으로서 1948년 8월 15일부터 연구기관이나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지정받은 날의 전일(관리공단에 재직 중인 교직원은 이 법 시행일 전일) 사이에 교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있는 자가 매월 해당 월분의 개인부담금 및 법인부담금을 따로 소급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소급납부한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통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급통산의 신청절차, 소급부담금의 액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법률 제3684호 사립학교교원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단서 및 각 호ㆍ제2항 및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 3. 24.>

**부칙** <제7889호,2006. 3. 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재직기간의 소급통산) 제60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학교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원 및 사무직원으로서 1948년 8월 15일부터 학교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지정받은 전일 사이에 교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있는 자가 매월 당해 월분의 개인부담금 및 법인부담금을 따로 소급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소급납부한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통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급부담금의 액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법률 제3684호 사립학교교원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단서 및 각호ㆍ제2항 및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삭제 <2009. 12. 31.>
④(급여사유발생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163호,2007. 1. 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3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휴직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852호,2008. 2. 29.>(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2> 까지 생략
<8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제7조제2항, 제10조제2항·제3항, 제16조, 제24조제1항, 제25조, 제28조,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제52조제3항, 제53조의3제3항, 제59조, 제60조의4제1항 전단, 제6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0조의3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53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의4제2항 전단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8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413호,2009. 2. 6.>(한국과학기술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4제1항 전단 중 "대학원"을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 또는 대학원"으로, "연구요원 및 사무직원"을 "연구요원 및 교직원"으로 한다.
제60조의4제4항제1호 중 "연구요원 및 사무직원"을 "연구요원 및 교직원"으로 한다.

**부칙** <제9908호,2009.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5. 12. 22.>

[2015. 12. 22. 법률 제13572호에 의하여 2013. 9. 2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단서를 삭제함]

**제2조**(퇴직연금 산정 및 기준소득월액 적용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후 재직기간에 대한 제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급여액 산정을 위한 기준소득월액은 제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준소득월액에 재직기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이 법 시행 후에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합산한 기간 중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 및 복무기간이 포함되어 재직기간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다시 산정한다.

②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3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교직원이 이 법 시행일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보다 이 법 시행 후 기준소득월액이 적을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하고 학교경영기관의 장이 동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시행일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할 수 있다.

**제3조**(부담금에 관한 특례) 부담금의 금액은 제4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별로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2010년: 1천분의 63
2. 2011년: 1천분의 67

**제4조**(급여지급 및 부담금 산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급여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급여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개정 2015. 12. 15.>

②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이 법 시행 후에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합산한 기간 중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 및 복무기간과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 전에 산입하여 이 법 시행 전에 부담금을 납부한 기간에 해당하는 임용 전 복무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종전기간"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급여의 지급과 부담금의 납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교직원이 법률 제3684호 사립학교교원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과 법률 제7536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항 및 법률 제7889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라 이 법 시행 전에 소급 통산한 재직기간에 대한 부담금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한 경우의 재직기간은 제2항의 종전기간에 포함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소급통산한 재직기간에 대한 부담금산정은 이 법 시행일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인상률 및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반영하여 부담금을 납부하는 달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⑤ 이 법 시행 전부터 재직 중인 교직원(이 법 시행 후에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합산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퇴직연금 및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연령 및 지급시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⑥ 제2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평균기준소득월액은 이 법 시행 후의 재직기간을 기초로 산정한다.

⑦ 제2항에 따른 종전기간에 대한 급여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급여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은 이 법 시행일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 또는 이 법 시행일 전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보수월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종전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종전 「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족연금(교직원이었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다가 사망하여 그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보수월액은 제2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 단서에 따라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2. 종전기간이 20년 이하인 경우 종전기간에 대한 연금액은 재직기간 매 1년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평균보수월액에 1천분의 2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종전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종전기간에 대한 연금액은 제1호에 따른 평균보수월액의 1천분의 500에 상당하는 금액에, 20년을 초과하는 재직기간 매 1년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평균보수월액의 1천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종전기간에 대한 퇴직연금의 금액은 제1호에 따른 평균보수월액의 1천분의 760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5조**(연금액의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금인 급여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조정하되, 매 연도별로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공무원보수변동률과 3퍼센트 포인트이상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각 연도별로 공무원보수변동률과의 차이가 3퍼센트 포인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정한다.

**제6조**(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1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 공단 임원의 「형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제15조에 따른다.

**제7조**(종전 보수월액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5조제2항에 따른 종전 보수월액 적용 사유가 발생한 사람이 이 법 시행 후에 종전 보수월액 적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 감액되기 전의 보수월액에 따른 부

담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삭제 <2015. 12. 15.>

**제9조**(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은 이 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 본다. 이 경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ㆍ상무이사ㆍ이사ㆍ감사 및 직원은 각각 이 법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이사장ㆍ상임이사ㆍ비상임이사ㆍ감사 및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이를 승계한다.

**제10조**(재직기간의 소급통산의 대상기간에 관한 조치) 교직원이 법률 제3684호 사립학교교원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법률 제7536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항 및 법률 제7889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을 소급통산 하는 경우에 기존의 재직기간 중 「국민연금법」에 따른 반환일시금(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시행 전의 종전규정 제67조제1항에 따른 반환일시금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소급통산 하는 재직기간에서 제외한다.

**제11조**(재직기간의 합산에 관한 특례조치) ① 2006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까지 퇴직한 교직원으로서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자 중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 근무하여도 재직기간이 연금수급대상 요건인 20년에 미달하는 자는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재직기간에 대한 합산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1996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퇴직한 교직원으로서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자 중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 근무하여도 재직기간이 20년에 미달하고 합산을 할 경우 20년 이상이 되는 자(종전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이 20년 이상인 자는 제외한다)는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재직기간에 대한 합산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합산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20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과 20년을 초과하는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연금공제일시금만을 지급한다.

**부칙** <제10413호,2010. 12. 27.>(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4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가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설치하는 국립대학교의 교원, 직원 및 조교 중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교원, 직원 및 조교에 대하여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교원, 직원 및 조교는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직원으로, 국가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설치하는 국립대학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학교경영기관으로 본다.

④ 생략

**부칙** <제10636호,2011. 5. 1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의 지급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5조 및 제4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해부조금이나 사망조위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215호,2012. 1.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단의 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단의 임원과 임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제60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1690호,2013. 3. 23.>(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4& 까지 생략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제7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25조, 제28조, 제30조, 제47조제2항 전단ㆍ후단, 제52조제3항, 제53조의3제3항, 제53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9조, 제60조의4제1항 전단,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2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제42조제1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60조의3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4( 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721호,2013. 4.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67호,2013. 5.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4항, 제31조제4항, 제39조의2제1항 및 제4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퇴직수당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4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퇴직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지급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교직원이거나 교직원이었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 같은 개정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및 유족연금특별부가금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 제56조제1항 및 제57조제1항은 이 법 시행 후 사망하여 같은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요양 및 재요양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제36조에 따른 직무상요양일시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하는 기간 동안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 제3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요양기간을 연장하여 그 요양기간 동안 직무상요양비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12124호,2013. 12. 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44호,2014. 11. 19.>(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2& 까지 생략

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제6호 중 “ 안전행정부장관 ”을 “ 행정자치부장관 ”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후단 중 “ 안전행정부장관 ”을 “ 인사혁신처장 ”으로 한다.

2( 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561호,2015. 12.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할연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①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부터 제46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할연금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지급한다. 이 경우 분할연금액 지급 대상 혼인기간에는 이 법 시행 전에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교직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을 포함한다.

②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분할연금은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의 요건에 해당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연도별 연령에 도달한 경우에는 받을 수 있다.

1.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0세
2. 2022년부터 2023년까지: 61세
3. 2024년부터 2026년까지: 62세
4. 2027년부터 2029년까지: 63세
5. 2030년부터 2032년까지: 64세

**제3조**(비직무상 장해급여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51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최초로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유족급여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56조제1항제3호 및 제6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연금액 조정에 관한 특례) 2016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퇴직연금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제6조**(연금수급요건 완화에 관한 특례)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8조제1항,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교직원부터 적용한다.

**제7조**(2009년 12월 31일 이전 임용자의 퇴직연금 지급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교직원으로서 199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 사이에 임용된 교직원(2010년 1월 1일 이후에 임용된 교직원으로서 199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 이전의 교직원ㆍ공무원 및 군인 경력을 합산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이 이 법 시행 후 퇴직하는 경우의 퇴직연금은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

1항제1호 및 법률 제9908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퇴직연도(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연도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별로 정한 해당 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지급한다.

1.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0세
2. 2022년부터 2023년까지: 61세
3. 2024년부터 2026년까지: 62세
4. 2027년부터 2029년까지: 63세
5. 2030년부터 2032년까지: 64세
6. 2033년부터: 65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99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 사이에 임용된 교직원이 법률 제6330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중개정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률 제6328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 제4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이하 이 항에서 "퇴직사유"라 한다)에 따라 퇴직하는 경우의 퇴직연금은 다음 각 호의 퇴직연도별로 정한 해당 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지급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연령에 먼저 도달한 때에는 해당 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1.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퇴직사유가 발생한 때
2.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
3.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
4. 2027년부터 2029년까지: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
5. 2030년부터 2032년까지: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4년이 경과한 때
6. 2033년부터: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

③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2항의 개정규정, 법률 제6330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4항 및 법률 제9908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교직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해당 연령에 미달하는 연수를 적용하여 조기퇴직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법률 제6330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중개정법률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교직원(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임용되었거나, 1996년 1월 1일 이후에 임용된 교직원으로서 1995년 12월 31일 이전의 교직원ㆍ공무원 및 군인 경력을 합산받은 사람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법률 제6330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우선 적용한다.

**제8조**(2010년 1월 1일 이후 임용자의 퇴직연금 지급에 관한 특례) 법률 제9908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률 제9905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46조에도 불구하고 2010년 1월 1일 이후 임용된 교직원에 대하여는 이 법 부칙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제9조**(연금액 산정에 관한 특례) ①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부터 2034년까지 퇴직연금의 금액은 평균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2016년: 100만분의 18,780
2. 2017년: 100만분의 18,560
3. 2018년: 100만분의 18,340
4. 2019년: 100만분의 18,120
5. 2020년: 100만분의 17,900
6. 2021년: 100만분의 17,800
7. 2022년: 100만분의 17,700
8. 2023년: 100만분의 17,600
9. 2024년: 100만분의 17,500
10. 2025년: 100만분의 17,400
11. 2026년: 100만분의 17,360
12. 2027년: 100만분의 17,320
13. 2028년: 100만분의 17,280
14. 2029년: 100만분의 17,240
15. 2030년: 100만분의 17,200
16. 2031년: 100만분의 17,160
17. 2032년: 100만분의 17,120
18. 2033년: 100만분의 17,080
19. 2034년: 100만분의 17,040

②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4항의 개정규정 및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재직기간에 대한 연금액의 산정에 있어 재직기간 매 1년당 평균기준소득월액에 곱하는 수치 중 100분의 1에 대하여는 평균기준소득월액에 다음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초로 한다. 다만, 30년을 초과하는 재직기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퇴직 전 3년간 전체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제35조제2항제1호의 금액) 대비 평균기준소득월액 비율 구간 | 적용 비율(%) |
|---|---|
| 0.3 미만 | 300 |
| 0.3 이상 0.4 미만 | 216.67 |
| 0.4 이상 0.5 미만 | 175 |
| 0.5 이상 0.6 미만 | 150 |
| 0.6 이상 0.7 미만 | 133.33 |
| 0.7 이상 0.8 미만 | 121.43 |
| 0.8 이상 0.9 미만 | 112.5 |
| 0.9 이상 1.0 미만 | 105.56 |
| 1.0 이상 1.1 미만 | 100 |
| 1.1 이상 1.2 미만 | 95.45 |
| 1.2 이상 1.3 미만 | 91.67 |
| 1.3 이상 1.4 미만 | 88.46 |
| 1.4 이상 1.5 미만 | 85.71 |
| 1.5 이상 1.6 미만 | 83.33 |
| 1.6 이상 | 81.25 |

**제10조**(부담금에 관한 특례) 제4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담금의 금액은 해당 연도별로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2016년: 1만분의 800
2. 2017년: 1만분의 825
3. 2018년: 1만분의 850
4. 2019년: 1만분의 875

**제11조**(재직기간 상한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제44조제3항,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4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교직원(이 법 시행 후에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을 제32조제1항에 따라 합산한 사람을 포함한다)의 퇴직급여 산정 시 재직기간과 부담금 납부기간은 다음 각 호의 연수를 초과할 수 없다.

1.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이 21년 이상인 경우: 33년
2.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이 17년 이상 21년 미만인 경우: 34년
3.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이 15년 이상 17년 미만인 경우: 35년

4.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이 15년 미만인 경우: 36년

**제12조**(급여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급여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법 부칙 제5조 및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이 법 시행 후에 제32조제1항에 따라 합산한 기간 중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 및 복무기간, 제31조제2항에 따라 이 법 시행 전에 산입하여 이 법 시행 전에 부담금을 납부한 기간에 해당하는 임용 전 복무기간, 법률 제3684호 사립학교교원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과 법률 제7536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항 및 법률 제7889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라 이 법 시행 전에 소급 통산하여 이 법 시행 전에 부담금을 납부한 기간에 해당하는 재직기간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급여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부칙 삭제에 따른 경과조치) 법률 제9908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의 삭제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572호,2015. 12. 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34호,2016. 1. 28.>

이 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153호,2016. 5.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직 사무직원의 재직기간 산정 시 제외되는 정년에 관한 특례 등) ①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고용직 사무직원(사무직원의 종류 및 급류ㆍ등급의 구분에 관하여 학교기관의 정관이나 규칙에 따라 분류하여 소속 학교기관의 장이 공단에 신고한 사무직원 중 등급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무직원으로서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사무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직기간 산정에서 제외되는 정년은 제3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60세로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고용직 사무직원 중 이 법 시행 전에 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 산정에서 제외되는 정년인 60세에 도달한 고용직 사무직원의 재직기간 및 재직연수의 산정, 개인부담금 납부, 퇴직연금일시금의 계산 등에 관하여는 제31조, 제42조 및 제4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전날까지의 그 초과한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3조**(교직원의 재직기간 산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교직원 중 이 법 시행 전에 제3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년에 도달한 사람의 재직기간 및 재직연수의 산정, 개

인부담금 납부, 퇴직연금일시금의 계산 등에 관하여는 제31조, 제42조 및 제4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전날까지의 그 초과한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부칙** <제14394호,2016. 12. 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39호,2017. 7. 26.>(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제6호 중 " 행정자치부장관 "을 " 행정안전부장관 "으로 한다.

⑮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522호,2018. 3. 20.>(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8조까지 생략

**제2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1호 중 " 「공무원연금법」 제34조에 따른 단기급여 및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장기급여 "를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에 따른 급여 "로 한다.

제33조의2의 제목 중 " 간병비 "를 " 간병급여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 「공무원연금법」 제35조제2항 "을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제2항 "으로, " 간병비 "를 " 간병급여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 간병비 "를 " 간병급여 "로 한다.

제33조의3제1항 중 " 「공무원연금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요양 "을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요양 "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 「공무원연금법」 제27조제1항 "을 " 「공무원연금법」 제30조제1항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0조제1항 "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사망조위금

2.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28조에 따른 급여(「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퇴직유족연금은 제외한다)
3.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8조에 따른 장해급여 및 같은 법 제35조ㆍ제36조에 따른 장해유족연금ㆍ순직유족연금

제3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연금법」 제27조제3항ㆍ제4항”을 “「공무원연금법」 제30조제3항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0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7조에 따른 순직유족보상금
2.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2조에 따른 재난부조금
3.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사망조위금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유족급여”를 “퇴직유족급여ㆍ재해유족급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공무원연금법」 제47조”를 “「공무원연금법」 제50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유족급여”를 “퇴직유족급여ㆍ재해유족급여”로 한다.

제42조의 제목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33조에 따른 급여의 종류, 급여의 사유, 급여액 및 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 제28조,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40조, 제41조, 제43조부터 제52조까지, 제54조부터 제65조까지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4조, 제25조,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 중 해당 규정(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및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교직원(「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2조제1항의 재난부조금 산정과 같은 법 제43조제3항의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의 사망에 따른 사망조위금 산정, 「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의 지급정지 대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으로, “공무상”은 “직무상”으로, “비공무상”은 “비직무상”으로, “순직공무원”은 “직무상사망교직원”으로, “순직”은 “직무상”으로, “공단” 및 “인사혁신처장”은 각각 “공단”으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으로, “사립학교교직원”은 “공무원”으로, 「공무원연금법」 제34조제1항의 “제25조”를 이 법 “제31조”로, 「공무원연금법」 제40조제2항 및 제3항과 같은 법 제43조제3항의 “제26조”를 이 법 “제32조”로, 「공무원연금법」 제52조제5항의 “제31조와 제32조”를 이 법 “제36조와 제37조”로, “기여금”은 “개인부담금”으로 본다.

제48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적립된 재해보상급여 준비금에서 지급되는 급여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에 따른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재해유족급여(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및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은 제외한다) 및 부조급여로 한다.

⑩부터1& 까지 생략

**제30조** 생략

**부칙** <제15523호,2018. 3. 20.>(공무원연금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5조까지 생략

**제3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단서 중 “「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을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으로,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족연금(교직원이었던 사람이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받다가 사망하여 그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퇴직유족연금(교직원이었던 사람이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받다가 사망하여 그 유족이 퇴직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3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연금법」 제42조제4호”를 “「공무원연금법」 제28조제4호”로 한다.

제32조제2항 본문 중 “「공무원연금법」 제64조”를 “「공무원연금법」 제65조”로 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급여) 교직원의 퇴직ㆍ사망ㆍ장해(직무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 제28조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고, 교직원의 직무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장해ㆍ사망에 대해서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다.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퇴직유족연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기초로 한다. 이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연금법」 제30조제2항제2호 후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장해연금”을 “장해연금 및 비직무상 장해연금”으로 하고, “장해보상금”을 “장해일시금 및 5년분의 비직무상 장해연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42조제2항 중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48조, 제56조, 제57조, 제60조 및 제61조의2”를 “「공무원연금법」 제43조, 제51조, 제54조, 제55조, 제58조 및 제62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1항제2호”를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1항제1호”를 “「공무원연금법」 제65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44조제4항 후단 중 “「공무원연금법」 제66조제2항”을 “「공무원연금법」 제67조제2항”으로 한다.

제48조의3 후단 중 “유족급여”를 “퇴직유족급여ㆍ재해유족급여”로 한다.

제52조의2제1항 전단 중 “유족연금(제38조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유족연금부가금 및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포함한다)”을 “퇴직유족연금(제38조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과 퇴직유족연금부가금 및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52조의2제2항 전단 중 “「공무원연금법」 제45조제6항”을 “「공무원연금법」 제4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공무원연금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족연금의 수급자인 경우에는 유족연금일시금”을 “「공무원연금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퇴직유족연금의 수급자인 경우에는 퇴직유족연금일시금”으로 한다.

제54조제1항 중 “단기급여”를 “요양급여ㆍ간병급여ㆍ부조급여”로, “장기급여”를 “퇴직급여ㆍ퇴직유족급여ㆍ비직무상장해급여ㆍ퇴직수당ㆍ장해급여ㆍ재해유족급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장기급여”를 “퇴직급여ㆍ퇴직유족급여ㆍ비직무상장해급여ㆍ퇴직수당ㆍ장해급여ㆍ재해유족급여”로 한다.

⑥ 생략

**제37조** 생략

**부칙** <제15554호,2018. 4.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2항(직무상유족연금의 급여액을 산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과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6조제2항 및 제37조제2항을 준용하는 부분은 2018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급여액 산정의 기초에 관한 적용례) ①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최저 보상기준 금액에 관한 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전에 사망하여 직무상유족연금의 급여 사유가 발생한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종전의 「공무원연금법」(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여액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급여 지급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직무상유족연금의 지급액에 관한 적용례) ①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6조제2항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직무상유족연금의 급여 사유가 발생한 사람(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여액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급여 지급일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 등에 따른 급여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 제4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분할연금 지급 및 선청구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공무원연금법」 제45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혼인기간 인정기준은 제외한다)은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이혼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분할연금액 지급 대상 혼인기간에는 2016년 1월 1일 전에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교직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을 포함한다.

②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 제4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연도별로 정한 연령에 도달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1.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0세
2. 2022년부터 2023년까지: 61세
3. 2024년부터 2026년까지: 62세
4. 2027년부터 2029년까지: 63세
5. 2030년부터 2032년까지: 64세

③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 제49조는 2016년 1월 1일 이후부터 이 법 시행일 전까지 이혼한 사람이 이 법 시행 후 퇴직연금일시금ㆍ퇴직연금공제일시금ㆍ퇴직일시금의 분할 지급 및 선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분할대상 혼인기간에는 이 법 시행 전에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교직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을 포함한다.

**제6조**(혼인기간의 정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 제4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혼인기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급여제한사유 소멸에 따른 급여 및 이자 지급에 관한 특례)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 제65조제2항은 이 법 시행 전에 급여의 제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4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5년이 지나면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제8조**(재활급여 지급에 관한 적용례) ①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6조 및 제27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제35조에 따라 공무상 요양 결정을 받은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여액은 이 법 시행 후 재활운동을 하거나 심리상담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9조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1호 중 “「공무원연금법」 제34조에 따른 단기급여 및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장기급여”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에 따른 급여”로 한다.

제33조의2의 제목 중 “간병비”를 “간병급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무원연금법」 제35조제2항”을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제2항”으로, “간병비”를 “간병급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간병비”를 “간병급여”로 한다.

제33조의3제1항 중 “「공무원연금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요양”을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요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장해연금의 수급권자”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8조에 따른 장해연금의 수급권자”로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공무원연금법」 제27조제1항”을 “「공무원연금법」 제30조제1항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사망조위금
2.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28조에 따른 급여(「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퇴직유족연금은 제외한다)
3.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8조에 따른 장해급여 및 같은 법 제35조ㆍ제36조에 따른 장해유족연금ㆍ순직유족연금

제3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연금법」 제27조제3항ㆍ제4항”을 “「공무원연금법」 제30조제3항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0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7조에 따른 순직유족보상금
2.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2조에 따른 재난부조금
3.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사망조위금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유족급여”를 “퇴직유족급여ㆍ재해유족급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공무원연금법」 제47조”를 “「공무원연금법」 제50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유족급여”를 “퇴직유족급여ㆍ재해유족급여”로 한다.

제48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적립된 재해보상급여 준비금에서 지급되는 급여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에 따른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재해유족급여(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및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은 제외한다) 및 부조급여로 한다.

② 법률 제15523호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36조제5항 중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를 “제3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로 한다.

**부칙** <제15714호,2018. 8. 1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44호,2019. 12. 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교직원 및 교직원이었던 사람이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무원연금법」 준용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퇴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4. 2. 27.>

**부칙** <제16760호,2019. 12. 10.>(군인연금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본문 중 “「군인연금법」 제33조”를 “「군인연금법」 제38조”로 한다.

⑤ 생략

**제21조** 생략

**부칙** <제16851호,2019. 12. 31.>(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1호 중 “방위소집·상근예비역소집 또는 보충역소집”을 “방위소집·상근예비역소집·보충역소집 또는 대체역소집”으로 한다.

⑩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17658호,2020. 12. 22.>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54호,2021. 3. 23.>(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3조 중 법률 제17658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53조의3제4항의 개정부분: 2021년 3월 23일
2. 생략

**부칙** <제18991호,2022. 10.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급여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63조제4항은 이 법 시행 전에 퇴직유족급여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제한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 급여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349호,2024. 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에 따라 임명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임원은 남은 임기 동안 이 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1072호,2025. 11.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족연금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장해유족연금 또는 직무상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의 압류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양육비 채권(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미성년인 자녀에 대한 양육비 채권으로 한정한다)이 확정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 2025. 11. 11.] [법률 제21072호, 2025. 11. 11., 일부개정]

## 제1장 총칙 <개정 2009. 12. 31.>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ㆍ사망 및 직무로 인한 질병ㆍ부상ㆍ장해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4. 17.>
[전문개정 2009. 12. 31.]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5. 29., 2018. 3. 20., 2018. 4. 17., 2021. 3. 23.>

1. “교직원”이란 「사립학교법」 제54조에 따라 그 임명에 관한 사항이 관할청에 보고된 교원과,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을 말한다. 다만, 임시로 임명된 사람, 조건부로 임명된 사람 및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유족”이란 교직원이거나 교직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재직 당시에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한정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나. 자녀(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다. 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는 제외한다)
   라. 손자녀(孫子女)(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손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손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마. 조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조부모는 제외한다)
3. “퇴직”이란 면직(免職), 사직(辭職), 그 밖의 사망 외의 모든 해직(解職)을 말한다. 다만, 교직원의 신분이 소멸된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다시 교직원으로 임명되고 이 법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기준소득월액”이란 부담금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일정기간 재직하고 얻은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연지급합계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 및 비과세소득의 범위, 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 및 적용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평균기준소득월액”이란 재직기간(제3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재직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재직기간에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으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퇴직 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의 전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합한 금액을 재직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퇴직유족연금(교직원이었던 사람이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받다가 사망하여 그 유족이 퇴직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기준소득월액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평균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6. "학교경영기관"이란 제3조에 규정된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를 말한다.
7. "부담금"이란 국가부담금ㆍ개인부담금ㆍ법인부담금 및 재해보상부담금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8. "개인부담금"이란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 교직원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9. "국가부담금"이란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10. "법인부담금"이란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11. "재해보상부담금"이란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에 따른 급여 중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재해보상급여 준비금에서 지급되는 급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학교기관이 이 법에 따라 따로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자녀는 19세 미만인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장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상태에 있는 19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정한다.<개정 2013. 4. 5., 2018. 4. 17.>

③ 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손자녀는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에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개정 2013. 4. 5., 2018. 4. 17.>

1. 19세 미만인 사람
2.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에 있는 사람

④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의 재해유족급여에 대해서는 제2항 및 제3항 각 호 중 "19세"를 각각 "25세"로 한다.<신설 2025. 11. 11.>

⑤ 교직원인 사람 또는 교직원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의 태아는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5. 11. 11.>

[전문개정 2009. 12. 31.]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학교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에게 적용한다.

1. 「사립학교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특수학교 중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

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립학교 및 학교경영기관 중 특히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립학교와 이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2.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
3. 2017년 1월 1일 이후 교직원으로 신규 임용(제2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되는 경우로서 임용 당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정년을 초과한 교직원
   가. 교원: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정년
   나. 사무직원: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정년

[전문개정 2016. 5. 29.]

## 제2장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개정 2009. 12. 31.>

**제4조(설립)**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부담금 징수
2. 각종 급여의 결정과 지급
3. 자산의 운용
4. 교직원 복지사업의 수행
5. 그 밖에 연금에 관한 업무

[전문개정 2009. 12. 31.]

**제5조(법인격)** ①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②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6조(사무소)** 공단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와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7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조직에 관한 사항
5.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사업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② 공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12. 31.]

**제8조(등기)** ① 공단의 등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9조(해산)** 공단의 해산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10조(임원)** ① 공단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 2명 이내의 상임이사, 6명 이내의 비상임이사 및 감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비상임이사 중에는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교육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 1명을 두고,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는 교직원을 대표하는 사람과 학교경영기관의 장을 대표하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이사장은 이사장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개정 2024. 2. 27.>

③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한다.<신설 2024. 2. 27.>

④ 비상임이사는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신설 2024. 2. 27.>

⑤ 감사는 이사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신설 2024. 2. 27.>

⑥ 제2항의 이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를 준용하며, 그 밖에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신설 2024. 2. 27.>

[전문개정 2009. 12. 31.]

**제11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비상임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임원은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12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상임이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分掌)하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한다.
④ 감사는 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12조의2(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단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13조(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② 임원이 제1항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지면 그 임원은 당연히 퇴직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14조(이사회)** ① 공단의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며, 이사장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15조(벌칙 적용시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16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① 공단의 임원(비상임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이사장ㆍ상임이사 및 감사는 제10조에 따른 임명권자(이하 "임명권자"로 한다)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으며, 직원은 공단 이사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개정 2024. 2. 27.>
[전문개정 2009. 12. 31.]

**제17조(보수의 제한)** 비상임이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실비의 보상만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18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19조(공단의 권한 등)** ① 공단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급여에 관련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에게 장부ㆍ서류나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급여와 관련한 보고
2.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시
3. 일정한 장소에의 출석과 의견의 진술 또는 설명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단의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이 법에 따라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또는 의료기관이 제1항에 따른 요구 및 검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요구 및 검사에 따를 때까지 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또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급여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개정 2021. 3. 23.>

④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 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3. 5. 22., 2014. 11. 19., 2015. 12. 22., 2017. 7. 26., 2018. 4. 17., 2018. 8. 14., 2021. 3. 23., 2022. 10. 18.>

1. 연금수급자의 주소지 및 가족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한 범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하여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2. 교직원, 연금수급자 및 제39조에 따른 급여 환수 대상자의 과세소득을 확인하기 위한 범위: 국세청장에 대하여 근로소득자료 및 사업소득자료
3. 교직원 및 연금수급자의 소득월액을 확인하기 위한 범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대하여 보수월액자료
4. 교직원의 직무상 질병ㆍ부상 및 장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범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대하여 건강보험 요양급여자료

4의2. 교직원 및 교직원이었던 사람의 요양급여, 장해급여 및 재해유족급여의 지급심사를 위한 범위: 의료기관에 대하여 해당 진료에 관한 자료

5. 연금수급자의 사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범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대하여 건강검진 결과자료
6. 교직원 및 교직원이었던 사람의 주소지, 연금수급자의 사망ㆍ주민등록말소ㆍ국외이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범위: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하여 주민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7. 연금수급자의 재혼 또는 친족관계 종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범위: 법원행정처장에 대하여 가족관계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8. 교직원 및 교직원이었던 사람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는지 또는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범위: 경찰청장에 대하여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소관 검찰청의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 대하여 판결문 사본

9. 이 법에 따라 급여를 적정하게 산정하고 지급하기 위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자료 중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⑤ 공단은 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신설 2013. 5. 22.>

⑥ 제4항에 따라 공단이 받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을 면제한다.<개정 2013. 5. 22.>

[전문개정 2009. 12. 31.]

**제20조(업무의 위탁)** ① 공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인부담금, 법인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의 수납에 관한 업무와 급여 및 그 밖의 지출금의 지급, 교직원 후생복지사업을 위한 업무를 체신관서,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그 밖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21조** 삭제 <2000. 1. 12.>

**제22조(회계연도)** 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23조(공단의 수입ㆍ지출)** ① 공단의 수입과 지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 3. 23.>

1. 수입
   가. 부담금
   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이입충당금(移入充當金)
   다. 그 밖의 수입금
2. 지출
   가. 이 법에 따른 급여금ㆍ적립금ㆍ반환금
   나. 그 밖에 공단 운영을 위한 경비

② 제1항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은 전년도 기금운용 수익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24조(예산)** ① 이사장은 매 회계연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회계연도개시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예산은 예산총칙ㆍ추정재무상태표ㆍ추정손익계산서ㆍ자금계획서를 내용으로 하고 그 내용을 명백하게 함에 필요한 부속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1. 3. 23.>

[전문개정 2009. 12. 31.]

**제25조(결산)** 이사장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결산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 및 잉여금처분계산서를 말한다)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1. 3. 23.>
[전문개정 2009. 12. 31.]

**제26조** 삭제 <2000. 1. 12.>

**제27조(잉여금의 처리)**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잉여금이 있으면 손실금을 보전(補塡)하고, 나머지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의 수입으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28조(공단에 대한 감독)** 교육부장관은 공단의 업무를 감독하며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1. 3. 23.>
[전문개정 2009. 12. 31.]

**제29조(임원의 해임)** 임명권자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때
2.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집행이 곤란하게 된 때
[전문개정 2009. 12. 31.]

**제30조(보고와 검사)** 교육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단에 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업무상황 또는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12. 31.]

**제30조의2(「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 제3장 재직기간 <개정 2009. 12. 31.>

**제31조(재직기간의 계산)**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를 계산할 때 교직원의 재직기간은 교직원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年月數)로 계산한다. 이 경우 개월을 연(年)으로 환산할 때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② 교직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다음 각 호의 복무기간은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재직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다.<개정 2016. 12. 20., 2019. 12. 31., 2021. 3. 23.>

1.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또는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방위소집ㆍ상근예비역소집ㆍ보충역소집 또는 대체역소집에 의하여 복무한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을 포함한다)
2. 1979년 1월 1일부터 1992년 5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른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기간
   가. 종전의 「국민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1980년 12월 31일 법률 제33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나. 종전의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1991년 12월 14일 법률 제443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다. 종전의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1993년 12월 31일 법률 제468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은 제1항의 재직기간에서 제외한다.<신설 2016. 5. 29., 2021. 3. 23.>

1. 교원: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정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2. 사무직원: 제3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른 정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④ 제3항에 따른 정년의 계산에 관하여는 교원은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2항을, 사무직원은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제4항을 각각 준용한다.<신설 2016. 5. 29.>

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28조제4호에 따른 퇴직수당(이하 "퇴직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때에는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하거나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 5. 29., 2018. 3. 20., 2021. 3. 23.>

1. 제2항에 따른 복무기간
2. 제32조제1항에 따라 합산한 재직기간
3. 법률 제3684호 사립학교교원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법률 제7536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항 및 법률 제7889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라 포함된 소급통산 재직기간

⑥ 퇴직수당 지급시 재직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정직기간 및 강등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 1을 각각 뺀다.<개정 2013. 5. 22., 2016. 5. 29.>

1.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2.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마치기 위한 휴직
3. 국제기구, 외국기관, 재외국민 교육기관, 국내외 대학 또는 국내외 연구기관에 임시 채용되어 하게 된 휴직
4.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제11호 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휴직
5.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제7호 및 제70조의2에 따른 자녀의 양육 또는 여성 교직원의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휴직

6.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휴직
[전문개정 2009. 12. 31.]
[2016. 12. 20. 법률 제14394호에 의하여 2016. 2. 25.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2항을 개정함.]

**제31조의2(임용 전 복무기간의 산입방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복무기간에 포함시키려는 사람은 복무기간 산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2., 2021. 3. 23.>
[전문개정 2009. 12. 31.]
[제목개정 2016. 12. 20.]

**제32조(재직기간의 합산)** ① 퇴직한 교직원ㆍ공무원 또는 군인(이 법과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던 사람은 제외한다)이 교직원으로 임용되고 재직기간 합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제31조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 받으려는 사람이 공단으로부터 그 합산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퇴직 당시에 받은 퇴직급여액이나 퇴역급여액[「공무원연금법」 제65조(이 법 제4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군인연금법」 제38조에 따라 급여액의 제한을 받았을 때에는 그 제한이 없는 경우에 받았어야 할 급여액을 말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교직원이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의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연금인 급여는 반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 3. 20., 2019. 12. 10.>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반납하여야 할 급여액과 이자(이하 "반납금"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내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다.
④ 공단은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합산이 인정된 재직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합산 제외를 신청하거나 반납금을 6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합산 제외를 신청한 기간 또는 합산 승인된 재직기간에서 이미 낸 반납금에 상당하는 재직기간을 공제한 기간을 합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31.]

## 제4장 급여 <개정 2009. 12. 31.>

**제33조(급여)** 교직원의 퇴직ㆍ사망ㆍ장해(직무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 제28조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고, 교직원의 직무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장해ㆍ사망에 대해서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다. <개정 2021. 3. 23.>
[전문개정 2018. 3. 20.]

**제33조의2(간병급여 등의 지급)** ① 제33조에 따른 급여를 받은 사람이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요양기간이 지난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는 간병급여를 지급하고, 신체상의 장해로 보조기구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보조기구나 보조기구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3. 5. 22., 2018. 3. 20., 2018. 4. 17., 2021. 3. 23.>

② 제1항에 따른 간병급여 등의 지급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8. 3. 20., 2018. 4. 17.>

[전문개정 2009. 12. 31.]

[제목개정 2018. 3. 20., 2018. 4. 17.]

**제33조의3(재요양)** ① 제33조에 따른 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된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직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33조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요양(이하 이 조에서 "재요양"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 5. 22., 2018. 3. 20., 2018. 4. 17.>

②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8조에 따른 장해연금의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는 재요양이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재요양이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장해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개정 2018. 4. 17.>

③ 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34조(급여의 결정)** ① 각종 급여는 그 권리를 가질 사람의 신청을 받아 공단이 결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급여를 결정할 때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심의회(이하 "급여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질 사람이 제1항에 따른 급여 중 다음 각 호의 급여를 신청할 때에는 그 교직원이 소속되었던 학교경영기관의 장(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9. 12. 10.>

1.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제1호에 따른 요양급여
2.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제3호에 따른 장해급여
3.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제5호나목에 따른 순직유족급여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급여심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35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① 다음 각 호의 급여의 산정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한다. 이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연금법」 제30조제1항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1. 5. 19., 2018. 3. 20., 2018. 4. 17.>

1.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사망조위금

2.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28조에 따른 급여(「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및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퇴직유족연금은 제외한다)
3.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8조에 따른 장해급여 및 같은 법 제35조·제36조에 따른 장해유족연금·순직유족연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6조에 따른 유족연금 및 같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사망조위금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금액을 각각 해당 교직원의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신설 2018. 4. 17.>

③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및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퇴직유족연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기초로 한다. 이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연금법」 제30조제2항제2호 후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5. 12. 15., 2018. 3. 20., 2018. 4. 17.>

1.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의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
   가. 퇴직 3년 전 연도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퇴직 3년 전 연도와 대비한 퇴직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환산한 금액
   나. 퇴직 2년 전 연도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퇴직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퇴직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환산한 금액
   다. 퇴직 전년도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2. 평균기준소득월액

④ 다음 각 호의 급여의 산정은 「공무원연금법」 제30조제3항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산정되는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기초로 한다.<신설 2011. 5. 19., 2018. 3. 20., 2018. 4. 17.>

1.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7조에 따른 순직유족보상금
2.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2조에 따른 재난부조금
3.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사망조위금

[전문개정 2009. 12. 31.]

**제36조(유족의 우선순위)**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상속받는 순위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37조(동순위자의 경합)** 유족 중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38조(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지급의 특례)** ① 교직원이거나 교직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금액을 그 직계존비속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직계존비속이 없을 때에는 공단은 관계 학교경영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그 사망한 사람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2.>

② 제1항에 따른 직계존비속에 대한 급여 지급에 관하여는 제36조와 제37조를 준용한다.<개정 2013. 5. 22.>

[전문개정 2009. 12. 31.]

**제39조(급여의 환수)**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수급자(상속인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에는 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제3호 또는 제4호의 경우로서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2. 이 법에 따라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질 사람이 제34조제1항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면서 공단에 급여제한사유에 대하여 사실과 달리 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급여지급 이후 발생한 급여제한사유 또는 수급권 상실사유를 공단에 사실과 달리 신고(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늦게 신고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3. 급여를 받은 후 그 급여의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4. 그 밖에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전문개정 2009. 12. 31.]

**제39조의2(미납금의 공제지급)** ①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사람이 퇴직 또는 사망 시까지 다음 각 호의 미납금이나 그 밖에 공단에 대한 채무가 있을 때에는 퇴직급여ㆍ퇴직유족급여ㆍ재해유족급여 또는 퇴직수당의 금액에서 공제하여 지급한다. 다만, 학교기관의 장의 귀책사유로 미납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5. 22., 2018. 3. 20., 2018. 4. 17.>

1. 제32조제3항에 따른 반납금의 원리금
2. 제39조에 따른 환수금의 원리금
3.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50조에 따른 지급정지금액의 정산과 관련된 차액
4. 제45조 및 제51조에 따른 개인부담금과 그 연체금
5. 제53조의3제2항제3호에 따라 대여하는 자금의 원리금과 제60조의3에 따라 국가가 공단에 위탁하여 행하는 사업의 원리금
6. 공단에 대한 그 밖의 채무

② 연금인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채무(제1호는 제외한다)가 있을 때에는 연금인 급여 외의 퇴직급여ㆍ퇴직유족급여ㆍ재해유족급여 또는 퇴직수당에서 우선 공제하여 지급하고 남은 채무가 있을 때에는 해당 연금월액의 2분의 1 이상을 초과하여 공제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 3. 20., 2018. 4. 17.>

③ 교직원 및 교직원이었던 사람이 급여청구 시 제1항의 미납금 및 채무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교직원이 소속되었던 학교경영기관의 장(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인 경우에는 학교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9. 12. 10.>
[전문개정 2009. 12. 31.]

**제40조(권리의 보호)** ①급여를 받을 권리는 다음 각 호의 경우가 아니면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13. 12. 30., 2025. 11. 11.>
1.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및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
2. 급여를 받을 권리를 공단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3. 수급권자에 대하여 확정된 양육비 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연금인 급여(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의 급여는 제외한다)를 받을 권리에서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를 초과하는 금액을 압류하는 경우

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다.<신설 2013. 12. 30.>
[전문개정 2009. 12. 31.]

**제41조(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① 다른 법령에 따라 학교경영기관의 부담으로 이 법에 따른 급여와 같은 종류의 급여를 받는 사람에게는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 법에 따른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에 공단은 공제한 금액을 학교경영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은 그 급여 사유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급여액(장해연금 및 비직무상 장해연금의 경우에는 장해일시금 및 5년분의 비직무상 장해연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3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손해배상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8. 3. 20.>
1. 해당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사람의 배우자
2. 해당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사람의 직계존비속
3. 직무수행 중인 교직원

③ 제2항의 경우에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같은 사유로 이미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배상액의 범위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42조(「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준용)** ① 제33조에 따른 급여의 종류, 급여의 사유, 급여액 및 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 제28조,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40조, 제41조, 제43조부터 제52조까지, 제54조부터 제65조까지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33조

까지,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 중 해당 규정(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및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각각 “교직원(「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2조제1항의 재난부조금 산정과 같은 법 제43조제3항의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의 사망에 따른 사망조위금 산정, 「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의 지급정지 대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으로, “공무상”은 각각 “직무상”으로, “비공무상”은 각각 “비직무상”으로, “순직공무원”은 각각 “직무상사망교직원”으로, “순직”은 각각 “직무상”으로, “공단” 및 “인사혁신처장”은 각각 “공단”으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으로, “사립학교교직원”은 “공무원”으로, 「공무원연금법」 제34조제1항 단서 중 “제25조”는 이 법 “제31조”로, 「공무원연금법」 제40조제2항 및 제3항과 같은 법 제43조제3항의 “제26조”는 이 법 “제32조”로, 「공무원연금법」 제52조제5항의 “제31조와 제32조”는 이 법 “제36조와 제37조”로, “기여금”은 각각 “개인부담금”으로, 「공무원연금법」 제63조제4항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급여심의회”로 본다. <개정 2018. 4. 17., 2022. 10. 18.>

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 제51조, 제54조, 제55조, 제58조 및 제62조의 해당 규정에 따른 급여의 사유, 재직기간, 재직연수 및 공제재직연수를 산정할 때 제31조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재직기간은 계산에서 제외한다.<신설 2016. 5. 29., 2018. 3. 20., 2021. 3. 23.>

③ 제2항에 따른 정년의 계산 방법은 제31조제4항에 따른다.<신설 2016. 5. 29.>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6. 5. 29., 2018. 3. 20.>

⑤ 삭제<2019. 12. 10.>

[전문개정 2009. 12. 31.]

[제목개정 2018. 3. 20., 2018. 4. 17.]

## 제5장 비용부담 <개정 2009. 12. 31.>

**제43조(비용 부담의 원칙)** 급여나 그 밖에 이 법을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그 비용의 예상액과 개인부담금, 국가부담금, 법인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및 그 예정운용수익금의 합계액이 장래에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급여에 드는 비용은 적어도 5년마다 다시 계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44조(개인부담금)** ① 개인부담금은 교직원이 그가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부담한다.

② 교직원이 퇴직한 달에 다시 교직원으로 임용되었을 경우에는 재임용 후 다시 그 달의 개인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에 따른 재직기간 합산을 받은 경우에는 재임용된 달

(1일자로 재임용된 경우의 달은 제외한다)의 개인부담금은 부담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부담금 납부기간이 36년을 초과하거나 제3조제2항제3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정년을 초과하여 재직하는 사람은 개인부담금을 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정년의 계산 방법은 제31조제4항에 따른다.<개정 2015. 12. 15., 2016. 5. 29.>

④ 제1항의 개인부담금은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90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연금법」 제67조제2항 후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12. 15., 2018. 3. 20.>

[전문개정 2009. 12. 31.]

**제45조(개인부담금의 납부)** ① 개인부담금은 해당 학교기관의 장이 매월 보수에서 징수하여 보수지급일부터 3일 이내에 공단에 내야 한다.

② 교직원이 보수의 전부를 지급받지 못할 사유로 보수를 받지 못하는 달에는 개인부담금을 보수 지급일부터 2일 이내에 해당 학교기관의 장에게 내야 한다. 다만, 교직원이 휴직한 경우에는 교직원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 5. 22.>

1. 휴직기간 동안 매월 그 달에 해당하는 개인부담금을 계속 납부
2.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휴직기간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매월 개인부담금을 추가로 납부. 이 경우 매월 추가로 납부하는 개인부담금은 납부하는 달에 해당하는 개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복직 후 미납한 기간에 해당하는 개인부담금을 한꺼번에 납부. 이 경우 한꺼번에 납부하는 개인부담금은 납부하는 달에 해당하는 개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학교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개인부담금을 받으면 지체 없이 공단에 내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46조(국가부담금)** ① 국가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2. 1. 26.>

1. 제44조제4항에 따라 교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의 합계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48조의3에 따라 교직원이 내는 소급개인부담금 합계액과 같은 금액
3.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 중 제4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부담하는 금액

② 국가는 제1항의 부담금을 공단에 내야 한다.

③ 국가부담금을 더 내거나 덜 냈을 때에는 다음 기(期)의 국가부담금을 낼 때에 가감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더 내거나 덜 낸 국가부담금을 다음 기의 국가부담금을 낼 때에 정산하지 아니한 경우(해당 회계연도 내에 전액을 공단에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금액을 원금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에 대한 국가부담액에 대하여는 해당 회계연도 말까지 국가가 납입한 금액이 실제 든  비용보다 적거나 많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정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정산하여야 한다.<개정 2021. 3. 23.>

[전문개정 2009. 12. 31.]

**제47조(법인부담금)** ① 법인부담금은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한다. 다만, 학교경영기관이 그 학교에 필요한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② 「사립학교법」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경영기관이 제1항 단서에 따라 법인부담금의 부족액을 학교가 부담하게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학교경영기관의 재정여건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기간을 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신설 2012. 1. 26., 2013. 3. 23.>

③ 제1항의 법인부담금은 해당 학교 교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의 합계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및 그 학교기관의 사무직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 합계액과 같은 금액에 교직원의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은 공단이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으며, 국가는 공단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한다.<개정 2012. 1. 26.>

④ 제3항에 따른 퇴직수당의 지급에 드는 비용의 부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2. 1. 26.>

⑤ 학교경영기관은 제3항에 따른 법인부담금을 매년 학교기관의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에 필요한 법인부담금은 학교경영기관의 업무 예산에서 학교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학교에서 부담하게 된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 1. 26.>

[전문개정 2009. 12. 31.]

**제47조의2(책임준비금의 적립)** 국가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재정의 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책임준비금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48조(법인부담금의 납부)** 법인부담금은 학교기관의 장이 매월 개인부담금과 함께 공단에 내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48조의2(재해보상부담금)** ① 재해보상부담금은 교직원의 개인부담금 합계액의 10,000분의 181 이상 10,000분의 54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부담 및 납부에 관하여는 제47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과 제4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 1. 26.>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납부된 재해보상부담금을 재해보상급여 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적립된 재해보상급여 준비금에서 지급되는 급여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에 따른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재해유족급여(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및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은 제외한다) 및 부조급여로 한다.<개정 2018. 4.

17.>

④ 재해보상급여 준비금은 공단의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하며,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48조의3(복무기간의 부담금)** 제31조제2항에 따라 복무기간이 재직기간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직원은 그 산입기간에 대하여 공단이 산입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해당 월분의 개인부담금과 같은 금액의 소급개인부담금을 추가로 공단에 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교직원이 그 소급개인부담금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하고자 하는 달의 개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잔여 소급개인부담금을 계산하여 일시에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 도중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잔여 소급개인부담금을 계산하여 이를 해당 퇴직급여ㆍ퇴직유족급여ㆍ재해유족급여 또는 퇴직수당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6. 12. 20., 2018. 3. 20., 2021. 3. 23.>

[전문개정 2009. 12. 31.]

[제목개정 2016. 12. 20.]

**제49조(전출 시의 부담금)** 교직원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다른 학교기관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전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개인부담금 및 법인부담금은 전출 전의 학교기관의 장이 내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50조(과오납의 정산)** 개인부담금과 법인부담금을 잘못 납부하였을 때에는 각각 다음 부담금 납부 시에 가감하여 정산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51조(연체금)** 공단은 개인부담금, 법인부담금 또는 재해보상부담금을 정하여진 날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52조(강제 징수)** ① 공단은 부담금 또는 제39조에 따른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다.

② 공단이 제1항에 따라 독촉을 할 때에는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사람이 그 기한까지 부담금 또는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공단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직접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21. 3. 23.>

④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하거나 급여액을 환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으면 결손처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
2.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을 하는 공단의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본다.

⑥ 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을 할 때에 공단이 가지는 채권의 변제 순위는 조세(租稅) 다음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52조의2(연금액의 이체)** ①「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ㆍ퇴역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교직원으로 임용되어 제32조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 합산을 받은 후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국방부장관은 그 퇴직한 사람 또는 그 유족(제38조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ㆍ퇴역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직유족연금(제38조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과 퇴직유족연금부가금 및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포함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이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체금액의 산정방법 및 이체기한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5. 22., 2018. 3. 20.>

②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 제4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은 해당 연도의 재해보상부담금 재원으로 이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 중 직무로 사망하거나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한 교직원의 유족이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퇴직유족연금의 수급자인 경우에는 퇴직유족연금일시금을 받는 것으로 보아 이체할 금액을 산정한다.<신설 2013. 5. 22., 2018. 3. 20., 2021. 3. 23.>

[전문개정 2009. 12. 31.]

**제53조(심사의 청구)** ① 급여에 관한 결정, 개인부담금의 징수,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처분 또는 급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사 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심사 청구를 할 수 없었던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에 규정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재심위원회는 공단에 두되 그 조직과 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 제6장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개정 2009. 12. 31.>

**제53조의2(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이하 “ 기금 ” 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금은 공단의 예산에 계상된 적립금과 결산상 잉여금 및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조성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53조의3(기금의 관리 · 운용)** ① 기금은 공단이 관리 · 운용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개정 2020. 12. 22.>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預入) 또는 신탁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매
3. 교직원 및 연금수급자에 대한 자금의 대여
4. 기금 증식과 교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증식사업 또는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③ 공단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0. 12. 22.>
④ 공단은 기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0. 12. 22., 2021. 3. 23.>
[전문개정 2009. 12. 31.]

**제53조의4(사립학교교직원 연금운영위원회)** 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운영위원회(이하 “ 운영위원회 ” 라 한다)를 둔다.
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제도에 관한 사항
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재정계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에 의한 사립학교교직원 후생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단 이사장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단 이사장이 되고, 위원은 교육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3. 3. 23.>
1. 기금 관련 중앙행정기관 소속공무원
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업무와 관련한 공단의 임원
3. 교직원 단체가 추천하는 사립학교 교직원
4. 사립학교 설립 · 경영자
5. 퇴직연금수급자
6.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7.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운영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53조의5(기금에서의 차입 및 이입 충당)** ①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급여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기금에서 일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일시 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급여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금에서 이입하여 충당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53조의6(회계처리의 원칙)**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53조의7(국가의 지원)** 법률 또는 제도적인 사유로 이 법에 따른 급여를 기금으로 충당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가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31.]

## 제7장 보칙 <개정 2009. 12. 31.>

**제54조(시효)**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요양급여、간병급여、부조급여는 3년간, 퇴직급여、퇴직유족급여、비직무상장해급여、퇴직수당、장해급여、재해유족급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퇴직유족급여、비직무상장해급여、퇴직수당、장해급여、재해유족급여를 받을 권리가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부담금을 징수할 권리도 소멸한다.<개정 2018. 3. 20.>
③ 잘못 납부한 부담금을 반환 받거나 징수할 권리 및 급여를 환수할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개정 2021. 3. 23.>
④ 부담금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환수금 등의 납부 고지 및 독촉, 급여의 지급 청구 또는 잘못 납부한 부담금 등의 반환 청구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진다.
⑤ 제4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납부의 고지 또는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55조(효력발생 기간)** 이 법에 따른 급여 또는 심사 청구, 신고 등에 관한 기간을 계산할 때에 그 서류가 우편 발송된 경우 우송에 걸린 일수는 그 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 3. 23.>
[전문개정 2009. 12. 31.]

**제56조(끝자리 수 처리)** 부담금의 징수와 급여의 지급 시 끝자리 수 처리는 「국고금관리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57조(학교경영기관의 장의 확인)** ① 학교경영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급여 사유의 발생, 개인부담금의 납부, 재직기간의 계산에 필요한 이력사항과 그 밖에 교직원이거나 교직원이었던 사람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조사 확인하여야 한다.
② 학교경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교직원이거나 교직원이었던 사람, 그 밖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58조(학교기관의 장의 책임)** 학교기관의 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개인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법인부담금 또는 재해보상부담금을 내지 아니하여 공단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나 보고를 하여 공단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59조(전시ㆍ사변의 특례)** 전시 또는 사변으로 급여에 드는 비용이 해당 연도의 개인부담금, 국가부담금, 법인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및 운용수익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단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급여시기를 일시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12. 31.]

**제60조(국고 보조)** 국가는 공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60조의2(관할청의 업무 협조)** 「사립학교법」 제4조에 따른 관할청은 학교의 설립ㆍ폐지를 인가하거나 인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학교경영기관의 설립ㆍ해산을 인가하거나 인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60조의3(국가사업의 위탁 등)** ① 국가는 교직원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공단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에 드는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관리방법은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교육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12. 31.]

**제60조의4(적용범위의 특례)** ① 법률에 따라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학교 또는 대학원을 설치ㆍ운영하는 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의 교수요원, 연구요원 및 교직원(「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또는 군인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교수요원, 연구요원 및 교직원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직원(이하 이 조에서 "교직원"이라 한다)으

로 보고, 연구기관은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학교경영기관(이하 이 조에서 “학교경영기관”이라 한다)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②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평생교육시설의 교원 및 사무직원에 대하여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교원 및 사무직원은 교직원으로 보고,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람 또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는 법인은 학교경영기관으로 본다.<개정 2013. 3. 23.>

③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의 직원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공단의 직원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무직원으로 보고, 공단은 학교경영기관으로 본다.<개정 2012. 1. 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2. 1. 26., 2013. 3. 23.>

1. 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 연구요원 및 교직원의 범위
2. 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교원 및 사무직원의 범위
3. 제3항에 따른 공단의 직원의 범위

⑤ 국가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설치하는 국립대학교의 교원, 직원 및 조교 중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교원, 직원 및 조교에 대하여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교원, 직원 및 조교는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직원으로, 국가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설치하는 국립대학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학교경영기관으로 본다.<신설 2010. 12. 27.>

⑥ 국가가 법인으로 설치한 서울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임상교수요원, 직원(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탁을 받아 운영하는 병원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임상교수요원, 직원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직원으로, 서울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학교경영기관으로 본다.<신설 2016. 1. 28.>

⑦ 국가가 법인으로 설치한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임상교수요원, 직원(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탁을 받아 운영하는 병원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임상교수요원, 직원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직원으로,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은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학교경영기관으로 본다.<신설 2016. 1. 28.>

[전문개정 2009. 12. 31.]

**제61조** 삭제 <2000. 1. 12.>

## 제8장 벌칙 <개정 2009. 12. 31.>

**제62조(과태료)** ① 공단의 임직원이 제30조에 따른 검사를 기피ㆍ방해 또는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사람 또는 검사를 방해하거나 기피한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12. 31.]

**부칙** <제2650호,1973. 12. 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민생활의안정을위한대통령긴급조치 제3호에 의해 197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정지]

**제2조** (재직자에 대한 경과조치) 1975년 1월 1일 현재 재직중인 교원은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75년 1월 1일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1974. 12. 26.]

**제3조** 삭제 <1979. 12. 28.>

**제4조** (설립위원) ①문교부장관은 관리공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5인의 설립위원을 위촉한다.

②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관리공단의 이사장이 임명된 때에는 지체없이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5조** (감사의 임기에 대한 특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임명되는 감사의 임기는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년으로 한다.

**부칙** <제2737호,1974. 12. 26.>

이 법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32호,1975.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급여사유발생의 유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급여사유가 발생한 유족에 대하여는 이 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유족급여를 지급한다.

**부칙** <제2983호,1976.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이사장ㆍ상무이사 및 이사의 임기는 이 법에 의한 임기로 하되,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부칙** <제3058호,1977.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197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사무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1978년 1월 1일부터 현재 재직중인 사무직원은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③삭제 <1979. 12. 28.>

④삭제 <1979. 12. 28.>

**부칙** <제3115호,1978. 12. 5.>

이 법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06호,1979. 12. 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에 관한 규정은 198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직기간의 소급통산등) ①교직원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학교기관 (학교경영기관이 동일한 다른 학교를 포함한다)에 1974년 12월 31일(사무직원은 1977년 12월 31일)이전부터 계속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 1961년 12월 4일부터 1974년 12월 31일(사무직원은 1977년 12월 31일)사이에 계속근무한 기간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당해 월분의 개인부담금 및 법인부담금을 따로 소급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소급납부한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통산할 수 있다.

②소급부담금을 납부하고 있거나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재직 또는 퇴직이나 사망한 때의 당해 월분의 부담금을 기준으로 하여, 소급통산하는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개인부담금(사망의 경우에는 그의 유족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 및 법인부담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에 납부할 수 있다. 다만, 퇴직 또는 사망의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하는 개인부담금을 퇴직급여 또는 유족급여의 액에서 멸하여 지급받음으로써 그의 납부에 갈음할 수 있다.

**제3조** (관련조항의 정비) 법률 제2650호 사립학교교원연금법 부칙 제3조와 법률 제3058호 사립학교교원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항 및 제4항은 이를 삭제한다. 다만, 폐지되는 부칙에 의하여 납부된 소급부담금은 이 법 부칙 제2조제1항에 의하여 납부된 소급부담금으로 본다.

**부칙** <제3395호,1981. 3. 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수학교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특수학교 및 그 학교경영기관에 재직중인 교직원은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3조제2호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학교기관으로 지정받은 특수학교 및 그 학교경영기관에 재직중인 교직원은 그 지정을 받은 날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3조** (특수학교교직원 재직기간의 소급통산) ①부칙 제2조의 특수학교 및 그 학교경영기관의 교직원으로서 1961년 12월 4일부터 이 법 시행일의 전날(부칙 제2조 단서에 해당하는 학교기관의 교직원은 그 지정을 받은 전날)사이에 당해 학교기관에 계속 근무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개인부담금 및 법인부담금과 동액의 소급부담금을 따로 납부하는 때에는 그 납부한 기간을 재직기간에 통산한다.

②제1항의 교직원으로서 소급부담금을 납부하고 있거나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소급부담금을 납부하는 날이 속하는 달 또는 퇴직이나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부담금을 기준으로 하여 소급통산하는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개인부담금(사망의 경우에는 개인부담금은 그 유족이 부담한다) 및 법인부담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에 납부할 수 있다. 다만, 퇴직 또는 사망의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하는 개인부담금을 퇴직급여 또는 유족급여의 액에서 이를 공제하여 지급받음으로써 그 납부에 갈음할 수 있다.

**부칙** <제3582호,1982. 12. 27.>

①(시행일) 이 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병역복무기간의 재직기간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으로서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병역복무기간이 재직기간에 산입되는 교직원은 그 산입기간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당해 월분의 개인부담금과 같은 금액의 소급개인부담금을 관리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교직원이 그 납부 도중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퇴직 또는 사망당시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잔여소급개인부담금을 계산하여 이를 당해 퇴직 또는 유족급여에서 공제한다.

③(재직기간합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교직원으로서 제32조의 개정규정에 해당되어 재직기간의 합산을 하고자 하는 자는 종전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합산할 수 있다.

**부칙** <제3684호,1983. 12. 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의 규정은 198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직기간의 소급통산) ①교직원으로서 1948년 8월 15일부터 1974년 12월 31일(사무직원은 1977년 12월 31일, 사립의 특수학교 및 학교경영기관에 재직중인 교직원은 1981년

3월 19일, 제3조제3호 또는 제6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 적용대상의 학교ㆍ학교경영기관 또는 연구기관으로 지정받은 학교기관에 재직중인 교직원은 그 지정을 받은 전날) 사이에 교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있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월 당해 월분의 개인부담금 및 법인부담금을 따로 소급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소급납부한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통산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한 소급통산에 있어서 소급납부하는 모든 부담금은 당해 교직원이 전액을 부담하되, 그 금액은 매월 당해 월분의 개인부담금의 2배에 해당하는 액으로 한다.

1. 재직하고 있는 학교기관(학교경영기관이 동일한 다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아닌 학교기관에 교직원으로 근무한 기간
2. 재직하고 있는 학교기관의 교직원이었던 자가 퇴직한 후 다시 당해 학교기관에 재임용된 경우의 그 퇴직전의 교직원으로 근무한 기간

②삭제 <2009. 12. 31.>

**제3조** (소급납부하는 부담금의 일시납부) ①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소급납부하고 있거나 소급납부하고자 하는 교직원은 당해 월분의 부담금을 기준으로 하여 나머지의 소급통산할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개인부담금 및 법인부담금(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직원이 부담하는 부담금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시에 납부할 수 있다.

②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소급납부하고 있는 교직원이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나머지의 소급납부할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개인부담금 및 법인부담금(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직원이 부담하는 부담금을 말한다)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퇴직급여(퇴직연금을 제외한다) 또는 유족급여(유족연금을 제외한다)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퇴직급여 또는 유족급여에서 일시에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을 공제하여 지급함으로써 그 납부에 갈음한다.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3760호,1984.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보험료충당금 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은 자로서 연금수급자의 자격으로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에 의한 피보험대상이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4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충당금을 관리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행위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사립학교교원연금급여심사위원회가 행한 행위나 동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사립학교교원연금급여재심사위원회가 행한 행위나 동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④(급여사유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3954호,1987. 11. 28.>
이 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35호,1988. 12. 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급여사유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4226호,1990. 4. 7.>(사립학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사립학교교원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중 " 감독청의 승인을 받았거나 감독청에 보고된 교원 " 을 " 관할청에 보고된 교원 " 으로 한다.
제60조의2의 제목 및 본문중 " 감독청 " 을 각각 " 관할청 " 으로 한다.

**부칙** <제4268호,1990. 12. 27.>(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1* 생략
1( 사립학교교원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제7조제2항, 제10조제2항、제3항, 제16조, 제21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25조, 제28조 내지 제30조, 제52조제3항, 제59조, 제60조의4제1항、제2항 및 제62조제3항 내지 제5항중 " 문교부장관 " 을 각각 " 교육부장관 " 으로 한다.
제60조의3제3항중 " 문교부령 " 을 " 교육부령 " 으로 한다.
2) 내지5) 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제4455호,1991. 12. 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1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급여사유 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1991년 9월 30일이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재직기간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자에 대한 퇴직수당 지급에 있어서는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 시행이후의 휴직(제31조제4항 각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 1을 각각 감한다.

④(퇴직수당 비용부담에 관한 경과조치) 1991년 10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전일까지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퇴직수당을 지급하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와 관리공단이 부담한다.

⑤(재직기간 합산시 반납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고 반납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1991년 9월 30일이전에 퇴직한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가산금을 포함하여 납부하고, 1991년 10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전일까지 퇴직한 자는 이 법,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퇴직수당액과 그 이자를 합한 금액을 포함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부칙** <제5068호,1995. 1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퇴직일 또는 퇴직일의 다음날에 다시 임용된 교직원에 관한 적용의 특례) 이 법 시행전에 퇴직일 또는 퇴직일의 다음날에 다시 임용된 자로서 재임용전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수령한 자가 1996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반납하는 경우(1996년 6월 30일까지 반납의 의사를 표시하고 제32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분할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계속 재직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과오납된 부담금을 환부받거나 징수할 권리 및 급여를 환수할 권리부터 적용한다.

**제4조** (유족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1995년 12월 31일이전에 퇴직하여 이 법 시행전에 혼인 또는 출생하거나 입양관계가 성립된 배우자ㆍ자녀(1995년 12월 31일 현재의 태아를 포함한다)ㆍ부모ㆍ손자녀(1995년 12월 31일 현재의 태아를 포함한다) 및 조부모에 대하여는 제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재직기간의 합산에 관한 경과조치) 1995년 12월 31일 현재 재직중인 교직원으로서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고자 하는 자(종전의 제32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12월 31일까지 재직기간의 합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종전 호봉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1995년 12월 31일 현재 재직중인 교직원으로서 감액전의 호봉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35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3월 31일까지 종전 호봉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 (급여사유의 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7조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6124호,2000. 1. 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은 이 법에 의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이 행한 행위 기타 법률관계에 있어서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의 명의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의 명의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⑤이 법 시행당시의 사립학교교원연금급여심의회 및 사립학교교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는 이를 각각 이 법에 의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급여심의회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로 본다.

⑥이 법 시행당시의 재해보상기금은 이 법에 의한 재해보상급여준비금으로 본다.

**제3조** (감사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감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 (심사청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행한 처분등부터 적용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등) ①국민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단서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하고, 제8조제1항 단서、제67조제1항제4호 및 제77조의3제1항제2호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각각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한다.

②국민의료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및 제4호、제27조제3항 및 제50조제1항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각각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한다.

③군인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제19조의3、제21조제5항제1호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각각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하고, 제40조의2제1항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각각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 으로, “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 ” 을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 으로 한다.

④고용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호중 “ 사립학교교원연금법 ” 을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 으로 한다.

⑤공공자금관리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중 “ 사립학교교원연금법 ” 을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 으로, “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 ” 을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 으로 한다.

⑥공무원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24조제2항 전단、제45조의2 및 제47조제1호중 “ 사립학교교원연금법 ” 을 각각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 으로 하고, 제70조제1항중 “ 사립학교교원연금법 ” 을 각각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 으로, “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 ” 을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 으로 한다.

⑦상속세및증여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중 “ 사립학교교원연금법 ” 을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 으로 한다.

⑧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 바목 및 하목중 “ 사립학교교원연금법 ” 을 각각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 으로 한다.

⑨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3조제2항、제291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제7호중 “ 사립학교교원연금법 ” 을 각각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 으로, “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 ” 을 각각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 으로 한다.

⑩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별표 2중 제4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9.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⑪국민보건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다목중 “ 사립학교교원연금법 ” 을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 으로 한다.

⑫노인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본문중 “ 사립학교교원연금법 ” 을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 으로 한다.

⑬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중 “ 사립학교교원연금법 ” 을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 으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 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이 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또는 이 법의 각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290호,2000. 12. 26.>(군인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법률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중 “ 하사관 ”을 “ 부사관 ”으로 한다.

⑮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 <제6330호,2000. 12. 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1호 및 제4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과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38조의 규정(2000. 12. 30., 법률 제6328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에 의하여 개정된 규정을 말한다)은 2002년 1월 1일부터, 동법 제47조의 규정(2000. 12. 30., 법률 제6328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에 의하여 개정된 규정을 말한다)은 5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급여사유발생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평균보수월액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평균보수월액은 이 법 시행이후의 재직기간 및 이 법 시행이후에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된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기초로 산정한다.

**제4조** (임용전 병역복무기간의 재직기간 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2000년 12월 31일 현재 재직중인 교직원의 임용전 병역복무기간의 재직기간 산입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재직기간의 합산에 관한 특례) 2000년 12월 31일 현재 재직중인 교직원으로서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자중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의 단축으로 인하여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 근무하여도 재직기간이 20년에 미달하는 자는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12월 31일까지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제6조** (급여액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 및 조기퇴직연금과 동법 제5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의 산정에 있어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진, 강임이나 강등, 전직, 보직변경 또는 재임용(퇴직한 교직원ㆍ공무원ㆍ군인이 교직원으로 임용되어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의 합산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된 후 1년 이내에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승진, 강임이나 강등, 전직, 보직변경 또는 재임용되기 전의 보수월액과 퇴직 또는 사

망한 당시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을 급여액 산정의 기초로 한다.

**제7조** (연금액의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2000년 12월 31일 현재 연금수급자의 연금액은 2000년 12월 31일 현재의 연금액을 기준으로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2의 규정(2000. 12. 30., 법률 제6328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에 의하여 개정된 규정을 말한다)에 의하여 조정한다.

②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2제3항의 규정(2000. 12. 30., 법률 제6328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에 의하여 개정된 규정을 말한다)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이후 최초의 연금액의 조정은 이 법 시행후 2년이 경과할 때 실시한다. <개정 2003. 3. 12.>

**제8조** (퇴직연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교직원에 대하여는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1항의 규정(2000. 12. 30., 법률 제6328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에 의하여 개정된 규정을 말한다)에 불구하고 퇴직한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교직원(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임용되었거나, 1996년 1월 1일 이후에 임용된 교직원으로서 1995년 12월 31일 이전의 교직원ㆍ공무원ㆍ군인경력을 합산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제3항 및 제4항에서 같다)으로서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자가 이 법 시행이후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 되어 퇴직한 경우의 퇴직연금은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2000. 12. 30., 법률 제6328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에 의하여 개정된 규정을 말한다)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퇴직연도(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연도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연도를 말한다)별로 정한 해당 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지급한다. 다만,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에 먼저 도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001년부터 2002년 : 50세
2. 2003년부터 2004년 : 51세
3. 2005년부터 2006년 : 52세
4. 2007년부터 2008년 : 53세
5. 2009년부터 2010년 : 54세
6. 2011년부터 2012년 : 55세
7. 2013년부터 2014년 : 56세
8. 2015년부터 2016년 : 57세
9. 2017년부터 2018년 : 58세
10. 2019년부터 2020년 : 59세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당시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교직원이 재직기간이 20년에 도달하고 이 법 시행당시 재직기간이 20년에 미달하였던 기간 이상을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그 때부터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령에 먼저 도달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이 법 시행당시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교직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의하여 제2항 각호의 연도별로 정한 해당 연령에 미달하는 연수를 적용하여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퇴직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이 법 시행이후에 제32조제1항 및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 시행전의 교직원、공무원、군인경력(1995년 12월 31일 이전의 경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재직기간에 합산하고 재직기간 20년 이상이 되어 퇴직한 때에는 합산받은 경력을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 법 시행당시의 재직기간으로 보아 동 규정에 의한 연금지급의 시점 또는 연령에 달한 때부터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지급한다.

**제9조** (퇴직연금 등의 지급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7조(동법 제55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2000. 12. 30., 법률 제6328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에 의하여 개정된 규정을 말한다)은 동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10조**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퇴직한 교직원이 폐질상태로 된 경우에도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51조제1항의 규정(2000. 12. 30., 법률 제6328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에 의하여 개정된 규정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부칙** <제6400호,2001. 1. 29.>(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제7조제2항, 제10조제2항、제3항, 제16조, 제24조제1항, 제25조, 제28조, 제29조 본문, 제30조, 제52조제3항, 제53조의3제3항, 제59조, 제60조의4제1항 전단、제2항 및 제62조제3항 내지 제5항중 “ 교육부장관 ”을 각각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으로 한다.

제60조의3제3항중 “ 교육부령 ”을 “ 교육인적자원부령 ”으로 한다.

1& 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6862호,2003. 3. 1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2제3항의 규정(2003. 3. 12. 법률 제6859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에 의하여 개정된 규정을 말한다)은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삭제 <2015. 12. 15.>

**부칙** <제7347호,2005. 1. 27.>(국고금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중 " 국고금단수계산법 " 을 " 국고금관리법 " 으로 한다.

⑦생략

**부칙** <제7536호,2005. 5. 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46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간병비 등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연금을 받고 있거나 장해보상금을 받은 자도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간병비, 보철구 또는 보철구수당 및 재요양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③(재직기간의 소급통산) 제60조의4제1항 내지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구기관의 사무직원,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원 및 사무직원과 관리공단의 임원 및 직원으로서 1948년 8월 15일부터 연구기관이나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지정받은 날의 전일(관리공단에 재직 중인 교직원은 이 법 시행일 전일) 사이에 교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있는 자가 매월 해당 월분의 개인부담금 및 법인부담금을 따로 소급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소급납부한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통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급통산의 신청절차, 소급부담금의 액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법률 제3684호 사립학교교원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단서 및 각 호ㆍ제2항 및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 3. 24.>

**부칙** <제7889호,2006. 3. 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재직기간의 소급통산) 제60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학교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원 및 사무직원으로서 1948년 8월 15일부터 학교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지정받은 전일 사이에 교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있는 자가 매월 당해 월분의 개인부담금 및 법인부담금을 따로 소급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소급납부한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통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급부담금의 액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법률 제3684호 사립학교교원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단서 및 각호ㆍ제2항 및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삭제 <2009. 12. 31.>
④(급여사유발생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163호,2007. 1. 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3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휴직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852호,2008. 2. 29.>(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2> 까지 생략
<8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제7조제2항, 제10조제2항·제3항, 제16조, 제24조제1항, 제25조, 제28조,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제52조제3항, 제53조의3제3항, 제59조, 제60조의4제1항 전단, 제6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0조의3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53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의4제2항 전단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8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413호,2009. 2. 6.>(한국과학기술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4제1항 전단 중 "대학원"을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 또는 대학원"으로, "연구요원 및 사무직원"을 "연구요원 및 교직원"으로 한다.
제60조의4제4항제1호 중 "연구요원 및 사무직원"을 "연구요원 및 교직원"으로 한다.

**부칙** <제9908호,2009.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5. 12. 22.>

[2015. 12. 22. 법률 제13572호에 의하여 2013. 9. 2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단서를 삭제함]

**제2조**(퇴직연금 산정 및 기준소득월액 적용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후 재직기간에 대한 제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급여액 산정을 위한 기준소득월액은 제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준소득월액에 재직기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이 법 시행 후에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합산한 기간 중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 및 복무기간이 포함되어 재직기간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다시 산정한다.

②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3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교직원이 이 법 시행일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보다 이 법 시행 후 기준소득월액이 적을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하고 학교경영기관의 장이 동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시행일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할 수 있다.

**제3조**(부담금에 관한 특례) 부담금의 금액은 제4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별로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2010년: 1천분의 63
2. 2011년: 1천분의 67

**제4조**(급여지급 및 부담금 산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급여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급여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개정 2015. 12. 15.>

②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이 법 시행 후에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합산한 기간 중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 및 복무기간과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 전에 산입하여 이 법 시행 전에 부담금을 납부한 기간에 해당하는 임용 전 복무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종전기간"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급여의 지급과 부담금의 납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교직원이 법률 제3684호 사립학교교원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과 법률 제7536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항 및 법률 제7889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라 이 법 시행 전에 소급 통산한 재직기간에 대한 부담금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한 경우의 재직기간은 제2항의 종전기간에 포함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소급통산한 재직기간에 대한 부담금산정은 이 법 시행일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인상률 및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반영하여 부담금을 납부하는 달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⑤ 이 법 시행 전부터 재직 중인 교직원(이 법 시행 후에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합산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퇴직연금 및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연령 및 지급시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⑥ 제2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평균기준소득월액은 이 법 시행 후의 재직기간을 기초로 산정한다.

⑦ 제2항에 따른 종전기간에 대한 급여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급여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은 이 법 시행일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 또는 이 법 시행일 전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보수월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종전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종전 「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족연금(교직원이었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다가 사망하여 그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보수월액은 제2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 단서에 따라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2. 종전기간이 20년 이하인 경우 종전기간에 대한 연금액은 재직기간 매 1년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평균보수월액에 1천분의 2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종전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종전기간에 대한 연금액은 제1호에 따른 평균보수월액의 1천분의 500에 상당하는 금액에, 20년을 초과하는 재직기간 매 1년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평균보수월액의 1천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종전기간에 대한 퇴직연금의 금액은 제1호에 따른 평균보수월액의 1천분의 760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5조**(연금액의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금인 급여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조정하되, 매 연도별로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공무원보수변동률과 3퍼센트 포인트이상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각 연도별로 공무원보수변동률과의 차이가 3퍼센트 포인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정한다.

**제6조**(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1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 공단 임원의 「형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제15조에 따른다.

**제7조**(종전 보수월액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5조제2항에 따른 종전 보수월액 적용 사유가 발생한 사람이 이 법 시행 후에 종전 보수월액 적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 감액되기 전의 보수월액에 따른 부

담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삭제 <2015. 12. 15.>

**제9조**(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은 이 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 본다. 이 경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ㆍ상무이사ㆍ이사ㆍ감사 및 직원은 각각 이 법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이사장ㆍ상임이사ㆍ비상임이사ㆍ감사 및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이를 승계한다.

**제10조**(재직기간의 소급통산의 대상기간에 관한 조치) 교직원이 법률 제3684호 사립학교교원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법률 제7536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항 및 법률 제7889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을 소급통산 하는 경우에 기존의 재직기간 중 「국민연금법」에 따른 반환일시금(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시행 전의 종전규정 제67조제1항에 따른 반환일시금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소급통산 하는 재직기간에서 제외한다.

**제11조**(재직기간의 합산에 관한 특례조치) ① 2006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까지 퇴직한 교직원으로서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자 중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 근무하여도 재직기간이 연금수급대상 요건인 20년에 미달하는 자는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재직기간에 대한 합산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1996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퇴직한 교직원으로서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자 중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 근무하여도 재직기간이 20년에 미달하고 합산을 할 경우 20년 이상이 되는 자(종전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이 20년 이상인 자는 제외한다)는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재직기간에 대한 합산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합산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20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과 20년을 초과하는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연금공제일시금만을 지급한다.

**부칙** <제10413호,2010. 12. 27.>(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4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가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설치하는 국립대학교의 교원, 직원 및 조교 중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교원, 직원 및 조교에 대하여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교원, 직원 및 조교는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직원으로, 국가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설치하는 국립대학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학교경영기관으로 본다.

④ 생략

**부칙** <제10636호,2011. 5. 1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의 지급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5조 및 제4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해부조금이나 사망조위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215호,2012. 1.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단의 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단의 임원과 임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제60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1690호,2013. 3. 23.>(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4& 까지 생략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제7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25조, 제28조, 제30조, 제47조제2항 전단ㆍ후단, 제52조제3항, 제53조의3제3항, 제53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9조, 제60조의4제1항 전단,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2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제42조제1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60조의3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4( 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721호,2013. 4.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67호,2013. 5.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4항, 제31조제4항, 제39조의2제1항 및 제4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퇴직수당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4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퇴직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지급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교직원이거나 교직원이었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 같은 개정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및 유족연금특별부가금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 제56조제1항 및 제57조제1항은 이 법 시행 후 사망하여 같은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요양 및 재요양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제36조에 따른 직무상요양일시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하는 기간 동안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 제3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요양기간을 연장하여 그 요양기간 동안 직무상요양비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12124호,2013. 12. 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44호,2014. 11. 19.>(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2& 까지 생략

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제6호 중 “ 안전행정부장관 ”을 “ 행정자치부장관 ”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후단 중 “ 안전행정부장관 ”을 “ 인사혁신처장 ”으로 한다.

2( 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561호,2015. 12.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할연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①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부터 제46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할연금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지급한다. 이 경우 분할연금액 지급 대상 혼인기간에는 이 법 시행 전에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교직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을 포함한다.

②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분할연금은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의 요건에 해당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연도별 연령에 도달한 경우에는 받을 수 있다.

1.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0세
2. 2022년부터 2023년까지: 61세
3. 2024년부터 2026년까지: 62세
4. 2027년부터 2029년까지: 63세
5. 2030년부터 2032년까지: 64세

**제3조**(비직무상 장해급여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51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최초로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유족급여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56조제1항제3호 및 제6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연금액 조정에 관한 특례) 2016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퇴직연금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제6조**(연금수급요건 완화에 관한 특례)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8조제1항,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교직원부터 적용한다.

**제7조**(2009년 12월 31일 이전 임용자의 퇴직연금 지급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교직원으로서 199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 사이에 임용된 교직원(2010년 1월 1일 이후에 임용된 교직원으로서 199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 이전의 교직원ㆍ공무원 및 군인 경력을 합산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이 이 법 시행 후 퇴직하는 경우의 퇴직연금은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

1항제1호 및 법률 제9908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퇴직연도(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연도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별로 정한 해당 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지급한다.

1.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0세
2. 2022년부터 2023년까지: 61세
3. 2024년부터 2026년까지: 62세
4. 2027년부터 2029년까지: 63세
5. 2030년부터 2032년까지: 64세
6. 2033년부터: 65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99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 사이에 임용된 교직원이 법률 제6330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중개정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률 제6328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 제4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이하 이 항에서 "퇴직사유"라 한다)에 따라 퇴직하는 경우의 퇴직연금은 다음 각 호의 퇴직연도별로 정한 해당 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지급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연령에 먼저 도달한 때에는 해당 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1.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퇴직사유가 발생한 때
2.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
3.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
4. 2027년부터 2029년까지: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
5. 2030년부터 2032년까지: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4년이 경과한 때
6. 2033년부터: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

③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2항의 개정규정, 법률 제6330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4항 및 법률 제9908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교직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해당 연령에 미달하는 연수를 적용하여 조기퇴직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법률 제6330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중개정법률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교직원(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임용되었거나, 1996년 1월 1일 이후에 임용된 교직원으로서 1995년 12월 31일 이전의 교직원ㆍ공무원 및 군인 경력을 합산받은 사람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법률 제6330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우선 적용한다.

**제8조**(2010년 1월 1일 이후 임용자의 퇴직연금 지급에 관한 특례) 법률 제9908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률 제9905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46조에도 불구하고 2010년 1월 1일 이후 임용된 교직원에 대하여는 이 법 부칙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제9조**(연금액 산정에 관한 특례) ①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부터 2034년까지 퇴직연금의 금액은 평균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2016년: 100만분의 18,780
2. 2017년: 100만분의 18,560
3. 2018년: 100만분의 18,340
4. 2019년: 100만분의 18,120
5. 2020년: 100만분의 17,900
6. 2021년: 100만분의 17,800
7. 2022년: 100만분의 17,700
8. 2023년: 100만분의 17,600
9. 2024년: 100만분의 17,500
10. 2025년: 100만분의 17,400
11. 2026년: 100만분의 17,360
12. 2027년: 100만분의 17,320
13. 2028년: 100만분의 17,280
14. 2029년: 100만분의 17,240
15. 2030년: 100만분의 17,200
16. 2031년: 100만분의 17,160
17. 2032년: 100만분의 17,120
18. 2033년: 100만분의 17,080
19. 2034년: 100만분의 17,040

②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4항의 개정규정 및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재직기간에 대한 연금액의 산정에 있어 재직기간 매 1년당 평균기준소득월액에 곱하는 수치 중 100분의 1에 대하여는 평균기준소득월액에 다음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초로 한다. 다만, 30년을 초과하는 재직기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퇴직 전 3년간 전체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제35조제2항제1호의 금액) 대비 평균기준소득월액 비율 구간 | 적용 비율(%) |
|---|---|
| 0.3 미만 | 300 |
| 0.3 이상 0.4 미만 | 216.67 |
| 0.4 이상 0.5 미만 | 175 |
| 0.5 이상 0.6 미만 | 150 |
| 0.6 이상 0.7 미만 | 133.33 |
| 0.7 이상 0.8 미만 | 121.43 |
| 0.8 이상 0.9 미만 | 112.5 |
| 0.9 이상 1.0 미만 | 105.56 |
| 1.0 이상 1.1 미만 | 100 |
| 1.1 이상 1.2 미만 | 95.45 |
| 1.2 이상 1.3 미만 | 91.67 |
| 1.3 이상 1.4 미만 | 88.46 |
| 1.4 이상 1.5 미만 | 85.71 |
| 1.5 이상 1.6 미만 | 83.33 |
| 1.6 이상 | 81.25 |

**제10조**(부담금에 관한 특례) 제4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담금의 금액은 해당 연도별로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2016년: 1만분의 800
2. 2017년: 1만분의 825
3. 2018년: 1만분의 850
4. 2019년: 1만분의 875

**제11조**(재직기간 상한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제44조제3항,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4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교직원(이 법 시행 후에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을 제32조제1항에 따라 합산한 사람을 포함한다)의 퇴직급여 산정 시 재직기간과 부담금 납부기간은 다음 각 호의 연수를 초과할 수 없다.

1.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이 21년 이상인 경우: 33년
2.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이 17년 이상 21년 미만인 경우: 34년
3.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이 15년 이상 17년 미만인 경우: 35년

4.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이 15년 미만인 경우: 36년

**제12조**(급여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급여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법 부칙 제5조 및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이 법 시행 후에 제32조제1항에 따라 합산한 기간 중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 및 복무기간, 제31조제2항에 따라 이 법 시행 전에 산입하여 이 법 시행 전에 부담금을 납부한 기간에 해당하는 임용 전 복무기간, 법률 제3684호 사립학교교원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과 법률 제7536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항 및 법률 제7889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라 이 법 시행 전에 소급 통산하여 이 법 시행 전에 부담금을 납부한 기간에 해당하는 재직기간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급여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부칙 삭제에 따른 경과조치) 법률 제9908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의 삭제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572호,2015. 12. 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34호,2016. 1. 28.>

이 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153호,2016. 5.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직 사무직원의 재직기간 산정 시 제외되는 정년에 관한 특례 등) ①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고용직 사무직원(사무직원의 종류 및 급류ㆍ등급의 구분에 관하여 학교기관의 정관이나 규칙에 따라 분류하여 소속 학교기관의 장이 공단에 신고한 사무직원 중 등급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무직원으로서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사무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직기간 산정에서 제외되는 정년은 제3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60세로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고용직 사무직원 중 이 법 시행 전에 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 산정에서 제외되는 정년인 60세에 도달한 고용직 사무직원의 재직기간 및 재직연수의 산정, 개인부담금 납부, 퇴직연금일시금의 계산 등에 관하여는 제31조, 제42조 및 제4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전날까지의 그 초과한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3조**(교직원의 재직기간 산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교직원 중 이 법 시행 전에 제3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년에 도달한 사람의 재직기간 및 재직연수의 산정, 개

인부담금 납부, 퇴직연금일시금의 계산 등에 관하여는 제31조, 제42조 및 제4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전날까지의 그 초과한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부칙** <제14394호,2016. 12. 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39호,2017. 7. 26.>(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제6호 중 " 행정자치부장관 "을 " 행정안전부장관 "으로 한다.

⑮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522호,2018. 3. 20.>(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8조까지 생략

**제2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1호 중 " 「공무원연금법」 제34조에 따른 단기급여 및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장기급여 "를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에 따른 급여 "로 한다.

제33조의2의 제목 중 " 간병비 "를 " 간병급여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 「공무원연금법」 제35조제2항 "을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제2항 "으로, " 간병비 "를 " 간병급여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 간병비 "를 " 간병급여 "로 한다.

제33조의3제1항 중 " 「공무원연금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요양 "을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요양 "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 「공무원연금법」 제27조제1항 "을 " 「공무원연금법」 제30조제1항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0조제1항 "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사망조위금

2.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28조에 따른 급여(「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퇴직유족연금은 제외한다)
3.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8조에 따른 장해급여 및 같은 법 제35조ㆍ제36조에 따른 장해유족연금ㆍ순직유족연금

제3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연금법」 제27조제3항ㆍ제4항”을 “「공무원연금법」 제30조제3항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0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7조에 따른 순직유족보상금
2.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2조에 따른 재난부조금
3.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사망조위금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유족급여”를 “퇴직유족급여ㆍ재해유족급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공무원연금법」 제47조”를 “「공무원연금법」 제50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유족급여”를 “퇴직유족급여ㆍ재해유족급여”로 한다.

제42조의 제목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33조에 따른 급여의 종류, 급여의 사유, 급여액 및 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 제28조,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40조, 제41조, 제43조부터 제52조까지, 제54조부터 제65조까지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4조, 제25조,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 중 해당 규정(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및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교직원(「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2조제1항의 재난부조금 산정과 같은 법 제43조제3항의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의 사망에 따른 사망조위금 산정, 「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의 지급정지 대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으로, “공무상”은 “직무상”으로, “비공무상”은 “비직무상”으로, “순직공무원”은 “직무상사망교직원”으로, “순직”은 “직무상”으로, “공단” 및 “인사혁신처장”은 각각 “공단”으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으로, “사립학교교직원”은 “공무원”으로, 「공무원연금법」 제34조제1항의 “제25조”를 이 법 “제31조”로, 「공무원연금법」 제40조제2항 및 제3항과 같은 법 제43조제3항의 “제26조”를 이 법 “제32조”로, 「공무원연금법」 제52조제5항의 “제31조와 제32조”를 이 법 “제36조와 제37조”로, “기여금”은 “개인부담금”으로 본다.

제48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적립된 재해보상급여 준비금에서 지급되는 급여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에 따른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재해유족급여(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및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은 제외한다) 및 부조급여로 한다.

⑩부터1& 까지 생략

**제30조** 생략

**부칙** <제15523호,2018. 3. 20.>(공무원연금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5조까지 생략

**제3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단서 중 “「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을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으로,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족연금(교직원이었던 사람이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받다가 사망하여 그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퇴직유족연금(교직원이었던 사람이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받다가 사망하여 그 유족이 퇴직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3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연금법」 제42조제4호”를 “「공무원연금법」 제28조제4호”로 한다.

제32조제2항 본문 중 “「공무원연금법」 제64조”를 “「공무원연금법」 제65조”로 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급여) 교직원의 퇴직ㆍ사망ㆍ장해(직무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 제28조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고, 교직원의 직무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장해ㆍ사망에 대해서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다.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퇴직유족연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기초로 한다. 이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연금법」 제30조제2항제2호 후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장해연금”을 “장해연금 및 비직무상 장해연금”으로 하고, “장해보상금”을 “장해일시금 및 5년분의 비직무상 장해연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42조제2항 중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48조, 제56조, 제57조, 제60조 및 제61조의2”를 “「공무원연금법」 제43조, 제51조, 제54조, 제55조, 제58조 및 제62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1항제2호”를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1항제1호”를 “「공무원연금법」 제65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44조제4항 후단 중 “「공무원연금법」 제66조제2항”을 “「공무원연금법」 제67조제2항”으로 한다.

제48조의3 후단 중 “유족급여”를 “퇴직유족급여ㆍ재해유족급여”로 한다.

제52조의2제1항 전단 중 “유족연금(제38조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유족연금부가금 및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포함한다)”을 “퇴직유족연금(제38조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과 퇴직유족연금부가금 및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52조의2제2항 전단 중 “「공무원연금법」 제45조제6항”을 “「공무원연금법」 제4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공무원연금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족연금의 수급자인 경우에는 유족연금일시금”을 “「공무원연금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퇴직유족연금의 수급자인 경우에는 퇴직유족연금일시금”으로 한다.

제54조제1항 중 “단기급여”를 “요양급여ㆍ간병급여ㆍ부조급여”로, “장기급여”를 “퇴직급여ㆍ퇴직유족급여ㆍ비직무상장해급여ㆍ퇴직수당ㆍ장해급여ㆍ재해유족급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장기급여”를 “퇴직급여ㆍ퇴직유족급여ㆍ비직무상장해급여ㆍ퇴직수당ㆍ장해급여ㆍ재해유족급여”로 한다.

⑥ 생략

**제37조** 생략

**부칙** <제15554호,2018. 4.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2항(직무상유족연금의 급여액을 산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과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6조제2항 및 제37조제2항을 준용하는 부분은 2018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급여액 산정의 기초에 관한 적용례) ①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최저 보상기준 금액에 관한 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전에 사망하여 직무상유족연금의 급여 사유가 발생한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종전의 「공무원연금법」(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여액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급여 지급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직무상유족연금의 지급액에 관한 적용례) ①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6조제2항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직무상유족연금의 급여 사유가 발생한 사람(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여액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급여 지급일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 등에 따른 급여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 제4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분할연금 지급 및 선청구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공무원연금법」 제45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혼인기간 인정기준은 제외한다)은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이혼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분할연금액 지급 대상 혼인기간에는 2016년 1월 1일 전에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교직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을 포함한다.

②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 제4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연도별로 정한 연령에 도달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1.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0세
2. 2022년부터 2023년까지: 61세
3. 2024년부터 2026년까지: 62세
4. 2027년부터 2029년까지: 63세
5. 2030년부터 2032년까지: 64세

③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 제49조는 2016년 1월 1일 이후부터 이 법 시행일 전까지 이혼한 사람이 이 법 시행 후 퇴직연금일시금ㆍ퇴직연금공제일시금ㆍ퇴직일시금의 분할 지급 및 선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분할대상 혼인기간에는 이 법 시행 전에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교직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을 포함한다.

**제6조**(혼인기간의 정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 제4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혼인기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급여제한사유 소멸에 따른 급여 및 이자 지급에 관한 특례)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 제65조제2항은 이 법 시행 전에 급여의 제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4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5년이 지나면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제8조**(재활급여 지급에 관한 적용례) ①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6조 및 제27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제35조에 따라 공무상 요양 결정을 받은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여액은 이 법 시행 후 재활운동을 하거나 심리상담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9조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1호 중 “「공무원연금법」 제34조에 따른 단기급여 및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장기급여”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에 따른 급여”로 한다.

제33조의2의 제목 중 “간병비”를 “간병급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무원연금법」 제35조제2항”을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제2항”으로, “간병비”를 “간병급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간병비”를 “간병급여”로 한다.

제33조의3제1항 중 “「공무원연금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요양”을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요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장해연금의 수급권자”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8조에 따른 장해연금의 수급권자”로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공무원연금법」 제27조제1항”을 “「공무원연금법」 제30조제1항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사망조위금
2.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28조에 따른 급여(「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퇴직유족연금은 제외한다)
3.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8조에 따른 장해급여 및 같은 법 제35조ㆍ제36조에 따른 장해유족연금ㆍ순직유족연금

제3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연금법」 제27조제3항ㆍ제4항”을 “「공무원연금법」 제30조제3항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0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7조에 따른 순직유족보상금
2.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2조에 따른 재난부조금
3.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사망조위금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유족급여”를 “퇴직유족급여ㆍ재해유족급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공무원연금법」 제47조”를 “「공무원연금법」 제50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유족급여”를 “퇴직유족급여ㆍ재해유족급여”로 한다.

제48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적립된 재해보상급여 준비금에서 지급되는 급여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에 따른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재해유족급여(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및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은 제외한다) 및 부조급여로 한다.

② 법률 제15523호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36조제5항 중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를 “제3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로 한다.

**부칙** <제15714호,2018. 8. 1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44호,2019. 12. 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교직원 및 교직원이었던 사람이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무원연금법」 준용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퇴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4. 2. 27.>

**부칙** <제16760호,2019. 12. 10.>(군인연금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본문 중 “「군인연금법」 제33조”를 “「군인연금법」 제38조”로 한다.

⑤ 생략

**제21조** 생략

**부칙** <제16851호,2019. 12. 31.>(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1호 중 “방위소집·상근예비역소집 또는 보충역소집”을 “방위소집·상근예비역소집·보충역소집 또는 대체역소집”으로 한다.

⑩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17658호,2020. 12. 22.>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54호,2021. 3. 23.>(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3조 중 법률 제17658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53조의3제4항의 개정부분: 2021년 3월 23일
2. 생략

**부칙** <제18991호,2022. 10.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급여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63조제4항은 이 법 시행 전에 퇴직유족급여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제한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 급여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349호,2024. 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에 따라 임명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임원은 남은 임기 동안 이 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1072호,2025. 11.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족연금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장해유족연금 또는 직무상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의 압류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양육비 채권(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미성년인 자녀에 대한 양육비 채권으로 한정한다)이 확정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8호, 2025. 12. 30., 타법개정]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044 - 203 - 6493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2. 28., 2005. 6. 30.>

**제2조(유족의 인정기준 등)** ① 교직원이거나 교직원이었던 사람(이하 "교직원등"이라 한다)이 사망할 당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부양하고 있었는지에 관한 인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19세 이상인 자녀 중 유족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개정 2025. 1. 14.>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란 각각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상태를 말한다.<개정 2025. 1. 14.>

1. 법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2.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이하 "보상준용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제4호·제5호
3.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이하 "연금준용법"이라 한다) 제57조제1항제4호·제5호

④ 태아인 자녀 또는 손자녀(孫子女)라는 사실에 대한 증명은 보상준용법 제24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이 발행한 진단서에 따른다.<개정 2025. 1. 14.>

⑤ 법 제4조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연금준용법 제28조제2호에 따른 퇴직유족급여 또는 보상준용법 제8조제5호에 따른 재해유족급여 수급권자인 19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나 그 손자녀의 아버지가 법 제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장해 상태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자녀 또는 손자녀 등에게 장해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5. 1. 14.>

[전문개정 2018. 9. 18.]

[제목개정 2025. 1. 14.]

**제3조(소득 및 비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소득의 범위는 교직원이 소속 학교 및 학교경영기관(이하 "학교기관"이라 한다)에서 일정기간 재직하고 지급받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소득으로서 전년도에 발생한 것을 말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은 학교기관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 중 부담금 및 급여 산정을 위한 소득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수당 등에 대하여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13. 3. 23.>

②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비과세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전년도 비과세소득으로 한다.<개정 2012. 1. 26.>

[전문개정 2010. 1. 1.]

**제3조의2(기준소득월액의 결정)** ① 공단은 매년 7월 1일에 교직원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해에 신규임용된 교직원에 대해서는 신규임용 시 결정한다. <개정 2018. 9. 18., 2025. 1. 14.>

② 전년도 소득에 종사한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교직원의 기준소득월액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득에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전년도 소득에 종사한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에 그 해의 공무원보수인상률(「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조제5항에 따라 고시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3. 11. 29., 2018. 9. 18., 2025. 7. 7.>

③ 전년도에 임용되어 전년도 소득에 종사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교직원과 해당 연도에 신규로 임용된 교직원의 기준소득월액은 소속 학교기관에서 교직원에게 해당 연도에 지급할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제3조제2항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해당 연도 소득에 종사할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3. 11. 29., 2018. 9. 18.>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중에 휴직기간 또는 시간선택제 전환 근무기간이 있는 교직원의 기준소득월액은 최근에 적용하였던 기준소득월액에 그 해의 공무원보수인상률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8. 9. 18.>

⑤ 학교기관이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소득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소득 관련 자료가 없는 경우 해당 교직원의 기준소득월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2. 1. 26., 2018. 9. 18.>

1. 재직자의 경우: 해당 교직원의 전년도 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에 따라 조정한 금액
2. 신규임용자의 경우: 소속 학교기관과 같은 급의 학교기관의 유사한 직종ㆍ직위 등에 해당하는 교직원의 기준소득월액 중 가장 적은 금액

[전문개정 2010. 1. 1.]

**제3조의3(기준소득월액의 하한)** ①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원: 92만 2천원
2.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교원: 120만 8천400원

3. 일반직 및 기술직 사무직원: 82만 100원
4. 기능직 사무직원: 73만 5천100원
5. 고용직 사무직원: 52만 5천400원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직원의 생활수준, 임금, 물가, 그 밖에 경제 사정에 뚜렷한 변동이 있을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하한액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하한액을 조정할 경우 조정된 하한액과 조정 사유를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2. 1. 26.]

[종전 제3조의3은 제3조의4로 이동 <2012. 1. 26.>]

**제3조의4(기준소득월액의 적용기간)** 기준소득월액은 해당 연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 적용한다. 다만, 제3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적용한다. <개정 2018. 9. 18.>

1. 전년도에 임용되어 전년도 소득에 종사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임용된 날부터 임용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2. 해당 연도에 신규로 임용된 경우: 임용된 날부터 임용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전문개정 2010. 1. 1.]

[제3조의3에서 이동 , 종전 제3조의4는 제3조의5로 이동 <2012. 1. 26.>]

**제3조의5(소득 관련 자료의 제출 및 기준소득월액의 통보)** ① 학교기관의 장은 소속 교직원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 관련 자료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 등을 국세청에 신고한 경우에는 소득 관련 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전년도에 1개월 이상 근로소득에 종사한 교직원: 제3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 자료를 매년 5월 말까지 제출
2. 전년도에 1개월 미만 근로소득에 종사한 교직원(휴직자 및 복직자는 제외한다): 해당 연도 예상 근로소득 자료를 해당 연도 5월 말까지 제출
3. 해당 연도에 신규 임용된 교직원: 해당 연도 예상 근로소득 자료를 신규임용 신고 시 제출

② 공단은 교직원 개인별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되면 그 금액과 그에 따른 부담금을 학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1. 1.]

[제3조의4에서 이동 , 종전 제3조의5는 제3조의6로 이동 <2012. 1. 26.>]

**제3조의6(기준소득월액 및 평균기준소득월액의 현재가치로의 환산)** ① 법 제2조제1항제5호 본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은 기준소득월액에 적용기간별로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차례대로 곱하여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법 제2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평균기준소득월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은 평균기준소득월액에 연도별로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차례대로 곱하여 연금의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 4. 29.]

**제3조의7(신고 소득의 확인 등)** ① 공단은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학교기관에서 제출한 소득 관련 자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소득의 축소ㆍ과대 또는 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소득 관련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요청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1. 해당 교직원과 유사한 직종 및 직위 등에 해당하는 다른 교직원의 평균소득보다 뚜렷하게 낮거나 높은 경우
2. 임금대장이나 그 밖에 소득 관련 서류 또는 장부 등의 내용과 다른 경우

② 공단은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제출한 소득 관련 자료가 제1항에 따라 확인한 소득과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확인한 자료를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한다.<개정 2012. 1. 26.>
[본조신설 2010. 1. 1.]
[제3조의6에서 이동 <2012. 1. 26.>]

## 제2장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개정 2010. 1. 1.>

**제4조(설립등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0. 2. 28., 2010. 1. 1.>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그 지부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방법

**제5조(지부의 설치등기)** 공단은 법 제6조에 따라 지부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부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 1. 21.]

**제6조(이전등기)**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 공단은 지부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 1. 21.]

**제7조(변경등기)** 공단은 제4조 각 호 또는 제5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6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 1. 21.]

**제8조(등기신청인)** 공단과 지부의 등기에 있어서는 공단의 이사장이 그 신청인이 된다. 다만, 공단의 설립등기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0. 1. 1.>

**제9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①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단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
1. 정관의 등본
2. 임원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서는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등기기간의 기산)** 법과 이 영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중 교육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공단에 도달한 날로부터 등기의 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1991. 2. 1., 2001. 1. 29., 2008. 2. 29., 2010. 1. 1., 2013. 3. 23.>

**제11조(관할등기소)** ① 공단의 등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 <개정 2025. 1. 21.>
②등기소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등기부를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03. 2. 24., 2010. 1. 1.>

**제12조(준용규정)** 공단의 등기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비송사건절차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이 경우 “ 본점 ”은 “ 주된 사무소 ”로, “ 지점 ”은 “ 지부 ”로 본다. <개정 2005. 6. 30., 2010. 1. 1.>
[전문개정 1996. 2. 2.]

**제13조(영리업무의 범위)** 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상업ㆍ공업ㆍ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2.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체의 이사ㆍ감사ㆍ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기타의 임원이 되는 것
3. 직무에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기타 계속적으로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제13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① 법 제19조제4항제9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란 별표 2 제1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② 공단(법 제20조 및 이 영 제14조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법 제19조제4항제9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상대방은 별표 2 제2호와 같다.
[본조신설 2018. 9. 18.]

**제14조(업무의 위탁)** 공단이 법 제20조에 따라 체신관서,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그 밖의 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려면 위탁하려는 업무의 범위, 처리절차, 위탁수수료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업무를 위탁하려는 자와 협약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18.>
[전문개정 2010. 1. 1.]

**제15조** 삭제 <2000. 2. 28.>

**제16조** 삭제 <2000. 2. 28.>

## 제3장 재직기간의 합산

**제17조** 삭제 <1989. 3. 27.>

**제17조의2(재직기간으로 인정되는 복무기간)** 법 제3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5. 6. 30., 2009. 12. 7., 2010. 1. 1., 2013. 12. 4., 2016. 11. 29., 2018. 9. 18., 2020. 6. 30.>

1. 방위소집 또는 상근예비역소집에 의하여 복무한 기간
2. 보충역 소집에 의하여 사회복무요원 또는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근무한 기간(「병역법 시행령」 제151조에 따라 산정된 기간에 한정한다)
3. 대체역 소집에 의하여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한 기간(「병역법 시행령」 제151조에 따라 산정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본조신설 2000. 12. 30.]

**제17조의3(임용 전 복무기간의 산입절차)** ① 법 제31조의2에 따른 복무기간 산입신청서는 임용 후 퇴직일 전날까지 제출해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복무기간 산입신청서를 받은 경우 복무기간 산입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과 해당 학교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 1. 14.]

**제18조(재직기간의 합산절차)** ①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받으려는 사람은 합산받을 재직기간과 반납하여야 할 급여액과 이자(이하 "반납금"이라 한다)의 납부방법 등을 적은 재직기간 합산 승인신청서를 임용 후 퇴직일 전날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한 교직원이 퇴직급여의 청구 없이 다시 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학교기관의 장이 제89조의2에 따라 공단에 제출하는 교직원 임용신고서에 재직기간 합산 신청의 뜻을 표시함으

로써 재직기간 합산 승인신청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76. 6. 25., 1977. 12. 31., 1981. 6. 23., 1982. 12. 31., 1989. 3. 27., 1996. 2. 2., 2000. 12. 30., 2005. 6. 30., 2007. 1. 24., 2010. 1. 1., 2013. 11. 29., 2018. 9. 18., 2025. 1. 14.>

② 삭제<2013. 11. 29.>

③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합산기간ㆍ반납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 후 재직기간의 합산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 및 해당 학교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0. 1. 1., 2013. 11. 29.>

**제19조(반납금의 납부방법)** ①재직기간의 합산승인을 받은 자의 반납금의 납부는 일시반납의 경우에는 합산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분할반납의 경우에는 합산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보수 수령시에 학교기관의 장에게 납부하거나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업무를 위탁하는 체신관서 등에 그 달의 말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개정 1981. 6. 23., 1982. 12. 31., 2000. 12. 30., 2010. 1. 1.>

② 반납금의 분할납부는 월별로 하되, 분할납부 횟수는 60회 이내에서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원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8. 9. 18.>

③ 삭제<1989. 3. 27.>

④ 재직기간의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납부되지 아니한 반납금이 있으면 공단은 그 미납된 반납금을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 9. 18.>

**제20조(반납금액의 산정)** ①반납금액을 산정할 때 반납하여야 할 급여액에 가산징수할 이자의 계산기간은 그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부터 재직기간 합산 승인신청서가 공단에 접수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달수에 의하되, 연 단위로 그 이자를 급여액에 포함하여 그 후의 이자를 계산한다. 다만,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분할 납부의 경우에 다시 가산할 이자의 계산기간은 재직기간합산을 인정한 달의 다음 달부터 분할 납부가 끝나는 달까지로 하되, 그 분할 납부할 1회의 금액은 분할 납부의 횟수에 따라 원리금을 똑같이 나눈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89. 3. 27., 2000. 12. 30., 2010. 1. 1., 2013. 11. 29., 2019. 7. 2.>

②제1항의 이자율은 이자의 계산기간동안 해당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하 "전국은행"이라 한다)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한다.<개정 1989. 3. 27., 1996. 2. 2., 2000. 12. 30., 2005. 6. 30., 2010. 11. 15.>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하는 경우에 적용할 이자율은 재직기간합산을 승인한 연도의 1월 1일의 이자율을 적용하되, 분할납부중의 이자율과 재직기간의 합산을 승인한 때의 이자율의 차이가 2퍼센트 이상이 되는 때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이자율을 적용하여 반납금을 다시 산정한다. 분할납부중 그 변동된 이자율과 비교하여 다시 2퍼센트 이상 증감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신설 2000. 12. 30.>

④제19조제1항의 납부기한까지 반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의 계산기간은 체납기간(일 단위로 계산한다)으로 하되, 그 이자율은 연체이자의 계산기간 동안 해당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의 2배에 해당하는 금리로 한다.<신설 2000. 12. 30., 2005. 6. 30., 2013. 11. 29.>
[전문개정 82. 12. 31.]

## 제4장 급여

### 제1절 통칙

**제21조(심의대상 급여)** 법 제3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급여를 말한다. <개정 2021. 9. 29.>
1. 법 제33조의2에 따른 간병급여, 보조기구 또는 보조기구 수당
2. 보상준용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급여
   가. 보상준용법 제22조에 따른 요양급여
   나. 보상준용법 제28조에 따른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
   다. 보상준용법 제36조에 따른 직무상유족연금
   라. 보상준용법 제37조에 따른 직무상유족보상금
3. 연금준용법 제59조에 따른 비직무상 장해연금 또는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전문개정 2018. 9. 18.]

**제21조의2(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심의회)** ① 공단에 법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심의회(이하 "급여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급여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5. 1. 14.>
1. 법 제33조의3 및 이 영 제32조의3에 따른 재요양 인정 여부
2. 법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급여의 결정
3. 법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불행사 여부
4. 보상준용법 제44조제3항·제4항 및 연금준용법 제63조제3항·제4항에 따른 급여 제한사유 해당 여부
5. 제32조의7에 따른 요양의 종결 여부
6. 제41조, 제44조 및 제45조(다른 규정에서 장해 상태 등에 관하여 해당 규정에 따르거나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장해 상태의 해당 여부, 장해등급의 결정 및 개정(改定)

③ 급여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급여심의회의 위원장은 공단의 상임이사가 되고, 위원장 외의 위원은 교육부의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교직원·의료업무 및 법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공단의 이사장이 위촉한다.
⑤ 급여심의회의 위원(위원장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교육부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퇴직하거나 전보된 경우에는 임기가 종료되며,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을 새로 위촉한다.

⑥ 공단의 이사장은 급여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급여심의회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급여심의회의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⑦ 급여심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없거나 해당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급여심의회의 회의는 급여심의회의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별로 지명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1명 이하로 구성한다.

⑨ 급여심의회의 회의는 제8항에 따른 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신속한 심의가 필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접속한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공단은 급여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급여심의회 및 그 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이사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8. 9. 18.]

**제22조(기준소득월액의 상한)** ① 법 제35조제1항 후단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연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전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전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으로 한다. <개정 2012. 1. 26.>

1. 교원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를 적용받는 대학 총장의 기준소득월액 중 가장 높은 기준소득월액
2. 사무직원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을 적용받는 일반직 2급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 중 가장 높은 기준소득월액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의 상한 금액을 매년 5월 31일까지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1. 1.]

**제22조의2(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현재가치로의 환산)** 법 제35조제3항제1호 각 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을 연금의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은 제3조의6을 준용한다. <개정 2025. 1. 14.>

[본조신설 2015. 12. 31.]

**제22조의3(연금증서의 교부)** ① 공단은 연금인 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 연금수급자 ”라 한다)에게 연금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연금수급자는 연금증서를 잃어버리거나 연금증서가 훼손된 경우에는 공단으로부터 연금증서를 재교부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훼손을 이유로 재교부 받은 경우에는 훼손된 연금증서를 공단에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9. 18.]

**제22조의4(연금수급자의 주소ㆍ성명 변경신고)** 연금수급자는 주소 또는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주소가 변경된 경우: 주소변경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거나 구두로 신고
2. 성명이 변경된 경우: 성명변경 신고서에 주민등록초본 또는 가족관계 기본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

[본조신설 2018. 9. 18.]

**제22조의5(연금지급일)** 보상준용법 제13조제3항 및 연금준용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연금인 급여의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하며, 연금수급권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일 전에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9. 18.]

**제22조의6(이민 및 국적 상실에 따른 연금청산 청구)** ① 외국으로 이민을 가는 연금수급자가 보상준용법 제15조제1항 또는 연금준용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연금인 급여 대신 일시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연금청산 청구서에 「해외이주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등 이민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14.>

② 국적을 상실한 연금수급자가 보상준용법 제15조제2항 또는 연금준용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연금인 급여 대신 일시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연금청산 청구서에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 등 국적 상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9. 18.]

**제22조의7(연금액 전액 지급정지 대상 기관)** 보상준용법 제32조제1항 및 연금준용법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수급자가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보상준용법 제28조에 따른 장해연금, 연금준용법 제43조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비직무상 장해연금(이하 “ 퇴직연금등 ”이라 한다)이 전액 지급정지 되는 같은 법 제5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관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기관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8. 9. 18.]

**제22조의8(장해연금 등의 지급정지)** ① 퇴직연금등의 수급자(이하 이 조에서 “퇴직연금등수급자”라 한다)는 법,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립학교교직원ㆍ공무원 또는 군인으로 임용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소속 연금취급기관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재임용 신고서 또는 재퇴직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금준용법 제5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소득월액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1만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을 소득이 발생했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개정 2025. 1. 14.>

③ 연금준용법 제5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해당 연도 소득월액이 전년도 공무원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등의 지급을 일부 정지하되, 전년도 공무원 평균연금월액을 적용하여 우선 정지금액을 산정하고 제5항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있은 후에 정산한다.

④ 공단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에 근거하여 해당 연도 퇴직연금등의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퇴직연금등수급자의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퇴직연금등의 지급을 정지한다.

⑤ 공단은 연금준용법 제50조에 따라 퇴직연금등의 지급정지를 한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있은 후에 해당 연도 연금지급정지액을 확정하여 그 정산차액을 다음 달 이후의 퇴직연금등을 지급할 때에 가감한다. 다만, 퇴직연금등수급자가 연금지급정지액 조정신청서에 해당 연도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연금지급정지액의 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있기 전에 연금지급정지액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5. 1. 14.>

⑥ 제5항 본문에 따른 정산차액을 퇴직연금등에서 공제하는 달에 퇴직연금등수급자가 퇴직연금등 외의 소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금월액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정산차액을 공제한다.

⑦ 연금준용법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전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전년도 5월에 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한다.

⑧ 교육부장관은 연금준용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전년도 공무원 평균연금월액을 매년 1월 10일까지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⑨ 보상준용법 제32조제2항 및 연금준용법 제6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란 각각 이 영 제41조 및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8. 9. 18.]

**제22조의9(연금수급자의 신상 조사 등)** ① 공단은 연금인 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신분상의 변동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금수급자의 거주지 또는 등록기준지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상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 의뢰를 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법 제19조제1항·제2항에 따라 수급권의 변경 또는 소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급자 또는 그 가족 등을 대상으로 수급자의 사망·이혼·생계유지 또는 양육책임 이행 여부 등에 관한 조사를 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5. 1. 14.>
④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수급자는 매년 5월 31일을 기준으로 신분변동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재외공관의 장(재외공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국가의 경우에는 그 인접국에 있는 재외공관의 장을 말한다)의 확인을 받아 매년 6월 30일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수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급여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급여의 지급이 중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급여 지급을 중지하기 전에 미리 수급자 또는 그 가족 등에게 알려야 한다.
⑥ 공단은 제5항에 따른 급여의 지급 중지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지급을 재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9. 18.]

**제23조(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지급방법)** ① 공단은 유족 중 다음 각 호의 급여를 받을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고 그 같은 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가 선정되어 모든 사람의 해당 급여 수령이 위임된 경우에는 법 제37조에 따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는 대신 그 대표자에게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1. 보상준용법 제8조제5호에 따른 재해유족급여
2. 연금준용법 제28조제2호에 따른 퇴직유족급여
② 제1항에 따른 위임은 위임하는 사람이 자필 서명한 대표자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위임하는 사람이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2. 위임하는 사람이 미성년인 경우: 그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전문개정 2018. 9. 18.]

**제24조(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지급의 특례)** ① 법 제38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연금인 급여: 사망 당시 원 연금액(교직원등이 연금준용법 제4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퇴직연금 지급연령 도달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조기퇴직연금상당액을 말하고, 연금준용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미달연수 5년을 초과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미달연수 4년 초과 5년 이내에 사망한 것으로 보아 산정한 조기퇴직연금상당액을 말한다)의 3년분에 다음의 비율을 곱한 금액

[36 -(연금준용법 제34조제1항 또는 보상준용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망 시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개월 수)] ÷ 36

2. 그 밖의 급여: 원 급여액 전액. 다만, 보상준용법 제37조에 따른 직무상유족보상금, 연금준용법 제54조·제58조에 따른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및 퇴직유족일시금은 원 급여액의 2분의

1로 한다.

② 공단은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도 없는 경우에 사망한 교직원등이 소속하였던 학교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여 그 사망한 교직원등의 분묘ㆍ제기(祭器)ㆍ기념비 등을 마련하는 데 사용하거나, 기념사업 등의 비용 또는 사망 전의 요양비용에 충당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 9. 18.]

**제24조의2(급여의 지급)** ①급여는 법 제20조 및 이 영 제14조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급여의 지급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개설된 급여수급권자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지급한다. 다만, 법 제40조에 따른 권리의 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이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수급권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급여는 이를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3. 2. 24.]

**제25조(급여의 환수)** ① 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급여액에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할 이자 및 환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급여액에 가산할 이자의 계산기간은 급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환수할 급여액과 이자(이하 "환수금"이라 한다)를 결정하여 고지하는 날까지로 하되, 연 단위로 그 이자를 그 급여액에 산입하여 그 이후의 이자액을 계산한다.

1. 이자: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2. 환수비용: 급여 환수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여비와 그 밖에 환수에 드는 비용으로서 공단이 산정하는 금액

② 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이자는 연체이자의 계산기간 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의 2배에 해당하는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연체이자의 계산기간은 환수금 납부 기한의 다음 날부터 그 환수금을 낸 날까지로 한다.

③ 급여를 받았던 사람이나 학교기관의 장은 법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단에 신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급여의 환수사유를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급여를 받았던 사람에게 환수금 반납고지서를 보내고, 학교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반납고지서를 받은 사람은 반납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내야 한다. 다만, 법 제39조제3호ㆍ제4호의 경우에는 환수금 분할납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매월 분할납부할 수 있다.

1. 반납하여야 할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8회
2. 반납하여야 할 금액이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경우: 16회
3. 반납하여야 할 금액이 2천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인 경우: 32회
4. 반납하여야 할 금액이 4천만원 이상 6천만원 미만인 경우: 48회
5. 반납하여야 할 금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경우: 60회

⑥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 가산하는 이자(법 제39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학교기관의 장 또는 공단의 착오나 누락으로 처음부터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는 제외한다)는 분할납부 기간 동안 내야 할 환수금에 제1항제1호에 따른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회당 분할납부 금액은 분할납부 횟수에 따라 원리금을 똑같이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⑦ 공단은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환수금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사람이 분할납부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분할납부 승인을 취소하고 환수금과 연체이자를 한꺼번에 환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 9. 18.]

**제26조(급여를 받을 권리의 담보)**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이란 제8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8. 9. 18.]

**제27조(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공제액청구)** ①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경영기관이 공단이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학교경영기관이 교직원에게 지급한 급여의 급여사유ㆍ지급받은 교직원의 인적사항 및 지급액을 기재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

②공단이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공제액을 지체없이 학교경영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0. 1. 1.>

**제27조의2(연금 조정을 위한 수급자 여부의 확인)** ① 공단은 보상준용법 제20조제6항 또는 연금준용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조정을 위하여 유족에게 지급할 급여의 수급권자가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의 수급자인지 여부의 확인을 공무원연금공단, 국방부장관 또는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에 의뢰할 수 있다.

② 공무원연금공단, 국방부장관 또는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은 제1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경우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8. 9. 18.]

**제28조(제3자의 손해배상과의 조정)** ① 교직원이 제3자의 가해행위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장해 상태가 되거나, 사망(이하 이 조에서 “ 부상등 ” 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 요양을 담당한 요양기관은 지체 없이 소속 학교기관의 장에게 제3자의 가해행위로 부상등을 당했다는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1. 9. 29.>

1. 법 제33조의2에 따른 간병급여, 보조기구 및 보조기구 수당
2. 보상준용법 제8조에 따른 직무상 요양급여, 재활급여, 장해급여 및 직무상유족보상금
3. 연금준용법 제28조제3호에 따른 비직무상 장해급여

② 학교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그 가해 경위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보내야 한다.

③ 수급권자가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청구 당시 가해행위를 한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지 아니하여 해당 급여를 받은 후 그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에는 즉시 공단에 신고하고 손해배상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9. 18.]

**제28조의2(급여의 종류 및 지급시기의 변경)**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려는 사람은 급여 지급이 시작되기 전 또는 급여 지급일(연금인 급여의 경우에는 최초 지급일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의 종류 변경
   가. 보상준용법 제8조제3호에 따른 장해급여
   나. 보상준용법 제8조제5호에 따른 재해유족급여
   다. 연금준용법 제28조제1호에 따른 퇴직급여
   라. 연금준용법 제28조제2호에 따른 퇴직유족급여
2. 연금준용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시기 변경

② 제1항의 신청에 따른 변경이 있는 경우 이미 받은 급여는 급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반납일까지의 일수에 따른 이자(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한다)를 가산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연금준용법 제28조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급여의 종류가 변경되거나 같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시기가 변경된 경우에는 연금준용법 제45조에 따라 분할연금을 청구한 사람,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분할연금을 선청구한 사람 또는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퇴직연금일시금 등을 분할 청구한 사람도 동일하게 급여의 종류 또는 지급시기를 변경 신청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8. 9. 18.]

## 제2절 보상준용법에 따른 급여 등 <개정 2018. 9. 18.>

### 제1관 직무상 요양급여 <개정 2018. 9. 18.>

**제29조(직무상 요양급여)** ① 공단은 교직원등이 직무상 재해를 입어 요양(법 제33조의3에 따라 재요양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준용법 제22조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직무상요양급여"라 한다)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서 "직무상 재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직무와 부상ㆍ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직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1. 직무상 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이하 "직무상 사고"라 한다)로 인한 부상
   가. 직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다. 그 밖에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직무상 질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학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나. 직무수행과정에서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직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③ 직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교직원등에게 그 직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추가로 발견된 부상이나 질병은 직무상 재해로 본다.

④ 직무상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과정에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주된 원인이 되어 합병증이 유발된 경우 그 합병증은 직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합병증이 기초 질환이나 체질적 원인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유발되었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직무상 질병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직원등이 자해행위로 직무상 재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직무상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자해행위가 직무와 관련한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무상요양급여를 지급한다.<개정 2025. 1. 14.>

1. 직무수행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요양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교직원등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2.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인 교직원등이 그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을 한 경우
3. 그 밖에 직무수행 또는 직무와 관련한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⑥ 직무상 질병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직원등의 업무 특성, 성별, 나이, 체질, 평소의 건강상태, 기존의 질병 유무, 병가, 휴직 및 퇴직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9. 18.]

**제29조의2(요양 등의 자문)** 공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료계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1. 직무상요양급여의 적정성
2. 제30조에 따른 요양기간 결정 및 제31조에 따른 요양기간 연장 결정의 적정성
3. 보상준용법 제26조ㆍ제27조에 따른 재활급여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장해급여의 적정성
4. 법 제33조의2에 따른 간병급여의 적정성
5. 그 밖에 공단이 요양 및 재요양 등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의료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8. 9. 18.]

**제30조(직무상요양 승인)** ① 교직원등이 요양기관에서 직무상요양급여를 받는 요양(직무상요양급여를 받는 재요양을 포함하며, 이하 “ 직무상요양 ” 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해당 교직원등은 직무상요양 승인신청서에 요양기간을 명확하게 적은 진단서(요양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소속 학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상 또는 질병에 긴급한 처치가 필요하여 미리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요양을 시작한 후 지체 없이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학교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 그 부상 또는 질병의 경위를 조사한 후 7일 이내에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보내야 한다.

1. 건강진단 결과통보서 사본
2. 부상ㆍ질병 경위조사서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 등을 받은 경우 직무상요양의 승인 여부 및 그 요양기간을 결정하여 그 결정서를 신청인, 학교기관의 장과 법 제20조 및 이 영 제14조에 따라 직무상요양급여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2018. 9. 18.]

**제30조의2** 삭제 <2018. 9. 18.>

**제31조(직무상요양기간의 연장)** ① 교직원등이 제30조제3항에 따른 직무상요양기간을 초과하여 요양하려 하거나 보상준용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실제요양기간 3년을 초과하여 직무상요양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직무상요양기간 연장승인 신청서에 진단서(요양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필요한 직무상요양의 내용, 직무상요양기간 연장 필요 여부 및 필요한 직무상요양기간에 관한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직무상요양기간 연장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직무상요양기간 연장 승인 여부와 직무상요양기간(연장 결정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결정하여 그 결정서를 신청인과 법 제20조 및 이 영 제14조에 따라 직무상요양급여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2018. 9. 18.]

**제32조(직무상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① 요양기관이 직무상요양을 실시한 경우에는 진료비청구서에 그 명세서를 첨부하여 보상준용법 제25조에 따라 산정한 직무상요양급여비용을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 법 제20조 및 이 영 제14조에 따라 직무상요양급여 관련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② 공단 또는 법 제20조에 따라 직무상요양급여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직무상요양급여비용 청구를 받은 경우 청구 내용을 심사하여 그 비용을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상요양급여비용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 보상준용법 제25조제1호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라 본인이 요양기관에 납부한 본인일부부담금
2. 보상준용법 제25조제2호ㆍ제3호 및 이 영 제32조의2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직무상요양급여비용을 직접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직무상요양급여비용 청구서에 명세서, 영수증 및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④ 법 제20조에 따라 직무상요양급여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직무상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급여비용 청구서에 그 명세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은 1개월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교직원등이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것이 명백하여 긴급하게 직무상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른 직무상요양 승인 전이라도 요양기관에 직무상요양급여비용의 지급 의사와 지급 범위를 알리는 등 직무상요양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 9. 18.]

**제32조의2(직무상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보상준용법 제25조제3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양급여비용 ” 이란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비용을 말한다.

1. 보상준용법 제25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요양으로는 정상적인 치료가 곤란하거나 치료 후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곤란하여 별도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로서 그에 필요한 약제(藥劑)ㆍ진료ㆍ처치(성형수술을 포함한다)ㆍ기구ㆍ재활치료 등에 드는 비용으로서 공단이 정하는 요양급여비용
2. 보상준용법 제25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수가(酬價)를 초과하는 비용 중 공단이 정하는 요양급여비용

[전문개정 2018. 9. 18.]

**제32조의3(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① 직무상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공단에 법 제33조의3에 따른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보상준용법 제28조에

따라 장해일시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일부터 5년까지 재요양을 신청할 수 없다.

1. 치유된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것
2.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상태에 대하여 수술(내고정술로 삽입된 금속핀 등 내고정물의 제거 수술과 의수·의족 장착을 위한 절단 부위의 재수술을 포함한다)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의학적인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② 교직원등이 제1항에 따라 재요양을 받으려면 직무상 재요양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진단서(요양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필요한 재요양 내용 및 필요한 요양기간에 관한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2. 요양 관련 의무기록 사본
3. 그 밖에 재요양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의무기록 사본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재요양 신청을 받은 경우 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요양 승인 여부와 재요양기간(재요양 승인 결정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결정하여 그 결정서를 신청인과 법 제20조 및 이 영 제14조에 따라 직무상요양급여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보내야 한다.

④ 공단은 재요양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단이 지정하는 요양기관에서 진찰을 받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진단에 드는 비용은 공단에서 부담한다.

⑤ 재요양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31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8. 9. 18.]

**제32조의4(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의 요양)** ① 교직원등이 긴급한 필요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 요양(재요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은 경우에는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직무상요양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교직원등은 제1항에 따라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받는 경우 그 요양을 시작하면 지체 없이 제30조에 따른 직무상요양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받지 못하는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9. 18.]

**제32조의5(요양기관의 변경)** 요양 중인 사람이 요양기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요양기관에 제30조제3항에 따른 직무상요양 승인결정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9. 18.]

**제32조의6** 삭제 <2018. 9. 18.>

**제32조의7(요양의 종결)** ① 공단은 직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 중인 사람의 부상·질병에 대하여 계속 치료를 하더라도 의학적인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요양을 종결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요양을 종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교직원등에게 미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8. 9. 18.]

### 제2관 간병급여 · 보조기구 및 보조기구 수당 <개정 2021. 9. 29.>

**제33조(간병급여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 ① 법 제33조의2에 따른 간병급여의 지급요건은 별표 4와 같다.
② 간병급여는 제1항에 따른 간병급여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실제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③ 간병급여의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9조제3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④ 간병급여 수급권자가 법 제33조의3에 따라 재요양을 받는 경우 그 재요양 기간 중에는 간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간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간병급여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간병 실시 및 비용에 관한 증빙 서류
2. 제1항에 따른 간병급여 지급요건에 해당되어 간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3.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장해진단서. 다만, 공단이 제출을 면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⑥ 공단은 제5항에 따라 간병급여의 청구를 받으면 이를 심사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8. 9. 18.]

**제34조(보조기구 또는 보조기구 수당의 지급 기준)** ① 법 제33조의2에 따른 보조기구의 지급 대상 및 지급 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산정기준에 따라 정해지는 재활보조기구 및 틀니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 7. 2., 2021. 9. 29.>
② 보조기구 또는 보조기구 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은 보조기구 또는 보조기구 수당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1. 9. 29.>
1. 보조기구 비용에 관한 증명 서류
2. 제1항에 따른 보조기구 지급 대상 및 지급 기준에 해당되어 보조기구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보조기구 또는 보조기구 수당의 청구를 받으면 이를 심사하여 지급한다.<개정 2021. 9. 29.>
[본조신설 2018. 9. 18.]
[제목개정 2021. 9. 29.]

**제35조** 삭제 <1979. 2. 10.>

**제36조** 삭제 <1979. 2. 10.>

**제37조** 삭제 <1979. 2. 10.>

### 제3관 재활급여 <개정 2018. 9. 18.>

**제38조** 삭제 <1980. 2. 4.>

**제39조(재활운동비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 ① 보상준용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를 말한다. <개정 2025. 1. 14.>

1. 팔 또는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 이상의 기능장해
2. 척추의 변형, 기능장해 또는 신경장해
3. 팔 또는 다리의 근육이나 신경의 장해(뇌 또는 척수손상으로 팔 또는 다리에 장해가 발생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별표 5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2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

② 보상준용법 제26조에 따라 재활운동비를 받으려는 교직원등은 재활운동기관(스포츠활동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 한정한다)에서 재활운동을 한 후 재활운동비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활운동 실시 및 비용에 관한 증명서류
2. 제1항의 장해에 해당되어 재활운동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재활운동비를 청구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지급한다. 다만, 재활운동이 보상준용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양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요양에 대하여 직무상요양급여비용과 재활운동비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보상준용법 제26조에 따른 재활운동비의 지급 대상기간은 해당 교직원등이 재활운동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대규모 감염병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재활운동을 하지 못한 기간은 지급 대상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개정 2025. 1. 14.>

[전문개정 2018. 9. 18.]

**제40조(심리상담비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 ① 직무상요양 중인 교직원등이 보상준용법 제27조에 따른 심리상담을 받으려면 미리 심리상담 승인신청서에 심리검사지, 요양 관련 의무기록 사본 등을 첨부한 후 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리상담 승인을 받은 사람은 보상준용법 제27조에 따른 심리상담비를 받으려면 심리상담기관(심리상담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 한정한다)에서 심리상담을 받은 후 심리상담비 청구서에 심리상담 실시 및 비용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심리상담비를 청구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지급한다. 다만, 심리상담이 보상준용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양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요양에 대하여 직무상요양급여비용과 심리상담비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보상준용법 제27조에 따른 심리상담비의 지급 대상기간은 제1항에 따라 심리상담 승인을 받은 사람이 심리상담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대규모 감염병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심리상담을 하지 못한 기간은 지급 대상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5. 1. 14.>

⑤ 심리상담은 제1항에 따라 승인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작해야 하며, 1개월 이내에 시작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인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된 날을 심리상담을 시작한 날로 본다.<신설 2025. 1. 14.>

[전문개정 2018. 9. 18.]

## 제4관 장해급여 <신설 2018. 9. 18.>

**제41조(장해등급의 결정)** ① 보상준용법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이란 별표 5에서 정하는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이하 "장해등급"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별표 5에서 정하지 않은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

③ 보상준용법 제31조에 따라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가장 중(重)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2급부터 제13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장해 2개에 대하여 별표 5에 따른 각각의 부위별 장해등급을 정한 후 별표 6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장해등급을 결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해등급 결정을 위한 세부 판정기준은 공단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5. 1. 14.]

**제42조(장해급여의 청구)** ① 보상준용법 제28조에 따라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장해급여 청구서에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장해진단서를 첨부하여 소속 학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교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장해급여 청구서 등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장해경위를 조사·확인한 후 그 청구서 등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보내야 한다.

1. 건강진단 결과통보서 사본
2. 장해경위 조사서

[본조신설 2018. 9. 18.]

**제43조(장해연금의 수급권 상실신고)** 보상준용법 제28조에 따른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하 "장해연금 수급권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사망신고의무자는 사망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9. 18.]

**제44조(청구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① 장해연금 수급권자는 장해의 정도가 악화되거나 호전되었을 때에는 보상준용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장해등급 재판정 청구서에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장해진단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장해등급 재판정 청구서 등을 받은 경우 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 결정서를 청구인에게 보내야 한다.

1. 장해등급을 다시 정할지 여부
2. 장해등급을 다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장해등급

③ 공단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해연금 수급권자에게 공단이 지정하는 요양기관에서 진단을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진단에 드는 비용은 공단에서 부담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다시 정한 장해등급은 제1항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장해진단서상 진단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8. 9. 18.]

**제45조(직권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연금 수급권자(장해연금 수급권자의 장해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장해의 등급이 변경되더라도 그 외의 장해의 등급이 제1급으로서 최종의 장해등급은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장해연금의 지급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장해등급 재판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해등급 재판정은 1회만 한다. <개정 2025. 1. 14.>

1. 장해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장해 중 별표 5에 따른 제1급제3호, 제2급제3호, 제3급제3호, 제5급제2호, 제7급제4호, 제9급제10호 또는 제12급제15호에 해당하는 장해가 하나 이상 있는 경우
2. 장해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장해 중 별표 5에 따른 제6급제5호, 제7급제14호, 제8급제2호, 제9급제17호, 제10급제14호, 제11급제12호 또는 제12급제16호에 해당하는 장해(척추 신경근장해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된 경우만 해당한다)가 하나 이상 있는 경우
3. 장해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장해 중 별표 5에 따른 제1급제6호·제8호, 제4급제6호, 제5급제6호·제7호, 제6급제6호·제7호, 제7급제7호·제11호, 제8급제4호·제6호·제7호, 제9급제13호·제15호, 제10급제9호·제12호·제13호, 제11급제9호·제10호, 제12급제9호·제10호·제12호·제14호 또는 제13급제8호·제11호에 해당하는 장해(신체 관절의 운동기능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된 경우만 해당한다)가 하나 이상 있는 경우
4. 장해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장해 중 별표 5에 따른 장해등급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장해가 하나 이상 있는 경우

② 공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자가 재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재요양 후 치유된 날(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장해연금의 지급 결정을 한 날)을 기준

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장해등급 재판정을 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장해등급의 재판정을 하려면 해당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자에게 공단이 지정하는 요양기관에서 진단을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단에 드는 비용은 공단에서 부담한다.

④ 공단은 제3항 전단에 따라 진단을 받게 하려는 경우 재판정 시작일, 진단 기한, 진단이 가능한 요양기관 및 그 밖에 재판정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3항 전단에 따라 진단을 받은 사람은 그 진단을 한 요양기관이 발행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장해진단서를 재판정 시작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 14.>

⑥ 공단은 제5항에 따라 장해진단서를 받은 경우 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 결정서를 해당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자에게 보내야 한다.

1. 장해등급을 다시 정할지 여부
2. 장해등급을 다시 정하는 경우 그 장해등급

⑦ 제6항에 따라 다시 정한 장해등급은 제3항에 따라 진단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8. 9. 18.]

**제46조(장해연금 수급권자의 장해 상태)** 보상준용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란 이 영 제41조 및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8. 9. 18.]

**제46조의2(장해 상태 확인을 위한 진단 요구 등)** ① 공단은 보상준용법 제30조제1항·제2항에 따라 이 영에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에 해당하는지와 장해 정도의 악화 또는 호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대상자에게 공단이 지정하는 요양기관에서 진단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1. 14.>

② 제1항에 따라 진단 요구를 한 경우의 진단 절차와 진단 결과에 따른 장해등급의 재판정 등에 관하여는 제4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5. 1. 14.>

[본조신설 2018. 9. 18.]

**제46조의3(행방불명된 사람의 장해급여 지급)** ① 보상준용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장해급여를 받으려는 상속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족의 범위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될 사람은 장해급여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상속인이 될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될 사람 중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될 사람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1년 이상 행방불명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확인하는 서류를 말한다)

② 보상준용법 제33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각각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말한다.

③ 보상준용법 제33조제4항 후단에 따라 급여액의 차액과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으려는 사람은 장해연금 급여차액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9. 18.]

### 제4관의2 재해유족급여 <신설 2018. 9. 18.>

**제46조의4(장해유족연금의 청구)** 보상준용법 제35조에 따라 장해유족연금(이하 “장해유족연금”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사람은 장해유족연금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해연금 수급권자의 사망 사실 및 그 사망자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같은 순위의 유족 중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23조에 따른 유족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본조신설 2018. 9. 18.]

**제46조의5(직무상유족연금 등의 청구)** ① 보상준용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직무상유족연금ㆍ직무상유족보상금(이하 “직무상유족급여”라 한다)을 받으려는 사람은 직무상유족급여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직원등이 소속하였던 학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직원등의 사망 사실 및 그 사망자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같은 순위의 유족 중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23조에 따른 유족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학교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사망경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그 청구서에 사망경위 조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보내야 한다.

[본조신설 2018. 9. 18.]

**제46조의6(장해유족연금 등의 수급권 상실신고)** 보상준용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장해유족연금 또는 직무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장해유족연금 또는 직무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사망신고의무자
2. 재혼하였거나 사망한 교직원이었던 사람과의 친족관계가 종료된 경우: 본인

3. 자녀 또는 손자녀가 19세가 된 경우: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었던 사람
4. 장해 상태에 있던 19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의 장해 상태가 해소된 경우: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거나 법정대리인이었던 사람

[본조신설 2018. 9. 18.]

**제46조의7(장해유족연금 등의 수급권 이전신청)** 장해유족연금 또는 직무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그 권리를 상실하거나 1년 이상 행방불명되어 보상준용법 제40조제2항 또는 같은 법 제41조에 따라 같은 순위 또는 다음 순위의 유족이 장해유족연금 또는 직무상유족연금을 받으려는 경우 해당 유족은 장해유족연금ㆍ직무상유족연금 수급권 이전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14.>

1. 장해연금 수급권자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직무상사망교직원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같은 순위의 유족 중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23조에 따른 유족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보상준용법 제40조제2항의 사유로 인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1) 사망, 재혼 또는 사망한 교직원이었던 사람과의 친족관계 종료, 장해 상태에 있지 아니한 자녀 또는 손자녀가 19세가 된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2) 장해 상태에 있던 19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의 장해 상태가 해소된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등 장애 정도를 증명하는 서류나 같은 법 제32조의3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나. 보상준용법 제41조의 사유로 인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장해연금 수급권자가 1년 이상 행방불명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

[본조신설 2018. 9. 18.]

## 제5관 부조급여 <개정 2018. 9. 18.>

**제47조(재난부조금)** ① 보상준용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범위는 화재, 홍수, 호우, 폭설, 폭풍, 해일과 이에 준하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현상으로 인하여 교직원 또는 그 배우자 소유의 주택(공동주택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교직원이 상시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교직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이 입은 피해로 한다.

② 보상준용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 정도별 부조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이 완전히 소실ㆍ유실되거나 파괴된 경우: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3.9배

2. 주택의 2분의 1 이상이 소실ㆍ유실되거나 파괴된 경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6배
3. 주택의 3분의 1 이상이 소실ㆍ유실되거나 파괴된 경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3배

③ 보상준용법 제42조에 따라 재난부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재난부조금 청구서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피해상황 확인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하며, 청구인이 제1호에 따른 정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해야 한다.<개정 2020. 5. 12.>

1. 주민등록표 등본
2. 건축물대장 등본

[전문개정 2018. 9. 18.]

**제47조의2(사망조위금)** ① 보상준용법 제4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명의 교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교직원 중 앞선 순위자를 말한다.

1.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인 교직원
2. 사망한 사람의 최근친(最近親) 직계비속인 교직원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3. 사망한 사람의 최근친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교직원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4. 사망한 사람의 부모인 교직원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② 보상준용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사망한 교직원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장례를 치르고 제사를 모시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사람 중 앞선 순위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 다만, 장례를 치르고 제사를 모시는 사람 중 사망한 교직원의 직계비속인 교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그 직계비속인 교직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

1. 사망한 교직원의 최근친 직계비속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2. 사망한 교직원의 최근친 직계존속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3. 사망한 교직원의 형제자매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③ 보상준용법 제43조에 따라 사망조위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사망조위금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보상준용법 제4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부양하던 교직원에게 지급하려는 경우에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해야 한다.<개정 2020. 5. 12.>

1. 보상준용법 제43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교직원의 배우자 등의 사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에 따른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전문개정 2018. 9. 18.]

### 제3절 연금준용법에 따른 급여 등 <개정 2018. 9. 18.>

#### 제1관 삭제 <2018. 9. 18.>

**제48조** 삭제 <2018. 9. 18.>

**제49조** 삭제 <2018. 9. 18.>

**제50조** 삭제 <2018. 9. 18.>

**제50조의2** 삭제 <2005. 6. 30.>

**제50조의3** 삭제 <2018. 9. 18.>

**제50조의4** 삭제 <2018. 9. 18.>

**제50조의5** 삭제 <2018. 9. 18.>

**제51조** 삭제 <2018. 9. 18.>

**제51조의2** 삭제 <2018. 9. 18.>

**제52조** 삭제 <2018. 9. 18.>

**제52조의2** 삭제 <2018. 9. 18.>

#### 제2관 퇴직급여 및 퇴직유족급여 <개정 2018. 9. 18.>

**제52조의3(직제와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인한 퇴직의 확인)** ① 학교기관의 장은 연금준용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소속 교직원이 직제와 정원의 개정ㆍ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생겨 퇴직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정원 및 현원(現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교직원의 퇴직이 연금준용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확인서를 학교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본조신설 2018. 9. 18.]

[제목개정 2019. 7. 2.]

**제52조의4(퇴직연금 수급을 위한 장해 상태)** 연금준용법 제43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제4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 상태"란 각각 이 영 제41조 및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8. 9. 18.]

**제52조의5(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의 수급권 상실 신고)** 연금준용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의 수급자 및 같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사망신고의무자는 사망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9. 18.]

**제52조의6(실질적인 혼인기간의 인정 기준)** ① 연금준용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실질적인 혼인기간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혼인기간에서 제외한다.
1. 「민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종기간
2.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이혼 당사자 간에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합의한 기간
2.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인정된 기간
③ 연금준용법 제28조제1호에 따른 퇴직급여의 수급권자,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의 수급권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분할 청구자는 이 조 제1항ㆍ제2항에 따른 기간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8. 9. 18.]

**제52조의7(분할연금의 청구 절차 등)** ① 연금준용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분할연금을 청구(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분할을 청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같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하려는 사람은 분할연금 등 청구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분할연금 등 청구서와 함께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혼인관계증명서 1부
3.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각 1부
② 연금준용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③ 연금준용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분할연금 선청구를 취소하려는 사람은 분할연금 선청구 취소신청서에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9. 18.]

**제53조(퇴직급여 청구)** ① 연금준용법 제43조ㆍ제51조에 따라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ㆍ퇴직연금일시금ㆍ퇴직연금공제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퇴직급여 청구서

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5. 1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직기간이 짧거나 금액이 적은 경우로서 공단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퇴직일시금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퇴직급여청구서 제출을 하지 않고 전화로 퇴직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본인 확인과 청구사실 확인 등을 위하여 녹취 등의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신설 2025. 1. 14.>

③ 연금준용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직제와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 등의 사유로 퇴직하고 퇴직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 조 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청구서에 이 영 제52조의3제2항에 따른 공단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2.>

④ 연금준용법 제43조제1항제5호 및 이 영 제52조의4에 따른 장해 상태에 해당하여 퇴직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 조 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 청구서에 요양기관이 발행한 장해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장해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9. 18.]

**제53조의2(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 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 「교육공무원법」 제47조에 따라 교육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정년
2. 사무직원: 「국가공무원법」 제74조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정년

[전문개정 2018. 9. 18.]

**제53조의3** 삭제 <2018. 9. 18.>

**제53조의4** 삭제 <2018. 9. 18.>

**제54조(퇴직급여 등의 산정 및 지급의 특례)** 공단은 퇴직한 교직원ㆍ공무원 또는 퇴역한 군인이었다가 다시 교직원으로 임용되어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은 사람이 퇴직 또는 사망하여 퇴직연금일시금ㆍ퇴직일시금ㆍ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합산된 재직기간을 기초로 산정한 급여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 급여액으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1.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반납금액 및 그에 대한 이자(반납금을 납부한 후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말한다)
2. 다시 교직원으로 임용되어 재직한 기간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연금일시금ㆍ퇴직일시금ㆍ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

[전문개정 2018. 9. 18.]

**제54조의2(행방불명된 사람의 퇴직급여 지급)** ①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상속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족의 범위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될 사람이 연금준용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퇴직급여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상속인이 될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될 사람 중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될 사람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1년 이상 행방불명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확인하는 서류를 말한다)

② 연금준용법 제52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각각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말한다.

③ 연금준용법 제52조제4항 후단에 따라 급여액의 차액과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으려는 사람은 퇴직급여 급여차액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9. 18.]

**제54조의3(퇴직유족연금ㆍ퇴직유족연금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일시금ㆍ퇴직유족일시금의 청구)** ① 연금준용법 제54조ㆍ제55조ㆍ제58조에 따라 퇴직유족연금ㆍ퇴직유족연금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퇴직유족급여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5. 12.>

1.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사망 사실 및 그 사망자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같은 순위의 유족 중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23조에 따른 유족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연금준용법 제4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역연금ㆍ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삭제<2020. 5. 12.>

[본조신설 2018. 9. 18.]

**제54조의4(퇴직유족연금 수급권의 이전신청)**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가 1년 이상 행방불명되거나 그 수급권이 상실되어 연금준용법 제56조 또는 같은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같은 순위 또는 다음 순위의 유족이 퇴직유족연금을 받으려는 경우 해당 유족은 퇴직유족연금 수급권 이전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14.>

1.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같은 순위의 유족 중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23조에 따른 유족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연금준용법 제56조의 사유로 인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가 1년 이상 행방불명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

나. 연금준용법 제57조제2항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1) 사망, 재혼 또는 사망한 교직원이었던 사람과의 친족관계 종료, 장해 상태에 있지 아니한 자녀 또는 손자녀가 19세가 된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2) 장해 상태에 있던 19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의 장해 상태가 해소된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등 장애 정도를 증명하는 서류나 같은 법 제32조의3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본조신설 2018. 9. 18.]

**제54조의5(퇴직유족연금 수급권의 상실신고)** 연금준용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퇴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1. 퇴직유족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사망신고의무자
2. 재혼하였거나 그 밖에 친족관계가 종료된 경우: 본인
3. 자녀 또는 손자녀가 19세가 된 경우: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었던 사람
4. 장해 상태에 있던 19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의 장해 상태가 해소된 경우: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거나 법정대리인이었던 사람

[본조신설 2018. 9. 18.]

### 제3관 비직무상 장해급여 <개정 2018. 9. 18.>

**제55조(비직무상 장해급여의 청구)** 연금준용법 제59조에 따라 비직무상 장해연금 또는 비직무상 장해일시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장해급여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요양기관이 발행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장해진단서
2. 장해경위서

[전문개정 2018. 9. 18.]

**제56조(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의 결정 등)** 연금준용법 제59조에 따른 비직무상 장해급여를 받을 사람의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의 결정ㆍ개정, 연금수급권 유지를 위한 장해 상태 및 진단 요구 등에 관하여는 제41조,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별표 5 및 별표 6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8. 9. 18.]

**제57조(비직무상 장해연금의 수급권 상실 신고)** 연금준용법 제59조에 따른 비직무상 장해연금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사망신고의무자는 사망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9. 18.]

### 제4관 삭제 <2018. 9. 18.>

**제58조** 삭제 <2018. 9. 18.>

**제59조** 삭제 <2018. 9. 18.>

**제60조** 삭제 <2018. 9. 18.>

**제60조의2** 삭제 <2018. 9. 18.>

**제61조** 삭제 <2018. 9. 18.>

**제62조** 삭제 <1989. 3. 27.>

**제63조** 삭제 <2018. 9. 18.>

### 제5관 퇴직수당

**제63조의2(퇴직수당의 청구)** ① 연금준용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퇴직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은 퇴직수당 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5. 1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직기간이 짧거나 금액이 적은 경우로서 공단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퇴직수당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퇴직수당 청구서 제출을 하지 않고 전화로 퇴직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본인 확인과 청구사실 확인 등을 위하여 녹취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신설 2025. 1. 14.>

[전문개정 2018. 9. 18.]

**제63조의3(퇴직수당)** ① 연금준용법 제62조제2항 계산식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 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6.5퍼센트
2.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22.75퍼센트
3.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 29.25퍼센트
4. 재직기간이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32.5퍼센트
5.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39퍼센트

② 연금준용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퇴직수당을 계산하는 경우 재직기간은 3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8. 9. 18.]

### 제4절 급여의 제한

**제64조(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의 감액)** 교직원등이 보상준용법 제44조제3항 또는 연금준용법 제63조제3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상준용법 제8조에 따른 급여 중 장해급여, 직무상유족급여 또는 연금준용법 제59조에 따른 비직무상 장해급여는 급여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한다. 이 경우 연금인 급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5. 1. 14.>

[전문개정 2018. 9. 18.]

**제64조의2(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퇴직유족급여 및 재해유족급여의 감액)** ① 보상준용법 제44조제4항 또는 연금준용법 제63조제4항에 따라 교직원등에 대한 양육책임 불이행을 판단할 때에는 별표 7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② 보상준용법 제44조제4항 또는 연금준용법 제63조제4항에 따라 교직원등에 대한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하 이 조에서 "급여제한심의대상자"라 한다)에 대해 급여의 제한을 신청하려는 교직원등의 유족은 급여제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1. 교직원등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같은 순위의 유족 중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유족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급여제한심의대상자의 양육책임 불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급여제한심의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급여제한심의대상자로부터 양육책임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확인·조사해야 한다.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조사한 경우 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급여의 제한 여부와 감액비율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과 급여제한심의대상자에게 보내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급여제한심의대상자가 보상준용법 제44조제4항 또는 연금준용법 제63조제4항에 따라 재해유족급여 또는 퇴직유족급여 중 어느 하나의 급여 제한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나머지 급여의 제한 여부와 감액비율을 결정할 수 있다.

⑥ 공단은 제4항 및 제5항의 결정에 따라 급여제한심의대상자에게 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급여제한심의대상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급여의 감액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급여제한심의대상자와 같은 순위자인 유족이 있는 경우: 같은 순위자인 유족이 한 명인 경우에는 해당 유족에게 전액 지급하고, 같은 순위자인 유족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똑같이 나누어 지급
2. 급여제한심의대상자와 같은 순위자인 유족이 없는 경우

가. 급여가 전부 감액된 경우: 다음 순위자인 유족이 한 명인 경우에는 해당 유족에게 전액 지급하고, 다음 순위자인 유족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똑같이 나누어 지급
나. 급여가 일부 감액된 경우: 미지급
[본조신설 2025. 1. 14.]

**제65조(진단 불응 시의 급여의 감액)** 보상준용법 제45조 또는 연금준용법 제64조에 따라 교직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단 또는 학교기관의 장이 급여의 지급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진단을 진단 기한 내에 받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보상준용법 제8조에 따른 급여 중 요양급여, 장해급여, 직무상유족급여 또는 연금준용법 제59조에 따른 비직무상 장해급여는 급여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한다. 이 경우 연금인 급여는 그 진단 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5. 1. 14.>
[전문개정 2018. 9. 18.]

**제66조(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① 교직원등이 연금준용법 제6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금준용법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감액한 후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은 그 감액사유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감액하지 아니한다.
1. 연금준용법 제65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의 퇴직급여: 4분의 1
나.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의 퇴직급여: 2분의 1
다. 퇴직수당: 2분의 1
2. 연금준용법 제6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의 퇴직급여: 8분의 1
나.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의 퇴직급여: 4분의 1
다. 퇴직수당: 4분의 1
② 연금준용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감액된 금액에 대하여 가산하여 지급할 이자는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하되,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줄여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감액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단위로 그 이자를 감액된 금액에 산입하여 그 후의 이자액을 계산한다.
③ 연금준용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감액된 금액을 받으려는 사람은 감액 퇴직급여 청구서 또는 감액 퇴직수당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금준용법 제6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 또는 형사재판확정 증명서
2. 연금준용법 제65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한 파면ㆍ해임 처분이 법원 등의 판결이나 결정으로 무효ㆍ취소 또는 변경이 된 경우의 판결문 사본 또

는 의결서 사본

3. 그 밖에 급여의 감액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④ 연금준용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교직원등에 대하여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의 이행 중에 발생한 과실의 경우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의 퇴직일시금은 그 급여액의 4분의 3만을 우선 지급하고, 퇴직수당과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의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은 그 급여액의 2분의 1만을 우선 지급한다.<개정 2020. 12. 29.>

1. 삭제<2020. 12. 29.>

2. 삭제<2020. 12. 29.>

3. 삭제<2020. 12. 29.>

⑤ 연금준용법 제65조제3항 후단에 따라 남은 금액에 가산할 이자는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하되,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남은 금액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단위로 그 이자를 그 남은 금액에 산입하여 그 후의 이자액을 계산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우선지급되고 남은 금액은 연금준용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지급이 정지된 교직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 지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다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남은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신설 2020. 12. 29.>

1.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았을 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았을 때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판결을 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났을 때

⑦ 제6항 본문에 따라 그 남은 금액을 받으려는 사람은 남은 퇴직급여 청구서 또는 남은 퇴직수당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0. 7. 14., 2020. 12. 29.>

1. 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발행한 불송치 결정서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이 발행한 불기소 결정서

2. 제6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이 발행한 형사재판확정 증명서

⑧ 학교기관의 장은 소속 교직원 또는 소속 교직원이었던 사람이 연금준용법 제65조에 해당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29.>

[전문개정 2018. 9. 18.]

**제67조** 삭제 <2000. 12. 30.>

**제68조** 삭제 <2010. 1. 1.>

## 제5장 비용부담

**제68조의2(국가부담금 및 법인부담금의 금액)** ① 삭제 <2010. 1. 1.>

②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교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 합계액의 9천분의 3,706을 말한다.<개정 2008. 2. 5., 2010. 1. 1., 2015. 12. 31.>

③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법인부담금의 금액은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해당 학교 교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 합계액의 9천분의 5,294로 한다.<개정 1998. 12. 31., 2000. 12. 30., 2010. 1. 1., 2013. 11. 29., 2015. 12. 31.>

[본조신설 1996. 2. 2.]

[제목개정 2010. 1. 1.]

**제69조(개인부담금ㆍ법인부담금등의 납입)** ①학교기관의 장이 개인부담금、법인부담금、반납금 및 환수금등을 징수 또는 납부받아 공단에 납부할 때에는 연금수납기관에 납입하되, 그 납입금과 함께 입금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9. 2. 10., 1984. 2. 25., 2010. 1. 1.>

②제1항의 납입금을 수납한 연금수납기관은 그의 영수증을 학교기관의 장에게 교부하고, 입금통지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4. 2. 25., 2010. 1. 1.>

③공단은 제2항의 입금통지서를 조사 확인한 후 수납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하며, 과오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정산처리하여야 한다.<개정 1984. 2. 25., 2010. 1. 1.>

[전문개정 1976. 6. 25.]

**제69조의2(재해보상부담금)** ①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부담금의 금액은 교직원의 개인부담금(재직기간의 산입이나 소급통산으로 인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다)합계액의 1만분의 454로 한다. <개정 1984. 12. 31., 2000. 12. 30., 2010. 1. 1.>

②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적립된 재해보상급여준비금은 다음 방법에 의하여 운용되어야 한다.<개정 1985. 12. 31., 1998. 6. 11., 2000. 2. 28., 2007. 1. 24., 2008. 7. 29., 2010. 1. 1.>

1. 제87조의2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금융회사 등에의 예입 또는 신탁
2. 제87조의2제2항제1호의 증권의 매입

③제2항의 재해보상급여준비금이 법 제48조의2제3항의 급여에 부족할 경우에는 법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일시 차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시차입금은 다음 회계연도말까지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2000. 2. 28.>

[전문개정 1982. 12. 31.]

**제69조의3(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의 부담)** ①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퇴직수당지급비용”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뺀 금액의 100분의 40은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한다.

1. 법 제3조에 따른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
2. 법 제3조에 따른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등학교만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의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
3. 법 제60조의4에 따른 적용범위의 특례기관 중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
4. 법 제60조의4에 따른 적용범위의 특례기관 중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학교만을 설치ㆍ운영하는 학교법인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의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0조의4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임상교수요원 및 직원에 대한 퇴직수당지급비용은 학교경영기관이 전액 부담한다.<신설 2016. 2. 29.>

③ 퇴직수당지급비용 중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공단이 부담하는 금액은 1992년도에 공단이 퇴직수당비용으로 부담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6. 2. 29.>

④ 퇴직수당지급비용 중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6. 2. 29.>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는 금액
2. 제3항에 따라 공단이 부담하는 금액

⑤ 법인의 해산 등을 이유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퇴직수당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학교경영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개정 2016. 2. 29.>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교경영기관의 부담금액을 산정할 때에 퇴직한 교직원이 둘 이상의 학교경영기관에 소속되었던 경우로서 법 제2조제1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경영기관별로 그 재직기간에 따른 비율에 따라 부담한다. 이 경우 제63조의3 각 호에 따른 비율이 달라지게 되어 퇴직수당 총 지급액과 해당 학교경영기관이 각각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의 합계액에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그 차액은 국가가 부담한다.<개정 2016. 2. 29.>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는 금액은 매월 실제 소요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퇴직수당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에 납부한다.<개정 2016. 2. 29.>

⑧ 제4항, 제5항 및 제6항 후단에 따라 해당 연도에 국가가 부담한 금액이 실제 든 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초과된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부담금에서 이를 정산한다.<개정 2016. 2. 29.>

[전문개정 2014. 2. 27.]

**제70조(국가부담금의 계상)** ①국가는 법 제46조 및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 따른 국가부담금 소요액을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년도에 부족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도 함께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1991. 12. 31., 2013. 11. 29.>

②공단은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연도 국가부담금소요액을 산출하고 그 산출내역을 명백히 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ㆍ보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1. 2. 1., 1991. 12. 31., 2000. 12. 30., 2001. 1. 29., 2007. 1. 24., 2010. 1. 1.>

**제70조의2(국가부담금 정산 이자율)** 법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부담금 및 국가부담액 정산에 따른 이자는 해당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를 가산하여 정산하되, 매 회계연도마다 복리로 계산한다.
[본조신설 2000. 12. 30.]

**제71조(국가부담금의 납부)** ①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부담금은 1년을 4기로 나누어 매기 개시 1월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금수납기관에 납입하여야 하며 이를 수납한 연금수납기관은 그 영수증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교부하고, 지체없이 공단에 그 입금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1. 2. 1., 2000. 12. 30., 2001. 1. 29., 2007. 1. 24., 2010. 1. 1.>
② 삭제<2000. 12. 30.>

**제72조** 삭제 <1984. 2. 25.>

**제72조의2(연체금의 징수)** ① 법 제51조에 따른 연체금은 납기 초과일수와 납기 초과일이 속하는 연도마다 해당 연도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의 2배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임용신고가 지연되어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임용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신규임용 신고서가 공단에 접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전 달 말일까지와 해당 기간이 속하는 연도마다 해당 연도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8. 9. 18.>
②학교기관의 폐교,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의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 1. 1.>
[전문개정 1980. 7. 8.]

**제73조(강제징수)** ①공단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환수금,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부담금ㆍ법인부담금 또는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부담금을 소정의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일로부터 1월이상 3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7. 12. 31., 2010. 1. 1.>
②제1항의 독촉장에는 독촉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한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공단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납처분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에게 체납처분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77. 12. 31., 1991. 2. 1., 2001. 1. 29., 2003. 2. 24., 2008. 2. 29., 2010. 1. 1., 2013. 3. 23.>
1. 체납기간이 6월이상이 된 때. 다만, 환수금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한이 경과된 때
2. 학교경영기관이 해산되거나 인가취소처분을 받은 때
④교육부장관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1977. 12. 31., 1991. 2. 1.,

2001. 1. 29., 2008. 2. 29., 2010. 1. 1., 2013. 3. 23.>

⑤공단의 임직원이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할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승인서 및 신분증을 이해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신설 1977. 12. 31., 2010. 1. 1.>

**제73조의2(결손처분)** 법 제52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할 수 있다.

1. 체납자의 행방이 장기간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음이 판명된 때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본조신설 2000. 12. 30.]

**제74조(기준소득월액이 변동된 경우의 개인부담금 산정)** 학교기관의 장은 교직원의 기준소득월액이 변동되어 같은 달에 2이상의 기준소득월액이 있게 된 때에는 해당 월의 봉급지급일 현재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하여 해당 월의 개인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

[제목개정 2010. 1. 1.]

**제75조(신분변동신고)** 학교기관의 장은 교직원에게 퇴직ㆍ사망ㆍ전출(교직원이 퇴직한 후 그 퇴직한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다시 교직원으로 임명되어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휴직 그 밖에 재직 중 신분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신분변동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직원의 전입을 받은 학교기관의 장이 전입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 해당 교직원에 대한 전출 신고서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8. 9. 18.]

**제75조의2(연금액의 이체)** ①「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의 수급권자가 교직원으로 임용되어 법 제32조에 따라 해당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의 합산을 받은 후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공단은 지체 없이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법 제52조의2에 따른 급여액의 이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1988. 1. 29., 1996. 2. 2., 2000. 12. 30., 2005. 6. 30., 2010. 1. 1.>

②제1항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국방부장관이 공단에 이체하여야 할 금액은 법 제52조의2에 따라 교직원의 퇴직 또는 사망 당시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급여액의 산정은 교직원의 퇴직 또는 사망 당시 법에 따라 지급받은 것과 같은 종류의 급여지급사유가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서 동일하게 발생한 것으로 보아 산정한 금액(조기퇴직연금의 경우에는 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에서 법에 따른 조기퇴직연금의 감액비율 만큼 감액한 금액)으로 한다.<신설 2000. 12. 30., 2005. 6. 30., 2010. 1. 1.>

③공무원연금공단 또는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급여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단에 이체하여야 한다.<신설 2000. 12. 30., 2010. 1. 1., 2018. 9. 18.>

1.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ㆍ퇴역연금 또는 유족연금은 매년 2회로 나누어 반기별로 이체하되, 상반기분은 3월 31일, 하반기분은 9월 30일까지 이체하여야 한다.
2. 법 제38조에 따른 급여, 연금준용법 제36조에 따라 연금에 갈음하여 지급받는 급여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퇴직유족연금부가금 및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은 전년도 9월부터 해당 연도 2월까지의 지급분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3월 31일까지, 해당 연도 3월부터 8월까지의 지급분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9월 30일까지 이체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법 제52조의2 및 제3항제1호에 따라 반기별 이체를 받는 동안에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수급권ㆍ조기퇴직연금수급권ㆍ퇴역연금수급권 또는 유족연금수급권의 소멸사유ㆍ감액사유, 그 밖에 이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의 유무를 연 1회 이상 조사하여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0. 1. 1.>

⑤공무원연금공단 또는 국방부장관이 제3항의 기한 내에 공단에 해당 급여를 이체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연된 기간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에 의한 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하되 회계연도마다 복리로 계산한다.<신설 2000. 12. 30., 2010. 1. 1.>

[본조신설 82. 12. 31.]

## 제6장 심사의 청구

**제76조(급여재심위원회의 조직)** ①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이하 “급여재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 9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1984. 12. 31., 2000. 2. 28.>

②제1항의 위원은 교육부의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장학관, 의료계, 법조계,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1982. 12. 31., 1991. 2. 1., 2001. 1. 29., 2006. 6. 12., 2007. 1. 24., 2008. 2. 29., 2013. 3. 23.>

**제77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제78조(위원장)** ①급여재심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1984. 12. 31.>

②위원장은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3. 2. 24., 2019. 7. 2.>

**제79조(의사)** ①급여재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1984. 12. 31.>
②급여재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1984. 12. 31., 2003. 2. 24.>

**제80조(위원회의 서무 및 위원수당등)** ①급여재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급여재심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몇 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공단의 이사장이 소속직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1984. 12. 31., 2010. 1. 1., 2019. 7. 2.>
②공단은 급여재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공단의 임ㆍ직원인 위원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개정 1984. 12. 31., 2010. 1. 1.>
③급여재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급여재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1984. 12. 31.>

**제81조(심사청구의 절차)** ①급여에 관한 결정ㆍ부담금의 징수 기타 법에 의한 급여에 관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가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심사청구서에 이유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4. 12. 31., 1988. 1. 29., 2010. 1. 1.>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심사청구서에 첨부하여 급여재심위원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18.>

**제82조(청구서의 보완 및 청구의 각하)** ① 급여재심위원회는 제81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답변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보완기간을 정하여 청구인 또는 공단에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제1항에 따른 보완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심사청구서에 기재된 사실만으로는 심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 9. 18.]

**제83조(관계인에 대한 통지)** ①급여재심위원회는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청구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심사청구에 관계되는 교직원ㆍ학교기관의 장 기타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4. 12. 31.>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급여재심위원회에 대하여 당해 사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개정 1984. 12. 31.>

**제84조(보고 또는 의견의 진술)** 급여재심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를 청구한 자 기타 관계인에게 보고 또는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출석을 요구하여 질문할 수 있다. <개정 1984. 12. 31.>

**제85조(심사의 결정)** ①심사의 결정은 문서로 한다. <개정 2018. 9. 18.>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서에는 주문과 이유를 적고 위원장 및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그 등본을 청구인 및 학교기관의 장과 그 밖의 관계인에게 보내야 한다.<개정 2018. 9. 18.>

**제86조(결정의 효력)** 급여재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청구인에게 결정서등본이 송달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1984. 12. 31.>

**제87조(관계인의 실비보상)** 공단은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재심위원회에 출석하는 관계인에 대하여 실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1984. 12. 31., 2010. 1. 1.>

## 제7장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제87조의2(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운용방법)** ①법 제53조의3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이하 “ 기금 ” 이라 한다)을 예입 또는 신탁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 3. 28., 2000. 12. 30., 2003. 2. 24., 2005. 6. 30., 2008. 7. 29., 2010. 11. 15.>

1. 「은행법」에 의한 은행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투자자문업자ㆍ투자일임업자ㆍ증권금융회사 및 종합금융회사
3. 삭제<2008. 7. 29.>
4. 삭제<2008. 7. 29.>
5.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신관서
6.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7.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②법 제53조의3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1. 1. 29., 2008. 2. 29., 2008. 7. 29., 2013. 3. 23.>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2. 삭제<2005. 6. 30.>
3.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으로서 교육부장관으로부터 매입범위를 정하여 승인을 얻은 유가증권

③법 제53조의3제2항제5호에 따른 기금증식사업 또는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1. 1. 29., 2003. 2. 24., 2005. 6. 30., 2007. 1. 24., 2008. 2. 29., 2008. 7. 29., 2012. 1. 26., 2013. 3. 23., 2013. 11. 29., 2020. 8. 11., 2021. 8. 17.>

1. 부동산임대업 및 부동산의 가치증진이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
2. 교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병원ㆍ휴양시설ㆍ요양시설ㆍ매점 기타 후생시설 등을 운영하는 사업

3. 관광업 및 이에 부대하는 사업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같은 법 제8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것만 해당한다)의 거래
5.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파생금융거래(투기적 목적의 거래를 제외한다)
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6의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6의3. 삭제<2020. 8. 11.>
7. 기타 장기성 정기예금금리 이상의 수익이 기대되는 사업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00. 2. 28.]

**제87조의3(사립학교교직원연금운영위원회의 조직)** ① 삭제 <2000. 12. 30.>

②법 제53조의4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0. 12. 30., 2001. 1. 29., 2003. 2. 24., 2005. 6. 30., 2006. 6. 12., 2008. 2. 29., 2010. 1. 1., 2013. 3. 23., 2025. 12. 30.>

1. 교육부 및 기획예산처의 4급 이상 공무원중(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 또는 기금운용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자 3인
2.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업무와 관련한 공단의 임원 2인
3. 교직원단체가 추천하는 사립학교 교직원 5인
4.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 3인
5. 퇴직연금수급자 1인
6.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하는 자 2인
7.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인

③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00. 12. 30.>

[본조신설 2000. 2. 28.]
[제목개정 2003. 2. 24.]

**제87조의4** 삭제 <2000. 12. 30.>

**제87조의5(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0. 12. 30., 2019. 7. 2.>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00. 2. 28.]

**제87조의6(회의)** ①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0. 12. 30.>

②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0. 12. 30.>

③공단의 감사는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개정 2000. 12. 30., 2010. 1. 1.>

[본조신설 2000. 2. 28.]

**제87조의7(간사와 서기)** ①운영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몇 명을 둔다. <개정 2000. 12. 30., 2019. 7. 2.>

②간사와 서기는 공단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2010. 1. 1.>

[본조신설 2000. 2. 28.]

**제87조의8(수당)** 공단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0. 12. 30., 2010. 1. 1.>

[본조신설 2000. 2. 28.]

**제87조의9(기금운용의 공시)** 교육부장관은 매년 기금결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 관보에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 29., 2008. 2. 29., 2013. 3. 23.>

[본조신설 2000. 12. 30.]

## 제8장 보칙

**제88조(시효기산일)** ①법 제53조제1항과 이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재심위원회에 불복심사를 청구한 자가 그 청구에 대하여 인용을 받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에 그에 관련되는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인용 또는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법 제54조제1항의 소멸시효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1984. 12. 31.>

② 제66조제4항에 따라 급여액의 일부의 지급이 중지된 경우에 그 중지된 급여를 받을 권리는 같은 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법 제54조제1항의 소멸시효기간을 기산한다.<개정 2018. 9. 18., 2020. 12. 29.>

**제89조(연금관련사항의 전산관리)** 공단은 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연금관련정보를 전산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

1. 부담금ㆍ반납금 등의 납입에 관한 사항
2. 신규임용ㆍ승진ㆍ전입ㆍ강임ㆍ휴직ㆍ징계ㆍ퇴직 등 신분의 변동과 관련된 사항
3. 국고위탁학자금대여 및 공단이 실시한 대여와 관련된 사항
4. 그 밖에 연금과 관련된 사항

[전문개정 2005. 6. 30.]

**제89조의2(신규임용 교직원의 임용신고 등)** 학교기관의 장은 소속 교직원이 신규임용된 때에는 지체 없이 공단에 교직원 임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
[본조신설 2005. 6. 30.]

**제90조** 삭제 <1980. 2. 4.>

**제91조(인영의 등록)** 학교경영기관의 장 및 학교의 장은 그의 인영(印影: 도장을 찍은 모양)을 공단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인영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1. 1., 2019. 7. 2.>
[전문개정 2005. 6. 30.]

**제92조(재직자에 대한 실태조사)** 공단은 급여에 소요되는 자금에 대한 장기판단과 급여제도의 개선을 위한 자료수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기관의 장에 의뢰하여 교직원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

**제93조(전자문서와 서식 등)** ① 법 또는 이 영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신청서 등의 서류와 해당 서류에 첨부할 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ㆍ첨부할 수 있다. <신설 2018. 9. 18.>
②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서식(전자문서로 된 서식을 포함한다)은 공단이 정하여 공고한다.<개정 2010. 1. 1., 2018. 9. 18.>
[전문개정 2000. 12. 30.]
[제목개정 2018. 9. 18.]

**제94조(관할청의 업무협조)** 관할청이 학교기관의 설립ㆍ폐지 및 해산을 인가하거나 이를 취소할 때에는 인가 또는 취소일로부터 1월 이내에 공단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1. 12. 31., 2010. 1. 1.>
[본조신설 1977. 12. 31.]

**제95조(정원증감시의 통보)** 학교경영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직원의 정원에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
[본조신설 1977. 12. 31.]

**제96조(위탁사업과 비용부담등)** ①법 제6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교직원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가가 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0. 1. 1.>
1. 학자금대여사업
2. 주택사업
②제1항제1호의 학자금대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그 예산에서 이를 부담한다. 이 경우 국가는 그 일부를 기금에서 대여하게 할 수 있으며, 기금에서 대여한 금액에 대하여 국가가

부담하는 이자는 대여기간 동안 해당 연도마다 그 해의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신설 1985. 12. 31., 1989. 3. 27., 2000. 2. 28., 2010. 1. 1.>

③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에서 대여하는 금액은 이를 대여한 날로부터 2년 거치후 3년 이내에 국가가 일시 또는 분할하여 상환하는 것으로 하며, 국가는 원금과 이자를 예산에 반영하여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1985. 12. 31., 2000. 2. 28., 2010. 1. 1.>

④국가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이자율은 연체기간동안 해당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에 의하되, 회계연도마다 복리로 계산한다.<개정 1998. 6. 11.>

[본조신설 1981. 6. 23.]

**제9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공단(법 제20조 및 이 영 제14조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이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31., 2018. 9. 18., 2021. 9. 29.>

1. 부담금 등 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무
2. 법 제33조에 따른 급여의 결정ㆍ지급ㆍ제한ㆍ조정 및 환수에 관한 사무
3. 법 제33조의2에 따른 간병급여ㆍ보조기구 또는 보조기구 수당이나 법 제33조의3에 따른 재요양의 결정ㆍ지급ㆍ제한ㆍ조정ㆍ환수에 관한 사무

3의2. 법 제53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자금의 대여에 관한 사무

4. 법 제60조의3에 따른 위탁사업에 관한 사무
5. 교직원의 복지 사업에 관한 사무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52조 및 이 영 제73조제4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2. 1. 26.]

**제98조(공단의 보고)** ①공단은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자가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 2. 1., 2001. 1. 29., 2008. 2. 29., 2010. 1. 1., 2013. 3. 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에는 당해 위반행위자로부터 받은 진술서 기타 위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공단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0. 1. 1.>

[본조신설 1984. 2. 25.]

[제목개정 2010. 1. 1.]

**제99조** 삭제 <2021. 3. 2.>

**부칙** <제7005호,1974. 1. 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교원이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통산을 받고자 할 때에는 통산받고자 하는 재직기간을 명시한 재직기간통산신청서를 이 영 시행후 3월 이내에 소속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직기간에 통산받고자 하는 근무기간중에 학교경영기관이 동일한 다른 학교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될 때에는 그 학교에서 근무한 사실과 학교경영기관이 동일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경영기관의 동의서와 당해 교원이 소속학교에서 계속 근무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신청서를 7일 이내에 관리공단에 이송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신청서를 이송받은 관리공단은 통산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 후 재직기간 통산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 및 당해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제7437호,1974. 12. 26.>

이 영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49호,1975. 6. 14.>

①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요양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자가 이 영 시행후에 요양을 받거나 사망한 경우 그에 대한 급여는 이 영 제29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6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재직기간통산신청에 관한 특례) 대통령령 제7005호 사립학교교원연금법시행령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직기간의 통산을 받고자 하는 자는 1975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통산신청서를 소속학교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부칙** <제8174호,1976. 6. 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재직기간 통산신청에 관한 특례)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통산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 제7,649호 사립학교교원연금법시행령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6월 이내에 재직기간통산신청서를 소속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8818호,1977.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7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무직원 재직기간의 소급통산절차) ①법률 제3058호 사립학교교원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직원이 재직기간의 통산을 받고자 할 때에는 통산받고자 하는 재직기간을 명시한 재직기간통산신청서를 이 영 시행후 6월 이내에 소속학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에 통산받고자 하는 근무기간중에 학교경영기관이 동일한 다른 학교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될 때에는 그 학교에서 근무한 사실과 학교경영기관이 동일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학교기관의 장은 당해 학교경영기관의 장의 동의서와 당해 사무직원이 소속학교기관에서 계속 근무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신청서를 7일안에 관리공단에 이송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신청서를 이송받은 관리공단은 통산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 후 재직기간의 통산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 및 당해 학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 (소급부담금 일시납부의 방법) ①교직원이었던 자(사망자의 유족을 포함한다)가 법률 제3058호 사립학교교원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급부담금을 일시에 납부하여 그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통산받고자 할 때에는 통산받고자 하는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개인부담금을 퇴직 또는 사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속학교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납부받은 학교기관의 장은 납부받은 날로부터 15일안에 법인부담금을 첨부하여 연금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 (소급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조치) 재직기간의 소급통산승인을 얻은 자가소급부담금을 6월이상 체납한 때 관리공단은 그 체납금에 상당하는 기간의 재직기간의 소급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 (재직기간 합산승인 신청) 이 영 시행당시 재직교원으로서 1975년 1월 1일이후 2이상의 학교에 근무한 자중 현 소속학교에 임용되기 이전의 재직기간의 합산을 원하는 교원은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재직기간합산승인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부칙** <제9010호,1978. 5. 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18호,1979. 2. 10.>

①(시행일) 이 영은 197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1978년 12월 31일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된 요양부조금, 분만비 및 장제비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③(재직기간 합산승인 신청)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교직원으로서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재직기간합산승인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부칙** <제9753호,1980. 2. 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재직기간의 소급통산절차) ①법률 제3206호 사립학교교원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의 소급통산절차는 대통령령 제8818호 사립학교교원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2조로 정하는 절차에 의하되, 동조중 "사무직원"은 "교직원"으로, "이 영 시행후 6월 이내에"는 "1980년 7월 31일까지"로각각 본다.

②교직원중 이 영 시행 이전에 다른 규정에 의하여 이미 소급통산의 승인을 받고 소급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던 자도 이미 납부한 소급부담금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한 재직기간에 대하여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소급통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 (소급부담금 일시납부의 방법) ①교직원이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급통산의 승인을 받은 기간의 소급부담금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개인부담금을 소속학교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소속학교기관의 장은 이를 법인부담금과 함께 차기부담금 납부시에 연금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교직원이었던 자(사망자의 유족을 포함한다)가 소급부담금을 일시납부하여 그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통산받고자 할 때에는 퇴직(유족)급여 청구시까지 통산받고자 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개인부담금을 학교기관의 장에게 납부하거나, 급여금에서 공제할 것을 의뢰하고, 학교기관의 장은 이를 법인부담금과 함께 퇴직(유족)급여청구서 이송시까지 연금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퇴직(유족)급여청구서에 소급부담금의 일시납부사실 또는 공제지급 의뢰사실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4조**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3종 고용원은 제3조제1항제3호 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1980년 1월 1일에 각각 2종 고용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9949호,1980. 7. 8.>

이 영은 198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365호,1981. 6. 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ㆍ제30조제1항ㆍ제55조제2항ㆍ제61조 및 제6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81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특수학교교직원의 재직기간 소급통산등) 법률 제3395호 사립학교교원연금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 및 그 학교경영기관에 재직중인 교직원의 소급통산절차 및 소급부담금일시납부의 방법은 대통령령 제9753호 사립학교교원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및 제3조의규정에 의하되, 동령 부칙 제2조제1항중 "1980년 7월 31일까지"는 이를 "1981년 12월 31일까지"로 본다.

**부칙** <제10985호,1982.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병역복무휴직기간에 대한 개인부담금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위한 휴직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하여 개인부담금을 납부중에 있는 자는 종전의 방법에 의하여 개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이의 납부를 마친 다음달부터 그 잔여휴직기간에 대하여 당해 월분의 개인부담금과 같은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미 납부를 마친 자는 1983년 1월부터 병역복무를 위한 휴직기간의 나머지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하여 당해 월분의 개인부담금과 같은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급여사유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1364호,1984. 2. 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재직기간 소급통산절차) ①법률 제3684호 사립학교교원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직원이 재직기간의 통산을 받고자 할 때에는 통산받고자 하는 재직기간을 명시한 재직기간소급통산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 학교기관에서 근무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학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 24.>

②학교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이를 관리공단에 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당시 재직하고 있는 학교기관에서 계속 근무한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통산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학교경영기관의 장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이송받은 관리공단은 통산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 후 재직기간의 통산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 및 해당 학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 (소급납부하는 부담금의 일시납부방법) 부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급통산의 승인을 얻은 기간에 대한 부담금을 소급납부하고 있거나 소급납부하고자 하는 교직원이 나머지의 소급통산할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일시에 납부하고자할 때에는 그 기간에 해당하

는 개인부담금을 소속학교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하며, 소속학교기관의 장은 납부받은 개인부담금(법률 제3684호 사립학교교원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 본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직원이 부담하는 부담금) 및 법률 제3684호 사립학교교원연금법중개정법률부칙 제2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법인부담금을 다음 회의 부담금 납입시에 연금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 (소급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조치) 부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의 소급통산승인을 얻은 자가 소급부담금을 6월이상 체납한 때에는 관리공단은 그 체납금에 상당하는 기간에 대한 재직기간의 소급통산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부칙** <제11583호,1984.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삭제 <1989. 10. 17.>

**부칙** <제11828호,1985.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급여사유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1889호,1986. 4. 2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재직중인 사무직원의 경력환산에 관한 경과조치) 1985년 12월 31일 현재재직중인 사무직원의 근무기간의 계산에 있어서의 경력의 환산은 종전의 별표 8에 의한다.

**부칙** <제12224호,1987. 8. 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제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1987년 7월 1일부터 각각 적용한다.

②(급여사유발생에 대한 경과조치) 1987년 6월 30일이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2381호,1988. 1. 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급여사유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재직중인 교원에 대한 표준봉급월액 재획정)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교원으로서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경력환산대상이 되는 자에 대하여는 198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표준봉급월액을 재획정한다.

**부칙** <제12664호,1989. 3. 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제20조제2항、제25조제1항제2호、제54조의4제2항、제72조의2제1항、제96조제2항 및 동조제4항의 개정규정중 이자율에 관한 사항은 1988년 12월 5일부터 적용한다.
②(이자율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은 그 이자의 계산기간이 1988년 12월 4일이전인 경우에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2823호,1989. 10. 1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1989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지급사유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1989년 9월 30일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의료직 및 고용직의 표준봉급월액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사무직원중 계급으로 구분되는 일반직으로 임용되지 아니한 의사、약사 및 간호사와 기능직으로 임용되지 아니한 1종 및 2종의 고용직에 대한 표준봉급월액의 산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보험료충당금 반환에 관한 경과조치)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의 적용을 받던 퇴직연금일시금수급자의 보험료충당금잔액의 반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3282호,1991. 2. 1.>(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2) 생략
2! 사립학교교원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5조제3항, 제16조, 제70조제2항, 제71조제1항, 제73조제3항、제4항, 제76조제2항, 제97조제2항、제3항 및 제98조제1항중 “ 문교부장관 ”을 각각 “ 교육부장관 ”으로 하고, 제21조제2항 및 제76조제2항중 “ 문교부 ”를 각각 “ 교육부 ”로 한다.
2@ 내지 <148>생략

**부칙** <제13554호,1991.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ㆍ제63조의3ㆍ제66조ㆍ제69조의3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1년 10월 1일부터, 제6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4455호 사립학교교원연금법중개정법률시행일부터 각각 적용한다.

**제2조** 삭제 <2015. 12. 31.>

**제3조** (재직중인 자에 대한 퇴직급여 산정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퇴직한 교직원ㆍ공무원 또는 퇴역한 군인으로서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어 1991년 10월 1일 당시 재직중인 자에 대하여 제5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납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가산금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 (퇴직수당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1991년 10월 1일 당시 재직중인 자가 퇴직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받게되는 퇴직수당이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퇴직수당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제6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은 그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1. 재직기간이 5년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퇴직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100분의 20
2. 재직기간이 10년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퇴직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100분의 25
3. 재직기간이 20년이상인 경우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100분의 30

②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은 자가 퇴직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받게되는 퇴직수당의 금액이 재직기간 합산시 반납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가산금 또는 퇴직수당액에 이자(퇴직급여가산금 또는 퇴직수당납부후 매1년에 대하여 연 1할의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과 교직원으로 재직한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수당을 합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퇴직수당으로 지급한다.

**제5조** (퇴직수당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에 관한 경과조치) ①1991년도에 관리공단이 부담하는 퇴직수당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69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0년 10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동안 퇴직급여가산금 및 유족급여가산금의 지급에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②관리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금액외에 1991년 10월 1일부터 법률 제4455호 사립학교교원연금법중개정법률 시행전일까지의 제69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퇴직수당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따로 부담하여야 한다.

**부칙** <제13861호,1993. 2. 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퇴직수당 비용부담에 관한 경과조치) 1993년 1월 1일전에 퇴직수당 지급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퇴직수당의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4486호,1994. 12. 31.>(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상훈법시행령등중개정령)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503호,1994. 12. 31.>(공무원수당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사립학교교원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중 " 장기근속수당 " 을 " 장기근속수당(가산금을 제외한다) " 으로 한다.

③생략

**부칙** <제14906호,1996. 2. 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재직기간의 합산에 관한 경과조치) 1995년 12월 31일 현재 재직중인 교직원으로서 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을 신청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8조제1항 및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5810호,1998. 6. 1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급여의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납부고지하는 환수금부터 적용한다.

③(대여금의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7월 1일이후 최초로 관리공단적립금에서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950호,1998. 12. 31.>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34호,2000. 2.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62호,2000. 3. 28.>(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사립학교교원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의2제1항제5호중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을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로 한다.

⑦내지1^ 생략

**부칙** <제17096호,2000. 12.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3항·제30조의2·제32조 및 제6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급여사유발생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연봉제적용 교직원의 월봉급액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연봉제적용 교직원의 제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2001년 월봉급액은 2000년도의 월봉급액상당액에 공무원평균보수인상률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 (보수월액의 현재가치 환산에 관한 경과조치) 2001년 1월 1일 이후에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된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에 대한 보수월액을 법 제35조제4항 및 이 영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경우에 이 영 시행전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에 대하여 적용되는 공무원평균보수인상률은 제3조의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매년 6퍼센트로 한다.

**제5조** (합산반납금 납부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전에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 합산을 받은 교직원의 합산반납금 납부방법은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영 시행전에 재직기간 합산을 받고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중인 자의 이 영 시행이후의 분할납부기간에 대한 이자율은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이자율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다시 산정한다.

**제6조** (급여환수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전에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의 환수처분을 한 급여액에 가산할 이자 및 환수금에 가산할 연체이자의 계산기간은 제25조제1항의 개

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영 시행전에 법 제39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의 환수처분을 한 급여액의 환수는 제2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감액되기 전의 보수월액에 의한 부담금의 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에 종전의 법 제35조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감액되기 전의 직급 및 호봉에 의한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도 제22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감액되기 전의 직급 및 호봉에 의한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보수월액을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감액되기 전의 보수월액으로 본다.

**제8조** (합산제외후 재합산인정을 받은 자의 반납금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법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인정된 재직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반납금을 체납하여 합산을 제외받는 자가 법률 제6330호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영 시행이후에 재직기간합산을 받게 되는 경우의 반납금은 체납당시 반납하여야 할 금액에 취소되기 전에 반납금을 체납한 기간(6월이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는 6월로 본다)에 대하여는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다시 산정하여 정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급여액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330호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진, 강임이나 강등, 전직, 보직변경 또는 재임용(퇴직한 교직원ㆍ공무원 또는 군인이 교직원으로 임용되어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의 합산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된 후 1년 이내에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 승진, 강임이나 강등, 전직, 보직변경 또는 재임용되기 전의 보수월액은 그 보수월액에 제3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무원평균보수인상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부칙** <제17115호,2001. 1. 29.>(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3@ 생략

3#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70조제2항, 제71조제1항, 제73조제3항 본문ㆍ제4항, 제76조제2항, 제87조의2제2항제3호ㆍ제3항제4호, 제87조의9, 제97조제2항 전단ㆍ제3항 및 제98조제1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제76조제2항 및 제87조의3제2항제1호중 "교육부"를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3$ 내지 <152>생략

**부칙** <제17909호,2003. 2. 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관한 규정과 제54조의2제1항, 제60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0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양사실의 인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개인부담금의 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제3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보수월액이 감액되는 자는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준용하여 감액되기 전의 보수월액에 의한 개인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액되기 전의 보수월액에 의한 부담금의 납부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보수월액을 매년 제22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 (체납처분사유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독촉장을 발부하는 환수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312호,2004. 3. 17.>(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88호,2005. 6. 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4항제2호의2 내지 제2호의4, 제32조의3 내지 제32조의7의 개정규정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반납금 미납시 연체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고 제19조제1항의 납부기한까지 반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의 계산은 이 영 시행일까지의 체납기간에 대하여는 제20조제4항의 종전규정에 의하여 산정하고, 이 영 시행 이후의 체납기간에 대하여는 제20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산정한다.

**부칙** <제19513호,2006. 6. 12.>(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11>생략

<112>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중 “ 5급이상 공무원 ” 을 “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 로 한다.

제76조제2항중 “ 5급이상공무원 ” 을 “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 로 한다.

제87조의3제2항제1호중 “ 4급이상 공무원중 ” 을 “ 4급 이상 공무원중(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 로 한다.

<113>내지 <241>생략

**부칙** <제19843호,2007. 1. 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0조제2항 및 제7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0호,2007. 6. 28.>(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97호,2008. 2.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740호,2008. 2. 29.>(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3! 까지 생략

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7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87조의2제2항제3호 및 제3항제7호, 제87조의9, 제97조제2항 전단、제3항, 제98조제1항 중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 을 각각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 교육인적자원부 ” 를 “ 교육과학기술부 ” 로 한다.

제52조제1항 중 “ 행정자치부령 ” 을 “ 행정안전부령 ” 으로 한다.

제76조제2항 중 “ 교육인적자원부 ” 를 “ 교육과학기술부 ” 로,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 을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으로 한다.

제87조의3제2항제1호 중 “ 교육인적자원부 및 기획예산처 ” 를 “ 기획재정부 및 교육과학기술부 ” 로 한다.

3#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 <제20875호,2008. 6. 25.>(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3제1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⑥ 부터 ⑪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20947호,2008. 7. 29.>(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7> 까지 생략

<58>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의2제2항제2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제87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투자자문업자ㆍ투자일임업자ㆍ증권금융회사 및 종합금융회사

제87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같은 법 제9조제14항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것만 해당한다)의 거래

<59>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 <제21867호,2009. 12. 7.>(병역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2호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⑨ 부터 ⑬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21977호,2010. 1.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직기간으로 인정되는 복무기간의 적용례) 제17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임용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환수금의 분할 납부 횟수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2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환수금의 분할 납부 승인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퇴직급여 또는 유족급여의 변경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급여를 수령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최초의 기준소득월액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교직원의 기준소득월액은 제3조의2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에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결정된 기준소득월액은 제3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이르는 6월까지 적용한다.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교직원의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의 상한 금액에 대해서는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직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기준소득월액의 상한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공단의 이사장, 상임이사 및 감사에 대한 법 제3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단 이사장의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2를 적용받는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 중 가장 높은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상임이사 및 감사의 경우에는 같은 규정 별표 3을 적용받는 일반직 1급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 중 가장 높은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제7조**(부담금에 관한 특례) ① 국가부담금의 금액은 제6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별로 교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 합계액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2010년: 6천3백분의 2,595
2. 2011년: 6천7백분의 2,759

② 법인부담금의 금액은 제6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별로 해당 학교 교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 합계액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2010년: 6천3백분의 3,705

2. 2011년: 6천7백분의 3,941

**제8조**(기준소득월액의 적용에 관한 특례) 법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연금인 급여(「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퇴직연금을 포함한다)의 급여액 산정을 위한 기준소득월액에 곱하는 비율은 다음 표를 적용하되, 법률 제3684호 사립학교교원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와 법률 제7536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항 및 법률 제7889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른 소급통산 재직기간 중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은 이 비율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기간으로 본다. 다만, 재직기간 33년을 초과하여 재직하고 퇴직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재직기간 33년에 해당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5. 12. 31.>

[표] 재직기간별 기준소득월액에 적용하는 비율 (단위 : %)

| 퇴직 기간 / 이 법 시행 이후 기간 | 32년 이상 | 31년 이상 - 32년 미만 | 30년 이상 - 31년 미만 | 29년 이상 - 30년 미만 | 28년 이상 - 29년 미만 | 27년 이상 - 28년 미만 | 26년 이상 - 27년 미만 | 25년 이상 - 26년 미만 | 24년 이상 - 25년 미만 | 23년 이상 - 24년 미만 | 22년 이상 - 23년 미만 | 21년 이상 - 22년 미만 | 20년 이상 - 21년 미만 | 19년 이상 - 20년 미만 | 18년 이상 - 19년 미만 | 17년 이상 - 18년 미만 | 16년 이상 - 17년 미만 |
|---|---|---|---|---|---|---|---|---|---|---|---|---|---|---|---|---|---|
| 1년 미만 | 67.46 | 67.46 | 67.46 | 67.46 | 67.46 | 67.46 | 67.46 | 67.46 | 67.46 | 67.46 | 67.46 | 67.46 | 67.46 | 84.33 | 84.33 | 84.33 | 84.33 |
| 1년 이상 ~ 2년 미만 | | 67.94 | 67.94 | 67.94 | 67.94 | 67.94 | 67.94 | 67.94 | 67.94 | 67.94 | 67.94 | 67.94 | 67.94 | 76.43 | 84.92 | 84.92 | 84.92 |
| 2년 이상 ~ 3년 미만 | | | 68.42 | 68.42 | 68.42 | 68.42 | 68.42 | 68.42 | 68.42 | 68.42 | 68.42 | 68.42 | 68.42 | 74.12 | 79.82 | 85.53 | 85.53 |
| 3년 이상 ~ 4년 미만 | | | | 68.91 | 68.91 | 68.91 | 68.91 | 68.91 | 68.91 | 68.91 | 68.91 | 68.91 | 68.91 | 73.22 | 77.52 | 81.83 | 86.14 |
| 4년 이상 ~ 5년 미만 | | | | | 69.48 | 69.48 | 69.48 | 69.48 | 69.48 | 69.48 | 69.48 | 69.48 | 69.48 | 72.95 | 76.43 | 79.90 | 83.37 |
| 5년 이상 ~ 6년 미만 | | | | | | 69.91 | 69.91 | 69.91 | 69.91 | 69.91 | 69.91 | 69.91 | 69.91 | 72.82 | 75.74 | 78.65 | 81.58 |
| 6년 이상 ~ 7년 미만 | | | | | | | 70.49 | 70.49 | 70.49 | 70.49 | 70.49 | 70.49 | 70.49 | 73.01 | 75.53 | 78.05 | 80.57 |
| 7년 이상 ~ 8년 미만 | | | | | | | | 71.01 | 71.01 | 71.01 | 71.01 | 71.01 | 71.01 | 73.23 | 75.45 | 77.67 | 79.89 |
| 8년 이상 ~ 9년 미만 | | | | | | | | | 71.39 | 71.39 | 71.39 | 71.39 | 71.39 | 73.37 | 75.36 | 77.34 | 79.32 |
| 9년 이상 ~ 10년 미만 | | | | | | | | | | 72.00 | 72.00 | 72.00 | 72.00 | 73.80 | 75.60 | 77.40 | 79.20 |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 | | | | | | | | | 72.39 | 72.39 | 72.39 | 74.03 | 75.68 | 77.32 | 78.97 |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 | | | | | | | | | | 73.09 | 73.09 | 74.61 | 76.14 | 77.66 | 79.18 |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 | | | | | | | | | | | 73.89 | 75.31 | 76.73 | 78.15 | 79.58 |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 | | | | | | | | | | | | 76.13 | 77.46 | 78.80 | 80.14 |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 | | | | | | | | | | | | | 78.24 | 79.50 | 80.76 |
| 15년 이상 ~ 16년 미만 | | | | | | | | | | | | | | | | 80.35 | 81.55 |
| 16년 이상 ~ 17년 미만 | | | | | | | | | | | | | | | | | 82.29 |
| 17년 이상 ~ 18년 미만 | | | | | | | | | | | | | | | | | |
| 18년 이상 ~ 19년 미만 | | | | | | | | | | | | | | | | | |
| 19년 이상 ~ 20년 미만 | | | | | | | | | | | | | | | | | |
| 20년 이상 ~ 21년 미만 | | | | | | | | | | | | | | | | | |
| 21년 이상 ~ 22년 미만 | | | | | | | | | | | | | | | | | |
| 22년 이상 ~ 23년 미만 | | | | | | | | | | | | | | | | | |
| 23년 이상 ~ 24년 미만 | | | | | | | | | | | | | | | | | |
| 24년 이상 ~ 25년 미만 | | | | | | | | | | | | | | | | | |
| 25년 이상 ~ 26년 미만 | | | | | | | | | | | | | | | | | |
| 26년 이상 ~ 27년 미만 | | | | | | | | | | | | | | | | | |
| 27년 이상 ~ 28년 미만 | | | | | | | | | | | | | | | | | |
| 28년 이상 ~ 29년 미만 | | | | | | | | | | | | | | | | | |
| 29년 이상 ~ 30년 미만 | | | | | | | | | | | | | | | | | |
| 30년 이상 ~ 31년 미만 | | | | | | | | | | | | | | | | | |
| 31년 이상 ~ 32년 미만 | | | | | | | | | | | | | | | | | |
| 32년 이상 | | | | | | | | | | | | | | | | | |

| 퇴직 기간 / 이 법 시행 이후 기간 | 15년 이상 - 16년 미만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9년 이상 - 10년 미만 | 8년 이상 - 9년 미만 | 7년 이상 - 8년 미만 | 6년 이상 - 7년 미만 | 5년 이상 - 6년 미만 | 4년 이상 - 5년 미만 | 3년 이상 - 4년 미만 | 2년 이상 - 3년 미만 | 1년 이상 - 2년 미만 | 1년 미만 | 신규자 |
|---|---|---|---|---|---|---|---|---|---|---|---|---|---|---|---|---|---|
| 1년 미만 | 84.33 | 84.33 | 84.33 | 84.33 | 84.33 | 84.33 | 83.69 | 83.04 | 81.90 | 81.76 | 81.11 | 80.47 | 79.83 | 79.18 | 78.54 | 77.90 | 77.25 |
| 1년 이상 ~ 2년 미만 | 84.92 | 84.92 | 84.92 | 84.92 | 84.92 | 84.92 | 84.53 | 83.88 | 82.72 | 82.58 | 81.93 | 81.28 | 80.63 | 79.98 | 79.33 | 78.68 | 78.03 |
| 2년 이상 ~ 3년 미만 | 85.53 | 85.53 | 85.53 | 85.53 | 85.53 | 85.53 | 84.87 | 84.22 | 83.06 | 82.92 | 82.28 | 81.61 | 80.96 | 80.31 | 79.66 | 79.00 | 78.35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6.14 | 86.14 | 86.14 | 86.14 | 86.14 | 86.14 | 85.48 | 84.82 | 83.65 | 83.51 | 82.85 | 82.20 | 81.54 | 80.88 | 80.22 | 79.57 | 78.91 |
| 4년 이상 ~ 5년 미만 | 86.85 | 86.85 | 86.85 | 86.85 | 86.85 | 86.85 | 86.18 | 85.52 | 84.34 | 84.20 | 83.54 | 82.87 | 82.21 | 81.55 | 80.89 | 80.22 | 79.56 |
| 5년 이상 ~ 6년 미만 | 84.47 | 87.39 | 87.39 | 87.39 | 87.39 | 87.39 | 86.72 | 86.05 | 84.87 | 84.72 | 84.05 | 83.39 | 82.72 | 82.06 | 81.39 | 80.72 | 80.06 |
| 6년 이상 ~ 7년 미만 | 83.08 | 85.60 | 88.12 | 88.12 | 88.12 | 88.12 | 87.45 | 86.77 | 85.68 | 85.43 | 84.76 | 84.09 | 83.41 | 82.74 | 82.07 | 81.40 | 80.72 |
| 7년 이상 ~ 8년 미만 | 82.11 | 84.33 | 86.55 | 88.77 | 88.77 | 88.77 | 88.09 | 87.41 | 86.21 | 86.06 | 85.38 | 84.70 | 84.03 | 83.35 | 82.67 | 82.00 | 81.32 |
| 8년 이상 ~ 9년 미만 | 81.30 | 83.29 | 85.27 | 87.26 | 89.24 | 89.24 | 88.56 | 87.88 | 86.66 | 86.51 | 85.83 | 85.16 | 84.47 | 83.79 | 83.11 | 82.43 | 81.76 |
| 9년 이상 ~ 10년 미만 | 81.00 | 82.80 | 84.60 | 86.40 | 88.20 | 90.00 | 89.31 | 88.63 | 87.40 | 87.25 | 86.57 | 85.88 | 85.19 | 84.51 | 83.82 | 83.13 | 82.45 |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80.61 | 82.28 | 83.90 | 85.55 | 87.19 | 88.84 | 89.79 | 89.10 | 87.87 | 87.72 | 87.03 | 86.34 | 85.65 | 84.96 | 84.27 | 83.58 | 82.89 |

| | | | | | | | | | | | | | | | | | |
|---|---|---|---|---|---|---|---|---|---|---|---|---|---|---|---|---|---|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80.70 | 82.23 | 83.76 | 85.27 | 86.80 | 88.32 | 89.18 | 89.97 | 88.73 | 88.68 | 87.88 | 87.18 | 86.49 | 85.79 | 85.09 | 84.40 | 83.70 |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81.00 | 82.42 | 83.84 | 85.26 | 86.68 | 88.10 | 88.84 | 89.68 | 89.70 | 89.65 | 88.84 | 88.14 | 87.43 | 86.73 | 86.02 | 85.32 | 84.62 |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81.47 | 82.81 | 84.14 | 85.48 | 86.81 | 88.15 | 88.80 | 89.43 | 89.60 | 90.04 | 89.93 | 89.21 | 88.50 | 87.79 | 87.07 | 86.36 | 85.65 |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82.03 | 83.29 | 84.55 | 85.81 | 87.07 | 88.34 | 88.91 | 89.47 | 89.46 | 90.63 | 91.04 | 90.31 | 89.59 | 88.87 | 88.15 | 87.43 | 86.70 |
| 15년 이상 ~ 16년 미만 | 82.75 | 83.95 | 85.14 | 86.34 | 87.54 | 88.74 | 89.29 | 89.75 | 89.88 | 90.68 | 91.13 | 91.55 | 90.82 | 90.08 | 89.35 | 88.62 | 87.89 |
| 16년 이상 ~ 17년 미만 | 83.44 | 84.68 | 85.72 | 86.87 | 88.01 | 89.15 | 89.61 | 90.04 | 89.91 | 90.88 | 91.25 | 91.62 | 91.97 | 91.22 | 90.48 | 89.74 | 89.00 |
| 17년 이상 ~ 18년 미만 | 84.29 | 85.38 | 86.47 | 87.57 | 88.66 | 89.76 | 90.16 | 90.54 | 90.38 | 91.28 | 91.60 | 91.92 | 92.22 | 92.50 | 91.75 | 91.00 | 90.25 |
| 18년 이상 ~ 19년 미만 | | 86.14 | 87.19 | 88.24 | 89.29 | 90.34 | 90.70 | 91.03 | 90.80 | 91.66 | 91.95 | 92.22 | 92.48 | 92.72 | 92.95 | 92.19 | 91.42 |
| 19년 이상 ~ 20년 미만 | | | 87.88 | 88.87 | 89.88 | 90.89 | 91.20 | 91.50 | 91.21 | 92.04 | 92.28 | 92.52 | 92.73 | 92.93 | 93.12 | 93.29 | 92.52 |
| 20년 이상 ~ 21년 미만 | | | | 89.67 | 90.64 | 91.62 | 91.89 | 92.14 | 91.82 | 92.60 | 92.81 | 93.01 | 93.19 | 93.35 | 93.50 | 93.63 | 92.86 |
| 21년 이상 ~ 22년 미만 | | | | | 91.47 | 92.41 | 92.64 | 92.86 | 92.49 | 93.25 | 93.42 | 93.58 | 93.72 | 93.85 | 93.97 | 94.07 | 93.30 |
| 22년 이상 ~ 23년 미만 | | | | | | 93.28 | 93.48 | 93.64 | 93.24 | 93.98 | 94.10 | 94.23 | 94.34 | 94.44 | 94.52 | 94.59 | 93.81 |
| 23년 이상 ~ 24년 미만 | | | | | | | 94.48 | 94.61 | 94.16 | 94.88 | 94.97 | 95.07 | 95.16 | 95.22 | 95.28 | 95.32 | 94.53 |
| 24년 이상 ~ 25년 미만 | | | | | | | | 95.54 | 95.16 | 95.84 | 95.92 | 95.98 | 96.04 | 96.08 | 96.11 | 96.12 | 95.33 |
| 25년 이상 ~ 26년 미만 | | | | | | | | | 96.10 | 96.75 | 96.80 | 96.84 | 96.87 | 96.88 | 96.89 | 96.87 | 96.07 |
| 26년 이상 ~ 27년 미만 | | | | | | | | | | 97.58 | 97.68 | 97.90 | 97.90 | 97.89 | 97.88 | 97.82 | 97.02 |
| 27년 이상 ~ 28년 미만 | | | | | | | | | | | 98.90 | 98.89 | 98.86 | 98.83 | 98.78 | 98.72 | 97.90 |
| 28년 이상 ~ 29년 미만 | | | | | | | | | | | | 100.08 | 100.03 | 99.97 | 99.90 | 99.81 | 98.99 |
| 29년 이상 ~ 30년 미만 | | | | | | | | | | | | | 101.12 | 101.04 | 100.94 | 100.84 | 100.00 |
| 30년 이상 ~ 31년 미만 | | | | | | | | | | | | | | 102.17 | 102.06 | 101.93 | 101.09 |
| 31년 이상 ~ 32년 미만 | | | | | | | | | | | | | | | 103.23 | 103.08 | 102.23 |
| 32년 이상 | | | | | | | | | | | | | | | | 104.30 | 103.44 |

**제9조**(소급통산 재직기간에 대한 부담금 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4조제4항에 따라 납부하는 소급통산 재직기간에 대한 부담금의 산정은 다음과 같다.

(법 시행일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 × 공무원보수인상률 × 종전 규정에 따른 부담률 × (6.3 ÷ 5.525)

**제10조**(종전기간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의 현재가치로의 환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0년 1월 1일 당시 재직 중인 교직원의 경우 법 부칙 제4조제7항제1호에 따른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을 급여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4. 4. 29.>

(2010년 1월 1일 전날의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 × [(급여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2008년도 과세소득에 대한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② 2010년 1월 1일 이후 교직원으로 임용된 사람이 종전기간을 합산한 경우의 법 부칙 제4조제7항제1호에 따른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4. 4. 29.>

(종전 퇴직 당시의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로 교직원 임용 당시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 × [(급여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교직원 임용 당시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2010년 1월 1일 전날의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에 적용기간별로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순차적으로 곱하여 급여사유가 발생한 날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후자의 금액을 종전기간의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으로 한다. <개정 2014. 4. 29.>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종전 퇴직 당시의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로 교직원 임용 당시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에 적용기간별로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순차적으로 곱하여 급여사유가 발생한 날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후자의 금액을 종전기간의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으로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종전기간의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을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경우 전년도 소득에 기초한 해당 연도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여 적용하기 전(해당 연도 1월부터 6월까지를 말한다)에 장기급여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에 해당 연도의 공무원보수인상률을 반영한 금액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4. 4. 29.>

**제11조**(기준소득월액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3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년도 소득에 종사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휴직자 및 복직자의 기준소득월액은 제3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② 제3조의2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소득자료가 없는 재직자의 기준소득월액은 같은 급의 학교기관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종ㆍ직위 등에 해당하는 교직원의 기준소득월액의 중위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공단이 결정한다.

③ 법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이 법 시행일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적용받으려는 교직원은 종전의 보수월액을 명기한 승인신청서를 소속 학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 학교기관의 장은 그 신청서를 7일 이내에 공단에 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학교기관의 장이 학교의 장인 때에는 해당 학교경영기관의 장의 동의가 표시되는 방식으로 하여 공단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12조**(연체이자율 적용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25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7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 이전기간에 해당하는 환수금 및 부담금의 연체이자의 계산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7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 이전기간에 해당하는 연체금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업무 위탁 범위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된 업무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에 대한 위탁계약이 종료되거나 갱신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2151호,2010. 5. 4.>(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1> 까지 생략

<9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49조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으로 한다.

<93>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제22467호,2010. 11. 2.>(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493호,2010. 11. 15.>(은행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57>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및 제87조의2제1항제1호 중 " 금융기관 "을 각각 " 은행 "으로 한다.

<58>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3546호,2012. 1.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4. 4. 29.>

**제3조**(고용직 사무직원의 근무상한연령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고용직 사무직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4077호,2012. 8. 31.>(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1^ 까지 생략

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5제1호 중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를 "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로 한다.

제44조 중 "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를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라 "로 한다.

1* 부터3)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24423호,2013. 3. 2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 제3조의3제2항ㆍ제3항, 제10조, 제22조제2항, 제7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6조제2항, 제87조의2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제7호, 제87조의9, 제97조제2항 및 제98조제1항 중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을 각각 " 교육부장관 "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제76조제2항 및 제87조의3제2항제1호 중 " 교육과학기술부 "를 각각 " 교육부 "로 한다

제52조제1항 중 " 행정안전부령 "을 " 안전행정부령 "으로 한다.

<54>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 <제24888호,2013. 11.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반납금 미납 시 연체이자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에 제19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반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의 계산은 2013년 11월 30일까지의 체납기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2013년 12월 1일 이후의 체납기간에 대해서는 제20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제3조**(재요양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에 준용법 제51조에 따라 장해보상금을 받은 사람은 그 장해보상금의 지급일부터 5년이 지난 후부터 제32조의6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다.

**제4조**(급여의 감액에 관한 적용례) 제64조 및 제6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준용법 제6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준용법 제63조에 따른 급여의 감액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24890호,2013. 12. 4.>(병역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보충역 소집에 의하여 사회복무요원 또는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근무한 기간(「병역법 시행령」 제151조에 따라 산정된 기간에 한정한다)

⑮부터1( 까지 생략

**부칙** <제25215호,2014. 2.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경영기관별 부담금액 산정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2조제1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재직 중인 학교경영기관 외에 다른 학교경영기관에 소속되었던 교직원에 대하여 이 영 시행 후 퇴직수당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영 시행 전에 재직하였던 학교경영기관의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수당의 지급에 드는 비용은 제69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부담한다. 이 경우 법 제2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이 영 제63조의3 각 호에 따른 비율이 달라지게 되어 퇴직수당 총 지급액과 해당 학교경영기관이 각각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의 합계액에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그 차액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3조**(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부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퇴직수당 지급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퇴직수당의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제6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5334호,2014. 4.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균기준소득월액의 현재가치 환산에 관한 적용례) ① 제3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부터 이 영 시행일 전까지 퇴직하거나 사망하여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및 유족연금(교직원이었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다가 사망하여 그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급여사유가 발생한 사람(해당 기간에 퇴직 또는 사망하여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이미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3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평균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는 경우 이 영 시행일 전까지 받을 수 있었던 퇴직연금 등이 이미 지급된 퇴직연금 등보다 더 클 때에는 그 차액을 이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퇴직연금 등을 지급할 때에 합산하여 지급한다.

**제3조**(2010년 전에 임용된 교직원의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의 현재가치로의 환산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대통령령 제21977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월 1일 전에 임용된 교직원으로서 2010년 1월 1일부터 이 영 시행일의 전 날까지 퇴직하여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교직원(2010년 1월 1일 이후에 임용된 교직원으로서 2010년 1월 1일 전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합산한 사람을 포함한다)의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의 현

재가치로의 환산방법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대통령령 제23546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월 1일 전에 임용된 교직원으로서 2010년 1월 1일부터 이 영 시행일의 전날까지 퇴직하여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교직원(2010년 1월 1일 이후에 임용된 교직원으로서 2010년 1월 1일 전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합산한 사람을 포함한다)의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경우 대통령령 제23546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외되는 소득 항목이 포함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그 소득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한다.

**부칙** <제25840호,2014. 12. 9.>(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6832호,2015.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군복무기간의 재직기간 산입에 따른 연금액 산정 등에 관한 특례) ① 법률 제13561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제1항 각 호의 연도 중에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임용 전 군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 경우 그 군복무기간에 대한 퇴직연금의 금액은 평균기준소득월액에 군복무기간이 산입된 연도에 해당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률 제13561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제1항 각 호의 연도 중에 법률 제3684호 사립학교교원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 법률 제7536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항 및 법률 제7889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을 소급통산한 경우 그 소급통산한 기간에 대한 퇴직연금의 금액은 평균기준소득월액에 소급통산 대상자가 부담금을 납부한 달이 속하는 각각의 연도에 해당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3조**(연금액 산정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이후의 재직기간에 대한 급여액을 산정할 때 법률 제13387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46조제4항의 개정규정 및 법률 제13561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산정한 퇴직연금의 금액이 종전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제4조**(부담금에 관한 특례) ① 국가부담금의 금액은 제6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별로 교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 합계액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2016년: 8천분의 3,295
2. 2017년: 8천2백50분의 3,398
3. 2018년: 8천5백분의 3,500
4. 2019년: 8천7백50분의 3,603

② 법인부담금의 금액은 제6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별로 해당 학교 교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 합계액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2016년: 8천분의 4,705
2. 2017년: 8천2백50분의 4,852
3. 2018년: 8천5백분의 5,000
4. 2019년: 8천7백50분의 5,147

**부칙** <제26992호,2016. 2. 29.>

이 영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620호,2016. 11. 29.>(병역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1호 중 “ 실역에 복무한 ”을 “ 복무한 ”으로 한다.

1& 부터2^ 까지 생략

**부칙** <제29182호,2018. 9.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소득월액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반납금의 분할납부 횟수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9조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금청산 청구 및 퇴직유족급여 청구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9조에도 불구하고 제22조의6 및 제5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연금청산 또는 퇴직유족급여가 청구되어 있거나 신청되어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분할연금 등의 종류 및 지급시기 변경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9조 및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제2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급여의 종류 및 지급시기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직권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9조에도 불구하고 제4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장해연금 수급권자가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장해 상태 확인을 위한 진단 요구 등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9조에도 불구하고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유족인 19세 이상 자녀와 손자녀(손자녀의 아버지를 포함한다) 및 장해연금 수급권자에게도 적용한다.

**제8조**(종합장해등급 결정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9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6 비고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장해로 인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9조**(급여사유발생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급여심의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3개월의 범위에서 같은 개정 규정에 따른 급여심의회의 구성이 완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성한 급여심의회를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급여심의회로 보고, 그 회의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21조제3항에 따른다.

②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급여심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급여심의회의 위원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급여심의회를 최초로 구성한 때부터 그 남은 임기가 종료할 때까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급여심의회의 위원으로 본다.

**제11조**(환수금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제2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환수금 중 급여를 수령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의 이자 및 연체이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2조**(퇴직급여 등의 종류 및 지급시기 변경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퇴직급여 등의 종류 및 지급시기의 변경신청에 관하여는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53조의3에 따른다.

**제13조**(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인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29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의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정년 및 근무상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한 사람의 정년 및 근무상한연령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연체금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제7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납기일 다음 날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의 연체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 중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55조"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41조 및 별표 5와 별표 6"으로 한다.

②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 중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55조"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41조 및 별표 5와 별표 6"으로 한다.

**부칙** <제29950호,2019. 7. 2.>(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0666호,2020. 5. 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760호,2020. 6. 9.>(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1* 까지 생략

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라목 중 “「군인연금법」”을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2) 부터3^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30807호,2020. 6. 30.>(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3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제17조의2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대체역 소집에 의하여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한 기간(「병역법 시행령」 제151조에 따라 산정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⑮부터2& 까지 생략

**부칙** <제30833호,2020. 7. 1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따른 15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2020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893호,2020. 8. 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2( 까지 생략

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하목 중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을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으로 한다.

3! 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30934호,2020. 8. 1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의2제3항제6호 중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1항 ”을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 ”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의2 중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을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의3을 삭제한다.

⑭부터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1337호,2020. 12. 29.>(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제도 도입에 따른 22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당시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31516호,2021. 3. 2.>(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947호,2021. 8. 17.>(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의2제3항제6호의2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3항"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로 한다.

**부칙** <제32018호,2021. 9. 29.>(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195호,2025. 1.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보상준용법 제8조에 따른 급여를 신청하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유족의 인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퇴직유족급여 또는 재해유족급여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유족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장해등급의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장해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장해등급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41조, 별표 5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직권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이 되는 장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의 장해연금 수급권자(이 영 시행 전에 장해급여의 사유가 발생하여 이 영 시행 이후 장해연금 수급권자가 되는 사람을 포함한다)가 직권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제4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급여의 감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의 감액에 관하여는 제64조 전단 및 제65조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부양사실 인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퇴직유족급여 또는 재해유족급여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부양사실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5228호,2025. 1. 21.>(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636호,2025. 7. 7.>(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조제4항”을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조제5항”으로 한다.

**부칙** <제35948호,2025. 12. 30.>(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1* 까지 생략

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의3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 및 교육부”를 “교육부 및 기획예산처”로 한다.

2) 부터 <176>까지 생략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1. 14.>

교직원등이 부양한 사실의 인정기준(제2조제1항 관련)

| 대상자 | 인정기준 |
|---|---|
| 1. 배우자 | 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 배우자인 경우: 인정<br>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 배우자가 아닌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 판결에 따라 사실혼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정 |
| 2. 법 제2조제2항의 19세 미만인 자녀 | 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 자녀인 경우: 인정<br>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 자녀가 아닌 경우: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 판결 등 법원의 재판에 따라 친자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정 |
| 3. 부모 | 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 부모인 경우: 인정<br>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 부모가 아닌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br>1)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같았던 경우<br>2)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달랐던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br>가) 교직원등의 주소에서 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br>나) 취학·요양·주거의 형편 또는 근무형편 등으로 주거를 달리 하고 있었으나 생활비·요양비 등 생계의 기반이 되는 경제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4. 법 제2조제2항의 19세 이상인 자녀, 손자녀·조부모 | 가.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같았던 경우: 인정<br>나.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달랐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br>1) 교직원등의 주소에서 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br>2) 취학·요양·주거의 형편 또는 근무형편 등으로 주거를 달리 하고 있었으나 생활비·요양비 등 생계의 기반이 되는 경제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별표 1의2] 삭제 <2018. 9. 18.>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5. 1. 14>

공단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와 요청의 상대방(제13조의2 관련)

1. 요청 대상 자료

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와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자료와 가족관계증명서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 지급에 관한 자료

라. 「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 및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국민, 군인 및 별정우체국 직원에 관한 자료와 각 법에 따른 급여에 관한 자료

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관한 자료

바.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에 따른 소득·과세에 관한 자료

사.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사업장 성립·적용·탈퇴·해지 및 가입자 자격의 취득(고용)·상실(고용종료) 등 부과·징수에 관한 자료와 급여에 관한 자료

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절차 관련 사건번호, 개시결정일, 면책결정일, 당사자 등에 관한 자료 및 「민사집행법」에 따른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등재·말소 결정에 관한 자료

자. 「가사소송법」에 따른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에 관한 자료

차.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장학금 및 그 외의 장학금 지급내역 및 학사정보에 대한 전산정보자료

카.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지급하는 교내장학금 및 그 외의 장학금 및 학사정보에 대한 전산정보자료

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과 「보험업법」, 「선주상호보험조합법」에 따라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가입자 관리, 보험금 산출 및 지급에 관한 자료

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 「한국해운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원양산업발전법」,

「민법」 및 「선원법 시행령」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자의 가입자 관리, 보험금·공제금의 산출 및 지급에 관한 자료

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보험금 지급에 관한 자료

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에 관한 자료,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등록자료 및 출입국에 관한 자료

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의 수용에 관한 자료

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등록자료 및 출입국에 관한 자료

러. 「국적법」에 따른 국적상실·국적취득 등에 관한 자료

머. 「여권법」에 따른 여권의 발급에 관한 자료

버. 「병역법」에 따른 복무기간 등에 관한 자료

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부동산등기법」 및 「건축법」 등에 따른 건물, 「선박법」 및 「어선법」에 따른 선박 및 어선,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및 건설기계,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등의 등기·등록 및 공시가격에 관한 자료

어.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 관련 자료 및 「형사소송법」에 따른 상해 또는 사망과 관련된 사건·사고의 수사기록 및 소송 관련 자료, 「공탁법」에 따른 공탁 관련 자료

저.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교통사고 조사사항에 관한 자료

처. 「의료법」에 따른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 진료에 관한 자료 및 진료비 산출에 관한 자료

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화장 등 장사에 관한 자료

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급활동에 관한 자료

퍼.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자료, 장기요양급여자료, 건강검진 결과자료, 의료급여 관련 자료,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관계에 관한 자료

허. 「형법」 및 「형사소송법」에 따른 수사 및 재판에 대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 형사재판 판결문, 형사재판 확정증명서, 경찰서에 접수된 가출 또는 실종신고에 관한 자료

고. 「선원법」에 따른 선박 승선자에 관한 자료

노. 그 밖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요양기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및 제2호에 따른 기관·법인·단체가 보유한 자료로서 법에 따른 급여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공단에서 인정하는 자료

2. 자료 요청의 상대방

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나.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마.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바. 「평생교육법」에 따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사시설

아.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및 「보험업법」, 「선주상호보험조합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

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 「한국해운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원양산업발전법」, 「민법」 및 「선원법 시행령」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자

차. 그 밖에 법에 따른 급여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자료를 보유한 기관·법인·단체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별표 3] <신설 2018. 9. 18.>

직무상 부상·질병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제29조제2항 본문 관련)

1. 직무상 부상

가.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직무상 부상으로 보지 않는다.

1) 교직원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2) 교직원의 사적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3)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4) 직무수행 중 사적 원인에 의한 폭력 또는 장난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5) 정상적인 출장 경로의 이탈 또는 출장 목적 외의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6) 교직원 상호 간의 사적인 친목행사 또는 취미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7) 직무와 인과관계가 없는 다른 사람의 원한 등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나. 근무 시작 전, 근무 종료 후 또는 휴식시간에 직무에 필요한 준비행위·정리행위를 하거나 소속 기관의 회식·회합 등 공적 행사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다. 직무수행을 위하여 입주가 필요하거나 의무화되어 있는 시설 등의 불완전 또는 시설관리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퇴근하거나 근무지에 부임(赴任) 또는 귀임(歸任)하는 중 발생한 교통사고·추락사고 또는 그 밖의 사고로 인한 부상

마. 그 밖에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서 그 부상과 직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의 부상

2. 직무상 질병

가. 물리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1) 직무수행 중 방사선·자외선·엑스선·유해광선·극초단파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2) 직무수행 중 화상 또는 동상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3) 직무수행 장소의 강렬한 소음으로 인한 질병

4) 직무수행 중 가스·빛·열·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화학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1) 직무수행 장소의 심한 분진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한 호흡기 질병

2) 직무수행 중 유해가스·유해독물 또는 중금속으로 인한 중독과 이에 따른

질병

다. 생물학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1) 직무수행 중 환자의 진료·간호업무 또는 연구목적으로 병원체를 취급함으로써 발생한 질병

2) 직무수행 중 동물, 동물의 털, 그 밖의 동물성 물질을 취급함으로써 발생한 감염성 질병, 알레르기성 질병 또는 기생충 감염 등에 의한 질병

3) 직무수행 중 습지·풀밭·산지 또는 전염병이 있는 지역에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한 질병

4) 직무수행 중 예방접종·건강진단 등 소속 기관의 건강관리를 위한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5) 직무수행 중 제공된 음식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6) 직무수행 중 근무환경의 변화 또는 직무수행 장소의 숙박시설 여건으로 인한 현저한 생리적 변화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라. 근골격계 질병

직무수행 중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거나 무거운 물체를 운반하는 등 급격하게 힘을 사용함으로써 근육·힘줄·골격·관절·척추 등에 발생한 질병

마.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직무수행 중 돌발적인 사건,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단기간에 상당한 정도의 업무상 부담 증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수행 및 초과근무 등으로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유발되어 발생하거나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

바. 암 질병 또는 악성질병

직무수행 중 석면·벤젠·포름알데히드 등 발암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어 그 영향을 받은 신체 부위에 발생한 암 질병 또는 악성 질병

사. 정신질환

직무수행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사고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아. 직무상 부상을 입은 교직원에게 발생한 질병으로서 다음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의 질병

1) 직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자. 그 밖에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으로서 그 질병과 직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의 질병

3. 평소의 질병·발병요인 또는 악화된 건강 상태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직무 수행과의 경합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 및 새로 발생한 부상·질병

가.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의 가능성이 큰 특수한 환경에서의 계속적인 직무 수행

나. 통상적인 담당직무가 아닌 특수한 직무의 수행

다. 야간근무를 계속하였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무상의 과로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5. 1. 14.>

간병급여의 지급요건(제33조제1항 관련)

| 구분 | 지급요건 |
|---|---|
| 1. 상시 간병급여 | 가.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br>나. 두 눈, 두 팔 또는 두 다리 중 어느 하나의 부위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고, 다른 부위에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
| 2. 수시 간병급여 | 가.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br>나. 장해등급 제1급(제41조제3항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5. 1. 14.>

## 장해등급(제41조제1항 관련)

제1급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영구적으로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5.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6. 두 팔을 완전히 영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7.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8. 두 다리를 완전히 영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제2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5.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6.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제3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영구적으로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제4급

1. 두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3.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4.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6. 두 손의 손가락을 완전히 영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7. 두 발을 발목발허리관절(족근중족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제5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3.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4. 한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6. 한 팔을 완전히 영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7. 한 다리를 완전히 영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8.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제6급

1. 두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3. 두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4.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척주(脊柱)에 극도의 기능장해와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동시에 남은 사람
   나.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와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동시에 남은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이 못 쓰게 된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이 못 쓰게 된 사람
8. 한 손의 다섯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네 손가락을 잃은 사람

제7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 이하인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 이상을 잃은 사람
7. 한 손의 다섯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네 손가락이 못 쓰게 된 사람
8. 한 발을 발목발허리관절(족근중족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9. 한 팔에 가짜관절(부러진 뼈가 완전히 아물지 못하여 그 부분이 마치 관절처럼 움직이는 상태)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10. 한 다리에 가짜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11. 두 발의 발가락이 모두 못 쓰게 된 사람
12. 외모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3. 생식기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
1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와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동시에 남은 사람
    나.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와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동시에 남은 사람
    다. 척주에 중증도의 기능장해와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동시에 남은 사람
    라. 척주에 극도의 변형장해와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동시에 남은 사람

제8급

1. 한 눈이 실명되거나 한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나.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와 중증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동시에 남은 사람
    다. 척주에 중증도의 기능장해와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동시에 남은 사람
    라. 척주에 극도의 변형장해와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동시에 남은 사람
    마.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와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동시에 남은 사람

바. 척추에 중증도의 변형장해와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동시에 남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이 못 쓰게 되거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 이상이 못 쓰게 된 사람

5. 한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못 쓰게 된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못 쓰게 된 사람

8. 한 팔에 가짜관절이 남은 사람

9. 한 다리에 가짜관절이 남은 사람

10.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1. 비장 또는 한쪽 신장을 잃은 사람

제9급

1. 두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3. 두 눈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이상이 남은 사람

4. 두 눈의 눈꺼풀이 뚜렷하게 상실된 사람

5. 코가 고도로 상실된 사람

6.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8.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기 어려운 사람

9.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10.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되는 사람

11.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되는 사람

12.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었거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에 세 손가락을 잃은 사람

1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이 못 쓰게 된 사람

14.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두 발가락 이상을 잃은 사람

15. 한 발의 발가락 모두가 못 쓰게 된 사람

16.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1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척추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나. 척주에 중증도의 기능장해와 중증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동시에 남은 사람
다. 척주에 극도의 변형장해와 중증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동시에 남은 사람
라.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와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동시에 남은 사람
마. 척주에 중증도의 변형장해와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동시에 남은 사람
바. 척주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18. 외모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제10급

1. 한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의 눈꺼풀이 뚜렷하게 상실된 사람
3. 코가 중등도로 상실된 사람
4.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5. 14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
6. 두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기 어려운 사람
7.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8.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9.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 못 쓰게 된 사람,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이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세 손가락이 못 쓰게 된 사람
10. 한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1.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네 발가락을 잃은 사람
12.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13.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1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척주에 중증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나. 척주에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다.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와 중증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동시에 남은 사람
라. 척주에 중증도의 변형장해와 중증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동시에 남은 사람
마. 척주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제11급

1. 두 눈의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거나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가 상실된 사람
4. 10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6. 한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7. 두 귀의 귓바퀴가 고도로 상실된 사람
8. 한 손의 가운뎃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9.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이 못 쓰게 되거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두 손가락이 못 쓰게 된 사람
10.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두 발가락 이상이 못 쓰게 된 사람
11. 흉복부장기에 장해가 남은 사람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나.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다.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와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동시에 남은 사람
    라.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와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동시에 남은 사람
    마. 척주에 중증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13. 외모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4. 두 팔의 노출된 면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5.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제12급

1. 한 눈의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거나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2.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3. 한 눈의 눈꺼풀의 일부가 상실된 사람
4. 코가 경도로 상실된 사람
5. 코로 숨쉬기가 곤란하게 된 사람 또는 냄새를 맡지 못하게 된 사람
6. 7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
7. 한 귀의 귓바퀴가 고도로 상실된 사람 또는 두 귀의 귓바퀴가 중등도로 상실된 사람
8. 빗장뼈(쇄골)·복장뼈(흉골)·갈비뼈(늑골)·어깨뼈(견갑골) 또는 골반뼈에 뚜렷한 변형이 남은 사람
9.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10.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11. 팔과 다리의 긴뼈에 변형이 남은 사람
12. 한 손의 가운뎃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이 못 쓰게 된 사람
13. 한 발의 둘째 발가락을 잃은 사람, 한 발의 둘째 발가락을 포함하여 두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 발의 가운뎃발가락 이하의 세 발가락을 잃은 사람
14.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네 발가락이 못 쓰게 된 사람
15. 신체 일부에 뚜렷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6.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17. 두 팔의 노출된 면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8.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제13급

1. 한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이상이 남은 사람
3. 5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
4. 한 귀의 귓바퀴가 중등도로 상실된 사람 또는 두 귀의 귓바퀴가 경도로 상실된 사람
5.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의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사이 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9. 한 다리가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0. 한 발의 가운뎃발가락 이하의 한 발가락 또는 두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발의 둘째 발가락이 못 쓰게 된 사람, 한 발의 둘째 발가락을 포함하여 두 발가락이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한 발의 가운뎃발가락 이하의 세 발가락이 못 쓰게 된 사람
12. 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의 수상 부위에 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
13.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4. 두 팔의 노출된 면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5.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제14급

1. 3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
2. 한 귀의 귓바퀴가 경도로 상실된 사람

3. 한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4. 두 팔의 노출된 면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6. 한 손의 새끼손가락이 못 쓰게 된 사람
7.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 중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 중 손가락뼈 사이 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9. 한 발의 가운뎃발가락 이하의 한 발가락 또는 두 발가락이 못 쓰게 된 사람
10.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1. 척주에 경미한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의 수상 부위에 비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

※ 비고: 이 표에서의 시력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5. 1. 14.>

2개 이상의 장해에 대한 종합장해등급표(제41조제3항 단서 관련)

| 장해등급(1) / 장해등급(2) | 13 | 12 | 11 | 10 | 9 | 8 | 7 | 6 | 5 | 4 | 3 | 2 |
|---|---|---|---|---|---|---|---|---|---|---|---|---|
| 13 | 12 | 11 | 10 | 9 | 8 | 7 | 6 | 5 | 4 | 3 | 2 | 1 |
| 12 | 11 | 11 | 10 | 9 | 8 | 7 | 6 | 5 | 4 | 3 | 2 | 1 |
| 11 | 10 | 10 | 10 | 9 | 8 | 7 | 6 | 5 | 4 | 3 | 2 | 1 |
| 10 | 9 | 9 | 9 | 9 | 8 | 7 | 6 | 5 | 4 | 3 | 2 | 1 |
| 9 | 8 | 8 | 8 | 8 | 8 | 7 | 6 | 5 | 4 | 3 | 2 | 1 |
| 8 | 7 | 7 | 7 | 7 | 7 | 6 | 5 | 4 | 3 | 2 | 1 | 1 |
| 7 | 6 | 6 | 6 | 6 | 6 | 5 | 5 | 4 | 3 | 2 | 1 | 1 |
| 6 | 5 | 5 | 5 | 5 | 5 | 4 | 4 | 4 | 3 | 2 | 1 | 1 |
| 5 | 4 | 4 | 4 | 4 | 4 | 3 | 3 | 3 | 2 | 1 | 1 | 1 |
| 4 | 3 | 3 | 3 | 3 | 3 | 2 | 2 | 2 | 1 | 1 | 1 | 1 |
| 3 | 2 | 2 | 2 | 2 | 2 | 1 | 1 | 1 | 1 | 1 | 1 | 1 |
| 2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비고

1. 장해등급(1)에 해당하는 등급과 장해등급(2)에 해당하는 등급이 서로 만나는 란의 등급을 종합장해등급으로 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실제 장해정도가 제1호에 따라 결정된 종합장해등급에 해당하는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해 명백히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장해등급으로 조정할 수 있다.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별표 7] <신설 2025. 1. 14.>

교직원등에 대한 양육책임 불이행 판단 시 고려사항(제64조의2제1항 관련)

| 대상자 | 판단 시 고려사항 |
|---|---|
| 부모 | 1. 교직원등이 미성년이었던 기간(생후부터 19세가 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동안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같이 하였거나,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달랐던 경우에는 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br>2. 교직원등이 미성년이었던 기간 동안 양육비 등 생계의 기반이 되는 경제적인 지원을 한 기간 및 정도<br>3. 교직원등이 미성년이었던 기간 동안 교직원등에 대해 범죄행위,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하여 부모로서의 보호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및 위반한 정도 |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8호, 2025. 12. 30., 타법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2. 28., 2005. 6. 30.>

**제2조(유족의 인정기준 등)** ① 교직원이거나 교직원이었던 사람(이하 "교직원등"이라 한다)이 사망할 당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부양하고 있었는지에 관한 인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19세 이상인 자녀 중 유족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개정 2025. 1. 14.>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란 각각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상태를 말한다.<개정 2025. 1. 14.>

1. 법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2.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이하 "보상준용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제4호·제5호
3.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이하 "연금준용법"이라 한다) 제57조제1항제4호·제5호

④ 태아인 자녀 또는 손자녀(孫子女)라는 사실에 대한 증명은 보상준용법 제24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이 발행한 진단서에 따른다.<개정 2025. 1. 14.>

⑤ 법 제4조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연금준용법 제28조제2호에 따른 퇴직유족급여 또는 보상준용법 제8조제5호에 따른 재해유족급여 수급권자인 19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나 그 손자녀의 아버지가 법 제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장해 상태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자녀 또는 손자녀 등에게 장해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5. 1. 14.>

[전문개정 2018. 9. 18.]

[제목개정 2025. 1. 14.]

**제3조(소득 및 비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소득의 범위는 교직원이 소속 학교 및 학교경영기관(이하 "학교기관"이라 한다)에서 일정기간 재직하고 지급받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소득으로서 전년도에 발생한 것을 말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은 학교기관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 중 부담금 및 급여 산정을 위한 소득에 포함하

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수당 등에 대하여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13. 3. 23.>

②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비과세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전년도 비과세소득으로 한다.<개정 2012. 1. 26.>

[전문개정 2010. 1. 1.]

**제3조의2(기준소득월액의 결정)** ① 공단은 매년 7월 1일에 교직원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해에 신규임용된 교직원에 대해서는 신규임용 시 결정한다. <개정 2018. 9. 18., 2025. 1. 14.>

② 전년도 소득에 종사한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교직원의 기준소득월액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득에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전년도 소득에 종사한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에 그 해의 공무원보수인상률(「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조제5항에 따라 고시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3. 11. 29., 2018. 9. 18., 2025. 7. 7.>

③ 전년도에 임용되어 전년도 소득에 종사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교직원과 해당 연도에 신규로 임용된 교직원의 기준소득월액은 소속 학교기관에서 교직원에게 해당 연도에 지급할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제3조제2항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해당 연도 소득에 종사할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3. 11. 29., 2018. 9. 18.>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중에 휴직기간 또는 시간선택제 전환 근무기간이 있는 교직원의 기준소득월액은 최근에 적용하였던 기준소득월액에 그 해의 공무원보수인상률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8. 9. 18.>

⑤ 학교기관이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소득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소득 관련 자료가 없는 경우 해당 교직원의 기준소득월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2. 1. 26., 2018. 9. 18.>

1. 재직자의 경우: 해당 교직원의 전년도 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에 따라 조정한 금액
2. 신규임용자의 경우: 소속 학교기관과 같은 급의 학교기관의 유사한 직종ㆍ직위 등에 해당하는 교직원의 기준소득월액 중 가장 적은 금액

[전문개정 2010. 1. 1.]

**제3조의3(기준소득월액의 하한)** ①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원: 92만 2천원
2.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교원: 120만 8천400원
3. 일반직 및 기술직 사무직원: 82만 100원

4. 기능직 사무직원: 73만 5천100원
5. 고용직 사무직원: 52만 5천400원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직원의 생활수준, 임금, 물가, 그 밖에 경제 사정에 뚜렷한 변동이 있을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하한액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하한액을 조정할 경우 조정된 하한액과 조정 사유를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2. 1. 26.]

[종전 제3조의3은 제3조의4로 이동 <2012. 1. 26.>]

**제3조의4(기준소득월액의 적용기간)** 기준소득월액은 해당 연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 적용한다. 다만, 제3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적용한다. <개정 2018. 9. 18.>

1. 전년도에 임용되어 전년도 소득에 종사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임용된 날부터 임용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2. 해당 연도에 신규로 임용된 경우: 임용된 날부터 임용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전문개정 2010. 1. 1.]

[제3조의3에서 이동 , 종전 제3조의4는 제3조의5로 이동 <2012. 1. 26.>]

**제3조의5(소득 관련 자료의 제출 및 기준소득월액의 통보)** ① 학교기관의 장은 소속 교직원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 관련 자료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 등을 국세청에 신고한 경우에는 소득 관련 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전년도에 1개월 이상 근로소득에 종사한 교직원: 제3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 자료를 매년 5월 말까지 제출
2. 전년도에 1개월 미만 근로소득에 종사한 교직원(휴직자 및 복직자는 제외한다): 해당 연도 예상 근로소득 자료를 해당 연도 5월 말까지 제출
3. 해당 연도에 신규 임용된 교직원: 해당 연도 예상 근로소득 자료를 신규임용 신고 시 제출

② 공단은 교직원 개인별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되면 그 금액과 그에 따른 부담금을 학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1. 1.]

[제3조의4에서 이동 , 종전 제3조의5는 제3조의6로 이동 <2012. 1. 26.>]

**제3조의6(기준소득월액 및 평균기준소득월액의 현재가치로의 환산)** ① 법 제2조제1항제5호 본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은 기준소득월액에 적용기간별로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차례대로 곱하여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법 제2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평균기준소득월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은 평균기준소득월액에 연도별로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차례대로 곱하여 연금의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 4. 29.]

**제3조의7(신고 소득의 확인 등)** ① 공단은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학교기관에서 제출한 소득 관련 자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소득의 축소ㆍ과대 또는 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소득 관련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요청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1. 해당 교직원과 유사한 직종 및 직위 등에 해당하는 다른 교직원의 평균소득보다 뚜렷하게 낮거나 높은 경우
2. 임금대장이나 그 밖에 소득 관련 서류 또는 장부 등의 내용과 다른 경우

② 공단은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제출한 소득 관련 자료가 제1항에 따라 확인한 소득과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확인한 자료를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한다.<개정 2012. 1. 26.>
[본조신설 2010. 1. 1.]
[제3조의6에서 이동 <2012. 1. 26.>]

## 제2장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개정 2010. 1. 1.>

**제4조(설립등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0. 2. 28., 2010. 1. 1.>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그 지부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방법

**제5조(지부의 설치등기)** 공단은 법 제6조에 따라 지부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부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 1. 21.]

**제6조(이전등기)**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 공단은 지부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 1. 21.]

**제7조(변경등기)** 공단은 제4조 각 호 또는 제5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6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 1. 21.]

**제8조(등기신청인)** 공단과 지부의 등기에 있어서는 공단의 이사장이 그 신청인이 된다. 다만, 공단의 설립등기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0. 1. 1.>

**제9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①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단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
1. 정관의 등본
2. 임원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서는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등기기간의 기산)** 법과 이 영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중 교육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공단에 도달한 날로부터 등기의 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1991. 2. 1., 2001. 1. 29., 2008. 2. 29., 2010. 1. 1., 2013. 3. 23.>

**제11조(관할등기소)** ① 공단의 등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 <개정 2025. 1. 21.>
②등기소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등기부를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03. 2. 24., 2010. 1. 1.>

**제12조(준용규정)** 공단의 등기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비송사건절차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이 경우 “ 본점 ”은 “ 주된 사무소 ”로, “ 지점 ”은 “ 지부 ”로 본다. <개정 2005. 6. 30., 2010. 1. 1.>
[전문개정 1996. 2. 2.]

**제13조(영리업무의 범위)** 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상업ㆍ공업ㆍ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2.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체의 이사ㆍ감사ㆍ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기타의 임원이 되는 것
3. 직무에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기타 계속적으로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제13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① 법 제19조제4항제9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란 별표 2 제1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② 공단(법 제20조 및 이 영 제14조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법 제19조제4항제9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상대방은 별표 2 제2호와 같다.
[본조신설 2018. 9. 18.]

**제14조(업무의 위탁)** 공단이 법 제20조에 따라 체신관서,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그 밖의 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려면 위탁하려는 업무의 범위, 처리절차, 위탁수수료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업무를 위탁하려는 자와 협약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18.>
[전문개정 2010. 1. 1.]

**제15조** 삭제 <2000. 2. 28.>

**제16조** 삭제 <2000. 2. 28.>

## 제3장 재직기간의 합산

**제17조** 삭제 <1989. 3. 27.>

**제17조의2(재직기간으로 인정되는 복무기간)** 법 제3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5. 6. 30., 2009. 12. 7., 2010. 1. 1., 2013. 12. 4., 2016. 11. 29., 2018. 9. 18., 2020. 6. 30.>

1. 방위소집 또는 상근예비역소집에 의하여 복무한 기간
2. 보충역 소집에 의하여 사회복무요원 또는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근무한 기간(「병역법 시행령」 제151조에 따라 산정된 기간에 한정한다)
3. 대체역 소집에 의하여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한 기간(「병역법 시행령」 제151조에 따라 산정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본조신설 2000. 12. 30.]

**제17조의3(임용 전 복무기간의 산입절차)** ① 법 제31조의2에 따른 복무기간 산입신청서는 임용 후 퇴직일 전날까지 제출해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복무기간 산입신청서를 받은 경우 복무기간 산입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과 해당 학교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 1. 14.]

**제18조(재직기간의 합산절차)** ①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받으려는 사람은 합산받을 재직기간과 반납하여야 할 급여액과 이자(이하 "반납금"이라 한다)의 납부방법 등을 적은 재직기간 합산 승인신청서를 임용 후 퇴직일 전날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한 교직원이 퇴직급여의 청구 없이 다시 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학교기관의 장이 제89조의2에 따라 공단에 제출하는 교직원 임용신고서에 재직기간 합산 신청의 뜻을 표시함으

로써 재직기간 합산 승인신청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76. 6. 25., 1977. 12. 31., 1981. 6. 23., 1982. 12. 31., 1989. 3. 27., 1996. 2. 2., 2000. 12. 30., 2005. 6. 30., 2007. 1. 24., 2010. 1. 1., 2013. 11. 29., 2018. 9. 18., 2025. 1. 14.>

② 삭제<2013. 11. 29.>

③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합산기간ㆍ반납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 후 재직기간의 합산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 및 해당 학교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0. 1. 1., 2013. 11. 29.>

**제19조(반납금의 납부방법)** ①재직기간의 합산승인을 받은 자의 반납금의 납부는 일시반납의 경우에는 합산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분할반납의 경우에는 합산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보수 수령시에 학교기관의 장에게 납부하거나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업무를 위탁하는 체신관서 등에 그 달의 말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개정 1981. 6. 23., 1982. 12. 31., 2000. 12. 30., 2010. 1. 1.>

② 반납금의 분할납부는 월별로 하되, 분할납부 횟수는 60회 이내에서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원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8. 9. 18.>

③ 삭제<1989. 3. 27.>

④ 재직기간의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납부되지 아니한 반납금이 있으면 공단은 그 미납된 반납금을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 9. 18.>

**제20조(반납금액의 산정)** ①반납금액을 산정할 때 반납하여야 할 급여액에 가산징수할 이자의 계산기간은 그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부터 재직기간 합산 승인신청서가 공단에 접수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달수에 의하되, 연 단위로 그 이자를 급여액에 포함하여 그 후의 이자를 계산한다. 다만,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분할 납부의 경우에 다시 가산할 이자의 계산기간은 재직기간합산을 인정한 달의 다음 달부터 분할 납부가 끝나는 달까지로 하되, 그 분할 납부할 1회의 금액은 분할 납부의 횟수에 따라 원리금을 똑같이 나눈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89. 3. 27., 2000. 12. 30., 2010. 1. 1., 2013. 11. 29., 2019. 7. 2.>

②제1항의 이자율은 이자의 계산기간동안 해당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하 "전국은행"이라 한다)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한다.<개정 1989. 3. 27., 1996. 2. 2., 2000. 12. 30., 2005. 6. 30., 2010. 11. 15.>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하는 경우에 적용할 이자율은 재직기간합산을 승인한 연도의 1월 1일의 이자율을 적용하되, 분할납부중의 이자율과 재직기간의 합산을 승인한 때의 이자율의 차이가 2퍼센트 이상이 되는 때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이자율을 적용하여 반납금을 다시 산정한다. 분할납부중 그 변동된 이자율과 비교하여 다시 2퍼센트 이상 증감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신설 2000. 12. 30.>

④제19조제1항의 납부기한까지 반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의 계산기간은 체납기간(일 단위로 계산한다)으로 하되, 그 이자율은 연체이자의 계산기간 동안 해당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의 2배에 해당하는 금리로 한다.<신설 2000. 12. 30., 2005. 6. 30., 2013. 11. 29.>
[전문개정 82. 12. 31.]

## 제4장 급여

### 제1절 통칙

**제21조(심의대상 급여)** 법 제3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급여를 말한다. <개정 2021. 9. 29.>
1. 법 제33조의2에 따른 간병급여, 보조기구 또는 보조기구 수당
2. 보상준용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급여
   가. 보상준용법 제22조에 따른 요양급여
   나. 보상준용법 제28조에 따른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
   다. 보상준용법 제36조에 따른 직무상유족연금
   라. 보상준용법 제37조에 따른 직무상유족보상금
3. 연금준용법 제59조에 따른 비직무상 장해연금 또는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전문개정 2018. 9. 18.]

**제21조의2(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심의회)** ① 공단에 법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심의회(이하 "급여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급여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5. 1. 14.>
1. 법 제33조의3 및 이 영 제32조의3에 따른 재요양 인정 여부
2. 법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급여의 결정
3. 법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불행사 여부
4. 보상준용법 제44조제3항·제4항 및 연금준용법 제63조제3항·제4항에 따른 급여 제한사유 해당 여부
5. 제32조의7에 따른 요양의 종결 여부
6. 제41조, 제44조 및 제45조(다른 규정에서 장해 상태 등에 관하여 해당 규정에 따르거나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장해 상태의 해당 여부, 장해등급의 결정 및 개정(改定)

③ 급여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급여심의회의 위원장은 공단의 상임이사가 되고, 위원장 외의 위원은 교육부의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교직원·의료업무 및 법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공단의 이사장이 위촉한다.
⑤ 급여심의회의 위원(위원장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교육부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퇴직하거나 전보된 경우에는 임기가 종료되며,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을 새로 위촉한다.

⑥ 공단의 이사장은 급여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급여심의회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급여심의회의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⑦ 급여심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없거나 해당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급여심의회의 회의는 급여심의회의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별로 지명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1명 이하로 구성한다.

⑨ 급여심의회의 회의는 제8항에 따른 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신속한 심의가 필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접속한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공단은 급여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급여심의회 및 그 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이사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8. 9. 18.]

**제22조(기준소득월액의 상한)** ① 법 제35조제1항 후단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연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전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전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으로 한다. <개정 2012. 1. 26.>

1. 교원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를 적용받는 대학 총장의 기준소득월액 중 가장 높은 기준소득월액
2. 사무직원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을 적용받는 일반직 2급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 중 가장 높은 기준소득월액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의 상한 금액을 매년 5월 31일까지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1. 1.]

**제22조의2(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현재가치로의 환산)** 법 제35조제3항제1호 각 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을 연금의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은 제3조의6을 준용한다. <개정 2025. 1. 14.>

[본조신설 2015. 12. 31.]

**제22조의3(연금증서의 교부)** ① 공단은 연금인 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 연금수급자 ”라 한다)에게 연금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연금수급자는 연금증서를 잃어버리거나 연금증서가 훼손된 경우에는 공단으로부터 연금증서를 재교부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훼손을 이유로 재교부 받은 경우에는 훼손된 연금증서를 공단에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9. 18.]

**제22조의4(연금수급자의 주소ㆍ성명 변경신고)** 연금수급자는 주소 또는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주소가 변경된 경우: 주소변경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거나 구두로 신고
2. 성명이 변경된 경우: 성명변경 신고서에 주민등록초본 또는 가족관계 기본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

[본조신설 2018. 9. 18.]

**제22조의5(연금지급일)** 보상준용법 제13조제3항 및 연금준용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연금인 급여의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하며, 연금수급권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일 전에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9. 18.]

**제22조의6(이민 및 국적 상실에 따른 연금청산 청구)** ① 외국으로 이민을 가는 연금수급자가 보상준용법 제15조제1항 또는 연금준용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연금인 급여 대신 일시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연금청산 청구서에 「해외이주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등 이민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14.>

② 국적을 상실한 연금수급자가 보상준용법 제15조제2항 또는 연금준용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연금인 급여 대신 일시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연금청산 청구서에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 등 국적 상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9. 18.]

**제22조의7(연금액 전액 지급정지 대상 기관)** 보상준용법 제32조제1항 및 연금준용법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수급자가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보상준용법 제28조에 따른 장해연금, 연금준용법 제43조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비직무상 장해연금(이하 “ 퇴직연금등 ”이라 한다)이 전액 지급정지 되는 같은 법 제5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관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기관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8. 9. 18.]

**제22조의8(장해연금 등의 지급정지)** ① 퇴직연금등의 수급자(이하 이 조에서 “퇴직연금등수급자”라 한다)는 법,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립학교교직원ㆍ공무원 또는 군인으로 임용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소속 연금취급기관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재임용 신고서 또는 재퇴직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금준용법 제5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소득월액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1만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을 소득이 발생했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개정 2025. 1. 14.>

③ 연금준용법 제5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해당 연도 소득월액이 전년도 공무원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등의 지급을 일부 정지하되, 전년도 공무원 평균연금월액을 적용하여 우선 정지금액을 산정하고 제5항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있은 후에 정산한다.

④ 공단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에 근거하여 해당 연도 퇴직연금등의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퇴직연금등수급자의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퇴직연금등의 지급을 정지한다.

⑤ 공단은 연금준용법 제50조에 따라 퇴직연금등의 지급정지를 한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있은 후에 해당 연도 연금지급정지액을 확정하여 그 정산차액을 다음 달 이후의 퇴직연금등을 지급할 때에 가감한다. 다만, 퇴직연금등수급자가 연금지급정지액 조정신청서에 해당 연도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연금지급정지액의 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있기 전에 연금지급정지액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5. 1. 14.>

⑥ 제5항 본문에 따른 정산차액을 퇴직연금등에서 공제하는 달에 퇴직연금등수급자가 퇴직연금등 외의 소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금월액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정산차액을 공제한다.

⑦ 연금준용법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전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전년도 5월에 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한다.

⑧ 교육부장관은 연금준용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전년도 공무원 평균연금월액을 매년 1월 10일까지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⑨ 보상준용법 제32조제2항 및 연금준용법 제6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란 각각 이 영 제41조 및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8. 9. 18.]

**제22조의9(연금수급자의 신상 조사 등)** ① 공단은 연금인 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신분상의 변동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금수급자의 거주지 또는 등록기준지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상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 의뢰를 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법 제19조제1항·제2항에 따라 수급권의 변경 또는 소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급자 또는 그 가족 등을 대상으로 수급자의 사망·이혼·생계유지 또는 양육책임 이행 여부 등에 관한 조사를 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5. 1. 14.>
④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수급자는 매년 5월 31일을 기준으로 신분변동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재외공관의 장(재외공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국가의 경우에는 그 인접국에 있는 재외공관의 장을 말한다)의 확인을 받아 매년 6월 30일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수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급여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급여의 지급이 중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급여 지급을 중지하기 전에 미리 수급자 또는 그 가족 등에게 알려야 한다.
⑥ 공단은 제5항에 따른 급여의 지급 중지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지급을 재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9. 18.]

**제23조(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지급방법)** ① 공단은 유족 중 다음 각 호의 급여를 받을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고 그 같은 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가 선정되어 모든 사람의 해당 급여 수령이 위임된 경우에는 법 제37조에 따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는 대신 그 대표자에게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1. 보상준용법 제8조제5호에 따른 재해유족급여
2. 연금준용법 제28조제2호에 따른 퇴직유족급여
② 제1항에 따른 위임은 위임하는 사람이 자필 서명한 대표자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위임하는 사람이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2. 위임하는 사람이 미성년인 경우: 그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전문개정 2018. 9. 18.]

**제24조(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지급의 특례)** ① 법 제38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연금인 급여: 사망 당시 원 연금액(교직원등이 연금준용법 제4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퇴직연금 지급연령 도달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조기퇴직연금상당액을 말하고, 연금준용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미달연수 5년을 초과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미달연수 4년 초과 5년 이내에 사망한 것으로 보아 산정한 조기퇴직연금상당액을 말한다)의 3년분에 다음의 비율을 곱한 금액

[36 -(연금준용법 제34조제1항 또는 보상준용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망 시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개월 수)] ÷ 36

2. 그 밖의 급여: 원 급여액 전액. 다만, 보상준용법 제37조에 따른 직무상유족보상금, 연금준용법 제54조·제58조에 따른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및 퇴직유족일시금은 원 급여액의 2분의

1로 한다.

② 공단은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도 없는 경우에 사망한 교직원등이 소속하였던 학교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여 그 사망한 교직원등의 분묘ㆍ제기(祭器)ㆍ기념비 등을 마련하는 데 사용하거나, 기념사업 등의 비용 또는 사망 전의 요양비용에 충당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 9. 18.]

**제24조의2(급여의 지급)** ①급여는 법 제20조 및 이 영 제14조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급여의 지급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개설된 급여수급권자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지급한다. 다만, 법 제40조에 따른 권리의 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이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수급권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급여는 이를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3. 2. 24.]

**제25조(급여의 환수)** ① 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급여액에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할 이자 및 환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급여액에 가산할 이자의 계산기간은 급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환수할 급여액과 이자(이하 "환수금"이라 한다)를 결정하여 고지하는 날까지로 하되, 연 단위로 그 이자를 그 급여액에 산입하여 그 이후의 이자액을 계산한다.

1. 이자: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2. 환수비용: 급여 환수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여비와 그 밖에 환수에 드는 비용으로서 공단이 산정하는 금액

② 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이자는 연체이자의 계산기간 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의 2배에 해당하는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연체이자의 계산기간은 환수금 납부 기한의 다음 날부터 그 환수금을 낸 날까지로 한다.

③ 급여를 받았던 사람이나 학교기관의 장은 법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단에 신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급여의 환수사유를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급여를 받았던 사람에게 환수금 반납고지서를 보내고, 학교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반납고지서를 받은 사람은 반납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내야 한다. 다만, 법 제39조제3호ㆍ제4호의 경우에는 환수금 분할납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매월 분할납부할 수 있다.

1. 반납하여야 할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8회
2. 반납하여야 할 금액이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경우: 16회
3. 반납하여야 할 금액이 2천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인 경우: 32회
4. 반납하여야 할 금액이 4천만원 이상 6천만원 미만인 경우: 48회
5. 반납하여야 할 금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경우: 60회

⑥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 가산하는 이자(법 제39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학교기관의 장 또는 공단의 착오나 누락으로 처음부터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는 제외한다)는 분할납부 기간 동안 내야 할 환수금에 제1항제1호에 따른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회당 분할납부 금액은 분할납부 횟수에 따라 원리금을 똑같이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⑦ 공단은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환수금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사람이 분할납부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분할납부 승인을 취소하고 환수금과 연체이자를 한꺼번에 환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 9. 18.]

**제26조(급여를 받을 권리의 담보)**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이란 제8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8. 9. 18.]

**제27조(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공제액청구)** ①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경영기관이 공단이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학교경영기관이 교직원에게 지급한 급여의 급여사유ㆍ지급받은 교직원의 인적사항 및 지급액을 기재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

②공단이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공제액을 지체없이 학교경영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0. 1. 1.>

**제27조의2(연금 조정을 위한 수급자 여부의 확인)** ① 공단은 보상준용법 제20조제6항 또는 연금준용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조정을 위하여 유족에게 지급할 급여의 수급권자가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의 수급자인지 여부의 확인을 공무원연금공단, 국방부장관 또는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에 의뢰할 수 있다.

② 공무원연금공단, 국방부장관 또는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은 제1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경우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8. 9. 18.]

**제28조(제3자의 손해배상과의 조정)** ① 교직원이 제3자의 가해행위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장해 상태가 되거나, 사망(이하 이 조에서 “ 부상등 ” 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 요양을 담당한 요양기관은 지체 없이 소속 학교기관의 장에게 제3자의 가해행위로 부상등을 당했다는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1. 9. 29.>

1. 법 제33조의2에 따른 간병급여, 보조기구 및 보조기구 수당
2. 보상준용법 제8조에 따른 직무상 요양급여, 재활급여, 장해급여 및 직무상유족보상금
3. 연금준용법 제28조제3호에 따른 비직무상 장해급여

② 학교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그 가해 경위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보내야 한다.

③ 수급권자가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청구 당시 가해행위를 한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지 아니하여 해당 급여를 받은 후 그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에는 즉시 공단에 신고하고 손해배상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9. 18.]

**제28조의2(급여의 종류 및 지급시기의 변경)**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려는 사람은 급여 지급이 시작되기 전 또는 급여 지급일(연금인 급여의 경우에는 최초 지급일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의 종류 변경
   가. 보상준용법 제8조제3호에 따른 장해급여
   나. 보상준용법 제8조제5호에 따른 재해유족급여
   다. 연금준용법 제28조제1호에 따른 퇴직급여
   라. 연금준용법 제28조제2호에 따른 퇴직유족급여
2. 연금준용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시기 변경

② 제1항의 신청에 따른 변경이 있는 경우 이미 받은 급여는 급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반납일까지의 일수에 따른 이자(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한다)를 가산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연금준용법 제28조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급여의 종류가 변경되거나 같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시기가 변경된 경우에는 연금준용법 제45조에 따라 분할연금을 청구한 사람,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분할연금을 선청구한 사람 또는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퇴직연금일시금 등을 분할 청구한 사람도 동일하게 급여의 종류 또는 지급시기를 변경 신청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8. 9. 18.]

## 제2절 보상준용법에 따른 급여 등 <개정 2018. 9. 18.>

### 제1관 직무상 요양급여 <개정 2018. 9. 18.>

**제29조(직무상 요양급여)** ① 공단은 교직원등이 직무상 재해를 입어 요양(법 제33조의3에 따라 재요양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준용법 제22조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직무상요양급여"라 한다)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서 "직무상 재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직무와 부상ㆍ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직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1. 직무상 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이하 "직무상 사고"라 한다)로 인한 부상
   가. 직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다. 그 밖에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직무상 질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학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나. 직무수행과정에서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직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③ 직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교직원등에게 그 직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추가로 발견된 부상이나 질병은 직무상 재해로 본다.

④ 직무상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과정에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주된 원인이 되어 합병증이 유발된 경우 그 합병증은 직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합병증이 기초 질환이나 체질적 원인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유발되었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직무상 질병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직원등이 자해행위로 직무상 재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직무상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자해행위가 직무와 관련한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무상요양급여를 지급한다.<개정 2025. 1. 14.>

1. 직무수행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요양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교직원등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2.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인 교직원등이 그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을 한 경우
3. 그 밖에 직무수행 또는 직무와 관련한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⑥ 직무상 질병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직원등의 업무 특성, 성별, 나이, 체질, 평소의 건강상태, 기존의 질병 유무, 병가, 휴직 및 퇴직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9. 18.]

**제29조의2(요양 등의 자문)** 공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료계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1. 직무상요양급여의 적정성
2. 제30조에 따른 요양기간 결정 및 제31조에 따른 요양기간 연장 결정의 적정성
3. 보상준용법 제26조ㆍ제27조에 따른 재활급여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장해급여의 적정성
4. 법 제33조의2에 따른 간병급여의 적정성
5. 그 밖에 공단이 요양 및 재요양 등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의료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8. 9. 18.]

**제30조(직무상요양 승인)** ① 교직원등이 요양기관에서 직무상요양급여를 받는 요양(직무상요양급여를 받는 재요양을 포함하며, 이하 “ 직무상요양 ” 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해당 교직원등은 직무상요양 승인신청서에 요양기간을 명확하게 적은 진단서(요양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소속 학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상 또는 질병에 긴급한 처치가 필요하여 미리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요양을 시작한 후 지체 없이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학교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 그 부상 또는 질병의 경위를 조사한 후 7일 이내에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보내야 한다.

1. 건강진단 결과통보서 사본
2. 부상ㆍ질병 경위조사서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 등을 받은 경우 직무상요양의 승인 여부 및 그 요양기간을 결정하여 그 결정서를 신청인, 학교기관의 장과 법 제20조 및 이 영 제14조에 따라 직무상요양급여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2018. 9. 18.]

**제30조의2** 삭제 <2018. 9. 18.>

**제31조(직무상요양기간의 연장)** ① 교직원등이 제30조제3항에 따른 직무상요양기간을 초과하여 요양하려 하거나 보상준용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실제요양기간 3년을 초과하여 직무상요양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직무상요양기간 연장승인 신청서에 진단서(요양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필요한 직무상요양의 내용, 직무상요양기간 연장 필요 여부 및 필요한 직무상요양기간에 관한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직무상요양기간 연장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직무상요양기간 연장 승인 여부와 직무상요양기간(연장 결정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결정하여 그 결정서를 신청인과 법 제20조 및 이 영 제14조에 따라 직무상요양급여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2018. 9. 18.]

**제32조(직무상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① 요양기관이 직무상요양을 실시한 경우에는 진료비청구서에 그 명세서를 첨부하여 보상준용법 제25조에 따라 산정한 직무상요양급여비용을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 법 제20조 및 이 영 제14조에 따라 직무상요양급여 관련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② 공단 또는 법 제20조에 따라 직무상요양급여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직무상요양급여비용 청구를 받은 경우 청구 내용을 심사하여 그 비용을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상요양급여비용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 보상준용법 제25조제1호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라 본인이 요양기관에 납부한 본인일부부담금
2. 보상준용법 제25조제2호ㆍ제3호 및 이 영 제32조의2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직무상요양급여비용을 직접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직무상요양급여비용 청구서에 명세서, 영수증 및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④ 법 제20조에 따라 직무상요양급여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직무상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급여비용 청구서에 그 명세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은 1개월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교직원등이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것이 명백하여 긴급하게 직무상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른 직무상요양 승인 전이라도 요양기관에 직무상요양급여비용의 지급 의사와 지급 범위를 알리는 등 직무상요양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 9. 18.]

**제32조의2(직무상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보상준용법 제25조제3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양급여비용 ” 이란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비용을 말한다.

1. 보상준용법 제25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요양으로는 정상적인 치료가 곤란하거나 치료 후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곤란하여 별도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로서 그에 필요한 약제(藥劑)ㆍ진료ㆍ처치(성형수술을 포함한다)ㆍ기구ㆍ재활치료 등에 드는 비용으로서 공단이 정하는 요양급여비용
2. 보상준용법 제25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수가(酬價)를 초과하는 비용 중 공단이 정하는 요양급여비용

[전문개정 2018. 9. 18.]

**제32조의3(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① 직무상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공단에 법 제33조의3에 따른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보상준용법 제28조에

따라 장해일시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일부터 5년까지 재요양을 신청할 수 없다.

1. 치유된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것
2.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상태에 대하여 수술(내고정술로 삽입된 금속핀 등 내고정물의 제거 수술과 의수·의족 장착을 위한 절단 부위의 재수술을 포함한다)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의학적인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② 교직원등이 제1항에 따라 재요양을 받으려면 직무상 재요양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진단서(요양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필요한 재요양 내용 및 필요한 요양기간에 관한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2. 요양 관련 의무기록 사본
3. 그 밖에 재요양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의무기록 사본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재요양 신청을 받은 경우 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요양 승인 여부와 재요양기간(재요양 승인 결정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결정하여 그 결정서를 신청인과 법 제20조 및 이 영 제14조에 따라 직무상요양급여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보내야 한다.

④ 공단은 재요양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단이 지정하는 요양기관에서 진찰을 받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진단에 드는 비용은 공단에서 부담한다.

⑤ 재요양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31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8. 9. 18.]

**제32조의4(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의 요양)** ① 교직원등이 긴급한 필요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 요양(재요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은 경우에는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직무상요양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교직원등은 제1항에 따라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받는 경우 그 요양을 시작하면 지체 없이 제30조에 따른 직무상요양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받지 못하는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9. 18.]

**제32조의5(요양기관의 변경)** 요양 중인 사람이 요양기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요양기관에 제30조제3항에 따른 직무상요양 승인결정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9. 18.]

**제32조의6** 삭제 <2018. 9. 18.>

**제32조의7(요양의 종결)** ① 공단은 직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 중인 사람의 부상·질병에 대하여 계속 치료를 하더라도 의학적인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요양을 종결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요양을 종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교직원등에게 미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8. 9. 18.]

### 제2관 간병급여 · 보조기구 및 보조기구 수당 <개정 2021. 9. 29.>

**제33조(간병급여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 ① 법 제33조의2에 따른 간병급여의 지급요건은 별표 4와 같다.
② 간병급여는 제1항에 따른 간병급여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실제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③ 간병급여의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9조제3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④ 간병급여 수급권자가 법 제33조의3에 따라 재요양을 받는 경우 그 재요양 기간 중에는 간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간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간병급여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간병 실시 및 비용에 관한 증빙 서류
2. 제1항에 따른 간병급여 지급요건에 해당되어 간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3.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장해진단서. 다만, 공단이 제출을 면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⑥ 공단은 제5항에 따라 간병급여의 청구를 받으면 이를 심사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8. 9. 18.]

**제34조(보조기구 또는 보조기구 수당의 지급 기준)** ① 법 제33조의2에 따른 보조기구의 지급 대상 및 지급 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산정기준에 따라 정해지는 재활보조기구 및 틀니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 7. 2., 2021. 9. 29.>
② 보조기구 또는 보조기구 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은 보조기구 또는 보조기구 수당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1. 9. 29.>
1. 보조기구 비용에 관한 증명 서류
2. 제1항에 따른 보조기구 지급 대상 및 지급 기준에 해당되어 보조기구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보조기구 또는 보조기구 수당의 청구를 받으면 이를 심사하여 지급한다.<개정 2021. 9. 29.>
[본조신설 2018. 9. 18.]
[제목개정 2021. 9. 29.]

**제35조** 삭제 <1979. 2. 10.>

**제36조** 삭제 <1979. 2. 10.>

**제37조** 삭제 <1979. 2. 10.>

### 제3관 재활급여 <개정 2018. 9. 18.>

**제38조** 삭제 <1980. 2. 4.>

**제39조(재활운동비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 ① 보상준용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를 말한다. <개정 2025. 1. 14.>

1. 팔 또는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 이상의 기능장해
2. 척추의 변형, 기능장해 또는 신경장해
3. 팔 또는 다리의 근육이나 신경의 장해(뇌 또는 척수손상으로 팔 또는 다리에 장해가 발생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별표 5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2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

② 보상준용법 제26조에 따라 재활운동비를 받으려는 교직원등은 재활운동기관(스포츠활동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 한정한다)에서 재활운동을 한 후 재활운동비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활운동 실시 및 비용에 관한 증명서류
2. 제1항의 장해에 해당되어 재활운동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재활운동비를 청구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지급한다. 다만, 재활운동이 보상준용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양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요양에 대하여 직무상요양급여비용과 재활운동비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보상준용법 제26조에 따른 재활운동비의 지급 대상기간은 해당 교직원등이 재활운동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대규모 감염병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재활운동을 하지 못한 기간은 지급 대상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개정 2025. 1. 14.>

[전문개정 2018. 9. 18.]

**제40조(심리상담비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 ① 직무상요양 중인 교직원등이 보상준용법 제27조에 따른 심리상담을 받으려면 미리 심리상담 승인신청서에 심리검사지, 요양 관련 의무기록 사본 등을 첨부한 후 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리상담 승인을 받은 사람은 보상준용법 제27조에 따른 심리상담비를 받으려면 심리상담기관(심리상담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 한정한다)에서 심리상담을 받은 후 심리상담비 청구서에 심리상담 실시 및 비용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심리상담비를 청구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지급한다. 다만, 심리상담이 보상준용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양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요양에 대하여 직무상요양급여비용과 심리상담비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보상준용법 제27조에 따른 심리상담비의 지급 대상기간은 제1항에 따라 심리상담 승인을 받은 사람이 심리상담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대규모 감염병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심리상담을 하지 못한 기간은 지급 대상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5. 1. 14.>

⑤ 심리상담은 제1항에 따라 승인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작해야 하며, 1개월 이내에 시작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인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된 날을 심리상담을 시작한 날로 본다.<신설 2025. 1. 14.>

[전문개정 2018. 9. 18.]

## 제4관 장해급여 <신설 2018. 9. 18.>

**제41조(장해등급의 결정)** ① 보상준용법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이란 별표 5에서 정하는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이하 "장해등급"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별표 5에서 정하지 않은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

③ 보상준용법 제31조에 따라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가장 중(重)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2급부터 제13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장해 2개에 대하여 별표 5에 따른 각각의 부위별 장해등급을 정한 후 별표 6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장해등급을 결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해등급 결정을 위한 세부 판정기준은 공단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5. 1. 14.]

**제42조(장해급여의 청구)** ① 보상준용법 제28조에 따라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장해급여 청구서에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장해진단서를 첨부하여 소속 학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교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장해급여 청구서 등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장해경위를 조사·확인한 후 그 청구서 등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보내야 한다.

1. 건강진단 결과통보서 사본
2. 장해경위 조사서

[본조신설 2018. 9. 18.]

**제43조(장해연금의 수급권 상실신고)** 보상준용법 제28조에 따른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하 "장해연금 수급권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사망신고의무자는 사망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9. 18.]

**제44조(청구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① 장해연금 수급권자는 장해의 정도가 악화되거나 호전되었을 때에는 보상준용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장해등급 재판정 청구서에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장해진단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장해등급 재판정 청구서 등을 받은 경우 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 결정서를 청구인에게 보내야 한다.

1. 장해등급을 다시 정할지 여부
2. 장해등급을 다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장해등급

③ 공단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해연금 수급권자에게 공단이 지정하는 요양기관에서 진단을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진단에 드는 비용은 공단에서 부담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다시 정한 장해등급은 제1항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장해진단서상 진단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8. 9. 18.]

**제45조(직권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연금 수급권자(장해연금 수급권자의 장해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장해의 등급이 변경되더라도 그 외의 장해의 등급이 제1급으로서 최종의 장해등급은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장해연금의 지급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장해등급 재판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해등급 재판정은 1회만 한다. <개정 2025. 1. 14.>

1. 장해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장해 중 별표 5에 따른 제1급제3호, 제2급제3호, 제3급제3호, 제5급제2호, 제7급제4호, 제9급제10호 또는 제12급제15호에 해당하는 장해가 하나 이상 있는 경우
2. 장해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장해 중 별표 5에 따른 제6급제5호, 제7급제14호, 제8급제2호, 제9급제17호, 제10급제14호, 제11급제12호 또는 제12급제16호에 해당하는 장해(척추 신경근장해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된 경우만 해당한다)가 하나 이상 있는 경우
3. 장해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장해 중 별표 5에 따른 제1급제6호·제8호, 제4급제6호, 제5급제6호·제7호, 제6급제6호·제7호, 제7급제7호·제11호, 제8급제4호·제6호·제7호, 제9급제13호·제15호, 제10급제9호·제12호·제13호, 제11급제9호·제10호, 제12급제9호·제10호·제12호·제14호 또는 제13급제8호·제11호에 해당하는 장해(신체 관절의 운동기능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된 경우만 해당한다)가 하나 이상 있는 경우
4. 장해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장해 중 별표 5에 따른 장해등급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장해가 하나 이상 있는 경우

② 공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자가 재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재요양 후 치유된 날(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장해연금의 지급 결정을 한 날)을 기준

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장해등급 재판정을 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장해등급의 재판정을 하려면 해당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자에게 공단이 지정하는 요양기관에서 진단을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단에 드는 비용은 공단에서 부담한다.

④ 공단은 제3항 전단에 따라 진단을 받게 하려는 경우 재판정 시작일, 진단 기한, 진단이 가능한 요양기관 및 그 밖에 재판정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3항 전단에 따라 진단을 받은 사람은 그 진단을 한 요양기관이 발행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장해진단서를 재판정 시작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 14.>

⑥ 공단은 제5항에 따라 장해진단서를 받은 경우 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 결정서를 해당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자에게 보내야 한다.

1. 장해등급을 다시 정할지 여부
2. 장해등급을 다시 정하는 경우 그 장해등급

⑦ 제6항에 따라 다시 정한 장해등급은 제3항에 따라 진단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8. 9. 18.]

**제46조(장해연금 수급권자의 장해 상태)** 보상준용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란 이 영 제41조 및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8. 9. 18.]

**제46조의2(장해 상태 확인을 위한 진단 요구 등)** ① 공단은 보상준용법 제30조제1항·제2항에 따라 이 영에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에 해당하는지와 장해 정도의 악화 또는 호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대상자에게 공단이 지정하는 요양기관에서 진단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1. 14.>

② 제1항에 따라 진단 요구를 한 경우의 진단 절차와 진단 결과에 따른 장해등급의 재판정 등에 관하여는 제4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5. 1. 14.>

[본조신설 2018. 9. 18.]

**제46조의3(행방불명된 사람의 장해급여 지급)** ① 보상준용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장해급여를 받으려는 상속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족의 범위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될 사람은 장해급여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상속인이 될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될 사람 중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될 사람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1년 이상 행방불명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확인하는 서류를 말한다)

② 보상준용법 제33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각각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말한다.

③ 보상준용법 제33조제4항 후단에 따라 급여액의 차액과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으려는 사람은 장해연금 급여차액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9. 18.]

### 제4관의2 재해유족급여 <신설 2018. 9. 18.>

**제46조의4(장해유족연금의 청구)** 보상준용법 제35조에 따라 장해유족연금(이하 “장해유족연금”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사람은 장해유족연금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해연금 수급권자의 사망 사실 및 그 사망자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같은 순위의 유족 중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23조에 따른 유족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본조신설 2018. 9. 18.]

**제46조의5(직무상유족연금 등의 청구)** ① 보상준용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직무상유족연금ㆍ직무상유족보상금(이하 “직무상유족급여”라 한다)을 받으려는 사람은 직무상유족급여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직원등이 소속하였던 학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직원등의 사망 사실 및 그 사망자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같은 순위의 유족 중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23조에 따른 유족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학교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사망경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그 청구서에 사망경위 조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보내야 한다.

[본조신설 2018. 9. 18.]

**제46조의6(장해유족연금 등의 수급권 상실신고)** 보상준용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장해유족연금 또는 직무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장해유족연금 또는 직무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사망신고의무자
2. 재혼하였거나 사망한 교직원이었던 사람과의 친족관계가 종료된 경우: 본인

3. 자녀 또는 손자녀가 19세가 된 경우: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었던 사람
4. 장해 상태에 있던 19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의 장해 상태가 해소된 경우: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거나 법정대리인이었던 사람

[본조신설 2018. 9. 18.]

**제46조의7(장해유족연금 등의 수급권 이전신청)** 장해유족연금 또는 직무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그 권리를 상실하거나 1년 이상 행방불명되어 보상준용법 제40조제2항 또는 같은 법 제41조에 따라 같은 순위 또는 다음 순위의 유족이 장해유족연금 또는 직무상유족연금을 받으려는 경우 해당 유족은 장해유족연금ㆍ직무상유족연금 수급권 이전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14.>

1. 장해연금 수급권자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직무상사망교직원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같은 순위의 유족 중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23조에 따른 유족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보상준용법 제40조제2항의 사유로 인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1) 사망, 재혼 또는 사망한 교직원이었던 사람과의 친족관계 종료, 장해 상태에 있지 아니한 자녀 또는 손자녀가 19세가 된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2) 장해 상태에 있던 19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의 장해 상태가 해소된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등 장애 정도를 증명하는 서류나 같은 법 제32조의3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나. 보상준용법 제41조의 사유로 인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장해연금 수급권자가 1년 이상 행방불명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

[본조신설 2018. 9. 18.]

## 제5관 부조급여 <개정 2018. 9. 18.>

**제47조(재난부조금)** ① 보상준용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범위는 화재, 홍수, 호우, 폭설, 폭풍, 해일과 이에 준하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현상으로 인하여 교직원 또는 그 배우자 소유의 주택(공동주택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교직원이 상시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교직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이 입은 피해로 한다.

② 보상준용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 정도별 부조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이 완전히 소실ㆍ유실되거나 파괴된 경우: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3.9배

2. 주택의 2분의 1 이상이 소실ㆍ유실되거나 파괴된 경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6배
3. 주택의 3분의 1 이상이 소실ㆍ유실되거나 파괴된 경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3배

③ 보상준용법 제42조에 따라 재난부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재난부조금 청구서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피해상황 확인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하며, 청구인이 제1호에 따른 정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해야 한다.<개정 2020. 5. 12.>

1. 주민등록표 등본
2. 건축물대장 등본

[전문개정 2018. 9. 18.]

**제47조의2(사망조위금)** ① 보상준용법 제4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명의 교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교직원 중 앞선 순위자를 말한다.

1.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인 교직원
2. 사망한 사람의 최근친(最近親) 직계비속인 교직원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3. 사망한 사람의 최근친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교직원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4. 사망한 사람의 부모인 교직원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② 보상준용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사망한 교직원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장례를 치르고 제사를 모시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사람 중 앞선 순위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 다만, 장례를 치르고 제사를 모시는 사람 중 사망한 교직원의 직계비속인 교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그 직계비속인 교직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

1. 사망한 교직원의 최근친 직계비속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2. 사망한 교직원의 최근친 직계존속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3. 사망한 교직원의 형제자매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③ 보상준용법 제43조에 따라 사망조위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사망조위금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보상준용법 제4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부양하던 교직원에게 지급하려는 경우에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해야 한다.<개정 2020. 5. 12.>

1. 보상준용법 제43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교직원의 배우자 등의 사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에 따른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전문개정 2018. 9. 18.]

### 제3절 연금준용법에 따른 급여 등 <개정 2018. 9. 18.>

#### 제1관 삭제 <2018. 9. 18.>

**제48조** 삭제 <2018. 9. 18.>

**제49조** 삭제 <2018. 9. 18.>

**제50조** 삭제 <2018. 9. 18.>

**제50조의2** 삭제 <2005. 6. 30.>

**제50조의3** 삭제 <2018. 9. 18.>

**제50조의4** 삭제 <2018. 9. 18.>

**제50조의5** 삭제 <2018. 9. 18.>

**제51조** 삭제 <2018. 9. 18.>

**제51조의2** 삭제 <2018. 9. 18.>

**제52조** 삭제 <2018. 9. 18.>

**제52조의2** 삭제 <2018. 9. 18.>

#### 제2관 퇴직급여 및 퇴직유족급여 <개정 2018. 9. 18.>

**제52조의3(직제와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인한 퇴직의 확인)** ① 학교기관의 장은 연금준용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소속 교직원이 직제와 정원의 개정ㆍ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생겨 퇴직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정원 및 현원(現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교직원의 퇴직이 연금준용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확인서를 학교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본조신설 2018. 9. 18.]

[제목개정 2019. 7. 2.]

**제52조의4(퇴직연금 수급을 위한 장해 상태)** 연금준용법 제43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제4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 상태"란 각각 이 영 제41조 및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8. 9. 18.]

**제52조의5(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의 수급권 상실 신고)** 연금준용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의 수급자 및 같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사망신고의무자는 사망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9. 18.]

**제52조의6(실질적인 혼인기간의 인정 기준)** ① 연금준용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실질적인 혼인기간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혼인기간에서 제외한다.
1. 「민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종기간
2.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이혼 당사자 간에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합의한 기간
2.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인정된 기간
③ 연금준용법 제28조제1호에 따른 퇴직급여의 수급권자,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의 수급권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분할 청구자는 이 조 제1항ㆍ제2항에 따른 기간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8. 9. 18.]

**제52조의7(분할연금의 청구 절차 등)** ① 연금준용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분할연금을 청구(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분할을 청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같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하려는 사람은 분할연금 등 청구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분할연금 등 청구서와 함께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혼인관계증명서 1부
3.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각 1부
② 연금준용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③ 연금준용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분할연금 선청구를 취소하려는 사람은 분할연금 선청구 취소신청서에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9. 18.]

**제53조(퇴직급여 청구)** ① 연금준용법 제43조ㆍ제51조에 따라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ㆍ퇴직연금일시금ㆍ퇴직연금공제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퇴직급여 청구서

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5. 1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직기간이 짧거나 금액이 적은 경우로서 공단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퇴직일시금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퇴직급여청구서 제출을 하지 않고 전화로 퇴직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본인 확인과 청구사실 확인 등을 위하여 녹취 등의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신설 2025. 1. 14.>

③ 연금준용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직제와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 등의 사유로 퇴직하고 퇴직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 조 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청구서에 이 영 제52조의3제2항에 따른 공단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2.>

④ 연금준용법 제43조제1항제5호 및 이 영 제52조의4에 따른 장해 상태에 해당하여 퇴직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 조 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 청구서에 요양기관이 발행한 장해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장해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9. 18.]

**제53조의2(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 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 「교육공무원법」 제47조에 따라 교육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정년
2. 사무직원: 「국가공무원법」 제74조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정년

[전문개정 2018. 9. 18.]

**제53조의3** 삭제 <2018. 9. 18.>

**제53조의4** 삭제 <2018. 9. 18.>

**제54조(퇴직급여 등의 산정 및 지급의 특례)** 공단은 퇴직한 교직원ㆍ공무원 또는 퇴역한 군인이었다가 다시 교직원으로 임용되어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은 사람이 퇴직 또는 사망하여 퇴직연금일시금ㆍ퇴직일시금ㆍ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합산된 재직기간을 기초로 산정한 급여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 급여액으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1.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반납금액 및 그에 대한 이자(반납금을 납부한 후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말한다)
2. 다시 교직원으로 임용되어 재직한 기간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연금일시금ㆍ퇴직일시금ㆍ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

[전문개정 2018. 9. 18.]

**제54조의2(행방불명된 사람의 퇴직급여 지급)** ①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상속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족의 범위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될 사람이 연금준용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퇴직급여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상속인이 될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될 사람 중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될 사람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1년 이상 행방불명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확인하는 서류를 말한다)

② 연금준용법 제52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각각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말한다.

③ 연금준용법 제52조제4항 후단에 따라 급여액의 차액과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으려는 사람은 퇴직급여 급여차액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9. 18.]

**제54조의3(퇴직유족연금ㆍ퇴직유족연금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일시금ㆍ퇴직유족일시금의 청구)** ① 연금준용법 제54조ㆍ제55조ㆍ제58조에 따라 퇴직유족연금ㆍ퇴직유족연금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퇴직유족급여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5. 12.>

1.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사망 사실 및 그 사망자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같은 순위의 유족 중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23조에 따른 유족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연금준용법 제4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역연금ㆍ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삭제<2020. 5. 12.>

[본조신설 2018. 9. 18.]

**제54조의4(퇴직유족연금 수급권의 이전신청)**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가 1년 이상 행방불명되거나 그 수급권이 상실되어 연금준용법 제56조 또는 같은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같은 순위 또는 다음 순위의 유족이 퇴직유족연금을 받으려는 경우 해당 유족은 퇴직유족연금 수급권 이전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14.>

1.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같은 순위의 유족 중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23조에 따른 유족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연금준용법 제56조의 사유로 인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가 1년 이상 행방불명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

나. 연금준용법 제57조제2항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1) 사망, 재혼 또는 사망한 교직원이었던 사람과의 친족관계 종료, 장해 상태에 있지 아니한 자녀 또는 손자녀가 19세가 된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2) 장해 상태에 있던 19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의 장해 상태가 해소된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등 장애 정도를 증명하는 서류나 같은 법 제32조의3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본조신설 2018. 9. 18.]

**제54조의5(퇴직유족연금 수급권의 상실신고)** 연금준용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퇴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1. 퇴직유족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사망신고의무자
2. 재혼하였거나 그 밖에 친족관계가 종료된 경우: 본인
3. 자녀 또는 손자녀가 19세가 된 경우: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었던 사람
4. 장해 상태에 있던 19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의 장해 상태가 해소된 경우: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거나 법정대리인이었던 사람

[본조신설 2018. 9. 18.]

### 제3관 비직무상 장해급여 <개정 2018. 9. 18.>

**제55조(비직무상 장해급여의 청구)** 연금준용법 제59조에 따라 비직무상 장해연금 또는 비직무상 장해일시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장해급여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요양기관이 발행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장해진단서
2. 장해경위서

[전문개정 2018. 9. 18.]

**제56조(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의 결정 등)** 연금준용법 제59조에 따른 비직무상 장해급여를 받을 사람의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의 결정ㆍ개정, 연금수급권 유지를 위한 장해 상태 및 진단 요구 등에 관하여는 제41조,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별표 5 및 별표 6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8. 9. 18.]

**제57조(비직무상 장해연금의 수급권 상실 신고)** 연금준용법 제59조에 따른 비직무상 장해연금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사망신고의무자는 사망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9. 18.]

### 제4관 삭제 <2018. 9. 18.>

**제58조** 삭제 <2018. 9. 18.>

**제59조** 삭제 <2018. 9. 18.>

**제60조** 삭제 <2018. 9. 18.>

**제60조의2** 삭제 <2018. 9. 18.>

**제61조** 삭제 <2018. 9. 18.>

**제62조** 삭제 <1989. 3. 27.>

**제63조** 삭제 <2018. 9. 18.>

### 제5관 퇴직수당

**제63조의2(퇴직수당의 청구)** ① 연금준용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퇴직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은 퇴직수당 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5. 1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직기간이 짧거나 금액이 적은 경우로서 공단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퇴직수당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퇴직수당 청구서 제출을 하지 않고 전화로 퇴직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본인 확인과 청구사실 확인 등을 위하여 녹취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신설 2025. 1. 14.>

[전문개정 2018. 9. 18.]

**제63조의3(퇴직수당)** ① 연금준용법 제62조제2항 계산식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 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6.5퍼센트
2.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22.75퍼센트
3.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 29.25퍼센트
4. 재직기간이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32.5퍼센트
5.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39퍼센트

② 연금준용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퇴직수당을 계산하는 경우 재직기간은 3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8. 9. 18.]

### 제4절 급여의 제한

**제64조(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의 감액)** 교직원등이 보상준용법 제44조제3항 또는 연금준용법 제63조제3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상준용법 제8조에 따른 급여 중 장해급여, 직무상유족급여 또는 연금준용법 제59조에 따른 비직무상 장해급여는 급여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한다. 이 경우 연금인 급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5. 1. 14.>

[전문개정 2018. 9. 18.]

**제64조의2(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퇴직유족급여 및 재해유족급여의 감액)** ① 보상준용법 제44조제4항 또는 연금준용법 제63조제4항에 따라 교직원등에 대한 양육책임 불이행을 판단할 때에는 별표 7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② 보상준용법 제44조제4항 또는 연금준용법 제63조제4항에 따라 교직원등에 대한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하 이 조에서 "급여제한심의대상자"라 한다)에 대해 급여의 제한을 신청하려는 교직원등의 유족은 급여제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1. 교직원등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같은 순위의 유족 중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유족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급여제한심의대상자의 양육책임 불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급여제한심의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급여제한심의대상자로부터 양육책임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확인·조사해야 한다.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조사한 경우 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급여의 제한 여부와 감액비율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과 급여제한심의대상자에게 보내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급여제한심의대상자가 보상준용법 제44조제4항 또는 연금준용법 제63조제4항에 따라 재해유족급여 또는 퇴직유족급여 중 어느 하나의 급여 제한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나머지 급여의 제한 여부와 감액비율을 결정할 수 있다.

⑥ 공단은 제4항 및 제5항의 결정에 따라 급여제한심의대상자에게 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급여제한심의대상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급여의 감액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급여제한심의대상자와 같은 순위자인 유족이 있는 경우: 같은 순위자인 유족이 한 명인 경우에는 해당 유족에게 전액 지급하고, 같은 순위자인 유족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똑같이 나누어 지급
2. 급여제한심의대상자와 같은 순위자인 유족이 없는 경우

가. 급여가 전부 감액된 경우: 다음 순위자인 유족이 한 명인 경우에는 해당 유족에게 전액 지급하고, 다음 순위자인 유족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똑같이 나누어 지급
나. 급여가 일부 감액된 경우: 미지급
[본조신설 2025. 1. 14.]

**제65조(진단 불응 시의 급여의 감액)** 보상준용법 제45조 또는 연금준용법 제64조에 따라 교직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단 또는 학교기관의 장이 급여의 지급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진단을 진단 기한 내에 받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보상준용법 제8조에 따른 급여 중 요양급여, 장해급여, 직무상유족급여 또는 연금준용법 제59조에 따른 비직무상 장해급여는 급여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한다. 이 경우 연금인 급여는 그 진단 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5. 1. 14.>
[전문개정 2018. 9. 18.]

**제66조(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① 교직원등이 연금준용법 제6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금준용법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감액한 후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은 그 감액사유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감액하지 아니한다.
1. 연금준용법 제65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의 퇴직급여: 4분의 1
나.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의 퇴직급여: 2분의 1
다. 퇴직수당: 2분의 1
2. 연금준용법 제6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의 퇴직급여: 8분의 1
나.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의 퇴직급여: 4분의 1
다. 퇴직수당: 4분의 1
② 연금준용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감액된 금액에 대하여 가산하여 지급할 이자는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하되,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줄여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감액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단위로 그 이자를 감액된 금액에 산입하여 그 후의 이자액을 계산한다.
③ 연금준용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감액된 금액을 받으려는 사람은 감액 퇴직급여 청구서 또는 감액 퇴직수당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금준용법 제6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 또는 형사재판확정 증명서
2. 연금준용법 제65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한 파면ㆍ해임 처분이 법원 등의 판결이나 결정으로 무효ㆍ취소 또는 변경이 된 경우의 판결문 사본 또

는 의결서 사본

3. 그 밖에 급여의 감액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④ 연금준용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교직원등에 대하여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의 이행 중에 발생한 과실의 경우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의 퇴직일시금은 그 급여액의 4분의 3만을 우선 지급하고, 퇴직수당과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의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은 그 급여액의 2분의 1만을 우선 지급한다.<개정 2020. 12. 29.>

1. 삭제<2020. 12. 29.>

2. 삭제<2020. 12. 29.>

3. 삭제<2020. 12. 29.>

⑤ 연금준용법 제65조제3항 후단에 따라 남은 금액에 가산할 이자는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하되,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남은 금액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단위로 그 이자를 그 남은 금액에 산입하여 그 후의 이자액을 계산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우선지급되고 남은 금액은 연금준용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지급이 정지된 교직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 지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다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남은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신설 2020. 12. 29.>

1.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았을 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았을 때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판결을 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났을 때

⑦ 제6항 본문에 따라 그 남은 금액을 받으려는 사람은 남은 퇴직급여 청구서 또는 남은 퇴직수당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0. 7. 14., 2020. 12. 29.>

1. 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발행한 불송치 결정서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이 발행한 불기소 결정서

2. 제6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이 발행한 형사재판확정 증명서

⑧ 학교기관의 장은 소속 교직원 또는 소속 교직원이었던 사람이 연금준용법 제65조에 해당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29.>

[전문개정 2018. 9. 18.]

**제67조** 삭제 <2000. 12. 30.>

**제68조** 삭제 <2010. 1. 1.>

## 제5장 비용부담

**제68조의2(국가부담금 및 법인부담금의 금액)** ① 삭제 <2010. 1. 1.>

②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교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 합계액의 9천분의 3,706을 말한다.<개정 2008. 2. 5., 2010. 1. 1., 2015. 12. 31.>

③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법인부담금의 금액은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해당 학교 교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 합계액의 9천분의 5,294로 한다.<개정 1998. 12. 31., 2000. 12. 30., 2010. 1. 1., 2013. 11. 29., 2015. 12. 31.>

[본조신설 1996. 2. 2.]

[제목개정 2010. 1. 1.]

**제69조(개인부담금ㆍ법인부담금등의 납입)** ①학교기관의 장이 개인부담금、법인부담금、반납금 및 환수금등을 징수 또는 납부받아 공단에 납부할 때에는 연금수납기관에 납입하되, 그 납입금과 함께 입금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9. 2. 10., 1984. 2. 25., 2010. 1. 1.>

②제1항의 납입금을 수납한 연금수납기관은 그의 영수증을 학교기관의 장에게 교부하고, 입금통지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4. 2. 25., 2010. 1. 1.>

③공단은 제2항의 입금통지서를 조사 확인한 후 수납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하며, 과오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정산처리하여야 한다.<개정 1984. 2. 25., 2010. 1. 1.>

[전문개정 1976. 6. 25.]

**제69조의2(재해보상부담금)** ①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부담금의 금액은 교직원의 개인부담금(재직기간의 산입이나 소급통산으로 인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다)합계액의 1만분의 454로 한다. <개정 1984. 12. 31., 2000. 12. 30., 2010. 1. 1.>

②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적립된 재해보상급여준비금은 다음 방법에 의하여 운용되어야 한다.<개정 1985. 12. 31., 1998. 6. 11., 2000. 2. 28., 2007. 1. 24., 2008. 7. 29., 2010. 1. 1.>

1. 제87조의2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금융회사 등에의 예입 또는 신탁
2. 제87조의2제2항제1호의 증권의 매입

③제2항의 재해보상급여준비금이 법 제48조의2제3항의 급여에 부족할 경우에는 법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일시 차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시차입금은 다음 회계연도말까지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2000. 2. 28.>

[전문개정 1982. 12. 31.]

**제69조의3(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의 부담)** ①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퇴직수당지급비용”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뺀 금액의 100분의 40은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한다.

1. 법 제3조에 따른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
2. 법 제3조에 따른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등학교만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의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
3. 법 제60조의4에 따른 적용범위의 특례기관 중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
4. 법 제60조의4에 따른 적용범위의 특례기관 중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학교만을 설치ㆍ운영하는 학교법인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의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0조의4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임상교수요원 및 직원에 대한 퇴직수당지급비용은 학교경영기관이 전액 부담한다.<신설 2016. 2. 29.>

③ 퇴직수당지급비용 중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공단이 부담하는 금액은 1992년도에 공단이 퇴직수당비용으로 부담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6. 2. 29.>

④ 퇴직수당지급비용 중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6. 2. 29.>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는 금액
2. 제3항에 따라 공단이 부담하는 금액

⑤ 법인의 해산 등을 이유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퇴직수당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학교경영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개정 2016. 2. 29.>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교경영기관의 부담금액을 산정할 때에 퇴직한 교직원이 둘 이상의 학교경영기관에 소속되었던 경우로서 법 제2조제1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경영기관별로 그 재직기간에 따른 비율에 따라 부담한다. 이 경우 제63조의3 각 호에 따른 비율이 달라지게 되어 퇴직수당 총 지급액과 해당 학교경영기관이 각각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의 합계액에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그 차액은 국가가 부담한다.<개정 2016. 2. 29.>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는 금액은 매월 실제 소요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퇴직수당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에 납부한다.<개정 2016. 2. 29.>

⑧ 제4항, 제5항 및 제6항 후단에 따라 해당 연도에 국가가 부담한 금액이 실제 든 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초과된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부담금에서 이를 정산한다.<개정 2016. 2. 29.>

[전문개정 2014. 2. 27.]

**제70조(국가부담금의 계상)** ①국가는 법 제46조 및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 따른 국가부담금 소요액을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년도에 부족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도 함께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1991. 12. 31., 2013. 11. 29.>

②공단은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연도 국가부담금소요액을 산출하고 그 산출내역을 명백히 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ㆍ보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1. 2. 1., 1991. 12. 31., 2000. 12. 30., 2001. 1. 29., 2007. 1. 24., 2010. 1. 1.>

**제70조의2(국가부담금 정산 이자율)** 법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부담금 및 국가부담액 정산에 따른 이자는 해당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를 가산하여 정산하되, 매 회계연도마다 복리로 계산한다.
[본조신설 2000. 12. 30.]

**제71조(국가부담금의 납부)** ①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부담금은 1년을 4기로 나누어 매기 개시 1월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금수납기관에 납입하여야 하며 이를 수납한 연금수납기관은 그 영수증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교부하고, 지체없이 공단에 그 입금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1. 2. 1., 2000. 12. 30., 2001. 1. 29., 2007. 1. 24., 2010. 1. 1.>
② 삭제<2000. 12. 30.>

**제72조** 삭제 <1984. 2. 25.>

**제72조의2(연체금의 징수)** ① 법 제51조에 따른 연체금은 납기 초과일수와 납기 초과일이 속하는 연도마다 해당 연도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의 2배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임용신고가 지연되어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임용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신규임용 신고서가 공단에 접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전 달 말일까지와 해당 기간이 속하는 연도마다 해당 연도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8. 9. 18.>
②학교기관의 폐교,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의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 1. 1.>
[전문개정 1980. 7. 8.]

**제73조(강제징수)** ①공단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환수금,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부담금ㆍ법인부담금 또는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부담금을 소정의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일로부터 1월이상 3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7. 12. 31., 2010. 1. 1.>
②제1항의 독촉장에는 독촉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한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공단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납처분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에게 체납처분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77. 12. 31., 1991. 2. 1., 2001. 1. 29., 2003. 2. 24., 2008. 2. 29., 2010. 1. 1., 2013. 3. 23.>
1. 체납기간이 6월이상이 된 때. 다만, 환수금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한이 경과된 때
2. 학교경영기관이 해산되거나 인가취소처분을 받은 때
④교육부장관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1977. 12. 31., 1991. 2. 1.,

2001. 1. 29., 2008. 2. 29., 2010. 1. 1., 2013. 3. 23.>

⑤공단의 임직원이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할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승인서 및 신분증을 이해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신설 1977. 12. 31., 2010. 1. 1.>

**제73조의2(결손처분)** 법 제52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할 수 있다.

1. 체납자의 행방이 장기간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음이 판명된 때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본조신설 2000. 12. 30.]

**제74조(기준소득월액이 변동된 경우의 개인부담금 산정)** 학교기관의 장은 교직원의 기준소득월액이 변동되어 같은 달에 2이상의 기준소득월액이 있게 된 때에는 해당 월의 봉급지급일 현재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하여 해당 월의 개인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

[제목개정 2010. 1. 1.]

**제75조(신분변동신고)** 학교기관의 장은 교직원에게 퇴직ㆍ사망ㆍ전출(교직원이 퇴직한 후 그 퇴직한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다시 교직원으로 임명되어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휴직 그 밖에 재직 중 신분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신분변동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직원의 전입을 받은 학교기관의 장이 전입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 해당 교직원에 대한 전출 신고서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8. 9. 18.]

**제75조의2(연금액의 이체)** ①「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의 수급권자가 교직원으로 임용되어 법 제32조에 따라 해당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의 합산을 받은 후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공단은 지체 없이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법 제52조의2에 따른 급여액의 이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1988. 1. 29., 1996. 2. 2., 2000. 12. 30., 2005. 6. 30., 2010. 1. 1.>

②제1항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국방부장관이 공단에 이체하여야 할 금액은 법 제52조의2에 따라 교직원의 퇴직 또는 사망 당시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급여액의 산정은 교직원의 퇴직 또는 사망 당시 법에 따라 지급받은 것과 같은 종류의 급여지급사유가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서 동일하게 발생한 것으로 보아 산정한 금액(조기퇴직연금의 경우에는 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에서 법에 따른 조기퇴직연금의 감액비율 만큼 감액한 금액)으로 한다.<신설 2000. 12. 30., 2005. 6. 30., 2010. 1. 1.>

③공무원연금공단 또는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급여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단에 이체하여야 한다.<신설 2000. 12. 30., 2010. 1. 1., 2018. 9. 18.>

1.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ㆍ퇴역연금 또는 유족연금은 매년 2회로 나누어 반기별로 이체하되, 상반기분은 3월 31일, 하반기분은 9월 30일까지 이체하여야 한다.
2. 법 제38조에 따른 급여, 연금준용법 제36조에 따라 연금에 갈음하여 지급받는 급여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퇴직유족연금부가금 및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은 전년도 9월부터 해당 연도 2월까지의 지급분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3월 31일까지, 해당 연도 3월부터 8월까지의 지급분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9월 30일까지 이체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법 제52조의2 및 제3항제1호에 따라 반기별 이체를 받는 동안에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수급권ㆍ조기퇴직연금수급권ㆍ퇴역연금수급권 또는 유족연금수급권의 소멸사유ㆍ감액사유, 그 밖에 이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의 유무를 연 1회 이상 조사하여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0. 1. 1.>

⑤공무원연금공단 또는 국방부장관이 제3항의 기한 내에 공단에 해당 급여를 이체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연된 기간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에 의한 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하되 회계연도마다 복리로 계산한다.<신설 2000. 12. 30., 2010. 1. 1.>

[본조신설 82. 12. 31.]

## 제6장 심사의 청구

**제76조(급여재심위원회의 조직)** ①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이하 “급여재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 9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1984. 12. 31., 2000. 2. 28.>

②제1항의 위원은 교육부의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장학관, 의료계, 법조계,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1982. 12. 31., 1991. 2. 1., 2001. 1. 29., 2006. 6. 12., 2007. 1. 24., 2008. 2. 29., 2013. 3. 23.>

**제77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제78조(위원장)** ①급여재심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1984. 12. 31.>

②위원장은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3. 2. 24., 2019. 7. 2.>

**제79조(의사)** ①급여재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1984. 12. 31.>
②급여재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1984. 12. 31., 2003. 2. 24.>

**제80조(위원회의 서무 및 위원수당등)** ①급여재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급여재심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몇 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공단의 이사장이 소속직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1984. 12. 31., 2010. 1. 1., 2019. 7. 2.>
②공단은 급여재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공단의 임ㆍ직원인 위원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개정 1984. 12. 31., 2010. 1. 1.>
③급여재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급여재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1984. 12. 31.>

**제81조(심사청구의 절차)** ①급여에 관한 결정ㆍ부담금의 징수 기타 법에 의한 급여에 관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가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심사청구서에 이유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4. 12. 31., 1988. 1. 29., 2010. 1. 1.>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심사청구서에 첨부하여 급여재심위원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18.>

**제82조(청구서의 보완 및 청구의 각하)** ① 급여재심위원회는 제81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답변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보완기간을 정하여 청구인 또는 공단에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제1항에 따른 보완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심사청구서에 기재된 사실만으로는 심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 9. 18.]

**제83조(관계인에 대한 통지)** ①급여재심위원회는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청구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심사청구에 관계되는 교직원ㆍ학교기관의 장 기타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4. 12. 31.>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급여재심위원회에 대하여 당해 사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개정 1984. 12. 31.>

**제84조(보고 또는 의견의 진술)** 급여재심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를 청구한 자 기타 관계인에게 보고 또는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출석을 요구하여 질문할 수 있다. <개정 1984. 12. 31.>

**제85조(심사의 결정)** ①심사의 결정은 문서로 한다. <개정 2018. 9. 18.>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서에는 주문과 이유를 적고 위원장 및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그 등본을 청구인 및 학교기관의 장과 그 밖의 관계인에게 보내야 한다.<개정 2018. 9. 18.>

**제86조(결정의 효력)** 급여재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청구인에게 결정서등본이 송달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1984. 12. 31.>

**제87조(관계인의 실비보상)** 공단은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재심위원회에 출석하는 관계인에 대하여 실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1984. 12. 31., 2010. 1. 1.>

## 제7장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제87조의2(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운용방법)** ①법 제53조의3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이하 “ 기금 ” 이라 한다)을 예입 또는 신탁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 3. 28., 2000. 12. 30., 2003. 2. 24., 2005. 6. 30., 2008. 7. 29., 2010. 11. 15.>

1. 「은행법」에 의한 은행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투자자문업자ㆍ투자일임업자ㆍ증권금융회사 및 종합금융회사
3. 삭제<2008. 7. 29.>
4. 삭제<2008. 7. 29.>
5.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신관서
6.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7.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②법 제53조의3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1. 1. 29., 2008. 2. 29., 2008. 7. 29., 2013. 3. 23.>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2. 삭제<2005. 6. 30.>
3.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으로서 교육부장관으로부터 매입범위를 정하여 승인을 얻은 유가증권

③법 제53조의3제2항제5호에 따른 기금증식사업 또는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1. 1. 29., 2003. 2. 24., 2005. 6. 30., 2007. 1. 24., 2008. 2. 29., 2008. 7. 29., 2012. 1. 26., 2013. 3. 23., 2013. 11. 29., 2020. 8. 11., 2021. 8. 17.>

1. 부동산임대업 및 부동산의 가치증진이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
2. 교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병원ㆍ휴양시설ㆍ요양시설ㆍ매점 기타 후생시설 등을 운영하는 사업

3. 관광업 및 이에 부대하는 사업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같은 법 제8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것만 해당한다)의 거래
5.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파생금융거래(투기적 목적의 거래를 제외한다)
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6의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6의3. 삭제<2020. 8. 11.>
7. 기타 장기성 정기예금금리 이상의 수익이 기대되는 사업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00. 2. 28.]

**제87조의3(사립학교교직원연금운영위원회의 조직)** ① 삭제 <2000. 12. 30.>

②법 제53조의4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0. 12. 30., 2001. 1. 29., 2003. 2. 24., 2005. 6. 30., 2006. 6. 12., 2008. 2. 29., 2010. 1. 1., 2013. 3. 23., 2025. 12. 30.>

1. 교육부 및 기획예산처의 4급 이상 공무원중(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 또는 기금운용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자 3인
2.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업무와 관련한 공단의 임원 2인
3. 교직원단체가 추천하는 사립학교 교직원 5인
4.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 3인
5. 퇴직연금수급자 1인
6.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하는 자 2인
7.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인

③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00. 12. 30.>

[본조신설 2000. 2. 28.]
[제목개정 2003. 2. 24.]

**제87조의4** 삭제 <2000. 12. 30.>

**제87조의5(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0. 12. 30., 2019. 7. 2.>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00. 2. 28.]

**제87조의6(회의)** ①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0. 12. 30.>

②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0. 12. 30.>

③공단의 감사는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개정 2000. 12. 30., 2010. 1. 1.>

[본조신설 2000. 2. 28.]

**제87조의7(간사와 서기)** ①운영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몇 명을 둔다. <개정 2000. 12. 30., 2019. 7. 2.>

②간사와 서기는 공단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2010. 1. 1.>

[본조신설 2000. 2. 28.]

**제87조의8(수당)** 공단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0. 12. 30., 2010. 1. 1.>

[본조신설 2000. 2. 28.]

**제87조의9(기금운용의 공시)** 교육부장관은 매년 기금결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 관보에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 29., 2008. 2. 29., 2013. 3. 23.>

[본조신설 2000. 12. 30.]

## 제8장 보칙

**제88조(시효기산일)** ①법 제53조제1항과 이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재심위원회에 불복심사를 청구한 자가 그 청구에 대하여 인용을 받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에 그에 관련되는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인용 또는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법 제54조제1항의 소멸시효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1984. 12. 31.>

② 제66조제4항에 따라 급여액의 일부의 지급이 중지된 경우에 그 중지된 급여를 받을 권리는 같은 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법 제54조제1항의 소멸시효기간을 기산한다.<개정 2018. 9. 18., 2020. 12. 29.>

**제89조(연금관련사항의 전산관리)** 공단은 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연금관련정보를 전산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

1. 부담금ㆍ반납금 등의 납입에 관한 사항
2. 신규임용ㆍ승진ㆍ전입ㆍ강임ㆍ휴직ㆍ징계ㆍ퇴직 등 신분의 변동과 관련된 사항
3. 국고위탁학자금대여 및 공단이 실시한 대여와 관련된 사항
4. 그 밖에 연금과 관련된 사항

[전문개정 2005. 6. 30.]

**제89조의2(신규임용 교직원의 임용신고 등)** 학교기관의 장은 소속 교직원이 신규임용된 때에는 지체 없이 공단에 교직원 임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
[본조신설 2005. 6. 30.]

**제90조** 삭제 <1980. 2. 4.>

**제91조(인영의 등록)** 학교경영기관의 장 및 학교의 장은 그의 인영(印影: 도장을 찍은 모양)을 공단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인영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1. 1., 2019. 7. 2.>
[전문개정 2005. 6. 30.]

**제92조(재직자에 대한 실태조사)** 공단은 급여에 소요되는 자금에 대한 장기판단과 급여제도의 개선을 위한 자료수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기관의 장에 의뢰하여 교직원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

**제93조(전자문서와 서식 등)** ① 법 또는 이 영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신청서 등의 서류와 해당 서류에 첨부할 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ㆍ첨부할 수 있다. <신설 2018. 9. 18.>
②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서식(전자문서로 된 서식을 포함한다)은 공단이 정하여 공고한다.<개정 2010. 1. 1., 2018. 9. 18.>
[전문개정 2000. 12. 30.]
[제목개정 2018. 9. 18.]

**제94조(관할청의 업무협조)** 관할청이 학교기관의 설립ㆍ폐지 및 해산을 인가하거나 이를 취소할 때에는 인가 또는 취소일로부터 1월 이내에 공단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1. 12. 31., 2010. 1. 1.>
[본조신설 1977. 12. 31.]

**제95조(정원증감시의 통보)** 학교경영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직원의 정원에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
[본조신설 1977. 12. 31.]

**제96조(위탁사업과 비용부담등)** ①법 제6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교직원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가가 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0. 1. 1.>
1. 학자금대여사업
2. 주택사업
②제1항제1호의 학자금대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그 예산에서 이를 부담한다. 이 경우 국가는 그 일부를 기금에서 대여하게 할 수 있으며, 기금에서 대여한 금액에 대하여 국가가

부담하는 이자는 대여기간 동안 해당 연도마다 그 해의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신설 1985. 12. 31., 1989. 3. 27., 2000. 2. 28., 2010. 1. 1.>

③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에서 대여하는 금액은 이를 대여한 날로부터 2년 거치후 3년 이내에 국가가 일시 또는 분할하여 상환하는 것으로 하며, 국가는 원금과 이자를 예산에 반영하여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1985. 12. 31., 2000. 2. 28., 2010. 1. 1.>

④국가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이자율은 연체기간동안 해당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에 의하되, 회계연도마다 복리로 계산한다.<개정 1998. 6. 11.>

[본조신설 1981. 6. 23.]

**제9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공단(법 제20조 및 이 영 제14조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이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31., 2018. 9. 18., 2021. 9. 29.>

1. 부담금 등 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무
2. 법 제33조에 따른 급여의 결정ㆍ지급ㆍ제한ㆍ조정 및 환수에 관한 사무
3. 법 제33조의2에 따른 간병급여ㆍ보조기구 또는 보조기구 수당이나 법 제33조의3에 따른 재요양의 결정ㆍ지급ㆍ제한ㆍ조정ㆍ환수에 관한 사무

3의2. 법 제53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자금의 대여에 관한 사무

4. 법 제60조의3에 따른 위탁사업에 관한 사무
5. 교직원의 복지 사업에 관한 사무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52조 및 이 영 제73조제4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2. 1. 26.]

**제98조(공단의 보고)** ①공단은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자가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 2. 1., 2001. 1. 29., 2008. 2. 29., 2010. 1. 1., 2013. 3. 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에는 당해 위반행위자로부터 받은 진술서 기타 위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공단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0. 1. 1.>

[본조신설 1984. 2. 25.]

[제목개정 2010. 1. 1.]

**제99조** 삭제 <2021. 3. 2.>

**부칙** <제7005호,1974. 1. 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교원이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통산을 받고자 할 때에는 통산받고자 하는 재직기간을 명시한 재직기간통산신청서를 이 영 시행후 3월 이내에 소속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직기간에 통산받고자 하는 근무기간중에 학교경영기관이 동일한 다른 학교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될 때에는 그 학교에서 근무한 사실과 학교경영기관이 동일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경영기관의 동의서와 당해 교원이 소속학교에서 계속 근무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신청서를 7일 이내에 관리공단에 이송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신청서를 이송받은 관리공단은 통산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 후 재직기간 통산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 및 당해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제7437호,1974. 12. 26.>

이 영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49호,1975. 6. 14.>

①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요양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자가 이 영 시행후에 요양을 받거나 사망한 경우 그에 대한 급여는 이 영 제29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6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재직기간통산신청에 관한 특례) 대통령령 제7005호 사립학교교원연금법시행령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직기간의 통산을 받고자 하는 자는 1975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통산신청서를 소속학교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부칙** <제8174호,1976. 6. 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재직기간 통산신청에 관한 특례)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통산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 제7,649호 사립학교교원연금법시행령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6월 이내에 재직기간통산신청서를 소속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8818호,1977.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7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무직원 재직기간의 소급통산절차) ①법률 제3058호 사립학교교원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직원이 재직기간의 통산을 받고자 할 때에는 통산받고자 하는 재직기간을 명시한 재직기간통산신청서를 이 영 시행후 6월 이내에 소속학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에 통산받고자 하는 근무기간중에 학교경영기관이 동일한 다른 학교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될 때에는 그 학교에서 근무한 사실과 학교경영기관이 동일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학교기관의 장은 당해 학교경영기관의 장의 동의서와 당해 사무직원이 소속학교기관에서 계속 근무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신청서를 7일안에 관리공단에 이송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신청서를 이송받은 관리공단은 통산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 후 재직기간의 통산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 및 당해 학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 (소급부담금 일시납부의 방법) ①교직원이었던 자(사망자의 유족을 포함한다)가 법률 제3058호 사립학교교원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급부담금을 일시에 납부하여 그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통산받고자 할 때에는 통산받고자 하는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개인부담금을 퇴직 또는 사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속학교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납부받은 학교기관의 장은 납부받은 날로부터 15일안에 법인부담금을 첨부하여 연금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 (소급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조치) 재직기간의 소급통산승인을 얻은 자가소급부담금을 6월이상 체납한 때 관리공단은 그 체납금에 상당하는 기간의 재직기간의 소급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 (재직기간 합산승인 신청) 이 영 시행당시 재직교원으로서 1975년 1월 1일이후 2이상의 학교에 근무한 자중 현 소속학교에 임용되기 이전의 재직기간의 합산을 원하는 교원은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재직기간합산승인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부칙** <제9010호,1978. 5. 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18호,1979. 2. 10.>

①(시행일) 이 영은 197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1978년 12월 31일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된 요양부조금, 분만비 및 장제비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③(재직기간 합산승인 신청)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교직원으로서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재직기간합산승인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부칙** <제9753호,1980. 2. 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재직기간의 소급통산절차) ①법률 제3206호 사립학교교원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의 소급통산절차는 대통령령 제8818호 사립학교교원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2조로 정하는 절차에 의하되, 동조중 "사무직원"은 "교직원"으로, "이 영 시행후 6월 이내에"는 "1980년 7월 31일까지"로각각 본다.

②교직원중 이 영 시행 이전에 다른 규정에 의하여 이미 소급통산의 승인을 받고 소급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던 자도 이미 납부한 소급부담금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한 재직기간에 대하여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소급통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 (소급부담금 일시납부의 방법) ①교직원이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급통산의 승인을 받은 기간의 소급부담금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개인부담금을 소속학교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소속학교기관의 장은 이를 법인부담금과 함께 차기부담금 납부시에 연금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교직원이었던 자(사망자의 유족을 포함한다)가 소급부담금을 일시납부하여 그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통산받고자 할 때에는 퇴직(유족)급여 청구시까지 통산받고자 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개인부담금을 학교기관의 장에게 납부하거나, 급여금에서 공제할 것을 의뢰하고, 학교기관의 장은 이를 법인부담금과 함께 퇴직(유족)급여청구서 이송시까지 연금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퇴직(유족)급여청구서에 소급부담금의 일시납부사실 또는 공제지급 의뢰사실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4조**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3종 고용원은 제3조제1항제3호 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1980년 1월 1일에 각각 2종 고용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9949호,1980. 7. 8.>

이 영은 198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365호,1981. 6. 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ㆍ제30조제1항ㆍ제55조제2항ㆍ제61조 및 제6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81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특수학교교직원의 재직기간 소급통산등) 법률 제3395호 사립학교교원연금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 및 그 학교경영기관에 재직중인 교직원의 소급통산절차 및 소급부담금일시납부의 방법은 대통령령 제9753호 사립학교교원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및 제3조의규정에 의하되, 동령 부칙 제2조제1항중 "1980년 7월 31일까지"는 이를 "1981년 12월 31일까지"로 본다.

**부칙** <제10985호,1982.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병역복무휴직기간에 대한 개인부담금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위한 휴직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하여 개인부담금을 납부중에 있는 자는 종전의 방법에 의하여 개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이의 납부를 마친 다음달부터 그 잔여휴직기간에 대하여 당해 월분의 개인부담금과 같은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미 납부를 마친 자는 1983년 1월부터 병역복무를 위한 휴직기간의 나머지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하여 당해 월분의 개인부담금과 같은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급여사유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1364호,1984. 2. 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재직기간 소급통산절차) ①법률 제3684호 사립학교교원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직원이 재직기간의 통산을 받고자 할 때에는 통산받고자 하는 재직기간을 명시한 재직기간소급통산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 학교기관에서 근무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학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 24.>

②학교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이를 관리공단에 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당시 재직하고 있는 학교기관에서 계속 근무한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통산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학교경영기관의 장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이송받은 관리공단은 통산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 후 재직기간의 통산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 및 해당 학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 (소급납부하는 부담금의 일시납부방법) 부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급통산의 승인을 얻은 기간에 대한 부담금을 소급납부하고 있거나 소급납부하고자 하는 교직원이 나머지의 소급통산할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일시에 납부하고자할 때에는 그 기간에 해당하

는 개인부담금을 소속학교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하며, 소속학교기관의 장은 납부받은 개인부담금(법률 제3684호 사립학교교원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 본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직원이 부담하는 부담금) 및 법률 제3684호 사립학교교원연금법중개정법률부칙 제2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법인부담금을 다음 회의 부담금 납입시에 연금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 (소급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조치) 부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의 소급통산승인을 얻은 자가 소급부담금을 6월이상 체납한 때에는 관리공단은 그 체납금에 상당하는 기간에 대한 재직기간의 소급통산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부칙** <제11583호,1984.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삭제 <1989. 10. 17.>

**부칙** <제11828호,1985.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급여사유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1889호,1986. 4. 2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재직중인 사무직원의 경력환산에 관한 경과조치) 1985년 12월 31일 현재재직중인 사무직원의 근무기간의 계산에 있어서의 경력의 환산은 종전의 별표 8에 의한다.

**부칙** <제12224호,1987. 8. 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제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1987년 7월 1일부터 각각 적용한다.

②(급여사유발생에 대한 경과조치) 1987년 6월 30일이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2381호,1988. 1. 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급여사유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재직중인 교원에 대한 표준봉급월액 재획정)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교원으로서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경력환산대상이 되는 자에 대하여는 198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표준봉급월액을 재획정한다.

**부칙** <제12664호,1989. 3. 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제20조제2항、제25조제1항제2호、제54조의4제2항、제72조의2제1항、제96조제2항 및 동조제4항의 개정규정중 이자율에 관한 사항은 1988년 12월 5일부터 적용한다.
②(이자율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은 그 이자의 계산기간이 1988년 12월 4일이전인 경우에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2823호,1989. 10. 1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1989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지급사유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1989년 9월 30일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의료직 및 고용직의 표준봉급월액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사무직원중 계급으로 구분되는 일반직으로 임용되지 아니한 의사、약사 및 간호사와 기능직으로 임용되지 아니한 1종 및 2종의 고용직에 대한 표준봉급월액의 산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보험료충당금 반환에 관한 경과조치)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의 적용을 받던 퇴직연금일시금수급자의 보험료충당금잔액의 반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3282호,1991. 2. 1.>(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2) 생략
2! 사립학교교원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5조제3항, 제16조, 제70조제2항, 제71조제1항, 제73조제3항、제4항, 제76조제2항, 제97조제2항、제3항 및 제98조제1항중 “ 문교부장관 ”을 각각 “ 교육부장관 ”으로 하고, 제21조제2항 및 제76조제2항중 “ 문교부 ”를 각각 “ 교육부 ”로 한다.
2@ 내지 <148>생략

**부칙** <제13554호,1991.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ㆍ제63조의3ㆍ제66조ㆍ제69조의3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1년 10월 1일부터, 제6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4455호 사립학교교원연금법중개정법률시행일부터 각각 적용한다.

**제2조** 삭제 <2015. 12. 31.>

**제3조** (재직중인 자에 대한 퇴직급여 산정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퇴직한 교직원ㆍ공무원 또는 퇴역한 군인으로서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어 1991년 10월 1일 당시 재직중인 자에 대하여 제5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납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가산금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 (퇴직수당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1991년 10월 1일 당시 재직중인 자가 퇴직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받게되는 퇴직수당이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퇴직수당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제6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은 그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1. 재직기간이 5년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퇴직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100분의 20
2. 재직기간이 10년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퇴직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100분의 25
3. 재직기간이 20년이상인 경우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100분의 30

②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은 자가 퇴직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받게되는 퇴직수당의 금액이 재직기간 합산시 반납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가산금 또는 퇴직수당액에 이자(퇴직급여가산금 또는 퇴직수당납부후 매1년에 대하여 연 1할의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과 교직원으로 재직한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수당을 합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퇴직수당으로 지급한다.

**제5조** (퇴직수당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에 관한 경과조치) ①1991년도에 관리공단이 부담하는 퇴직수당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69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0년 10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동안 퇴직급여가산금 및 유족급여가산금의 지급에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②관리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금액외에 1991년 10월 1일부터 법률 제4455호 사립학교교원연금법중개정법률 시행전일까지의 제69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퇴직수당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따로 부담하여야 한다.

**부칙** <제13861호,1993. 2. 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퇴직수당 비용부담에 관한 경과조치) 1993년 1월 1일전에 퇴직수당 지급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퇴직수당의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4486호,1994. 12. 31.>(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상훈법시행령등중개정령)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503호,1994. 12. 31.>(공무원수당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사립학교교원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중 " 장기근속수당 " 을 " 장기근속수당(가산금을 제외한다) " 으로 한다.

③생략

**부칙** <제14906호,1996. 2. 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재직기간의 합산에 관한 경과조치) 1995년 12월 31일 현재 재직중인 교직원으로서 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을 신청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8조제1항 및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5810호,1998. 6. 1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급여의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납부고지하는 환수금부터 적용한다.

③(대여금의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7월 1일이후 최초로 관리공단적립금에서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950호,1998. 12. 31.>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34호,2000. 2.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62호,2000. 3. 28.>(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사립학교교원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의2제1항제5호중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을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로 한다.

⑦내지1^ 생략

**부칙** <제17096호,2000. 12.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3항·제30조의2·제32조 및 제6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급여사유발생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연봉제적용 교직원의 월봉급액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연봉제적용 교직원의 제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2001년 월봉급액은 2000년도의 월봉급액상당액에 공무원평균보수인상률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 (보수월액의 현재가치 환산에 관한 경과조치) 2001년 1월 1일 이후에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된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에 대한 보수월액을 법 제35조제4항 및 이 영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경우에 이 영 시행전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에 대하여 적용되는 공무원평균보수인상률은 제3조의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매년 6퍼센트로 한다.

**제5조** (합산반납금 납부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전에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 합산을 받은 교직원의 합산반납금 납부방법은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영 시행전에 재직기간 합산을 받고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중인 자의 이 영 시행이후의 분할납부기간에 대한 이자율은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이자율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다시 산정한다.

**제6조** (급여환수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전에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의 환수처분을 한 급여액에 가산할 이자 및 환수금에 가산할 연체이자의 계산기간은 제25조제1항의 개

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영 시행전에 법 제39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의 환수처분을 한 급여액의 환수는 제2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감액되기 전의 보수월액에 의한 부담금의 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에 종전의 법 제35조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감액되기 전의 직급 및 호봉에 의한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도 제22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감액되기 전의 직급 및 호봉에 의한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보수월액을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감액되기 전의 보수월액으로 본다.

**제8조** (합산제외후 재합산인정을 받은 자의 반납금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법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인정된 재직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반납금을 체납하여 합산을 제외받는 자가 법률 제6330호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영 시행이후에 재직기간합산을 받게 되는 경우의 반납금은 체납당시 반납하여야 할 금액에 취소되기 전에 반납금을 체납한 기간(6월이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는 6월로 본다)에 대하여는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다시 산정하여 정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급여액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330호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진, 강임이나 강등, 전직, 보직변경 또는 재임용(퇴직한 교직원ㆍ공무원 또는 군인이 교직원으로 임용되어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의 합산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된 후 1년 이내에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 승진, 강임이나 강등, 전직, 보직변경 또는 재임용되기 전의 보수월액은 그 보수월액에 제3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무원평균보수인상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부칙** <제17115호,2001. 1. 29.>(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3@ 생략

3#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70조제2항, 제71조제1항, 제73조제3항 본문ㆍ제4항, 제76조제2항, 제87조의2제2항제3호ㆍ제3항제4호, 제87조의9, 제97조제2항 전단ㆍ제3항 및 제98조제1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제76조제2항 및 제87조의3제2항제1호중 "교육부"를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3$ 내지 <152>생략

**부칙** <제17909호,2003. 2. 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관한 규정과 제54조의2제1항, 제60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0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양사실의 인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개인부담금의 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제3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보수월액이 감액되는 자는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준용하여 감액되기 전의 보수월액에 의한 개인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액되기 전의 보수월액에 의한 부담금의 납부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보수월액을 매년 제22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 (체납처분사유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독촉장을 발부하는 환수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312호,2004. 3. 17.>(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88호,2005. 6. 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4항제2호의2 내지 제2호의4, 제32조의3 내지 제32조의7의 개정규정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반납금 미납시 연체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고 제19조제1항의 납부기한까지 반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의 계산은 이 영 시행일까지의 체납기간에 대하여는 제20조제4항의 종전규정에 의하여 산정하고, 이 영 시행 이후의 체납기간에 대하여는 제20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산정한다.

**부칙** <제19513호,2006. 6. 12.>(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11>생략

<112>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중 “ 5급이상 공무원 ” 을 “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 로 한다.

제76조제2항중 “ 5급이상공무원 ” 을 “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 로 한다.

제87조의3제2항제1호중 “ 4급이상 공무원중 ” 을 “ 4급 이상 공무원중(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 로 한다.

<113>내지 <241>생략

**부칙** <제19843호,2007. 1. 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0조제2항 및 제7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0호,2007. 6. 28.>(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97호,2008. 2.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740호,2008. 2. 29.>(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3! 까지 생략

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7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87조의2제2항제3호 및 제3항제7호, 제87조의9, 제97조제2항 전단、제3항, 제98조제1항 중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 을 각각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 교육인적자원부 ” 를 “ 교육과학기술부 ” 로 한다.

제52조제1항 중 “ 행정자치부령 ” 을 “ 행정안전부령 ” 으로 한다.

제76조제2항 중 “ 교육인적자원부 ” 를 “ 교육과학기술부 ” 로,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 을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으로 한다.

제87조의3제2항제1호 중 “ 교육인적자원부 및 기획예산처 ” 를 “ 기획재정부 및 교육과학기술부 ” 로 한다.

3#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 <제20875호,2008. 6. 25.>(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3제1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⑥ 부터 ⑪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20947호,2008. 7. 29.>(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7> 까지 생략

<58>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의2제2항제2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제87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투자자문업자ㆍ투자일임업자ㆍ증권금융회사 및 종합금융회사

제87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같은 법 제9조제14항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것만 해당한다)의 거래

<59>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 <제21867호,2009. 12. 7.>(병역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2호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⑨ 부터 ⑬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21977호,2010. 1.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직기간으로 인정되는 복무기간의 적용례) 제17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임용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환수금의 분할 납부 횟수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2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환수금의 분할 납부 승인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퇴직급여 또는 유족급여의 변경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급여를 수령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최초의 기준소득월액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교직원의 기준소득월액은 제3조의2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에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결정된 기준소득월액은 제3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이르는 6월까지 적용한다.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교직원의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의 상한 금액에 대해서는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직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기준소득월액의 상한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공단의 이사장, 상임이사 및 감사에 대한 법 제3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단 이사장의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2를 적용받는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 중 가장 높은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상임이사 및 감사의 경우에는 같은 규정 별표 3을 적용받는 일반직 1급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 중 가장 높은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제7조**(부담금에 관한 특례) ① 국가부담금의 금액은 제6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별로 교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 합계액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2010년: 6천3백분의 2,595
2. 2011년: 6천7백분의 2,759

② 법인부담금의 금액은 제6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별로 해당 학교 교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 합계액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2010년: 6천3백분의 3,705

2. 2011년: 6천7백분의 3,941

**제8조**(기준소득월액의 적용에 관한 특례) 법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연금인 급여(「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퇴직연금을 포함한다)의 급여액 산정을 위한 기준소득월액에 곱하는 비율은 다음 표를 적용하되, 법률 제3684호 사립학교교원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와 법률 제7536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항 및 법률 제7889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른 소급통산 재직기간 중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은 이 비율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기간으로 본다. 다만, 재직기간 33년을 초과하여 재직하고 퇴직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재직기간 33년에 해당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5. 12. 31.>

[표] 재직기간별 기준소득월액에 적용하는 비율 (단위 : %)

| 퇴직 기간 / 이 법 시행 이후 기간 | 32년 이상 | 31년 이상 - 32년 미만 | 30년 이상 - 31년 미만 | 29년 이상 - 30년 미만 | 28년 이상 - 29년 미만 | 27년 이상 - 28년 미만 | 26년 이상 - 27년 미만 | 25년 이상 - 26년 미만 | 24년 이상 - 25년 미만 | 23년 이상 - 24년 미만 | 22년 이상 - 23년 미만 | 21년 이상 - 22년 미만 | 20년 이상 - 21년 미만 | 19년 이상 - 20년 미만 | 18년 이상 - 19년 미만 | 17년 이상 - 18년 미만 | 16년 이상 - 17년 미만 |
|---|---|---|---|---|---|---|---|---|---|---|---|---|---|---|---|---|---|
| 1년 미만 | 67.46 | 67.46 | 67.46 | 67.46 | 67.46 | 67.46 | 67.46 | 67.46 | 67.46 | 67.46 | 67.46 | 67.46 | 67.46 | 84.33 | 84.33 | 84.33 | 84.33 |
| 1년 이상 ~ 2년 미만 | | 67.94 | 67.94 | 67.94 | 67.94 | 67.94 | 67.94 | 67.94 | 67.94 | 67.94 | 67.94 | 67.94 | 67.94 | 76.43 | 84.92 | 84.92 | 84.92 |
| 2년 이상 ~ 3년 미만 | | | 68.42 | 68.42 | 68.42 | 68.42 | 68.42 | 68.42 | 68.42 | 68.42 | 68.42 | 68.42 | 68.42 | 74.12 | 79.82 | 85.53 | 85.53 |
| 3년 이상 ~ 4년 미만 | | | | 68.91 | 68.91 | 68.91 | 68.91 | 68.91 | 68.91 | 68.91 | 68.91 | 68.91 | 68.91 | 73.22 | 77.52 | 81.83 | 86.14 |
| 4년 이상 ~ 5년 미만 | | | | | 69.48 | 69.48 | 69.48 | 69.48 | 69.48 | 69.48 | 69.48 | 69.48 | 69.48 | 72.95 | 76.43 | 79.90 | 83.37 |
| 5년 이상 ~ 6년 미만 | | | | | | 69.91 | 69.91 | 69.91 | 69.91 | 69.91 | 69.91 | 69.91 | 69.91 | 72.82 | 75.74 | 78.65 | 81.58 |
| 6년 이상 ~ 7년 미만 | | | | | | | 70.49 | 70.49 | 70.49 | 70.49 | 70.49 | 70.49 | 70.49 | 73.01 | 75.53 | 78.05 | 80.57 |
| 7년 이상 ~ 8년 미만 | | | | | | | | 71.01 | 71.01 | 71.01 | 71.01 | 71.01 | 71.01 | 73.23 | 75.45 | 77.67 | 79.89 |
| 8년 이상 ~ 9년 미만 | | | | | | | | | 71.39 | 71.39 | 71.39 | 71.39 | 71.39 | 73.37 | 75.36 | 77.34 | 79.32 |
| 9년 이상 ~ 10년 미만 | | | | | | | | | | 72.00 | 72.00 | 72.00 | 72.00 | 73.80 | 75.60 | 77.40 | 79.20 |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 | | | | | | | | | 72.39 | 72.39 | 72.39 | 74.03 | 75.68 | 77.32 | 78.97 |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 | | | | | | | | | | 73.09 | 73.09 | 74.61 | 76.14 | 77.66 | 79.18 |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 | | | | | | | | | | | 73.89 | 75.31 | 76.73 | 78.15 | 79.58 |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 | | | | | | | | | | | | 76.13 | 77.46 | 78.80 | 80.14 |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 | | | | | | | | | | | | | 78.24 | 79.50 | 80.76 |
| 15년 이상 ~ 16년 미만 | | | | | | | | | | | | | | | | 80.35 | 81.55 |
| 16년 이상 ~ 17년 미만 | | | | | | | | | | | | | | | | | 82.29 |
| 17년 이상 ~ 18년 미만 | | | | | | | | | | | | | | | | | |
| 18년 이상 ~ 19년 미만 | | | | | | | | | | | | | | | | | |
| 19년 이상 ~ 20년 미만 | | | | | | | | | | | | | | | | | |
| 20년 이상 ~ 21년 미만 | | | | | | | | | | | | | | | | | |
| 21년 이상 ~ 22년 미만 | | | | | | | | | | | | | | | | | |
| 22년 이상 ~ 23년 미만 | | | | | | | | | | | | | | | | | |
| 23년 이상 ~ 24년 미만 | | | | | | | | | | | | | | | | | |
| 24년 이상 ~ 25년 미만 | | | | | | | | | | | | | | | | | |
| 25년 이상 ~ 26년 미만 | | | | | | | | | | | | | | | | | |
| 26년 이상 ~ 27년 미만 | | | | | | | | | | | | | | | | | |
| 27년 이상 ~ 28년 미만 | | | | | | | | | | | | | | | | | |
| 28년 이상 ~ 29년 미만 | | | | | | | | | | | | | | | | | |
| 29년 이상 ~ 30년 미만 | | | | | | | | | | | | | | | | | |
| 30년 이상 ~ 31년 미만 | | | | | | | | | | | | | | | | | |
| 31년 이상 ~ 32년 미만 | | | | | | | | | | | | | | | | | |
| 32년 이상 | | | | | | | | | | | | | | | | | |

| 퇴직 기간 / 이 법 시행 이후 기간 | 15년 이상 - 16년 미만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9년 이상 - 10년 미만 | 8년 이상 - 9년 미만 | 7년 이상 - 8년 미만 | 6년 이상 - 7년 미만 | 5년 이상 - 6년 미만 | 4년 이상 - 5년 미만 | 3년 이상 - 4년 미만 | 2년 이상 - 3년 미만 | 1년 이상 - 2년 미만 | 1년 미만 | 신규자 |
|---|---|---|---|---|---|---|---|---|---|---|---|---|---|---|---|---|---|
| 1년 미만 | 84.33 | 84.33 | 84.33 | 84.33 | 84.33 | 84.33 | 83.69 | 83.04 | 81.90 | 81.76 | 81.11 | 80.47 | 79.83 | 79.18 | 78.54 | 77.90 | 77.25 |
| 1년 이상 ~ 2년 미만 | 84.92 | 84.92 | 84.92 | 84.92 | 84.92 | 84.92 | 84.53 | 83.88 | 82.72 | 82.58 | 81.93 | 81.28 | 80.63 | 79.98 | 79.33 | 78.68 | 78.03 |
| 2년 이상 ~ 3년 미만 | 85.53 | 85.53 | 85.53 | 85.53 | 85.53 | 85.53 | 84.87 | 84.22 | 83.06 | 82.92 | 82.28 | 81.61 | 80.96 | 80.31 | 79.66 | 79.00 | 78.35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6.14 | 86.14 | 86.14 | 86.14 | 86.14 | 86.14 | 85.48 | 84.82 | 83.65 | 83.51 | 82.85 | 82.20 | 81.54 | 80.88 | 80.22 | 79.57 | 78.91 |
| 4년 이상 ~ 5년 미만 | 86.85 | 86.85 | 86.85 | 86.85 | 86.85 | 86.85 | 86.18 | 85.52 | 84.34 | 84.20 | 83.54 | 82.87 | 82.21 | 81.55 | 80.89 | 80.22 | 79.56 |
| 5년 이상 ~ 6년 미만 | 84.47 | 87.39 | 87.39 | 87.39 | 87.39 | 87.39 | 86.72 | 86.05 | 84.87 | 84.72 | 84.05 | 83.39 | 82.72 | 82.06 | 81.39 | 80.72 | 80.06 |
| 6년 이상 ~ 7년 미만 | 83.08 | 85.60 | 88.12 | 88.12 | 88.12 | 88.12 | 87.45 | 86.77 | 85.68 | 85.43 | 84.76 | 84.09 | 83.41 | 82.74 | 82.07 | 81.40 | 80.72 |
| 7년 이상 ~ 8년 미만 | 82.11 | 84.33 | 86.55 | 88.77 | 88.77 | 88.77 | 88.09 | 87.41 | 86.21 | 86.06 | 85.38 | 84.70 | 84.03 | 83.35 | 82.67 | 82.00 | 81.32 |
| 8년 이상 ~ 9년 미만 | 81.30 | 83.29 | 85.27 | 87.26 | 89.24 | 89.24 | 88.56 | 87.88 | 86.66 | 86.51 | 85.83 | 85.16 | 84.47 | 83.79 | 83.11 | 82.43 | 81.76 |
| 9년 이상 ~ 10년 미만 | 81.00 | 82.80 | 84.60 | 86.40 | 88.20 | 90.00 | 89.31 | 88.63 | 87.40 | 87.25 | 86.57 | 85.88 | 85.19 | 84.51 | 83.82 | 83.13 | 82.45 |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80.61 | 82.28 | 83.90 | 85.55 | 87.19 | 88.84 | 89.79 | 89.10 | 87.87 | 87.72 | 87.03 | 86.34 | 85.65 | 84.96 | 84.27 | 83.58 | 82.89 |

| | | | | | | | | | | | | | | | | | |
|---|---|---|---|---|---|---|---|---|---|---|---|---|---|---|---|---|---|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80.70 | 82.23 | 83.76 | 85.27 | 86.80 | 88.32 | 89.18 | 89.97 | 88.73 | 88.68 | 87.88 | 87.18 | 86.49 | 85.79 | 85.09 | 84.40 | 83.70 |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81.00 | 82.42 | 83.84 | 85.26 | 86.68 | 88.10 | 88.84 | 89.68 | 89.70 | 89.65 | 88.84 | 88.14 | 87.43 | 86.73 | 86.02 | 85.32 | 84.62 |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81.47 | 82.81 | 84.14 | 85.48 | 86.81 | 88.15 | 88.80 | 89.43 | 89.60 | 90.04 | 89.93 | 89.21 | 88.50 | 87.79 | 87.07 | 86.36 | 85.65 |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82.03 | 83.29 | 84.55 | 85.81 | 87.07 | 88.34 | 88.91 | 89.47 | 89.46 | 90.63 | 91.04 | 90.31 | 89.59 | 88.87 | 88.15 | 87.43 | 86.70 |
| 15년 이상 ~ 16년 미만 | 82.75 | 83.95 | 85.14 | 86.34 | 87.54 | 88.74 | 89.29 | 89.75 | 89.88 | 90.68 | 91.13 | 91.55 | 90.82 | 90.08 | 89.35 | 88.62 | 87.89 |
| 16년 이상 ~ 17년 미만 | 83.44 | 84.68 | 85.72 | 86.87 | 88.01 | 89.15 | 89.61 | 90.04 | 89.91 | 90.88 | 91.25 | 91.62 | 91.97 | 91.22 | 90.48 | 89.74 | 89.00 |
| 17년 이상 ~ 18년 미만 | 84.29 | 85.38 | 86.47 | 87.57 | 88.66 | 89.76 | 90.16 | 90.54 | 90.38 | 91.28 | 91.60 | 91.92 | 92.22 | 92.50 | 91.75 | 91.00 | 90.25 |
| 18년 이상 ~ 19년 미만 | | 86.14 | 87.19 | 88.24 | 89.29 | 90.34 | 90.70 | 91.03 | 90.80 | 91.66 | 91.95 | 92.22 | 92.48 | 92.72 | 92.95 | 92.19 | 91.42 |
| 19년 이상 ~ 20년 미만 | | | 87.88 | 88.87 | 89.88 | 90.89 | 91.20 | 91.50 | 91.21 | 92.04 | 92.28 | 92.52 | 92.73 | 92.93 | 93.12 | 93.29 | 92.52 |
| 20년 이상 ~ 21년 미만 | | | | 89.67 | 90.64 | 91.62 | 91.89 | 92.14 | 91.82 | 92.60 | 92.81 | 93.01 | 93.19 | 93.35 | 93.50 | 93.63 | 92.86 |
| 21년 이상 ~ 22년 미만 | | | | | 91.47 | 92.41 | 92.64 | 92.86 | 92.49 | 93.25 | 93.42 | 93.58 | 93.72 | 93.85 | 93.97 | 94.07 | 93.30 |
| 22년 이상 ~ 23년 미만 | | | | | | 93.28 | 93.48 | 93.64 | 93.24 | 93.98 | 94.10 | 94.23 | 94.34 | 94.44 | 94.52 | 94.59 | 93.81 |
| 23년 이상 ~ 24년 미만 | | | | | | | 94.48 | 94.61 | 94.16 | 94.88 | 94.97 | 95.07 | 95.16 | 95.22 | 95.28 | 95.32 | 94.53 |
| 24년 이상 ~ 25년 미만 | | | | | | | | 95.54 | 95.16 | 95.84 | 95.92 | 95.98 | 96.04 | 96.08 | 96.11 | 96.12 | 95.33 |
| 25년 이상 ~ 26년 미만 | | | | | | | | | 96.10 | 96.75 | 96.80 | 96.84 | 96.87 | 96.88 | 96.89 | 96.87 | 96.07 |
| 26년 이상 ~ 27년 미만 | | | | | | | | | | 97.58 | 97.68 | 97.90 | 97.90 | 97.89 | 97.88 | 97.82 | 97.02 |
| 27년 이상 ~ 28년 미만 | | | | | | | | | | | 98.90 | 98.89 | 98.86 | 98.83 | 98.78 | 98.72 | 97.90 |
| 28년 이상 ~ 29년 미만 | | | | | | | | | | | | 100.08 | 100.03 | 99.97 | 99.90 | 99.81 | 98.99 |
| 29년 이상 ~ 30년 미만 | | | | | | | | | | | | | 101.12 | 101.04 | 100.94 | 100.84 | 100.00 |
| 30년 이상 ~ 31년 미만 | | | | | | | | | | | | | | 102.17 | 102.06 | 101.93 | 101.09 |
| 31년 이상 ~ 32년 미만 | | | | | | | | | | | | | | | 103.23 | 103.08 | 102.23 |
| 32년 이상 | | | | | | | | | | | | | | | | 104.30 | 103.44 |

**제9조**(소급통산 재직기간에 대한 부담금 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4조제4항에 따라 납부하는 소급통산 재직기간에 대한 부담금의 산정은 다음과 같다.

(법 시행일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 × 공무원보수인상률 × 종전 규정에 따른 부담률 × (6.3 ÷ 5.525)

**제10조**(종전기간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의 현재가치로의 환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0년 1월 1일 당시 재직 중인 교직원의 경우 법 부칙 제4조제7항제1호에 따른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을 급여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4. 4. 29.>

(2010년 1월 1일 전날의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 × [(급여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2008년도 과세소득에 대한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② 2010년 1월 1일 이후 교직원으로 임용된 사람이 종전기간을 합산한 경우의 법 부칙 제4조제7항제1호에 따른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4. 4. 29.>

(종전 퇴직 당시의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로 교직원 임용 당시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 × [(급여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교직원 임용 당시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2010년 1월 1일 전날의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에 적용기간별로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순차적으로 곱하여 급여사유가 발생한 날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후자의 금액을 종전기간의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으로 한다. <개정 2014. 4. 29.>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종전 퇴직 당시의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로 교직원 임용 당시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에 적용기간별로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순차적으로 곱하여 급여사유가 발생한 날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후자의 금액을 종전기간의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으로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종전기간의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을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경우 전년도 소득에 기초한 해당 연도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여 적용하기 전(해당 연도 1월부터 6월까지를 말한다)에 장기급여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에 해당 연도의 공무원보수인상률을 반영한 금액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4. 4. 29.>

**제11조**(기준소득월액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3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년도 소득에 종사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휴직자 및 복직자의 기준소득월액은 제3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② 제3조의2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소득자료가 없는 재직자의 기준소득월액은 같은 급의 학교기관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종ㆍ직위 등에 해당하는 교직원의 기준소득월액의 중위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공단이 결정한다.

③ 법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이 법 시행일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적용받으려는 교직원은 종전의 보수월액을 명기한 승인신청서를 소속 학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 학교기관의 장은 그 신청서를 7일 이내에 공단에 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학교기관의 장이 학교의 장인 때에는 해당 학교경영기관의 장의 동의가 표시되는 방식으로 하여 공단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12조**(연체이자율 적용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25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7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 이전기간에 해당하는 환수금 및 부담금의 연체이자의 계산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7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 이전기간에 해당하는 연체금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업무 위탁 범위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된 업무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에 대한 위탁계약이 종료되거나 갱신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2151호,2010. 5. 4.>(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1> 까지 생략

<9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49조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으로 한다.

<93>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제22467호,2010. 11. 2.>(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493호,2010. 11. 15.>(은행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57>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및 제87조의2제1항제1호 중 " 금융기관 "을 각각 " 은행 "으로 한다.

<58>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3546호,2012. 1.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4. 4. 29.>

**제3조**(고용직 사무직원의 근무상한연령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고용직 사무직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4077호,2012. 8. 31.>(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1^ 까지 생략

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5제1호 중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를 "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로 한다.

제44조 중 "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를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라 "로 한다.

1* 부터3)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24423호,2013. 3. 2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 제3조의3제2항ㆍ제3항, 제10조, 제22조제2항, 제7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6조제2항, 제87조의2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제7호, 제87조의9, 제97조제2항 및 제98조제1항 중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을 각각 " 교육부장관 "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제76조제2항 및 제87조의3제2항제1호 중 " 교육과학기술부 "를 각각 " 교육부 "로 한다

제52조제1항 중 " 행정안전부령 "을 " 안전행정부령 "으로 한다.

<54>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 <제24888호,2013. 11.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반납금 미납 시 연체이자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에 제19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반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의 계산은 2013년 11월 30일까지의 체납기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2013년 12월 1일 이후의 체납기간에 대해서는 제20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제3조**(재요양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에 준용법 제51조에 따라 장해보상금을 받은 사람은 그 장해보상금의 지급일부터 5년이 지난 후부터 제32조의6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다.

**제4조**(급여의 감액에 관한 적용례) 제64조 및 제6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준용법 제6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준용법 제63조에 따른 급여의 감액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24890호,2013. 12. 4.>(병역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보충역 소집에 의하여 사회복무요원 또는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근무한 기간(「병역법 시행령」 제151조에 따라 산정된 기간에 한정한다)

⑮부터1( 까지 생략

**부칙** <제25215호,2014. 2.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경영기관별 부담금액 산정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2조제1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재직 중인 학교경영기관 외에 다른 학교경영기관에 소속되었던 교직원에 대하여 이 영 시행 후 퇴직수당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영 시행 전에 재직하였던 학교경영기관의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수당의 지급에 드는 비용은 제69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부담한다. 이 경우 법 제2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이 영 제63조의3 각 호에 따른 비율이 달라지게 되어 퇴직수당 총 지급액과 해당 학교경영기관이 각각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의 합계액에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그 차액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3조**(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부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퇴직수당 지급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퇴직수당의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제6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5334호,2014. 4.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균기준소득월액의 현재가치 환산에 관한 적용례) ① 제3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부터 이 영 시행일 전까지 퇴직하거나 사망하여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및 유족연금(교직원이었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다가 사망하여 그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급여사유가 발생한 사람(해당 기간에 퇴직 또는 사망하여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이미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3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평균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는 경우 이 영 시행일 전까지 받을 수 있었던 퇴직연금 등이 이미 지급된 퇴직연금 등보다 더 클 때에는 그 차액을 이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퇴직연금 등을 지급할 때에 합산하여 지급한다.

**제3조**(2010년 전에 임용된 교직원의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의 현재가치로의 환산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대통령령 제21977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월 1일 전에 임용된 교직원으로서 2010년 1월 1일부터 이 영 시행일의 전 날까지 퇴직하여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교직원(2010년 1월 1일 이후에 임용된 교직원으로서 2010년 1월 1일 전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합산한 사람을 포함한다)의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의 현

재가치로의 환산방법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대통령령 제23546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월 1일 전에 임용된 교직원으로서 2010년 1월 1일부터 이 영 시행일의 전날까지 퇴직하여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교직원(2010년 1월 1일 이후에 임용된 교직원으로서 2010년 1월 1일 전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합산한 사람을 포함한다)의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경우 대통령령 제23546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외되는 소득 항목이 포함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그 소득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한다.

**부칙** <제25840호,2014. 12. 9.>(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6832호,2015.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군복무기간의 재직기간 산입에 따른 연금액 산정 등에 관한 특례) ① 법률 제13561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제1항 각 호의 연도 중에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임용 전 군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 경우 그 군복무기간에 대한 퇴직연금의 금액은 평균기준소득월액에 군복무기간이 산입된 연도에 해당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률 제13561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제1항 각 호의 연도 중에 법률 제3684호 사립학교교원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 법률 제7536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항 및 법률 제7889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을 소급통산한 경우 그 소급통산한 기간에 대한 퇴직연금의 금액은 평균기준소득월액에 소급통산 대상자가 부담금을 납부한 달이 속하는 각각의 연도에 해당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3조**(연금액 산정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이후의 재직기간에 대한 급여액을 산정할 때 법률 제13387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46조제4항의 개정규정 및 법률 제13561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산정한 퇴직연금의 금액이 종전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제4조**(부담금에 관한 특례) ① 국가부담금의 금액은 제6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별로 교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 합계액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2016년: 8천분의 3,295
2. 2017년: 8천2백50분의 3,398
3. 2018년: 8천5백분의 3,500
4. 2019년: 8천7백50분의 3,603

② 법인부담금의 금액은 제6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별로 해당 학교 교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 합계액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2016년: 8천분의 4,705
2. 2017년: 8천2백50분의 4,852
3. 2018년: 8천5백분의 5,000
4. 2019년: 8천7백50분의 5,147

**부칙** <제26992호,2016. 2. 29.>

이 영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620호,2016. 11. 29.>(병역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1호 중 “ 실역에 복무한 ”을 “ 복무한 ”으로 한다.

1& 부터2^ 까지 생략

**부칙** <제29182호,2018. 9.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소득월액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반납금의 분할납부 횟수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9조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금청산 청구 및 퇴직유족급여 청구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9조에도 불구하고 제22조의6 및 제5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연금청산 또는 퇴직유족급여가 청구되어 있거나 신청되어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분할연금 등의 종류 및 지급시기 변경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9조 및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제2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급여의 종류 및 지급시기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직권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9조에도 불구하고 제4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장해연금 수급권자가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장해 상태 확인을 위한 진단 요구 등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9조에도 불구하고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유족인 19세 이상 자녀와 손자녀(손자녀의 아버지를 포함한다) 및 장해연금 수급권자에게도 적용한다.

**제8조**(종합장해등급 결정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9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6 비고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장해로 인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9조**(급여사유발생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급여심의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3개월의 범위에서 같은 개정 규정에 따른 급여심의회의 구성이 완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성한 급여심의회를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급여심의회로 보고, 그 회의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21조제3항에 따른다.

②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급여심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급여심의회의 위원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급여심의회를 최초로 구성한 때부터 그 남은 임기가 종료할 때까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급여심의회의 위원으로 본다.

**제11조**(환수금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제2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환수금 중 급여를 수령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의 이자 및 연체이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2조**(퇴직급여 등의 종류 및 지급시기 변경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퇴직급여 등의 종류 및 지급시기의 변경신청에 관하여는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53조의3에 따른다.

**제13조**(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인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29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의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정년 및 근무상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한 사람의 정년 및 근무상한연령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연체금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제7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납기일 다음 날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의 연체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 중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55조"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41조 및 별표 5와 별표 6"으로 한다.

②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 중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55조"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41조 및 별표 5와 별표 6"으로 한다.

**부칙** <제29950호,2019. 7. 2.>(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0666호,2020. 5. 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760호,2020. 6. 9.>(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1* 까지 생략

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라목 중 “「군인연금법」”을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2) 부터3^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30807호,2020. 6. 30.>(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3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제17조의2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대체역 소집에 의하여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한 기간(「병역법 시행령」 제151조에 따라 산정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⑮부터2& 까지 생략

**부칙** <제30833호,2020. 7. 1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따른 15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2020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893호,2020. 8. 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2( 까지 생략

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하목 중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을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으로 한다.

3! 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30934호,2020. 8. 1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의2제3항제6호 중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1항 ”을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 ”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의2 중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을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의3을 삭제한다.

⑭부터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1337호,2020. 12. 29.>(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제도 도입에 따른 22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당시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31516호,2021. 3. 2.>(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947호,2021. 8. 17.>(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의2제3항제6호의2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3항"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로 한다.

**부칙** <제32018호,2021. 9. 29.>(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195호,2025. 1.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보상준용법 제8조에 따른 급여를 신청하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유족의 인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퇴직유족급여 또는 재해유족급여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유족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장해등급의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장해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장해등급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41조, 별표 5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직권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이 되는 장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의 장해연금 수급권자(이 영 시행 전에 장해급여의 사유가 발생하여 이 영 시행 이후 장해연금 수급권자가 되는 사람을 포함한다)가 직권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제4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급여의 감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의 감액에 관하여는 제64조 전단 및 제65조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부양사실 인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퇴직유족급여 또는 재해유족급여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부양사실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5228호,2025. 1. 21.>(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636호,2025. 7. 7.>(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조제4항”을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조제5항”으로 한다.

**부칙** <제35948호,2025. 12. 30.>(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1* 까지 생략

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의3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 및 교육부”를 “교육부 및 기획예산처”로 한다.

2) 부터 <176>까지 생략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1. 14.>

교직원등이 부양한 사실의 인정기준(제2조제1항 관련)

| 대상자 | 인정기준 |
|---|---|
| 1. 배우자 | 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 배우자인 경우: 인정<br>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 배우자가 아닌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 판결에 따라 사실혼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정 |
| 2. 법 제2조제2항의 19세 미만인 자녀 | 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 자녀인 경우: 인정<br>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 자녀가 아닌 경우: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 판결 등 법원의 재판에 따라 친자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정 |
| 3. 부모 | 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 부모인 경우: 인정<br>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 부모가 아닌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br>1)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같았던 경우<br>2)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달랐던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br>가) 교직원등의 주소에서 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br>나) 취학·요양·주거의 형편 또는 근무형편 등으로 주거를 달리 하고 있었으나 생활비·요양비 등 생계의 기반이 되는 경제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4. 법 제2조제2항의 19세 이상인 자녀, 손자녀·조부모 | 가.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같았던 경우: 인정<br>나.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달랐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br>1) 교직원등의 주소에서 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br>2) 취학·요양·주거의 형편 또는 근무형편 등으로 주거를 달리 하고 있었으나 생활비·요양비 등 생계의 기반이 되는 경제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별표 1의2] 삭제 <2018. 9. 18.>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5. 1. 14>

공단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와 요청의 상대방(제13조의2 관련)

1. 요청 대상 자료

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와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자료와 가족관계증명서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 지급에 관한 자료

라. 「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 및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국민, 군인 및 별정우체국 직원에 관한 자료와 각 법에 따른 급여에 관한 자료

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관한 자료

바.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에 따른 소득·과세에 관한 자료

사.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사업장 성립·적용·탈퇴·해지 및 가입자 자격의 취득(고용)·상실(고용종료) 등 부과·징수에 관한 자료와 급여에 관한 자료

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절차 관련 사건번호, 개시결정일, 면책결정일, 당사자 등에 관한 자료 및 「민사집행법」에 따른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등재·말소 결정에 관한 자료

자. 「가사소송법」에 따른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에 관한 자료

차.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장학금 및 그 외의 장학금 지급내역 및 학사정보에 대한 전산정보자료

카.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지급하는 교내장학금 및 그 외의 장학금 및 학사정보에 대한 전산정보자료

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과 「보험업법」, 「선주상호보험조합법」에 따라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가입자 관리, 보험금 산출 및 지급에 관한 자료

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 「한국해운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원양산업발전법」,

「민법」 및 「선원법 시행령」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자의 가입자 관리, 보험금·공제금의 산출 및 지급에 관한 자료

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보험금 지급에 관한 자료

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에 관한 자료,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등록자료 및 출입국에 관한 자료

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의 수용에 관한 자료

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등록자료 및 출입국에 관한 자료

러. 「국적법」에 따른 국적상실·국적취득 등에 관한 자료

머. 「여권법」에 따른 여권의 발급에 관한 자료

버. 「병역법」에 따른 복무기간 등에 관한 자료

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부동산등기법」 및 「건축법」 등에 따른 건물, 「선박법」 및 「어선법」에 따른 선박 및 어선,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및 건설기계,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등의 등기·등록 및 공시가격에 관한 자료

어.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 관련 자료 및 「형사소송법」에 따른 상해 또는 사망과 관련된 사건·사고의 수사기록 및 소송 관련 자료, 「공탁법」에 따른 공탁 관련 자료

저.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교통사고 조사사항에 관한 자료

처. 「의료법」에 따른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 진료에 관한 자료 및 진료비 산출에 관한 자료

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화장 등 장사에 관한 자료

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급활동에 관한 자료

퍼.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자료, 장기요양급여자료, 건강검진 결과자료, 의료급여 관련 자료,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관계에 관한 자료

허. 「형법」 및 「형사소송법」에 따른 수사 및 재판에 대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 형사재판 판결문, 형사재판 확정증명서, 경찰서에 접수된 가출 또는 실종신고에 관한 자료

고. 「선원법」에 따른 선박 승선자에 관한 자료

노. 그 밖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요양기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및 제2호에 따른 기관·법인·단체가 보유한 자료로서 법에 따른 급여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공단에서 인정하는 자료

2. 자료 요청의 상대방

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나.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마.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바. 「평생교육법」에 따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사시설

아.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및 「보험업법」, 「선주상호보험조합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

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 「한국해운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원양산업발전법」, 「민법」 및 「선원법 시행령」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자

차. 그 밖에 법에 따른 급여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자료를 보유한 기관·법인·단체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별표 3] <신설 2018. 9. 18.>

직무상 부상·질병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제29조제2항 본문 관련)

1. 직무상 부상

가.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직무상 부상으로 보지 않는다.

1) 교직원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2) 교직원의 사적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3)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4) 직무수행 중 사적 원인에 의한 폭력 또는 장난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5) 정상적인 출장 경로의 이탈 또는 출장 목적 외의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6) 교직원 상호 간의 사적인 친목행사 또는 취미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7) 직무와 인과관계가 없는 다른 사람의 원한 등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나. 근무 시작 전, 근무 종료 후 또는 휴식시간에 직무에 필요한 준비행위·정리행위를 하거나 소속 기관의 회식·회합 등 공적 행사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다. 직무수행을 위하여 입주가 필요하거나 의무화되어 있는 시설 등의 불완전 또는 시설관리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퇴근하거나 근무지에 부임(赴任) 또는 귀임(歸任)하는 중 발생한 교통사고·추락사고 또는 그 밖의 사고로 인한 부상

마. 그 밖에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서 그 부상과 직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의 부상

2. 직무상 질병

가. 물리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1) 직무수행 중 방사선·자외선·엑스선·유해광선·극초단파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2) 직무수행 중 화상 또는 동상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3) 직무수행 장소의 강렬한 소음으로 인한 질병

4) 직무수행 중 가스·빛·열·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화학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1) 직무수행 장소의 심한 분진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한 호흡기 질병

2) 직무수행 중 유해가스·유해독물 또는 중금속으로 인한 중독과 이에 따른

질병

다. 생물학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1) 직무수행 중 환자의 진료·간호업무 또는 연구목적으로 병원체를 취급함으로써 발생한 질병

2) 직무수행 중 동물, 동물의 털, 그 밖의 동물성 물질을 취급함으로써 발생한 감염성 질병, 알레르기성 질병 또는 기생충 감염 등에 의한 질병

3) 직무수행 중 습지·풀밭·산지 또는 전염병이 있는 지역에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한 질병

4) 직무수행 중 예방접종·건강진단 등 소속 기관의 건강관리를 위한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5) 직무수행 중 제공된 음식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6) 직무수행 중 근무환경의 변화 또는 직무수행 장소의 숙박시설 여건으로 인한 현저한 생리적 변화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라. 근골격계 질병

직무수행 중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거나 무거운 물체를 운반하는 등 급격하게 힘을 사용함으로써 근육·힘줄·골격·관절·척추 등에 발생한 질병

마.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직무수행 중 돌발적인 사건,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단기간에 상당한 정도의 업무상 부담 증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수행 및 초과근무 등으로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유발되어 발생하거나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

바. 암 질병 또는 악성질병

직무수행 중 석면·벤젠·포름알데히드 등 발암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어 그 영향을 받은 신체 부위에 발생한 암 질병 또는 악성 질병

사. 정신질환

직무수행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사고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아. 직무상 부상을 입은 교직원에게 발생한 질병으로서 다음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의 질병

1) 직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자. 그 밖에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으로서 그 질병과 직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의 질병

3. 평소의 질병·발병요인 또는 악화된 건강 상태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직무 수행과의 경합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 및 새로 발생한 부상·질병

가.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의 가능성이 큰 특수한 환경에서의 계속적인 직무 수행

나. 통상적인 담당직무가 아닌 특수한 직무의 수행

다. 야간근무를 계속하였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무상의 과로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5. 1. 14.>

간병급여의 지급요건(제33조제1항 관련)

| 구분 | 지급요건 |
|---|---|
| 1. 상시 간병급여 | 가.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br>나. 두 눈, 두 팔 또는 두 다리 중 어느 하나의 부위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고, 다른 부위에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
| 2. 수시 간병급여 | 가.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br>나. 장해등급 제1급(제41조제3항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5. 1. 14.>

## 장해등급(제41조제1항 관련)

제1급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영구적으로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5.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6. 두 팔을 완전히 영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7.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8. 두 다리를 완전히 영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제2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5.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6.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제3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영구적으로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제4급

1. 두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3.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4.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6. 두 손의 손가락을 완전히 영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7. 두 발을 발목발허리관절(족근중족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제5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3.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4. 한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6. 한 팔을 완전히 영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7. 한 다리를 완전히 영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8.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제6급

1. 두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3. 두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4.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척주(脊柱)에 극도의 기능장해와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동시에 남은 사람
   나.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와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동시에 남은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이 못 쓰게 된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이 못 쓰게 된 사람
8. 한 손의 다섯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네 손가락을 잃은 사람

제7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 이하인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 이상을 잃은 사람
7. 한 손의 다섯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네 손가락이 못 쓰게 된 사람
8. 한 발을 발목발허리관절(족근중족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9. 한 팔에 가짜관절(부러진 뼈가 완전히 아물지 못하여 그 부분이 마치 관절처럼 움직이는 상태)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10. 한 다리에 가짜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11. 두 발의 발가락이 모두 못 쓰게 된 사람
12. 외모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3. 생식기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
1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와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동시에 남은 사람
    나.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와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동시에 남은 사람
    다. 척주에 중증도의 기능장해와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동시에 남은 사람
    라. 척주에 극도의 변형장해와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동시에 남은 사람

제8급

1. 한 눈이 실명되거나 한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나.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와 중증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동시에 남은 사람
    다. 척주에 중증도의 기능장해와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동시에 남은 사람
    라. 척주에 극도의 변형장해와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동시에 남은 사람
    마.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와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동시에 남은 사람

바. 척추에 중증도의 변형장해와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동시에 남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이 못 쓰게 되거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 이상이 못 쓰게 된 사람

5. 한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못 쓰게 된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못 쓰게 된 사람

8. 한 팔에 가짜관절이 남은 사람

9. 한 다리에 가짜관절이 남은 사람

10.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1. 비장 또는 한쪽 신장을 잃은 사람

제9급

1. 두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3. 두 눈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이상이 남은 사람

4. 두 눈의 눈꺼풀이 뚜렷하게 상실된 사람

5. 코가 고도로 상실된 사람

6.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8.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기 어려운 사람

9.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10.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되는 사람

11.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되는 사람

12.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었거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에 세 손가락을 잃은 사람

1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이 못 쓰게 된 사람

14.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두 발가락 이상을 잃은 사람

15. 한 발의 발가락 모두가 못 쓰게 된 사람

16.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1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척추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나. 척주에 중증도의 기능장해와 중증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동시에 남은 사람
다. 척주에 극도의 변형장해와 중증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동시에 남은 사람
라.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와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동시에 남은 사람
마. 척주에 중증도의 변형장해와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동시에 남은 사람
바. 척주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18. 외모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제10급

1. 한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의 눈꺼풀이 뚜렷하게 상실된 사람
3. 코가 중등도로 상실된 사람
4.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5. 14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
6. 두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기 어려운 사람
7.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8.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9.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 못 쓰게 된 사람,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이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세 손가락이 못 쓰게 된 사람
10. 한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1.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네 발가락을 잃은 사람
12.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13.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1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척주에 중증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나. 척주에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다.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와 중증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동시에 남은 사람
라. 척주에 중증도의 변형장해와 중증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동시에 남은 사람
마. 척주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제11급

1. 두 눈의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거나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가 상실된 사람
4. 10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6. 한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7. 두 귀의 귓바퀴가 고도로 상실된 사람
8. 한 손의 가운뎃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9.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이 못 쓰게 되거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두 손가락이 못 쓰게 된 사람
10.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두 발가락 이상이 못 쓰게 된 사람
11. 흉복부장기에 장해가 남은 사람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나.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다.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와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동시에 남은 사람
    라.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와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동시에 남은 사람
    마. 척주에 중증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13. 외모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4. 두 팔의 노출된 면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5.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제12급

1. 한 눈의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거나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2.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3. 한 눈의 눈꺼풀의 일부가 상실된 사람
4. 코가 경도로 상실된 사람
5. 코로 숨쉬기가 곤란하게 된 사람 또는 냄새를 맡지 못하게 된 사람
6. 7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
7. 한 귀의 귓바퀴가 고도로 상실된 사람 또는 두 귀의 귓바퀴가 중등도로 상실된 사람
8. 빗장뼈(쇄골)·복장뼈(흉골)·갈비뼈(늑골)·어깨뼈(견갑골) 또는 골반뼈에 뚜렷한 변형이 남은 사람
9.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10.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11. 팔과 다리의 긴뼈에 변형이 남은 사람
12. 한 손의 가운뎃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이 못 쓰게 된 사람
13. 한 발의 둘째 발가락을 잃은 사람, 한 발의 둘째 발가락을 포함하여 두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 발의 가운뎃발가락 이하의 세 발가락을 잃은 사람
14.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네 발가락이 못 쓰게 된 사람
15. 신체 일부에 뚜렷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6.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17. 두 팔의 노출된 면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8.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제13급

1. 한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이상이 남은 사람
3. 5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
4. 한 귀의 귓바퀴가 중등도로 상실된 사람 또는 두 귀의 귓바퀴가 경도로 상실된 사람
5.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의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사이 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9. 한 다리가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0. 한 발의 가운뎃발가락 이하의 한 발가락 또는 두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발의 둘째 발가락이 못 쓰게 된 사람, 한 발의 둘째 발가락을 포함하여 두 발가락이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한 발의 가운뎃발가락 이하의 세 발가락이 못 쓰게 된 사람
12. 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의 수상 부위에 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
13.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4. 두 팔의 노출된 면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5.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제14급

1. 3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
2. 한 귀의 귓바퀴가 경도로 상실된 사람

3. 한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4. 두 팔의 노출된 면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6. 한 손의 새끼손가락이 못 쓰게 된 사람
7.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 중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 중 손가락뼈 사이 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9. 한 발의 가운뎃발가락 이하의 한 발가락 또는 두 발가락이 못 쓰게 된 사람
10.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1. 척주에 경미한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의 수상 부위에 비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

※ 비고: 이 표에서의 시력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5. 1. 14.>

2개 이상의 장해에 대한 종합장해등급표(제41조제3항 단서 관련)

| 장해등급(1) / 장해등급(2) | 13 | 12 | 11 | 10 | 9 | 8 | 7 | 6 | 5 | 4 | 3 | 2 |
|---|---|---|---|---|---|---|---|---|---|---|---|---|
| 13 | 12 | 11 | 10 | 9 | 8 | 7 | 6 | 5 | 4 | 3 | 2 | 1 |
| 12 | 11 | 11 | 10 | 9 | 8 | 7 | 6 | 5 | 4 | 3 | 2 | 1 |
| 11 | 10 | 10 | 10 | 9 | 8 | 7 | 6 | 5 | 4 | 3 | 2 | 1 |
| 10 | 9 | 9 | 9 | 9 | 8 | 7 | 6 | 5 | 4 | 3 | 2 | 1 |
| 9 | 8 | 8 | 8 | 8 | 8 | 7 | 6 | 5 | 4 | 3 | 2 | 1 |
| 8 | 7 | 7 | 7 | 7 | 7 | 6 | 5 | 4 | 3 | 2 | 1 | 1 |
| 7 | 6 | 6 | 6 | 6 | 6 | 5 | 5 | 4 | 3 | 2 | 1 | 1 |
| 6 | 5 | 5 | 5 | 5 | 5 | 4 | 4 | 4 | 3 | 2 | 1 | 1 |
| 5 | 4 | 4 | 4 | 4 | 4 | 3 | 3 | 3 | 2 | 1 | 1 | 1 |
| 4 | 3 | 3 | 3 | 3 | 3 | 2 | 2 | 2 | 1 | 1 | 1 | 1 |
| 3 | 2 | 2 | 2 | 2 | 2 | 1 | 1 | 1 | 1 | 1 | 1 | 1 |
| 2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비고

1. 장해등급(1)에 해당하는 등급과 장해등급(2)에 해당하는 등급이 서로 만나는 란의 등급을 종합장해등급으로 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실제 장해정도가 제1호에 따라 결정된 종합장해등급에 해당하는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해 명백히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장해등급으로 조정할 수 있다.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별표 7] <신설 2025. 1. 14.>

교직원등에 대한 양육책임 불이행 판단 시 고려사항(제64조의2제1항 관련)

| 대상자 | 판단 시 고려사항 |
|---|---|
| 부모 | 1. 교직원등이 미성년이었던 기간(생후부터 19세가 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동안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같이 하였거나,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달랐던 경우에는 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br>2. 교직원등이 미성년이었던 기간 동안 양육비 등 생계의 기반이 되는 경제적인 지원을 한 기간 및 정도<br>3. 교직원등이 미성년이었던 기간 동안 교직원등에 대해 범죄행위,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하여 부모로서의 보호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및 위반한 정도 |

# 사립학교 교직원 학자금대여사업 위탁관리규칙

[시행 2019. 9. 17.] [교육부령 제188호, 2019. 9. 17., 타법개정]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044 - 203 - 649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6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국가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위탁한 사립학교교직원에 대한 학자금대여사업의 관리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0. 12.]

**제2조(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국가로부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6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에 대한 학자금대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관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0. 12.]

**제3조(사업비의 교부신청)** ① 공단은 국가로부터 사업의 관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관리운영비를 포함하며, 이하 "사업비"라 한다)을 산출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공단은 제1항의 사업비를 교부받으려는 때에는 해당 연도 1월 10일까지 사업비교부신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10. 12.]

**제4조(학자금의 대여대상자 등)** ① 학자금은 교직원 본인 또는 그 자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경우 그 교직원에게 대여한다. <개정 2013. 3. 23.>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대학원대학 및 대학원과 상급 학위과정에의 입학학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각종학교는 제외한다)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별표의 대학
3.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
4. 학사 또는 전문학사 학위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외국대학
② 제1항에 따른 학자금 대여대상 교직원의 범위 및 대여액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개정 2013. 3. 23.>
③ 교직원 또는 그 배우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자녀에 대한 학자금을 대여받거나 그 자녀가 다른 법령에 따라 학자금을 대여받는 경우 그 교직원은 해당 자녀에 대한 해당 학기의 학자금을 대여받을 수 없다.

④ 교직원 본인 및 그 자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기의 학자금을 대여받을 수 없다.<개정 2013. 3. 23.>

1. 수업료 및 기성회비의 전액(신입생의 경우에는 입학금을 포함한다)을 면제받거나 그 금액 이상의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일정 수업연한을 초과하는 기간에 재학 중인 경우. 이 경우 일정 수업연한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⑤ 공단은 교직원이 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학자금을 대여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대여액과 그 대여액을 수령한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매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의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액을 반납할 것을 해당 교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교직원이 납부기한 내에 대여액과 그 이자액을 내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초과일수에 대하여 매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의 2배에 해당하는 금리와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은행별 1년 기한 신용대출 최고금리를 평균한 금리 중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연체금으로 따로 내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0. 12.]

**제4조의2**

[제4조의2는 제5조로 이동 <2010. 10. 12.>]

**제4조의3**

[제4조의3은 제6조로 이동 <2010. 10. 12.>]

**제5조(학자금의 상환방법 등)** ① 대여받은 학자금의 상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대여받은 교직원 본인 및 그 자녀가 졸업한 학교의 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경우에는 졸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2년 거치 4년 분할상환
2. 대여받은 교직원 본인 및 그 자녀가 졸업한 학교의 수업연한이 4년 미만인 경우에는 졸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다만, 그 거치기간 내에 대학에 편입학한 경우에는 그 대학을 졸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2년 거치 4년 분할상환
3. 대여받은 교직원 본인 및 그 자녀가 퇴학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상환
   가. 4학기 이상의 기간동안 대여받은 때에는 퇴학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나. 3학기 이하의 기간동안 대여받은 때에는 퇴학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 명 이상의 자녀에 대한 학자금 상환기간이 겹치는 경우에는 상환시점이 세 번째 이상인 자녀를 거치기간 연장대상자로 정하여 대여 받은 학자금의 상환을 유예한다. 이 경우 거치기간 연장대상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우선 상환하는 연장대상자를 정한다.<신설 2014. 11. 20.>

1. 상환예정일이 빠른 자녀
2. 상환금액이 많은 자녀
3. 출생이 빠른 자녀

③ 제2항에 따른 거치기간 연장대상자에 대하여는 거치기간 연장대상자가 아닌 자녀 중 상환이 종료되는 시점에 먼저 이르는 자녀의 상환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상환하도록 거치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거치기간 연장대상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두 명까지만 학자금 상환이 겹치도록 순차적으로 거치기간을 연장하되, 같은 방법을 적용한다.<신설 2014. 11. 20., 2019. 9. 17.>

④ 학자금을 대여받은 교직원이 퇴직하는 때 또는 학자금을 대여받은 후에 제4조제4항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시에 상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교직원이 퇴직하는 경우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 11. 20.>

⑤ 학자금을 대여받은 교직원이 상환일까지 상환금을 내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초과일수에 대하여 매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의 2배에 해당하는 금리와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은행별 1년 기한 신용대출 최고금리를 평균한 금리 중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연체금으로 따로 내야 한다.<개정 2014. 11. 20.>

[전문개정 2010. 10. 12.]

[제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10. 10. 12.>]

**제6조(사업관리에 관한 세부사항)** 학자금의 대여시기, 상환월부금, 상환절차와 그 밖에 사업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 10. 12.]

[제4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10. 10. 12.>]

**제7조(사업보고)** ① 공단은 매년 해당 연도의 사업의 관리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대하여 수시로 사업의 관리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10. 12.]

[제5조에서 이동 <2010. 10. 12.>]

**제8조(위탁사업의 해지)** ① 국가가 사업관리의 위탁을 해지한 경우에는 공단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사업을 중단하여야 하며 사업이 중단되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ㆍ의무는 중단된 때부터 국가에 귀속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해지된 사업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계 부처의 협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10. 12.]
[제6조에서 이동 <2010. 10. 12.>]

**부칙** <제493호,1981. 11. 1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국가의 위탁을 받아 관리공단이 대여한 대여금에 대하여도 이 규칙에 의하여 관리한다.

**부칙** <제523호,1984. 3. 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학자금의 대여를 받은 자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594호,1991. 3. 16.>(각종학교에관한규칙등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3호,1992. 4. 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연체이자율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에 의한 연체이자율에 관하여는 그 이자의 계산기간이 이 규칙 시행이전인 경우에는 이 규칙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756호,1999. 11.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9호,2001. 1. 31.>(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2# 생략
2$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여사업위탁관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제1항、제4항제2호 후단, 제4조의2제1항 단서 및 제5조제1항、제2항 및 제6조제1항、제2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 내지4! 생략

**부칙** <제781호,2001. 3. 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학자금의 상환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학자금을 대여받고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803호,2002. 3.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5호,2007. 10.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2008. 3. 4.>(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2# 까지 생략
2$ 사립학교 교직원 학자금대여사업 위탁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제4항제2호 후단,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2%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 <제77호,2010. 10.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체금 계산방식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4조제5항 후단 및 제5조(종전의 제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연체금의 계산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호,2013. 3. 2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3) 까지 생략

3! 사립학교 교직원 학자금대여사업 위탁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제2호 후단,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3@ 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제48호,2014. 11.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자금 상환 유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대여 받은 학자금의 상환기간이 종료되었으나 그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교직원에 대해서는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88호,2019. 9. 17.>(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립학교 교직원 학자금대여사업 위탁관리규칙 [별표] <개정 2010.10.12>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대학(제4조제1항제2호 관련)

1.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른 경찰대학
2. 「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사관학교(육군·해군·공군)
3.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육군3사관학교
4.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과학기술대학
5.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에 따른 한국예술종합학교
6. 「한국전통문화학교 설치령」에 따른 한국전통문화학교
7.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대학
8. 그 밖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 사립학교 교직원 학자금대여사업 위탁관리규칙

[시행 2019. 9. 17.] [교육부령 제188호, 2019. 9. 17.,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6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국가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위탁한 사립학교교직원에 대한 학자금대여사업의 관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0. 12.]

**제2조(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국가로부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6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에 대한 학자금대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관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0. 12.]

**제3조(사업비의 교부신청)** ① 공단은 국가로부터 사업의 관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관리운영비를 포함하며, 이하 "사업비"라 한다)을 산출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공단은 제1항의 사업비를 교부받으려는 때에는 해당 연도 1월 10일까지 사업비교부신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10. 12.]

**제4조(학자금의 대여대상자 등)** ① 학자금은 교직원 본인 또는 그 자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경우 그 교직원에게 대여한다. <개정 2013. 3. 23.>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대학원대학 및 대학원과 상급 학위과정에의 입학학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각종학교는 제외한다)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별표의 대학
3.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
4. 학사 또는 전문학사 학위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외국대학

② 제1항에 따른 학자금 대여대상 교직원의 범위 및 대여액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개정 2013. 3. 23.>
③ 교직원 또는 그 배우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자녀에 대한 학자금을 대여받거나 그 자녀가 다른 법령에 따라 학자금을 대여받는 경우 그 교직원은 해당 자녀에 대한 해당 학기의 학자금을 대여받을 수 없다.

④ 교직원 본인 및 그 자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기의 학자금을 대여받을 수 없다.<개정 2013. 3. 23.>

1. 수업료 및 기성회비의 전액(신입생의 경우에는 입학금을 포함한다)을 면제받거나 그 금액 이상의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일정 수업연한을 초과하는 기간에 재학 중인 경우. 이 경우 일정 수업연한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⑤ 공단은 교직원이 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학자금을 대여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대여액과 그 대여액을 수령한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매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의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액을 반납할 것을 해당 교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교직원이 납부기한 내에 대여액과 그 이자액을 내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초과일수에 대하여 매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의 2배에 해당하는 금리와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은행별 1년 기한 신용대출 최고금리를 평균한 금리 중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연체금으로 따로 내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0. 12.]

**제4조의2**

[제4조의2는 제5조로 이동 <2010. 10. 12.>]

**제4조의3**

[제4조의3은 제6조로 이동 <2010. 10. 12.>]

**제5조(학자금의 상환방법 등)** ① 대여받은 학자금의 상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대여받은 교직원 본인 및 그 자녀가 졸업한 학교의 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경우에는 졸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2년 거치 4년 분할상환
2. 대여받은 교직원 본인 및 그 자녀가 졸업한 학교의 수업연한이 4년 미만인 경우에는 졸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다만, 그 거치기간 내에 대학에 편입학한 경우에는 그 대학을 졸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2년 거치 4년 분할상환
3. 대여받은 교직원 본인 및 그 자녀가 퇴학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상환
   가. 4학기 이상의 기간동안 대여받은 때에는 퇴학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나. 3학기 이하의 기간동안 대여받은 때에는 퇴학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 명 이상의 자녀에 대한 학자금 상환기간이 겹치는 경우에는 상환시점이 세 번째 이상인 자녀를 거치기간 연장대상자로 정하여 대여 받은 학자금의 상환을 유예한다. 이 경우 거치기간 연장대상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우선 상환하는 연장대상자를 정한다.<신설 2014. 11. 20.>

1. 상환예정일이 빠른 자녀
2. 상환금액이 많은 자녀
3. 출생이 빠른 자녀

③ 제2항에 따른 거치기간 연장대상자에 대하여는 거치기간 연장대상자가 아닌 자녀 중 상환이 종료되는 시점에 먼저 이르는 자녀의 상환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상환하도록 거치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거치기간 연장대상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두 명까지만 학자금 상환이 겹치도록 순차적으로 거치기간을 연장하되, 같은 방법을 적용한다.<신설 2014. 11. 20., 2019. 9. 17.>

④ 학자금을 대여받은 교직원이 퇴직하는 때 또는 학자금을 대여받은 후에 제4조제4항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시에 상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교직원이 퇴직하는 경우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 11. 20.>

⑤ 학자금을 대여받은 교직원이 상환일까지 상환금을 내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초과일수에 대하여 매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의 2배에 해당하는 금리와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은행별 1년 기한 신용대출 최고금리를 평균한 금리 중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연체금으로 따로 내야 한다.<개정 2014. 11. 20.>

[전문개정 2010. 10. 12.]

[제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10. 10. 12.>]

**제6조(사업관리에 관한 세부사항)** 학자금의 대여시기, 상환월부금, 상환절차와 그 밖에 사업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 10. 12.]

[제4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10. 10. 12.>]

**제7조(사업보고)** ① 공단은 매년 해당 연도의 사업의 관리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대하여 수시로 사업의 관리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10. 12.]

[제5조에서 이동 <2010. 10. 12.>]

**제8조(위탁사업의 해지)** ① 국가가 사업관리의 위탁을 해지한 경우에는 공단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사업을 중단하여야 하며 사업이 중단되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ㆍ의무는 중단된 때부터 국가에 귀속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해지된 사업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계 부처의 협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10. 12.]
[제6조에서 이동 <2010. 10. 12.>]

**부칙** <제493호,1981. 11. 1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국가의 위탁을 받아 관리공단이 대여한 대여금에 대하여도 이 규칙에 의하여 관리한다.

**부칙** <제523호,1984. 3. 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학자금의 대여를 받은 자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594호,1991. 3. 16.>(각종학교에관한규칙등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3호,1992. 4. 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연체이자율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에 의한 연체이자율에 관하여는 그 이자의 계산기간이 이 규칙 시행이전인 경우에는 이 규칙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756호,1999. 11.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9호,2001. 1. 31.>(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2# 생략
2$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여사업위탁관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제1항、제4항제2호 후단, 제4조의2제1항 단서 및 제5조제1항、제2항 및 제6조제1항、제2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 내지4! 생략

**부칙** <제781호,2001. 3. 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학자금의 상환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학자금을 대여받고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803호,2002. 3.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5호,2007. 10.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2008. 3. 4.>(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2# 까지 생략
2$ 사립학교 교직원 학자금대여사업 위탁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제4항제2호 후단,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2%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 <제77호,2010. 10.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체금 계산방식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4조제5항 후단 및 제5조(종전의 제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연체금의 계산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호,2013. 3. 2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3) 까지 생략

3! 사립학교 교직원 학자금대여사업 위탁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제2호 후단,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3@ 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제48호,2014. 11.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자금 상환 유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대여 받은 학자금의 상환기간이 종료되었으나 그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교직원에 대해서는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88호,2019. 9. 17.>(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립학교 교직원 학자금대여사업 위탁관리규칙 [별표] <개정 2010.10.12>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대학(제4조제1항제2호 관련)

1.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른 경찰대학
2. 「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사관학교(육군·해군·공군)
3.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육군3사관학교
4.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과학기술대학
5.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에 따른 한국예술종합학교
6. 「한국전통문화학교 설치령」에 따른 한국전통문화학교
7.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대학
8. 그 밖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 사립학교법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073호, 2025. 11. 11., 일부개정]

교육부 (사립대학지원과) 044 - 203 - 6959
교육부 (학교정책과) 044 - 203 - 6702

## 제1장 총칙 <개정 2020. 12. 22.>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 12. 2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8. 10.>

1. “사립학교”란 학교법인, 공공단체 외의 법인 또는 그 밖의 사인(私人)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법인”이란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
3. “사립학교경영자”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이 법에 따라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학교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사인을 말한다.
4.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전보(轉補),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停職),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6. 2. 3.]

**제3조(학교법인이 아니면 설립할 수 없는 사립학교 등)** 학교법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할 수 없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산업체가 그 고용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하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대학
2. 산업대학·사이버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3.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

[전문개정 2020. 12. 22.]

**제4조(관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0. 12. 22.>

1. 사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특수학교ㆍ유치원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
2. 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② 삭제<1991. 3. 8.>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개정 2020. 12. 22.>

1. 사립의 대학ㆍ산업대학ㆍ사이버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대학교육기관"이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3. 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와 그 밖의 사립학교를 아울러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제목개정 2020. 12. 22.]

## 제2장 학교법인 <개정 2020. 12. 22.>

### 제1절 통칙 <개정 2020. 12. 22.>

**제5조(자산)** ① 학교법인은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와 그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와 재산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 12. 22.]

**제6조(사업)** ① 학교법인은 그가 설치한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수익을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② 삭제<1999. 8. 31.>

③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을 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22.>

1. 사업의 명칭과 그 사무소의 소재지
2. 사업의 종류
3. 사업 경영에 관한 자본금
4. 사업 경영의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5. 사업의 시기(始期) 및 기간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는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 회계로 경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22.>

[제목개정 2020. 12. 22.]

**제7조(주소)** 학교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전문개정 2020. 12. 22.]

**제8조(설립등기)** ① 학교법인은 설립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3주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 연월일
5.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 총액
7. 출자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
8. 이사의 성명ㆍ주소

② 제1항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사항은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③ 법원은 등기한 사항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12. 22.]

**제8조의2(재산 이전의 보고)** 제8조에 따라 등기한 학교법인은 지체 없이 재산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등기사항증명서 및 금융기관의 증명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재산출연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12. 22.]

**제9조(학교법인의 권리능력 등)** 학교법인의 권리능력과 불법행위능력에 관하여는 「민법」 제34조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0. 12. 22.]

## 제2절 설립 <개정 2020. 12. 22.>

**제10조(설립허가)** ① 학교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술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체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설치ㆍ경영하려는 사립학교의 종류와 명칭
4. 사무소 소재지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정원 및 그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수익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종류, 그 밖에 사업에 관한 사항
9.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과 그 방법
12.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정관에 적어야 할 사항

② 학교법인의 설립 당초의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6호의 사항을 정할 때 기술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체에 근무하는 사람을 임원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12. 22.]

**제10조의2(출연자의 정관 기재)** ① 학교법인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한 자의 출연 의사를 보호하고 그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관에 적을 수 있다.

1. 출연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2. 출연재산의 명세와 평가기준ㆍ금액
3. 출연자의 출연 의사

② 제1항에 따른 출연자 외에 학교법인의 설립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한 자에 대해서도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관에 적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12. 22.]

**제11조(정관의 보충)** ① 학교법인을 설립하려는 사람이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그 목적과 자산에 관한 사항만을 정하고 사망한 경우 교육부장관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없거나 그 청구가 없을 때에는 교육부장관이 직권으로 제1항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12. 22.]

**제12조(설립 시기)** 학교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전문개정 2020. 12. 22.]

**제13조(「민법」의 준용)** 학교법인의 설립에 관하여는 「민법」 제47조, 제48조,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2조의2, 제53조, 제54조 및 제55조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0. 12. 22.]

### 제3절 기관 <개정 2020. 12. 22.>

**제14조(임원)** ① 학교법인에는 임원으로서 7명 이상의 이사와 2명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유치원만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는 임원으로서 5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둘 수 있다.

② 이사 중 1명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된다.

③ 학교법인은 제1항에 따른 이사 정수(定數)의 4분의 1(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에 해당하는 이사(이하 "개방이사"라 한다)를 제4항에 따른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④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제26조의2에 따른 대학평의원회(이하 "대학평의원회"라 한다)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에 두고 그 조직과 운영 및 구성은 정관으로 정하되, 위원 정수는 5명 이상 홀수로 하고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위원회 위원의 2분의 1을 추천하도록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및 대학원 설치ㆍ경영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종교단체에서 2분의 1을 추천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추천위원회가 개방이사를 추천할 때에는 30일 이내에 추천을 완료하여야 하며, 그 기간에 추천하지 못하면 관할청이 추천한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방이사의 추천, 선임방법 및 자격요건과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 12. 22.]

**제15조(이사회)** ① 학교법인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12. 22.]

**제16조(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ㆍ결산ㆍ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6.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이사장 또는 이사가 학교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될 때에는 그 이사장 또는 이사는 해당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20. 12. 22.]

**제17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19조제4항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③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늦어도 회의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을 밝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모이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 개최를 요구하였을 때는 예외로 한다.

④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 그 소집권자가 궐위(闕位)되거나 소집을 기피하여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이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소집 일자, 장소 등을 공지하여야 한다.<신설 2021. 9. 24.>

[전문개정 2020. 12. 22.]

**제18조(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등)** ① 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정관으로 정한 이사 정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가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20. 12. 22.]

**제18조의2(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 개최 당일에 회의록을 작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안건별로 심의ㆍ의결 결과를 기록한 회의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

1. 개의, 회의 중지 및 산회(散會) 일시
2. 안건
3. 의사
4. 출석한 임원과 직원의 성명
5. 표결 수
6.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회의록과 회의조서에는 출석 임원 모두가 그 성명을 알 수 있도록 자필로 서명하고, 그 회의록 또는 회의조서가 2장 이상인 경우에는 각 장 사이에 걸쳐서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는 출석 임원 중 3명을 호선(互選)하여 대표로 회의록과 회의조서의 각 장 사이에 걸쳐서 서명하게 하거나 간인(間印)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회의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회의록을 대신하여 회의조서를 관할청에 제출할 수 있다.
④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회의록의 공개에 관한 기간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 12. 22.]

**제19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학교법인을 대표하고 이 법과 정관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며 그 밖에 학교법인 내부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에서 호선한 다른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교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학교법인의 재산 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학교법인의 재산 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 결과 부정하거나 불비(不備)한 점을 발견하였을 때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학교법인의 재산 상황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전문개정 2020. 12. 22.]

**제20조(임원의 선임과 임기)** ①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② 임원은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적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重任)할 수 있으며, 감사는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12. 22.]

**제20조의2(임원 취임의 승인취소)**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관할청은 그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4.>

1. 이 법,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을 위반하거나 이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임원 간의 분쟁, 회계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켰을 때
3. 학사행정에 관하여 해당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였을 때
4. 관할청의 학교의 장 및 교직원에 대한 징계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취임 승인의 취소는 관할청이 해당 학교법인에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5일이 지나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다만, 시정을 요구하여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회계 부정, 횡령, 뇌물 수수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 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세부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 12. 22.]

**제20조의3(임원의 직무집행정지)** ① 관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임원 취임 승인의 취소를 위한 조사나 감사가 진행 중일 때
2.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기간 중 해당 임원이 계속 직무를 집행할 경우 법인 또는 학교 운영상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직무집행정지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12. 22.]

**제21조(임원 선임의 제한)** ① 이사 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다만, 대학교육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학교법인 기본재산액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출연한 학교법인인 경우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미만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사회를 구성할 때 서로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이사들이 이사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이사 중 적어도 3분의 1 이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경험 또는 합산한 교육경험이 3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험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험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 또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의 명예교수ㆍ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으로 근무한 경험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근무경험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경험

④ 감사와 감사 또는 감사와 이사는 서로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어서는 아니 된다.
⑤ 학교법인에 두는 감사 중 1명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선임한다.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학교법인에 두는 감사 중 1명은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임원 취임의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1. 9. 24.>
1. 제20조의2에 따라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사람
2. 제54조의2에 따라 학교의 장의 직위에서 해임된 날부터 6년이 지난 사람
3. 제61조에 따라 파면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사람
[전문개정 2020. 12. 22.]

**제2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1. 9. 24.>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0조의2에 따라 임원 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제54조의2에 따른 해임 요구에 의하여 해임된 후 6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61조에 따라 파면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4급 이상의 교육행정공무원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전문개정 2020. 12. 22.]

**제22조의2(임원의 당연퇴임 사유)** 학교법인의 임원이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하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를 적용할 때 “공무원”은 “임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1. 9. 24.]

**제23조(임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
② 이사는 감사 또는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이나 그 밖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③ 감사는 이사장, 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그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이나 그 밖의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20. 12. 22.]

**제24조(임원의 보충)** 이사나 감사 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12. 22.]

**제24조의2(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제25조에 따른 임시이사의 선임과 제25조의2에 따른 임시이사의 해임 및 제25조의3에 따른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임시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
2. 임시이사의 해임에 관한 사항
3.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할청이 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③ 조정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할청은 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재심 결과를 수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12. 22.]

**제24조의3(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조정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호선한다.

1. 대통령이 추천하는 사람 3명
2.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3명
3.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5명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 12. 22.]

**제24조의4(조정위원회 위원의 자격 기준)**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대학의 총장ㆍ학장 또는 초ㆍ중등학교의 교장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 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
3.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교육 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
4. 공인회계사로서 회계업무 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
5. 교육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무원 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

②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전문개정 2020. 12. 22.]

**제25조(임시이사의 선임)** ① 관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0.>

1. 학교법인이 이사의 결원을 보충하지 아니하여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제20조의2에 따라 학교법인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한 경우. 다만,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되어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사회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25조의2에 따라 임시이사를 해임한 경우

② 임시이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1항에 따른 사유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임시이사는 제1항에 따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재임하되, 그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임시이사는 제20조에 따른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⑤ 관할청은 임시이사가 선임된 법인에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 중 재정이 열악한 학교법인의 최소한의 이사회 운영경비, 사무직원 인건비 및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위하여 소요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 8. 10.>

[전문개정 2020. 12. 22.]

**제25조의2(임시이사의 해임)** 관할청은 임시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임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그 직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경우
3. 제2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전문개정 2020. 12. 22.]

**제25조의3(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① 관할청은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제25조에 따라 선임된 임시이사의 선임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체 없이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이사 후보자 추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신설 2025. 1. 21.>

1.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포함하여 구성하고, 조정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협의체. 이 경우 나목의 사람은 그 퇴직일이 가장 최근인 사람부터 순차적으로 포함하고, 협의체의 총인원수는 해당 학교법인 이사 정수의 과반수로 하되, 가목의 사람만으로 인원수가 초과되거나 나목의 사람 중 마지막으로 구성원으로 포함될 사람들의 퇴직일이 동일하여 인원수가 초과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인원을 포함한 인원수를 협의체의 총인원수로 본다.
   가. 해당 학교법인의 이사(임시이사는 제외한다)

나. 가목 외의 사람 중 해당 학교법인의 이사(임시이사는 제외한다)였던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로서 조정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구
가.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직원 대표기구
나.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학생·학부모 대표기구
3. 추천위원회
4. 해당 학교법인(제14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으로 한정한다)을 설립한 종교단체
5. 관할청
6. 그 밖에 조정위원회가 인정하는 이해관계인
③ 조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이사 후보자 추천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신설 2025. 1. 21.>
1. 제2항제1호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제2항제1호에 따른 협의체에 추천하도록 하는 후보자의 수가 제2항에 따라 추천받는 전체 후보자 수(동일한 후보자가 있더라도 제2항 각 호에 따른 추천 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별개로 계산한다)의 과반수 미만이 되도록 할 것
가. 제20조의2에 따라 임원 취임의 승인이 취소(임원 간의 분쟁을 이유로 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적이 있는 사람
나. 제54조의2에 따라 해임된 적이 있는 사람
다. 제61조에 따라 파면된 적이 있는 사람
라. 그 밖에 해당 학교법인, 다른 학교법인 또는 해당 학교법인이나 다른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것으로 조정위원회가 인정한 사람
2. 제1호 외의 경우: 제2항제1호에 따른 협의체에 추천하도록 하는 후보자의 수가 제2항에 따라 추천받는 전체 후보자 수(동일한 후보자가 있더라도 제2항 각 호에 따른 추천 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별개로 계산한다)의 과반수가 되도록 할 것
④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은 매년 1회 이상 조정위원회에 정상화 추진 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 1. 21.>
⑤ 조정위원회는 제4항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해당 학교법인의 임시이사 해임 및 정상화 여부에 관한 사항을 관할청에 통보한다.<개정 2025. 1. 21.>
[전문개정 2020. 12. 22.]

**제26조(임원의 보수 제한)** ① 학교법인의 임원 중 정관으로 정한 상근(常勤) 임원을 제외한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實費)의 변상은 예외로 한다.
② 학교법인은 그 학교법인 기본재산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그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출연하거나 기증한 사람 중 생계가 곤란한 사람에게는 그 학교법인의 수익이 있는 범위에서 생계비·의료비·장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보수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증한 사람 중 생계가 곤란한 사람의 기준과 생계비·의료비·장례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 12. 22.]

**제26조의2(대학평의원회)** ① 대학교육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를 둔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자문사항으로 한다.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 대학평의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 12. 22.]

**제27조(「민법」의 준용)**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이사에 관하여는 「민법」 제59조제2항, 제61조, 제62조, 제64조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 제62조 중 "타인"은 "다른 이사"로 본다.

[전문개정 2020. 12. 22.]

### 제4절 재산과 회계 <개정 2020. 12. 22.>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①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에 대하여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또는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③ 「초·중등교육법」 제10조 및 「고등교육법」 제11조에 따른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입학금 또는 학교운영지원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받을 권리와 제29조제2항에 따라 별도계좌로 관리되는 수입에 대한 예금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④ 관할청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⑤ 학교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개시된 때와 완결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21. 8. 10.>

[전문개정 2020. 12. 22.]

**제29조(회계의 구분 등)** ①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개정 2020. 12. 22.>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교비회계(校費會計)와 부속병원회계(부속병원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구분할 수 있고,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며, 각 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학교가 받은 기부금 및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22.>

③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일반업무회계와 제6조에 따른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개정 2020. 12. 22.>

④ 제2항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해당 학교의 장이 편성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에 따라 확정·집행한다.<개정 2020. 12. 22., 2021. 9. 24.>

1. 대학교육기관: 대학평의원회에 자문 및 「고등교육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록금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사·의결을 거친 후 이사회의 심사·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사회의 심사·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3. 유치원: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에 자문을 거친 후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다만,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⑤ 삭제<2005. 12. 29.>

⑥ 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轉出)·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 12. 22.>

1.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2. 공공 또는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교육용 기본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⑦ 삭제<2007. 7. 27.>

[전문개정 1981. 2. 28.]

[제목개정 2020. 12. 22.]

**제30조(회계연도)** 학교법인의 회계연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학년도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22.]

**제31조(예산 및 결산의 제출)** ① 학교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는 예산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② 관할청은 제1항의 예산이 회계 관계 법령 등을 위반하여 편성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정을 지도할 수 있다.

③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결산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유치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 9. 24.>

1. 대학교육기관: 대학평의원회에 자문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학교법인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를 제출할 때에 그 학교법인의 감사 모두가 서명ㆍ날인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제5항에 따른 학교법인은 제외한다)은 직접 선임한 학교법인과 독립한 외부감사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감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감사보고서(이하 "외부감사보고서"라 한다) 및 부속서류(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의 교비회계 결산은 제외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1. 8. 10.>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선정한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를 제출할 때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보고서 및 부속서류(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의 교비회계 결산은 제외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2021. 8. 10.>

1. 연속하는 4개 회계연도: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이 직접 선임한 학교법인과 독립한 외부감사인
2. 제1호에 따른 회계연도 다음 연속하는 2개 회계연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외부감사인. 이 경우 동일한 외부감사인으로 지정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학교법인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회계연도의 외부감사인을 해당 회계연도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회계연도의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신설 2021. 8. 10.>

⑦ 교육부장관은 제5항제2호에 따른 외부감사인 지정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21. 8. 10.>

⑧ 제1항에 따른 공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1. 8. 10.>

[전문개정 2020. 12. 22.]

**제31조의2(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①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외부감사보고서 및 부속서류를 감리(監理)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0.>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회계감사 및 감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 12. 22.]

**제32조(재산목록 등의 비치)** ① 학교법인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매 회계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재무상태표, 수입ㆍ지출 계산서, 그 밖에 필요한 장부나 서류를 작성하여 항상 그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갖추어 두어야 할 장부나 서류의 종류와 서식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 12. 22.]

**제32조의2(적립금)** ①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교육시설의 신축ㆍ증축 및 개수(改修)ㆍ보수(補修), 학생의 장학금 지급 및 교직원의 연

구 활동 지원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을 적립할 수 있다. 다만, 등록금회계로부터의 적립은 해당 연도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교육시설의 신축·증축 및 개수·보수 목적으로 적립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7.>

② 적립금은 원금보존적립금과 임의적립금으로 구분하고, 성격에 따라 연구적립금·건축적립금·장학적립금·퇴직적립금 및 그 밖에 구체적인 목적을 정하여 적립하는 특정목적적립금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 12. 27.>

③ 적립금은 기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고, 그 적립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금회계에서 비등록금회계로 전출된 적립금 상당액을 제외한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법인에 투자할 수 있다.<개정 2013. 1. 23., 2016. 12. 27., 2024. 1. 9.>

1. 적립금의 2분의 1 한도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증권의 취득
2. 적립금의 10분의 1 한도에서 해당 대학교육기관의 소속 교원 또는 학생이 개발한 신기술 또는 특허 등으로 창업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④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사유로 학생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기존 적립금을 학생지원 목적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20. 10. 20.>

⑤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적립금 투자 대상이 해당 대학교육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투자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7. 11. 28., 2020. 10. 20.>

⑥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에 따른 적립금별 적립 규모 및 사용내역을 공시하여야 한다.<신설 2024. 2. 27.>

⑦ 교육부장관은 대학교육기관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적립금 현황 및 사용내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점검을 하여야 한다.<신설 2024. 2. 27.>

⑧ 교육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실태점검 결과 및 해당 대학교육기관과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립금의 적립 여부, 적립 규모, 적립 기간 및 투자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6. 12. 27., 2017. 11. 28., 2020. 10. 20., 2024. 2. 27.>

⑨ 제1항 단서의 감가상각비 산정방법과 제5항에 따른 투자결과의 보고 시기 및 방법 등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6. 12. 27., 2017. 11. 28., 2020. 10. 20., 2024. 2. 27.>

[본조신설 2011. 7. 25.]

**제32조의3(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①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

② 기금운용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교원, 직원 및 재학생은 각각 2명 이상, 제2호에 따른 외부 전문가는 2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1. 9. 24., 2025. 11. 11.>

1. 해당 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ㆍ직원 및 재학생
2.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
3. 그 밖에 동문 및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③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 12. 22.]

**제32조의4(이월금)** ①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해당 회계연도의 교비회계 예산을 편성ㆍ집행할 때에 이월금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대학교육기관의 이월금이 재정 규모에 비하여 과다(過多)한 경우에는 이월금을 줄이기 위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12. 22.]

**제33조(회계규칙 등)** 학교법인의 회계규칙, 그 밖에 예산 또는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0. 12. 22.]

### 제5절 해산과 합병 <개정 2020. 12. 22.>

**제34조(해산 사유)** ① 학교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목적 달성의 불가능
3. 다른 학교법인과의 합병
4. 파산
5. 제47조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해산명령

②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인한 해산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20. 12. 22.]

**제35조(잔여재산의 귀속)** ① 학교법인이 정관에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殘餘財産)의 귀속자에 관한 규정을 두려는 경우 그 귀속자는 학교법인이나 그 밖에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에서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해산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부장관에게 청산종결을 신고한 때에 제1항에 따라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의 임원 또는 해당 학교법인이 설립한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자 등이 이 법 또는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해당 학교법인이 관할청으로부터 회수 등 재정적 보전(補塡)을 필요로 하는 시정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해산되는 경우 정관으로 지정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해산한 학교법인의 설립자나 임원 또는 이들과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인 사람이 학교법인 해산일을 기준으로 10년 이내의 기간 중 정관으로 지정한 자 또는 정관으로 지정한 자가 설립한 사립학교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직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가. 대표자
   나. 임원
   다.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의 총장 또는 부총장
   라.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의 교장 또는 교감
   마.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또는 원감
2. 정관으로 지정한 자의 임원 또는 정관으로 지정한 자가 설립한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자 등이 이 법 또는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정관으로 지정한 자가 관할청으로부터 회수 등 재정적 보전을 필요로 하는 시정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 중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산은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학진흥기금의 청산지원계정(이하 "청산지원계정"이라 한다)에 귀속되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산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개정 2021. 8. 10.>

⑤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을 사립학교 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다른 학교법인에 양여·무상대부 또는 보조금으로 지급하거나 그 밖의 교육사업에 사용한다.<개정 2021. 8. 10.>

⑥ 제4항에 따라 청산지원계정에 귀속된 재산은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이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해당 시·도 교육감이 관리하되, 제5항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시·도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한다.<개정 2021. 8. 10.>

[전문개정 2020. 12. 22.]

**제35조의2(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은 학생 수가 크게 감소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해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도 교육감의 인가를 받으려는 학교법인은 해산인가신청서에 잔여재산 처분계획서를 첨부하여 시·도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해산과 제2항에 따른 잔여재산 처분계획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해산하는 학교법인이 원활하게 해산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해산인가 신청 당시 학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해산장려금의 지급
2. 해산인가 신청 당시 학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 중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었던 재산의 매입
⑤ 제1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해산, 제2항에 따른 잔여재산의 처분 및 제4항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시ㆍ도 교육감 소속으로 사학정비심사위원회를 둔다.
⑥ 제5항에 따른 사학정비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산한 학교법인은 그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잔여재산 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시키거나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재산으로 출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12. 22.]

**제36조(합병 절차)** ① 학교법인이 다른 학교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합병은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면 그 인가신청서에 합병 후 존속하는 학교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학교법인의 정관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12. 22.]

**제37조(합병 절차)** ① 학교법인은 제36조제2항의 인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 인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학교법인은 제1항의 기간 내에 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각각 이를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제기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20. 12. 22.]

**제38조(합병 절차)** ① 채권자가 제37조제2항의 기간 내에 합병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의 채무인수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 채권자가 제37조제2항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학교법인은 채무를 갚거나 그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12. 22.]

**제39조(합병 절차)** 합병에 의하여 학교법인을 설립할 경우 정관, 그 밖에 학교법인의 설립에 관한 사무는 각 학교법인이 선임한 자가 공동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12. 22.]

**제40조(합병의 효과)** 합병 후 존속하는 학교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학교법인의 권리ㆍ의무(그 학교법인이 그가 경영하는 사업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나 그 밖의 처분으로 인하여 가지는 권리ㆍ의무를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전문개정 2020. 12. 22.]

**제41조(합병의 시기)** 학교법인의 합병은 합병 후 존속하는 학교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학교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전문개정 2020. 12. 22.]

**제42조(「민법」 등의 준용)** ① 학교법인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79조 및 제81조부터 제9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 제79조 중 "이사"는 "이사장"으로 본다.
② 학교법인의 청산인에 관하여는 제18조와 「민법」 제59조제2항, 제61조, 제62조, 제64조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0. 12. 22.]

## 제6절 지원과 감독 <개정 2020. 12. 22.>

**제43조(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립학교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를 신청한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관할청은 제1항 또는 제35조제5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지원에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로부터 그 업무 또는 회계 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을 권한
2.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의 예산이 지원 목적에 비추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예산에 대하여 필요한 변경조치를 권고할 권한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또는 제35조제5항에 따라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를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성과가 저조하여 계속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가 제2항에 따른 관할청의 권고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후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12. 22.]

**제44조(실업교육의 우선적인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35조제5항 또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실업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20. 12. 22.]

**제45조(정관 변경 등)** ① 학교법인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학교법인이 제1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갖추어 14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교육부장관은 변경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30일 이내에 해당 학교법인에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학교법인은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12. 22.]

**제46조(수익사업의 정지명령)** 관할청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는 학교법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학교법인에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해당 학교법인이 그 사업으로부터 생긴 수익을 그가 설치한 사립학교의 경영 외의 목적에 사용하였을 때
2. 해당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그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을 줄 때
[전문개정 2020. 12. 22.]

**제47조(해산명령)**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법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학교법인에 해산을 명할 수 있다.
1.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때
② 제1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해산명령은 다른 방법으로는 감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또는 관할청이 시정을 지시한 후 6개월이 지나도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에만 한다.
[전문개정 2020. 12. 22.]

**제47조의2(청문)** 교육부장관은 제47조에 따라 학교법인의 해산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12. 22.]

**제48조(보고징수 등)** 관할청은 감독상 필요할 때에는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보고서 제출을 명하거나,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12. 22.]

**제48조의2(해산된 학교법인 등에 대한 기록물 관리)** ① 해산된 학교법인과 폐지ㆍ폐쇄된 학교에 관한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와 소속 임원, 교직원 및 학생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는 학적부, 조직ㆍ회계ㆍ예산 관련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관 중인 기록물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4조제2항 또는 제47조에 따라 해산된 학교법인
2. 「고등교육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학교 폐지의 인가를 받은 학교
3. 「고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학교 폐쇄의 명령을 받은 학교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해산된 학교법인 등의 기록물 이관 및 관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3. 24.]

**제49조** 삭제 <1999. 8. 31.>

## 제3장 사립학교경영자 <개정 2020. 12. 22.>

**제50조(학교법인으로의 조직 변경)** 사립학교경영자 중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은 그 조직을 변경하여 학교법인이 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12. 22.]

**제51조(준용규정)** 사립학교경영자에 관하여는 제5조, 제28조제2항, 제29조,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4까지, 제33조, 제43조, 제44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4까지 및 제33조는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에 관한 부분에 한정하여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0. 12. 22.]

## 제4장 사립학교 교원 <개정 2020. 12. 22.>

### 제1절 자격 · 임용 · 복무 <개정 2016. 2. 3.>

**제52조(자격)**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국립학교ㆍ공립학교의 교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22.]

**제53조(학교의 장의 임용)** ① 각급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이 대학교육기관의 장을 임기 중에 해임하려는 경우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각급 학교의 장의 임기는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고,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되, 4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초ㆍ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장은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12. 22.]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① 각급 학교의 교원은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해당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
2.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해당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임용

② 대학교육기관의 교원 임용권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휴직 및 복직에 관한 사항은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21. 8. 10.>

③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ㆍ급여ㆍ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간에 관하여는 국립대학ㆍ공립대학의 교원에게 적용되는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임용된 교원의 임용권자는 해당 교원에게 임용기간 만료일 4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를 임용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재임용 심의 신청을 받은 임용권자는 제53조의4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해당 교원을 재임용할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해당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통지하여야 한다.

⑦ 교원인사위원회가 제6항에 따라 해당 교원의 재임용 여부를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에서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 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2.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3.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학연협력에 관한 사항

⑧ 교원인사위원회는 교원의 재임용을 심의하는 경우 해당 교원의 평가 등에 제7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적과 성과가 「고등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해당 교원의 임무에 비추어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⑨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⑩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으로 하며, 담당할 직무에 필요한 자격요건과 공개전형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⑪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원의 임용권자는 제10항에 따른 공개전형을 실시할 때에는 필기시험을 포함하여야 하고, 필기시험은 시ㆍ도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시ㆍ도 교육감에게 위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21. 9. 24.>
[전문개정 2020. 12. 22.]

**제53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53조의2제10항에 따른 각급 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 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0. 12. 22.]

**제53조의4(교원인사위원회)** ① 각급 학교(고등기술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유치원과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는 제외한다)의 교원(학교의 장은 제외한다)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 8. 10.>
②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ㆍ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고,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 12. 22.]

**제53조의5(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신규채용 등)** 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을, 임용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1조의5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5의 "대학인사위원회"는 제53조의4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5. 8. 14.>
[전문개정 2016. 5. 29.]

**제54조(임용에 관한 보고 및 해임 등의 요구)** ① 각급 학교의 교원 임용권자는 교원을 임용(각급 학교의 장으로서 임기 만료로 해임된 경우는 제외한다)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② 삭제<1990. 4. 7.>
③ 관할청은 사립학교의 교원이 이 법에 규정된 면직 사유 및 징계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0. 12. 22.>
[전문개정 1981. 2. 28.]
[제목개정 2020. 12. 22.]

**제54조의2(해임 요구)** ① 관할청은 각급 학교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해당 학교의 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을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제5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2. 학생의 입학(편입학을 포함한다), 수업 및 졸업에 관한 해당 학교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교육 관계 법률 또는 그 법률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3.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다른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
4.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일을 하였거나 현저히 부당한 일을 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해임 요구는 관할청이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5일이 지나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만 한다.
[전문개정 2020. 12. 22.]

**제54조의3(임명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
1. 제20조의2에 따라 임원 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제54조의2에 따른 해임 요구에 의하여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제61조에 따라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임명 제한 기간이 지난 사람이 학교의 장으로 취임하려면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인 사람은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 다만,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은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배우자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④ 학교의 장으로 임명되어 있는 사람이 학교법인의 이사장의 변경 또는 친족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가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⑥ 이 법에 따른 교원(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국립학교ㆍ공립학교의 교원(「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재직하는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파면ㆍ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다만,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서 해당 교원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교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금품수수 행위
2.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 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非違) 행위
3.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

⑦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 12. 22.]

**제54조의4(기간제교원)** ① 각급 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 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교원(이하 "기간제교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학교법인의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교원이 제5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
2. 교원이 파견ㆍ연수ㆍ정직ㆍ직위해제 또는 휴가 등으로 1개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
3. 파면ㆍ해임 또는 면직 처분을 받은 교원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교원이 필요할 때

② 기간제교원에 대해서는 제56조, 제58조제2항, 제58조의2, 제59조, 제61조, 제61조의2, 제62조, 제62조의2, 제63조,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제66조의2, 제66조의3제2항ㆍ제3항 및 제66조의4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된다.

③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기간제교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제54조의3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0. 12. 22.]

**제54조의5** 삭제 <2019. 8. 20.>

**제55조(복무)** ①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립학교ㆍ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의학ㆍ한의학 또는 치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대학의 소속 교원은 학생의 임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겸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겸직 허가의 기준과 절차, 겸직 교원의 직무와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 12. 22.]

**제55조의2(연수의 기회균등)** 사립학교의 교원에게는 「교육공무원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연수기관에서 재교육을 받거나 연수할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져야 한다.
[본조신설 2018. 4. 17.]

**제55조의3(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사립학교의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학교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4. 17.]

**제55조의4(연수 실적)** 학교의 장은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그 소속 사립학교의 교원의 재교육 및 연수 실적을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4. 17.]

**제55조의5(파견근무)** ① 사립학교(「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육활동의 교류, 업무 수행과 관련된 행정 지원이나 연수, 그 밖에 능력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교원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다른 사립학교 또는 국내외의 교육기관ㆍ연구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교육활동의 교류와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교육공무원 및 다른 사립학교의 교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속 교원을 파견한 임용권자는 파견 사유가 없어지거나 파견 목적이 달성될 가능성이 없으면 해당 교원을 지체 없이 원래의 소속 학교로 복귀시켜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소속 교원을 파견근무하게 하거나 교육공무원 및 다른 사립학교의 교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 그 사유ㆍ기간ㆍ절차, 파견근무 중 복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 3. 18.]

## 제2절 신분보장 및 사회보장 <개정 2020. 12. 22.>

**제56조(의사에 반한 휴직ㆍ면직 등의 금지)** ① 사립학교 교원은 형(刑)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이나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이나 학과의 개편 또는 폐지로 인하여 직책이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립학교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20. 12. 22.]

**제57조(당연퇴직의 사유)** ① 사립학교 교원이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하며,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를 적용할 때 "공무원"은 "교원"으로 본다. <개정 2022. 12. 13.>

② 사립학교 교원 중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의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가 교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47조 또는 제351조(제347조의 상습범에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를 저질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신설 2022. 12. 13.>

[전문개정 2020. 12. 22.]

**제58조(면직의 사유)** ①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

1.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2. 근무성적이 매우 불량할 때
3. 정부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幇助)하였을 때
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하였을 때
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거짓 증명 또는 진술을 하였을 때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을 때

②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20. 12. 22.]

**제58조의2(직위의 해제)** ①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교원의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매우 불량하거나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매우 불성실한 경우
2.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경우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에게 3개월 이내의 기간대기를 명한다.
④ 임용권자는 제3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능력 회복이나 태도 개선을 위한 연수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립학교 교원에게 제1항제1호와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를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12. 22.]

**제59조(휴직의 사유)** ①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그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불임ㆍ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전시ㆍ사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생사나 소재(所在)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4.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경우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 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를 하게 된 경우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ㆍ연구기관,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되는 경우
7.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7의2.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하는 경우

8.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경우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배우자가 국외 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1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경우
1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에 따라 계산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ㆍ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
1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고, 같은 항 제7호의2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호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며, 그 밖에 같은 호에 따른 휴직자의 신분 및 처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휴직기간과 휴직자의 신분 및 처우 등에 관하여는 정관(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그가 정하는 교원의 신분보장 및 징계에 관한 규칙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 12. 22.]

**제60조(교원의 불체포특권)** 사립학교 교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학교장의 동의 없이 학원(學園) 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20. 12. 22.]

**제60조의2(사회보장)** ① 사립학교의 교원 및 사무직원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ㆍ장해 또는 재해를 입거나 퇴직 또는 사망하였을 때에는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급여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법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규정되어야 한다.
1. 상당한 기간 동안 근무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연금이나 일시금을 지급하는 사항
2. 직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연금이나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항
3. 직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기간 중 소득능력에 장애를 받을 경우에 본인이 받는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4. 직무로 인하지 아니한 사망ㆍ장해ㆍ부상ㆍ질병ㆍ출산, 그 밖의 사고에 대한 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0. 12. 22.]

**제60조의3(명예퇴직)** ①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범위, 지급액, 지급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 12. 22.]

### 제3절 징계 <개정 2020. 12. 22.>

**제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①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과 그 밖의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3.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②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한다.<개정 2021. 8. 10.>

③ 강등은 동종의 직무 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하고,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에 해당하는 교원 및 조교에 대하여는 강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21. 8. 10.>

④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중 교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개정 2021. 8. 10.>

⑤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개정 2021. 8. 10.>

⑥ 견책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뉘우치게 한다.<개정 2021. 8. 10.>

[전문개정 2020. 12. 22.]

**제61조의2(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의 징계 사유 확인 등)** ① 각급 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1. 제61조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지 여부
2. 제4항에 따른 의원면직의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 결과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에 준하는 정도의 징계(이하 "중징계"라 한다)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제5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교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

④ 각급 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2.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중인 경우
3. 감사원ㆍ검찰ㆍ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4. 관할청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의원면직의 제한 및 제한대상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 12. 22.]

**제62조(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사건 및 제54조의3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교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그 임용권자의 구분에 따라 학교법인ㆍ사립학교경영자 및 해당 학교에 교원징계위원회를 둔다. 다만, 사립유치원 교원의 징계사건은 「교육공무원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되는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1명 이하의 범위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 9. 24.>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제53조의2제2항에 따라 교원의 임용권이 학교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로 한정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21. 9. 24.>

1. 해당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라.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경우로 한정한다)
   마.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교원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개정 2021. 9. 24.>

1.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이 조 및 제62조의2에서 "외부위원"이라 한다)을 최소 2명 이상 포함할 것
2. 외부위원은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이 아닐 것
3. 학교법인에 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경우에는 외부위원에 제3항제2호라목에 따라 위촉된 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할 것
5. 특정 성(性)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⑤ 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권한 및 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 12. 22.]

**제62조의2(외부위원의 임기 등)** ①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제53조의2제2항에 따라 교원의 임용권이 학교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에 한정한다)은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66조의5에 따른 비밀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20. 12. 22.]

**제62조의3(징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제66조의2 및 제70조의6에 따른 재심의를 위하여 시ㆍ도 교육청에 징계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징계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ㆍ도 교육감이 위촉한다.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4.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징계심의위원회의 조직ㆍ권한 및 심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9. 24.]

**제63조(제척 사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본인이나 친족에 관한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20. 12. 22.]

**제64조(징계의결의 요구)**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소속 교원 중에 제61조제1항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12. 22.]

**제64조의2(징계의결 요구 사유의 통지)**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제64조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 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2020. 12. 22.]

**제65조(진상조사 및 의견진술)**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의할 때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12. 22.]

**제66조(징계의결)**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제6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정도 및 징계의결이 요구된 교원의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기준 및 징계의 감경기준 등에 따라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16.>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의한 결과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주문(主文)과 이유를 적은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여 임용권자 및 관할청에 보내어 알려야 한다.<개정 2016. 2. 3., 2019. 4. 16., 2021. 9. 24.>

③ 제1항의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9. 4. 16.>

④ 임용권자가 제2항의 징계의결서를 받았을 때에는 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해당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 2. 3., 2019. 4. 16.>

⑤ 임용권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4항에 따라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21. 8. 10.>

[전문개정 2015. 3. 27.]

**제66조의2(징계의결의 재심의)** ①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제54조제3항에 따라 징계를 요구받은 사항에 대하여 제66조제2항에 따른 징계의결서를 받았을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그 내용을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징계의결의 내용이 징계 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되면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제4조제1항에 따른 관할청의 경우 제62조의3에 따른 징계심의위원회에, 제4조제3항에 따른 관할청의 경우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21. 9. 24.>

③ 임용권자가 관할청으로부터 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징계심의위원회 또는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21. 9. 24.>

④ 제3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징계심의위원회 또는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재심의한 결과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주문과 이유를 적은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여 관할청과 임용권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21. 9. 24.>

⑤ 임용권자가 제4항에 따라 징계의결서를 받았을 때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해당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2021. 9. 24.>

⑥ 제4항에 따른 징계사건의 심리·의결에 관하여는 제63조·제65조 및 제66조제1항·제3항을 적용 또는 준용한다. 이 경우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위원회"로 본다.<신설

2021. 9. 24.>
[전문개정 2020. 12. 22.]
[제목개정 2021. 9. 24.]

**제66조의3(감사원 조사와의 관계 등)** ① 감사원,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였을 때와 마쳤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③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12. 22.]

**제66조의4(징계 사유의 시효)** ①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제64조에 따른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징계 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교육공무원법」 제52조제5호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18., 2025. 8. 14.>
② 제66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제66조의3제1항에 따른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③ 징계위원회의 구성, 징계의결, 그 밖에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12. 22.]

**제66조의5(비밀누설의 금지)** 교원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6. 5. 29.]

**제66조의6(보직 등 관리의 원칙)**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장은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원을 징계처분 이후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학급을 담당하는 교원(이하 “학급담당교원”이라 한다)으로 배정할 수 없다. <개정 2022. 10. 18.>

②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교원의 학급담당교원 배정 여부 등 제2조제4호에 따른 임용에 관한 사항을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2. 22.]

**제67조(외국인학교에 대한 특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에 대해서는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5까지, 제54조, 제54조의2부터 제54조의4까지, 제55조,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4까지,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 제59조, 제60조,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61조, 제61조의2, 제62조, 제62조의2, 제62조의3, 제63조,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제66조의2, 제66조의3제2항ㆍ제3항, 제66조의4, 제70조의3부터 제70조의7까지 및 제72조의3부터 제72조의5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9. 24.>
[전문개정 2020. 12. 22.]

**제67조의2** 삭제 <1991. 5. 31.>

**제67조의3** 삭제 <1991. 5. 31.>

**제68조** 삭제 <1991. 5. 31.>

**제69조** 삭제 <1991. 5. 31.>

## 제5장 보칙 <개정 2020. 12. 22.>

**제70조(보고ㆍ조사 등)** 관할청은 사립학교의 교육에 관하여 조사를 하거나 통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나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교육의 실시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12. 22.]

**제70조의2(사무기구 및 직원)** ①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그의 사무와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기구를 두되, 그 설치ㆍ운영과 사무직원의 정원ㆍ임용ㆍ보수ㆍ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학교법인 또는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고,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각급 학교 소속 사무직원은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한다.
[전문개정 2020. 12. 22.]

**제70조의3(사무직원의 임용)** ① 제70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소속 사무직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하며, 공개전형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직원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 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3조의2를 준용한다.
③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소속 사무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신설 2021. 9. 24.>
[본조신설 2021. 8. 10.]
[종전 제70조의3은 제70조의4로 이동 <2021. 8. 10.>]

**제70조의4(사무직원의 당연퇴직)** 제70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의 당연퇴직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사무직원"으로 본다. <개정 2021. 9. 24.>
[전문개정 2020. 12. 22.]
[제70조의3에서 이동 <2021. 8. 10.>]

**제70조의5(사무직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①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정관이나 규칙에서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사무직원의 임용권자는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유치원 사무직원의 징계를 관할하는 징계위원회가 없는 경우 해당 사무직원의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되는 관할청의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사무직원의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해당 사무직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관할청은 제70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8조 또는 제70조에 따른 검사ㆍ조사 결과 사무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법이나 교육관계 법령 또는 해당 정관이나 규칙을 위반한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제1항에 따른 관할 징계위원회에 해당 사무직원의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21. 9. 24.]

**제70조의6(사무직원 징계의결의 재심의 요구)** ① 사무직원의 임용권자는 제70조의5제3항에 따라 요구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을 하기 전에 그 내용을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징계의결의 내용이 징계 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되면 해당 사무직원의 임용권자에게 제4조제1항에 따른 관할청의 경우 제62조의3에 따른 징계심의위원회에, 제4조제3항에 따른 관할청의 경우 제70조의5제1항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사무직원의 임용권자가 관할청으로부터 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징계심의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④ 사무직원의 임용권자는 제3항에 따른 징계심의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의 재심의 결과를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징계심의위원회의 심리ㆍ의결 등에 관하여는 제63조, 제65조, 제66조제3항 및 제66조의2제4항ㆍ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원”은 “사무직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1. 9. 24.]

**제70조의7(사무직원에 대한 해임 요구)** ① 관할청은 제70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해당 사무직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을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정한 일을 하였거나 현저히 부당한 일을 한 경우
2.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취임 승인이 취소된 임원의 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3.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해임된 학교의 장의 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4.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다른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5. 제70조의4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법령위반 행위를 하였다고 확인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해임 요구는 관할청이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5일이 지나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만 한다.
[본조신설 2021. 9. 24.]

**제7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12. 22.]

**제72조** 삭제 <2000. 1. 28.>

**제7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6. 5. 29.]

**제72조의3(임원의 친족 교직원 공개)** 학교법인은 학교법인 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9. 24.]

**제72조의4(청렴의무)** 사립학교경영자, 학교법인의 임직원 및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이하 “사학기관 종사자”라 한다)은 법령을 준수하고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1. 9. 24.]

**제72조의5(사학기관 행동강령)** ① 제72조의4에 따른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행동강령(이하 “사학기관 행동강령”이라 한다)은 학교법인과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사학기관 행동강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가. 학교법인,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
   나.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의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ㆍ이권개입ㆍ알선ㆍ청탁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3.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신고 대상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사학기관 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징계 등의 제재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학기관 종사자가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사학기관 종사자가 사학기관 행동강령을 위반한 경우 임용권자는 징계 등의 제재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관할청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한 사학기관 행동강령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누락되어 있거나 그 내용이 현저히 미흡한 경우
2.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에 소속된 사학기관 종사자가 사학기관 행동강령을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징계 등의 제재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21. 9. 24.]

## 제6장 벌칙 <개정 2020. 12. 22.>

**제73조(벌칙)**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이사) 또는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제29조제6항(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9. 24.>

[전문개정 2020. 12. 22.]

[제73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73조는 제73조의2로 이동 <2021. 9. 24.>]

**제73조의2(벌칙)**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8. 10.>

1. 제2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2. 제46조에 따른 관할청의 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을 계속한 경우
3. 제48조(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관할청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20. 12. 22.]

[제73조에서 이동, 종전 제73조의2는 제73조로 이동 <2021. 9. 24.>]

**제74조(과태료)** ① 사립학교 교원 또는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의 임용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 9. 24.>

1. 제54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관할청의 해임 또는 징계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제54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관할청의 해임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제6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재심의를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
4. 제66조의2제5항 전단(제70조의6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70조의5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관할청의 징계의결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제70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재심의를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
7. 제70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관할청의 해임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8. 제72조의5제4항제2호에 따른 관할청의 시정명령을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 학교법인의 이사장, 감사 또는 청산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 8. 10., 2021. 9. 24.>

1. 이 법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6조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고하여야 할 사항을 거짓으로 공고하거나 누락하여 공고한 경우
3. 제13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재산목록 또는 제32조(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37조제1항에 따른 재산목록이나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이에 적을 사항을 거짓으로 적거나 누락하여 적은 경우
4. 제19조제4항제3호 또는 제48조(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하여야 할 사항을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누락하여 보고한 경우

4의2. 제28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1조(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7조제2항 또는 제38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6.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79조 또는 제93조제1항에 따른 파산선고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88조제1항 또는 제93조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고할 사항을 거짓으로 공고하거나 누락하여 공고한 경우
8.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86조 또는 제94조에 따른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부실한 신고를 한 경우

9.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90조를 위반한 경우
10. 제72조의3에 따른 공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③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제32조의2제5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하여야 할 사항을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누락하여 보고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가 제5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청이 부과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20. 12. 22.]

**부칙** <제1362호,1963. 6. 26.>

**제1조** (시행령)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법의 시행당시 제3조에 규정된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은 이 법의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그 조직을 학교법인으로 개편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 기간내에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재단법인에 대하여는 문교부장관은 1966년 12월 31일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기간까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조직이 불가능하다고 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재단법인에 있어서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설치한 학교를 유지경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재단법인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우선하여 이 법에 의한 학교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64. 11. 10., 1965. 12. 30., 1967. 1. 16.>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법인이 학교법인으로 그 조직을 변경함에 있어서는 제50조제2항 및 제50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63. 12. 16.>
③전항의 경우에 당해 재단법인의 정관에 정관변경에 이사회와 그외의 당해 재단법인의 기관의 의결을 요하게 하는 규정이 있고 그 재단법인의 이사의 전원 또는 과반수가 임시이사인 때에는 이사회 이외의 기관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사회의 의결만으로써 학교법인으로 조직변경을 하기 위한 정관변경을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으로 개편된 경우에 이 법 시행이전에 당해 재단법인에 대하여 행한 문교부장관의 처분은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개편된 학교법인에게 행한 것으로 본다.
⑤학교법인으로 개편된 경우에 그 개편전의 재단법인의 임원은 그대로 학교법인의 임원으로서 잔임기간동안 재임한다. 다만, 그 잔임기간이 5년 이상일 때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에 그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⑥재단법인이 그 조직을 개편하여 학교법인이 된 경우에 그 재단법인이 학교경영으로 인하여 발생한 종전의 채권·채무는 개편된 학교법인이 이를 포괄계승한다.<신설 1964. 11. 10.>

**제3조** (동전) 이 법 시행당시 사립학교에 재직중에 있는 교원은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삭제 <1964. 11. 10.>

**부칙** <제1621호,1963. 12. 16.>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4호,1964. 11. 1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50조의2제2항의 규정은 1963년 7월 25일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1735호,1965. 12. 30.>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9호,1967. 1. 16.>

이 법은 196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96호,1972. 12. 28.>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87호,1973. 3. 10.>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49호,1973. 12. 20.>

이 법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75호,1975. 7. 2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대학(사범대학 및 초급대학을 포함한다)에 근무하는 교원은 1976년 2월말일부로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재임면하여야 한다.

**부칙** <제2945호,1976. 12. 31.>(지방세법)

①(시행일) 이 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③(타법률의 개정) 다른 법률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내지 3. 생략
4. 사립학교법 제50조의2제2항중 "등록세법 제8조제2호 및 제3호"를 "지방세법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④내지 ⑧생략

**부칙** <제2961호,1976.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정관등의 제출) 이 법 시행당시의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관 또는 규칙을 정하여 감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3057호,1977.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전문대학에 관한 규정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공포당시 징계처분을 받은 자중 정직처분은 감봉 6월로, 근신처분은 근책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이 법 공포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초급대학·실업고등전문학교 및 전문학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까지 전문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로 개편하고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경과조치) 이 법 공포당시의 초급대학으로서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로 개편되는 학교에 재직중인 교원은 그 개편된 당해 학교의 교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⑤(경과조치) 이 법 공포당시의 실업고등전문학교 및 전문학교로서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으로 개편되는 학교에 재직중인 교원에 대하여는 1979년 2월말일부로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재임용하여야 한다.

**부칙** <제3114호,1978. 12. 5.>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73호,1981. 2. 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대학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 및 사무직원은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③(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교원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속중인 징계 및 재심청구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학교장 임명제한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전문대학의 장으로 재직중인 자는 제54조의3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직에서 해임될 때까지 재임할 수 있다.
⑤(학교장 임명제한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사립학교의 장으로 재직중인 자는 제54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1981학연도말까지 재임할 수 있다.
⑥(벌칙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3458호,1981. 11. 23.>(교육공무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사립학교법의 개정) 사립학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호중 " 교육공무원법 제16조 "를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로 한다.
제54조의3제1항제3호중 " 교육공무원법 제35조의2 "를 " 국가공무원법 제49조 "로 한다.
제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8조의2 (국가공무원법의 준용)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의 규정은 이를 사립학교교원에게 준용한다. 이 경우 준용규정중 "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는 " 임용권자 "로 본다.
**제9조** 및 제10조 생략

**부칙** <제3812호,1986. 5. 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이사는 그 임기만료시까지 이 법에 의하여 취임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226호,1990. 4. 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교육장에 관한 경과조치) 지방자치단체별로 교육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제4조제1항, 제35조제4항 및 제71조중 "시·군 및 자치구교육장"은 "교육장 및 교육구청장"으로, 제4조제2항중 "특별시·직할시·도교육장"은 "서울특별시·직할시·도교육위원회"로, 제35조제4항 및 제71조중 "시·도교육장"은 "시·도교육위원회"로, 제35조제4항중 "교육장"은 "교육위원회 또는 교육장"으로 본다.

**제3조** (대학교육기관의 교직원의 임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대학교육기관에 재직중인 교원 및 사무직원은 이 법에 의하여 당해 학교법인이 임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교원징계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계속중인 징계사건에 대하여는 제6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교원징계위원회가 심리·의결한다.

**제5조** (재심청구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심위원회에 계속중이거나 이 법 시행이후 이 법에 의하여 재심위원회가 설치될 때까지 제기되는 재심청구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사립학교교원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중 "감독청의 승인을 받았거나 감독청에 보고된 교원"을 "관할청에 보고된 교원"으로 한다.

제60조의2의 제목 및 본문중 "감독청"을 각각 "관할청"으로 한다.

**부칙** <제4268호,1990. 12. 27.>(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 사립학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25조, 제33조, 제34조제1항제5호·제2항, 제35조제1항·제4항, 제36조제2항, 제40조, 제45조, 제47조제1항, 제50조제2항, 제59조제1항제8호 및 제71조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2항중 "문교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1& 내지5) 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제4347호,1991. 3. 8.>(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법률 제4310호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 시행후 최초로 실시되는 지방의회의원선거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사립학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직할시·도(이하 "시·도"라 한다)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1. 사립의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기술학교·고등기술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특수학교·유치원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

2. 제1호에 규정한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제35조제4항중 ", 시·군 및 자치구교육장은 시·도교육장의"를 삭제한다.

제71조중 ", 시·도교육장은 그 권한의 일부를 시·군 및 자치구교육장에게"를 삭제한다.

④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4376호,1991. 5. 31.>(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교육공무원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교원의 소청 또는 재심이 진행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사립학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67조의2·제67조의3·제68조 및 제6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4조제2항중 "제54조제1항 및 제69조의"를 "제54조제1항의"로 한다.

**부칙** <제5069호,1995. 12. 29.>(교육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⑤생략

⑥사립학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호·제4조제1항제1호 및 제53조의3제1항중 "국민학교"를 각각 "초등학교"로 한다.

⑦내지 ⑮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5274호,1997. 1. 1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이사는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임기만료시까지 이 법에 의하여 취임된 것으로 본다.

③(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5345호,1997. 8. 22.>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학교법인의 해산인가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0. 12. 30., 2004. 1. 29.>

**부칙** <제5438호,1997. 12. 13.>(초ㆍ중등교육법)

**제1조** 이 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사립학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3항중 " 교육법 제7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이 법에 " 를 " 이 법에 " 로 한다.

제57조중 " 교육법 제77조제1호 또는 제2호 " 를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호의 1 " 로 한다.

②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5453호,1997. 12. 13.>(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5454호,1997. 12. 13.>(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5683호,1999. 1. 21.>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82호,1999. 5. 24.>(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2! 생략
2@ 사립학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4항중 " 재정경제원장관 " 을 " 재정경제부장관 " 으로 한다.
2# 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제6004호,1999. 8. 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2항ㆍ제4항 및 제53조의4의 개정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3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계약제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의 경우에는 제53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임용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임시이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임시이사의 임기는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6212호,2000. 1. 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제1항의 개정규정중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하는 육아휴직 관련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32호,2000. 12. 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00호,2001. 1. 29.>(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1^ 생략

1& 사립학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본문, 제10조제1항 본문,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항, 제33조, 제34조제1항제5호ㆍ제2항, 제35조제1항ㆍ제4항, 제36조제2항, 제40조, 제45조, 제47조제1항 본문, 제47조의2, 제59조제1항제8호 및 제71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2항중 "교육부령"을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1* 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6715호,2002. 8. 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18호,2004. 1. 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20호,2004. 1. 29.>(유아교육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사립학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로 하고, 동조제3항중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을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으로 한다.

③내지 ⑪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7352호,2005. 1. 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간임용된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재임용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임용되어 재직중인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재임용 관련절차는 제53조의

2제4항 내지 제8항의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7354호,2005. 1. 27.>(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사립학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4제1항제3호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로 하고, 제66조의2제2항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7802호,2005. 1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의2제9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53조의2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행되는 신규채용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임원의 구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14조 및 제21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의 이사추천의 수가 미달하는 경우에는 임원을 새로이 구성하거나 임원의 임기가 만료 등으로 인하여 궐위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동위원회의 추천에 의한 임원의 구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임 중인 임원은 제20조제3항 및 제21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임원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임원 및 교원의 결격사유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임 중인 임원 또는 교원은 제2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4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취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 7. 27.>

**제6조** (학교의 장의 임명의 제한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임 중인 학교의 장은 그 임기 만료시까지 제54조의3제1항 내지 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초ㆍ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단서중 "제1호ㆍ제2호"를 "제1호"로 한다.

**부칙** <제8529호,2007. 7. 19.>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45호,2007. 7.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사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후 임원의 임기 만료 등으로 인하여 궐위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3조** (개방이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제3항에 따라 선임된 개방이사는 이 법에 따라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임시이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5조에 따라 선임된 임시이사는 이 법에 따라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임시이사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임시이사로서 2006년 7월 1일 이후 선임된 임시이사의 임기는 200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8639호,2007. 10. 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평생교육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민법」상 재단법인이 해당 시설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사이버대학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단법인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이 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 개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으로 개편된 경우에 그 개편 이전의 재단법인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처분은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개편된 학교법인에 행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으로 개편된 경우에 그 개편 이전의 재단법인의 임원은 학교법인의 임원으로서 잔임기간 동안 재임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으로 개편된 경우에 그 재단법인의 학교경영으로 인하여 발생한 종전의 채권ㆍ채무는 개편된 학교법인이 포괄 계승한다.

⑤ 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으로 개편되는 재단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재직 중인 교직원은 이 법에 따라 해당 학교법인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852호,2008. 2. 29.>(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

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3> 까지 생략

<84>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33조, 제34조제1항제5호ㆍ제2항, 제36조제2항, 제40조, 제45조 본문 및 단서,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의2, 제59조제1항제8호 및 제71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후단, 제24조의2제1항 및 제45조 단서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제33조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재정경제부장관의"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의"로 한다.

<8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888호,2008. 3. 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교원의 임명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3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징계에 의하여 최초로 파면ㆍ해임된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258호,2010. 4. 15.>(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3제5항제1호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⑨ 부터 ⑮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0580호,2011. 4. 12.>(부동산등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2! 까지 생략

2@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중 " 등기부 등본 " 을 " 등기사항증명서 " 로 한다.

2# 부터4@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637호,2011. 5. 1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교원 등 임명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3제5항 및 제54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54조의3제5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하여 최초로 파면ㆍ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871호,2011. 7. 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06호,2011. 7. 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16호,2012. 1.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 및 제5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관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조사 등 개시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감사원,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이 조사나 수사를 개시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622호,2013. 1. 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9조제2항ㆍ제4항, 제31조제3항 및 제3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690호,2013. 3. 23.>(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4* 까지 생략

4(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2항 후단, 제24조의2제1항, 제32조의2제4항, 제33조, 제34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35조제1항ㆍ제4항, 제36조제2항, 제40조, 제4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의2, 제59조제1항제8호 및 제71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및 제32조의2제5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1622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제31조의2제1항 및 제32조의3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5) 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125호,2013. 12. 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24호,2015. 3.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의결의 재심의 요구 등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교원징계위원회가 심의 중인 징계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징계사유의 시효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

용한다.

**제4조**(유치원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학교의 장이 집행한 유치원회계는 제29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교원의 징계종류ㆍ내용 및 시효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6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66조의4제1항을 준용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9조의11제2항 본문 중 "제66조의2"를 "제66조의2부터 제66조의4까지"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66조 및 제66조의2"를 "제66조, 제66조의2, 제66조의3제2항ㆍ제3항 및 제66조의4"로 한다.

**부칙** <제13573호,2015. 12.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원의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사유 및 행위로 인하여 제57조에 따른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936호,2016. 2. 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2제8항 중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4조의4제1항제3호 중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66조의4제3항 중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으로 한다.

⑧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3938호,2016. 2.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의5, 제58조의2제1항제4호 및 제58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정행위자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5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직위해제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발생한 비위행위에 대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휴직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제1항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아동을 입양하고 있는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14154호,2016. 5.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의 장의 임명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학교의 장이 이 법 시행 전에 학교법인의 이사장의 변경 또는 친족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제54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제54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계속 중인 징계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제64조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계속 중인 징계사건에 대하여는 제6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1조제3항 중 " 제62조제3항 "을 " 제62조제5항 "으로 한다.

**부칙** <제14468호,2016. 1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학교 설립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설립 인가를 신청한 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설립 기준을 갖추려고 관계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전에 인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3조**(특정목적적립금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3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타적립금으로 관리되어온 자금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 내에 연구적립금, 건축적립금, 장학적립금, 퇴직적립금 또는 특정목적적립금으로 적립하거나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8항 중 “ 「사립학교법」 제2조제2항 ”을 “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 ”로 한다.

②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제2호 중 “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 ”을 “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 ”로 한다.

**부칙** <제15022호,2017. 10. 31.>(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1^ 까지 생략

1& 삭제 <2017. 11. 28.>

1* 부터3&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15040호,2017. 11.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는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립금 투자결과 보고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32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투자결과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 내에 제32조의2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고되어야 한다.

**제3조**(교원의 재임용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2제7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교원의 재임용을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5022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4조제17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15555호,2018. 4.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6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사유의 시효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15954호,2018. 12.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임 또는 징계 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관할청이 임용권자에게 교원의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219호,2019. 1.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청산이 종결되지 아니한 학교법인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6310호,2019. 4.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기준 및 징계의 감경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용권자가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439호,2019. 8.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직처분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정직처분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6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6672호,2019. 12. 3.>(초ㆍ중등교육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고등기술학교ㆍ공민학교"를 "고등기술학교"로 한다.

제53조의4제1항 중 "고등기술학교ㆍ공민학교"를 "고등기술학교"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16674호,2019. 12.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의 장의 임용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용되는 특수학교의 장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이전에 특수학교의 장이었던 사람은 1회에 한하여 임용될 수 있고, 현재 재임 중인 특수학교의 장은 임기만료 후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부칙** <제16679호,2019. 12. 3.>(고등교육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4항제1호 중 " 제11조제2항 "을 " 제11조제3항 "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16874호,2020. 1.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겸직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유치원만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유치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유치원장의 직을 사직하여야 한다.

**부칙** <제17078호,2020. 3.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의 개정규정 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교원에 대한 부분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휴직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휴직하였거나 이 법 시행 당시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이사회의 이사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이후 이사를 선임할 당시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구성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경험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이사로 우선 선임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의 이사 구성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7493호,2020. 10. 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59호,2020. 12.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6조의6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9조의 개정규정 중 법률 제17078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가 적용되는 부분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하며, 법률 제17493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제74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사유의 시효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18372호,2021. 8. 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4항ㆍ제5항ㆍ제6항ㆍ제7항ㆍ제8항 및 제3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5조제4항ㆍ제5항ㆍ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본재산의 소송절차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외부회계감사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5항ㆍ제6항ㆍ제7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연속하는 4개 회계연도의 산정은 같은 개정규정이 최초로 적용되기 이전의 회계연도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제5조**(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해산되었으나 처분되지 아니한 학교법인의 재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8460호,2021. 9.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2제1항제4호, 제21조제7항, 제22조 및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8372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제70조의3제3항, 제70조의4, 제73조 및 제7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하며, 제29조제4항 및 제3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7항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임원을 선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계의결서 송부 및 징계의결의 재심의 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2항 및 제6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66조제1항에 따라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개전형 중 필기시험 위탁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53조의2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0항에 따라 교원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교원의 신규채용에 관하여는 제53조의2제1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임원의 당연퇴임에 관한 경과조치) 제22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임원으로 재임 중인 사람에 대하여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임기가 종료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기금운용심의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이후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을 위촉할 당시 제32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교원, 직원 또는 재학생인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구성은 제1항에 따라 제32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후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당시 제62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연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같은 개정규정의 요건을 충족할 때까지는 특정 성(性)의 위원 또는 외부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부칙** <제18990호,2022. 10. 18.>(교육공무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4제1항 중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를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및 「교육공무원법」 제52조제5호"로 한다.

제66조의6제1항 중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를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으로 한다.

**부칙** <제19066호,2022. 12. 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990호,2024. 1. 9.>(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3항제2호 중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을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으로 한다.

1& 부터3^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0350호,2024. 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립금 공시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의 적립금별 적립 규모 및 사용내역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666호,2025. 1.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사 후보자 추천 의견 청취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3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심의가 계속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20784호,2025. 3. 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011호,2025. 8. 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의5의 개정규정은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 사유의 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4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073호,2025. 11.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운용심의회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할 당시 제32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제32조의3제2항제2호의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구성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제32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사립학교법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073호, 2025. 11. 11., 일부개정]

## 제1장 총칙 <개정 2020. 12. 22.>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 12. 2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8. 10.>

1. “사립학교”란 학교법인, 공공단체 외의 법인 또는 그 밖의 사인(私人)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법인”이란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
3. “사립학교경영자”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이 법에 따라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학교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사인을 말한다.
4.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전보(轉補),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停職),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6. 2. 3.]

**제3조(학교법인이 아니면 설립할 수 없는 사립학교 등)** 학교법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할 수 없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산업체가 그 고용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하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대학
2. 산업대학·사이버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3.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

[전문개정 2020. 12. 22.]

**제4조(관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0. 12. 22.>

1. 사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특수학교ㆍ유치원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
2. 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② 삭제<1991. 3. 8.>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개정 2020. 12. 22.>

1. 사립의 대학ㆍ산업대학ㆍ사이버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대학교육기관"이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3. 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와 그 밖의 사립학교를 아울러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제목개정 2020. 12. 22.]

## 제2장 학교법인 <개정 2020. 12. 22.>

### 제1절 통칙 <개정 2020. 12. 22.>

**제5조(자산)** ① 학교법인은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와 그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와 재산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 12. 22.]

**제6조(사업)** ① 학교법인은 그가 설치한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수익을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② 삭제<1999. 8. 31.>

③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을 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22.>

1. 사업의 명칭과 그 사무소의 소재지
2. 사업의 종류
3. 사업 경영에 관한 자본금
4. 사업 경영의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5. 사업의 시기(始期) 및 기간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는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 회계로 경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22.>

[제목개정 2020. 12. 22.]

**제7조(주소)** 학교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전문개정 2020. 12. 22.]

**제8조(설립등기)** ① 학교법인은 설립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3주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 연월일
5.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 총액
7. 출자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
8. 이사의 성명ㆍ주소

② 제1항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사항은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③ 법원은 등기한 사항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12. 22.]

**제8조의2(재산 이전의 보고)** 제8조에 따라 등기한 학교법인은 지체 없이 재산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등기사항증명서 및 금융기관의 증명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재산출연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12. 22.]

**제9조(학교법인의 권리능력 등)** 학교법인의 권리능력과 불법행위능력에 관하여는 「민법」 제34조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0. 12. 22.]

## 제2절 설립 <개정 2020. 12. 22.>

**제10조(설립허가)** ① 학교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술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체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설치ㆍ경영하려는 사립학교의 종류와 명칭
4. 사무소 소재지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정원 및 그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수익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종류, 그 밖에 사업에 관한 사항
9.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과 그 방법
12.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정관에 적어야 할 사항

② 학교법인의 설립 당초의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6호의 사항을 정할 때 기술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체에 근무하는 사람을 임원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12. 22.]

**제10조의2(출연자의 정관 기재)** ① 학교법인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한 자의 출연 의사를 보호하고 그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관에 적을 수 있다.

1. 출연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2. 출연재산의 명세와 평가기준ㆍ금액
3. 출연자의 출연 의사

② 제1항에 따른 출연자 외에 학교법인의 설립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한 자에 대해서도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관에 적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12. 22.]

**제11조(정관의 보충)** ① 학교법인을 설립하려는 사람이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그 목적과 자산에 관한 사항만을 정하고 사망한 경우 교육부장관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없거나 그 청구가 없을 때에는 교육부장관이 직권으로 제1항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12. 22.]

**제12조(설립 시기)** 학교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전문개정 2020. 12. 22.]

**제13조(「민법」의 준용)** 학교법인의 설립에 관하여는 「민법」 제47조, 제48조,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2조의2, 제53조, 제54조 및 제55조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0. 12. 22.]

### 제3절 기관 <개정 2020. 12. 22.>

**제14조(임원)** ① 학교법인에는 임원으로서 7명 이상의 이사와 2명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유치원만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는 임원으로서 5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둘 수 있다.

② 이사 중 1명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된다.

③ 학교법인은 제1항에 따른 이사 정수(定數)의 4분의 1(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에 해당하는 이사(이하 "개방이사"라 한다)를 제4항에 따른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④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제26조의2에 따른 대학평의원회(이하 "대학평의원회"라 한다)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에 두고 그 조직과 운영 및 구성은 정관으로 정하되, 위원 정수는 5명 이상 홀수로 하고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위원회 위원의 2분의 1을 추천하도록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및 대학원 설치ㆍ경영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종교단체에서 2분의 1을 추천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추천위원회가 개방이사를 추천할 때에는 30일 이내에 추천을 완료하여야 하며, 그 기간에 추천하지 못하면 관할청이 추천한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방이사의 추천, 선임방법 및 자격요건과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 12. 22.]

**제15조(이사회)** ① 학교법인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12. 22.]

**제16조(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ㆍ결산ㆍ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6.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이사장 또는 이사가 학교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될 때에는 그 이사장 또는 이사는 해당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20. 12. 22.]

**제17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19조제4항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③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늦어도 회의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을 밝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모이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 개최를 요구하였을 때는 예외로 한다.

④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 그 소집권자가 궐위(闕位)되거나 소집을 기피하여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이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소집 일자, 장소 등을 공지하여야 한다.<신설 2021. 9. 24.>

[전문개정 2020. 12. 22.]

**제18조(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등)** ① 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정관으로 정한 이사 정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가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20. 12. 22.]

**제18조의2(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 개최 당일에 회의록을 작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안건별로 심의ㆍ의결 결과를 기록한 회의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

1. 개의, 회의 중지 및 산회(散會) 일시
2. 안건
3. 의사
4. 출석한 임원과 직원의 성명
5. 표결 수
6.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회의록과 회의조서에는 출석 임원 모두가 그 성명을 알 수 있도록 자필로 서명하고, 그 회의록 또는 회의조서가 2장 이상인 경우에는 각 장 사이에 걸쳐서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는 출석 임원 중 3명을 호선(互選)하여 대표로 회의록과 회의조서의 각 장 사이에 걸쳐서 서명하게 하거나 간인(間印)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회의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회의록을 대신하여 회의조서를 관할청에 제출할 수 있다.
④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회의록의 공개에 관한 기간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 12. 22.]

**제19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학교법인을 대표하고 이 법과 정관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며 그 밖에 학교법인 내부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에서 호선한 다른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교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학교법인의 재산 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학교법인의 재산 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 결과 부정하거나 불비(不備)한 점을 발견하였을 때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학교법인의 재산 상황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전문개정 2020. 12. 22.]

**제20조(임원의 선임과 임기)** ①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② 임원은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적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重任)할 수 있으며, 감사는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12. 22.]

**제20조의2(임원 취임의 승인취소)**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관할청은 그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4.>

1. 이 법,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을 위반하거나 이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임원 간의 분쟁, 회계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켰을 때
3. 학사행정에 관하여 해당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였을 때
4. 관할청의 학교의 장 및 교직원에 대한 징계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취임 승인의 취소는 관할청이 해당 학교법인에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5일이 지나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다만, 시정을 요구하여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회계 부정, 횡령, 뇌물 수수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 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세부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 12. 22.]

**제20조의3(임원의 직무집행정지)** ① 관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임원 취임 승인의 취소를 위한 조사나 감사가 진행 중일 때
2.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기간 중 해당 임원이 계속 직무를 집행할 경우 법인 또는 학교 운영상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직무집행정지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12. 22.]

**제21조(임원 선임의 제한)** ① 이사 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다만, 대학교육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학교법인 기본재산액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출연한 학교법인인 경우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미만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사회를 구성할 때 서로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이사들이 이사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이사 중 적어도 3분의 1 이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경험 또는 합산한 교육경험이 3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험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험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 또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의 명예교수ㆍ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으로 근무한 경험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근무경험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경험

④ 감사와 감사 또는 감사와 이사는 서로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어서는 아니 된다.
⑤ 학교법인에 두는 감사 중 1명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선임한다.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학교법인에 두는 감사 중 1명은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임원 취임의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1. 9. 24.>
1. 제20조의2에 따라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사람
2. 제54조의2에 따라 학교의 장의 직위에서 해임된 날부터 6년이 지난 사람
3. 제61조에 따라 파면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사람
[전문개정 2020. 12. 22.]

**제2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1. 9. 24.>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0조의2에 따라 임원 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제54조의2에 따른 해임 요구에 의하여 해임된 후 6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61조에 따라 파면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4급 이상의 교육행정공무원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전문개정 2020. 12. 22.]

**제22조의2(임원의 당연퇴임 사유)** 학교법인의 임원이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하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를 적용할 때 “공무원”은 “임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1. 9. 24.]

**제23조(임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
② 이사는 감사 또는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이나 그 밖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③ 감사는 이사장, 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그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이나 그 밖의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20. 12. 22.]

**제24조(임원의 보충)** 이사나 감사 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12. 22.]

**제24조의2(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제25조에 따른 임시이사의 선임과 제25조의2에 따른 임시이사의 해임 및 제25조의3에 따른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임시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
2. 임시이사의 해임에 관한 사항
3.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할청이 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③ 조정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할청은 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재심 결과를 수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12. 22.]

**제24조의3(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조정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호선한다.

1. 대통령이 추천하는 사람 3명
2.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3명
3.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5명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 12. 22.]

**제24조의4(조정위원회 위원의 자격 기준)**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대학의 총장ㆍ학장 또는 초ㆍ중등학교의 교장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 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
3.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교육 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
4. 공인회계사로서 회계업무 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
5. 교육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무원 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

②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전문개정 2020. 12. 22.]

**제25조(임시이사의 선임)** ① 관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0.>

1. 학교법인이 이사의 결원을 보충하지 아니하여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제20조의2에 따라 학교법인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한 경우. 다만,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되어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사회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25조의2에 따라 임시이사를 해임한 경우

② 임시이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1항에 따른 사유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임시이사는 제1항에 따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재임하되, 그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임시이사는 제20조에 따른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⑤ 관할청은 임시이사가 선임된 법인에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 중 재정이 열악한 학교법인의 최소한의 이사회 운영경비, 사무직원 인건비 및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위하여 소요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 8. 10.>

[전문개정 2020. 12. 22.]

**제25조의2(임시이사의 해임)** 관할청은 임시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임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그 직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경우
3. 제2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전문개정 2020. 12. 22.]

**제25조의3(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① 관할청은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제25조에 따라 선임된 임시이사의 선임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체 없이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이사 후보자 추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신설 2025. 1. 21.>

1.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포함하여 구성하고, 조정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협의체. 이 경우 나목의 사람은 그 퇴직일이 가장 최근인 사람부터 순차적으로 포함하고, 협의체의 총인원수는 해당 학교법인 이사 정수의 과반수로 하되, 가목의 사람만으로 인원수가 초과되거나 나목의 사람 중 마지막으로 구성원으로 포함될 사람들의 퇴직일이 동일하여 인원수가 초과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인원을 포함한 인원수를 협의체의 총인원수로 본다.
   가. 해당 학교법인의 이사(임시이사는 제외한다)

나. 가목 외의 사람 중 해당 학교법인의 이사(임시이사는 제외한다)였던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로서 조정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구
가.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직원 대표기구
나.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학생·학부모 대표기구
3. 추천위원회
4. 해당 학교법인(제14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으로 한정한다)을 설립한 종교단체
5. 관할청
6. 그 밖에 조정위원회가 인정하는 이해관계인
③ 조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이사 후보자 추천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신설 2025. 1. 21.>
1. 제2항제1호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제2항제1호에 따른 협의체에 추천하도록 하는 후보자의 수가 제2항에 따라 추천받는 전체 후보자 수(동일한 후보자가 있더라도 제2항 각 호에 따른 추천 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별개로 계산한다)의 과반수 미만이 되도록 할 것
가. 제20조의2에 따라 임원 취임의 승인이 취소(임원 간의 분쟁을 이유로 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적이 있는 사람
나. 제54조의2에 따라 해임된 적이 있는 사람
다. 제61조에 따라 파면된 적이 있는 사람
라. 그 밖에 해당 학교법인, 다른 학교법인 또는 해당 학교법인이나 다른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것으로 조정위원회가 인정한 사람
2. 제1호 외의 경우: 제2항제1호에 따른 협의체에 추천하도록 하는 후보자의 수가 제2항에 따라 추천받는 전체 후보자 수(동일한 후보자가 있더라도 제2항 각 호에 따른 추천 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별개로 계산한다)의 과반수가 되도록 할 것
④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은 매년 1회 이상 조정위원회에 정상화 추진 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 1. 21.>
⑤ 조정위원회는 제4항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해당 학교법인의 임시이사 해임 및 정상화 여부에 관한 사항을 관할청에 통보한다.<개정 2025. 1. 21.>
[전문개정 2020. 12. 22.]

**제26조(임원의 보수 제한)** ① 학교법인의 임원 중 정관으로 정한 상근(常勤) 임원을 제외한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實費)의 변상은 예외로 한다.
② 학교법인은 그 학교법인 기본재산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그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출연하거나 기증한 사람 중 생계가 곤란한 사람에게는 그 학교법인의 수익이 있는 범위에서 생계비·의료비·장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보수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증한 사람 중 생계가 곤란한 사람의 기준과 생계비·의료비·장례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 12. 22.]

**제26조의2(대학평의원회)** ① 대학교육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를 둔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자문사항으로 한다.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 대학평의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 12. 22.]

**제27조(「민법」의 준용)**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이사에 관하여는 「민법」 제59조제2항, 제61조, 제62조, 제64조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 제62조 중 "타인"은 "다른 이사"로 본다.

[전문개정 2020. 12. 22.]

### 제4절 재산과 회계 <개정 2020. 12. 22.>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①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에 대하여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또는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③ 「초·중등교육법」 제10조 및 「고등교육법」 제11조에 따른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입학금 또는 학교운영지원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받을 권리와 제29조제2항에 따라 별도계좌로 관리되는 수입에 대한 예금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④ 관할청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⑤ 학교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개시된 때와 완결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21. 8. 10.>

[전문개정 2020. 12. 22.]

**제29조(회계의 구분 등)** ①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개정 2020. 12. 22.>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교비회계(校費會計)와 부속병원회계(부속병원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구분할 수 있고,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며, 각 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학교가 받은 기부금 및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22.>

③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일반업무회계와 제6조에 따른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개정 2020. 12. 22.>

④ 제2항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해당 학교의 장이 편성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에 따라 확정·집행한다.<개정 2020. 12. 22., 2021. 9. 24.>

1. 대학교육기관: 대학평의원회에 자문 및 「고등교육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록금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사·의결을 거친 후 이사회의 심사·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사회의 심사·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3. 유치원: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에 자문을 거친 후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다만,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⑤ 삭제<2005. 12. 29.>

⑥ 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轉出)·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 12. 22.>

1.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2. 공공 또는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교육용 기본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⑦ 삭제<2007. 7. 27.>

[전문개정 1981. 2. 28.]

[제목개정 2020. 12. 22.]

**제30조(회계연도)** 학교법인의 회계연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학년도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22.]

**제31조(예산 및 결산의 제출)** ① 학교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는 예산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② 관할청은 제1항의 예산이 회계 관계 법령 등을 위반하여 편성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정을 지도할 수 있다.

③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결산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유치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 9. 24.>

1. 대학교육기관: 대학평의원회에 자문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학교법인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를 제출할 때에 그 학교법인의 감사 모두가 서명ㆍ날인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제5항에 따른 학교법인은 제외한다)은 직접 선임한 학교법인과 독립한 외부감사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감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감사보고서(이하 "외부감사보고서"라 한다) 및 부속서류(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의 교비회계 결산은 제외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1. 8. 10.>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선정한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를 제출할 때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보고서 및 부속서류(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의 교비회계 결산은 제외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2021. 8. 10.>

1. 연속하는 4개 회계연도: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이 직접 선임한 학교법인과 독립한 외부감사인
2. 제1호에 따른 회계연도 다음 연속하는 2개 회계연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외부감사인. 이 경우 동일한 외부감사인으로 지정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학교법인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회계연도의 외부감사인을 해당 회계연도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회계연도의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신설 2021. 8. 10.>

⑦ 교육부장관은 제5항제2호에 따른 외부감사인 지정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21. 8. 10.>

⑧ 제1항에 따른 공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1. 8. 10.>

[전문개정 2020. 12. 22.]

**제31조의2(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①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외부감사보고서 및 부속서류를 감리(監理)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0.>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회계감사 및 감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 12. 22.]

**제32조(재산목록 등의 비치)** ① 학교법인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매 회계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재무상태표, 수입ㆍ지출 계산서, 그 밖에 필요한 장부나 서류를 작성하여 항상 그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갖추어 두어야 할 장부나 서류의 종류와 서식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 12. 22.]

**제32조의2(적립금)** ①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교육시설의 신축ㆍ증축 및 개수(改修)ㆍ보수(補修), 학생의 장학금 지급 및 교직원의 연

구 활동 지원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을 적립할 수 있다. 다만, 등록금회계로부터의 적립은 해당 연도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교육시설의 신축·증축 및 개수·보수 목적으로 적립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7.>

② 적립금은 원금보존적립금과 임의적립금으로 구분하고, 성격에 따라 연구적립금·건축적립금·장학적립금·퇴직적립금 및 그 밖에 구체적인 목적을 정하여 적립하는 특정목적적립금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 12. 27.>

③ 적립금은 기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고, 그 적립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금회계에서 비등록금회계로 전출된 적립금 상당액을 제외한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법인에 투자할 수 있다.<개정 2013. 1. 23., 2016. 12. 27., 2024. 1. 9.>

1. 적립금의 2분의 1 한도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증권의 취득
2. 적립금의 10분의 1 한도에서 해당 대학교육기관의 소속 교원 또는 학생이 개발한 신기술 또는 특허 등으로 창업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④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사유로 학생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기존 적립금을 학생지원 목적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20. 10. 20.>

⑤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적립금 투자 대상이 해당 대학교육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투자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7. 11. 28., 2020. 10. 20.>

⑥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에 따른 적립금별 적립 규모 및 사용내역을 공시하여야 한다.<신설 2024. 2. 27.>

⑦ 교육부장관은 대학교육기관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적립금 현황 및 사용내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점검을 하여야 한다.<신설 2024. 2. 27.>

⑧ 교육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실태점검 결과 및 해당 대학교육기관과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립금의 적립 여부, 적립 규모, 적립 기간 및 투자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6. 12. 27., 2017. 11. 28., 2020. 10. 20., 2024. 2. 27.>

⑨ 제1항 단서의 감가상각비 산정방법과 제5항에 따른 투자결과의 보고 시기 및 방법 등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6. 12. 27., 2017. 11. 28., 2020. 10. 20., 2024. 2. 27.>

[본조신설 2011. 7. 25.]

**제32조의3(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①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

② 기금운용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교원, 직원 및 재학생은 각각 2명 이상, 제2호에 따른 외부 전문가는 2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1. 9. 24., 2025. 11. 11.>

1. 해당 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ㆍ직원 및 재학생
2.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
3. 그 밖에 동문 및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③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 12. 22.]

**제32조의4(이월금)** ①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해당 회계연도의 교비회계 예산을 편성ㆍ집행할 때에 이월금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대학교육기관의 이월금이 재정 규모에 비하여 과다(過多)한 경우에는 이월금을 줄이기 위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12. 22.]

**제33조(회계규칙 등)** 학교법인의 회계규칙, 그 밖에 예산 또는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0. 12. 22.]

### 제5절 해산과 합병 <개정 2020. 12. 22.>

**제34조(해산 사유)** ① 학교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목적 달성의 불가능
3. 다른 학교법인과의 합병
4. 파산
5. 제47조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해산명령

②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인한 해산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20. 12. 22.]

**제35조(잔여재산의 귀속)** ① 학교법인이 정관에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殘餘財産)의 귀속자에 관한 규정을 두려는 경우 그 귀속자는 학교법인이나 그 밖에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에서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해산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부장관에게 청산종결을 신고한 때에 제1항에 따라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의 임원 또는 해당 학교법인이 설립한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자 등이 이 법 또는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해당 학교법인이 관할청으로부터 회수 등 재정적 보전(補塡)을 필요로 하는 시정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해산되는 경우 정관으로 지정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해산한 학교법인의 설립자나 임원 또는 이들과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인 사람이 학교법인 해산일을 기준으로 10년 이내의 기간 중 정관으로 지정한 자 또는 정관으로 지정한 자가 설립한 사립학교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직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가. 대표자
   나. 임원
   다.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의 총장 또는 부총장
   라.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의 교장 또는 교감
   마.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또는 원감
2. 정관으로 지정한 자의 임원 또는 정관으로 지정한 자가 설립한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자 등이 이 법 또는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정관으로 지정한 자가 관할청으로부터 회수 등 재정적 보전을 필요로 하는 시정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 중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산은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학진흥기금의 청산지원계정(이하 "청산지원계정"이라 한다)에 귀속되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산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개정 2021. 8. 10.>

⑤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을 사립학교 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다른 학교법인에 양여·무상대부 또는 보조금으로 지급하거나 그 밖의 교육사업에 사용한다.<개정 2021. 8. 10.>

⑥ 제4항에 따라 청산지원계정에 귀속된 재산은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이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해당 시·도 교육감이 관리하되, 제5항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시·도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한다.<개정 2021. 8. 10.>

[전문개정 2020. 12. 22.]

**제35조의2(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은 학생 수가 크게 감소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해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도 교육감의 인가를 받으려는 학교법인은 해산인가신청서에 잔여재산 처분계획서를 첨부하여 시·도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해산과 제2항에 따른 잔여재산 처분계획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해산하는 학교법인이 원활하게 해산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해산인가 신청 당시 학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해산장려금의 지급
2. 해산인가 신청 당시 학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 중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었던 재산의 매입
⑤ 제1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해산, 제2항에 따른 잔여재산의 처분 및 제4항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시ㆍ도 교육감 소속으로 사학정비심사위원회를 둔다.
⑥ 제5항에 따른 사학정비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산한 학교법인은 그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잔여재산 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시키거나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재산으로 출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12. 22.]

**제36조(합병 절차)** ① 학교법인이 다른 학교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합병은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면 그 인가신청서에 합병 후 존속하는 학교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학교법인의 정관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12. 22.]

**제37조(합병 절차)** ① 학교법인은 제36조제2항의 인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 인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학교법인은 제1항의 기간 내에 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각각 이를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제기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20. 12. 22.]

**제38조(합병 절차)** ① 채권자가 제37조제2항의 기간 내에 합병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의 채무인수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 채권자가 제37조제2항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학교법인은 채무를 갚거나 그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12. 22.]

**제39조(합병 절차)** 합병에 의하여 학교법인을 설립할 경우 정관, 그 밖에 학교법인의 설립에 관한 사무는 각 학교법인이 선임한 자가 공동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12. 22.]

**제40조(합병의 효과)** 합병 후 존속하는 학교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학교법인의 권리ㆍ의무(그 학교법인이 그가 경영하는 사업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나 그 밖의 처분으로 인하여 가지는 권리ㆍ의무를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전문개정 2020. 12. 22.]

**제41조(합병의 시기)** 학교법인의 합병은 합병 후 존속하는 학교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학교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전문개정 2020. 12. 22.]

**제42조(「민법」 등의 준용)** ① 학교법인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79조 및 제81조부터 제9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 제79조 중 "이사"는 "이사장"으로 본다.
② 학교법인의 청산인에 관하여는 제18조와 「민법」 제59조제2항, 제61조, 제62조, 제64조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0. 12. 22.]

## 제6절 지원과 감독 <개정 2020. 12. 22.>

**제43조(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립학교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를 신청한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관할청은 제1항 또는 제35조제5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지원에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로부터 그 업무 또는 회계 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을 권한
2.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의 예산이 지원 목적에 비추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예산에 대하여 필요한 변경조치를 권고할 권한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또는 제35조제5항에 따라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를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성과가 저조하여 계속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가 제2항에 따른 관할청의 권고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후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12. 22.]

**제44조(실업교육의 우선적인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35조제5항 또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실업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20. 12. 22.]

**제45조(정관 변경 등)** ① 학교법인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학교법인이 제1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갖추어 14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교육부장관은 변경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30일 이내에 해당 학교법인에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학교법인은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12. 22.]

**제46조(수익사업의 정지명령)** 관할청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는 학교법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학교법인에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해당 학교법인이 그 사업으로부터 생긴 수익을 그가 설치한 사립학교의 경영 외의 목적에 사용하였을 때
2. 해당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그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을 줄 때
[전문개정 2020. 12. 22.]

**제47조(해산명령)**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법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학교법인에 해산을 명할 수 있다.
1.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때
② 제1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해산명령은 다른 방법으로는 감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또는 관할청이 시정을 지시한 후 6개월이 지나도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에만 한다.
[전문개정 2020. 12. 22.]

**제47조의2(청문)** 교육부장관은 제47조에 따라 학교법인의 해산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12. 22.]

**제48조(보고징수 등)** 관할청은 감독상 필요할 때에는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보고서 제출을 명하거나,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12. 22.]

**제48조의2(해산된 학교법인 등에 대한 기록물 관리)** ① 해산된 학교법인과 폐지ㆍ폐쇄된 학교에 관한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와 소속 임원, 교직원 및 학생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는 학적부, 조직ㆍ회계ㆍ예산 관련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관 중인 기록물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4조제2항 또는 제47조에 따라 해산된 학교법인
2. 「고등교육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학교 폐지의 인가를 받은 학교
3. 「고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학교 폐쇄의 명령을 받은 학교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해산된 학교법인 등의 기록물 이관 및 관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3. 24.]

**제49조** 삭제 <1999. 8. 31.>

## 제3장 사립학교경영자 <개정 2020. 12. 22.>

**제50조(학교법인으로의 조직 변경)** 사립학교경영자 중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은 그 조직을 변경하여 학교법인이 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12. 22.]

**제51조(준용규정)** 사립학교경영자에 관하여는 제5조, 제28조제2항, 제29조,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4까지, 제33조, 제43조, 제44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4까지 및 제33조는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에 관한 부분에 한정하여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0. 12. 22.]

## 제4장 사립학교 교원 <개정 2020. 12. 22.>

### 제1절 자격 · 임용 · 복무 <개정 2016. 2. 3.>

**제52조(자격)**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국립학교ㆍ공립학교의 교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22.]

**제53조(학교의 장의 임용)** ① 각급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이 대학교육기관의 장을 임기 중에 해임하려는 경우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각급 학교의 장의 임기는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고,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되, 4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초ㆍ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장은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12. 22.]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① 각급 학교의 교원은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해당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
2.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해당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임용

② 대학교육기관의 교원 임용권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휴직 및 복직에 관한 사항은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21. 8. 10.>

③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ㆍ급여ㆍ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간에 관하여는 국립대학ㆍ공립대학의 교원에게 적용되는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임용된 교원의 임용권자는 해당 교원에게 임용기간 만료일 4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를 임용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재임용 심의 신청을 받은 임용권자는 제53조의4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해당 교원을 재임용할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해당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통지하여야 한다.

⑦ 교원인사위원회가 제6항에 따라 해당 교원의 재임용 여부를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에서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 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2.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3.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학연협력에 관한 사항

⑧ 교원인사위원회는 교원의 재임용을 심의하는 경우 해당 교원의 평가 등에 제7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적과 성과가 「고등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해당 교원의 임무에 비추어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⑨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⑩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으로 하며, 담당할 직무에 필요한 자격요건과 공개전형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⑪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원의 임용권자는 제10항에 따른 공개전형을 실시할 때에는 필기시험을 포함하여야 하고, 필기시험은 시ㆍ도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시ㆍ도 교육감에게 위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21. 9. 24.>
[전문개정 2020. 12. 22.]

**제53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53조의2제10항에 따른 각급 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 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0. 12. 22.]

**제53조의4(교원인사위원회)** ① 각급 학교(고등기술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유치원과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는 제외한다)의 교원(학교의 장은 제외한다)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 8. 10.>
②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ㆍ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고,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 12. 22.]

**제53조의5(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신규채용 등)** 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을, 임용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1조의5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5의 "대학인사위원회"는 제53조의4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5. 8. 14.>
[전문개정 2016. 5. 29.]

**제54조(임용에 관한 보고 및 해임 등의 요구)** ① 각급 학교의 교원 임용권자는 교원을 임용(각급 학교의 장으로서 임기 만료로 해임된 경우는 제외한다)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② 삭제<1990. 4. 7.>
③ 관할청은 사립학교의 교원이 이 법에 규정된 면직 사유 및 징계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0. 12. 22.>
[전문개정 1981. 2. 28.]
[제목개정 2020. 12. 22.]

**제54조의2(해임 요구)** ① 관할청은 각급 학교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해당 학교의 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을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제5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2. 학생의 입학(편입학을 포함한다), 수업 및 졸업에 관한 해당 학교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교육 관계 법률 또는 그 법률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3.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다른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
4.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일을 하였거나 현저히 부당한 일을 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해임 요구는 관할청이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5일이 지나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만 한다.
[전문개정 2020. 12. 22.]

**제54조의3(임명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
1. 제20조의2에 따라 임원 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제54조의2에 따른 해임 요구에 의하여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제61조에 따라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임명 제한 기간이 지난 사람이 학교의 장으로 취임하려면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인 사람은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 다만,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은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배우자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④ 학교의 장으로 임명되어 있는 사람이 학교법인의 이사장의 변경 또는 친족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가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⑥ 이 법에 따른 교원(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국립학교ㆍ공립학교의 교원(「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재직하는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파면ㆍ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다만,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서 해당 교원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교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금품수수 행위
2.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 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非違) 행위
3.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

⑦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 12. 22.]

**제54조의4(기간제교원)** ① 각급 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 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교원(이하 "기간제교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학교법인의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교원이 제5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
2. 교원이 파견ㆍ연수ㆍ정직ㆍ직위해제 또는 휴가 등으로 1개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
3. 파면ㆍ해임 또는 면직 처분을 받은 교원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교원이 필요할 때

② 기간제교원에 대해서는 제56조, 제58조제2항, 제58조의2, 제59조, 제61조, 제61조의2, 제62조, 제62조의2, 제63조,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제66조의2, 제66조의3제2항ㆍ제3항 및 제66조의4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된다.

③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기간제교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제54조의3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0. 12. 22.]

**제54조의5** 삭제 <2019. 8. 20.>

**제55조(복무)** ①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립학교ㆍ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의학ㆍ한의학 또는 치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대학의 소속 교원은 학생의 임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겸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겸직 허가의 기준과 절차, 겸직 교원의 직무와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 12. 22.]

**제55조의2(연수의 기회균등)** 사립학교의 교원에게는 「교육공무원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연수기관에서 재교육을 받거나 연수할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져야 한다.
[본조신설 2018. 4. 17.]

**제55조의3(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사립학교의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학교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4. 17.]

**제55조의4(연수 실적)** 학교의 장은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그 소속 사립학교의 교원의 재교육 및 연수 실적을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4. 17.]

**제55조의5(파견근무)** ① 사립학교(「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육활동의 교류, 업무 수행과 관련된 행정 지원이나 연수, 그 밖에 능력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교원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다른 사립학교 또는 국내외의 교육기관ㆍ연구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교육활동의 교류와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교육공무원 및 다른 사립학교의 교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속 교원을 파견한 임용권자는 파견 사유가 없어지거나 파견 목적이 달성될 가능성이 없으면 해당 교원을 지체 없이 원래의 소속 학교로 복귀시켜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소속 교원을 파견근무하게 하거나 교육공무원 및 다른 사립학교의 교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 그 사유ㆍ기간ㆍ절차, 파견근무 중 복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 3. 18.]

## 제2절 신분보장 및 사회보장 <개정 2020. 12. 22.>

**제56조(의사에 반한 휴직ㆍ면직 등의 금지)** ① 사립학교 교원은 형(刑)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이나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이나 학과의 개편 또는 폐지로 인하여 직책이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립학교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20. 12. 22.]

**제57조(당연퇴직의 사유)** ① 사립학교 교원이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하며,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를 적용할 때 "공무원"은 "교원"으로 본다. <개정 2022. 12. 13.>

② 사립학교 교원 중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의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가 교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47조 또는 제351조(제347조의 상습범에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를 저질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신설 2022. 12. 13.>

[전문개정 2020. 12. 22.]

**제58조(면직의 사유)** ①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

1.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2. 근무성적이 매우 불량할 때
3. 정부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幇助)하였을 때
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하였을 때
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거짓 증명 또는 진술을 하였을 때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을 때

②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20. 12. 22.]

**제58조의2(직위의 해제)** ①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교원의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매우 불량하거나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매우 불성실한 경우
2.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경우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에게 3개월 이내의 기간대기를 명한다.
④ 임용권자는 제3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능력 회복이나 태도 개선을 위한 연수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립학교 교원에게 제1항제1호와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를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12. 22.]

**제59조(휴직의 사유)** ①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그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불임ㆍ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전시ㆍ사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생사나 소재(所在)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4.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경우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 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를 하게 된 경우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ㆍ연구기관,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되는 경우
7.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7의2.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하는 경우

8.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경우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배우자가 국외 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1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경우
1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에 따라 계산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ㆍ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
1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고, 같은 항 제7호의2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호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며, 그 밖에 같은 호에 따른 휴직자의 신분 및 처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휴직기간과 휴직자의 신분 및 처우 등에 관하여는 정관(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그가 정하는 교원의 신분보장 및 징계에 관한 규칙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 12. 22.]

**제60조(교원의 불체포특권)** 사립학교 교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학교장의 동의 없이 학원(學園) 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20. 12. 22.]

**제60조의2(사회보장)** ① 사립학교의 교원 및 사무직원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ㆍ장해 또는 재해를 입거나 퇴직 또는 사망하였을 때에는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급여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법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규정되어야 한다.
1. 상당한 기간 동안 근무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연금이나 일시금을 지급하는 사항
2. 직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연금이나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항
3. 직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기간 중 소득능력에 장애를 받을 경우에 본인이 받는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4. 직무로 인하지 아니한 사망ㆍ장해ㆍ부상ㆍ질병ㆍ출산, 그 밖의 사고에 대한 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0. 12. 22.]

**제60조의3(명예퇴직)** ①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범위, 지급액, 지급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 12. 22.]

### 제3절 징계 <개정 2020. 12. 22.>

**제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①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과 그 밖의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3.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②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한다.<개정 2021. 8. 10.>

③ 강등은 동종의 직무 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하고,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에 해당하는 교원 및 조교에 대하여는 강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21. 8. 10.>

④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중 교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개정 2021. 8. 10.>

⑤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개정 2021. 8. 10.>

⑥ 견책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뉘우치게 한다.<개정 2021. 8. 10.>

[전문개정 2020. 12. 22.]

**제61조의2(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의 징계 사유 확인 등)** ① 각급 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1. 제61조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지 여부
2. 제4항에 따른 의원면직의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 결과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에 준하는 정도의 징계(이하 "중징계"라 한다)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제5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교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

④ 각급 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2.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중인 경우
3. 감사원ㆍ검찰ㆍ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4. 관할청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의원면직의 제한 및 제한대상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 12. 22.]

**제62조(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사건 및 제54조의3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교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그 임용권자의 구분에 따라 학교법인ㆍ사립학교경영자 및 해당 학교에 교원징계위원회를 둔다. 다만, 사립유치원 교원의 징계사건은 「교육공무원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되는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1명 이하의 범위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 9. 24.>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제53조의2제2항에 따라 교원의 임용권이 학교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로 한정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21. 9. 24.>

1. 해당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라.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경우로 한정한다)
   마.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교원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개정 2021. 9. 24.>

1.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이 조 및 제62조의2에서 "외부위원"이라 한다)을 최소 2명 이상 포함할 것
2. 외부위원은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이 아닐 것
3. 학교법인에 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경우에는 외부위원에 제3항제2호라목에 따라 위촉된 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할 것
5. 특정 성(性)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⑤ 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권한 및 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 12. 22.]

**제62조의2(외부위원의 임기 등)** ①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제53조의2제2항에 따라 교원의 임용권이 학교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에 한정한다)은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66조의5에 따른 비밀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20. 12. 22.]

**제62조의3(징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제66조의2 및 제70조의6에 따른 재심의를 위하여 시ㆍ도 교육청에 징계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징계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ㆍ도 교육감이 위촉한다.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4.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징계심의위원회의 조직ㆍ권한 및 심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9. 24.]

**제63조(제척 사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본인이나 친족에 관한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20. 12. 22.]

**제64조(징계의결의 요구)**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소속 교원 중에 제61조제1항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12. 22.]

**제64조의2(징계의결 요구 사유의 통지)**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제64조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 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2020. 12. 22.]

**제65조(진상조사 및 의견진술)**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의할 때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12. 22.]

**제66조(징계의결)**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제6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정도 및 징계의결이 요구된 교원의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기준 및 징계의 감경기준 등에 따라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16.>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의한 결과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주문(主文)과 이유를 적은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여 임용권자 및 관할청에 보내어 알려야 한다.<개정 2016. 2. 3., 2019. 4. 16., 2021. 9. 24.>

③ 제1항의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9. 4. 16.>

④ 임용권자가 제2항의 징계의결서를 받았을 때에는 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해당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 2. 3., 2019. 4. 16.>

⑤ 임용권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4항에 따라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21. 8. 10.>

[전문개정 2015. 3. 27.]

**제66조의2(징계의결의 재심의)** ①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제54조제3항에 따라 징계를 요구받은 사항에 대하여 제66조제2항에 따른 징계의결서를 받았을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그 내용을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징계의결의 내용이 징계 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되면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제4조제1항에 따른 관할청의 경우 제62조의3에 따른 징계심의위원회에, 제4조제3항에 따른 관할청의 경우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21. 9. 24.>

③ 임용권자가 관할청으로부터 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징계심의위원회 또는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21. 9. 24.>

④ 제3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징계심의위원회 또는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재심의한 결과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주문과 이유를 적은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여 관할청과 임용권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21. 9. 24.>

⑤ 임용권자가 제4항에 따라 징계의결서를 받았을 때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해당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2021. 9. 24.>

⑥ 제4항에 따른 징계사건의 심리·의결에 관하여는 제63조·제65조 및 제66조제1항·제3항을 적용 또는 준용한다. 이 경우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위원회"로 본다.<신설

2021. 9. 24.>
[전문개정 2020. 12. 22.]
[제목개정 2021. 9. 24.]

**제66조의3(감사원 조사와의 관계 등)** ① 감사원,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였을 때와 마쳤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③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12. 22.]

**제66조의4(징계 사유의 시효)** ①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제64조에 따른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징계 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교육공무원법」 제52조제5호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18., 2025. 8. 14.>
② 제66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제66조의3제1항에 따른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③ 징계위원회의 구성, 징계의결, 그 밖에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12. 22.]

**제66조의5(비밀누설의 금지)** 교원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6. 5. 29.]

**제66조의6(보직 등 관리의 원칙)**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장은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원을 징계처분 이후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학급을 담당하는 교원(이하 “학급담당교원”이라 한다)으로 배정할 수 없다. <개정 2022. 10. 18.>

②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교원의 학급담당교원 배정 여부 등 제2조제4호에 따른 임용에 관한 사항을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2. 22.]

**제67조(외국인학교에 대한 특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에 대해서는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5까지, 제54조, 제54조의2부터 제54조의4까지, 제55조,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4까지,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 제59조, 제60조,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61조, 제61조의2, 제62조, 제62조의2, 제62조의3, 제63조,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제66조의2, 제66조의3제2항ㆍ제3항, 제66조의4, 제70조의3부터 제70조의7까지 및 제72조의3부터 제72조의5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9. 24.>
[전문개정 2020. 12. 22.]

**제67조의2** 삭제 <1991. 5. 31.>

**제67조의3** 삭제 <1991. 5. 31.>

**제68조** 삭제 <1991. 5. 31.>

**제69조** 삭제 <1991. 5. 31.>

## 제5장 보칙 <개정 2020. 12. 22.>

**제70조(보고ㆍ조사 등)** 관할청은 사립학교의 교육에 관하여 조사를 하거나 통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나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교육의 실시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12. 22.]

**제70조의2(사무기구 및 직원)** ①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그의 사무와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기구를 두되, 그 설치ㆍ운영과 사무직원의 정원ㆍ임용ㆍ보수ㆍ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학교법인 또는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고,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각급 학교 소속 사무직원은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한다.
[전문개정 2020. 12. 22.]

**제70조의3(사무직원의 임용)** ① 제70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소속 사무직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하며, 공개전형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직원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 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3조의2를 준용한다.
③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소속 사무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신설 2021. 9. 24.>
[본조신설 2021. 8. 10.]
[종전 제70조의3은 제70조의4로 이동 <2021. 8. 10.>]

**제70조의4(사무직원의 당연퇴직)** 제70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의 당연퇴직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사무직원"으로 본다. <개정 2021. 9. 24.>
[전문개정 2020. 12. 22.]
[제70조의3에서 이동 <2021. 8. 10.>]

**제70조의5(사무직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①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정관이나 규칙에서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사무직원의 임용권자는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유치원 사무직원의 징계를 관할하는 징계위원회가 없는 경우 해당 사무직원의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되는 관할청의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사무직원의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해당 사무직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관할청은 제70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8조 또는 제70조에 따른 검사ㆍ조사 결과 사무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법이나 교육관계 법령 또는 해당 정관이나 규칙을 위반한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제1항에 따른 관할 징계위원회에 해당 사무직원의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21. 9. 24.]

**제70조의6(사무직원 징계의결의 재심의 요구)** ① 사무직원의 임용권자는 제70조의5제3항에 따라 요구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을 하기 전에 그 내용을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징계의결의 내용이 징계 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되면 해당 사무직원의 임용권자에게 제4조제1항에 따른 관할청의 경우 제62조의3에 따른 징계심의위원회에, 제4조제3항에 따른 관할청의 경우 제70조의5제1항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사무직원의 임용권자가 관할청으로부터 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징계심의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④ 사무직원의 임용권자는 제3항에 따른 징계심의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의 재심의 결과를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징계심의위원회의 심리ㆍ의결 등에 관하여는 제63조, 제65조, 제66조제3항 및 제66조의2제4항ㆍ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원”은 “사무직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1. 9. 24.]

**제70조의7(사무직원에 대한 해임 요구)** ① 관할청은 제70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해당 사무직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을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정한 일을 하였거나 현저히 부당한 일을 한 경우
2.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취임 승인이 취소된 임원의 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3.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해임된 학교의 장의 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4.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다른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5. 제70조의4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법령위반 행위를 하였다고 확인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해임 요구는 관할청이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5일이 지나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만 한다.
[본조신설 2021. 9. 24.]

**제7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12. 22.]

**제72조** 삭제 <2000. 1. 28.>

**제7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6. 5. 29.]

**제72조의3(임원의 친족 교직원 공개)** 학교법인은 학교법인 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9. 24.]

**제72조의4(청렴의무)** 사립학교경영자, 학교법인의 임직원 및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이하 “사학기관 종사자”라 한다)은 법령을 준수하고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1. 9. 24.]

**제72조의5(사학기관 행동강령)** ① 제72조의4에 따른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행동강령(이하 “사학기관 행동강령”이라 한다)은 학교법인과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사학기관 행동강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가. 학교법인,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
   나.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의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ㆍ이권개입ㆍ알선ㆍ청탁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3.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신고 대상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사학기관 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징계 등의 제재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학기관 종사자가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사학기관 종사자가 사학기관 행동강령을 위반한 경우 임용권자는 징계 등의 제재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관할청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한 사학기관 행동강령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누락되어 있거나 그 내용이 현저히 미흡한 경우
2.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에 소속된 사학기관 종사자가 사학기관 행동강령을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징계 등의 제재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21. 9. 24.]

## 제6장 벌칙 <개정 2020. 12. 22.>

**제73조(벌칙)**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이사) 또는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제29조제6항(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9. 24.>

[전문개정 2020. 12. 22.]

[제73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73조는 제73조의2로 이동 <2021. 9. 24.>]

**제73조의2(벌칙)**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8. 10.>

1. 제2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2. 제46조에 따른 관할청의 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을 계속한 경우
3. 제48조(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관할청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20. 12. 22.]

[제73조에서 이동, 종전 제73조의2는 제73조로 이동 <2021. 9. 24.>]

**제74조(과태료)** ① 사립학교 교원 또는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의 임용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 9. 24.>

1. 제54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관할청의 해임 또는 징계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제54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관할청의 해임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제6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재심의를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
4. 제66조의2제5항 전단(제70조의6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70조의5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관할청의 징계의결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제70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재심의를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
7. 제70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관할청의 해임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8. 제72조의5제4항제2호에 따른 관할청의 시정명령을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 학교법인의 이사장, 감사 또는 청산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 8. 10., 2021. 9. 24.>

1. 이 법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6조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고하여야 할 사항을 거짓으로 공고하거나 누락하여 공고한 경우
3. 제13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재산목록 또는 제32조(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37조제1항에 따른 재산목록이나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이에 적을 사항을 거짓으로 적거나 누락하여 적은 경우
4. 제19조제4항제3호 또는 제48조(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하여야 할 사항을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누락하여 보고한 경우

4의2. 제28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1조(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7조제2항 또는 제38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6.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79조 또는 제93조제1항에 따른 파산선고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88조제1항 또는 제93조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고할 사항을 거짓으로 공고하거나 누락하여 공고한 경우
8.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86조 또는 제94조에 따른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부실한 신고를 한 경우

9.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90조를 위반한 경우
10. 제72조의3에 따른 공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③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제32조의2제5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하여야 할 사항을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누락하여 보고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가 제5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청이 부과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20. 12. 22.]

**부칙** <제1362호,1963. 6. 26.>

**제1조** (시행령)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법의 시행당시 제3조에 규정된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은 이 법의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그 조직을 학교법인으로 개편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 기간내에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재단법인에 대하여는 문교부장관은 1966년 12월 31일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기간까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조직이 불가능하다고 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재단법인에 있어서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설치한 학교를 유지경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재단법인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우선하여 이 법에 의한 학교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64. 11. 10., 1965. 12. 30., 1967. 1. 16.>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법인이 학교법인으로 그 조직을 변경함에 있어서는 제50조제2항 및 제50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63. 12. 16.>
③전항의 경우에 당해 재단법인의 정관에 정관변경에 이사회와 그외의 당해 재단법인의 기관의 의결을 요하게 하는 규정이 있고 그 재단법인의 이사의 전원 또는 과반수가 임시이사인 때에는 이사회 이외의 기관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사회의 의결만으로써 학교법인으로 조직변경을 하기 위한 정관변경을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으로 개편된 경우에 이 법 시행이전에 당해 재단법인에 대하여 행한 문교부장관의 처분은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개편된 학교법인에게 행한 것으로 본다.
⑤학교법인으로 개편된 경우에 그 개편전의 재단법인의 임원은 그대로 학교법인의 임원으로서 잔임기간동안 재임한다. 다만, 그 잔임기간이 5년 이상일 때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에 그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⑥재단법인이 그 조직을 개편하여 학교법인이 된 경우에 그 재단법인이 학교경영으로 인하여 발생한 종전의 채권·채무는 개편된 학교법인이 이를 포괄계승한다.<신설 1964. 11. 10.>

**제3조** (동전) 이 법 시행당시 사립학교에 재직중에 있는 교원은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삭제 <1964. 11. 10.>

**부칙** <제1621호,1963. 12. 16.>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4호,1964. 11. 1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50조의2제2항의 규정은 1963년 7월 25일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1735호,1965. 12. 30.>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9호,1967. 1. 16.>

이 법은 196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96호,1972. 12. 28.>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87호,1973. 3. 10.>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49호,1973. 12. 20.>

이 법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75호,1975. 7. 2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대학(사범대학 및 초급대학을 포함한다)에 근무하는 교원은 1976년 2월말일부로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재임면하여야 한다.

**부칙** <제2945호,1976. 12. 31.>(지방세법)

①(시행일) 이 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③(타법률의 개정) 다른 법률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내지 3. 생략
4. 사립학교법 제50조의2제2항중 "등록세법 제8조제2호 및 제3호"를 "지방세법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④내지 ⑧생략

**부칙** <제2961호,1976.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정관등의 제출) 이 법 시행당시의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관 또는 규칙을 정하여 감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3057호,1977.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전문대학에 관한 규정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공포당시 징계처분을 받은 자중 정직처분은 감봉 6월로, 근신처분은 근책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이 법 공포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초급대학·실업고등전문학교 및 전문학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까지 전문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로 개편하고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경과조치) 이 법 공포당시의 초급대학으로서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로 개편되는 학교에 재직중인 교원은 그 개편된 당해 학교의 교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⑤(경과조치) 이 법 공포당시의 실업고등전문학교 및 전문학교로서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으로 개편되는 학교에 재직중인 교원에 대하여는 1979년 2월말일부로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재임용하여야 한다.

**부칙** <제3114호,1978. 12. 5.>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73호,1981. 2. 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대학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 및 사무직원은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③(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교원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속중인 징계 및 재심청구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학교장 임명제한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전문대학의 장으로 재직중인 자는 제54조의3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직에서 해임될 때까지 재임할 수 있다.
⑤(학교장 임명제한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사립학교의 장으로 재직중인 자는 제54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1981학연도말까지 재임할 수 있다.
⑥(벌칙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3458호,1981. 11. 23.>(교육공무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사립학교법의 개정) 사립학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호중 " 교육공무원법 제16조 "를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로 한다.
제54조의3제1항제3호중 " 교육공무원법 제35조의2 "를 " 국가공무원법 제49조 "로 한다.
제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8조의2 (국가공무원법의 준용)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의 규정은 이를 사립학교교원에게 준용한다. 이 경우 준용규정중 "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는 " 임용권자 "로 본다.
**제9조** 및 제10조 생략

**부칙** <제3812호,1986. 5. 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이사는 그 임기만료시까지 이 법에 의하여 취임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226호,1990. 4. 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교육장에 관한 경과조치) 지방자치단체별로 교육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제4조제1항, 제35조제4항 및 제71조중 "시·군 및 자치구교육장"은 "교육장 및 교육구청장"으로, 제4조제2항중 "특별시·직할시·도교육장"은 "서울특별시·직할시·도교육위원회"로, 제35조제4항 및 제71조중 "시·도교육장"은 "시·도교육위원회"로, 제35조제4항중 "교육장"은 "교육위원회 또는 교육장"으로 본다.

**제3조** (대학교육기관의 교직원의 임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대학교육기관에 재직중인 교원 및 사무직원은 이 법에 의하여 당해 학교법인이 임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교원징계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계속중인 징계사건에 대하여는 제6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교원징계위원회가 심리·의결한다.

**제5조** (재심청구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심위원회에 계속중이거나 이 법 시행이후 이 법에 의하여 재심위원회가 설치될 때까지 제기되는 재심청구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사립학교교원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중 "감독청의 승인을 받았거나 감독청에 보고된 교원"을 "관할청에 보고된 교원"으로 한다.

제60조의2의 제목 및 본문중 "감독청"을 각각 "관할청"으로 한다.

**부칙** <제4268호,1990. 12. 27.>(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 사립학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25조, 제33조, 제34조제1항제5호·제2항, 제35조제1항·제4항, 제36조제2항, 제40조, 제45조, 제47조제1항, 제50조제2항, 제59조제1항제8호 및 제71조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2항중 "문교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1& 내지5) 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제4347호,1991. 3. 8.>(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법률 제4310호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 시행후 최초로 실시되는 지방의회의원선거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사립학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직할시·도(이하 "시·도"라 한다)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1. 사립의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기술학교·고등기술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특수학교·유치원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

2. 제1호에 규정한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제35조제4항중 ", 시·군 및 자치구교육장은 시·도교육장의"를 삭제한다.

제71조중 ", 시·도교육장은 그 권한의 일부를 시·군 및 자치구교육장에게"를 삭제한다.

④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4376호,1991. 5. 31.>(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교육공무원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교원의 소청 또는 재심이 진행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사립학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67조의2·제67조의3·제68조 및 제6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4조제2항중 "제54조제1항 및 제69조의"를 "제54조제1항의"로 한다.

**부칙** <제5069호,1995. 12. 29.>(교육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⑤생략

⑥사립학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호·제4조제1항제1호 및 제53조의3제1항중 "국민학교"를 각각 "초등학교"로 한다.

⑦내지 ⑮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5274호,1997. 1. 1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이사는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임기만료시까지 이 법에 의하여 취임된 것으로 본다.

③(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5345호,1997. 8. 22.>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학교법인의 해산인가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0. 12. 30., 2004. 1. 29.>

**부칙** <제5438호,1997. 12. 13.>(초ㆍ중등교육법)

**제1조** 이 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사립학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3항중 " 교육법 제7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이 법에 " 를 " 이 법에 " 로 한다.

제57조중 " 교육법 제77조제1호 또는 제2호 " 를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호의 1 " 로 한다.

②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5453호,1997. 12. 13.>(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5454호,1997. 12. 13.>(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5683호,1999. 1. 21.>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82호,1999. 5. 24.>(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2! 생략
2@ 사립학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4항중 " 재정경제원장관 " 을 " 재정경제부장관 " 으로 한다.
2# 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제6004호,1999. 8. 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2항ㆍ제4항 및 제53조의4의 개정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3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계약제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의 경우에는 제53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임용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임시이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임시이사의 임기는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6212호,2000. 1. 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제1항의 개정규정중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하는 육아휴직 관련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32호,2000. 12. 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00호,2001. 1. 29.>(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1^ 생략

1& 사립학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본문, 제10조제1항 본문,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항, 제33조, 제34조제1항제5호ㆍ제2항, 제35조제1항ㆍ제4항, 제36조제2항, 제40조, 제45조, 제47조제1항 본문, 제47조의2, 제59조제1항제8호 및 제71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2항중 "교육부령"을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1* 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6715호,2002. 8. 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18호,2004. 1. 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20호,2004. 1. 29.>(유아교육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사립학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로 하고, 동조제3항중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을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으로 한다.

③내지 ⑪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7352호,2005. 1. 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간임용된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재임용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임용되어 재직중인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재임용 관련절차는 제53조의

2제4항 내지 제8항의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7354호,2005. 1. 27.>(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사립학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4제1항제3호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로 하고, 제66조의2제2항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7802호,2005. 1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의2제9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53조의2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행되는 신규채용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임원의 구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14조 및 제21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의 이사추천의 수가 미달하는 경우에는 임원을 새로이 구성하거나 임원의 임기가 만료 등으로 인하여 궐위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동위원회의 추천에 의한 임원의 구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임 중인 임원은 제20조제3항 및 제21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임원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임원 및 교원의 결격사유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임 중인 임원 또는 교원은 제2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4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취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 7. 27.>

**제6조** (학교의 장의 임명의 제한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임 중인 학교의 장은 그 임기 만료시까지 제54조의3제1항 내지 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초ㆍ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단서중 "제1호ㆍ제2호"를 "제1호"로 한다.

**부칙** <제8529호,2007. 7. 19.>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45호,2007. 7.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사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후 임원의 임기 만료 등으로 인하여 궐위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3조** (개방이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제3항에 따라 선임된 개방이사는 이 법에 따라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임시이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5조에 따라 선임된 임시이사는 이 법에 따라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임시이사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임시이사로서 2006년 7월 1일 이후 선임된 임시이사의 임기는 200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8639호,2007. 10. 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평생교육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민법」상 재단법인이 해당 시설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사이버대학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단법인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이 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 개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으로 개편된 경우에 그 개편 이전의 재단법인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처분은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개편된 학교법인에 행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으로 개편된 경우에 그 개편 이전의 재단법인의 임원은 학교법인의 임원으로서 잔임기간 동안 재임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으로 개편된 경우에 그 재단법인의 학교경영으로 인하여 발생한 종전의 채권ㆍ채무는 개편된 학교법인이 포괄 계승한다.

⑤ 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으로 개편되는 재단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재직 중인 교직원은 이 법에 따라 해당 학교법인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852호,2008. 2. 29.>(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

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3> 까지 생략

<84>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33조, 제34조제1항제5호ㆍ제2항, 제36조제2항, 제40조, 제45조 본문 및 단서,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의2, 제59조제1항제8호 및 제71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후단, 제24조의2제1항 및 제45조 단서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제33조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재정경제부장관의"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의"로 한다.

<8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888호,2008. 3. 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교원의 임명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3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징계에 의하여 최초로 파면ㆍ해임된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258호,2010. 4. 15.>(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3제5항제1호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⑨ 부터 ⑮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0580호,2011. 4. 12.>(부동산등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2! 까지 생략

2@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중 " 등기부 등본 " 을 " 등기사항증명서 " 로 한다.

2# 부터4@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637호,2011. 5. 1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교원 등 임명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3제5항 및 제54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54조의3제5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하여 최초로 파면ㆍ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871호,2011. 7. 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06호,2011. 7. 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16호,2012. 1.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 및 제5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관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조사 등 개시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감사원,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이 조사나 수사를 개시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622호,2013. 1. 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9조제2항ㆍ제4항, 제31조제3항 및 제3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690호,2013. 3. 23.>(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4* 까지 생략

4(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2항 후단, 제24조의2제1항, 제32조의2제4항, 제33조, 제34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35조제1항ㆍ제4항, 제36조제2항, 제40조, 제4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의2, 제59조제1항제8호 및 제71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및 제32조의2제5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1622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제31조의2제1항 및 제32조의3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5) 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125호,2013. 12. 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24호,2015. 3.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의결의 재심의 요구 등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교원징계위원회가 심의 중인 징계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징계사유의 시효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

용한다.

**제4조**(유치원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학교의 장이 집행한 유치원회계는 제29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교원의 징계종류ㆍ내용 및 시효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6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66조의4제1항을 준용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9조의11제2항 본문 중 "제66조의2"를 "제66조의2부터 제66조의4까지"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66조 및 제66조의2"를 "제66조, 제66조의2, 제66조의3제2항ㆍ제3항 및 제66조의4"로 한다.

**부칙** <제13573호,2015. 12.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원의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사유 및 행위로 인하여 제57조에 따른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936호,2016. 2. 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2제8항 중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4조의4제1항제3호 중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66조의4제3항 중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으로 한다.

⑧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3938호,2016. 2.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의5, 제58조의2제1항제4호 및 제58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정행위자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5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직위해제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발생한 비위행위에 대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휴직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제1항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아동을 입양하고 있는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14154호,2016. 5.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의 장의 임명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학교의 장이 이 법 시행 전에 학교법인의 이사장의 변경 또는 친족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제54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제54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계속 중인 징계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제64조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계속 중인 징계사건에 대하여는 제6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1조제3항 중 " 제62조제3항 "을 " 제62조제5항 "으로 한다.

**부칙** <제14468호,2016. 1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학교 설립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설립 인가를 신청한 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설립 기준을 갖추려고 관계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전에 인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3조**(특정목적적립금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3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타적립금으로 관리되어온 자금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 내에 연구적립금, 건축적립금, 장학적립금, 퇴직적립금 또는 특정목적적립금으로 적립하거나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8항 중 “ 「사립학교법」 제2조제2항 ”을 “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 ”로 한다.

②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제2호 중 “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 ”을 “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 ”로 한다.

**부칙** <제15022호,2017. 10. 31.>(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1^ 까지 생략

1& 삭제 <2017. 11. 28.>

1* 부터3&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15040호,2017. 11.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는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립금 투자결과 보고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32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투자결과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 내에 제32조의2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고되어야 한다.

**제3조**(교원의 재임용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2제7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교원의 재임용을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5022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4조제17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15555호,2018. 4.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6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사유의 시효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15954호,2018. 12.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임 또는 징계 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관할청이 임용권자에게 교원의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219호,2019. 1.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청산이 종결되지 아니한 학교법인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6310호,2019. 4.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기준 및 징계의 감경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용권자가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439호,2019. 8.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직처분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정직처분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6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6672호,2019. 12. 3.>(초ㆍ중등교육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고등기술학교ㆍ공민학교"를 "고등기술학교"로 한다.

제53조의4제1항 중 "고등기술학교ㆍ공민학교"를 "고등기술학교"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16674호,2019. 12.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의 장의 임용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용되는 특수학교의 장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이전에 특수학교의 장이었던 사람은 1회에 한하여 임용될 수 있고, 현재 재임 중인 특수학교의 장은 임기만료 후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부칙** <제16679호,2019. 12. 3.>(고등교육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4항제1호 중 " 제11조제2항 "을 " 제11조제3항 "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16874호,2020. 1.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겸직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유치원만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유치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유치원장의 직을 사직하여야 한다.

**부칙** <제17078호,2020. 3.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의 개정규정 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교원에 대한 부분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휴직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휴직하였거나 이 법 시행 당시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이사회의 이사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이후 이사를 선임할 당시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구성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경험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이사로 우선 선임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의 이사 구성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7493호,2020. 10. 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59호,2020. 12.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6조의6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9조의 개정규정 중 법률 제17078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가 적용되는 부분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하며, 법률 제17493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제74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사유의 시효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18372호,2021. 8. 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4항ㆍ제5항ㆍ제6항ㆍ제7항ㆍ제8항 및 제3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5조제4항ㆍ제5항ㆍ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본재산의 소송절차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외부회계감사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5항ㆍ제6항ㆍ제7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연속하는 4개 회계연도의 산정은 같은 개정규정이 최초로 적용되기 이전의 회계연도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제5조**(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해산되었으나 처분되지 아니한 학교법인의 재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8460호,2021. 9.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2제1항제4호, 제21조제7항, 제22조 및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8372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제70조의3제3항, 제70조의4, 제73조 및 제7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하며, 제29조제4항 및 제3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7항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임원을 선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계의결서 송부 및 징계의결의 재심의 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2항 및 제6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66조제1항에 따라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개전형 중 필기시험 위탁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53조의2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0항에 따라 교원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교원의 신규채용에 관하여는 제53조의2제1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임원의 당연퇴임에 관한 경과조치) 제22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임원으로 재임 중인 사람에 대하여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임기가 종료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기금운용심의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이후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을 위촉할 당시 제32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교원, 직원 또는 재학생인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구성은 제1항에 따라 제32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후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당시 제62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연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같은 개정규정의 요건을 충족할 때까지는 특정 성(性)의 위원 또는 외부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부칙** <제18990호,2022. 10. 18.>(교육공무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4제1항 중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를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및 「교육공무원법」 제52조제5호"로 한다.

제66조의6제1항 중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를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으로 한다.

**부칙** <제19066호,2022. 12. 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990호,2024. 1. 9.>(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3항제2호 중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을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으로 한다.

1& 부터3^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0350호,2024. 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립금 공시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의 적립금별 적립 규모 및 사용내역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666호,2025. 1.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사 후보자 추천 의견 청취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3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심의가 계속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20784호,2025. 3. 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011호,2025. 8. 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의5의 개정규정은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 사유의 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4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073호,2025. 11.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운용심의회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할 당시 제32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제32조의3제2항제2호의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구성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제32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사립학교법 시행령

[시행 2025. 12. 23.] [대통령령 제35922호, 2025. 12. 23., 일부개정]

교육부 (사립대학지원과) 044 - 203 - 6959
교육부 (학교정책과) 044 - 203 - 6702

**제1조(법인의 관할청과 학교의 관할청의 협조)** 「사립학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의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및 동조제3항제3호의 학교법인이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관할청의 허가 또는 인가등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항에 관련되는 사립학교의 관할청을 거쳐야 한다. <개정 1990. 7. 19., 1991. 2. 1., 1997. 8. 9., 2001. 1. 29., 2006. 6. 23., 2008. 2. 29., 2013. 3. 23.>

**제2조** 삭제 <2002. 3. 30.>

**제3조(수익사업의 공고방법)** 학교법인이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관한 공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전국을 보급대상으로 하는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해야 한다. <개정 2020. 11. 24.>
[전문개정 2006. 6. 23.]

**제3조의2(재산이전의 보고를 위한 서류 등)** ①학교법인은 법 제8조의2에 따라 등기한 날부터 3월 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재산출연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1. 재산목록
2. 출연증서
3. 인감증명
4. 금융기관의 증명서

②제1항의 서류를 제출받은 관할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학교법인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31., 2010. 5. 4.>
[본조신설 2006. 6. 23.]

**제4조(학교법인의 설립허가신청)**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설립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04. 3. 17., 2006. 6. 12., 2006. 6. 23., 2008. 12. 31., 2020. 3. 10., 2020. 9. 25.>
1. 설립취지서
2. 정관
3. 재산목록
4. 재산출연증서

5. 재산출연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6. 재산의 소유권증명(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 외의 것)
7. 재산의 평가조서
8. 재산의 수익조서
9. 임원의 이력서
10. 임원의 신원진술서
11. 임원의 취임승낙서
12. 임원의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13. 임원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법 제21조제2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각서
14.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설립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예산서 첨부)

②제1항제3호의 재산목록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야 한다.<개정 1976. 1. 16.>

③제1항제7호의 재산평가조서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이하 "감정평가서"라 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6. 11. 8., 1989. 8. 18., 1990. 7. 19., 2006. 6. 23., 2016. 8. 31., 2022. 1. 21.>

④제1항제8호의 재산수익조서에는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수익증명 또는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0. 7. 19.>

⑤ 제1항에 따른 설립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교육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31., 2010. 5. 4., 2013. 3. 23.>

**제4조의2(출연 또는 기부 재산의 기준액)** 법 제10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금액"이라 함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7조제1항,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7조제1항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의 10퍼센트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8. 6. 5.>

[본조신설 2006. 6. 23.]

**제5조(재산의 구분)** ①학교법인의 재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부동산
2. 정관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되는 재산
3.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4. 학교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중 적립금

②학교법인의 자산중 제1항 각호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개정 1976. 1. 16.>

**제6조(정관보충의 절차)** ①교육부장관이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의 보충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1. 2. 1., 2001. 1. 29., 2008. 2. 29., 2013. 3. 23.>
②제1항의 공고는 전국을 보급대상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3회 이상 게재하거나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개정 1976. 1. 16., 2022. 2. 11.>
③제1항의 공고에는 당해 정관의 보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일로부터 2월이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행정관청의 허가등을 요하는 사항의 등기)** 행정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등을 요하는 사항의 등기에 있어서는 당해 허가서 또는 인가서등의 등본을 그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의2(개방이사의 추천ㆍ선임 등)**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개방이사를 학교법인이 선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전 3개월) 안에 이사장이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에 따라 추천위원회가 개방이사를 추천하는 때에는 해당 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③ 추천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안에 이사장이 개방이사의 추천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추천을 할 수 있다.
④ 2 이상의 학교를 설치ㆍ경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협의하여 추천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⑤ 개방이사의 자격요건은 일반이사의 자격요건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방이사가 될 수 없다.<개정 2020. 9. 25.>
1. 해당 학교법인의 설립자
2. 해당 학교법인의 설립자와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3. 해당 학교법인의 임원(개방이사는 제외한다)이었던 사람
4.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장이었던 사람
⑥ 법 제14조제4항 단서에서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및 대학원 설치ㆍ경영 학교법인”이란 정관에서 그 설립목적과 해당 종교단체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는 학교법인으로서 해당 종교단체에서 종교의식의 집행, 신도의 교육, 선교 활동, 종교단체의 운영 등을 지도ㆍ담당하는 자의 양성만을 위하여 설립된 대학 및 대학원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을 말한다.
⑦ 교육부장관은 학교법인의 설립목적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교육과정 등을 확인하여 제6항에 따른 학교법인을 고시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⑧ 이 영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개방이사의 추천, 선임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1. 5.]

**제8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장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7일 전까지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소집 일자, 장소 등을 공지해야 한다. <신설 2022. 3. 22.>

②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승인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2., 2022. 3. 22.>

1.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이유와 이를 입증하는 서류
2.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3. 이사회를 소집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손해의 구체적인 사실을 명시한 서류

[제목개정 2022. 3. 22.]

**제8조의2(이사회 회의록의 비공개 대상)** ①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회의록에 기재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다만, 다음 각 목의 개인에 관한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사항
   나. 학교법인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사항
   다. 학교법인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라. 직무를 수행한 임ㆍ직원의 성명 및 직위
   마.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았거나 위촉받은 개인의 성명 및 직업
2. 그 밖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7호 및 제8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당해 학교법인과 직접 관련되어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

②학교법인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 6. 23.]

**제8조의3(회의록의 공개기간 등)** ①이사회의 회의록은 회의일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 동안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0. 9. 25.>

②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교직원ㆍ학생 및 학부모는 제1항의 공개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이사회 회의록 공개청구서를 작성ㆍ제출하여 회의록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③제2항에 따라 공개청구를 받은 학교법인은 10일 안에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공개를 청구한 사항이 공개대상과 비공개 대상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이를 분리하여 공개대상이 되는 부분만을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 6. 23.]

**제9조(감사의 보고)** 학교법인의 감사가 법 제19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결과를 관할청에 보고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사를 종결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90. 7. 19.>

**제9조의2(시정요구 없는 임원취임의 승인취소에 대한 세부기준)** ①법 제20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6. 5., 2020. 9. 25.>

1. 관할청이 시정을 요구하여도 요구기한 내에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임원이 학교법인 및 학교의 회계 등에서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7조제1항,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7조제1항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해당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의 10퍼센트 이상(고등학교 이하의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20퍼센트 이상)에 대하여 회계부정한 사실이 법원의 판결 또는 관할청의 감사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된 경우
3. 임원이 학교법인의 재산이나 업무와 관련하여 1천만원 이상 횡령ㆍ배임하거나 교직원 채용 및 시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법원의 판결 또는 관할청의 감사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된 경우

②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관할청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 6. 23.]

[종전 제9조의2는 제9조의3으로 이동 <2006. 6. 23.>]

**제9조의3(이사정수의 3분의 2미만을 외국인으로 할 수 있는 학교)**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라 함은 대학ㆍ산업대학ㆍ사이버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말한다. <개정 2006. 6. 23., 2008. 6. 5.>

[본조신설 1997. 12. 31.]

[제9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9조의3은 제9조의4로 이동 <2006. 6. 23.>]

**제9조의4(교육경험의 범위)** 법 제21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경험"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경험을 말한다.

1. 법 제54조의4 또는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험

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또는 다문화언어 강사로 근무한 경험
3.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로 근무한 경험

[본조신설 2020. 9. 25.]
[종전 제9조의4는 제9조의5로 이동 <2020. 9. 25.>]

**제9조의5(공인회계사를 감사로 선임하여야 하는 학교법인)** 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감사 중 1명을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선임하여야 하는 학교법인은 대학ㆍ산업대학ㆍ사이버대학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로서 그 입학정원이 500명이상인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 한다. <개정 1990. 7. 19., 1998. 11. 3., 2008. 6. 5., 2013. 7. 22.>

[전문개정 1986. 7. 9.]
[제목개정 2013. 7. 22.]
[제9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9조의5는 제9조의6으로 이동 <2020. 9. 25.>]

**제9조의6(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 11. 5.]
[제9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9조의6은 제9조의7로 이동 <2020. 9. 25.>]

**제9조의7(조정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따로 소집한다.

③ 조정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학교법인의 임직원,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교직원, 관할청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18. 6. 26.>

④ 조정위원회는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심의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이사 후보자 추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의견 제출ㆍ청취의 절차 및 방법은 조정위원회가 정한다.<신설 2018. 6. 26.>

1.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포함하여 구성하고, 조정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협의체. 이 경우 나목의 사람은 그 퇴직일이 가장 최근인 사람부터 순차적으로 포함하고, 협의체의 총인원수는 해당 학교법인 이사정수의 과반수로 하되, 가목의 사람만으로 인원수가 초과되거나 나목의 사람 중 마지막으로 구성원으로 포함될 사람들의 퇴직일이 동일하여 인원수가 초과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인원을 포함한 인원수를 협의체의 총인원수로 본다.
가. 해당 학교법인의 이사(임시이사는 제외한다)

나. 가목 외의 사람 중 해당 학교법인의 이사(임시이사는 제외한다)였던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로서 조정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구

가.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교직원 대표기구

나.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학생ㆍ학부모 대표기구

3. 추천위원회

4. 해당 학교법인(법 제14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으로 한정한다)을 설립한 종교단체

5. 관할청

6. 그 밖에 조정위원회가 인정하는 이해관계인

⑤ 삭제<2024. 10. 8.>

⑥ 조정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조정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 6. 26.>

[본조신설 2007. 11. 5.]

[제9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9조의7은 제9조의8로 이동 <2020. 9. 25.>]

**제9조의8(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조정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7. 4.]

[제9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9조의8은 제9조의9로 이동 <2020. 9. 25.>]

**제9조의9(위원의 해촉)** 대통령은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8. 6. 26., 2020. 9. 25.>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의8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6. 5. 10.]
[제9조의8에서 이동, 종전 제9조의9는 제9조의10으로 이동 <2020. 9. 25.>]

**제9조의10(사무기구)** ① 조정위원회에 조정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에 필요한 인원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 등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본조신설 2007. 11. 5.]
[제9조의9에서 이동, 종전 제9조의10은 제9조의11로 이동 <2020. 9. 25.>]

**제9조의11(운영규정)**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7. 11. 5.]
[제9조의10에서 이동, 종전 제9조의11은 제9조의12로 이동 <2020. 9. 25.>]

**제9조의12(심의기준)** ① 조정위원회는 학교법인과 학교 운영의 투명성ㆍ합리성을 실현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며, 안정적인 교육환경에 이바지하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체 심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기준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고, 조정위원회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6. 26.]
[제9조의11에서 이동 <2020. 9. 25.>]

**제10조(임시이사의 선임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관할청에 임시이사의 선임을 청구하려는 이해관계인은 청구사유와 이해관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1. 2. 1., 2001. 1. 29., 2008. 2. 29., 2013. 3. 23., 2022. 2. 11.>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 중 재정이 열악한 학교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2. 2. 11.>
1. 학교법인이 교직원 인사 등 이사회 운영 관련 분쟁의 소송상대방이 된 경우에 발생하는 소송비용
2. 학교법인이 임원 등의 회계 부정, 횡령 등으로 발생한 학교 운영의 중대한 장애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발생하는 소송비용

3. 학교법인이 다음 각 목의 소송의 보조 참가인이 된 경우에 발생하는 소송비용
   가. 법 제20조의2에 따른 임원 취임의 승인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나.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임시이사 선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제목개정 2022. 2. 11.]

**제10조의2(생계곤란자의 기준)** 법 제26조제2항에 규정된 재산을 출연 또는 기증한 자 중 생계가 곤란한 자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개인적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자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할 능력이 없는 자
2. 학교법인의 이사로 되어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다가 그 직을 사임한 자

[본조신설 1979. 2. 24.]

**제10조의3(생계비등의 범위)** 법 제26조제2항에 규정된 생계비ㆍ의료비 및 장례비의 범위는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자와 그 배우자 및 18세미만의 자녀에 대한 것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개정 1986. 7. 9., 2018. 6. 5.>

1. 월 생계비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장의 최고 호봉 또는 호급에 해당하는 봉급월액의 70퍼센트.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연금ㆍ퇴직연금일시금ㆍ퇴직일시금 또는 퇴직금을 받거나 기타의 수입이 있는 자의 월 생계비의 한도액은 그 수입을 참작하여 당해 학교법인이 정한다.
2. 의료비
   의료시설 입원치료비
3. 장례비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장의 최고 호봉 또는 호급에 해당하는 봉급월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본조신설 1979. 2. 24.]

**제10조의4** 삭제 <1983. 12. 30.>

**제10조의5(생계비등의 지급)** 학교법인은 법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계비ㆍ의료비 또는 장례비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1986. 7. 9.]

**제10조의6(대학평의원회의 구성)** ①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는 교원ㆍ직원ㆍ조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평의원회의 구성단위 중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 9. 25.>

②평의원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2. 2. 11.>

③ 평의원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학생이 아닌 평의원 중에서 호선한다.<신설 2022. 2. 11.>

④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학생인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신설 2022. 2. 11.>

⑤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평의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22. 2. 11.>

[본조신설 2006. 6. 23.]

[제목개정 2020. 9. 25.]

**제10조의7** 삭제 <2007. 11. 5.>

**제11조(기본재산의 처분)** ①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ㆍ증여 또는 교환에 관한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0. 7. 19., 1997. 8. 9., 2006. 6. 23., 2014. 6. 30., 2016. 8. 31., 2022. 1. 21.>

1. 처분재산명세서
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교환의 경우에는 쌍방의 재산)
3. 이사회회의록사본
4. 교환재산 또는 처분대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교환 또는 매도의 경우에 한한다)
5. 제1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삭제<1990. 7. 19.>

③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담보제공에 관한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는 다음의 서류와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7. 8. 9.>

1. 담보에 제공할 재산목록
2. 피담보액
3. 담보처
4. 상환방법 및 상환계획
5. 이사회회의록 사본

④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용도변경,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등에 관한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개정 1997. 8. 9., 2021. 1. 5.>

⑤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할 목적으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분할하거나 법ㆍ이 영 또는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7. 8. 9., 1998. 11. 3., 2002. 3. 30., 2002. 12. 30., 2006. 6. 23., 2008. 6. 5., 2023. 6. 13., 2024. 8. 20.>

1.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7조제1항 및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한 대학ㆍ산업대학ㆍ사이버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수익증대를 목적으로 다른 수익용기본재산으로 대체취득하기 위하여 수익용기본재산을 매도 또는 교환하는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손실보상금을 당해 기본재산의 용도와 동일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기본재산의 매도ㆍ증여ㆍ교환ㆍ용도변경 또는 담보의 제공가액이 5천만원 미만(대학ㆍ산업대학ㆍ사이버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경우는 20억원 미만)인 경우
4. 대학ㆍ산업대학ㆍ사이버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ㆍ부속병원회계 및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일반업무회계(이하 이 항에서 "교비회계등"이라 한다)의 회계별로 기본금(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순자산으로서 법인 및 학교에 계속적으로 투입ㆍ운용되는 기본적자산의 가액을 말한다)에 대한 총 차입금(차입하고자 하는 차입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비율(이하 이 항에서 "차입비율"이라 한다)이 각각 30퍼센트 미만인 범위에서 금융기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을 말한다)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5. 대학ㆍ산업대학ㆍ사이버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7조에 따른 사학진흥기금에서 융자받는 경우
6. 수익용기본재산에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
7.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가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대학ㆍ산업대학ㆍ사이버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가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이 경우 의무의 부담가액은 해당 부담가액을 포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1) 교비회계등의 의무의 부담가액 총 합계액이 200억원 미만인 경우
      2) 교비회계등의 회계별 차입비율이 각각 30퍼센트 미만인 경우
   나. 가목 외의 학교법인: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가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⑥ 관할청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매도ㆍ증여ㆍ교환, 담보제공, 용도변경,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허가ㆍ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8. 3. 13.>

**제12조(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등)** ①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재산은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1. 2. 1., 1993. 2. 23.,

1998. 11. 3., 2002. 3. 30., 2014. 6. 30.>

1. 교지
2. 교사(강당을 포함한다)
3. 체육장(실내체육장을 포함한다)
4. 실습 또는 연구시설
5. 기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ㆍ설비 및 교재ㆍ교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3. 6. 13.>

1.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한 후 학교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이전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재산
2.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한 후 학교 간 통폐합(본교와 분교 간 통폐합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로서 통폐합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재산
3. 교육ㆍ연구의 경쟁력 강화 및 특성화를 위하여 학교법인 간에 교환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재산
4. 법 제29조제6항제2호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재산
5. 그 밖에 학생 수의 감소 등 교육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해도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재산

③ 관할청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의 매도 또는 담보의 제공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명도일 또는 담보로 제공되는 부동산과 관련된 채무의 변제일을 「유아교육법」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3항,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또는 「고등교육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학교위치 변경인가일 후로 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하여야 한다.<신설 2014. 6. 30.>

[제목개정 2014. 6. 30.]

**제12조의2(기본재산 소송에 관한 신고)** ①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기본재산에 관한 소송절차의 개시 사실을 신고하려는 학교법인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날 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청에 신고해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ㆍ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2.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대리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청구취지 및 이유
4. 사건의 표시
5. 관할 법원

②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기본재산에 관한 소송절차의 완결 사실을 신고하려는 학교법인은 해당 심급의 종국판결 선고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관할청에 신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2. 11.]

**제13조(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 ①교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2. 7. 24., 2019. 7. 2.>

1. 법령 또는 학칙에 의하여 학교가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입학금ㆍ수업료 및 입학수험료
2. 학사관계 각종 증명 수수료
3. 학교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
4. 다른 회계로부터 전입되는 전입금
5. 학생의 실험실습에서 생기는 생산품등의 판매대금
6. 교비회계의 운용과정에서 생기는 이자수입
7. 교육용 기자재등의 불용품 매각수입
8. 교비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

8의2. 학교가 학교교육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기부금

9. 기타 학교법인의 수입으로서 다른 회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입

②교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로 한다.

1.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2.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위한 경비
3.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
4. 제1항제8호의 차입금의 상환원리금
5.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③부속병원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1. 진료수입
2. 일반업무회계로부터 전입되는 전입금
3. 부속병원회계의 운용과정에서 생기는 이자수입
4. 부속병원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
5. 기타 부속병원운영에 따른 제수입

④부속병원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로 한다.

1. 부속병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2. 부속병원관리ㆍ운영과 진료에 필요한 물건비
3. 부속병원에 직접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위한 경비
4. 교비회계 또는 일반업무회계로의 전출금
5. 제3항제4호의 차입금의 상환원리금
6. 기타 부속병원운영에 필요한 경비

[전문개정 1981. 5. 21.]

**제13조의2(교육용 기본재산의 무상 귀속)** ① 학교법인이 법 제29조제6항제2호에 따라 교육용 기본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

족해야 한다. <개정 2021. 6. 22.>

1. 귀속하려는 교육용 기본재산을 제외하고 남은 교육용 기본재산이 다음 각 목에 따른 교지ㆍ교사 및 설비의 확보 기준을 충족할 것
   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나. 「특수학교시설ㆍ설비 기준령」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다.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기준
   라.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기준
   마.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5조에 따른 기준
   바. 「기술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8조에 따른 기준
2. 교육용 기본재산 중 교육ㆍ연구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을 무상으로 귀속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재산을 무상으로 귀속하여도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ㆍ연구에 지장이 없을 것
   가. 무상으로 귀속한 이후에도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가 교육ㆍ연구 목적으로 해당 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나. 해당 재산을 무상으로 귀속하여도 그 재산을 대체하여 교육ㆍ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존의 다른 재산이 있거나 재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경우
   다. 향후 해당 재산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

② 학교법인이 법 제29조제6항제2호에 따라 교육용 기본재산을 연구기관에 귀속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에 귀속할 것
   가. 국공립연구기관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라.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연구기관
2.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충족할 것

[본조신설 2014. 6. 30.]

**제14조(예산과 결산의 보고 및 공시)** ①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예산 및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함에 있어서는 예산의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이전에, 결산의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86. 7. 9., 1990. 7. 19., 1998. 11. 3., 2006. 6. 23.>

② 학교법인은 회계연도 중에 예산을 추가하거나 경정(更正)할 때에는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절차를 통하여 예산이 확정된 날(유치원의 경우에는 편성된 날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예산을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7. 22.>

③ 삭제<2013. 7. 22.>

④학교법인은 학교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서(「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및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른 부속명세서를 포함한다)를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당해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06. 6. 23.>

⑤학교법인은 학교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결산서(「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및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른 부속명세서와 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안에 당해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06. 6. 23.>

[제목개정 2006. 6. 23.]

**제14조의2(지정외부감사대상 학교법인 및 지정외부감사인)** ① 법 제3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학교법인 중에서 법 제3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보고서 및 부속서류를 첨부해야 하는 학교법인을 선정해야 한다.

1. 선정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 2월 말일 현재 합산재무상태표[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대학교육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회계를 모두 합한 것으로 한다)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일반업무회계를 하나의 회계단위로 작성한 표를 말한다]의 총자산가액이 1천억원 이상인 학교법인
2. 선정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 4월 1일 현재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대학교육기관의 총재학생 수(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대학교육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대학교육기관의 재학생 수를 모두 합한 것으로 한다)가 2천명 이상인 학교법인
3. 그 밖에 법 제31조제4항 후단에 따른 외부감사인을 부당하게 교체하는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학교법인

② 교육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2월 15일(이하 이 조에서 "선정기준일"이라 한다)까지 제1항에 따른 선정을 마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학교법인(이하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이라 한다)에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을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으로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1. 선정기준일을 기준으로 4년 이내에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감리 결과 법 제28조제1항 또는 제2항이나 제29조제6항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은 학교법인
2. 그 밖에 대학교육기관의 종류와 경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으로 선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학교법인

④ 교육부장관은 외부감사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에서 신청을 받아 법 제31조제5항제2호에 따른 외부감사인을 지정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선정기준일 3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청서류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교육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선정기준일까지 제4항에 따른 지정을 마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 및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외부감사인(이하 “지정외부감사인”이라 한다)에게 각각 통지해야 한다.
⑦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외부감사인으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1. 감사보고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자
2. 특별한 사유 없이 제10항(제1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간 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3. 제14조의3제3항제1호의 회계감사기준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회계기준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되어 금융위원회에 통보된 자
4. 지정외부감사인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자
5. 그 밖에 외부감사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감사대상자에게 부당한 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경우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
⑧ 교육부장관은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으로 선정하려는 학교법인과 지정외부감사인으로 지정하려는 외부감사인에게 선정기준일 4주 전까지 그 선정 또는 지정 예정 사실을 각각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이나 지정외부감사인을 신속하게 선정하거나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⑨ 제8항에 따른 선정 또는 지정 예정 사실을 통지받은 학교법인이나 외부감사인은 통지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은 그 의견에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⑩ 제7항에 따른 지정외부감사인 지정 통지를 받은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은 선정기준일부터 2주 이내에 지정외부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외부감사인을 다시 지정해 줄 것을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지정외부감사인이 「공인회계사법」 제33조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당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의 외부감사인이 될 수 없는 경우
2. 지정외부감사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선정기준일부터 2주 이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⑪ 교육부장관은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지정외부감사인 재지정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정외부감사인을 다시 지정할 수 있다.
⑫ 교육부장관은 제11항에 따라 지정외부감사인을 다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과 새로 지정된 지정외부감사인에게 각각 통지해야 한다.

⑬ 제11항에 따라 지정외부감사인을 다시 지정한 경우의 감사계약 체결 등에 관하여는 제10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정기준일”을 “통지일”로, “2주 이내”를 “4주 이내”로 본다.
⑭ 제10항(제1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감사계약을 체결한 학교법인은 감사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감사계약서 사본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⑮ 교육부장관은 법 제31조제7항에 따라 외부감사인 지정에 관한 업무를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이하 “한국사학진흥재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16> 제1항부터 제1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의 선정 절차, 지정외부감사인의 지정 절차나 그 밖에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의 선정 또는 지정외부감사인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2. 8. 9.]
[종전 제14조의2는 제14조의3으로 이동 <2022. 8. 9.>]

**제14조의3(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①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법 제31조제4항 후단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외부감사보고서 및 부속서류(이하 “외부감사보고서등”이라 한다)에 대한 감리를 실시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5. 28., 2022. 8. 9.>
1.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학교법인이 제출한 결산서에 대하여 법 제33조에 따른 회계규칙을 준수하였는지를 심사한 결과 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계량적 분석 또는 무작위 표본 추출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3. 국가기관으로부터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회계관련 법령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② 교육부장관은 감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감사보고서등을 제출한 외부감사인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및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 5. 28., 2022. 8. 9.>
③ 교육부장관은 감리 결과 외부감사보고서등을 제출한 외부감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감사인의 명단과 해당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개정 2018. 5. 28., 2018. 10. 30., 2022. 8. 9.>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
2. 학교법인의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고시로 정하는 기준

④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금융위원회는 그 외부감사인에 대하여 「공인회계사법」 제39조제1항 또는 제48조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업무정지 또는 징계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2. 8. 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리의 범위·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3. 7. 22.]

[제1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4조의3은 제14조의4로 이동 <2022. 8. 9.>]

**제14조의4(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업무의 위탁)** 교육부장관은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30., 2020. 9. 25.>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회계법인
2. 한국사학진흥재단

[본조신설 2018. 5. 28.]

[제14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4조의4는 제14조의5로 이동 <2022. 8. 9.>]

**제14조의5(특수한 관계에 있는 법인의 범위)** 법 제32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4. 8. 2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법인
   가. 해당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임원이거나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해당 대학교육기관의 장이거나 해당 대학교육기관의 장에서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제4조의2에 따른 출연 재산의 기준액 이상을 해당 대학교육기관 또는 해당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 출연한 사람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통하여 법 제32조의2에 따른 적립금의 운영방침을 결정하거나 해당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을 행사하는 등 대학교육기관 또는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운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인

[본조신설 2018. 5. 28.]

[제14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14조의5는 제14조의6으로 이동 <2022. 8. 9.>]

**제14조의6(적립금별 적립 규모 및 사용내역의 공시)** ①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법 제32조의2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의 연구적립금·건축적립금·장학적립금·퇴직적립금 및 특정목적적립금별로 적립 규모와 사용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시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대학교육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년간 게재하는 방식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 8. 20.]

[종전 제14조의6은 제14조의8로 이동 <2024. 8. 20.>]

**제14조의7(적립금 현황 및 사용내역에 대한 실태점검)** ① 법 제32조의2제7항에 따른 대학교육기관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적립금 현황 및 사용내역에 대한 실태점검(이하 이 조에서 "실태점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32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등록금회계로부터의 적립 현황
2. 법 제32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등록금회계에서 비등록금회계로 전출된 적립금 상당액을 제외한 적립금의 법인에 대한 투자 현황
3.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대학교육기관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적립금 현황 및 사용내역의 파악을 위하여 실태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점검은 매년 실시한다.

③ 실태점검은 서면점검, 현장점검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효율적인 실태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및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실태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교육기관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및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8. 20.]

[종전 제14조의7은 제14조의9로 이동 <2024. 8. 20.>]

**제14조의8(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이하 "기금운용심의회"라 한다)는 대학교육기관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② 대학교육기관에 두는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은 대학교육기관의 장으로 하고,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두는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은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 한다.

③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은 교원, 직원, 학생, 외부 전문가,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법 제32조의3제2항제2호의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2. 3. 22., 2022. 8. 9.>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서 자산운용 또는 위험관리ㆍ평가 분야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기관에서 재정 또는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나. 「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에 따른 정부기업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경제, 경영 또는 금융 관련 학문 분야를 연구하거나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경제, 경영 또는 금융 관련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5.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6. 그 밖에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등 이상의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8. 5. 28.]

[제14조의6에서 이동 <2024. 8. 20.>]

**제14조의9(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매 회계연도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운용의 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에 관한 지침의 제정 및 개정
3. 그 밖에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이 기금의 관리ㆍ운용과 관련하여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금운용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8. 5. 28.]

[제14조의7에서 이동 <2024. 8. 20.>]

**제15조(학교법인의 해산인가 신청)** ①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해산인가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13.>

1. 이사회회의록 사본
2. 재산목록
3. 남은 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해산인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8. 3. 13.>

**제15조의2(해산인가신청서의 작성등)** ①법 제3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해산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4. 4. 6.>

1. 해산사유
2. 재학생처리계획

3. 교직원처리계획
4. 이사회회의록 사본
5. 법 제35조의2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해산장려금의 지급 또는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의 매입 신청

②법 제3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4. 4. 6.>

1. 재산목록 및 조성경위
2. 재산감정평가내역
3. 잔여재산귀속예정자 및 귀속사유
4. 기본재산중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 내역(법 제35조의2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매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공익법인의 정관(법 제35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으로 잔여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 한한다)

[본조신설 1997. 12. 31.]

**제15조의3(사학정비심사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35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학정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4. 4. 6.>

②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교육감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6. 6. 23., 2025. 9. 16.>

1. 교육감소속 4급 또는 4급상당 공무원중 5인이내
2.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자 또는 법률학·회계학·감정평가 관련 학과목을 담당하는 부교수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중 5인이내
3.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관할구역안에 소재한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을 대표하는 자로 구성된 단체에서 추천한 인사 5인이내

③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법 제35조의2의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1997. 12. 31.]

**제15조의4(사학정비심사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등)**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04. 4. 6.>

1. 학교법인의 해산의 타당성 여부
2. 잔여재산처분계획의 적정성 여부
3. 법 제3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의 타당성 여부
4. 기타 학교법인의 해산·잔여재산의 처분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⑤위원회의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⑥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⑦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⑧위원회의 위원장ㆍ위원 기타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제15조의3 및 제15조의4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1997. 12. 31.]

**제16조(합병인가신청)** ①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합병인가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1998. 11. 3., 2018. 6. 5., 2022. 8. 9.>
1. 합병이유서
2.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동의를 입증하는 각 학교법인의 이사회회의록 사본
3. 법 제39조에 따라 각 학교법인이 선임한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4. 합병약정서
5. 합병 후 존속하는 학교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학교법인의 정관
6. 삭제<1998. 11. 3.>
7. 합병 전의 각 학교법인의 재산목록 및 재무상태표
8. 재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9. 합병 후 존속하는 학교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학교법인에 대한 제4조제1항제9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합병 후 존속하는 학교법인의 임원으로서 계속 재임되는 임원의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합병인가 신청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제3호"는 "제1항제7호"로, "설립허가신청서"는 "합병인가신청서"로 본다.<개정 2022. 8. 9.>
③ 교육부장관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합병인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신설 2018. 3. 13., 2022. 8. 9.>

**제17조(국가의 지원대상)** ①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사립학교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행하는 보조 또는 지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에 대하여 행한다. <개정 1990. 7. 19.>

1. 실업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2. 국가가 필요로 하는 특수한 학과 또는 학교를 설치 ㆍ경영하는 학교법인
3.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학교경영에 재정적 곤란을 받는 학교법인
4. 특수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5. 기타 특히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법인

②제1항의 보조 또는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76. 1. 16., 1990. 7. 19., 1991. 2. 1., 2001. 1. 29., 2008. 2. 29., 2013. 3. 23.>

**제18조(해산된 학교법인 등에 대한 기록물 관리)** ① 법 제4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학적부, 조직ㆍ회계ㆍ예산 관련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관 중인 기록물"이란 다음 각 호의 기록물을 말한다.

1. 학적부
2. 조직ㆍ회계ㆍ예산 관련 자료
3.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ㆍ도서ㆍ대장ㆍ카드ㆍ도면ㆍ시청각물ㆍ전자문서 등의 각종 기록물 중에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물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록물의 세부 범위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48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는 해당 학교법인의 해산인가ㆍ해산명령이나 학교의 폐지인가ㆍ폐쇄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기록물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한국사학진흥재단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기록물을 지체 없이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이관해야 한다.

⑤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제4항에 따라 이관된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내부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이 경우 내부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록물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기록물의 분류에 관한 사항
3. 기록물의 보존 기간 및 보존 방법에 관한 사항
4. 기록물의 공개, 열람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기록물의 폐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기록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0. 9. 25.]

**제19조(학교법인으로의 조직변경을 위한 인가신청)** ①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이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기 위한 인가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조직변경이유서
2. 정관(신ㆍ구)
3. 이사회회의록 사본
4. 제4조제1항제3호 내지 제14호의 서류(이 경우에 제14호중 “설립후”는 “조직 변경후”로 한다)

②제4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개정 1976. 1. 16.>

**제20조(조직변경으로 인한 학교법인의 설립등기)**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이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변경하여 학교법인으로 되는 경우의 그 학교법인의 설립등기에 관하여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에 법 제8조중 “설립허가”를 “조직변경의 인가”로 한다.

**제21조(교사의 신규채용)** ①법 제53조의2제10항에 따른 공개전형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임용권자가 실시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교육감에게 그 전형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 8. 2., 2018. 5. 28.>

②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3을 준용한다.<개정 2016. 8. 2., 2021. 6. 22.>

③임용권자는 교원을 신규로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지원마감일 30일 전까지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그 밖의 정보통신 매체를 통하여 채용분야ㆍ채용인원 및 지원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8. 2.>

④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은 필기시험ㆍ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등의 방법으로 하며, 그 밖에 공개전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권자가 정한다.<개정 2016. 8. 2.>

⑤임용권자는 공개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전형결과 등의 공개를 요구할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형결과 등의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6. 8. 2., 2022. 2. 11.>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3조의2제11항 본문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원의 임용권자가 필기시험을 시ㆍ도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필기시험의 시기, 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시ㆍ도 교육감과 협의하여 정해야 한다.<신설 2022. 3. 22.>

⑦ 법 제53조의2제11항 단서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원의 임용권자는 공개전형을 실시할 때 채용과목의 특성, 평가 방법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필기시험을 다른 방법의 시험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공개전형에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신설 2022. 3. 22.>

⑧ 법 제53조의2제11항 단서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필기시험의 실시

를 시ㆍ도 교육감에게 위탁하지 않을 수 있다.<신설 2022. 3. 22.>

1.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교원의 인건비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법 제35조제5항 또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경우
2.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에 따른 공개전형의 필기시험에 포함되지 않는 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채용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6. 6. 23.]

**제22조** 삭제 <1990. 7. 19.>

**제22조의2** 삭제 <1981. 5. 21.>

**제22조의3(학력평가)** ①시ㆍ도의 교육감은 관할구역내에 소재하는 사립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교사 임용권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사립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교사에 임용될 것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 학력평가를 행하고, 그 학력평가 사항을 기재한 명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1986. 7. 9., 1990. 7. 19., 2006. 6. 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력평가의 범위ㆍ방법ㆍ절차와 명부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90. 7. 19.>

[본조신설 1976. 11. 8.]

**제23조(교원의 임용 보고)**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교원의 임용 보고를 할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른다. 다만,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8. 2., 2025. 9. 16.>

[전문개정 2009. 1. 28.]

[제목개정 2016. 8. 2.]

**제24조(관할청의 교원의 해직 또는 징계의 요구)** 사립학교의 관할청이 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학교교원의 해직 또는 징계를 요구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0. 7. 19.>

1. 해직 또는 징계요구의 대상자 및 그 인적사항
2. 해직 또는 징계의 구별(징계의 경우에는 그 종류)
3. 해직 또는 징계요구의 사유

**제24조의2(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통보 등)** ① 법 제62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법 제61조의2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2. 2. 11.>

② 감사ㆍ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은 법 제6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의원면직의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확인 결과를 해당 학교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2. 2. 11.>

[본조신설 2016. 8. 2.]
[종전 제24조의2는 제24조의3으로 이동 <2016. 8. 2.>]

**제24조의3(겸직 허가의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5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이란 해당 대학의 부속병원이 아닌 병원 중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제2항제3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을 말한다.
②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겸직 허가의 기준은 임상교육과정, 겸직 허가 대상 교원의 전공 및 진료과목,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병원(이하 “협력병원”이라 한다)의 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학의 장이 정한다. 이 경우 소속 교원 중 겸직을 허가할 수 있는 교원의 수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수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28.>
③ 대학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겸직 허가의 기준을 정할 때에는 미리 협력병원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대학의 장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겸직 허가를 할 때에는 법 제53조의4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구체적인 심의 기준 및 절차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 8. 2.>
[본조신설 2012. 7. 24.]
[제2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4조의3은 제24조의4로 이동 <2016. 8. 2.>]

**제24조의4(겸직교원의 직무와 보수)** ①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협력병원에 겸직하는 교원(이하 “겸직교원”이라 한다)은 협력병원의 정관과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병원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협력병원의 장은 겸직교원이 제1항을 위반하거나 법 제6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력병원의 정관 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절차를 거쳐 대학의 장에게 겸직해제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겸직교원의 보수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 소속기관인 대학에서 지급한다.
④ 협력병원은 겸직교원에 대하여 협력병원의 정관 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7. 24.]
[제24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24조의4는 제24조의6으로 이동 <2016. 8. 2.>]

**제24조의5(사립학교 교원의 파견근무)** ① 사립학교(「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24조의6 및 제24조의7에서 같다)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5조의5에 따라 소속 교원을 파견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교육ㆍ연구, 학술 진흥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다.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5항에 따른 교육연구기관
라. 「교육공무원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연수기관
2.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사립학교 교원의 연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소속 교원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국내외 교육기관ㆍ연구기관에 파견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 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교육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의 파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파견기간: 3년 이내.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제1항제2호에 따른 파견기간: 그 연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간
3. 제1항제3호에 따른 파견기간: 1년 6개월 이내.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소속 교원을 파견하는 경우에는 미리 파견받을 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

④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소속 교원을 파견하거나 그 파견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5. 9. 16.]

[종전 제24조의5는 제24조의8로 이동 <2025. 9. 16.>]

**제24조의6(교육공무원의 파견근무)** ①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법 제55조의5에 따라 교육공무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파견받을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통하여 교육활동의 교류와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교육공무원을 해당 사립학교에 파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법 제55조의5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거나 그 파견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교육공무원 파견의 발령권자 및 교육공무원의 파견으로 인한 결원보충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제4항 본문 및 제7조의4제1항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 9. 16.]

[종전 제24조의6은 제24조의9로 이동 <2025. 9. 16.>]

**제24조의7(파견근무 중 복무 등)** ① 법 제55조의5제1항에 따라 파견된 사립학교 교원이나 교육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임용권자 소속 교원이나 교육공무원을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견된 사립학교 교원이나 교육공무원을 원래의 소속 기관으로 복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파견된 사립학교 교원이나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

1. 파견 사유가 없어진 경우
2. 파견 목적이 달성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3. 파견받은 사립학교 교원이나 교육공무원이 파견 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본조신설 2025. 9. 16.]

[종전 제24조의7은 제24조의10으로 이동 <2025. 9. 16.>]

**제24조의8(직위해제 대상 비위행위)** 법 제58조의2제1항제4호에서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하는 행위
   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나. 법 제29조(법 제5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
   다. 법 제32조의2에 따른 적립금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5.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본조신설 2016. 8. 2.]

[제24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24조의8은 제24조의11로 이동 <2025. 9. 16.>]

**제24조의9(육아 등의 사유로 휴직하는 교원의 신분 및 처우)** 법 제59조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에 따른 사유로 휴직하는 교원의 신분 및 처우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11조제1항제1호나목,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제6호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 등 국립ㆍ공립 학교의 교원이 해당 사유로 휴직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 9. 25.]

[제24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24조의9는 제24조의12로 이동 <2025. 9. 16.>]

**제24조의10(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등)** ①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이하 "교원징계위원회"라 한다)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별로 설치하되, 법 제53조의2제2항에 따라 교원의 임용권이 학교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해당 학교에 따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 8. 2., 2022. 3. 22.>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 수는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학교의 규모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정해야 한다.<신설 2022. 3. 22.>

1. 학생 수가 200명 미만인 학교: 5명 이상 9명 이하
2. 학생 수가 200명 이상인 학교: 9명 이상 11명 이하

[전문개정 1990. 7. 19.]

[제목개정 2022. 3. 22.]

[제24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24조의10은 제24조의13으로 이동 <2025. 9. 16.>]

**제24조의11(징계위원회의 위원장)** ①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1990. 7. 19.>

②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9. 7. 2.>

③위원장은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1981. 5. 21.]

[제24조의8에서 이동, 종전 제24조의11은 제24조의14로 이동 <2025. 9. 16.>]

**제24조의12(징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징계심의위원회(이하 "징계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징계의결의 기한 및 징계심의위원회 위원의 기피 등에 관하여는 제24조의11, 제24조의13 및 제24조의14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5. 9. 16.>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징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징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2. 3. 22.]

[제24조의9에서 이동 <2025. 9. 16.>]

**제24조의13(징계의결의 기한)**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법 제64조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받거나 법 제66조의2제3항에 따라 징계의결 재심의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등 성(性) 관련 비위만을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9. 3. 19., 2022. 3. 22.>

② 법 제64조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되거나 법 제66조의2제3항에 따라 징계의결의 재심의가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 절차의 진행이 법 제66조의3에 따라 중지된 경우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신설 2019. 3. 19., 2022. 3. 22.>

[본조신설 1981. 5. 21.]

[제24조의10에서 이동 <2025. 9. 16.>]

**제24조의14(위원의 기피 등)** ①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법 제63조에 따른 제척 또는 제1항에 따른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수의 3분의 2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 또는 위촉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6. 8. 2.>

[본조신설 1990. 7. 19.]

[제목개정 2016. 8. 2.]

[제24조의11에서 이동 <2025. 9. 16.>]

**제25조(교원의 징계의결의 요구 등)**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가 법 제64조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법 제66조의2제3항에 따라 징계의결 재심의를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서 또는 징계의결 재심의 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 6. 22., 2022. 3. 22., 2025. 12. 23.>

1. 징계혐의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서류
2. 징계의 종류와 양을 기재한 서류
3. 징계사유서와 징계요구자의 의견서
4. 징계혐의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서류
5. 징계혐의자의 이력서
6. 근무성적표
7. 징계 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등 관련 전문가가 작성한 별지 서식의 전문가 의견서. 다만, 본문에 따른 징계 사유와 관련하여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공소장, 혐의자ㆍ관련자ㆍ관련증인에 대한 신문조서 및 진술서 등 수사기록이 통보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목개정 2022. 3. 22.]

**제25조의2(징계기준)**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할 때에는 법 제6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정도, 징계의결이 요구된 교원의 근무태도, 근무성적,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징계요구의 내용, 과실의 경중(輕重),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그 의결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비위행위자뿐만 아니라 해당 각 호에서 정한 사람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1. 의결 대상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비위 사건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및 그 비위행위의 제안ㆍ주선자
2. 의결 대상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 비위 사건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로 인한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의결하지 않을 수 있다.

1. 업무처리 절차ㆍ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제25조의4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교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9. 10. 8.]

**제25조의3(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 같은 사건에 관련된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해서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징계를 의결해야 한다. 이 경우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세부적인 문책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위행위자 또는 감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해당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했거나 이를 적법ㆍ타당하게 조치한 경우
2.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3. 행위 당시의 여건, 그 밖에 사회통념상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감독자가 철저하게 감독했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9. 10. 8.]

**제25조의4(징계의 감경기준)**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법 제64조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되거나 법 제66조의2제3항에 따라 징계의결 재심의가 요구된 교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교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기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 3. 22.>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교사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상 또는 교육감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개정 2022. 2. 11., 2025. 12. 23.>

1. 법 제66조의4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시효가 5년인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2. 시험문제를 유출하거나 학생의 성적을 조작하는 등 학생 성적과 관련한 비위 및 학교생활기록부 허위사실 기재 또는 부당 정정(訂正) 등 학교생활기록부와 관련한 비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3.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성 관련 비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의 경우
5. 학생에게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 폭력 행위를 하여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6. 신규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와 관련된 비위인 경우
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은 경우
8. 소속 기관 내의 제3호에 따른 성 관련 비위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아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9. 제3호에 따른 성 관련 비위의 피해자에게 2차 피해(피해자 신상정보의 유출, 피해자 권리구제의 방해, 피해자에 대한 폭행ㆍ폭언, 그 밖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일체의 불리한 처우를 말한다)를 입혀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10. 「공직선거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11.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③ 교원징계위원회는 법 제64조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되거나 법 제66조의2제3항에 따라 징계의결 재심의가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생긴 것으로 인정되거나, 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정을 고려하여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22. 3. 22.>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징계 감경의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0. 8.]

**제26조(징계의결서의 작성요령)** 법 제66조제2항 또는 제66조의2제4항에 따른 징계의결서의 이유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적용법령을 명시해야 한다. <개정 2019. 10. 8., 2022. 3. 22.>

**제27조(보직 등 관리의 원칙)** ① 법 제66조의6제1항에서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 12. 23.>

② 법 제66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개정 2022. 2. 11.>

1. 파면ㆍ해임: 10년
2. 강등: 9년
3. 정직: 7년
4. 감봉ㆍ견책: 5년

[본조신설 2021. 6. 22.]

**제27조의2(사무직원의 신규채용)** ① 법 제70조의3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은 법 제70조의2제2항에 따른 사무직원의 임용권자(이하 이 조에서 “사무직원임용권자”라 한다)가 실시한다.

② 사무직원임용권자는 시ㆍ도 교육감에게 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법 제70조의3제3항에 따라 사무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에 응시할 수 없다. 이 경우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공개전형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④ 사무직원임용권자가 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채용분야ㆍ채용인원 및 지원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 마감일 20일 전까지 시ㆍ도 교육청 및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은 필기시험, 실기시험, 면접시험 및 서류전형 등 채용하려는 직무분야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⑥ 사무직원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전형결과 등의 공개를 요구할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전형결과 등의 공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무직원 공개전형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직원임용권자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2. 2. 11.]

**제28조(권한의 위임)** 교육부장관은 법 제71조에 따라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 7. 5., 2013. 3. 23.>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설립허가
2.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해산인가
3.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합병인가
4.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정관변경 보고의 접수

4의2.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

5.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해산명령

6. 법 제47조의2에 따른 청문(제5호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한정한다)

[전문개정 2011. 6. 9.]

**제28조의2(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대상)** 법 제72조의5제2항제3호에 따라 사립학교경영자, 학교법인의 임직원 및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이하 "사학기관종사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자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다만, 사학기관종사자가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단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1. 사학기관종사자 자신이 법 제72조의5제2항제1호 각 목의 직무관련자(이하 "직무관련자"라 한다)인 경우
2. 사학기관종사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사학기관종사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사학기관종사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사학기관종사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사학기관종사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7. 그 밖에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본조신설 2022. 3. 22.]

[종전 제28조의2는 제28조의3으로 이동 <2022. 3. 22.>]

**제28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교육부장관, 교육감 및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 8. 2., 2020. 3. 10.>

1. 법 제54조에 따른 임용에 관한 보고 및 해임 등의 요구에 관한 사무
2. 법 제54조의3에 따른 임명의 제한에 관한 사무
3. 법 제64조에 따른 징계의결의 요구에 관한 사무

② 교육부장관, 교육감 및 이사회는 법 제22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신설 2020. 3. 10.>

[본조신설 2014. 8. 6.]

[제28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8조의3은 제28조의4로 이동 <2022. 3. 22.>]

**제28조의4(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 3. 3., 2022. 3. 22., 2022. 8. 9.>

1. 제7조의2에 따른 개방이사의 추천ㆍ선임 등: 2022년 1월 1일
2. 제9조의2에 따른 시정요구 없는 임원취임의 승인취소에 대한 세부기준: 2022년 1월 1일
3. 제9조의4에 따른 교육경험의 범위: 2022년 1월 1일
4. 제11조에 따른 기본재산의 처분 등: 2017년 1월 1일
5. 제12조에 따른 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등: 2017년 1월 1일
6.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 선정 기준: 2023년 1월 1일
7. 제21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 실시의 예외 및 시ㆍ도교육감 위탁 실시의 예외: 2022년 3월 25일

[전문개정 2016. 12. 30.]

[제28조의3에서 이동 <2022. 3. 22.>]

**제2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 3. 19., 2020. 3. 10.>

[전문개정 2018. 5. 28.]

**제30조** 삭제 <2013. 7. 22.>

**부칙** <제4396호,1969. 12. 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52호,1976. 1. 1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76호,1976. 11. 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금융기관이 행한 학교법인의 재산에 대한 평가는 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업자가 행한 평가로 본다.

**부칙** <제9347호,1979. 2. 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19호,1981. 5. 2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9조의2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중 공인회계사인 감사가 없는 학교법인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60일이내에 감사중 1인을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부칙** <제11304호,1983. 12. 30.>(위원회정비를위한산업합리화심의회규정등의폐지및물품관리법시행령등의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945호,1986. 7. 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개방대학의 감사에 관한 경과조치) 개방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선임되는 감사부터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2781호,1989. 8. 18.>(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⑧사립학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중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업자"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로 한다.

⑨내지2# 생략

**제4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제13057호,1990. 7. 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교육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중 "교육장"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교육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이를 "교육감"으로 본다.

**부칙** <제13282호,1991. 2. 1.>(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사립학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6조제1항, 제10조, 제12조, 제21조제1항 및 제28조중 " 문교부장관 " 을 각각 " 교육부장관 " 으로 하고, 제17조제2항중 " 문교부령 " 을 " 교육부령 " 으로 한다.

⑭내지 <148>생략

**부칙** <제13389호,1991. 6. 19.>(교원징계처분등의재심에관한규정)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사립학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3855호,1993. 2. 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55호,1997. 8.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75호,1997.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제15조의2 내지 제15조의4의 개정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학교법인의 해산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0. 12. 30., 2004. 4. 6.>

**부칙** <제15922호,1998. 11. 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85호,2000. 12.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15호,2001. 1. 29.>(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3# 생략

3$ 사립학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6조제1항, 제10조, 제14조제3항제2호, 제21조제1항 본문 및 제28조 본문중 " 교육부장관 " 을 각각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 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중 " 교육부령 " 을 " 교육인적자원부령 " 으로 한다.

3% 내지 <152>생략

**부칙** <제17556호,2002. 3.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54호,2002. 12. 30.>(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5>생략

1^ 사립학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제2호중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또는 토지수용법 " 을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 로 한다.

1& 내지3*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8312호,2004. 3. 17.>(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60호,2004. 4. 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90호,2005. 1. 29.>(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사립학교법 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 " 을 " 「유아교육법」 제8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3항,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 " 으로 한다.

③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9507호,2006. 6. 12.>(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46호,2006. 6. 23.>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62호,2007. 11. 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학교법인 임시이사의 선임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폐지한다.

**부칙** <제20740호,2008. 2. 29.>(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3@ 까지 생략

3#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6조제1항, 제7조의2제7항, 제9조의7제2항, 제10조 및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 을 각각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 교육인적자원부령 ”을 “ 교육과학기술부령 ”으로 한다.

3$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 <제20798호,2008. 6.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215호,2008. 12. 31.>(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274호,2009. 1. 28.>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151호,2010. 5. 4.>(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2> 까지 생략

<93>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 및 제4조제5항 중 “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을 각각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으로 한다.

<94>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제22971호,2011. 6.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2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임사무가 변경된 부분에 대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2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3928호,2012. 7. 4.>(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3936호,2012. 7. 5.>

이 영은 201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974호,2012. 7. 24.>

이 영은 201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423호,2013. 3. 2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4조제5항, 제6조제1항, 제7조의2제7항, 제9조의8제2항, 제10조, 제23조 전단 및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55>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 <제24665호,2013. 7.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인회계사를 감사로 선임하여야 하는 학교법인의 확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감사로 선임하지 아니한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 후 임기만료 등으로 감사를 선임할 때까지는 제9조의4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5050호,2013. 12. 30.>(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407호,2014. 6. 30.>

이 영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532호,2014. 8. 6.>(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840호,2014. 12. 9.>(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7129호,2016. 5. 10.>(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416호,2016. 8.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10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6항 및 같은 조 제7항제1호 중 “ 임면보고 ”를 각각 “ 임용보고 ”로 한다.

**부칙** <제27472호,2016. 8. 31.>(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11조제1항제2호 중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을 각각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으로 한다.

<55>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7751호,2016. 12. 30.>(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8697호,2018. 3. 13.>(인ㆍ허가 처리기한 도입을 위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3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적용례) ①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매도ㆍ증여ㆍ교환 또는 담보제공이나 용도변경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허가신청ㆍ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립학교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해산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립학교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합병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28903호,2018. 5. 28.>

이 영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946호,2018. 6. 5.>(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등 1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997호,2018. 6.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견 청취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6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심의가 계속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29269호,2018. 10. 30.>(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2) 까지 생략

2!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3항제1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한다.

제14조의3제1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1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가목”으로 한다.

2@ 부터 <51>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29623호,2019. 3.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의결의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전에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제24조의8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24조의8 본문에 따른다.

② 제24조의8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29950호,2019. 7. 2.>(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0108호,2019. 10. 8.>

이 영은 2019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509호,2020. 3. 3.>(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514호,2020. 3.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 제2호가목2)ㆍ4) 및 같은 호 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칙** <제31049호,2020. 9.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10호, 제7조의2제5항, 제8조의3제1항, 제9조의2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10조의6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4조의6의 개정규정 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교원에 대한 부분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방이사의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7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 시행일 전에 선임된 개방이사의 자격요건에 관하여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방이사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회의록의 공개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8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일 전에 이사회의 회의록을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한 경우 그 공개기간에 관하여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시정요구 없는 임원취임 승인취소의 세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9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 시행일 전에 발생한 임원의 회계부정이나 횡령ㆍ배임을 사유로 하는 임원취임의 승인취소에 관하여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1176호,2020. 11. 24.>(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380호,2021. 1. 5.>(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787호,2021. 6.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가 의견서 첨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352호,2022. 1. 21.>(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3^ 까지 생략

3&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 감정평가업자 "를 " 감정평가법인등 "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 감정평가업자 "를 " 감정평가법인등 "으로 한다.

3* 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제32410호,2022. 2. 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 제12조의2, 제27조제2항제2호, 제27조의2 및 별표 2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546호,2022. 3. 22.>

이 영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854호,2022. 8.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의 선정 절차 및 지정외부감사인의 지정 절차에 관한 특례) 2022년 회계연도에 대하여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제14조의2제2항、제5항、제6항、제8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1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 선정기준일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외부감사인 지정일: 2022년 11월 15일
2. 제14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외부감사인 지정 신청서류 제출 기한: 2022년 9월 15일
3. 제14조의2제8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 선정 및 지정외부감사인 지정 예정 사실 통지 기한과 같은 조 제10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감사계약 체결 기한: 제1호

에 따른 선정기준일을 기준으로 계산

**부칙** <제32868호,2022. 8. 9.>(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527호,2023. 6. 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843호,2024. 8.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립금 현황 및 사용내역에 대한 실태점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의 적립금 현황 및 사용내역에 대한 실태점검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4931호,2024. 10.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견 청취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7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심의가 계속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5746호,2025. 9. 16.>

이 영은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22호,2025. 12. 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립학교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8. 5. 28.>

## 겸직교원 수 산정 기준(제24조의3제2항 관련)

| |
|---|
| 겸직교원 수 = (대학의 임상교육 필요 학생정원 × 1) + (전문대학원의 임상교육 필요 학생정원 × 2) + (일반대학원의 임상교육 필요 학생정원 × 1.5) |

비고

1. 대학의 임상교육 필요 학생정원: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의학·한의학 또는 치의학 전공 학생정원 중 예과 1·2학년의 정원을 제외한 정원(예과 과정이 없는 경우에는 전체 정원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정원)
2. 전문대학원의 임상교육 필요 학생정원: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의학·한의학 또는 치의학 전공 학생정원
3. 일반대학원의 임상교육 필요 학생정원: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의학·한의학 또는 치의학 전공 학생정원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정원. 이 경우 의학·한의학 또는 치의학 전공 학생정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공별로 학칙에서 정하는 정원으로 한다.
4. 위 계산식에 따라 계산할 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 사립학교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2. 3. 22.>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 | |
|---|---|---|---|---|
| |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이상 위반 |
| 가. 학교법인의 이사장·감사 또는 청산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이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 | |
| 1) 이 법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4조제2항 제1호 | | | |
| 가) 등기 지연 기간이 1개월 미 | | 200 | | |

| | | | | |
|---|---|---|---|---|
| 만인 경우 | | | | |
| 나) 등기 지연 기간이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 | | 300 | |
| 다) 등기 지연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 | 500 | |
| 2)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않거나 공고해야 할 사항을 허위로 또는 누락하여 공고한 경우 | 법 제74조제2항 제2호 | 150 | 300 | 500 |
| 3) 법 제13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재산목록 또는 법 제32조(법 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37조제1항에 따른 재산목록, 그 밖의 서류를 비치하지 않거나 이에 기재할 사항을 허위로 또는 누락하여 기재한 경우 | 법 제74조제2항 제3호 | | 300 | |
| 4) 법 제19조제4항제3호·제48조(법 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보고해야 할 사항을 허위로 또는 누락하여 보고한 경우 | 법 제74조제2항 제4호 | 150 | 300 | 500 |
| 5)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4조제2항 제4호의2 | | | |
| 가) 신고 지연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 | 200 | |
| 나) 신고 지연 기간이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 | | 300 | |
| 다) 신고 지연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 | 500 | |
| 6) 법 제31조(법 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 | 법 제74조제2항 제5호 | | 300 | |

| | | | | |
|---|---|---|---|---|
| 37조제2항 또는 제38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 | | | |
| 7) 법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79조 또는 제93조제1항에 따른 파산선고의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4조제2항 제6호 | | 300 | |
| 8) 법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88조제1항 또는 제93조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않거나 공고할 사항을 허위로 또는 누락하여 공고한 경우 | 법 제74조제2항 제7호 | | 300 | |
| 9) 법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86조 또는 제94조에 따른 신고를 태만하거나 부실한 신고를 한 경우 | 법 제74조제2항 제8호 | | 300 | |
| 10) 법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90조를 위반한 경우 | 법 제74조제2항 제9호 | | 300 | |
| 11) 법 제72조의3에 따른 공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 법 제74조제2항 제10호 | 150 | 300 | 500 |
| 나.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법 제32조의2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보고해야 할 사항을 거짓으로 또는 누락하여 보고한 경우 | 법 제74조제3항 | 150 | 300 | 500 |
| 다.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보고를 한 경우 | 법 제74조제4항 | 150 | 300 | 500 |
| 라. 사립학교 교원 또는 사무직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을 말한다)의 임용권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 | |

| | | | | |
|---|---|---|---|---|
| 1) 법 제54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관할청의 해임 또는 징계 요구를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74조제1항 제1호 | 300 | 600 | 1,000 |
| 2) 법 제54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관할청의 해임 요구를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74조제1항 제2호 | 300 | 600 | 1,000 |
| 3) 법 제6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재심의를 요구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4조제1항 제3호 | 300 | 600 | 1,000 |
| 4) 법 제66조의2제5항 전단(법 제70조의6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4조제1항 제4호 | 300 | 600 | 1,000 |
| 5) 법 제70조의5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관할청의 징계의결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74조제1항 제5호 | 300 | 600 | 1,000 |
| 6) 법 제70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재심의를 요구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4조제1항 제6호 | 300 | 600 | 1,000 |
| 7) 법 제70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관할청의 해임 요구를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74조제1항 제7호 | 300 | 600 | 1,000 |
| 8) 법 제72조의5제4항제2호에 따른 관할청의 시정명령을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74조제1항 제8호 | 200 | 300 | 500 |

■ 사립학교법 시행령 [별지 서식] <개정 2021. 6. 22.>

# 전문가 의견서

| 사 건 명 | |
|---|---|

전문가 인적사항

| 소속 및 직위 | 성 명 | 연락처 |
|---|---|---|
| | | |

전문가 의견

※ 사건의 경위, 피해자의 진술내용 및 피해정도(신체·정신 및 심리 상태) 등을 고려해 사건에 대한 의견을 작성

위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인 성명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

# 사립학교법 시행령

[시행 2025. 12. 23.] [대통령령 제35922호, 2025. 12. 23., 일부개정]

**제1조(법인의 관할청과 학교의 관할청의 협조)** 「사립학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의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및 동조제3항제3호의 학교법인이 그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관할청의 허가 또는 인가등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항에 관련되는 사립학교의 관할청을 거쳐야 한다. <개정 1990. 7. 19., 1991. 2. 1., 1997. 8. 9., 2001. 1. 29., 2006. 6. 23., 2008. 2. 29., 2013. 3. 23.>

**제2조** 삭제 <2002. 3. 30.>

**제3조(수익사업의 공고방법)** 학교법인이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관한 공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전국을 보급대상으로 하는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해야 한다. <개정 2020. 11. 24.>

[전문개정 2006. 6. 23.]

**제3조의2(재산이전의 보고를 위한 서류 등)** ①학교법인은 법 제8조의2에 따라 등기한 날부터 3월 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재산출연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1. 재산목록
2. 출연증서
3. 인감증명
4. 금융기관의 증명서

②제1항의 서류를 제출받은 관할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학교법인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31., 2010. 5. 4.>

[본조신설 2006. 6. 23.]

**제4조(학교법인의 설립허가신청)**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설립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04. 3. 17., 2006. 6. 12., 2006. 6. 23., 2008. 12. 31., 2020. 3. 10., 2020. 9. 25.>

1. 설립취지서
2. 정관
3. 재산목록
4. 재산출연증서
5. 재산출연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6. 재산의 소유권증명(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 외의 것)
7. 재산의 평가조서
8. 재산의 수익조서
9. 임원의 이력서
10. 임원의 신원진술서
11. 임원의 취임승낙서
12. 임원의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13. 임원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법 제21조제2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각서
14.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설립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예산서 첨부)

②제1항제3호의 재산목록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야 한다.<개정 1976. 1. 16.>

③제1항제7호의 재산평가조서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이하 "감정평가서"라 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6. 11. 8., 1989. 8. 18., 1990. 7. 19., 2006. 6. 23., 2016. 8. 31., 2022. 1. 21.>

④제1항제8호의 재산수익조서에는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수익증명 또는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0. 7. 19.>

⑤ 제1항에 따른 설립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교육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31., 2010. 5. 4., 2013. 3. 23.>

**제4조의2(출연 또는 기부 재산의 기준액)** 법 제10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금액"이라 함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7조제1항,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7조제1항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의 10퍼센트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8. 6. 5.>

[본조신설 2006. 6. 23.]

**제5조(재산의 구분)** ①학교법인의 재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부동산
2. 정관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되는 재산
3.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4. 학교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중 적립금

②학교법인의 자산중 제1항 각호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개정 1976. 1. 16.>

**제6조(정관보충의 절차)** ①교육부장관이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의 보충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1. 2. 1., 2001. 1. 29., 2008. 2. 29., 2013. 3. 23.>

②제1항의 공고는 전국을 보급대상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3회 이상 게재하거나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개정 1976. 1. 16., 2022. 2. 11.>

③제1항의 공고에는 당해 정관의 보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일로부터 2월이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행정관청의 허가등을 요하는 사항의 등기)** 행정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등을 요하는 사항의 등기에 있어서는 당해 허가서 또는 인가서등의 등본을 그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의2(개방이사의 추천ㆍ선임 등)**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개방이사를 학교법인이 선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전 3개월) 안에 이사장이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에 따라 추천위원회가 개방이사를 추천하는 때에는 해당 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③ 추천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안에 이사장이 개방이사의 추천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추천을 할 수 있다.

④ 2 이상의 학교를 설치ㆍ경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협의하여 추천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⑤ 개방이사의 자격요건은 일반이사의 자격요건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방이사가 될 수 없다.<개정 2020. 9. 25.>

1. 해당 학교법인의 설립자
2. 해당 학교법인의 설립자와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3. 해당 학교법인의 임원(개방이사는 제외한다)이었던 사람
4.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장이었던 사람

⑥ 법 제14조제4항 단서에서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및 대학원 설치ㆍ경영 학교법인"이란 정관에서 그 설립목적과 해당 종교단체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는 학교법인으로서 해당 종교단체에서 종교의식의 집행, 신도의 교육, 선교 활동, 종교단체의 운영 등을 지도ㆍ담당하는 자의 양성만을 위하여 설립된 대학 및 대학원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을 말한다.

⑦ 교육부장관은 학교법인의 설립목적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교육과정 등을 확인하여 제6항에 따른 학교법인을 고시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⑧ 이 영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개방이사의 추천, 선임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1. 5.]

**제8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장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7일 전까지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소집 일자, 장소 등을

공지해야 한다. <신설 2022. 3. 22.>

②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승인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2., 2022. 3. 22.>

1.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이유와 이를 입증하는 서류
2.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3. 이사회를 소집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손해의 구체적인 사실을 명시한 서류

[제목개정 2022. 3. 22.]

**제8조의2(이사회 회의록의 비공개 대상)** ①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회의록에 기재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다만, 다음 각 목의 개인에 관한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사항
   나. 학교법인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사항
   다. 학교법인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라. 직무를 수행한 임ㆍ직원의 성명 및 직위
   마.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았거나 위촉받은 개인의 성명 및 직업
2. 그 밖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7호 및 제8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당해 학교법인과 직접 관련되어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

②학교법인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 6. 23.]

**제8조의3(회의록의 공개기간 등)** ①이사회의 회의록은 회의일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 동안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0. 9. 25.>

②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교직원ㆍ학생 및 학부모는 제1항의 공개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이사회 회의록 공개청구서를 작성ㆍ제출하여 회의록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③제2항에 따라 공개청구를 받은 학교법인은 10일 안에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공개를 청구한 사항이 공개대상과 비공개 대상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이를 분리하여 공개대상

이 되는 부분만을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 6. 23.]

**제9조(감사의 보고)** 학교법인의 감사가 법 제19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결과를 관할청에 보고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사를 종결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90. 7. 19.>

**제9조의2(시정요구 없는 임원취임의 승인취소에 대한 세부기준)** ①법 제20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6. 5., 2020. 9. 25.>

1. 관할청이 시정을 요구하여도 요구기한 내에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임원이 학교법인 및 학교의 회계 등에서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7조제1항,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7조제1항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해당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의 10퍼센트 이상(고등학교 이하의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20퍼센트 이상)에 대하여 회계부정한 사실이 법원의 판결 또는 관할청의 감사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된 경우
3. 임원이 학교법인의 재산이나 업무와 관련하여 1천만원 이상 횡령ㆍ배임하거나 교직원 채용 및 시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법원의 판결 또는 관할청의 감사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된 경우

②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관할청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 6. 23.]
[종전 제9조의2는 제9조의3으로 이동 <2006. 6. 23.>]

**제9조의3(이사정수의 3분의 2미만을 외국인으로 할 수 있는 학교)**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라 함은 대학ㆍ산업대학ㆍ사이버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말한다. <개정 2006. 6. 23., 2008. 6. 5.>
[본조신설 1997. 12. 31.]
[제9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9조의3은 제9조의4로 이동 <2006. 6. 23.>]

**제9조의4(교육경험의 범위)** 법 제21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경험"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경험을 말한다.

1. 법 제54조의4 또는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험
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또는 다문화언어 강사로 근무한 경험
3.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로 근무한 경험

[본조신설 2020. 9. 25.]

[종전 제9조의4는 제9조의5로 이동 <2020. 9. 25.>]

**제9조의5(공인회계사를 감사로 선임하여야 하는 학교법인)** 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감사 중 1명을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선임하여야 하는 학교법인은 대학ㆍ산업대학ㆍ사이버대학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로서 그 입학정원이 500명이상인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 한다. <개정 1990. 7. 19., 1998. 11. 3., 2008. 6. 5., 2013. 7. 22.>

[전문개정 1986. 7. 9.]

[제목개정 2013. 7. 22.]

[제9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9조의5는 제9조의6으로 이동 <2020. 9. 25.>]

**제9조의6(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 11. 5.]

[제9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9조의6은 제9조의7로 이동 <2020. 9. 25.>]

**제9조의7(조정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따로 소집한다.

③ 조정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학교법인의 임직원,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교직원, 관할청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18. 6. 26.>

④ 조정위원회는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심의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이사 후보자 추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의견 제출ㆍ청취의 절차 및 방법은 조정위원회가 정한다.<신설 2018. 6. 26.>

1.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포함하여 구성하고, 조정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협의체. 이 경우 나목의 사람은 그 퇴직일이 가장 최근인 사람부터 순차적으로 포함하고, 협의체의 총인원수는 해당 학교법인 이사정수의 과반수로 하되, 가목의 사람만으로 인원수가 초과되거나 나목의 사람 중 마지막으로 구성원으로 포함될 사람들의 퇴직일이 동일하여 인원수가 초과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인원을 포함한 인원수를 협의체의 총인원수로 본다.
   가. 해당 학교법인의 이사(임시이사는 제외한다)
   나. 가목 외의 사람 중 해당 학교법인의 이사(임시이사는 제외한다)였던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로서 조정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구
   가.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교직원 대표기구
   나.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학생ㆍ학부모 대표기구

3. 추천위원회
4. 해당 학교법인(법 제14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으로 한정한다)을 설립한 종교단체
5. 관할청
6. 그 밖에 조정위원회가 인정하는 이해관계인

⑤ 삭제<2024. 10. 8.>

⑥ 조정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조정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 6. 26.>

[본조신설 2007. 11. 5.]

[제9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9조의7은 제9조의8로 이동 <2020. 9. 25.>]

**제9조의8(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조정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7. 4.]

[제9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9조의8은 제9조의9로 이동 <2020. 9. 25.>]

**제9조의9(위원의 해촉)** 대통령은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8. 6. 26., 2020. 9. 25.>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의8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6. 5. 10.]

[제9조의8에서 이동, 종전 제9조의9는 제9조의10으로 이동 <2020. 9. 25.>]

**제9조의10(사무기구)** ① 조정위원회에 조정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에 필요한 인원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 등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본조신설 2007. 11. 5.]

[제9조의9에서 이동, 종전 제9조의10은 제9조의11로 이동 <2020. 9. 25.>]

**제9조의11(운영규정)**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7. 11. 5.]

[제9조의10에서 이동, 종전 제9조의11은 제9조의12로 이동 <2020. 9. 25.>]

**제9조의12(심의기준)** ① 조정위원회는 학교법인과 학교 운영의 투명성ㆍ합리성을 실현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며, 안정적인 교육환경에 이바지하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체 심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기준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고, 조정위원회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6. 26.]

[제9조의11에서 이동 <2020. 9. 25.>]

**제10조(임시이사의 선임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관할청에 임시이사의 선임을 청구하려는 이해관계인은 청구사유와 이해관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1. 2. 1., 2001. 1. 29., 2008. 2. 29., 2013. 3. 23., 2022. 2. 11.>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 중 재정이 열악한 학교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2. 2. 11.>

1. 학교법인이 교직원 인사 등 이사회 운영 관련 분쟁의 소송상대방이 된 경우에 발생하는 소송비용
2. 학교법인이 임원 등의 회계 부정, 횡령 등으로 발생한 학교 운영의 중대한 장애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발생하는 소송비용
3. 학교법인이 다음 각 목의 소송의 보조 참가인이 된 경우에 발생하는 소송비용
   가. 법 제20조의2에 따른 임원 취임의 승인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나.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임시이사 선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제목개정 2022. 2. 11.]

**제10조의2(생계곤란자의 기준)** 법 제26조제2항에 규정된 재산을 출연 또는 기증한 자 중 생계가 곤란한 자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개인적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자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할 능력이 없는 자
2. 학교법인의 이사로 되어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다가 그 직을 사임한 자

[본조신설 1979. 2. 24.]

**제10조의3(생계비등의 범위)** 법 제26조제2항에 규정된 생계비ㆍ의료비 및 장례비의 범위는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자와 그 배우자 및 18세미만의 자녀에 대한 것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개정 1986. 7. 9., 2018. 6. 5.>

1. 월 생계비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장의 최고 호봉 또는 호급에 해당하는 봉급월액의 70퍼센트.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연금ㆍ퇴직연금일시금ㆍ퇴직일시금 또는 퇴직금을 받거나 기타의 수입이 있는 자의 월 생계비의 한도액은 그 수입을 참작하여 당해 학교법인이 정한다.
2. 의료비

   의료시설 입원치료비
3. 장례비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장의 최고 호봉 또는 호급에 해당하는 봉급월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본조신설 1979. 2. 24.]

**제10조의4** 삭제 <1983. 12. 30.>

**제10조의5(생계비등의 지급)** 학교법인은 법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계비ㆍ의료비 또는 장례비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1986. 7. 9.]

**제10조의6(대학평의원회의 구성)** ①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는 교원ㆍ직원ㆍ조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평의원회의 구성단위 중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 9. 25.>

②평의원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2. 2. 11.>

③ 평의원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학생이 아닌 평의원 중에서 호선한다.<신설 2022. 2. 11.>

④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학생인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신설 2022. 2. 11.>

⑤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평의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22. 2. 11.>

[본조신설 2006. 6. 23.]

[제목개정 2020. 9. 25.]

**제10조의7** 삭제 <2007. 11. 5.>

**제11조(기본재산의 처분)** ①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ㆍ증여 또는 교환에 관한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0. 7. 19., 1997. 8. 9., 2006. 6. 23., 2014. 6. 30., 2016. 8. 31., 2022. 1. 21.>

1. 처분재산명세서
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교환의 경우에는 쌍방의 재산)
3. 이사회회의록사본
4. 교환재산 또는 처분대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교환 또는 매도의 경우에 한한다)
5. 제1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삭제<1990. 7. 19.>

③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담보제공에 관한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는 다음의 서류와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7. 8. 9.>

1. 담보에 제공할 재산목록
2. 피담보액
3. 담보처
4. 상환방법 및 상환계획
5. 이사회회의록 사본

④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용도변경,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등에 관한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개정 1997. 8. 9., 2021. 1. 5.>

⑤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할 목적으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분할하거나 법ㆍ이 영 또는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7. 8. 9., 1998. 11. 3., 2002. 3. 30., 2002. 12. 30., 2006. 6. 23., 2008. 6. 5., 2023. 6. 13., 2024. 8. 20.>

1.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7조제1항 및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한 대학ㆍ산업대학ㆍ사이버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수익증대를 목적으로 다른 수익용기본재산으로 대체취득하기 위하여 수익용기본재산을 매도 또는 교환하는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손실보상금을 당해 기본재산의 용도와 동일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기본재산의 매도ㆍ증여ㆍ교환ㆍ용도변경 또는 담보의 제공가액이 5천만원 미만(대학ㆍ산업대학ㆍ사이버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경우는 20억원 미만)인 경우
4. 대학ㆍ산업대학ㆍ사이버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ㆍ부속병원회계 및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일반업무회계(이하 이 항에서 "교비회계등"이라 한다)의 회계별로 기본금(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순자산으로서 법인 및 학교에 계속적으로 투입ㆍ운용되는 기본적자산의 가액을 말한다)에 대한 총 차입금(차입하고자 하는 차입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비율(이하 이 항에서 "차입비율"이라 한다)이 각각 30퍼센트 미만인 범위에서 금융기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을 말한다)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5. 대학ㆍ산업대학ㆍ사이버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7조에 따른 사학진흥기금에서 융자받는 경우
6. 수익용기본재산에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
7.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가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대학ㆍ산업대학ㆍ사이버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가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이 경우 의무의 부담가액은 해당 부담가액을 포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1) 교비회계등의 의무의 부담가액 총 합계액이 200억원 미만인 경우
      2) 교비회계등의 회계별 차입비율이 각각 30퍼센트 미만인 경우
   나. 가목 외의 학교법인: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가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⑥ 관할청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매도ㆍ증여ㆍ교환, 담보제공, 용도변경,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허가ㆍ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8. 3. 13.>

**제12조(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등)** ①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재산은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1. 2. 1., 1993. 2. 23., 1998. 11. 3., 2002. 3. 30., 2014. 6. 30.>

1. 교지
2. 교사(강당을 포함한다)
3. 체육장(실내체육장을 포함한다)
4. 실습 또는 연구시설
5. 기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ㆍ설비 및 교재ㆍ교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3. 6. 13.>

1.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한 후 학교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이전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재산
2.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한 후 학교 간 통폐합(본교와 분교 간 통폐합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로서 통폐합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재산
3. 교육ㆍ연구의 경쟁력 강화 및 특성화를 위하여 학교법인 간에 교환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재산
4. 법 제29조제6항제2호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재산
5. 그 밖에 학생 수의 감소 등 교육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해도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재산

③ 관할청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의 매도 또는 담보의 제공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명도일 또는 담보로 제공되는 부동산과 관련된 채무의 변제일을 「유아교육법」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3항,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또는 「고등교육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학교위치 변경인가일 후로 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하여야 한다.<신설 2014. 6. 30.>

[제목개정 2014. 6. 30.]

**제12조의2(기본재산 소송에 관한 신고)** ①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기본재산에 관한 소송절차의 개시 사실을 신고하려는 학교법인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날 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청에 신고해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ㆍ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2.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대리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청구취지 및 이유
4. 사건의 표시
5. 관할 법원

②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기본재산에 관한 소송절차의 완결 사실을 신고하려는 학교법인은 해당 심급의 종국판결 선고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관할청에 신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2. 11.]

**제13조(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 ①교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2. 7. 24., 2019. 7. 2.>

1. 법령 또는 학칙에 의하여 학교가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입학금ㆍ수업료 및 입학수험료
2. 학사관계 각종 증명 수수료
3. 학교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
4. 다른 회계로부터 전입되는 전입금
5. 학생의 실험실습에서 생기는 생산품등의 판매대금
6. 교비회계의 운용과정에서 생기는 이자수입
7. 교육용 기자재등의 불용품 매각수입
8. 교비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

8의2. 학교가 학교교육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기부금

9. 기타 학교법인의 수입으로서 다른 회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입

②교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로 한다.

1.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2.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위한 경비
3.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
4. 제1항제8호의 차입금의 상환원리금
5.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③부속병원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1. 진료수입
2. 일반업무회계로부터 전입되는 전입금
3. 부속병원회계의 운용과정에서 생기는 이자수입
4. 부속병원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
5. 기타 부속병원운영에 따른 제수입

④부속병원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로 한다.

1. 부속병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2. 부속병원관리ㆍ운영과 진료에 필요한 물건비
3. 부속병원에 직접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위한 경비
4. 교비회계 또는 일반업무회계로의 전출금
5. 제3항제4호의 차입금의 상환원리금
6. 기타 부속병원운영에 필요한 경비

[전문개정 1981. 5. 21.]

**제13조의2(교육용 기본재산의 무상 귀속)** ① 학교법인이 법 제29조제6항제2호에 따라 교육용 기본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

족해야 한다. <개정 2021. 6. 22.>

1. 귀속하려는 교육용 기본재산을 제외하고 남은 교육용 기본재산이 다음 각 목에 따른 교지ㆍ교사 및 설비의 확보 기준을 충족할 것
   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나. 「특수학교시설ㆍ설비 기준령」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다.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기준
   라.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기준
   마.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5조에 따른 기준
   바. 「기술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8조에 따른 기준
2. 교육용 기본재산 중 교육ㆍ연구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을 무상으로 귀속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재산을 무상으로 귀속하여도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ㆍ연구에 지장이 없을 것
   가. 무상으로 귀속한 이후에도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가 교육ㆍ연구 목적으로 해당 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나. 해당 재산을 무상으로 귀속하여도 그 재산을 대체하여 교육ㆍ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존의 다른 재산이 있거나 재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경우
   다. 향후 해당 재산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

② 학교법인이 법 제29조제6항제2호에 따라 교육용 기본재산을 연구기관에 귀속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에 귀속할 것
   가. 국공립연구기관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라.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연구기관
2.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충족할 것

[본조신설 2014. 6. 30.]

**제14조(예산과 결산의 보고 및 공시)** ①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예산 및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함에 있어서는 예산의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이전에, 결산의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86. 7. 9., 1990. 7. 19., 1998. 11. 3., 2006. 6. 23.>

② 학교법인은 회계연도 중에 예산을 추가하거나 경정(更正)할 때에는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절차를 통하여 예산이 확정된 날(유치원의 경우에는 편성된 날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예산을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7. 22.>

③ 삭제<2013. 7. 22.>

④학교법인은 학교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서(「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및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른 부속명세서를 포함한다)를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당해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06. 6. 23.>

⑤학교법인은 학교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결산서(「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및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른 부속명세서와 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안에 당해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06. 6. 23.>

[제목개정 2006. 6. 23.]

**제14조의2(지정외부감사대상 학교법인 및 지정외부감사인)** ① 법 제3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학교법인 중에서 법 제3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보고서 및 부속서류를 첨부해야 하는 학교법인을 선정해야 한다.

1. 선정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 2월 말일 현재 합산재무상태표[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대학교육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회계를 모두 합한 것으로 한다)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일반업무회계를 하나의 회계단위로 작성한 표를 말한다]의 총자산가액이 1천억원 이상인 학교법인
2. 선정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 4월 1일 현재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대학교육기관의 총재학생 수(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대학교육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대학교육기관의 재학생 수를 모두 합한 것으로 한다)가 2천명 이상인 학교법인
3. 그 밖에 법 제31조제4항 후단에 따른 외부감사인을 부당하게 교체하는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학교법인

② 교육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2월 15일(이하 이 조에서 "선정기준일"이라 한다)까지 제1항에 따른 선정을 마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학교법인(이하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이라 한다)에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을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으로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1. 선정기준일을 기준으로 4년 이내에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감리 결과 법 제28조제1항 또는 제2항이나 제29조제6항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은 학교법인
2. 그 밖에 대학교육기관의 종류와 경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으로 선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학교법인

④ 교육부장관은 외부감사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에서 신청을 받아 법 제31조제5항제2호에 따른 외부감사인을 지정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선정기준일 3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청서류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교육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선정기준일까지 제4항에 따른 지정을 마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 및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외부감사인(이하 “지정외부감사인”이라 한다)에게 각각 통지해야 한다.
⑦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외부감사인으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1. 감사보고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자
2. 특별한 사유 없이 제10항(제1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간 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3. 제14조의3제3항제1호의 회계감사기준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회계기준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되어 금융위원회에 통보된 자
4. 지정외부감사인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자
5. 그 밖에 외부감사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감사대상자에게 부당한 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경우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
⑧ 교육부장관은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으로 선정하려는 학교법인과 지정외부감사인으로 지정하려는 외부감사인에게 선정기준일 4주 전까지 그 선정 또는 지정 예정 사실을 각각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이나 지정외부감사인을 신속하게 선정하거나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⑨ 제8항에 따른 선정 또는 지정 예정 사실을 통지받은 학교법인이나 외부감사인은 통지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은 그 의견에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⑩ 제7항에 따른 지정외부감사인 지정 통지를 받은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은 선정기준일부터 2주 이내에 지정외부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외부감사인을 다시 지정해 줄 것을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지정외부감사인이 「공인회계사법」 제33조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당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의 외부감사인이 될 수 없는 경우
2. 지정외부감사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선정기준일부터 2주 이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⑪ 교육부장관은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지정외부감사인 재지정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정외부감사인을 다시 지정할 수 있다.
⑫ 교육부장관은 제11항에 따라 지정외부감사인을 다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과 새로 지정된 지정외부감사인에게 각각 통지해야 한다.

⑬ 제11항에 따라 지정외부감사인을 다시 지정한 경우의 감사계약 체결 등에 관하여는 제10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정기준일”을 “통지일”로, “2주 이내”를 “4주 이내”로 본다.
⑭ 제10항(제1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감사계약을 체결한 학교법인은 감사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감사계약서 사본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⑮ 교육부장관은 법 제31조제7항에 따라 외부감사인 지정에 관한 업무를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이하 “한국사학진흥재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16> 제1항부터 제1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의 선정 절차, 지정외부감사인의 지정 절차나 그 밖에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의 선정 또는 지정외부감사인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2. 8. 9.]
[종전 제14조의2는 제14조의3으로 이동 <2022. 8. 9.>]

**제14조의3(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①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법 제31조제4항 후단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외부감사보고서 및 부속서류(이하 “외부감사보고서등”이라 한다)에 대한 감리를 실시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5. 28., 2022. 8. 9.>
1.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학교법인이 제출한 결산서에 대하여 법 제33조에 따른 회계규칙을 준수하였는지를 심사한 결과 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계량적 분석 또는 무작위 표본 추출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3. 국가기관으로부터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회계관련 법령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② 교육부장관은 감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감사보고서등을 제출한 외부감사인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및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 5. 28., 2022. 8. 9.>
③ 교육부장관은 감리 결과 외부감사보고서등을 제출한 외부감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감사인의 명단과 해당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개정 2018. 5. 28., 2018. 10. 30., 2022. 8. 9.>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
2. 학교법인의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고시로 정하는 기준

④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금융위원회는 그 외부감사인에 대하여 「공인회계사법」 제39조제1항 또는 제48조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업무정지 또는 징계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2. 8. 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리의 범위·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3. 7. 22.]

[제1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4조의3은 제14조의4로 이동 <2022. 8. 9.>]

**제14조의4(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업무의 위탁)** 교육부장관은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30., 2020. 9. 25.>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회계법인
2. 한국사학진흥재단

[본조신설 2018. 5. 28.]

[제14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4조의4는 제14조의5로 이동 <2022. 8. 9.>]

**제14조의5(특수한 관계에 있는 법인의 범위)** 법 제32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4. 8. 2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법인
   가. 해당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임원이거나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해당 대학교육기관의 장이거나 해당 대학교육기관의 장에서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제4조의2에 따른 출연 재산의 기준액 이상을 해당 대학교육기관 또는 해당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 출연한 사람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통하여 법 제32조의2에 따른 적립금의 운영방침을 결정하거나 해당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을 행사하는 등 대학교육기관 또는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운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인

[본조신설 2018. 5. 28.]

[제14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14조의5는 제14조의6으로 이동 <2022. 8. 9.>]

**제14조의6(적립금별 적립 규모 및 사용내역의 공시)** ①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법 제32조의2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의 연구적립금·건축적립금·장학적립금·퇴직적립금 및 특정목적적립금별로 적립 규모와 사용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시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대학교육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년간 게재하는 방식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 8. 20.]

[종전 제14조의6은 제14조의8로 이동 <2024. 8. 20.>]

**제14조의7(적립금 현황 및 사용내역에 대한 실태점검)** ① 법 제32조의2제7항에 따른 대학교육기관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적립금 현황 및 사용내역에 대한 실태점검(이하 이 조에서 "실태점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32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등록금회계로부터의 적립 현황
2. 법 제32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등록금회계에서 비등록금회계로 전출된 적립금 상당액을 제외한 적립금의 법인에 대한 투자 현황
3.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대학교육기관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적립금 현황 및 사용내역의 파악을 위하여 실태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점검은 매년 실시한다.

③ 실태점검은 서면점검, 현장점검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효율적인 실태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및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실태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교육기관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및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8. 20.]

[종전 제14조의7은 제14조의9로 이동 <2024. 8. 20.>]

**제14조의8(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이하 "기금운용심의회"라 한다)는 대학교육기관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② 대학교육기관에 두는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은 대학교육기관의 장으로 하고,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두는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은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 한다.

③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은 교원, 직원, 학생, 외부 전문가,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법 제32조의3제2항제2호의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2. 3. 22., 2022. 8. 9.>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서 자산운용 또는 위험관리ㆍ평가 분야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기관에서 재정 또는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나. 「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에 따른 정부기업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경제, 경영 또는 금융 관련 학문 분야를 연구하거나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경제, 경영 또는 금융 관련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5.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6. 그 밖에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등 이상의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8. 5. 28.]

[제14조의6에서 이동 <2024. 8. 20.>]

**제14조의9(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매 회계연도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운용의 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에 관한 지침의 제정 및 개정
3. 그 밖에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이 기금의 관리ㆍ운용과 관련하여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금운용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8. 5. 28.]

[제14조의7에서 이동 <2024. 8. 20.>]

**제15조(학교법인의 해산인가 신청)** ①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해산인가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13.>

1. 이사회회의록 사본
2. 재산목록
3. 남은 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해산인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8. 3. 13.>

**제15조의2(해산인가신청서의 작성등)** ①법 제3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해산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4. 4. 6.>

1. 해산사유
2. 재학생처리계획

3. 교직원처리계획
4. 이사회회의록 사본
5. 법 제35조의2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해산장려금의 지급 또는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의 매입 신청

②법 제3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4. 4. 6.>

1. 재산목록 및 조성경위
2. 재산감정평가내역
3. 잔여재산귀속예정자 및 귀속사유
4. 기본재산중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 내역(법 제35조의2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매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공익법인의 정관(법 제35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으로 잔여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 한한다)

[본조신설 1997. 12. 31.]

**제15조의3(사학정비심사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35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학정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4. 4. 6.>

②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교육감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6. 6. 23., 2025. 9. 16.>

1. 교육감소속 4급 또는 4급상당 공무원중 5인이내
2.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자 또는 법률학·회계학·감정평가 관련 학과목을 담당하는 부교수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중 5인이내
3.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관할구역안에 소재한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을 대표하는 자로 구성된 단체에서 추천한 인사 5인이내

③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법 제35조의2의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1997. 12. 31.]

**제15조의4(사학정비심사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등)**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04. 4. 6.>

1. 학교법인의 해산의 타당성 여부
2. 잔여재산처분계획의 적정성 여부
3. 법 제3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의 타당성 여부
4. 기타 학교법인의 해산·잔여재산의 처분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⑤위원회의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⑥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⑦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⑧위원회의 위원장ㆍ위원 기타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제15조의3 및 제15조의4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1997. 12. 31.]

**제16조(합병인가신청)** ①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합병인가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1998. 11. 3., 2018. 6. 5., 2022. 8. 9.>
1. 합병이유서
2.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동의를 입증하는 각 학교법인의 이사회회의록 사본
3. 법 제39조에 따라 각 학교법인이 선임한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4. 합병약정서
5. 합병 후 존속하는 학교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학교법인의 정관
6. 삭제<1998. 11. 3.>
7. 합병 전의 각 학교법인의 재산목록 및 재무상태표
8. 재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9. 합병 후 존속하는 학교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학교법인에 대한 제4조제1항제9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합병 후 존속하는 학교법인의 임원으로서 계속 재임되는 임원의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합병인가 신청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제3호"는 "제1항제7호"로, "설립허가신청서"는 "합병인가신청서"로 본다.<개정 2022. 8. 9.>
③ 교육부장관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합병인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신설 2018. 3. 13., 2022. 8. 9.>

**제17조(국가의 지원대상)** ①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사립학교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행하는 보조 또는 지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에 대하여 행한다. <개정 1990. 7. 19.>

1. 실업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2. 국가가 필요로 하는 특수한 학과 또는 학교를 설치 ㆍ경영하는 학교법인
3.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학교경영에 재정적 곤란을 받는 학교법인
4. 특수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5. 기타 특히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법인

②제1항의 보조 또는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76. 1. 16., 1990. 7. 19., 1991. 2. 1., 2001. 1. 29., 2008. 2. 29., 2013. 3. 23.>

**제18조(해산된 학교법인 등에 대한 기록물 관리)** ① 법 제4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학적부, 조직ㆍ회계ㆍ예산 관련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관 중인 기록물"이란 다음 각 호의 기록물을 말한다.

1. 학적부
2. 조직ㆍ회계ㆍ예산 관련 자료
3.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ㆍ도서ㆍ대장ㆍ카드ㆍ도면ㆍ시청각물ㆍ전자문서 등의 각종 기록물 중에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물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록물의 세부 범위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48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는 해당 학교법인의 해산인가ㆍ해산명령이나 학교의 폐지인가ㆍ폐쇄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기록물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한국사학진흥재단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기록물을 지체 없이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이관해야 한다.

⑤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제4항에 따라 이관된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내부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이 경우 내부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록물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기록물의 분류에 관한 사항
3. 기록물의 보존 기간 및 보존 방법에 관한 사항
4. 기록물의 공개, 열람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기록물의 폐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기록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0. 9. 25.]

**제19조(학교법인으로의 조직변경을 위한 인가신청)** ①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이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기 위한 인가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조직변경이유서
2. 정관(신ㆍ구)
3. 이사회회의록 사본
4. 제4조제1항제3호 내지 제14호의 서류(이 경우에 제14호중 “설립후”는 “조직 변경후”로 한다)

②제4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개정 1976. 1. 16.>

**제20조(조직변경으로 인한 학교법인의 설립등기)**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이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변경하여 학교법인으로 되는 경우의 그 학교법인의 설립등기에 관하여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에 법 제8조중 “설립허가”를 “조직변경의 인가”로 한다.

**제21조(교사의 신규채용)** ①법 제53조의2제10항에 따른 공개전형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임용권자가 실시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교육감에게 그 전형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 8. 2., 2018. 5. 28.>

②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3을 준용한다.<개정 2016. 8. 2., 2021. 6. 22.>

③임용권자는 교원을 신규로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지원마감일 30일 전까지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그 밖의 정보통신 매체를 통하여 채용분야ㆍ채용인원 및 지원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8. 2.>

④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은 필기시험ㆍ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등의 방법으로 하며, 그 밖에 공개전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권자가 정한다.<개정 2016. 8. 2.>

⑤임용권자는 공개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전형결과 등의 공개를 요구할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형결과 등의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6. 8. 2., 2022. 2. 11.>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3조의2제11항 본문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원의 임용권자가 필기시험을 시ㆍ도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필기시험의 시기, 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시ㆍ도 교육감과 협의하여 정해야 한다.<신설 2022. 3. 22.>

⑦ 법 제53조의2제11항 단서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원의 임용권자는 공개전형을 실시할 때 채용과목의 특성, 평가 방법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필기시험을 다른 방법의 시험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공개전형에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신설 2022. 3. 22.>

⑧ 법 제53조의2제11항 단서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필기시험의 실시

를 시ㆍ도 교육감에게 위탁하지 않을 수 있다.<신설 2022. 3. 22.>

1.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교원의 인건비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법 제35조제5항 또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경우
2.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에 따른 공개전형의 필기시험에 포함되지 않는 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채용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6. 6. 23.]

**제22조** 삭제 <1990. 7. 19.>

**제22조의2** 삭제 <1981. 5. 21.>

**제22조의3(학력평가)** ①시ㆍ도의 교육감은 관할구역내에 소재하는 사립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교사 임용권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사립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교사에 임용될 것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 학력평가를 행하고, 그 학력평가 사항을 기재한 명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1986. 7. 9., 1990. 7. 19., 2006. 6. 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력평가의 범위ㆍ방법ㆍ절차와 명부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90. 7. 19.>

[본조신설 1976. 11. 8.]

**제23조(교원의 임용 보고)**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교원의 임용 보고를 할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른다. 다만,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8. 2., 2025. 9. 16.>

[전문개정 2009. 1. 28.]

[제목개정 2016. 8. 2.]

**제24조(관할청의 교원의 해직 또는 징계의 요구)** 사립학교의 관할청이 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학교교원의 해직 또는 징계를 요구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0. 7. 19.>

1. 해직 또는 징계요구의 대상자 및 그 인적사항
2. 해직 또는 징계의 구별(징계의 경우에는 그 종류)
3. 해직 또는 징계요구의 사유

**제24조의2(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통보 등)** ① 법 제62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법 제61조의2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2. 2. 11.>

② 감사ㆍ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은 법 제6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의원면직의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확인 결과를 해당 학교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2. 2. 11.>

[본조신설 2016. 8. 2.]
[종전 제24조의2는 제24조의3으로 이동 <2016. 8. 2.>]

**제24조의3(겸직 허가의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5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이란 해당 대학의 부속병원이 아닌 병원 중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제2항제3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을 말한다.
②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겸직 허가의 기준은 임상교육과정, 겸직 허가 대상 교원의 전공 및 진료과목,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병원(이하 “협력병원”이라 한다)의 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학의 장이 정한다. 이 경우 소속 교원 중 겸직을 허가할 수 있는 교원의 수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수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28.>
③ 대학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겸직 허가의 기준을 정할 때에는 미리 협력병원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대학의 장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겸직 허가를 할 때에는 법 제53조의4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구체적인 심의 기준 및 절차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 8. 2.>
[본조신설 2012. 7. 24.]
[제2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4조의3은 제24조의4로 이동 <2016. 8. 2.>]

**제24조의4(겸직교원의 직무와 보수)** ①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협력병원에 겸직하는 교원(이하 “겸직교원”이라 한다)은 협력병원의 정관과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병원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협력병원의 장은 겸직교원이 제1항을 위반하거나 법 제6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력병원의 정관 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절차를 거쳐 대학의 장에게 겸직해제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겸직교원의 보수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 소속기관인 대학에서 지급한다.
④ 협력병원은 겸직교원에 대하여 협력병원의 정관 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7. 24.]
[제24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24조의4는 제24조의6으로 이동 <2016. 8. 2.>]

**제24조의5(사립학교 교원의 파견근무)** ① 사립학교(「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24조의6 및 제24조의7에서 같다)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5조의5에 따라 소속 교원을 파견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교육ㆍ연구, 학술 진흥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다.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5항에 따른 교육연구기관
라. 「교육공무원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연수기관
2.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사립학교 교원의 연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소속 교원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국내외 교육기관ㆍ연구기관에 파견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 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교육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의 파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파견기간: 3년 이내.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제1항제2호에 따른 파견기간: 그 연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간
3. 제1항제3호에 따른 파견기간: 1년 6개월 이내.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소속 교원을 파견하는 경우에는 미리 파견받을 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

④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소속 교원을 파견하거나 그 파견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5. 9. 16.]

[종전 제24조의5는 제24조의8로 이동 <2025. 9. 16.>]

**제24조의6(교육공무원의 파견근무)** ①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법 제55조의5에 따라 교육공무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파견받을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통하여 교육활동의 교류와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교육공무원을 해당 사립학교에 파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법 제55조의5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거나 그 파견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교육공무원 파견의 발령권자 및 교육공무원의 파견으로 인한 결원보충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제4항 본문 및 제7조의4제1항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 9. 16.]

[종전 제24조의6은 제24조의9로 이동 <2025. 9. 16.>]

**제24조의7(파견근무 중 복무 등)** ① 법 제55조의5제1항에 따라 파견된 사립학교 교원이나 교육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임용권자 소속 교원이나 교육공무원을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견된 사립학교 교원이나 교육공무원을 원래의 소속 기관으로 복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파견된 사립학교 교원이나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

1. 파견 사유가 없어진 경우
2. 파견 목적이 달성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3. 파견받은 사립학교 교원이나 교육공무원이 파견 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본조신설 2025. 9. 16.]

[종전 제24조의7은 제24조의10으로 이동 <2025. 9. 16.>]

**제24조의8(직위해제 대상 비위행위)** 법 제58조의2제1항제4호에서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하는 행위
   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나. 법 제29조(법 제5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
   다. 법 제32조의2에 따른 적립금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5.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본조신설 2016. 8. 2.]

[제24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24조의8은 제24조의11로 이동 <2025. 9. 16.>]

**제24조의9(육아 등의 사유로 휴직하는 교원의 신분 및 처우)** 법 제59조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에 따른 사유로 휴직하는 교원의 신분 및 처우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11조제1항제1호나목,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제6호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 등 국립ㆍ공립 학교의 교원이 해당 사유로 휴직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 9. 25.]

[제24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24조의9는 제24조의12로 이동 <2025. 9. 16.>]

**제24조의10(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등)** ①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이하 "교원징계위원회"라 한다)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별로 설치하되, 법 제53조의2제2항에 따라 교원의 임용권이 학교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해당 학교에 따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 8. 2., 2022. 3. 22.>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 수는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학교의 규모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정해야 한다.<신설 2022. 3. 22.>

1. 학생 수가 200명 미만인 학교: 5명 이상 9명 이하
2. 학생 수가 200명 이상인 학교: 9명 이상 11명 이하

[전문개정 1990. 7. 19.]

[제목개정 2022. 3. 22.]

[제24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24조의10은 제24조의13으로 이동 <2025. 9. 16.>]

**제24조의11(징계위원회의 위원장)** ①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1990. 7. 19.>

②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9. 7. 2.>

③위원장은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1981. 5. 21.]

[제24조의8에서 이동, 종전 제24조의11은 제24조의14로 이동 <2025. 9. 16.>]

**제24조의12(징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징계심의위원회(이하 "징계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징계의결의 기한 및 징계심의위원회 위원의 기피 등에 관하여는 제24조의11, 제24조의13 및 제24조의14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5. 9. 16.>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징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징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2. 3. 22.]

[제24조의9에서 이동 <2025. 9. 16.>]

**제24조의13(징계의결의 기한)**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법 제64조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받거나 법 제66조의2제3항에 따라 징계의결 재심의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등 성(性) 관련 비위만을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9. 3. 19., 2022. 3. 22.>

② 법 제64조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되거나 법 제66조의2제3항에 따라 징계의결의 재심의가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 절차의 진행이 법 제66조의3에 따라 중지된 경우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신설 2019. 3. 19., 2022. 3. 22.>

[본조신설 1981. 5. 21.]

[제24조의10에서 이동 <2025. 9. 16.>]

**제24조의14(위원의 기피 등)** ①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법 제63조에 따른 제척 또는 제1항에 따른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수의 3분의 2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 또는 위촉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6. 8. 2.>

[본조신설 1990. 7. 19.]

[제목개정 2016. 8. 2.]

[제24조의11에서 이동 <2025. 9. 16.>]

**제25조(교원의 징계의결의 요구 등)**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가 법 제64조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법 제66조의2제3항에 따라 징계의결 재심의를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서 또는 징계의결 재심의 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 6. 22., 2022. 3. 22., 2025. 12. 23.>

1. 징계혐의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서류
2. 징계의 종류와 양을 기재한 서류
3. 징계사유서와 징계요구자의 의견서
4. 징계혐의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서류
5. 징계혐의자의 이력서
6. 근무성적표
7. 징계 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등 관련 전문가가 작성한 별지 서식의 전문가 의견서. 다만, 본문에 따른 징계 사유와 관련하여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공소장, 혐의자ㆍ관련자ㆍ관련증인에 대한 신문조서 및 진술서 등 수사기록이 통보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목개정 2022. 3. 22.]

**제25조의2(징계기준)**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할 때에는 법 제6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정도, 징계의결이 요구된 교원의 근무태도, 근무성적,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징계요구의 내용, 과실의 경중(輕重),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그 의결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비위행위자뿐만 아니라 해당 각 호에서 정한 사람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1. 의결 대상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비위 사건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및 그 비위행위의 제안ㆍ주선자
2. 의결 대상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 비위 사건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로 인한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의결하지 않을 수 있다.

1. 업무처리 절차ㆍ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제25조의4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교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9. 10. 8.]

**제25조의3(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 같은 사건에 관련된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해서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징계를 의결해야 한다. 이 경우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세부적인 문책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위행위자 또는 감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해당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했거나 이를 적법ㆍ타당하게 조치한 경우
2.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3. 행위 당시의 여건, 그 밖에 사회통념상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감독자가 철저하게 감독했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9. 10. 8.]

**제25조의4(징계의 감경기준)**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법 제64조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되거나 법 제66조의2제3항에 따라 징계의결 재심의가 요구된 교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교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기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 3. 22.>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교사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상 또는 교육감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개정 2022. 2. 11., 2025. 12. 23.>

1. 법 제66조의4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시효가 5년인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2. 시험문제를 유출하거나 학생의 성적을 조작하는 등 학생 성적과 관련한 비위 및 학교생활기록부 허위사실 기재 또는 부당 정정(訂正) 등 학교생활기록부와 관련한 비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3.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성 관련 비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의 경우
5. 학생에게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 폭력 행위를 하여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6. 신규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와 관련된 비위인 경우
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은 경우
8. 소속 기관 내의 제3호에 따른 성 관련 비위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아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9. 제3호에 따른 성 관련 비위의 피해자에게 2차 피해(피해자 신상정보의 유출, 피해자 권리구제의 방해, 피해자에 대한 폭행ㆍ폭언, 그 밖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일체의 불리한 처우를 말한다)를 입혀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10. 「공직선거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11.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③ 교원징계위원회는 법 제64조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되거나 법 제66조의2제3항에 따라 징계의결 재심의가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생긴 것으로 인정되거나, 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정을 고려하여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22. 3. 22.>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징계 감경의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0. 8.]

**제26조(징계의결서의 작성요령)** 법 제66조제2항 또는 제66조의2제4항에 따른 징계의결서의 이유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적용법령을 명시해야 한다. <개정 2019. 10. 8., 2022. 3. 22.>

**제27조(보직 등 관리의 원칙)** ① 법 제66조의6제1항에서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 12. 23.>

② 법 제66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개정 2022. 2. 11.>

1. 파면ㆍ해임: 10년
2. 강등: 9년
3. 정직: 7년
4. 감봉ㆍ견책: 5년

[본조신설 2021. 6. 22.]

**제27조의2(사무직원의 신규채용)** ① 법 제70조의3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은 법 제70조의2제2항에 따른 사무직원의 임용권자(이하 이 조에서 “사무직원임용권자”라 한다)가 실시한다.

② 사무직원임용권자는 시ㆍ도 교육감에게 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법 제70조의3제3항에 따라 사무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에 응시할 수 없다. 이 경우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공개전형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④ 사무직원임용권자가 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채용분야ㆍ채용인원 및 지원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 마감일 20일 전까지 시ㆍ도 교육청 및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은 필기시험, 실기시험, 면접시험 및 서류전형 등 채용하려는 직무분야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⑥ 사무직원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전형결과 등의 공개를 요구할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전형결과 등의 공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무직원 공개전형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직원임용권자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2. 2. 11.]

**제28조(권한의 위임)** 교육부장관은 법 제71조에 따라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 7. 5., 2013. 3. 23.>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설립허가
2.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해산인가
3.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합병인가
4.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정관변경 보고의 접수

4의2.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

5.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해산명령

6. 법 제47조의2에 따른 청문(제5호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한정한다)

[전문개정 2011. 6. 9.]

**제28조의2(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대상)** 법 제72조의5제2항제3호에 따라 사립학교경영자, 학교법인의 임직원 및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이하 "사학기관종사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자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다만, 사학기관종사자가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단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1. 사학기관종사자 자신이 법 제72조의5제2항제1호 각 목의 직무관련자(이하 "직무관련자"라 한다)인 경우
2. 사학기관종사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사학기관종사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사학기관종사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사학기관종사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사학기관종사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7. 그 밖에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본조신설 2022. 3. 22.]

[종전 제28조의2는 제28조의3으로 이동 <2022. 3. 22.>]

**제28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교육부장관, 교육감 및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 8. 2., 2020. 3. 10.>

1. 법 제54조에 따른 임용에 관한 보고 및 해임 등의 요구에 관한 사무
2. 법 제54조의3에 따른 임명의 제한에 관한 사무
3. 법 제64조에 따른 징계의결의 요구에 관한 사무

② 교육부장관, 교육감 및 이사회는 법 제22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신설 2020. 3. 10.>

[본조신설 2014. 8. 6.]

[제28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8조의3은 제28조의4로 이동 <2022. 3. 22.>]

**제28조의4(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 3. 3., 2022. 3. 22., 2022. 8. 9.>

1. 제7조의2에 따른 개방이사의 추천ㆍ선임 등: 2022년 1월 1일
2. 제9조의2에 따른 시정요구 없는 임원취임의 승인취소에 대한 세부기준: 2022년 1월 1일
3. 제9조의4에 따른 교육경험의 범위: 2022년 1월 1일
4. 제11조에 따른 기본재산의 처분 등: 2017년 1월 1일
5. 제12조에 따른 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등: 2017년 1월 1일
6.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 선정 기준: 2023년 1월 1일
7. 제21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 실시의 예외 및 시ㆍ도교육감 위탁 실시의 예외: 2022년 3월 25일

[전문개정 2016. 12. 30.]

[제28조의3에서 이동 <2022. 3. 22.>]

**제2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 3. 19., 2020. 3. 10.>

[전문개정 2018. 5. 28.]

**제30조** 삭제 <2013. 7. 22.>

**부칙** <제4396호,1969. 12. 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52호,1976. 1. 1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76호,1976. 11. 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금융기관이 행한 학교법인의 재산에 대한 평가는 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업자가 행한 평가로 본다.

**부칙** <제9347호,1979. 2. 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19호,1981. 5. 2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9조의2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중 공인회계사인 감사가 없는 학교법인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60일이내에 감사중 1인을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부칙** <제11304호,1983. 12. 30.>(위원회정비를위한산업합리화심의회규정등의폐지및물품관리법시행령등의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945호,1986. 7. 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개방대학의 감사에 관한 경과조치) 개방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선임되는 감사부터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2781호,1989. 8. 18.>(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⑧사립학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중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업자"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로 한다.

⑨내지2# 생략

**제4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제13057호,1990. 7. 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교육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중 "교육장"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교육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이를 "교육감"으로 본다.

**부칙** <제13282호,1991. 2. 1.>(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사립학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6조제1항, 제10조, 제12조, 제21조제1항 및 제28조중 " 문교부장관 " 을 각각 " 교육부장관 " 으로 하고, 제17조제2항중 " 문교부령 " 을 " 교육부령 " 으로 한다.

⑭내지 <148>생략

**부칙** <제13389호,1991. 6. 19.>(교원징계처분등의재심에관한규정)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사립학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3855호,1993. 2. 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55호,1997. 8.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75호,1997.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제15조의2 내지 제15조의4의 개정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학교법인의 해산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0. 12. 30., 2004. 4. 6.>

**부칙** <제15922호,1998. 11. 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85호,2000. 12.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15호,2001. 1. 29.>(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3# 생략

3$ 사립학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6조제1항, 제10조, 제14조제3항제2호, 제21조제1항 본문 및 제28조 본문중 " 교육부장관 " 을 각각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 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중 " 교육부령 " 을 " 교육인적자원부령 " 으로 한다.

3% 내지 <152>생략

**부칙** <제17556호,2002. 3.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54호,2002. 12. 30.>(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5>생략

1^ 사립학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제2호중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또는 토지수용법 " 을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 로 한다.

1& 내지3*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8312호,2004. 3. 17.>(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60호,2004. 4. 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90호,2005. 1. 29.>(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사립학교법 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 " 을 " 「유아교육법」 제8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3항,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 " 으로 한다.

③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9507호,2006. 6. 12.>(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46호,2006. 6. 23.>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62호,2007. 11. 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학교법인 임시이사의 선임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폐지한다.

**부칙** <제20740호,2008. 2. 29.>(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3@ 까지 생략

3#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6조제1항, 제7조의2제7항, 제9조의7제2항, 제10조 및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 을 각각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 교육인적자원부령 ”을 “ 교육과학기술부령 ”으로 한다.

3$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 <제20798호,2008. 6.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215호,2008. 12. 31.>(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274호,2009. 1. 28.>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151호,2010. 5. 4.>(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2> 까지 생략

<93>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 및 제4조제5항 중 “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을 각각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으로 한다.

<94>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제22971호,2011. 6.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2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임사무가 변경된 부분에 대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2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3928호,2012. 7. 4.>(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3936호,2012. 7. 5.>

이 영은 201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974호,2012. 7. 24.>

이 영은 201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423호,2013. 3. 2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4조제5항, 제6조제1항, 제7조의2제7항, 제9조의8제2항, 제10조, 제23조 전단 및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55>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 <제24665호,2013. 7.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인회계사를 감사로 선임하여야 하는 학교법인의 확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감사로 선임하지 아니한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 후 임기만료 등으로 감사를 선임할 때까지는 제9조의4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5050호,2013. 12. 30.>(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407호,2014. 6. 30.>

이 영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532호,2014. 8. 6.>(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840호,2014. 12. 9.>(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7129호,2016. 5. 10.>(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416호,2016. 8.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10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6항 및 같은 조 제7항제1호 중 “ 임면보고 ”를 각각 “ 임용보고 ”로 한다.

**부칙** <제27472호,2016. 8. 31.>(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11조제1항제2호 중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을 각각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으로 한다.

<55>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7751호,2016. 12. 30.>(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8697호,2018. 3. 13.>(인ㆍ허가 처리기한 도입을 위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3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적용례) ①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매도ㆍ증여ㆍ교환 또는 담보제공이나 용도변경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허가신청ㆍ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립학교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해산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립학교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합병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28903호,2018. 5. 28.>

이 영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946호,2018. 6. 5.>(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등 1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997호,2018. 6.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견 청취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6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심의가 계속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29269호,2018. 10. 30.>(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2) 까지 생략

2!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3항제1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한다.

제14조의3제1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1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가목”으로 한다.

2@ 부터 <51>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29623호,2019. 3.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의결의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전에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제24조의8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24조의8 본문에 따른다.

② 제24조의8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29950호,2019. 7. 2.>(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0108호,2019. 10. 8.>

이 영은 2019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509호,2020. 3. 3.>(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514호,2020. 3.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 제2호가목2)ㆍ4) 및 같은 호 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칙** <제31049호,2020. 9.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10호, 제7조의2제5항, 제8조의3제1항, 제9조의2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10조의6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4조의6의 개정규정 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교원에 대한 부분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방이사의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7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 시행일 전에 선임된 개방이사의 자격요건에 관하여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방이사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회의록의 공개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8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일 전에 이사회의 회의록을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한 경우 그 공개기간에 관하여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시정요구 없는 임원취임 승인취소의 세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9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 시행일 전에 발생한 임원의 회계부정이나 횡령ㆍ배임을 사유로 하는 임원취임의 승인취소에 관하여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1176호,2020. 11. 24.>(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380호,2021. 1. 5.>(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787호,2021. 6.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가 의견서 첨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352호,2022. 1. 21.>(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3^ 까지 생략

3&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 감정평가업자 "를 " 감정평가법인등 "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 감정평가업자 "를 " 감정평가법인등 "으로 한다.

3* 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제32410호,2022. 2. 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 제12조의2, 제27조제2항제2호, 제27조의2 및 별표 2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546호,2022. 3. 22.>

이 영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854호,2022. 8.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의 선정 절차 및 지정외부감사인의 지정 절차에 관한 특례) 2022년 회계연도에 대하여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제14조의2제2항、제5항、제6항、제8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1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 선정기준일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외부감사인 지정일: 2022년 11월 15일
2. 제14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외부감사인 지정 신청서류 제출 기한: 2022년 9월 15일
3. 제14조의2제8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 선정 및 지정외부감사인 지정 예정 사실 통지 기한과 같은 조 제10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감사계약 체결 기한: 제1호

에 따른 선정기준일을 기준으로 계산

**부칙** <제32868호,2022. 8. 9.>(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527호,2023. 6. 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843호,2024. 8.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립금 현황 및 사용내역에 대한 실태점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의 적립금 현황 및 사용내역에 대한 실태점검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4931호,2024. 10.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견 청취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7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심의가 계속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5746호,2025. 9. 16.>

이 영은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22호,2025. 12. 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립학교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8. 5. 28.>

## 겸직교원 수 산정 기준(제24조의3제2항 관련)

| |
|---|
| 겸직교원 수 = (대학의 임상교육 필요 학생정원 × 1) + (전문대학원의 임상교육 필요 학생정원 × 2) + (일반대학원의 임상교육 필요 학생정원 × 1.5) |

비고

1. 대학의 임상교육 필요 학생정원: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의학·한의학 또는 치의학 전공 학생정원 중 예과 1·2학년의 정원을 제외한 정원(예과 과정이 없는 경우에는 전체 정원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정원)
2. 전문대학원의 임상교육 필요 학생정원: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의학·한의학 또는 치의학 전공 학생정원
3. 일반대학원의 임상교육 필요 학생정원: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의학·한의학 또는 치의학 전공 학생정원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정원. 이 경우 의학·한의학 또는 치의학 전공 학생정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공별로 학칙에서 정하는 정원으로 한다.
4. 위 계산식에 따라 계산할 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 사립학교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2. 3. 22.>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 | |
|---|---|---|---|---|
| |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이상 위반 |
| 가. 학교법인의 이사장·감사 또는 청산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이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 | |
| 1) 이 법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4조제2항 제1호 | | | |
| 가) 등기 지연 기간이 1개월 미 | | 200 | | |

| | | | | |
|---|---|---|---|---|
| 만인 경우 | | | | |
| 나) 등기 지연 기간이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 | | 300 | |
| 다) 등기 지연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 | 500 | |
| 2)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않거나 공고해야 할 사항을 허위로 또는 누락하여 공고한 경우 | 법 제74조제2항 제2호 | 150 | 300 | 500 |
| 3) 법 제13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재산목록 또는 법 제32조(법 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37조제1항에 따른 재산목록, 그 밖의 서류를 비치하지 않거나 이에 기재할 사항을 허위로 또는 누락하여 기재한 경우 | 법 제74조제2항 제3호 | | 300 | |
| 4) 법 제19조제4항제3호·제48조(법 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보고해야 할 사항을 허위로 또는 누락하여 보고한 경우 | 법 제74조제2항 제4호 | 150 | 300 | 500 |
| 5)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4조제2항 제4호의2 | | | |
| 가) 신고 지연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 | 200 | |
| 나) 신고 지연 기간이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 | | 300 | |
| 다) 신고 지연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 | 500 | |
| 6) 법 제31조(법 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 | 법 제74조제2항 제5호 | | 300 | |

| | | | | |
|---|---|---|---|---|
| 37조제2항 또는 제38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 | | | |
| 7) 법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79조 또는 제93조제1항에 따른 파산선고의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4조제2항 제6호 | | 300 | |
| 8) 법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88조제1항 또는 제93조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않거나 공고할 사항을 허위로 또는 누락하여 공고한 경우 | 법 제74조제2항 제7호 | | 300 | |
| 9) 법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86조 또는 제94조에 따른 신고를 태만하거나 부실한 신고를 한 경우 | 법 제74조제2항 제8호 | | 300 | |
| 10) 법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90조를 위반한 경우 | 법 제74조제2항 제9호 | | 300 | |
| 11) 법 제72조의3에 따른 공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 법 제74조제2항 제10호 | 150 | 300 | 500 |
| 나.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법 제32조의2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보고해야 할 사항을 거짓으로 또는 누락하여 보고한 경우 | 법 제74조제3항 | 150 | 300 | 500 |
| 다.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보고를 한 경우 | 법 제74조제4항 | 150 | 300 | 500 |
| 라. 사립학교 교원 또는 사무직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을 말한다)의 임용권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 | |

| | | | | |
|---|---|---|---|---|
| 1) 법 제54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관할청의 해임 또는 징계 요구를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74조제1항 제1호 | 300 | 600 | 1,000 |
| 2) 법 제54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관할청의 해임 요구를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74조제1항 제2호 | 300 | 600 | 1,000 |
| 3) 법 제6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재심의를 요구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4조제1항 제3호 | 300 | 600 | 1,000 |
| 4) 법 제66조의2제5항 전단(법 제70조의6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4조제1항 제4호 | 300 | 600 | 1,000 |
| 5) 법 제70조의5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관할청의 징계의결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74조제1항 제5호 | 300 | 600 | 1,000 |
| 6) 법 제70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재심의를 요구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4조제1항 제6호 | 300 | 600 | 1,000 |
| 7) 법 제70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관할청의 해임 요구를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74조제1항 제7호 | 300 | 600 | 1,000 |
| 8) 법 제72조의5제4항제2호에 따른 관할청의 시정명령을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74조제1항 제8호 | 200 | 300 | 500 |

■ 사립학교법 시행령 [별지 서식] <개정 2021. 6. 22.>

# 전문가 의견서

| 사 건 명 | |
|---|---|

전문가 인적사항

| 소속 및 직위 | 성 명 | 연락처 |
|---|---|---|
| | | |

전문가 의견

※ 사건의 경위, 피해자의 진술내용 및 피해정도(신체·정신 및 심리 상태) 등을 고려해 사건에 대한 의견을 작성

위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인 성명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

# 사립학교보조와원조에관한건

[시행 2013. 3. 23.] [교육부령 제1호, 2013. 3. 23., 타법개정]

교육부 (사립대학지원과) 044 - 203 - 6959
교육부 (학교정책과) 044 - 203 - 6702

**제1조(목적)** 이 영은 사립학교교육의 조성을 위하여 행하는 보조 또는 원조(이하 "보조"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와 결정)** ①교육부장관은 매년도 보조의 대상이 되는 학교법인에 대하여 그 보조 예정을 통지하고, 보조신청서를 제출하게 한다. <개정 1991. 3. 16., 2001. 1. 31., 2008. 3. 4., 2013. 3. 23.>

②교육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으로부터 제출된 보조신청서에 대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관계학교법인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1. 3. 16., 2001. 1. 31., 2008. 3. 4., 2013. 3. 23.>

**제3조(보조의 교부)** 학교법인에 대한 보조는 국가의 예산집행계획 또는 원조계획에 따라 매년 4기로 나누어 교부한다.

**제4조(보조의 사업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①학교법인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결정통지한 교부목적 이외에 보조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91. 3. 16., 2001. 1. 31., 2008. 3. 4., 2013. 3. 23.>

②교육부장관은 학교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교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1. 3. 16., 2001. 1. 31., 2008. 3. 4., 2013. 3. 23.>

1.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조성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폐지한 때
3. 조성을 위한 감독청의 예산변경권고에 따르지 아니할 때
4. 사립학교법 또는 동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감독청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
5. 조성의 결과가 저조하여 계속조성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거나 조성의 목적을 달성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때
6. 조성사업의 보고가 허위인 사실이 발견된 때

**제5조(보고와 감독)** ①보조를 받은 학교법인은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 3. 16., 2001. 1. 31., 2008. 3. 4., 2013. 3. 23.>

1. 보조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사업개시보고서
2. 보조에 대한 매분기의 경리보고서

3. 조성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사업종료(실적)보고서
4. 학교법인의 명칭, 대표자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명칭등의 변경보고서
5. 기타 교육부장관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

②교육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받은 학교법인에 대하여 그 조성사업의 진도와 경리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1. 3. 16., 2001. 1. 31., 2008. 3. 4., 2013. 3. 23.>

**부칙** <제243호,1969. 7. 1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4호,1991. 3. 16.>(각종학교에관한규칙등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9호,2001. 1. 31.>(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2$ 생략

2% 사립학교보조와원조에관한건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본문 및 단서ㆍ제2항 본문 및 제5조제1항 본문ㆍ제5호ㆍ제2항중 " 교육부장관 " 을 각각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 으로 한다.

2^ 내지4! 생략

**부칙** <제1호,2008. 3. 4.>(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2$ 까지 생략

2% 사립학교보조와원조에관한건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 을 각각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으로 한다.

2^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 <제1호,2013. 3. 2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3! 까지 생략

3@ 사립학교보조와원조에관한건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을 각각 " 교육부장관 "으로 한다.

3# 부터 <61>까지 생략

# 사립학교보조와원조에관한건

[시행 2013. 3. 23.] [교육부령 제1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사립학교교육의 조성을 위하여 행하는 보조 또는 원조(이하 "보조"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와 결정)** ①교육부장관은 매년도 보조의 대상이 되는 학교법인에 대하여 그 보조 예정을 통지하고, 보조신청서를 제출하게 한다. <개정 1991. 3. 16., 2001. 1. 31., 2008. 3. 4., 2013. 3. 23.>

②교육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으로부터 제출된 보조신청서에 대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관계학교법인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1. 3. 16., 2001. 1. 31., 2008. 3. 4., 2013. 3. 23.>

**제3조(보조의 교부)** 학교법인에 대한 보조는 국가의 예산집행계획 또는 원조계획에 따라 매년 4기로 나누어 교부한다.

**제4조(보조의 사업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①학교법인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결정통지한 교부목적 이외에 보조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91. 3. 16., 2001. 1. 31., 2008. 3. 4., 2013. 3. 23.>

②교육부장관은 학교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교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1. 3. 16., 2001. 1. 31., 2008. 3. 4., 2013. 3. 23.>

1.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조성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폐지한 때
3. 조성을 위한 감독청의 예산변경권고에 따르지 아니할 때
4. 사립학교법 또는 동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감독청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
5. 조성의 결과가 저조하여 계속조성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거나 조성의 목적을 달성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때
6. 조성사업의 보고가 허위인 사실이 발견된 때

**제5조(보고와 감독)** ①보조를 받은 학교법인은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 3. 16., 2001. 1. 31., 2008. 3. 4., 2013. 3. 23.>

1. 보조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사업개시보고서
2. 보조에 대한 매분기의 경리보고서
3. 조성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사업종료(실적)보고서

4. 학교법인의 명칭, 대표자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명칭등의 변경보고서
5. 기타 교육부장관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
②교육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받은 학교법인에 대하여 그 조성사업의 진도와 경리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1. 3. 16., 2001. 1. 31., 2008. 3. 4., 2013. 3. 23.>

**부칙** <제243호,1969. 7. 1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4호,1991. 3. 16.>(각종학교에관한규칙등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9호,2001. 1. 31.>(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2$ 생략
2% 사립학교보조와원조에관한건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본문 및 단서ㆍ제2항 본문 및 제5조제1항 본문ㆍ제5호ㆍ제2항중 " 교육부장관 " 을 각각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 으로 한다.
2^ 내지4! 생략

**부칙** <제1호,2008. 3. 4.>(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2$ 까지 생략
2% 사립학교보조와원조에관한건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 을 각각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으로 한다.
2^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 <제1호,2013. 3. 2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3! 까지 생략

3@ 사립학교보조와원조에관한건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을 각각 " 교육부장관 "으로 한다.

3# 부터 <61>까지 생략

#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교육부 (의대교육기반과) 044 - 203 - 6945

**제1조(목적)** 이 법은 서울대학교병원을 설치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의학, 간호학 및 약학 등에 관한 교육ㆍ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2조(법인)** 서울대학교병원(이하 “ 대학병원 ”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3조(설립)** ① 대학병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학병원은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원(分院)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4조(정관)** ① 대학병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의학, 간호학 및 약학 등(이하 “ 의학계 ”라 한다)의 교육ㆍ연구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조직에 관한 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12. 해산(解散)에 관한 사항

② 대학병원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3. 17.]

**제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대학병원이 아니면 서울대학교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6조(사업)** 대학병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4. 1. 7., 2022. 9. 27.>

1.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이하 “ 서울대학교 ”라 한다) 의학계 학생의 임상교육(臨床敎育)
2. 전공의(專攻醫)의 수련과 의료 요원의 훈련
3. 의학계 관련 연구

3의2. 의학계와 이공계[이학(理學)ㆍ공학(工學)을 말한다] 등 다른 학문과 융합에 기반을 둔 응용학문(이하 “ 융합의학 ”이라 한다)의 교육 및 연구

4. 임상연구
5. 진료사업
6.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사업
7. 그 밖에 국민보건 향상에 필요한 사업

[전문개정 2010. 3. 17.]

**제7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책무)** ① 대학병원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대학병원은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 7.]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4. 1. 7.>]

**제7조의2(융합의학 전문인력의 양성)** ① 정부는 융합의학 전문인력의 양성을 지원 및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

② 대학병원은 융합의학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9. 27.]

**제8조(임원)** ① 대학병원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9명과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서울대학교 총장이 되며,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 당연직 이사 ”라 한다)과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중에는 병원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인사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5. 10. 1.>

1. 교육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보건복지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
2. 대학병원장, 서울대학교의 의과대학장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장

③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다.

④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개정 2013. 3. 23.>

⑤ 감사는 대학병원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監査)한다.

⑥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감사 또는 대학병원장이 될 수 없다.
⑦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감사 또는 대학병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퇴직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4. 1. 7.>]
[시행일: 2026. 1. 2.] 제8조제2항제1호의 개정부분 중 재정경제부 및 기획예산처에 관한 부분

**제9조(이사회)** ① 대학병원에는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4. 1. 7.>
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조직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4.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및 시행결과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③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④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14. 1. 7.>]

**제10조(대학병원장)** ① 대학병원에는 대학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대학병원을 대표하며, 대학병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개정 2013. 3. 23.>
④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2. 회계부정(會計不正)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대학병원의 운영에 지장을 준 경우
3. 심신 장애로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⑦ 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장을 해임하려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정수(定數)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해임을 건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4. 1. 7.>]

**제10조의2**
[종전 제10조의2는 제11조의2로 이동 <2014. 1. 7.>]

**제11조(직원 등의 임면)** ① 대학병원에는 필요한 의료 요원과 직원을 둔다.
② 의료 요원과 직원의 임면(任免)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14. 1. 7.>]

**제11조의2(임상교수요원)** ① 대학병원에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임상교수요원(臨床教授要員)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상교수요원의 직명(職名) 및 자격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16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임상교수요원을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의 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대학병원에서 임상교수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서울대학교의 교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4. 1. 7.>
④ 임상교수요원의 임용기간, 임용절차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10조의2에서 이동 <2014. 1. 7.>]

**제12조(겸직)** ① 대학병원이 제6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대학병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다. <개정 2014. 1. 7.>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의 겸직은 원장의 요청에 따라 서울대학교 총장이 허가한다.<개정 2014. 1. 7.>
③ 제1항에 따라 대학병원의 직무를 겸하는 서울대학교의 교원의 직무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4. 1. 7.>
[전문개정 2010. 3. 17.]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14. 1. 7.>]

**제13조(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정부는 대학병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학병원에 국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무상으로 양여(讓與)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14. 1. 7.>]

**제14조(출연 또는 보조)** ① 정부는 대학병원의 기본 시설ㆍ설비 등을 위하여 출연금(出捐金)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대학병원의 의학계 교육 및 연구에 드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부가 보조한다.
③ 대학병원의 운영비 및 시설ㆍ설비에 드는 경비와 차관(借款)의 원리금 상환 경비는 대학병원의 수익으로 충당한다. 다만, 부족한 경우에는 정부가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14. 1. 7.>]

**제15조(사업연도)** 대학병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14. 1. 7.>]

**제16조(회계의 관리)**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병원의 회계를 관리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14. 1. 7.>]

**제17조(사업계획 등의 보고)**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대학병원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3. 17.]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14. 1. 7.>]

**제18조(결산서의 제출)** 원장은 사업연도마다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3. 17.]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14. 1. 7.>]

**제19조(감독)** 교육부장관은 대학병원을 감독하며, 필요한 사항의 보고나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3. 17.]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14. 1. 7.>]

**제20조(「민법」의 준용)** 대학병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14. 1. 7.>]

**제21조(과태료)** ① 제5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 12. 18.>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3. 17.]
[제20조에서 이동 <2014. 1. 7.>]

**부칙** <제3056호,1977.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준비) ①문교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대학병원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대학병원의 설립을 위하여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무상양여가 있는 때에는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없이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국유재산의 무상승계) 이 법 시행당시의 국립대학교부속병원특별회계에 속하는 서울대학교의 의과대학부속병원 및 치과대학부속병원소관 국유재산은 일반회계가 이를 무상으로 승계하며 그 승계한 국유재산중 대학병원운영에 필요한 것은 이를 대학병원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4조** (채권·채무의 승계) 대학병원설립일 당시의 국립대학교부속병원특별회계에 속하는 서울대학교의 의과대학부속병원 및 치과대학부속병원의 채권·채무는 대학병원이 이를 승계한다.

**제5조** (예산의 교부 등) ①1978연도 국립대학교부속병원특별회계중 서울대학교의 의과대학부속병원 및 치과대학부속병원특별회계에 교부될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예산중 교부받지 아니한 것은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대학병원에 교부한다.

②원장은 이 법에 의하여 대학병원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1978년도 국립대학교부속병원특별회계예산중 서울대학교의 의과대학부속병원 및 치과대학부속병원소관예산을 종전의 예에 따라 지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된 경비는 대학병원의 당해연도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원장임명의 특례) 이 법에 의한 최초의 원장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울대학교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7조** (공무원 파견) 대학병원설립일 당시 서울대학교의 의과대학부속병원 및 치과대학부속병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중 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1년의 기간내에서 대학병원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3458호,1981. 11. 23.>(교육공무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의 개정)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 교육공무원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 " 를 " 국가공무원법 제64조 " 로 한다.

**제10조** 생략

**부칙** <제4268호,1990. 12. 27.>(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2( 생략

3)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9조제2항 및 제16조 내지 제18조중 " 문교부장관 " 을 각각 " 교육부장관 " 으로 한다.

제7조제2항중 " 문교부차관 " 을 " 교육부차관 " 으로 한다.

3! 내지5) 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제4424호,1991. 12. 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상교수요원의 경력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대학병원에서 임상교수요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를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이 법 시행전에 임상교수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는 제10조의2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4878호,1995. 1. 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임명되는 원장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454호,1997. 12. 13.>(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5982호,1999. 5. 24.>(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2@ 생략

2#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차관·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2$ 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제6101호,1999. 12. 31.>(기금관리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0호를 삭제한다.

제13조의 제목 "(基金 및 補助金등)"을 "(補助金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삭제하며, 동조제2항중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조성과"를 "정부는"으로 한다.

⑦내지2@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6400호,2001. 1. 29.>(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1* 생략

1(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9조제3항 및 제16조 내지 제18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중 "교육부차관"을 "교육인적자원부차관"으로 한다.

2) 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6712호,2002. 8. 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감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감사의 임기는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6892호,2003. 5. 29.>(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4조제1항제5호중 " 의학ㆍ치의학 " 을 각각 " 의학 " 으로 한다.

제7조제2항중 " 치과대학장 " 을 " 서울대학교치과병원장 " 으로 한다.

**부칙** <제8852호,2008. 2. 29.>(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5> 까지 생략

<86>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 을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 교육인적자원부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ㆍ기획예산처차관 " 을 " 교육과학기술부차관ㆍ보건복지가족부차관ㆍ기획재정부차관 " 으로,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 을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 을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제16조 전단, 제17조, 제18조 중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 을 각각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으로 한다.

<8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932호,2010. 1. 18.>(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3> 까지 생략

<64>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 보건복지가족부차관 ” 을 “ 보건복지부차관 ” 으로 한다.

<65>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069호,2010. 3. 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1690호,2013. 3. 23.>(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4( 까지 생략

5)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3항, 제16조 전단, 제17조, 제18조 및 제20조제2항 중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을 각각 “ 교육부장관 ” 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 교육과학기술부차관 ” 을 “ 교육부차관 ” 으로 한다.

<5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179호,2014. 1. 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겸직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대학병원의 직무를 겸하는 서울대학교 교원으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이후 임용된 교원은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이후에 교육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제1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학병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다.

**제3조**(소급적용)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28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15955호,2018. 12. 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980호,2022. 9. 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065호,2025. 10. 1.>(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3>까지 생략

<64>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보건복지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

<65>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시행령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8호, 2025. 12. 30., 타법개정]

교육부 (의대교육기반과) 044 - 203 - 6945

**제1조(목적)** 이 영은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5. 7.>

**제2조(설립등기)** ①서울대학교병원(이하 " 대학병원 " 이라 한다)의 설립등기는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대표권에 관한 사항
6. 공고의 방법

**제3조(변경등기)** 대학병원은 제2조제2항 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3주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4조(첨부서류)** 제2조제1항ㆍ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 등기에 있어서는 대학병원의 정관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기에 있어서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제5조(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의 효력)** 설립등기 이외의 등기를 하여야 할 사항은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6조** 삭제 <2002. 12. 11.>

**제7조(감사의 직무)** ①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대학병원 재산상황의 감사
2. 회계 및 이와 관련된 업무의 감사
3. 기타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의 감사

②감사는 감사결과 부정ㆍ불비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이사회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1. 2. 1., 2002. 12. 11., 2008. 2. 29., 2013. 3. 23.>

③감사의 업무수행방법과 절차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이사회)** ① 삭제 <2002. 12. 11.>

②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이사회는 법령이나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2. 12. 11.>

④「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병원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인사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을 3년 이상 경영한 경력이 있거나 종합병원에서 진료 또는 행정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신설 2002. 12. 11., 2019. 5. 7.>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장의 직무대행)**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할 이사와 그 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2. 30.>

1. 교육부차관
2. 보건복지부차관
3. 기획예산처차관
4. 대학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5. 서울대학교의 의과대학장
6. 서울대학교치과병원장

[전문개정 2019. 5. 7.]

**제10조(원장의 추천)**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원장으로 추천해야 한다. <개정 2019. 5. 7., 2022. 8. 9.>

1.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을 포함한다)의 교원으로서 1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2.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으로서 10년 이상의 의료경력이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원장으로 추천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에 제출해야 하며, 이사장은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 8. 9.>

1. 병원경영계획서 및 연도별 경영실천계획서
2. 병원공공성강화계획서 및 연도별 공공성강화실천계획서(계획서별로 법 제6조제6호의 공공보건의료사업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

[전문개정 1999. 4. 19.]

**제11조(원장의 직무대행)**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사람과 그 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8. 9.>

1. 진료부원장
2. 소아진료부원장

3. 공공부원장
4. 행정처장
[전문개정 2019. 5. 7.]

**제12조(하부조직)** ①대학병원에는 원장 밑에 진료부문ㆍ소아진료부문ㆍ공공부문ㆍ행정처ㆍ기획조정실ㆍ교육연구부 및 홍보실을 두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1985. 2. 22., 1994. 5. 26., 1997. 4. 4., 1999. 4. 19., 2002. 12. 11., 2004. 3. 9., 2022. 8. 9.>
② 진료부문ㆍ소아진료부문 및 공공부문에 각각 부원장 1명을, 행정처에 처장 1명을, 기획조정실 및 홍보실에 각각 실장 1명을, 교육연구부에 부장 1명을 두되, 대학병원의 실정에 따라 겸임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 8. 9.>
③부원장 및 행정처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원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각 부문의 부원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대학병원의 직무를 겸하는 교원(이하 “겸직교원”이라 한다) 중에서 임명해야 한다.<개정 1997. 4. 4., 2019. 5. 7., 2022. 8. 9.>
④ 제1항에 따른 공공부문은 법 제6조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총괄ㆍ조정 업무를 담당한다.<신설 2022. 8. 9.>
⑤ 제1항에 따른 부문ㆍ처ㆍ실 및 부의 업무분장과 그 밖의 하부조직의 구성 및 업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신설 2022. 8. 9.>

**제13조(겸직교원의 직무와 보수)** ①겸직교원으로서 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직위에 보직된 자에 대하여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수시간을 면제 또는 감축 할 수 있다. <개정 1999. 4. 19.>
②겸직교원의 보수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개정 1985. 2. 22., 2001. 1. 4., 2011. 9. 6.>
③겸직교원에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병원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겸직교원은 대학병원의 정관과 각종 규정을 준수하며, 성실히 병원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2.>

**제14조(겸직해제 등)** 원장은 겸직교원이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된 때에는 정관이 정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총장에게 겸직해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85. 2. 22., 2011. 9. 6.>

**제15조** 삭제 <2002. 12. 11.>

**제16조(출연금의 요구)** 대학병원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으려는 경우 매년 4월 30일까지 출연금 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추정 재무상태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출연금 요구서의 내용을 분명히 밝히는 데 필요한 서류
[전문개정 2019. 5. 7.]

**제17조(출연금 교부신청)**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요구내용이 정부예산에 반영된 경우, 대학병원이 출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와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 2. 1., 2002. 12. 11., 2008. 2. 29., 2013. 3. 23.>

**제18조(보조금의 요구 및 교부신청)** ① 대학병원은 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는 경우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학계 교육 및 연구를 위한 보조금, 시설ㆍ설비의 운영을 위한 보조금 및 차관의 원리금 상환을 위한 보조금으로 구분한 보조금 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5. 7.>
1. 의학계 교육계획서 및 임상 연구계획서(의학계 교육 및 연구를 위한 보조금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시설ㆍ설비의 운영계획서(시설ㆍ설비의 운영을 위한 보조금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차관의 원리금 상환계획서(차관의 원리금 상환을 위한 보조금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추정 손익계산서
5. 그 밖에 보조금 요구서의 내용을 분명히 밝히는 데 필요한 서류

②보조금의 교부신청에 관하여는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 삭제 <2002. 12. 11.>

**제20조(잉여금의 처리)** 대학병원은 매 사업연도말에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월손익을 보전하고, 잔여금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2. 11.>

**제21조(사업계획 등의 보고)** 원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사업별 예상 수입ㆍ지출금액이 드러나도록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해 사업연도 개시 20일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9. 5. 7.]

**제22조(세입ㆍ세출결산서의 제출)** 원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세입ㆍ세출결산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수입ㆍ지출결산서
2.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3. 감사의 감사보고서
[전문개정 2019. 5. 7.]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18. 4. 24.]

**부칙** <제9050호,1978. 6. 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비용) ①대학병원의 설립에 필요한 비용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위원이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차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비용은 대학병원이 이를 부담한다.

**제3조** (국유재산의 무상사용)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회계가 무상으로 승계한 국유재산은 대학병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할 때까지 국립대학교부속병원특별회계에 속하는 서울대학교의 의과대학부속병원 및 치과대학부속병원 소관에 각각 무상으로 사용허가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전출금의 교부) 1978회계연도 국립대학 교부속병원특별회계중 서울대학교의과대학 및 치과대학부속병원에 교부할 일반회계 전출금예산의 미교부액은 출연금으로 대학병원에 교부한다.

**제5조** (결산잉여금의 교부) 대학병원성립이전의 국립대학교부속병원특별회계중 서울대학교의 의과대학부속병원 및 치과대학부속병원의 세계잉여금과 1978년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및 치과대학 부속병원의 세입액에서 세출액을 공제한 잔액은 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병원에 교부한다.

**부칙** <제11636호,1985. 2. 2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82호,1991. 2. 1.>(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3! 생략

3@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 제7조제2항, 제16조 내지 제18조, 제19조제2항ㆍ제3항, 제21조 및 제22조중 " 문교부장관 " 을 각각 " 교육부장관 " 으로 한다.

3# 내지 <148>생략

**부칙** <제14269호,1994. 5. 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35호,1997. 4. 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51호,1999. 4. 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04호,2001. 1. 4.>(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 공무원수당규정 " 을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 으로 한다.
⑪내지 ⑭생략

**부칙** <제17798호,2002. 12. 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07호,2004. 3. 9.>(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중 " 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 " 을 " 의과대학 " 으로 한다.
제11조중 " 치과진료부원장, 소아진료부원장 " 을 " 소아진료부원장 " 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 치과진료부문ㆍ소아진료부문 " 을 " 소아진료부문 " 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 진료부문ㆍ치과진료부문 " 을 " 진료부문 " 으로 한다.
②생략

**부칙** <제20740호,2008. 2. 29.>(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3% 까지 생략

3^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전단 및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을 각각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으로 한다.

3&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 <제23116호,2011. 9. 6.>(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이 ”를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에서 ”로 한다.

제14조 중 “ 서울대학교총장 ”을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총장 ”으로 한다.

③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24423호,2013. 3. 2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전단 및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을 각각 “ 교육부장관 ”으로 한다.

<60>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 <제28811호,2018. 4. 24.>(과태료 규정 정비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9개 대통령령 일부 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729호,2019. 5.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950호,2019. 7. 2.>(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2860호,2022. 8.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48호,2025. 12. 30.>(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1( 까지 생략

2)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부차관
2. 보건복지부차관
3. 기획예산처차관

2! 부터 <176>까지 생략

■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시행령 [별표] <개정 2019. 5. 7.>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
| |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이상 위반 |
| 법 제5조를 위반하여 서울대학교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 법 제21조제1항 | 200만원 | 350만원 | 500만원 |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교육부 (의대교육기반과) 044 - 203 - 6945

**제1조(목적)** 이 법은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을 설치하여 치의학(齒醫學)에 관한 교육ㆍ연구와 진료를 함으로써 치의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구강보건(口腔保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2조(법인)**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하 “ 치과병원 ”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설립)** ① 치과병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치과병원은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원(分院)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4조(정관)** ① 치과병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치의학의 교육ㆍ연구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조직에 관한 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12. 해산(解散)에 관한 사항

② 치과병원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3. 17.]

**제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치과병원이 아니면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6조(사업)** 치과병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4. 1. 7.>

1.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이하 “ 서울대학교 ”라 한다) 치의학계 학생의 임상교육(臨床敎育)
2. 전공의(專攻醫)의 수련과 의료 요원의 훈련
3. 치의학계 관련 연구
4. 임상연구
5. 진료사업
6.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사업
7. 그 밖에 국민의 구강보건 향상에 필요한 사업

[전문개정 2010. 3. 17.]

**제7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책무)** ① 치과병원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치과병원은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 7.]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4. 1. 7.>]

**제8조(임원)** ① 치과병원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9명과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서울대학교 총장이 되며,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 당연직 이사 ”라 한다)과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중에는 병원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인사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 7., 2025. 10. 1.>

1. 교육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보건복지부차관) 및 기획예산처 차관
2. 치과병원장, 서울대학교의 치과대학장 및 서울대학교병원장

③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다.

④ 감사는 치과병원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監査)하며,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개정 2013. 3. 23.>

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감사 또는 치과병원장이 될 수 없다.

⑥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감사 또는 치과병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퇴직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4. 1. 7.>]

[시행일: 2026. 1. 2.] 제8조제2항제1호의 개정부분 중 재정경제부 및 기획예산처에 관한 부분

**제9조(이사회)** ① 치과병원에는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4. 1. 7.>

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조직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4.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및 시행결과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③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④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14. 1. 7.>]

**제10조(치과병원장)** ① 치과병원에는 치과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치과병원을 대표하며, 치과병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개정 2013. 3. 23.>

④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2. 회계부정(會計不正)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치과병원의 운영에 지장을 준 경우
3. 심신 장애로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⑦ 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장을 해임하려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정수(定數)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해임을 건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4. 1. 7.>]

**제11조(직원 등의 임면)** ① 치과병원에는 필요한 의료 요원과 직원을 둔다.

② 의료 요원과 직원의 임면(任免)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14. 1. 7.>]

**제12조(임상교수요원)** ① 치과병원에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임상교수요원(臨床敎授要員)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상교수요원의 직명(職名) 및 자격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16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임상교수요원을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의 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치과병원에서 임상교수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서울대학교의 교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4. 1. 7.>
④ 임상교수요원의 임용기간, 임용절차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14. 1. 7.>]

**제13조(겸직)** ① 치과병원이 제6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치과병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다. <개정 2014. 1. 7.>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의 겸직은 원장의 요청에 따라 서울대학교 총장이 허가한다.<개정 2014. 1. 7.>
③ 제1항에 따라 치과병원의 직무를 겸하는 서울대학교의 교원의 직무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4. 1. 7.>
[전문개정 2010. 3. 17.]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14. 1. 7.>]

**제14조(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정부는 치과병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치과병원에 국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무상으로 양여(讓與)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14. 1. 7.>]

**제15조(출연 또는 보조)** ① 정부는 치과병원의 기본 시설ㆍ설비 등을 위하여 출연금(出捐金)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치과병원의 치의학계 교육 및 연구에 드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부가 보조한다.
③ 치과병원의 운영비 및 시설ㆍ설비에 드는 경비와 차관(借款)의 원리금 상환 경비는 치과병원의 수익으로 충당한다. 다만, 부족한 경우에는 정부가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14. 1. 7.>]

**제16조(사업연도)** 치과병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14. 1. 7.>]

**제17조(회계의 관리)**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과병원의 회계를 관리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14. 1. 7.>]

**제18조(사업계획 등의 보고)**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치과병원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시작 20일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3. 17.]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14. 1. 7.>]

**제19조(결산서의 제출)** 원장은 사업연도마다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3. 17.]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14. 1. 7.>]

**제20조(감독)** 교육부장관은 치과병원을 감독하며, 원장에게 필요한 사항의 보고나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3. 17.]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14. 1. 7.>]

**제21조(「민법」의 준용)** 치과병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 <2014. 1. 7.>]

**제22조(과태료)** ① 제5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 12. 18.>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3. 17.]
[제21조에서 이동 <2014. 1. 7.>]

**부칙** <제6892호,2003. 5.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준비)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이 법 공포일부터 1년 이내에 7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치과병원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치과병원의 설립을 위하여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무상승계가 있는 때에는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없이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재산의 무상승계) 치과병원 설립일 당시 서울대학교병원 재산중 치과진료부가 사용중이거나 치과진료부에 귀속되는 재산은 치과병원이 이를 무상으로 승계한다.

**제4조** (채권ㆍ채무의 승계) 치과병원 설립일 당시 서울대학교병원의 채권ㆍ채무중 치과진료부 소관사항은 치과병원이 이를 승계한다.

**제5조** (경비의 지출) ①원장은 치과병원 설립일부터 이 법에 의하여 치과병원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당해연도 서울대학교병원 예산중 치과진료부 소관예산에서 필요경비를 종전의 예에 따라 지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된 경비는 치과병원의 당해연도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원장임명의 특례) 이 법에 의한 최초의 원장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울대학교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7조** (임상교수요원의 경력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치과병원 설립일 당시 치과병원에서 임상교수요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를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치과병원 설집일전에 서울대학교병원 임상교수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는 제11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8조** (직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치과병원 설립일 당시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제10조, 제10조의2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 치과진료부에 근무하는 겸직교원, 임상교수요원 및 직원은 치과병원 설립일에 치과병원 소속 겸직교원, 임상교수요원 및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4조제1항제5호중 “ 의학ㆍ치의학 ” 을 각각 “ 의학 ” 으로 한다.

제7조제2항중 “ 치과대학장 ” 을 “ 서울대학교치과병원장 ” 으로 한다.

**부칙** <제8852호,2008. 2. 29.>(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6> 까지 생략

<87>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 을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 교육인적자원부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ㆍ기획예산처차관 ” 을 “ 기획재정부차관ㆍ교육과학기술부차관ㆍ보건복지가족부차관 ” 으로,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 을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 을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제17조 전단, 제18조 및 제19조 중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을 각각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으로 한다.

<8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932호,2010. 1. 18.>(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4> 까지 생략

<65>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 보건복지가족부차관 ”을 “ 보건복지부차관 ”으로 한다.

<66>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072호,2010. 3. 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1690호,2013. 3. 23.>(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5) 까지 생략

<51>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3항, 제17조 전단, 제18조, 제19조 및 제21조제2항 중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을 각각 “ 교육부장관 ”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 교육과학기술부차관 ”을 “ 교육부차관 ”으로 한다.

<5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180호,2014. 1. 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겸직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치과병원의 직무를 겸하는 서울대학교 교원으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2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이후 임용된 교원은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소급적용)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28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15956호,2018. 12. 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065호,2025. 10. 1.>(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

<65>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보건복지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

<66>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8호, 2025. 12. 30., 타법개정]

교육부 (의대교육기반과) 044 - 203 - 6945

**제1조(목적)** 이 영은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5. 7.>

**제2조(설립등기)** ①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하 " 치과병원 " 이라 한다)의 설립등기는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대표권에 관한 사항
6. 공고의 방법

**제3조(변경등기)** 치과병원은 제2조제2항 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4조(첨부서류)** 제2조제1항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치과병원의 정관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기에 있어서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제5조(설립등기외의 등기의 효력)** 설립등기외의 등기를 하여야 할 사항은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6조(감사의 직무)** ①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치과병원 재산상황의 감사
2. 회계 및 이와 관련된 업무의 감사
3.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사항의 감사

②감사는 감사결과 부정ㆍ불비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이사회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감사의 업무수행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이사회)** ①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회는 법령이나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병원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9. 5. 7.>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나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종합병원등"이라 한다)을 3년 이상 경영한 경력
2. 종합병원등에서 진료 또는 행정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이사장의 직무대행)**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할 이사와 그 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2. 30.>

1. 교육부차관
2. 보건복지부차관
3. 기획예산처차관
4. 치과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5. 서울대학교의 치과대학장
6. 서울대학교병원장

[전문개정 2019. 5. 7.]

**제9조(원장의 추천)**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원장으로 추천해야 한다. <개정 2019. 5. 7., 2022. 8. 9.>

1.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을 포함한다)의 교원으로서 1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2.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으로서 10년 이상의 의료경력이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원장으로 추천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에 제출해야 하며, 이사장은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 8. 9.>

1. 병원경영계획서 및 연도별 경영실천계획서
2. 병원공공성강화계획서 및 연도별 공공성강화실천계획서(계획서별로 법 제6조제6호의 공공보건의료사업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

**제10조(원장의 직무대행)**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사람과 그 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료처장
2. 관리부장
3. 기획조정실장
4. 교육연구실장

[전문개정 2019. 5. 7.]

**제11조(하부조직)** ① 치과병원에는 원장 밑에 진료처ㆍ관리부ㆍ기획조정실 및 교육연구실을 둔다. <개정 2022. 8. 9.>

② 진료처에 처장 1명을, 관리부에 부장 1명을, 기획조정실 및 교육연구실에 각각 실장 1명을 두되, 치과병원의 실정에 따라 겸임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 8. 9.>

③진료처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치과병원의 직무를 겸하는 교원(이하 "겸직교원"이라 한다) 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원장이 임명한다.<개정 2019. 5. 7.>

④ 제1항에 따른 처ㆍ부 및 실의 업무분장과 그 밖의 하부조직의 구성 및 업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신설 2022. 8. 9.>

**제12조(겸직교원 요청 절차)**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겸직교원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원장이 해당 교원으로부터 겸직지원서를 제출받아 정관에서 정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대학교 총장에게 그 허가를 요청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9. 5. 7.]

**제13조(겸직교원의 직무와 보수)** ①겸직교원으로서 제11조제1항에 규정된 직위에 보직된 자에 대하여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수시간을 면제 또는 감축할 수 있다.

②겸직교원의 보수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소속 기관에서 지급한다.<개정 2011. 9. 6.>

③겸직교원에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치과병원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겸직교원은 치과병원의 정관과 각종 규정을 준수하며, 성실히 치과병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2.>

**제14조(겸직해제 등)** 원장은 겸직교원이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된 때에는 정관이 정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겸직업무의 일부를 정지시키거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총장에게 겸직해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9. 6.>

**제15조(출연금의 요구)** 치과병원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으려는 경우 매년 4월 30일까지 출연금 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추정 재무상태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출연금 요구서의 내용을 분명히 밝히는 데 필요한 서류

[전문개정 2019. 5. 7.]

**제16조(출연금 교부신청)**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요구내용이 정부예산에 반영된 경우, 치과병원이 출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교부신청서에 분기별사업계획서와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17조(보조금의 요구 및 교부신청)** ① 치과병원은 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는 경우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치의학계 교육 및 연구를 위한 보조금, 시설ㆍ설비의 운영을 위한 보조금 및 차관의 원리금 상환을 위한 보조금으로 구분한 보조금 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5. 7.>

1. 치의학계 교육계획서 및 임상 연구계획서(치의학계 교육 및 연구를 위한 보조금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시설ㆍ설비의 운영계획서(시설ㆍ설비의 운영을 위한 보조금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차관의 원리금 상환계획서(차관의 원리금 상환을 위한 보조금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추정 손익계산서
5. 그 밖에 보조금 요구서의 내용을 분명히 밝히는 데 필요한 서류

②보조금의 교부신청에 관하여는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잉여금의 처리)** 치과병원은 매사업연도말에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월손익을 보전하고, 잔여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야 한다.

**제19조(사업계획 등의 보고)** 원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사업별 예상 수입ㆍ지출금액이 드러나도록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ㆍ보고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9. 5. 7.]

**제20조(세입ㆍ세출결산서의 제출)** 원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세입ㆍ세출결산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수입ㆍ지출결산서
2.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3. 감사의 감사보고서

[전문개정 2019. 5. 7.]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18. 4. 24.]

**부칙** <제18307호,2004. 3. 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비용) ①치과병원의 설립에 필요한 비용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위원이 차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비용은 치과병원이 이를 부담한다.

**제3조** (출연금의 교부) 2004회계연도 서울대학교병원에 교부할 출연금의 미교부액 중 서울대학교병원 치과진료부에 해당되는 금액은 치과병원에 이를 교부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중 " 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 " 을 " 의과대학 " 으로 한다.

제11조중 " 치과진료부원장, 소아진료부원장 " 을 " 소아진료부원장 " 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 치과진료부문ㆍ소아진료부문 " 을 " 소아진료부문 " 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 진료부문ㆍ치과진료부문 " 을 " 진료부문 " 으로 한다.

②교육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3항 단서중 " 대학병원장 " 을 " 대학병원장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치과병원장 " 으로 한다.

**부칙** <제20740호,2008. 2. 29.>(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3& 까지 생략

3*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전단 및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 을 각각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으로 한다.

3(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 <제23116호,2011. 9. 6.>(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 서울대학교 " 를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 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이 " 를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에서 " 로 한다.

제14조 중 " 서울대학교총장 " 을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총장 " 으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24423호,2013. 3. 2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전단 및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61>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 <제28811호,2018. 4. 24.>(과태료 규정 정비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9개 대통령령 일부 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730호,2019. 5.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950호,2019. 7. 2.>(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2861호,2022. 8.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48호,2025. 12. 30.>(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2) 까지 생략

2!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부차관
2. 보건복지부차관
3. 기획예산처차관

2@ 부터 <176>까지 생략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별표] <개정 2019. 5. 7.>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
| |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이상 위반 |
| 법 제5조를 위반하여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 법 제22조제1항 | 200만원 | 350만원 | 500만원 |

#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8. 30.] [교육부령 제338호, 2024. 8. 30., 일부개정]

교육부 (학교정책과) 044 - 203 - 67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구학교를 지정하여 교육정책ㆍ교육과정ㆍ교육방법 및 교육자료 등과 관련된 문제를 연구하고 그 결과를 보급ㆍ활용함으로써 교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에 따른 연구학교는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4. 8. 30.>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전문개정 2022. 4. 11.]

**제3조(종류)** 연구학교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 7. 30.>

1. 정책연구학교 : 교육과정ㆍ교육방법ㆍ교육자료 및 교과용도서 등의 연구ㆍ개발ㆍ검증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학교
2. 삭제<2008. 7. 30.>
3. 시범학교 : 교육관련 연구결과에 대한 모범사례 개발ㆍ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학교

**제4조(지정 등)** ① 삭제 <2008. 7. 30.>

②교육감은 학교교육의 전반적인 개선 및 지역교육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의 장의 신청을 받아 연구학교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8. 7. 30.>

③교육감은 연구학교를 지정할 경우에는 당해 학교의 연구수행능력 및 연구계획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01. 1. 31., 2008. 3. 4., 2008. 7. 30.>

④연구학교 지정기간은 연구의 영역 및 특성에 따라 6월 이상 3년이하의 기간으로 한다.

⑤국립대학부설의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교육감의 지정에 관계없이 상설 연구학교가 된다.<개정 2001. 1. 31., 2008. 3. 4., 2008. 7. 30., 2024. 8. 30.>

⑥ 교육부장관은 교육정책 추진ㆍ교과용도서 검증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교육감에게 연구학교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신설 2008. 7. 30., 2013. 3. 23.>

**제5조(연구계획 및 연구결과)** ①연구학교의 장은 관할 교육감에게 연구학교로 지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하고, 연구학교로 지정된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만료 1개월 이전에 연구학교로 지정된 기간동안의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설연구학교는 당해 학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감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 31., 2008. 3. 4., 2008. 7. 30., 2013. 3. 23.>

②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연구결과를 공개하고 그 결과가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1. 1. 31., 2008. 3. 4., 2013. 3. 23.>

**제6조(교원의 배치)** 교육감은 연구학교의 장의 요청에 따라 연구수행에 필요한 교원을 연구학교에 우선 배치할 수 있다.

**제7조(운영비의 지원)** 교육감은 연구에 필요한 교재ㆍ교구ㆍ도서의 구입비, 교육자료 개발ㆍ제작비 및 인쇄비 등 필요한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교육부장관은 제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지정ㆍ운영되는 상설 연구학교 또는 연구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1. 1. 31., 2008. 3. 4., 2008. 7. 30., 2013. 3. 23.>

**제8조(연구비 등의 지원)** 연구학교의 장은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교원에게 연구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우대조치)**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연구학교(상설연구학교를 포함한다)의 연구결과가 교육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학교 및 관련 교원에 대하여 포상 또는 인사상의 우대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1. 1. 31., 2008. 3. 4., 2008. 7. 30., 2013. 3. 23.>

**부칙** <제758호,2000. 1.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9호,2001. 1. 31.>(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2& 생략

2* 연구학교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5조제1항 후단ㆍ제2항, 제7조 및 제9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 내지4! 생략

**부칙** <제1호,2008. 3. 4.>(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2& 까지 생략

2* 연구학교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5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제7조 및 제9조 중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을 각각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으로 한다.
2(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 <제11호,2008. 7.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한 연구학교는 그 지정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호,2013. 3. 2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3% 까지 생략
3^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 전단, 제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7조 단서 및 제9조 중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을 각각 “ 교육부장관 ”으로 한다.
3& 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제1호,2022. 4.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8호,2024. 8.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 ·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5. 4. 8.] [대통령령 제35431호, 2025. 4. 8., 일부개정]

교육부 (교육국제화담당관) 044 - 203 - 6769

**제1조(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와 「유아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내국인 ” 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국적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이중국적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 외국인 ” 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명칭)** 외국인학교 또는 외국인유치원(이하 “ 외국인학교등 ” 이라 한다)은 명칭에 외국인을 위한 학교 또는 유치원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외국인학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2. 3.>

**제4조(설립기준)** ①외국인학교등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시설ㆍ설비기준과 경영에 필요한 재산의 기준 등 설립기준에 관한 사항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4. 12. 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지(校地) 또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14. 12. 3., 2016. 7. 26., 2025. 4. 8.>

1. 교지
2. 교수ㆍ학습활동에 직ㆍ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
3. 교육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물
   가. 「평생교육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학생의 교양증진 및 직업교육을 위하여 설치되는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나. 가목에 따른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지하에 설치되는 주차시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체육관, 강당, 창고, 수위실, 옥외화장실 및 관사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교지 또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신설 2025. 4. 8.>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정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5.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6.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7.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임차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5. 4. 8.>

**제5조(설립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외국인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

1. 외국인
2.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비영리외국법인"이라 한다)
3.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

② 외국인유치원은 외국인과 비영리외국법인만 설립할 수 있다.

**제6조(외국인학교의 설립인가신청)** 「초·중등교육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학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사항과 외국인학교의 교장 등 교직원의 확보 방안이 적힌 서류를 갖추어 시·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26., 2025. 4. 8.>

**제7조(외국인학교의 학교규칙 기재사항)** 외국인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명칭 및 위치
2. 수업연한, 학년, 학기 및 휴업일
3. 학급 편제 및 학생 정원
4. 교육과정(제12조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외국인학교의 경우에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수업일수
5.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수료·졸업 및 그 절차 등
6. 수업료, 입학금, 그 밖의 비용 징수
7. 교장·교원의 자격 및 임무에 관한 사항
8. 학생 포상 및 징계
9. 학칙 개정 절차
10. 그 밖에 외국인학교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제8조(외국인유치원의 설립인가신청)** 「유아교육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이 적힌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학칙 등의 공개)** 외국인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른 학칙을, 외국인유치원의 장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유치원규칙(이하 "유치원규칙"이라 한다)을 각각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 등)** ①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외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총 3년 이상인 내국인을 말한다. <개정 2016. 7. 26.>

②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제1항에서 "해당 학교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학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람"이란 해당 학교의 장이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6. 7. 26.>

1. 한국어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
2. 문화적인 차이로 인하여 학교 부적응의 문제가 발생한 학생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해당 학교에서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학생

③ 제1항에 해당하는 내국인은 외국인학교 학생 정원의 3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하되, 교육감은 시ㆍ도의 여건을 고려하여 20퍼센트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입학비율을 높일 수 있다.<개정 2016. 7. 26., 2025. 4. 8.>

**제11조(교육과정)** 외국인학교등의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은 학칙 또는 유치원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3호의 학교법인이 설립한 외국인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국제공인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12조(학력인정)** 외국인학교를 졸업한 내국인 학생이 국내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려면 그 외국인학교는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교과 중에서 국어 및 사회(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사회 교과는 국사 또는 역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포함하여 2개 교과 이상을 각각 연간 102시간 이상 이수할 수 있도록 내국인 학생의 교육과정을 편성할 것
2. 국내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과정의 국어 또는 사회 교과를 담당하는 교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정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으로 할 것. 다만, 국어 교과를 담당하는 교원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가목ㆍ나목의 조건을 충족하는 한국어교원으로 대체하여 임용할 수 있다.

**제13조(한국어 및 한국문화교육)** 외국인학교는 그 학교에 재학하는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관련된 교육을 할 수 있다.

**제14조(외국인학교등의 교원의 임면)** 외국인학교등의 교원의 임면권자가 그 외국인학교등의 교원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임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외국인학교등을 관할하는 교육청에 그

교원의 인적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15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초ㆍ중등교육법」 제63조제5항 전단에서 “ 내국인학생 모집 정지 ”란 외국인학교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인을 모집하거나 입학시킬 수 없도록 하는 처분을 말한다. <개정 2025. 4. 8.>

1.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2.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사람

② 「초ㆍ중등교육법」 제63조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5. 4. 8.>

[본조신설 2016. 7. 26.]

**부칙** <제21308호,2009. 2.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비율에 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은 2010년 3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외국인학교 교육과정에 입학하는 학생부터 적용한다.

**제3조**(명칭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설립인가를 받은 외국인학교가 제3조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명칭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3조**의2(설립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2009년 2월 6일 당시 외국인학교등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의 재산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위치와 해당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변경되지 않는 한 제4조에 따른 설립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5. 4. 8.]

**제4조**(기존의 재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설립인가를 받은 외국인학교에 재학 중인 내국인 학생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입학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5조**(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설립인가를 받은 외국인학교의 교원 중에서 국어ㆍ사회 교과를 담당하는 교원이 제12조제2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 영 시행일부터 1년간은 그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4423호,2013. 3. 2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3>까지 생략

<64>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단서 중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을 “ 교육부장관 ”으로 한다.

<65>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 <제25793호,2014. 12. 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374호,2016. 7.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외국인학교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입학시켜 「초ㆍ중등교육법」 제6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35431호,2025. 4.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차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 <개정 2025. 4. 8.>

행정처분의 기준(제15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교육감은 외국인학교에서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입학시킨 행위(이하 이 표에서 "부정입학행위"라 한다)를 적발한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제63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시정·변경 명령과 이 표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내국인학생 모집정지를 한다. 다만, 위반횟수가 1회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내국인학생 모집정지를 하지 않고 「초·중등교육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시정·변경 명령만을 할 수 있다.

나. 부정입학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부정입학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부정입학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부정입학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하나의 모집행위로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두 명 이상 입학시킨 경우는 그 부정입학행위의 횟수를 1회로 본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부정입학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가목에 따른 내국인학생 모집정지의 기간은 외국인학교가 모집정지 처분을 받은 날이 속하는 학기의 다음 학기부터 개시하되, 외국인학교가 모집정지 기간 중에 다시 내국인학생 모집정지 처분을 받게 된 경우 그 모집정지 기간은 이전 내국인학생 모집정지 처분에 따른 모집정지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개시한다.

2. 개별기준

| 위반횟수 | 1회 | 2회 | 3회 | 4회 이상 |
|---|---|---|---|---|
| 처분기준 | 6개월 이상 12개월 이하의 내국인학생 모집정지 | 12개월 이상 24개월 이하의 내국인학생 모집정지 |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내국인학생 모집정지 | 10년간 내국인학생 모집정지 |

# 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양성과) 044 - 202 - 4831, 4837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첨단과학기술 혁신과 지역산업의 기술ㆍ지식 발전을 주도할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산업계와의 협동연구, 외국과의 교육ㆍ연구 교류, 기술의 이전ㆍ사업화의 촉진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울산과학기술원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11.>
[전문개정 2015. 3. 27.]

**제2조(법인격)** 울산과학기술원(이하 “ 울산과기원 ”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 3. 27.]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삭제<2015. 3. 27.>]

**제3조(설립등기)** ①울산과기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5. 3. 27.>
②울산과기원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5. 3. 27.>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 <2015. 3. 27.>]

**제3조의2(부설기관)** 울산과기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0. 22.]

**제4조(정관)** ① 울산과기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7., 2018. 12. 24., 2024. 10. 22.>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의2. 부설기관에 관한 사항
4. 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주요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평의원회에 관한 사항
9.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11. 해산 및 합병에 관한 사항

② 울산과기원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5. 3. 27., 2017. 7. 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관 변경의 인가를 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5. 3. 27., 2017. 7. 26.>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3조로 이동 <2015. 3. 27.>]

**제5조(임원)** ① 울산과기원에 총장 및 이사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하의 이사와 1인의 감사를 두며,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3. 27.>

② 이사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選任)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5. 3. 27., 2017. 7. 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이사 및 감사의 선임을 승인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5. 3. 27., 2017. 7. 26.>

④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신설 2015. 3. 27.>

⑤ 이사장은 울산과기원의 총장을 겸할 수 없다.<신설 2015. 3. 27.>

⑥ 총장 또는 감사가 아닌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신설 2015. 3. 27.>

⑦ 감사는 울산과기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신설 2015. 3. 27.>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15. 3. 27.>]

**제6조(총장)** ① 울산과기원에 총장을 둔다. <개정 2015. 3. 27.>

② 총장은 울산과기원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5. 3. 27.>

③ 총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5. 3. 27., 2017. 7. 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총장의 선임을 승인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5. 3. 27., 2017. 7. 26.>

⑤ 총장의 직무와 임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15. 3. 27.>

⑥ 총장은 교원 또는 연구원을 겸할 수 있다.<신설 2015. 3. 27.>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15. 3. 27.>]

**제7조(이사회)** ① 울산과기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8. 12. 24., 2020. 6. 9.>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
3.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중요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법령 또는 정관에서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7. 그 밖에 이사회가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개정 2015. 3. 27.>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15. 3. 27.>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개정 2015. 3. 27.>
⑤그 밖에 이사회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15. 3. 27.>
⑥ 삭제<2015. 3. 27.>
⑦ 삭제<2015. 3. 27.>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15. 3. 27.>]

**제7조의2(과학영재학교의 설치ㆍ운영)** ① 울산과기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차원의 선도적 과학영재를 교육하고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적 능력이 뛰어난 영재를 대상으로 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하는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이하 "과학영재학교"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울산과기원에 두는 과학영재학교는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로 본다.
③ 과학영재학교의 학사ㆍ교원 및 운영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재교육 진흥법」을 따르고 「초ㆍ중등교육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총장은 과학영재학교를 지휘ㆍ감독한다.
[본조신설 2024. 10. 22.]

**제7조의3(학력의 인정)** 과학영재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4. 10. 22.]

**제8조(교원 및 연구원)** ① 울산과기원에 교원으로서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를 두고, 필요할 때에는 초빙교수 및 강사 등을 둘 수 있다.
② 울산과기원에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원(研究員)을 둔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3. 27.]

**제8조의2(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① 울산과기원은 교원 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교원을 임용할 때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3년마다 계열별 임용 목표비율이 제시된 임용계획 등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추진 실적을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8. 27.]

**제9조(교원의 임면)** ① 울산과기원(과학영재학교를 포함한다)의 교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8. 12. 24., 2024. 10. 22.>
② 울산과기원의 교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ㆍ급여ㆍ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 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신설 2018. 12. 24.>
③ 총장은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해당 교원에게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신설 2018. 12. 24.>
④ 제3항의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으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총장에게 재임용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18. 12. 24.>
⑤ 총장은 제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해당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그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8. 12. 24., 2024. 10. 22.>
⑥ 제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가 제5항에 따라 해당 교원의 재임용에 대하여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 과정에서 해당 교원에게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신설 2018. 12. 24., 2024. 10. 22.>
1. 학생 교육에 관한 사항
2. 학문 연구에 관한 사항
3. 산학 협력에 관한 사항
4. 기여 봉사에 관한 사항
⑦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신설 2018. 12. 24.>
[본조신설 2015. 3. 27.]
[종전 제9조는 제7조로 이동 <2015. 3. 27.>]

**제9조의2(교원인사위원회)** ① 울산과기원의 교원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이하 "교원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과학영재학교에는 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10. 22.>
②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ㆍ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ㆍ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영재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개정 2024.

10. 22.>
[본조신설 2018. 12. 24.]

**제9조의3(정년보장교원)** ①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ㆍ연구ㆍ산학 협력 및 기여 봉사에서 탁월한 평가를 받은 교원 또는 특정전문분야에서 권위자로 인정된 교원을 정년이 보장되는 교원(이하 "정년보장교원"이라 한다)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② 정년보장교원의 심사 대상, 평가 기간, 심의 횟수, 평가 항목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③ 정년보장교원의 심의절차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8. 12. 24.]

**제9조의4(과학영재학교의 교직원)** ① 과학영재학교에 교원으로서 교장ㆍ교감 및 교사를 두고, 필요한 경우 강사를 둘 수 있다.
② 과학영재학교의 교원의 보수ㆍ수당ㆍ배치기준ㆍ계약기간ㆍ근무조건ㆍ교육 및 연수 등에 관하여는 과학영재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
③ 과학영재학교에는 교원 외에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다.
④ 총장은 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학영재학교 교원을 재임용할 수 있다. 재임용 절차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 10. 22.]

**제9조의5(다른 학교 교원의 파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의 교원에 대하여 그 임용권자는 영재교육 관련 연구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과학영재학교에 파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0. 22.]

**제10조(학위수여)** 총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ㆍ학사의 학위를 수여한다.
[전문개정 2015. 3. 27.]

**제11조(학생)** 울산과기원의 학생정원ㆍ입학자격 및 입학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전문개정 2015. 3. 27.]

**제12조(사업연도)** 울산과기원의 사업연도는 국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5. 3. 27.]

**제13조(지원ㆍ조정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울산과기원을 지원ㆍ육성하며, 그 업무를 조정ㆍ감독한다. <개정 2017. 7. 26.>

[전문개정 2015. 3. 27.]

**제14조(출연금)** ①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울산과기원의 설립ㆍ건설ㆍ연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7.>

②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교부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3. 27.>

③ 삭제<2015. 3. 27.>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삭제<2015. 3. 27.>]

**제15조(국ㆍ공유재산의 양여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울산과기원의 설립을 위하여 국유재산, 공유재산 및 그 물품을 양여할 수 있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6조(「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국유문화유산 및 국유자연유산은 제외한다. <개정 2015. 3. 27., 2023. 3. 21., 2023. 8. 8., 2024. 2. 6.>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울산과기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울산과기원에 국유재산,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 3. 27., 2022. 1. 11.>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25. 10. 1.>

④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재산의 관리청과 울산과기원의 계약으로 정한다.<개정 2009. 1. 30., 2015. 3. 27.>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삭제<2015. 3. 27.>]

**제16조(학위과정 등)** ① 울산과기원에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 및 학사 과정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정별 수업연한ㆍ학기ㆍ수업일수ㆍ학과(學科)ㆍ전공 및 교과(敎科)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③ 제1항의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 및 학사 과정의 학위수여, 교원의 자격, 입학자격 및 입학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 3. 27.]

[종전 제16조는 제14조로 이동 <2015. 3. 27.>]

**제16조의2(평의원회)** ① 울산과기원(부설기관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다만, 제2호는 자문에 한정한다. <개정 2024. 10. 22.>

1.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교육 과정의 운영 및 연구에 관한 중요한 사항

3. 교원ㆍ직원ㆍ학생의 복지에 관한 중요한 사항
4. 울산과기원의 운영에 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5. 그 밖에 총장, 의장 또는 재적 평의원 3분의 1 이상이 학교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② 평의원회는 11명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교원, 직원(연구원을 포함한다), 학생 등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동문 및 울산과기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평의원회의 의장ㆍ부의장에 관한 사항, 평의원의 임기, 자료제출 및 회의록 작성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각각 "총장"으로 본다.

④ 평의원회는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전달하고, 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또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이사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평의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2. 24.]

**제17조(기금의 설치 등)** ① 울산과기원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과 학사운영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ㆍ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한 자금의 지출
2. 대규모 교육시설ㆍ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
3. 그 밖에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출

④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3. 27.]

[종전 제17조는 제15조로 이동 <2015. 3. 27.>]

**제17조의2(기부 등)** ① 울산과기원에 토지ㆍ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을 기부한 자는 일정 기간 울산과기원과 이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토지ㆍ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의 기부절차와 공동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2. 19.]

**제1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울산과기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울산과기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검사를 받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세입·세출결산서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③ 제2항에 따른 결산서의 기재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국가기밀에 속하는 연구업무
2. 제1호에 직접 관련되는 업무
3. 기업수탁과제 중 수탁기업 등으로부터 기밀보호를 요청받은 연구업무

[본조신설 2015. 3. 27.]

**제19조(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 등의 제출)** ① 울산과기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계약에 따른 연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 받은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심의·평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연구계획서와 연구수행내용의 수정·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연구성과의 보급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7. 7. 26.>

[전문개정 2015. 3. 27.]

**제20조(특정과제의 공동연구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정과제의 공동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거나 총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전문개정 2015. 3. 27.]

**제21조(연구시설 등의 공동이용)** 울산과기원은 연구생산성의 향상과 연구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다른 연구기관·대학 및 전문단체 등과 상호협의하여 연구시설·기기 등을 공동이용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기관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3. 27.]

**제22조(수익사업 등)** ① 울산과기원은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7., 2017. 7. 26., 2022. 1. 11.>

② 울산과기원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보장된다.<신설 2022. 1. 11.>

③ 제2항에 따른 법인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창업지원 등 울산과기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만을 수행하여야 한다.<신설 2022. 1. 11.>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익금은 울산과기원의 운영과 연구에 충당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27., 2022. 1. 11.>

⑤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및 제2항에 따른 법인의 설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22. 1. 11.>

[제23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삭제<2015. 3. 27.>]

**제22조의2(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울산과기원은 연구결과의 확산과 활용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 11.]

**제22조의3(창업지원)** ① 울산과기원은 교원ㆍ직원ㆍ학생의 창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창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 11.]

**제23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울산과기원이 아닌 자는 울산과학기술원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5. 3. 27.]

[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제22조로 이동 <2015. 3. 27.>]

**제24조(비밀유지의 의무)** 울산과기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5. 3. 27.]

[종전 제24조는 제23조로 이동 <2015. 3. 27.>]

**제25조(「민법」의 준용)** 울산과기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 3. 27., 2020. 6. 9.>

**제26조(벌칙)** 제24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5. 3. 27.]

[종전 제26조는 제27조로 이동 <2015. 3. 27.>]

**제27조(과태료)** ① 제23조를 위반하여 울산과학기술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 3. 27.>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2020. 6. 9.>

③ 삭제<2013. 3. 23.>

④ 삭제<2013. 3. 23.>

⑤ 삭제<2013. 3. 23.>

[제26조에서 이동, 종전 제27조는 제28조로 이동 <2015. 3. 27.>]

**제2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울산과기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5. 3. 27.]

[제27조에서 이동 <2015. 3. 27.>]

**부칙** <제8331호,2007. 4. 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준비)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립준비위원으로 구성된 설립준비위원회를 교육인적자원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설립준비위원회는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하여 15인 이하로 구성하되, 설립준비위원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

③설립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설립준비위원회는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설립 당시의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총장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추천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되, 이사 및 감사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

⑥설립준비위원회는 제5항의 이사와 감사가 임명된 때에는 지체 없이 제4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⑦설립준비위원회는 제6항의 설립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총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⑧설립준비위원은 제7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경과조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 시행 전에 그 준비행위로서 행한 부지매입 및 설립준비 등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연금적용) 제13조에 따른 교직원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교원

제7조의2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직원

**부칙** <제8852호,2008. 2. 29.>(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3> 까지 생략

<74>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제7조제3항,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제2항, 제14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19조제2항ㆍ제3항 본문, 제20조 본문 및 단서,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2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및 같은 항 단서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및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2. 기획재정부장관이 추천하는 1인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추천하는 1인

4. 지식경제부장관이 추천하는 1인

제17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 단서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7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401호,2009. 1. 30.>(국유재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⑬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11690호,2013. 3. 23.>(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2( 까지 생략

3)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를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인가한다 "로 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총장은 총장추천위원회에서 3인 이내의 후보자를 추천하여 이사회가 1인을 선임하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승인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이사) ①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에서 선임되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이사로 본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의 선임에 대한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1. 총장
2. 기획재정부장관이 추천하는 1인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추천하는 1인
4.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1인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추천하는 1인
6.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1인
7. 산업계 또는 경제계 인사
8. 그 밖에 학교경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외부인사

④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제3항제6호의 이사는 당해 광역자치단체장의 임기가 종료하는 때에 그 임기를 종료한다.

제9조제4항 단서 중 " 제11조제4항 "을 " 제11조제5항 "으로 한다.

제11조제1항ㆍ제3항 중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을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 제2항 "을 " 제3항 "으로,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 제3항 "을 " 제4항 "으로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의 선임에 대한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2조제2항, 제14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1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0조 본문 및 단서,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4항 및 제26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제8조제2항”을 “제8조제3항”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3! 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844호,2014. 11. 19.>(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1인

4.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추천하는 1인

1& 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230호,2015. 3.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준비위원회)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전의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해산과 울산과기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울산과기원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설립준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설립준비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설립준비위원회는 울산과기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이 법 시행일까지 울산과기원의 설립등기를 완료한 후 울산과기원 총장에게 그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 설립준비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3항에 따른 사무 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해산 및 청산의 특례)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는 이 법에 따른 울산과기원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4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에 따른 울산과기원은 종전의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울산과기원이 포괄 승계하는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종전의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명의는 이 법에 따른 울산과기원의 명의로 본다.

③ 종전의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총장이 학교 운영상 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울산과기원 총장이 행한 행위로 본다.

④ 종전의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재적생(在籍生), 졸업생 및 제적(除籍)ㆍ제명(除名)된 사람은 이 법에 의한 울산과기원의 재적생, 졸업생 및 제적ㆍ제명된 사람으로 본다.

**제5조**(설립 당시의 예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에 따른 울산과기원은 설립 당시 울산과기원의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소관 예산을 종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되는 경비는 울산과기원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6조**(임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총장과 이사 및 감사는 설립준비위원회가 따로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울산과기원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② 울산과기원 설립 당시 종전의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에 재직 중인 직원은 이 법에 따라 울산과기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19 중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울산과학기술원법」 제15조"로 한다.

②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4호사목 중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을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으로 하고, 같은 호 아목 중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를 “ 서울대학교 ”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1호마목을 삭제한다.

④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4839호,2017. 7. 26.>(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4>까지 생략

<335>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ㆍ제3항, 제5조제2항ㆍ제3항, 제6조제3항ㆍ제4항, 제11조, 제13조, 제16조제2항, 제1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0조 및 제27조제2항 중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을 각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 미래창조과학부령 ”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으로 한다.

<336>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244호,2017. 12. 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18호,2018. 12.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된 임용계약은 이 법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재임용 및 정년보장교원의 심의 및 처분 또한 이와 같다.

**부칙** <제16531호,2019. 8. 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47호,2020. 6. 9.>(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34호,2022. 1. 1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51호,2023. 3. 21.>(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전문개정 2024. 2. 6.]

[시행일: 2024. 3. 22.] 제1조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2% 까지 생략

2^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단서 중 “ 제66조 ”를 “ 제66조(「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로 한다.

2& 부터3&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9590호,2023. 8. 8.>(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3# 까지 생략

3$ 법률 제19251호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6조(「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국유문화유산 및 국유자연유산은 제외한다.

3% 부터 <53>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20479호,2024. 10. 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065호,2025. 10. 1.>(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4>까지 생략

<95>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 기획재정부장관 ”을 “ 재정경제부장관 ”으로 한다.

<96>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 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01호, 2025. 10. 1.,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양성과) 044 - 202 - 4831, 483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국) 044 - 202 - 4835

**제1조(목적)** 이 영은 「울산과학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9. 25.>

**제2조(설립등기)** ① 울산과학기술원(이하 "울산과기원"이라 한다)은 「울산과학기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일 이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자산의 총액

[전문개정 2015. 9. 25.]

**제3조(이전등기)** 울산과기원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 1. 21.]

**제4조(변경등기)** 울산과기원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3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 1. 21.]

**제5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각의 등기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설립등기의 경우에는 그 정관
2. 제3조에 따른 이전등기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3. 제4조에 따른 변경등기의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제6조(등기기간의 기산)**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기할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이 필요한 것은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된 날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제7조(설립등기 외의 등기의 효력)** 설립등기 외에 등기를 하여야 할 사항은 이를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5. 9. 25.]

**제8조(조직)** 울산과기원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5. 9. 25.]

**제9조(교원의 자격기준)**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울산과기원의 교원은 연구지도력, 교육능력 및 교원으로서의 식견과 인격을 갖춘 대한민국 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1. 교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또는 실무경력연수를 합산한 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2. 부교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또는 실무경력연수를 합산한 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3. 조교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및 실무경력연수에 대해서는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2조 각 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광주과학기술원"은 "울산과기원"으로, "광주과기원이 인정하는 기관"은 "울산과기원이 인정하는 산업체·기관"으로 본다.
③ 초빙교수 및 강사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 9. 25.]

**제9조의2(양성평등을 위한 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교원의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 등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이하 "양성평등조치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 교원의 계열별 재직목표비율
2. 여성 교원의 계열별 신규임용 목표비율
3. 그 밖에 양성평등을 위한 교원 임용방안에 관한 사항

② 양성평등조치계획의 수립을 위한 교원의 계열별 구분은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1의 계열별 구분에 따른다.
③ 총장은 양성평등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개시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총장은 양성평등조치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양성평등조치계획의 추진실적을 제출받은 경우 그 계획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조치방안에 관한 자료를 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2. 25.]

**제10조(특별임용 등)** ①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장은 연구업적 등이 현저하다고 인정된 사람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임용하거나 특별승진시킬 수 있다.

②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장은 박사학위 취득자를 임용하기 곤란한 학과 또는 실무경력이 필요한 학과의 교원을 충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4년제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임용할 수 있다.

1. 교수: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또는 실무경력연수를 합산한 경력이 12년 이상인 사람
2. 부교수: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또는 실무경력연수를 합산한 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3. 조교수: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또는 실무경력연수를 합산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전문개정 2015. 9. 25.]

**제11조(정년퇴직)** 전임교원에 대해서는 정년제를 실시하되,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 9. 25.]

**제12조(명예교수)** 총장은 인격과 덕망이 높고 연구업적이 현저하여 울산과기원의 발전에 이바지하였거나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을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교수로 임용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9. 25.]

**제13조(교원의 자격심사와 업적평가)** ① 총장은 교원의 자격을 심사하고 그 업적을 평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 및 평가에 관한 기준은 학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9. 25.]

**제14조(학생정원)** 법 제11조에 따른 울산과기원의 학생정원은 총장이 과학기술인력의 수요전망과 울산과기원의 수용능력에 따라 조정ㆍ책정한다.

[본조신설 2015. 9. 25.]

**제15조(정원보고)** 총장은 정원계획을 수립하고 입학시험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5. 10. 1.>

[본조신설 2015. 9. 25.]

**제16조(입학자격)** ① 법 제11조에 따라 울산과기원의 학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 1. 9.>

1.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2. 외국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과학기술 분야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울산과기원 과학영재선발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

가. 고등학교 2학년 수료 예정자
나. 「영재교육 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거나 설립된 영재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다. 「영재교육 진흥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영재교육특례자

② 법 제11조에 따라 울산과기원의 석사 및 전문석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4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고등교육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학사 이상의 학위를 수여받은 사람 또는 학위 수여 예정자
2. 외국의 4년제 대학 졸업자, 졸업 예정자 또는 외국에서 16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3. 교육부장관이 제1호에 따른 자격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4. 4년제 대학 재학생으로서 총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③ 법 제11조에 따라 울산과기원의 박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고등교육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석사 이상의 학위를 수여받은 사람 또는 학위 수여 예정자
2. 외국대학에서 석사과정을 이수한 사람 또는 외국에서 18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울산과기원 또는 다른 이공계 대학원의 석사나 전문석사과정 재학생으로서 총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울산과기원 과학영재선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 9. 25.]

**제17조(외국인 학생)** 총장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외국인이 졸업한 학교의 종류와 수업연한 등에 관한 조사를 하고, 제16조에 따른 입학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입학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9. 25.]

**제18조(입학방법)** ① 법 제11조에 따라 입학전형은 서류심사ㆍ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일부를 추가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② 입학전형의 시기 및 과목별 배점 등 입학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 9. 25.]

**제19조(출연금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울산과기원에 출연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울산과기원으로 하여금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1. 1. 5.>

1. 제29조제1항에 따른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재무상태표
3.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5. 9. 25.]

**제20조(출연금의 결정통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연도의 출연금 예산이 결정된 때에는 울산과기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5. 9. 25.]

**제21조(출연금의 지급 · 관리 및 사용)** ① 울산과기원은 제20조에 따라 결정된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그 지급신청서에 해당 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당 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출연금을 지급한다.<개정 2017. 7. 26.>

③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울산과기원은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울산과기원은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에서 정한 용도대로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9. 25.]

**제22조(출연금지급규정 등의 준용)**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울산과기원에 출연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은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 으로 본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5. 9. 25.]

**제23조(수업연한)**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과정별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되, 각 과정별로 요구되는 최소한의 수업기간과 재학이 허용되는 최대한의 재학기간은 총장이 정한다.

1. 학사과정: 4년
2. 석사 및 전문석사 과정: 2년 이상
3. 박사과정: 2년 이상

[본조신설 2015. 9. 25.]

**제24조(학기 및 수업일수)**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학기는 2학기제를 원칙으로 하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학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수업일수는 연간 32주 이상의 범위에서 총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 9. 25.]

**제25조(이수단위 등)** 교과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각 과정별 취득학점 등 이수방법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 9. 25.]

**제26조(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울산과기원은 지식기반산업 및 첨단과학분야와 관련된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학사ㆍ석사ㆍ전문석사 또는 박사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9. 25.]

**제27조(학비감면 및 학자금 지급)** 울산과기원은 각 과정의 학생에 대하여 수업료 등 학비를 감면하거나 학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9. 25.]

**제27조의2(평의원회의 조직 및 운영)**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울산과기원의 평의원회를 구성할 때 교원, 직원(연구원을 포함한다), 학생 등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하는 평의원은 선거로 선출한다. 다만, 울산과기원의 동문 및 울산과기원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람을 평의원으로 포함할 경우 해당 평의원은 총장이 위촉한다.
② 평의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임시회의는 수시로 개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의원의 선출ㆍ위촉, 평의원회의 회의, 그 밖에 평의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6. 25.]

**제28조(기금의 조성ㆍ운용 등)** ① 법 제17조에 따라 조성된 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하며, 기금의 원금을 줄이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1. 1. 5.>
② 울산과기원은 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 또는 기부금을 낸 자가 특정 사업에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도를 지정한 경우 그 지정된 용도로만 해당 출연금 또는 기부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그 용도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미리 그 출연금 또는 기부금을 낸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법 제1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제31조에 따라 기금에 전입된 금액을 말한다.
④ 법 제17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학생 및 연구자 지원사업

2. 기금 운영 관리 사업
3. 기부자 관리 및 예우 사업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9. 25.]

**제28조의2(토지 등의 기부와 공동사용)**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울산과기원에 토지ㆍ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을 기부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울산과기원과 기부절차와 공동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7. 23.>
[본조신설 2018. 6. 19.]

**제29조(사업계획서)** ① 울산과기원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에 목표, 방침, 주요사업의 내용 및 필요한 예산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주요한 내용을 변경하려면 그 변경할 내용과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내용을 변경하려면 해당 사업계획서를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5. 9. 25.]

**제30조(결산 보고)** 울산과기원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검사를 받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1. 1. 5.>
1. 해당 연도의 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
2.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3. 해당 검사를 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의견서
4. 해당 검사를 한 감사의 의견서
5. 그 밖에 결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첨부서류
[본조신설 2015. 9. 25.]

**제31조(잉여금의 처리)** 울산과기원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기금에 전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9. 25.]

**제32조(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 등의 제출)** 울산과기원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연구와 관련된 국내외 기술동향분석표

2. 연구개발 후 활용계획서
3. 그 밖에 연구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참고서류
[본조신설 2015. 9. 25.]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 11. 17.>
[본조신설 2015. 9. 25.]

**제34조(학칙)** 학위과정, 교원, 학생의 관리, 그 밖에 울산과기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9. 25.]

**부칙** <제20169호,2007. 7. 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740호,2008. 2. 29.>(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 <제24423호,2013. 3. 2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2# 까지 생략
2$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및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을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 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을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 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2% 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 <제26551호,2015. 9.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제4호의2를 제4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②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제3호, 제78조제1항 및 제124조제2항제3호 중 “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 ” 을 각각 “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 ” 으로 한다.
③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제42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④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1항제4호 중 “ 학생 또는 ” 을 “ 학생, ” 으로, “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사과정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 ” 을 “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사과정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 또는「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울산과학기술원 학사과정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 ” 으로 한다.
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부칙** <제28210호,2017. 7. 26.>(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4@ 까지 생략

4# 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5조,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0조,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 전단ㆍ후단, 제28조제1항, 제29조제2항 전단 및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제1호나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다목 본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4$ 부터 <70>까지 생략

**부칙** <제28974호,2018. 6. 19.>

이 영은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891호,2019. 6. 25.>

이 영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446호,2020. 2.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양성평등조치계획 제출기한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양성평등조치계획(2020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은 제9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6월 30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부칙** <제31161호,2020. 11. 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380호,2021. 1. 5.>(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4106호,2024. 1.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728호,2024. 7. 23.>(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 단서 중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⑧부터 ⑬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5228호,2025. 1. 21.>(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801호,2025. 10. 1.>(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2) 까지 생략

2! 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 부터2( 까지 생략

■ 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별표] <개정 2020. 11. 17.>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 관련)

1. 일반기준

부과권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위반행위자의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위반행위자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다.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법 제23조를 위반하여 울산과학기술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 법 제27조제1항 | 500 |

#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 2023. 6. 14.] [법률 제19083호, 2022. 12. 13., 일부개정]

국방부 (교육훈련정책과) 02 - 748 - 6244

**제1조(설치)** 육군의 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3사관학교를 둔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2조(수업연한)** 육군3사관학교(이하 “ 학교 ”라 한다)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3조(입학자격)** 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2. 12. 13.>

1. 19세 이상 25세 미만의 미혼자일 것. 다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연령 상한을 연장한다.
2.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전문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대학에서 2년 이상의 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포함한다)이 있을 것
4. 학칙으로 정하는 신체기준을 충족할 것

[전문개정 2010. 3. 31.]

**제4조(교과과정)** ① 학교의 교과는 군사학과정과 일반학과정으로 나누며 군사학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일반학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교과과정은 학위를 수여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신설 2019. 4. 23.>
③ 제1항에 따른 일반학과정과 그 시설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중 대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9. 4. 23.>
[전문개정 2010. 3. 31.]

**제5조(교장 등의 임용)** ① 학교에 교장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수 등 공무원(군인ㆍ군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둔다.
② 교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중에서 육군참모총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개정 2017. 3. 21.>
[전문개정 2010. 3. 31.]

**제6조(교수 등의 자격 및 임용)** ① 제5조의 교수 등 공무원 중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의 직종과 자격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16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중 교수ㆍ부교수는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조교수는 교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며, 조교는 교장이 임명한다.<개정 2011. 7. 21.>

③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교수ㆍ부교수의 임명권을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6조의2(「교육공무원법」 등의 준용)** 일반학 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중 군인ㆍ군무원이 아닌 사람은 특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임용기간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을 준용하며, 보수ㆍ연수ㆍ신분보장ㆍ징계 및 소청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6. 2. 3.>

[본조신설 2013. 3. 22.]

**제7조(졸업자의 임용)** 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육군의 소위로 임용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8조(학사학위 수여)** 학교를 졸업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이 경우 학위의 종류 등 학위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9조** 삭제 <1994. 12. 31.>

**부칙** <제2703호,1974. 12. 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편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육군단기사관학교령에 의한 육군단기사관학교에 재학중인 자 및 공군교육사령부령에 의한 공군교육사령부에 소속된 비행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되는 단기사관학교에 편입된다.

③(졸업자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단기사관학교에 편입된 자 및 이 법 시행전에 육군단기사관학교령에 의한 육군단기사관학교를 졸업한 자(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2년의 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초급대학졸업자격을 준다.<개정 1978. 12. 5.>

**부칙** <제3112호,1978. 12. 5.>

①(시행일) 이 법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졸업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단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초급대학졸업자격이 부여된 자에 대하여는 제8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3342호,1980. 12. 31.>(군무원인사법)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국군조직법 제12조제3항ㆍ제4항 및 동법 제16조, 국방대학원설치법 제6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동법 제7조, 사관학교설치법 제5조제1항, 단기사관학교설치법 제5조제1항, 공군기술고등학교설치법 제5조제1항 및 군행형법 제10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중 "군속"을 각각 "군무원"으로 한다.

**부칙** <제3456호,1981. 11. 2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전임강사 및 조교는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596호,1982.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재학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단기사관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이 법에 의한 사관생도과정에 재학중인 자로 본다.

③(졸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단기사관학교를 졸업한 자는 이 법에 의한 사관생도과정을 졸업한 자로 본다.

**부칙** <제4268호,1990. 12. 27.>(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단기사관학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⑨내지5) 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제4838호,1994.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재학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단기사관학교의 학사과정에 재학중인 자의 교과ㆍ졸업 및 학위수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재직중인 조교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단기사관학교에 재직중인 조교수는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400호,2001. 1. 29.>(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4& 생략

4* 단기사관학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3항중 " 교육부장관 "을 각각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으로 한다.

4( 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7089호,2004. 1. 2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여자사관생도의 모집시기에 관한 특례) 제3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단기사관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여자사관생도의 모집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7269호,2004.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의 단기사관학교 등에 관한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단기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하여 육군에 둔 단기사관학교(이하 " 단기사관학교 "로 한다)는 학교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단기사관학교의 교과과정과 교장 및 교수 등은 학교의 교과과정과 교장 및 교수 등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단기사관학교를 졸업한 자와 졸업한 자에게 수여된 학위는 학교를 졸업한 자와 졸업한 자에게 수여된 학위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군인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11조제1항제1호ㆍ제2항제2호중 " 단기사관학교 "를 각각 " 육군3사관학교 "로 하고, 제26조제4항중 " 단기사관학교과정 "을 " 육군3사관학교과정 "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단기사관학교설치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852호,2008. 2. 29.>(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81> 까지 생략

<182> 육군3사관학교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 을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으로 한다.

<18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216호,2010. 3. 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66호,2011. 7. 21.>(고등교육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1* 까지 생략

1(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 전임강사와 조교 " 를 " 조교 " 로 한다.

2) 부터2&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1638호,2013. 3.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공무원법」 등의 준용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일반학 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적용한다.

**부칙** <제11690호,2013. 3. 23.>(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46>까지 생략

<147>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을 " 교육부장관 " 으로 한다.

<14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936호,2016. 2. 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중 "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 을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14609호,2017. 3. 21.>(군인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1* 까지 생략

1(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 장관급 " 을 " 장성급(將星級) " 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16357호,2019. 4. 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83호,2022. 12. 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시행 2023. 6. 14.] [대통령령 제33502호, 2023. 6. 7., 일부개정]

국방부 (교육훈련정책과) 02 - 748 - 6244

**제1조(목적)** 이 영은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라 육군에 두는 육군3사관학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2. 8.]

**제2조(위치)** 육군3사관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위치는 경상북도 영천시로 한다.
[전문개정 2011. 2. 8.]

**제3조(사관생도)** ① 학교에서 수학하는 사람을 "사관생도"라 한다.
② 사관생도는 학교에 입학(제9조제2항에 따른 임시 입학은 제외한다)한 날에 육군 사관생도의 병적(兵籍)에 편입한다.
③ 사관생도의 대우는 준사관(準士官)에 준한다. 다만, 보수에 관하여는 「군인보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 2. 8.]

**제4조(교장)** ① 교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수부장·생도대장 또는 참모장 중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1. 2. 8.]

**제5조(부서의 설치 등)** ① 학교에 교수부·생도대 및 참모부를 두며, 그 밖에 필요한 부서 및 부대를 둘 수 있다.
② 교수부에는 교수부장을, 생도대에는 생도대장을, 참모부에는 참모장을 두며, 각 부서 및 부대에 각각 장(長)을 둔다.
③ 교수부장·생도대장 및 참모장은 장성급(將星級)장교 또는 영관급장교 중에서 교장의 제청으로 육군참모총장이 임명하고, 그 밖의 부서 및 부대의 장은 영관급장교 또는 위관급장교 중에서 교장이 임명한다.<개정 2017. 9. 5.>
④ 교수부는 일반학과정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생도대는 훈육과 그 밖에 교수부가 분장하는 교육 외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참모부는 교무와 그 밖에 다른 부서 및 부대가 분장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⑤ 제1항의 그 밖에 필요한 부서의 설치 및 사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그 밖에 필요한 부대의 설치 및 사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

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 2. 8.]

**제6조(교관 및 교수 등)** 학교에 군사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관을 두며,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이하 “ 일반학교수 ”라 한다)와 조교를 둔다. <개정 2012. 2. 29.>
[전문개정 2011. 2. 8.]

**제6조의2(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 ① 대통령은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이하 “ 법 ”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 및 부교수의 임명권을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한다.
②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 및 부교수는 학교의 장이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육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육군참모총장에게 추천하고, 육군참모총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제청한다.
[전문개정 2011. 2. 8.]

**제7조(정원)** 학교에 군인 및 군무원을 두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일반학교수 및 조교인 군인 또는 군무원의 정원은 각각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이하 “ 대학 ”이라 한다)의 경우에 준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11. 2. 8.]

**제8조(입학 등)** ① 사관생도의 입학ㆍ퇴학 및 휴학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장이 허가한다.
② 사관생도는 입학 지원자 중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시험을 거쳐 선발한다.
[전문개정 2011. 2. 8.]

**제8조의2(입학연령 상한 연장)** 법 제3조제1호 단서에 따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이하 “ 제대군인 ”이라 한다)에 대한 입학연령 상한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연장한다.
1.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3세
2.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2세
3.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1세
[본조신설 2023. 6. 7.]

**제9조(입학 시기 등)** ① 사관생도의 입학 시기는 제11조에 따라 학년 초부터 30 일내로 한다.
② 교장은 예비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선발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입학기일 전에 임시 입학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임시 입학기간은 5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임시 입학한 사람에게는 급식과 의복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1. 2. 8.]

**제10조(교과)** 학교의 교과는 학칙으로 정하며, 일반학과정의 교과는 대학의 교과에 준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11. 2. 8.]

**제11조(과정수료의 단위)** 학교의 과정수료의 단위는 학년으로 하고, 학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제1학기 및 제2학기로 구분한다.
1. 제1학기: 3월 1일부터 그 해의 8월 31일까지
2. 제2학기: 9월 1일부터 다음해의 2월 말일까지
[전문개정 2011. 2. 8.]

**제12조(수업일수)** 학교의 수업일수는 학칙으로 정하며, 일반학과정의 수업일수는 대학의 수업일수에 준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11. 2. 8.]

**제13조(수업의 시작 및 종료 시각)** 수업의 시작 및 종료의 시각은 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 2. 8.]

**제14조(휴업일 등)** ① 학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개교기념일
3. 학칙에서 정하는 하기 및 동기 휴가
4.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군(軍) 행사일
② 교장은 비상재해 또는 그 밖의 급박한 사태가 발생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임시 휴업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육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2. 8.]

**제15조(파견 교육)** 교장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관생도를 국내의 다른 학교나 부대 또는 외국에 파견하여 수학시킬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2. 8.]

**제16조(편입학 등)** 사관생도의 편입학과 전학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 2. 8.]

**제17조(학년과정 수료 및 학위 등)** ① 사관생도의 학년과정 수료와 졸업을 인정하려면 그 성적을 미리 평가하여야 한다.
② 법 제8조에 따른 학위는 이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에게는 이학사를, 인문사회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에게는 문학사를, 공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에게는 공학사를 각각 수여하고, 그 밖에 학

위의 종류 등 학사학위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2. 8.]

**제18조(퇴학 사유)** ① 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관생도를 퇴학시킬 수 있다.
1. 품행이 매우 불량한 생도
2. 군기(軍紀)를 문란하게 하는 등 사관생도로서 지켜야 할 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생도
3. 학업성적이 불량하여 졸업할 가능성이 없는 생도
4. 질병이나 그 밖의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정해진 과정을 이수할 수 없는 생도
5. 학칙을 위반한 생도

② 제1항에 따라 퇴학된 사관생도는 그 퇴학된 날에 사관생도의 병적에서 제적된다.
[전문개정 2011. 2. 8.]

**제19조(학칙)** ① 교장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칙을 정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학칙을 승인하려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 3. 23.>
③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학년ㆍ학기와 휴업일에 관한 사항
2. 학급 편제와 사관생도의 정원에 관한 사항
3. 교과 및 수업일수에 관한 사항
4. 학년과정 수료의 인정과 평가에 관한 사항
5. 입학ㆍ퇴학ㆍ휴학 및 졸업과 상벌에 관한 사항
6. 졸업 자격에 관한 사항
7. 제20조에 따른 교육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학교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1. 2. 8.]

**제20조(교육운영위원회)** ① 교육 운영에 관한 교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학교에 교육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교수부장ㆍ생도대장 및 참모장과 교장이 지명하는 5명 이상 20명 이하의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수부장 또는 생도대장 중 선임자가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2. 8.]

**제21조(여자사관생도의 모집 시기)** 법 제3조제1호 및 법률 제7089호 단기사관학교설치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른 육군3사관학교 여자사관생도의 모집은 2015학년도부터 실시한다.

[본조신설 2014. 2. 5.]

**제2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조에 따른 입학자격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학위 수여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4. 8. 6.]

**부칙** <제14651호,1995. 5. 19.>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15호,2001. 1. 29.>(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77>생략

<78>단기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전단중 " 교육부장관 "을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으로 한다.

<79>내지 <152>생략

**부칙** <제18538호,2004. 9.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972호,2005. 7. 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의 제2호 가목6)의 지급대상란 및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 단기사관학교 "를 각각 " 육군3사관학교 "로 한다.

②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의2 및 제15조제1항제3호나목중 " 단기사관학교 "를 각각 " 육군3사관학교 "로 한다.

③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전단 및 동조제4항 전단중 " 단기사관학교 "를 각각 " 육군3사관학교 "로 한다.

④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육군3사관학교

**부칙** <제20675호,2008. 2. 29.>(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2@ 까지 생략
2#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전단 중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을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으로 한다.
2$ 부터3) 까지 생략

**부칙** <제22659호,2011. 2. 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644호,2012. 2. 29.>(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4* 까지 생략
4(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 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 "를 " 부교수 및 조교수 "로 한다.
5) 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4413호,2013. 3. 23.>(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2# 까지 생략
2$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전단 중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을 " 교육부장관 "으로 한다.
2% 부터3@ 까지 생략

**부칙** <제25136호,2014. 2.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532호,2014. 8. 6.>(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266호,2017. 9. 5.>(군인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 장관급 " 을 " 장성급(將星級) " 으로 한다.

<56>부터 <90>까지 생략

**부칙** <제33502호,2023. 6. 7.>

이 영은 2023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육군공병학교령

[시행 2025. 9. 2.] [대통령령 제35726호, 2025. 9. 2., 타법개정]

국방부 (국군조직담당관) 02 - 748 - 6562

**제1조(설치와 임무)** ①육군에 육군공병학교를 둔다.
②육군공병학교는 공병병과의 전술 및 교리를 연구ㆍ발전시키고, 공병병과 장병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제2조(교장)** ①육군공병학교에 교장을 둔다.
② 교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한다.<개정 2025. 9. 2.>
③교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부서 및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7. 11. 14.>
④ 삭제<2017. 11. 14.>

**제3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육군공병학교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개정 2017. 11. 14.>
②제1항에 따른 부서의 설치와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7. 11. 14.>
[제목개정 2017. 11. 14.]

**제4조(교육과정 등)** 육군공병학교의 교육과정ㆍ수업기간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5조(정원)** 육군공병학교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제19680호,2006. 9. 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266호,2017. 9. 5.>(군인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육군공병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 장관급 ”을 “ 장성급(將星級) ”으로 한다.
<57>부터 <90>까지 생략

**부칙** <제28431호,2017. 11. 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726호,2025. 9. 2.>(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육군기계화학교령

[시행 2025. 9. 2.] [대통령령 제35726호, 2025. 9. 2., 타법개정]

국방부 (국군조직담당관) 02 - 748 - 6562

**제1조(설치와 임무)** ① 육군에 육군기계화학교를 둔다.

② 육군기계화학교는 기갑부대 및 기계화부대의 전술 및 교리를 연구ㆍ발전시키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전문개정 2011. 8. 3.]

**제2조(교장의 임명과 직무)** ① 육군기계화학교에 교장을 둔다.

② 교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補)한다.<개정 2025. 9. 2.>

③ 교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부서와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7. 11. 14.>

[전문개정 2011. 8. 3.]

**제3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 육군기계화학교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개정 2017. 11. 14.>

② 제1항의 부서의 설치와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 및 임무ㆍ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7. 11. 14.>

[전문개정 2011. 8. 3.]

**제4조(교육과정 등)** 육군기계화학교의 교육과정, 수업기간, 그 밖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 8. 3.]

**제5조(정원)** 육군기계화학교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 8. 3.]

**제6조(해군장병 또는 공군장병의 교육)** 육군참모총장은 해군참모총장 또는 공군참모총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육군기계화학교에서 해군장병 또는 공군장병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8. 3.]

**부칙** <제15154호,1996. 10.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058호,2011. 8. 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266호,2017. 9. 5.>(군인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육군기계화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 장관급 "을 " 장성급(將星級) "으로 한다.

<60>부터 <90>까지 생략

**부칙** <제28430호,2017. 11. 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726호,2025. 9. 2.>(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육군보병학교령

[시행 2025. 9. 2.] [대통령령 제35726호, 2025. 9. 2., 타법개정]

국방부 (국군조직담당관) 02 - 748 - 6562

**제1조(설치와 임무)** 육군의 보병에 필요한 전술 및 학술에 관한 조사 및 연구와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발전시키게 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보병학교(이하 “ 보병학교 ”라 한다)를 둔다.

**제2조(교장)** ①보병학교에 교장을 둔다.

② 교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한다.<개정 2025. 9. 2.>

③교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부하를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부대와 부서의 설치)** ①보병학교에 필요한 부대와 부서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부서의 설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4조(교육과정등)** 보병학교의 교육과정ㆍ수업기간 기타 학교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5조(해군 또는 공군장병의 수학)** 육군참모총장은 해군참모총장 또는 공군참모총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군 또는 공군의 장병에 대하여 보병학교에서 수학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정원)** 보병학교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제12864호,1989. 12. 27.>

이 영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708호,1992. 8. 13.>(군인사법시행령중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육군보병학교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교장은 육군의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⑧및 ⑨생략

**부칙** <제28266호,2017. 9. 5.>(군인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

<61> 육군보병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 장관급 "을 " 장성급(將星級) "으로 한다.

<62>부터 <90>까지 생략

**부칙** <제35726호,2025. 9. 2.>(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육군부사관학교령

[시행 2017. 9. 5.] [대통령령 제28266호, 2017. 9. 5., 타법개정]

국방부 (국군조직담당관) 02 - 748 - 6551

**제1조(설치와 임무)** ①육군에 육군부사관학교를 둔다.
②육군부사관학교는 육군의 부사관을 양성하고 보수교육을 실시하며, 소부대의 전술과 이에 필요한 교리를 연구ㆍ발전시킨다.

**제2조(교장 등)** ①육군부사관학교(이하 “ 부사관학교 ”라 한다)에 교장을 둔다.
②교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한다.<개정 2017. 9. 5.>
③교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소속부대 및 참모부서의 설치)** ①부사관학교에 필요한 소속부대와 참모부서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속부대의 설치ㆍ임무와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참모부서의 설치와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4조(교육과정 등)** 부사관학교의 교육과정 및 수업기간,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5조(정원)** 부사관학교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제19361호,2006. 2. 28.>
이 영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266호,2017. 9. 5.>(군인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육군부사관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 장관급 ”을 “ 장성급(將星級) ”으로 한다.
<64>부터 <90>까지 생략

# 육군정보통신학교령

[시행 2025. 9. 2.] [대통령령 제35726호, 2025. 9. 2., 타법개정]

국방부 (국군조직담당관) 02 - 748 - 6562

**제1조(설치와 임무)** ①육군에 육군정보통신학교를 둔다.
②육군정보통신학교는 정보통신병과의 전술 및 교리를 연구ㆍ발전시키고, 정보통신병과 장병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제2조(교장)** ①육군정보통신학교에 교장을 둔다.
② 교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한다.<개정 2025. 9. 2.>
③교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통할하고, 참모부서 및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④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행정부장 또는 교수부장 중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참모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육군정보통신학교에 행정부 및 교수부 등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참모부서의 설치와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교육과정 등)** 육군정보통신학교의 교육과정ㆍ수업기간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5조(정원)** 육군정보통신학교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제19681호,2006. 9. 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266호,2017. 9. 5.>(군인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
<65> 육군정보통신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 장관급 ”을 “ 장성급(將星級) ”으로 한다.
<66>부터 <90>까지 생략

**부칙** <제35726호,2025. 9. 2.>(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육군정보학교령

[시행 2025. 9. 2.] [대통령령 제35726호, 2025. 9. 2., 타법개정]

국방부 (국군조직담당관) 02 - 748 - 6562

**제1조(설치와 임무)** ①육군에 육군정보학교를 둔다.
②육군정보학교는 정보병과의 전술 및 교리를 연구ㆍ발전시키고, 정보병과 장병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제2조(교장)** ①육군정보학교에 교장을 둔다.
② 교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한다.<개정 2025. 9. 2.>
③교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통할하고 참모부서 및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④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행정부장 또는 교수부장 중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참모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육군정보학교에 행정부 및 교수부 등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둘 수 있다.
②참모부서 설치와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교육과정 등)** 육군정보학교의 교육과정ㆍ수업기간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5조(정원)** 육군정보학교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제19682호,2006. 9. 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266호,2017. 9. 5.>(군인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5>까지 생략
<66> 육군정보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 장관급 ”을 “ 장성급(將星級) ”으로 한다.
<67>부터 <90>까지 생략

**부칙** <제35726호,2025. 9. 2.>(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육군종합군수학교령

[시행 2025. 9. 2.] [대통령령 제35726호, 2025. 9. 2., 타법개정]

국방부 (국군조직담당관) 02 - 748 - 6562

**제1조(설치와 임무)** ① 육군에 육군종합군수학교를 둔다.

② 육군종합군수학교는 군수(軍需)ㆍ병참(兵站)ㆍ병기 및 수송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교리를 연구ㆍ발전시킨다.

[전문개정 2011. 8. 3.]

**제2조(교장의 임명과 직무)** ① 육군종합군수학교에 교장을 둔다.

② 교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補)한다.<개정 2025. 9. 2.>

③ 교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참모부서와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전문개정 2011. 8. 3.]

**제3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 육군종합군수학교에 군수교육단, 병참교육단, 병기교육단, 수송교육단, 그 밖의 필요한 부서를 둔다.

② 육군종합군수학교에 제1항의 부서 외에 필요한 부대를 둘 수 있다.

③ 제1항의 부서의 설치와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제2항의 부대의 설치 및 임무ㆍ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 8. 3.]

**제4조(교육과정 등)** 육군종합군수학교의 교육과정, 수업기간, 그 밖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 8. 3.]

**제5조(정원)** 육군종합군수학교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 8. 3.]

**제6조(해군장병 또는 공군장병 등의 교육)** ① 육군참모총장은 해군참모총장 또는 공군참모총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육군종합군수학교에서 해군장병 또는 공군장병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1. 23.>

② 육군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장 및 군수업무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국방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육군종합군수학교에서 국방부, 방위사업청 및 군수업무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직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8. 1. 23.>

[전문개정 2011. 8. 3.]
[제목개정 2018. 1. 23.]

**제7조(수업료 등)** ① 교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군수업무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직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수업료 및 그 밖의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업료 및 그 밖의 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 23.]

**부칙** <제11038호,1983. 2. 1.>
이 영은 198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708호,1992. 8. 13.>(군인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육군기술병과학교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교장은 육군의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④내지 ⑨생략

**부칙** <제15218호,1996.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057호,2011. 8. 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266호,2017. 9. 5.>(군인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6>까지 생략
<67> 육군종합군수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 장관급 " 을 " 장성급(將星級) " 으로 한다.

<68>부터 <90>까지 생략

**부칙** <제28598호,2018. 1. 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726호,2025. 9. 2.>(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육군종합행정학교령

[시행 2025. 9. 2.] [대통령령 제35726호, 2025. 9. 2., 타법개정]

국방부 (국군조직담당관) 02 - 748 - 6562

**제1조(설치와 임무)** ①육군에 육군종합행정학교를 둔다. <개정 1999. 2. 26.>
②육군종합행정학교는 육군의 재정ㆍ군사경찰ㆍ인사ㆍ법무 및 군종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이에 필요한 교리를 발전시킨다.<개정 1999. 2. 26., 2017. 11. 14., 2019. 6. 25., 2020. 2. 4.>

**제2조(교장)** ①육군종합행정학교(이하 “ 종합행정학교 ”라 한다)에 교장을 둔다. <개정 1999. 2. 26.>
② 교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한다.<개정 2025. 9. 2.>
③교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부하를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부대와 부서의 설치)** ①종합행정학교에 필요한 부대와 부서를 둔다. <개정 1999. 2. 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부서의 설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개정 1999. 2. 26.>
[제목개정 1999. 2. 26.]

**제4조(교육과정등)** 종합행정학교의 교육과정ㆍ수업기간 기타 학교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5조(정원)** 종합행정학교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해군ㆍ공군장병의 교육)** 육군참모총장은 해군참모총장 또는 공군참모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종합행정학교에서 해군 또는 공군장병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9. 2. 26.>

**부칙** <제11041호,1983. 2. 1.>
이 영은 198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708호,1992. 8. 13.>(군인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육군종합행정학교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교장은 육군의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⑤내지 ⑨생략

**부칙** <제16121호,1999. 2. 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266호,2017. 9. 5.>(군인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7>까지 생략

<68> 육군종합행정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 장관급 "을 " 장성급(將星級) "으로 한다.

<69>부터 <90>까지 생략

**부칙** <제28429호,2017. 11. 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894호,2019. 6. 25.>(군인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육군종합행정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 중 " 인사행정 "을 " 인사 "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부칙** <제30384호,2020. 2. 4.>(군인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육군종합행정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 중 " 헌병 "을 " 군사경찰 "로 한다.

⑫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5726호,2025. 9. 2.>(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육군포병학교령

[시행 2025. 9. 2.] [대통령령 제35726호, 2025. 9. 2., 타법개정]

국방부 (국군조직담당관) 02 - 748 - 6562

**제1조(설치와 임무)** 육군의 포병에 필요한 전술 및 학술에 관한 조사 및 연구와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발전시키게 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포병학교(이하 “ 포병학교 ”라 한다)를 둔다.

**제2조(교장)** ①포병학교에 교장을 둔다.

② 교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한다.<개정 2025. 9. 2.>

③교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부하를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부대와 부서의 설치)** ①포병학교에 필요한 부대와 부서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부서의 설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4조(교육과정 등)** 포병학교의 교육과정ㆍ수업기간 기타 학교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5조(해군 또는 공군장병의 수학)** 육군참모총장은 해군참모총장 또는 공군참모총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군 또는 공군의 장병에 대하여 포병학교에서 수학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정원)** 포병학교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제12863호,1989. 12. 27.>

이 영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708호,1992. 8. 13.>(군인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육군포병학교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교장은 육군의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⑨생략

**부칙** <제28266호,2017. 9. 5.>(군인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9>까지 생략

<70> 육군포병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 장관급 " 을 " 장성급(將星級) " 으로 한다.

<71>부터 <90>까지 생략

**부칙** <제35726호,2025. 9. 2.>(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육군학생군사학교령

[시행 2018. 8. 28.] [대통령령 제29119호, 2018. 8. 28., 일부개정]

국방부 (국군조직담당관) 02 - 748 - 6562

**제1조(설치와 임무)** ①육군에 육군학생군사학교(이하 “ 학교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 2. 22.>

②학교는 육군에서 관장하는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며 이에 필요한 교리를 발전시킨다. <개정 2012. 2. 22., 2018. 8. 28.>

1. 「군인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관후보생 및 준사관후보생에 대한 입영교육
2. 「병역법」 제58조제4항에 따른 현역장교 병적편입 대상자에 대한 입영교육
3. 삭제<2018. 8. 28.>
4. 삭제<2018. 8. 28.>

**제2조(교장)** ①학교에 교장을 둔다. <개정 2012. 2. 22., 2018. 8. 28.>

②교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장교로 보한다.<개정 1992. 8. 13., 2017. 9. 5.>

③교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부서 및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2. 2. 22.>

④ 삭제<2018. 8. 28.>

⑤ 삭제<2018. 8. 28.>

⑥ 삭제<2018. 8. 28.>

[제목개정 2018. 8. 28.]

**제3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학교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제1항의 부서의 설치와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와 그 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 삭제 <2018. 8. 28.>

**제5조(다른 부대에서의 교육 실시)** 교장은 일부 교육의 대상 및 내용이 학교 시설에서 실시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육군참모총장의 승인을 얻어 다른 부대에서 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 8. 28.]

**제6조(해군ㆍ공군의 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실시)** 육군참모총장은 해군 또는 공군의 참모총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군 또는 공군의 교육대상자에 대하여 학교에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정원)** 학교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제11782호,1985. 10. 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나목중 " 및 육군종합행정학교장 "을 " 、육군종합행정학교장 및 육군학생중앙군사학교장 "으로 한다.

**부칙** <제13708호,1992. 8. 13.>(군인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육군학생중앙군사학교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교장은 육군의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⑥내지 ⑨생략

**부칙** <제23624호,2012. 2. 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266호,2017. 9. 5.>(군인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0>까지 생략

<71> 육군학생군사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 장관급 "을 " 장성급(將星級)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 장관급 "을 " 장성급 "으로 한다.

<72>부터 <90>까지 생략

**부칙** <제29119호,2018. 8.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3호, 2013. 3. 23., 타법개정]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 044 - 203 - 6402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 및 농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고 농업분야에서의 산학협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자영자 양성을 위한 농업계열의 고등학교와 농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의 협동 및 연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 2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2. 29., 2008. 12. 31., 2010. 6. 29., 2013. 3. 23.>

1. "자영농고"란 농업자영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로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또는 제91조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감으로부터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로 지정을 받은 학교를 말한다.
2. "농업관련기관"이라 함은 자영농고와의 협동 및 연계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농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협의회의 설치)** 제2조제1호의 자영농고의 경우에는 당해 자영농고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 교육청 소속하에 자영농고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영농고와 농업관련기관의 시설의 상호 활용에 관한 사항
2. 자영농고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과 농업관련기관 소속 공무원 간의 상호 인적 교류에 관한 사항
3. 자영농고의 시설확충 및 그 운영을 위한 재원의 확보와 지원에 관한 사항
4. 자영농고의 재학생에 대한 학비보조의 범위와 그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자영농고의 신입생의 선발방법에 관한 사항
6. 자영농고 재학생의 현장교육에 관한 사항
7. 자영농고 졸업생에 대한 농업분야의 취업 및 진학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농림시책 또는 지방의 농림사업과 학교교육의 연계에 관한 사항
9. 농업인 교육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자영농고의 육성에 관한 사항

**제5조(협의회의 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협의회의 위원장은 당해 교육청 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 및 특별자치도에 있어서는 농업기술원장이 되며, 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어서는 산업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은 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청 소속의 협의회에 한한다.
1. 시ㆍ도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2. 도 및 특별자치도의 농업정책을 담당하는 국장 또는 과장
3. 도 및 특별자치도 소속 농업기술원의 농업인력의 양성을 담당하는 국장 또는 과장
4. 자영농고 교장
5. 자영농고 소재의 농업기술센터 소장
6. 당해 교육청 소속 직원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 1인
7. 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자로서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중 협의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1인

②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그 교육청의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제6조(협의회의 회의)** ①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협의회 결정사항의 시행)** 협의회가 심의하여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계기관은 그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협의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시설설비의 상호 활용)** 자영농고와 이에 연계된 농업관련기관은 그 시설설비를 상호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학비감면 및 장학금 지급)** 자영농고의 학생에게는 재학 중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감면할 수 있으며, 장학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기숙사 등)** 자영농고에는 영농교육 및 그에 관한 실습을 하게 하기 위하여 합숙교육장을 겸한 기숙사, 그 밖의 부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2조(경비지원)** 교육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영농고의 운영, 시설의 확충 및 학생의 교육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8. 12. 31., 2013. 3. 23.>

**제13조(졸업생에 대한 지원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영농고의 졸업생에 대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8. 12. 31., 2013. 3. 23.>

②제1항에 따라 영농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산업기능요원 및 후계 농업경영인의 선발에 있어서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제14조(농업인 교육의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자영농고의 시설과 인력을 활용한 농업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8. 12. 31., 2013. 3. 23.>

**제15조(시행세칙)**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08. 12. 31., 2013. 3. 23.>

**부칙** <제19538호,2006. 6. 2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자치도에 관한 경과조치) 2006년 6월 30일까지는 제2조제1호 중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는 "특별시·광역시·도"로, 제5조제2항 중 "도 및 특별자치도"는 "도"로 본다.

③(시범농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시범농고는 이 영에 따른 자영농고로 본다.

④(농촌지도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림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농촌지도기관은 이 영에 따른 농업관련기관으로 본다.

**부칙** <제20740호,2008. 2. 29.>(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4# 까지 생략

4$ 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13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농림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농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 중 "농림부장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농수산식품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와 농림부"를 "교육과학기술부와 농수산식품부"로 한다.

4%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 <제21214호,2008. 12. 31.>(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2@ 까지 생략

2# 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12조, 제13조제1항 및 제14조 중 " 농수산식품부장관 " 을 각각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으로 한다.

제15조 중 " 농수산식품부 " 를 " 농림수산식품부 " 로 한다.

2$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제22234호,2010. 6. 29.>(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 자영농고 " 란 농업자영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또는 제91조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 시ㆍ도 " 라 한다) 교육감으로부터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로 지정을 받은 학교를 말한다.

⑥ 부터 ⑨ 까지 생략

**제8조** 및 제9조 생략

**부칙** <제23527호,2012. 1. 25.>(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을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로 한다.

⑪부터 ⑭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4423호,2013. 3. 2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0>까지 생략

<71> 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12조, 제13조제1항 및 제14조 중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을 각각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으로 한다.

제12조 및 제14조 중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을 각각 " 교육부장관 " 으로 한다.

제15조 중 " 교육과학기술부와 농림수산식품부 " 를 " 교육부와 농림축산식품부 " 로 한다.

<72>부터 <105>까지 생략

#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28호, 2026. 6. 23.,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044 - 205 - 2308
교육부 (교원정책과) 044 - 203 - 6481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감의 보조기관ㆍ직속기관 및 하급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과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 2. 24., 2005. 2. 28., 2007. 11. 30., 2012. 6. 29., 2024. 2. 27., 2026. 6. 23.>

**제2조(정원)** ①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감의 보조기관ㆍ직속기관 및 하급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0. 2. 26., 2011. 2. 25., 2012. 6. 29., 2026. 6. 23.>

②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24. 2. 27.>

**제3조(정원의 배정)** ①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별 정원은 교육부장관이, 그 하부조직별 정원은 당해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 배정한다. <개정 2001. 1. 29., 2008. 12. 31., 2010. 2. 26., 2012. 6. 29., 2014. 11. 19., 2026. 6. 23.>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원(별표 2에 따른 정원만 해당한다)을 배정할 때에는 총 정원의 범위에서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별 학생밀도 및 읍ㆍ면 지역 단위의 학교 비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 적정 기준에 따라 배정하여야 한다.<신설 2010. 2. 26., 2012. 6. 29., 2014. 11. 19., 2026. 6. 23.>

③ 제2항에 따른 적정 기준의 구체적인 구성 요소 및 산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10. 2. 26., 2014. 11. 19.>

**제4조(한시정원)** ① 취약계층의 기초학력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한시정원을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둔다. <개정 2025. 2. 25.>

② 학교의 설립ㆍ폐교에 따른 효율적인 교원 배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한시정원을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둔다. <개정 2025. 2. 25.>

[본조신설 2024. 2. 27.]

**부칙** <제15917호,1998. 10. 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의 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배정된 특별시·광역시·도별 및 그 하부조직별 정원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별도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대통령령 제14182호 지방교육행정기관직제중개정령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활동과 관련하여 면직·해임 또는 파면된 교원의 특별채용 또는 신규채용을 위하여 인정된 별도정원중 284인(중·고등학교 교사 258인, 초등학교 교사 26인)에 해당하는 정원은 1999년 2월 28일까지 별표 2에 의한 정원외에 공립의 각급학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대통령령 제15630호 지방교육행정기관직제중개정령에 의하여 감축된 중·고등학교 교사 89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별표 2에 의한 정원외에 공립의 각급학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당시 대통령령 제15771호 지방교육행정기관직제중개정령에 의하여 감축된 장학관 2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3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전라남도의 하급교육행정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142호,1999. 2. 27.>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축되는 2,645인(장학관 26, 교육연구관 23, 장학사 214, 교육연구사 106, 교장 255, 교감 1,177, 교사 844)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2월 29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732호,2000. 2. 28.>(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교육행정기관및공립의각급학교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총계 "3,687"을 "3,686"으로 하고, 교육공무원 계 "3,639"를 "3,654"로 하며, 장학관 "712"를 "727"로 하고, 일반직 계 "48"을 "32"로 하며, 서기관 "15"를 "14"로 하고, "서기관 또는 장학관 1" 및 "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장학관 14"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6739호,2000. 2. 28.>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축되는 교장정원 276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1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7115호,2001. 1. 29.>(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4$ 생략

4% 지방교육행정기관및공립의각급학교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 교육부장관 " 을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 으로 한다.

4^ 내지 <152>생략

**부칙** <제17177호,2001. 3. 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30호,2002. 3.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16호,2003. 2. 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91호,2004. 2. 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적용례)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2005년 3월 31일까지는 별표 1에 불구하고 별표 1의2를 적용한다.

**부칙** <제18521호,2004. 8. 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24호,2005. 2.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80호,2005. 4. 9.>
이 영은 2005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363호,2006. 2. 28.>
이 영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96호,2006. 6. 30.>(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 등에 따른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총정원의 한도란 중 “281인”을 “286인”으로 한다.

**부칙** <제19636호,2006. 8. 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13호,2007. 2. 28.>
이 영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21호,2007. 11.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국가공무원 정원 15명(서기관 15)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644호,2008. 2. 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214호,2008. 12. 31.>(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0> 까지 생략
<81>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 을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으로 한다.
<82>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제21338호,2009. 2. 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066호,2010. 2. 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679호,2011. 2. 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173호,2011. 9.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637호,2012. 2. 28.>
이 영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739호,2012. 4. 18.>

이 영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895호,2012. 6. 29.>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384호,2013. 2. 20.>

이 영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583호,2013. 6.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 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교육전문직원인 국가공무원의 정원 4,225명(장학관 829명, 교육연구관 177명, 장학사 2,574명, 교육연구사 64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지방교육행정기관에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법률 제11527호 「교육공무원법」 제58조에 따라 각 시ㆍ도 교육감이 임용하는 교육공무원의 정원에 대한 각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가 개정되어 그 조례에 반영될 때까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해당 시ㆍ도의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5220호,2014. 2. 27.>

이 영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751호,2014. 11. 19.>(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을 각각 “ 교육부장관 ”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 교육과학기술부령 ”을 “ 교육부령 ”으로 한다.
<60>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6112호,2015. 2. 26.>
이 영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000호,2016. 2. 29.>
이 영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872호,2017. 2. 28.>
이 영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230호,2017. 8.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674호,2018. 2. 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599호,2019. 2. 26.>
이 영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471호,2020. 2. 25.>
이 영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503호,2021. 2. 25.>
이 영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499호,2022. 2. 22.>

이 영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306호,2023. 2.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3,444명(유치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교사 22명,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교사 1,146명, 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교사 2,276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공립의 각급 학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4237호,2024. 2.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4,353명(유치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교사 26명,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교사 2,139명, 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교사 2,188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공립의 각급 학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5290호,2025. 2.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4,885명(유치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교사 18명,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교사 2,424명, 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교사 2,44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공립의 각급 학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6096호,2026. 2.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3,752명(유치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교사 25명,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교사 2,269명, 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교사 1,458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공립의

각급 학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6428호,2026. 6. 23.>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별표 1] <개정 2026. 6. 23.>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국가공무원 정원표(제2조제1항 관련)

| | |
|---|---|
| 총계 | 2,619 |
| 교사 계 | 2,598 |
| 중등순회교사 | 44 |
| 전문상담순회교사 | 828 |
| 특수교육순회교사 | 1,716 |
| 영양교사 | 10 |
| 일반직 계 | 21 |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장학관 | 18 |
| 고위공무원단 | 3 |

■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별표 1의2] 삭제 <2005.4.9>

■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별표 2] <개정 2026. 2. 19.>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표(제2조제2항 관련)

| | |
|---|---|
| 총계 | 332,025 |
| 유치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계 | 14,811 |
| 원장 | 604 |
| 원감 | 1,027 |
| 교사 | 13,180 |
|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계 | 141,877 |
| 교장 | 6,052 |
| 교감 | 6,195 |
| 교사 | 129,630 |
| 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계 | 134,917 |
| 교장 | 3,946 |
| 교감 | 3,730 |
| 교사 | 127,241 |
| 특수학교 계 | 18,281 |
| 교장 | 103 |
| 교감 | 132 |
| 교사(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특수학급 담당 특수교사를 포함한다) | 18,046 |
| 각급 학교에 두는 보건교사 등 계 | 22,139 |
| 보건교사 | 9,137 |
| 영양교사 | 6,930 |
| 사서교사 | 1,702 |
| 전문상담교사 | 4,370 |

■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별표 3] <개정 2026. 2. 19.>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 한시정원표(제4조 관련)

| | |
|---|---|
| 1. 제4조제1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7년 2월 28일) | 500 |
| 총계 | 500 |
|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계 | 500 |
| 교사 | 500 |
| 2. 제4조제1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8년 2월 29일) | 500 |
| 총계 | 500 |
|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계 | 500 |
| 교사 | 500 |
| 3. 제4조제1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8년 2월 29일) | 500 |
| 총계 | 500 |
|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계 | 500 |
| 교사 | 500 |
| 4. 제4조제2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7년 2월 28일) | 1,307 |
| 총계 | 1,307 |
|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계 | 624 |
| 교사 | 624 |
| 중학교 ·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계 | 683 |
| 교사 | 683 |
| 5. 제4조제2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8년 2월 29일) | 1,307 |
| 총계 | 1,307 |
|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계 | 624 |

| | |
|---|---|
| 교사 | 624 |
| 중학교 ·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계 | 683 |
| 교사 | 683 |
| 6. 제4조제2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8년 2월 29일) | 1,307 |
| 총계 | 1,307 |
|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계 | 624 |
| 교사 | 624 |
| 중학교 ·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계 | 683 |
| 교사 | 683 |

#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26. 7. 24.] [교육부령 제391호, 2026. 7. 24.,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044 - 205 - 2308
교육부 (교원정책과) 044 - 203 - 648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 배정의 기준)**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항에 따라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을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배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기본계획의 시행 등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공립의 각급 학교에 국가공무원을 추가적으로 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별 정원 배정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2. 29., 2026. 7. 24.>

1. 유치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별표 1
2.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별표 2
3. 중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별표 3
4. 특수학교: 별표 4
5. 각급 학교에 두는 보건교사 등: 별표 5

**부칙** <제118호,2011. 9.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2013. 3. 2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4$ 까지 생략

4%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 별표 2 비고 제1호, 별표 3 비고 제1호, 별표 4 비고 제1호, 별표 5 제1호의 비고 제1호, 같은 표 제2호의 비고 제1호, 같은 표 제3호의 비고 제1호 및 같은 표 제4호의 비고 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4^ 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제90호,2016. 2.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2016학년도 정원 배정의 특례) 교육부장관은 제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학년도 중 시행한 2016학년도 국가공무원 정원의 시ㆍ도 가배정 등을 고려하여 2016학년도 국가공무원 정원의 시ㆍ도 배정을 조정할 수 있다.

**부칙** <제174호,2019. 2. 28.>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7호,2021. 2. 10.>

이 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1호,2022. 3.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1호,2026. 7.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1. 2. 10.>

유치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국가공무원 정원 배정 기준(제2조제1호 관련)

| 구분 | 배정 기준 |
|---|---|
| 1. 원장 및 원감 | 가. 「유아교육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정<br>나. 신설되는 단설유치원의 경우 총 정원이 증원(增員)된 범위에서 증원 배정하고, 단설유치원이 통·폐합된 경우에는 감원(減員) 배정 |
| 2. 교사 | 가. 총 정원의 100분의 99는 '학생 수 구간 구분에 따른 학교별 교사 수'를 고려한 계산식에 따라 배정하되, 배정 결과를 해당 시·도의 전년도 교사 정원과 비교하여 증감 규모를 산출하고, 증감해야 할 정원의 3분의 1 범위에서 증감(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감원 규모가 전년도 퇴직자보다 많을 경우 퇴직자 수만큼만 감원<br>나. 총 정원의 100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책수요, 해당 시·도교육청의 정원효율화 실적 및 전년도 신규 교사 선발 인원 등을 고려하여 추가 배정 |

비고

1. 제2호가목에 따라 배정하는 교사 정원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 시·도별 배정 교사 정원 = ∑(유아 수 구간*에 속하는 공립유치원별 교사 수** × 해당 유아 수 구간에 속하는 시·도별 공립유치원 총 수)(※ 전전년도 4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고,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정원이 남는 경우에는 시·도의 전년도 유치원교사 정원 비율에 따라 배정하고, 정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증원되는 시·도의 전년도 유치원교사 정원 비율에 따라 증원 규모를 조정한다.

   ※ 병설유치원은 별개의 공립유치원으로 본다.

   * 유아 수 구간: 교육부장관이 유아 수를 기준으로 구간을 정하여 공립유치원을 분류한 것

   ** 유아 수 구간에 속하는 공립유치원별 교사 수 = 해당 유아 수 구간에 속하는 전국 공립유치원 소속 교사 총 수/해당 유아 수 구간에 속하는 전국 공립유치원 총 수

2. 제2호나목에 따라 정원을 추가 배정하는 경우, 시·도교육청별 정원효율화 실적*과 전년도 신규 교사 선발 인원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정원효율화 실적: 전년도 공립유치원 신·증설 실적, 전년도 사립유치원을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하여 채용한 교사 수, 과밀학급 해소 등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교육청의 조치로 인정되는 인원

■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6. 7. 24.>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국가공무원 정원 배정 기준(제2조제2호 관련)

| 구분 | 배정기준 |
|---|---|
| 1. 교장 및 교감 |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정<br>나. 신설학교의 경우 총 정원이 증원된 범위에서 증원 배정하고, 학교가 통·폐합된 경우에는 감원 배정 |
| 2. 교사 | 가. 총 정원의 100분의 95 이상은 '학생 수 구간 구분에 따른 학교별 교사 수'를 고려한 계산식에 따라 배정하되, 배정 결과를 해당 시·도의 전년도 교사 정원과 비교하여 증감 규모를 산출하고, 증감해야 할 정원의 3분의 1 범위에서 증감(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감원 규모가 전년도 퇴직자보다 많을 경우 퇴직자 수만큼만 감원<br>나. 총 정원의 100분의 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책수요, 해당 시·도교육청의 정원효율화 실적 및 전년도 신규 교사 선발 인원 등을 고려하여 추가 배정 |

비고

1. 제2호가목에 따라 배정하는 교사 정원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 시·도별 배정 교사 정원 = ∑(학생 수 구간*에 속하는 공립초등학교별 교사 수** × 해당 학생 수 구간에 속하는 시·도별 공립초등학교 총 수)(※ 전전년도 4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고,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정원이 남는 경우에는 시·도의 전년도 초등교사 정원 비율에 따라 배정하고, 정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증원되는 시·도의 전년도 초등교사 정원 비율에 따라 증원 규모를 조정한다.

   ※ 분교장은 본교와 별개의 공립학교로 본다.

   * 학생 수 구간: 교육부장관이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구간을 정하여 공립학교를 분류한 것

   ** 학생 수 구간에 속하는 공립초등학교별 교사 수 = 해당 학생 수 구간에 속하는 전국 공립초등학교 소속 교사 총 수/해당 학생 수 구간에 속하는 전국 공립초등학교 총 수

2. 제2호나목에 따라 정원을 추가 배정하는 경우, 시·도교육청별 정원효율화 실적*과 전년도 신규 교사 선발 인원, 전년도 제2호나목에 따라 추가 배정된 정원의 배치 실적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정원효율화 실적: 전년도 일방전입을 받은 교사 수, 전년도 학교 통·폐합으로 감축한 교사 수, 전년도 사립학교를 공립학교로 전환 시 특채한 교사 수 등 정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도교육청의 조치로 인정되는 인원

■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6. 7. 24.>

중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국가공무원 정원 배정 기준(제2조제3호 관련)

| 구분 | 배정 기준 |
|---|---|
| 1. 교장 및 교감 |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정<br>나. 신설학교의 경우 총 정원이 증원된 범위에서 증원 배정하고, 학교가 통·폐합된 경우에는 감원 배정 |
| 2. 교사 | 가. 총 정원의 100분의 95 이상은 '학생 수 구간 구분에 따른 학교별 교사 수'를 고려한 계산식에 따라 배정하되, 배정 결과를 해당 시·도의 전년도 교사 정원과 비교하여 증감 규모를 산출하고, 증감해야 할 정원의 3분의 1 범위에서 증감(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감원 규모가 전년도 퇴직자보다 많을 경우 퇴직자 수만큼만 감원<br>나. 총 정원의 100분의 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책수요, 해당 시·도교육청의 정원효율화 실적 및 전년도 신규 교사 선발 인원 등을 고려하여 추가 배정 |

비고

1. 제2호가목에 따라 배정하는 교사 정원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 시·도별 배정 교사 정원 = ∑(학생 수 구간*에 속하는 공립중등학교별 교사 수** × 해당 학생 수 구간에 속하는 시·도별 공립중등학교 총 수)(※ 전전년도 4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고,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정원이 남는 경우에는 시·도의 전년도 중등교사 정원 비율에 따라 배정하고, 정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증원되는 시·도의 전년도 중등교사 정원 비율에 따라 증원 규모를 조정한다.

   ※ 분교장은 본교와 별개의 공립학교로 본다.

   * 학생 수 구간: 교육부장관이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구간을 정하여 공립학교를 분류한 것
   ** 학생 수 구간에 속하는 공립중등학교별 교사 수 = 해당 학생 수 구간에 속하는 전국 공립중등학교 소속 교사 총 수/해당 학생 수 구간에 속하는 전국 공립중등학교 총 수

2. 제2호나목에 따라 정원을 추가 배정하는 경우, 시·도교육청별 정원효율화 실적*과 전년도 신규 교사 선발 인원, 전년도 제2호나목에 따라 추가 배정된 정원의 배치 실적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정원효율화 실적: 전년도 일방전입을 받은 교사 수, 전년도 학교 통·폐합으로 감축한 교사 수, 전년도 사립학교를 공립학교로 전환 시 특채한 교사 수 등 정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도교육청의 조치로 인정되는 인원

■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19. 2. 28.>

특수학교의 국가공무원 정원 배정 기준(제2조제4호 관련)

| 구분 | 배정기준 |
|---|---|
| 1. 교장 및 교감 |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정<br>나. 신설학교의 경우 총 정원이 증원된 범위에서 증원 배정하고, 학교가 통·폐합된 경우에는 감원 배정 |
| 2. 교사 | 가. '교사 1인당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를 고려한 계산식에 따라 배정<br>나. 가목의 배정 결과를 해당 시·도의 전년도 특수교사 정원과 비교하여 증감규모를 산출하고, 증감해야 할 정원의 10퍼센트만 증감(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되, 감원 규모가 전년도 퇴직자보다 많을 경우 퇴직자 수만큼만 감원<br>다. 가목 및 나목에 따라 배정한 후 남는 정원(이하 "잔여정원"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교육청의 정원효율화 실적 및 학교 신·증설 등을 고려한 계산식에 따라 추가 배정할 수 있으며, 정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증원되는 시·도의 전년도 특수교사 정원 비율에 따라 증원 규모를 조정 |

비고

1. 제2호가목에 따라 배정하는 특수교사 정원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 시·도별 배정 특수교사 정원 = 시·도별 공립학교 특수교육대상 총 학생 수/특수교사 1인당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 전년도 4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고,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분교장은 본교와 별개의 공립학교로 본다.

2. 제2호다목에 따라 정원을 추가 배정하는 경우, [잔여정원×(시·도교육청별 정원효율화 실적*/∑시·도교육청별 정원효율화 실적)]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정원효율화 실적: 전년도 학교 통·폐합으로 감축한 특수교사 수, 전년도 사립학교를 공립학교로 전환 시 특채한 특수교사 수 등 정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도교육청의 조치로 인정되는 인원

■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2. 3. 2.>

각급 학교에 두는 보건교사 등의 국가공무원 정원 배정 기준(제2조제5호 관련)

1. 보건교사의 배정 기준

가. 총 정원의 100분의 99는 '학급 수가 일정 수준 이상인 학교 수' 등을 고려한 계산식에 따라 배정

나. 총 정원의 100분의 1은 해당 시·도교육청의 정원효율화 실적 및 전년도 신규 교사 선발인원 등을 고려하여 추가 배정

비고

1. 가목에 따라 배정하는 보건교사 정원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blacksquare\ \text{시·도별 정원} = \text{전년도 정원} + \left(\text{총증감규모} \times \frac{\text{시·도별 필요정원}^{*}}{\sum \text{시·도별 필요정원}}\right)$$

* 시·도별 필요정원=(시·도별 공립학교 수 + 학급 수가 36개 이상인 학교 수 + 설치·폐지·통합된 학교 수) - 전년도 정원

※ 필요정원 계산 시 '설치·폐지·통합된 학교 수' 외의 항목은 전년도 4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고,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감원규모가 퇴직자보다 많은 경우 퇴직자 수만큼 감원한다.

※ 분교장은 본교와 별개의 공립학교로 본다.

2. 나목에 따라 정원을 추가 배정하는 경우, [잔여정원×(시·도교육청별 정원효율화 실적*/∑시·도교육청별 정원효율화 실적)]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정원효율화 실적: 전년도 학교 통·폐합으로 감축한 보건교사 수, 전년도 사립학교를 공립학교로 전환 시 특채한 보건교사 수 등 정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도교육청의 조치로 인정되는 인원

2. 영양교사의 배정 기준

가. 총 정원의 100분의 99는 '학교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 수' 등을 고려한 계산식에 따라 배정

나. 총 정원의 100분의 1은 '해당 시·도교육청의 정원효율화 실적 및 시·도별 학교 급식 여건 등을 고려하여 추가 배정

비고

1. 가목에 따라 배정하는 영양교사 정원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blacksquare\ \text{시·도별 정원} = \text{전년도 정원} + \left(\text{총증감규모} \times \frac{\text{시·도별 필요정원}^{*}}{\sum \text{시·도별 필요정원}}\right)$$

* 시·도별 필요정원 = (학교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 수 + 설치·폐지·통합

된 급식 학교 수 + 2식 이상 급식 제공 학교 수) - (전년도 영양교사 정원 + 전년도 영양사 수)

※ 필요정원 계산 시 '설치 · 폐지 · 통합된 급식 학교 수' 외의 항목은 전년도 4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고,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학교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 중 6학급 이하의 학교는 필요정원을 0.5명으로 환산한다.

※ 감원규모가 퇴직자보다 많은 경우 퇴직자 수만큼 감원한다.

※ 분교장은 본교와 별개의 공립학교로 본다.

2. 나목에 따라 정원을 추가 배정하는 경우, [잔여정원×(시 · 도교육청별 정원효율화 실적*/∑시 · 도교육청별 정원효율화 실적)]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정원효율화 실적: 전년도 학교 통 · 폐합으로 감축한 영양교사 수, 전년도 사립학교를 공립학교로 전환 시 특채한 영양교사 수, 학교 규모 및 학교급식 여건을 반영한 정원 배정 등 정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 · 도교육청의 조치로 인정되는 인원

3. 사서교사의 배정 기준

가. 총 정원의 100분의 99는 '학교도서관이 설치된 학교 수' 등을 고려한 계산식에 따라 배정

나. 총 정원의 100분의 1은 해당 시 · 도교육청의 정원효율화 실적 및 시 · 도별 학교도서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추가 배정

비고

1. 가목에 따라 배정하는 사서교사 정원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blacksquare\ \text{시 · 도별 정원} = \text{전년도 정원} + \left(\text{총증감규모} \times \frac{\text{필요정원}^{*}}{\sum \text{시 · 도별 필요정원}}\right)$$

* 시 · 도별 필요정원 = 학교도서관이 설치된 학교 수 - (전년도 사서교사 정원+ 전년도 사서 수)

※ 감원규모가 퇴직자보다 많은 경우 퇴직자 수만큼 감원한다.

※ 분교장은 본교와 별개의 공립학교로 본다.

2. 나목에 따라 정원을 추가 배정하는 경우, [잔여정원×(시 · 도교육청별 정원효율화 실적*/∑시 · 도교육청별 정원효율화 실적)]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정원효율화 실적 : 전년도 학교 통 · 폐합으로 감축한 사서교사 수, 전년도 사립학교를 공립학교로 전환 시 특채한 사서교사 수, 학교 규모 및 학교도서관 여건을 반영한 정원 배정 등 정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 · 도교육청의 조치로 인정되는 인원

4. 전문상담교사 및 전문상담순회교사의 배정 기준

가. 전문상담교사 총 정원의 100분의 99는 '학생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학교 수와 그 이하인 학교 수' 등을 고려한 계산식에 따라 배정

나. 전문상담교사 총 정원의 100분의 1은 해당 시 · 도교육청의 정원효율화 실적 및 전년도 신규교사 선발인원 등을 고려하여 추가 배정

다. 전문상담순회교사 총 정원의 100분의 99는 '순회 담당 학교 수'를 고려한 계산식에 따라 배정

라. 전문상담순회교사 총 정원의 100분의 1은 해당 시 · 도교육청의 정원효율화 실적 및 전년도 신규교사 선발인원 등을 고려한 계산식에 따라 추가 배정

비고

1. 가목에 따라 배정하는 전문상담교사 정원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blacksquare\ \text{시 · 도별 정원} = \text{전년도 정원} + \left(\text{총증감규모} \times \frac{\text{필요정원}^{*}}{\sum \text{시 · 도별 필요정원}}\right)$$

* 시 · 도별 필요정원 =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인 학교 수+ 학생 수가 101명 이상인 학교 수) - (전년도 전문상담교사 정원 + 전년도 전문상담사 수)

※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인 학교는 필요정원을 0.5명으로 환산하고, 학생 수가 101명 이상인 학교는 1명을 배치한다.

※ 감원규모가 퇴직자보다 많은 경우 퇴직자 수만큼 감원한다.

※ 분교장은 본교와 별개의 공립학교로 본다.

2. 나목에 따라 정원을 추가 배정하는 경우, [잔여정원×(시 · 도교육청별 정원효율화 실적*/∑시 · 도교육청별 정원효율화 실적)]과 학교 신 · 증설, 전년도 신규 교사 선발인원, 학교규모를 반영한 정원배정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정원효율화 실적 : 전년도 일방전입을 받은 전문상담교사 수(정원이 감소한 교육청으로부터 전입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전년도 학교 통 · 폐합으로 감축한 전문상담교사 수, 전년도 사립학교를 공립학교로 전환 시 특채한 전문상담교사 수 등 정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 · 도교육청의 조치로 인정되는 인원

3. 다목에 따라 배정하는 전문상담순회교사 정원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blacksquare\ \text{시 · 도별 정원} = \text{전년도 정원} + \left(\text{총증감규모} \times \frac{\text{필요정원}^{*}}{\sum \text{시 · 도별 필요정원}}\right)$$

* 시 · 도별 필요정원 = 순회 담당 학교 수 구분에 따른 정원 - 전년도 전문상담순회교사 정원

※ 순회 담당 학교 수 구분에 따른 정원은 관할하고 있는 학교 수가 29개 이하

인 경우 2명, 30개 이상 39개 이하인 경우 3명, 40개 이상 49개 이하인 경우 4명, 50개 이상인 경우 5명 기준으로 산정한다.

4. 라목에 따라 추가 배정하는 전문상담순회교사 정원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 시 · 도별 추가 배정 정원 = [잔여정원×(시 · 도교육청별 정원효율화 실적*/∑시 · 도교육청별 정원효율화 실적)]

# 특수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타법개정]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044 - 203 - 6549

**제1조(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와 「유아교육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특수학교의 시설ㆍ설비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11. 3., 2016. 12. 5.>

**제2조(교지)** ①제1조에 따른 특수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교지는 교사용 대지와 체육장용 대지를 합한 용지로서 교사의 안전ㆍ방음ㆍ환기ㆍ채광ㆍ소방ㆍ배수 및 학생의 통학에 지장이 없는 입지이어야 한다. <개정 2016. 12. 5.>

② 교지의 기준면적은 학급(「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순회교육을 위한 순회학급은 제외한다) 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으로 한다. 다만, 유치부만을 설치ㆍ운영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에 두는 시설ㆍ설비 및 체육장을 확보하는데 지장이 없는 면적으로 한다.<개정 2016. 12. 5., 2019. 7. 2.>

1. 12학급 이하: 4천제곱미터
2. 12학급 초과 24학급 이하: 4천제곱미터 + (12학급을 초과하는 학급 수 × 3백제곱미터)
3. 24학급 초과: 7천6백제곱미터 + (24학급을 초과하는 학급 수 × 2백제곱미터)

③학교에는 학생의 체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체육장을 두되, 그 시설ㆍ설비기준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시ㆍ도교육감"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다만, 유치부만을 설치ㆍ운영하는 학교에 놀이실이 있는 경우에는 체육장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7. 4. 4., 2001. 1. 29., 2007. 3. 27., 2016. 12. 5., 2019. 7. 2.>

④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교지의 기준면적을 확보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고, 교육에 지장이 없다고 관할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준면적의 3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감축할 수 있다.<개정 1997. 4. 4.>

**제3조(실습지)** 학교는 학생의 진로 및 직업 교육을 위하여 동물 사육 또는 식물 재배 등 실습지에서의 실습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실습을 위한 실습지를 갖추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6. 12. 5.]

**제4조(교육 관련 시설의 종류 및 기준)** ①학교가 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지역의 여건 및 학생의 장애 유형 등을 고려하여 시설의 종류별 면적기준을 3분의 1의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7. 3. 27., 2016. 12. 5.>

②제1항의 각 시설에 두어야 할 설비ㆍ비품등의 품목ㆍ수량등은 시ㆍ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개정 1998. 11. 3., 2007. 3. 27.>

[제목개정 2016. 12. 5.]

**제5조(안전 및 편의 시설ㆍ설비의 종류 및 기준)** 학교가 학생 등의 안전 및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ㆍ설비의 종류 및 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6. 12. 5.]

**제6조** 삭제 <2016. 12. 5.>

**제7조(기준 미달 학교에 대한 조치)** 시ㆍ도교육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3조 또는 「유아교육법」 제30조에 따라 이 영의 기준에 미달하는 사립의 학교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이 영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학교에 대해서는 학생정원의 감축 또는 학생모집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으며, 행정 및 재정 지원정책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12. 5.]

**제8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24.>
1. 제2조에 따른 교지: 2017년 1월 1일
2. 삭제<2026. 3. 24.>
3. 제4조에 따른 교사에 두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 2017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6. 12. 30.]

**부칙** <제13736호,1992. 10. 1.>
**제15조** 제2항 및 제16조를 각각 삭제한다.
③(기준에 미달되는 시설ㆍ설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학교의 시설ㆍ설비가 이 영에 의한 시설ㆍ설비기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이를 1997년 12월 31일까지 이 영에 의한 시설ㆍ설비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하여야 한다.

**부칙** <제15336호,1997. 4. 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83호,1997. 9. 23.>(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특수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다른 법령의 준용)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 제19조는 학교에 이를 준용한다.

② 및 ③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5923호,1998. 11. 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15호,2001. 1. 29.>(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4( 생략

5) 특수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본문중 " 교육부장관 " 을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 으로 한다.

<51>내지 <152>생략

**부칙** <제19959호,2007. 3. 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840호,2014. 12. 9.>(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7654호,2016. 12.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 및 편의 시설ㆍ설비의 종류 및 기준에 관한 특례) 제5조 및 별표 2(제11호나목부터 라목까지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운영 중인 학교 또는 이 영 시행 전에 학교설립계획의 승인이나 학교설립의 인가를 받아 설립 절차가 진행 중인 학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안전 및 편의 시설ㆍ설비의 종류 및

기준은 제5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을 완화하여 시ㆍ도교육감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학교 시설의 구조 또는 학교의 재정 여건상 안전 및 편의 시설ㆍ설비를 제5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시ㆍ도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2. 제5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 및 편의 시설ㆍ설비의 설치가 다른 시설ㆍ설비에 영향을 주어 학생 등의 안전 및 편의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시ㆍ도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중학교 과정 이상 특수학교의 장은 「특수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제1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진로 및 직업 교육을 위한 교실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 및 직업 교육에 필요한 인력과 경비를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제27751호,2016. 12. 30.>(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9950호,2019. 7. 2.>(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6220호,2026. 3. 24.>(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특수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별표 1] <개정 2019. 7. 2.>

교육 관련 시설의 종류 및 기준(제4조제1항 관련)

| 시설의 종류 | 설치기준 | 면적기준 |
|---|---|---|
| 1. 보통교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에 따른 학급 수에 상당하는 수가 되도록 설치한다. | 각 교실마다 50제곱미터(유치부만을 설치ㆍ운영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25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 2. 특별교실<br>음악실, 미술실, 과학실, 가사실 및 치료지원실 등 | 학교 특성에 따라 설치한다. | 각 교실마다 66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 3. 시청각교실 | 학교 특성에 따라 설치한다. | 각 교실마다 99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 4. 도서실 | 학교 특성에 따라 설치하며, 보통교실과 겸용하는 형태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총 열람 좌석은 20석 이상이어야 한다. | |
| 5. 상담실(심리검사실을 포함한다) | 학교 특성에 따라 설치한다. | 각 실마다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 6. 직업교육실 | 중학교 과정 이상의 학교에만 설치하며, 학교당 2실 이상 설치한다. | 각 교육실마다 66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 7. 관리용 시설<br>교장실, 교무실(서무실 및 행정실을 포함한다), 숙직실 및 창고 등 | 학교 실정에 따라 설치한다. | 학교의 규모에 따라 알맞은 면적으로 설치한다. |

| | | |
|---|---|---|
| 8. 놀이실 | 유치부를 설치ㆍ운영하는 학교에만 설치한다. 다만, 학생의 놀이를 위한 별도의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66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 9. 보건실 | 1실 이상 설치한다. | |

비고: 위 시설 외에 강당ㆍ체육관ㆍ점자인쇄실ㆍ특별활동실ㆍ교수준비실 및 자료보관실 등 교육 관련 시설을 둘 수 있다.

■ 특수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별표 2] <신설 2016. 12. 5.>

안전 및 편의를 위한 시설ㆍ설비의 종류 및 기준(제5조 관련)

| 시설ㆍ설비의 종류 | 설 치 기 준 |
|---|---|
| 1. 보행로 | 가. 다음의 장소에는 통행에 장애가 없도록 연속된 보행로를 설치하여야 한다.<br>1) 교문에서 주된 교사의 주 출입구까지<br>2) 통학차량 승하차구역에서 주된 교사까지<br>3) 교사와 교사 사이<br>나. 주 보행로 유효 폭은 1.8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가목2)에 설치하는 보행로의 경우에는 유효 폭을 1.2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br>다. 바닥면의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 휠체어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수준이어야 하고, 바닥면의 기울어진 부분은 그 기울기가 18분의 1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지형 등을 이유로 그 기울기를 18분의 1 이하로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2분의 1 이하로 하여 설치할 수 있다.<br>라. 차도보다 10센티미터 이상 높게 하거나, 연석ㆍ화단 또는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도와 분리되어야 한다.<br>마. 가목2) 및 3)에 설치하는 보행로에는 비 가림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 2. 통학차량 승하차구역 | 가. 통학차량이 주차 또는 회차하는 경우 보행로와 간섭이 발생하지 않을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br>나. 승하차구역 끝 부분에 충돌 방지를 위한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br>다. 휠체어 출입이 가능한 교사의 출입구 또는 승강설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br>라. 승하차구역 주변에 승하차구역임을 알리는 입식 기둥형 또는 벽면 부착형의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br>마. 휠체어 탑승자가 승하차 및 승하차 대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고, 바닥면이 폭 4.5미터 이상(차량 주차 구역 3.3미터 이상, 승하차 대기 구역 1.2미터 이상), 길이 13미터 이상이어야 한다.<br>바. 바닥면의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 승하차에 지장이 없는 |

| | |
|---|---|
| | 수준이어야 하고, 바닥면의 기울기가 50분의 1 이하이어야 하며, 바닥면에 아래 그림과 같이 승하차구역을 구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b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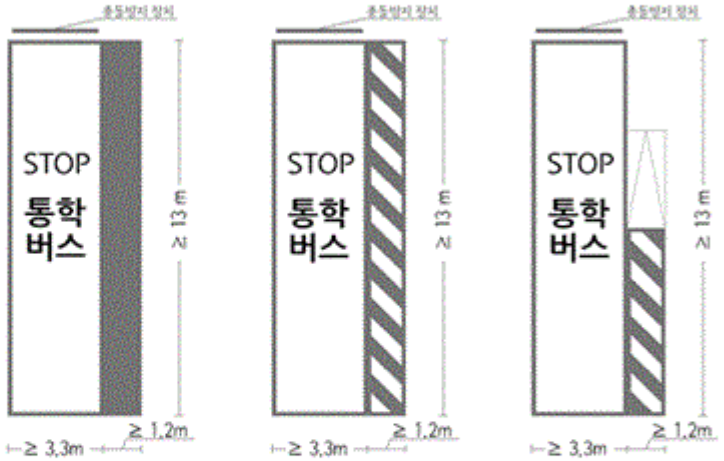 <br><br>승하차구역 바닥표시방법 |
| 3. 교사 등의 주 출입구 | 가. 바닥면의 높이 차이가 없어야 한다.<br>나. 진입구간은 가급적 별도의 경사로와 계단이 없이 설치하되, 바닥면이 기울어진 경우에는 그 기울기가 18분의 1 이하이어야 한다.<br>다. 문은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손 끼임 방지장치를 부착하여야 하고, 유리문인 경우에는 부딪힘 방지를 위해 색 띠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 4. 복도 | 가. 유효 폭이 2.4미터 이상이어야 한다.<br>나. 통행을 방해하는 고정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br>다. 휠체어 보관함, 재활도구 보관함, 소화기 보관함, 음수대 또는 신발장 등의 설비를 복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벽면에 매립하는 등으로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br>라. 복도에 노출되는 벽 모서리나 기둥 모서리는 안전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둥근 형태로 하거나, 별도의 충돌 방지장치 또는 안전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br>마. 손잡이는 학생의 성장 발달 과정을 고려하여 설치하며, 필요한 경우 2중으로 설치할 수 있다. |
| 5. 교실 출입문 | 가. 미닫이 또는 미세기 구조로 하고, 유효 폭이 1.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br>나. 문에는 문턱이 없어야 하고, 손 끼임 방지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br>다. 출입문 손잡이는 돌출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br>라. 출입문에 투시 가능한 재료를 부분적으로 사용하여 출입 |

| | |
|---|---|
| | 문을 통해 반대편을 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 6. 계단 | 가. 계단 및 계단참(계단 마지막 디딤판 부분은 제외한다)의 유효 폭은 1.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br>나. 계단코는 미끄러짐을 방지할 수 있는 재질로 마감하고, 계단의 디딤판과 색을 달리하여 계단 모서리를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br>다. 계단 손잡이는 계단의 양쪽에 벽면 부착형 또는 난간 일체형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손잡이 끝부분이 옷소매 등이 걸리지 않는 구조로 마감하여야 한다.<br>라. 난간<br>1) 난간과 손잡이가 일체형인 경우에는 난간 살이 없는 판형 또는 난간 살 수직형(계단 마지막 디딤판 부분을 제외한 부분의 난간 살 사이의 간격이 10센티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설치하여야 한다.<br>2) 난간의 높이는 바닥면 기준 1.2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계단참 및 계단 마지막 디딤판 부분의 난간 높이는 바닥면 기준 1.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 7. 승강기 | 가. 승강기 중 1대 이상은 그 바닥면이 폭 1.6미터 이상, 길이 2.3미터 이상이어야 한다.<br>나. 승강기 출입문 일부 또는 전부를 투명하게 설치하여 승강기 출입문을 통해 반대편을 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br>다. 승강기 출입문에 충격 센서와 적외선 센서가 모두 있어야 한다. |
| 8. 경사로 | 가. 경사로 유효 폭은 1.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br>나. 경사로에 굴절 부분이 있는 경우 그 바닥면의 폭과 길이가 각각 2미터 이상이어야 한다.<br>다. 경사로의 진행방향을 고려하여 통행자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벽면 및 난간 등에 충격방지매트를 설치하여야 한다.<br>라. 경사로 바닥면은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하여야 한다. |
| 9. 긴급 대피공간 | 가. 건축물 구조를 고려하여 교실과 연결된 발코니 또는 층별 공용 테라스 형태의 긴급 대피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br>나. 구조차량 및 구조장비 등의 접근이 용이한 위치 및 구조이어야 한다. |

| | |
|---|---|
| 10. 창문 | 긴급 상황 시 용이하게 바깥으로 피난이 가능하되, 평상 시 창 바깥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 11. 그 밖의 시설ㆍ설비 | 가. 실내 강당, 체육관의 무대ㆍ단상 또는 운동장의 구령대 등은 휠체어 이용자가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br>나. 경비실(수위실 및 안내실을 포함한다)은 교문이 잘 보이도록 교문과 인접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br>다. 화장실의 경우 대변기는 2학급당 1개 이상, 소변기는 학생 수를 고려하여 필요한 적정 수만큼 설치하여야 한다.<br>라. 교원휴게실, 탈의실, 목욕실, 및 학부모 대기실의 경우 각 1실 이상씩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 실정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비고 : 위 시설 외에 교원사택 등 학생 등의 안전 및 편의에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둘 수 있다.

# 학교건강검사규칙

[시행 2025. 3. 10.] [교육부령 제354호, 2025. 3. 10., 일부개정]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044 - 203 - 654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보건법」 제7조 및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 건강검사의 실시 및 그 결과의 기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1. 10.>

**제2조(건강검사 실시계획의 수립)** 학교의 장은 「학교보건법」(이하 " 법 " 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를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건강검사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포함한 구체적인 건강검사 실시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4.>
[전문개정 2006. 1. 10.]

**제3조(건강검사의 실시)** ①건강검사는 신체의 발달상황, 신체의 능력, 건강조사, 정신건강 상태 검사 및 건강검진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6. 3. 4.>
②신체의 발달상황, 신체의 능력, 건강조사 및 정신건강 상태 검사는 해당 학교의 장이 실시하고, 건강검진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이하 " 검진기관 " 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개정 2009. 5. 22., 2016. 3. 4.>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학생에 대한 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는 검진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0. 1. 9.>
[전문개정 2006. 1. 10.]

**제4조(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항목 및 방법)** ①신체의 발달상황은 키와 몸무게를 측정한다. <개정 2006. 1. 10.>
②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의 방법은 별표 1과 같다.<개정 1999. 3. 8., 2006. 1. 10.>
③ 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는 매학년도 제1학기 말까지 실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0. 1. 9.>
[제목개정 2006. 1. 10.]

**제4조의2(건강조사의 항목 및 방법)** ① 건강조사는 병력, 식생활 및 건강생활 행태 등에 대해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4.>
②건강조사의 항목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 및 건강조사의 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
③ 건강조사는 매학년도 제1학기 말까지 실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0. 1. 9.>
[본조신설 2006. 1. 10.]

**제4조의3(정신건강 상태 검사)** ① 정신건강 상태 검사는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설문조사 등의 시행과 그 결과 처리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

(이하 “교육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정신건강 상태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동의 없이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검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학부모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6. 3. 4.]

**제5조(건강검진의 항목 및 방법)** ①건강검진은 척추, 눈ㆍ귀, 콧병ㆍ목병ㆍ피부병, 구강, 병리검사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진단해야 한다. <개정 2006. 1. 10., 2020. 1. 9.>

②건강검진의 방법은 별표 2와 같다.<개정 1999. 3. 8., 2006. 1. 10.>

[제목개정 2006. 1. 10.]

**제5조의2(건강검진의 절차 등)** ①학교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학생의 건강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2개 이상의 검진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검진기관을 2개 이상 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교육감(「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하급교육행정기관에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교육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인을 얻어 1개의 검진기관만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3. 4.>

②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진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학교의 장은 검진대상자가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4.>

④ 학교의 장은 제1항 본문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의 검진기관만을 선정하여 검진기관이 검진대상자에 대한 출장검진을 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6. 3. 4.>

1. 학교가 소재한 지역(읍ㆍ면ㆍ동을 말한다)에 검진기관이 없는 경우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하는 경우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장검진이 불가피하다고 교육감이 승인한 경우

⑤ 검진기관은 검진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검진대상자에 대하여 별표 1 및 별표 2의 검사항목에 해당되는 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 및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4.>

⑥ 검진기관은 검진을 실시하기 전에 검진에 필요한 별지 제1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호의4서식까지에 따른 문진표를 비치하고, 검진대상자에게 필요한 문진표를 작성ㆍ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4.>

⑦ 검진기관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검사결과를 검사일부터 30일 내에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와 해당학교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진결과 질환이 의심되는 학생 또는 정밀검사가 필요한 학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학부모에게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4.>

1. 별지 제1호의5서식에 따른 학생건강검사 결과 통보서
2. 별지 제1호의6서식에 따른 학생구강검사 결과 통보서

⑧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금액을 적용한다.<신설 2016. 3. 4., 2020. 1. 9.>

[본조신설 2006. 1. 10.]

**제6조(별도의 검사)** ①학교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별도의 검사를 다음 각 호의 학생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6. 1. 10., 2009. 5. 22.>

1. 소변검사 및 시력검사 :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학생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년의 학생
2. 결핵검사 : 고등학교의 학생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년의 학생
3. 구강검사 :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학생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년의 학생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시기 및 방법 등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개정 2006. 1. 10.>

[제목개정 2006. 1. 10.]

**제7조(신체능력검사의 대상 및 방법 등)** ① 신체능력검사는 체력요소를 평가하여 제8조에 따른 신체의 능력등급을 판정하는 필수평가와 신체활동에 대한 인식정도 등 필수평가에 대한 심층평가를 하는 선택평가로 구분한다.

②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학생을 대상으로 신체능력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심장질환 등으로 인한 신체허약자와 지체장애인은 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25. 3. 10.>

1.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학생
2.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

③ 필수평가는 체력요소별로 1개의 검사항목을 선택하여 매 학년 초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선택평가는 학교의 장이 해당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검사항목, 검사주기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4. 3. 3.>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초등학교 3학년에 대한 필수평가 또는 선택평가의 실시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25. 3. 10.>

⑤ 제1항에 따른 필수평가와 선택평가의 검사항목 및 검사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⑥ 선택평가의 검사항목 중 자기신체평가 및 자세평가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지는 별지 제1호의7 서식과 제1호의8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5. 22.]

**제8조(신체의 능력등급)** ① 신체의 능력등급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체력요소별로 선택하여 검사한 검사항목의 항목별 점수를 종합하여 별표 6의 신체의 능력등급 판정표에 따라 판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항목의 항목별 점수는 별표 4의 신체능력검사(필수평가) 기준표와 별표 5의 신체능력검사(필수평가) 항목별 등급 및 점수 기준표에 따라 산정한다

[전문개정 2009. 5. 22.]

**제9조(건강검사 등의 실시결과 관리)** ① 학교의 장은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건강검사의 실시결과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4.>

1. 대상자가 학생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작성ㆍ관리
   가. 신체발달상황 및 신체능력검사 결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학생건강기록부로 작성ㆍ관리
   나. 건강검진 결과: 제5조의2제7항에 따라 검진기관이 통보한 자료를 학생건강기록부와 별도로 관리
2. 대상자가 교직원인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의 결과를 관리

② 학교의 장은 제6조에 따른 별도검사의 실시결과를 학생건강기록부와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4.>

③ 법 제7조의3제2항제3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6. 3. 4.>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 완료 여부
2.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건강검진의 검진일자 및 검진기관명
3. 제6조에 따른 별도검사의 종류, 검사일자 및 검사기관명

④ 학교의 장은 법 제7조의3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학생건강기록부에 기록해야 한다.<개정 2016. 3. 4., 2020. 1. 9.>

⑤ 고등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학생건강기록부를 해당 학생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2016. 3. 4.>

⑥ 학생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하거나 휴학 또는 퇴학 등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경우 그 학생이 최종적으로 재적하였던 학교는 학생건강기록부를 비롯한 건강검사 등의 실시결과를 학생이 최종적으로 재적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신설 2016. 3. 4.>

⑦ 교육감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신체능력검사 결과에 따라 학생 개인별 신체활동 처방을 제공하는 학생건강체력평가시스템을 교육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구축하고, 학생ㆍ학부모가 조회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6. 3. 4.>

[전문개정 2006. 1. 10.]

[제목개정 2016. 3. 4.]

**제10조(건강검사 등의 실시결과에 따른 조치)** ①학교의 장은 건강검사 등의 실시결과에 따라 보건의료기관, 체육단체 및 대학 등의 협조를 받아 소속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건강상담, 예방조치 및 체력증진 등 적절한 보호 또는 양호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 10., 2009. 5. 22., 2016. 3. 4.>

②학교의 장은 건강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수업면제ㆍ휴학ㆍ치료ㆍ보호 또는 교정 등을 필요로 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본인 또는 그의 보호자에게 적정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06. 1. 10., 2016. 3. 4.>

③학교의 장은 교직원에 대해서 건강검사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한 결과 전염성질환 또는 신체의 심한 허약 등으로 복무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휴직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임면권자에게 건의하여야 한다.<개정 1999. 3. 8., 2006. 1. 10., 2016. 3. 4.>

④ 학교의 장은 건강검사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통계표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의 8월 31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통계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관할 교육장을 거쳐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신설 2016. 3. 4., 2020. 1. 9.>

⑤ 교육감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학생건강증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건강조사 결과 및 건강검진 결과에 관한 통계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신설 2020. 1. 9.>

[제목개정 2016. 3. 4.]

**제11조(건강검사 표본학교의 지정 및 보고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2조의2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시책 마련을 위하여 건강검사의 표본학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3. 4.>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본학교(이하 "표본학교"라 한다)에 대해서 이 규칙이 정한 검사항목 외의 검사항목을 추가한 건강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 3. 4.>

③ 표본학교의 장은 건강검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4.>

④ 삭제<2016. 3. 4.>

⑤ 삭제<2016. 3. 4.>

[제목개정 1997. 12. 31., 2006. 1. 10.]

**제12조(유치원 원아 등의 건강검사)** 유치원 원아에 대한 건강검사는 이 규칙의 검사항목에 준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9. 3. 8., 2006. 1. 10.>

[제목개정 1999. 3. 8., 2006. 1. 10.]

**제13조(대학 학생의 건강검사)**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학교의 장은 소속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이 규칙에 준하는 별도의 방법으로 건강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9. 3. 8., 2006. 1. 10.>

[제목개정 2006. 1. 10.]

**제14조(건강검사실시의 예외)** 학교의 장은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건강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승인을 얻어 신체의 발달상황 및 신체의 능력과 건강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건강검진은 다음 학년도로 연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6. 1. 10.]

**부칙** <제676호,1996. 2. 7.>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신체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신체검사는 이 규칙에 의하여 실시한 신체검사로 본다.

**부칙** <제686호,1996. 8. 30.>(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민학교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학교신체검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3항제6호중 " 국민학교 "를 각각 " 초등학교 "로 한다.
⑤내지 ⑪생략

**부칙** <제696호,1997. 6.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6호,1997. 12. 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제740호,1999. 3.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3호,2000. 9.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9호,2001. 1. 31.>(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3& 생략

3* 학교신체검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ㆍ제3항 및 제5항중 “ 교육부장관 ”을 각각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으로 한다.

3( 내지4! 생략

**부칙** <제873호,2006. 1.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2008. 3. 4.>(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4) 까지 생략

4! 학교건강검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7항 중 “ 보건복지부장관 ”을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 교육인적자원부령 ”을 “ 교육과학기술부령 ”으로 한다.

제11조제1항ㆍ제3항 및 제5항 중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을 각각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으로 한다.

4@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 <제38호,2009. 5.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8조 및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 중 중학교의 신체능력검사와 관련된 부분은 2010년 3월 1일부터, 고등학교의 신체능력검사와 관련된 부분은 2011년 3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부칙** <제1호,2013. 3. 2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학교건강검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 교육과학기술부령 ”을 “ 교육부령 ”으로 한다.

제11조제1항ㆍ제3항 및 제5항 중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을 각각 “ 교육부장관 ”으로 한다.

별표 2 적용범위 및 판정기준 제2호 중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을 “ 교육부장관 ”으로 한다.
<54>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제31호,2014. 3.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호,2016. 3.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호,2019. 9. 17.>(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8호,2020. 1. 9.>
이 규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0호,2021. 6. 30.>(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4호,2025. 3.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학교건강검사규칙 [별표 1] <개정 2020. 1. 9.>

## 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항목 및 방법(제4조제2항 관련)

| 검사항목 | 측정단위 | 검 사 방 법 |
|---|---|---|
| 키 | 센티미터(㎝) | 1. 검사대상자의 자세<br>가. 신발을 벗은 상태에서 발꿈치를 붙일 것<br>나. 등·엉덩이 및 발꿈치를 측정대에 붙일 것<br>다. 똑바로 서서 두 팔을 몸 옆에 자연스럽게 붙일 것<br>라. 눈과 귀는 수평인 상태를 유지할 것<br>2. 검사자는 검사대상자의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의 높이를 측정 |
| 몸무게 | 킬로그램(㎏) | 옷을 입고 측정한 경우 옷의 무게를 뺄 것 |
| 비만도 | - | 1. 비만도는 학생의 키와 몸무게를 이용하여 계산된 체질량지수(BMI, Body Mass Index: ㎏/㎡)를 성별·나이별 체질량지수 백분위수 도표에 대비하여 판정한다.<br>2. 비만도의 표기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br>가. 체질량지수 백분위수 도표의 5 미만인 경우: 저체중<br>나. 체질량지수 백분위수 도표의 85 이상 95 미만인 경우: 과체중<br>다. 체질량지수 백분위수 도표의 95 이상인 경우: 비만<br>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정상 |

※ 비고: 수치는 소수 첫째자리까지 나타낸다(측정값이 소수 둘째자리 이상까지 나오는 경우에는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 학교건강검사규칙 [별표 1의2] <신설 2006.1.10>

## 건강조사 항목 및 방법(제4조의2제2항관련)

1. 조사항목 및 내용

| 조사항목 | 조 사 내 용 |
|---|---|
| 1. 예방접종/병력 | 가. 전염병 예방접종<br>나. 가족병력<br>다. 개인병력 |
| 2. 식생활/비만 | 가. 식습관<br>나. 인스턴트 및 그 밖에 식품의 섭취형태<br>다. 다이어트 행태 |
| 3. 위생관리 | 가. 손 씻기<br>나. 양치질 |
| 4. 신체활동 | 가. 근지구력 향상을 위한 운동<br>나. 심폐기능 향상을 위한 운동<br>다. 수면 |
| 5. 학교생활/<br>가정생활 | 가. 가족 내 지지 정도<br>나. 학교생활 적응 정도<br>다. 교우관계 |
| 6. 텔레비전/인터넷<br>/음란물의 이용 | 가. 텔레비전 시청<br>나. 인터넷 이용<br>다. 음란물에의 노출 여부 및 정도 |
| 7. 안전의식 | 가. 안전에 대한 인식<br>나. 안전사고의 발생 |
| 8. 학교폭력 | 가. 학교폭력에의 노출 여부 및 정도 |
| 9. 흡연/ 음주/<br>약물의 사용 | 가. 흡연<br>나. 음주<br>다. 흡입제의 사용 여부 및 약물의 오·남용 여부 등 |
| 10. 성 의식 | 가. 성문제<br>나. 성에 대한 인식 |
| 11. 사회성/<br>정신건강 | 가. 사회성(자긍심, 적응력 등)<br>나. 정신적 건강(우울, 자살, 불안증, 주의력 결핍 등) |
| 12. 건강상담 | 가. 건강에 대한 상담의 요구 등 |

2. 조사방법

시·도교육감은 위 조사항목 및 내용을 포함한 구조화된 설문지를 마련하고, 학교의 장을 통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한다.

■ 학교건강검사규칙 [별표 2] <개정 2020. 1. 9.>

## 건강검진 항목 및 방법(제5조제2항 관련)

| 검진항목 | | 검진방법(세부항목) |
|---|---|---|
| 1. 척추 | | 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 검사 |
| 2. 눈 | 가. 시력측정 | 1) 공인시력표에 의한 검사<br>2) 오른쪽과 왼쪽의 눈을 각각 구별하여 검사<br>3) 안경 등으로 시력을 교정한 경우에는 교정시력을 검사 |
| | 나. 안질환 | 결막염, 눈썹찔림증, 사시 등 검사 |
| 3. 귀 | 가. 청력 | 1) 청력계 등에 의한 검사<br>2) 오른쪽과 왼쪽의 귀를 각각 구별하여 검사 |
| | 나. 귓병 | 중이염, 바깥귀길염(외이도염) 등 검사 |
| 4. 콧병 | | 코곁굴염(부비동염), 비염 등 검사 |
| 5. 목병 | | 편도선비대 · 목부위림프절비대 · 갑상샘비대 등 검사 |
| 6. 피부병 | | 아토피성피부염, 전염성피부염 등 검사 |
| 7. 구강 | 가. 치아상태 | 충치, 충치발생위험치아, 결손치아(영구치로 한정한다) 검사 |
| | 나. 구강상태 | 치주질환(잇몸병) · 구내염 및 연조직질환, 부정교합, 구강위생상태 등 검사 |
| 8. 병리검사 등 | 가. 소변 | 요컵 또는 시험관 등을 이용하여 신선한 요를 채취하며, 시험지를 사용하여 측정(요단백 · 요잠혈 검사) |
| | 나. 혈액 | 1회용 주사기나 진공시험관으로 채혈하여 다음의 검사<br>1) 혈당(식전에 측정한다), 총콜레스테롤, 고밀도지단백(H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저밀도지단백(LDL) 콜레스테롤 및 간 세포 효소(AST · ALT)<br>2) 혈색소 |
| | 다. 결핵 | 흉부 X-선 촬영 및 판독 |
| | 라. 혈압 | 혈압계에 의한 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 |
| 9. 허리둘레 | | 줄자를 이용하여 측정 |
| 10. 그 밖의 사항 | |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검진항목 외에 담당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가하는 항목(검진비용이 추가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

※ 적용범위 및 판정기준

1. 다음 각 목의 검진항목에 대한 검사 또는 진단은 해당 목에 따른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다.

가. 위 표 제8호나목1) 및 같은 표 제9호의 검진항목: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1학년 및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중 비만인 학생

나. 위 표 제8호나목2)의 검진항목: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

다. 위 표 제8호다목의 검진항목: 중학교 1학년 및 고등학교 1학년 학생

2. 위 표에서 정한 건강검진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및 건강검진 결과의 판정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3. 위 표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검진항목 외의 검진항목에 대한 검진방법 및 건강검진 결과의 판정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 학교건강검사규칙 [별표 3] <개정 2019. 9. 17.>

# 신체능력검사 항목 및 방법(제7조제5항 관련)

1. 필수평가

| 체력 요소 | 검사항목 | 검 사 방 법 |
|---|---|---|
| 심 폐 지구력 | 1. 왕복오래달리기 | 가. 거리<br>1) 초등학교 학생: 남·녀 구분 없이 15미터<br>2) 중·고등학교 학생: 남·녀 구분 없이 20미터<br>나. 측정<br>1) 일정한 거리를 시간간격이 정해진 신호음에 맞추어 왕복하여 달리기를 반복 실시<br>2) 오디오 테이프의 신호음이 울리기 전까지 검사대상자의 양 발이 20m(15m) 선을 완전히 통과할 것<br>3) 검사대상자가 맞은편으로 이동 중일 때 신호음이 울린 경우 그 지점에서 신속히 뒤로 돌아 뛰도록 하며 기록횟수에 '△' 표시<br>4) 3)의 규칙은 처음 한 번만 적용되며 신호가 울리기 전에 1회 이동을 마치지 못한 횟수가 두 번째인 경우 측정을 종료하며 기록횟수에 'X' 표시를 하고 'X' 표시의 직전 횟수를 측정 횟수로 기록 |
| | 2. 오래달리기-걷기 | 가. 거리<br>1) 초등학교 5~6학년 학생: 남·녀 구분 없이 1,000미터<br>2) 중·고등학교 학생: 여학생은 1,200미터, 남학생은 1,600미터<br>나. 측정<br>1) 정해진 트랙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정해진 거리를 완주<br>2) 달리는 도중에 걷는 것도 허용<br>3) 잘못된 주행이 확인되면 매 회마다 파울로 기록<br>4) 분·초 단위까지 기록하되, 0.1초단위에서 버림하여 기록(다만, 파울 1회당 5초씩 추가하여 기록) |
| | 3. 스텝검사 | 가. 스텝박스 높이<br>1) 초등학교 5~6학년 학생: 20.3센티미터<br>2) 중학교 남·여 학생, 고등학교 여학생: 45.7센티미터<br>3) 고등학교 남학생: 50.8센티미터<br>나. 반복횟수<br>1)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남·여 학생, 고등학교 여학생: 24회/분<br>2) 고등학교 남학생: 30회/분<br>다. 측정<br>1) 시간 간격이 정해진 신호음에 맞추어 스텝박스를 올 |

| | | |
|---|---|---|
| | | 라갔다 다시 내려오는 동작을 3분 동안 반복 실시한 후 안정시 심박수를 3회 측정하여 기록지에 기록<br>- 심박수 측정기가 없는 경우(촉진법): 1회(1분~1분 30초), 2회(2분~2분 30초), 3회(3분~3분 30초)<br>- 심박수 측정기가 있는 경우: 1회(1분), 2회(2분), 3회(3분)<br>2) 평가는 신체효율지수(PEI* )공식으로 계산된 점수로 하며 0.1점 단위까지 기록하되, 0.01점 단위에서 올림하여 기록<br>- 교육정보시스템(NEIS)의 학생건강체력평가시스템(PAPS)에서 자동으로 점수가 산출됨<br>※ 심박수 측정기가 없는 경우(촉진법)<br>-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여)의 경우<br>PEI= D / (2 × P) × 100<br>D: 스텝운동 지속시간(초)<br>P: 1회(1분~1분30초) 심박수 + 2회(2분~2분30초) 심박수 + 3회(3분~3분30초) 심박수<br>- 고등학생(남)의 경우<br>PEI= D × 100 / {5.5 × p } + {0.22 × (300 − D)}<br>D: 스텝운동 지속시간(초)<br>p: 1회(1분~1분30초) 심박수<br>※ 심박수 측정기가 있는 경우<br>-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여)의 경우<br>PEI= D / (P) × 100<br>D: 스텝운동 지속시간(초)<br>P: 1회(1분) 심박수 + 2회(2분) 심박수 + 3회(3분) 심박수<br>- 고등학생(남)의 경우<br>PEI= D × 100 / {5.5 × p/2} + {0.22 × (300 − D)}<br>D: 스텝운동 지속시간(초)<br>p: 1회(1분) 심박수<br>* PEI(Physical Efficiency Index : 신체효율지수) |
| 유 연 성 | 4.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 가. 자세<br>1) 신발을 벗고 실시자의 두 발 사이가 5센티미터를 넘지 않게 두 발바닥이 측정기 전면에 완전히 닿도록 무릎을 펴고 앉을 것<br>2) 한 손을 다른 한 손 위에 올려 양 손이 겹치게 하고 윗몸을 앞으로 굽히면서 고개를 숙이고 측정기 위의 눈금 쪽으로 뻗을 것<br><br>나. 측정<br>1) 검사대상자가 무릎이 올라오지 않게 굽힌 자세를 2초 이상 유지 할 것<br>2) 양 손의 손가락 끝이 멈춘 지점의 눈금을 측정 |

| | | |
|---|---|---|
| | | 3) 2회 실시하여 0.1센티미터 단위까지 기록하며, 평가는 높은 기록으로 함 |
| | 5. 종합유연성 검사 | 가. 어깨, 몸통, 옆구리, 하체 4부분으로 나누어 검사<br>1) 어깨: 몸 뒤쪽으로 한손은 어깨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다른 한 손은 아래에서 위 방향으로 하여 닿을 수 있는가를 검사<br>2) 몸통: 상체를 좌우로 회전시켜 발뒤꿈치에 위치한 숫자 카드를 읽을 수 있는 지 검사<br>3) 옆구리: 바르게 선 자세에서 척추가 좌우로 충분히 굽혀져서 손이 무릎 뒤 오금에 닿는가를 검사<br>4) 하체: 앉은 자세에서 좌우 한 발씩 곧게 뻗고 한손바닥을 다른 쪽 손의 손등에 나란히 올려놓은 상태에서 양 손이 발끝에 닿을 수 있는가를 검사<br>나. 오른쪽과 왼쪽 한 번씩 시행하게 되며, 오른쪽 왼쪽 모두 성공하면 2점, 한 쪽만 성공하면 1점, 모두 실패하면 0점을 얻게 되며 측정된 점수를 모두 합산하여 기록 |
| 근력·근지구력 | 6-1. 팔굽혀펴기(남) | 가. 팔굽혀펴기 봉 높이 및 넓이<br>1) 높이: 30센티미터<br>2) 넓이: 110센티미터 이상<br>나. 자세<br>양 발은 모으고 양 손을 어깨너비로 벌린 후 30센티미터 높이의 봉을 잡고 몸은 머리에서부터 어깨, 등, 허리, 발끝까지는 일직선으로 할 것<br>다. 측정<br>1) 팔을 굽혀 몸이 내려가 있는 동작에서는 가슴과 봉 사이의 거리가 10센티미터 이하이어야 하며 팔꿈치의 각도는 90도가 되도록 할 것<br>2) 더 이상 반복하지 못 할 때까지의 횟수를 측정 |
| | 6-2. 무릎대고 팔굽혀펴기(여) | 가. 자세<br>1) 무릎을 꿇고 양 손을 어깨너비로 벌려 엎드린 상태에서, 상체는 반듯하게 유지하고 발끝은 세워 발등이 지면에 닿지 않도록 할 것<br>2) 어깨너비의 손 위치를 손 하나 크기의 간격으로 앞으로 옮기고, 다시 손 하나 크기의 간격을 바깥 방향으로 2번 옮겨 양 팔의 간격을 넓힐 것<br>나. 측정<br>1) 팔을 굽혀 몸이 내려가 있는 동작에서는 가슴과 지면 사이의 거리가 15센티미터 이하이어야 하며 팔꿈치의 각도는 90도가 되도록 할 것<br>2) 더 이상 반복하지 못 할 때까지의 횟수를 측정 |
| | 7. 윗몸말아올리기 | 가. 자세<br>1) 매트 위에 머리와 등을 대고 누운 자세에서 무릎을 90도 정도의 각도가 이루어지도록 굽혀 세울 것<br>2) 발바닥은 바닥에 평평하게 되도록 붙이고 발과 무릎 |

| | | |
|---|---|---|
| | | 사이가 주먹 하나 크기의 간격으로 띄어 놓을 것<br>3) 팔은 곧게 뻗고 손바닥을 넓적다리 위에 올려놓을 것<br>나. 측정<br>1) 3초에 1번씩 울리는 신호음에 맞추어 손이 넓적다리 위를 타고 올라가 손바닥으로 무릎을 감쌀 수 있도록 상체를 말아 올릴 것<br>2) 손바닥으로 무릎을 감싼 후 바로 준비자세로 돌아올 것<br>3) 1회/3초 실시간격을 지키지 못할 때는 처음 한 번은 계수만 하지 않고 측정은 계속하되, 두 번째 지키지 못하면 계수를 종료하고 실시자의 총 횟수를 기록 |
| | 8. 악력 | 가. 측정도구: 악력계<br>나. 자세<br>1) 편안한 자세로 발을 바닥에 편평하게 붙이고 양 다리는 어깨너비 만큼 벌려서 직립자세를 취할 것<br>2) 검사대상자는 악력계를 자신의 손에 맞도록 폭을 조절하고, 손가락 제2관절이 직각이 되도록 악력계를 잡을 것<br>다. 측정<br>1) 오른쪽, 왼쪽 각각 2회 측정하고 기록지에 기록<br>2) 오른쪽-왼쪽-오른쪽-왼쪽 순서로 측정하여 0.1킬로그램 단위까지 기록하되, 0.01킬로그램 단위에서 올림하여 기록하며, 평가는 최고 높은 기록으로 함 |
| 순발력 | 9. 50미터 달리기 | 가. 거리: 50미터<br>나. 측정<br>1) 코스는 반드시 직선주로가 되어야 하며, 부정출발을 한 경우 주의를 주고 다시 출발할 것<br>2) 0.01초 단위까지 기록 |
| | 10. 제자리 멀리뛰기 | 가. 자세<br>1) 구름판이 설치된 모래터 또는 측정장비 위에 출발선을 밟지 않고 올라설 것<br>2) 발을 한번만 굴러서 공중자세는 자유로이 하여 뛸 것<br>나. 측정<br>1) 도약하는 순간 두 발 중 한쪽 발이라도 출발선을 넘어서지 말아야 하며 반드시 모둠발로 뛸 것<br>2) 2회 실시하여 0.1센티미터 단위까지 기록하며, 평가는 높은 기록으로 함 |
| 비만 | 11. 체질량지수(BMI) | ○ 측정<br>1) 체질량지수는(BMI, Body Mass Index: kg/㎡) 키와 체중 값으로 계산할 것<br>2) 0.1kg/㎡ 단위까지 기록하되, 0.01kg/㎡ 단위에서 올림하여 |

| | | |
|---|---|---|
| | | 기록할 것 |

2. 선택평가

| 검사항목 | 검 사 방 법 |
|---|---|
| 1. 심폐지구력정밀평가 | 가. 측정도구<br>심박수 측정기 세트(가슴벨트, 송신기, 수신기, 소프트웨어 등)<br>나. 측정<br>1) 심폐지구력정밀평가는 필수평가의 심폐지구력 측정 종목 측정 시 심박수 측정기를 착용하여 측정하는 것으로 검사방법은 심폐지구력 종목 측정과 동일함<br>2) 장비를 통해 자동으로 측정되어진 심박수를 분석하여 최대심박수(220-나이), 운동 중 최고 심박수, 운동 중 평균 심박수, 운동 중 평균 운동강도, 운동 중 총 칼로리 소모량 및 운동강도 구간 분석을 표로 제공하며, 운동강도 범위와 칼로리 소모량 기준은 다음과 같음 |

| 구간 | 최대심박수% | 칼로리 소모량(10분기준) |
|---|---|---|
| 1구간 | 90%이상~100% | 15kcal |
| 2구간 | 80%이상~90%미만 | 15kcal |
| 3구간 | 70%이상~80%미만 | 12kcal |
| 4구간 | 60%이상~70%미만 | 10kcal |
| 5구간 | 50%이상~60%미만 | 6kcal |

| | |
|---|---|
| 2. 비만평가 | 가. 측정도구 : 체지방측정기<br>나. 자세<br>1) 공복상태를 유지하고 신체에 금속성 물질을 제거할 것<br>2) 양말을 벗고 체지방측정기의 양 발과 양 손의 측정 위치에 맞게 정확히 위치시킬 것(체지방측정기의 사용지침을 따름)<br>다. 측정<br>1) 체지방률이 측정되는 동안 최대한 몸을 움직이지 않고 전방을 주시할 것<br>2) 장비를 통해 자동으로 측정되어진 체지방률을 분석하여 근육량과 지방량을 계산하고, 체중에 대한 체지방률 정상범위(남자: 12~14.9%, 여자: 15~26.9%)를 기준으로 최소 근육 조절량과 조절 체지방량을 계산하여 제공<br>근육량(%) = 0.85 × 체중 - (체중 × 체지방률) / 100<br>지방량(%) = 체중 × 체지방률 |
| 3. 자기신체평가 | 가. 측정도구: 자기기입식 기록지<br>나. 세부항목<br>10개 항목[심폐지구력, 유연성, 근력·근지구력, 체지방(날씬함), 신체활동, 스포츠자신감, 외모, 건강상태, 신체전반, 자기존중감]별 2개 문 |

| | |
|---|---|
| | 항으로 구성(총 20문항)<br>다. 측정<br>1) 6점 척도(1점: 전혀 아니다, 6점: 매우 그렇다) 중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를 찾아 '○' 표시<br>2) 항목별 2문항의 평균을 계산하여 10개 요인별 점수의 합계를 구하고 1.67을 곱하여 산출<br>※ ★표시문항은 역으로 채점(1점은 6점, 2점은 5점)<br>· 심폐지구력: (8번 + 18번) ÷ 2 = ①<br>· 유연성: (7번 + 17번) ÷ 2 = ②<br>· 근력·근지구력: (9번 + 19번) ÷ 2 = ③<br>· 체지방: (★ 2번+★12번) ÷ 2 = ④<br>· 신체활동: (5번 + 15번) ÷ 2 = ⑤<br>· 스포츠자신감: (1번 + 11번) ÷ 2 = ⑥<br>· 외모: ( 3번 + 13번) ÷ 2 = ⑦<br>· 건강상태: (★ 4번 +★14번) ÷ 2 =⑧<br>· 신체전반: (10번 + 20번) ÷ 2 = ⑨<br>· 자기존중감: (★ 6번 +★16번) ÷ 2 = ⑩<br>(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br>= 합계×1.67 =<br>3) 항목별로 자기 점수에 해당하는 위치를 찾아 '●' 표시를 하여 그래프를 작성 |
| 4. 자세평가 | 가. 측정도구: 자세평가 보조도구<br>나. 세부항목<br>문진 2문항, 시진(어깨기울기, 골반기울기, 다리굴곡, 목뼈기울기, 상체기울기, 골반전후기울기, 척추 휨 정도) 7문항<br>다. 측정<br>문진은 2점 척도(예/아니오), 시진은 3점 척도(정상/경미/심각)로 측정하여 기록<br>1) 어깨 기울기: 어깨가 좌우 평형을 이루는지 여부를 검사(양쪽어깨가 같은 위치에 있으면 정상)<br>2) 골반 기울기: 골반의 좌우가 평형을 이루는지 여부를 검사(양쪽 엉덩관절의 높이가 동일선상에 있으면 정상)<br>3) 다리굴곡: 다리의 바깥이나 안쪽으로 휘어있는지 또는 틀어져 있는가를 검사(무릎뼈가 전면을 향하면 정상)<br>4) 척추 휨 정도: 척추가 곧지 않고 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척추뼈의 정렬상태가 일직선상에 있으면 정상)<br>5) 목뼈기울기: 목뼈의 모양이 바르게 서 있는가를 검사(귓바퀴와 어깨점이 일직선상에 있으면 정상)<br>6) 상체기울기: 등의 굽은 정도의 여부를 검사[어깨뼈(견갑골) 사이의 능형근 부위가 보이지 않으면 정상]<br>7) 골반전후기울기: 골반이 전후로 기울어졌는지 여부를 검사(양쪽 상장골극과 두덩뼈의 삼각형 모양이 바닥과 수직을 이루면 정상) |

■ 학교건강검사규칙 [별표 4] <개정 2025. 3. 10.>

## 신체능력검사(필수평가) 기준표(제8조제2항 관련)

### 신체능력검사(필수평가) 항목별 평가기준: 남자

| | 왕복오래달리기* (회) | | | | | 오래달리기-걷기** (초) | | | | | 스텝검사 (PEI) | | | | |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cm) | | | | | 종합유연성 (점수) | | | | |
|---|---|---|---|---|---|---|---|---|---|---|---|---|---|---|---|---|---|---|---|---|---|---|---|---|---|
| | 아주낮음(5등급) | 낮음(4등급) | 보통(3등급) | 높음(2등급) | 아주높음(1등급) | 아주낮음(5등급) | 낮음(4등급) | 보통(3등급) | 높음(2등급) | 아주높음(1등급) | 아주낮음(5등급) | 낮음(4등급) | 보통(3등급) | 높음(2등급) | 아주높음(1등급) | 아주낮음(5등급) | 낮음(4등급) | 보통(3등급) | 높음(2등급) | 아주높음(1등급) | 아주낮음(5등급) | 낮음(4등급) | 보통(3등급) | 높음(2등급) | 아주높음(1등급) |
| 초3 | 16~22 | 23~39 | 40~64 | 65~87 | 88~100 | 초3·초4는 실시하지 않음 | | | | | 초3·초4는 실시하지 않음 | | | | | -51~-41 | -4.0~0.9 | 1.0~4.9 | 5.0~7.9 | 8.0~13.0 | 4이하 | 5 | 6 | 7 | 8 |
| 초4 | 19~25 | 26~44 | 45~68 | 69~95 | 96~103 | | | | | | | | | | | -51~-41 | -4.0~0.9 | 1.0~4.9 | 5.0~7.9 | 8.0~13.0 | | | | | |
| 초5 | 22~28 | 29~49 | 50~72 | 73~99 | 100~107 | 430~640 | 410~479 | 325~409 | 282~324 | 263~281 | 44.0~46.9 | 47.0~51.9 | 52.0~61.9 | 62.0~75.9 | 76.0~95.0 | -51~-41 | -4.0~0.9 | 1.0~4.9 | 5.0~7.9 | 8.0~13.0 | | | | | |
| 초6 | 22~31 | 32~53 | 54~77 | 78~103 | 104~112 | 450~537 | 430~449 | 315~379 | 251~314 | 243~250 | | | | | | -51~-41 | -4.0~0.9 | 1.0~4.9 | 5.0~7.9 | 8.0~13.0 | | | | | |
| 중1 | 15~19 | 20~35 | 36~49 | 50~63 | 64~73 | 700~791 | 600~699 | 503~599 | 426~502 | 400~425 | | | | | | -51~-41 | -4.0~1.9 | 2.0~5.9 | 6.0~9.9 | 10.0~25.0 | | | | | |
| 중2 | 15~21 | 22~37 | 38~51 | 52~65 | 66~75 | 630~774 | 534~679 | 433~533 | 417~427 | 330~416 | | | | | | -51~-41 | -4.0~1.9 | 2.0~6.9 | 7.0~9.9 | 10.0~25.0 | | | | | |
| 중3 | 16~23 | 24~39 | 40~53 | 54~67 | 68~79 | 660~761 | 563~659 | 473~567 | 400~472 | 370~407 | | | | | | -51~-31 | -3.0~2.5 | 2.6~6.9 | 7.0~9.9 | 10.0~25.0 | | | | | |
| 고1 | 16~25 | 26~41 | 42~55 | 56~69 | 70~80 | 640~755 | 552~639 | 453~551 | 399~457 | 370~398 | | | | | | -31~-21 | -2.0~3.9 | 4.0~8.9 | 9.0~12.9 | 13.0~23.0 | | | | | |
| 고2 | 16~27 | 28~43 | 44~57 | 58~71 | 72~81 | 620~721 | 536~619 | 443~535 | 390~442 | 370~389 | | | | | | -31~0.0 | 0.1~4.9 | 5.0~10.9 | 11.0~15.9 | 16.0~23.0 | | | | | |
| 고3 | 18~29 | 30~45 | 46~59 | 60~73 | 74~82 | 600~701 | 520~599 | 433~519 | 381~427 | 362~380 | | | | | | -31~0.0 | 0.1~5.9 | 6.0~10.9 | 11.0~15.9 | 16.0~23.0 | | | | | |

| | 팔굽혀펴기 (회) | | | | | 윗몸말아올리기 (회) | | | | | 악력 (kg) | | | | | 50m달리기 (초) | | | | | 제자리멀리뛰기 (cm) | | | | |
|---|---|---|---|---|---|---|---|---|---|---|---|---|---|---|---|---|---|---|---|---|---|---|---|---|---|
| | 아주낮음(5등급) | 낮음(4등급) | 보통(3등급) | 높음(2등급) | 아주높음(1등급) | 아주낮음(5등급) | 낮음(4등급) | 보통(3등급) | 높음(2등급) | 아주높음(1등급) | 아주낮음(5등급) | 낮음(4등급) | 보통(3등급) | 높음(2등급) | 아주높음(1등급) | 아주낮음(5등급) | 낮음(4등급) | 보통(3등급) | 높음(2등급) | 아주높음(1등급) | 아주낮음(5등급) | 낮음(4등급) | 보통(3등급) | 높음(2등급) | 아주높음(1등급) |
| 초3 | 초3~초6은 실시하지 않음 | | | | | 0~3 | 4~13 | 14~29 | 30~65 | 66~120 | 7.6~8.9 | 9.0~11.9 | 12.0~17.9 | 18.0~30.9 | 31.0~35.0 | 1441~1658 | 1101~1440 | 931~1100 | 801~930 | 670~800 | 91.3~100 | 101.1~127 | 127.1~141 | 141.1~166 | 166.1~174 |
| 초4 | | | | | | 0~6 | 7~21 | 22~39 | 40~79 | 80~120 | 8.9~11.4 | 11.5~14.9 | 15.0~18.4 | 18.5~30.9 | 31.0~36.0 | 1321~1601 | 1051~1320 | 871~1050 | 731~870 | 570~730 | 80.2~100 | 101.1~130 | 130.1~148 | 148.1~170 | 170.1~179 |
| 초5 | | | | | | 0~9 | 10~21 | 22~39 | 40~79 | 80~120 | 9.9~12.4 | 12.5~16.9 | 17.0~22.9 | 23.0~30.9 | 31.0~37.0 | 1321~1558 | 1021~1320 | 841~1020 | 651~840 | 530~650 | 106.6~111 | 111.1~141 | 141.1~159 | 159.1~180 | 180.1~187 |
| 초6 | | | | | | 0~9 | 10~21 | 22~39 | 40~79 | 80~120 | 11.2~14.9 | 15.0~18.9 | 19.0~26.4 | 26.5~34.9 | 35.0~39.4 | 1251~1551 | 1001~1250 | 811~1000 | 611~810 | 470~610 | 112.0~122 | 122.1~143 | 143.1~167 | 167.1~200 | 200.1~204 |
| 중1 | 0~3 | 4~11 | 12~24 | 25~33 | 34~41 | 5~13 | 14~32 | 33~54 | 55~69 | 90~130 | 14.4~16.4 | 16.5~22.4 | 22.5~29.9 | 30.0~41.9 | 42.0~46.0 | 1151~1251 | 931~1150 | 741~930 | 551~740 | 440~550 | 122.9~131 | 131.1~159 | 159.1~177 | 177.1~211 | 211.1~219 |
| 중2 | 0~3 | 4~11 | 12~24 | 25~33 | 34~41 | 5~13 | 14~32 | 33~54 | 55~69 | 90~130 | 19.1~21.8 | 22.0~28.4 | 28.5~36.9 | 37.0~44.4 | 44.5~47.0 | 1151~1241 | 931~1150 | 741~930 | 551~740 | 440~550 | 139.9~156 | 156.1~169 | 169.1~187 | 187.1~212 | 212.1~228 |
| 중3 | 0~3 | 4~13 | 14~24 | 25~33 | 34~41 | 5~13 | 14~32 | 33~54 | 55~69 | 90~130 | 19.1~24.9 | 25.0~32.9 | 33.0~40.4 | 40.5~43.4 | 43.5~50.0 | 1101~1230 | 851~1100 | 731~850 | 601~730 | 530~700 | 141.4~145 | 145.1~180 | 180.1~201 | 201.1~232 | 232.1~244 |
| 고1 | 2~6 | 7~15 | 16~29 | 30~45 | 46~50 | 3~14 | 15~34 | 35~59 | 60~89 | 90~130 | 25.5~28.9 | 29.0~35.4 | 35.5~42.4 | 42.5~60.9 | 61.0~62.5 | 1001~1074 | 811~1000 | 731~810 | 601~730 | 530~700 | 139.9~160 | 160.1~195 | 195.1~216 | 216.1~255 | 255.1~260 |
| 고2 | 7~10 | 11~24 | 25~41 | 42~49 | 50~54 | 10~16 | 17~34 | 35~59 | 60~89 | 90~130 | 30.5~30.9 | 31.0~32.9 | 33.0~45.9 | 46.0~60.9 | 61.0~65.0 | 9.51~9.71 | 7.91~9.50 | 7.51~7.90 | 6.71~7.50 | 6.50~6.70 | 162.9~177 | 177.1~212 | 212.1~232 | 232.1~250 | 250.1~270 |
| 고3 | 7~16 | 17~29 | 30~45 | 46~55 | 56~62 | 10~16 | 17~34 | 35~59 | 60~89 | 90~130 | 30.5~30.9 | 31.0~32.9 | 33.0~45.9 | 46.0~63.4 | 63.5~63.4 | 9.71~9.61 | 7.91~9.70 | 7.51~7.90 | 6.71~7.50 | 6.40~6.70 | 169.9~185 | 185.1~221 | 221.1~243 | 243.1~264 | 264.1~277 |

* 왕복오래달리기: 초등학생 15m, 중·고등학생 20m. ** 오래달리기-걷기: 초등학생 1000m, 여자 중·고등학생 1200m, 남자 중·고등학생 1600m

※ 5등급과 1등급에서 범위를 지정해준 것은 최소/최대점수값을 표시해 주기 위한 것이며, 해당 범위를 벗어나는 값들은 각각 최소/최대 등급으로 한다(예를 들어, 초4의 왕복오래달리기 측정값이 19회 미만이면 5등급이며 103회 초과이면 1등급이 됨).

## 신체능력검사(필수평가) 항목별 평가기준: 여자

| | 왕복오래달리기* (회) | | | | | 오래달리기-걷기** (초) | | | | |
|---|---|---|---|---|---|---|---|---|---|---|
| | 아주낮음 (5등급) | 낮음 (4등급) | 보통 (3등급) | 높음 (2등급) | 아주높음 (1등급) | 아주낮음 (5등급) | 낮음 (4등급) | 보통 (3등급) | 높음 (2등급) | 아주높음 (1등급) |
| 초3 | 14~18 | 19~34 | 35~50 | 51~60 | 69~90 | 초3·초4는 실시하지 않음 | | | | |
| 초4 | 16~20 | 21~39 | 40~56 | 57~76 | 77~100 | | | | | |
| 초5 | 18~22 | 23~44 | 45~62 | 63~84 | 85~104 | 502~640 | 442~501 | 360~441 | 300~359 | 260~299 |
| 초6 | 20~24 | 25~49 | 50~68 | 69~92 | 93~112 | 430~507 | 430~479 | 354~429 | 300~353 | 243~299 |
| 중1 | 10~18 | 14~18 | 19~24 | 25~34 | 35~70 | 609~661 | 512~608 | 443~517 | 300~442 | 355~379 |
| 중2 | 10~14 | 15~20 | 21~28 | 29~39 | 40~75 | 609~661 | 512~608 | 443~517 | 300~442 | 355~379 |
| 중3 | 12~15 | 16~22 | 23~32 | 33~44 | 45~79 | 609~661 | 512~608 | 443~517 | 300~442 | 355~379 |
| 고1 | 13~16 | 17~24 | 25~36 | 37~49 | 50~80 | 609~661 | 512~608 | 443~517 | 300~442 | 365~379 |
| 고2 | 14~17 | 18~26 | 27~40 | 41~54 | 55~81 | 609~661 | 512~608 | 443~517 | 300~442 | 365~379 |
| 고3 | 14~17 | 18~26 | 27~40 | 41~54 | 55~82 | 609~661 | 512~608 | 443~517 | 300~442 | 365~379 |

| | 스텝검사 (PEI) | | | | |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cm) | | | | |
|---|---|---|---|---|---|---|---|---|---|---|
| | 아주낮음 (5등급) | 낮음 (4등급) | 보통 (3등급) | 높음 (2등급) | 아주높음 (1등급) | 아주낮음 (5등급) | 낮음 (4등급) | 보통 (3등급) | 높음 (2등급) | 아주높음 (1등급) |
| 초3 | 초3·초4는 실시하지 않음 | | | | | -0.1~0.9 | 1.0~4.9 | 5.0~6.9 | 7.0~9.9 | 100~22.0 |
| 초4 | | | | | | -0.1~0.9 | 1.0~4.9 | 5.0~6.9 | 7.0~9.9 | 100~22.0 |
| 초5 | 440~469 | 470~519 | 520~619 | 620~759 | 760~95.0 | -0.1~0.9 | 1.0~4.9 | 5.0~6.9 | 7.0~9.9 | 100~22.0 |
| 초6 | | | | | | -0.1~1.9 | 2.0~4.9 | 5.0~9.9 | 100~139 | 140~28.0 |
| 중1 | | | | | | -0.1~1.9 | 2.0~7.9 | 8.0~10.9 | 11.0~149 | 150~20.0 |
| 중2 | | | | | | -0.1~1.9 | 2.0~7.9 | 8.0~10.9 | 11.0~149 | 150~20.0 |
| 중3 | | | | | | -0.1~1.9 | 2.0~7.9 | 8.0~10.9 | 11.0~159 | 160~20.0 |
| 고1 | | | | | | -0.1~1.9 | 2.0~7.9 | 8.0~10.9 | 11.0~159 | 160~20.0 |
| 고2 | | | | | | -0.1~4.9 | 5.0~8.9 | 9.0~11.9 | 12.0~169 | 170~20.0 |
| 고3 | | | | | | -0.1~4.9 | 5.0~8.9 | 9.0~11.9 | 12.0~169 | 170~20.0 |

| | 종합유연성 (점수) | | | | |
|---|---|---|---|---|---|
| | 아주낮음 (5등급) | 낮음 (4등급) | 보통 (3등급) | 높음 (2등급) | 아주높음 (1등급) |
| 초3 | 4이하 | 5 | 6 | 7 | 8 |
| 초4 | | | | | |
| 초5 | | | | | |
| 초6 | | | | | |
| 중1 | | | | | |
| 중2 | | | | | |
| 중3 | | | | | |
| 고1 | | | | | |
| 고2 | | | | | |
| 고3 | | | | | |

| | 무릎대고팔굽혀펴기 (회) | | | | | 윗몸말아올리기 (회) | | | | |
|---|---|---|---|---|---|---|---|---|---|---|
| | 아주낮음 (5등급) | 낮음 (4등급) | 보통 (3등급) | 높음 (2등급) | 아주높음 (1등급) | 아주낮음 (5등급) | 낮음 (4등급) | 보통 (3등급) | 높음 (2등급) | 아주높음 (1등급) |
| 초3 | 초3~초6은 실시하지 않음 | | | | | 0~5 | 6~12 | 13~28 | 29~52 | 53~90 |
| 초4 | | | | | | 0~5 | 6~17 | 18~28 | 29~59 | 60~90 |
| 초5 | | | | | | 0~6 | 7~22 | 23~35 | 36~59 | 60~90 |
| 초6 | | | | | | 0~6 | 7~22 | 23~42 | 43~59 | 60~90 |
| 중1 | 0~5 | 6~13 | 14~23 | 24~44 | 45~50 | 0~6 | 7~21 | 22~42 | 43~57 | 58~62 |
| 중2 | 0~5 | 6~13 | 14~23 | 24~39 | 40~44 | 0~6 | 7~18 | 19~38 | 39~57 | 58~62 |
| 중3 | 0~5 | 6~13 | 14~23 | 24~39 | 40~44 | 0~5 | 6~16 | 17~33 | 34~51 | 52~60 |
| 고1 | 0~5 | 6~13 | 14~23 | 24~39 | 40~44 | 0~3 | 4~12 | 13~29 | 30~39 | 40~50 |
| 고2 | 0~8 | 9~17 | 18~29 | 30~39 | 40~44 | 0~3 | 4~12 | 13~29 | 30~39 | 40~50 |
| 고3 | 0~8 | 9~17 | 18~29 | 30~39 | 40~44 | 0~3 | 4~12 | 13~29 | 30~39 | 40~50 |

| | 악력 (kg) | | | | | 50m달리기 (초) | | | | |
|---|---|---|---|---|---|---|---|---|---|---|
| | 아주낮음 (5등급) | 낮음 (4등급) | 보통 (3등급) | 높음 (2등급) | 아주높음 (1등급) | 아주낮음 (5등급) | 낮음 (4등급) | 보통 (3등급) | 높음 (2등급) | 아주높음 (1등급) |
| 초3 | 4.0~6.9 | 7.0~109 | 110~159 | 160~229 | 230~32.4 | 13.01~13.42 | 11.61~13.00 | 10.51~11.60 | 9.21~10.50 | 9.40~9.00 |
| 초4 | 8.5~10.4 | 105~134 | 135~179 | 180~229 | 230~33.6 | 13.81~13.42 | 11.01~13.80 | 10.41~11.00 | 9.41~10.40 | 9.30~9.40 |
| 초5 | 10.6~11.9 | 120~154 | 155~129 | 190~229 | 230~35.0 | 13.81~15.91 | 10.71~13.80 | 9.91~10.70 | 8.91~9.80 | 8.73~8.90 |
| 초6 | 12.91~15.91 | 140~139 | 190~219 | 220~329 | 330~39.0 | 12.91~15.91 | 10.71~12.90 | 9.31~10.70 | 8.91~9.30 | 8.66~8.90 |
| 중1 | 12.21~13.51 | 140~139 | 190~229 | 230~359 | 360~33.0 | 12.21~13.51 | 10.51~12.20 | 9.31~10.50 | 8.31~9.30 | 8.60~8.30 |
| 중2 | 12.21~13.51 | 140~184 | 185~254 | 255~359 | 360~33.0 | 12.21~13.51 | 10.51~12.20 | 9.31~10.50 | 8.31~9.30 | 8.60~8.30 |
| 중3 | 12.21~13.51 | 160~184 | 185~274 | 275~359 | 360~33.0 | 12.21~13.51 | 10.51~12.20 | 9.31~10.50 | 8.31~9.30 | 8.60~8.30 |
| 고1 | 12.21~13.51 | 165~229 | 230~229 | 230~359 | 360~33.0 | 12.21~13.51 | 10.51~12.20 | 9.31~10.50 | 8.31~9.30 | 8.60~8.30 |
| 고2 | 12.21~13.51 | 130~249 | 250~284 | 285~374 | 375~33.2 | 12.21~13.51 | 10.51~12.20 | 9.51~10.50 | 8.31~9.50 | 8.60~8.30 |
| 고3 | 12.21~13.51 | 130~249 | 250~284 | 285~374 | 375~33.2 | 12.21~13.51 | 10.51~12.20 | 9.51~10.50 | 8.31~9.50 | 8.60~8.30 |

| | 제자리멀리뛰기 (cm) | | | | |
|---|---|---|---|---|---|
| | 아주낮음 (5등급) | 낮음 (4등급) | 보통 (3등급) | 높음 (2등급) | 아주높음 (1등급) |
| 초3 | 87.4~92 | 92.1~113 | 113.1~129 | 129.1~154 | 154.1~156.0 |
| 초4 | 87.4~97 | 97.1~119 | 119.1~135 | 135.1~161 | 161.1~165.5 |
| 초5 | 98.3~100 | 100.1~123 | 123.1~139 | 139.1~170 | 170.1~175.0 |
| 초6 | 99.9~100 | 100.1~127 | 127.1~144 | 144.1~175 | 175.1~177.0 |
| 중1 | 99.9~100 | 100.1~127 | 127.1~144 | 144.1~175 | 175.1~180.5 |
| 중2 | 99.9~100 | 100.1~127 | 127.1~145 | 145.1~128 | 128.1~190.0 |
| 중3 | 94.9~100 | 100.1~127 | 127.1~145 | 145.1~128 | 128.1~190.0 |
| 고1 | 94.9~100 | 100.1~139 | 139.1~159 | 159.1~126 | 126.1~200.0 |
| 고2 | 94.9~100 | 100.1~139 | 139.1~159 | 159.1~126 | 126.1~200.0 |
| 고3 | 94.9~100 | 100.1~139 | 139.1~159 | 159.1~126 | 126.1~200.0 |

* 왕복오래달리기: 초등학생 15m, 중·고등학생 20m. ** 오래달리기-걷기: 초등학생 1000m, 여자 중·고등학생 1200m, 남자 중·고등학생 1600m
※ 5등급과 1등급에서 범위를 지정해준 것은 최소/최대점수값을 표시해 주기 위한 것이며, 해당 범위를 벗어나는 값들은 각각 최소/최대 등급으로 한다(예를 들어, 초4의 왕복오래달리기 측정값이 16회 미만이면 5등급이며 100회 초과이면 1등급이 됨).

| 신체능력검사(필수평가) 비만 평가 기준: BMI (kg/m²) | | | | | | | | | | |
|---|---|---|---|---|---|---|---|---|---|---|
| | 남자 | | | | | 여자 | | | | |
| | 마름 | 정상 | 과체중 | 경도 비만 | 고도 비만 | 마름 | 정상 | 과체중 | 경도 비만 | 고도 비만 |
| ±3 | 13.9이하 | 14.0~20.7 | 20.8~23.2 | 23.3~29.9 | 30.0이상 | 13.7이하 | 13.8~19.8 | 19.9~22.0 | 22.1~29.9 | 30.0이상 |
| ±4 | 14.2이하 | 14.3~20.7 | 20.8~23.2 | 23.3~29.9 | 30.0이상 | 13.9이하 | 14.0~19.8 | 19.9~22.0 | 22.1~29.9 | 30.0이상 |
| ±5 | 14.5이하 | 14.6~21.6 | 21.7~24.4 | 24.5~29.9 | 30.0이상 | 14.2이하 | 14.3~20.6 | 20.7~23.0 | 23.1~29.9 | 30.0이상 |
| ±6 | 14.8이하 | 14.9~22.5 | 22.6~24.9 | 25.0~29.9 | 30.0이상 | 14.6이하 | 14.7~21.4 | 21.5~23.9 | 24.0~29.9 | 30.0이상 |
| 중1 | 15.3이하 | 15.4~23.2 | 23.3~24.9 | 25.0~29.9 | 30.0이상 | 15.1이하 | 15.2~22.1 | 22.2~24.7 | 24.8~29.9 | 30.0이상 |
| 중2 | 15.7이하 | 15.8~23.8 | 23.9~24.9 | 25.0~29.9 | 30.0이상 | 15.6이하 | 15.7~22.7 | 22.8~24.9 | 25.0~29.9 | 30.0이상 |
| 중3 | 16.2이하 | 16.3~24.3 | 24.4~24.9 | 25.0~29.9 | 30.0이상 | 16.2이하 | 16.3~23.2 | 23.3~24.9 | 25.0~29.9 | 30.0이상 |
| 고1 | 16.7이하 | 16.8~24.6 | 24.7~24.9 | 25.0~29.9 | 30.0이상 | 16.7이하 | 16.8~23.6 | 23.7~24.9 | 25.0~29.9 | 30.0이상 |
| 고2 | 17.2이하 | 17.3~24.9 | 25.0~29.9 | | 30.0이상 | 17.2이하 | 17.3~23.8 | 23.9~24.9 | 25.0~29.9 | 30.0이상 |
| 고3 | 17.7이하 | 17.8~24.9 | 25.0~29.9 | | 30.0이상 | 17.6이하 | 17.7~23.9 | 24.0~24.9 | 25.0~29.9 | 30.0이상 |

■ 학교건강검사규칙 [별표 5] <개정 2009.5.22>

## 신체능력검사(필수평가) 항목별 등급 및 점수 기준표(제8조제2항 관련)

| 등급 | 5 등급 | | | | 4 등급 | | | | 3 등급 | | | | 2 등급 | | | | 1 등급 | | | | |
|---|---|---|---|---|---|---|---|---|---|---|---|---|---|---|---|---|---|---|---|---|---|
| 점수 | 0점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점 |
| | ←최소범위 | | | | | | | | | | | | | | | | | | | 최대범위→ | |

※ 비 고

1. 항목별 등급 및 점수의 산출은 교육정보시스템(NEIS)의 자동산출기능에 따라 자동 처리되며, 등급별로 등분되는 점수는 교육정보시스템(NEIS)의 항목별 세부점수 기준을 참고한다.
2. 신체의 능력점수는 항목별 20점 만점인 5개 요인의 점수를 합하여 100점 만점으로 산출한다.
3. 항목별 점수는 별표 4의 등급별 범위를 위의 표와 같이 최소범위 값에서 최대범위 값까지 각 등급별로 등분하여 산출한다(다만, 종합유연성은 20점 만점으로 등급 간 4점 간격으로 산출되어 1등급: 20점, 2등급: 16점, 3등급: 12점, 4등급: 8점, 5등급: 4점으로 한다). 체질량지수는 정상이 20점이며 마름과 비만으로 갈수록 점수가 내려가도록 산출한다). 이 경우 최소범위 값 이하는 0점으로 최대범위 값 이상은 20점으로 정해지고 이에 따라서 5등급은 3등분으로, 1등급부터 4등급까지는 4등분으로 정한다.
(예: 초등학교 5학년 남자 왕복오래달리기 5등급의 범위인 22 ~ 28은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소범위 값인 22이하는 0점이고 23 ~ 28까지를 3등분하여 1점: 23 ~ 24, 2점: 25 ~ 26, 3점: 27 ~ 28로 하며, 4등급의 범위인 29 ~ 49는 4등분하여 4점: 29 ~ 33, 5점: 34 ~ 39, 6점: 40 ~ 44, 7점: 45 ~ 49로 함. 1등급의 범위인 100 ~ 107은 최대범위 값인 107이상은 20점이고 100 ~ 106을 4등분하여 16점: 100 ~ 101, 17점: 102 ~ 103, 18점: 104, 19점:105 ~ 106으로 산정함. 등급별 등분 시에 소수점자리는 반올림으로 계산함)

■ 학교건강검사규칙 [별표 6] <신설 2009.5.22>

## 신체의 능력등급 판정표(제8조제1항 관련)

| 구분 \ 등급 | 1 등급 | 2 등급 | 3 등급 | 4 등급 | 5 등급 |
|---|---|---|---|---|---|
| 신체의 능력점수 | 80~100 | 60~79 | 40~59 | 20~39 | 0~19 |

■ 학교건강검사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3. 10.>

# 학 생 건 강 기 록 부

(앞쪽)

1. 인적사항

| 성명 | | 성별 | □남 □여 | 주민등록번호 | ~ |
|---|---|---|---|---|---|

| 학 교 | 학 년 | 반(이수과정 / 학과) | 번 호 | 담임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감염병 예방접종

가. 취학 전 예방접종

| 대상 감염병 | 접종여부 | | | | | 비 고 |
|---|---|---|---|---|---|---|
| | 1차 | 2차 | 3차 | 4차 | 5차 | |
| 디프테리아 | | | | | | |
| 백 일 해 | | | | | | |
| 파 상 풍 | | | | | | |
| 홍 역 | | | | | | |
| 유행성이하선염 | | | | | | |
| 풍 진 | | | | | | |
| 회색질척수염(polio) | | | | | | |
| 결 핵 | | | | | | |
| 일본뇌염 | | | | | | |
| 수 두 | | | | | | |
| B형 간염 | | | | | | |

나. 취학 후 예방접종

| 대상 감염병 | 학교 / 학년 | 접종일 | 대상 감염병 | 학교 / 학년 | 접종일 |
|---|---|---|---|---|---|
| 일본뇌염 | | | | | |
| 디프테리아 | | | | | |
| 파 상 풍 | | | | | |
| 사람유두종바이러스 | | | | | |

(뒤쪽)

3. 건강검사 실시현황

가. 신체의 발달상황

| 구 분 | 초등학교 | | | | | | 중학교 | | | 고등학교 | | |
|---|---|---|---|---|---|---|---|---|---|---|---|---|
| | 1 | 2 | 3 | 4 | 5 | 6 | 1 | 2 | 3 | 1 | 2 | 3 |
| 키 (cm) | | | | | | | | | | | | |
| 몸 무 게(kg) | | | | | | | | | | | | |
| 비만도 | | | | | | | | | | | | |

나. 신체의 능력

| 구 분 | | 단위 | 초등학교 | | | | 중학교 | | | 고등학교 | | |
|---|---|---|---|---|---|---|---|---|---|---|---|---|
| | | | 3 | 4 | 5 | 6 | 1 | 2 | 3 | 1 | 2 | 3 |
| 왕 복 오 래 달 리 기 | | 회 | | | | | | | | | | |
| 오 래 | 1,000m(초) | 분 : 초 | 빈 칸 | | | | 빈 칸 | | | | | |
| 달리기-걷기 | 1,600m(중·고 / 남) | 분 : 초 | 빈 칸 | | | | | | | | | |
| (초5~고3) | 1,200m(중·고 / 여) | 분 : 초 | 빈 칸 | | | | | | | | | |
| 스 텝 검 사 | | PEI | 빈 칸 | | | | | | | | | |
|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 | cm | | | | | | | | | | |
| 종 합 유 연 성 | | 점 | | | | | | | | | | |
| (무릎대고)팔굽혀펴기(중·고) | | 회 | 빈 칸 | | | | | | | | | |
| 윗몸말아올리기 | | 회 | | | | | | | | | | |
| 악 력 | | kg | | | | | | | | | | |
| 50m 달 리 기 | | 초 | | | | | | | | | | |
| 제자리멀리뛰기 | | cm | | | | | | | | | | |
| 체 지 방 률 | | % | | | | | | | | | | |
| 신체의 능력점수 | | 점 | | | | | | | | | | |
| 신체의 능력등급 | | 등급 | | | | | | | | | | |

다. 건강검진 현황

| 구 분 | | 초등학교 | | | | | | 중학교 | 고등학교 |
|---|---|---|---|---|---|---|---|---|---|
| | | 1학년 | 2학년 | 3학년 | 4학년 | 5학년 | 6학년 | 1학년 | 1학년 |
| 건강 | 검 진 일 | | 빈 칸 | | | 빈 칸 | | | |
| 검진 | 검진기관 | | 빈 칸 | | | 빈 칸 | | | |
| 구강 | 검 진 일 | | | | | | | | |
| 검진 | 검진기관 | | | | | | | | |

라. 별도검사 현황

| | | | | | | | | | | | | |
|---|---|---|---|---|---|---|---|---|---|---|---|---|
| 검 사 일 | | | | | | | | | | | | |
| 검 사 명 | | | | | | | | | | | | |
| 검사기관 | | | | | | | | | | | | |

210㎜×297㎜(백상지 80g/㎡)

■ 학교건강검사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20. 1. 9.>

# 문진표(초등학생용)

| 수검자 인적 사항 | 학교명 | | | 초등학교 |
|---|---|---|---|---|
| | 학년 / 반 / 번호 | | 학년 반 번 | |
| | 성명 | | | |
| | 성별 | □남 □여 | 생년월일 | |

이 설문조사는 건강검진에 앞서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미리 알아보고 진찰을 받을 때 참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은 부모님(보호자)이,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은 본인 또는 부모님(보호자)과 상의하여 작성하기 바랍니다.

| | |
|---|---|
| 1. 병원에서 진단 받고 현재 치료 중인 질환이 있습니까? | □예 □아니오 |
| 1-1. 있다면 질환명을 기록하여 주십시오.( ) | |
| 2. 최근 1개월 이내에 약을 복용한 적이 있습니까? | □예 □아니오 |
| 2-1. 있다면 질환명, 약 종류를 기록하여 주십시오.( ) | |
| 3. 병원에서 진단 받고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 중인 질환이 있습니까? | □예 □아니오 |
| 3-1. 있다면 질환명을 기록하여 주십시오.( ) | |
| 4. 학생이 건강에 대하여 걱정되거나 궁금한 것이 있습니까? | □예 □아니오 |
| 4-1. 있다면 기록하여 주십시오.( ) | |
| 5. 학부모님께서 학생의 건강에 대하여 걱정되거나 궁금한 것이 있습니까? | □예 □아니오 |
| 5-1. 있다면 기록하여 주십시오.( ) | |

6. 최근 한 달간 학생이 경험한 증상에 모두 "V"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 항목 | 나타나는 증상 | 예 | 아니오 |
|---|---|---|---|
| 전신상태 | 감기에 잘 걸리는 편이다. | | |
| | 온 몸에 힘이 없고 쉽게 피로한 편이다. | | |
| |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 | |
| 호흡기 | 재채기와 함께 맑은 콧물이 흐를 때가 있다. | | |
| | 숨 쉴 때 소리가 난다. | | |
| | 기침과 함께 누런 가래가 올라온다. | | |
| | 열이 많이 나면서 목이 따가울 때가 자주 있다. | | |
| | 평소 코로 숨쉬기가 불편하고 코가 자주 막힌다. | | |
| 순환기 | 가만히 있어도 심장이 두근거린다. | | |
| | 운동을 할 때 몹시 숨이 차다. | | |
| 소화기 | 배가 자주 아프고 소화가 안 된다. | | |
| | 속이 답답하다. | | |
| | 배가 팽팽하거나 가스가 찬 듯한 느낌이 있다. | | |
| | 설사를 자주 한다. | | |
| 혈액 | 코피가 자주 나고 다치면 피가 잘 멈추지 않는다. | | |
| | 몸에 멍이 잘 든다. | | |
| 그 밖의 증상 | 머리가 자주 아프다. | | |
| | 귓속이 아프거나 귀에서 진물이 나온다. | | |
| | 귀에서 소리가 난다. | | |
| | 입이 잘 벌어지지 않는다. | | |
| | 목이나 허리가 아프다. | | |

210㎜×297㎜(백상지 80g/㎡)

■ 학교건강검사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개정 2020. 1. 9.>

# 문진표(중학생·고등학생용)

| | | | | |
|---|---|---|---|---|
| 수검자 인적 사항 | 학교명 | | | 학교 |
| | 학년 / 반 / 번호 | | | 학년 반 번 |
| | 성명 | | | |
| | 성별 | □남 □여 | 생년월일 | |

이 설문조사는 건강검진에 앞서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미리 알아보고 진찰을 받을 때 참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인이 작성하되 5번 문항 및 잘 모르는 문항은 부모님(보호자)과 상의하여 작성하기 바랍니다.

| | |
|---|---|
| 1. 병원에서 진단 받고 현재 치료 중인 질환이 있습니까? | □예 □아니오 |
| 1-1. 있다면 질환명을 기록하여 주십시오.( | ) |
| 2. 최근 1개월 이내에 약을 복용한 적이 있습니까? | □예 □아니오 |
| 2-1. 있다면 질환명, 약 종류를 기록하여 주십시오.( | ) |
| 3. 병원에서 진단 받고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 중인 질환이 있습니까? | □예 □아니오 |
| 3-1. 있다면 질환명을 기록하여 주십시오.( | ) |
| 4. 학생이 건강에 대하여 걱정되거나 궁금한 것이 있습니까? | □예 □아니오 |
| 4-1. 있다면 기록하여 주십시오.( | ) |
| 5. 학부모님께서 학생의 건강에 대하여 걱정되거나 궁금한 것이 있습니까? | □예 □아니오 |
| 5-1. 있다면 기록하여 주십시오.( | ) |

6. 최근 한 달간 학생이 경험한 증상에 모두 "V"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 항목 | 나타나는 증상 | 예 | 아니오 |
|---|---|---|---|
| 전신상태 | 감기에 잘 걸린다. | | |
| | 온 몸에 힘이 없고 쉽게 피로하다. | | |
| |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 | |
| 호흡기 | 재채기와 함께 코와 눈이 가렵고 맑은 콧물이 흐를 때가 있다. | | |
| | 숨 쉴 때 숨이 가쁘면서 가슴에서 쌕쌕하는 소리나 휘파람 소리가 들릴 때가 많다. | | |
| | 기침과 함께 누런 가래가 올라온다. | | |
| | 열이 많이 나면서 목이 따가울 때가 자주 있다. | | |
| | 평소 코로 숨쉬기가 불편하고 코가 막힌다. | | |
| | 코를 심하게 곤다는 말을 듣는다. | | |
| | 목에서 몽우리가 만져진다. | | |
| 순환기 | 혈색이 안 좋고, 가만히 있어도 심장이 두근거린다. | | |
| | 운동을 조금만 해도 다른 사람보다 숨이 심하게 차다. | | |
| 소화기 | 속이 쓰리거나 아플 때가 있다. | | |
| | 속이 답답하거나 가득 찬 듯한 느낌이 있다. | | |
| | 배가 팽팽하거나 가스가 찬 것 같다. | | |
| | 아랫배가 살살 아프거나 설사를 자주 한다. | | |
| 혈액 | 코피가 자주 나고 다치면 피가 잘 멈추지 않는다. | | |
| | 몸에 멍이 잘 든다. | | |
| 그 밖의 증상 | 두통이나 편두통이 심하다. | | |
| | 귓속이 아프거나 귀에서 분비물이 나온다. | | |
| | 귀에서 매미우는 소리나 윙하는 소리가 들린다. | | |
| | 턱관절이 아프거나 입이 잘 벌어지지 않는다. | | |
| | 목·허리·무릎 등이 쑤시거나 아프다. | | |
| | (여학생) 생리통이 심하다. | | |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1호의4서식] <신설 2006.1.10>

# 구강검진 문진표

| | | | | |
|---|---|---|---|---|
| 이 설문조사는 구강검진에 앞서 여러분의 구강증상과 구강건강행태에 대하여 미리 알아보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설문 결과는 여러분이 진찰을 받을 때 참고하도록 할 것이며, 그 내용에 대하여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여러분의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은 여러분 자신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인이 작성하되 모르는 사항은 부모님(보호자)과 상의하여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검자 인적사항 | | | |
| | 학교명 | 학교 | | |
| | 학년/반/번호 | | | |
| | 성 명 | | | |
| | 성 별 | 남 여 | 생년월일 | |

| 구강 증상에 대한 물음 | | | 구강건강행태에 대한 물음 |
|---|---|---|---|
| ※ 최근 1년 동안 학생이 경험한 증상에 모두 "V"표시를 해 주십시오. | | | ※ 학생의 구강건강행태에 해당하는 번호에 "V"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
| 증상 | ①있다 | ②없다 | 7. 지난 1년간 치과병(의)원에 간 적이 있습니까?<br>①있다 ②없다 ③모르겠다 |
| 1. 치아가 깨지거나 부러짐 | | | 8. 어제 하루 동안 이를 닦은 때를 모두 표시해 주세요.<br>①아침식사 전 ②아침식사 후<br>③점심식사 후 ④저녁식사 후<br>⑤잠자기 직전 ⑥간식섭취 후 |
| 2. 차갑고 뜨거운 음료 혹은 음식을 마시거나 먹을 때 치아가 아픔 | | | |
| 3. 치아가 쑤시고 욱신거리고 아픔 | | | 9. 과자 등 단음식이나 콜라 등 청량음료를 즐겨 먹습니까?<br>①그렇다 ②보통이다 ③아니다 |
| 4. 잇몸이 아프거나 피가 남 | | | |
| 5. 혀 또는 입 안쪽 뺨이 욱신거리며 아픔 | | | 10. 현재 사용 중인 치약에 불소가 들어있습니까?<br>①예 ②아니오 ③불소치약이 무엇인지 모름 |
| 6. 불쾌한 입 냄새가 남 | | | |
| ※ 특별히 치과의사 선생님께 하고 싶은 말을 쓰십시오. | | | |

210㎜ × 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학교건강검사규칙 [별지 제1호의5서식] <개정 2020. 1. 9.>

# 학생건강검사 결과 통보서

| 학 교 명 | 학교 | 학년 / 반 / 번호 | 학년 반 번 |
|---|---|---|---|
| 성 명 | 성별 □남 □여 | 생년월일 | |

| 구 분 | 검 사 항 목 | | 검 사 결 과 | 구 분 | 검 사 항 목 | | 검 사 결 과 |
|---|---|---|---|---|---|---|---|
| 신 체 발 달 상 황 | 키 | | cm | 혈 액 | 혈당(식전) | | mg/dL |
| | 몸무게 | | kg | | 총콜레스테롤 | | mg/dL |
| | 비만도 | | | | 고밀도지단백 (HDL) 콜레스테롤 | | mg/dL |
| 척추 | | | | | | | |
| 눈 | 시력 측정 | 나 안 | 좌: 우: | | | | |
| | | 교 정 | 좌: 우: | | | | |
| | 안 질 환 | | | | 중성지방 | | mg/dL |
| 귀 | 청 력 | | 좌: 우: | | 저밀도지단백 (LDL) 콜레스테롤 | | mg/dL |
| | 귓 병 | | | | | | |
| 콧 병 | | | | | 간 세포 효소 | AST | U/L |
| | | | | | | ALT | U/L |
| 목 병 | | | | | 혈 색 소 | | g/dL |
| | | | | 결 핵 | | | |
| 피 부 병 | | | | 혈 압 | 수 축 기 | | mmHg |
| 소 변 | 요 단 백 | | | | 이 완 기 | | mmHg |
| | 요 잠 혈 | | | 허리둘레 | | | cm |
| 진 찰 및 상 담 | 과거병력 | | | 그 밖의 사항 | | | |
| | 외상 및 후유증 | | | | | | |
| | 일반상태 | | | | | | |

| 종합소견 | |
|---|---|
| 종합소견 | 가정에서의 조치사항 |
| | |

| 판정의사 | 면허번호 | | 검진일 및 검진기관 | 검진일 | |
|---|---|---|---|---|---|
| | 의사명 | (인) | | 검진기관명 | |

210㎜ × 297㎜(백상지 80g/㎡)

■ 학교건강검사규칙 [별지 제1호의6서식] <개정 2020. 1. 9.>

# 학생구강검사 결과 통보서

| 학 교 명 | 학교 | 학년 / 반 / 번호 | 학년 반 번 |
|---|---|---|---|
| 성 명 | 성별 □남 □여 | 생년월일 | |

| 구강검사 결과 및 판정 | | | | | | | | | | | | | | |
|---|---|---|---|---|---|---|---|---|---|---|---|---|---|---|
|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공통 항목 | | | | | | | 중학교·고등학교 추가 항목 | | | | | | | |
| 충치 | ① | 없음 | ② | 있음 | 상 ( )개<br>하 ( )개 | | 치주질환(잇몸병) | ① | 없음 | ② | 있음 | 잇몸출혈/비대( )<br>치석 형성( )<br>치주낭(잇몸과 치아 틈) 형성( )<br>그 밖의 증상( ) | | |
| 충치발생 위험치아 | ① | 없음 | ② | 있음 | 상 ( )개<br>하 ( )개 | | | | | | | | | |
| 결손치아(영구치에 한정) | ① | 없음 | ② | 있음 | 상 ( )개<br>하 ( )개 | | 턱관절 이상 | ① | 없음 | ② | 있음 | ( ) | | |
| 구내염 및 연조직 질환 | ① | 없음 | ② | 있음 | ( ) | | 고등학교 추가 항목 | | | | | | | |
| 부정교합 | ① | 없음 | ② | 교정 필요 | ③ | 교정 중 | 치아 마모증 | ① | 없음 | ② | 있음 | ( ) | | |
| 구강위생 상태 | ① | 우수 | ② | 보통 | ③ | 개선 요망 | | | | | | | | |
| 그 밖의 치아 상태 | ① | 과잉치 | ② | 유치 잔존 | ③ | 그 밖의 치아 상태: | 제3대구치(사랑니) | ① | 정상 | ② | 이상 | ( ) | | |

| 종합소견 | |
|---|---|
| 종합소견 | 가정에서의 조치사항 |
| | |

| 판정 치과의사 | 면허번호 | | 검진일 및 검진기관 | 검진일 | |
|---|---|---|---|---|---|
| | 의사명 | (인) | | 검진기관명 | |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1호의7 서식] <신설 2009.5.22>

# 자기신체평가 설문지(선택평가)

- 자기신체평가란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신체 상태와 능력을 측정, 평가하는 것입니다. 자기존중감, 신체전반, 건강, 외모, 스포츠 자신감, 신체활동, 체지방, 근력 · 근지구력, 유연성, 심폐지구력 등 10개 하위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해주세요.

| | 전혀 아니다----------> | | | | | 매우 그렇다 |
|---|---|---|---|---|---|---|
| 1. 나는 또래친구들보다 운동을 더 잘한다. | 1 | 2 | 3 | 4 | 5 | 6 |
| 2. 나는 살이 많이 찐 편이다. | 1 | 2 | 3 | 4 | 5 | 6 |
| 3. 내 얼굴은 잘생겼다. | 1 | 2 | 3 | 4 | 5 | 6 |
| 4. 나는 병원이나 약국에 갈 정도로 자주 아프다. | 1 | 2 | 3 | 4 | 5 | 6 |
| 5. 일주일에 3-4회, 30분 이상 숨이 찰 정도로 운동한다. | 1 | 2 | 3 | 4 | 5 | 6 |
| 6. 나는 인생의 실패자인 것 같다. | 1 | 2 | 3 | 4 | 5 | 6 |
| 7. 나는 내 몸을 여러 방향으로 잘 구부릴 수 있다. | 1 | 2 | 3 | 4 | 5 | 6 |
| 8. 나는 먼 거리를 지치지 않고 달릴 수 있을 것 같다. | 1 | 2 | 3 | 4 | 5 | 6 |
| 9. 나는 내 또래에 비해 힘이 센 편이다. | 1 | 2 | 3 | 4 | 5 | 6 |
| 10. 내 자신과 내 체력에 대해 자부심을 느낀다. | 1 | 2 | 3 | 4 | 5 | 6 |
| 11. 다른 사람들은 내가 운동을 잘 한다고 생각한다. | 1 | 2 | 3 | 4 | 5 | 6 |
| 12. 나는 너무 뚱뚱하다. | 1 | 2 | 3 | 4 | 5 | 6 |
| 13. 나는 내 또래에 비해 외모가 매력적이다. | 1 | 2 | 3 | 4 | 5 | 6 |
| 14. 나는 자주 아픈 편이다. | 1 | 2 | 3 | 4 | 5 | 6 |
| 15. 나는 운동을 숨이 찰 정도로 자주한다. | 1 | 2 | 3 | 4 | 5 | 6 |
| 16. 했던 일 중에서 제대로 된 것은 전혀 없는 것 같다. | 1 | 2 | 3 | 4 | 5 | 6 |
| 17. 내 몸은 유연성이 있다. | 1 | 2 | 3 | 4 | 5 | 6 |
| 18. 나는 쉬지 않고 오래 달릴 수 있다. | 1 | 2 | 3 | 4 | 5 | 6 |
| 19. 나는 힘이 세다. | 1 | 2 | 3 | 4 | 5 | 6 |
| 20. 나의 신체적 조건에 자부심을 느낀다. | 1 | 2 | 3 | 4 | 5 | 6 |

210㎜ × 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호의8 서식] <신설 2009.5.22>

# 자세평가 설문지(선택평가)

- 자세평가는 잘못된 자세습관이나 활동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척추후만(일명 거북이목), 척추전만, 척추측만, 뒤틀림과 같은 자세이상 학생을 발견하기 위한 예비검사입니다. 검사는 질문(문진)과 시각적 검사(시진)로 이루어집니다. 해당되는 것에 표시를 해주세요.

## 문진검사

| | 없다 | 있다 |
|---|---|---|
| 척추나 허리 부위가 지속적으로 아픈 적이 있습니까? | | |
| 자신의 신체부위 중에서 뒤틀리거나 휘는 등의 이상이 있습니까? | | |

## 시진검사

| 검사항목 | | 검사내용 | 검사결과 | | | 종합평가 |
|---|---|---|---|---|---|---|
| | | | 정상 | 경미 | 심각 | |
| 앞 | 어깨기울기 | 어깨가 좌나 우로 기울었는가? | | | | |
| | 골반기울기 | 골반이 좌나 우로 기울었는가? | | | | |
| | 다리굴곡 | 다리가 바깥이나 안쪽으로 굽었는가? | | | | |
| 옆 | 경추기울기 | 목이 앞쪽으로 늘어나 있는가(거북이목)? | | | | |
| | 상체기울기 | 등이 바로 서지 않고 앞으로 굽어 있는가? | | | | |
| | 골반전후기울기 | 골반이 전후로 기울어져 있는가? | | | | |
| 척추 휜 정도 | | 척추가 곧지 않고 휘어 있는가? | | | | |

## 해설

**정상:** 시각적으로 볼 때 정상적인 자세를 말합니다.
지속적으로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습관을 지키도록 노력하세요.

**경미:** 시각적으로 볼 때 경미한 정도의 자세이상이 의심됩니다. 지속적으로 증상의 진행 정도를 관찰하면서 나쁜 자세나 활동이 없는지 판단하고 뒷면에 제시된 교정체조를 실시합니다.

**심각:** 시각적으로 볼 때 심각한 자세이상이 의심되는 판정입니다. 전문 의사(재활의학과, 척추전문정형외과, 신경정신과)를 찾아가 상담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치료를 받도록 합니다.

210㎜ × 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학교건강검사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 1. 9.>

# 학생 신체의 발달상황 통계표

| 학년도 |
|---|
| □초 □중 □고 |

기관명 :

| 구 분 | | 성별 | 학년 | 학년 | 학년 | 학년 | 학년 | 학년 |
|---|---|---|---|---|---|---|---|---|
| 키 평균 (cm) | | 남자 | | | | | | |
| | | 여자 | | | | | | |
| 몸무게 평균 (kg) | | 남자 | | | | | | |
| | | 여자 | | | | | | |
| 비만율 | 저체중 (%) | 남자 | ( ) | ( ) | ( ) | ( ) | ( ) | ( ) |
| | | 여자 | ( ) | ( ) | ( ) | ( ) | ( ) | ( ) |
| | 정 상 (%) | 남자 | ( ) | ( ) | ( ) | ( ) | ( ) | ( ) |
| | | 여자 | ( ) | ( ) | ( ) | ( ) | ( ) | ( ) |
| | 과체중 (%) | 남자 | ( ) | ( ) | ( ) | ( ) | ( ) | ( ) |
| | | 여자 | ( ) | ( ) | ( ) | ( ) | ( ) | ( ) |
| | 비 만 (%) | 남자 | ( ) | ( ) | ( ) | ( ) | ( ) | ( ) |
| | | 여자 | ( ) | ( ) | ( ) | ( ) | ( ) | ( ) |
| 수검자 인원 (명) | | 남자 | | | | | | |
| | | 여자 | | | | | | |
| | | 계 | | | | | | |

## 작성방법

1. 이 통계표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별로 각각 작성합니다.
2. 키·몸무게 평균은 성별·학년별 수검자의 키·몸무게를 평균한 값이며, 소수 첫째자리까지 작성합니다(계산한 값이 소수 둘째자리 이상까지 나오는 경우에는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이하 제3호에서 같습니다).
3. 비만율은 성별·학년별 수검자 인원 대비 저체중·정상·과체중 및 비만인 수검자 인원의 비율이며, 소수 첫째자리까지 작성합니다. ( )에는 해당 성별·학년별 수검자 인원을 작성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별지 제3호 서식] 삭제 <2020. 1. 9.>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25. 3. 10.> (제1쪽)

# 학생신체능력검사(필수평가) 통계표

| 년도 |
|---|

기관명 :

**1. 등급별 분포 통계**

| 구분 | | | 1등급 (80~100) | | 2등급 (60~79) | | 3등급 (40~59) | | 4등급 (20~39) | | 5등급 (0~19) | | 검 사 인원수 |
|---|---|---|---|---|---|---|---|---|---|---|---|---|---|
| | | | 인원 | % | 인원 | % | 인원 | % | 인원 | % | 인원 | % | |
| 초등학교 | 3학년 | 남 | | | | | | | | | | | |
| | | 여 | | | | | | | | | | | |
| | 4학년 | 남 | | | | | | | | | | | |
| | | 여 | | | | | | | | | | | |
| | 5학년 | 남 | | | | | | | | | | | |
| | | 여 | | | | | | | | | | | |
| | 6학년 | 남 | | | | | | | | | | | |
| | | 여 | | | | | | | | | | | |
| 중학교 | 1학년 | 남 | | | | | | | | | | | |
| | | 여 | | | | | | | | | | | |
| | 2학년 | 남 | | | | | | | | | | | |
| | | 여 | | | | | | | | | | | |
| | 3학년 | 남 | | | | | | | | | | | |
| | | 여 | | | | | | | | | | | |
| 고등학교 | 1학년 | 남 | | | | | | | | | | | |
| | | 여 | | | | | | | | | | | |
| | 2학년 | 남 | | | | | | | | | | | |
| | | 여 | | | | | | | | | | | |
| | 3학년 | 남 | | | | | | | | | | | |
| | | 여 | | | | | | | | | | | |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2. 항목별 평균기록 통계

(제2쪽)

| 체력요소별 / 검사항목 / 학교급별 | | | 심폐지구력 | | | 유연성 | | 근력·근지구력 | | | 순발력 | | 비만 |
|---|---|---|---|---|---|---|---|---|---|---|---|---|---|
| | | | 왕복오래달리기(회) | 오래달리가걷기(분.초) | 스텝검사(PEI) |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cm) | 종합유연성(점) | (무릎대고)팔굽혀펴기(회) | 윗몸말아올리기(회) | 악력(kg) | 50m달리기(초) | 제자리멀리뛰기(cm) | BMI(kg/㎡) |
| 초등학교 | 3학년 | 남 | | 빈칸 | 빈칸 | | | 빈칸 | | | | | |
| | | 여 | | | | | | | | | | | |
| | 4학년 | 남 | | | | | | | | | | | |
| | | 여 | | | | | | | | | | | |
| | 5학년 | 남 | | | | | | | | | | | |
| | | 여 | | | | | | | | | | | |
| | 6학년 | 남 | | | | | | | | | | | |
| | | 여 | | | | | | | | | | | |
| 중학교 | 1학년 | 남 | | | | | | | | | | | |
| | | 여 | | | | | | | | | | | |
| | 2학년 | 남 | | | | | | | | | | | |
| | | 여 | | | | | | | | | | | |
| | 3학년 | 남 | | | | | | | | | | | |
| | | 여 | | | | | | | | | | | |
| 고등학교 | 1학년 | 남 | | | | | | | | | | | |
| | | 여 | | | | | | | | | | | |
| | 2학년 | 남 | | | | | | | | | | | |
| | | 여 | | | | | | | | | | | |
| | 3학년 | 남 | | | | | | | | | | | |
| | | 여 | | | | | | | | | | | |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삭제 <1999.3.8>

[별지 제6호서식] 삭제 <2006.1.10>

# 학교급식법

[시행 2027. 2. 20.] [법률 제21354호, 2026. 2. 19., 일부개정]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044 - 203 - 6543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급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 또는 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학교급식공급업자”라 함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의 장과 계약에 의하여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급식에 관한 경비”라 함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ㆍ설비비를 말한다.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영양교육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 식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급식 대상)** 학교급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2. 3. 21., 2019. 12. 10., 2020. 1. 29., 2021. 3. 23.>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유치원은 제외한다.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3. 「초ㆍ중등교육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ㆍ고등학교
4.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제5조(학교급식위원회 등)** ①교육감은 학교급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 12. 28.>

1.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
2.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급식에 관한 경비 및 식재료 등의 지원
3. 그 밖에 학교급식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2장 학교급식 시설ㆍ설비 기준 등

**제6조(급식시설ㆍ설비)** ①학교급식을 실시할 학교는 학교급식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학교가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공동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ㆍ설비의 종류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영양교사의 배치 등)** ①제6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는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영양교사와 「식품위생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를 둔다. 다만, 제4조제1호에 따른 유치원에 두는 영양교사의 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2. 6., 2020. 1. 29., 2026. 5. 19.>

②교육감은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 단서의 영양교사의 배치기준 등에 따른 유치원 중 일정 규모 이하 유치원에 대한 급식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청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둘 수 있다.<신설 2021. 12. 28.>

④ 제3항에 따라 영양교사가 급식관리를 지원하는 유치원의 규모 및 지원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21. 12. 28.>

**제8조(경비부담 등)** ①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ㆍ설비비는 해당 학교의 설립ㆍ경영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②급식운영비는 해당 학교의 설립ㆍ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개정 2021. 3. 23.>
③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ㆍ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ㆍ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 4. 23.>

**제9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개정 2007. 10. 17., 2010. 7. 23., 2021. 3. 23., 2026. 4. 28.>
1.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이거나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학생,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학생
2.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도서벽지에 있는 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③ 교육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학교급식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가정에 식재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범위는 제8조제4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급식에 관한 경비에 한정한다.<신설 2021. 12. 28.>

## 제3장 학교급식 관리ㆍ운영

**제10조(식재료)** ①학교급식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그 밖에 식재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11조(영양관리)** ①학교급식은 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하고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식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개정 2021. 12. 28.>
②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식품구성기준은 필요한 경우 교육감이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1. 12. 28.>

**제12조(위생ㆍ안전관리)** ①학교급식은 식단작성, 식재료 구매ㆍ검수ㆍ보관ㆍ세척ㆍ조리, 운반, 배식, 급식기구 세척 및 소독 등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혼입되거나 식품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위생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②학교급식의 위생ㆍ안전관리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13조(식생활 지도 등)** 학교의 장은 올바른 식생활습관의 형성, 식량생산 및 소비에 관한 이해증진 및 전통 식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학생에게 식생활 관련 교육 및 지도를 하며, 보호자에게는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개정 2021. 12. 28.>

**제14조(영양상담)** 학교의 장은 식생활에서 기인하는 영양불균형을 시정하고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저체중 및 성장부진, 빈혈, 과체중 및 비만학생 등을 대상으로 영양상담과 필요한 지도를 실시한다.

**제15조(학교급식의 운영방식)** ①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ㆍ운영하되,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식재료의 선정 및 구매ㆍ검수에 관한 업무는 학교급식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 2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무교육기관에서 업무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위탁의 범위,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 그 밖에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2(식재료 구매계약에 관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 ① 학교의 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제공에 필요한 식재료 구매계약을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생 및 안전관리 의무나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식재료 구매계약의 입찰참가를 제한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 2. 19.]

**제16조(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①학교의 장과 그 학교의 학교급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교직원(이하 “학교급식관계교직원”이라 한다) 및 학교급식공급업자는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 4. 11., 2009. 6. 9., 2011. 7. 21., 2021. 11. 30.>

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6조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
3. 「축산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의 등급을 거짓으로 기재한 식재료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표준규격품의 표시,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표시 및 같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지리적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

②학교의 장과 그 소속 학교급식관계교직원 및 학교급식공급업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1. 3. 23.>

1.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영양관리기준 및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생ㆍ안전관리기준
2. 그 밖에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학교의 장과 그 소속 학교급식관계교직원 및 학교급식공급업자는 학교급식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급식 전에 급식 대상 학생에게 알리고, 급식 시에 표시하여야 한다.<신설 2013. 5. 22.>

④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의 종류 등 제3항에 따른 공지 및 표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13. 5. 22.>

**제17조(생산품의 직접사용 등)** 학교에서 작물재배ㆍ동물사육 그 밖에 각종 생산활동으로 얻은 생산품이나 그 생산품의 매각대금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을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 제4장 보칙

**제18조(학교급식 운영평가)** ①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와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학교급식의 운영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의 방법ㆍ기준 그 밖에 학교급식 운영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①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식품위생 또는 학교급식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학교급식 관련 시설에 출입하여 식품ㆍ시설ㆍ서류 또는 작업상황 등을 검사 또는 열람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식품을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ㆍ검사ㆍ열람 또는 수거를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 등의 결과 제16조제2항제1호ㆍ제2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해당학교의 장 또는 학교급식공급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5. 22.>

**제20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1. 3. 23.>

**제21조(행정처분 등의 요청)** ①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식품위생법」、「농수산물 품질관리법」、「축산법」、「축산물위생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허가 및 신고、지정 또는 인증을 받은 자가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검사 등의 결과 각 해당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행정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5. 25., 2011. 7. 21., 2013. 3. 23.>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교육부장관 또는 해당 교육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1. 3. 23.>

**제22조(징계)** 학교급식의 적정한 운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관할학교의 장 또는 그 소속 교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 그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1. 3. 23.>

1. 고의 또는 과실로 식중독 등 위생、안전상의 사고를 발생하게 한 자
2. 학교급식 관련 계약상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해지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비리가 적발된 자

## 제5장 벌칙

**제23조(벌칙)** ①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한 학교급식공급업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 3. 21.>

②제16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한 학교급식공급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8. 3. 21.>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위반한 학교급식공급업자
2.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입、검사、열람 또는 수거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2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25조(과태료)** ①제16조제2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학교급식공급업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 3. 23.>
②제16조제2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학교급식공급업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3. 5. 22., 2021. 3. 23.>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1. 3. 23.>
④ 삭제<2010. 3. 17.>
⑤ 삭제<2010. 3. 17.>
⑥ 삭제<2010. 3. 17.>

**부칙** <제7962호,2006. 7. 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제4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교육감이 인정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 (학교급식전담직원의 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학교급식시설에 배치된 학교급식전담직원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영양교사가 배치될 때까지 근무할 수 있다.

**제4조** (위탁급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학교급식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학교급식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학교급식법」 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354호,2007. 4. 11.>(축산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3호 중 “ 「축산법」 제32조 ”를 “ 「축산법」 제40조 ”로 한다.

⑧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8655호,2007. 10. 17.>(한부모가족지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 「모ㆍ부자복지법」 ”을 “ 「한부모가족지원법」 ”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제8852호,2008. 2. 29.>(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02> 까지 생략

<103> 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6조제2항제2호 중 “ 교육인적자원부령 ”을 각각 “ 교육과학기술부령 ”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ㆍ제3항, 제20조,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3호,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을 각각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으로 한다.

<10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914호,2008. 3. 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9432호,2009. 2. 6.>(식품위생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2& 까지 생략

2* 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식품위생법」 제36조의 규정"을 "「식품위생법」 제53조제1항"으로 한다.

2( 및3)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759호,2009. 6. 9.>(농산물품질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4호 중 "「농산물품질관리법」 제5조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의 규정"을 "「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제10070호,2010. 3. 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10호,2010. 5. 25.>(축산물위생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2& 까지 생략

2* 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제14조** 생략

**부칙** <제10386호,2010. 7. 2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3호 중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농산어촌에 있는 학교"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학교"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 <제10885호,2011. 7. 21.>(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6조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표준규격품의 표시,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표시 및 같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지리적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

제21조제1항 중 "「농산물품질관리법」ㆍ「축산법」ㆍ「축산물위생관리법」ㆍ「수산물품질관리법」"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ㆍ「축산법」ㆍ「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제20조** 생략

**부칙** <제11384호,2012. 3. 21.>(초ㆍ중등교육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 내지 제5호"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⑤ 생략

**부칙** <제11690호,2013. 3. 23.>(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1>까지 생략

<72> 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제3항, 제20조, 제21조제1항·제2항, 제22조제3호 및 제25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7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771호,2013. 5. 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338호,2019. 4. 2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47호,2019. 12. 10.>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876호,2020. 1.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양교사의 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유치원에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영양사를 배치한 경우 제4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영양교사를 배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7954호,2021. 3. 23.>(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8525호,2021. 11. 30.>(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제18639호,2021. 12. 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354호,2026. 2.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5조의2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제7조의 개정규정: 2027년 7월 1일

**제2조**(식재료 구매계약에 관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식재료 구매계약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거나 식재료 구매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581호,2026. 4. 2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658호,2026. 5. 19.>(유아교육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초ㆍ중등교육법」”을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으로 한다.**

# 학교급식법 시행령

[시행 2026. 8. 20.] [대통령령 제36595호, 2026. 8. 19., 일부개정]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044 - 203 - 6543

**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급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교급식의 운영원칙)** ①학교급식은 수업일의 점심시간[「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호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학교에 있어서는 저녁시간]에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영양관리기준에 맞는 주식과 부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학교급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결정해야 한다.<개정 2009. 2. 25., 2021. 1. 29., 2022. 3. 22., 2022. 6. 28.>

1. 학교급식 운영방식, 급식대상, 급식횟수, 급식시간 및 구체적 영양기준 등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 운영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3. 식재료의 원산지, 품질등급, 그 밖의 구체적인 품질기준 및 완제품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
4. 식재료 등의 조달방법 및 업체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5. 보호자(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에 학생을 부양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부담하는 경비 및 급식비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급식비 지원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7. 급식활동에 관한 보호자의 참여와 지원에 관한 사항
8. 학교우유급식 실시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학교급식 운영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조의2(학교급식 대상)** 법 제4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유치원"이란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의 사립유치원(이하 "사립유치원"이라 한다) 중 원아 수(「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라 매년 10월에 공시되는 연령별 원아 수 현원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50명 미만인 유치원을 말한다. <개정 2022. 6. 28.>

[본조신설 2021. 1. 29.]

**제3조(학교급식의 개시보고 등)** ①법 제4조에 따라 학교급식을 실시하려는 학교의 장은 법 제6조에 따른 급식시설·설비를 갖추고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학교급식의 개시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교내에 급식시설을 갖추지 못하여 외부에서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운반하여 급식을 실시하는 경우 등에는 급식시설ㆍ설비를 갖추지 않고 학교급식의 개시보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개시보고 후 급식운영방식의 변경, 급식시설 대수선 또는 증ㆍ개축, 급식시설의 운영중단 또는 폐지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4조(학교급식 운영계획의 수립 등)** ①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매 학년도 시작 전까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급식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22.>

②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 운영계획에는 급식계획, 영양ㆍ위생ㆍ식재료ㆍ작업ㆍ예산관리 및 식생활 지도 등 학교급식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학교의 장은 운영계획의 이행상황을 연 1회 이상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급식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이하 "학교급식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6. 28.>

②학교급식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시ㆍ도교육청"이라 한다)의 부교육감(부교육감이 2인일 때에는 제1부교육감을 말한다)이 된다.<개정 2022. 6. 28.>

③위원은 시ㆍ도교육청 학교급식업무 담당국장,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학교급식지원업무 담당국장 및 보건위생업무 담당국장, 학교의 장, 학부모, 학교급식분야 전문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한 사람이나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2. 6. 28.>

④학교급식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시ㆍ도교육청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2022. 6. 28.>

**제6조(학교급식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학교급식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학교급식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은 학교급식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학교급식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학교급식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그 밖에 학교급식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급식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시설ㆍ설비의 종류와 기준)** ①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학교급식시설에서 갖추어야할 시설ㆍ설비의 종류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7. 2.>

1. 조리장 : 교실과 떨어지거나 차단되어 학생의 학습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설로 하되, 식품의 운반과 배식이 편리한 곳에 두어야 하며, 능률적이고 안전한 조리기기, 냉장ㆍ냉동시설, 세척ㆍ소독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2. 식품보관실 : 환기ㆍ방습이 용이하며, 식품과 식재료를 위생적으로 보관하는데 적합한 위치에 두되, 방충 및 쥐막기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급식관리실 : 조리장과 인접한 위치에 두되, 컴퓨터 등 사무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4. 편의시설 : 조리장과 인접한 위치에 두되, 조리종사자의 수에 따라 필요한 옷장과 샤워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시설에서 갖추어야할 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8조(영양교사의 직무)**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영양교사는 학교의 장을 보좌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식단작성, 식재료의 선정 및 검수
2. 위생ㆍ안전ㆍ작업관리 및 검식
3. 식생활 지도, 정보 제공 및 영양상담
4.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ㆍ감독
5. 그 밖에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제8조의2(유치원에 두는 교사의 배치기준 등)**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유아교육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의 국립ㆍ공립유치원(이하 "국공립유치원"이라 한다)과 원아 수가 10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영양교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국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영양교사로 선발된 사람으로 한다)을 1명 이상 교사로 두어 제8조 각 호의 직무를 전담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 6. 28.>

② 제1항에 따라 영양교사를 두어야 하는 유치원 중 원아 수가 200명 미만인 유치원으로서 같은 교육지원청(「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구역에 있는 유치원의 경우에는 2개의 유치원마다 공동으로 제1항에 따른 교사를 1명씩 둘 수 있다.<개정 2022. 6. 28.>

③ 교육감은 법 제4조제1호 및 이 영 제2조의2에 따른 학교급식 대상인 사립유치원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양교사를 두어야 하는 유치원이 아닌 유치원에 대하여 시ㆍ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두는 영양교사로 하여금 급식관리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2. 6. 28.>

④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두는 영양교사는 제3항의 유치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신설 2022. 6. 28.>

1. 식단작성 및 영양관리

2. 위생ㆍ안전관리
3. 식생활 지도 및 영양 상담
4. 그 밖에 유치원에 대한 급식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교육감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배치할 때에는 관할구역에 있는 유치원의 수, 유치원 간의 이동 거리, 유치원별 원아 수 등을 고려해야 한다.<신설 2022. 6. 28.>

[본조신설 2021. 1. 29.]
[제목개정 2022. 6. 28.]

**제9조(급식운영비 부담)** ①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급식운영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식시설ㆍ설비의 유지비
2. 종사자의 인건비
3. 연료비, 소모품비 등의 경비

②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경비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경비의 일부를 보호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 3. 22.>

③학교의 설립ㆍ경영자는 제2항에 따른 보호자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급식비 지원기준 등)**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액 및 지원대상은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정한다.

②법 제9조제2항제2호와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학교”라 함은 각각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개정 2011. 1. 17.>

1. 법 제9조제2항제2호 :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준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로서 7할 이상에 해당하는 학생의 학부모가 도서벽지의 학부모와 유사한 생활여건에 처하여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2. 법 제9조제2항제3호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에 준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로서 7할 이상에 해당하는 학생의 학부모가 농어촌의 학부모와 유사한 생활여건에 처하여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③ 교육감은 법 제9조제3항 전단에 따라 학생의 가정에 식재료 등을 지원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신설 2022. 6. 28.>

1. 다음 각 목의 센터 또는 업체로 하여금 법 제10조에 따른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식재료를 가정으로 배송하게 하는 방법
   가.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
   나.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재료나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공급하는 업체
2. 보호자에게 식재료를 구매하거나 교환할 수 있는 상품권 또는 교환권을 지급하는 방법
3.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방법

**제11조(업무위탁의 범위 등)** ①법 제15조제1항에서 “학교급식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공간적 또는 재정적 사유 등으로 학교급식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학교의 이전 또는 통ㆍ폐합 등의 사유로 장기간 학교의 장이 직접 관리ㆍ운영함이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학교급식의 위탁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교육감이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경우

②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 8. 6.>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 과정 중 조리, 운반, 배식 등 일부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의 신고를 할 것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 과정 전부를 위탁하는 경우
   가. 학교 밖에서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운반하여 급식하는 경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신고를 할 것
   나. 학교급식시설을 운영위탁하는 경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의 신고를 할 것

③학교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신고에 필요한 면허소지자를 둔 학교급식공급업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개정 2009. 8. 6.>

**제12조(업무위탁 등의 계약방법)** 법 제15조에 따른 학교급식업무의 위탁에 관한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의 관계 규정을 적용 또는 준용한다.

**제12조의2(식재료 구매계약에 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적용기준 등)**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식재료 구매계약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또는 수의계약 대상 배제의 적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학교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제공에 필요한 식재료 구매계약의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참여하려는 자가 입찰참가가 제한되거나 수의계약에서 배제되는 대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 8. 19.]

**제13조(학교급식 운영평가 방법 및 기준)**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 운영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 운영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급식 위생ㆍ영양ㆍ경영 등 급식운영관리
2. 학생 식생활지도 및 영양상담
3. 학교급식에 대한 수요자의 만족도

4. 급식예산의 편성 및 운용
5. 그 밖에 평가기준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대상시설)**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관련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안에 설치된 학교급식시설
2. 학교급식에 식재료 또는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공급하는 업체의 제조ㆍ가공시설

**제15조(관계공무원의 교육)** 교육감은 법 제19조에 따른 공무원의 검사기술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급식연구학교 등의 지정ㆍ운영)** 교육감은 학교급식의 교육효과 증진과 발전을 위하여 학교급식 연구학교 또는 시범학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17조(권한의 위임)** 교육감은 법 제20조에 따라 법 제19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 법 제21조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요청 및 법 제2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권한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 6. 29.>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6. 8. 19.>
[전문개정 2011. 4. 5.]

**부칙** <제19837호,2007. 1. 19.>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학교급식의 개시보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의 장은 이 영 시행 후 6월 내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제3조에 따른 학교급식의 개시보고를 하여야 한다.
③(학교급식전담직원의 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학교급식시설에 배치된 학교급식전담직원의 공동배치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학교급식법 시행령」 및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740호,2008. 2. 29.>(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3> 까지 생략

<54>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 교육인적자원부령 ”을 “ 교육과학기술부령 ”으로,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을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을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 교육인적자원부령 ”을 “ 교육과학기술부령 ”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을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제2항 전단 및 제3항 단서 중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을 각각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 교육인적자원부령 ”을 “ 교육과학기술부령 ”으로 한다.

<55>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 <제21328호,2009. 2. 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676호,2009. 8. 6.>(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마목 ”을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 ”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1호 ”를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마목 ”을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 「식품위생법」 제69조 ”를 “ 「식품위생법」 제88조 ”로 한다.

⑮ 및1^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2233호,2010. 6. 29.>

이 영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625호,2011. 1. 17.>(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산어촌 ”을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 ”으로, “ 농산어촌의 학부모 ”를 “ 농어촌의 학부모 ”로 한다.

**부칙** <제22843호,2011. 4.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4423호,2013. 3. 2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3>까지 생략

<84>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및 제7조제2항 중 “ 교육과학기술부령 ”을 각각 “ 교육부령 ”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13조제1항 중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을 각각 “ 교육부장관 ”으로 한다.

<85>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 <제24876호,2013. 11. 22.>

이 영은 2013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950호,2019. 7. 2.>(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421호,2021. 1. 29.>

이 영은 2021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547호,2022. 3. 22.>(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심의 또는 자문을 ”을 “ 심의를 ”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 심의 또는 자문을 ”을 “ 심의를 ”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 심의 또는 자문을 ”을 “ 심의를 ”로 한다.

**부칙** <제32720호,2022. 6.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급식 대상 사립유치원의 범위 확대에 따른 조리장 설비기준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설립되거나 이 영 시행 당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15조제2항 본문에 따라 학교설립계획서를 제출한 사립유치원으로서 원아 수가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사립유치원이 「유아교육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급식 시설ㆍ설비기준에 맞게 조리실을 갖춘 경우에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조리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부칙** <제33434호,2023. 4. 25.>(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6595호,2026. 8. 19.>

이 영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학교급식법 시행령 [별표 1] <신설 2026. 8. 19.>

식재료 구매계약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또는 수의계약 대상 배제의 적용기준

(제12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학교급식의 제공에 필요한 식재료 구매계약의 입찰참가가 제한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되는 자는 제2호 개별기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또는 수의계약 대상 배제 사유로 「식품위생법」 제75조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7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거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를 말한다.

나. 제2호 개별기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또는 수의계약 대상 배제 기간은 「식품위생법」 제75조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7조에 따른 행정처분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의 다음 날부터 시작한다.

다. 제2호 개별기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또는 수의계약 대상 배제 사유가 둘 이상이면 그 중 입찰참가자격 제한 또는 수의계약 대상 배제 기간이 가장 긴 기간에 따른다.

2. 개별기준

| 입찰참가자격 제한 또는 수의계약 대상 배제 사유 | 입찰참가자격 제한 또는 수의계약 대상 배제 기간 |
|---|---|
| 가. 「식품위생법」 제4조를 위반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판매한 경우 | |
| 1) 썩거나 상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2개월 |
| 2)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2개월 |
| 3)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이나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 또는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6개월 |
|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2개월 |

| | |
|---|---|
| 5) 「식품위생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대상인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 가운데 안전성 심사를 받지 않았거나 안전성 심사에서 식용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 4개월 |
| 6)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것(식용 외의 용도로 수입된 것을 식용으로 사용한 것을 포함한다) | 4개월 |
| 7)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소분대상이 아닌 식품 및 식품첨가물을 소분·판매하는 것을 포함한다)한 것 | 4개월 |
| 나. 「식품위생법」 제5조를 위반하여 병든 동물 고기 등을 판매한 경우 | 6개월 |
| 다. 「식품위생법」 제6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식품첨가물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한 경우 | 6개월 |
| 라. 「식품위생법」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판매한 경우 | |
| 1) 식중독균 검출 기준을 위반한 것 | 4개월 |
| 2) 산가, 과산화물가, 대장균, 대장균군 또는 일반세균 기준을 위반한 것 | 2개월 |
| 3) 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온도 기준을 위반한 것 | 2개월 |
| 마. 「식품위생법」 제8조를 위반하여 기구 및 용기·포장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 2개월 |
| 바. 「식품위생법」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기구 및 용기·포장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 2개월 |
| 사.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설기준에 따른 냉장·냉동시설이 없거나 냉장·냉동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경우 | 4개월 |
| 아.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 중 다음을 위반한 경우 | |
| 1)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표시사항을 모두 표시하지 않은 축산물,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도축·집유·가공·포장 또는 보관된 축산물,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은 축산물,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영업 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도축·집유·가공·포장 또는 보관한 축산물 또는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 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포획한 야생동물을 판매하지 않을 것 | 2개월 |
| 2)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판매의 목적으 | 2개월 |

| | |
|---|---|
| 로 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하지 않을 것, 해당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진열·보관할 때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할 것, 「식품위생법」 제15조에 따른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등을 사용하지 않을 것 | |
| 3)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검사를 검사기간 내에 받을 것<br>(가) 일부항목 검사: 1년(수질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고, 모든 항목 검사를 하는 연도는 제외한다)마다 「수도법」 제29조제1항 및 제55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실시하는 수질검사 중 마을상수도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잔류염소검사는 제외한다)를 받을 것. 다만,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오염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 및 「수도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한다.<br>(나) 모든 항목 검사: 2년마다(수질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 및 「수도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받을 것 | 2개월 |
| 4)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부적합 판정한 물을 계속 사용하지 않을 것 | 6개월 |
| 자. 「식품위생법」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수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6개월 |
| 차.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7항을 위반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판매한 경우 | |
| 1) 식중독균·엔테로박터 사카자키균 검출 기준을 위반한 것 | 4개월<br>(식육포장처리업은 2개월) |
| 2) 산가, 과산화물가, 대장균, 대장균군, 일반세균 또는 세균발육 기준을 위반한 것 | 2개월 |
| 3) 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한 것 | 2개월 |

| | |
|---|---|
| 4) 식용으로 부적합한 식용란 | 4개월 |
| 5) 비소, 카드뮴, 납, 수은, 중금속, 메탄올, 다이옥신 또는 시안화물의 기준을 위반한 것 | 2개월 |
| 6) 바륨, 포름알데히드, 올소톨루엔, 설폰아미드, 방향족탄화수소, 폴리옥시에틸렌, 엠씨피디 또는 세레늄의 기준을 위반한 것 | 2개월 |
| 7) 방사능잠정허용 기준을 위반한 것 | 2개월 |
| 8) 농약잔류허용 기준을 위반한 것 | 2개월 |
| 9) 곰팡이 독소 기준을 초과한 것 | 2개월 |
| 10)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 기준을 위반한 것 | 2개월 |
| 11) 주석, 포스파타제, 암모니아성질소, 아질산이온 또는 형광증백제 시험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것 | 2개월 |
| 12) 식품첨가물의 사용 및 허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서 | |
| (가) 허용한 식품첨가물 외의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것 | 4개월 |
| (나) 식품첨가물의 사용 또는 허용량 기준을 10퍼센트 이상 초과한 것 | 2개월 |
| 13) 1), 2) 및 5)부터 12)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성분에 관한 규격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품목 제조 보고한 성분배합비율을 10퍼센트 이상 부족하거나 초과한 것 | 2개월 |
| 14) 기생충 또는 그 알, 금속, 유리가 혼입된 것 | 1개월 |
| 15) 칼날이나 동물(쥐 등 설치류 및 바퀴벌레)의 사체가 혼입된 것 | 2개월 |
| 16) 축산물 조사처리 기준을 위반한 것 | 2개월 |
| 17)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원료의 구비요건이나 가공기준을 위반한 것(머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으로서 | |
| (가) 축산물가공품의 원료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동물성·식물성 원료를 사용한 것[(라)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한다] | 2개월 |
| (나) 식용으로 부적합한 비가식 부분(통상적으로 식용으로 섭취하지 않는 원료의 특정 부위)을 원료로 사용하거나 제거하지 않아 원료로 혼입된 것 | 2개월 |
| (다) 식용으로 부적합한 식용란을 원료로 사용한 것 | 4개월 |
| (라) 사료용 또는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등 식용을 목적으로 수집·처리·가공 또는 관리되지 않은 것을 원료로 사용한 것 | 6개월 |
| (마) 소비기한이 경과된 식품(식품첨가물을 포함한다)을 축산물가공품의 원료로 사용한 것 | 2개월 |
| (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검사, 같은 법 | 2개월 |

| | |
|---|---|
| 제19조제1항에 따른 검사, 그 밖에 영업자가 하는 자체적인 검사의 결과 부적합한 축산물로 확인되거나 통보된 후에도 그 축산물을 원료로 사용한 것 | |
| 카.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7항을 위반하여 축산물의 한시적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정하지 않은 축산물을 제조·가공 등 영업에 사용한 경우 | 2개월 |
| 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 2개월 |
| 파.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검사항목의 전부 또는 50퍼센트 이상을 검사하지 않은 경우 | 2개월 |
| 하.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검사결과 부적합한 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위탁검사기관으로부터 부적합한 사실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축산물을 유통·판매한 경우 | 6개월 |
| 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8조를 위반하여 검사불합격품을 판매한 경우 | 2개월 |
| 너.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설기준에 따른 냉장·냉동시설이 없거나 냉장·냉동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경우 | 4개월 |
| 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 중 다음을 위반한 경우 | |
| 1)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축산물이 직접 닿지 않는 시설의 청소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축산물에 직접 사용하는 물이 나오는 배관 말단의 수도꼭지에서 채수(採水)하여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검사를 검사기간 내에 받을 것. 다만, 동일한 건물에서 같은 수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다른 업소에 대한 검사를 갈음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가 오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 및 「수도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br>(가) 일부항목 검사: 1년마다(수질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수도법」 제29조제1항 및 제55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수질검사 중 마을상수도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를 받을 것. 다만, 모든 항목 검사를 실시하는 연도의 경우는 제외한다.<br>(나) 모든 항목 검사: 3년마다(수질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 2개월 |

| | |
|---|---|
| 기산한다)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 및 「수도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받을 것 | |
| 2) 수돗물이 아닌 물(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축산물이 직접 닿지 않는 시설의 청소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축산물의 도살·처리·집유·가공 등에 직접 사용하는 물이 나오는 배관 말단의 수도꼭지에서 채수하여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1년마다(수질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 및 「수도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을 것 | 2개월 |
| 3) 수돗물이 아닌 물(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축산물이 직접 닿지 않는 시설의 청소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축산물의 도살·처리·집유·가공 등에 직접 사용하는 물이 나오는 배관 말단의 수도꼭지에서 채수하여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부적합 판정한 물을 계속 사용하지 않을 것 | 6개월 |
| 4) 냉동식육을 해동하여 냉장식육으로 보관하거나 판매하지 않을 것 | 2개월 |
| 5)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영업허가를 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전환 품목명, 중량, 보관방법, 소비기한(냉장제품 및 냉동 전환 제품의 소비기한을 말한다), 냉동으로 전환하는 시설의 소재지 및 냉동 전환을 실시하는 날짜와 냉동 전환이 완료되는 날짜를 신고(전자문서로 하는 신고를 포함한다)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br>(가) 신고일부터 10일 이내에 냉동 전환을 실시하고, 냉동 전환 완료일이 냉장제품의 소비기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br>(나) 냉동 전환 대상 축산물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표시기준을 준수하여 표시할 것<br>(다) 신고사항 변경 시 해당 변경 내역을 지체 없이 신고할 것<br>(라) 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하지 않을 것 | 2개월 |
| 6) 냉동식육 또는 냉동포장육을 해동하여 냉장포장육으로 유통·판매하지 않을 것 | 2개월 |
| 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회수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6개월 |
| 머.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판매한 경우 | |

| | |
|---|---|
| 1)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2개월<br>(식육포장처리업은 4개월) |
| 2)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이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것 또는 병원성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것[「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에 따라 정한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에서 검출되어서는 안 되는 물질 중 국제암연구소(IARC)가 발암물질로 정한 것과 같은 조에 따라 유독·유해물질로 정한 것을 포함한다] | 6개월 |
| 3)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혼입 또는 첨가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에 따라 정한 동물의약품의 잔류허용 기준에서 검출되어서는 안 되는 물질 중 국제암연구소가 발암물질로 정한 것 외의 것을 포함한다] | 2개월<br>(식육포장처리업은 4개월) |
| 4)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 신고하지 않고 수입한 것(식용 외의 용도로 수입된 것을 식용으로 사용한 것을 포함한다) | 4개월<br>(식육포장처리업은 6개월) |
| 5) 축산물검사에 합격한 표시가 없는 축산물에 해당되는 것 | 2개월 |
| 6)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자가 처리·가공 또는 제조한 것 | 4개월<br>(식육포장처리업은 6개월) |
| 7)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소비기한이 지난 축산물 | 2개월 |
| 8) 위해의 우려가 제기되는 축산물로서 위해평가가 끝나기까지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진열·판매가 금지된 것 | 2개월 |
| 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 6개월 |

비고

1. 입찰참가자격 제한 또는 수의계약 대상 배제 사유가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에 해당하는 제2호가목3), 같은 호 나목, 다목, 같은 호 아목4), 같은 호 차목17)(라), 같은 호 하목, 같은 호 더목3) 및 같은 호 머목2)의 경우에는 그 처분이 경감되어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입찰참가자격 제한 또는 수의계약 대상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반 횟수, 가중요건 등의 적용으로 가중처분을 받아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처분

을 받은 경우에는 제2호 개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학교급식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6. 8. 19.>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의 결과가 경미한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나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만원) | | |
|---|---|---|---|---|
| |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이상 위반 |
| 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법 제16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5조제1항 | 100 | 300 | 500 |
| 나. 학교급식공급업자가 법 제16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 법 제25조제2항 | 100 | 200 | 300 |

| | | | | |
|---|---|---|---|---|
|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 | |
| 다. 학교급식공급업자가 법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5조제2항 | 100 | 200 | 300 |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시행 2021. 6. 30.] [교육부령 제240호, 2021. 6. 30., 타법개정]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044 - 203 - 654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급식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교급식의 개시보고 등)** ①「학교급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개시보고는 급식 개시 전 10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학교급식 개시 보고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②영 제3조제2항에 따른 변경보고는 변경 후 20일 이내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학교의 장은 매학년도말 현재의 급식현황을 2월 28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급식실시현황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교육감은 이를 3월 2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4., 2013. 3. 23.>

④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보고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4., 2013. 3. 23.>

**제3조(급식시설의 세부기준)** ①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시설과 부대시설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기준 중 냉장·냉동시설, 조리 및 급식관련 설비·기계·기구에 대한 용량 등 구체적 기준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4조(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등)** ①「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학교급식의 질 제고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 식재료의 구매에 관한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제5조(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등)** ①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제1항의 기준에 따라 식단작성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 식문화(食文化)의 계승·발전을 고려할 것
2. 곡류 및 전분류, 채소류 및 과일류, 어육류 및 콩류, 우유 및 유제품 등 다양한 종류의 식품을 사용할 것

3. 염분ㆍ유지류ㆍ단순당류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과다하게 사용하지 않을 것
4. 가급적 자연식품과 계절식품을 사용할 것
5. 다양한 조리방법을 활용할 것

**제6조(학교급식의 위생ㆍ안전관리기준 등)** ①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위생ㆍ안전관리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의 준수 및 향상을 위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8. 3. 4., 2013. 3. 23.>

**제7조(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①법 제16조제2항제2호에서 "그 밖에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11. 22.>

1. 매 학기별 보호자부담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의 공개
2. 학교급식관련 서류의 비치 및 보관(보존연한은 3년)
   가. 급식인원, 식단, 영양 공급량 등이 기재된 학교급식일지
   나. 식재료 검수일지 및 거래명세표

②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학교의 장과 그 소속 학교급식관계교직원 및 학교급식공급업자는 학교급식에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라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이 되는 식품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알리고 표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식품으로부터 추출 등의 방법으로 얻은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식품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를 수 있다.<신설 2013. 11. 22., 2021. 1. 29.>

1. 공지방법: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가 표시된 월간 식단표를 가정통신문으로 안내하고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것
2. 표시방법: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가 표시된 주간 식단표를 식당 및 교실에 게시할 것

**제8조(출입ㆍ검사 등)** ①영 제14조제1호의 시설에 대한 출입ㆍ검사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되,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간 실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 29.>

1. 제4조제1항에 따른 식재료 품질관리기준, 제5조제1항에 따른 영양관리기준 및 제7조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여부의 확인ㆍ지도 : 연 1회 이상 실시하되, 제2호의 확인ㆍ지도시 함께 실시할 수 있음
2. 제6조제1항에 따른 위생ㆍ안전관리기준 이행여부의 확인ㆍ지도 : 연 2회 이상

②영 제14조제2호의 시설에 대한 출입ㆍ검사 등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행정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8. 3. 4., 2013. 3. 23., 2013. 11. 22.>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실시한 관계공무원은 해당 학교급식관련 시설에 비치된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입ㆍ검사 등 기록부에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④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9조(수거 및 검사의뢰 등)**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미생물 검사
2. 식재료의 원산지, 품질 및 안전성 검사

②제1항에 따라 검체를 수거한 관계공무원은 검체를 수거한 장소에서 봉함(封函)하고 관계공무원 및 피수거자의 날인이나 서명으로 봉인(封印)한 후 지체없이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보건환경연구원, 시ㆍ군ㆍ구의 보건소 등 관계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거나 자체적으로 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검사에 대하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행정기관에 수거 및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3. 11. 22.>

③제2항에 따라 검체를 수거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거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검사를 의뢰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거검사처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행정처분의 요청 등)** 법 제21조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확인서 또는 제9조제1항의 검사결과를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급식시설의 세부기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2. 31.]

**부칙** <제899호,2007. 1. 19.>

이 규칙은 200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2008. 3. 4.>(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4! 까지 생략

4@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ㆍ제4항, 6조제2항 및 제8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4#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 <제29호,2009. 2.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2013. 3. 2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ㆍ제4항, 제6조제2항 및 제8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55>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제14호,2013. 11. 22.>

이 규칙은 2013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호,2014. 12. 31.>(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단기 산업교육시설 운영 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호,2016. 4. 20.>(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457호,2020. 12. 1.>(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나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34조에 따라 인증받은 유기식품등 및 무농약농산물

⑫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26호,2021. 1.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치원의 조리장 시설ㆍ설비 기준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설립된 유치원과 이 규칙 시행 당시 설립 절차가 진행 중인 유치원의 경우에는 별표 1 제1호가목7) 및 9)에도 불구하고 조리장의 구조, 바닥의 재질 등을 고려하여 배수구 또는 신발소독 설비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부칙** <제240호,2021. 6. 30.>(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1. 1. 29.>

# 급식시설의 세부기준(제3조제1항관련)

1. 조리장

가. 시설 · 설비

1) 조리장은 침수될 우려가 없고, 먼지 등의 오염원으로부터 차단될 수 있는 등 주변 환경이 위생적이며 쾌적한 곳에 위치하여야 하고, 조리장의 소음 · 냄새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학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조리장은 작업과정에서 교차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전처리실(前處理室), 조리실 및 식기구세척실 등을 벽과 문으로 구획하여 일반작업구역과 청결작업구역으로 분리한다. 다만, 이러한 구획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에는 교차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다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조리장은 급식설비 · 기구의 배치와 작업자의 동선(動線) 등을 고려하여 작업과 청결유지에 필요한 적정한 면적이 확보되어야 한다.

4) 내부벽은 내구성, 내수성(耐水性)이 있는 표면이 매끈한 재질이어야 한다.

5) 바닥은 내구성, 내수성이 있는 재질로 하되, 미끄럽지 않아야 한다.

6) 천장은 내수성 및 내화성(耐火性)이 있고 청소가 용이한 재질로 한다.

7) 바닥에는 적당한 위치에 상당한 크기의 배수구 및 덮개를 설치하되 청소하기 쉽게 설치한다.

8) 출입구와 창문에는 해충 및 쥐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방충망 등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9) 조리장 출입구에는 신발소독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0) 조리장내의 증기, 불쾌한 냄새 등을 신속히 배출할 수 있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1) 조리장의 조명은 220룩스(lx)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다만, 검수구역은 540룩스(lx) 이상이 되도록 한다.

12) 조리장에는 필요한 위치에 손 씻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3) 조리장에는 온도 및 습도관리를 위하여 적정 용량의 급배기시설, 냉 · 난방시설 또는 공기조화시설(空氣調和施設) 등을 갖추도록 한다.

나. 설비 · 기구

1) 밥솥, 국솥, 가스테이블 등의 조리기기는 화재, 폭발 등의 위험성이 없는 제품을 선정하되, 재질의 안전성과 기기의 내구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능률적인 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냉장고(냉장실)와 냉동고는 식재료의 보관, 냉동 식재료의 해동(解凍), 가열조리된 식품의 냉각 등에 충분한 용량과 온도(냉장고 5℃이하, 냉동고 -18℃이하)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조리, 배식 등의 작업을 위생적으로 하기 위하여 식품 세척시설, 조리시설, 식기구 세척시설, 식기구 보관장, 덮개가 있는 폐기물 용기 등을 갖추어야 하며, 식품과 접촉하는 부분은 내수성 및 내부식성 재질로 씻기 쉽고 소독·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4) 식기세척기는 세척, 헹굼 기능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한다.

5) 식기구를 소독하기 위하여 전기살균소독기, 자외선소독기 또는 열탕소독시설을 갖추거나 충분히 세척·소독할 수 있는 세정대(洗淨臺)를 설치하여야 한다.

6) 급식기구 및 배식도구 등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세척할 수 있도록 온수공급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식품보관실 등

가. 식품보관실과 소모품보관실을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별도로 설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간구획 등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나. 바닥의 재질은 물청소가 쉽고 미끄럽지 않으며, 배수가 잘 되어야 한다.

다. 환기시설과 충분한 보관선반 등이 설치되어야 하며, 보관선반은 청소 및 통풍이 쉬운 구조이어야 한다.

3. 급식관리실, 편의시설

가. 급식관리실, 휴게실은 외부로부터 조리실을 통하지 않고 출입이 가능하여야 하며, 외부로 통하는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시설 구조상 외부로의 출입문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출입시에 조리실 오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휴게실은 외출복장으로 인하여 위생복장이 오염되지 않도록 외출복장과 위생복장을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옷장을 두어야 한다.

다. 샤워실을 설치하는 경우 외부로 통하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여 조리실 오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식당: 안전하고 위생적인 공간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급식인원 수를 고려한 크기의 식당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간이 부족한 경우 등 식당을 따로 갖추기 곤란한 학교는 교실배식에 필요한 운반기구와 위생적인 배식도구를 갖추어야 한다.

5.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령의 집단급식소 시설기준에 따른다.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1. 1. 29.>

#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제4조제1항관련)

1. 농산물

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라 원산지가 표시된 농산물을 사용한다. 다만, 원산지 표시 대상 식재료가 아닌 농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다음의 농산물에 해당하는 것 중 하나를 사용한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34조에 따라 인증받은 유기식품등 및 무농약농산물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에 따른 표준규격품 중 농산물표준규격이 "상" 등급 이상인 농산물. 다만,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아니한 농산물은 상품가치가 "상"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한다.

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산물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이력추적관리농산물

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은 농산물

다. 쌀은 수확연도부터 1년 이내의 것을 사용한다.

라. 부득이하게 전처리(前處理)농산물(수확 후 세척, 선별, 박피 및 절단 등의 가공을 통하여 즉시 조리에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처리된 식재료)을 사용할 경우에는 나목과 다목에 해당되는 품목으로 다음 사항이 표시된 것으로 한다.

1) 제품명(내용물의 명칭 또는 품목)

2) 업소명(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명)

3) 제조연월일(전처리작업일 및 포장일)

4) 전처리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5) 내용량

6) 보관 및 취급방법

마. 수입농산물은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상당하는 품질을 갖춘 것을 사용한다.

2. 축산물

가. 공통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식용란(食用卵)은 공통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도축장에서 처리된 식육을 사용한다.

2)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받은 축산물가공장 또는 식육포장처리장에서 처리된 축산물(수입축산물을 국내에서 가공 또는 포장처리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을 사용한다.

나. 개별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닭고기, 계란 및 오리고기의 경우에는 등급

제도 전면 시행 전까지는 권장사항으로 한다.

1) 쇠고기: 「축산법」 제35조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 3등급 이상인 한우 및 육우를 사용한다.

2) 돼지고기: 「축산법」 제35조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 2등급 이상을 사용한다.

3) 닭고기: 「축산법」 제35조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 1등급 이상을 사용한다.

4) 계란: 「축산법」 제35조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 2등급 이상을 사용한다.

5) 오리고기: 「축산법」 제35조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 1등급 이상을 사용한다.

6) 수입축산물: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며, 1)부터 5)까지에 상당하는 품질을 갖춘 것을 사용한다.

3. 수산물

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른 원산지가 표시된 수산물을 사용한다.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에 따른 품질인증품,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은 수산물 또는 상품가치가 "상"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한다.

다. 전처리수산물

1) 전처리수산물(세척, 선별, 절단 등의 가공을 통해 즉시 조리에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처리된 식재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할 경우 나목에 해당되는 품목으로서 다음 시설 또는 영업소에서 가공 처리(수입수산물을 국내에서 가공 처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된 것으로 한다.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4조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한 생산·가공시설

나) 「식품위생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하는 업소로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냉동수산식품 중 어류·연체류 식품제조·가공업소

2) 전처리수산물을 사용할 경우 다음 사항이 표시된 것으로 한다.

가) 제품명(내용물의 명칭 또는 품목)

나) 업소명(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명)

다) 제조연월일(전처리작업일 및 포장일)

라) 전처리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마) 내용량

바) 보관 및 취급방법

라. 수입수산물은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나목 및 다목에 상당하는 품질을 갖춘 것을 사용한다.

4. 가공식품 및 기타

가. 다음에 해당하는 것 중 하나를 사용한다.

1)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전통식품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산업표준 적합 인증을 받은 농축수산물 가공품

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은 식품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에 따른 품질인증품

5) 「식품위생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하는 업소에서 생산된 가공식품

6)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라 영업 등록된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된 가공식품

7)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업소에서 가공 또는 처리된 축산물가공품

8) 「축산물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표시기준에 따라 제조업소, 유통기한 등이 표시된 축산물 가공품

나. 김치 완제품은 「식품위생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하는 업소에서 생산된 제품을 사용한다.

다. 수입 가공식품은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가목에 상당하는 품질을 갖춘 것을 사용한다.

라. 위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은 식품위생법령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5. 예외

가. 수해, 가뭄, 천재지변 등으로 식품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는 품질관리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나. 이 표에서 정하지 않는 식재료, 도서(島嶼)·벽지(僻地) 및 소규모학교 또는 지역 여건상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적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품질관리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1. 1. 29.>

##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제5조제1항관련)

| 성 별 | 구 분 | | 에너지 (㎉) | 단백질 (g) | 비타민A (㎍ RAE) | | 티아민 (비타민$B_1$) (㎎) | | 리보플라빈 (비타민$B_2$) (㎎) | | 비타민C (㎎) | | 칼슘 (㎎) | | 철 (㎎) | |
|---|---|---|---|---|---|---|---|---|---|---|---|---|---|---|---|---|
| | | | | | 평균 필요량 | 권장 섭취량 | 평균 필요량 | 권장 섭취량 | 평균 필요량 | 권장 섭취량 | 평균 필요량 | 권장 섭취량 | 평균 필요량 | 권장 섭취량 | 평균 필요량 | 권장 섭취량 |
| 유 치 원 생 | | | 400 | 7.1 | 66 | 85 | 0.12 | 0.15 | 0.15 | 0.17 | 10.0 | 12.8 | 142 | 170 | 1.5 | 2.0 |
| 남 | 초등학생 | 1~3학년 | 570 | 11.7 | 104 | 150 | 0.17 | 0.24 | 0.24 | 0.30 | 13.4 | 16.7 | 200 | 234 | 2.4 | 3.0 |
| | | 4~6학년 | 670 | 16.7 | 137 | 200 | 0.24 | 0.30 | 0.30 | 0.37 | 18.4 | 23.4 | 217 | 267 | 2.7 | 3.7 |
| | 중학생 | | 840 | 20.0 | 177 | 250 | 0.30 | 0.37 | 0.40 | 0.50 | 23.4 | 30.0 | 267 | 334 | 3.7 | 4.7 |
| | 고등학생 | | 900 | 21.7 | 207 | 284 | 0.37 | 0.44 | 0.47 | 0.57 | 26.7 | 33.4 | 250 | 300 | 3.7 | 4.7 |
| 여 | 초등학생 | 1~3학년 | 500 | 11.7 | 97 | 134 | 0.20 | 0.24 | 0.20 | 0.27 | 13.4 | 16.7 | 200 | 234 | 2.4 | 3.0 |
| | | 4~6학년 | 600 | 15.0 | 130 | 184 | 0.27 | 0.30 | 0.27 | 0.34 | 18.4 | 23.4 | 217 | 267 | 2.7 | 3.4 |
| | 중학생 | | 670 | 18.4 | 160 | 217 | 0.30 | 0.37 | 0.34 | 0.40 | 23.4 | 30.0 | 250 | 300 | 4.0 | 5.4 |
| | 고등학생 | | 670 | 18.4 | 150 | 217 | 0.30 | 0.37 | 0.34 | 0.40 | 26.7 | 33.4 | 234 | 267 | 3.7 | 4.7 |

비고: 유치원생의 경우 제공되는 간식을 제외하고 산출된 수치임.

1.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은 한끼의 기준량을 제시한 것으로 학생 집단의 성장 및 건강상태, 활동정도, 지역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2. 영양관리기준은 계절별로 연속 5일씩 1인당 평균영양공급량을 평가하되, 준수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에너지는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에너지의 ±10%로 하되, 탄수화물 : 단백질 : 지방의 에너지 비율이 각각 55~65% : 7~20% : 15~30%가 되도록 한다.
   나. 단백질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의 단백질량 이상으로 공급하되, 총공급에너지 중 단백질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지 않도록 한다.
   다. 비타민A, 티아민, 리보플라빈, 비타민C, 칼슘, 철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의 권장섭취량 이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평균필요량 이상이어야 한다.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6. 6. 25.>

##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제5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제2호의 개별기준은 한끼의 영양관리 기준량을 제시한 것으로 개별기준의 준수범위는 다음과 같고, 계절별로 연속 5일씩 1인당 평균 영양공급량을 평가한다.

1) 에너지는 영양관리기준 에너지의 ±10%로 하되, 탄수화물 : 단백질 : 지방의 에너지 비율이 각각 50~65% : 10~20% : 15~30%가 되도록 한다.

2) 단백질은 영양관리기준의 단백질 이상으로 공급하되, 총 공급에너지 중 단백질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지 않도록 한다.

3) 비타민A, 티아민, 리보플라빈, 비타민C, 칼슘, 철은 영양관리기준의 권장섭취량 이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평균 필요량 이상이어야 한다.

나. 제2호의 개별기준은 학생 집단의 성장 및 건강상태, 활동정도, 지역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 성별 | 구분 | | 에너지 (㎉) | 단백질 (g) | 비타민A (㎍ RAE) | | 티아민 (비타민$B_1$) (㎎) | | 리보플라빈 (비타민$B_2$) (㎎) | | 비타민C (㎎) | | 칼슘 (㎎) | | 철 (㎎) | |
|---|---|---|---|---|---|---|---|---|---|---|---|---|---|---|---|---|
| | | | | | 평균 필요량 | 권장 섭취량 | 평균 필요량 | 권장 섭취량 | 평균 필요량 | 권장 섭취량 | 평균 필요량 | 권장 섭취량 | 평균 필요량 | 권장 섭취량 | 평균 필요량 | 권장 섭취량 |
| 유치원생 | | | 400 | 7.1 | 66 | 85 | 0.12 | 0.15 | 0.15 | 0.17 | 10.0 | 12.8 | 12.8 | 15.6 | 1.2 | 1.7 |
| 남 | 초등학생 | 1~3학년 | 570 | 11.7 | 104 | 150 | 0.17 | 0.24 | 0.24 | 0.30 | 13.4 | 16.7 | 20.0 | 23.4 | 1.7 | 2.4 |
| | | 4~6학년 | 670 | 16.7 | 137 | 200 | 0.24 | 0.30 | 0.30 | 0.37 | 18.4 | 23.4 | 23.4 | 26.7 | 2.0 | 2.7 |
| | 중학생 | | 840 | 20.0 | 180 | 250 | 0.30 | 0.37 | 0.40 | 0.50 | 23.4 | 30.0 | 26.7 | 31.7 | 2.7 | 3.7 |
| | 고등학생 | | 900 | 21.7 | 207 | 284 | 0.37 | 0.44 | 0.47 | 0.57 | 26.7 | 33.4 | 23.4 | 26.7 | 2.7 | 3.7 |
| 여 | 초등학생 | 1~3학년 | 500 | 11.7 | 97 | 134 | 0.20 | 0.24 | 0.20 | 0.27 | 13.4 | 16.7 | 20.0 | 23.4 | 1.7 | 2.4 |
| | | 4~6학년 | 600 | 15.0 | 130 | 184 | 0.27 | 0.30 | 0.27 | 0.34 | 18.4 | 23.4 | 23.4 | 26.7 | 2.0 | 2.7 |

| | | | | | | | | | | | | | | | |
|---|---|---|---|---|---|---|---|---|---|---|---|---|---|---|---|
| | 중학생 | 670 | 18.4 | 160 | 21.7 | 0.30 | 0.37 | 0.34 | 0.40 | 23.4 | 30.0 | 23.4 | 28.4 | 2.7 | 4.4 |
| | 고등학생 | 670 | 18.4 | 150 | 21.7 | 0.30 | 0.37 | 0.34 | 0.40 | 26.7 | 33.4 | 18.4 | 23.4 | 2.4 | 4.0 |

비고: 유치원생의 경우 제공되는 간식을 제외하고 산출된 수치임.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1. 1. 29.>

# 학교급식의 위생 · 안전관리기준(제6조제1항관련)

1. 시설관리
   가. 급식시설 · 설비, 기구 등에 대한 청소 및 소독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나. 냉장 · 냉동고의 온도, 식기세척기의 최종 헹굼수 온도 또는 식기소독보관고의 온도를 기록 · 관리하여야 한다.
   다. 급식용수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소독 또는 살균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개인위생
   가. 식품취급 및 조리작업자는 6개월에 1회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폐결핵검사는 연1회 실시할 수 있다.
   나. 손을 잘 씻어 손에 의한 오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손 소독은 필요시 실시할 수 있다.
3. 식재료 관리
   가. 잠재적으로 위험한 식품 여부를 고려하여 식단을 계획하고,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식재료 검수시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품질 및 신선도와 수량, 위생상태 등을 확인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4. 작업위생
   가. 칼과 도마, 고무장갑 등 조리기구 및 용기는 원료나 조리과정에서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도별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수시로 세척 · 소독하여야 한다.
   나. 식품 취급 등의 작업은 바닥으로부터 60㎝ 이상의 높이에서 실시하여 식품의 오염이 방지되어야 한다.
   다. 조리가 완료된 식품과 세척 · 소독된 배식기구 · 용기등은 교차오염의 우려가 있는 기구 · 용기 또는 원재료 등과 접촉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라. 해동은 냉장해동(10℃ 이하), 전자레인지 해동 또는 흐르는 물(21℃ 이하)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마. 해동된 식품은 즉시 사용하여야 한다.
   바. 날로 먹는 채소류, 과일류는 충분히 세척 · 소독하여야 한다.
   사. 가열조리 식품은 중심부가 75℃(패류는 85℃) 이상에서 1분 이상으로 가

열되고 있는지 온도계로 확인하고, 그 온도를 기록 · 유지하여야 한다.

아. 조리가 완료된 식품은 온도와 시간관리를 통하여 미생물 증식이나 독소 생성을 억제하여야 한다.

5. 배식 및 검식

가. 조리된 음식은 안전한 급식을 위하여 운반 및 배식기구 등을 청결히 관리하여야 하며, 배식 중에 운반 및 배식기구 등으로 인하여 오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급식실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 배식하는 경우 배식용 운반기구 및 운송차량 등을 청결히 관리하여 배식시까지 식품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조리된 식품에 대하여 배식하기 직전에 음식의 맛, 온도, 조화(영양적인 균형, 재료의 균형), 이물(異物), 불쾌한 냄새, 조리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검식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급식시설에서 조리한 식품은 온도관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리 후 2시간 이내에 배식을 마쳐야 한다.

마. 조리된 식품은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해야 한다.

6. 세척 및 소독 등

가. 식기구는 세척 · 소독 후 배식 전까지 위생적으로 보관 · 관리하여야 한다.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급식시설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필증을 비치하여야 한다.

7. 안전관리

가. 관계규정에 따른 정기안전검사{가스 · 소방 · 전기안전, 보일러 · 압력용기 · 덤웨이터(dumbwaiter)검사 등}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조리기계 · 기구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작동방법을 게시하고 교육을 실시하며, 관리책임자를 지정, 그 표시를 부착하고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다. 조리장 바닥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미끄럽지 않게 관리하여야 한다.

8. 기타 :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령의 위생 · 안전 관련 기준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6. 30.>

# 학교급식 개시 보고서

| | | | | | | | | |
|---|---|---|---|---|---|---|---|---|
| 일반현황 | 학교명 | | 설립별 | | 학교장 | | 주소 | |
| | 최초 급식개시일 | | 유형별 | | 학급수 | | 전화 | |
| | 개각학생수 | | 교직원수 | | 기타(명) | | 총계(명) | |
| 운영방식 | 직영 | □단독 | □공동조리교<br>□공동비조리교(조리교명 : ) | | □공동관리교<br>□공동관리대상교(관리교명 : ) | | | |
| | 일부위탁 | □단독 | □공동조리교<br>□공동비조리교(조리교명 : ) | | □공동관리교<br>□공동관리대상교(관리교명 : ) | | | |
| | 전부위탁 | □단독 | □공동조리교<br>□공동비조리교(조리교명 : ) | | □외부운반(도시락급식) | | | |
| 집단급식소 설치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일 | | 영양사명(면허번호) | | 조리사명(면허번호)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학교급식 위탁현황 | 위탁업체명 | 대표자명 | 영업신고번호 | 업종(식품군) | 계약기간 | | | |
| | | | 제 호 | | ( 년) | | | |
| 배식장소 | □교실 | □식당 | □교실·식당 병행 | □기타 | | | | |
| 배식시간 | □단일시간급식(동시급식) | | □시차제급식 | | | | | |
| 우유급식대상 | □전체급식 | | □희망급식 | □미실시 | | | | |
| 급수현황 | 구분 | 상수도(광역·지방) | 마을상수도 | 상수도,지하수(혼용) | 지하수 | | | |
| | 먹는 물 | □ | □ | □ | □ | | | |
| | 조리용수 | □ | □ | □ | □ | | | |
| 운영현황 급식인원(명) | 구분 | 학생 | 교직원 | 기타(유치원등) | 계 | | | |
| | 본교인원수 | | | | | | | |
| 급식단가(원) | 식품비 | | | | | | | |
| | 운영비등 | | | | | | | |
| | 합계 | | | | | | | |
| 근무인력(명) | □영양교사 □영양사 | | 조리사(면허소지자) | | 조리원 | | | 총계 |
| | 정규직 | 학교회계직 | 기타 | 정규직 | 학교회계직 | 기타 | 정규직 | 학교회계직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급식시설현황 설치현황 | 구분 | 건축 | | 설치연도 | 설치시 재원부담 | | 금액(원원) | 설치후 변경내역 |
| | 조리장 | □신축 □증축 □개축 □증·개축 | | | □교육 □지자체 □기타 | | | |
| | 식당 | □없음<br>□신축 □증축 □개축 □증·개축 | | | □교육 □지자체 □기타 | | | |
| 구조 | 구분 | 철근콘크리트조 | 철골조 | 철근철골콘크리트조 | 조적조 | 조립식 | | |
| | 조리장 | □ | □ | □ | □ | □ | | |
| | 식당 | □ | □ | □ | □ | □ | | |
| 급식운반 | □멀레이터 □화물용승강기 | □일반용승강기 | | 설치연도 | | 용량 | kg | 대수 |
| 조리장 면적(㎡) | 총면적(㎡) | 전처리실 | | 조리실(장) | | 식기구세척실 | | 식품보관실 |
| | | | | | | | | |
| | 소모품보관실 | 급식관리실 | | 전의시설 | | 보일러실 | | 기타 |
| | | | | | | | | |
| 연료 | □LNG □LPG □경유 □전기 □혼용( . ) □기타 | | | | | | | |
| 공조시설 | □설치 □미설치 | | | 냉·난방시설 | | □설치 □미설치 | | |
| 기계기구(용량) | 냉장·냉동고 | | 오븐기 | 냉방기 | | 세척기 | | 보온·보냉고 |
| | (냉장 L)(냉동 L) | | 대(단) | 대 | | 행고 | | L |
| 식 당 | 면적(㎡) | | 식탁수/좌석수 | / 석 | | 손씻는시설 | | □유 □무 |

| | | | | |
|---|---|---|---|---|
| 기타 | 하수처리 | □오수처리시설 | □관로연결 | □기타 |
| | 유수분리 | □그리스트랩 설치 | □그리스트랩 미설치 | |
| | 폐기물 | □위탁처리 | □자가처리(감량처리장치보유) | □위탁·자가처리병행 □기타 |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학교장(교육장) (인)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2호서식]

# 급 식 실 시 현 황(1)

| 기관명 | |
|---|---|

1. 급식학교 및 학생수 현황

(단위 : 교, 명)

| 구분 | | 전체 | | 급식실시 | | | | | | | | 직영급식 | | | | | | | | | | 일부위탁 | | | | | | | | | | 전부위탁 | | | | | | | |
|---|---|---|---|---|---|---|---|---|---|---|---|---|---|---|---|---|---|---|---|---|---|---|---|---|---|---|---|---|---|---|---|---|---|---|---|---|---|---|---|
| | | | | 총계 | | 소계 | | | | | | 단독조리 | | 공동조리 | | | | 공동관리 | | | | 단독조리 | | 공동조리 | | | | 공동관리 | | | | 전부위탁 | | | | | | | |
| | | | | | | 직영급식 | | 일부위탁 | | 전부위탁 | | | | 조리교 | | 비조리교 | | 관리교 | | 대상교 | | | | 조리교 | | 비조리교 | | 관리교 | | 대상교 | | 운영위탁 | | | | | | 외부운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독조리 | | 공동조리 | | | | 외부조리(도시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리교 | | 비조리교 | | | |
| | | 학교수 | 학생수 | 학교수 | 학생수 | 학교수 | 학생수 | 학교수 | 학생수 | 학교수 | 학생수 | 학교수 | 학생수 | 학교수 | 학생수 | 학교수 | 학생수 | 학교수 | 학생수 | 학교수 | 학생수 | 학교수 | 학생수 | 학교수 | 학생수 | 학교수 | 학생수 | 학교수 | 학생수 | 학교수 | 학생수 | 학교수 | 학생수 | 학교수 | 학생수 | 학교수 | 학생수 | 학교수 | 학생수 |
| 학교급별 | 고등학교 | 도시읍지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농어촌지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도시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중학교 | 도시읍지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농어촌지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도시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초등학교 | 도시읍지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농어촌지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도시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유형별 | | 도시읍지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농어촌지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도시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 | 특수학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병설유치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210㎜(보존용지(2종) 70g/㎡)

# 급 식 실 시 현 황(2)

| 기관명 | |
|---|---|

2. 학교급식예산 연간집행액(단위 : 천원)

| 구 분 | |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특수학교 | 총계 |
|---|---|---|---|---|---|---|---|
| 시설 설비비 | | 교육비특별회계 | | | | | |
| | | 자치단체지원금 | | | | | |
| | | 기타 | | | | | |
| | | 계 | | | | | |
| 식품비 | | 교육비특별회계 | | | | | |
| | | 자치단체지원금 | | | | | |
| | | 보호자부담금 | | | | | |
| | | 기타 | | | | | |
| | | 계 | | | | | |
| 운영비 | 시설·설비의 유지비 | 교육비특별회계 | | | | | |
| | | 기타 | | | | | |
| | | 계 | | | | | |
| | 인건비 | 교육비특별회계 | | | | | |
| | | 보호자부담금 | | | | | |
| | | 기타 | | | | | |
| | | 계 | | | | | |
| | 연료비, 소모품비 등 | 교육비특별회계 | | | | | |
| | | 보호자부담금 | | | | | |
| | | 기타 | | | | | |
| | | 계 | | | | | |
| 총 계 | | 교육비특별회계 | | | | | |
| | | 자치단체지원금 | | | | | |
| | | 보호자부담금 | | | | | |
| | | 기타 | | | | | |
| | | 계 | | | | | |
| 학교급식품 생산액 | | | | | | | |

3. 학교급식인력 및 학부모참여인원(단위 : 명)

| 구 분 | | 학교급별 | | | | 총계 | 설립·운영별 | | | | | 총계 |
|---|---|---|---|---|---|---|---|---|---|---|---|---|
| | | | | | | | 직영 | | | 위탁 | | |
| |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특수학교 | | 국립 | 공립 | 사립 | 일부 | 전부 | |
| 영양교사 | 정규직 | | | | | | | | | | | |
| 영양사 | 정규직 | | | | | | | | | | | |
| | 학교회계직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조리사 | 정규직 | | | | | | | | | | | |
| | 학교회계직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조리원 | 정규직 | | | | | | | | | | | |
| | 학교회계직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총계 | 정규직 | | | | | | | | | | | |
| | 학교회계직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학부모참여인원(연인원) | | | | | | | | | | | | |
| 4. 기타사항 | | | | | | | | | | | | |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 6. 30.>

# 출 입 ·검 사 등 기 록 부

| 번호 | 일시 | 점검목적 | 주요지도·지시내용 | 점검자 | | | | 참관 또는 확인자 | | |
|---|---|---|---|---|---|---|---|---|---|---|
| | | | | 소속 | 직위<br>(직급) | 성명 | 서명<br>(날인) | 직위<br>(직급) | 성명 | 서명<br>(날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210㎜(보존용지(2종) 70g/㎡)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 4. 20.>

(앞쪽)

**학교급식감시원증**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월 인

학교급식감시원증 번호

성 명

**발급기관명**

52㎜×74㎜(백상지 150g/㎡)

(색상은 연두색)

(뒤쪽)

**학교급식감시원증**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위의 사람은 「학교급식법」 제19조에 따른 학교급식 감시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1. 이 증은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 할 수 없음
2. 학교급식관련 시설에 출입하여 식품·시설·서류 등을 검사 및 열람 후 수거 할 수 있음.
3. 이 증을 습득한 경우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발급기관 장** 직인

※ 글자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 글자의 구분 | 글자의 크기 | 글자의 종류 |
|---|---|---|
| 학교급식감시원증 | 16포인트 | 고딕체 |
| 발급기관 | 16포인트 | 고딕체 |
| 발급기관 | 14포인트 | 명조체 |
| 소속, 직위, 성명, 생년월일 | 10포인트 | 명조체 |
| 위의 사람은 · · · · · · · · · · · · · · · · · · · 증명함 | 10포인트 | 명조체 |
| 이 증은 · · · · · · · · · · · · · · · · · · · · · 주십시오. | 8포인트 | 명조체 |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 4. 20.>

제 호

# 수 거 증

| | | | | |
|---|---|---|---|---|
| 수거품명 및 수량 | | | | |
| 수거사유 | | | | |
| 수거일시 | 년 월 일 시 분 | | | |
| 수거품정보 | | | | |
| 수거품보관 및 운반상태 | [ ] 실온 [ ] 냉동 [ ] 냉장 [ ] 기타 | | | |
| 수거장소 | 학교명 (업체명) | | 전화번호 | |
| | 소재지 | | | |
| 수거품의 공급업체 | 업체명 | | 전화번호 | |
| | 대표자명 (생년월일) | | 업종 | |
| | 영업신고번호 (허가번호) | | 소재지 | |

「학교급식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거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수거자: 소속) 감시원증번호)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피수거자: 소속) 직위 및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6호서식]

# 수거검사처리대장

| 번호 | 수거관련 사항 | | | | | 검사관련 사항 | | | | | | | 결재 | | |
|---|---|---|---|---|---|---|---|---|---|---|---|---|---|---|---|
| | 수거증 번호 | 수거품 및 수량 | 수거장소 | 수거일시 | 공급업체명 (대표자) | 검사 의뢰일 | 검사결과 회보일 | 검사기관 | 검사구분 | 판정결과 | 처리결과 | 비고 | 담당 | 주무 | 과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210㎜(보존용지(2종) 70g/㎡)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6. 4. 20.>

제 호

# 확 인 서

| | | | |
|---|---|---|---|
| 학교명<br>(업소명) | | 학교장<br>(대표자) | |
| 집단급식소번호<br>(영업신고번호) | | 학교 사업자등록번호<br>(업체 사업자등록번호) | |
| 급식인원(1회) | | 1일제공 급식횟수 | |
| 업종 | | 전화번호 | |
| 소재지 | | | |
| 위반내용 | | | |

상기 본인은 20 년 월 일 시경 「학교급식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9조에 따른 학교급식감시원의 출입·검사·수거 결과에 대하여 다음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성명) 생년월일)
직위)
주소)
감시원: 소속) 감시원증번호)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감시원증번호) 성명)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 2022. 12. 8.] [법률 제18547호, 2021. 12. 7., 타법개정]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044 - 203 - 6995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교육의 기본시설인 학교도서관의 설립ㆍ운영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도서관의 진흥을 통하여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2. 17., 2016. 12. 20., 2021. 12. 7.>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도서관”이란 학교에서 학생과 교원의 학습ㆍ교수활동을 지원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이나 도서실을 말한다.
3. “학교도서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이하 “시ㆍ도교육청”이라 한다)에서 학교도서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4. “사서교사”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사서교사 자격증을 지니고 학교도서관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실기교사”란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을 이수하여 「초ㆍ중등교육법」제21조에 따른 실기교사 자격증을 지니고 학교도서관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사서”란 「도서관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학교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도서관을 진흥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학교도서관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설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에 학교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

**제6조(학교도서관의 업무)** ① 학교도서관은 「도서관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 12. 7.>

② 학교도서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지역사회를 위하여 개방할 수 있다.

③ 학교도서관은 학교와 지역사회의 실정에 맞게 학부모ㆍ노인ㆍ장애인, 그 밖의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 ① 교육부장관은 「도서관법」 제14조에 따른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따라 학교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17.>

1. 학교도서관의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
2. 학교도서관의 설치와 시설ㆍ자료의 확충과 정비
3. 학교도서관의 진흥에 관한 연구
4. 사서교사ㆍ실기교사ㆍ사서의 확보ㆍ양성ㆍ교육
5. 그 밖에 학교도서관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은 제8조에 따른 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 ① 학교도서관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이하 "진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진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대한 평가
2. 학교도서관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3. 학교도서관과 관련하여 교육감, 제10조에 따른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전문단체와 전문가가 요청하는 사항
4. 그 밖에 학교도서관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진흥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상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진흥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학교도서관의 업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⑥ 그 밖에 진흥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시ㆍ도의 시행계획과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의 학교도서관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발전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둔다.
1. 학교도서관운영계획
2. 자료의 수집·제작·개발 등과 관련된 예산의 책정
3. 자료의 폐기·제적
4. 학교도서관의 행사와 활동
5. 그 밖의 학교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의 업무를 학교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학교운영위원회가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학교도서관 지원비 등)**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학교도서관을 진흥하는데 필요한 경비(이하 "지원비"라 한다)를 해당 연도 예산에 편성하여 시·도교육청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② 교육감은 지원비에 대응하여 해당 연도 예산에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경비(이하 "대응비"라 한다)를 편성·지원할 수 있다.
③ 지원비와 대응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학교도서관의 설립과 그 시설·자료의 확충
2.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3. 학교도서관의 정보화
4. 학교도서관의 전문인력 확보
5. 그 밖에 학교도서관 지원에 필요한 경비
④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비와 대응비의 운용계획·실적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12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는 학교도서관 진흥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실기교사나 사서(이하 "사서교사 등"이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2. 2. 17., 2018. 2. 21.>
③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의 구성과 제2항에 따른 사서교사 등의 정원·배치기준·업무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사서교사 등의 정원·배치기준·업무범위 등은 학교 규모와 사서교사 등의 자격 유형을 고려하여 정한다.<개정 2018. 2. 21.>

**제13조(시설·자료 등)** ① 학교도서관은 해당 학교의 특성과 사용자 요구에 적합한 시설·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② 학교도서관은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이용 가치가 없거나 파손된 자료를 폐기하거나 제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학교도서관 시설ㆍ자료의 기준과 제2항에 따른 폐기ㆍ제적의 기준과 범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학교도서관협력망 구축 등)**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도서관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시ㆍ도교육청,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에 따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공공도서관 등 각종 도서관, 그 밖의 관련 기관과 서로 연계하는 학교도서관협력망(이하 "협력망"이라 한다)을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교육감은 학교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상호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교육청에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③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은 학교도서관 정보의 유통과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서비스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여야 한다.
④ 협력망의 구축ㆍ운영,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독서교육 등)** ① 교육부장관ㆍ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독서교육과 정보이용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독서교육과 정보이용교육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16조(업무협조)** ①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7조(금전 등의 기부)** 법인ㆍ단체와 개인은 학교도서관의 설치ㆍ시설ㆍ자료와 운영에 관한 지원을 위하여 학교도서관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제18조(지도ㆍ감독)** 학교도서관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해당 학교의 관할청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6. 12. 20.>

**부칙** <제8677호,2007. 12. 1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52호,2008. 2. 29.>(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03> 까지 생략

<104>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제8조제1항·제4항, 제11조제4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10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310호,2012. 2. 17.>(도서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  "사서직원"이란"을 "  "사서"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4호 중 "사서직원의"를 "사서의"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사서직원(이하 "사서교사 등"이라 한다)을"을 "사서(이하 "사서교사 등"이라 한다)를"로 한다.

**부칙** <제11690호,2013. 3. 23.>(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2>까지 생략

<73>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제8조제1항·제4항, 제11조제4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7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4401호,2016. 12. 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68호,2018. 2. 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47호,2021. 12. 7.>(도서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 제6조제2항 " 을 " 제43조제2항 " 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 제38조 " 를 " 제40조제2항 " 으로 한다.

**제10조** 생략

#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3. 3. 28.] [대통령령 제33343호, 2023. 3. 28., 일부개정]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044 - 203 - 6995

**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도서관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 등의 수립절차)**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도서관진흥법」(이하 " 법 " 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이하 " 기본계획 " 이라 한다)을 기본계획 시작 연도의 전년도 11월 말까지 수립하고 그 내용을 교육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매년 1월 말까지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2. 그 해 사업의 추진방향
3. 주요 사업별 추진방향 및 세부운영계획
4. 그 밖에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 운영)** ① 법 제8조에 따른 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이하 " 진흥위원회 " 라 한다)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진흥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진흥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진흥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조의2(진흥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교육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진흥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6. 5. 10.]

**제4조(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해당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해당 교육청 소속 학교의 장
2. 해당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3. 학교도서관의 운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학부모
4. 도서관 및 독서 관련 전문가

③ 교육감은 위원이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16. 5. 10.>

④ 발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6. 5. 10.>

1. 학교도서관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학교도서관 자료의 폐기ㆍ제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교도서관과 관련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학교의 장, 법 제10조에 따른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전문단체 및 전문가가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등으로서 학교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⑤ 위원장은 발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16. 5. 10.>

⑥ 발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6. 5. 10.>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발전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6. 5. 10.>

**제5조(학교도서관 지원비 등 계획ㆍ실적보고)** 교육감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지원비 및 대응비의 운용실적을 운용계획에 대비하여 다음 해 3월 말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6조(전담부서의 구성)**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와 시ㆍ도교육청에 두는 전담부서에는 학교도서관 진흥 업무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7조(사서교사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학교도서관에 두는 사서교사ㆍ실기교사나 사서(이하 "사서교사 등"이라 한다)의 정원은 학교당 1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립 및 공립의 학교도서관에 두는 사서교사 및 실기교사의 총정원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별표 및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12. 8. 13., 2018. 8. 21.>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 등을 두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배치한다.<개정 2013. 3. 23., 2018. 8. 21.>

1. 학교의 재학생수
2. 학교도서관의 규모ㆍ자료수 등 운영현황
3. 학교도서관의 이용자수

③ 사서교사 등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학교도서관 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
2. 자료의 수집, 정리, 이용 및 예산편성 등 학교도서관 운영에 관한 업무
3. 독서지도 및 학교도서관 이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과 안내
4. 학교도서관을 이용하는 교사의 교수ㆍ학습지원

**제8조(시설ㆍ자료의 기준 등)**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학교도서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자료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2023. 3. 28.>
2.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교육감은 학생수 등을 고려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교수ㆍ학습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면적을 조정할 수 있다.
3. 각각의 학교는 1,000종 이상의 자료를 갖추어야 하고, 연간 100종 이상의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교도서관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자료의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감이 정한다.

③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폐기ㆍ제적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가치의 상실된 자료로서 보존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
2. 훼손 또는 파손ㆍ오손된 자료로서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료
3. 불가항력적인 재해ㆍ사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하여 유실된 자료

**제9조(독서교육 등)** 교육부장관ㆍ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학교의 독서교육과 정보이용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학생들의 학교도서관 이용상황
2. 학생들의 독서수준
3. 그 밖에 학생들의 독서교육과 정보이용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학교도서관의 시설ㆍ자료의 기준 등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12. 30.]

**부칙** <제20824호,2008. 6.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 등의 수립 기한에 관한 특례) 제2조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에 시행하는 기본계획은 2008년 7월 31일까지, 시행계획은 2008년 8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부칙** <제24035호,2012. 8. 13.>(도서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 사서직원 "을 " 사서 "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24423호,2013. 3. 2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4>까지 생략

<85>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5조,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을 각각 " 교육부장관 "으로 한다.

제6조 중 " 교육과학기술부 "를 " 교육부 "로 한다.

<86>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 <제25050호,2013. 12. 30.>(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7129호,2016. 5. 10.>(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099호,2018. 8. 21.>

이 영은 2018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343호,2023. 3.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성평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02 - 2100 - 6312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 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1. 3. 23.>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1. 3. 23.>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1. 3. 23.>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 사회적 지원방안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2년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2025. 10. 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중 학업중단 현황에 관한 조사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실시한다.<개정 2025. 10. 1.>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제7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10. 1.>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법령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원위원회의 조직·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상담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진로상담, 가족상담 등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제9조(교육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교육감을 포함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6.>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로의 재취학 또는 고등학교로의 재입학
2.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의 대안학교로의 진학
3. 「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2에 따라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의 준비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 10. 1.>

**제10조(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프로그램
2.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3. 직업소개 및 관리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직업체험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과 제2항의 직업교육 훈련 내용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제11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생활지원, 문화공간지원, 의료지원(제11조의2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후 확진을 위한 검사에 사용된 의료비의 지원을 포함한다), 정서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6., 2024. 3. 26.>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교육, 법률교육, 문화교육 등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에 따른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24. 3. 26., 2025. 10. 1.>

**제11조의2(건강진단)**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증진 및 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24. 3. 26.]

**제12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ㆍ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지원센터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지정기준, 지정기간, 지정절차, 제3항의 전문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2(지원센터의 평가)**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지원센터의 운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원센터의 감독,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21. 3. 23.]

**제13조(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제12조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업무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와의 연계)** 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연계 및 협력하여야 한다.

**제15조(지원센터에의 연계)** ①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각급 학교의 장(이하 이 조에서 "학교장"이라 한다)은 소속 학교의 학생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를 연계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에 포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단체장"이라 한다)은 지원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청소년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를 연계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센터에 연계하는 경우 학교장 및 단체장은 해당 청소년(제6호의 경우 해당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에게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한다)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ㆍ이용 기간 및 파기 방법(이하 "개인정보동의고지사항"이라 한다)을 고지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질병 또는 출국을 사유로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7. 3. 21., 2021. 3. 23., 2024. 3. 26.>

1. 학교 밖 청소년의 성명
2. 학교 밖 청소년의 생년월일
3. 학교 밖 청소년의 성별
4. 학교 밖 청소년의 주소
5. 학교 밖 청소년의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
6. 학교 밖 청소년의 법정대리인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

④ 삭제<2024. 3. 26.>

⑤ 지원센터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청소년 또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에게 개인정보동의고지사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 권한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청소년 또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이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신설 2021. 3. 23., 2024. 3. 26.>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안내 및 지원센터의 연계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1. 3. 23., 2025. 10. 1.>

**제16조(비밀유지 의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관계 기관의 협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거나 조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제18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성평등가족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제19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지원센터가 아니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0조(벌칙)** 제16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과태료)** ① 제19조를 위반하여 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25. 10. 1.>

**부칙** <제12700호,2014. 5.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4706호,2017. 3. 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54호,2018. 1. 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74호,2021. 3. 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22호,2024. 3. 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065호,2025. 10. 1.>(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생략>、、、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30>까지 생략

<43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의2제1항, 제17조 전단, 제18조제1항、제2항 및 제21조제2항 중 “ 여성가족부장관 ”을 각각 “ 성평등가족부장관 ”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1조제4항, 제11조의2제3항, 제12조의2제2항 및 제15조제6항 중 “ 여성가족부령 ”을 각각 “ 성평등가족부령 ”으로 한다.

<432>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 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1. 3. 23.>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1. 3. 23.>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1. 3. 23.>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 사회적 지원방안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2년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2025. 10. 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중 학업중단 현황에 관한 조사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실시한다.<개정 2025. 10. 1.>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제7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10. 1.>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법령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원위원회의 조직·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상담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진로상담, 가족상담 등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제9조(교육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교육감을 포함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6.>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로의 재취학 또는 고등학교로의 재입학
2.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의 대안학교로의 진학
3. 「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2에 따라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의 준비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 10. 1.>

**제10조(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프로그램
2.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3. 직업소개 및 관리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직업체험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과 제2항의 직업교육 훈련 내용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제11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생활지원, 문화공간지원, 의료지원(제11조의2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후 확진을 위한 검사에 사용된 의료비의 지원을 포함한다), 정서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6., 2024. 3. 26.>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교육, 법률교육, 문화교육 등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에 따른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24. 3. 26., 2025. 10. 1.>

**제11조의2(건강진단)**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증진 및 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24. 3. 26.]

**제12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ㆍ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지원센터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지정기준, 지정기간, 지정절차, 제3항의 전문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2(지원센터의 평가)**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지원센터의 운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원센터의 감독,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21. 3. 23.]

**제13조(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제12조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업무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와의 연계)** 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연계 및 협력하여야 한다.

**제15조(지원센터에의 연계)** ①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각급 학교의 장(이하 이 조에서 "학교장"이라 한다)은 소속 학교의 학생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를 연계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에 포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단체장"이라 한다)은 지원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청소년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를 연계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센터에 연계하는 경우 학교장 및 단체장은 해당 청소년(제6호의 경우 해당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에게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한다)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ㆍ이용 기간 및 파기 방법(이하 "개인정보동의고지사항"이라 한다)을 고지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질병 또는 출국을 사유로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7. 3. 21., 2021. 3. 23., 2024. 3. 26.>

1. 학교 밖 청소년의 성명
2. 학교 밖 청소년의 생년월일
3. 학교 밖 청소년의 성별
4. 학교 밖 청소년의 주소
5. 학교 밖 청소년의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
6. 학교 밖 청소년의 법정대리인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

④ 삭제<2024. 3. 26.>

⑤ 지원센터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청소년 또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에게 개인정보동의고지사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 권한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청소년 또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이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신설 2021. 3. 23., 2024. 3. 26.>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안내 및 지원센터의 연계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1. 3. 23., 2025. 10. 1.>

**제16조(비밀유지 의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관계 기관의 협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거나 조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제18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성평등가족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제19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지원센터가 아니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0조(벌칙)** 제16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과태료)** ① 제19조를 위반하여 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25. 10. 1.>

**부칙** <제12700호,2014. 5.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4706호,2017. 3. 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54호,2018. 1. 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74호,2021. 3. 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22호,2024. 3. 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065호,2025. 10. 1.>(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생략>、、、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30>까지 생략

<43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의2제1항, 제17조 전단, 제18조제1항、제2항 및 제21조제2항 중 “ 여성가족부장관 ”을 각각 “ 성평등가족부장관 ”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1조제4항, 제11조의2제3항, 제12조의2제2항 및 제15조제6항 중 “ 여성가족부령 ”을 각각 “ 성평등가족부령 ”으로 한다.

<432>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7. 21.] [대통령령 제36521호, 2026. 7. 21., 일부개정]

성평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02 - 2100 - 6312

**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지침을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포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제3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성평등가족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5. 10. 1.>

②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25. 10. 1., 2025. 12. 30.>

1. 교육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기획예산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7명 이내의 민간위원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원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평등가족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명한다.<개정 2025. 10. 1.>

**제4조(지원위원회의 운영)** ①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자립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설치·지정 기준 및 지원센터에 두어야 하는 전문인력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원센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1. 법인·단체의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서
2. 사업계획서
3. 시설 명세서
4. 전문인력 보유 현황

③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④ 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개정 2025. 11. 18.>

⑤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센터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성평등가족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제7조(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성평등가족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제8조(관계 기관의 협조사항)** 법 제17조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 10. 1.>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법 제8조에 따른 상담지원, 법 제9조에 따른 교육지원, 법 제10조에 따른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법 제11조에 따른 자립지원과 관련된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센터와 연계하는 것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제9조(권한의 위임)**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 10. 1.>

**제9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성평등가족부장관(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건강진단업무를 위탁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건강진단업무를 위탁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은 법 제11조의

2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제9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에 관한 사무
2.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무

[전문개정 2025. 11. 18.]

**제9조의3(규제의 재검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

1. 제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ㆍ지정 기준 및 지원센터에 두어야 하는 전문인력 기준: 2022년 1월 1일
2. 제7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2022년 1월 1일

[본조신설 2022. 3. 8.]

**제1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부칙** <제26287호,2015. 5.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센터 지정기간에 관한 특례) 제6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2015년 5월 29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7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27960호,2017. 3. 27.>(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2528호,2022. 3. 8.>(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806호,2025. 10. 1.>(성평등가족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2@ 까지 생략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7조제2항, 제8조제3호, 제9조, 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1 비고 제1호 중 “ 여성가족부장관 ”을 각각 “ 성평등가족부장관 ”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 여성가족부차관 ”을 “ 성평등가족부차관 ”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 여성가족부 ”를 “ 성평등가족부 ”로 한다.

제3조제5항 중 “ 여성가족부 소속 ”을 “ 성평등가족부 소속 ”으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여성가족부령 ”을 “ 성평등가족부령 ”으로 한다.

제6조제5항 및 제7조제2항 중 “ 여성가족부 또는 ”을 각각 “ 성평등가족부 또는 ”으로 한다.

2$ 생략

**부칙** <제35851호,2025. 11.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센터 지정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지원센터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5948호,2025. 12. 30.>(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6>까지 생략

<117>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 기획재정부, 교육부 ”를 “ 교육부 ”로 “ 성평등가족부 ”를 “ 성평등가족부, 기획예산처 ”로 한다.

<118>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 <제36222호,2026. 3. 24.>(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ㆍ시설 등 기준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521호,2026. 7. 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6. 3. 24.>

## 지원센터의 설치·지정 기준 및 전문인력 기준(제6조제1항 관련)

1. 입지기준

지원센터는 일조·채광·환기 등이 원활하고 급수 및 교통수단 등이 갖추어져 있어 종사자와 이용자의 건강 유지 및 재해 방지가 가능하고, 종사자와 이용자가 일상생활을 하기에 적합한 위치에 있어야 한다.

2. 규모

지원센터는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상의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3. 구조 및 설비: 지원센터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가. 사무를 위한 적절한 설비를 갖춘 1개 이상의 사무실

나. 원활한 상담과 개인비밀 보호를 위해 분리된 공간 또는 방음 장치를 갖춘 1개 이상의 상담실

다. 1개 이상의 상담대기실

라. 1개 이상의 휴게실. 다만, 다목에 따른 상담대기실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마. 1개 이상의 교육실

4. 전문인력 기준

| 구분 | 자격기준 등 |
|---|---|
| 가. 지원센터의 장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을 두어야 한다. 다만, 지원센터의 장은 청소년 지원을 위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과 겸임할 수 있다.<br>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여 청소년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보유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br>2)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하여 청소년 관련 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보유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br>3)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br>4)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
| 나. 관리 업무 수행 직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근(常勤) 직원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br>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여 청소년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보유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br>2)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하여 청소년 관련 분야 |

| | |
|---|---|
| | 의 전문학사학위를 보유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br>3)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br>4)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이 6년 이상인 사람 |
| 다. 청소년 대상 업무 수행 직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근 직원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br>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여 청소년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보유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사람<br>2)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하여 청소년 관련 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보유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br>3)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br>4)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

비고

1. "청소년 관련 분야"란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청소년(지도)학 및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분야를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육성·활동·복지·보호 등에 관한 업무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제9항에 따라 설치된 전문기관에서 상근으로 수행하는 상담업무
   다.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수행하는 청소년 정책 관련 행정업무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6. 7. 21.>

##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7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를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일 때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 취소일 때 업무정지 6개월로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 기준 | | | | |
|---|---|---|---|---|---|---|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위반 | 5차 위반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13조제1항제1호 | 지정 취소 | | | | |
| 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 법 제13조제1항제2호 | 개선 명령 | 업무 정지 15일 | 업무 정지 3개월 | 업무 정지 6개월 | 지정 취소 |
| 다.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 법 제13조제1항제3호 | 개선 명령 | 업무 정지 15일 | 업무 정지 3개월 | 업무 정지 6개월 | 지정 취소 |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 | |
|---|---|---|---|---|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법 제19조를 위반하여 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 법 제21조제1항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7. 21.] [대통령령 제36521호, 2026. 7. 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지침을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포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제3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성평등가족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5. 10. 1.>

②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25. 10. 1., 2025. 12. 30.>

1. 교육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기획예산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7명 이내의 민간위원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원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평등가족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명한다.<개정 2025. 10. 1.>

**제4조(지원위원회의 운영)** ①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자립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설치·지정 기준 및 지원센터에 두어야 하는 전문인력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원센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1. 법인·단체의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서
2. 사업계획서
3. 시설 명세서
4. 전문인력 보유 현황

③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④ 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개정 2025. 11. 18.>

⑤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센터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성평등가족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제7조(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성평등가족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제8조(관계 기관의 협조사항)** 법 제17조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 10. 1.>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법 제8조에 따른 상담지원, 법 제9조에 따른 교육지원, 법 제10조에 따른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법 제11조에 따른 자립지원과 관련된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센터와 연계하는 것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제9조(권한의 위임)**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 10. 1.>

**제9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성평등가족부장관(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건강진단업무를 위탁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건강진단업무를 위탁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은 법 제11조의

2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제9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에 관한 사무
2.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무

[전문개정 2025. 11. 18.]

**제9조의3(규제의 재검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

1. 제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ㆍ지정 기준 및 지원센터에 두어야 하는 전문인력 기준: 2022년 1월 1일
2. 제7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2022년 1월 1일

[본조신설 2022. 3. 8.]

**제1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부칙** <제26287호,2015. 5.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센터 지정기간에 관한 특례) 제6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2015년 5월 29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7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27960호,2017. 3. 27.>(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2528호,2022. 3. 8.>(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806호,2025. 10. 1.>(성평등가족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2@ 까지 생략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7조제2항, 제8조제3호, 제9조, 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1 비고 제1호 중 “ 여성가족부장관 ”을 각각 “ 성평등가족부장관 ”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 여성가족부차관 ”을 “ 성평등가족부차관 ”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 여성가족부 ”를 “ 성평등가족부 ”로 한다.

제3조제5항 중 “ 여성가족부 소속 ”을 “ 성평등가족부 소속 ”으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여성가족부령 ”을 “ 성평등가족부령 ”으로 한다.

제6조제5항 및 제7조제2항 중 “ 여성가족부 또는 ”을 각각 “ 성평등가족부 또는 ”으로 한다.

2$ 생략

**부칙** <제35851호,2025. 11.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센터 지정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지원센터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5948호,2025. 12. 30.>(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6>까지 생략

<117>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 기획재정부, 교육부 ”를 “ 교육부 ”로 “ 성평등가족부 ”를 “ 성평등가족부, 기획예산처 ”로 한다.

<118>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 <제36222호,2026. 3. 24.>(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ㆍ시설 등 기준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521호,2026. 7. 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6. 3. 24.>

## 지원센터의 설치·지정 기준 및 전문인력 기준(제6조제1항 관련)

1. 입지기준

지원센터는 일조·채광·환기 등이 원활하고 급수 및 교통수단 등이 갖추어져 있어 종사자와 이용자의 건강 유지 및 재해 방지가 가능하고, 종사자와 이용자가 일상생활을 하기에 적합한 위치에 있어야 한다.

2. 규모

지원센터는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상의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3. 구조 및 설비: 지원센터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가. 사무를 위한 적절한 설비를 갖춘 1개 이상의 사무실

나. 원활한 상담과 개인비밀 보호를 위해 분리된 공간 또는 방음 장치를 갖춘 1개 이상의 상담실

다. 1개 이상의 상담대기실

라. 1개 이상의 휴게실. 다만, 다목에 따른 상담대기실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마. 1개 이상의 교육실

4. 전문인력 기준

| 구분 | 자격기준 등 |
|---|---|
| 가. 지원센터의 장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을 두어야 한다. 다만, 지원센터의 장은 청소년 지원을 위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과 겸임할 수 있다.<br>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여 청소년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보유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br>2)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하여 청소년 관련 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보유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br>3)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br>4)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
| 나. 관리 업무 수행 직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근(常勤) 직원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br>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여 청소년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보유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br>2)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하여 청소년 관련 분야 |

| | |
|---|---|
| | 의 전문학사학위를 보유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br>3)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br>4)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이 6년 이상인 사람 |
| 다. 청소년 대상 업무 수행 직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근 직원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br>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여 청소년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보유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사람<br>2)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하여 청소년 관련 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보유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br>3)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br>4)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

비고

1. "청소년 관련 분야"란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청소년(지도)학 및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분야를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육성·활동·복지·보호 등에 관한 업무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제9항에 따라 설치된 전문기관에서 상근으로 수행하는 상담업무
   다.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수행하는 청소년 정책 관련 행정업무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6. 7. 21.>

##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7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를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일 때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 취소일 때 업무정지 6개월로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 기준 | | | | |
|---|---|---|---|---|---|---|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위반 | 5차 위반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13조제1항제1호 | 지정 취소 | | | | |
| 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 법 제13조제1항제2호 | 개선 명령 | 업무 정지 15일 | 업무 정지 3개월 | 업무 정지 6개월 | 지정 취소 |
| 다.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 법 제13조제1항제3호 | 개선 명령 | 업무 정지 15일 | 업무 정지 3개월 | 업무 정지 6개월 | 지정 취소 |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 | |
|---|---|---|---|---|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법 제19조를 위반하여 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 법 제21조제1항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 3. 17.] [성평등가족부령 제7호, 2026. 3. 17., 일부개정]

성평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02 - 2100 - 63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 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10. 1.>

1.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중단 시기와 그 원인
2. 학교 밖 청소년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상태
3. 학교 밖 청소년의 가족관계 및 친구관계
4. 학교 밖 청소년의 경제상태
5.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활용 현황
7.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표본조사의 방식으로 실시하되, 서면조사, 면접조사, 전화조사 또는 온라인 조사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4. 9. 27.>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청소년 정책 관련 연구기관ㆍ법인ㆍ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4. 9. 27., 2025. 10. 1.>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결과를 성평등가족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신설 2024. 9. 27., 2025. 10. 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신설 2024. 9. 27., 2025. 10. 1.>

[제목개정 2024. 9. 27.]

**제3조(상담의 방법과 내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상담을 학교 밖 청소년과 그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법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은 대면상담, 전화상담 및 온라인상담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담은 청소년의 심리, 학교 밖 청소년의 가족관계와 친구관계 및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등에 관하여 실시한다.

**제4조(교육지원의 방법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교육감을 포함한다)는 법 제9조에 따른 교육지원을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개정 2024. 9. 27.>

1.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교육기관에 관한 정보
2. 법 제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로의 재취학, 재입학 및 진학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3. 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 준비 등에 관한 정보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의 진학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이 법 제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재취학, 재입학 또는 진학을 한 경우 학교생활의 원활한 적응을 위하여 해당 청소년에 대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해당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의 직업체험 및 훈련의 지원은 직업체험ㆍ취업지원 관련 프로그램의 종류와 그 참여 절차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 훈련의 과정은 훈련대상자의 특성, 취업ㆍ직무수행의 용이성 및 훈련 수요 등을 고려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직업교육 훈련을 받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득수준, 가족상황 등 훈련을 받는 학교 밖 청소년의 여건 및 훈련 수강 횟수 등을 고려하여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전문개정 2017. 10. 27.]

**제5조의2(자립지원)**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교육의 지원은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의 내용은 경제, 법률, 문화 등과 관련된 기초적인 소양(素養)을 습득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 9. 27.]

**제5조의3(건강진단)**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은 학교 밖 청소년 중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기간 및 실시장소 등 구체적인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건강진단을 신청하려는 학교 밖 청소년,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학교 밖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이하 "청소년지도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교

밖 청소년 건강진단 신청서에 학교 밖 청소년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청소년지도자가 신청하는 때에는 해당 청소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5. 10. 1.>

④ 성평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청소년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해당 청소년 또는 그 보호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5. 10. 1.>

⑤ 성평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건강진단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5. 10. 1.>

⑥ 성평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강진단을 실시한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청소년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5. 10. 1.>

⑦ 성평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질병의 치료 등이 필요한 해당 청소년에 대하여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강진단의 검사항목, 방법, 그 결과의 통보 절차 등 건강진단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24. 9. 27.]

**제6조(지원센터의 지정절차 등)** 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 9. 27.>

②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 10. 27., 2024. 9. 27.>

1. 법인이 아닌 기관 또는 단체가 신청한 경우: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2. 법인이 신청한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27.>

**제6조의2(지원센터의 평가)** ① 법 제12조의2에 따른 지원센터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환경의 적정성
2. 운영 및 인력관리의 적정성

3. 사업내용의 적정성
4. 그 밖에 운영개선에 필요한 사항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평가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21. 9. 17.]

**제7조(지원센터와의 연계)** ① 지원센터는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안내 및 지원센터의 연계를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각급 학교의 장(이하 이 조에서 “학교장”이라 한다)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에 포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단체장”이라 한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삭제<2024. 9. 27.>

**부칙** <제71호,2015. 5.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법 제17조에 따른 학업중단 청소년(이하 "학업중단 청소년"이라 한다)”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이하 "학교 밖 청소년"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학업중단 청소년”을 “학교 밖 청소년”으로 한다.

**부칙** <제113호,2017. 10.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호,2021. 9. 17.>
이 규칙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호,2024. 9.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강진단 실시에 관한 경과조치) 2024년 12월 31일까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6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제5조의3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실시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호,2025. 10. 1.>(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2) 까지 생략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5조의3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6조의2제2항 및 별지 제1호서식 중 " 여성가족부장관 "을 각각 " 성평등가족부장관 "으로 한다.

제2조제4항 중 " 여성가족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를 " 성평등가족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 여성가족부 "를 각각 " 성평등가족부 "로 한다.

2@ 생략

**부칙** <제7호,2026. 3.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3. 17.>

# 학교 밖 청소년 건강진단 신청서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30일 |
|---|---|---|

| | | |
|---|---|---|
| 건강진단 대상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 전자우편 주소 | |
| 보호자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학교 밖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전화번호: ) | |
| 청소년 지도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전화번호: ) |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3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학교 밖 청소년 건강진단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평등가족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학교 밖 청소년임을 증명하는 서류<br>2. 건강진단 대상자의 동의서(보호자 또는 청소년지도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건강진단 대상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 성평등가족부, 시·도/시·군·구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9. 27.>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정신청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30일 |
|---|---|---|

| | | |
|---|---|---|
| 신청인 | 성명(대표자명) | 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
| | 기관·단체·법인명 | |
| | 소재지<br>(전화번호: ) | |
| 시설·인력현황 | 명칭 | |
| | 소재지<br>(전화번호: ) | |
| | 종사자 : 총 명<br>(청소년지도사 명, 청소년상담사 명, 기타 명) |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지정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시장·군수·구청장

| | |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법인·단체의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서 1부<br>2. 사업계획서 1부<br>3. 시설 명세서 1부<br>4. 전문인력 보유현황 자료 1부 | 수수료<br>없 음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이 아닌 기관 또는 단체가 신청한 경우: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br>2. 법인이 신청한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처 리 절 차

| 신청서 작성 | → | 접 수 | → | 심사 | → | 지 정 | → | 지정서 발급 |
|---|---|---|---|---|---|---|---|---|

신청인 처리기관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시·군·구

210mm×297mm[백상지 80g/㎡]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9. 27.>

제　　호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정서

1. 기관·단체·법인명:

2.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3.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

4. 주소:　　(전화번호:　　)

5. 지원센터 소재지:

위 기관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 297㎜[백상지 150g/㎡]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 3. 17.] [성평등가족부령 제7호, 2026. 3. 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 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10. 1.>

1.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중단 시기와 그 원인
2. 학교 밖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
3. 학교 밖 청소년의 가족관계 및 친구관계
4. 학교 밖 청소년의 경제상태
5.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활용 현황
7.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표본조사의 방식으로 실시하되, 서면조사, 면접조사, 전화조사 또는 온라인 조사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4. 9. 27.>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청소년 정책 관련 연구기관·법인·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4. 9. 27., 2025. 10. 1.>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결과를 성평등가족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신설 2024. 9. 27., 2025. 10. 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신설 2024. 9. 27., 2025. 10. 1.>

[제목개정 2024. 9. 27.]

**제3조(상담의 방법과 내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상담을 학교 밖 청소년과 그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법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은 대면상담, 전화상담 및 온라인상담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담은 청소년의 심리, 학교 밖 청소년의 가족관계와 친구관계 및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등에 관하여 실시한다.

**제4조(교육지원의 방법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교육감을 포함한다)는 법 제9조에 따른 교육지원을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개정 2024. 9. 27.>

1.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교육기관에 관한 정보
2. 법 제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로의 재취학, 재입학 및 진학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3. 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 준비 등에 관한 정보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의 진학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이 법 제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재취학, 재입학 또는 진학을 한 경우 학교생활의 원활한 적응을 위하여 해당 청소년에 대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해당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의 직업체험 및 훈련의 지원은 직업체험ㆍ취업지원 관련 프로그램의 종류와 그 참여 절차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 훈련의 과정은 훈련대상자의 특성, 취업ㆍ직무수행의 용이성 및 훈련 수요 등을 고려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직업교육 훈련을 받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득수준, 가족상황 등 훈련을 받는 학교 밖 청소년의 여건 및 훈련 수강 횟수 등을 고려하여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전문개정 2017. 10. 27.]

**제5조의2(자립지원)**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교육의 지원은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의 내용은 경제, 법률, 문화 등과 관련된 기초적인 소양(素養)을 습득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 9. 27.]

**제5조의3(건강진단)**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은 학교 밖 청소년 중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기간 및 실시장소 등 구체적인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건강진단을 신청하려는 학교 밖 청소년,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학교 밖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이하 "청소년지도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교 밖 청소년 건강진단 신청서에 학교 밖 청소년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청소년지도자가 신청하는 때에는 해당 청소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5. 10. 1.>

④ 성평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청소년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해당 청소년 또는 그 보호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5. 10. 1.>

⑤ 성평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건강진단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5. 10. 1.>

⑥ 성평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강진단을 실시한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청소년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5. 10. 1.>

⑦ 성평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질병의 치료 등이 필요한 해당 청소년에 대하여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강진단의 검사항목, 방법, 그 결과의 통보 절차 등 건강진단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24. 9. 27.]

**제6조(지원센터의 지정절차 등)** 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 9. 27.>

②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 10. 27., 2024. 9. 27.>

1. 법인이 아닌 기관 또는 단체가 신청한 경우: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2. 법인이 신청한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27.>

**제6조의2(지원센터의 평가)** ① 법 제12조의2에 따른 지원센터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환경의 적정성
2. 운영 및 인력관리의 적정성
3. 사업내용의 적정성
4. 그 밖에 운영개선에 필요한 사항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평가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21. 9. 17.]

**제7조(지원센터와의 연계)** ① 지원센터는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안내 및 지원센터의 연계를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각급 학교의 장(이하 이 조에서 "학교장"이라 한다)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에 포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단체장"이라 한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삭제<2024. 9. 27.>

**부칙** <제71호,2015. 5.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법 제17조에 따른 학업중단 청소년(이하 "학업중단 청소년"이라 한다)"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이하 "학교 밖 청소년"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학업중단 청소년"을 "학교 밖 청소년"으로 한다.

**부칙** <제113호,2017. 10.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호,2021. 9. 17.>
이 규칙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호,2024. 9.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강진단 실시에 관한 경과조치) 2024년 12월 31일까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6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제5조의3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실시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호,2025. 10. 1.>(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2) 까지 생략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5조의3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6조의2제2항 및 별지 제1호서식 중 “ 여성가족부장관 ”을 각각 “ 성평등가족부장관 ”으로 한다.

제2조제4항 중 “ 여성가족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를 “ 성평등가족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 여성가족부 ”를 각각 “ 성평등가족부 ”로 한다.

2@ 생략

**부칙** <제7호,2026. 3.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3. 17.>

# 학교 밖 청소년 건강진단 신청서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30일 |
|---|---|---|

| | | |
|---|---|---|
| 건강진단 대상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 전자우편 주소 | |
| 보호자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학교 밖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전화번호: ) | |
| 청소년 지도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전화번호: ) |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3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학교 밖 청소년 건강진단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평등가족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학교 밖 청소년임을 증명하는 서류<br>2. 건강진단 대상자의 동의서(보호자 또는 청소년지도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건강진단 대상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 성평등가족부, 시·도/시·군·구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9. 27.>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정신청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30일 |
|---|---|---|

| | | |
|---|---|---|
| 신청인 | 성명(대표자명) | 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
| | 기관·단체·법인명 | |
| | 소재지<br>(전화번호: ) | |
| 시설·인력현황 | 명칭 | |
| | 소재지<br>(전화번호: ) | |
| | 종사자 : 총 명<br>(청소년지도사 명, 청소년상담사 명, 기타 명) |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지정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시장·군수·구청장

| | |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법인·단체의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서 1부<br>2. 사업계획서 1부<br>3. 시설 명세서 1부<br>4. 전문인력 보유현황 자료 1부 | 수수료<br>없 음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이 아닌 기관 또는 단체가 신청한 경우: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br>2. 법인이 신청한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처 리 절 차

| 신청서 작성 | → | 접 수 | → | 심사 | → | 지 정 | → | 지정서 발급 |
|---|---|---|---|---|---|---|---|---|

신청인 처리기관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시·군·구

210mm×297mm[백상지 80g/㎡]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9. 27.>

제　　호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정서

1. 기관·단체·법인명:

2.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3.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

4. 주소:　　(전화번호:　　)

5. 지원센터 소재지:

위 기관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 297㎜[백상지 150g/㎡]

#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직인규칙

[시행 2024. 6. 18.] [교육부령 제329호, 2024. 6. 18., 타법개정]

교육부 (사립대학지원과) 044 - 203 - 6951
교육부 (학교정책과) 044 - 203 - 67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에서 사용하는 직인의 규격 및 등록등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법인”이란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을 말한다.
2. “사립학교”란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2. 10. 28.]

**제3조(직인의 비치등)** ①학교법인 및 사립학교는 각각 당해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한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학교법인 및 사립학교는 직인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직인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직인의 내용 및 규격)** ①직인의 글자는 국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서체의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다만, 학교법인의 직인은 이와 다르게 새길 수 있다. <개정 2019. 9. 17., 2022. 10. 28.>
②학교법인의 직인은 원형ㆍ사각형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사립학교의 직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
[제목개정 2022. 10. 28.]

**제5조(직인을 찍는 위치등)** ①직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자가 인영(印影: 도장에 새겨지는 모양)의 가운데에 오도록 찍는다. <개정 2022. 10. 28.>
②학교법인 및 사립학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직인외의 인장을 직인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직인의 등록)** ①학교법인 및 사립학교는 각각 사립학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청에 직인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직인이 분실 또는 못쓰게 되었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어 다시 새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관할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인등록신청을 받거나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인폐기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호서식의 직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직인의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직인의 폐기신고)** ①학교법인을 해산하거나 학교를 폐지한 때 기타 사유로 직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직인폐기신고서에 의하여 관할청에 직인폐기신고를 하여

야 한다.

②학교법인 및 사립학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인을 폐기한 때에는 그 직인을 소각하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인영의 글씨를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인영의 인쇄사용)** ①직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는 직인날인에 갈음하여 직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직인인쇄용지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부칙** <제618호,1992. 8. 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직인규격 적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에 직인으로 상용중인 인장을 이 규칙에 의한 직인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그 인장에 대하여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인규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인을 새로 새겨 등록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한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부칙** <제76호,2010. 9.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 중인 직인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사립전문대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직인은 새로운 직인을 등록할 때까지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88호,2019. 9. 17.>(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6호,2022. 10.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 중인 직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직인은 제4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항에 따라 새로운 직인을 등록할 때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329호,2024. 6. 18.>(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24년 8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직인규칙 [별표] <개정 2010.9.20>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의 직인규격(제4조제2항 관련)

| 직인의 구분 | 규 격<br>(단위: 센티미터) |
|---|---|
| 1. 학교법인 이사장의 직인 | 지름 또는 한 변의 길이: 3.0 이내 |
|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기술대학 및 각종학교의 장의 직인 | 한 변의 길이: 3.0 |
|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 및 단과대학의 장의 직인 | 한 변의 길이: 2.7 |
| 4.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중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각종학교의 장의 직인 | 한 변의 길이: 2.4 |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6. 18.>

# 직 인 대 장

| 직 인 명 | | | 관리부서 | |
|---|---|---|---|---|
| 등록직인 | (인 영) | 등 록 일 | 년 월 일 | |
| | | 새 긴 날 | 년 월 일 | |
| | | 새 긴 사 람 | 주 소 :<br>성 명 :<br>생년월일 : | |
| | | 최초사용일 | 년 월 일 | |
| | | 재 료 | | |
| | | 비 고 | | |
| 폐기직인 | (인 영) | 등 록 일 | 년 월 일 | |
| | | 폐 기 일 | 년 월 일 | |
| | | 폐 기 사 유 | □마멸 □분실 □기타( ) | |
| | | 폐 기 방 법 | □소각 □이관 □기타( ) | |
| | | 폐 기 자 | 소 속 :<br>성 명 :<br>직 급 : | |
| | | 비 고 | | |
| ※ 비고란에는 관련부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 | | | |

15012-02511비

210mm×297mm
(인쇄용지 70g/㎡)
210mm×297mm
한지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 10. 28.>

직 인 폐 기 신 고 서

기 관 명

문서번호 : (전화번호 : )

시행일자 : . . .

수 신 : 발 신 : 인

참 조 :

| | | |
|---|---|---|
| 직 인 명 | | |
| 폐 기 사 유 | | |
| 폐기대상 직인처리 | 폐기예정일 | 년 월 일 |
| | 폐 기 방 법 | □소각 □이관 □기타( ) |
| | 폐 기 자 | 소 속 :<br>성 명 :<br>직 급 : |
| 폐기직인 | | |

15012-08911일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3호서식]

직인인쇄용지관리대장

| 인쇄문서명 | | | |
|---|---|---|---|
| 직 인 명 | | 인쇄직인 규격 | |

| 일 자 | 인쇄량 (매) | 사용량 (매) | 사 용 내 역 | 잔여량 (매) | 확 인 (서 명) |
|---|---|---|---|---|---|
| | | | | | |

15012-09011비

210mm×297mm
(인쇄용지 60g/㎡)

# 학교보건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보건)) 044 - 203 - 6547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환경위생)) 044 - 203 - 6542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의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2. 3.>
[전문개정 2007. 12. 1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3. 21., 2012. 1. 26., 2012. 3. 21., 2016. 2. 3., 2020. 10. 20.>

1. "건강검사"란 신체의 발달상황 및 능력, 정신건강 상태, 생활습관, 질병의 유무 등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학교를 말한다.
3. "관할청"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도·감독기관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7조제1호에 따른 국립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국립학교: 교육부장관
   나.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제3호에 따른 공립유치원·사립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제3호에 따른 공립학교·사립학교: 교육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교육부장관

[전문개정 2007. 12. 14.]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14.]

**제2조의3(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그 밖에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그 밖의 기관·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그 밖의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9. 24.]

**제3조(보건시설 등)**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실을 설치하고 학교보건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器具) 및 용품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 12. 18.>
[전문개정 2007. 12. 14.]
[제목개정 2018. 12. 18.]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①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교사대지(校舍垈地)ㆍ체육장, 교사ㆍ체육관ㆍ기숙사 및 급식시설,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 안에 설치되는 강당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환기ㆍ채광ㆍ조명ㆍ온도ㆍ습도의 조절과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상하수도ㆍ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오염공기ㆍ석면ㆍ폐기물ㆍ소음ㆍ휘발성유기화합물ㆍ세균ㆍ먼지 등의 예방 및 처리 등 환경위생과 식기ㆍ식품ㆍ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9. 4. 23.>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 및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위생 점검을 위한 공기 질 점검 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가 참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9. 4. 2., 2019. 4. 23., 2021. 12. 28.>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에 관한 업무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위탁하거나 교육감에게 전문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하여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 학교의 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6. 3. 2., 2021. 12. 28.>
⑤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환경위생과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학교에 출입하여 제2항에 따른 점검을 하거나 점검 결과의 기록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으며,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⑥ 학교의 장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 결과 및 보완 조치를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교육부장관이 운영하는 공시 관련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측정된 수치는 최초측정과 재측정 이력을 포함하여야 한다.<신설 2016. 3. 2., 2019. 4. 2.>
⑦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학교시설의 환경위생 점검을 실시하여 심각한 유해물질의 지속적 발생의 가능성이 확인된 경우 관할 교육감에게 특별점검을 요청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이에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대책을 수립ㆍ실행하여야 한다.<신설 2019. 4. 23.>

[전문개정 2007. 12. 14.]

**제4조의2(공기 질의 유지ㆍ관리 특례)** ① 학교의 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기 질의 위생점검을 상ㆍ하반기에 각각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교사 안에서의 공기 질을 측정하는 장비에 대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28.>

[본조신설 2019. 4. 2.]

**제4조의3(공기정화설비 등 설치)**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의 장은 교사 안에서의 공기 질 관리를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교실에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4. 2.]

**제5조(대기오염대응매뉴얼의 작성 등)** ① 교육부장관은 대기오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2의 대기오염도 예측 결과에 따른 대응 매뉴얼(이하 "대기오염대응매뉴얼"이라 한다)을 작성ㆍ배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② 대기오염대응매뉴얼에는 대응 단계별 전파요령, 실외수업에 대한 점검 및 조치, 실내 공기 질 관리를 위한 조치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대기오염대응매뉴얼에 따라 학생 및 교직원의 세부 행동요령을 수립하고 학생 및 교직원에게 세부 행동요령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대기오염대응매뉴얼의 작성ㆍ배포, 세부 행동요령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2. 18.]

**제6조** 삭제 <2016. 2. 3.>

**제6조의2** 삭제 <2016. 2. 3.>

**제6조의3** 삭제 <2016. 2. 3.>

**제7조(건강검사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교직원에 대한 건강검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1.>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건강검사를 할 때에 질병의 유무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실시 기관에 의뢰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건강검사를 한다.<개정 2008. 2. 29., 2011. 12. 31., 2012. 3. 21., 2013. 3. 23.>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각종학교의 1학년 및 4학년 학생. 다만, 구강검진은 전 학년에 대하여 실시하되, 그 방법과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지역실정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다.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제3호의 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각종학교의 1학년 학생
3. 그 밖에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학생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건강검사 외에 학생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학생을 별도로 검사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 학교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검사를 연기하거나 건강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⑤ 제2항에 따라 건강검사를 한 검진기관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사결과를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와 해당 학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⑥ 학교의 장은 제2조제1호의 정신건강 상태 검사를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학부모의 동의 없이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해당 학부모에게 검사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2. 3. 21., 2016. 3. 2., 2021. 3. 23.>

⑦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강검사의 시기, 방법, 검사항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2. 3. 21., 2013. 3. 23.>

[전문개정 2007. 12. 14.]

**제7조의2(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의 여건 및 특색을 고려하여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4.>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제11조에 따른 학교의 장의 조치를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신설 2013. 12. 30.>

③ 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의 결과를 평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학생건강증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0.>

④ 학교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건강검사의 결과를 평가하고, 학생정신건강증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교의사 또는 학교약사에게 자문을 할 수 있다.<개정 2013. 12. 30.>

[전문개정 2007. 12. 14.]
[제목개정 2021. 9. 24.]

**제7조의3(건강검사기록)** ① 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라 건강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건강검사 결과를 작성·관리할 때에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1. 인적사항
2. 신체의 발달상황 및 능력
3. 그 밖에 교육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이 전출하거나 고등학교까지의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에는 그 학교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자료를 넘겨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14.]

**제8조(등교 중지)** ① 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의 결과나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9. 12. 29., 2020. 10. 20.>

② 교육부장관은 감염병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하여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하여 등교를 중지시킬 것을 학교의 장에게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학교의 관할청을 경유하여야 한다.<신설 2020. 10. 20.>

1. 「검역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2. 감염병 발생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그 지역에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가(自家) 또는 시설에 격리된 사람의 가족 또는 그 동거인
4. 그 밖에 학교 내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등교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명을 받은 학교의 장은 해당 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하여 지체 없이 등교를 중지시켜야 한다.<신설 2020. 10. 20.>

[전문개정 2007. 12. 14.]

**제8조의2(등교 중지를 위한 개인정보의 처리 등)** 교육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제8조제2항에 따른 등교 중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 10. 20.]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용(誤用)·남용(濫用)의 예방, 성교육, 이동통신단말장치 등

전자기기의 과의존 예방, 도박 중독의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1., 2012. 1. 26., 2019. 12. 10., 2021. 12. 28.>
[전문개정 2007. 12. 14.]

**제9조의2(보건교육 등)** ①교육부장관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교육의 실시 시간, 도서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12. 30., 2016. 12. 20.>
②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13. 12. 30., 2016. 12. 20.>
③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과 연관된 프로그램의 운영 등을 관련 전문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16. 12. 20.>
[본조신설 2007. 12. 14.]
[제목개정 2013. 12. 30.]

**제9조의3(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교육)** ① 교육부장관은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에 대한 중독·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이하 "마약중독예방교육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마약중독예방교육 추진계획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교의 장이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교육(이하 "마약중독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약중독예방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교육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제9조의2에 따른 보건교육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학교안전교육
3. 「아동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③ 교육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4에 따른 실태조사에 학생의 마약류 중독·오남용에 대한 실태조사와 마약중독예방교육에 대한 효과성 평가가 포함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마약중독예방교육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4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마약중독예방교육 추진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마약중독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 3. 18.]

**제10조(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검사)** ①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학생이 새로 입학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같은 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모두 받았는지를 검사한 후 이를 교육정보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29., 2016. 2. 3.>

②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예방접종을 모두 받지 못한 입학생에게는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관할 보건소장에게 예방접종 지원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14.]

**제11조(치료 및 예방조치 등)** ① 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의 결과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에 대하여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 제2조제1호의 정신건강 상태를 검사한 결과 필요하면 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3. 12. 30.>

1.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에 대한 정신건강 증진 및 이해 교육
2. 해당 학생에 대한 상담 및 관리
3. 해당 학생에 대한 전문상담기관 또는 의료기관 연계
4. 그 밖에 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교육감은 검사비, 치료비 등 제2항 각 호의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3. 12. 30.>

④ 학교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보건소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보건소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개정 2013. 12. 30.>

[전문개정 2007. 12. 14.]

[제목개정 2013. 12. 30.]

**제12조(학생의 안전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의 시설ㆍ장비의 점검 및 개선, 학생에 대한 안전교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14.]

**제13조(교직원의 보건관리)** 학교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건강검사 결과 필요하거나 건강검사를 갈음하는 건강검진의 결과 필요하면 교직원에 대하여 질병 치료와 근무여건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14.]

**제14조(질병의 예방)** ① 학교의 장은 감염병 예방과 학교의 보건에 필요하면 휴업을 할 수 있다.

② 관할청은 감염병 예방과 학교의 보건에 필요하면 해당 학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교육부장관은 제2조제3호가목의 학교의 경우에는 그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학년 또는 학교 전체에 대한 휴업 또는 등교수업일 조정
2. 휴교(휴원을 포함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관할청의 동의를,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20. 10. 20.]

**제14조의2(감염병 예방접종의 시행)**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학교의 학생 또는 교직원에게 감염병의 필수 또는 임시 예방접종을 할 때에는 그 학교의 학교의사 또는 보건교사(간호사 면허를 가진 보건교사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를 접종요원으로 위촉하여 그들로 하여금 접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교사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27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12. 29., 2017. 11. 28., 2018. 3. 27.>

[전문개정 2007. 12. 14.]

[제목개정 2009. 12. 29.]

**제14조의3(감염병예방대책의 마련 등)** ① 교육부장관은 감염병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책(이하 "감염병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0. 8. 11.>

1. 감염병의 예방ㆍ관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2. 감염병 대응 관련 매뉴얼에 관한 사항
3. 감염병과 관련한 학교의 보건ㆍ위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감염병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감염병예방대책을 마련한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교육감 및 학교에 알려야 한다.

③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의 감염병예방대책을 토대로 지역 실정에 맞는 감염병 예방 세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과 질병관리청장은 학교에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감염병 발생 현황에 관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감염병정보"라 한다)를 공유하여야 한다.<개정 2020. 8. 11.>

⑤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감염병에 걸렸거나 의심이 되는 학생 및 교직원이 있는 경우 즉시 교육감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 3. 23.>

⑥ 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공유를 하였거나 제5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염병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공유, 보고 및 공개의 방법과 절차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3. 2.]

**제14조의4(감염병대응매뉴얼의 작성 등)**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에서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감염병 유형에 따른 대응 매뉴얼(이하 "감염병대응매뉴얼"이라 한다)을 작성·배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1.>

② 감염병대응매뉴얼의 작성·배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3. 2.]

**제15조(학교에 두는 의료인·약사 및 보건교사)** ①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과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 1. 26.>

②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조의2에서 같다)에 제9조의2에 따른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개정 2021. 6. 8.>

③ 제2항에 따라 보건교사를 두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두어야 한다.<신설 2021. 6. 8.>

[전문개정 2007. 12. 14.]

[제목개정 2012. 1. 26.]

**제15조의2(응급처치 등)** ① 학교의 장은 사전에 학부모의 동의와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의사의 자문을 받아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건교사 또는 순회 보건교사(이하 이 조에서 "보건교사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제1형 당뇨로 인한 저혈당쇼크 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하여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투약행위 등 응급처치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교사등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27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6. 8.>

② 보건교사등이 제1항에 따라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해당 보건교사등은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질병이나 장애로 인하여 특별히 관리·보호가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보조인력의 역할, 요건 등에 관하여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1. 28.]

**제16조(보건기구의 설치 등)** 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보건 관리에 필요한 기구(機構)와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14.]

**제16조의2(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의 설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기관(이하 "학

생건강증진 전문기관 ” 이라 한다)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수립의 지원
2. 국내외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수집ㆍ분석, 통계 작성 및 간행물 발간
3.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에 대한 교육자료 개발
4.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을 위한 교직원 및 관계자, 학부모 등에 대한 교육훈련 및 지원
5. 학생의 건강증진과 관련한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6. 그 밖에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에 학생건강증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학생의 신체발달 상황 및 생활습관, 정신건강 상태 등의 실태조사
2. 학생의 건강증진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3.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상담
4. 건강이 취약한 학생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과 학생건강증진센터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④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과 학생건강증진센터의 설립ㆍ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9. 24.]

**제17조(학교보건위원회)** ① 제2조의2에 따른 기본계획 및 학교보건의 중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시ㆍ도학교보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 2. 29., 2012. 1. 26.>

② 시ㆍ도학교보건위원회는 학교의 보건에 경험이 있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2. 1. 26.>

③ 시ㆍ도학교보건위원회의 기능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2. 1. 26.>

[전문개정 2007. 12. 14.]

**제18조(경비 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에 따른 시설과 기구 및 용품 구매, 제4조의3에 따른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 설치, 제7조제1항에 따른 건강검사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18. 12. 18., 2019. 4. 2.>

[전문개정 2007. 12. 14.]

**제18조의2(비밀누설금지 등)** 이 법에 따라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건강검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3. 23.>

[본조신설 2013. 12. 30.]

**제19조(벌칙)** ① 제18조의2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3. 12. 30., 2021. 3. 23.>

② 삭제<2016. 2. 3.>

[전문개정 2007. 12. 14.]

**제20조** 삭제 <1998. 12. 31.>

**부칙** <제1928호,1967. 3. 30.>

이 법은 공포후 9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06호,1977. 7. 23.>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74호,1981. 2. 28.>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68호,1990. 12. 27.>(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3) 생략

3! 학교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 문교부 "를 " 교육부 "로 한다.

제4조 및 제7조제2항중 " 문교부령 "을 각각 " 교육부령 "로 한다.

3@ 내지5) 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제4349호,1991. 3. 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69호,1995. 12. 29.>(교육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⑥생략

⑦학교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 국민학교 " 를 " 초등학교 " 로 한다.

⑧내지 ⑮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5454호,1997. 12. 13.>(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5618호,1998. 12. 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18호,2000. 1. 28.>

이 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00호,2001. 1. 29.>(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3@ 생략

3# 학교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7조제2항중 " 교육부령 " 을 각각 " 교육인적자원부령 " 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중 " 교육부 " 를 " 교육인적자원부 " 로 한다.

3$ 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6716호,2002. 8. 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6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정화구역 설정에 관한 특례) 종전의 출입국관리법(법률 제57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등록한 외국인단체가 2002년 12월 31일까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학교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7120호,2004. 1. 29.>(유아교육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학교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2호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⑧내지 ⑪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7170호,2004. 2. 9.>(악취방지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학교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중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을 "대기환경보전법·악취방지법 및 수질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④내지 ⑥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7396호,2005. 3. 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제2조의2·제4조·제7조·제7조의2·제7조의3·제8조·제11조제1항·제13조 및 제17조의 개정규정과 제18조의 개정규정중 "건강검사"부분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륜장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 설치된 시설로서 제6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이전 또는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2005년 12월 31일까지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

한 자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신체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강검사로 본다.

**부칙** <제7700호,2005. 12. 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납골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 이미 설치된 납골시설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7799호,2005. 12. 29.>(청소년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4호 중 " 청소년위원회 "를 " 국가청소년위원회 "로 한다.
⑩내지 ⑪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8366호,2007. 4. 11.>(의료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9조 생략
**제2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후단 중 " 의료법 제25조제1항 "을 " 「의료법」 제27조제1항 "으로 한다.
1& 생략
**제21조** 생략

**부칙** <제8391호,2007. 4. 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 학교설립예정지에 대한 정화구역의 설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학교용지와 「유아교육법」 제8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유치원 및 특수학교를 설립하기 위하여 확보된 용지(사립의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받은 용지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30일 이내

에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ㆍ고시하여야 한다.
③(기존 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학교설립예정지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설치된 시설로서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은 해당 학교의 개교일 전까지 이전하거나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학교의 개교일 전까지 이전하거나 폐쇄하기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이 있을 때에는 그 학교의 개교일부터 5년의 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이전 또는 폐쇄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8466호,2007. 5. 17.>(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4% 까지 생략

4^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 수질환경보전법 ”을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로 한다.

4& 부터 <5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8578호,2007. 8. 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 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 설치된 시설로서 제6조제1항제13호의3에 해당하는 게임물 시설은 이 법 시행 전에 이전하거나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8678호,2007. 12. 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제3항, 제6조의2 및 제19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28일부터, 제6조제1항 및 제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8년 8월 4일부터, 제9조의2 및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부칙** <제8852호,2008. 2. 29.>(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

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04> 까지 생략

<105>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 교육인적자원부령 " 을 각각 " 교육과학기술부령 " 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 을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으로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같은 항 제3호, 제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7조의3제1항ㆍ제2항제3호 중 " 교육인적자원부령 " 을 각각 " 교육과학기술부령 " 으로 한다.

제9조의2 전단 및 후단, 제17조제1항 중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 을 각각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으로 한다.

<10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912호,2008. 3. 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70호,2009. 6. 9.>(소음ㆍ진동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3% 까지 생략

3^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 「소음ㆍ진동규제법」 " 을 " 「소음ㆍ진동관리법」 " 으로 한다.

3& 및3*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847호,2009. 12. 29.>(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2% 까지 생략

2^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9. 감염병원, 감염병격리병사, 격리소

10. 감염병요양소, 진료소

제8조 중 “ 전염병 ”을 “ 감염병 ”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 「전염병예방법」 제20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같은 법 제11조 및 제12조 ”를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같은 법 제24조 및 제25조 ”로 한다.

제14조 중 “ 전염병 ”을 “ 감염병 ”으로 한다.

제14조의2의 제목 중 “ 전염병 ”을 “ 감염병 ”으로 하고, 같은 조 전단 중 “ 「전염병예방법」 제11조 및 제12조 ”를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 ”로, “ 전염병의 ”를 “ 감염병의 ”로 한다.

2& 부터3) 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9932호,2010. 1. 18.>(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24> 까지 생략

<125>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9호 중 “ 국가청소년위원회가 ”를 “ 여성가족부장관이 ”로 한다.

<126>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1048호,2011. 9. 15.>(청소년 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1^ 까지 생략

1&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9호 중 “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5) ”를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7) ”으로, “ 같은 호 가목(6) 및 같은 호 나목(7) ”을 “ 같은 호 가목8) 또는 9) 및 같은 호 나목7) ”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제11141호,2011. 12. 31.>(국민건강보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2^ 까지 생략

2&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를 각각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로 한다.

2*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1220호,2012. 1. 26.>

이 법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나목, 제6조제3항 및 제6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2. 3. 21.>

**부칙** <제11384호,2012. 3. 21.>(초ㆍ중등교육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다목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본문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ㆍ제4호”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ㆍ제3호”로 한다.

**부칙** <제11386호,2012. 3. 21.>

이 법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90호,2013. 3. 23.>(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3>까지 생략

<74>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및 제7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 교육과학기술부령 ”을 각각 “ 교육부령 ”으로 한다.

제4조제5항 및 제9조의2 전단ㆍ후단 중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을 각각 “ 교육부장관 ”으로 한다.

<7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131호,2013. 12. 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 제18조의2 및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79호,2016. 1. 27.>(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7호 중 “ 폐수종말처리시설 ”을 “ 공공폐수처리시설 ”로 한다.

1^ 부터2) 까지 생략

**부칙** <제13946호,2016. 2.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055호,2016. 3. 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02호,2016. 12. 2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532호,2017. 1. 17.>(물환경보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5>까지 생략

<76>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77>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4839호,2017. 7. 26.>(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1* 까지 생략

1(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보건복지부장관 및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2) 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043호,2017. 11. 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34호,2018. 3. 27.>(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2조제5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전단 중 “ 정기 ”를 “ 필수 ”로 한다.

**부칙** <제15965호,2018. 12. 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304호,2019. 4. 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측정된 수치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6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측정된 수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339호,2019. 4. 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48호,2019. 12. 1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472호,2020. 8. 11.>(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14조의4제1항 중 “ 보건복지부장관 ”을 각각 “ 질병관리청장 ”으로 한다.
③부터3#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7497호,2020. 10. 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54호,2021. 3. 23.>(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8196호,2021. 6. 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62호,2021. 9. 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40호,2021. 12. 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789호,2025. 3. 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065호,2025. 10. 1.>(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생략>、、、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3>까지 생략

<74>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 환경부장관 ”을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으로 한다.

<75>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 학교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타법개정]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보건)) 044 - 203 - 6547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환경위생)) 044 - 203 - 6542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3제1항에 따라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그 계획을 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학생건강증진 정책의 변화나 관련 법령의 개정 등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2. 14.]

**제2조(보건실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3조에 따른 보건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8. 13., 2013. 3. 23., 2023. 2. 14.>

1. 위치: 학생과 교직원의 응급처치 등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용하기 쉽고 통풍과 채광이 잘 되는 장소일 것
2. 면적: 66제곱미터 이상. 다만, 교육부장관(「대학설립·운영 규정」 제1조에 따른 대학만 해당된다) 또는 교육감(「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만 해당된다)은 학생수 등을 고려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면적을 완화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실에는 학교보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과 기구(器具) 및 용품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9. 6. 18.>

1.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와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 및 용품

2. 학교환경위생 및 식품위생검사에 필요한 기구

③ 제2항에 따라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의 구체적인 기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공립학교 및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 8. 13., 2013. 3. 23., 2019. 6. 18.>

[제목개정 2019. 6. 18.]

## 제2장 대기오염 대응 <신설 2019. 6. 18.>

**제3조(대기오염대응매뉴얼의 작성 등)** ①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1. 대기오염 대응 업무 수행체계 및 관련 기관별 역할에 관한 사항
2. 대응 단계별 전파요령에 관한 사항
3. 대응 단계별 실외수업에 대한 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4. 대응 단계별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대기오염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대기오염대응매뉴얼을 전자적 파일이나 인쇄물의 형태로 배포할 수 있다.

③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학생 및 교직원의 세부 행동요령(이하 이 조에서 “세부 행동요령”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기오염 대응 업무를 관리하는 교직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등교ㆍ하교 시간 조정, 수업시간 단축, 질환자 관리 등 대응 단계별 안전조치 이행에 관한 사항
3. 교직원 비상연락망 유지, 학생ㆍ학부모에 대한 연락체계 구축 등 대응 단계별 전파요령에 관한 사항
4. 체육활동, 현장학습, 운동회 등 실외수업의 실내수업 대체 등 대응 단계별 실외수업에 대한 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공기 정화 설비의 가동, 환기요령, 청소 등 대응 단계별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학교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대기오염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학교의 장은 세부 행동요령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에 따른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학교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6. 18.]

**제4조** 삭제 <2017. 2. 3.>

**제5조** 삭제 <2017. 2. 3.>

**제6조** 삭제 <2017. 2. 3.>

**제7조** 삭제 <2017. 2. 3.>

**제7조의2** 삭제 <2017. 2. 3.>

**제7조의3** 삭제 <2017. 2. 3.>

**제7조의4** 삭제 <2017. 2. 3.>

**제8조** 삭제 <2017. 2. 3.>

## 제3장 삭제 <2017. 2. 3.>

**제9조** 삭제 <2017. 2. 3.>

**제10조** 삭제 <2017. 2. 3.>

**제11조** 삭제 <2017. 2. 3.>

**제12조** 삭제 <2017. 2. 3.>

## 제4장 삭제 <2017. 2. 3.>

**제13조** 삭제 <2017. 2. 3.>

**제14조** 삭제 <2017. 2. 3.>

**제15조** 삭제 <2017. 2. 3.>

**제16조** 삭제 <2017. 2. 3.>

**제17조** 삭제 <2017. 2. 3.>

**제18조** 삭제 <2017. 2. 3.>

**제19조** 삭제 <2017. 2. 3.>

## 제5장 삭제 <2017. 2. 3.>

**제20조** 삭제 <2017. 2. 3.>

**제21조** 삭제 <2017. 2. 3.>

## 제6장 보건교사의 배치 등 및 학교보건위원회 <개정 2021. 12. 9.>

**제22조(등교 등의 중지)** ① 학교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등교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9., 2016. 8. 29.>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 다만, 의사가 다른 사람에게 감염될 우려가 없다고 진단한 사람은 제외한다.
2. 제1호 외의 환자로서 의사가 감염성이 강한 질환에 감염되었다고 진단한 사람

② 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등교중지를 명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다만, 질환증세 또는 질병유행의 양상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제22조의2(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마약류에 대한 중독·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이하 "마약중독예방교육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그 계획을 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 마약중독예방교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급별 마약류에 대한 중독·오남용 예방교육(이하 "마약중독예방교육"이라 한다)의 주요내용에 관한 사항
2. 마약중독예방교육의 자료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마약중독예방교육에 관한 관계 기관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교원의 마약중독예방교육 이해 제고를 위한 연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마약중독예방교육 실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마약중독예방교육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교육감, 관련 기관·단체의 장 또는 전문가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9. 16.]

[종전 제22조의2는 제22조의3으로 이동 <2025. 9. 16.>]

**제22조의3(감염병예방대책의 마련 등)** ① 법 제14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 7. 2.>

1. 감염병 예방·관리에 필요한 교육에 관한 사항
2. 감염병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가상연습 등 실제 상황 대비 훈련에 관한 사항
3. 감염병 방역에 필요한 물품의 비축 및 시설의 구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관리를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4조의3제4항에서 “감염병 발생 현황에 관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이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하였거나 국내에 유입된 경우 또는 같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감염병에 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해당 감염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개정 2020. 9. 11., 2023. 2. 14.>

1. 감염병명
2. 감염병의 발생 현황 또는 유입 경로
3. 감염병환자등(학생 및 교직원에 한정한다)의 발병일·진단일·이동경로·이동수단 및 접촉자 현황
4. 그 밖에 교육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본조신설 2016. 8. 29.]

[제2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2조의3은 제22조의4로 이동 <2025. 9. 16.>]

**제22조의4(감염병대응매뉴얼의 작성 및 배포 등)** ①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작성·배포하여야 하는 감염병 유형에 따른 대응 매뉴얼(이하 “감염병대응매뉴얼”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유형에 따른 학생 및 교직원의 행동 요령에 관한 사항
2. 감염병 유형에 따른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단계별 조치에 관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감염병대응매뉴얼을 배포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파일이나 인쇄물의 형태로 배포할 수 있다.

③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감염병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조치에 관한 업무를 추진할 때 감염병대응매뉴얼을 활용하여야 한다.<개정 2017. 2. 3., 2023. 2. 14.>

④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각 지역 또는 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내용을 감염병대응매뉴얼에 추가·보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8. 29.]

[제22조의3에서 이동 <2025. 9. 16.>]

**제23조(학교에 두는 의료인·약사 및 보건교사)** ① 삭제 <2021. 12. 9.>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학교에 두는 의료인·약사는 학교장이 위촉하거나 채용한다.<개정 2021. 12. 9.>

③ 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란 36학급 이상의 학교를 말한다.<신설 2021. 12. 9.>

④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학교에 두는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포함하며, 이하 “학교의사”라 한다) 및 학교에 두는 약사(이하 “학교약사”라 한다)와 같은 조 제2항·제3항에 따른 보건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12. 9.>

1. 학교의사의 직무
   가. 학교보건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나.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ㆍ관리 및 개선에 관한 자문
   다.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진단과 건강평가
   라. 각종 질병의 예방처치 및 보건지도
   마.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상담
   바. 그 밖에 학교보건관리에 관한 지도
2. 학교약사의 직무
   가. 학교보건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나. 학교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자문
   다. 학교에서 사용하는 의약품과 독극물의 관리에 관한 자문
   라. 학교에서 사용하는 의약품 및 독극물의 실험ㆍ검사
   마. 그 밖에 학교보건관리에 관한 지도
3. 보건교사의 직무
   가. 학교보건계획의 수립
   나.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ㆍ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다.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의 준비와 실시에 관한 협조
   라. 각종 질병의 예방처치 및 보건지도
   마.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찰과 학교의사의 건강상담, 건강평가 등의 실시에 관한 협조
   바. 신체가 허약한 학생에 대한 보건지도
   사. 보건지도를 위한 학생가정 방문
   아. 교사의 보건교육 협조와 필요시의 보건교육
   자. 보건실의 시설ㆍ설비 및 약품 등의 관리
   차. 보건교육자료의 수집ㆍ관리
   카. 학생건강기록부의 관리
   타. 다음의 의료행위(간호사 면허를 가진 사람만 해당한다)
      1)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2) 응급을 요하는 자에 대한 응급처치
      3) 부상과 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4) 건강진단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5) 1)부터 4)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 투여
   파. 그 밖에 학교의 보건관리

[제목개정 2021. 12. 9.]

**제23조의2(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의 설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이하 “학생건강증진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설립하거나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법인 중에서 학생건강증진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속병원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학생건강증진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학생건강증진전문기관으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보유할 것
2. 학생건강증진전문기관으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장비ㆍ시설을 갖출 것
3. 학생건강증진전문기관으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업계획 및 운영규정을 갖출 것

③ 제2항에 따라 학생건강증진전문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기준의 세부 내용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학생건강증진전문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준이 포함된 지정계획을 10일 이상 관보 또는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⑤ 학생건강증진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의 보유 현황이나 확보 계획
2.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장비ㆍ시설의 보유 현황이나 확보 계획
3.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업계획 및 운영규정

⑥ 교육부장관은 학생건강증진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관보 또는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게시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생건강증진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3. 2. 14.]

**제23조의3(학생건강증진센터의 설치 등)** ①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설치ㆍ운영하는 학생건강증진센터(이하 "학생건강증진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학생건강증진센터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보유할 것
2. 학생건강증진센터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장비ㆍ시설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라 학생건강증진센터가 갖추어야 하는 기준의 세부 내용은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생건강증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2. 14.]

**제24조(보건위원회의 기능)** ① 삭제 <2012. 8. 13.>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학교보건위원회(이하 "보건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2. 8. 13.>

1.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증진에 관한 시ㆍ도의 중ㆍ장기 기본계획
2. 학교보건과 관련되는 시ㆍ도의 조례 또는 교육규칙의 제정ㆍ개정안
3.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학교보건정책 등에 관한 사항
4. 삭제<2017. 2. 3.>

[제목개정 2012. 8. 13.]

**제25조(보건위원회의 구성)** ① 보건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2. 8. 13.>

② 삭제<2012. 8. 13.>

③ 보건위원회 위원은 해당 교육청의 국장급 공무원 및 학교보건에 관하여 학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2. 8. 13.>

④ 제3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2. 8. 13.>

[제목개정 2012. 8. 13.]

**제2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② 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7조(회의)** ① 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2. 8. 13.>

1. 교육감이 요청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분과위원회)** ① 보건위원회에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보건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보건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한다.

③ 보건위원회 위원의 분과위원회 배속은 교육감이 정한다.<개정 2012. 8. 13.>

④ 분과위원회에 분과위원장 1명을 두되,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27조를 준용한다.

**제29조(간사와 서기)** ① 보건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약간 명을 둔다.

② 보건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는 교육감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개정 2012. 8. 13.>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30조(협조 요청)**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학교보건위생에 관한 비영리법인, 비영리의료기관이나 국공립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의 보호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31조(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등)** ① 보건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보건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답변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호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7. 2. 3.]

**제31조의2(수당과 여비)** 보건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7. 2. 3.]

**제31조의3(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건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7. 2. 3.]

## 제7장 보칙

**제32조** 삭제 <2017. 2. 3.>

**제3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학교의 장은 법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 8. 29.>

②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법 제10조에 따른 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검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6. 8. 29.>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4조의2에 따른 감염병 예방접종의 시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6. 8. 29., 2017. 2. 3.>

④ 교육부장관, 질병관리청장, 교육감 또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신설 2016. 8. 29., 2020. 9. 11.>

1. 법 제14조의3제4항에 따른 감염병정보의 공유에 관한 사무
2. 법 제14조의3제5항에 따른 감염병정보의 보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14조의3제6항에 따른 감염병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4. 8. 6.]

**제33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제23조제3항에 따른 보건교사의 배치기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6. 3. 24.]

**부칙** <제20949호,2008. 8.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에 따라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의 인정을 받은 시설은 이 영에 따른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의 인정을 받은 시설로 본다.

1. 대통령령 제10481호 학교보건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3항
2. 대통령령 제13214호 학교보건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2항
3. 대통령령 제13982호 학교보건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2항
4. 대통령령 제15607호 학교보건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2항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학교보건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2075호,2010. 3. 15.>(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9> 까지 생략

<170>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2호 중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을 " 보건복지부장관 " 으로 한다.

<171>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 <제22232호,2010. 6. 29.>

이 영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564호,2010. 12. 29.>(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2% 까지 생략

2^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 전염 ”을 “ 감염 ”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 전염성 ”을 “ 감염성 ”으로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감염병 병원체보유자

2& 부터2(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3718호,2012. 4. 10.>(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9>까지 생략

<80>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중 “ 도시관리계획 ”을 “ 도시ㆍ군관리계획 ”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2호 및 제4호 중 “ 도시계획 ”을 “ 도시ㆍ군계획 ”으로 한다.

<81>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23928호,2012. 7. 4.>(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4026호,2012. 8. 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및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화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정화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영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영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부칙** <제24423호,2013. 3. 2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5>까지 생략

<86>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단서, 제9조제4항 및 제30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항, 제9조제2항·제3항, 제10조제4항 및 제20조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87>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 <제24666호,2013. 7.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가서의 일부 생략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에 학교용지 선정자가 교육감에게 평가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050호,2013. 12. 30.>(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255호,2014. 3.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에 설치된 시설로서 제6조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은 2019년 2월 28일까지 이전하거나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교육감이나 교육감

이 위임한 자의 인정을 받은 시설은 제외한다.

**부칙** <제25532호,2014. 8. 6.>(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840호,2014. 12. 9.>(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6571호,2015. 10.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가서의 검토 절차 생략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승인과 관련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26855호,2015. 12. 31.>(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457호,2016. 8. 29.>

이 영은 2016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831호,2017. 2. 3.>

이 영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859호,2019. 6. 18.>

이 영은 2019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950호,2019. 7. 2.>(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013호,2020. 9. 11.>(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및 제32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보건복지부장관 " 을 각각 " 질병관리청장 " 으로 한다.

②부터3@ 까지 생략

**부칙** <제32193호,2021. 12.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건교사의 배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3학년도에 보건교사를 배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528호,2022. 3. 8.>(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246호,2023. 2. 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748호,2025. 9. 16.>

이 영은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220호,2026. 3. 24.>(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5. 9. 19.] [교육부령 제366호, 2025. 9. 19., 일부개정]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보건)) 044 - 203 - 6547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환경위생)) 044 - 203 - 654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1. 14.>

**제2조(보건실의 시설과 기구 및 용품)** 「학교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기구(器具) 및 용품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5. 11. 14., 2008. 4. 28., 2008. 8. 4., 2019. 7. 3.>
[제목개정 2019. 7. 3.]

**제3조(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관리)** ①「학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유지·관리해야 하는 학교시설[교사대지(校舍垈地)·체육장, 교사·체육관·기숙사 및 급식시설,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 안에 설치되는 강당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 11. 14., 2008. 4. 28., 2018. 3. 27., 2019. 10. 24.>
1. 환기·채광·조명·온습도의 조절기준과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의2.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2.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3. 폐기물 및 소음의 예방 및 처리기준은 별표 4와 같다.
3의2. 공기 질 등의 유지·관리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4. 식기·식품·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에 관한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상태가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개정 2019. 10. 24.>
③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점검의 종류 및 시기는 별표 6과 같이 하고, 점검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개정 2005. 11. 14., 2008. 3. 4., 2008. 4. 28., 2013. 3. 23.>
④학교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기록·비치해야 하고,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상태가 제1항의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개정 2005. 11. 14., 2008. 4. 28., 2019. 10. 24.>
⑤ 삭제<2019. 7. 3.>

**제3조의2(검사요청 등)** ①법 제4조에 따른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학교의 장이 제3조제2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

게 점검방법의 지도 및 전문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하거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상태를 전문적으로 점검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오염의 정도를 측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4. 28., 2019. 10. 24.>

②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학교에 대하여 오염물질을 직접 검사하게 하거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상태를 전문적으로 점검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오염의 정도를 측정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 4. 28.>

[본조신설 2005. 11. 14.]

**제3조의3(환경위생관리자의 지정 및 교육)** ①학교의 장은 법 제4조에 따라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소속 교직원 중에서 환경위생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는 자(이하 "환경위생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07. 3. 26., 2008. 4. 28., 2019. 10. 24.>

②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지정한 환경위생관리자 및 환경위생의 유지ㆍ관리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환경위생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기관에 이들을 위탁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 11. 14.]

**제4조(공기 질을 측정하는 장비에 대한 점검)**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실시해야 하는 교사 안에서의 공기의 질을 측정하는 장비에 대한 점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소급성(遡及性) 확보를 위한 검사
2.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도검사(精度檢査)

[본조신설 2019. 7. 3.]

**제5조(공기정화설비 등의 설치)** 법 제4조의3에 따라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의 장이 교사 안에서의 공기 질 관리를 위하여 각 교실에 설치해야 하는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기정화설비
   나. 실내 공기 중의 분진을 추출하여 모으고 냄새를 탈취하는 기능이 있는 설비로서 내부에 먼지 제거부와 송풍기가 내장되어 있는 설비
   다.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교실의 공기를 정화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설비
2.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기
   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에 부착되어 있는 부속품 형태의 측정기기로서 미세먼지의 농도를 표시하는 기능이 탑재된 측정기기
   나. 가목 외의 기기로서 미세먼지의 측정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간이 측정기기

다.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교실의 미세먼지를 측정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기

[본조신설 2019. 7. 3.]

**제6조(유치원 및 대학의 환경위생 기준 등)**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장은 제2조 및 제3조제1항의 기준에 준하는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보건실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을 갖추고,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05. 11. 14., 2008. 4. 28., 2019. 10. 24.>

**제7조** 삭제 <2017. 2. 3.>

**제8조** 삭제 <2017. 2. 3.>

**제8조의2** 삭제 <2017. 2. 3.>

**제9조** 삭제 <2017. 2. 3.>

**제10조(응급처치교육 등)** ① 학교의 장이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이하 "응급처치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 응급처치교육의 계획ㆍ내용 및 시간 등은 별표 9와 같다.

② 학교의 장은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한 후 해당 학년도의 교육 결과를 다음 학년도가 시작되기 30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1.>

③ 학교의 장은 공공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항의 연수원 중 교육감이 설치한 연수원 또는 의료기관에서 교직원으로 하여금 응급처치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7. 7.]

**제10조의2(마약류 중독ㆍ오남용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방법 등)** ① 학교의 장은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마약류 중독ㆍ오남용 예방교육(이하 "마약중독예방교육"이라 한다)을 매 학기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마약중독예방교육은 교과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강의, 현장학습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마약중독예방교육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마약중독예방교육에 관한 협력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마약중독예방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5. 9. 19.]

[종전 제10조의2는 제10조의3으로 이동 <2025. 9. 19.>]

**제10조의3(감염병 정보의 공유 등)** ①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4조의3제4항에 따라 영 제22조의3제2항에 따른 감염병 정보를 지체 없이 구두, 전화(문자메시지 등을 포함한다), 팩스,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등의 방법 중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방법으로 공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19.>

② 교육부장관은 학교에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의3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공유한 정보를 교육감 및 학교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법 제8조 및 제14조에 따른 감염병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해당 정보를 활용할 수 없다.

④ 학교에 감염병에 걸렸거나 걸린 것으로 의심이 되는 학생 및 교직원이 있는 경우 법 제14조의3제5항에 따라 해당 학교의 장이 교육감을 경유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학생 및 교직원의 감염병명 및 감염병의 발병일ㆍ진단일
2. 해당 학생 및 교직원의 소속
3. 해당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조치 사항

⑤ 제4항에 따른 보고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할 수 있다.

⑥ 교육부장관은 법 제14조의3제6항에 따라 감염병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정보의 당사자는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경우 교육부장관에게 구두,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은 이에 따라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9. 1.]

[제10조의2에서 이동 <2025. 9. 19.>]

**제11조(보조인력의 역할 등)** ①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보조인력(이하 “보조인력”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보건교사등(이하 “보건교사등”이라 한다)의 지시를 받아 질병이나 장애로 인하여 특별히 관리ㆍ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해서 보건교사등이 행하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보조한다.

1.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투약행위 등 응급처치
2. 각종 질병의 예방처치, 건강관찰 및 건강상담 협조 등의 보건활동

② 보조인력은 「의료법」 제7조에 따른 간호사 면허가 있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8. 5. 25.]

**부칙** <제804호,2002. 4. 1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 학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건실의 시설 및 기구설치 기준과 교사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기준에 미달되는 학교의 설립ㆍ경영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이 규칙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하여야 한다.

**부칙** <제866호,2005. 11. 14.>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5호,2007. 3.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2008. 3. 4.>(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4@ 까지 생략
4#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 을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으로 한다.
4$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 <제4호,2008. 4. 28.>
이 규칙은 2008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호,2008. 8. 4.>
이 규칙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2013. 3. 2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을 “ 교육부장관 ” 으로 한다.
<56>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제9호,2013.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환경 평가 대상별 평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영 제10조에 따라 교육감에게 제출된 평가서의 평가 대상별 평가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9호,2014. 7.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호,2014. 12. 31.>(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단기 산업교육시설 운영 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호,2016. 9. 1.>

이 규칙은 2016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 별표 4의2, 별표 6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호,2017. 2. 3.>

이 규칙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1호,2017. 2.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호,2018. 3.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호,2018. 5. 25.>

이 규칙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호,2019. 7. 3.>

이 규칙은 2019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호,2019. 9. 17.>(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호,2019. 10. 24.>

이 규칙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0호,2022. 6. 29.>

이 규칙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6호,2025. 9. 19.>

이 규칙은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9. 9. 17.>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의 구체적인 기준(제2조관련)

| 구 분 | 기 준 |
|---|---|
| 1. 일반 시설 및 기구 등 | 사무용 책상·의자, 건강기록부 및 서류 보관장, 약장·기기 보관함, 소독(멸균)기, 냉·온장고, 물 끓이는 기구, 손전등, 가습기, 수도시설 및 세면대, 냉·난방시설, 통신시설, 컴퓨터·프린터기, 칠판·교육용 기자재 등 |
| 2. 환자안정용 기구 | 침대·침구류 및 보관장, 칸막이(가리개), 보온기구 등 |
| 3. 건강진단 및 상담용 기구 | 신장계·체중계·줄자·좌고계, 비만측정기, 시력표·조명장치·눈가리개·시력검사용 지시봉, 색각검사표, 청력계, 혈압계·청진기, 혈당측정기, 스톱워치(stopwatch), 검안경·검이경(귀보개)·비경, 펜라이트(penlight), 치과용 거울, 탐침·핀셋, 상담용 의자·탁자 및 진찰용 의자 등 |
| 4. 응급처치용 기구 | 체온계, 핀셋·핀셋통, 가위·의료용 쟁반·가제통·소독접시·상처소독용 이동식 수레, 부목·휴대용 구급기구·구급낭·들것·목발, 세안수수기·찜질기·켈리(지혈감자), 휴대용 산소기 및 구급처치용 침대 등 |
| 5.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검사용 기구 | 통풍건습계, 흑구온도계, 조도계, 가스검지기, 먼지측정기, 소음계 및 수질검사용 기구 등 |
| 6. 기 타 | 학생 및 교직원의 보건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 및 용품 등 |

비 고 : 교육감은 학교의 실정에 따라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9. 9. 17.>

## 환기·채광·조명·온습도의 조절기준과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3조제1항제1호관련)

1. 환기

가. 환기의 조절기준

환기용 창 등을 수시로 개방하거나 기계식 환기설비를 수시로 가동하여 1인당 환기량이 시간당 21.6세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나.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을 두는 경우에 한한다)

1) 환기설비는 교사 안에서의 공기의 질의 유지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충분한 외부공기를 유입하고 내부공기를 배출할 수 있는 용량으로 설치할 것

2) 교사의 환기설비에 대한 용량의 기준은 환기의 조절기준에 적합한 용량으로 할 것

3) 교사 안으로 들어오는 공기의 분포를 균등하게 하여 실내공기의 순환이 골고루 이루어지도록 할 것

4) 중앙관리방식의 환기설비를 계획할 경우 환기닥트는 공기를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재료로 만들 것

2. 채광(자연조명)

가. 직사광선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천공광에 의한 옥외 수평조도와 실내조도와의 비가 평균 5퍼센트 이상으로 하되, 최소 2퍼센트 미만이 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나. 최대조도와 최소조도의 비율이 10대 1을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 교실 바깥의 반사물로부터 눈부심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조도(인공조명)

가. 교실의 조명도는 책상면을 기준으로 300럭스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나. 최대조도와 최소조도의 비율이 3대 1을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 인공조명에 의한 눈부심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실내온도 및 습도

가. 실내온도는 섭씨 18도 이상 28도 이하로 하되, 난방온도는 섭씨 18도 이상 20도 이하, 냉방온도는 섭씨 26도 이상 28도 이하로 할 것

나. 비교습도는 3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로 할 것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신설 2019. 10. 24.>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기준(제3조제1항제1호의2 관련)

1. 체육장 등의 학교시설에 설치하는 인조잔디 및 탄성포장재는 「산업표준화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할 것
2. 제1호에 따라 설치한 인조잔디 및 탄성포장재의 파손 여부,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발생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학교시설 중 「환경보건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할 것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05.11.14>

##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제3조제1항제2호관련)

1. 상·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기준
   「수도법」 및 「하수도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설치·관리할 것
2. 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
   가. 화장실의 설치기준
      (1) 화장실은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하되, 학생 및 교직원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면적과 변기수를 확보할 것
      (2) 대변기 및 소변기는 수세식으로 할 것(상·하수도시설의 미비 또는 수질오염 등의 이유로 인하여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출입구는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
      (4) 대변기의 칸막이안에는 소지품을 두거나 옷을 걸 수 있는 설비를 할 것
      (5) 화장실안에는 손씻는 시설과 소독시설 등을 갖출 것
   나. 화장실의 유지·관리기준
      (1)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청소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할 것
      (2) 악취의 발산과 쥐 및 파리·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번식을 방지하도록 화장실의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는 주 3회 이상,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주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할 것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05.11.14>

## 폐기물 및 소음의 예방 및 처리기준(제3조제1항제3호관련)

1. 삭제 <2005.11.14>
2. 폐기물의 예방 및 처리기준
   가. 교지 및 교사는 청결히 유지하여 하며, 폐기물의 재활용 조치 등 폐기물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감량화에 노력할 것
   나. 학교내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 폐기물을 배출할 때에는 그 종류 및 성상에 따라 분리하여 배출할 것
3. 소음의 기준
   교사내의 소음은 55dB(A) 이하로 할 것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개정 2019. 10. 24.>

공기 질 등의 유지 · 관리기준(제3조제1항제3호의2 관련)

1. 유지기준

| 오염물질 항목 | 기준(이하) | 적용 시설 | 비 고 |
|---|---|---|---|
| 가. 미세먼지 | 35㎍/㎥ | 교사 및 급식시설 | 직경 2.5㎛ 이하 먼지 |
| | 75㎍/㎥ | 교사 및 급식시설 | 직경 10㎛ 이하 먼지 |
| | 150㎍/㎥ | 체육관 및 강당 | 직경 10㎛ 이하 먼지 |
| 나. 이산화탄소 | 1,000ppm | 교사 및 급식시설 | 해당 교사 및 급식시설이 기계 환기장치를 이용하여 주된 환기를 하는 경우 1,500ppm이하 |
| 다. 폼알데하이드 | 80㎍/㎥ | 교사, 기숙사(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로 한정한다) 및 급식시설 | 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 |
| 라. 총부유세균 | 800CFU/㎥ | 교사 및 급식시설 | |
| 마. 낙하세균 | 10CFU/실 | 보건실 및 급식시설 | |
| 바. 일산화탄소 | 10ppm | 개별 난방 교실 및 도로변 교실 | 난방 교실은 직접 연소 방식의 난방 교실로 한정 |
| 사. 이산화질소 | 0.05ppm | 개별 난방 교실 및 도로변 교실 | 난방 교실은 직접 연소 방식의 난방 교실로 한정 |
| 아. 라돈 | 148Bq/㎥ | 기숙사(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로 한정한다), 1층 및 지하의 교사 | 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 |
| 자. 총휘발성유기화합물 | 400㎍/㎥ | 건축한 때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학교 | 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 |
| 차. 석면 | 0.01개/cc |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석면 건축물에 해당하는 학교 | |
| 카. 오존 | 0.06ppm | 교무실 및 행정실 | 적용 시설 내에 오존을 발생시키는 사무기기(복사기 등)가 있는 경우로 |

| | | | |
|---|---|---|---|
| | | | 한정 |
| 타. 진드기 | 100마리/㎡ | 보건실 | |
| 파. 벤젠 | 30㎍/㎥ | 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 | 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 |
| 하. 톨루엔 | 1,000㎍/㎥ | 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 | 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 |
| 거. 에틸벤젠 | 360㎍/㎥ | 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 | 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 |
| 너. 자일렌 | 700㎍/㎥ | 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 | 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 |
| 더. 스티렌 | 300㎍/㎥ | 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 | 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 |

2. 관리기준

| 대상 시설 | 중 점 관 리 기 준 |
|---|---|
| 가. 신축 학교 | 1)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않을 것<br>2) 교사 안에서의 원활한 환기를 위하여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br>3) 책상·의자 및 상판 등 학교의 비품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할 것<br>4) 교사 안에서의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사용할 것 |
| 나. 개교 후 3년 이내인 학교 |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
| 다. 개교 후 10년 이상 경과한 학교 | 1) 미세먼지 및 부유세균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 관리할 것<br>2) 기존 시설을 개수 또는 보수하는 경우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않을 것<br>3) 책상·의자 및 상판 등 학교의 비품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할 것 |
| 라.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제 | 석면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 |

| | |
|---|---|
| 1항 후단에 따른 석면건축물에 해당하는 학교 | 리할 것 |
| 마. 개별 난방(직접 연소 방식의 난방으로 한정한다) 교실 및 도로변 교실 | 일산화탄소 및 이산화질소가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
| 바. 급식시설 |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및 낙하세균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
| 사. 보건실 | 낙하세균과 진드기가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14.7.7>

## 식기·식품 및 먹는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제3조제1항제4호 관련)

1. 식기·식품의 관리기준

가. 식품 등을 취급하는 재료보관실·조리실 등의 내부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나. 식품 등의 원료 및 제품중 부패·변질이 되기 쉬운 것은 냉동·냉장시설에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다. 식품 등의 보관·운반·진열시에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고 있는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냉동·냉장시설 및 운반시설은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시켜야 한다.

라. 식품 등의 제조·조리·가공 등에 직접 종사하는 자는 위생복·위생모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마. 식품 등의 제조·조리·가공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기구 및 음식기는 사용후에 세척·살균하는 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바.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목적으로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먹는물의 관리기준

가. 급수시설 설치

(1) 상수도 또는 마을상수도에 의하여 먹는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저수조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직접 수도꼭지에 연결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수도꼭지에 연결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지하수 등에 의하여 먹는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저수조 등의 시설을 경유하여야 한다.

나. 급수시설관리

(1) 급수시설·설비는 항상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급수시설에서 사용중인 저수조는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에 따른 청소 및 위생상태 점검을 실시하고,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지하수 등을 먹는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수의 수질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 시 정수 또는 소독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급수설비 및 급수관은 「수도법」 제3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소독 등위생조치, 수질검사 및 세척등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먹는물의 공급 등

학생 및 교직원에게 공급하는 먹는물은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라. 수질검사

(1) 저수조를 사용하는 학교의 경우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제4항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지하수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마. 나목 및 라목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학교의 규모 및 급수시설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급수시설의 청소 및 위생상태 점검주기와 수질검사(수질검사 대상이 아닌 학교에서 실시하는 수질검사를 포함한다)주기를 단축할 수 있다.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5. 9. 19.>

##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대한 점검의 종류 및 시기

(제3조제3항관련)

| 점검종류 | 점 검 시 기 |
|---|---|
| 일상점검 | ○매 수업일 |
| 정기점검 | ○매 학년 : 2회 이상. 다만, 제3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서 점검횟수를 3회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 |
| 특별점검 | ○감염병 등에 의하여 집단적으로 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br>○풍수해 등으로 환경이 불결하게 되거나 오염된 때<br>○학교를 신축·개축·개수 등을 하거나, 책상·의자·컴퓨터 등 새로운 비품을 학교시설로 반입하여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br>○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비고: 별표 4의2에 따른 오염물질 중 라돈에 대한 정기점검의 경우 최초 실시 학년도 및 그 다음 학년도의 점검 결과가 각각 유지기준의 5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기숙사(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로 한정한다) 및 1층 교사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점검의 주기를 늘릴 수 있다.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7] 삭제 <2017. 2. 3.>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 삭제 <2017. 2. 3.>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9] <개정 2016. 9. 1.>

## 응급처치교육의 계획·내용 및 시간 등(제10조제1항 관련)

1. 응급처치교육의 계획 수립 및 주기

가. 학교의 장은 매 학년도 3월 31일까지 응급처치교육의 대상·내용·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해당 학년도의 응급처치교육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나. 학교의 장은 교육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모든 교직원이 매 학년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학년도에 다른 법령에 따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받은 교직원에 대해서는 응급처치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2. 응급처치교육의 내용·시간 및 강사

| 내용 | | 시간 | 강사 |
|---|---|---|---|
| 가. 이론교육 | 1) 응급상황 대처요령<br>2)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시 주의사항<br>3) 응급의료 관련 법령 | 2시간 | 가) 의사(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br>나) 간호사(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와 관련된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한다)<br>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응급의료 또는 구조·구급 관련 분야(응급처치교육 강사 경력을 포함한다)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 |
| 나. 실습교육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 2시간 | |

비고

1.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응급처치교육의 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나 실습교육 2시간을 포함하여 최소 3시간 이상을 실시해야 한다.
2. 심폐소생술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실습교육을 위한 보조강사로 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삭제 <2017. 2. 3.>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17. 2. 3.>

[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17. 2. 3.>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 2025. 11. 11.] [법률 제21081호, 2025. 11. 11., 일부개정]

교육부 (학교시설개선팀) 044 - 203 - 7133

**제1조(목적)** 이 법은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시설의 설치ㆍ이전 및 확장을 위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허가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학교시설사업을 쉽게 함으로써 학교환경 개선과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학교시설 ”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교사대지(校舍垈地)ㆍ체육장 및 실습지
   나. 교사ㆍ체육관ㆍ기숙사 및 급식시설
   다. 그 밖에 학습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 학교시설사업 ” 이란 학교시설을 설치ㆍ이전하거나 확장하는 사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학교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이하 “ 학교 ” 라 한다)로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4조(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의 승인 등)** ①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ㆍ규모 및 재원 등이 포함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이하 “ 시행계획 ” 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6조에 따른 감독기관(이하 “ 감독청 ” 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미 학교시설사업을 마치고 제13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에서 합격한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안에서 학교시설의 건축ㆍ축조ㆍ대수선(大修繕) 또는 용도변경(이하 “ 건축등 ” 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의 시행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받은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자는 감독청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감독청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제5조 각 호의 해당 사항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려면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제5조 각 호의 해당 사항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학교시설사업을 마친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에서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려는 경우의 시행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감독청이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고 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4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작성하려는 경우 그 시행지 안에 제10조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이 필요한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이나 그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가 있으면 그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⑦ 감독청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제3항과 제6항에 따른 협의기관과 이해관계인에게 각각 통보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4항에 따른 협의를 마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⑧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과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학교시설의 건축등에 관한 승인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시행계획에 관하여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협의를 마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 해당 사항의 결정ㆍ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ㆍ동의ㆍ협의ㆍ신고 또는 해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개정 2008. 3. 21., 2008. 12. 31., 2009. 6. 9., 2010. 5. 31., 2011. 4. 14., 2014. 1. 14., 2022. 12. 27.>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3.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국가사업에 대한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4.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5.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국가사업의 협의
6.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7.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8.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안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9. 「도시개발법」 제9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10.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전문개정 2007. 12. 21.]

**제5조의2(학교시설의 건축등)** ① 제4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는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려면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청의 승인을 받거나 감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1.>

② 감독청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신설 2020. 12. 22.>

③ 감독청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하거나 제2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하면 이에 관한 사항을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22.>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려면 「건축법」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21., 2020. 12. 22.>

⑤ 제3항이나 제4항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감독청이 학교시설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가 있거나 「건축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한 것으로 본다.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이미 학교시설사업을 마친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안에서 학교시설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이나 제4항에 따른 통보가 있으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허가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개정 2008. 3. 21., 2020. 12. 22., 2025. 11. 11.>

⑥ 제5항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가 있거나 협의한 것으로 보는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6조, 제17조, 제20조제1항ㆍ제2항 및 제3항(한시적 학교시설인 임시교사 축조의 경우를 포함한다), 제21조제1항, 제25조, 제27조, 제79조 및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 감독청이 그 규정에 따른 허가 등을 한다.<개정 2008. 3. 21., 2020. 12. 22., 2023. 4. 18.>

⑦ 감독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학교시설에 대하여 이 법,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을 위반하였는지 조사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전문개정 2007. 12. 21.]

**제6조(학교시설 안에서의 행위에 관한 협의)**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협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한 후에 각급 행정기관이 학교시설(제4조에 따라

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은 학교시설 예정지를 포함한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거나 그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을 하려면 해당 학교의 감독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1.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및 수로와 그 부속물의 설치
2. 지반의 굴착ㆍ매립, 그 밖의 토지형질의 변경
[전문개정 2007. 12. 21.]

**제7조(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을 주관하는 행정기관은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이 있으면 학교시설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시설사업과 관련되는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8조(토지에의 출입 등)** ①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입목ㆍ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9조(손실보상)** ① 사업시행자는 제8조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으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1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10조(수용 및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학교시설사업을 위하여 그 시행지 안의 특정의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이나 그에 대한 소유권 외의 권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이나 그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에 시행계획의 승인은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으로 보고, 제4조제7항에 따른 고시는 같은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시로 보며, 재결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계획을 승인할 때에 정한 학교시설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11조(시행계획 승인의 취소 등)** 감독청은 사업시행자(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승인을 취소하거나 시행계획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부정한 수단으로 이 법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2. 학교시설사업을 계속 시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사업 시행이 현저히 늦추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07. 12. 21.]

**제11조의2(청문)** 감독청은 제11조에 따라 시행계획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12조(감독 등)** ① 감독청은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 또는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학교시설사업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13조(준공검사 등)** ① 사업시행자(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는 학교시설사업을 마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청에 신고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는 자가 이를 마치면 감독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감독청은 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에 합격한 학교시설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제5조 각 호의 해당 사항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통보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제1항 후단에 따라 사용승인을 한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발급하고 이를 제5조 각 호의 해당 사항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시설사업을 마치면 이에 관한 사항을 제5조 각 호의 해당 사항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통보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지 아니한다.

④ 감독청이 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의 결과를 고시하거나 사용승인서를 발급하고 이를 통보하면 해당 학교시설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검사에 합격된 것으로 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3항에 따라 학교시설사업의 완료에 관한 사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면 「건축법」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라 통보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8. 3. 21.>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으면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물대장 또는 공작물관리대장에 해당 사항을 지체 없이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14조(분묘등의 정리)** ① 감독청(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안의 분묘ㆍ비(碑) 및 이에 딸린 시설(이하 "분묘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매장자ㆍ소유자 또는 관리인이나 그 연고자(이하 "연고자등"이라 한다)에게 이장(移葬)이나 이전을 명할 수 있다.

② 감독청은 제1항에 따른 분묘등의 연고자등이 이장 또는 이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代執行)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 연고자등을 알 수 없는 분묘등이 있으면 감독청은 일정 기간 내에 분묘등을 이장하거나 이전할 것을 공고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분묘등을 이장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하면 감독청이 이장하거나 이전할 수 있다.

④ 감독청은 제1항에 따른 분묘등의 이장 또는 이전 명령에 따라 이장하거나 이전하는 자에게 그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대집행 비용과 제3항에 따른 이장 또는 이전 비용 및 제4항에 따른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⑥ 사업시행자는 분묘등의 정리를 위한 계획을 시행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15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전문개정 2007. 12. 21.]

**제16조** 삭제 <2000. 1. 28.>

**부칙** <제3634호,1982.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기존학교에 대한 도시계획법 적용에 있어서의 특례) 이 법 시행전에 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시설중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청이 아닌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 대한 도시계획사업 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한 학교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은 도시계획법 제12조ㆍ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 도시계획사업 시행의 허가 및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아 설치된 시설로 본다. 다만, 그 시설에 대한 지적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적고시에 의하여 이를 확정하되, 이 경우 지적고시 신청도면은 지적도 담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부칙** <제3740호,1984. 8. 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거나 협의를 거친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및 시행계획승인등의 고시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및 시행계획승인등의 고시로 본다.

**부칙** <제4268호,1990. 12. 27.>(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학교시설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중 " 문교부장관 " 을 " 교육부장관 " 으로 한다.

1^ 내지5) 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제4429호,1991. 12. 14.>(수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⑦생략

⑧학교시설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⑨내지1* 생략

**부칙** <제4881호,1995. 1. 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존의 학교시설에 대한 도시계획법 및 건축법 적용에 있어서의 특례) ①이 법 시행당시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학교의 학교시설중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허가,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의 지정되는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되거나, 건축법 제8조ㆍ제9조ㆍ제18조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ㆍ 건축신고ㆍ사용검사 또는 협의없이 건축등이 된 학교시설로서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확인된 것은 도시계획법 및 건축법

의 각 해당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되거나 건축등이 된 시설로 본다. 이 경우 그 시설에 대한 지적이 불확실한 때에는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적고시에 의하여 이를 확정하되, 지적고시 신청도면은 지적도 담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당해 학교 설치ㆍ경영자 소유의 대지(사용승인을 얻은 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한다)에 설치되거나 건축등이 된 시설일 것
2. 건축법 제33조ㆍ제37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적합한 시설일 것
3. 건축물의 구조안전ㆍ위생 및 내화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시설일 것
4.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시설일 것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학교의 설치ㆍ경영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설치ㆍ경영자를 제외한다)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적합확인신청서에 당해 학교시설에 관한 현황도면 및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감독청에 적합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감독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합확인이 신청된 학교시설이 제1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확인하는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제5조 각호의 해당 사항의 소관행정기관의 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설배치도, 건축목록조서, 건축물의 현황도면 및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각각 통보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학교시설이 제1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확인하는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제5조 각호의 해당 사항의 소관행정기관의 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각각 통보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학교시설은 도시계획법 및 건축법의 해당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에 합격된 것으로 보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한 때에는 건축법 제25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소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 승인을 포함한다 ”를 “ 승인과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5조의2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포함한다 ”로, “ 사용검사를 포함한다 ”를 “ 사용검사 및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를 포함한다 ”로 한다.

**부칙** <제5069호,1995. 12. 29.>(교육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⑧생략

⑨학교시설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3조중 “ 국민학교 ”를 각각 “ 초등학교 ”로 한다.

⑩내지 ⑮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5453호,1997. 12. 13.>(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5454호,1997. 12. 13.>(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5893호,1999. 2. 8.>(하천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2( 생략

3) 학교시설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2호중 " 하천법 제25조 " 를 " 하천법 제33조 " 로 한다.

3! 내지4&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6210호,2000. 1. 28.>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00호,2001. 1. 29.>(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3# 생략

3$ 학교시설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중 " 교육부장관 " 을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 으로 한다.

3% 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6656호,2002. 2. 4.>(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8>생략

<69>학교시설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0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토지수용법 제1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토지수용법 제16조제1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70>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6841호,2002. 12. 30.>(산지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5>생략

<66>학교시설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67>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7678호,2005. 8. 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72>생략

<73>학교시설사업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9호중 “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를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로 한다.

<74>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8014호,2006. 9. 27.>(하수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4( 생략

5)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하수도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51>내지 <57>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8338호,2007. 4. 6.>(하천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3( 생략

4)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4! 내지4*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8352호,2007. 4. 11.>(농지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8>생략

<69>학교시설사업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호 중 “ 농지법 제36조제1항 ”을 “ 「농지법」 제34조제1항 ”으로 한다.

<70>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8709호,2007. 12. 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52호,2008. 2. 29.>(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05> 까지 생략

<106>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을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으로 한다.

<10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974호,2008. 3. 21.>(건축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2> 까지 생략

<63>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전단 중 “ 「건축법」 제8조 및 제9조 ”를 “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 「건축법」 제25조제1항 ”을 “ 「건축법」 제29조제1항 ”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 「건축법」 제8조 또는 제9조 ”를 “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 ”로, “ 「건축법」 제25조제1항 ”을 “ 「건축법」 제29조제1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 「건축법」 제10조, 제11조,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 제21조, 제23조, 제27조제1항 및 제69조 ”를 “ 「건축법」 제16조, 제17조, 제20조제1항·제2항, 제21조제1항, 제25조, 제27조, 제36조제1항 및 제79조 ”로 한다.

제13조제4항 중 “ 「건축법」 제18조 ”를 “ 「건축법」 제22조 ”로, “ 「건축법」 제25조제3항 단서 ”를 “ 「건축법」 제29조제3항 단서 ”로 한다.

<64>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8976호,2008. 3. 21.>(도로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9조제83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하고.、、、<생략>、、、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2> 까지 생략

<83>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같은 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84>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9313호,2008. 12. 31.>(자연공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2$ 까지 생략

2%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 중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공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를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로 한다.

2^ 부터2( 까지 생략

**부칙** <제9763호,2009. 6. 9.>(산림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5> 까지 생략

<56>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보안림(保安林)의 지정해제"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

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 로 한다.

<57>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0331호,2010. 5. 31.>(산지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2> 까지 생략

<83>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호 중 “ 산지전용신고 ” 를 “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 로 한다.

<84>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10599호,2011. 4. 1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8>까지 생략

<79>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 도시관리계획 ” 을 “ 도시ㆍ군관리계획 ”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 도시계획시설사업 ” 을 각각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 으로 한다.

<80>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1690호,2013. 3. 23.>(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4>까지 생략

<75>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을 “ 교육부장관 ” 으로 한다.

<7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248호,2014. 1. 14.>(도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6>까지 생략

<117>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국가사업에 대한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18>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제17665호,2020. 12. 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17호,2022. 12. 27.>(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7>까지 생략

<88>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89>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19346호,2023. 4. 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081호,2025. 11. 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2. 12. 1.] [대통령령 제33004호, 2022. 11. 29., 타법개정]

교육부 (학교시설개선팀) 044 - 203 - 7133

**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0. 24.>

**제1조의2(기타시설)**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 4. 12., 2008. 10. 24., 2010. 6. 29.>

1. 학교의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안에 설치되는 강당
2. 「평생교육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학교의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안에 학생의 교양증진 및 직업교육을 위하여 설치되는 평생교육시설
3. 학교의 교사대지·체육장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및 특수학교의 실습지안에 설치되는 창고·수위실·옥외화장실·관사
4.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의 지하에 설치되는 주차시설
5. 폐교된 학교시설로서 초·중등교육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기관(이하 "감독청"이라 한다)이 학생의 체험학습 및 심신수련을 위한 용도로 직접 운영하는 시설
6.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3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복합시설

[본조신설 2000. 10. 18.]

**제2조(시행계획의 승인신청)** ①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시행계획(전자문서로 된 시행계획을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감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0. 18., 2004. 3. 17., 2006. 6. 12.>

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위치,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외의 권리명세 및 소유자와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의한 권리 기타 토지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것)
2.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의 조서(위치, 지번, 건물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소유권외의 권리명세 및 소유자와 전세권·저당권·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의한 권리 기타 건물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것)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정착물(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조서(위치,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외의 권리명세 및 소유자와 기타 정착물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

재한 것)

4. 삭제<2008. 12. 31.>

5. 삭제<2006. 6. 12.>

6. 삭제<2006. 6. 12.>

7. 학교시설사업 시행지의 위치도

8. 시행계획의 평면도

9. 개략설계도서

10. 분묘등의 정리계획(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등을 정리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시행계획을 당초의 시행계획과 대비하여 작성한 변경계획에 제1항 각호의 서류중 변경되는 계획과 관련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승인신청 또는 변경승인신청을 받은 감독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승인의 경우에는 변경되는 계획과 관련되는 서류만 확인한다.<개정 2008. 12. 31., 2010. 5. 4.>

1.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등기부 등본

2. 토지대장 등본 또는 임야대장 등본

3. 토지이용계획확인원

4. 지적도 또는 임야도 등본

④ 감독청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20일(제4조제3항에 따라 소관행정기관의 장이 의견을 제출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승인 여부 또는 승인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승인 여부 또는 승인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 4. 5.>

⑤ 감독청은 제4항 전단에 따라 승인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승인 여부 통보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1. 4. 5.>

**제3조(경미한 시행계획등)** ①법 제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토지의 분할·합병·등록전환·신규등록 또는 확정측량등의 지적측량으로 인한 면적변경

2. 교사대지·체육장 및 실습지의 위치변경

3. 건축물당 연면적 1천200제곱미터의 범위안에서의 면적변경

4. 학교시설 배치계획의 조정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계획의 변경

5. 6월의 범위내에서의 사업시행기간의 연장

②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의 개요를 감독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소관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받은 감독청은 승인에 필요한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위하여 지체없이 시행계획 및 제2조제1항 각호의 서류(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할 사항에 관한 서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본을 법 제5조 각호의 해당 사항의 소관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내주어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을 작성하거나 이를 변경하여 법 제5조 각호의 해당 사항의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계획 및 제2조제1항 각호의 서류의 사본을 소관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내주어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 요청을 받은 소관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의견서를 보내주어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재원 및 시행기간등의 사업개요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제6조(의견서의 제출등)** ①감독청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 있는 자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수용 또는 사용이 필요한 토지、건축물 및 토지의 정착물에 관한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와 제5조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간 그 서류를 일반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②감독청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한 때에는 그 공고의 내용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토지소유자등 이해관계 있는 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통지받을 자의 주소、거소 기타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토지의 소유자등 이해관계 있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내에 감독청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7조(통보 및 고시)** 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청이 시행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제2조제4항 후단에 따라 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계획에 대한 협의를 마친 때에는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와 제5조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법 제5조 각호중 해당 사항의 소관행정기관의 장 및 토지 소유자등 이해관계 있는 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통보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통보받을 자의 주소、거소 기타 통보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제8조(건축ㆍ대수선 및 용도변경의 승인)**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을 건축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하려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인신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시설의 건축 또는 대수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5. 10.>

②감독청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 승인의 대상이 되는 학교시설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인 경우에는 미리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3. 8. 21., 2008. 10. 24., 2017. 1. 26., 2022. 11. 29.>

③ 감독청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1. 4. 5.>

④감독청은 법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제3항에 따라 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1. 1. 29., 2003. 8. 21., 2008. 2. 29., 2011. 4. 5., 2013. 3. 23.>

**제9조(축조 등의 신고)** ①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학교시설 외의 학교시설과 「건축법」 제83조에 따라 그 축조에 관하여 「건축법」이 준용되는 옹벽등 학교시설인 공작물의 축조를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 29., 2003. 8. 21., 2008. 2. 29., 2008. 10. 29., 2013. 3. 23.>

②감독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3. 8. 21., 2019. 7. 2.>

**제10조(건축등의 승인ㆍ신고사항의 변경)** ①법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의 건축ㆍ축조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이하 "건축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승인을 얻었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변경승인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 29., 2003. 8. 21., 2008. 2. 29., 2013. 3. 23.>

②제8조의 규정은 건축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의 변경승인신청에, 제9조의 규정은 건축등의 변경신고에 각각 준용한다.<개정 2003. 8. 21.>

**제11조(건축등의 승인ㆍ신고사항의 통보)** 감독청은 법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등에 관한 승인 또는 변경승인(제8조제3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건축등의 승인서ㆍ변경승인서 또는 신고서ㆍ변경신고서 사본을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1. 4. 5.>

**제12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시설의 건축등)**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학교시설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인 경우에는 미리 관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얻은 후 교육부령이 정하는 건축등의 계획서를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 29., 2008. 2. 29., 2008. 10. 24., 2013. 3. 23., 2017. 1. 26., 2022. 11. 29.>

**제13조(시정조치의 통보)** 감독청은 법 제5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의 건축등에 관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정조치의 결과를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0. 18.>

1. 건축등을 하는 위치
2. 건축등을 하는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법규위반의 내용
4. 시정조치 명령서의 사본

**제14조(학교시설안에서의 행위에 관한 협의)**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승인 또는 협의가 있은 후에 각급 행정기관의 장이 학교시설안에서 법 제6조 각호의 사업을 하거나 허가 기타의 처분을 하기 위하여 그 학교의 감독청과 협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그 감독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1. 사업 또는 시설의 종류
2. 사업에 관한 허가등의 처분기관
3. 사업을 시행하는 자의 성명 및 주소
4. 사업 또는 시설에 필요한 면적 또는 규모
5. 사업 또는 점용의 기간 및 목적
6. 복구대책
7.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주 단면도를 포함한다)
8. 지적도(시설의 계획선을 명시한 것)

**제15조(우선 설치할 공공시설)** 법 제7조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 ” 이라 함은 전기시설ㆍ통신시설ㆍ가스시설 및 지역난방시설을 말한다.

**제16조(시행계획 승인의 취소등)** 감독청은 법 제11조에 따라 시행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시행계획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한 때에는 협의를 한 소관 행정기관의 장 및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 있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통보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통보받을 자의 주소ㆍ거소, 그 밖에 통보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 10. 24.>

1. 학교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ㆍ면적 및 규모
4. 조치사유

**제17조** 삭제 <1997. 12. 31.>

**제18조(준공검사등)** ①사업시행자 및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는 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시행자 및 건축등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학교시설사업(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완료한 때에는 완료한 날부터 7일이내에 감독청에 학교시설사업의 완료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감독청이 제1항에 따른 학교시설사업의 완료에 관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준공검사(건축등의 경우에는 사용승인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실시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에 합격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자 및 건축등을 하는 자에게 교육부령이 정하는 준공검사증명서(건축등의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독청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필증의 발급을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0. 10. 18., 2001. 1. 29., 2008. 2. 29., 2008. 10. 24., 2013. 3. 23., 2017. 1. 26., 2022. 11. 29.>

③감독청은 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한 때에는 법 제5조 각 호의 해당 사항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는 준공검사 합격의 사실을 통보하고,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 10. 24.>

1. 준공검사필증 사본
2. 건축물대장기재신청서
3. 건축물 현황도면

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시설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법 제5조 각호의 해당 사항의 소관행정기관의 장에게는 완료의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건축물대장기재신청서
2. 건축물 현황도면

**제19조(이장등의 공고)** ①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공고는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해야 한다. 이 경우 공고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0. 11. 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분묘등의 위치 및 지번, 이장 또는 이전사유 기타 이장 또는 이전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0조(이장비의 납부등)** ①감독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학교시설사업 시행지안의 분묘등의 이장 또는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금액을 추산하여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7. 2.>

②감독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납부받은 금액이 그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부족되는 금액을 즉시 납부받아야 하며, 지급을 완료한 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돌려주어야 한다.

**제21조(권한의 위임)** ①교육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관한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6. 2. 22., 2001. 1. 29., 2003. 8. 21., 2008. 2. 29., 2013. 3. 23.>

1.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작성 및 협의
2. 법 제4조제6항 및 이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용할 토지ㆍ건물등 조서의 공고 및 열람조치와 이해관계인에 대한 공고내용등의 통지 및 이에 관한 의견의 접수
3. 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협의에 관한 관계기관등에의 통보 및 고시
4. 법 제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의 건축등에 관한 통보
5.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안에서의 행위에 관한 협의
6.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사업 완료의 통보 및 고시
7. 법 제14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묘등의 정리에 관한 사항

② 삭제<2000. 10. 18.>

**제22조** 삭제 <2016. 12. 30.>

**부칙** <제14713호,1995. 7. 6.>

①(시행일) 이 영은 1995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②(기존학교에 대한 도시계획법 적용에 있어서의 특례) 법률 제3634호 부칙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이라 함은 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제2조, 제3조제1항 내지 제3항ㆍ제5항 및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적합한 시설로서 감독청이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시설의 감축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감독청이 인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③(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감독청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ㆍ명령ㆍ조치등과 감독청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등은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920호,1996. 2. 22.>(교육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민학교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 내지 ⑪생략

⑫학교시설사업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 국민학교 "를 각각 " 초등학교 "로 한다.

⑬ 내지3@ 생략

**부칙** <제15598호,1997. 12. 31.>(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81호,2000. 10. 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15호,2001. 1. 29.>(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54>생략

<55>학교시설사업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전단、제3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2조 및 제18조제2항 전단중 " 교육부령 "을 각각 " 교육인적자원부령 "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중 " 교육부장관 "을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으로 한다.

<56>내지 <152>생략

**부칙** <제18088호,2003. 8. 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12호,2004. 3. 17.>(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07호,2006. 6. 12.>(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03호,2007. 4. 12.>(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학교시설 사업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3호중 " 실업계고등학교 "를 " 전문계고등학교 "로 한다.

⑦내지 ⑫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0740호,2008. 2. 29.>(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6> 까지 생략

<57> 학교시설사업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ㆍ제3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2조, 제18조제2항 전단 중 " 교육인적자원부령 "을 각각 " 교육과학기술부령 "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을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으로 한다.

<58>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 <제21091호,2008. 10. 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098호,2008. 10. 29.>(건축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3# 까지 생략

3$ 학교시설사업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 건축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를 “ 「건축법」 제83조에 따라 ”로, “ 건축법이 ”를 “ 「건축법」이 ”로 한다.

3% 부터3* 까지 생략

**부칙** <제21215호,2008. 12. 31.>(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151호,2010. 5. 4.>(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9> 까지 생략

<180>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을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으로 한다.

<181>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제22234호,2010. 6. 29.>(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3호 중 “ 전문계고등학교ㆍ특수학교 ”를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및 특수학교 ”로 한다.

⑨ 생략

**제8조** 및 제9조 생략

**부칙** <제22838호,2011. 4.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계획 승인 등의 처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4항ㆍ제5항, 제7조, 제8조제3항ㆍ제4항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이나 건축ㆍ대수선 및 용도변경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423호,2013. 3. 2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6>까지 생략

<87>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2조 및 제18조제2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88>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 <제25840호,2014. 12. 9.>(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7130호,2016. 5. 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751호,2016. 12. 30.>(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7810호,2017. 1. 26.>(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8조제2항 후단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 및 ⑫ 생략

**부칙** <제29950호,2019. 7. 2.>(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176호,2020. 11. 24.>(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004호,2022. 11. 29.>(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3% 까지 생략

3^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으로 한다.

제12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후단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으로 한다.

3& 부터3( 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19. 9. 17.] [교육부령 제188호, 2019. 9. 17., 타법개정]

교육부 (학교시설개선팀) 044 - 203 - 713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학교시설사업촉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등의 승인신청)** ①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의 건축 또는 축조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교시설건축ㆍ축조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교육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기관(이하 “감독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6. 26.>

1. 건축할 대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지적도 1부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
3. 건축법시행규칙 별표 2의 구분란 1 및 3의 도서 각 1부

②제1항에 따른 학교시설건축ㆍ축조승인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06. 6. 26.>

③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 대수선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학교시설대수선승인신청서에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층의 평면도 및 단면도 각1부를 첨부하여 감독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 6. 26.>

④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용도변경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학교시설용도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 6. 26.>

1.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전후의 평면도 각 1부
2.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ㆍ내장ㆍ방화 또는 피난건축설비에 관한 도서 각 1부

**제3조(건축등의 승인서식등)** ①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의 건축ㆍ축조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이하 “건축등”이라 한다)의 승인서는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감독청은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의 건축 또는 축조의 승인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등승인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건축등의 신고)**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 건축등의 신고서 및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 건축등의 신고확인증은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9. 9.

17.>

**제5조(건축등의 승인ㆍ신고사항의 변경)** ①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등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초의 건축등승인서 사본 1부
2. 변경되는 사항의 해당도면 1부
3. 변경되는 사항의 세부현황 1부

②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등변경신고서에 당초에 신고한 건축등 신고확인증 사본을 첨부하여 감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9. 17.>

③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등변경승인서 및 변경신고확인증은 각각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19. 9. 17.>

**제6조(건축등의 계획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건축등의 계획서를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대지위치
2. 대지면적
3. 건축면적 및 건폐율과 연면적 및 용적율
4. 건축구조 및 층수
5. 건축물의 용도별 및 층별면적
6. 주요 마감재료 및 특기사항

**제7조(학교시설의 건축등 착공신고등)** ①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는 자가 법 제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청에게 제출하는 착공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②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는 자가 법 제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계속하기 위하여 받아야 하는 중간검사신청서 및 중간검사필증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학교시설사업의 준공검사등)** ①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자(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학교시설사업(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완료한 때에는 감독청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시설사업의 완료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학교시설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4. 학교시설사업의 규모 및 사업비
5. 학교시설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
6. 학교시설사업 시공회사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7. 학교시설사업의 완료 연월일
8. 준공사진

②감독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 학교시설사업의 완료 여부를 검사하여 준공검사에 합격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학교시설사업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학교시설의 준공검사등)** ①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는 자는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학교시설준공신고서를 감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감독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 학교시설 건축등의 완료 여부를 검사하여 준공검사에 합격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부칙** <제670호,1995. 11.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2호,2006. 6. 26.>(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의 감축을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호,2014. 6. 10.>(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4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96호,2016. 4. 20.>(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88호,2019. 9. 17.>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6.10>

# 학교시설건축 · 축조승인신청서 및 승인서

* 제2면 및 제3면의 안내문과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과 □안은 표기하지 아니합니다.

(3쪽중 제1쪽)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승인번호 □□-□-□□□ |
|---|---|---|---|

| | | |
|---|---|---|
| 건축주 | ①성명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 | 주소 (전화번호 ) | |
| 설계자 | ②성명 (서명 또는 인) | 면허번호 |
| | 사무소명 | 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대지조건 | 위치 □□-□□□-□□-□□ | |
| | 지역 □□□ | 지구 □□□ |
| | 지목 □□ | 면적 ㎡ |
| 용도 | ③주용도 □□□ | ④부속용도 |

| | | | |
|---|---|---|---|
| 규모 | ⑤건축면적 ㎡ | ⑥연면적 ㎡ | 지하면적 ㎡ |
| | ⑦건폐율 % | ⑧용적률 % | 건축물최고높이 m |
| | 층수(지상, 지하) | | |

| | | | | |
|---|---|---|---|---|
| ⑨구조 | 공사종류 □ | | | |
| 착공예정일 | 준공검사예정일 | | | |
| 오수정화시설 | 주차장 | 옥내 | 자주식 대 ㎡ | |
| | | | 기계식 대 ㎡ | |
| 건축물의형태 | | 옥외 | 자주식 대 ㎡ | |
| | | | 기계식 대 ㎡ | |
| ⑩기술사의 확인 대상인 | 구조기술사 성명 (서명 또는 인) | | (전화 ) | |

(3쪽중 제2쪽)

| | | |
|---|---|---|
| 신청인<br>제출서류 | 1. 건축할 대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지적도 1부<br>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br>3.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구분란 1 및 3의 도서 각 1부 | 수수료 |
| 담당 공무원<br>확인사항 | 1. 토지(임야)대장<br>2. 토지등기부등본 | 없 음 |

## 승 인 서

승인 제 호

이 승인서 및 첨부서류에 기재한 학교시설의 건축·축조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에 적합하므로 학교시설의 건축·축조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교육감 · 교육장) (서명 또는 인)

## 건축승인 신청안내

| | | | |
|---|---|---|---|
| 제출하는 곳 | | 처리부서 | |
| 수수료 | 없 음 | 처리기간 | |
| 근거법령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 | |

##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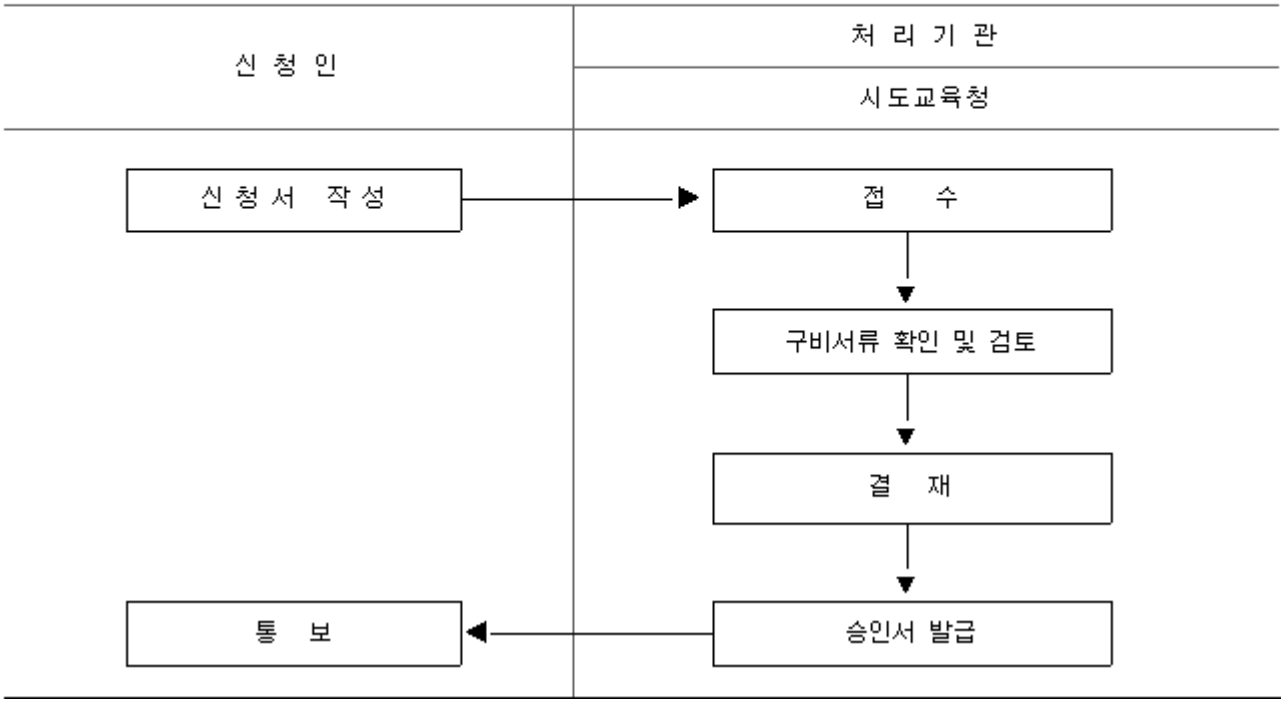

(3쪽중 제3쪽)

# 신청 학교시설의 동별개요

( )면중 면

| 주용도 | | | | 주요구조 | | |
|---|---|---|---|---|---|---|
| 층수 | 지하( )/지상( )층 | | | | | |
| 구분 | 계 | 층 | 층 | 층 | 층 | 층 | 층 |
| 바닥면적(㎡) | | | | | | | |
| 용도 | | | | | | | |
| 구분 | 층 | 층 | 층 | 층 | 층 | 층 | 층 |
| 바닥면적(㎡) | | | | | | | |
| 용도 | | | | | | | |
| 구분 | 층 | 층 | 층 | 층 | 층 | 층 | 층 |
| 바닥면적(㎡) | | | | | | | |
| 용도 | | | | | | | |
| 직통계단수 | 개 | 승용승강기 대수 | | 대 | 비상용승강기 대수 | | 대 |

유의사항

※ 작성방법(신청건축물의 동별개요는 동마다 따로 작성하십시오)

1. ①·②·⑩란 및 신청인란에는 성명을 기재하고, 도장 대신에 서명을 하셔도 됩니다.

2. ③ 및 ④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부속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그 면적이 주된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의 50%미만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합니다.

가. 건축물의 설비·대피 및 위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나. 사무·작업·집회·물품저장·주차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다. 구내식당·구내탁아소·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및 구내소각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라. 관계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의무화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

3. ⑤"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 또는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투영면적으로 하되, 지상 1미터 이하의 건축물은 건축면적에서 제외되며 처마·차양·부연등이 1미터 이상 돌출된 경우에는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으로 합니다.

4. ⑥"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이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합니다.

5. ⑦"건폐율"은 건축면적÷대지면적×100(%)로 산정합니다.

6. ⑧"용적율"은 연면적(지하층의 면적과 지상층의 부속주차면적은 제외)÷대지면적×100(%)로 산정합니다.

7. ⑨"구조"는 목조·조적조·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 기타로 기재하되, 벽체와 지붕의 구조가 다른 경우에는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6.10>

# 학교시설대수선 승인신청서 및 승인서

* 제2면 안내문과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과 □안은 표기하지 아니합니다. (2쪽중 제1쪽)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승인번호 □□-□-□□□ |
|---|---|---|---|

| | | |
|---|---|---|
| 건축주 | 성명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설계자 | 성명 (서명 또는 인) | 면허번호 |
| | 사무소명 | 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건축물 개요 | 위치 | □□-□□□-□□-□□ |
| | 건축면적 ㎡ | 연면적 ㎡ |
| | 주용도 | 부속용도 |
| | 구조 | 층수(지상, 지하) |
| | 공사면적 ㎡ | |
| 대수선 내용 | 1. 내력벽의 벽면적 ( )㎡를 해체하여 (수선·변경)한다.<br>2. 기둥 ( )개를 해체하여 (수선·변경)한다.<br>3. 보 ( )개를 해체하여 (수선·변경)한다.<br>4. 지붕틀 ( )개를 해체하여 (수선·변경)한다.<br>5. (방화벽, 방화구획)을 위한 ( )바닥 ( )벽을 해체하여 (수선·변경)한다.<br>6. (주계단·피난계단·특별계단)을 해체하여 (수선·변경)한다.<br>7. 미관지구내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색체·담장)을 변경한다.<br>8. 기타 : |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학교시설 대수선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교육감 · 교육장** 귀하

| | |
|---|---|
| 첨부서류 | 대수선 층의 평면도 및 단면도 각 1부 |

## 승 인 서

승인 제 호

이 승인서 및 첨부서류에 기재한 대수선계획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에 적합하므로 학교시설의 대수선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교육감 · 교육장)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2쪽중 제2쪽)

| 대수선승인 신청안내 | | | |
|---|---|---|---|
| 제출하는 곳 | | 처리부서 | |
| 수수료 | | 처리기간 | 7일 |
| 근거법령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 | |

## 유의사항

1. 건축물개요는 "건축물 대장"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2. 대수선이라 함은 내력벽 30제곱미터 이상, 기둥 3개 이상, 보 3개 이상, 지붕틀 3개 이상, 방화벽 또는 방화구역을 위한 바닥 또는 벽,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과 미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색채 또는 담장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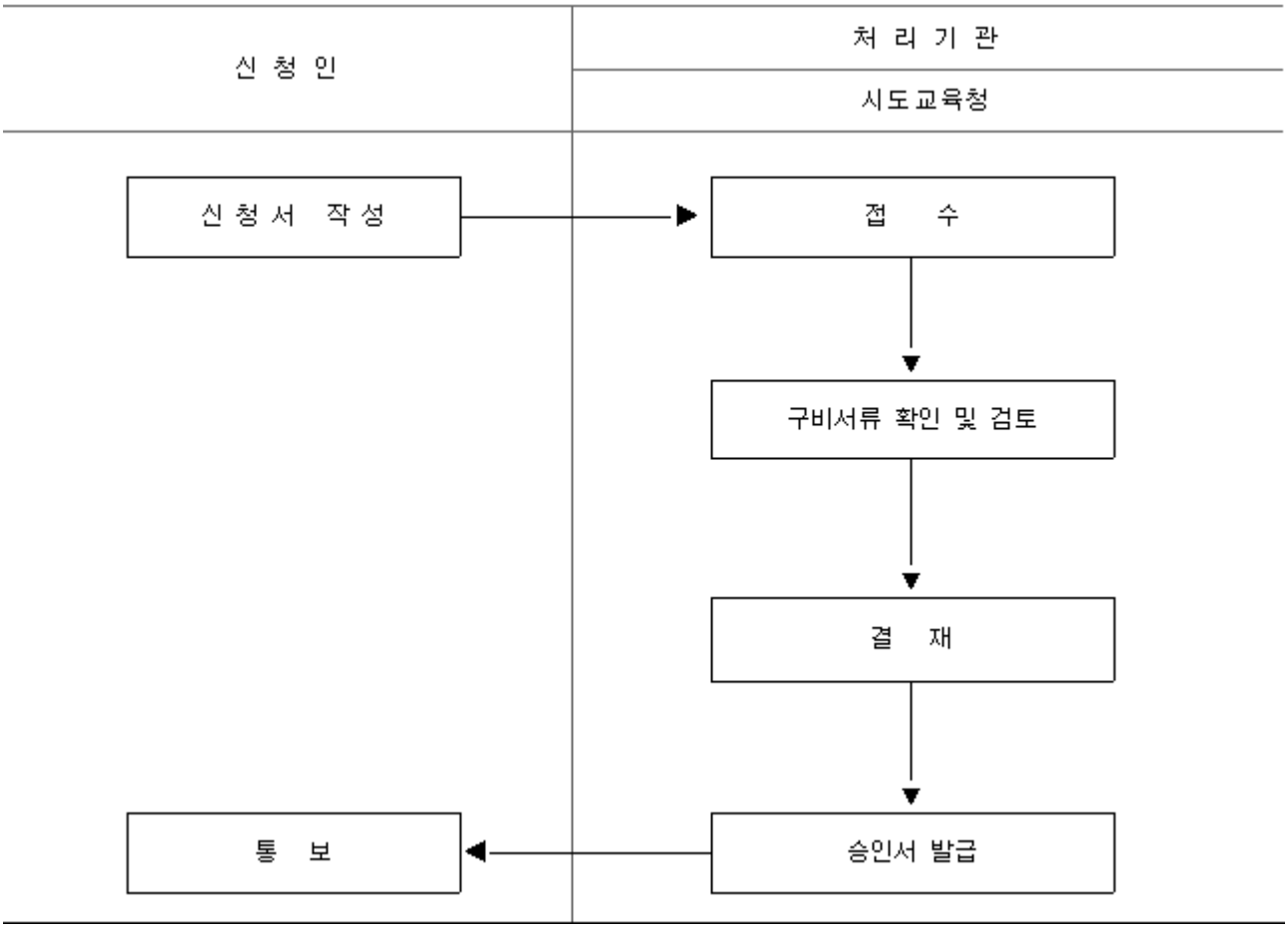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6.10>

# 학교시설용도변경승인신청서 및 승인서

* 제2면의 신청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과 □안은 표기하지 아니합니다. (2쪽중 제1쪽)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자 | 승인번호 □□-□-□□□ |
|---|---|---|---|

| | | |
|---|---|---|
| 건축주 | 성명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설계자 | 성명 (서명 또는 인) | 면허번호 |
| | 사무소명 | 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 |
|---|---|
| 대지위치 | □□-□□□-□□-□□ |
| 지역 | 지구 |
| ①건축면적 ㎡ | ②연면적 ㎡ |
| ③주용도 | ④부속용도 |
| 구조 | 층수(지상, 지하) |
| | 준공검사예정일 |

| ⑤용도 변경 내용 | 구분 층별 | 변경 전 | | 변경 후 | |
|---|---|---|---|---|---|
| | | 용 도 | 면적(㎡) | 용 도 | 면적(㎡) |
| | | | | |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용도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교육감 · 교육장** 귀하

| | |
|---|---|
| 첨부서류 | 1.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 각 1부<br>2.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내장·방화 또는 피난건축설비에 관한 도서 각 1부 |

## 승인서

승인 제 호

이 승인서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기재한 용도변경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적합하므로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교육감 · 교육장)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2쪽중 제2쪽)

| 용도변경승인 신청안내 | | | |
|---|---|---|---|
| 제출하는 곳 | | 처리부서 | |
| 수수료 | | 처리기간 | |
| 근거법령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 | |

**유의사항**

1. ①"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 또는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투영면적을 말하며, 지상 1미터이하의 건축물은 건축면적에서 제외되며 처마·차양·부연 등이 1미터 이상 돌출된 경우에는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을 말합니다.
2. ②"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합니다.
3. ③·④및 ⑤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구분에 따라 작성하십시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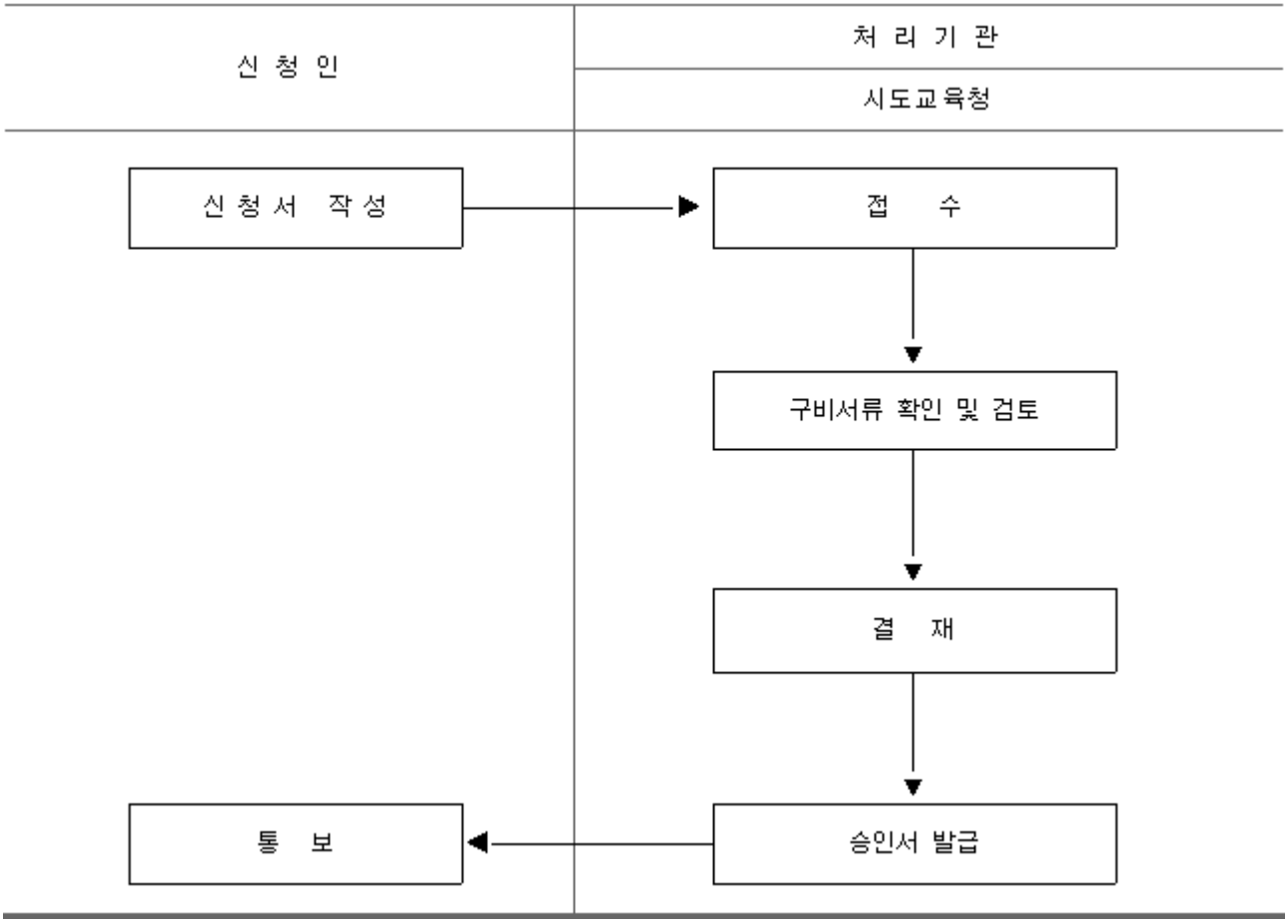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6.10>

# 건축등승인대장

| 연번 | 승인번호 | 위 치 | 건 축 주 | | 지역지구 |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층별용도 및 면적 | 주차대수 | 설계자 | 시공자 | 착 공 일 |
|---|---|---|---|---|---|---|---|---|---|---|---|---|
| | 승 인 일 | 건 물 명 | 주 소 | 성 명 | | | 연 면 적 | | | 감리자 | 대행자 | 준공검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9. 9. 17.>

# 건축등신고서 및 신고확인증

* 제2면 작성방법과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안은 표기하지 아니합니다.. (2쪽중 제1쪽)

| | | |
|---|---|---|
| 건축구분 | [ ] 신축 [ ] 증축 [ ] 개축 [ ] 재축 [ ] 대수선 [ ] 기타 | |
| 건축주 | 성명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 | 주소 (전화번호 ) | |
| | ①대지의 권리관계 | |
| 대지위치 | | |
| 대지지역 □□□ | 대지지구 □□□ | |
| 대지면적 ㎡ | | |
| ②주용도 □□□ | ③부속용도 | |
| ④건축면적 ㎡ | ⑤연면적 ㎡ | |
| ⑥건폐율 % | 공사면적 지상( )층, 지하( )층 | |
| ⑦용적율 % | 층수(지상, 지하) | |
| ⑧구조 □ | 공사종류 | |
| 착공예정일 | 준공검사예정일 | |
| 기타특기사항 | |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교육감 · 교육장** 귀하

| | |
|---|---|
| 첨부서류 | 없음 |

## 건축등의 신고확인증

제 호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확인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교육감 · 교육장)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2쪽중 제2쪽)

| 건축등의 신고안내 | | | |
|---|---|---|---|
| 제출하는 곳 | | 처리부서 | |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3일 |
| 근거법령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 |

## 유의사항

1. ①란은 건축주와 대지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한하여 기재하며, 건축주가 확보한 권리명(예 : 사용승낙, 지상권 등)을 기재합니다.
2. ② 및 ③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구분에 따라 기재합니다.
3. ④"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 또는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투영면적으로 하며, 지상 1미터 이하의 건축물은 건축면적에서 제외되며 처마·차양·부연 등이 1미터 이상 돌출된 경우에는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으로 합니다.
4. ⑤"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합니다.
5. ⑥"건폐율"은 건축면적÷대지면적×100(%)로 산정합니다.
6. ⑦"용적율"은 연면적(지하층의 면적과 지상층의 부속주차면적은 제외)÷대지면적×100(%)로 산정합니다.
7. ⑧"구조"는 목조·조적조·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 기타로 기재하되, 벽체와 지붕의 구조가 다른 경우에는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배치도 | 작성요령 |
|---|---|
| | 1.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단선으로 대지의 크기에 따라 축척을 선택하여 그리십시오.<br>2. 방위표시와 축척을 표기하십시오.<br>3. 대지에 접한 도로너비 및 길이를 표기하십시오.<br>4. 기존건축물의 위치를 표기하십시오.<br>5. 건축물이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우는 거리를 표기하십시오. |
| **평면도** | **작성요령** |
| | 1.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단선으로 그리십시오.<br>2. 방위표시와 축척을 표기하십시오.<br>3. 각방마다 쓰이는 용도를 그리십시오.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 | 신청서류 접수 | → | 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 | → | 결 재 | → | 승인서 발급 | → | 통 보 |
|---|---|---|---|---|---|---|---|---|---|---|
| 신청인 | | 시·도교육청 | | 시·도교육청 | | 시·도교육청 | | 시·도교육청 | | |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4.6.10>

# 건축등변경승인신청서 및 승인서

* 색상이 어두운 칸과 □안은 표기하지 아니합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승인번호 □□-□-□□□ |
|---|---|---|---|

| | | |
|---|---|---|
| 건축주 | 성명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 | 주소 (전화번호 ) | |

| | | |
|---|---|---|
| 설계자 | 성명 (서명 또는 인) | 면허번호 |
| | 사무소명 | 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변경내용 | 당 초 | | 변 경 | |
|---|---|---|---|---|
| | 구분 | 내 용 | 구분 | 내 용 |
| | | | |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대수선·용도변경)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교육감 · 교육장** 귀하

| | | |
|---|---|---|
| 첨부서류 | 1. 당초의 건축등승인서 사본 1부<br>2. 변경되는 사항의 해당 도면 1부<br>3. 변경되는 사항의 세부현황 1부 | 수수료<br>없 음 |

## 승인서

승인 제 호

이 승인서 및 첨부서류에 기재한 학교시설의 건축계획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적합하므로 학교시설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을 변경승인합니다.

년 월 일

(교육감 · 교육장) (서명 또는 인)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 | 신청서류 접수 | → | 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 | → | 결 재 | → | 승인서 발급 | → | 통 보 |
|---|---|---|---|---|---|---|---|---|---|---|
| 신청인 | | 시·도교육청 | | 시·도교육청 | | 시·도교육청 | | 시·도교육청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9. 9. 17.>

# 건축등변경신고서 및 변경신고확인증

* [ ]은 표기하지 아니합니다.

| | |
|---|---|
| 건축구분 | [ ] 신축 [ ] 증축 [ ] 개축 [ ] 재축 [ ] 대수선 [ ] 기타 |

| | | |
|---|---|---|
| 건축주 | 성명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 | 주소 (전화번호 ) | |
| | 대지의 권리관계 | |

| 변경내용 | 당 초 | | 변 경 | |
|---|---|---|---|---|
| | 구 분 | 내 용 | 구 분 | 내 용 |
| | | | |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교육감 · 교육장** 귀하

| | |
|---|---|
| 첨부서류 | 당초의 건축등 신고확인증 사본 1부 |

## 건축등의 신고확인증

승인 제 호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신고확인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교육감 · 교육장)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 | 신청서류 접수 | → | 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 | → | 결 재 | → | 승인서 발급 | → | 통 보 |
|---|---|---|---|---|---|---|---|---|---|---|
| 신청인 | | 시·도교육청 | | 시·도교육청 | | 시·도교육청 | | 시·도교육청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4.6.10>

# 학교시설착공신고서

※ 제2쪽의 작성방법 및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표기하지 아니합니다. (2쪽중 제1쪽)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승인번호 □□-□-□□□ |
|---|---|---|---|

| | | |
|---|---|---|
| 건축장소 | | |
| 건축주 | 성명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공사 감리자 | 성명 (서명 또는 인) | 면허번호 |
| | 사무소명 | 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공사 시공자 | 성명 또는 상호 (서명 또는 인) | 건설업 면허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현장 관리인 | ①성명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 | 자격종별 | 면허번호 |
| | ②주소 | (전화번호 ) |
| 착공예정일 | | 준공검사예정일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교육감 · 교육장** 귀하

| | |
|---|---|
| 첨부서류 | 흙막이판구조도면 1부(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

| 착공신고 안내 | | | |
|---|---|---|---|
| 제출하는 곳 | | 처리부서 | |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1일 |
| 근거법령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 | 신청서류 접수 | → | 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 | → | 결 재 | → | 통보 |
|---|---|---|---|---|---|---|---|---|
| 신청인 | | 시·도교육청 | | 시·도교육청 | | 시·도교육청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2쪽중 제2쪽)

# 동별건축내용

20 동별번호□□

| | |
|---|---|
| ③건축주 | 1. 학교법인 2. 지방자치단체 3. 국가기관 4. 기타 □ |
| ④공사종류 | 1. 신축 2. 증축 3. 개축 4. 재축 5. 이전 6 대수선 □ |
| ⑤건축물의 용도 | (　　)용 건축물 |
| ⑥건축물의 구조 | 1. 목조 2. 조적조 3. 철근콘크리트 4. 철골조<br>5. 철골철근콘크리트 6 기타 □ |
| 공사부분의 면적 | □,□□□,□□□㎡ |
| 신축공사의 경우 층수 | 지하층의 층수는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층 |
| 신축공사의 경우 대지면적 | (신축건물이 2동 이상인 경우는 1회만 기입합니다)<br>□□□,□□□,□□□㎡ |

유의사항

1. ① 내지 ②란의 "현장관리인"이라 함은 해당 공사기간 동안 공사현장에서 건축주와 시공자 사이에 체결된 공사계약과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공사를 수행하는 자(건축주가 스스로 책임하에 기술자를 채용하거나 기술자에게 위임하여 공사를 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기술자)를 말합니다.
2. 동별 건축내용은 매 동별로 작성하여 제출하되, 부속용도에 사용되는 사무실·작업장·창고·차고·경비실·변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속건축물은 별개의 동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의 주된 건축물에 포함시키십시오.
3. ③·④·⑥란은 □안에 해당번호를 기재합니다.
4. ⑤란의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구분에 따라 기재합니다.
5. ⑥란은 기둥 또는 내력벽을 어떠한 재료로 건축하는지에 따라 구분하십시오.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6. 4. 20.>

# 중간검사신청서 및 중간검사필증

(앞쪽)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승인번호 | 처리기간 7일 |
|---|---|---|---|---|

| | | |
|---|---|---|
| 건축주 | 성명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설계자 | 성명 (서명 또는 인) | 면허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공사 시공자 | 성명 또는 상호 (서명 또는 인) | 건설업 면허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대지위치 | | |
| 착공예정일 | | 준공검사예정일 |
| 구분신청시구분내용 | | |
| 검사일자 | |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제4항 및 「건축법」 제17조에 따라서 위와 같이 건축물의 중간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첨부서류 | 공사감리보고서 1부 | 수수료 없 음 |
|---|---|---|

자르는 선

## 검 사 서

제 호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제4항 및 「건축법」 제17조에 따라 건축물의 중간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건축공사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적합하므로 공사를 계속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교 육 감 직인
(교 육 장)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 처리절차 |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 청 인 | 처 리 기 관<br>시 · 도교육청 |
| 신 청 서 작 성 → | 접 수 |
| | ↓ |
|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 | ↓ |
| | 결 재 |
| | ↓ |
| ← 통 보 | 검사서 발급 |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4.6.10>

제　　호

# 학교시설사업 준공검사필증

1. 사업시행자 :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나. 명칭 :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및 규모
   가. 학교부지 면적 :
   나. 학교시설 규모 :

5. 학교시설사업의 착공 및 준공 연월일
   가. 착공연월일 :
   나. 준공연월일 :

6. 학교시설 현황 : 별 첨

학교시설사업에 대한 승인신청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적합하므로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교육감 · 교육장)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6. 4. 20.>

# 학교시설준공신고서 및 준공검사필증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쪽 중 제1쪽)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승인번호 | 처리기간 7일 |
|---|---|---|---|---|

| | | |
|---|---|---|
| 건축주 | 성명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설계자 | 성명 (서명 또는 인) | 면허번호 |
| | 사무소명 | 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공사감리자 | 성명 (서명 또는 인) | 면허번호 |
| | 사무소명 | 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공사시공자 | 성명 또는 상호 (서명 또는 인) | 건설업 면허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현장관리인 | ① 성명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 | 자격종별 | 면허번호 |
| | ② 주소 | (전화번호 ) |

| | |
|---|---|
| 대지위치 | |
| 착공일자 | 준공검사예정일 |
| 존치기간 (「건축법」 제20조의 가설건축물) | |
| 준공검사일 |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13조에 따라 학교시설의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교육감 · 교육장** 귀하

| | | |
|---|---|---|
| 첨부서류 | 1. 공사감리보고서 1부<br>2. 현황도면 1부(「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신고로 건축한 경우에 한정함) | 수수료<br>없음 |

자르는 선

## 검 사 서

제 호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마쳤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교 육 감 직인
(교 육 장)

210㎜×297㎜[백상지(80g/㎡)]

(3쪽 중 제2쪽)

## 유의사항

1. ①란 및 ②란의 "현장관리인"이란 해당 공사기간 동안 공사현장에서 건축주와 시공자 사이에 체결된 공사계약과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공사를 수행하는 사람(건축주가 스스로의 책임하에 기술자를 채용하거나 기술자에게 위임하여 공사를 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기술자)을 말합니다.
2. 제3쪽의 신청건축물의 동별개요는 동별로 따로 작성하십시오.
3. ③란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구분에 따라 작성하십시오.

##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 청 인 | 처 리 기 관<br>시 · 도교육청 |
|---|---|
| 신 청 서 작 성 → | 접 수 |
| | ↓ |
|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 | ↓ |
| | 결 재 |
| | ↓ |
| ← 통 보 | 검사서 발급 |

(3쪽 중 제3쪽)

# 신청 건축물의 동별개요

| | | | | | | |
|---|---|---|---|---|---|---|
| 주용도 | | | | 주요구조 | | |
| 층수(지하, 지상) | | | | | | |
| 구분 | 층 | 층 | 층 | 층 | 층 | 층 |
| 바닥면적(㎡) | | | | | | |
| ③ 용도 | | | | | | |
| 구분 | 층 | 층 | 층 | 층 | 층 | 층 |
| 바닥면적(㎡) | | | | | | |
| 용도 | | | | | | |
| 구분 | 층 | 층 | 층 | 층 | 층 | 층 |
| 바닥면적(㎡) | | | | | | |
| 용도 | | | | | | |
| 승용승강기대수 | | | 대 | 비상용승강기대수 | | 대 |
| 직통계단수 | | | | | | |
| 기타 | | | | | | |

210㎜×297㎜[백상지(80g/㎡)]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2. 2.] [법률 제21149호, 2025. 12. 2., 일부개정]

교육부 (교육안전정책과) 044 - 203 - 6658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5. 19., 2012. 1. 26., 2015. 1. 20., 2021. 3. 23.>

1. “학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이하 “유치원”이라 한다)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이하 “초ㆍ중등학교”라 한다)
   다. 「평생교육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하 “평생교육시설”이라 한다)
   라.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
2. “학생”이라 함은 학교에 입학하여 수학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교직원”이라 함은 고용형태 및 명칭을 불문하고 학교에서 학생의 교육 또는 학교의 행정을 담당하거나 보조하는 교원 및 직원 등을 말한다.
4. “교육활동”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ㆍ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ㆍ특별활동ㆍ재량활동ㆍ과외활동ㆍ수련활동ㆍ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나. 등ㆍ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중의 활동으로서 가목 및 나목과 관련된 활동
5. “교육활동참여자”란 학생 또는 교직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학교장의 승인 또는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교직원의 교육활동을 보조하거나 학생 또는 교직원과 함께 교육활동을 하는 사람
   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학생의 등교ㆍ하교 시 교통지도활동 참여에 관하여 미리 서면으로 학교장에게 통지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거나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그 단체의 회원으로서 교통지도활동에 참여하는 사

람

6. “학교안전사고”라 함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사업 및 이 법에 따른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2장 학교안전사고 예방

**제4조(학교안전사고 예방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부장관은 3년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안팎의 안전사고 예방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 운영의 기본지침에 관한 사항
3.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대비 훈련 등 학교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4. 삭제<2019. 12. 3.>
5. 학교 안전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을 제4조의2에 따른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교육감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⑥ 학교장은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을 바탕으로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에 따라 매년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학교계획(이하 “학교계획”이라 한다)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⑦ 교육감은 매년 해당 연도의 학교계획 및 지난해의 학교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 20.]

**제4조의2(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 구성)**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이하 “ 예방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평가
2. 학교안전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3. 학교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 추진
4. 그 밖에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예방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예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학부모 대표
2.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원단체가 추천한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④ 예방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방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예방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 20.]

**제4조의3(실태조사)**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학교장 및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 20.]

**제5조(학교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책무)** ①교육부장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 시ㆍ도 ”라 한다. 이하 같다)의 교육감(이하 “ 교육감 ”이라 한다), 학교장 및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따라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자(이하 “ 학교장등 ”이라 한다)는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교시설을 안전하게 관리ㆍ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2. 1. 26., 2013. 3. 23.>

②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성이 있는 시설물을 보수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우선 지원하는 등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6조** 삭제 <2019. 12. 3.>

**제7조** 삭제 <2019. 12. 3.>

**제8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 ①학교장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게 학교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기별로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1. 20., 2016. 2. 3., 2021. 3. 23.>

1. 「아동복지법」 제31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 관리교육 및 재난대비 안전교육
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5.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이 체험중심 교육활동으로 운영되는 경우 이에 관한 안전사고 예방교육
6. 그 밖에 안전사고 관련 법률에 따른 안전교육

② 삭제<2015. 1. 20.>

③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재와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학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교육을 담당할 강사를 알선하는 등 안전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1. 20.>

1. 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
2. 재난대비 훈련 및 안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안전교육을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으로 병행하여 실시하되, 안전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교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거나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교육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2. 1. 26., 2015. 1. 20.>

**제8조의2(학교장의 교육활동 안전대책 점검ㆍ확인 의무)** ① 학교장은 교육활동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대책을 점검ㆍ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교육활동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1. 위탁할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설립 인가ㆍ허가 등의 여부
2.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 등의 가입 여부
3.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하는지의 여부

4.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 같은 법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실시, 종합평가 결과 및 이에 따른 개선조치 이행 등의 여부
5.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교육활동 프로그램의 안전점검, 안전대책 등의 여부

③ 제2항에 따른 학교장의 점검ㆍ확인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장의 교육활동 안전대책 점검ㆍ확인의 절차, 방법,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5. 14.]

**제8조의3(학교안전사고 예방ㆍ대책 전담부서)** 교육감은 시ㆍ도교육청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1. 20.]

**제9조(명예학교안전요원 위촉)** 학교장은 학부모 또는 지역 주민 등을 명예학교안전요원으로 위촉하여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순찰, 교통지도 등의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안전조치 및 안전사고관리 지침 등)** ① 삭제 <2019. 12. 3.>

② 삭제<2019. 12. 3.>

③ 교육부장관은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와 위급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활동에 따른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제정하여 시ㆍ도교육청 및 학교에 보급하여야 한다.<신설 2015. 1. 20.>

④ 학교장 및 인솔교사는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 및 위급상황에 대하여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즉시 안전조치를 취한 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지원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신설 2015. 1. 20.>

⑤ 학교장, 교직원 및 제10조의4에 따른 보조인력은 제3항에 따른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신설 2024. 12. 20., 2025. 12. 2.>

[제목개정 2015. 1. 20.]

**제10조의2(학교안전사고 예방활동 단체에 대한 지원)**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학생의 등교ㆍ하교 시 교통지도 활동 등 학교안전사고 예방활동에 참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이하 이 조에서 "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1. 20.>

② 학교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로부터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한 의견을 정기적으로 들어야 하며, 그 내용을 학교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③ 학교장은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들은 경우 해당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1. 3. 23.>
[본조신설 2012. 1. 26.]

**제10조의3(상담 지원 등)**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 그 가족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범위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 20.]

**제10조의4(학교 밖 교육활동에 대한 안전 관리 및 지원 등)** ① 학교장은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 및 시설 등을 사전에 답사하는 등 관련 교육활동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이하 이 조에서 "보조인력"이라 한다)을 배치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보조인력의 배치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보조인력의 배치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12. 20.]

## 제3장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

**제11조(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 ①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이하 "학교안전공제"라 한다) 사업을 실시한다. 다만, 제2조제1호라목의 한국학교에 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학교안전공제사업을 실시한다. <개정 2012. 1. 26., 2013. 3. 23.>
②학교안전공제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③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공제 사업의 사업자가 된다. 다만, 제2조제1호라목의 한국학교에 대한 학교안전공제사업의 사업자는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학교안전공제중앙회로 한다.<개정 2012. 1. 26.>

**제12조(학교안전공제의 가입자)**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학교장은 학교안전공제의 가입자가 된다. 다만,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학교의 학교장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의 승인을 얻어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제13조(학교안전공제에서의 탈퇴)** ①제12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한 외국인학교의 학교장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의 승인을 얻어 학교안전공제에서 탈퇴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탈퇴의 효력은 학교안전공제회의 탈퇴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종료한 때 또는 해당 학교가 폐쇄된 때에 발생한다.<개정 2018. 12. 18.>

**제14조(학교안전공제의 피공제자)**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그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학교안전공제의 피공제자가 된다. 다만, 제12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학교에 재학ㆍ재직중인 학생ㆍ교직원은 해당 학교가 같은 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한 때에 학교안전공제의 피공제자가 된다. <개정 2018. 12. 18., 2021. 3. 23.>

1. 학생 :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한 학교에 입학(전입학을 포함한다)한 때
2. 교직원 :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한 학교에 임용되거나 전보된 때
3. 교육활동참여자 :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한 학교의 교육활동에 참여하게 된 때. 다만, 학교장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교육활동에 참여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피공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피공제자의 자격을 잃는다. 다만,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안전공제에서 탈퇴하는 학교에 재학ㆍ재직중인 학생ㆍ교직원은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탈퇴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피공제자의 자격을 잃는다.

1. 피공제자가 사망한 때
2. 피공제자인 학생이 학교를 졸업(자퇴 또는 퇴학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학교로 전학한 때
3. 피공제자인 교직원이 학교에서 퇴직하거나 다른 학교 또는 교육기관 등으로 전보된 때
4. 교육활동참여자가 교육활동에의 참여를 마친 때

## 제4장 학교안전공제회

**제15조(학교안전공제회의 설립 등)** ①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에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공제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공제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함으로써 성립된다.

**제16조(명칭)** 공제회의 명칭에는 교육감이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7조(정관)** ①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7. 조직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0. 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②공제회의 정관은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8조(공제회의 사업)** ①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2. 3. 21.>

1. 공제가입자에 대한 공제료의 부과 및 징수
2.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공제급여의 지급 및 이에 관련된 업무

2의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비 등의 지급, 구상권 행사 및 이에 관련된 업무

3. 학교안전사고의 예방과 관련된 사업
4.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안전공제 사업에 대한 교육ㆍ홍보
5. 제58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운영
6. 학교안전공제에 관하여 교육감이 위탁하는 사업
7. 학교안전사고와 관련된 공제가입자 또는 교직원 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학교안전사고 예방 사업 및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등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신설 2012. 3. 21.>

**제19조(공제회의 임원 등)** ①공제회의 임원으로 이사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5인 이내의 이사와 2인 이내의 감사를 두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②공제회의 이사장은 공제회를 대표하고, 공제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1. 3. 23.>

③공제회의 감사(監事)는 공제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④ 감사는 제3항에 따른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감에게 회계감사 또는 직무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2. 1. 26., 2021. 3. 23.>

[제목개정 2012. 1. 26.]

**제20조(공제회 임원의 임명 등)** ①공제회의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②공제회의 이사는 공제가입자의 추천을 받은 사람과 피공제자 또는 피공제자의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피공제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보호자등"이라 한다) 등을 대표하는 사람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개정 2007. 4. 11., 2021. 3. 23.>

1.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이하 "고위공무원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공무원 및 장학관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사람
2.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의료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른 전문의(이하 “전문의”라 한다)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및 각종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사람

③공제회의 감사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개정 2021. 3. 23.>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제가입자의 추천 등 이사의 임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제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⑤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1조(공제회 임원의 결격사유 등)** ①「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제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1. 3. 23.>

②공제회의 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③교육감은 공제회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2. 공제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

**제22조(이사회)** ①공제회에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하는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공제회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 등의 수립·변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공제회의 정관 및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사회가 공제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공제회의 회계 또는 업무집행에 부정 또는 미비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장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은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개정 2012. 1. 26., 2021. 3. 23.>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외에 이사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제회의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21. 3. 23.>

**제23조(공제회 직원의 임면)** 이사장은 공제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을 임면한다. <개정 2021. 3. 23.>

**제24조(공제회의 재정)** 공제회의 재정은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5조(지도ㆍ감독)** ①공제회는 매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에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8.>

②공제회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연도 결산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18.>

③교육감은 공제회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사업 또는 재산상황을 검사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관의 변경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6조(유사명칭 사용금지)** 공제회가 아닌 자는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7조(「민법」의 준용)** 공제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장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제28조(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설립)** 교육부장관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사업과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이하 "공제중앙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29조(공제중앙회의 사업)** ①공제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2021. 9. 24.>

1. 학교안전사고 예방정책의 수립을 위한 조사ㆍ연구
2. 제6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의 운영
3. 학교안전공제 제도에 대한 조사ㆍ연구
4. 학교안전공제 공제급여의 지급기준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
5. 제2조제1호라목의 한국학교에 대한 학교안전공제사업

5의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대한 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

6. 그 밖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안전공제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공제회의 업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업

② 공제중앙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등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신설 2012. 3. 21.>

**제30조(공제중앙회의 임원 등)** ①공제중앙회에 임원으로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9인 이내의 이사와 2인 이내의 감사를 두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②이사장은 공제중앙회를 대표하고 공제중앙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1. 3. 23.>

③감사(監事)는 공제중앙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제31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①공제중앙회의 이사장 및 감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추천심사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1. 3. 23.>

②이사장을 제외한 공제중앙회의 이사는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되, 각 시ㆍ도공제회별로 추천하는 사람이 1인씩 총 16인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1. 3. 23.>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제중앙회 임원의 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2조(공제중앙회의 재정)** ①공제중앙회의 재정은 공제회의 분담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제회의 분담금 납부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준용규정)** 제15조제2항ㆍ제3항, 제17조,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은 공제중앙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제회"는 각각 "공제중앙회"로,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로, "교육감"은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1. 3. 23.>

## 제6장 공제급여

**제34조(공제급여의 종류)** 공제회가 지급하는 공제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3. 23.>

1. 요양급여
2. 장해급여
3. 간병급여
4. 유족급여
5. 장례비

**제35조(공제급여액의 결정)** ①공제회는 공제급여의 종류별로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제급여액을 결정한다. <개정 2021. 3. 23.>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 등으로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피해에 대하여 공제가입자 또는 피공제자가 지급하여야 할 보상액 또는 배상액이 확정되는 경우 그 확정된 보상액 또는 배상액(지연배상금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공제급여액으로 보아 공제회가 이를 부담한다.<개정 2021. 3. 23.>

**제36조(요양급여)** ①요양급여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에게 지급한다.

②요양급여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에 소요된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이 부담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 등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에 따라 공단의 구상권 행사에 따른 손

해배상액이 확정된 경우 학교의 장이 부담할 부분은 공제회가 부담한다.<개정 2011. 12. 31., 2012. 3. 21.>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4. 23., 2021. 3. 23.>

1. 진찰ㆍ검사
2. 약제ㆍ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ㆍ수술 그 밖의 치료
4. 재활치료
5. 입원
6. 간호
7. 호송
8. 삭제<2021. 9. 2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이 법에 따른 요양급여로 보아 공제회가 이를 부담한다.<개정 2021. 9. 24.>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2. 인공팔다리ㆍ틀니, 안경ㆍ보청기 등 「장애인복지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의 처방 및 구입 비용
3. 요양 중인 피공제자의 부상ㆍ질병 상태가 의학적으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간병료

⑤ 피공제자의 보호자등이 제4항제3호에 따른 간병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도 불구하고 간병에 소요되는 부대경비를 지급한다.<신설 2021. 9. 24.>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 및 부대경비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2. 3. 21., 2021. 9. 24.>

**제37조(장해급여)** ①장해급여는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피공제자가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장해가 있는 때에는 「국가배상법」 제3조제2항제3호에서 정한 금액 및 같은 법 제3조제5항에서 정한 위자료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에게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해정도의 판정기준ㆍ장해급여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간병급여)** ①간병급여는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 실제로 간병을 받는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1. 3. 23.>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간병급여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유족급여)** ①유족급여는 피공제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국가배상법」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금액 및 같은 법 제3조제5항에서 정한 위자료를 피공제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2. 1. 26., 2021. 3. 23.>

1. 삭제<2012. 1. 26.>

2. 삭제<2012. 1. 26.>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족급여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장례비)** ①장례비는 피공제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국가배상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평균임금의 100일분을 그 장례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1. 3. 23.>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례비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3. 23.>

[제목개정 2021. 3. 23.]

**제40조의2(위로금)** ① 공제회는 피공제자인 학생이 교육활동 중에 학교안전사고 이외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로금은 제39조제1항에 따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2. 3. 21.]

**제41조(공제급여의 청구 및 지급 등)** ①제36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공제회에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1. 3. 23.>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를 받은 공제회는 공제급여를 청구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필요성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14일 이내에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 결정이 어려운 때에는 14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급여에 대한 지급 여부의 결정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최초 지급 여부 결정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공제회가 공제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자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자의 신청이 있거나 공제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결정일 전이라도 공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지급할 수 있다.

⑤공제회는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공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공제가입자와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자에게 지체 없이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제회는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자에게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과 심사 청구 절차 및 기간 등을 알려야 한다.

**제41조의2(학교안전공제 사업의 안내)** ① 공제가입자는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피공제자에게 제41조에 따른 공제급여의 청구 및 지급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학교안전공제 사업에 대하여 안내하여야 하며, 피공제자가 학생으로서 미성년자인 경우 보호자등에게도 그 사업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의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 1. 21.]

**제42조(학교안전사고의 조사 등)** ①공제회는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장소를 방문하여 사고경위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사고관계자로 하여금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등의 조사를 할 수 있다.

②공제회는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1. 12. 31.>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공제회는 조사의 목적 및 내용 등을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장소의 관리자, 공제가입자, 해당 피공제자 그 밖의 사고관계자 등에게 미리 알려야 하고, 사고 발생 장소를 방문하는 공제회 소속 직원은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18.>

④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장소의 관리자, 공제가입자, 해당 피공제자, 요양기관 또는 그 밖의 사고관계자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방해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8. 12. 18.>

**제43조(공제급여의 제한)** ①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공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3. 23.>

1. 피공제자의 자해ㆍ자살. 다만, 학교안전사고가 원인이 되어 자해ㆍ자살한 경우에는 공제급여의 전부를 지급한다.
2.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기관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여 피공제자의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의 상태가 악화되었거나 요양기관의 치료를 방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3.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② 공제회는 제35조에 따라 공제급여액을 결정할 때 피공제자에게 이미 존재하던 질병, 부상 또는 신체장애 등이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악화된 경우에는 이미 존재하던 질병, 부상 또는 신체장애 등의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하고 공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1. 9. 24.>

③ 공제회는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해급여, 간병급여 및 유족급여를 산정할 때에는 피공제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이를 상계할 수 있다.<신설 2021. 9. 24.>
④공제회는 제12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공제회에 가입한 공제가입자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공제료를 체납하고, 그 체납이 피공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모두 납부할 때까지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1. 3. 23., 2021. 9. 24.>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제급여 지급제한 대상 및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21. 9. 24.>

**제44조(피공제자 등에 대한 공제급여금의 청구 등)** ①학교안전사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하고, 공제회가 수급권자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한 경우 공제회는 수급권자에게 지급한 공제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 또는 그 보호자 등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피공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2. 피공제자 또는 공제가입자가 아닌 자의 고의ㆍ과실로 인하여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②공제가입자는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제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5조(다른 보상ㆍ배상과의 관계)** ①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른 공제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 또는 배상의 책임이 있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제가입자 또는 피공제자는 그 공제급여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 또는 배상의 책임을 면한다.
②수급권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이 법의 공제급여에 상당하는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 공제회는 그 보상 또는 배상의 범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6조(부당이득의 환수)** ①공제회는 공제급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급된 경우에는 그 공제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급여를 받은 경우
2. 요양기관의 거짓 진단에 따라 공제급여가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3. 그 밖에 공제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권자와 해당 요양기관은 연대하여 공제급여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18.>

**제47조(수급권의 보호)** ①수급권자의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는 피공제자의 사망,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한 학교에서의 졸업ㆍ퇴학 등 신분관계의 변동으로 인하여 소멸되지 아니한다.
②수급권자의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다.

**제48조(비용의 보전)** ①공제회는 교직원과 교직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을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용을 보전하는 경우 그 지급기준ㆍ절차 및 보전비용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 제7장 공제료

**제49조(공제료)** ①공제가입자는 공제료를 공제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제가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공제자에게 공제료에 충당하기 위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②공제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공제료를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의 수입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③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마다 전전년도 이전 최근 3년간의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추이와 공제급여 지급 실적, 전전년도의 공제 사업 및 예방 사업 등의 운영경비와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공제료 산정기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1. 3. 23.>

④공제회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공제료 산정기준에 근거하여 관할 구역 내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추이와 공제급여의 지급 실적, 학교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제료를 산정하고 이를 공제가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공제료를 통보 받은 공제가입자는 통보된 공제료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공제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1. 3. 23.>

⑥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공제료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제가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료 납부명령 등 그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신설 2015. 1. 20.>

**제50조(공제료의 납부고지)** ①공제회는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공제료의 납부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공제가입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1. 3. 23.>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제료의 납부고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공제료의 금액
2. 납부기한
3. 납부장소

③공제료의 납부기한ㆍ납부방법ㆍ납부절차 등 공제료의 수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51조(국가 등의 공제료 부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공제자(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학생인 피공제자를 말한다)에 대한 공제료는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개정 2007. 7. 27., 2011. 5. 19., 2011. 8. 4., 2011. 9. 15., 2021. 1. 5., 2021. 3. 23.>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급여를 받는 수급자와 그 자녀인 피공제자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조사된 사람과 그 자녀인 피공제자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보호를 받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인 피공제자
3. 제2조제5호에 따른 교육활동참여자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생인 피공제자에 대한 공제료를 부담할 수 있다.

③ 제18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비 등의 소요경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신설 2012. 3. 21.>

## 제8장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제52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 사업 및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공제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공제료 수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기금의 운용수익, 적립금, 결산상 잉여금, 차입금, 기부금과 그 밖의 수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이를 조성한다.

**제53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2. 3. 21., 2021. 3. 23.>

1. 공제급여의 지급
2. 공제회의 재정 지원
3. 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
4. 학교안전공제제도의 조사·연구·홍보 및 학교안전사고의 예방·교육지원 사업
5. 제18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비 등과 관련한 경비의 지급
6. 그 밖에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및 학교안전공제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5호에 대한 집행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12. 3. 21., 2013. 3. 23.>

**제5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공제회가 관리·운용한다.

②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21. 3. 23.>

1.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2.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4. 그 밖에 기금 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공제회는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기금을 회계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18.>

**제55조(기금의 운용계획)** 공제회는 매 사업연도마다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56조(잉여금 · 손실금 · 차입금)** ①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적립금으로 계상하고,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②교육감은 기금을 운용하면서 일시적으로 자금의 부족 등이 생긴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 또는 일시 차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시 차입금은 해당 사업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18., 2021. 3. 23.>

## 제9장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제57조(심사청구의 제기)** ①공제회의 공제급여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제58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는 공제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ㆍ전쟁ㆍ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기간은 심사청구기간에서 제외한다.<개정 2021. 3. 23.>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 ①제57조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를 심리ㆍ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공제회에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이하 “ 심사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1. 3. 23.>

1.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장학관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전문의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손해사정사 등 보험 업무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로서 1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6.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사람
7. 학부모 대표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④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ㆍ결정)** ①심사위원회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는 한 차례만 1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②심사위원회는 심사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개정 2021. 3. 23.>

1. 심사청구인 또는 관계인을 지정장소에 출석하게 하여 질문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하는 것
2. 심사청구인 또는 관계인에게 증거가 될 수 있는 문서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게 하는 것
3.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감정 또는 진단을 하게 하는 것

**제60조(결정의 효력)** 심사위원회가 결정을 행한 경우에 심사청구인이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재심사청구 또는 공제급여와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제기된 재심사청구 또는 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공제회와 심사청구인 간에 해당 결정의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 12. 18.>

**제61조(재심사청구의 제기)** ①제5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6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 정본이 심사청구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천재ㆍ지변ㆍ전쟁ㆍ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 등 재심사 청구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기간은 재심사청구기간에서 제외한다.<개정 2021. 3. 23.>

**제62조(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 ①제61조의 규정에 따른 재심사청구를 심리ㆍ재결하기 위하여 공제중앙회에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재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재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재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1. 3. 23.>

1. 3급 이상의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장학관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전문의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손해사정사 등 보험 업무 분야에서 10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로서 15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6.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사람
7. 학부모 대표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재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ㆍ재결)** 제59조의 규정은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ㆍ재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는 각각 "재심위원회"로, "심사청구"는 각각 "재심사청구"로, "심사청구인"은 각각 "재심사청구인"으로, "결정"은 "재결"로 본다.

**제64조(재결의 효력)** 제63조에 따른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에 불복하는 자가 재심위원회의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제급여와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제기한 소송을 취하한 경우에는 공제회와 재심사청구인 간에 해당 재결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5. 29., 2018. 12. 18., 2021. 3. 23.>

[2016. 5. 29. 법률 제14161호에 의하여 2015. 7. 30.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 제10장 보칙

**제65조(시효)** ①공제료의 징수 및 수급권자의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21. 3. 23.>

**제66조(서류의 송달)** 「국세기본법」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은 공제료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21. 3. 23.>

**제67조(자료의 제공 요청)** ①공제회는 학교장 및 요양기관 등에 대하여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학교장 및 요양기관 등은 성실히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개정 2021. 3. 23.>

**제68조(진찰요구)** 공제회는 공제급여의 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공제자에 대하여 공제회가 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도록 할 수 있다.

**제69조(비밀의 유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직에 종사하는 사람 및 그 직에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1. 3. 23.>

1. 공제회ㆍ공제중앙회의 임원 및 직원
2. 심사위원회 및 재심사위원회의 위원

## 제11장 벌칙

**제7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제회 및 공제중앙회의 임원ㆍ직원과 심사위원회와 재심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1. 3. 23.>

**제71조(벌칙)** ①제6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2. 3.>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1조에 따라 공제급여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2016. 2. 3.>

**제72조(과태료)** ① 제26조(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학교안전공제회ㆍ학교안전공제중앙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2조제4항을 위반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자
2. 제44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를 한 자
3. 제67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부과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18. 12. 18.]

**제73조** 삭제 <2018. 12. 18.>

**부칙** <제8267호,2007. 1. 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제회의 설립준비) ①교육감은 이 법 시행 전에 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공제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이 법 시행 전까지 공제회의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설립등기한 후 공제회의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공제회의 설립 당시 이사는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교장, 학부모 대표 및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⑤설립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회의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학교안전공제 가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민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되어 교육감이 각 관할 구역별로 운영하고 있는 사단법인 학교안전공제회(이하 " 사단법인 학교안전공제회 " 라 한다)의 회원으로 가입한 학교장등은 이 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사단법인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사단법인 학교안전공제회는 이 법 시행 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한다. 다만, 해산의 효력은 공제회의 설립과 동시에 발생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산된 사단법인 학교안전공제회의 모든 권리ㆍ의무는 공제회가 포괄승계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산된 사단법인 학교안전공제회의 직원은 이 법에 따른 공제회의 직원으로 본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산되는 사단법인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하여는 「민법」 제77조ㆍ제78조ㆍ제80조ㆍ제82조ㆍ제85조 및 제8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 (공제료의 산정에 관한 특례)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이 법 시행 후 4년간 공제료 산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사단법인 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급여 지급 실적 및 운영경비 등을 반영할 수 있다.

**부칙** <제8366호,2007. 4. 11.>(의료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부칙 제20조제17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9조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1^ 생략

1& 법률 제8267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3호 중 " 제55조 " 를 " 제77조 " 로 한다.

**제21조** 생략

**부칙** <제8566호,2007. 7. 27.>(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제2호중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을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로 한다.

⑨ 생략

**부칙** <제8852호,2008. 2. 29.>(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06> 까지 생략

<107>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 제28조, 제31조제1항·제2항, 제33조 후단, 제55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제43조제2항, 제48조제2항, 제50조제1항·제3항, 제58조제3항제8호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49조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6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10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090호,2010. 3. 17.>

이 법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41호,2011. 5. 1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29호,2011. 8. 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제2호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생략

**부칙** <제11042호,2011. 9. 15.>(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2$ 까지 생략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제2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보호대상자"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로 한다.

2^ 및2& 생략

**부칙** <제11141호,2011. 12. 31.>(국민건강보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2& 까지 생략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 규정"을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로 한다.

제42조제2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로 한다.

**제22조** 생략

**부칙** <제11221호,2012. 1. 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87호,2012. 3.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에 관한 경과조치) 제36조제2항 단서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는 2012년 8월 31일까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로 본다.

**부칙** <제11690호,2013. 3. 23.>(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5>까지 생략

<76>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제3항, 제10조의2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단서, 제28조, 제31조제1항ㆍ제2항, 제33조 후단, 제49조제3항, 제55조 및 제6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제8조제1항, 제41조제1항, 제43조제2항, 제48조제2항, 제49조제5항, 제50조제1항ㆍ제3항, 제53조제2항, 제58조제3항제8호 및 제62조제3항제8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7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573호,2014. 5. 1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05호,2015. 1. 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47호,2016. 2. 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161호,2016. 5. 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66호,2018. 12. 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340호,2019. 4. 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78호,2019. 12. 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7883호,2021. 1. 5.>(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1& 까지 생략
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제2호 중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1(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7954호,2021. 3. 23.>(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8463호,2021. 9.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간병료 및 부대경비 지급에 관한 특례) 제36조제4항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의 공포일부터 시행일까지의 간병에 따른 간병료 및 부대경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20567호,2024. 12. 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69호,2025. 1. 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149호,2025. 12. 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민사상 책임의 면제와 관련하여서는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학교안전사고부터 적용한다.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7. 22.] [대통령령 제35658호, 2025. 7. 21., 일부개정]

교육부 (교육안전정책과) 044 - 203 - 6658

**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활동과 관련된 시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간을 말한다. <개정 2012. 3. 30.>

1.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 시간
2.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
3.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의 지시에 의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
4. 학교장이 인정하는 직업체험, 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의 시간
5.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
6. 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 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 시간

**제3조(학교장의 관리·감독하의 질병)**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한다.

1. 학교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2. 일사병(日射病)
3. 이물질의 섭취 등에 의한 질병
4. 이물질과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
5.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제4조(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법 제4조의2에 따른 학교안전사고 예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7. 20.]

**제5조(학교안전사고 예방 지역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에 대한 세부 집행계획
2. 법 제4조제7항에 따른 학교계획 및 그 추진실적의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3. 그 밖에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5. 7. 20.]

**제6조(학교안전사고 예방 학교계획의 수립)** ① 학교장은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학교계획(이하 "학교계획"이라 한다)을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유치원의 경우에는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행연도 2월 말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학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에 대한 세부 집행계획
2. 법 제4조제7항에 따른 학교계획 및 그 추진실적의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3. 그 밖에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하여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5. 7. 20.]

**제7조(학교계획 및 추진실적의 평가)** ① 법 제4조제7항에 따라 교육감이 학교계획 및 그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학교장은 해당 연도의 학교계획 및 지난해의 학교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교계획 및 그 추진실적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교계획: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에서 정한 내용의 반영 여부
2. 추진실적: 지난해의 학교계획에 따른 업무별 추진 실적
3. 그 밖에 교육감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5. 7. 20.]

**제7조의2(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의 구성)** 법 제4조의2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7. 26.>
1. 교육부
1의2. 행정안전부
2. 보건복지부
3. 고용노동부
4. 국토교통부
5. 해양수산부
6. 삭제<2017. 7. 26.>
7. 경찰청

8.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

[본조신설 2015. 7. 20.]

**제7조의3(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의 운영 등)**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이하 “ 예방위원회 ”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이 조 및 제7조의4에서 “ 위원장 ”이라 한다)은 예방위원회를 대표하고, 예방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예방위원회의 회의는 교육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예방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공무원과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방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예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 7. 20.]

**제7조의4(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예방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이하 “ 분과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계획 총괄 분과위원회
2. 학교안전교육 분과위원회
3. 학교안전사고 예방사업 분과위원회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예방위원회 심의사항의 사전 검토
2. 위원장이 상정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교육부장관이 위원장과 협의하여 예방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예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 7. 20.]

**제7조의5(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안전사고의 원인 및 사고유형별 현황
2. 학교안전사고 공제사업의 운영 현황
3. 학교 및 연수기관에서의 안전에 관한 교육과정의 운영 실태
4. 안전교육을 위한 각종 체험시설의 운영 및 확충 현황
5.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교육 지원을 위한 행정조직 및 재정 현황
6.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 등 안전교육 관련자에 대한 안전교육 만족도 및 요구 사항
7. 그 밖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는 외부 전문기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법 제28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중앙회로 한다.

③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방법 및 세부 조사항목 등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5. 7. 20.]

**제8조(학교시설의 안전표지 등)**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이하 같다)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학교장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자(이하 “학교장등”이라 한다)는 교내와 교외의 학교시설 및 장소에 안전표지물 등 안내문을 붙이고, 비상시의 대피 경로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하며, 시설안전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30.>

**제9조** 삭제 <2020. 12. 1.>

**제10조** 삭제 <2020. 12. 1.>

**제10조의2(학교장의 교육활동 안전대책의 점검ㆍ확인 등)** ① 학교장은 매학기 시작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활동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활동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활동을 실시하기 전까지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점검ㆍ확인할 수 있다.

1. 학교시설 등에 대한 안전성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이용시설의 안전성에 관한 사항
3. 법 제8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교육활동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계획
5. 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등 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교육활동 안전대책 마련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② 학교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안전대책을 마련, 점검ㆍ확인한 경우에는 매학기가 시작되는 전날까지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유치원의 경우에는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말한다)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안전대책을 마련, 점검ㆍ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활동을 실시하는 전날까지 보고

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20.>
[본조신설 2014. 11. 14.]
[종전 제10조의2는 제10조의3으로 이동 <2014. 11. 14.>]

**제10조의3** 삭제 <2020. 12. 1.>

**제10조의4(상담 지원 등)** ①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의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로 한다.
②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상담 및 심리적 치료의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를 정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법 제28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둔다.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지원대상자에게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상담 및 심리적 치료기관을 알려주어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상담 및 심리적 치료를 담당하는 기관을 지정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상담 및 심리적 치료기관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의료기관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상담 및 심리적 치료를 실시하는 기관 중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지원대상자가 제4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서 상담 및 심리적 치료를 받는 데 드는 비용을 상담 또는 심리적 치료를 시작한 때부터 1년의 범위에서 부담한다. 다만,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7. 20.]
[종전 제10조의4는 제10조의6으로 이동 <2015. 7. 20.>]

**제10조의5(공제회의 수익사업 등)**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학교시설에 대한 소방ㆍ전기 등의 안전점검 대행
2. 소독ㆍ청소 등의 환경개선 업무
3. 그 밖에 피공제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본조신설 2012. 3. 30.]
[제10조의3에서 이동 <2015. 7. 20.>]

**제10조의6(공제중앙회의 수익사업 등)** 법 제28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이하 "공제중앙회"라 한다)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피공제자 등의 권익보호 및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2. 3. 30.]
[제10조의4에서 이동 <2015. 7. 20.>]

**제11조(임원추천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임원추천심사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08. 2. 29., 2012. 3. 30., 2013. 3. 23.>

1. 공제회를 대표하는 자 3명
2. 교직원을 대표하는 자 1명
3. 학부모를 대표하는 자 1명
4. 학교안전공제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명

②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추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추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임원 추천)**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추천위원회는 공제중앙회의 임원 중 이사장 및 감사 후보자를 각각 2명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30.>

**제13조(공제중앙회의 재정 충당)**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공제중앙회의 재정에 충당할 공제회의 분담금을 전년도 4월 1일 현재 시·도의 피공제자인 학생 및 교직원 수에 비례하여 할당하며, 각 시·도 공제회는 매년 1월 10일까지 할당된 분담금을 공제중앙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14조(요양급여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34조제1호의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한다)의 항목별 지급기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9. 27., 2012. 8. 31., 2013. 3. 23., 2015. 7. 20., 2020. 7. 14., 2021. 6. 29., 2021. 9. 29., 2022. 3. 22.>

1. 입원료는 대중적인 일반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한다. 다만, 전신 화상자, 세균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격리가 필요한 환자, 심한 정신질환자 등 의사의 소견에 따라 부득이 상급병실(입원실에 3명 이하가 입원할 수 있는 병실을 말한다)에 입원했을 때(병실 사정이나 환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한다.
2. 진찰, 검사, 처치, 수술(성형수술을 포함한다), 응급 및 재활치료, 호송 등은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한다.
3. 치아 보철비는 도재전장관[도재전장관, 사기 재료로 이 빛깔이 나도록 만든 인공치아(人工齒牙)]에 드는 비용을 지급한다. 다만, 기존의 치아 보철물이 외상으로 손상되거나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지급한다.

4. 약제비는 처방전에 의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5. 한방치료는 침과 뜸 등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만 지급한다.
6. 인공팔다리ㆍ틀니ㆍ안경ㆍ보청기 등 「장애인복지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의 처방 및 구입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7.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은 장애인보조기구의 처방 및 구입비용에 대해서는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요양급여의 범위 및 지급기준 등 요양급여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22. 3. 22.>

**제15조(취업가능기간)** 법 제34조제2호에 따른 장해급여(이하 "장해급여"라 한다)를 법 제37조제1항 및 「국가배상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산정하거나 법 제34조제4호에 따른 유족급여(이하 "유족급여"라 한다)를 법 제39조제1항 및 「국가배상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할 경우에 장래의 취업 가능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피공제자가 군 복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군 복무 기간을 취업가능기간에 전부 산입한다. <개정 2025. 7. 21.>

1. 피공제자의 연령, 직업, 경력 및 건강상태 등 주관적 요소
2. 국민의 평균여명(平均餘命), 경제수준 및 고용조건 등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등
3. 삭제<2025. 7. 21.>

**제16조(신체장해의 등급 및 노동력상실률 등)** ①제15조에 따라 장해급여를 산정할 경우에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은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에 관한 세부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 7. 21.>

② 별표 2에서 정하지 않은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표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로 결정한다.<신설 2025. 7. 21.>

③장해의 부위가 2개인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부위별 등급을 정한 후 별표 3에 따라 종합평가등급을 정한다.<개정 2025. 7. 21.>

④장해의 부위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최상급 부위 2개에 대하여 별표 3에 따른 종합평가등급을 정한 후 나머지 부위 중 최상급 부위 1개와 위 종합평가등급을 별표 3에 따라 다시 종합평가하여 등급을 정한다.<개정 2025. 7. 21.>

⑤장해가 가장 큰 부위가 별표 2에 따른 장해등급 제14급에 해당하는 것이 3개 이상의 경우에는 제13급으로 한다.<개정 2025. 7. 21.>

**제17조(간병급여의 지급기준 등)** ①법 제34조제3호에 따른 간병급여(이하 "간병급여"라 한다)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간병급여의 지급은 간병이 실제로 행하여진 날에 대하여 월단위로 지급한다.

**제18조(평균임금의 기준)** ①장해급여, 유족급여 및 법 제34조제5호에 따른 장례비를 산정할 때의 평균임금은 매년 6회 이상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하는 임금조사기관이 조사한 남자 또는 여자 보통 인부의 전국 규모 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 다만, 전국규모 통계가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지역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 <개정 2021. 9. 29.>

②제1항의 임금은 먼저 공신력 있는 건설임금단가 통계에 따르고, 공신력 있는 건설임금단가 통계가 없을 때에는 정부임금단가통계에 따르며, 정부임금단가통계도 없을 때에는 공신력 있는 방법에 의하여 조사한 남자 또는 여자 보통 인부의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개정 2021. 1. 5.>

**제18조의2(간병료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36조제4항제3호에 따른 간병료(이하 "간병료"라 한다)는 피공제자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1.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요양(중환자실이나 회복실에서 요양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중에 간병을 받은 경우일 것
2. 부상 또는 질병 상태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의학적으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일 것

② 간병료는 피공제자가 실제로 간병받은 날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한다.

③ 간병료의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간병이 필요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④ 법 제36조제5항에 따른 "간병에 소요되는 부대경비"는 피공제자의 친권자ㆍ후견인이나 그 밖에 피공제자를 부양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사람이 실제로 간병한 날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하며, 그 지급기준은 1일당 2만원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 3. 22.]

**제19조(위자료의 기준)** 법 제37조제1항 또는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신체장해 및 사망에 대한 위자료의 기준은 별표 5 및 별표 6과 같다.

**제19조의2** 삭제 <2022. 3. 22.>

**제20조(손익상계)** ①유족급여를 산정할 때에는 월급액이나 월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서 별표 7에 따른 생활비를 빼야 한다.

②유족급여와 장해급여를 일시에 지급할 때에는 중간 이자를 빼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중간 이자 공제방식은 법정이율에 따른 호프만방식에 따른다.

**제20조의2(위로금의 지급)** 공제회는 피공제자인 학생이 교육활동 중에 학교안전사고 이외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4천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2. 3. 30.]

**제20조의3(학교안전공제 사업의 안내 방법 및 내용)**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 사업에 대한 안내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안내 방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가. 서면 교부
   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
   다. 전화 또는 팩스
   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2. 안내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 학교안전공제 사업
   가. 공제급여의 청구 방법
   나. 공제급여의 처리 절차
   다. 공제급여의 지급 방법
   라. 그 밖에 학교안전공제 사업과 관련한 중요 사항

[본조신설 2025. 7. 21.]
[종전 제20조의3은 제20조의4로 이동 <2025. 7. 21.>]

**제20조의4(공제급여의 지급제한 등)** ① 공제회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공제급여에서 제외되는 치료 비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의 진단ㆍ소견이나 법원 등의 부검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② 공제회가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장해급여, 간병급여 및 유족급여를 산정할 때 피공제자의 과실을 상계하는 경우 상계할 수 있는 금액은 각 급여의 산정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당시 피공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공제자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공제급여와 상계하지 않는다.
1. 피공제자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학생인 경우
2. 피공제자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초등교육을 실시하는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를 포함한다)의 학생으로서 미성년자인 경우
3. 피공제자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등의 이유로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본조신설 2022. 3. 22.]
[제20조의3에서 이동 <2025. 7. 21.>]

**제21조(비용의 보전)** 법 제4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교육활동참여자
2. 법 제9조에 따른 명예학교안전요원으로 위촉된 자
3. 「사립학교법」에 따라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자

**제22조(공제료)** 법 제49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제가입자가 공제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피공제자인 학생 및 교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의2(공제료 산정기준 등)** ① 교육부장관이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고시하는 공제료 산정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학교의 종류에 따른 피공제자 1명당 기준 공제료
2. 공제료 산출 방식
3. 그 밖에 적정한 수준의 공제료 산정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공제회는 각 시ㆍ도별 학생 수, 손해율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공제료를 가산 또는 감액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7. 21.]

[종전 제22조의2는 제22조의3으로 이동 <2025. 7. 21.>]

**제22조의3(공제료 납부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 ① 공제회는 공제가입자가 법 제50조제2항제2호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공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실을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공제가입자에 대하여 법 제49조제6항에 따른 공제료 납부명령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납부명령은 납부기한ㆍ납부방법ㆍ납부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하되,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7. 20.]

[제22조의2에서 이동 <2025. 7. 21.>]

**제23조(기금의 용도)** 법 제53조제1항제6호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 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사업 등에 관하여 공헌한 자에 대한 포상 등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2. 3. 30.>

**제2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법 제54조제2항제4호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 이란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유가증권의 매입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제24조의2(차입 또는 일시 차입)** ① 교육감은 법 제56조제2항 전단에 따라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 또는 일시 차입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제회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차입 또는 일시 차입 신청서를 제출받아 차입 또는 일시 차입의 실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차입 사유
2. 차입 기관
3. 차입 금액
4. 차입 조건
5. 차입금의 상환 방법 및 기한
6. 그 밖에 자금의 차입과 상환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결정 결과를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제회에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5. 7. 21.]

**제25조(심사청구의 방식)** ①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이하 “ 심사청구서 ” 라 한다)로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2.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공제급여의 결정 내용
3. 공제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었던 것을 안 날
4.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5. 심사청구에 관한 고지의 유무와 그 내용
6. 심사청구의 연월일

②심사청구인이 학교안전사고를 당한 피공제자가 아닌 경우에는 심사청구서에 제1항 각 호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학교안전사고를 당한 피공제자의 이름
2. 학교안전사고를 당한 피공제자의 사고 당시 소속 학교의 명칭 및 소재지

③심사청구가 대리인에 의하여 제기되는 것인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항 외에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를 심사청구서에 적어야 한다.

④심사청구서에는 심사청구인이나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6조(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운영)** ①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이하 “ 심사위원회 ”라 한다)의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심사위원회의 세부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심리、결정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인 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 또는 손해사정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심사위원회에서 심리、결정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심리、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하는 자는 신청을 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기피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지체 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스스로 그 사항의 심리ㆍ결정을 회피할 수 있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리ㆍ결정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26조제3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개정 2020. 7. 14.>

**제28조(보정 및 각하)** ①심사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1. 법 제57조제2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후 제기되었을 때
2.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하여 보정할 수 없을 때
3. 제2항 본문에 따른 기간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심사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을 위반한 것이라도 보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심사청구인에게 이를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③심사위원회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직권으로 심사청구를 보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심사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29조(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방법)** ①법 제57조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문서로 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심사청구인이나 대리인의 이름 및 주소
3. 심사청구인이 학교안전사고를 당한 피공제자가 아닌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를 당한 피공제자의 이름 및 주소
4. 주문(主文)
5. 심사청구의 취지
6. 이유
7. 결정 연월일
③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심사청구인에게 심사결정서의 정본(正本)을 송부하여야 한다.
④심사위원회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사청구인에게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관하여 재심사청구의 절차와 청구기간을 알려야 한다.

**제30조(심리를 위한 조사 등)** ①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심사청구인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 사건명
2. 신청의 취지 및 이유
3. 출석하여야 할 관계인의 이름 및 주소(법 제59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제출하여야 할 문서, 그 밖의 물건의 표시 및 그 소유자 또는 보관자의 이름과 주소(법 제59조제2항제2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5. 감정이 필요한 사항 및 그 이유(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경우에 만 해당한다)
6. 진단을 받을 피공제자의 이름 및 주소(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심사위원회는 법 제5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조서를 작성하고, 심사청구인이나 관계인으로부터 진술을 받은 경우에는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조사의 일시 및 장소
3. 조사 대상 및 조사방법
4. 조사의 결과

**제31조(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의 운영)** ①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이하 “ 재심사위원회 ” 라 한다)의 위원장은 재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재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재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재심사위원회의 세부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재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32조(재심사청구의 방식)** 법 제61조에 따른 재심사청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재심사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2. 재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공제급여의 결정 내용
3.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 정본이 심사청구인에게 송달된 날
4. 재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5. 재심사청구에 관한 고지유무 및 그 내용
6. 재심사청구의 연월일

**제33조(준용규정)** 재심사청구에 관하여는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 심사청구인 ” 은 “ 재심사청구인 ” 으로, “ 심사위원회 ” 는 “ 재심사위원회 ” 로, “ 심사청구서 ” 는 “ 재심사청구서 ” 로, “ 결정서 ” 는 “ 재결서 ” 로, “ 심사청구 ” 는 “ 재심사청구 ” 로, “ 결정 ” 은 “ 재결 ” 로 본다.

**제33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육부장관, 교육감, 학교장, 공제회 및 공제중앙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

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의3에 따른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의 지원
2. 법 제18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비 등의 지급과 구상권 행사
3. 법 제29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한국학교에 대한 학교안전공제사업
4.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위로금의 지급
5. 법 제41조에 따른 공제급여의 지급
6. 법 제43조에 따른 공제급여의 제한
7. 법 제46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환수
8.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비용의 보전
9.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접수
10. 법 제59조에 따른 심리ㆍ결정
11.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청구에 대한 접수
12. 법 제63조에 따른 심리ㆍ재결
13.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 및 제공

[본조신설 2022. 3. 22.]

[종전 제33조의2는 제33조의3으로 이동 <2022. 3. 22.>]

**제33조의3** 삭제 <2025. 3. 12.>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9. 5. 21.>

[전문개정 2011. 4. 5.]

**부칙** <제20237호,2007. 8.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영 시행 전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공제급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공제급여는 「민법」에 따라 설립되어 교육감이 각 관할구역별로 운영하고 있는 사단법인 학교안전공제회(이하 "사단법인 학교안전공제회"라 한다)의 지급기준에 따라 사단법인 학교안전공제회를 포괄 승계한 공제회가 지급한다.

**부칙** <제20740호,2008. 2. 29.>(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7> 까지 생략

<58>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단서 중 “ 교육인적자원부차관인 위원과 교육인적자원부 ”를 “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인 위원과 교육과학기술부 ”로 한다.
제5조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중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을 각각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으로 한다.
제34조제5항 중 “ 교육인적자원부령 ”을 “ 교육과학기술부령 ”으로 한다.
<59>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 <제22269호,2010. 7. 12.>(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28> 까지 생략
<129>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상시간병급여의 지급기준란 중 “ 노동부장관 ”을 “ 고용노동부장관 ”으로 한다.
<130>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 <제22402호,2010. 9. 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842호,2011. 4.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3688호,2012. 3.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조항의 시행 후에 발생한 학교안전사고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077호,2012. 8. 31.>(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2& 까지 생략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6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제2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제2항”으로 한다.

2( 및3)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24423호,2013. 3. 2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7>까지 생략

<88>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및 제14조제7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의2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89>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 <제25726호,2014. 11.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장의 교육활동 안전대책의 점검ㆍ확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학교장이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이 영 시행 후 해당 교육활동을 실시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26404호,2015. 7.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에 관한 특례) 제4조 및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역계획은 2016년 1월 31일까지 각각 수립하여야 한다.

**부칙** <제28211호,2017. 7. 26.>(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

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한다.

1의2. 행정안전부

<53>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8586호,2018. 1. 16.>(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2@ 까지 생략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8호"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로, "같은 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45조"로 한다.

제10조의3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5"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로 한다.

2$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9767호,2019. 5. 21.>

이 영은 2019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950호,2019. 7. 2.>(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0830호,2020. 7.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의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41조에 따라 요양급여의 지급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신체장해의 등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장해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1194호,2020. 12. 1.>(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0조, 제10조의3 및 별표 1을 각각 삭제한다.

③ 생략

**부칙** <제31211호,2020. 12. 1.>(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1& 생략

**부칙** <제31380호,2021. 1. 5.>(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846호,2021. 6. 29.>(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6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제2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32018호,2021. 9. 29.>(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528호,2022. 3. 8.>(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549호,2022. 3. 22.>

이 영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382호,2025. 3. 12.>(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658호,2025. 7.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취업가능기간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공제회ㆍ심사위원회ㆍ재심사위원회에 계속 중인 사건 및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신체장해 및 사망에 대한 위자료 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공제회ㆍ심사위원회ㆍ재심사위원회에 계속 중인 사건 및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삭제 <2020. 12. 1.>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5. 7. 21.>

##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표(제16조제1항 관련)

| 등 급 | 신 체 장 해 | 노동력 상실률(%) |
|---|---|---|
| 제1급 | 1. 두 눈이 실명된 자<br>2. 씹는 것과 언어의 기능이 전부 상실된 자<br>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호가 필요한 사람<br>4. 흉복부 장기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항상 곁에서 돌보아 줄 필요가 있는 자<br>5. 반신불수가 된 자<br>6. 두 팔을 팔꿈치관절(肘關節) 이상에서 상실한 자<br>7. 두 팔의 기능이 전부 상실된 자<br>8. 두 다리를 무릎관절(膝關節) 이상에서 상실한 자<br>9. 두 다리의 기능이 전부 상실된 자 | 100 |
| 제2급 |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자<br>2. 두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자<br>3. 두 팔을 손목관절(腕關節) 이상에서 상실한 자<br>4. 두 다리를 발관절(足關節) 이상에서 상실한 자<br>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현저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간호가 필요한 사람<br>6. 흉복부 장기에 현저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곁에서 돌보아 줄 필요가 있는 자 | 100 |
| 제3급 |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자<br>2. 씹는 것 또는 언어의 기능이 전부 상실된 자<br>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평생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br>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평생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자<br>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상실한 자 | 100 |
| 제4급 | 1. 두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자<br>2. 씹는 것과 언어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br>3.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br>4.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상실한자<br>5.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br>6. 두 손의 손가락 기능이 모두 용도 상실된 자<br>7. 두 발을 발목발허리관절(족근중족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 90 |
| 제5급 |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자<br>2. 한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br>3.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br>4. 한 팔의 기능이 전부 상실된 자<br>5. 한 다리의 기능이 전부 상실된 자 | 80 |

| | | |
|---|---|---|
| | 6. 두발의 발가락을 모두 상실한 자 | |
| 제6급 | 1. 두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자<br>2. 씹는 것 또는 언어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br>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br>가. 두 귀의 청력이 모두 귓바퀴에 대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br>나.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br>4. 척추에 심한 변형이나 심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br>5. 한 팔의 3대 관절 중의 2개 관절이 용도 상실된 자<br>6.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의 2개 관절이 용도 상실된 자<br>7.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와 검지를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상실한 자 | 70 |
| 제7급 |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자<br>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br>가.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br>나.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br>3. 척추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br>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장해가 남아 간단한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br>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간단한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br>6. 한 손의 엄지와 검지를 상실한 자 또는 엄지나 검지를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상실한 자<br>7.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와 검지를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이 용도 상실된 자<br>8. 한 발을 발목발허리관절(족근중족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br>9. 한 팔에 가관절(假關節: 부러진 뼈가 완전히 아물지 못하여 그 부분이 마치 관절처럼 움직이는 상태)이 남아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br>10.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br>11. 두 발의 발가락이 모두 용도 상실된 자<br>12. 외모에 심한 흉터가 남은 사람<br>13. 양쪽의 고환을 상실한 자 | 60 |
| 제8급 | 1. 한 눈이 실명되거나 한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자<br>2. 척추에 운동장해가 남은 자<br>3. 한 손의 엄지를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상실한 자<br>4. 한 손의 엄지와 검지가 용도 상실된 자 또는 한 손의 엄지나 검지를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이 용도 상실된 자<br>5. 한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자<br>6. 한 팔의 3대 관절 중의 1개 관절이 용도 상실된 자<br>7.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의 1개 관절이 용도 상실된 자 | 50 |

| | | |
|---|---|---|
| |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자<br>9.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자<br>10. 한 발의 5개의 발가락을 모두 상실한 자<br>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상실한 자<br>12. 전신의 40퍼센트 이상에 흉터가 남은 사람 | |
| 제9급 | 1. 두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자<br>2. 한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자<br>3. 두 눈에 반맹증(半盲症)·시야협착(視野狹窄) 또는 시야이상(視野異常)이 남은 자<br>4. 두 눈의 눈꺼풀에 현저한 결손이 남은 자<br>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br>6. 씹는 것과 언어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br>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br>가.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br>나.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br>다.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br>7의2. 척추에 뚜렷한 변형이 남은 사람<br>8. 한 손의 엄지를 상실한 자 또는 검지를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상실한 자 또는 엄지와 검지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상실한 자<br>9. 한 손의 엄지를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이 용도 상실된 자<br>10.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상실한 자<br>11. 한 발의 발가락이 모두 용도 상실된 자<br>12. 생식기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br>1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장해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br>14.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 40 |
| 제10급 | 1. 한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자<br>2. 씹는 것 또는 언어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br>3. 14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자<br>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br>가.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br>나.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br>5. 한 손의 검지를 상실한 자 또는 엄지와 검지 이외의 2개의 손가락을 상실한 자<br>6. 한 손의 엄지가 용도 상실된 자 또는 검지를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이 용도 상실된 자 또는 엄지와 검지 외의 3개의 손가락이 용도 상실된 자<br>7. 한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단축된 자<br>8.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상실한 자<br>9. 한 팔에 3대 관절 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 30 |

| | | |
|---|---|---|
| | 자<br>10.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 | |
| 제11급 | 1. 두 눈의 안구(眼球)에 현저한 조절기능 장해나 또는 현저한 운동 장해가 남은 자<br>2. 두 눈의 눈꺼풀에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br>3. 한 눈의 눈꺼풀에 현저한 결손이 남은 자<br>4. 한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br>5. 척추에 변형이 남은 사람<br>6. 한 손의 중지 또는 약지를 상실한 자<br>7. 한 손의 검지가 용도 상실된 자 또는 엄지와 검지 이외에 2개의 손가락이 용도 상실된 자<br>8.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이 용도 상실된 자<br>9. 흉복부 장기에 장해가 남은 자<br>10. 외모에 중등도(中等度)의 흉터가 남은 사람 | 20 |
| 제12급 | 1. 한 눈의 안구에 현저한 조절기능 장해 또는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br>2. 한 눈의 눈꺼풀에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br>3. 7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자<br>4.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자<br>5. 쇄골·가슴뼈(胸骨)·늑골·어깨뼈(肩胛骨)나 또는 엉덩뼈(骨盤)에 현저한 기형이 남은 자<br>6. 한 팔의 3대 관절 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br>7.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br>8. 팔과 다리의 긴 뼈에 기형이 남은 자<br>9. 한 손의 중지 또는 약지가 용도 상실된 자<br>10. 한 발의 두 번째 발가락을 상실한 자 또는 두 번째 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상실한 자 또는 세 번째 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상실한 자<br>11.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이 용도 상실된 자<br>12. 국부에 현저한 신경증상이 남은 자<br>13.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 | 15 |
| 제13급 | 1. 한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자<br>2. 한 눈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이상이 남은 자<br>3.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자<br>4.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상실한 자<br>5. 한 손의 엄지의 손가락뼈의 일부를 상실한 자<br>6. 한 손의 검지의 손가락뼈의 일부를 상실한 자<br>7. 한 손의 검지의 손톱 바로 밑의 관절(末關節)을 굽혔다 폈다를 할 수 없는 자<br>8. 한 다리가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자<br>9. 한 발의 세 번째 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상 | 10 |

| | | |
|---|---|---|
| | 실한 자<br>10. 한 발의 두 번째 발가락이 용도 상실된 자 또는 두 번째 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이 용도 상실된 자 또는 세 번째 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이 용도 상실된 자 | |
| 제14급 | 1. 한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또는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자<br>2. 3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자<br>3. 팔의 노출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br>4. 다리의 노출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br>5. 한 손의 새끼손가락이 용도 상실된 자<br>6. 한 손의 엄지와 검지 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상실한 자<br>7. 한 손의 엄지와 검지 외의 손가락의 손톱 바로 밑의 관절을 굽혔다 폈다를 할 수 없는 자<br>8. 한 발의 세 번째 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이 용도 상실된 자<br>9.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자 | 5 |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5. 7. 21.>

2개 부위 이상의 신체장해 종합평가 등급표(제1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관련)

| 등급 | 14 | 13 | 12 | 11 | 10 | 9 | 8 | 7 | 6 | 5 | 4 | 3 | 2 |
|---|---|---|---|---|---|---|---|---|---|---|---|---|---|
| 14 | 14 | 13 | 12 | 11 | 10 | 9 | 8 | 7 | 6 | 5 | 4 | 3 | 2 |
| 13 | 13 | 12 | 11 | 10 | 9 | 8 | 7 | 6 | 5 | 4 | 3 | 2 | 1 |
| 12 | 12 | 11 | 10 | 10 | 9 | 8 | 7 | 6 | 5 | 4 | 3 | 2 | 1 |
| 11 | 11 | 10 | 10 | 10 | 9 | 8 | 7 | 6 | 5 | 4 | 3 | 2 | 1 |
| 10 | 10 | 9 | 9 | 9 | 9 | 8 | 7 | 6 | 5 | 4 | 3 | 2 | 1 |
| 9 | 9 | 8 | 8 | 8 | 8 | 8 | 7 | 6 | 5 | 4 | 3 | 2 | 1 |
| 8 | 8 | 7 | 7 | 7 | 7 | 7 | 6 | 5 | 4 | 3 | 2 | 1 | 1 |
| 7 | 7 | 6 | 6 | 6 | 6 | 6 | 5 | 5 | 4 | 3 | 2 | 1 | 1 |
| 6 | 6 | 5 | 5 | 5 | 5 | 5 | 4 | 4 | 4 | 3 | 2 | 1 | 1 |
| 5 | 5 | 4 | 4 | 4 | 4 | 4 | 3 | 3 | 3 | 2 | 1 | 1 | 1 |
| 4 | 4 | 3 | 3 | 3 | 3 | 3 | 2 | 2 | 2 | 1 | 1 | 1 | 1 |
| 3 | 3 | 2 | 2 | 2 | 2 | 2 | 1 | 1 | 1 | 1 | 1 | 1 | 1 |
| 2 | 2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주) 별표 2.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표에 따른 등급 7급과 8급에 해당하는 2개 부위의 신체장해인은 이 표에 따라 5급이 되고, 다시 9급이 경합될 때에는 이 표에 따라 4급이 된다.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2. 3. 22.>

간병급여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제17조제1항 관련)

| 구분 | 지급대상 | 지급기준 |
|---|---|---|
| 상시간병급여<br>(常時看病給與) | 1.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기능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자<br>2. 두 눈·두 팔 또는 두 다리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와 함께 그 밖의 부위에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에 따른 간병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
| 수시간병급여<br>(隨時看病給與) | 3.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기능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자<br>4.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기능 장해외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1급(조정장해 포함)에 해당하는 자<br>5. 두 눈·두 팔 또는 두 다리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장해와 함께 그 밖의 부위에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자<br>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어 혼자의 힘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자로서 수시간병을 받아야 하는 자<br>7.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의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거동이 전혀 불가능 한 자 | 상시간병급여액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참고: 간병급여 지급대상자가 무료 요양소에 입소하여 간병비용을 지출하지 아니하거나 지출한 간병비용이 간병급여액에 미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간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실제 지출된 간병비용만 지급한다.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5. 7. 21.>

신체장해에 대한 위자료 기준표(제19조 관련)

| 구 분 | | 금 액 |
|---|---|---|
| 가. 피해자 본인 | 노동력 100퍼센트 상실 | 2천만원 |
| | 그 밖의 경우 | 2천만원×노동력상실률 |
| 나. 배우자(동거 중인 사실혼관계인 사람을 포함한다), 미혼자(이혼하거나 사별한 사람을 포함하되,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하지 않는다)의 부모 | | 피해자 본인의 각 1/2 |
| 다. 부모·자녀 | | 피해자 본인의 각 1/4 |
| 라. 그 밖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 동거 중인 시부모·장인·장모 | | 피해자 본인의 각 1/8 |

(주) 1. 피해자 본인에 한하여 본인이 세대주인 경우에는 위 표의 금액에 50퍼센트를 가산하고, 1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위 표의 금액에 20퍼센트를 감액한다.

2. 위 표의 금액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자료를 가감할 수 있다.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5. 7. 21.>

## 사망에 대한 위자료 기준표(제19조 관련)

| 구 분 | 금 액 |
|---|---|
| 가. 피해자 본인 | 2천만원 |
| 나. 배우자(동거중인 사실혼관계인 사람을 포함한다), 미혼자(이혼하거나 사별한 사람을 포함하되,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하지 않는다)의 부모 | 피해자 본인의 각 1/2 |
| 다. 부모·자녀 | 피해자 본인의 각 1/4 |
| 라. 그 밖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 동거중인 시부모·장인·장모 | 피해자 본인의 각 1/8 |

(주) 1. 피해자 본인에 한하여 본인이 세대주인 경우에는 위 표의 금액에 50퍼센트를 가산하고, 1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위 표의 금액에 20퍼센트를 감액한다.

2. 위 표의 금액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자료를 가감할 수 있다.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사망자 본인의 생활비 비율표(제20조제1항 관련)

| 구 분 | 생활비 비율표 |
|---|---|
| 부양가족이 없는 자 | 35퍼센트 |
| 부양가족이 있는 자 | 30퍼센트 |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개정 2019. 5. 2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교육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의 결과가 경미한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만원) | | |
|---|---|---|---|---|
| |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이상 위반 |
| 가. 법 제26조(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학교안전공제회·학교안전공제중앙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 법 제72조제1항 | 100 | 300 | 500 |
| 나. 법 제42조제4항을 위반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경우 | 법 제72조제2항 제1호 | 10 | 30 | 50 |
| 다.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지를 | 법 제72조제2항 제2호 | 10 | 30 | 50 |

| | | | | |
|---|---|---|---|---|
| 한 경우 | | | | |
| 라.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제공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제2항 제3호 | 10 | 30 | 50 |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 7. 22.] [교육부령 제363호, 2025. 7. 22., 일부개정]

교육부 (교육안전정책과) 044 - 203 - 665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 ①학교의 장(이하 " 학교장 " 이라 한다)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 법 " 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횟수ㆍ교육시간ㆍ강사 및 교육실적에 대한 보고방법 등은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 3. 30., 2014. 1. 3., 2015. 7. 21.>

1.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생활안전교육
2. 교통수단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교육
3.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교육
4.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5. 화재ㆍ재난 등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한 재난안전교육
6. 일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직업안전교육
7.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8. 그 밖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② 삭제<2015. 7. 21.>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장이 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게 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자료의 개발, 체험시설의 확충 및 관련 시설의 이용정보의 제공 등을 해야 한다.<신설 2012. 3. 30., 2013. 3. 23., 2020. 7. 17.>

④ 법 제8조제3항에서 "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교육 " 이란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신설 2015. 7. 21.>

⑤ 학교장이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전문교육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5. 7. 21., 2025. 7. 22.>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안전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소속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제2조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
3.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
4. 그 밖에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안전교육 운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체험시설 및 안전교육기관

**제2조의2(요양급여의 세부지급기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세부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 3. 25.>

[본조신설 2012. 3. 30.]

[제목개정 2022. 3. 25.]

**제2조의3(간병료의 지급기준)** ① 영 제18조의2제1항제2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의학적으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혼자 힘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경우
2. 두 눈의 실명 등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경우
3. 뇌의 손상으로 정신이 혼미하거나 착란을 일으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경우
4. 신경계통 또는 정신의 장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등 치료에 뚜렷한 지장이 있는 경우
5. 신체 표면 면적의 35퍼센트 이상에 걸친 화상을 입어 수시로 적절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6. 골절로 인한 견인장치 또는 석고붕대 등을 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경우
7. 하반신 마비 등으로 배뇨·배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욕창 방지를 위하여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8.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경우
9. 수술 등으로 일정 기간 거동이 제한되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경우
10. 그 밖에 부상·질병 상태가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

② 영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간병료의 구체적인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2. 3. 25.]

**제2조의4(위로금의 청구 및 지급절차)** ①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위로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로금청구서를 작성하여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로금의 지급절차에 대하여는 제7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전비용"은 "위로금"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2. 3. 30.]

**제3조(공제급여의 청구 및 지급 절차 등)** ①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공제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제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공제가입자 또는 공제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 3. 30., 2022. 3. 25.>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공제급여청구서에는 청구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법 제36조제4항제3호에 따른 간병료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간병에 소요되는 부대경비에 대한 공제급여청구서인 경우에는 의료기관 입원확인서 등 의무기록과 간병 필요 여부 등에 관하여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이 발급한 소견서로 한다)를 첨부해야 한다.<신설 2022. 3. 25.>

③공제가입자는 제1항에 따라 공제급여청구서를 받으면 이를 지체 없이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 3. 25.>

④공제회는 공제급여를 지급하는 결정을 내린 경우 그 사실을 공제가입자와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2. 3. 25.>

**제4조(급여원부의 작성)** ①공제회는 공제급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급여를 받은 피공제자별 급여원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공제회는 공제급여와 관계 있는 자의 청구를 받으면 급여원부를 열람시켜야 하며, 필요하면 증명서를 발부할 수 있다.

**제5조(공제급여의 제한)** 법 제43조제4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공제가입자가 공제료의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을 말한다. <개정 2008. 3. 4., 2013. 3. 23., 2025. 7. 22.>

**제5조의2(사고발생통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제가입자가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하여 공제회에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 7. 22.]

**제6조(부당이득의 환수)** ①공제회는 법 제46조에 따라 부당이득을 환수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납부 책임이 있는 자에게 그 금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금액을 내야 한다.

**제7조(비용의 보전)** ①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보전하는 비용(이하 "보전비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손해방지ㆍ경감비용 및 긴급조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비용 또는 유익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3.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한 민사ㆍ형사소송의 비용 및 공탁대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

②보전비용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보전비용청구서를 작성하여 공제가입자를 거쳐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보전비용의 청구를 받은 공제회는 청구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전비용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조사의 필요성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14일 이내에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 결정이 어려운 때에는 추가로 14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④공제회가 보전비용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전비용을 청구한 자에게 보전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공제료에 대한 이의 신청)**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통보된 공제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공제가입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제료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30.>

**제9조(공제료의 납부)** ①공제회는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학교별 공제료를 정하여 매년 4월 1일까지 공제가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공제가입자는 공제료를 매년 4월 30일까지 공제회에 내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공제회에 가입한 공제가입자는 가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제료를 내야 한다.

**제9조의2(기금의 지원 등)** ① 교육감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비 등에 소요되는 예상경비를 매년 4월 30일까지 공제회에 지원하여야 한다.
② 공제회는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 정산하여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은 이월금에 포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3. 30.]

**제9조의3(집행 기준 등)**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상담 및 치료기간은 2년으로 하고, 일시보호의 기간은 30일로 한다. 다만, 추가적인 치료 등을 위하여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상담 및 치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보호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치료비 등 청구서를 작성하여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제회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비 등의 지급을 결정하기 전에 학교장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한 자료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공제회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비 등의 지급을 결정한 때에는 지급하기 전에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2. 3. 30.]

**제10조(기금운용계획)** ①법 제5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이월자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적립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
②공제회는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 사업연도 시작 1개월 전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2012. 3. 30.>

**부칙** <제912호,2007. 8. 30.>

이 규칙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2008. 3. 4.>(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4% 까지 생략

4^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 " 을 "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간 " 으로 한다.

4&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 <제142호,2012. 3.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지급기준 적용례)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발생하는 학교안전사고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금의 지원시기) 제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교육감이 공제회에 지원하는 경비와 관련하여 2012년도에 해당하는 경비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한다.

**부칙** <제1호,2013. 3. 2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57>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을 " 교육부장관 " 으로 한다.

제5조 중 " 교육과학기술부령 " 을 " 교육부령 " 으로 한다.

<58>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제21호,2014. 1.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호,2015. 7. 21.>

이 규칙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호,2016. 4. 20.>(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88호,2019. 9. 17.>(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3호,2020. 7.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2호,2022. 3. 25.>

이 규칙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8호,2022. 11.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의 세부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발생하는 학교안전사고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63호,2025. 7.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개정 2022. 11. 7.>

요양급여의 세부지급기준(제2조의2 관련)

| 구 분 | 내 용 |
|---|---|
| 가. 방사선 특수영상 진단료 | 1) 자기공명영상진단(MRI: Magnetic Resonance Imaging)은 의사의 소견에 따라 1회의 진단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br>가) 장해상태의 확인을 위한 경우<br>나) 부상 및 질병 상태가 호전이 없거나 악화된 경우 또는 진료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촬영의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br>다) 수술 후 부상 및 질병 상태 확인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br>2) 초음파 검사료는 진료기간의 범위에서 의료기관이 치료상 필요하여 실시한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 |
| 나. 무통주사제 비용 | 무통주사제 비용(해당 주사제 처방 시 수반되는 치료재료대 비용을 포함하되, 영양주사제 비용은 제외한다)은 치료에 필요한 경우 지급할 수 있다. |
| 다. 화상치료비 | 화상 또는 열상의 경우 그 치료를 위해 약제, 치료재료 또는 치료보조재의 사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약제, 치료재료 또는 치료보조재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 라. 성형수술비 | 1) 화상으로 신체기능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경우 그 화상 흉터를 제거하기 위한 수술 및 레이저치료는 각 2회로 한정하여 인정하되, 의사의 소견에 따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br>2) 사고에 의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발생한 흉터 또는 변형 등을 제거하기 위한 수술 및 레이저치료는 각 1회로 한정하여 인정하되, 의사의 소견에 따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br>3) 1) 및 2)에 따른 수술비와 레이저치료비는 다음 금액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한다.<br>구분 \| 지급기준 \| 비고 |

<table>
<tr><td rowspan="4">수술비</td><td>선상흉터</td><td>10만원/cm</td><td>폭이 1cm 미만인 선모양의 흉터(폭이 1cm 이상인 경우 면상흉터로 본다)</td></tr>
<tr><td>면상흉터</td><td>20만원/cm²</td><td>폭이 1cm 이상인 면적으로 이루어진 흉터</td></tr>
<tr><td>조직함몰</td><td>20만원/cm²</td><td>연조직(soft tissue) 또는 뼈조직이 상실된 채로 상처가 치유되면서 흉터부위가 패인 것</td></tr>
<tr><td colspan="2" rowspan="3">레이저치료비</td><td>25㎠ 미만: 153,540원/회</td><td rowspan="3">시술 부위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면적을 합산하며, 레이저 종류를 불문하고 산정한다.</td></tr>
<tr><td>25㎠ 이상 100㎠ 미만: 255,900원/회</td></tr>
<tr><td>100㎠ 이상: 358,260원/회</td></tr>
</table>

| | |
|---|---|
| 마. 응급의료관리료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환자에 해당하는 피공제자의 진료에 소요된 응급의료관리료의 산정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응급환자에 해당되지 않는 피공제자의 진료를 위하여 응급의료기관을 이용한 경우에도 피공제자 또는 피공제자의 친권자·후견인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피공제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부담한 비용을 지급한다. |
| 바. 물리치료비 | 물리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비용을 지급하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물리치료 산정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br>1)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br>2) 의료기관에서 행하는 물리치료인 경우 |
| 사. 치아보철비 등 | 1) 상부보철(사기 재료 및 금속 재료 등으로 만든 인공치아를 말한다) 비용은 치아 1대당 2회로 한정하며, 각 회당 500,000원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한다.<br>2) 캐스트코어(cast core: 치아에 기둥을 세워 손상된 치아를 복구하는 치료 중 환자 맞춤형 치료를 말한다), 포스트(post: 치아 |

| | |
|---|---|
| | 에 기둥을 세워 손상된 치아를 복구하는 치료 중 기성품 치료를 말한다) 및 레진(치아 메움용 합성수지재를 말한다) 비용은 치아 1대당 각 1회로 한정하며, 각 회당 150,000원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한다.<br>3) 임플란트 비용은 담당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치아 1대당 각 1회로 한정하며, 각 회당 2,000,000원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에 따라 치아보철비가 지급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임플란트 비용을 지급한다.<br>4) 장기고정장치 및 교정장치(견인치료를 목적으로 한 장치로 한정한다) 비용은 치아 1대당 각 1회로 한정하며, 각 회당 500,000원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br>5) 1) ~ 4) 이외의 치아보철비 등은 의사의 소견에 따라 실비를 인정할 수 있다. |
| 아. 장애인 보조기구 비용 | 1)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인공팔다리 · 보조기 · 구두 · 휠체어 · 목발 · 보청기 · 안경 · 콘택트렌즈 · 인공안구 · 가발 · 흰지팡이 · 인공후두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한다.<br>2) 안경과 보청기 비용은 해당 사고 이전에는 착용하지 않다가 해당 사고로 착용하게 된 경우 1회로 한정하여 지급하고, 그 가액은 시중 상품 중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정도의 품질로서 실제 구입한 가격으로 한다.<br>3) 이미 장착하고 있던 장애인보조기구가 일부 훼손되어 본래의 기능회복을 위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산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따른다. 다만, 근전전동의수[사용자의 의도를 잔존근육에서 발생되는 근전도(EMG) 신호를 통해 파악하여 손동작을 구현하는 인공 손을 말한다] 배터리의 경우 사용 가능 기간을 2년, 휠체어 배터리의 경우에는 사용 가능 기간을 1년으로 한다. |
| 자. 진단서 등 발급 수수료 | 1) 본인부담 진료비(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은 제외한다)가 5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진단서 등 요양급여의 내용을 쓴 의사의 증명서를 제출한다. 다만, 공제회가 요양급여 지급 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 진료비가 5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진단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 | |
|---|---|
| | 2) 1)에 따라 제출된 진단서 등의 발급 수수료에 대해서는 실비를 지급한다. |
| 차. 외국 체류 중에 치료를 하고 요양급여 승인을 받은 경우의 비용 | 1) 환율의 적용시점은 외국의료기관에 진료비를 납부한 때로 하며, 외국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는 원본 또는 사본과 그 번역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br>2) 외국 요양기관에서 행한 요양에 대한 요양비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br>가) 국내의 기준에 상응하는 경우에는 국내의 기준에 따른 금액<br>나) 국내의 기준으로 산정하기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외국 요양기관에 지급한 금액 |

비고

1. 요양급여의 수가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수가에 따른다.
2. 공제회는 피공제자의 진료와 관련하여 법 및 영 등에서 요양급여로 정하지 않는 진료항목 및 비용 중에서 피공제자의 진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사의 소견서 등을 참고하여 인정할 수 있다.
3. 공제회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공제자가 치료받기 전에 치료비를 지급할 때 중간이자를 공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제방식은 호프만방식을 따른다.
   가. 성장기 등의 사유로 현재는 치료가 불가능하지만 일정기간이 지나면 치료가 가능한 경우
   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향후에 치료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11. 7.>

# 공제급여(위로금, 보전비용) 청구서(중간, 최종)

(앞쪽)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

| | | | |
|---|---|---|---|
| 청구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 | 생년월일 |
| | 주소 | | |
| | 전화번호 | | 생년월일 |
| | 피공제자와의 관계 | | |
| | 공제급여 청구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함 | | |
| | 위임인 | 성명 | |
| | 대리인 | 성명 | 생년월일 |
| | | 주소 | |
| | | 전화번호 | |
| 공제가입자 | 학교명 | | |
| | 학교장 | | |
| | 주소 | | |
| 피공제자 | 성명 | | 생년월일 |
| | 주소 | | |
| | 소속 | | |
| 사고개요 (상세 내용 별지 참조) | 발생일시 | | |
| | 발생장소 | | |
| | 사고관련자 소속 | | 성명 |
| | 사고경위 및 내용 | | |
| 청구액 | 요양급여 | | 장례비 |
| | 장해급여 | | 보전비용 |
| | 간병급여 | | 위로금 |
| | 유족급여 | | 기타 |
| | 합계 | | |
| 은행명 | | 예금주 | 계좌번호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41조 및 제4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제급여(위로금, 보전비용)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제회 이사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첨부서류 | 아래참조 | 수수료<br>없 음 |
|---|---|---|

## 청구서 제출 시 참고사항

1. 청구서는 공제가입자(학교장) 또는 학교안전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청구인이 피공제자가 아닐 때에는 청구할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을 할 때에는 대리인에게 청구행위를 위임하여야 합니다.
4. 청구시 기재란의 지면이 부족하면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위의 서류 외에도 사고피해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면·사진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 급여종류 | 청구인 제출서류(각 1부) | 비 고 |
|---|---|---|
| 요양급여 | 1. 요양급여의 내용을 쓴 의사의 증명서<br>2. 진료비계산서 영수증(약제비는 처방전에 의한 경우만 지급)<br>3. 주민등록등본<br>4. 진료비 세부내역서 | ※ 간병료나 간병에 소요되는 부대경비를 청구하는 경우 제1호의 증명서는 의료기관 입원확인서 등 의무기록과 간병 필요 여부 등에 관하여 의료인이 발급한 소견서로 한다. |
| 장해급여 | 1. 장해의 종류를 기입한 의사의 증명서<br>2. 월소득액을 증명하는 관계증명서<br>3. 주민등록등본<br>4. 소득금액증명 | |
| 간병급여 | 1. 간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등<br>2. 주민등록등본 | |
| 유족급여 및 장례비 | 1. 사망진단서 또는 시신 검안서<br>2. 월소득액을 증명하는 관계증명서<br>3. 주민등록등본<br>4. 가족관계증명서<br>5. 소득금액증명 | |
| 보전비용 | 1. 비용지출에 관련한 여러 증명서<br>2. 비용지출 영수증<br>3. 주민등록등본 | |
| 위로금 | 1. 사망진단서 또는 시신 검안서<br>2. 주민등록등본<br>3. 가족관계증명서 | |

## 처리절차

| 청구서작성 | → | 접수 | → | 확인심사 | → | 자체심사 | → | 지급여부(금액) 결정 | → | 통보 |
|---|---|---|---|---|---|---|---|---|---|---|
| 신청인 또는 피해자 (보호자) | | 학교안전 공제회 | | 학교안전 공제회 | | 학교안전 공제회 | | 학교안전 공제회 | | |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7. 22.>

# 학교안전사고 발생 신고서

| | | | | | | | |
|---|---|---|---|---|---|---|---|
| 일반사항 | 학교명 | | | | | | |
| | 사건번호 | | | 보고일자 | | | |
| | 사고자 | 성명 | 생년월일 | 성별 | 학년반 | 사고자 구분 | 연락처 |
| | 보호자 등 | | | | | | |
| | | 성명 | 사고자와의 관계 | | 연락처 | | |
| | | | | | | | |
| | 지도교사 | | 작성자 | 성명 | | 연락처 | |

| | | |
|---|---|---|
| 사고관련자 | 성명 | |
| | 학년반 | |
| | 사고관련자 구분 | |

| | | | | |
|---|---|---|---|---|
| 사고내용 | 사고일자 | | 사고부위 | |
| | 사고시간 | | 사고당시활동 | |
| | 사고장소 | | 사고의도성 | |
| | 사고형태 | | | |
| | 사고매개물 | | | |

| | |
|---|---|
| 사고개요 | |
| 지도 내용 및 안전교육 내용 | |
| 사고발생 후 긴급 조치 내용 | |
| 그 밖의 사항 | |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수신명의**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 4. 20.>

# 공제료 이의 신청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

| | | | | | |
|---|---|---|---|---|---|
| 공제가입자 | 학교명 | | | | |
| | 공제가입자 성명 | | | | |
| | 전화번호(학교) | | | | |
| 피공제자 현황 (기준일: 매년 4월 1일) | 학생 | 1학년 | | 4학년 | |
| | | 2학년 | | 5학년 | |
| | | 3학년 | | 6학년 | |
| | 교원 | | | | |
| | 일반직 및 기능직 | | | | |
| | 일용직 등 (공제회 가입자) | | | | |
| | 계 | | | | |

| | | | |
|---|---|---|---|
| 공제료 | 공제회 산정액 | 이의 신청액 | 증감 |
| | | | |

| | |
|---|---|
| 이의 신청 사유 | ※ 상세한 내용은 별지에 적을 수 있습니다.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제료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학교장 신청인(공제가입자) (서명 또는 인)

공제회 이사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 4. 20.>

# 학교폭력 피해 치료비 등 청구서

(앞쪽)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

| | | | |
|---|---|---|---|
| 청구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 | 생년월일 |
| | 주소 | | |
| | 전화번호 | | |
| | 피공제자와의 관계 | | |
| | 학교폭력 피해 치료비용 청구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함 | | |
| | 위임인 | 성명 | |
| | 대리인 | 성명 | 생년월일 |
| | | 주소 | |
| | | 전화번호 | |
| 공제 가입자 | 학교명 | | |
| | 학교장 | | |
| | 주소 | | |
| 피공제자 | 성명 | | 생년월일 |
| | 주소 | | |
| | 소속 | | |
| 사고개요 (상세 내용 별지 참조) | 발생일시 | | |
| | 발생장소 | | |
| | 사고관련자 소속 | | 성명 |
| | 사고경위 및 내용 | | |
| 청구액 | 심리상담 및 조언 | | |
| | 일시보호 | | |
| |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 |
| | 합계 | |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3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치료비 등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제회 이사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첨부서류 | 아래참조 | 수수료<br>없 음 |
|---|---|---|

## 청구서 제출 시 참고사항

1. 청구서는 공제가입자(학교장) 또는 학교안전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청구인이 피공제자가 아닐 때에는 청구할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을 할 때에는 대리인에게 청구행위를 위임하여야 합니다.
4. 청구시 기재란의 지면이 부족하면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위의 서류 외에도 사고피해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도면 · 사진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 급여종류 | 청구인 제출서류(각 1부) | 비 고 |
|---|---|---|
| 심리상담 및 조언 | 1. 학교폭력관련기관장의 의뢰 확인서<br>2. 치료기관의 청구서 및 영수증 등<br>3. 주민등록등본 | |
| 일시보호 | 1. 자치위원회의 요청서 사본 또는 학교장의 확인서<br>2. 일시보호기관의 청구서 및 영수증 등 | |
|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1. 요양급여의 내용을 쓴 의사의 증명서<br>2. 요양급여 청구서 및 영수증 등<br>3. 주민등록등본 | |

## 처리절차

| 청구서작성 | → | 접수 | → | 확인심사 | → | 자체심사 | → | 치료비 등의 지급여부<br>(금액) 결정 | → | 통보 |
|---|---|---|---|---|---|---|---|---|---|---|
| 청구인<br>(피해학생 및<br>(보호자 등) | | 학교안전<br>공제회 | | 학교안전<br>공제회 | | 학교안전<br>공제회 | | 학교안전<br>공제회 | | |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2. 11. 7.>

# 학교폭력사고발생 확인서

| 사건번호 | | | 보고일자 |
|---|---|---|---|
| 피해학생 | 학교명 | | 학년반 |
| | 성명 | | 생년월일 |
| | 지도교사 | 작성자 | 작성자연락처 |
| 가해학생 | 학교명 | 학년반 | 성명 |
| 사고내용 | 사고일자 | | 부상부위 |
| | 사고시간 | | 부상정도 전치 ( )주 |
| | 사고장소 | | 사고 의도성 여[ ] 부[ ] |
| | 진단명 | | |
| | 신고기관 | [ ] 교육청 [ ] 경찰서 [ ] 학교폭력관련기관 [ ] 기타 | |
| 사고개요 | | | |
| 사고 후 학교 지도내용 및 조치사항 | | | |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또는 학교장 긴급조치 사항 | 해당여부 | [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br>[ ] 학교장 긴급조치사항 | |
| | 개최일시 | | |
| | 조치사항 | | |
| 치료 조치 및 계획 | 치료상황 | [ ] 미치료 [ ] 치료 중 [ ] 치료완료 | |
| | 치료기관 | [ ] 학교폭력관련기관 [ ] 민간단체 [ ] 병원 | |
| | 조치사항 | [ ] 심리상담 [ ] 일시보호 [ ] 병원치료 | |
| 그 밖의 사항 | | | |

210㎜× 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본 법령은 공포 후 시행전 개정된 사항을 모두 포함한 법령이며, 개별 시행일별로 공포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연혁' 또는 조문 앞의 '연' 아이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08. 9. 15.] [법률 제8886호, 2008. 3. 14., 제정]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044 - 203 - 6529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6219호、제6744호로 개정되어 법률 제7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 특례법 " 이라 한다)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이하 " 부담금 " 이라 한다)을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 납부액을 환급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 등)**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 시、도지사 " 라 한다)는 특례법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고, 부담금의 납부자에게 부담금의 환급 내용 및 방법 등을 기재한 환급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3조(환급신청 및 환급 등)** ① 특례법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한 자, 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민법」에 따른 상속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리인은 시、도지사에게 납부한 부담금의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환급신청을 받은 경우 부담금의 납부자 및 납부금액 등을 확인하고 신청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납부한 부담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는 시、도지사에게 환급에 소요되는 예산을 국가의 별도재원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특례법에 따라 납부한 것임을 알고 있는 부담금 납부자에 대하여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환급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제2항의 환급에 소요되는 예산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여 이 법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부담금의 환급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부담금환급가산금)** 시、도지사는 부담금환급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부담금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담금환급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부담금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부담금 납부자는 부담금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제6조(시효)** 부담금을 환급받을 권리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제7조(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담금의 환급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제8886호,2008. 3. 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법은 부담금의 환급에 관한 사무처리가 마무리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 본 법령은 공포 후 시행전 개정된 사항을 모두 포함한 법령이며, 개별 시행일별로 공포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연혁' 또는 조문 앞의 '연' 아이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08. 10. 13.] [대통령령 제21080호, 2008. 10. 13., 제정]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044 - 203 - 6641

**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담금 환급계획의 공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학교용지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부과처분을 취소한 경우에는 환급통지서 발급 일정 및 환급대상지역 등을 포함한 부담금 환급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환급신청 대리인)** 법 제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리인"이란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지정하는 자 또는 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민법」에 따른 상속인이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환급방법 및 절차)** ① 법 제3조에 따라 부담금 환급을 신청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부담금 환급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부담금을 실제로 부담한 자는 그 계약 사실과 부담금 부담 사실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환급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그 사실을 부담금을 납부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부담금환급금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환급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부담금환급금을 법원에 공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⑤ 부담금의 환급방법 및 절차와 환급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한다.

**제5조(부담금환급가산금 이율)** 법 제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5퍼센트를 말한다.

**제6조(권리의 양도)** 법 제5조에 따라 부담금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려는 부담금 납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양수인에게 주어야 한다.

1. 양도인의 주소와 성명

2. 양수인의 주소와 성명
3. 양도하려는 권리의 내용

**부칙** <제21080호,2008. 10. 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5. 6. 21.] [법률 제20568호, 2024. 12. 20., 일부개정]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044 - 203 - 6641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립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용 학교용지(學校用地)의 조성ㆍ개발ㆍ공급과 관련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학교용지의 확보를 쉽게 하고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기존 학교의 증축을 쉽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5. 19.>

[전문개정 2007. 12. 1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3. 21., 2017. 12. 26., 2020. 5. 19., 2020. 12. 22., 2024. 12. 20.>

1. “학교용지”란 공립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사(校舍)ㆍ체육장 및 실습지, 그 밖의 학교시설을 신설하는 데에 필요한 토지를 말한다.
2.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3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ㆍ개발하거나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오피스텔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건축법」
   나. 「도시개발법」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라. 「주택법」
   마. 「택지개발촉진법」
   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사. 「공공주택 특별법」
   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자.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카.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타.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파.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거.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더.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서.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어.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3. "학교용지부담금"이란 개발사업에 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이하 "부담금"이라 한다)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7. 12. 14.]

**제3조(학교용지의 조성·개발)** ① 300세대(제5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은 그 개발사업분을 뺀 세대 수를 대상으로 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의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의 소규모재건축사업은 기존 세대를 뺀 세대 수를 대상으로 한다)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학교용지의 위치와 규모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학교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 2. 8., 2017. 3. 21., 2020. 5. 19.>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학교시설의 설치기준에 못 미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그 개발사업의 규모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한다. 다만, 그 지역이 협소하여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개발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사업지와 인접한 곳에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7. 3. 21.>

③ 개발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개발하거나 제2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려는 때에는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제4조제4항에 따라 학교용지 매입비용의 2분의 1을 부담하는 시·도지사와 비용부담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9. 5. 28.>

④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학교용지의 조성·개발계획을 포함한 개발사업계획이 허가·인가 또는 승인되면 지체 없이 그 학교용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14.>

⑤ 제2항에 따른 적절한 규모의 학교용지 확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14.]

**제3조의2(사업계획 승인 등의 현황 통보)** ①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3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ㆍ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계획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권자는 그 사업계획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 현황을 분기별로 해당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 현황에 대한 통보 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22.]

**제4조(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인 개발사업시행자는 제3조에 따른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公有財産)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② 시ㆍ도 외의 개발사업시행자는 제3조에 따른 학교용지를 시ㆍ도에 공급하고, 시ㆍ도는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 5. 28., 2016. 1. 19., 2020. 5. 19.>

1. 다음 각 목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를 무상(「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경우 2천세대 규모 이상은 유치원ㆍ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50, 고등학교는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70으로 하고, 2천세대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조성원가)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라.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마.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2. 제1호 각 목의 개발사업시행자 외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감정평가에 의한 가액으로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시ㆍ도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에 드는 경비는 시ㆍ도의 일반회계와 제5조의4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각각 부담한다.<개정 2017. 3. 21.>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부담하는 금액을 각각 시ㆍ도의 일반회계와 제5조의4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에 계상하여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신설 2017. 3. 21.>

⑥ 제3항제1호에서 "학교용지 조성원가"란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계 법률에서 용지 조성원가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용지 조성원가를 말하며, 용지 조성원가를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택지 조성원가의 산정방식을 준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⑦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에는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개발비용에 포함할 수 있다.<신설 2009. 5. 28.>

⑧ 제3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지역 내에 사립학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한다)를 설립 또는 이전하려는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의 학교법인에 학교시설(교사·체육장 및 실습지를 포함한다)을 신설하는데 필요한 토지를 학교용지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신설 2009. 5. 28., 2016. 12. 27., 2020. 5. 19.>

[전문개정 2007. 12. 14.]

**제4조의2(학교시설에 관한 특례)** ① 제4조제3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서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소공원 및 조경녹지를 포함한 학교시설을 설치하여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시·도 교육청에 무상공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을 설치하는 개발사업시행자는 학교의 수·규모, 학교부지에 설치하는 소공원 및 조경녹지, 개교시기 및 설립비용 등에 관하여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을 설치하는 개발사업시행자는 해당 개발지역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른 기준면적에서 개발사업면적의 최대 100분의 1을 뺀 면적을 도시공원 또는 녹지로 확보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를 축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학교시설의 설치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비용이 제4항에 따른 개발이익보다 많을 경우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통하여 그 차액을 확정하고 교육감이 분담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학교시설 무상공급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시설을 설치하여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9. 5. 28.]

**제5조(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분양자등"이라 한다)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12. 14., 2015. 1. 20., 2016. 1. 19., 2017. 2. 8., 2017. 3. 21., 2020. 5. 19.>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용(移住用) 택지나 이주용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2.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3.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 결과 해당 도시개발구역 내 세대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비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다목에 따른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시행 결과 해당 정비구역 및 사업시행구역 내 세대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6. 「주택법」 제2조제11호다목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구성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② 공동주택분양자등은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 또는 공동주택을 분양한 때에는 분양공급계약자 및 분양공급계약내역 등의 분양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7. 3. 21.>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분양자료를 받은 때에는 즉시 부담금의 금액·납부기한·납부방법·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해당 공동주택분양자등에게 발부하여야 한다.<신설 2017. 3. 21.>

④ 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30일로 한다.<신설 2017. 3. 21.>

⑤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하여야 한다.<개정 2007. 12. 14., 2009. 5. 28., 2017. 3. 21., 2024. 12. 20.>

1. 개발사업시행자가 제3조제3항에 따른 교육감 의견으로 제시된 학교용지를 시·도 교육비특별회계에 기부채납(寄附採納)하는 경우
2. 제2항에 따라 분양자료를 제출받은 시점 이전의 최근 3년을 기준으로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의 신설 수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범위의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이 경우 시·도지사는 학교의 신설 수요에 관하여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노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등 취학 수요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용도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4.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담금 부과·징수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7. 12. 14., 2017. 3. 21.>

[전문개정 2000. 1. 28.]

[제목개정 2007. 12. 14.]

[2015. 1. 20. 법률 제13006호에 의하여 2013. 7. 25., 2014. 4. 24. 헌법불합치 결정된 제5조제1항을 개정함]

**제5조의2(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인 경우에는 단독주택 용지의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개정 2009. 5. 28., 2020. 5. 19., 2024. 12. 20.>

1. 공동주택 : 세대별 공동주택 분양가격×1천분의 4
2.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 : 단독주택지 분양가격× 1천분의 14
[전문개정 2007. 12. 14.]

**제5조의3(부담금 등의 강제 징수)** ① 시ㆍ도지사는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로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제1항 전단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부담금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은 체납된 부담금의 1천분의 30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2017. 3. 21., 2020. 3. 24.>
③ 시ㆍ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3. 8. 6., 2020. 3. 24.>
[전문개정 2007. 12. 14.]

**제5조의4(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ㆍ도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고, 부담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이하 이 조에서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특별회계는 시ㆍ도지사가 관리ㆍ운용한다.
③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제1항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부담금
2.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가산금
3. 그 밖에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
④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제4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경비
2. 제6조제2항에 따른 학교 증축 경비
3. 부담금의 과오납환급금
4.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소요되는 비용
5. 그 밖에 학교용지의 확보 등에 필요하거나 부담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⑤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회계의 운용 상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통보받은 내용을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2024. 12. 20.>
⑥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3. 21.]

**제6조(시ㆍ도 부담 경비의 재원)** ① 시ㆍ도는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4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의 일반회계가 부담하는 경비를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1.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부과ㆍ징수되는 지방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
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사업지역에서 부과ㆍ징수한 개발부담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3. 삭제<2017. 3. 21.>
4. 삭제<2009. 5. 28.>

②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시ㆍ도의 일반회계와 제5조의4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각각 부담한다.<개정 2017. 3. 21., 2024. 12. 20.>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부담하는 금액을 각각 시ㆍ도의 일반회계와 제5조의4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에 계상하여 교육감의 전출요청이 있는 때로부터 다음 회계연도 내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신설 2024. 12. 20.>

[전문개정 2007. 12. 14.]

**제7조(국ㆍ공유지의 학교용지로의 조성ㆍ개발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계획 승인 당시에 그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일반재산인 국유지나 공유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학교용지로 조성ㆍ개발ㆍ확보하거나 「국유재산법」 제55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0조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여(讓與)할 수 있다. <개정 2009. 1. 30., 2009. 5. 28., 2020. 3. 24.>

② 제1항에 따라 학교용지로 확보하거나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여되는 국ㆍ공유지의 면적은 학교용지에 필요한 면적으로 하되, 국유지와 공유지의 분담 비율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있는 일반재산인 국유지와 공유지의 면적 비율로 한다.<개정 2009. 1. 30., 2020. 3. 24.>

③ 개발사업시행자가 제4조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공급하는 경우 그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국ㆍ공유지가 있으면 그 국ㆍ공유지의 가액을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에 드는 비용이나 공급하는 학교용지의 가액에서 뺀다. 이 경우 국ㆍ공유지의 가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제70조, 제71조, 제74조부터 제77조까지, 제78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14.]

**제7조의2(기존 학교용지의 양여)**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서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무상공급하여야 하는 경우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개발사업지역 내에 있는 기존 공립학교 또는 폐지된 공립학교의 학교용지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3. 24.]

**제8조(학교시설기준 적용 완화)** 개발사업 시행지역에 있는 공립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시설기준 등 학교용지의 기준은 그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9.>
[전문개정 2007. 12. 14.]

**제8조의2(장기 미사용 학교용지 용도 해제 등)**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계획에 포함된 학교용지가 장기 미사용되고 주변 지역에서 학생이 추가 유발되지 아니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학교용지 용도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학교용지 용도 해제와 관련된 업무처리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학교용지 용도 해제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 3. 24.]

**제9조(권한의 위임)** ① 시ㆍ도지사는 그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해당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에 따른 인접 학교용지의 확보에 관한 업무와 교육감의 의견 표시에 관한 업무를 시ㆍ군ㆍ구의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14.]

**제10조(공사중지 요청)** 교육감은 개발사업시행자가 제3조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아니하여 개발사업계획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 조건을 위반하면 「건축법」 제79조, 「도시개발법」 제75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 「주택법」 제94조, 「택지개발촉진법」 제23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8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55조,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5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47조,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4조,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50조,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34조 및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른 공사중지를 그 개발사업계획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1., 2016. 1. 19., 2017. 2. 8., 2017. 3. 21., 2017. 12. 26., 2020. 5. 19.>
[전문개정 2007. 12. 14.]

**제11조(과태료)** ①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분양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본조신설 2017. 3. 21.]

**부칙** <제5072호,1995. 12. 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 시행당시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분양하는 주택의 분양가격이 결정ㆍ고시된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6219호,2000. 1. 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담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3조 내지 제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개발사업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656호,2002. 2. 4.>(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9>생략
<70>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7조제3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7조제1항, 제70조, 제71조, 제74조 내지 제77조, 제78조제5항 내지 제7항”으로 한다.
<71>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6744호,2002. 12. 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법 등에 의한 개발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경우에 제3조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ㆍ확보 및 경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건축법 제8조, 도시재개발법 제22조 내지 제24조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하여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거나,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③(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경우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ㆍ징수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건축법 제8조, 도시재개발법 제22조 내지 제24조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거나,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개발사업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916호,2003. 5. 29.>(주택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4) 생략

4!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 주택건설촉진법 " 을 " 주택법 " 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단서중 " 도시재개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에 따라 토지 또는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자,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분양받는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의 재건축조합원으로 당해 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자 " 를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서 토지 또는 주택을 분양받는 자(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조합원에 한한다) " 로 한다.

4@ 내지4&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7335호,2005. 1. 14.>(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2# 생략

2$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중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 을 "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 로 한다.

**제12조** 생략

**부칙** <제7397호,2005. 3. 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ㆍ확보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동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은 개발사업분(사업계획변경에 의하여 이 법 적용대상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③(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5조 및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분양공고 승인된 개발사업분(사업계획변경에 의하여 이 법 적용대상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④(300세대 규모 미만의 개발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은 300세대 규모 미만의 개발사업은 제2조제2호ㆍ제3호, 제5조제1항 및 부칙 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부칙** <제7963호,2006. 7. 1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학교용지의 공급가액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택지의 공급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성남판교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의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에 관한 특례) 제4조제3항 및 부칙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당시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2001년 12월 26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여 추진 중인 성남판교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의 초ㆍ중학교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25로 하고, 고등학교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70으로 한다.

**부칙** <제8679호,2007. 12. 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70호,2008. 3. 21.>(도시개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 제73조 "를 " 제75조 "로 한다.

1& 부터1(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9401호,2009. 1. 30.>(국유재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6> 까지 생략

<77>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 잡종재산인 국ㆍ공유지 "를 " 일반재산인 국유지나 잡종재산인 공유지 "로, " 「국유재산법」 제44조 "를 " 「국유재산법」 제55조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 잡종재산인 국유지와 공유지 "를 " 일반재산인 국유지와 잡종재산인 공유지 "로 한다.

<78>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9743호,2009. 5.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용지의 공급가액에 관한 적용례) ① 제4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1.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는 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개발사업
3.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개발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06년 7월 19일부터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제1항 각 호의 인가 등을 신청하거나 인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도시개발법」 제21조에 따른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은 제외한다) 지역 내 학교용지 중 이 법 시행 후 학교용지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20으로 하고, 고등학교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제3조**(부담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입주자 모집에 관한 승인을 최초로 신청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하고, 제5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부칙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599호,2011. 4. 1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9>까지 생략

<80>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 도시관리계획 ”을 “ 도시ㆍ군관리계획 ”으로 한다.

<81>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1998호,2013. 8. 6.>(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8>까지 생략

<69>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3항 중 “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를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로 한다.

<70> 및 <71> 생략

**부칙** <제13006호,2015. 1. 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782호,2016. 1. 19.>(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2# 까지 생략

2$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2호 중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를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로 한다.

2%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3805호,2016. 1. 19.>(주택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0>까지 생략

<8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중 “「주택법」 제2조제9호”를 “「주택법」 제2조제11호”로 하고, 제10조 중 “「주택법 제91조”를 “「주택법」 제94조”로 한다.

<82>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4468호,2016. 12. 27.>(사립학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8항 중 “「사립학교법」 제2조제2항”을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14567호,2017. 2. 8.>(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2# 까지 생략

2$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로 한다.

**제40조** 생략

**부칙** <제14569호,2017. 2. 8.>(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2# 까지 생략

2$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의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5호 중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비사업”을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비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ㆍ다목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정비구역”을 “정비구역 및 사업시행구역”으로 한다.

2% 및2^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4604호,2017. 3.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주택 특별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경우에 제3조,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른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ㆍ확보, 경비의 부담 및 학교시설에 관한 특례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1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2조,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또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승인을 얻은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경우에 제5조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ㆍ징수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양공고 승인된 개발사업(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이 법 적용대상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4조**(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항ㆍ제5항, 제5조의4, 제6조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의 편성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공사중지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사중지 요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2조,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승인을 얻은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6조**(가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부담금의 납부 독촉을 받은 납부의무자의 가산금 부과기준에 대해서는 제5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제14839호,2017. 7. 26.>(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1( 까지 생략

2)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제5항 중 “ 행정자치부장관 ”을 각각 “ 행정안전부장관 ”으로 한다.

2! 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309호,2017. 12. 26.>(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1^ 까지 생략

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중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을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으로 한다.

1* 및1(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7083호,2020. 3.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용지 양여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발사업에 따라 실시계획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최초로 신청하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091호,2020. 3. 24.>(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7>까지 생략

<98>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3항 중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을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로 한다.

<99>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7255호,2020. 5.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치원에 관한 적용례) 제4조 및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받은 유치원의 학교용지 확보와 관련된 개발사업(사업계획변경에 따라 이 법 적용대상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개발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발사업의 경우에 제3조, 제4조, 제4조의2 및 제5조에 따른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ㆍ확보, 경비의 부담, 학교시설에 관한 특례 및 부담금의 부과ㆍ징수는 이 법 시행 이후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사업계획변경에 따라 이 법 적용대상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사중지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사중지 요청은 이 법 시행 이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및 제29조,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12조 및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라 인가 또는 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사업계획변경에 따라 이 법 적용대상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667호,2020. 12.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오피스텔 개발사업의 경우 제3조, 제4조, 제4조의2 및 제5조에 따른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ㆍ확보, 경비의 부담, 학교시설에 관한 특례 및 부담금의 부과ㆍ징수는 이 법 시행 이후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은 개발사업(사업계획변경에 따라 이 법 적용대상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568호,2024. 12.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호, 제5조 및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담금 부과ㆍ징수는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분양공고 승인된 개발사업분(사업계획변경에 의하여 이 법 적용대상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02호, 2025. 10. 1., 타법개정]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044 - 203 - 6641

**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2. 14., 2009. 11. 23.>

**제1조의2(개발사업에 포함되는 오피스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오피스텔"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오피스텔을 말한다. <개정 2023. 1. 31.>

1.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초과 120제곱미터 이하일 것
2.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
3. 온돌ㆍ온수온돌, 전열기 등 바닥난방을 위한 시설을 갖출 것

[본조신설 2021. 6. 22.]

**제2조(개발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해당하는 의견서 또는 협의결과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23., 2021. 6. 22.>

1.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교육감의 의견서
2. 법 제4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교육감과의 협의결과

② 제1항 각 호의 의견서 및 협의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 11. 23.>

1. 제1항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가. 학교용지의 위치 및 규모의 적합성
   나.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기간 및 매입시기의 적절성
   다. 학교용지에 설치되어야 하는 기반시설의 종류의 타당성
   라.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학교용지 공급가액 산정의 적절성
2. 제1항제2호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가. 학교의 수ㆍ규모의 적절성
   나. 학교부지에 설치하는 소공원 및 조경녹지의 적절성
   다. 개교시기의 적절성
   라. 설립비용의 적절성

③개발사업계획 승인권자는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계획에 도시ㆍ군계획 관계 법령에 따른 학교용지에 관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에 관한 교육감

의 의견 및 교육감과의 협의결과가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2. 2. 4., 2009. 11. 23., 2012. 4. 10.>

④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지에 인접한 학교용지는 개발사업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통학거리 1천미터 이내의 것으로 하되, 교육감은 1천미터 이내에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발사업지역의 규모, 개발인접지역의 학교여건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신설 2000. 12. 20.>

⑤ 법 제3조제3항 후단에 따라 학교용지 매입비용의 부담 등에 대하여 교육감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할 때에는 학교용지 면적의 산출근거, 학교용지 매입 예상가격의 산출근거 및 학교용지 매입시기, 학교 설립시기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신설 2009. 11. 23., 2017. 9. 19.>

[제목개정 2009. 11. 23.]

**제2조의2(적정한 규모의 학교용지 확보)** ①법 제3조제5항에서 "적정한 규모의 학교용지"라 함은 초등학교 36학급, 중학교 24학급, 고등학교 24학급 미만인 학교(이하 "소규모 학교"라 한다)의 설립에 필요한 학교용지를 말한다.

②개발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규모 학교의 학교용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교지의 면적(이하 "각급 학교의 학교용지기준"이라 한다)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 12. 14.]

**제3조** 삭제 <2009. 11. 23.>

**제4조** 삭제 <2000. 12. 20.>

**제4조의2(연구자료의 제공)**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3조제3항 전단에 따라 교육감이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교육감이 법 제4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와 협의할 때 필요한 참고자료를 연구ㆍ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참고자료를 보급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5. 10. 1.>

[본조신설 2009. 11. 23.]

**제4조의3(사업계획 승인 등의 현황 통보)**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권자는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한다.

1. 토지 조성ㆍ개발의 경우: 토지 면적 및 조성 완료 예정일
2. 공동주택 건설의 경우: 공동주택 종류, 세대 수 및 준공 예정일
3. 그 밖에 적정한 규모의 학교용지 확보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1. 6. 22.]

[종전 제4조의3은 제5조로 이동 <2021. 6. 22.>]

**제5조(학교용지 및 학교시설 무상공급 지원기관)** ①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 무상공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법 제4조제3항제1호, 제4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무상공급하는 개발사업시행자와 해당 교육감에게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 무상공급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교육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추천할 수 있는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3. 23.>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2. 학교시설 및 도시개발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연구기관 또는 대학

③ 제2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지원기관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무상공급하는 개발사업시행자와 교육감이 동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학교 급별ㆍ규모별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 기준에 관한 연구
2. 무상공급하는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의 적절한 품질확보 방법 및 설치비용에 관한 연구
3. 학교 내 소공원 및 조경녹지시설의 설치에 관한 모델 개발
4. 학교용지에 대한 교육환경평가 등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연구
5. 무상공급하는 학교시설의 규모 등에 대한 이해당사자 간 분쟁에 관한 자문
6. 그 밖에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의 무상공급과 관련한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지원기관에 대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09. 11. 23.]

[제4조의3에서 이동 <2021. 6. 22.>]

**제5조의2(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ㆍ징수의 절차 등)** ①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분양공급계약체결일부터 30일(미분양된 토지 및 공동주택등이 최초 분양공급계약체결일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추가분양되는 경우에는 매 분기종료후 7일)을 말한다. <개정 2017. 9. 19.>

② 법 제5조제5항제2호에 따라 부담금이 면제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지역 중에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분양자료를 제출받은 시점 이전의 최근 3년을 기준으로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의 신설 수요가 없다고 교육감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신설 2025. 6. 20.>

1. 유치원: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취학권역
2. 초등학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통학구역
3. 중학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제4항에 따라 교육감이 고시한 지역ㆍ학교군ㆍ중학구
4. 고등학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8조제2항에 따라 입학전형실시권자가 수립한 입학전형의 실시에 관한 계획에 따라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분양자료를 제출받은 때에는 교육감에게 해당 자료를 받은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신설 2025. 6. 20.>

④ 법 제5조의2에 따라 부담금의 산정기준에 적용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 및 단독주택 용지의 분양가격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9. 11. 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납부고지서의 서식, 그 밖에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신설 2009. 11. 23., 2017. 9. 19., 2025. 6. 20.>

[본조신설 2000. 12. 20.]

**제5조의3(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운용 상황에 관한 통보)**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의4제5항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 등 운용 상황을 매년 2월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 6. 20.>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매년 3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5. 6. 20.>

[본조신설 2017. 9. 19.]

[제목개정 2025. 6. 20.]

**제6조(시ㆍ도 부담경비의 재원조달범위)** ①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세액으로 조달하는 경비는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하여 시ㆍ도의 일반회계가 부담하는 경비에서 제2항에 따른 개발부담금과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지방세는 취득세 및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말한다. <개정 2009. 11. 23., 2010. 9. 20.>

②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발부담금으로 조달하는 경비는 해당 개발사업에서 징수되는 시ㆍ도귀속 개발부담금으로 한다.<개정 2009. 11. 23.>

③ 삭제<2000. 12. 20.>

**제7조(학교용지의 기준적용 완화)** ①교육감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 학교의 학교용지기준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23.>

1. 각급학교가 공공의 운동장 또는 종합체육시설에 인접하여 그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소규모 학교의 설립에 필요한 학교용지의 확보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법 제8조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할 때 학교용지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원녹지와 인접하여 공원녹지를 체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은 각급 학교의 학교용지기준 중 체육장 기준면적을 완화하거나 체육장 면적이 포함되지 않은 학교용지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확보하도록 할 수 있다.<신설 2009. 11. 23.>

[전문개정 2005. 12. 14.]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11조에 따라 분양자료를 제5조의2제1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나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7. 9. 19.]

**부칙** <제15165호,1996. 11. 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분양계획 및 분양자료 제출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당시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계획 또는 분양자료 제출기한이 지났거나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5일이내에 분양계획 및 분양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7015호,2000. 12. 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분양자료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분양자료 제출기한이 지났거나 진행중인 경우에는 최초 분양공급계약체결일부터 30일이내 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5일 이내에 분양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7504호,2002. 2. 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79호,2005. 12. 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837호,2009. 11.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용지의 기준적용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3조제3항 전단에 따라 교육감의 의견을 듣고 학교용지를 조성ㆍ개발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

다.

**부칙** <제22395호,2010. 9. 20.>(지방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3# 까지 생략

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후단 중 " 등록세 "를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로 한다.

3%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23718호,2012. 4. 10.>(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0>까지 생략

<8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 도시계획관계법령 "을 " 도시ㆍ군계획 관계 법령 "으로 한다.

<82>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24423호,2013. 3. 2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8>까지 생략

<89>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ㆍ제2항, 제4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을 각각 " 교육부장관 "으로 한다.

제4조의2제2항 및 제4조의3제1항ㆍ제4항 중 " 국토해양부장관 "을 각각 " 국토교통부장관 "으로 한다.

<90>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 <제28295호,2017. 9.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보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8회계연도의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 관한 보고 및 통보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788호,2021. 6.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계획 승인 등의 현황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1년 2분기의 현황을 통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240호,2023. 1.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사업에 포함되는 오피스텔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오피스텔 개발사업에 대한 계획(이 영 시행 전에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받은 계획을 변경하는 계획을 포함한다)에 관한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5594호,2025. 6. 20.>

이 영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802호,2025. 10. 1.>(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⑮ 및1^ 생략

#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 2024. 12. 20.] [법률 제20569호, 2024. 12. 20., 일부개정]

교육부 (체육예술교육팀) 044 - 203 - 6990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044 - 203 - 3134

**제1조(목적)** 이 법은 학생의 체육활동 강화 및 학교운동부 육성 등 학교체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들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와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체육”이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학교운동부”란 학생선수로 구성된 학교 내 운동부를 말한다.
4. “학생선수”란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와 제34조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말한다.
5. “학교스포츠클럽”이란 체육활동에 취미를 가진 같은 학교의 학생으로 구성되어 학교가 운영하는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6. “학교운동부지도자”란 학교에 소속되어 학교운동부를 지도·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스포츠강사”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초등학교에서 정규 체육수업 보조 및 학교스포츠클럽을 지도하는 체육전문강사를 말한다.
8. “학교체육진흥원”이란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연구, 정책개발, 연수 등을 실시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학교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교육감을 포함한다)는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학생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 시책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 <개정 2013. 3. 23.>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1항의 기본 시책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협조)**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1. 3. 23.>

**제6조(학교체육 진흥의 조치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체육교육과정 운영 충실 및 체육수업의 질 제고
2. 제8조에 따른 학생건강체력평가 및 제9조에 따라 비만 판정을 받은 학생에 대한 대책
3. 제10조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및 제11조에 따른 학교운동부 운영
4.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5.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6. 유아 및 장애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
7. 학교체육행사의 정기적 개최
8. 학교 간 경기대회 등 체육 교류활동 활성화
9. 교원의 체육 관련 직무연수 강화 및 장려
10. 그 밖에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학교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조치가 적절하게 취하여지고 있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신설 2020. 10. 20.>

**제7조(학교 체육시설 설치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운동장, 체육관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체육활동 진흥에 필요한 체육 교재 및 기자재, 용품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③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학교 체육시설 관련 주요 지점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관리할 수 있다.<신설 2020. 10. 20., 2023. 3. 14.>

④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신설 2020. 10. 20., 2023. 3. 14.>

⑤ 제1항에 따른 체육활동 기반시설 확충과 제2항에 따른 체육 교재 및 기자재, 용품 등의 확보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20. 10. 20.>

**제8조(학생건강체력평가 실시계획의 수립 및 실시)** ① 국가는 학생의 건강체력 상태를 측정하기 위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학생건강체력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의 장은 실시계획에 따라 학생건강체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② 제1항에 따라 학생건강체력평가를 실시한 학교의 장은 평가결과를 교육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해당 학생과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학생건강체력평가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이나 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학생건강체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학교보건법」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 중 신체능력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생건강체력평가의 시기, 방법, 평가항목, 평가결과 등록 및 학생건강체력평가를 위탁받을 수 있는 대학이나 전문기관ㆍ단체 등의 자격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제9조(건강체력교실 등 운영)** ① 학교의 장은 제8조에 따른 학생건강체력평가에서 저체력 또는 비만 판정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건강체력증진을 위하여 정규 또는 비정규 프로그램(이하 "건강체력교실"이라 한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건강체력교실 등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제10조(학교스포츠클럽 운영)** ① 학교의 장은 학생들이 신체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경우 학교스포츠클럽 전담교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전담교사에게는 학교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지도수당을 지급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교스포츠클럽 활동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여 상급학교 진학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을 해당 학교의 여학생들이 선호하는 종목의 학교스포츠클럽으로 운영하여야 한다.<신설 2016. 2. 3.>

**제11조(학교운동부 운영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기준(이하 "최저학력"이라 한다)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의 참가를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생선수가 제2항에 따른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참가를 허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2024. 12. 20.>

② 학교의 장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선수에게 별도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신설 2021. 3. 23.>

③ 최저학력의 기준 및 실시 시기에 필요한 사항과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21. 3. 23.>

④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신체적ㆍ정서적 발달을 위하여 학기 중의 상시 합숙훈련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경기대회 참가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합숙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학생선수의 안전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1. 3. 23.>

⑤ 학교의 장은 원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선수를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21. 3. 23.>

⑥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 관련 후원금을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에 따라 설치된 학교회계에 편입시켜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1. 3. 23.>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운동부 운영과 관련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 3. 23.>

**제12조(학교운동부지도자)** ①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훈련과 지도를 위하여 학교운동부에 지도자(이하 "학교운동부지도자"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국가는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질 향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연수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수교육을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급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지도자 임용에 필요한 경비를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에 따라 설치된 학교회계에 반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지도자가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박탈하거나 폭력, 금품ㆍ향응 수수(授受)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21. 3. 23.>
⑤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지도 등을 위하여 학교운동부지도자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⑥ 교육감은 제4항의 사유 이외에 학교의 장이 부당하게 학교운동부지도자를 계약 해지하였을 경우 학교운동부지도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련 계약 해지를 철회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격기준, 임용, 급여, 신분,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2(도핑 방지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핑(「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0호의 도핑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도핑 방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핑 방지 교육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4. 18.]

**제12조의3(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선수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선수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때에는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심리치료 및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심리치료 및 안전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0. 20.]

**제13조(스포츠강사의 배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체육수업 흥미 제고 및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를 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스포츠강사의 자격기준,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2(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 ① 교육부장관은 여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수립하여 교육감 및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학교의 장은 기본지침에 따라 매년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여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체육 교재, 기자재, 용품 등의 확보기준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평가 방법 및 항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2. 3.]

**제14조(유아 및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아교육법」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에 따라 일반학교 또는 특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적절한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유치원의 장 및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체육활동 프로그램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단체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의 체육계열학과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경비의 지원 및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학교체육진흥위원회 등)** ①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를, 시ㆍ도 및 시ㆍ도교육청과 시ㆍ군ㆍ구 및 교육지원청 소속으로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3. 3. 23.>

②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 및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 및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은 여성으로 한다.<신설 2016. 2. 3.>

④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6. 2. 3.>

**제17조(학교체육진흥원)** ①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학교체육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1.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정책연구
2. 체육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학생 체력통계의 체계적 수집 및 분석
4. 제8조에 따른 학생건강체력평가의 종목ㆍ평가기준 및 시스템 개발ㆍ운영
5. 여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
6. 그 밖에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체육진흥원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지역사회와 협력)** 학교의 장은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의 관계 기관 또는 관계 단체의 장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부칙** <제11222호,2012. 1. 26.>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90호,2013. 3. 23.>(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6>까지 생략

<77>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 전단, 제7조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9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제8조제5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7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948호,2016. 2.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교체육 기반시설 확충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시설확충 계획을 수립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학교체육진흥위원회 위원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학교체육진흥위원회의 위원은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763호,2017. 4. 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498호,2020. 10. 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54호,2021. 3. 23.>(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7960호,2021. 3. 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생선수의 경기대회 참가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학생선수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에 참가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234호,2023. 3. 14.>(개인정보 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및 제4항 중 “ 영상정보처리기기 ”를 각각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로 한다.

⑪ 생략

**부칙** <제20569호,2024. 12. 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3. 9. 15.] [대통령령 제33723호, 2023. 9. 12., 타법개정]

교육부 (체육예술교육팀) 044 - 203 - 6990

**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체육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교체육 진흥 기본 시책)** ① 「학교체육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4. 20.>

1.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학교체육의 기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투자 확대 및 소요 재원에 관한 사항
4. 학교체육 진흥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의2. 학생선수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본 시책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제2조의2(학교체육 진흥 조치에 대한 감독)**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학교체육 진흥 조치에 대한 감독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독은 서면점검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4. 20.]

**제2조의3(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는 지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9. 12.>

1. 실내외 훈련장(학교운동부지도자실 및 회의실 등을 포함한다)
2. 학생선수기숙사 및 훈련시설의 출입문ㆍ복도ㆍ주차장 및 주요 교차로
3. 학생선수기숙사 및 훈련시설의 식당 및 강당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본조신설 2021. 4. 20.]

[제목개정 2023. 9. 12.]

**제3조(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격기준 등)** ① 학교의 장은 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에서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8.>

②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급여는 학교의 장이 지도경력과 실적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학교운동부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개정 2021. 4. 20.>

1. 학생선수에 대한 훈련계획 작성, 지도 및 관리
2. 학생선수의 각종 대회 출전 지원 및 인솔
2의2. 훈련 및 각종 대회 출전 시 학생선수의 안전관리
3. 경기력 분석 및 훈련일지 작성
4. 훈련장의 안전관리

④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재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재임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개정 2021. 4. 20.>

1. 제3항 각 호의 직무수행 실적
2. 복무 태도
3. 학교운동부 운영 성과
4. 학생선수의 학습권 및 인권 침해 여부

**제3조의2(도핑 방지 교육)**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도핑 방지 교육(이하 "도핑방지교육"이라 한다)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실시한다.

② 도핑방지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도핑방지교육은 도핑의 개념, 금지 약물 관련 정보 및 도핑 관련 규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도핑방지교육은 견학ㆍ체험 활동 또는 정보ㆍ통신 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10. 17.]

**제3조의3(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등)**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포츠 분야 인권침해의 유형
2. 스포츠 분야 인권침해 예방에 관한 사항
3. 스포츠 분야 인권침해 발생 시 대응 및 신고 방법
4. 스포츠 분야 인권침해와 관련된 주요 제도 및 사례
5. 그 밖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학생선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인권교육은 학기별 1회, 1회당 1시간 이상 실시한다.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심리치료 및 안전조치를 할 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본조신설 2021. 4. 20.]

**제4조(스포츠강사의 자격기준 등)** ① 초등학교의 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에서 스포츠강사를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8.>

② 초등학교의 장은 스포츠강사를 1년 단위로 계약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③ 초등학교의 장은 스포츠강사를 재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강사로서의 자질
2. 복무 태도
3. 학생의 만족도

**제5조(유아 및 장애학생 체육활동 프로그램의 운영 수탁단체)**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유치원의 장 및 학교의 장은 유아 및 장애학생 체육활동 프로그램의 운영을 학교체육 관련 전문 기관 또는 단체 중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법 제16조에 따른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 또는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 기관 또는 단체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중 체육계열학과를 운영하는 대학

**제6조(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6조에 따른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동으로 위촉한다.<개정 2013. 3. 23.>

③ 부위원장은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학교체육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13. 3. 23.>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동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3. 3. 23.>

1.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체육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교육 및 체육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청의 학교체육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4. 그 밖에 학교체육에 관한 학식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장과 제4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중앙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학교체육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13. 3. 23.>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중앙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중앙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중앙위원회를 대표하고, 중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인 부위원장,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인 부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3. 3. 23.>

**제10조(중앙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중앙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중앙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중앙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권한의 위임)** 교육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학교체육 진흥 조치에 대한 감독
2.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3.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심리치료 및 안전조치

[본조신설 2021. 4. 20.]

**부칙** <제24347호,2013. 2.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운동부지도자 및 스포츠강사의 자격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학교운동부지도자 또는 스포츠강사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는 제3조 또는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4423호,2013. 3. 2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9>까지 생략

<90>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호,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6항 및 제9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91>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 <제25668호,2014. 10.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운동부지도자 및 스포츠강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1항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임용된 학교운동부지도자 또는 스포츠강사는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각각 제3조제1항 또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학교운동부지도자 또는 스포츠강사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5840호,2014. 12. 9.>(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7751호,2016. 12. 30.>(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8354호,2017. 10. 17.>

이 영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622호,2021. 4. 20.>

이 영은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723호,2023. 9. 12.>(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의 제목 중 “ 영상정보처리기기 ”를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 영상정보처리기기 ”를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로 한다.

⑩ 생략

#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0. 18.] [교육부령 제340호, 2024. 10. 18., 일부개정]

교육부 (체육예술교육팀) 044 - 203 - 699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체육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교 체육시설의 종류)** ① 「학교체육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 7. 6.>
② 법 제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학생의 체육활동 진흥에 필요한 체육 교재 및 기자재, 용품 등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22. 7. 6.>

**제3조(학생건강체력평가의 시기 등)** 법 제8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학생건강체력평가(이하 "체력평가"라 한다)의 시기, 방법, 평가항목 및 평가결과 등록 등에 관하여는 「학교건강검사규칙」 제7조, 제8조 및 제9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신체능력검사"는 "체력평가"로 본다.

**제4조(체력평가의 위탁)** 법 제8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학교의 장은 체력평가를 다음 각 호의 학교,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중 체육계열학과를 운영하는 학교
2. 법 제16조에 따른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 또는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 기관 또는 단체

**제5조(건강체력교실의 설치 및 운영)** 학교의 장은 법 제9조에 따라 건강체력교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건강체력교실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건강체력교실의 운영 시기 및 담당자
2. 건강체력교실에서 제공할 프로그램 내용
3. 건강체력교실에 참여하는 학생의 지도 및 관리 방안

**제6조(최저학력의 기준 등)** ①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최저학력(이하 "최저학력"이라 한다)은 매 학기 말을 기준으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5개 교과(고등학교 학생선수의 경우에는 3개 교과)의 교과별 성적이 기준성적 이상인 것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22. 7. 6.>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성적은 학생선수가 속한 학교의 해당 학년 학생 전체의 제1항에 따른 교과별 평균 성적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성적으로 한다.

1. 초등학교: 100분의 50
2. 중학교: 100분의 40
3. 고등학교: 100분의 30

③ 학교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선수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최저학력의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개별화교육지원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신설 2024. 10. 18.>

④ 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은 학기당 60시간 이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2. 7. 6., 2024. 10. 18.>

⑤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 정한다.<개정 2024. 10. 18.>

**제6조의2(참가 제한 경기대회 등)** ①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란 학생선수가 학생선수의 자격으로 참가하는 모든 형태의 경기대회를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학교의 장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선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경기대회의 참가를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1. 제1학기에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해당 연도 9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말까지
2. 제2학기에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다음 연도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본조신설 2022. 7. 6.]

**제7조(학생선수를 위한 기숙사의 운영)** ① 학교의 장이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원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선수를 위하여 운영하는 기숙사(이하 "학생선수기숙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2. 7. 6.>

1. 학습시설(책상·의자·컴퓨터), 휴게실, 욕실, 침실, 화장실, 세탁실, 식당, 주방 등을 갖출 것
2. 학생선수기숙사 관리를 전담하는 교직원을 둘 것
3. 여학생인 학생선수가 학생선수기숙사에 입사(入舍)하는 경우에는 여학생의 생활지도를 전담하는 여성 교직원을 둘 것

②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기숙사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선수기숙사 생활에 따른 각종 안전사고 및 성폭력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개정 2022. 7. 6.>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학생선수기숙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8조(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학교별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계획 수립·시행에 대한 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기본지침 준수 여부 및 기본지침과 계획 내용의 연관성
2. 학교 체육활동의 계획 준수 여부
3. 계획 시행에 따른 여학생 체육활동 진흥 현황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7. 2. 3.]

**부칙** <제170호,2013. 2.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2013. 3. 2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을 " 교육부장관 " 으로 한다.

별표 1의 운동 종목별 시설의 학교체육시설의 종류란 제39호 중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을 " 교육부장관 " 으로 한다.

<59>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제118호,2017. 2. 3.>

이 규칙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호,2019. 9. 17.>(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2호,2022. 7. 6.>

이 규칙은 2024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0호,2024. 10.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저학력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학생선수가 경기대회에 참가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3.3.23>

# 학교체육시설의 종류(제2조제1항 관련)

| 구분 | 학교체육시설의 종류 |
|---|---|
| 운동 종목별 시설 | 1. 골프연습장<br>2. 궁도장<br>3. 게이트볼장<br>4. 농구장<br>5. 당구장<br>6. 라켓볼장<br>7. 럭비풋볼장<br>8. 롤러스케이트장<br>9. 배구장<br>10. 배드민턴장<br>11. 볼링장<br>12. 빙상장<br>13. 사격장<br>14. 세팍타크로장<br>15. 수영장<br>16. 스쿼시장<br>17. 승마장<br>18. 썰매장<br>19. 씨름장<br>20. 아이스하키장<br>21. 야구장<br>22. 양궁장<br>23. 역도장<br>24. 에어로빅장<br>25. 요트장<br>26. 육상장<br>27. 조정장 |

| | |
|---|---|
| | 28. 체력단련장<br>29. 체육도장<br>30. 체조장<br>31. 축구장<br>32. 카누장<br>33. 탁구장<br>34. 테니스장<br>35. 펜싱장<br>36. 하키장<br>37. 핸드볼장<br>38. 인공암벽등반장<br>39. 그 밖에 교육과정에 필요한 운동 종목의 시설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
| 그 밖의 시설 | 1. 운동장<br>2. 체육관<br>3. 샤워장, 탈의실 등 부대시설 |

■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9. 9. 17.>

# 체육 교재 및 기자재, 용품 등의 종류(제2조제2항 관련)

| 구분 | 체육 교재 및 기자재, 용품 등의 종류 |
|---|---|
| 1. 체육 교재 | 1. 교과서<br>2. 교사용 지도서 등 |
| 2. 체력 측정 | 1. 초시계<br>2. 줄자<br>3. 고깔봉[러버콘(고무로 만든 원뿔)]<br>4. 반환점<br>5. 디지털 악력계<br>6. 좌전굴 측정기(앉아서 윗몸을 앞으로 굽히는 동작을 측정하는 기기)<br>7. 스텝박스<br>8. 팔굽혀펴기대<br>9. 시디플레이어 및 앰프 등 |
| 3. 육상 운동 | 1. 스타팅블록<br>2. 허들<br>3. 신호총<br>4. 높이뛰기대(가로대 포함), 높이뛰기 매트<br>5. 멀리뛰기용 구름판<br>6. 원반<br>7. 포환<br>8. 던지기 공<br>9. 줄긋기 기구<br>10. 배턴 등 |
| 4. 구기 운동 | 1. 축구공<br>2. 농구공<br>3. 배구공<br>4. 소프트발리볼 공<br>5. 핸드볼공 |

| | |
|---|---|
| | 6. 야구장갑, 야구공, 플라스틱 방망이, 베이스 세트, 포수 보호구(마스크, 프로텍터 등)<br>7. 셔틀콕, 배드민턴 라켓, 배드민턴 네트<br>8. 탁구공, 탁구 라켓, 탁구 네트, 탁구대<br>9. 점수판<br>10. 공기주입용 펌프<br>11. 모둠조끼 등 |
| 5. 체조 운동 | 1. 리듬체조용 줄<br>2. 리듬체조용 고무공<br>3. 후프<br>4. 곤봉<br>5. 리본<br>6. 음악줄넘기용 줄<br>7. 긴 줄넘기 줄<br>8. 체조용 매트<br>9. 평균대<br>10. 뜀틀<br>11. 구름판 등 |
| 6. 그 밖의 운동 | 1. 줄다리기용 줄<br>2. 제기<br>3. 투호용구 세트<br>4. 굴렁쇠<br>5. 살바<br>6. 부메랑<br>7. 플라잉디스크 등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23호, 2026. 6. 2., 일부개정]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 044 - 203 - 6978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2021. 3. 23., 2023. 10. 24., 2025. 1. 31.>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1의3. “사이버폭력”이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 딥페이크 영상 등(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ㆍ가공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말한다)을 제작ㆍ반포하는 행위 및 그 밖에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5. “장애학생”이란 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말한다.

**제3조(해석ㆍ적용의 주의의무)** 이 법을 해석ㆍ적용하는 경우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ㆍ교육ㆍ계도 등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2. 3. 21.>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학교폭력의 규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21. 3. 23.>
② 제2조제1호 중 성폭력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책 목표ㆍ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7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3. 3. 23.>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개정 2012. 3. 21., 2013. 3. 23., 2025. 1. 21.>
1.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계도
2.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ㆍ재활 등의 지원
3. 학교폭력 관련 행정기관 및 교육기관 상호 간의 협조ㆍ지원
4.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및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5. 학교폭력의 예방과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의 치료ㆍ교육을 수행하는 청소년 관련 단체(이하 "전문단체"라 한다) 또는 전문가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6. 그 밖에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내용과 제11조제8항에 따른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등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시ㆍ도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신설 2025. 1. 21.>
④ 교육감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신설 2025. 1. 21.>
⑤ 교육부장관은 학교에서 학교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사안처리 및 예방교육 등에 관한 안내서를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신설 2023. 10. 24., 2025. 1. 21.>
⑥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교육청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그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신설 2012. 1. 26., 2013. 3. 23., 2023. 10. 24., 2025. 1. 21.>
⑦ 그 밖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25. 1. 21.>

**제6조의2(학교폭력 대응 전문교육기관 및 센터 운영 등)** ① 국가는 학생 치유ㆍ회복을 위한 보호시설 운영, 연구 및 교육 등을 수행하는 전문교육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는 학교폭력의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센터(이하 "학교폭력 예방센터"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과 제2항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센터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0. 24.]

**제7조(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설치ㆍ기능)**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평가
2.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3.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교육청, 제9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제10조의2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문단체 및 전문가가 요청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2. 3. 21.]

**제8조(대책위원회의 구성)** ① 대책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되고,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5. 10. 1.>

1.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경찰청장
2.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제1호의 위원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사람
3.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청소년 또는 의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 및 이에 따른 상담 또는 심리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5. 판사ㆍ검사ㆍ변호사
6. 전문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7. 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8. 학교운영위원회 활동 및 청소년보호활동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

④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1. 3. 23.>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부장관이 된다.<개정 2013. 3. 23.>

⑥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는 등 안건 심의를 지원하고,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책위원회에 학교폭력대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⑦ 그 밖에 대책위원회의 운영과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시행일: 2026. 1. 2.] 제8조제3항제1호의 개정부분 중 재정경제부 및 기획예산처에 관한 부분

**제9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설치)** ① 지역의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도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 1. 26.>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지역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에 관하여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2. 1. 26., 2025. 1. 21.>

③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지역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기능 등)** ① 지역위원회는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한다. 이 경우 예방대책에 시행계획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21.>

② 지역위원회는 전년도 예방대책에 따른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예방대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5. 1. 21.>

③ 그밖에 예방대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25. 1. 21.>

④ 지역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교육감 및 시·도경찰청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0. 12. 22., 2025. 1. 21.>

⑤ 교육감은 지역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나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담·치료 및 교육을 담당할 상담·치료·교육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2. 1. 26., 2025. 1. 21.>

⑥ 교육감은 제5항에 따른 상담ㆍ치료ㆍ교육 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해당 기관의 명칭, 소재지, 업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2. 1. 26., 2025. 1. 21.>

[제목개정 2012. 1. 26.]

**제10조의2(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ㆍ운영)** ①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ㆍ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에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그 밖에 지역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3. 21.]

**제11조(교육감의 임무)** ① 교육감은 시ㆍ도교육청에 학교폭력의 예방ㆍ대책 및 법률지원을 포함한 통합지원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24.>

② 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학교의 장 및 관련 학교의 장에게 그 경과 및 결과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학교폭력이 관할 구역 외의 학교폭력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그 관할 교육감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제12조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처리한 학교의 학교폭력빈도를 학교의 장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에 부정적 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9. 8. 20.>

⑥ 교육감은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전학의 경우 그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른 퇴학처분의 경우 해당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다른 학교 재입학 등의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2. 1. 26., 2012. 3. 21.>

⑦ 교육감은 대책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에 관할 구역 안의 학교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관할 구역 밖의 학교폭력 관련 사항 중 관할 구역 안의 학교와 관련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2. 1. 26., 2012. 3. 21.>

⑧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각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완료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신설 2012. 3. 21., 2015. 12. 22., 2025. 11. 11.>

⑨ 교육감은 학교폭력 등에 관한 조사, 상담, 치유프로그램 운영, 학생 치유ㆍ회복을 위한 보호시설 운영, 법률지원을 포함한 통합지원 등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신설 2012. 3. 21., 2023. 10. 24.>

⑩ 교육감은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 구성원의 학교폭력 관련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3. 10. 24.>

⑪ 교육감은 관할 구역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때에 해당 학교의 장 또는 소속 교원이 그 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면서 축소 및 은폐를 시도한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제50조 및 「사립학교법」 제62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신설 2012. 3. 21., 2021. 3. 23., 2023. 10. 24.>

⑫ 교육감은 관할 구역에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마련에 기여한 바가 큰 학교 또는 소속 교원에게 상훈을 수여하거나 소속 교원의 근무성적 평정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신설 2012. 3. 21., 2023. 10. 24.>

⑬ 교육감은 학교의 장 및 교감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23. 10. 24.>

⑭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전담부서의 구성과 제8항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제9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설치 및 제13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2. 3. 21., 2023. 10. 24.>

**제11조의2(학교폭력 조사·상담 등)**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과 사후조치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상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1. 학교폭력 피해학생 상담 및 가해학생 조사
2. 필요한 경우 가해학생 학부모 조사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계획의 이행 지도
4. 관할 구역 학교폭력서클 단속
5.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민간 기관 및 업소 출입·검사
6. 그 밖에 학교폭력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조사·상담 등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교육감 및 제2항에 따른 위탁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상담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1. 3. 23.>

④ 교육감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 권한을 위임받은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상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직원을 지정하여 조사·상담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조사·상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학교폭력 조사·상담자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고, 그 관계 직원 및 학교폭력 조사·상담자로 하여금 현장조사·문서열람 등을 하게 하거나 피해학생·가해학생·목격학생·관련교사·보호자 등 관계인에게 출석·진술·조사협조 및 자료제출을 요청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5. 1. 21.>

⑤ 교육감 또는 제4항에 따른 교육장은 학교폭력 조사·상담자 운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2025. 1. 21.>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폭력 조사·상담자가 될 수 없다.<신설 2025. 1. 21.>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⑦ 교육감 또는 제4항에 따른 교육장은 학교폭력 조사ㆍ상담자로 위촉하고자 하는 사람이 제6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하고자 하는 학교폭력 조사ㆍ상담자가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신설 2025. 1. 21.>

⑧ 제7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신설 2025. 1. 21.>

⑨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조사ㆍ상담 등을 하는 관계 직원 및 학교폭력 조사ㆍ상담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개정 2025. 1. 21.>

⑩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조사 등의 결과는 학교의 장 및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5. 1. 21.>

⑪ 그 밖에 학교폭력 조사ㆍ상담자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신설 2025. 1. 21.>

[본조신설 2012. 3. 21.]

**제11조의3(관계 기관과의 협조 등)** ① 교육부장관, 교육감, 지역 교육장,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과 관련한 개인정보 등을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0. 12. 22.>

② 제1항에 따라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및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개정 2020. 12. 22., 2021. 3. 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계 기관과의 협조 사항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3. 21.]

**제11조의4(학교폭력 업무 담당자에 대한 지원 및 면책)** ① 학교의 장은 제14조제3항에 따른 책임교사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업시간을 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교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4조의2에 따른 법률지원단을 통하여 학교폭력과 관련된 상담 및 민사소송이나 형사 고소ㆍ고발 등을 당한 경우 이에 대한 상담 등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 및 교원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학생생활지도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학생생활지도가 관계 법령 및 학칙을 준수하여 이루

어진 정당한 학교폭력사건 처리 또는 학생생활지도에 해당하는 때에는 학교의 장 및 교원은 그로 인한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3. 10. 24.]

**제12조(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19. 8. 20.>

②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2. 1. 26., 2019. 8. 20.>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고 학교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2. 3. 21., 2019. 8. 20.>

④ 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 및 교육지원청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2. 3. 21., 2019. 8. 20.>
[제목개정 2019. 8. 20.]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고등학교를 포함한다)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0.>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신설 2011. 5. 19.,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1. 심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4.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5.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심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신설 2011. 5. 19., 2019. 8. 20.>

④ 제2항에 따라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교육장(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가해학생ㆍ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24. 1. 9.>

1. 회의 일시ㆍ장소와 안건
2. 조치 요청사항 등 회의 결과

⑤ 심의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그 밖의 아동심리와 관련된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피해학생이 상담ㆍ치료 등을 받은 경우 해당 전문가 또는 전문의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신설 2020. 12. 22., 2024. 1. 9.>

⑥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 5. 19., 2019. 8. 20., 2020. 12. 22., 2024. 1. 9.>

[제목개정 2011. 5. 19., 2019. 8. 20.]

**제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① 제13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2023. 10. 24.>

1. 2주 이상의 신체적ㆍ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는 경우 또는 재산상 피해가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가 아닌 경우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해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1.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의 서면 확인
2. 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한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는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관계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이하 "관계회복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권유할 수 있다.<신설 2023. 10. 24.>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계회복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2023. 10. 24.>

⑤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3. 10. 24.>

[본조신설 2019. 8. 20.]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실을 설치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라 전문상담교사를 둔다.

② 전문상담교사는 학교의 장 및 심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의 상담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20.>

③ 학교의 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학부모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구성한다. 이 경우 학부모는 전담기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2. 3. 21., 2019. 8. 20.>

④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전담기구로 하여금 제13조의2에 따른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하도록 한다.<신설 2019. 8. 20.>

⑤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ㆍ실시하며, 학교의 장 및 심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조사결과 등 활동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 3. 21., 2019. 8. 20.>

⑥ 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사실 확인을 위하여 전담기구에 실태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09. 5. 8., 2012. 3. 21., 2019. 8. 20.>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실태조사에 관한 예산을 지원하고, 관계 행정기관은 실태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09. 5. 8., 2012. 3. 21., 2019. 8. 20.>

⑧ 전담기구는 성폭력 등 특수한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실태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그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의뢰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신설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⑨ 그 밖에 전담기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2. 3. 21., 2019. 8. 20.>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ㆍ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학교폭력의 개념ㆍ실태 및 대처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②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2. 3. 21.>

③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교사ㆍ학생ㆍ학부모 등 학교구성원이 학교폭력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3. 10. 24.>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용 등을 전담기구와 협의하여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 10. 24.>

⑤ 교육장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계획을 학부모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및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홍보하여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2. 1. 26., 2023. 10. 24.>

⑥ 교육부장관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게 배포하고 송출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3. 10. 24.>

⑦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와 관련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 5. 19., 2023. 10. 24.>

[제목개정 2011. 5. 19.]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7. 4. 18., 2019. 8. 20., 2020. 12. 22., 2021. 3. 23., 2023. 10. 24.>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삭제<2012. 3. 21.>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신설 2012. 3. 21., 2019. 8. 20.>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 3. 21., 2019. 8. 20.>

④ 제1항의 조치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개정 2012. 3. 21., 2021. 3. 23.>

⑤ 학교의 장은 성적 등을 평가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2. 3. 21., 2021. 3. 23.>

⑥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ㆍ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개정 2012. 1. 26., 2012. 3. 21., 2021. 3. 23.>

1. 삭제<2012. 3. 21.>
2. 삭제<2012. 3. 21.>

⑦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필요한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공제급여를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신설 2012. 1. 26., 2012. 3. 21.>

⑧ 피해학생의 보호 및 제6항에 따른 지원범위, 상환청구범위,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2. 3. 21., 2021. 3. 23.>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①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심의과정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교육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해당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심의과정에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도록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신설 2020. 12. 22., 2026. 6. 2.>

③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9. 8. 20., 2020. 12. 22.>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제6항을 준용한다.<개정 2012. 3. 21., 2020. 12. 22.>

[본조신설 2009. 5. 8.]

**제16조의3(피해학생 지원 조력인)** 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 지원을 위하여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법률, 상담, 보호 등을 위한 서비스 및 지원기관을 연계하는 조력인(이하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의 운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0. 24.]

**제16조의4(사이버폭력의 피해자 지원)** ① 국가는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 촬영물, 영상물, 음성물, 복제물,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개인정보, 허위사실 등(이하 이 조에서 “촬영물등”이라 한다)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촬영물등의 대상자가 되어 입은 피해를 말한다)를 입은 학생에 대하여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1. 31.>

② 제1항에 따른 피해학생, 그 보호자 또는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하 이 조에서 “삭제지원요청자”라 한다)은 국가에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지원요청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삭제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8.>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해서는 삭제지원요청자의 요청 없이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5. 3. 18.>

④ 제1항에 따른 촬영물등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이버폭력의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부담한다.<개정 2025. 3. 18.>

⑤ 국가가 제1항에 따라 촬영물등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사이버폭력의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개정 2025. 3. 18.>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촬영물등 삭제지원의 내용ㆍ방법, 제5항에 따른 상환청구권 행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3. 18.>

[본조신설 2023. 10. 24.]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2021. 3. 23., 2023. 10. 24.>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②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일 경우에는 같은 항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신설 2012. 3. 21., 2019. 8. 20., 2021. 3. 23., 2023. 10. 24.>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한다)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개정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2023. 10. 24.>

④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제1항제2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3. 10. 24.>

⑤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제1호, 제3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를 각각 또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2021. 3. 23., 2023. 10. 24.>

⑥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23. 10. 24.>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부과하는 제1항제6호 조치의 기간은 심의위원회 조치 결정시까지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23. 10. 24.>

⑧ 심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2. 3. 21., 2019. 8. 20., 2023. 10. 24.>

⑨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2023. 10. 24.>

⑩ 학교의 장이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개정 2012. 3. 21., 2019. 8. 20., 2023. 10. 24.>

⑪ 제1항제2호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의 보호자는 가해학생이 해당 조치를 적절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3. 10. 24.>

⑫ 가해학생이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개정 2012. 1. 26., 2012. 3. 21., 2021. 3. 23., 2023. 10. 24.>

⑬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일 경우 장애인식개선 교육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2. 3. 21., 2019. 8. 20., 2023. 10. 24.>

⑭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올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2. 1. 26., 2012. 3. 21., 2023. 10. 24.>

⑮ 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2. 3. 21., 2019. 8. 20., 2023. 10. 24.>

<16>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제9항, 제10항 및 제15항에 따른 조치 또는 징계가 지연되거나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하는 경우 교육감은 지체 없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을 조사하여야 한다.<신설 2024. 1. 9.>

<17>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제11조제6항에 따른 재입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2. 3. 21., 2023. 10. 24., 2024. 1. 9.>

**제17조의2(행정심판)** ① 교육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2017. 11. 28., 2019. 8. 20.>

② 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2. 3. 21., 2017. 11. 28., 2019. 8. 20.>

③ 행정심판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및 피·가해학생의 소속 학교에 제2항에 따른 행정심판의 청구 사실을 통지하고 「행정심판법」 제20조에 따른 심판참가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안내하여야 한다.<신설 2023. 10. 24.>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심판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개정 2019. 8. 20., 2023. 10. 24.>

⑤ 삭제<2019. 8. 20.>

⑥ 삭제<2019. 8. 20.>

[본조신설 2012. 1. 26.]

[제목개정 2019. 8. 20.]

**제17조의3(행정소송)** ① 교육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교육장은 피·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및 피·가해학생의 소속 학교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기 사실을 통지하고 「행정소송법」 제16조에 따른 소송참가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안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소송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 10. 24.]

**제17조의4(집행정지)** ① 행정심판위원회 및 법원이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제30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등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신청 사실 및 그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및 피·가해학생의 소속 학교에 그 사실 및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경우,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학교의 장에게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의 절차, 방법, 예외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심판법」 제30조에 따른 집행정지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의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0. 24.]

**제17조의5(재판기간에 관한 규정)** 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행정소송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소가 제기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0. 24.]

**제18조(분쟁조정)** ①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0.>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한다.
③ 학교폭력과 관련한 분쟁조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개정 2019. 8. 20.>
1.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 또는 그 보호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
2.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심의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의 협조를 얻어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개정 2019. 8. 20.>
⑤ 심의위원회가 분쟁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피해학생ㆍ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20.>
⑥ 시ㆍ도교육청 관할 구역 안의 소속 교육지원청이 다른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9. 8. 20.>
⑦ 관할 구역을 달리하는 시ㆍ도교육청 소속 학교의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이 가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9. 8. 20.>

**제19조(학교의 장의 의무)** ① 학교의 장은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에 따른 조치의 이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축소 또는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과 제13조의2에 따라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로 처리된 사건,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조치 및 그 결과를 보고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교내 학교폭력 단체의 결성예방 및 해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의 학교폭력 현황을 조사하는 등 학교폭력 조기 발견 및 대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3. 10. 24.>

[전문개정 2019. 8. 20.]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9. 5. 8.>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09. 5. 8., 2019. 8. 20.>

④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ㆍ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심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09. 5. 8., 2012. 1. 26., 2019. 8. 20.>

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2. 3. 21.>

**제20조의2(긴급전화의 설치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수시로 신고받고 이에 대한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12. 1. 26.>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ㆍ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2. 1. 26.>

[본조신설 2009. 5. 8.]

**제20조의3** 삭제 <2023. 10. 24.>

**제20조의4(정보통신망의 이용 등)**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 업무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다.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학교 또는 학생(학부모를 포함한다)이 학교폭력 예방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또는 학생(학부모를 포함한다)이 전기통신설비를 구입하거나 이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2. 학교 또는 학생(학부모를 포함한다)에게 부과되는 전기통신역무 요금

③ 그 밖에 정보통신망의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3. 21.]

**제20조의5(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등)**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 내에 학생보호인력을 배치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생보호인력이 될 수 없다.<신설 2013. 7. 30., 2021. 3. 23.>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3) 및 같은 목 7)부터 9)까지의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 업소의 업주나 종사자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및 활용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3. 7. 30.>

④ 제3항에 따라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및 활용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학교의 장과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3. 7. 30., 2021. 3. 23.>

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학생보호인력으로 배치하고자 하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경찰청장에게 그 사람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다.<신설 2013. 7. 30.>

⑥ 제3항에 따라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및 활용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업무를 위탁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에게 학생보호인력으로 배치하고자 하는 사람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13. 7. 30.>

⑦ 학생보호인력이 되려는 사람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에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3. 7. 30.>

[본조신설 2012. 3. 21.]

**제20조의6(학교전담경찰관)** ① 국가는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경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전담경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1. 28.]

[종전 제20조의6은 제20조의7로 이동 <2017. 11. 28.>]

**제20조의7(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 관제)**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 예방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교 내외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통합하여 관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통합 관제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3. 14.>

②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 관제하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학교 내외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가 통합 관제되는 경우 해당 학교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통하여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④ 통합 관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한다.

⑤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 관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3. 21.]

[제20조의6에서 이동 <2017. 11. 28.>]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 ①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ㆍ피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ㆍ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1. 26., 2021. 3. 23.>

② 제1항에 따른 비밀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학생ㆍ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ㆍ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1. 5. 19., 2012. 3. 21., 2019. 8. 20.>

**제21조의2(「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교육장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고등학교에서의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ㆍ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등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아 수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8. 20.]

**제22조(벌칙)**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7. 11. 28.]

**제23조(과태료)** ① 제17조제1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교육 이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보호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 8. 20., 2023. 10. 24.>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부과ㆍ징수한다.

[본조신설 2017. 11. 28.]

**부칙** <제8887호,2008. 3. 1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42호,2009. 5. 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32호,2010. 1. 18.>(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25> 까지 생략

<12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를 삭제한다.

<127>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642호,2011. 5. 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23호,2012. 1.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 제13조제2항, 제15조제1항 및 제4항, 제16조, 제17조(제5항은 제외한다), 제2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시행일:2012. 4. 1.]

**제2조**(재심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에 대한 재심청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전학조치를 받은 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388호,2012. 3.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4조제4항, 제13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20조제5항, 제20조의3의 개정규정 및 법률 제11223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안전공제회 등의 비용부담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받아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치료 등을 받고 있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690호,2013. 3. 23.>(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7>까지 생략

<7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5항 및 제11조의3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7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948호,2013. 7.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생보호인력에 대한 적용례) 제20조의5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배치하는 학생보호인력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844호,2014. 11. 19.>(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3# 까지 생략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법무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으로, "여성가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3% 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576호,2015. 12. 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162호,2016. 5. 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62호,2017. 4. 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39호,2017. 7. 26.>(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2) 까지 생략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044호,2017. 11. 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441호,2019. 8.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치위원회 이관에 따른 특례) ① 2020년 3월 1일 전에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자치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할 수 있다.

**제3조**(자치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사항은 제1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이 경우 학부모위원은 학생의 졸업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제4조**(재심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학교의 장으로부터 제16조제1항 각 호 및 제1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의2에 따라 재심이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7668호,2020. 12.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심리와 관련된 전문가 등의 출석 또는 의견청취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학교폭력사건을 심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학교의 장의 분리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689호,2020. 12. 22.>(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5) 까지 생략

<5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교육감 및 지방경찰청장"을 "교육감 및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1조의3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으로 한다.

<52> 및 <53>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7954호,2021. 3. 23.>(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9234호,2023. 3. 14.>(개인정보 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7제1항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부칙** <제19741호,2023. 10.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원의 면책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학교폭력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민사소송이나 형사 고소ㆍ고발 등을 당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학교의 장 자체해결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된 학교폭력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된 학교폭력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피해학생의 분리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학교폭력에 대하여 피해학생이 분리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피해학생의 진술권 보장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제3항, 제17조의3제3항 및 제17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 및 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942호,2024. 1. 9.>

이 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70호,2025. 1.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 및 제3항,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도에 수립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학교폭력 조사ㆍ상담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학교폭력 조사ㆍ상담자로 위촉된 사람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724호,2025. 1. 3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790호,2025. 3. 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065호,2025. 10. 1.>(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4>까지 생략

<7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76>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066호,2025. 10. 1.>(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4! 까지 생략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 방송통신위원회 ” 를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로 한다.

4#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082호,2025. 11.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723호,2026. 6. 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교육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최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부터 적용한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타법개정]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 044 - 203 - 6978

**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행계획 등의 공표)**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ㆍ도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시ㆍ도 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해야 한다.

1.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2.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② 교육감은 제1항제2호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한 내용을 지체 없이 공표해야 한다.

③ 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시ㆍ도 교육청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대한 성과는 「초ㆍ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대한 평가에 포함하여 평가하고, 이를 공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 5. 20.]

**제2조의2(학교폭력 대응 전문교육기관 설치ㆍ운영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교육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학생의 치유ㆍ회복을 위한 보호시설 운영
2. 학생의 치유ㆍ회복 관련 조사ㆍ분석 등 연구
3.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교과학습 및 대안교육 실시
4.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상담 및 치유ㆍ회복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학생의 치유ㆍ회복 등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 2. 27.]

**제2조의3(학교폭력 예방센터 지정ㆍ운영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학교폭력 예방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학교폭력 예방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보유할 것
2. 학교폭력 예방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및 시설을 갖출 것
3. 학교폭력 예방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업계획 및 운영규정을 갖출 것

③ 제2항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센터 지정 기준의 세부 내용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학교폭력 예방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준이 포함된 지정계획을 10일 이상 관보 또는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⑤ 학교폭력 예방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의 보유 현황이나 확보 계획
2.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및 시설의 보유 현황이나 확보 계획
3.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업계획 및 운영규정

⑥ 교육부장관은 학교폭력 예방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관보 또는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게시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교폭력 예방센터의 지정 기간ㆍ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5. 5. 20.>

[본조신설 2024. 2. 27.]

**제3조(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운영)** ① 법 제7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대책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로 1회 소집한다. 다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여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대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⑥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의2(대책위원회 위원의 해촉)** 대통령은 법 제8조제3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책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6. 5. 10.]

**제4조(학교폭력대책실무위원회의 구성 · 운영)** ①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실무위원회(이하 “ 실무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이하 “ 실무위원장 ”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 3. 23.>

② 실무위원장은 교육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국무조정실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경찰청의 치안감 또는 경무관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이 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5. 10. 1., 2025. 12. 30.>

③ 제2항에 따라 실무위원회의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신설 2016. 5. 10.>

④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3. 3. 23., 2016. 5. 10.>

⑤ 실무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실무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6. 5. 10.>

⑥ 회의는 대책위원회 개최 전 또는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개정 2016. 5. 10.>

⑦ 실무위원회는 대책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 검토와 심의 지원 및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6. 5. 10.>

⑧ 실무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여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 5. 10.>

**제5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구성 · 운영)**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 지역위원회 ”라 한다)의 위원장은 시ㆍ도의 부단체장(「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제2항에 따른 행정부시장이나 행정부지사를 말하며, 행정부시장이나 행정부지사가 2명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행정(1)부시장이나 행정(1)부지사를 말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5. 5. 20.>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역위원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교육감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20. 2. 25., 2020. 12. 31.>
1. 해당 시ㆍ도의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 및 시ㆍ도교육청 생활지도 담당 국장
2. 해당 시ㆍ도의회 의원 또는 교육위원회 위원
3. 해당 시ㆍ도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4.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5. 판사ㆍ검사ㆍ변호사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7.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8.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9.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⑤ 지역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지역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제4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위원회의 위원이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16. 5. 10.>
⑦ 지역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지역위원회의 위원장과 교육감이 시ㆍ도 또는 시ㆍ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6. 5. 10.>
⑧ 지역위원회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책위원회"는 "지역위원회"로 본다.<개정 2016. 5. 10.>

**제6조(학교폭력대책지역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7명 이내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실무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다.

**제6조의2(학교폭력 예방대책의 제출)** ① 지역위원회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역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음 연도의 학년도가 시작된 후 4개월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전년도의 예방대책에 따른 추진실적
2. 다음 연도의 예방대책

② 지역위원회는 제1항제2호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한 내용을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5. 20.]

**제7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10조의2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시ㆍ군ㆍ구의 부단체장이 된다.

②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지역협의회의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의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4. 6. 11., 2020. 2. 25., 2024. 2. 27.>

1. 해당 시ㆍ군ㆍ구의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국장이 없는 시ㆍ군ㆍ구는 과장을 말한다) 및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 담당 국장(국장이 없는 교육지원청은 과장을 말한다)
2. 해당 시ㆍ군ㆍ구의회 의원
3. 해당 시ㆍ군ㆍ구를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4.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5. 판사ㆍ검사ㆍ변호사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7.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8.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9.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⑤ 지역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지역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협의회의 위원이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16. 5. 10.>

⑦ 지역협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협의회의 위원장과 교육장이 시ㆍ군ㆍ구 또는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4. 6. 11., 2016. 5. 10.>

**제8조(전담부서의 구성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과ㆍ담당관 또는 팀을 둔다. <개정 2014. 6. 11., 2020. 2. 25., 2024. 2. 27.>

1.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대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3.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3의2.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위한 법률 자문 등 법률지원에 관한 사항

3의3. 학교폭력 관련 조사ㆍ상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폭력의 예방ㆍ대책 및 통합지원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법 제11조의2에 따른 학교폭력 조사ㆍ상담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에서 학교폭력 조사ㆍ상담 관련 전문가를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신설 2024. 2. 27.>

③ 제2항에 따라 활용하는 학교폭력 조사ㆍ상담 관련 전문가의 역할, 요건,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신설 2024. 2. 27.>

**제9조(실태조사)** ① 법 제11조제8항에 따라 교육감이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다른 교육감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교육 관련 연구ㆍ조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전문기관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법 제11조제9항에 따라 시ㆍ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개정 2014. 6. 11., 2024. 2. 27.>

1.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ㆍ상담 등의 업무
2. 학교폭력 피해학생ㆍ가해학생에 대한 치유프로그램 운영 업무
3. 학생의 치유ㆍ회복을 위한 보호시설 운영 업무
4. 피해학생을 위한 법률지원 등 통합지원 업무

② 교육감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치유프로그램 운영 업무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보호시설 운영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 7. 31., 2012. 9. 14., 2024. 2. 27.>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 등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3. 학교폭력의 예방과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의 치료ㆍ교육을 수행하는 청소년 관련 단체
4. 청소년 정신치료 전문인력이 배치된 병원
5. 학교폭력 피해학생ㆍ가해학생 및 학부모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하는 종교기관 등의 기관

6. 그 밖에 교육감이 치유프로그램의 운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③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11조(학교폭력 조사ㆍ상담 업무의 위탁 등)** 교육감은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사업을 3년 이상 수행한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학교폭력의 예방 및 사후조치 등을 수행하는 데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법 제11조의2제1항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관계 기관과의 협조 사항 등)** 법 제11조의3에 따라 학교폭력과 관련한 개인정보 등을 협조를 요청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13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 ①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각각 다른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2. 25., 2024. 2. 27.>

② 법 제1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학교의 장이 건의하는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0. 2. 25.>

[제목개정 2020. 2. 25.]

**제14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교육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5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은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0. 2. 25., 2024. 2. 27.>

1. 해당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경우 해당 기관 소속의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한다)

1의2. 해당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

2. 교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업무 또는 학생생활지도 업무 담당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2의2.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학부모

4. 판사ㆍ검사ㆍ변호사

5. 해당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5의2. 법 제20조의6제1항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경찰관(이하 "학교전담경찰관"이라 한다)

6.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6의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6의3.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2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7.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0. 2. 25.>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0. 2. 25.>
④ 교육장은 제1항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제6호의2, 제6호의3 및 제7호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16. 5. 10., 2020. 2. 25., 2024. 2. 27.>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6. 5. 10., 2020. 2. 25.>
⑥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경우 직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지명한다.<개정 2016. 5. 10., 2020. 2. 25.>
⑦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16. 5. 10., 2020. 2. 25.>
⑧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폭력이 발생한 해당 학교 소속 교원이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20. 2. 25.>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장이 정한다.<신설 2020. 2. 25.>
[제목개정 2020. 2. 25.]

**제14조의2(소위원회)** 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심의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심의 사항을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것으로 본다.
④ 소위원회는 심의가 끝나면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 2. 25.]

**제14조의3(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학교의 장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에 학교폭력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학생ㆍ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2. 25.]

**제15조(상담실 설치)**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담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ㆍ장비를 갖추어 상담활동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인터넷 이용시설, 전화 등 상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2. 상담을 받는 사람의 사생활 노출 방지를 위한 칸막이 및 방음시설

**제16조(전담기구 운영 등)**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의 구성원이 되는 학부모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② 전담기구는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에 관하여 확인한 사항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0. 2. 25.]

**제17조(학교폭력 예방교육)** ① 법 제11조제13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신설 2024. 2. 27.>
1. 법 제13조의2에 따른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 이하 제17조의2에서 같다)와 피해학생의 분리 및 피해학생에 대한 긴급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학교의 장 및 교감의 역할에 관한 사항
② 학교의 장은 법 제15조제7항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개정 2024. 2. 27.>
1.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고, 교육 횟수ㆍ시간 및 강사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 여건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2.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급 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 여건에 따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소에서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3.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를 따로 교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내용에 따라 함께 교육할 수 있다.
4. 강의, 토론 및 역할연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다양한 자료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5. 교직원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교폭력 관련 법령에 대한 내용,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요령, 학생 대상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운영 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6. 학부모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교폭력 징후 판별,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요령,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7조의2(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 조치)** ①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 2. 27., 2025. 5. 20.>

1. 피해학생이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2. 가해자 또는 피해학생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
3.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경우
4. 법 제17조제5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른 조치로 이미 가해자와 피해학생이 분리된 경우

②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 조치의 기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신설 2025. 5. 20.>

[본조신설 2021. 6. 22.]
[제목개정 2025. 5. 20.]

**제18조(피해학생의 지원범위 등)** ① 법 제16조제6항 단서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는 피해학생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6. 22.>

1. 교육감이 정한 전문심리상담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는 데 드는 비용
2.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일시보호를 받는 데 드는 비용
3.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받거나 의약품을 공급받는 데 드는 비용

② 제1항의 비용을 지원 받으려는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에 비용을 청구하는 절차와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비용을 지급하는 절차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준용한다.

③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 상환청구를 하는 범위는 제2항에 따라 피해학생에게 지급하는 모든 비용으로 한다.<개정 2021. 9. 29.>

**제18조의2(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의 지정·운영)** 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법 제16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청소년 보호 및 정서 지원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법률, 상담, 보호 등을 위한 서비스 및 지원기관을 연계하는 조력인(이하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나. 교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다.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라. 그 밖에 청소년 보호 및 정서 지원 등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인정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일 것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3) 및 같은 목 7)부터 9)까지의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나 종사자

②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이 되려는 사람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항에 따라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으로 지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 2. 27.]

**제18조의3(사이버폭력 피해학생의 지원 내용 및 방법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 촬영물, 음성물, 복제물, 편집물, 개인정보, 허위사실 등(이하 이 조에서 “촬영물등”이라 한다)의 유포로 피해를 입은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촬영물등 삭제가 필요한 피해 등에 관한 상담
2. 촬영물등 유포로 인한 피해 정보의 수집
3. 촬영물등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ㆍ점검
4. 그 밖에 촬영물등 삭제지원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피해학생, 그 보호자 또는 피해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하 이 조에서 "삭제지원요청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삭제지원요청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2. 피해학생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삭제지원요청자가 피해학생의 보호자이거나 그 보호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피해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및 피해학생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삭제지원요청자가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지원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 등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법 제16조의4제4항에 따라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사이버폭력의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청구금액의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통지일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24. 2. 27.]

**제19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 법 제17조제1항의 조치별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1.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
2.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3.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4.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5.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제20조(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 ① 교육장은 심의위원회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통보를 받은 학교의 장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지체 없이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0. 2. 25.>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할 때 피해학생의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할구역 외의 학교를 배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해당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에는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제21조(가해학생에 대한 우선 출석정지 등)** ① 법 제17조제5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라 학교의 장이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2. 27.>

1.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ㆍ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2. 학교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3.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4.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5.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하는 경우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으려 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4. 2. 27.>

**제22조(가해학생의 조치 거부ㆍ기피에 대한 추가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법 제17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를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5항에 따라 교육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5., 2024. 2. 27.>

② 교육감이 법 제17조제16항에 따라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을 조사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서면으로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대면으로 조사할 수 있다.<신설 2024. 2. 27.>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조치를 요청했으나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교육장이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 법 제1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학교의 장이 조치를 했으나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한 경우로서 같은 조 제10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징계하지 않은 경우
3. 법 제17조제15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요청했으나 교육장이 이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23조(퇴학학생의 재입학 등)** ① 교육감은 법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라 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하여 법 제17조제17항에 따라 해당 학생의 선도의 정도, 교육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로의 입학 등 해당 학생의 건전한 성장에 적합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27.>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재입학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24조(피해학생 진술권 보장)** ① 행정심판위원회가 법 제17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의견청취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2.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이미 해당 사건에 관하여 충분히 의견을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행정심판위원회가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행정심판위원회는 법 제17조의4제1항 본문에 따라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피해의 정도 및 결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관한 의견, 그 밖에 해당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행정심판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를 대면하여 진술할 경우 충분히 진술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를 퇴장하게 한 후 진술하게 하거나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2. 27.]

**제25조(분쟁조정의 신청)** 피해학생,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 중 어느 한 쪽은 법 제18조에 따라 해당 분쟁사건에 대한 조정권한이 있는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5.>

1. 분쟁조정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보호자의 성명 및 주소
3. 분쟁조정 신청의 사유

**제26조(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와 분쟁을 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사건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0. 2. 25.>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의 보호자인 경우 또는 보호자였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분이 있거나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분쟁당사자는 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20. 2. 25.>

③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으면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개정 2020. 2. 25.>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을 회피할 수 있다.<개정 2020. 2. 25.>

[제목개정 2020. 2. 25.]

**제27조(분쟁조정의 개시)** ①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제25조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시작해야 한다. <개정 2020. 2. 25.>

②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의 일시 및 장소를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0. 2. 25.>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에게 분쟁조정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의 기일을 다시 정해야 한다.<개정 2020. 2. 25.>

④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심의위원회 위원 또는 지역위원회 위원 중에서 분쟁조정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분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할 수 있다.<개정 2020. 2. 25.>

**제28조(분쟁조정의 거부ㆍ중지 및 종료)** ①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5.>

1. 분쟁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2. 피해학생 등이 관련된 학교폭력에 대하여 가해학생을 고소ㆍ고발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3.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끝내야 한다.<개정 2020. 2. 25.>

1. 분쟁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제시한 조정안을 분쟁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2. 분쟁조정 개시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③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한 경우 또는 제2항제2호에 따라 분쟁조정을 끝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쟁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0. 2. 25.>

**제29조(분쟁조정의 결과 처리)** ①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이 성립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와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 2. 25.>

1. 분쟁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2. 조정 대상 분쟁의 내용
   가. 분쟁의 경위
   나. 조정의 쟁점(분쟁당사자의 의견을 포함한다)
3. 조정의 결과

② 제1항에 따른 합의서에는 심의위원회가 조정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와 조정에 참가한 위원이, 교육감이 조정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와 교육감이 각각 서명날인해야 한다.<개정 2020. 2. 25.>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의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20. 2. 25.>

**제30조(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 법 제20조의2에 따른 긴급전화는 경찰청장과 시ㆍ도경찰청장이 운영하는 학교폭력 관련 기구에 설치한다. <개정 2020. 12. 31.>

**제31조(정보통신망의 이용 등)** 법 제20조의4제3항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학교폭력 예방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 공공기관의 위탁을 받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교육사업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기업
3.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사업을 3년 이상 수행한 기관 또는 단체

**제31조의2(학교전담경찰관의 운영)** ① 경찰청장은 법 제20조의6제1항에 따라 학교전담경찰관을 둘 경우에는 학생 상담 관련 학위나 자격증 소지 여부, 학생 지도 경력 등 학교폭력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4. 2. 27.>

② 학교전담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폭력 예방활동
2.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3. 학교폭력 단체에 대한 정보 수집
4. 학교폭력 단체의 결성예방 및 해체
5. 그 밖에 경찰청장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해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학교전담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의 장과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상호 협력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31.]

**제32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 관제)** 법 제20조의7제1항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하여 관제하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23. 9. 12.>

1.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 청취
2.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제목개정 2023. 9. 12.]

**제33조(비밀의 범위)**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비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ㆍ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3.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

**제3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의5제2항에 따른 학생보호인력의 결격사유 유무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20조의5제5항에 따른 학생보호인력의 범죄경력조회에 관한 사무

② 법 제20조의5제3항에 따라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및 활용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의5제2항에 따른 학생보호인력의 결격사유 유무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20조의5제6항에 따른 학생보호인력의 범죄경력조회 신청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7. 6. 20.]

**제34조** 삭제 <2021. 3. 2.>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18. 12. 31.]

**부칙** <제23689호,2012. 3. 30.>

이 영은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13조제1항,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002호,2012. 7. 31.>(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에 따른 청소년쉼터”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제24102호,2012. 9. 14.>(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 「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2에 따른 청소년보호센터 ”를 “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 ”로 한다.

⑧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4423호,2013. 3. 2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0>까지 생략

<9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 11명 ”을 “ 12명 ”으로 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실무위원장은 교육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법무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무조정실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경찰청의 치안감 또는 경무관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이 된다.

제4조제3항 중 “ 교육과학기술부 ”를 “ 교육부 ”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을 각각 “ 교육부장관 ”로 한다.

<92>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 <제25375호,2014. 6. 11.>(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6항 중 “ 지역교육청 ”을 각각 “ 교육지원청 ”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지역교육청 ”을 각각 “ 교육지원청 ”으로 한다.

⑩ 생략

**부칙** <제25751호,2014. 11. 19.>(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

<6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를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로,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여성가족부"를 "여성가족부, 국민안전처"로 한다.

<63>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5840호,2014. 12. 9.>(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7129호,2016. 5. 10.>(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110호,2017. 6. 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211호,2017. 7. 26.>(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여성가족부, 국민안전처"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54>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9435호,2018.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950호,2019. 7. 2.>(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0441호,2020. 2.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5조제4항제8호에 따라 위촉된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제5조제4항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7조제4항제8호에 따라 위촉된 지역협의회의 위원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제7조제4항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부칙** <제31349호,2020. 12. 31.>(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4^ 까지 생략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3호 중 “ 시ㆍ도 지방경찰청 ”을 “ 해당 시ㆍ도경찰청 ”으로 한다.

제30조 중 “ 지방경찰청장 ”을 “ 시ㆍ도경찰청장 ”으로 한다.

4* 및4( 생략

**부칙** <제31516호,2021. 3. 2.>(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789호,2021. 6. 22.>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018호,2021. 9. 29.>(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723호,2023. 9. 12.>(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 제목 중 “ 영상정보처리기기 ”를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 영상정보처리기기 ”를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로 한다.

**부칙** <제34233호,2024. 2.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5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이후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경우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5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제14조제1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부칙** <제35504호,2025. 5.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5802호,2025. 10. 1.>(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무조정실 및 방송통신위원회 ”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국무조정실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로 한다.

1^ 생략

**부칙** <제35947호,2025. 12. 30.>(재정경제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4>까지 생략

<9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 기획재정부 ”를 “ 재정경제부 ”로 한다.

<96>부터 <313>까지 생략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개정 2024. 2. 27.>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

1. 일반기준

교육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보호자가 법 제17조제1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교육 이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제1항 | 300만원 |

# 학력인정학교지정규칙

[시행 2013. 3. 23.] [교육부령 제1호, 2013. 3. 23., 타법개정]

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 044 - 203 - 65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98조제1항제2호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급학교 입학 및 편입학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 및 변경)** ①상급학교 입학 및 편입학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의 지정(이하 "지정"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학년도 개시 6월이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 31., 2008. 3. 4., 2013. 3. 23.>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 :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3조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조제2항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신청

②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1. 1. 31., 2008. 3. 4., 2013. 3. 2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제1항제1호의 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제1항제2호의 학교의 장은 교육부장관에게 각각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1. 1. 31., 2008. 3. 4., 2013. 3. 23.>

1. 변경사유
2. 변경사항
3. 변경연월일

**제3조(지정기준)**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설립자가 법인일 것
2. 학생정원, 수업일수 기타 교육과정의 운영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제2조제1항제1호의 학교 :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기준
   나. 제2조제1항제2호의 학교 : 전문대학 또는 대학에 준하는 기준
3. 학교시설ㆍ설비 및 수익용기본재산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제2조제1항제1호의 학교 :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에 의한 기준
   나. 제2조제1항제2호의 학교 : 대학설립ㆍ운영규정에 의한 기준

**제4조(지정의 취소등)** ①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지정을 받은 학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1. 1. 31., 2008. 3. 4., 2013. 3. 23.>

②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학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개정 2001. 1. 31., 2008. 3. 4., 2013. 3. 23.>

**부칙** <제738호,1999. 2. 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지정신청을 하여 지정절차가 진행중인 학교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미 지정받은 학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상급학교입학학력인정에관한학교지정규칙에 의하여 지정받은 학교는 이 규칙에 의하여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상급학교입학학력인정에관한학교지정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칙 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79호,2001. 1. 31.>(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3* 생략

3( 학력인정학교지정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ㆍ제2항ㆍ제3항 본문 및 제4조제1항ㆍ제2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 및4! 생략

**부칙** <제1호,2008. 3. 4.>(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4^ 까지 생략

4& 학력인정학교지정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4*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 <제1호,2013. 3. 2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학력인정학교지정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60> 및 <61> 생략

#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시행 2024. 3. 12.] [대통령령 제34299호, 2024. 3. 12., 일부개정]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 044 - 203 - 6067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기본법」 제11조제1항 및 「고등교육법」 제18조ㆍ제19조에 따라 국립학교인 한국교원대학교의 설치ㆍ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2. 27.>

**제2조(설치)** 교육부장관의 관할 아래 각급 학교의 교원양성, 교원의 재교육 및 교육연구기능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기 위하여 한국교원대학교를 둔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3조(소재지)** 한국교원대학교의 소재지는 충청북도로 한다.

**제4조(운영의 원칙)** 한국교원대학교의 운영에 있어서는 고등교육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교원양성대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의 기회균등과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공무원의 정원)** 한국교원대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따로 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6조(학교의 장)** ①한국교원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②총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개정 2019. 7. 2.>

**제6조의2(부총장)** ① 한국교원대학교에 총장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한국교원대학교의 교수 중에서 부총장을 둘 수 있다.

② 부총장은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부총장은 대학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사 등 일부의 권한에 대하여 총장의 위임을 받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2. 27.]

**제7조(단과대학 등)** ①한국교원대학교에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단과대학 및 대학원을, 단과대학 및 대학원에 학과ㆍ학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이하 “학과등”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 2. 27., 2024. 3. 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과대학ㆍ대학원 및 학과등에 장을 각각 두되, 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하여 임명하고, 학과등의 장은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하여 임명한다.<개정 2019. 7. 2., 2024. 3. 12.>

③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장은 총장의, 학과등의 장은 단과대학 또는 대학원의 장의 명을 받아 당해 단과대학ㆍ대학원 및 학과등의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

다.<개정 2019. 7. 2., 2024. 3. 12.>

**제8조(종합교육연수원 등)** ①한국교원대학교에 종합교육연수원, 교육연구원 및 「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ㆍ연구시설ㆍ부속시설 및 그 밖의 필요한 시설(이하 "종합교육연수원등"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 2. 27.>

②종합교육연수원등에 장을 각각 두되, 종합교육연수원등의 장은 관련 단과대학ㆍ대학원 또는 학과등의 장 중에서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9. 2. 27., 2024. 3. 12.>

③종합교육연수원등의 장은 총장, 단과대학 또는 대학원의 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한다.<개정 2009. 2. 27., 2019. 7. 2.>

④총장은 종합교육연수원등의 시설 중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연구시설 및 부속시설(공통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해당 시설의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존속 또는 폐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정한다.<개정 2009. 2. 27.>

[제목개정 2009. 2. 27.]

**제9조(부설학교)** ①한국교원대학교에 다음 각호의 학교를 부설한다.

1. 부설유치원
2. 부설초등학교
3. 부설중학교
4. 부설고등학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학교에 장을 각각 두되, 부설학교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당해 학교의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 또는 원생을 지도한다.<개정 2019. 7. 2.>

**제10조(하부조직)** ①한국교원대학교에 교수부 및 사무국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ㆍ실ㆍ본부ㆍ단 등의 하부조직을 두되,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명하거나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임명하고, 교수부장과 처ㆍ실ㆍ본부ㆍ단 등의 하부조직의 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하여 임명한다. <개정 2004. 10. 29., 2006. 2. 28., 2006. 6. 30., 2019. 7. 2., 2020. 3. 31., 2023. 11. 16., 2024. 3. 12.>

②사무국장은 별표 2의 사무를 분장하고, 교수부장과 처ㆍ실ㆍ본부ㆍ단 등의 하부조직의 장의 분장사무는 학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 2. 27., 2020. 3. 31.>

③종합교육연수원등과 제1항에 따른 교수부ㆍ사무국 및 처ㆍ실ㆍ본부ㆍ단 등의 하부조직에 10개의 범위에서 과 및 담당관을 둔다. 이 경우 과 및 담당관의 명칭에 관하여는 총장이 이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개정 2009. 2. 27., 2020. 3. 31.>

④ 과장 및 담당관은 3급 일반직공무원, 4급 일반직공무원 또는 5급 일반직공무원으로 임명한다.<개정 2023. 11. 16.>

⑤ 제1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권, 임용자격기준 등에 관하여는 「국립학교 설치령」 제10조를 준용한다.<신설 2023. 11. 16.>

**제11조(월정직책급 등)** 제6조의2ㆍ제7조ㆍ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가 겸직하는 경우에는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봉급ㆍ기말수당 및 정근수당 총액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 계상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직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9. 3., 2012. 2. 29.>
[제목개정 2009. 9. 3.]

**제12조(학비보조 등)** ①한국교원대학교의 학생에 대하여는 입학금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개정 2015. 2. 3.>
②한국교원대학교의 학생으로서 재학중 생활관에 입사하여 생활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는 생활관비와 피복비를 국고에서 지급한다. 이 경우 생활관비와 피복비의 지급기간은 2년에 한한다.
③학생생활관에 거주하여 근무하는 교직원에 대하여는 식비를 국고에서 지급한다.

**제13조(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 ①한국교원대학교의 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②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9. 2. 27., 2024. 3. 12.>
1. 단과대학ㆍ대학원 및 학과등의 설치
2. 부설학교 및 종합교육연수원등의 설치
3. 하부조직(종합교육연수원등에 두는 하부조직을 포함한다)과 그 분장사무
4. 그 밖에 조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총장은 업무의 성질과 양에 따라 조직 및 인력배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정하되,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제17145호,2001. 3. 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8조, 제10조(사무국장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다)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부속학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부속학교는 이 영에 의한 부설학교로 본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7503호,2002. 2. 4.>
이 영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69호,2004. 10.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359호,2006. 2.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91호,2006. 6. 30.>(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한국교원대학교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 이사관、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을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으로 한다.

**부칙** <제19902호,2007. 2. 28.>(국립학교 설치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중 " 기계사무관、전기사무관、토목사무관、건축사무관 "을 " 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으로 한다.
②생략

**부칙** <제20740호,2008. 2. 29.>(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4> 까지 생략
<65>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을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으로 한다.
<66>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 <제21335호,2009. 2. 27.>

이 영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708호,2009. 9. 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644호,2012. 2. 29.>(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3>까지 생략

<64>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 부교수·조교수 또는 전임강사 "를 " 부교수 또는 조교수 "로 한다.

<65>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4423호,2013. 3. 2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6>까지 생략

<97>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을 " 교육부장관 "으로 한다.

<98>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 <제26081호,2015. 2. 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950호,2019. 7. 2.>(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0549호,2020. 3.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863호,2023. 11. 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299호,2024. 3. 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별표 1] 삭제 <2009.2.27>

■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별표 2] <개정 2023. 11. 16.>

사무국장의 분장사무(제10조제2항관련)

| 명 칭 | 분 장 사 무 |
|---|---|
| 사무국장 | 보안, 관인관리, 직원인사, 급여, 문서관리, 법무, 자체감사,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회계 및 결산,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 각종 공사 및 시설관리,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원 관리, 비상기획, 국립대학 운영 혁신 지원 보좌, 그 밖에 총장이 정하는 사항 |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시행 2019. 6. 19.] [법률 제15968호, 2018. 12. 18., 일부개정]

교육부 (대학정책과) 044 - 203 - 6831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설립ㆍ육성하여 대학 운영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대학 간의 협조를 통하여 대학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2조(설립)** ① 대학(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을 포함하되 대학의 단과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 협의회 ”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의회가 설립되면 대학의 장은 당연히 그 회원이 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3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개정 2013. 3. 23.>
1. 대학의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2. 대학의 학생선발제도에 관한 연구개발
3. 대학의 재정지원책 및 그 조성방안
4. 대학의 교육과정 및 교수방법의 연구개발과 보급
5. 대학의 평가
6. 대학 교직원의 연수
7. 교육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의 수행
8. 그 밖에 대학 간의 협동에 관한 업무의 시행

② 협의회는 대학교육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거나, 교육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3. 17.]

**제4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직원에 관한 사항
5. 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사업에 관한 사항

7. 조직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회비에 관한 사항
10. 협의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회원의 이의신청과 재정(裁定)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0. 3. 17.]

**제5조(총회)** ① 협의회에 총회를 둔다.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는 협의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6조(임원)** ① 협의회에 임원으로 회장 1명, 부회장 3명, 이사 10명 이상 20명 이하, 감사 2명을 둔다.
②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회장, 부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기면 이사회에서 보궐임원을 선출한다.<개정 2013. 3. 23.>
③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이유로 직무수행을 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감사는 협의회의 회계 및 회계와 관련된 업무를 감사(監査)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7조(이사회)** ① 협의회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회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8조(사무총장)** ①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협의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사무총장을 둔다.
② 사무총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개정 2013. 3. 23.>
③ 사무총장은 이사를 겸임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9조(경비보조 등)**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는 협의회의 시설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의회에 기부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10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협의회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사용의 내용ㆍ조건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11조(교직원의 파견근무)**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교직원 파견을 교육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12조(자료 제공)** ① 협의회는 국가ㆍ공공기관ㆍ연구기관 등에서 발간된 간행물이나 자료 중에서 협의회 운영과 관련이 있는 간행물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간행물이나 자료를 제공한 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협의회에 제공된 간행물이나 자료는 연구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13조(회계연도)**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14조(사업계획서 등)** 협의회는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20일 전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3. 17.]

**제15조(결산보고)** 협의회는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결산서에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집행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2개월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3. 17.]

**제16조(결정사항의 준수의무)** 회원은 협의회의 총회나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17조(업무위탁)** ①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의 행정 및 학사운영에 관한 소관 업무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18조** 삭제 <2013. 5. 22.>

**제1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협의회가 아니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20조(「민법」의 준용)** 협의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21조(과태료)** ① 제19조를 위반하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 12. 18.>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3. 17.]

**제22조** 삭제 <2010. 3. 17.>

**부칙** <제3727호,1984. 4. 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 법에 의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이 법에 의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로 보며, 그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 기타 공부에 표시된 사단법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명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명의로 본다.
③이 법 시행전에 사단법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행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행한 행위로, 사단법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④이 법 시행전에 사단법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보조금을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것은 이 법에 의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⑤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임ㆍ직원은 이 법에 의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임ㆍ직원으로 본다.

**부칙** <제4268호,1990. 12. 27.>(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7호、제2항, 제6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4조, 제15조,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2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⑬내지5) 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제6400호,2001. 1. 29.>(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3( 생략

4)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7호、제2항, 제6조제2항 본문, 제8조제2항, 제14조, 제15조,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2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 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8852호,2008. 2. 29.>(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13> 까지 생략

<114>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7호、제2항, 제6조제2항 본문, 제8조제2항, 제14조, 제15조,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1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078호,2010. 3. 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90호,2013. 3. 23.>(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4>까지 생략

<85>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2항 본문, 제8조제2항, 제14조, 제15조, 제17조제1항, 제18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8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772호,2013. 5. 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68호,2018. 12. 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본 법령은 공포 후 시행전 개정된 사항을 모두 포함한 법령이며, 개별 시행일별로 공포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연혁' 또는 조문 앞의 '연' 아이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3호, 2013. 3. 23., 타법개정]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 044 - 203 - 6064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기본법」 제11조제1항 및 「고등교육법」 제18조ㆍ제19조에 따라 국립학교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설치ㆍ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2. 27.>

**제2조(설치)** 교육부장관의 관할 아래 한국방송통신대학교를 둔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3조(소재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로 한다.

**제4조(공무원의 정원)**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학교의 장)** ①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②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제5조의2(부총장)** 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총장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교수 중에서 부총장을 둘 수 있다.
② 부총장은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부총장은 대학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사 등 일부의 권한에 대하여 총장의 위임을 받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2. 27.]

**제6조(단과대학 등)** ①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학교규칙(이하 " 학칙 " 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단과대학 및 대학원을, 단과대학 및 대학원에 학과를 둘 수 있다. <개정 2005. 2. 28., 2009. 2. 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과대학ㆍ대학원 및 학과에 장을 각각 두되, 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학과의 장은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한다.<개정 2005. 2. 28.>
③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장은 총장의, 학과의 장은 단과대학 또는 대학원의 장의 명을 받아 당해 단과대학ㆍ대학원 및 학과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개정 2005. 2. 28.>
[제목개정 2005. 2. 28.]

**제7조(부속시설 등)** ①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ㆍ연구시설ㆍ부속시설 및 그 밖의 필요한 시설(이하 " 부속시설등 " 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05. 2. 28., 2009. 2. 27.>

②부속시설등에 장을 각각 두되, 부속시설등의 장은 관련 단과대학 또는 학과의 장 중에서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5. 2. 28., 2009. 2. 27.>

③부속시설등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한다.<개정 2009. 2. 27.>

④총장은 부속시설등의 시설 중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연구시설과 부속시설(공통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해당 시설의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존속 또는 폐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정한다.<개정 2005. 2. 28., 2009. 2. 27.>

**제8조(하부조직)** ①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사무국과 3개의 범위안에서 처 및 실을 두되, 국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처장 및 실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개정 2004. 10. 29., 2005. 2. 28., 2006. 2. 28.>

②사무국장은 별표 2의 사무를 분장하고, 처장 및 실장의 분장사무는 학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 2. 27.>

③부속시설등과 제1항에 따른 사무국ㆍ처 및 실에 11개의 범위에서 과 및 담당관을 둔다. 이 경우 과 및 담당관의 명칭에 관하여는 총장이 이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개정 2005. 2. 28., 2008. 2. 14., 2009. 2. 27.>

④과장 및 담당관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개정 2006. 2. 28., 2007. 2. 28., 2009. 2. 27.>

⑤제6조제1항에 따른 단과대학 및 대학원에 2개의 범위에서 행정실을 두되, 실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2개 이상의 단과대학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실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05. 2. 28., 2009. 2. 27.>

**제9조(월정직책급 등)** 제5조의2 및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가 겸직하는 경우에는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봉급ㆍ기말수당 및 정근수당 총액의 일정비율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 계상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직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9. 3., 2012. 2. 29.>

[제목개정 2009. 9. 3.]

**제10조(협력학교)** ①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교육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국내ㆍ외에 협력학교를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학교는 교육시설의 이용, 교직원의 활용 기타 교육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교육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학교의 지정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11조(관계기관의 협조)** ①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교육을 위한 교육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시설의 사용에 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8. 12. 31., 2013. 3. 23.>

②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장은 당해 직장에 재직중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생의 출석수업에 관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특별강의수당)**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수업에 출강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특별강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 ①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②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5. 2. 28., 2009. 2. 27.>

1. 단과대학ㆍ대학원 및 학과의 설치
2. 부속시설등의 설치
3. 하부조직(부속시설등에 두는 하부조직을 포함한다)과 그 분장사무
4. 그 밖에 조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총장은 업무의 성질과 양에 따라 조직 및 인력배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정하되,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제17146호,2001. 3. 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7조, 제8조(사무국장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다)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8570호,2004. 10.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20호,2005. 2. 28.>

이 영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360호,2006. 2.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02호,2007. 2. 28.>(국립학교 설치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중 " 기계사무관ㆍ전기사무관ㆍ토목사무관ㆍ건축사무관 " 을 " 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 으로 한다.

**부칙** <제20607호,2008. 2. 14.>(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전단 중 " 범위(「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무를 관장하는 부서를 포함한다) " 를 " 범위 " 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제20740호,2008. 2. 29.>(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6> 까지 생략

<67>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0조제3항 및 제11조제1항 중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 을 각각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으로 한다.

<68>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 <제21214호,2008. 12. 31.>(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2^ 까지 생략

2&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 방송위원회 ”를 “ 방송통신위원회 ”로 한다.

2*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제21337호,2009. 2. 27.>

이 영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709호,2009. 9. 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644호,2012. 2. 29.>(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5>까지 생략

<66>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 부교수·조교수 또는 전임강사 ”를 “ 부교수 또는 조교수 ”로 한다.

<67>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4423호,2013. 3. 2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8>까지 생략

<99>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0조제3항 및 제11조제1항 중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을 각각 “ 교육부장관 ”으로 한다.

<100>부터 <105>까지 생략

[별표 1] 삭제 <2009.2.27>

[별표 2]

사무국장의 분장사무(제8조제2항관련)

| 명 칭 | 분 장 사 무 |
|---|---|
| 사 무 국 장 | 보안, 관인관리, 직원인사, 급여, 문서관리, 법무, 자체감사,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회계 및 결산,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 각종 공사 및 시설관리,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원 관리, 비상기획, 그 밖에 총장이 정하는 사항 |

※ 본 법령은 공포 후 시행전 개정된 사항을 모두 포함한 법령이며, 개별 시행일별로 공포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연혁' 또는 조문 앞의 '연' 아이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시행규칙

[시행 2019. 9. 17.] [교육부령 제188호, 2019. 9. 17., 타법개정]

교육부 (이러닝과) 044 - 203 - 64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이하 " 영 "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2. 2. 27., 1999. 7. 1.>

**제2조(협력학교의 지정)** 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이하 " 방송대학 " 이라 한다)의 협력학교를 지역별로 별표와 같이 정한다. <개정 1992. 6. 12., 1999. 7. 1.>

**제3조(협력학교의 임무)** 협력학교는 방송대학 학생의 출석수업과 학기말시험을 실시하며, 이에 따르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1992. 6. 12., 2019. 9. 17.>

1. 출석수업기간중의 강의, 실험 실습 및 기타 교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제공
2. 학급편성, 시간표 작성 및 강사진 확보
3. 방송대학의 학칙에 의한 시험실시와 성적 평가
4. 기타 방송통신교육에 관하여 방송대학장이 협조를 요구하는 사항

**제4조(출석수업의 시기 및 시간수)** 협력학교가 실시하는 방송대학 학생에 대한 출석수업의 시기 및 시간수는 방송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2. 6. 12.>

[전문개정 1981. 2. 20.]

**제5조(수업준비)** ①방송대학장은 협력학교별 출석수업자 명단ㆍ출석수업시간 배당기준 및 기타 출석수업에 필요한 사항을 개강 60일전에 각 협력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2. 6. 12.>

②협력학교의 장은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방송대학학생에 대한 출석수업시행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교육실시 30일전에 방송대학장에게 통보하여 상호협의한 후 출석수업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79. 2. 12., 1992. 6. 12.>

**제6조(결과통보)** 협력학교의 장은 방송대학학생에 대한 출석수업의 실시결과를 그 수업종료후 2주일내에 방송대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2. 6. 12.>

**제7조(운영지원)** 방송대학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협력학교의 방송대학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1992. 6. 12.>

**제8조(학생징계)** ①협력학교의 장은 방송대학의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학생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있다. <개정 1992. 6. 12.>

②협력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한 때에는 그 결과를 방송대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79. 2. 12., 1992. 6. 12.>

**제9조(시행세칙)** 방송통신교육에 관하여 이 규칙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방송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2. 6. 12.>
[전문개정 1982. 2. 27.]

**부칙** <제293호,1972. 3. 2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6호,1972. 11. 1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9호,1973. 11. 1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3호,1975. 1. 22.>
이 영은 197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1호,1975. 5. 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9호,1979. 2. 1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4호,1980. 4.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7호,1981. 2.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1호,1982. 2.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3호,1983. 3.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4호,1984. 3.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7호,1992. 6.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7호,1999. 7.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호,2019. 9. 17.>(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시행규칙 [별 표] <개정 1999.7.1>

## 지역별 협력학교

| 지 역 별 | 협 력 학 교 |
|---|---|
| 서 울 특 별 시 | 서울대학교·고려대학교·국민대학교·성균관대학교·서울교육대학 |
| 부 산 직 할 시 및 경 상 남 도 | 부산대학교·경상대학교·동아대학교·창원대학교·부산교육대학·진주교육대학 |
| 대 구 직 할 시 및 경 상 북 도 | 경북대학교·안동대학교·대구교육대학 |
| 인 천 직 할 시 및 경 기 도 | 서울시립대학교·동국대학교·인하대학교·인천교육대학교·아주대학교 |
| 광 주 직 할 시 및 전 라 남 도 | 전남대학교·목포대학교·순천대학교·광주교육대학 |
| 대 전 직 할 시 및 충 청 남 도 | 충남대학교·공주교육대학 |
| 강 원 도 | 강원대학교·강릉대학교·춘천교육대학 |
| 충 청 북 도 | 충북대학교·청주교육대학 |
| 전 라 북 도 | 전북대학교·전주교육대학 |
| 제 주 도 | 제주대학교 |

#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시행 2025. 12. 30.] [대통령령 제35953호, 2025. 12. 30.,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044 - 203 - 2724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 044 - 203 - 6063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등교육법」 제19조제2항 및 제59조에 따라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설치ㆍ조직 및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6. 17.]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예술사과정 ” 이란 예술실기와 예술이론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대학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2. “ 예술전문사과정 ” 이란 예술사과정을 심화시켜 고도의 전문예술인을 양성하기 위한 대학원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3. “ 예술실기연수과정 ” 이란 학력과 연령에 관계없이 예술영재를 조기에 발굴하고 양성하기 위하여 두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3. 6. 17.]

**제3조(설치 등)** ①예술영재교육과 체계적인 예술실기교육을 통한 전문예술인의 양성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관할 아래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 예술학교 ” 라 한다)를 두되, 교육부장관은 예술학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위탁한다. <개정 1993. 3. 6., 1998. 9. 25., 2001. 1. 29., 2008. 2. 29., 2013. 3. 23.>
②예술학교의 소재지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3. 3. 6., 1998. 9. 25., 2008. 2. 29.>
③예술학교에 전문과정과 예술실기연수과정을 두며, 전문과정은 예술사과정과 예술전문사과정으로 한다.

**제4조(학칙)** 예술학교의 학칙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예술학교의 장(이하 “ 총장 ” 이라 한다)이 정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3. 6. 17.]

**제5조(각 과정)** ① 예술사과정과 예술전문사과정에 음악원ㆍ연극원ㆍ영상원ㆍ무용원ㆍ미술원 및 전통예술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원(이하 “ 각원 ” 이라 한다)의 교과는 예술실기 전공과목 위주로 하되,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하고, 교과과정은 총장이 정한다.
③ 국내외 교육기관에서의 연수를 통하여 취득한 학점은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각원의 학과 및 학생 정원은 학칙으로 정한다.
⑤ 예술실기연수과정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6. 17.]

**제6조(총장 및 원장 등)** ① 예술학교에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교무(校務)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③ 총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각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예술학교의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⑤ 각원의 학과에 학과장을 두며, 학과장은 예술학교의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전문개정 2013. 6. 17.]

**제7조(교직원 등)** ① 예술학교에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를 교원으로 두고,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과 조교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 6. 17.>
② 제1항에 따른 교원과 조교의 자격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다. 이 경우 연구실적연수는 예술실기 업적 및 관련 경력연수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3. 6. 17.>
③예술학교 각 과정의 실기교육을 위하여 예술학교에 초빙교원을 둘 수 있다.
④예술학교의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조교ㆍ시간강사 및 초빙교원은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02. 10. 28., 2012. 2. 29.>
⑤ 삭제<2002. 10. 28.>
⑥ 초빙교원의 자격ㆍ보수ㆍ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 6. 17.>

**제8조(공무원의 정원 등)** ① 예술학교의 하부조직 및 공무원의 정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정한다.
② 예술학교 소속 공무원(제7조에 규정된 공무원은 제외한다)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한다.
[전문개정 2013. 6. 17.]

**제8조의2(월정 직책급의 지급 등)**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26조의2제1항 및 제27조제1항에 따라 원장ㆍ학과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또는 기획처장을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해서 맡기는 경우에는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봉급과 정근수당 총액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 계상(計上)된 예산의 범위에서 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직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0.>
[전문개정 2013. 6. 17.]

**제9조(기획위원회)** ① 예술학교의 중ㆍ장기교육계획 시행 등에 관한 총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예술학교에 기획위원회를 둔다.

② 기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6. 17.]

**제10조(입학자격)** ① 예술사과정의 입학자격이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예술학교의 예술영재선발위원회가 예술분야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추천하는 사람

② 예술전문사과정의 입학자격이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학사학위 학력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외국의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예술영재선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6. 17.]

**제11조(수업연한)** ① 예술사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 또는 5년으로 한다. 다만, 수업연한을 5년으로 하는 경우는 학칙으로 정한다.
② 예술전문사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 이상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능이 뛰어나 해당 수업연한 이내에 모든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6. 17.]

**제12조(학력인정)** 예술학교의 예술전문사과정을 이수하고 학칙으로 정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총장이 예술전문사 증서를 수여하고, 상급학교 입학에 있어서 석사학위 학력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한다.
[전문개정 2013. 6. 17.]

**제13조(학생 선발 방법)** ① 예술학교는 다음 각 호의 전형에 따라 학생을 선발한다.
1. 일반전형: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출신학교의 성적, 실기시험성적 및 총장이 전공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시하는 구술ㆍ필기ㆍ면접 시험 등의 성적에 따라 선발하는 전형
2. 특별전형: 예술분야의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전공과 관련된 전국단위의 예술대회 입상실적 등에 따라 선발하는 전형

② 제1항에 따른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6. 17.]

**제14조(학습장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학교의 교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의 기관 또는 단체와 각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을 학습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학습장으로 지정된 기관이나 단체는 예술학교에 시설의 이용, 사무직원의 지원,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6. 17.]

**제15조(교육지원시설)** ① 총장은 예술실기교육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 기관 및 단체의 예술 관계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총장으로부터 예술실기교육을 위한 시설지원의 요청을 받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6. 17.]

**제16조(설치기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제1항과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술학교의 운영을 위한 교원 및 사무직원의 배치기준과 시설기준은 예술실기전문교육에 적합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3. 6. 17.]

**제16조의2(협동과정)** ① 예술학교는 예술사과정 또는 예술전문사과정에 둘 이상의 학과(학과 내의 전공분야별 운영 단위를 포함한다)에서 연계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는 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
② 협동과정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6. 17.]

**제17조** 삭제 <1998. 9. 25.>

**제18조** 삭제 <1998. 9. 25.>

**제19조(학비 보조 등)** ① 예술학교의 학생에게는 수업료 등 학비를 감면하여 주거나 학자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학칙으로 정한 경연대회에서 입상한 사람에게는 학비 전액을 국가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비 감면 대상과 학자금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5조에 따른 교육지원시설에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6. 17.]

**제20조(경비부담)** 예술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부담하되,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산에서 부담한다. <개정 1993. 3. 6., 1998. 9. 25., 2008. 2. 29.>

**제21조(교육 관계 법령의 적용)** 예술학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3. 6. 17.]

**부칙** <제13528호,1991. 12. 30.>
이 영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예술학교의 설립준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영 시행전에 행할 수 있다.

**부칙** <제13869호,1993. 3. 6.>(문화체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3) 생략
3!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제3항, 제7조제4항, 제10조제1항제3호,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제2항 및 제16조중 " 문화부장관 " 을 각각 " 문화체육부장관 " 으로 한다.
제8조제1항중 " 문화부와그소속기관직제 " 를 " 문화체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 로 하고, 동조제2항중 " 문화부장관 " 을 " 문화체육부장관 " 으로 한다.
제20조중 " 문화부소관 " 을 " 문화체육부소관 " 으로 한다.
3@ 내지 <70>생략

**부칙** <제14177호,1994. 2. 21.>(문화체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 연기원 " 을 " 연극원 " 으로 한다.

**부칙** <제15898호,1998. 9. 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교장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교장으로 재직중인 자는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총장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2의 비고란 제2호가목중 " 한국예술종합학교장 " 을 "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 으로 한다.

②문화관광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 제목 “ (교장) ” 을 “ (총장) ” 으로 하고, 제19조제1항、제2항 및 제20조제2항중 “ 교장 ” 을 각각 “ 총장 ” 으로 한다.

제23조제2항제10호중 “ 운영위원회 ” 를 “ 기획위원회 ” 로 한다.

별표 2중 “ 교장 ” 을 “ 총장 ” 으로 한다.

**부칙** <제17115호,2001. 1. 29.>(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19>생략

<120>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2항중 “ 교육부장관 ” 을 각각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 으로 한다.

<121>내지 <152>생략

**부칙** <제17767호,2002. 10. 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업연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3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되, 2002학년도 입학생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때에 동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 <제20676호,2008. 2. 29.>(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3$ 까지 생략

3%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제1항 전단, 제6조제2항、제3항, 제8조제2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 중 “ 문화관광부장관 ” 을 각각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제8조의2 및 제20조 중 “ 문화관광부 ” 를 각각 “ 문화체육관광부 ” 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2항 중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 을 각각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으로 한다.

3^ 및3& 생략

**부칙** <제20740호,2008. 2. 29.>(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8>까지 생략

<69>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을 각각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으로, " 문화관광부장관 "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 문화관광부장관 "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중 " 문화관광부장관 "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을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3항 중 " 문화관광부장관 "을 각각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 문화관광부와그소속기관직제 "를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 문화관광부장관 "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으로 한다.

제8조의2 중 " 문화관광부와그소속기관직제 "를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로 한다.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 중 " 문화관광부장관 "을 각각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으로 한다.

제20조 중 " 문화관광부소관 "을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으로 한다.

<70>부터 <102>까지 생략

**부칙** <제23644호,2012. 2. 29.>(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6>까지 생략

<67>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 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 "를 " 부교수 및 조교수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 조교수ㆍ전임강사 "를 " 조교수 "로 한다.

제8조의2 중 " 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전임강사 "를 " 부교수 또는 조교수 "로 한다.

<68> 및 <69>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4423호,2013. 3. 2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0>까지 생략

<101>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2항 중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을 각각 “ 교육부장관 ”으로 한다.

<102>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 <제24610호,2013. 6. 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53호,2025. 12. 30.>(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중 “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을 “ 제26조제1항, 제26조의2제1항 및 제27조제1항 ”으로, “ 교학처장 또는 기획처장 ”을 “ 교무처장, 학생처장 또는 기획처장 ”으로 한다.

# 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 설치령

[시행 2016. 11. 30.] [대통령령 제27620호, 2016. 11. 29., 타법개정]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 044 - 203 - 6063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등교육법 제19조제2항 및 동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의 설치ㆍ조직 및 학사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 2. 24., 2007. 3. 27.>

**제2조(설치 및 업무의 위탁등)** ①전문 임ㆍ어업인의 양성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관할아래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로서 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이하 "한국임업전문학교등"이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1. 1. 29., 2007. 3. 27., 2008. 12. 31., 2013. 3. 23.>

②교육부장관은 한국임업전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장에게, 한국수산전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각각 위탁한다.<개정 1996. 8. 8., 2001. 1. 29., 2007. 3. 27., 2008. 2. 29., 2013. 3. 23.>

③한국임업전문학교등의 소재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당해 학교 설립ㆍ운영의 소관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정한다.<개정 1996. 8. 8., 2007. 3. 27., 2008. 2. 29., 2013. 3. 23.>

**제3조(조직 및 정원등)** ①한국임업전문학교등의 조직 및 정원은 각각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정한다. <개정 1996. 8. 8., 2007. 3. 27., 2008. 2. 29., 2013. 3. 23.>

②학과별 교원 및 사무직원의 배치기준은 교육에 적합하도록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정한다.<개정 1996. 8. 8., 2007. 3. 27., 2008. 2. 29., 2013. 3. 23.>

**제4조(학칙)** ①한국임업전문학교등의 학칙은 학장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6. 8. 8., 2003. 2. 24., 2007. 3. 27., 2008. 2. 29., 2013. 3. 23.>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칙을 승인함에 있어서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6. 8. 8., 2001. 1. 29., 2007. 3. 27., 2008. 2. 29., 2013. 3. 23.>

**제5조(교육과정등)** ①한국임업전문학교등의 교육과정은 실습교육을 중심으로 편성ㆍ운영한다. <개정 2007. 3. 27.>

②한국임업전문학교등은 임ㆍ어업인과 유관기관 및 단체 등의 종사자 또는 임ㆍ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술연수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1999. 5. 24., 2007. 3. 27.>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 및 기술연수과정의 학생정원ㆍ학과 및 교과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개정 1999. 5. 24.>

**제6조(학장 등)** ①한국임업전문학교등에 학장 각 1인을 둔다. <개정 2003. 2. 24., 2007. 3. 27.>

②학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개정 2003. 2. 24.>

③학장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산림청장이 학장을 제청할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거쳐야 한다.<개정 2003. 2. 24., 2007. 3. 27., 2008. 2. 29., 2013. 3. 23.>

④한국임업전문학교등의 각 학과에 학과장을 두되, 해당 학과의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중에서 학장이 보한다.<개정 2003. 2. 24., 2007. 3. 27.>

[제목개정 2003. 2. 24.]

**제7조(교직원 등)** ①한국임업전문학교등에 교원으로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를 두고, 교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조교를 두며, 필요한 때에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겸임교원ㆍ명예교수ㆍ시간강사 및 초빙교원등(이하 "겸임교원등"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03. 2. 24., 2007. 3. 27., 2012. 2. 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 및 조교의 자격은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연구실적연수는 임업 또는 어업에 관한 연구ㆍ지도 또는 훈련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전공학과와 관련되는 직무에 근무한 연수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3. 2. 24., 2007. 3. 27.>

③교수 및 부교수는 학장의 제청으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임용한다.<개정 2003. 2. 24., 2007. 3. 27., 2008. 2. 29., 2013. 3. 23.>

④조교수ㆍ겸임교원등 및 조교는 학장이 임용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3. 2. 24., 2012. 2. 29.>

⑤겸임교원등은 임ㆍ어업에 관한 현장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임용 또는 위촉하되, 그 자격ㆍ보수 및 복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개정 2003. 2. 24., 2007. 3. 27.>

[제목개정 2003. 2. 24.]

**제8조(입학자격 및 학생선발방법)** ①한국임업전문학교등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출신 고등학교의 장,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개정 1995. 12. 29., 1997. 5. 24., 2003. 2. 24., 2007. 3. 27.>

②학생 선발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9조(수업연한)** 한국임업전문학교등의 수업연한은 2년이상 3년이하로 한다. <개정 2007. 3. 27.>

**제10조(학력인정)** 한국임업전문학교등을 졸업한 자는 대학편입학에 있어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다. <개정 2007. 3. 27.>

**제11조(이수단위등)** 한국임업전문학교등의 교과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학점의 이수방법 및 졸업에 필요한 학점등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 3. 27.>

**제12조(수업일수 및 재학연한)** 한국임업전문학교등의 수업일수는 매학년 30주이상으로 하고, 학과별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 3. 27.>

**제13조(시설ㆍ설비기준)** 한국임업전문학교등의 운영을 위한 시설 및 설비기준은 실습교육에 적합하도록 학장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1996. 8. 8., 2003. 2. 24., 2007. 3. 27., 2008. 2. 29., 2013. 3. 23.>

**제14조(실습시설의 지정등)**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한국임업전문학교등의 실습교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림청장 소속의 기관 및 단체의 시설 또는 선박등을 실습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6. 8. 8., 2007. 3. 27., 2008. 2. 29., 2013. 3. 23.>
②학장은 실습시설로 지정된 시설 또는 선박등을 관리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장에 대하여 실습교육을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03. 2. 24.>

**제15조(기숙사 생활)** 한국임업전문학교등의 학생은 재학기간중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숙사에 입사하여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7. 3. 27.>

**제16조(학비지원의 조건 및 이행)** ①한국임업전문학교등의 학생에게는 졸업후 일정기간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정하는 임ㆍ어업 또는 그 관련 분야에서 수업연한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종사할 것을 조건으로 입학금 및 수업료를 면제하고, 필요한 경비를 국고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6. 8. 8., 2007. 3. 27., 2008. 2. 29., 2013. 3. 23.>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비지원을 받은 자가 사망ㆍ신체장애ㆍ질병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한 의무이행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학비지원의 조건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의 이행을 유예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96. 8. 8., 2007. 3. 27., 2008. 2. 29., 2013. 3. 23.>
③병역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으로 의무복무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ㆍ어업 및 그 관련분야에 복무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07. 3. 27., 2016. 11. 29.>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비지원과 관련된 조건의 이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정한다.<개정 1996. 8. 8., 2007. 3. 27., 2008. 2. 29., 3. 23.>

**제17조(학비상환)** ①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임ㆍ어업 및 그 관련 분야에의 종사에 관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와 자진하여 퇴학하거나 제적처분을 받은 자는 재학중에 지원 받은 학비를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사망ㆍ신체장애ㆍ질병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그 조건을 이행 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학 또는 제적의 처분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6. 8. 8., 2007. 3. 27., 2008. 2. 29., 2013. 3. 23.>

②제1항에서 지원받은 학비라 함은 수업료ㆍ입학금ㆍ기숙사비 및 실습비등 교육과 관련하여 당해 학생에게 지원한 경비 및 물품대금등 모든 비용을 말한다.

③학비상환의 감면기준 기타 학비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정한다.<개정 1996. 8. 8., 2007. 3. 27., 2008. 2. 29., 2013. 3. 23.>

**제18조(학비지원의 중단)** 한국임업전문학교등의 학생이 정학 처분을 받은 때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간동안 학비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07. 3. 27.>

**제19조(졸업생에 대한 지원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한국임업전문학교등의 졸업생에 대하여 임ㆍ어업인 후계자등으로 선정하여 농ㆍ어촌 정착에 필요한 자금지원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3. 2. 24., 2007. 3. 27., 2008. 2. 29., 2013. 3. 23.>

**제20조(경비부담)** 한국임업전문학교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해양수산부 및 산림청의 소관 예산에서 부담한다. <개정 1996. 8. 8., 2007. 3. 27., 2008. 2. 29., 2013. 3. 23.>

**제21조(고등교육법 등의 적용)** 한국임업전문학교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등교육법 그밖의 교육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3. 2. 24., 2007. 3. 27.>

[제목개정 2003. 2. 24.]

**부칙** <제14742호,1995. 7. 27.>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에 관한 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한국농업전문학교등의 설립준비에 필요한 사항은 이 영 시행전에 행할 수 있다.

**부칙** <제14842호,1995. 12. 29.>(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한국농업전문학교ㆍ한국임업전문학교및한국수산전문학교 설치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중 “ 영림서관리소장 ” 을 “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 ” 으로 한다.

⑥ 내지 ⑪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5135호,1996. 8. 8.>(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2( 생략

3) 한국농업전문학교·한국임업전문학교및한국수산전문학교설치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중 "수산청장"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농촌진흥청장·산림청장 및 수산청장(이하 "농촌진흥청장·산림청장 및 수산청장(이하 "농촌진흥청장등"이라 한다)"을 "농촌진흥청장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1항중 "수산청"을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6조제3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농림부장관"으로 하고, 동항중 "임용한다" 다음에 "다만, 한국수산전문학교의 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를 삽입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제2항, 제6조제3항, 제7조제3항, 제13조, 제14조제1항,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17조제1항·제3항중 "농촌진흥청장등"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농촌진흥청장등"으로 한다.

제20조중 "농촌진흥청장등"을 "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 및 산림청"으로 한다.

3! 내지 <116>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5379호,1997. 5. 24.>(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3@ 생략

3# 한국농업전문학교·한국임업전문학교및한국수산전문학교설치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어촌지도소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제5조** (해양수산부 신설에 따른 업무조정규정의 효력) 대통령령 제15135호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부칙 제6조(해양수산부 신설에 따른 업무조정)의 규정은 이 영에 불구하고 그 효력을 가진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지방해운항만청·어항사무소 또는 어촌지도소를 인용한 경우에는 지방해양수산청을, 지방해운항만청장·어항사무소장 또는 어촌지도소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운항만청출장소를 인용한 경우에는 지방해양수산청출장소를, 지방해운항만청출장소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지방해양수산청출장소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349호,1999. 5. 24.>(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한국농업전문학교ㆍ한국임업전문학교및한국수산전문학교설치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특별연수과정"을 "기술연수과정"으로 한다.

②한국농업전문학교등은 농ㆍ림ㆍ어업인과 유관기관 및 단체 등의 종사자 또는 농ㆍ림ㆍ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술연수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생략

**부칙** <제17115호,2001. 1. 29.>(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62>생략

<63>한국농업전문학교ㆍ한국임업전문학교및한국수산전문학교설치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2항 전단, 제6조제3항 단서 및 제7조제3항 후단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4>내지 <512>생략

**부칙** <제17910호,2003. 2. 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국농업전문학교의 장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임명된 한국농업전문학교의 교장은 이 영에 의하여 임명된 학장으로 본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 제목 "(교장)"을 "(학장)"으로 하고, 동조제1항ㆍ제2항 및 별표 2중 "교장"을 각각 "학장"으로 한다.

**부칙** <제19966호,2007. 3. 27.>(한국농업대학 설치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한국농업전문학교ㆍ한국임업전문학교및한국수산전문학교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 한국농업전문학교ㆍ한국임업전문학교및한국수산전문학교설치령 ” 을 “ 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 설치령 ” 으로 한다.

제1조 중 “ 한국농업전문학교ㆍ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 ” 를 “ 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 ” 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 농ㆍ림ㆍ어업인 ” 을 “ 임ㆍ어업인 ” 으로, “ 한국농업전문학교ㆍ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이하 "한국농업전문학교등"이라 한다) ” 를 “ 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이하 "한국임업전문학교등"이라 한다) ” 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 한국농업전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에게, 한국임업전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장에게 ” 를 “ 한국임업전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장에게 ” 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 한국농업전문학교등 ” 을 “ 한국임업전문학교등 ” 으로, “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이하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을 "농촌진흥청장등"이라 한다) ” 을 “ 산림청장 ” 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 한국농업전문학교등 ” 을 “ 한국임업전문학교등 ” 으로, “ 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ㆍ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 및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 를 “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 농촌진흥청장등 ” 을 “ 산림청장 ” 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중 “ 한국농업전문학교등 ” 을 “ 한국임업전문학교등 ” 으로, “ 농촌진흥청장등 ” 을 “ 산림청장 ”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 농촌진흥청장등 ” 을 “ 산림청장 ” 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 한국농업전문학교등 ” 을 “ 한국임업전문학교등 ”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 한국농업전문학교등 ” 을 “ 한국임업전문학교등 ” 으로, “ 농ㆍ림ㆍ어업인 ” 을 “ 임ㆍ어업인 ” 으로, “ 농ㆍ림ㆍ어업 ” 을 “ 임ㆍ어업 ” 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 한국농업전문학교등 ” 을 “ 한국임업전문학교등 ”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중 “ 농촌진흥청장등 ” 을 각각 “ 산림청장 ” 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 한국농업전문학교등 ” 을 “ 한국임업전문학교등 ” 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 한국농업전문학교등 ” 을 “ 한국임업전문학교등 ”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 ” 을 “ 임업 또는 어업 ”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 농촌진흥청장등 ” 을 “ 산림청장 ” 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 농ㆍ림ㆍ어업 ” 을 “ 임ㆍ어업 ” 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 한국농업전문학교등 ” 을 “ 한국임업전문학교등 ” 으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방해양수산청장 ” 을 “ 지방해양수산청장 ” 으로 한다.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 중 “ 한국농업전문학교등 ”을 각각 “ 한국임업전문학교등 ”으로 한다.

제13조 중 “ 한국농업전문학교등 ”을 “ 한국임업전문학교등 ”으로, “ 농촌진흥청장등 ”을 “ 산림청장 ”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 농촌진흥청장등 ”을 각각 “ 산림청장 ”으로, “ 한국농업전문학교등 ”을 “ 한국임업전문학교등 ”으로 한다.

제15조 중 “ 한국농업전문학교등 ”을 “ 한국임업전문학교등 ”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 한국농업전문학교등 ”을 “ 한국임업전문학교등 ”으로, “ 농촌진흥청장등 ”을 “ 산림청장 ”으로, “ 농ㆍ림ㆍ어업 ”을 “ 임ㆍ어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 농촌진흥청장등 ”을 “ 산림청장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 농ㆍ림ㆍ어업 ”을 “ 임ㆍ어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 농촌진흥청장등 ”을 “ 산림청장 ”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 농ㆍ림ㆍ어업 ”을 “ 임ㆍ어업 ”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 농촌진흥청장등 ”을 “ 산림청장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 농촌진흥청장등 ”을 “ 산림청장 ”으로 한다.

제18조 중 “ 한국농업전문학교등 ”을 “ 한국임업전문학교등 ”으로 한다.

제19조 중 “ 한국농업전문학교등 ”을 “ 한국임업전문학교등 ”으로, “ 농ㆍ림ㆍ어업인 ”을 “ 임ㆍ어업인 ”으로 한다.

제20조 중 “ 한국농업전문학교등 ”을 “ 한국임업전문학교등 ”으로, “ 해양수산부ㆍ농촌진흥청 및 산림청 ”을 “ 해양수산부 및 산림청 ”으로 한다.

제21조 중 “ 한국농업전문학교등 ”을 “ 한국임업전문학교등 ”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20740호,2008. 2. 29.>(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9> 까지 생략

<70> 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을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으로, “ 해양수산부장관 ”을 “ 국토해양부장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 해양수산부장관 ”을 “ 국토해양부장관 ”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를 “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 해양수산부장관 ”을 “ 국토해양부장관 ”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중 “ 해양수산부장관 ”을 “ 국토해양부장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 해양수산부장관 ”을 “ 국토해양부장관 ”으로,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을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으로 한다.

제6조제3항 본문 중 “ 해양수산부장관 ” 을 “ 국토해양부장관 ” 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 농림부장관 ” 을 “ 농수산식품부장관 ” 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제13조, 제14조제1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 제17조제1항 단서 및 제3항 중 “ 해양수산부장관 ” 을 각각 “ 국토해양부장관 ” 으로 한다.

제19조 중 “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 을 “ 농수산식품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 ” 으로 한다.

제20조 중 “ 해양수산부 ” 를 “ 국토해양부 ” 로 한다.

<71>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 <제21214호,2008. 12. 31.>(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2& 까지 생략

2* 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 을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으로 한다.

2(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제23644호,2012. 2. 29.>(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7>까지 생략

<68> 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 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 ” 를 “ 부교수 및 조교수 ”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 조교수ㆍ전임강사 ” 를 “ 조교수 ” 로 한다.

<69>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4423호,2013. 3. 2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1>까지 생략

<102> 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및 제4조제2항 전단 중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을 각각 “ 교육부장관 ”으로 한다.

제2조제2항ㆍ제3항,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6조제3항 본문, 제7조제3항, 제13조, 제14조제1항,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7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및 제19조 중 “ 국토해양부장관 ”을 각각 “ 해양수산부장관 ”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를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로 한다.

제6조제3항 단서 및 제19조 중 “ 농수산식품부장관 ”을 각각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으로 한다.

제20조 중 “ 국토해양부 ”를 “ 해양수산부 ”로 한다.

<103>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 <제27620호,2016. 11. 29.>(병역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2$ 까지 생략

2% 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 의무종사 한 ”을 “ 의무복무한 ”으로, “ 종사한 ”을 “ 복무한 ”으로 한다.

2^ 생략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시행 2019. 10. 24.] [법률 제16342호, 2019. 4. 23., 일부개정]

교육부 (전문대학지원과) 044 - 203 - 6416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를 설립ㆍ육성하여 전문대학 운영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전문대학 간의 협조를 통하여 전문대학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2조(설립)** ① 전문대학의 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이하 " 협의회 "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의회가 설립되면 전문대학의 장은 당연히 그 회원이 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3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개정 2013. 3. 23.>
1. 전문대학의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2. 전문대학의 학생선발제도에 관한 연구개발
3. 전문대학의 재정지원책 및 그 조성방안
4. 전문대학의 교육과정 및 교수방법의 연구개발과 보급
5. 전문대학의 평가와 학사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6. 전문대학 교직원의 국내외 연수
7. 산학협동의 활성화방안 연구개발 및 지원책 강구
8. 전문대학교육에 적합한 교재개발 및 각종 자료의 발간ㆍ보급
9. 교육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의 수행
10. 그 밖에 전문대학의 상호협조에 관한 중요 업무

② 협의회는 전문대학교육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거나 교육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3. 17.]

**제4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직원에 관한 사항

5. 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사업에 관한 사항
7. 조직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회비에 관한 사항
10. 협의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회원의 이의신청과 재정(裁定)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0. 3. 17.]

**제5조(총회)** ① 협의회에 총회를 두고,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는 협의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6조(임원)** ① 협의회에 임원으로 회장 1명, 부회장 10명 이내, 이사 25명 이상 30명 이하, 감사 2명을 둔다.
②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회장ㆍ부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기면 이사회에서 보궐임원을 선출한다.<개정 2013. 3. 23.>
③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감사는 협의회의 회계 및 회계와 관련된 업무를 감사(監査)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7조(이사회)** ① 협의회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회장ㆍ부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회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8조(사무총장)** ①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협의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사무총장을 둔다.
② 사무총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사무총장은 소속 직원을 감독하고, 회장 또는 이사회에서 위임한 범위에서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3. 17.]

**제9조(경비보조 등)**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는 협의회의 시설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10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협의회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사용의 내용, 조건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11조(교직원의 파견근무)**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교직원 파견을 교육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12조(자료 제공)** ① 협의회는 국가ㆍ공공기관ㆍ연구기관 등에서 발간된 간행물이나 자료 중에서 협의회 운영과 관련이 있는 간행물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간행물이나 자료를 제공한 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협의회에 제공된 간행물이나 자료는 연구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13조(회계연도)**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14조(사업계획서 등)** 협의회는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20일 전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3. 17.]

**제15조(결산보고)** 협의회는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결산서에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집행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2개월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3. 17.]

**제16조(결정사항의 준수의무)** 회원은 협의회의 총회나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17조(업무위탁)** ①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대학의 행정 및 학사운영에 관한 소관 업무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18조** 삭제 <2013. 5. 22.>

**제1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협의회가 아니면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20조(「민법」의 준용)** 협의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21조(과태료)** ① 제19조를 위반하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 4. 23.>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3. 17.]

**부칙** <제5070호,1995. 1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이 법에 의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이 법에 의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로 보며, 그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 기타 공부에 표시된 사단법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명의는 이 법에 의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명의로 본다.
③이 법 시행전에 사단법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행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행한 행위로, 사단법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④이 법 시행전에 사단법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보조금을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것은 이 법에 의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⑤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임ㆍ직원은 이 법에 의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임ㆍ직원으로 본다.

**부칙** <제6400호,2001. 1. 29.>(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4! 생략

4@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9호ㆍ제2항, 제6조제2항 본문, 제8조제2항 전단, 제14조, 제15조,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2항중 “ 교육부장관 ”을 각각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으로 한다.

4# 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8852호,2008. 2. 29.>(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ㆍㆍㆍ<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15> 까지 생략

<116>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9호ㆍ제2항, 제6조제2항 본문, 제8조제2항 전단, 제14조, 제15조,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2항 중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을 각각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으로 한다.

<11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356호,2009. 1. 30.>(고등교육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3항 중 “ 전문대학 학장 ”을 각각 “ 전문대학의 장 ”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10075호,2010. 3. 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90호,2013. 3. 23.>(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7>까지 생략

<88>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2항 본문, 제8조제2항 전단, 제14조, 제15조, 제17조제1항, 제18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8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773호,2013. 5. 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342호,2019. 4. 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20309호, 2024. 2. 13., 타법개정]

국가유산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무과) 041 - 830 - 7220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를 설치하여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ㆍ발전과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이론과 실제적인 응용력을 갖춘 전통문화전문인을 양성하고, 이를 통하여 한국문화의 보급과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8.>

**제2조(설치)** ① 국가유산청장 소속으로 국립학교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이하 "전통문화대학교"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2. 13.>

② 전통문화대학교의 소재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운영의 원칙)** 전통문화대학교의 운영에 있어서는 「고등교육법」 제28조에 따른 대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의 기회균등과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총장)** ① 전통문화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전통문화대학교를 대표한다.

③ 총장은 국가유산청장의 제청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개정 2024. 2. 13.>

**제5조(교직원 등)** ① 전통문화대학교에 총장 외에 교원ㆍ직원과 조교를 둔다.

② 교원은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개정 2018. 6. 12., 2020. 12. 8.>

③ 제2항에 따른 교원 외에 겸임교원, 초빙교원 및 명예교수 등(이하 "겸임교원등"이라 한다)을 두어 교육 또는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 12. 8.>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원, 조교 및 겸임교원등의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다.

⑤ 교원ㆍ직원ㆍ조교ㆍ겸임교원등의 임명과 정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학교규칙)** ① 총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② 삭제<2018. 6. 12.>

③ 학칙의 기재사항, 제정 및 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8. 6. 12.>

**제7조(단과대학)** ① 전통문화대학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단과대학 및 단과대학 소속 학과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단과대학 및 단과대학 소속 학과에 장을 각각 두되, 단과대학 및 단과대학 소속 학과의 장은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중에서 둔다.
③ 단과대학의 장은 총장의, 학과의 장은 단과대학의 장의 명을 받아 해당 단과대학ㆍ학과의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제8조(대학원)** ① 전통문화교육을 더욱 심화시켜 고도의 창조적 전통문화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통문화대학교에 대학원을 둔다.
② 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을 두고, 각 과정별 학위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0. 12. 8.>
③ 대학원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9조(학생의 정원)** 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제10조(입학자격)** 전통문화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교육법」 제33조에 따른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11조(학생의 선발방법)** ① 총장은 제10조에 따른 입학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수업연한)** ① 전통문화대학교 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 또는 5년으로 한다. 다만, 수업연한을 5년으로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전통문화대학교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각각 2년 이상으로 한다.
③ 학칙으로 정하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제13조(학위의 수여)** ① 총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학사학위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② 총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수여한다.

**제14조(전통문화교육원)** ① 전통문화 및 국가유산 관련 분야 종사자와 국민의 교육을 위하여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전통문화교육원을 둔다. <개정 2023. 8. 8.>
② 전통문화교육원에 전통문화 및 국가유산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학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통문화전문과정을 둔다.<개정 2023. 8. 8.>
③ 전통문화교육원에 국민의 전통문화 및 국가유산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하여 학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통문화사회교육과정을 둔다.<개정 2023. 8. 8.>

④ 제3항의 전통문화사회교육과정은 국민의 편리한 접근을 위하여 수도권에서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도 운영할 수 있다.
⑤ 전통문화교육원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 6. 9.]

**제15조(부속시설 등)** ① 총장은 전통문화대학교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시설ㆍ부속시설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둘 수 있다.
② 부속시설 등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하부조직)** 전통문화대학교에 두는 하부조직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교육재정 등)** ① 전통문화대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부담한다.
② 전통문화대학교의 학생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 등 학비를 감면하거나 학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③ 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전통문화 관련 시설의 사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시설 및 교원의 배치기준)** ① 국가유산청장은 전통문화대학교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3.>
② 전통문화대학교의 운영을 위한 시설기준 및 교원의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전통문화대학교가 아닌 자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0조(교육 관계 법령의 준용)**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교육공무원법」, 「평생교육법」, 「영재교육진흥법」 및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 2. 3.>

**제21조(과태료)** ① 제19조를 위반하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가유산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24. 2. 13.>

**부칙** <제10830호,2011. 7. 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전통문화학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고등교육법」 제2조 및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에 따라 설치된 종전의 한국전통문화학교(이하 "한국전통문화학교"라 한다)는 이 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본다.

**제3조**(재학생 및 졸업생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전통문화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은 이 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재학생 및 졸업생으로 본다.

**제4조**(교직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전통문화학교에 재직 중인 총장ㆍ교원ㆍ직원 및 조교는 이 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총장ㆍ교원ㆍ직원 및 조교로 본다.

**제5조**(권리와 의무의 승계)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전통문화학교에 속하였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이 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가 승계한다.

**부칙** <제11690호,2013. 3. 23.>(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6>까지 생략

<267>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을 “ 교육부장관 ”으로 한다.

<26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979호,2016. 2. 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42호,2018. 6. 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419호,2020. 6. 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93호,2020. 12. 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강사와 겸임교원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8월 1일 이후 신규 임용된 강사와 겸임교원등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19601호,2023. 8. 8.>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09호,2024. 2. 13.>(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2( 까지 생략

3)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4조제3항, 제18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 중 " 문화재청장 "을 각각 " 국가유산청장 "으로 한다.

3! 부터3#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시행 2024. 12. 3.] [대통령령 제35040호, 2024. 12. 3., 일부개정]

국가유산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무과) 041 - 830 - 7220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재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이하 " 법 " 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이하 " 전통문화대학교 " 라 한다)의 소재지는 충청남도로 하되, 일부 시설을 다른 지역에 둘 수 있다.

**제3조(교원 등의 임용 등)** ①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교원, 조교 및 겸임교원, 초빙교원, 명예교수 및 시간강사 등(이하 " 겸임교원등 " 이라 한다)은 총장이 임명하고, 직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등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교원ㆍ직원 및 조교의 정원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4. 5. 14.>

**제4조(학교규칙)**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학교규칙(이하 " 학칙 " 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7.>

1. 설치 학과ㆍ전공 및 학생정원
2. 수업연한ㆍ재학연한, 학기와 수업일수 및 휴업일
3. 입학, 재입학ㆍ편입학, 휴학ㆍ복학, 모집단위 간 이동 또는 전과(轉科), 자퇴ㆍ제적ㆍ유급ㆍ수료 및 졸업
4. 학위의 종류 및 수여
5. 교육과정의 운영, 교과의 이수단위 및 성적의 관리
6. 복수전공 및 학점인정
7. 등록 및 수강신청
8. 공개강좌 및 특별과정
9. 교원의 교수시간
10. 학생회 등 학생자치활동
11. 학생 포상 및 징계
12. 수업료ㆍ입학금, 그 밖의 비용 징수
13.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14.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대학평의원회, 교무위원회 등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15. 교수회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학칙으로 위임되거나 전통문화대학교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삭제<2020. 4. 7.>

③ 총장은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제1항제14호에 따른 대학평의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2020. 4. 7.>

**제5조(단과대학)**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전통문화대학교에 3개 이하의 단과대학을 둔다.

**제6조(대학원)**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전통문화대학교에 1개의 일반대학원, 2개 이하의 전문대학원 및 1개의 특수대학원을 둔다. <개정 2020. 11. 10.>

② 제1항에 따른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주된 교육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11. 10., 2024. 5. 7.>

1. 일반대학원: 전통문화 및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학문의 기초이론과 고도의 학술연구
2. 전문대학원: 전통문화 및 국가유산을 보존ㆍ관리 및 활용하는 전문 직업 분야의 인력 양성에 필요한 실천적 이론의 적용과 연구개발
3. 특수대학원: 전통문화 및 국가유산을 보존ㆍ관리 및 활용하는 직업인 또는 일반 성인을 위한 계속교육

③ 제1항에 따른 대학원에 두는 학위과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20. 11. 10.>

1.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
2. 전문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다만,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과정을 둘 수 있다.
3. 특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④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각 과정별 학위의 종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11. 10.>

1. 일반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 학술학위
2. 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 전문학위. 다만, 학문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술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3. 특수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전문학위

⑤ 대학원 및 대학원 소속 학과에 장을 각각 두되, 대학원의 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되고, 대학원 소속 학과의 장은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중에서 된다.

**제7조(대학원의 학위과정 등)** ① 대학원에 다음 각 호의 학위과정을 둘 수 있다.

1. 학과 또는 전공
2. 둘 이상의 학과 또는 전공이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협동과정
3.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학ㆍ연ㆍ산 협동과정(학ㆍ연 또는 학ㆍ산 협동과정을 포함한다)

② 전통문화대학교에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학ㆍ연ㆍ산 협동과정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8조** 삭제 <2016. 9. 5.>

**제9조(학생의 정원)** 총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전통문화 인력의 수요 전망과 전통문화대학교의 수용 능력을 고려하여 전체 학생정원을 조정ㆍ책정하고, 과정별ㆍ학과별ㆍ전공별 학생정원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10조(입학전형)** ① 총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별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

1.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보유자ㆍ전승교육사 및 이수자

② 총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학생의 인성ㆍ소질ㆍ적성ㆍ능력ㆍ발전가능성ㆍ경험 등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평가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교원 또는 직원을 둘 수 있다.<신설 2024. 12. 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개정 2024. 12. 3.>

**제11조(수업연한)**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단축할 수 있는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 12. 3.>

1. 학사학위과정: 1년 이내
2. 석사학위과정: 6개월 이내
3. 박사학위과정: 6개월 이내
4.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연계과정: 1년 이내
5.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1년 이내

**제12조(전통문화교육원의 운영)**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통문화교육원(이하 "전통문화교육원"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ㆍ국가유산감리원 및 설계심사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및 외국의 국가유산 분야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전통문화전문과정을 운영한다. <개정 2020. 11. 10., 2024. 5. 7.>

② 전통문화교육원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통문화사회교육과정을 운영한다.<신설 2020. 11. 10., 2024. 5. 7.>

1. 전통문화 및 국가유산에 관한 인문교양교육
2. 전통공예 체험교육

3. 지역별 맞춤형 전통문화 및 국가유산 교육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통문화교육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 11. 10.>

**제13조(부속시설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구시설ㆍ부속시설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이하 "부속시설등"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② 부속시설등의 장은 관련 단과대학ㆍ대학원 또는 학과의 장 중에서 임명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부속시설등의 장은 총장, 관련 단과대학 또는 대학원의 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4조(하부조직)** 법 제16조에 따른 하부조직에 관하여는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5. 14.>

**제15조(월정직책급 등)**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가 단과대학의 장, 단과대학 소속 학과의 장, 대학원의 장, 대학원 소속 학과의 장, 부속시설등의 장 또는 하부조직의 장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봉급ㆍ기말수당 및 정근수당 총액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 계상(計上)된 예산의 범위에서 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직(補職)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교원의 배치기준)** ① 전통문화대학교는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원 1인당 학생 수로 나눈 수의 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인문ㆍ사회계열: 25명
2.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및 예능계열: 각각 20명

② 제1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할 교원을 산정하는 경우의 계열별 학생정원은 학사과정의 학생정원과 대학원 학생정원의 2배를 합한 학생 수를 말한다.

**부칙** <제23943호,2012. 7.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을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으로 한다.

별표 12 비고란 제1호가목 단서 중 "교육대학의 총장과 한국전통문화학교 총장"을 "교육대학의 총장"으로 한다.

②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중 “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에 따른 한국전통문화학교 ”를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로 한다.

③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7조제2항제23호중 “ 한국전통문화학교 ”를 각각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로 한다.

제3장의 제목 “ 한국전통문화학교 ”를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로 한다.

제10조 중 “ 한국전통문화학교 ”를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중 “ 한국전통문화학교 ”를 각각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대학원장ㆍ학장ㆍ학과장) ①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각 대학원에 대학원장을, 각 단과대학에 학장을, 대학원 및 단과대학의 각 학과에 학과장을 두되, 대학원장 및 학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학과장은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보한다.

② 대학원장ㆍ학장 및 학과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해당 대학원ㆍ단과대학 및 학과의 교무를 총괄하고, 학생을 지도ㆍ교육한다.

제13조 중 “ 한국전통문화학교 ”를 각각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 (전통문화연수원) ”을 “ (전통문화교육원)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14조에 따른 전통문화전문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 소속으로 전통문화교육원(이하 “ 교육원 ”이라 한다)을 둔다.

제15조제2항 중 “ 연수원 ”을 “ 교육원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 한국전통문화학교 ”를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17조 중 “ 연수원 ”을 각각 “ 교육원 ”으로 한다.

**부칙** <제27482호,2016. 9. 5.>(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0605호,2020. 4.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151호,2020. 11. 10.>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487호,2024. 5. 7.>(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 문화재 ”를 “ 국가유산 ”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 문화재를 ”을 각각 “ 국가유산을 ”로 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중 “ 문화재 ”를 각각 “ 국가유산 ”으로 한다.

별표 연구시설의 구분란 중 “ 문화유산 콘텐츠 개발원 ”을 “ 국가유산 콘텐츠 개발원 ”으로, “ 문화재예방보존연구소 ”를 “ 국가유산예방보존연구소 ”로, “ 문화유산정책연구실 ”을 “ 국가유산정책연구실 ”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중 “ 문화재청장 ”을 “ 국가유산청장 ”으로 한다.

<54>부터 <5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4488호,2024. 5. 7.>(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5) 까지 생략

<51>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부속시설의 구분의 자연과학 계열 및 공학계열란 중 “ 건축문화재 ”를 “ 건축문화유산 ”으로 한다.

<52> 및 <53>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4494호,2024. 5. 7.>(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을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로, “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를 “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ㆍ문화재감리원 ”을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ㆍ국가유산감리원 ”으

로, “ 문화재 분야 ”를 “ 국가유산 분야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3호 중 “ 문화재 ”를 각각 “ 국가유산 ”으로 한다.

⑬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4505호,2024. 5. 14.>(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2% 까지 생략

2^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14조 중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를 각각 “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로 한다.

2& 부터2( 까지 생략

**부칙** <제35040호,2024. 12. 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별표] <개정 2024. 12. 3.>

부속시설등(제13조제1항 관련)

| 시설 | 구분 | |
|---|---|---|
| 연구시설 | 연구용 실험실, 대학원 연구실, 국가유산 콘텐츠 개발원, 전통문화연구소, 국가유산예방보존연구소, 국가유산정책연구실, 전통건축도자센터 및 그 부대시설 | |
| 부속시설 | 공통 | 박물관, 교수·직원·대학원생·연구원의 주택 또는 아파트, 공관, 세계유산지속가능센터, 연구실안전관리센터, 산학협력단의 시설과 그 부대시설, 학교기업의 시설과 그 부대시설 |
| | 인문·사회계열 | 유적 발굴 실습실, 전통교양교육원 및 그 부대시설 |
| | 자연과학계열 및 공학계열 | 학술림, 전통조경 실습실, 고건축물(古建築物) 복원 실습장, 공학교육지원센터 및 그 부대시설, 건축문화유산 정보분석교육센터 |
| | 예능계열 | 전통미술공예 실습실, 전통문화상품 개발실 및 그 부대시설, 전통기능교육센터 |
| 교육기본시설 | 강의실, 실험실습실, 교수연구실, 행정실, 도서관, 학생회관, 체육관, 대학본부 및 그 부대시설 | |
| 지원시설 | 강당, 정보전산원, 실습공장, 학생기숙사 등 학생주거용 시설 및 그 부대시설, 보건진료소, 공동실험실습관 및 그 부대시설 | |
| 비고: 대학원, 단과대학 또는 학과의 필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부속시설등은 국가유산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거나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 | | |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시행 2025. 3. 1.]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75호, 2024. 12. 12., 일부개정]

국가유산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무과) 041 - 830 - 72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2.>

**제2조(학비 감면 및 학자금 보조)** ①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총장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에 따라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학생(이하 "학생"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학비를 감면하거나 학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 8. 25., 2019. 10. 7., 2020. 12. 4., 2024. 12. 12.>

1. 학생의 전부 또는 일부: 입학금 감면
2.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거나 학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수업료 감면 또는 학자금 보조
3. 천재지변 등으로 수업료를 내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수업료 면제
4.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을 취득한 학생: 수업료 및 입학금 감면
5.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전통문화 관련 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 해당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숙식비ㆍ교통비 및 연수비 등 학자금 보조
6. 단과대학 졸업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산 산업분야 관련 기관, 법인, 단체 등에서 일정 기간 근무할 것을 서약한 학생: 수업료 감면 및 학자금 보조
   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국가유산감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
   나.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매장유산 조사기관
   다.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보유단체
   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따른 문화유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체
   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0조의4에 따른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 및 같은 법 제80조의5에 따른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박물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미술관
   사.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5호에 따른 국가유산 보존 또는 활용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 조합 또는 단체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기관, 법인, 단체 등과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단체 등으로서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학교규칙(이하 “ 학칙 ” 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기관, 법인, 단체 등

② 제1항에 따라 학비를 감면하는 경우 수업료 및 입학금의 감면금액(제1항제4호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수업료 및 입학금의 감면금액은 제외한다)이 해당 학년도에 전체 학생이 내야 할 수업료 및 입학금 총액의 7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0. 12. 4.>

③ 제1항에 따른 학비 감면 및 학자금 보조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신설 2020. 12. 4., 2024. 12. 12.>

**제3조(소장품의 열람 · 복제 등)** ① 총장은 학술연구、홍보 등을 목적으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소장품의 열람、복제、탁본、촬영 또는 실측(이하 “ 열람、복제등 ” 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자가 있는 경우 해당 신청을 심사한 후 열람、복제등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복제등에 필요한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열람、복제등과 그 비용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2. 12.]

**부칙** <제120호,2012. 7.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에 따른 한국전통문화학교 의 장 ” 을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장 ” 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6쪽 중 “ 한국전통문화학교 ” 를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중 “ 한국전통문화학교의 장 ” 을 “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장 ” 으로 한다.

②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0호 중 “ 한국전통문화학교 ” 를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로 한다.

제3장의 제목 “ 한국전통문화학교 ” 를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로 한다.

제9조의 제목 “ (한국전통문화학교) ” 를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 한국전통문화학교 ” 를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 「한국전통문화학교 설치령」 ” 을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 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 한국전통문화학교 ” 를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 전통문화연수원 ” 을 “ 전통문화교육원 ” 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 전통문화학교 ” 를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로 한다.

제9조제2항제1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제14호 중 “ 전통문화연수원 ” 을 “ 전통문화교육원 ” 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 (전통문화연수원) ” 을 “ (전통문화교육원) ”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 전통문화연수원에 연수기획과 및 연수운영과를 두되 ” 를 “ 전통문화교육원에 교육기획과 및 교육운영과를 두며 ”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연수기획과장 ” 을 “ 교육기획과장 ” 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 「한국전통문화학교 설치령」 제7조에 따른 연수교육과정 ” 을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통문화전문과정 ” 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및 제12호 중 “ 연수원 ” 을 각각 “ 전통문화교육원 ” 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연수운영과장 ” 을 “ 교육운영과장 ” 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 한국전통문화학교 ” 를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로 한다.
별표 6의 제목 중 “ 한국전통문화학교 ” 를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로 하고, 같은 표 중 “ 한국전통문화학교 계 ” 를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계 ” 로, “ 전통문화연수원 계 ” 를 “ 전통문화교육원 계 ” 로 한다.

**부칙** <제267호,2016. 8.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1호,2019. 10. 7.>(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6호,2020. 12.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9호,2023. 12. 12.>(과징금 규정 정비 등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5호,2024. 12. 12.>

이 규칙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합동군사대학교령

[시행 2025. 9. 2.] [대통령령 제35726호, 2025. 9. 2., 타법개정]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02 - 748 - 6579

**제1조(설치)** 육군ㆍ해군(해병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공군의 전력을 효과적으로 통합ㆍ발전시키는 합동성을 구현하기 위한 군사전략, 국방기획, 합동ㆍ연합작전과 어학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합동교리(合同敎理) 등을 연구ㆍ발전시키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합동군사대학교를 둔다. <개정 2012. 11. 6., 2013. 11. 20., 2015. 12. 30.>

**제2조(임무)** 합동군사대학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2. 11. 6., 2013. 11. 20., 2017. 11. 14., 2020. 8. 25.>

1. 국방정책, 군사전략, 국방기획 및 합동ㆍ연합작전에 관한 교육업무
2. 삭제<2020. 8. 25.>

2의2. 삭제<2015. 12. 30.>

2의3. 합동ㆍ연합작전 및 국제 군사교류 등에 필요한 어학 교육 업무

3. 합동교리의 연구ㆍ발전에 관한 업무
4. 교육과정 개발 등 합동군사 교육체계의 발전에 관한 업무

**제3조(총장)** ① 합동군사대학교에 총장을 두며, 총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補)한다. <개정 2017. 9. 5., 2025. 9. 2.>

② 총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합동군사대학교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부서 및 기관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12. 11. 6., 2017. 11. 14.>

**제4조(조직)** ① 합동ㆍ연합작전 및 국제 군사교류 등에 필요한 어학 교육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합동군사대학교에 국방어학원을 둔다. <개정 2020. 8. 25.>

② 합동군사대학교의 하부조직으로 총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서를 둔다.<개정 2020. 8. 25.>

③ 국방어학원의 장은 영관급 장교 또는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보한다.<개정 2017. 12. 19., 2020. 8. 25.>

④ 삭제<2020. 8. 25.>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합동군사대학교 조직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조직의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개정 2020. 8. 25.>

[전문개정 2017. 11. 14.]

**제4조의2** 삭제 <2017. 11. 14.>

**제5조(순환 보직 및 인력 편성)** ① 총장은 육군ㆍ해군ㆍ공군이 순환하여 보직한다. <개정 2020. 8. 25.>

② 합동군사대학교의 부서 및 기관에 두는 육군ㆍ해군ㆍ공군의 인력은 합동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절한 비율로 편성해야 한다.<개정 2014. 12. 9., 2020. 8. 25.>

**제6조** 삭제 <2020. 8. 25.>

**제7조(합동참모의장의 지도ㆍ감독)** ① 합동참모의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합동군사대학교의 합동교리 연구ㆍ발전업무 및 육군ㆍ해군ㆍ공군 합동교육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7. 11. 14., 2020. 8. 25.>

② 삭제<2020. 8. 25.>

③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20. 8. 25.>

[제목개정 2020. 8. 25.]

**제8조(교육과정 등)** 합동군사대학교의 교육과정 및 과정별 학생 정원, 수업기간, 입학자격, 그 밖에 합동군사대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9조(교관 및 연구관)** ① 합동군사대학교에 교관과 연구관을 둔다.

② 교관과 연구관의 자격기준 및 임명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정원)** 합동군사대학교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제23333호,2011. 11.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육군대학령을 폐지한다.

**제3조**(재학생 및 별정군무원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사람은 이 영에 따른 합동군사대학교에 재학하는 것으로 본다.

1. 종전의 「육군대학령」에 따른 육군대학
2.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해군에 설치된 교육기관 중 육군대학과 비슷한 임무를 수행하는 교육기관
3.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공군에 설치된 교육기관 중 육군대학과 비슷한 임무를 수행하는 교육기관

② 이 영 시행 당시 제1항 각 호의 교육기관(이하 "육군대학등"이라 한다)에 재직 중인 「군무원인사법」 제44조에 따른 별정군무원과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계약에 의하여 임용된 군무원(이하 "별정군무원등"이라 한다)은 합동군사대학교 정원의 범위에서 합동군사대학교의 별정군무원등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임용되는 별정군무원등에 대해서는 육군대학등에서의 직급 및 호봉을 인정하며, 채용기간 등을 계산할 때 그 육군대학등에서의 임용일을 합동군사대학교에서의 임용일로 본다.

**부칙** <제24161호,2012. 1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합동군사대학교 총장

**부칙** <제24851호,2013. 11. 20.>

이 영은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824호,2014. 12.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합동참모대학의 교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국방대학교 설치법」(법률 제127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국방대학교의 합동참모대학(합동교리발전부를 포함하며, 이하 "국방대학교의 합동참모대학"이라 한다)에 재직 중인 교직원은 이 영 제10조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합동군사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용되는 교직원에 대해서는 국방대학교의 합동참모대학에서의 직급 및 호봉을 인정하며, 채용기간 등을 계산할 때 그 국방대학교의 합동참모대학에서의 임용일을 합동군사대학교에서의 임용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9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1조제3항 중 "국방관리대학원의 원장과 합동참모대학의 학장은"을 "국방관리대학원의 원장은"으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26771호,2015. 12. 30.>(국방정신전력원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합동군사대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정신전력(精神戰力) 및 어학 ” 을 “ 어학 ” 으로 한다.

제2조제2호의2를 삭제한다.

제4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합동군사대학교 소속으로 국방어학원을 두며, 합동ㆍ연합작전 및 국제 군사교류 등에 필요한 어학 교육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 국방어학원의 장은 영관급 장교 또는 계약군무원으로 보한다.

제4조의2제4항 중 “ 부대ㆍ국방정신전력원 ” 을 각각 “ 부대 ” 로 한다.

**부칙** <제28266호,2017. 9. 5.>(군인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8>까지 생략

<79> 합동군사대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 장관급(將官級) ” 을 “ 장성급(將星級) ” 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 장관급 ” 을 “ 장성급 ” 으로 한다.

<80>부터 <90>까지 생략

**부칙** <제28428호,2017. 11. 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475호,2017. 12. 19.>(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합동군사대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 계약군무원 ” 을 “ 임기제일반군무원 ” 으로 한다.

**부칙** <제30963호,2020. 8.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생 및 교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합동군사대학교에 두는 각 군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은 각 군에 두는 육군대학, 해군대학 또는 공군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합동군사대학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은 합동군사대학교 또는 각 군에 두는 육군대학, 해군대학, 공군대학에 재직 중인 교직원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 합동참모대학 ”을 “ 합동군사대학교 ”로 한다.

**부칙** <제35726호,2025. 9. 2.>(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교육법전2


**제 작 자 : 김태일**
**기관/부서 : 무원중**
**전화번호 :** 01025910688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무원로45**
**제작일자 :** 2026. 8. 2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